

발간등록번호

11-B552644-000320-10



2023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 KOCCA2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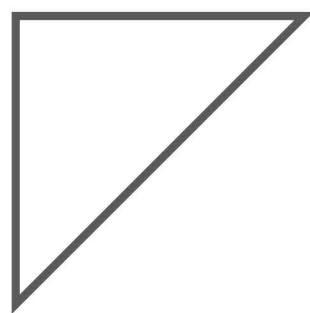
20
23

2023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 KOCICA23-20

20

23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3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연구/조사기관 : 한중콘텐츠연구소

연구/조사책임자 : 김원동 (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

연구원 : 나진희 (한중콘텐츠연구소 실장)

보조연구원 : 정유진 (한중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목 차 >

□ 중국의 법률체제	1
□ 신규 규제정책 핵심내용 및 추세변화	5
□ 방송	10
■ 방송	16
1. 방송TV 관리조례	16
2.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24
3.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30
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35
5.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36
6.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관리방법	40
7. 라디오·TV 안전 방송 관리 규정	45
8.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관리 임시 시행 규정	53
9.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59
10.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66
11.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67
12.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73
13.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75
14.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85
15.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87
16.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89
17.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91
18.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95
19.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	97
20.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100
21.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102
22.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04
23.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07
24.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110
25.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118
26.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120
27.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122
28.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126
29.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135
30.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137
31.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138
3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의 분류 목록(시행)> 조정에 관한 통지	143

33.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147
34.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50
35. 드라마 변형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153
36.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156
37.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157
38.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159
39.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161
40.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162
41.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의견 공개 수렴 통지	164
42. 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170
43.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예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173
44.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업계 세금부과 관리 강화	176
45.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177
46.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통지	179
47.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181
48.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184
49.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 (2019-2022년)	191
50.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197
51.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	205
52.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 건설 추진 관련 통지	213
53. 온라인 토크쇼(인터뷰) 영상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216
54. 인터넷 TV 통합 플랫폼 관리와 방송질서 규범 강화 관련 통지	217
55.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218
56. 방송TV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221
57. TV드라마와 웹드라마 창작생산 관리 관련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228
58.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기준 세칙	230
59.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	236
60.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관리 규정	238
61.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규범	243
62. 인터넷 라이브방송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 지도의견 (의견수렴 초안)	251
63. 웹 영화/드라마 세부 내용 점검 강화에 관한 통지	254
64. 라디오TV 방송기술 교체 실시방안(2020-2022년)	255
65. 웹드라마 중 UCC상황극 콘텐츠 심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68
66.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교체업무에 관한 통지	269
67. 인터넷 생방송 규범 관리업무 강화 관련 지도의견	273
68.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체계	277
69.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281
70. 중화인민공화국 방송법(초안)	290
71. 라이브커머스 관리방법(시범시행)	303
72.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관리업무 강화 관련 통지	308

73. 절강광전국의 드라마 배우 출연료 관리 시행 조치사항	310
74.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인원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311
75.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2021)	313
76. 인터넷 라이브방송 후원 기준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320
77.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 매니지먼트 업체 관리 방법	324
78. 인터넷 방송진행자 행위 규범	328
79. 라디오·TV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경영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334
80. 미니 웹 드라마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 시행 업무에 관한 통지	341
81.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 경영활동 규범화에 관한 통지	346
82. 만기 출소자의 솜품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348
83.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350
 □ 영화	353
■ 영화	355
1. 수입영화 관리방법	355
2. 영화관리조례	357
3.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367
4.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	370
5.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371
6.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374
7.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380
8.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381
9.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387
10.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389
11.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400
12.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402
13. 중국산 영화 속지(属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407
14. 영화산업 발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412
15.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415
16.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 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423
17. VOD영화관·VOD원선의 경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424
18.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규정	426
19.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427
20.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432
21. 영화관 건설 속도 증진에 관한 영화시장 발전 촉진 의견	434
22. SF영화 발전촉진 관련 약간 의견	438
23. 쇼트클립 내 영화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440
24. 영상기지 규범 건강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의견	441

□ 애니메이션	445
■ 애니메이션	446
1.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446
2.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447
3.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451
4.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56
5.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458
6.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460
7.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범시행)	465
8.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473
9.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474
10.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479
□ 출판	480
■ 출판	482
1. 인쇄업 관리조례	482
2.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492
3.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496
4. 도서출판 관리규정	504
5. 음반·영상물 제작관리 규정	513
6.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518
7.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529
8.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530
9.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533
10.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534
11.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543
12. 출판관리조례	553
13.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566
14.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569
15. 《중국표준녹음제품코드》 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방법》 발행 관련 통지	575
16.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실시에 관한 통지	583
17.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585
18.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587
19.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588
20. 해외저작권자 권리허가 인터넷게임·전자게임 출판물 신고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지	595
21.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597
22.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602
23.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614
24.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25

25.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627
26.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631
27. 인터넷문학 출판관리 강화 관련 통지	638
28. 사진저작물 판권 질서 규범 관련 통지	641
29. 출판물 감정 관리방법	643
30.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 개선에 관한 통지	649
 □ 게임	651
■ 게임	654
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654
2.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659
3.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662
4.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666
5.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677
6.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682
7.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92
8.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696
9.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698
10.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706
11.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709
12.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713
13.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720
14.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727
1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730
16.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734
17.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736
18.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737
19. 온라인 게임 운영 중도 및 사후 감독관리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741
20.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745
21.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	751
22.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예방에 관한 통지	759
23. 게임·오락 설비 관리방법	761
24.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767
25. 게임 심사 평점 세칙	769
26.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시행에 관한 통지	772
27.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	773
28.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게임 라이브방송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775
 □ 음악/공연	777
■ 음악/공연	779
1.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779

2.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788
3.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800
4.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803
5. 인터넷 음악 플랫폼 음악작품 불법 전송 금지 명령 통지	804
6.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805
7.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808
8. 온라인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813
9.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816
10. 공연시장 관리강화 관련 문화관광부의 통지(의견수렴안)	821
11. ‘시장기능 강화·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와 공연시장 번영에 관한 통지	825
12. 온라인 라이브공연 및 라이브커머스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828
13.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 임시 시행규정	831
14.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 관리방법	834
15. 공연 매니지먼트 규범화와 연예인 관리 강화, 공연시장 질서 확립 발전에 관한 통지	837
16. 공연 기획자 관리 방법 발령에 관한 통지	840
17. 토크쇼 공연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의서	844
18. 홍콩, 마카오, 대만의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847
19. 국외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848
20. 공연시장 관리규범 및 질서 강화에 관한 통지	849
21.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의 규범관리 강화를 통한 공연시장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851
 □ 종합	858
■ 종합	860
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860
2.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865
3.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868
4.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876
5.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878
6.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893
7.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899
8.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907
9.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912
10.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침해 단속 ‘검망2015’ 특별 단속 진행에 관한 통지	917
11. ‘선조후증’ 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921
12.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927
13.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929
14.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932
15.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937
16.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949
17.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951

18.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964
19. 인터넷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965
20.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974
21.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978
22.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981
23.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987
24.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1021
25.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1023
26.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1027
27.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1035
28.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1049
29.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1051
30.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1058
3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1059
32.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판)	1064
33. 과기부 등 6개 부문의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1068
34. 문화와 관광 소비의 잠재력 개발에 관한 의견	1075
35. 국가광전총국 2019-2028년 입법업무 계획	1079
36. 자유무역시험구 ‘증조분리’ 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	1083
37.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1089
38.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의견	1092
39.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산업 촉진법(심사원고 초안)	1097
40. 인터넷정보 콘텐츠생태 관리규정	1108
4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1115
42. 국가광전총국의 입법 업무 규정	1123
43. 국가광전총국 행정 규범성 문건 관리 규정	1130
44. ‘검망 2020’ 특별행동	1136
45.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1138
46. 디지털 문화산업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1141
47.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견수렴안)	1149
48. 정부업무보고 중 문화 관련 중점 업무	1159
49. 문화·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발성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	1161
50. 14차 5개년 문화산업 발전 계획	1164
51. 오락시설 및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허가 관련 조정 통지	1183
52.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1185
53. 팬덤 무질서 현상 정비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1191
54.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	1192
55. 사이버안보 심사방법 (개정초안 의견수렴)	1199
56. 사이버 안보산업 고품질 발전 3년 행동계획(2021-2023년) 의견수렴안	1202
57. 감염병 방역작업 강화 관련 긴급 통지	1211
58. 인터넷 부정당 경쟁행위 금지 규정(초안)	1213

59. 팬덤 문화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1219
60. 연예인 교육 관리 및 도덕성 강화 관련 통지	1221
61.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 의견	1223
62.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1226
63. 국가 문화 수출 기지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조치 관련 통지	1234
64.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의견 수렴안)	1238
65. 온라인 문화 시장 미성년자 보호 강화> 관련 의견	1257
66. 오락 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1261
67. 국가문화 디지털화 전략 추진에 관한 의견	1266
68. 모바일 앱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1273
69.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관리강화 관련 통지	1278
70. 인터넷 이용자 계정정보 관리규정	1281
71.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 규정	1286
72.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 규범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1289
73. 사이버폭력관리의 실질적 강화에 관한 통지	1290
74.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	1294
75.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1297
76.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1303
77.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 임시규정	1311
78.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작업 내실화 관련 통지	1318
7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	1320
80.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1325
81.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의견	1332

□ 중국의 법률체계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통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 분야, 경제법 분야, 민상법 분야, 형법 분야, 절차법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 헌법, 2. 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3. 행정법규, 4. 지방법규, 행정규정, 자치구 규정 및 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5. 특별행정구의 법규, 6. 국제조약·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유형		입법 기관	예
1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
2	법률	기본법	전국인민대표대회	민법통칙
		기본 법률 이외의 기타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상표법
3	행정법규		국무원	행정허가법
4	지방법규		현지 인민대표대회 및 성이나 성급 구역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북경시식품안전조례
	행정 규정	전국	국무원 산하 부처	행정절차처벌규정
		지방	입법 권한이 있는 지방 행정부서	서안시행정절차규정
5	특별구 규정		홍콩 및 마카오 정부	홍콩특별행정구 공공재산조례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해당 부서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중국의 법률 체계

1. 헌법(憲法)

중국 최고의 법으로서 그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중국 헌법은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개정되며, 헌법의 개정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1/5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2/3 이상의 다수 결의로 통과된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의 준수를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가 헌법을 해석·감독한다. (중국헌법 제64조 제1항)

2. 법률(法律)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 낮고 행정법규, 지방법규 등 다른 법규보다 높다. 법률은 제정기관에 따라 기본법률과 기타 법률로 나뉜다. 기본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다. 형사·민사·국가기관 등 규범성 문건을 말한다. (중국입법법 제7조) 예컨대, <형법>, <형사소송

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된 규범성 문건을 말하는데, 예컨대 <상표법>, <외상투자법> 등이 이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보완·개정할 수 있다. (중국입법법 제7조)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법을 해석할 때에 비록 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된 결의(決議), 결정(決定), 규정(規定), 방법(辦法) 등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동등하지만, <○○법>에 비해 체계성이나 규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구체적인 효력은 이를 기초하여 제정된 행정법규·규장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인터넷정보보호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決定)>은 이 <결정>을 기초로 제정된 부문규장인 <통신 및 인터넷사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規定)>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있다.

3. 행정법규(行政法規)

행정법규는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행정법규 제정 절차조례'에 따라 제정한 법규성문건(法規性文件)을 말한다¹⁾. 공포 시 국무원 총리의 명의로 공포된다.

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이고 부문규장이나 지방법규보다 상위이다. 국무원에서 공포한 조례(條例), 규정(規定), 방법(辦法), 결정(決定)과 명령(命令) 등이 규범성 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규 부류에 속하며, 국무원에서 제정한 행정법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등을 폐지할 수 있다.

4. 지방성법규(地方性法規)

지방성법규는 지방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 내의 구체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하며, 그 법적 효력은 당해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²⁾.

중국 <헌법>과 <민족자치구법(民族自治區法)> 및 <입법법(立法法)>에 따라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기관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민족자치구역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역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구조례(自治區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를 제정

1) 중국입법법 제56조

2) 입법법 제63조, 제64조

할 수 있다³⁾. 그리고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구조례와 단행조례는 그 민족자치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중국 경제특구의 수권법규(授權法規)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여 소속 경제특구의 단행법규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그 법률적 효력은 해당 경제특구에서 유효하다.

규장(規章)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부문규장(部門規章)과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규장은 국무원의 각 부문 및 그 직속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고 지방정부규장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역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규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상위법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해서 해당 지방의 행정관리 업무에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이다.

따라서, 중국법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장의 순서이다. 그리고 지방성법규의 효력은 동급 또는 하급 지방규장의 효력보다 높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은 본 행정구역 내 시(市)에서 제정한 규장의 효력보다 높다. 국무원의 부문규장(規章)과 지방정부규장(規章)간의 효력은 동일하고, 각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통용된다.

사법해석(司法解釋)은 사법기관의 법률, 법규(법령)에 대한 진일보한 한계 확정 또는 보충 규정이다. 사법해석은 사법효력을 가진 해석으로서 해당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넓은 의미에서 최고인민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내린 해석이 바로 사법해석이다. 사법해석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해석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 국무원 및 주관부문 사법해석
-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지방 인민정부 주관부문 사법해석

일례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비방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關於辦理利用信息网络實施誹謗等刑事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이 있다.

5.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의 법률

중국 <헌법> 제31조는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구상이 헌법에 잘 표현된 것으로서 특별행정구에서는 중국내륙지역의 경제와 정치, 법률제도와 다른 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입법권한과 법률 형식상의 특수성을 가진다. 특별행정구의 법률·법규는 당대 중국법의 연원 중 독단적인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고 있

3) 민족자치구법 제19조, 입법법 제66조

4) 입법법 제65조

다.

중국의 국가 입법체계에서 특별행정구의 입법은 지방입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을 가진다. 특별행정구 입법의 범위가 비록 중국 지방입법의 기타 유형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업무에 대하여 입법을 행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고의 국가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특별행정구의 입법이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성 자치업무(地方性自治業務)의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초월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한다.

6.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국제조약은 중국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외국과 체결한 양국 혹은 다국적 조약과 협정을 다룬 문건을 말한다. 조약 발효 후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관례에 따라 관련 국가의 국가기관·단체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990년에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체결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 외국과 조약협정을 체결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 또는 폐지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에 대하여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국제관례는 국제조약을 보완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民法通則)>에는 국제조약과 국제관례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142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다고 서명한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중에 규정이 없을 경우,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신규 규제정책 핵심내용 및 추세변화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을 살펴보면 중국 문화산업의 최근 정책 기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신규 발표된 장르별 정책의 핵심내용 및 추세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규정책 핵심내용>

1. 방송

1) <미니 웹드라마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 시행 업무에 관한 통지>

‘미니 APP’ 형태의 미니 웹드라마가 기술적인 수단을 악용해 관리·감독을 피하며 무서운 기세로 발전하고 있어, 미니 웹드라마의 모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미니 웹드라마의 관리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의 시행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2)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경영활동 규범화에 관한 통지>

공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놓은 정식 문건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콘서트, 페스티벌, 연극, 코미디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공연 경영기업의 콘텐츠 관리제도 구축, 댓글이나 탄막 등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리강화, 라이브공연의 송출 지연 의무화, 온라인공연 개최 전 허가증 취득 필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3) <만기 출소자의 솜품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만기 출소자가 솜품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출현하는 것과 관련해 광전총국(广电总局)이 더우인(抖音), 콰이서우(快手), 빌리빌리(哔哩哔哩), 샤오홍수(小红书) 등 주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바람직하지 않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23년 1월 21일 저녁 기준으로, 총 222개의 불법 계정을 적발해 조처하였고 3,345개의 불법 콘텐츠와 207개의 관련 검색어가 삭제되었는데 주로 복역 경험을 과시하고 교도소 생활을 미화하는 내용이나, 국가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복역 댄스’를 이용한 코믹 동영상, 만기 출소라는 ‘컨셉트’를 이용한 상품 홍보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였다.

4)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광전총국이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차량용 무선방송 수신 단말기 관리,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의 서비스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2. 공연

1) <토크쇼 공연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의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코미디 시장의 발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중국공연산업협회 주도하에 샤오귀문화(笑果文化), 단리런코미디(单立人喜剧) 등 중국 13개 코미디 클럽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콘텐츠의 독창성 보호, 공연 허가심사 기준 확립, 코미디 인재양성, 공연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 <홍콩·마카오·대만의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방역 조치 완화 관련 문건에 근거해 각 지역 문화여유행정부서가 2월 16일부터 홍콩·마카오·대만의 상업성 공연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재개하나, 중국 현지에서 이미 체류 중인 인원을 제외한 국외 상업성 공연에 대한 신규 승인은 보류한다는 내용이다.

3) <국의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공연시장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각 지역 문화여유행정부서가 3월 20일부터 국외 상업성 공연의 접수 및 심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으로, 상업성 공연에 대해서 지속적인 심사 및 점검 강화, 공연 주최자의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4) <공연시장 관리규범 및 질서 강화에 관한 통지>

중국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로 침체했던 공연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압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시장 접근 시스템의 엄격한 구현, 공연 활동의 승인 및 관리 강화, 지속적인 공연장 관리 감독, 대규모 공연 활동 현장 감독 강화 등 총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5)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의 규범관리 강화를 통한 공연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이 정책은 최근 상업성 공연이 다시 대규모로 개최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압표 거래, 비이성적 팬 활동, 비매너 공연 관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객 수 5천 명 이상의 대형 상업성 공연에서는 1인당 1장의 티켓만 실명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공연장 입장 시에는 티켓 구매 당시 등록한 신분증 제시 후 본인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 주최자는 공연티켓 전체 수량의 최소 85% 이상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전 판매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는 공연 시작 전 24시간 이내 실명제로 판매해야 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출판

1)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 개선에 관한 통지>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 국무원 <비공공자본 문화 산업유입 관련 약간 결정(关于非公有资本进入文化产业的若干决定)>, <정기 간행물 출판관리 규정(期刊出版管理规定)> 등 관련 법규문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의 개선을 위해 정기간행물 출판권 양도 금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원고의뢰 및 투고 위탁 금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 취재편집과 경영 분리 등 총 8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4. 종합

1) 연예인 광고 관련 규범 지도의견 발표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허위광고 및 광고 트래픽 유발을 위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 모델 섭외, 미디어들의 무분별한 송출 등 소비자 권리 침해와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서 주로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범위와 기업의 모델선발 기준, 관리·감독 책임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 <사이버폭력 관리의 실질적 강화에 관한 통지>

욕설·허위비방·사생활 침해 등 불법 정보 및 불건전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 네티즌 권리 보호 등 인터넷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사이버폭력 식별·경고 시스템 구축,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콘텐츠 확산 방지 등 총 5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3)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

온라인플랫폼의 댓글환경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17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 기존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5년여 만에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총 16개 조항으로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준수 요구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4)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규정>

딥페이크 서비스의 불법정보 제작과 배포 및 타인의 명예훼손, 신분 사칭 규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AI 대화·음성합성·얼굴 이미지 생성·몰입형 시뮬레이션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중이 혼동하지 않도록 특정 로고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삭제, 변조, 은폐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 사용자 계정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지난 2016년 발표·시행한 <인터넷 광고 관리 임시방법(互联网广告管理暂行办法)>의 개정판으로 광고 관련 경영 주체의 책임 강조, 광고 유형에 따른 규범 제시, 관리 감독 규정 세분화, 광고모델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당국은 중국 인터넷 광고업계 발전에 따른 특징과 추세 등을 적용했으며, 관리 감독 규칙 신설 및 경영책임의 세분화로 시장의 질서유지와 디지털 경제 지속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6)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 임시규정>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규정은 총칙, 콘텐츠 관리 및 미성년자 보호, 극본 및 장소등록,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총 6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5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7)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작업 내실화 관련 통지>

최근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종의 관리 감독 가이드라인으로 <삼품일계

(三品一械)》 광고 심사서비스의 규범화·편의화·표준화 및 광고 모니터링 업무 규범화, 온라인 광고 관리·감독 강화, 부문 간 관리·감독 협력 강화 등 총 10개 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조치가 포함되었다.

8)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이 8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사진, 음성, 비디오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중국영토 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분류별·등급별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및 안전 평가, 알고리즘 등록, 신고 제보 등 제도를 통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9)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사이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신고 플랫폼 다원화, 시스템 기술 구축, 신고 접수 및 처리제도 규범 보완 등 업무 제반 환경을 강화하고, 개인·기업의 합법적 보호 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0)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여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개인 정보 침해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질서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에는 형법 제246조 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며 범죄의 침해대상, 목적, 방식, 정보전파의 범위,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이다.

<정책 추세>

1. 중국 공연시장 규범관리 및 질서 강화 추세

2023년 초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이후 중국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 관련 문건에 근거해 2월 16일부터 홍콩·마카오·대만의 상업성 공연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재개했으며 연이어 3월 국외 상업성 공연의 접수 및 심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후 중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연시장의 관리규범 및 질서 강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며 그간 침체됐던 공연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한편, 공연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는 곧, 각종 안전사고와 암표 거래, 비이성적 팬 활동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향후 중국 공연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규제가 강력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사이버 권리 침해 신고 및 사이버폭력 관리 구체화

중국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사이버폭력 관리의 실질적 강화에

관한 통지>,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의견> 및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속속 발표했다. 이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중의 합법적인 사이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사이버폭력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대응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사이버폭력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정부의 인터넷광고 규제 강화 추세

<인터넷광고 관리방법(互联网广告管理办法)>이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방법에는 광고 경영 주체의 책임 강조, 광고 유형에 따른 규범 제시, 관리 감독 규정 세분화, 광고모델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광고 구현 형식부터 광고주의 자질, 광고모델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 것이다. 특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광고는 일반 콘텐츠가 아니라 광고라는 점을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동영상 시작 전 또는 중간에 재생되는 광고와 팝업 자막이 나오는 형식의 광고는 창을 닫는 표시를 명시해야 함은 물론, 광고주의 자질과 합법성 요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관련 규제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인터넷광고 관련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인터넷기업의 광고 업무 또한 큰 타격을 입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규범화는 향후 인터넷 광고 업계의 뚜렷한 발전 방향이자 추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규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광고 공급 사슬이 영향을 받아 기술적인 원가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시장도 이미 충분히 자체 조절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들도 곧 새로운 기술과 방식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적응해 정책적인 리스크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방송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1997.08.11	1997.09.01	국무원	방송TV 관리조례	외자경영,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 경영의 라디오 방송국 및 TV방송국 설립 금지. 2017년 3월 1일 2차 수정
2	2004.07.19	2004.08.20	광전총국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1. 《을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은 해당 허가증에 기재된 드라마에 관한 허가증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유효기간은 최고 180일. 특별한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장 가능 2. 《갑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제작하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해 유효함
3	2004.09.21	2004.10.21	광전총국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1. 중외합작 제작드라마 (애니메이션 포함) 관리규정 2. 중국 측은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甲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중국특색을 주제로 하는 중외 공동제작 TV 애니메이션은 중국 TV 애니메이션과 같은 지위에서 방영
4	2008.01.14	2008.02.14	광전총국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타이완 지역 및 해외의 법인, 자연인과의 드라마 합작 제작 입안의 회당 줄거리 글자 수는 최소한 1500자 이상이어야 함
5	2004.09.23	2004.10.23	광전총국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1. 매일 각 TV채널에서 방송되는 해외 영상물과 당일 방송되는 영상물, 기타 해외TV프로그램의 방송시간 규정 2.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영상물은 황금시간대(19:00~22:00)에 방영할 수 없음
6	2004.11.15	2004.12.15	광전총국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관리방법	방송 프로그램 신호, 비상 라디오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의 계획, 구축, 사용과 관리 등 활동에 적용하는 규정
7	2009.12.16	2010.02.06	광전총국	라디오·TV 안전 방송 관리 규정	라디오·TV의 안전한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시스템 구축, 기술 유지, 운행 관리, 모니터링 감독관리, 운영 지시, 응급 대응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규정
8	2011.12.02	2012.03.01	광전총국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관리 임시 시행 규정	유선방송 운영서비스 공급업체의 등록, 시스템 구축, 고객 서비스, A/S, 안전 방영을 위한 감독관리, 법률 책임 등에 관한 규정
9	2018.09.20		광전총국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방송국과 인터넷 영상 서비스 업체의 해외 영상물 수입 및 전파 관련 규정으로 의견 수렴 단계, 정식 시행되면 기존의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폐지됨
10	2005.09.14	2005.09.14	광전총국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과 방송 횟수 관리를 규정. 광전총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애니메이션 및 합작 애니메이션 방영 금지
11	2009.09.08	2010.01.01	광전총국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TV방송 송출기관의 광고 방영 시의 시간과 내용에 대한 제한
12	2010.03.22	2010.05.01	광전총국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위성TV종합채널 드라마의 총 방영시간 및 횟수 관리규정
13	2010.05.14	2010.07.01	광전총국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드라마 내용의 제작, 배급, 방송활동에 관한 내용. 중국 또는 해외에서 방영되는 중국 드라마, 중국과 해외 기관이 공동 제작한 드라마 해당
14	2011.02.12	2011.02.12	광전총국	영화, TV드라마의 흡연 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미성년자 흡연 장면과 담배상표 및 관련 장면 방영금지
15	2011.10.25	2012.01.01	광전총국	TV위성 종합채널	위성 종합채널은 매일 6:00~24:00 사이 뉴스 관련 프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로그램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함. 18:00-23:30은 2개 이상의 자체편성 뉴스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함
16	2012.02.09	2012.02.09	광전총국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고화질 해외 드라마 수입을 우선으로 함. 편당 50회를 넘지 않고, 황금 시간대(19:00-22:00) 방영금지. 해외 영화 및 드라마는 해당 방영채널의 1일 영화/드라마 총 방영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17	2012.07.09	2012.07.09	광전총국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비’ 등 인터넷 동영상물에 대해 전면 심사 후 전송할 수 있음 인터넷 동영상 산업협회는 업계 자율기간을 제정 실시해야 함 정부 관할부서는 법에 따라 사업주체 의 진입/퇴출을 관리함
18	2014.01.02		신문출판 광전총국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웹 드라마, 마이크로비 등의 인터넷 영상을 제작기관은 방송영상행정부의 <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19	2013.10.20	2013.10.20	신문출판 광전총국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	1. 프로그램 구조의 최적화, 유형의 다양화. TV위성 종합채널의 뉴스,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생활, 애니메이션, 어린이 프로, 다큐멘터리, 농업 등 프로그램의 주간 송출비중 30%이상. 교양, 윤리 프로그램 6:00~24:00사이에 1회 방영, 매일 중국산 다큐멘터리 30분 방영, 8:00~21:30 사이에 중국산 애니메이션 혹은 어린이 프로 30분 방영 2. 창의성 원칙 견지, 수입관리 강화. TV위성종합채널은 매년 해외 프로그램 포맷 1개 초과 구입 또는 19:30~22:00 사이에 방영 불가 3. 과도한 오락화, 동질화 방지. 시즌 별로 가수 오디션 프로를 선정하여 프라임시간대에 방영
20	2014.09.02	2015.04.01	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상에 해외 영화, 드라마를 방영할 때, 신문출판 광전총국에서 발행하는 <영화방영허가증> 또는 <드라마방영허가증> 등의 승인하는 문건 취득. 허가증 미취득시 인터넷에 영상을 방영 불가
21	2015.01.19	2015.01.19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정보 온라인 통합 등록 플랫폼을 구축, 2015년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리함
22	2015.07.22	2015.07.22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 수량을 적당하게 통제하고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피해야 함
23	2016.09.20	2016.09.20	신문출판광전총 국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영화·드라마는 반드시 관련 행정 부문이 발급한 <영화 필름 상영 허가증>·<드라마 발행 허가증>·<TV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또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저작권 보호 조치를 통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함
24	2016.04.25	2016.06.01	신문출판광전총 국	사설망 및 시청각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관리주체 지정, 시청각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원칙, 경영자의 자격, 서비스 범위, 불법 범위, 법률책임을 규정함
25	2016.02.25	2016.02.25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판공청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방송국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TV드라마 제작 기관이 TV드라마를 과도하게 선전하는 등 행위를 제한함
26	2016.05.10	2016.05.10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의 “전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가 주식상장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27	2016.11.04	2016.12.01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생방송 무분별 콘텐츠 방지
28	2017.06.30	2017.06.30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원칙, 요구사항, 심사 기준,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 벌칙 등을 규정
29	2016.05.27	2016.05.27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인터넷 영화, 드라마는 등록해야 하고, 생방송을 포함 하여 제반 시청각 프로그램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 청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처리
30	2016.04.27	2016.04.27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공시단계 드라마 명칭 변경 불가, 내용 개요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31	2017.05.02	2017.06.01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반 뉴스 서비스 기관을 감독의 대상으로 함. 외국자 본이 투입되어 있는 뉴스서비스기관 설립 불허. 종사 자 자격, 평가기에 관한 규정, 뉴스 심사제도 구축 등
32	2017.03.10	2017.03.10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의 분류 목록(시행)> 조정에 관한 통지	2010년 3월 17일 발표한 시행버전을 수정한 버전임
33	2017.07.20	2017.07.20	광전총국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TV 위성 종합채널의 프로그램 관리 강화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 황금시간대 방송 불가
34	2017.05.16	2017.05.16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강화, 인터넷 시 청각 프로그램과 라디오TV프로그램 동일 조건과 요구 실시
35	2017.06.26	2017.06.26	광전총국	드라마 번역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TV드라마, 웹 드라마 동일 표준 적용 우수 TV드라마의 해외 진출 지원
36	2017.09.22	2017.09.22	중국 라디오·영화·TV 사회조직연합회 TV제작위원회 외 3개 기관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전체 배우의 총 개런티는 총 제작비의 4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주연 배우의 개런티는 총 개런티의 70%를 넘어서는 안 됨
37	2017.11.09	2017.11.09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HD TV 발전이 비교적 좋은 성(省)과 기관의 4K UHD TV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4K UHD TV 기술표준체계 구축
38	2017.12.06	2017.12.06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위성TV종합채널에서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 방송하 려면 2개월 전 등록 실시
39	2018.07.06	2018.07.06	광전총국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상 청소년 유해 영상물 모니터링 강화, 불량 콘텐츠 차단
40	2018.08.01	2018.08.01	광전총국 외 5개 기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에 관한 통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 관리 강화
41	2018.9.20		광전총국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중국산 드라마, 예능, 토크쇼 등 라디오·TV 프로그램 에서 주제작자로 고용된 외국인 수는 동종 인력 전체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인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42	2018.10.02	2018.10.02	국가세무총국	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 탈세 등 문제점 대비 세수정책
43	2018.10.31	2018.10.31	광전총국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 탈세 등 문제점 대비 프로그램 관리 강화 조치 제작비 대비 출연료 비율 등 규정
44	2018.07.13	2018.07.13	세무총국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산업 세금부과 관리 강화	영상산업 거액 출연료, ‘음양계약서(이중계약서)’, 탈세 등 문제 처리 위한 세수정책
45	2018.03.16	2018.03.16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상 재편집 영상물 콘텐츠 관리 강화
46	2019.01.02	2019.02.1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통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정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등록 시스템’ 모듈 증설, 정보 등록 방식 조정
47	2019.01.09	2019.01.09	중국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쇼트클립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규범 명시
48	2019.01.09	2019.01.09	중국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의 기본 기준과 구체적 세칙 명시
49	2019.03.01	2019.03.01	공업정보화부·국가광파전시총국·중앙광파전시총대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 (2019-2022년)	초고화질 영상산업 산업체인의 핵심 프로세스 중고급화,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가속화, 산업생태계 건립을 위한 행동계획
50	2019.04.03	2019.04.30	국가광파전시총국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활동에 대한 관리 규정
51	2019.08.19	2019.08.19	국가광전총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에 대한 가이드 제시, 산업 체계 업그레이드, 산업구조 최적화, 시장체계 보완, 정책적 지원 제시
52	2019.06.26	2019.06.26	국가광전총국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 영상 산업 기지(단지) 건설 추진 관련 통지	전국 TV방송 및 인터넷 영상산업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해 각 성급 관련기관에 발송한 통지
53	2019.07.19	2019.07.19	국가광전총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	온라인 토크쇼(인터넷) 영상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플랫폼에서 방영되는 토크프로그램 조사 및 문제 프로그램 서비스 금지,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신규 토크프로그램 엄격하게 심의 진행
54	2019.09.27	2019.09.27	국가광전총국	인터넷 TV 통합 플랫폼 관리와 방송질서 규범 강화 관련 통지	무허가로 TV플랫폼 또는 단말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체에 대한 단속 지시
55	2019.10.09	2019.10.09	국가광전총국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으로 이론, 모델, 응용기술, 인큐베이팅 등을 진행하며, 추진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
56	2020.01.06	2020.01.06	국가광전총국	방송TV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시스템 및 표준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방향 제시
57	2020.02.06	2020.02.06	국가광전총국	TV드라마와 웹드라마 창작생산 관리 관련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TV 및 웹드라마의 창작성 부족, 무리한 회차 늘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규정
58	2020.02.21	2020.02.21	중국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협회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기준 세칙	웹예능 프로그램의 콘텐츠 심사 기준으로 제작자 및 출연자 선정, 내용, 시각효과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59	2020.03.26	2020.03.26	선전부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	전국의 유선TV 네트워크 통합과 방송과 5G 기술을 융합 등을 목표로 한 정책
60	2020.04.03	2020.05.05	국가광전총국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관리 규정	TV와 라디오 방송산업 관련 통계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 정책
61	2020.06.26	2020.07.01	중국광고협회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규범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마케팅에 대한 관련 협회의 규범, 판매자, 방송진행자, 플랫폼, 기타 참여자 등의 행위에 대한 방향 제시
62	2020.07.29	2020.07.29	시장감독총국 홈페이지	인터넷 라이브방송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 지도의견 (의견수렴 초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되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시장감독총국의 지도의견 초안.
63	2020.11.09	2020.11.09	국가광전총국	웹 영화/드라마 세부 내용 점검 강화에 관한 통지	웹 영화/드라마 방송 콘텐츠에 대한 세부 심의 규정 강화, 제작기관과 방영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64	2020.12.07	2020.12.07	국가광전총국	라디오·TV 방송기술교체실시방안 2020-2022 년	5G방송, 모바일방송, 스마트TV 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생태계가 재구성됨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방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방송기술 교체 실시방안을 수립함.
65	2020.12.08	2020.12.08	국가광전총국	웹드라마 중 UCC상황극 콘텐츠 심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10분 미만인 인터넷 드라마 형식의 동영상에 대한 심사는 장편 인터넷 드라마와 동일한 표준 및 척도를 적용함.
66	2021.01.22	-	국가광전총국	2021년도 <라디오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과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 교체 업무에 관한 통지	사회적 효익과 프로그램 제작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질우선' 원칙 하에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교체하며,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일괄 조정함.
67	2021.02.09	2021.02.09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	인터넷 생방송 관리강화 관련 지도의견	인터넷 생방송 업계의 규범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체의 책임 이행 독촉,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안전한 콘텐츠 확보에 주력
68	2021.02.10	2021.02.10	국가광전총국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체계	케이블 디지털TV, IPTV, 인터넷TV, 인터넷 동영상 등 시청각 콘텐츠 배급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구축을 위해 제정한 표준체계
69	2021.03.15	2021.05.01	시장감독관리총국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온라인을 통한 거래 활동 규범화, 온라인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각 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법률책임을 명시
70	2021.03.16	-	국가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방송법(초안)	방송의 질적 발전과 관리 혁신, 미디어 심층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방송업 시장진입, 제작 및 방영, 전송, 공공서비스, 지원 촉진, 안전 보장, 감독관리에 대해 규정
71	2021.04.23	2021.05.25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	라이브커머스 관리방법 (시범시행)	라이브커머스의 건전하고 체계적 발전을 위해 해당 플랫폼, 운영자, 진행자에 대한 행동방침을 규정하고 감독관리와 법률 책임을 명시한 법규
72	2021.05.10	2021.5.10	북경시광전국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관리 작업 강화 관련 통지	북경방송국의 인터넷 예능프로그램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강화 및 단속 규제에 관한 통지
73	2021.05.13	-	절강광전총국	절강광전국의 드라마 배우 출연료 관리 시행 조치사항	고액 출연료 문제에 대해 절강성 광전국이 발표한 드라마 출연료 관리 및 조사 검열 강화에 관한 조치
74	2021.09.02	2021.9.2	국가광전총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인원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연예인의 위법, 도덕성 상실, '팬덤'의 무질서 현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원관리 강화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을 위한 규제 조치
75	2021.12.15	-	중국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협회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척 (2021)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심사표준세척> 개정판 발표
76	2022.05.07	-	국가광전총국 외 3개 부서	인터넷 라이브방송 후원 기준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라이브 방송 산업 규범 강화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라이브 방송 금지 및 후원 금지 등을 발표
77	2022.05.30	2022.06.30	국가광전총국	방송 및 온라인 영상	애니메이션 기구의 팬덤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분야 매니지먼트 업체 관리 방법	배포·후원 순위 공개·댓글 조작·후원금 모집·소비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78	2022.06.22	-	국가광전총국, 문화여유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위 규범	인터넷 라이브방송 및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과정에서 금지되는 31 가지 행위 및 정치적 방향, 여론 유도, 이성적인 표현, 합리적인 소비, 건전한 외모·공연·메이크업·언어 사용 등을 요구
79	2022.08.08		국가광전총국	라디오·TV 및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경영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국가광전총국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디오·TV 및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경영 관리규정> 의견수렴 초안을 발표하여 방송업계의 발전상황에 대응하고자 함.
80	2022.11.14		국가광전총국	미니 웹 드라마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 시행 업무에 관한 통지	미니 웹 드라마의 모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미니 웹드라마의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 시행을 요구하는 통지
81	2023.01.17		문화여유부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 경영활동 규범화에 관한 통지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경영활동 규범화에 관한 통지로,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놓은 정식 문건으로 적용 대상에는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콘서트, 페스티벌, 연극, 코미디쇼 등이 포함됨
82	2023.01.22		중국인터넷 시청각프로그램 서비스협회	만기 출소자의 숏폼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징역을 마친 출소자가 쇼트클립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규정을 어기고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광전총국이 더우인(抖音), 콰이서우(快手), 발리발리(哔哩哔哩) 등의 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조사·삭제하도록 요구함
83	2023.09.14		국가광전총국 외 2개 부문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광전총국이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차량용 무선방송 수신 단말기 관리,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의 서비스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 방송

1. 방송TV 관리조례

제목	广播电视管理条例 (第228号)
제재일	1997-08-11, 2013-12-07, 2017-03-01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방송TV 관리조례》는 1997년 8월 1일 제61회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펑(李鵬)

1997년 8월 11일

방송TV 관리조례

(1997년 8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28호로 발표, 2013년 12월 7일 《일부 행정 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3월 1일 《일부 행정 법규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방송TV 관리 강화는 물론 방송TV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과 방송TV 프로그램의 취재편집, 제작, 방영, 송출 등에 적용된다.

제3조 방송TV 사업은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행해져야 하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

제4조 방송TV 사업의 국가적 발전.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방송TV 사업을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와 경제력에 근거하여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방송TV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농촌지역의 방송TV 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역과 변경 낙후지역의 방송TV 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전국의 방송TV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방송TV 행정관리부처 혹은 기관 (이하 방송TV 행정부처)에 대해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TV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전국 규모의 방송TV 사회단체는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의 지도에 따른다.

제7조 국가는 방송TV 사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한다.

제2장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제8조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는 전국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 계획을 세우고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수량, 배치, 구성을 결정한다.

본 조례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라 함은 취재편집, 제작 그리고 유선 혹은 무선으로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제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가가 규정한 인원수의 방송TV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국가가 규정하는 방송TV 기술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3)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금과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 (4) 필요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또한 국가의 방송TV 건설 계획과 기술발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현, 구(區)청 행정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설립하며 그 중 교육방송국은 구청 행정단위가 설치된 시, 자치구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에서 설립할 수 있다. 그 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

국가는 외자 경영,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설립을 금지한다.

제11조 중앙 라디오방송국, 중앙 TV방송국은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설립한다. 지방의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현, 구(區)청 행정단위를 설치하지 않은 시(市)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신청하고 본 지방의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뒤 상부 보고 후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될 수 있다.

중앙의 교육방송국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처가 설립하고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가 심사 및 승인을 맡는다. 지방의 교육방송국은 시(구청 행정단위 설치), 자치구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가 신청하며 동급의 방송TV 행정부처의 동의와 본급의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상부에 보고하여 국무원 교육행정부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설립될 수 있다.

제12조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국가가 규정하는 설립 과정과 방송TV 기술의 기준에 맞추어 설립되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조건에 부합되면 방송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당연히 허가증에 기재된 방송국명, 방송국 로고, 프로그램 편성 범위 혹은 프로그램 수량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야 한다.

제13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방송국명, 프로그램 편성 혹은 프로그램 수량 등을 변경 할 경우,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설립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또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처에서 설립한 TV방송국이 방송국 로고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임대 또는 방송 시간대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폐업은 기존의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증 은 국무원의 방송TV 행정부처에서 회수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성급 이상의 인 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30일 이상 연속 방송을 중단한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고 상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향(鄉), 진(鎭)에서 방송기지국을 설립할 시에는 소재지 현(懸)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 TV 행정부처가 심사하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한다. 기관, 군부대, 단체, 기업 등의 사업기관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유선방송기지국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을 공격할 수 없으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설비를 파괴하거나 방송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방송TV 전송 보급망

제17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국가가 규정한 통일된 기준과 계획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전국 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건설하고 개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 정부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송TV 전송 보급망 구축은 기존의 국가 공공통신 등의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방송TV 프로그램 전송의 품질과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

본 조항에서 일컫는 방송TV 전송 보급망이라 함은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중계방송국, 신호변환국 포함), 방송TV위성, 위성송출국, 위성신호변환국, 전파기지국, 감측소 그리고 유선방송TV 전송보급망을 모두 포함한다.

제18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방송TV 전용 주파수 영역의 주파수를 배분하고 전용 주파 수 배분 증명을 발급한다.

제19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 전파기지국, 위성송출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에서 발급한 전용 주파수 배분 증명으로 국가 혹은 성(省), 자 치구, 직할시의 무선통신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심사, 승인 수속 후 무선통신기지국 허가 증을 취득한다.

제20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송출, 중계한다.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주파수 및 주파수 영역을 임대, 양도할 수 없고 이미 승인을 받은 각종 기술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방송TV 송출국, 중계국은 자체 제작프로그램이나 삽입 광고를 임의로 방송할 수 없다.

제22조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 등 방송TV 전송 보급망 건설 공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법적 자격증을 갖춘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한다.

방송TV 전송 보급망의 건설 공정과 사용하는 방송TV 기술 설비는 국가나 업계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방송TV 행정부처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에 합격되어야만 비로소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제23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서 지역적 규모의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을 구축, 관리한다.

지역의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의 기획, 건설 방법은 현금 인민정부나 구청 행정단위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같은 행정구역에는 지역적 규모의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을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 유선 기지국은 당연히 지역의 유선방송 전송 보급망과 네트워킹해야 한다.

제24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25조 방송TV 프로그램 전송의 위성 영역 자원의 관리와 사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위성 전송 방식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 신청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위성방송프로그램 디코더, 부트스트랩로더(프로그램을 읽기 위한 프로그램을 넣는 장치) 또는 기타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방송TV 전송 보급망의 설비를 침범, 강탈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훼손할 수 없다.

제28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방송TV 전용 주파수를 침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송TV 신호의 전송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방해 또는 교란해서도 안 된다.

제29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는 위성전송, 무선중계, 유선라디오, 유선TV 등 각종 방식을 채택하여 농촌지역의 방송TV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제4장 방송프로그램

제3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의 편성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31조 방송 프로그램은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과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제작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방송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중국산 프로그램의 수량을 늘려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금한다.

- (1)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 (2) 국가의 안보, 번영, 이익에 위배되는 내용
- (3) 민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 (4)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 (5)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내용
- (6) 음란하거나 미신,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
- (7)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한 기타 내용

제33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본 조례의 제32조 규정에 따라 방송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방송을 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라디오TV의 뉴스는 공정성과 사실성에 입각해야만 한다.

제35조 드라마제작사 설립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드라마제작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

드라마의 제작과 방송 관리방법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표준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37조 지방의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또는 방송기지국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중계 방송해야만 한다.

향(鄉), 진(鎭)에서 설립한 방송기지국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할 수 없다.

제38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프로그램 예고에 맞추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원래의 예고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조정할 경우 사전에 시청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해외의 영화, 드라마를 방송할 경우에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해외의 기타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 혹은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에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40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해외프로그램의 방송시간과 방송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의 비율은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위성 등의 전송 방식으로 수입, 중계하는 해외프로그램은 반드시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방송하는 광고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가 규정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당연히 공익광고를 방송해야 한다.

제43조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특정프로그램을 바꾸거나 특정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제44조 교육방송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교육과 관련이 없는 영화, 드라마는 방송할 수 없다.

제45조 국제적 규모의 방송프로그램의 교류, 교역을 주관할 때는 국무원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국내 지역적 규모의 방송프로그램의 교류, 교역을 주관할 때는 주최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제46조 저작권을 가진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장 벌칙

제47조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교육방송국, 유선 방송TV 전송보급망, 방송기지국을 설립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쓰인 설비 몰수는 물론 그 투자금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의로 방송TV 송출국, 중계국, 전파기지국, 위성송출국을 설립한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쓰인 설비 몰수는 물론 그 투자금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를 설립하거나 임의로 드라마나 기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쓰인 전문장비, 설비, 프로그램 저장장치를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조례 제32조에서 규정한 금지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은 물론 해외에 공급한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제작, 방송, 해외 공급 정지를 명령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저장장치를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 관리규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 벌칙을 부과한다. 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0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로부터 위법 행위 정지는 물론 경고, 불법소득 몰수,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송국명, 방송국 로고, 프로그램 편성 범위 혹은 프로그램 수량을 바꾸는 행위
- (2) 방송시간대를 임대, 양도하는 행위
- (3) 규정을 위반하고 프로그램을 방송, 중계하는 행위
- (4)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 (5) 방송프로그램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혹은 드라마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하는 행위
- (6)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영화, 드라마, 기타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
- (7) 교육방송국이 본 조례의 제44조에서 금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
- (8)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송프로그램의 교류, 교역을 하는 행위

제5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이나 위법 행위에 쓰인 전문장비, 설비를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허가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주파수, 주파수 영역을 임대, 양도하는 행위, 임의로 방송 송출국, 중계국의 기술계수를 바꾸는 행위
- (2) 방송송출국, 중계국이 임의로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
- (3)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성 전송 방식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 (4)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성 등의 전송 방식으로 해외 방송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 (5)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선방송TV 전송 보급망의 프로그램 방송을 이용하는 행위
- (6)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방송TV 전송 보급망의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 등의 공정을 진행하는 행위

(7) 방송TV 전용 주파수를 침범, 교란하거나 방송TV 신호를 임의로 차단, 교란, 방해하는 행위

제52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안전한 방송에 피해를 입히거나, 방송TV 장비를 파괴한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TV 행정부처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위가 심각하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와 침해를 유발한 사람은 법에 의거해 손해를 배상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3조 방송TV 행정부처와 담당직원이 방송TV 관리 업무 중 직권 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54조 본 조례가 실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교육방송국, 방송송출국, 중계국, 방송프로그램 제작사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의 현금 교육방송국은 현금 방송국과 합병하여 교육방송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 본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제목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제재일	2004-07-19, 2015-08-28
개정일	2020-10-29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은 2004년 6월 15일 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쉬광춘(徐光春)

2004년 7월 19일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8년 10월 31일 국가광전총국 령 제2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서 설정한 증명서류를 취소하는 데 관한 국가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2020년 10월 29일 국가광전총국 령 제7호 <국가광전총국의 1차 부문 규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3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라디오·TV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하여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기구의 설립, 또는 다큐멘터리, 스페셜 프로그램, 종합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등 라디오·TV프로그램의 제작 및 프로그램 판권 매매, 위탁 매매 등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등은 본 규정에 적용된다.

TV방송·광고프로그램의 제작 전문기구의 설립과 경영활동은 《광고법》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관리한다.

제3조 국가라디오TV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은 전국 범위에서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발전계획과 배치, 구도를 제정하며, 전국 라디오·TV프로그램의 경영활동을 관리 감독 및 지도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라디오·TV행정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활동에 대해 관리한다.

제4조 중국 정부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의 설립 또는 라디오·TV프로그램의 제작 및 경영 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라디오·TV프로그램의 제작 및 경

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사회조직과 기업 및 사업기구(중국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독자 기업이나 합자기업, 합작기업 제외)가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라디오·TV프로그램의 제작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장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업무 허가

제6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의 신청은 중국 정부가 제정한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발전계획과 배치, 구도에 부합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국가 법률과 규정에 정한 기구명칭, 조직기구 및 정관을 가지고 있을 것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라디오·TV방송 및 관련 전문 인력과 업무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 (3)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간 법인대표가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해당 기구가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소당한 사실이 없을 것
- (4) 법률과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조건

제7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기구는 심사승인 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한다.

- (1) 신청서
- (2)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 정관
- (3)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신청서
- (4) 주요 임직원(최소 3명)의 라디오·TV 및 관련 전문업무 수행 이력, 실적 혹은 관련 전문 교육 참가 등 자료
- (5) 업무장소 증빙서류
- (6) 공상행정기관의 기업명칭 확인서

제8조 베이징(北京)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구가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광전총국에 신청한다. 기타 기구가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소재 지역 관할 방송행정기구에 신청하고 해당 급별로 심사확인을 거쳐 성(省)급 방송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심사승인을 받는다.

심사승인기관은 완벽하게 구비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하여 승인을 받은 기구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며 해당 신청기구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성급 라디오방송행정부서는 승인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승인 관련 상황을 광전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기록한다.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은 광전총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인쇄하여 제작한다.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9조 승인을 거쳐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또는 업무항목 증설 수속을 진행한다.

제10조 승인을 거쳐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가 다른 지역(성·자치구·직할시)에 독립 법인자격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사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방송행정부서에 별도로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하고 원래 심사승인 기관에 이를 보고, 기록한다. 비(非)독립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별도로 신청 취득할 필요는 없다.

제11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프로그램의 제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로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신청 취득할 필요는 없다.

제3장 TV 드라마 제작허가

제12조 TV드라마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 지방도시급(포함) 이상 TV방송국(라디오 방송국 및 방송영상그룹 포함), 《영화 촬영 및 제작 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제작기구에 의하여 제작된다. 단, 반드시 사전에 TV드라마 제작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3조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은 《을(乙)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과 《갑(甲)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으로 구분되며 광전총국이 통일된 양식으로 인쇄 제작한다.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을종)》은 해당 허가증에 기재된 드라마 프로그램에 한해그 사용이 제한되며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 상황인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적절한 선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갑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제작하는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유효하다.

제14조 《을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은 성급 이상 방송행정부서가 발급한다. 그 가운데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기관과 직속기구는 광전총국에 직접 신청하고, 기타 기구는 소재지 방송행정부서에 신청하여 해당 급별로 심사확인을 거쳐 성급 방송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심사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을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기구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1) 신청서
- (2) 《을종 TV드라마 제작허가증 신청 및 취득 등록표》
- (3) 대본 수권서

- (4) 신청기구가 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주연배우 등 주요 인물 및 합작기구(투자기구) 등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작동의서 사본
- (5) 방송국, 영화제작기구의 자격 증빙서류
- (6) 허가증 보유기구가 발급한 제작비 확인증명서
- (7) 허가증 보유기구 제작비 집행 관련 자료

제16조 성급 방송행정부서는 《을중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광전총국에 보고하고 이를 기록한다.

제17조 TV 드라마 제작기구가 2년 동안 6편 이상의 단막극 또는 3편 이상의 연속극(편당 3회 이상)을 제작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광전총국에 《갑중 TV드라마 제작허가증》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갑중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을 신청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기구는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보고
- (2) 《갑중 TV드라마 제작허가증》 신청서
- (3) 최근 2년 동안 《을중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을 사용하여 제작한 TV 드라마 목록

제19조 《갑중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위법 사실이 없는 경우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20조 중국 국내 방송기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기구가 외국 기구와 합작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전총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제21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는 허가증에 승인된 제작경영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사 및 정치 뉴스와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그램은 오로지 라디오 및 TV방송기구에 한하여 제작할 수 있다. 기타 기구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사 및 정치 뉴스와 이와 관련한 방송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다.

제22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경영 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법규, 관련 정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제작 및 경영은 금지된다.

- (1)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과 주권,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 (3)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에 반하는 내용 또는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내용

- (4) 민족 감정이나 민족 간의 반감을 선동하여 민족 단결을 해치는 내용 또는 민족의 풍속과 관습에 반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나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내용
- (7) 음란물, 도박이나 폭력 또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 (8)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의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과 행정법규,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3조 중대한 혁명과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와 이론 문헌 다큐멘터리 등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광전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배급, 방송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배급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25조 방송기구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및 《TV드라마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제작된 TV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배급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TV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어떠한 방식으로든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및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을 변조하거나 임대, 양도, 매매 또는 위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27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과 《갑종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에 기재된 제작기구 명칭·법정대표자·주소·기업정관, 《을종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에 기재된 제작기구 명칭·드라마 제목·드라마 분량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구는 원래 허가 발급기관에 변경심사를 신청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원래 허가 발급기관에 말소를 신청한다.

제28조 광전총국은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및 《TV 드라마 제작허가증》의 발급 상황을 사회에 공고한다.

제5장 벌칙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TV·라디오방송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30조 본 규정은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영화 및 라디오 TV부의 《영상물제작 경영기구 관리 잠정시행규정》(영화 및 라디오TV부 시행령 제16호)와 《TV드라마 제작 허가증 관리규정》(영화 및 라디오TV부 시행령 제17호), 광전총국의 《라디오TV프로그

램의 제작과 배급 산업의 진입제도 시행에 관한 실시세칙(시행) 》(광발판자〔2001〕147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3.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제목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第41号)
게재일	2004-09-21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은 2004년 6월 15일 국(局)업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04년 10월 2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국장 쉬광춘(徐光春)

2004년 9월 21일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

(2018년 10월 31일 국가광전총국 령 제2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서 설정한 증명서류를 취소하는 데 관한 국가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조 중외문화교류 촉진과 드라마제작 수준을 발전시키고 중외합작 드라마 제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제작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국경 내의 TV 프로그램 제작 기관(이하 ‘중국측’)과 외국 법인 및 자연인(이하 ‘외국측’)이 합작으로 제작한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방송영화TV총국(廣電總局, 이하 광전총국)은 중외합작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협력회사, 수량, 중외연합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소재를 제어할 수 있다.

성(省)급 방송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중외합작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중외합작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에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승인을 거치지 않은 중외합작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활동은 금지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중외합작제작드라마(TV만화 포함) 완성편은 배급 또는 방영할 수 없다.

제5조 중외합작제작드라마는 아래의 방식으로 나뉜다.

- (1) 연합제작, 즉 중국측과 외국측은 공동 투자를 진행하고 스태프를 공동으로 파견하며 이익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를 제작한다.
- (2) 협력제작, 즉 외국측이 자금과 주요 제작진을 파견하여 중국내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야외 신을 촬영하고, 중국측은 인력 및 설비, 기구, 장소를 협조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 (3) 위탁제작, 즉 외국측이 자금을 제공하고, 중국측이 드라마의 국내제작을 위탁 받아 제작한다.

제6조 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 정식 프로젝트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중국측은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甲種))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2) 중국기관은 연합제작한 TV드라마를 광전총국에 신고하는 동시에, 합작으로 찍은 드라마소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 (3) 쌍방은 공동으로 투자하며, 현금으로 직접투자, 노무(勞務), 실물, 광고시간 등의 할인 가격을 투자범위에 포함시킨다.
- (4) 전기(前期) 아이디어 구상, 극본작성 등 메인 창작 부분은 쌍방이 공동 결정한다.
- (5) 드라마 제작 및 기술 스템을 공동으로 파견해 촬영 전 과정에 참여시킨다. 드라마 주요 제작진(시나리오, PD, 감독, 메인 연기자) 중 중국측 인원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6) 드라마의 국내외 판권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보유한다.

제7조 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 정식 프로젝트로 신청할 경우 이하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1) 신청서
- (2) 성(省)급 방송행정부문의 초심 의견(광전총국에서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을 직접 신청하여 받은 중국 제작사는 제외)
- (3) 매회 5000자 이상의 줄거리 요약본 혹은 완성된 대본
- (4) 국내 주요 제작진(편집, PD, 감독, 메인 연기자) 명단 및 이력서
- (5) 제작기획, 국내 촬영 장소 및 세부 일정
- (6) 협력협의MOU
- (7) 외국측 법인의 등기증명(자연인일 경우 이력서 제출), 자산신용증명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측에 공증을 거친 국외 제3자의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중외연합제작 TV 애니메이션을 정식 프로젝트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중국측은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2) 중국측 기관은 연합 제작한 TV드라마에 맞춰, 동시에 합작으로 찍은 드라마 소재 계획을 광전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 (3) 쌍방은 공동으로 투자하며, 현금 직접투자, 노무(勞務), 실물, 광고시간 등의 할인 가격을 투자범위에 포함시킨다.
- (4) 전기(前期) 아이디어 구상, 극본작성 등 주요 창작 부분은 쌍방이 공동 결정한다.
- (5) TV 애니메이션의 국내외 판권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 소유한다.

제9조 중외연합제작 TV 애니메이션을 정식 프로젝트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
- (2) 성(省)급 방송행정부문의 초심 의견(광전총국으로부터 직접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甲種))》 받은 중국 제작사는 제외)
- (3) 매회 500자 이상의 줄거리 요약본 혹은 완성된 대본
- (4) 협력협의MOU

(5) 외국측 법인의 등기증명(자연인일 경우 이력서 제출), 자산신용증명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측에 공증을 거친 국외 제3자의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중외협력제작, 드라마 위탁제작(TV 애니메이션 포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
- (2) 매회 1500자 이상의 줄거리 요약본 혹은 완성된 대본
- (3) 주요 제작진(편집, PD, 감독, 메인 연기자) 명단
- (4) 국내 촬영 장소 및 촬영 계획
- (5) 협력협의MOU
- (6) 허가기관은 외국측에 관련 자산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광전총국으로부터 직접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을 받은 중국 제작사는 외국 제작사와 합작하여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를 제작할 경우 광전총국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중국 제작사가 외국제작사와 협력하여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를 제작할 경우 소재지의 성(省)급 방송국 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쳐 광전총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광전총국은 중외협력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신청을 수리(受理)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중, 중외연합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심사기간은 50일(전문가 평가 30일 포함)이다. 중외협력제작, 위탁제작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심사기간은 20일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드라마는 광전총국의 촬영 허가를 받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광전총국은 불합격 이유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직접 통보해야 한다.

심사기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다시 광전총국에 재심사를 신청한다. 광전총국은 50일(전문가 평가 30일 포함) 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게 보낸다.

제13조 중외연합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제작이 끝난 후 제작사는 제11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성(省)급 이상의 방송사 행정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중외연합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완성편 심사를 신청할 때 이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성(省)급 방송사 행정부문의 초심 의견(광전총국으로부터 직접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 받은 중국 제작사는 제외)
- (2) 합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공동촬영 소재에 대한 계획서(题材规划)의 사본
- (3) 영상, 음악, 타임코드 등 심사요구사항과 부합되는 1/2크기의 비디오테이프 한 세트
- (4) 매회 300자 이상의 줄거리 요약본
- (5) 타이틀 및 마지막 장면의 자막이 견본과 동일해야 함

제15조 광전총국은 중외연합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완성편 신청 수리 후, 50일 내에 행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중 전문가의 평가기간은 30일이 포함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광전총국은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발행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심사기관의 행정허가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다시 광전총국에 재심사를 신청한다. 광전총국은 상기 조항 규정의 심사기한에 따라 재심사하고 행정허가증서를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재심사를 통과하면 광전총국이 발급하는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발행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광전총국의 촬영허가를 받은 대본 또는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발행허가증》을 취득한 완성편은 임의대로 실질적인 변경을 할 수 없다. 대본명, 주요인물, 주요 줄거리와 드라마 방영시간 등을 변경 시, 본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 중국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인류문명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중외합작제작드라마의 제작을 장려한다. 중외합작제작의 장려는 중국만화브랜드 이미지를 굳히는데 의의가 있다.

중외협력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은 아래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1)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내용
- (3) 국가기밀 누설, 국가안전과 국가영예와 이익을 위협하는 내용
- (4)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민족 차별, 민족단결을 방해하며, 민족 풍속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 미신을 홍보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행위, 도박, 폭력, 범죄를 교사(敎唆)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공공도덕과 우수한 민족전통문화에 해를 가하는 내용
- (10)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8조 중국의 특색을 주제로 하는 중외연합제작 TV 애니메이션은 중국산 TV 애니메이션과 같은 지위에서 방영된다.

제19조 중외연합제작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는 중국 표준어(普通话) 버전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발행 수요에 따라 협력측 동의하에, 상응하는 국가, 지역, 소수민족의 언어로 제작될 수 있다.

제20조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TV방송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범죄행위로 간주될 경우, 법적 형사 책임을 진다.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의 법인과 자연인이 합작 제작한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라디오영화TV부의 《중외협력제작드라마(프

로그랩)관리규정》(라디오영화TV부 령(令)15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제목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的补充规定
제재일	2008-01-14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의 보충 규정

(2008년 1월 14일 국가광전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령 제57호로 공표,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외 영상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외 서비스업체와 중국 방송 프로그램 제작기관의 드라마 공동제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국가광전총국 제41호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2008년 2월 14일부터 타이완지역 및 외국 법인, 자연인과의 드라마 합작제작 프로젝트 신청 시 시놉시스의 글자수는 1500자 이상이어야 한다.
2. 타이완지역 및 외국 법인, 자연인과의 드라마 합작제작의 기타 규정은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 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제목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제재일	2004-09-23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은 2004년 6월 15일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쉬광춘(徐光春)

2004년 9월 23일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해외 TV프로그램 수입과 방송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외 라디오TV 방송교류를 촉진하며 정신문화생활적인 면에서 시청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라디오TV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해외TV프로그램의 수입과 방송 관련 사안에 적용된다. 해외TV프로그램이란 함은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해외 영화/드라마(TV 애니메이션) (이하 ‘해외 영화드라마’)와 교육/과학/문화 등 각종 TV프로그램(이하 ‘기타 해외TV프로그램’)이다.
시사적 성격의 뉴스프로그램은 수입하지 않는다.

제3조 국가광전총국은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수입과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해외 기타 TV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및 허가한다.
성급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광전총국의 위탁으로 관할지역 내의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초반 심사와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에 대해 심의허가 및 감독한다.
지방(시)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관할지역 내의 해외TV프로그램에 대해 감독한다.

제4조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나 그 위탁을 받지 못한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가 심의 허가한 해외TV프로그램은 수입·방송할 수 없다.

제5조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과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 신청 업무는 국가광전총국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6조 국가광전총국은 수입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의 총량, 테마, 제작국가 등에 대해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과 위성 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 TV프로그램 수입은 국가광전총국 전체계획과 본 규정 제15조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과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TV프로그램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성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에 수입허가를 신청한다.

제9조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수입신청 시, 제출 자료

- (1)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수입신청서(引进境外影视剧申请表)》(신청서 양식은 국가광전총국이 제정하고, 성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동 양식을 사용)
- (2) 수입계약서(중문본과 외국어본)
- (3) 판권증명(중문본과 외국어본)
- (4) 화면, 소리, 타임코드가 모두 완전한 VHS테이프 1개
- (5) 회당 300자 이상의 시나리오 시놉시스
- (6) 심사용 테이프 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크레딧과 엔딩 크레딧(중문본과 외국어본)

제10조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신청 시, 제출 자료

- (1)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신청서(引进其他境外电视节目申请表)》(신청서 양식은 국가광전총국이 제정하고, 성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동 양식을 사용)
- (2) 수입계약서(중문본과 외국어본)
- (3) 판권증명

제11조 성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과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신청을 수리한 후, 행정 허가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상세하고 분명한 초심 의견을 첨가하여 국가광전총국에 심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광전총국은 신청서를 수리한 후, 행정 허가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해당 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허가’ 혹은 ‘불허’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중, 해외 영화드라마 프로그램 수입심의는 따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그룹을 조직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기간은 30일이다. 수입허가의 경우, 《드라마(TV애니메이션)배급허가증(电视剧(电视动画)发行许可证)》을 발급하거나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발송해야 한다. 수입 불허의 경우, 수입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2조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동의를 받은 후 수입업체는 국가광전총국의 수입허가로 《위성전송수신 TV프로그램 허가증(接收卫星传送的电视节目许可证)》 등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13조 지방(시)급 방송국, 성급 방송국이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성급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에 심의허가를 신청한다. 중요하거나 민감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 경우, 성급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본 신청 건에 대해 다시 국가광전총국의 심의허가를 신청한다.

제14조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 시 제출 자료는

- (1) 《기타 해외TV프로그램 수입 신청표》(신청서 양식은 국가광전총국이 제정하고, 지

방(시)급 이상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그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

- (2)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수입업체 자체 심의의견
- (3) 수입계약서(중문본과 외국어본)
- (4) 판권설명

성급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신청 수리 후, 행정 허가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관련 승인문서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 심의허가 신청기관에 서면통지하고 불허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해외TV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방향과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강한 내용과 우수한 제작수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해외TV프로그램 가운데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은

- (1) 중국헌법에 기록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 (2) 중국의 국가통일과 주권 그리고 영토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 (3)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명예를 훼손하고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중국 각 민족 간의 갈등과 민족적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방해하고, 중국민족의 미풍양속과 생활습관을 해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전파하는 내용
- (6) 중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외설,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중국사회의 공중도덕을 파괴하고, 중국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기타 중국 법률, 법규, 규장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제16조 성급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매 분기 첫째 주에 관할지역 내의 전 분기 기타 해외 TV프로그램 수입상황을 국가광전총국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심의허가를 거쳐 수입된 기타 해외TV프로그램은 반드시 재구성과 재편집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입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고정시간에 방송할 수 없다. 프로그램 방송 중 해외채널 로고나 관련 문자가 TV화면에 등장해서는 안 되고, 해외미디어채널을 선전하는 광고 등의 내용이 나와서도 안 된다.

제18조 방송국은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방송 시, 오프닝에 배급허가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각 TV채널이 1일 중 방송할 수 있는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방송시간은 해당채널 당일 영화드라마 방송 총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기타 해외TV프로그램의 1일 방송시간은 해당채널 당일 총 방송시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광전총국의 허가 없이는 19:00—22:00까지의 황금시간대에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제19조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라디오TV방송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행위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3일부터 실행한다. 라디오영화TV부 (广播电影电视部)의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라디오영화TV부 령 제10호)은 본 규정 실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6.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관리방법

제목	广播电视无线传输覆盖网管理办法
제재일	2004-11-15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관리방법

(2004년 11월 15일 국가광전총국령 제45호 공포)

(2021년 3월 23일 <국가광전총국 2차 부문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Overlay)⁵⁾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라디오·TV 방송 질서를 유지하고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관리조례>와 <방송시설 보호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이하 약칭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의 기획, 구축, 사용과 관리 등 활동에 적용한다.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은 방송 송신국, 중계국, 중계방송국, 중계기지국, 극초단파 중계국, 프로그램 전달국, 방송 위성, 위성지구국, 관측소 등 부분을 포함한다.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란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 신호, 비상 라디오 정보를 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광전총국(이하 약칭 ‘광전총국’)은 전국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방송 발전 수요에 따라 전국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기획의 제정을 책임지고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를 심사 승인하며 방송 전용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이하 약칭 ‘방송 주파수’)를 지정 및 분배하고 전국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에 대해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본 행정지역 내 방송 전송 오버레이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의 공사 부지 선택, 설계, 시공, 설치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시공과 사용하는 무선 방송 송신 설비는 국가표준, 업계 표준과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 라디오 방송 주파수 사용, 무선 방송 송신 설비 사

5) 오버레이(Overlay) 전송 방식: 전화국에서 각 가정까지 위성방송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하는 방식

용 및 무선 방송 시설 이전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방송 행정부처는 행정 허가법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라 유관 허가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증은 광전총국이 일괄 인쇄 제작하고 위조, 복제, 수정, 대여, 양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7조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에서 법률, 행정법규, 규장 규정의 금지 내용을 전송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 어떤 업체 혹은 개인도 방송 주파수를 무단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을 이용하여 위법 범죄 활동을 해서도 아니 된다.

제2장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

제8조 지상 무선, 극초단파, 위성 등 방식을 이용하여 방송 전송 오버레이 업무를 하는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수령해야 한다.

허가증 유효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계속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 만료 6개월 전부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아래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신청할 수 있다.

- (1) 광전총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한 라디오·TV 방송기관
- (2)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의 승인을 거쳐 설립한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기관(이하 약칭 ‘전송 오버레이기관’)
- (3) 무선 방송 전송 오버레이 기능을 보유한 국유 혹은 국유 홀딩스기관

제10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신청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추거나 혹은 독립된 법인자격은 없지만 방송 행정부처에 직속된 전송 오버레이기관
- (2)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의 총체적 계획과 업무 수요에 부합하는 경우
- (3) 방송 안전 전송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설비, 기술, 인력과 관련 관리제도
- (4) 합법적인 방송 프로그램 신호 출처가 있는 경우

제11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신청할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 기관의 기본 현황
- (2)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 신청서
- (3) 사용 예정인 전송 오버레이 방식, 범위, 서비스 구역과 프로그램 내용
- (4) 기술방안과 기술안전 보장 매커니즘
- (5) 합법적인 방송 프로그램 신호 출처, 전송 방식, 전송 범위의 설명
- (6)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위성 전송 업무를 신청 및 운영할 경우 아래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7) 합법적인 방송 프로그램 출처, 전송 방식, 전송 범위의 설명
- (8) 방송 전송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조치와 비상 대책
- (9) 위성의 궤도 위치, 중계기 번호, 편극 방식, 부호율, 주파수 및 방송망 가입 테스트 현황
- (10) 안전한 방송, 운영 유지제도
- (11) 전문 기술인력과 설비 현황

제12조 광전총국은 성과 성 간의 방송 프로그램 무선 전송 업무 심사승인을 담당한다. 신청 업체는 해당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신청을 하고 등급별 심사를 거쳐 광전총국에 심사승인 신청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수령한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 방송 프로그램 무선 전송업무를 심사승인을 담당한다. 신청 업체는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보 방송 행정부처에 신청하고 등급별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심사승인 신청하고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수령한다.

제14조 방송 프로그램 위성 전송 업무를 진행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광전총국에 심사승인 신청한 후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수령한다.

제15조 방송 전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전총국은 방송 프로그램 전송에 사용하는 위성 중계기 전송 매개변수의 지정을 담당한다.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도 위성 중계기를 무단으로 임대 혹은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전총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중계기의 교체 혹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은 전송 오버레이 업무의 실시 방식, 주체, 전송 오버레이 프로그램 내용, 전송 오버레이 범위, 기술 수단, 업무 주파수 대역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허가증 소지 업체는 허가증에 기재한 사항에 따라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제3장 방송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 주파수의 사용

제18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소지한 업체가 극초단파, 위성 비방송 주파수 사용 등을 신청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려면 국가 무선 전신 관리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 전신 관리기관에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소지한 업체가 방송 주파수 사용을 신청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방송 주파수 신청서
- (2) 사용 신청하는 방송 주파수가 방송 오버레이망 기획 개정 및 조정과 관련될 경우 기술 평가 보고서와 관련 부처 혹은 업체와의 조율 문서를 제공
- (3) 방송 관련 행정부처의 심사승인 의견서

제20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소지한 업체가 아래 업무의 방송 주파수

사용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신청하여 등급별 심사승인을 거쳐 광전총국에 심사승인을 신청한 후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증(갑류)>을 수취해야 한다.

- (1) 중, 단파 라디오
- (2) FM 라디오 방송(송신기 규격 공률 50와트(불포함) 이상 송신 설비 사용)
- (3) FM 동시 라디오 방송
- (4) 지상 디지털 음성 라디오 방송
- (5) 지상 디지털 TV 방송

허가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업무를 진행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한다.

제21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무선)>을 소지한 업체가 저공률 FM 송신 설비(송신기 표준 공률 50와트(포함)이하)를 사용하여 이미 개설을 승인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계, 비상 라디오 정보 서비스 진행의 방송 주파수 사용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신청을 하고 등급별 심사승인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심사승인을 신청한 후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류)>를 수령해야 한다.

허가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허가를 결정한 후 30일 내에 허가증을 발급 현황을 광전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업무를 진행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가 무선전신국을 설치, 사용하려면 국가 무선전신 관리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무선전신국 허가증을 수속해야 한다.

제4장 무선 방송 송신 설비의 구매

제23조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가 무선 방송 송신 설비를 구매할 경우 해당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증>을 발급한 방송 행정부처에 <무선 방송 송신 설비 구매 증명>(이하 약칭 <구매 증명>)을 신청 수령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구매 증명> 신청서
- (2) <방송 주파수 사용 허가증> 복사본
- (3) 관련 방송 행정부처 심사 의견

제24조 무선 전송 오버레이망에서 사용하는 송신 장비는 국가 무선전신 송신 설비 모델 허가증과 방송 장비 기자재 방송망 가입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생산업체는 엄격히 <구매 증명>에 기재한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송신 장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장비에 <구매 증명> 번호를 붙이고 <구매 증명> 영수증을 <구매 증명>을 발급한 방송 행정부처로 발송해야 한다. 구매 증명은 기업이 무선 방송 송신 장비를 생산하는 증

빙서류로 기록 보관한다.

제26조 무선 방송 송신 장비를 설치한 후 동 송신 장비의 설치업체는 20일 내에 <구매 증명>을 발급한 방송 행정부처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방송 행정부처 혹은 그가 의뢰한 기관이 검사를 책임진다. 검사 합격 후 송신 장비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무선 방송 시설의 이전과 보호

제27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모두 방송 시설 보호 의무가 있다.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관할구의 방송 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조치를 취해 방송 시설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28조 대형 공사 프로젝트 혹은 현지 인민정부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선 방송 시설일 경우 도시 계획 행정부처가 관련 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심사승인 하기 전 사전에 광전총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송 시설 이전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도농 건설 총체적 계획과 국가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2) 안전한 방송 기술 조건과 인프라에 부합해야 한다.
- (3) 방송 전송 오버레이 업무 수요에 부합하고 각종 교란원(源)을 피해야 한다.
- (4) 주변 환경이 국가 환경 관련 전자파 방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5) 방송 시설의 각종 효능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 (6) 제29조 무선 방송 시설 이전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7) 무선 방송 시설 설치 승인 문서와 이전 신청 이유
- (8) 도시계획부처의 의견
- (9)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 문건
- (10) 방송 전송 오버레이 기술평가 보고서

제30조 신청업체는 소재지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신청을 제출하고 등급별 심사승인을 거쳐 광전총국에 심사승인을 신청한다.

제31조 이전 업무는 선이전 후철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방송 시설 이전을 초래한 업체가 부담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 본 방법을 위반할 경우 <방송 관리 조례>, <방송 시설 보호 조례>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7장 부칙

제33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광전총국의 <방송 무선전신 관리 일시 방법> (광발기자[2001]817호)을 동시에 폐지한다.

7. 라디오·TV 안전 방송 관리 규정

제목	广播电视安全播出管理规定
제재일	2009-12-16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라디오·TV 안전 방송 관리 규정

(2009년 12월 16일 국가광전총국령 제62호 공포)

(2016년 5월 4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개정)

(2021년 3월 23일 <국가광전총국의 2차 부문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관리를 강화하고 라디오·TV 신호의 안전 품질 방송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방송 청취, 시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관리 조례>, <방송 시설 보호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시스템 구축, 기술 유지, 운행 관리, 모니터링 감독관리, 운영 지시, 응급 대응 및 기타 관련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광전총국은 전국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업무는 연속성, 고품질,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제5조 모든 조직, 개인은 방송 신호를 교란하고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은 종류별 등급별 보장제도를 실행한다. 라디오·TV 방송, 종합편성, 전송, 배급, 오버레이 등 업무를 하는 업체(이하 약칭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본 규정과 국가 광전총국의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에 관한 유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다양한 조치를 세워 라디오·TV의 안전 방송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본 업체의 방송 안정 방송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유관 규정에 따라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업무 중

성적이 뛰어난 조직, 개인에 대해 표창, 장려한다.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 방송 업무 상벌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2장 기본 보장

제9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안전 방송 기술 유지와 운영 관리 기관을 세우고 업무 부서와 실무 담당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타 안전 방송에 관련된 부서와 인원을 안전 방송 관리에 포함시켜 안전 방송 책임제를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안전 방송 인원 관리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프로그램 방송 혹은 기술시스템 운영 유지에 참여하는 인원은 해당 전문 기능을 갖추고 실무 교육과 평가에 통과해야 한다.
- (2) 새로운 시스템과 장비의 투입 사용 전 관련 담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3) 특수 작업인력은 국가광전총국의 규정 혹은 기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1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기술 시스템 배치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국가, 업계 관련 기술 규범과 국가광전총국이 규정한 등급별 배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2) 방송 시스템의 특징에 맞게 상응하는 교란, 삽입 방송, 차단, 왜곡, 공격 등 악성 파괴를 방지하는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음성, 이미지, 비트 스트림 녹화 혹은 기술 모니터링 정보 저장 등 방식으로 해당 업체의 방송, 전송, 송신하는 프로그램 신호의 품질과 효과, 및 관련 장비 운행 상태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방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보 방송 행정부처의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기록 정보는 1주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형 프로그램 기록 정보는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4) 법에 의거하여 방송 장비 기자재 방송망 가입 인정을 취득한 장비,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장비 업그레이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장비 운영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 (5) 성급 이상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위성 지구국은 완전하고 유효한 재배복구시스템을 배치하고 특수 상황에서의 주요 프로그램의 안전 방송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기술 유지, 운영 관리 등 안전 방송 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제13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기술시스템 운영 유지, 업그레이드 개조와 안전 예방 등 안전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관리, 기술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제3장 일상 관리

제15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방송 프로그램 소스 관리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은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 방송과 편성, 프로그램 인수인계 등 과정은 재점검과 재심사, 재방송과 재심사 제도를 이행하면서 프로그램 방송 오류, 방송 사고를 방지하고 프로그램 제작 기술 품질이 국가,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의 생방송 프로그램은 필요한 시간 지연 수단과 비상 대책을 갖추고 프로그램에 대한 감청감시를 강화하고 생방송 참여 인원이 생방송 관리제도와 기술 장비 운영 규범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 (3) 방송 전송, 배급, 오버레이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유관 규정에 따라 중계 필수 방송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전송, 분배해야 한다.
- (4)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접속, 전송,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 (5) 방송 프로그램 중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대책을 세워 취소하거나 또는 방송, 집적, 전송, 분배, 오버레이를 중단하고 유관 기록을 보관하고 방송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신규, 증축 혹은 업그레이드 개조하는 방송 기술 시스템의 공정 프로젝트에 대해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실시 전에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거나 또는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기술방안에 대해 안전 방송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프로젝트 완공 후 최종 검사를 하고 방송 행정부처에 검사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신규 방송 기술 시스템은 정식 사용 전의 테스트 운영 시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신규 라디오·TV 방송, 집적, 전송, 분배, 송신 시스템이 테스트 방송을 해야 할 경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 방송 보장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다.

테스트 방송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테스트 방송기간의 안전 방송 업무에 대한 평가는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평가에 포함시키지만 비(非)책임성 방송 중단 사고는 제외한다.

제19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기술 시스템 운행 관리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승인한 프로그램, 전송방식, 오버레이 범위 및 관련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방송, 집적, 전송, 분배, 송신하는 방송 신호는 승인 없이 서비스를 무단으로 중단 혹은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2) 방송 품질, 기술 운행 지표가 국가, 업계 유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3) 완전한 안전 방송 보장 방안과 방송, 운행 업무 절차를 제정하고 안전 방송 보장 방안은 방송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 (4) 주요 방송 과정의 신호에 대해 감청 감시하고 장비 운영 상태에 대해 감시 제어하면서 방송 장애를 즉시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 (5) 방송의 중점 시간대와 중요한 프로그램 방송 기간은 인원, 시설 등을 보장하고 중점

- 구역, 중점 부위의 방지와 비상 대응 준비를 잘해야 한다.
- (6) 정기적으로 안전 방송 리스크, 보장 능력 자체 검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면서 안전 불안 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20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기술 시스템 유지 관리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국가, 업계 유관 표준을 준수하고 유지 관리 제도를 정착시킨다.
- (2) 안전 방송 책임업체 간, 방송 과정 간의 유지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3) 안전 방송 책임업체가 기타 업체에 의뢰하여 기술 유지 혹은 방송 운행 업무를 담당할 경우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와 의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1조 방송 기술 시스템의 점검, 시공 관리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기술 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례 점검을 진행하고 정례 점검에서 방송 프로그램 방송(중계)를 중단해야 할 경우 점검 계획을 국가광전총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2) 정례 점검 시간 외에 프로그램 방송(중계)를 일시 중단하고 점검, 시공, 훈련 등 작업을 할 경우 국가광전총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승인 혹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3) 방송 시스템, 장비, 회로 및 그 부속 시설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는 공사 방안과 비상 대책을 제정하고 시공업체와 안전 협의를 체결하고 안전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22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방송, 집적, 전송, 배급, 오버레이 및 관련 활동 중 안전 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네트워크 안전 관련 법률, 법규와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네트워크 안전 책임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 방송 관련 네트워크와 정부 시스템에 대해 리스크 평가와 등급 보호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23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사고 관리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1)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사고는 책임 사고, 기술 사고, 기타 사고 3가지로 분류하고 사고 등급은 특대(급), 중대(2급), 일반(3급)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 (2)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특대, 중대 사고 발생 후 즉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3) 특대 안전 방송 사고는 국가광전총국이 팀을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하고 중대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팀을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한다.
- (4) 안전 방송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상급 주무부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정기적으로 방송 행정부처에 안전 방송 통계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중요 보증기간 관리

제25조 전국 안전 방송 중요 보증기간은 국가광전총국이 규정하고 지방의 안전 방송 중요 보증기간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규정한다.

중요 보증기간 확정 후 방송 행정부처는 즉시 안정 방송 책임업체에 고지해야 한다.

제26조 중요 보증기간 전에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중요 보증기간 대응책을 제정하고 동원 배치, 안전 방지와 기술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27조 중요 보증기간에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중요 보증기간 대응책의 조치, 기준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당직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준비를 잘해야 한다. 중요한 프로그램과 중점 시간대는 주관 수장이 현장에서 지휘해야 한다.

방송 행정부처는 안전 방송 책임업체의 중요 보증기간의 각종 업무에 대해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28조 중요 보증기간에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정례 점검 혹은 안전 방송에 영향을 주는 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 제거 등 특수 상황으로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중계)를 중단할 수 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중요 보증기간에 정례 점검 시간대를 취소할 경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은 사전에 프로그램 배치와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프로그램 방송 사고를 막아야 한다.

제5장 비상 대응 관리

제30조 방송 행정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돌발 사태의 비상 대응 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자사의 안전 방송 돌발 사태의 비상 대응 업무를 책임지고 방송 행정 부처의 통합 관리에 따른다.

제31조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돌발 사태는 파괴 교란 사건, 네트워크 안전 사건, 자연재해 사건, 기술안전 사건, 기타 사건 등 5가지로 분류한다. 돌발사태 등급은 특대(1급), 중대(2급), 대형(3급), 일반(4급)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32조 안전 방송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아래 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방송, 집적, 전송, 분배, 송신, 수신하는 방송 프로그램 신호가 방해받거나 혹은 이상 신호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이상 신호 전파를 차단하고 가능한 상황에서 정산 신호로 교체해야 한다.

(2) 무선 신호가 방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자체 검사를 진행하여 자체 장비 고장, 사용자 조작 오류 등 내부 원인으로 인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 자체 검사 후 여전히 방해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무선관리기관에 신고하고 방

해 작업 제거를 신청한다.

- (3) 네트워크 안전 사고 발생 시, 유관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유해 정보 전파를 차단하고 즉시 정상 방송 질서를 회복하고 소재지 방송 행정부처와 네트워크 안전 유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4) 생명 안전 혹은 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생명 안전, 시설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워 최대한 빨리 방송을 회복해야 한다.
- (5) 프로그램 신호 방송 회복 시, 우선적으로 메인 주파수와 메인 채널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장하고 ‘중앙 방송 우선, 지방 방송 차후, 그리고 공익 우선, 유료 차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3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안전 방송 돌발사태의 종류별, 등급별 처리 원칙에 따라 비상 대책안을 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대책안을 방송 행정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비상 대응 자원 비축과 유지 업그레이드에 사용해야 하고 비상 대응 자원 비축 목록, 유지 업그레이드 상황은 방송 행정부처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긴급 상태에서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방송 행정부처의 비상 대응 자원에 대한 통합 조율에 복종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의 안전 방송을 보장해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5조 방송 행정부처는 아래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 (1) 유지 규정 및 안전 방송 관련 기술 표준, 관리 규범을 제정 및 실행한다.
- (2) 본 행정구역 내 안전 방송 상황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고 발견한 안전 방송 사고 불안요소에 대해 안전 방송 책임업체를 독촉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3) 안전 방송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4)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정착시키고 본 행정 구역 내 프로그램 방송, 전송, 오버레이 현황을 파악하고 방송 이상 상태를 발견하고 빨리 통보한다.
- (5) 지휘배치 매커니즘을 정착시키고 안전 방송 책임업체와 관련 부처의 조율과 협력을 보장한다.
- (6) 안전 방송 평가를 구성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표창 또는 비평을 한다.

제36조 방송 행정부처가 설립한 방송 모니터링 감독관리, 지휘배치 기관은 방송 행정부처의 요구에 따라 방송 신호 모니터링, 안전 방송 보장 체계 구축, 안전 방송 리스크 평가, 사건사고 신고 및 접수, 조사와 검사 등 안전 방송 일상 관리 및 비상 지휘배치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37조 방송 모니터링 감독관리, 지휘배치 기관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당직을 서게 하고 안전 방송 관련 돌발 사태를 파악하고 즉시 방송 행정부처에 보고한다. 기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감독 누락, 감독 오류를 막는다. 지휘배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빠르

고 정확한 조기경보와 배치 지령 발포를 보장한다.

제38조 안전 방송 책임업체는 방송 행정부처 규정에 따라 방송 모니터링 감독관리, 지휘배치 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프로그램 신호, 잠금 해제 권한 및 관련 정보를 여실히 무상 제공하고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는 기계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방송 행정부처는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신고 전화, 우편함 혹은 전자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그 어떤 조직, 개인도 안전 방송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한이 있다.

방송 행정부처는 안전 방송 관련 신고를 수리하면 기록을 해야 한다. 조사 확인을 거쳐 유관 안전 방송 책임업체에 통지하고 시정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40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안전 방송 특대, 중대 책임 사고가 발생하여 나쁜 영향을 미친 경우
- (2) 방송 기술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 (3) 특대, 중대 안전 방송 사고, 사건에 대해 은폐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경고를 주고 <안전 방송 시정 통지서>를 하달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의를 주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1) 기관과 인원 배치, 기술 시스템 배치, 관리제도, 운행 절차, 비상 대책 등이 유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방송 품질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2) 기술 시스템 대행 업체 관리가 미흡하여 중대 안전 방송 사고를 유발한 경우
- (3) 안전 방송 책임업체 간의 책임 경계선이 불명확하여 장애 제거를 즉시 하지 못한 경우
- (4) 프로그램 방송, 전송 품질이 좋지 않아 시청자의 방송 프로그램 정상 수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방송 전송, 배급, 오버레이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 방송 책임업체가 유관 규정에 따라 필수 중계 방송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전송, 분배하지 않을 경우
- (6) 규정에 따라 방송 행정부처가 설립한 모니터링 감독관리, 지휘배치 기관에 완전한 프로그램 신호, 잠금 해제 권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모니터링 감독관리, 지휘배치 활동을 교란, 방해하는 경우
- (7) 방송 행정부처의 감독 검사, 사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안전 방송 일괄 조율과 배치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 (8) 규정에 따라 자사가 방송, 집적, 전송, 분배, 송신하는 프로그램 신호의 품질과 효과를

기록, 보관하지 않은 경우

(9) 규정에 따라 방송 행정부처에 안전 보장 방안 혹은 비상 대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42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및 방송 모니터링 감독관리, 지휘배치 기관이 규정을 위반하면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방송 관리 조례>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 방송 행정부처 및 그의 스텝이 라디오·TV의 안전 방송 관리 업무 중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8장 부칙

제44조 본 규정의 아래 용어 함의:

- (1) 안전 방송이란 방송 프로그램 방송, 집적, 전송, 분배 과정에서의 콘텐츠 완전, 신호 안전, 네트워크 안전과 기술 안전을 말한다. 이중, 콘텐츠 완전이란 안전 방송 책임업체가 예정된 방송 콘텐츠를 완전 및 정확하게 방송, 집적, 전송,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호 안전이란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는 전기, 빛 신호가 끊기지 않는 고궤리티를 말한다. 네트워크 안전이란 방송 관련 업무 네트워크가 안정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전송하는 방송 업무 데이터가 완전하고 비밀을 유지하고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술 안전이란 라디오·TV 방송, 집적, 전송, 배급, 오버레이 및 관련 활동 참여 인원의 생명 안전과 방송 시설 안전을 말한다.
- (2) 기술 시스템이란 라디오·TV의 안전 방송과 관련된 시스템, 장비, 회로 및 그의 부속 시설의 통칭이다. 포함 내용: 라디오·TV 방송, 집적, 전송, 분배, 송신 시스템 및 관련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 관련 배전 시스템, 관련 부속 시설(기계실 및 기계실 내부 에어컨, 소방, 피뢰 접지, 광 케이블 소재 전봇대, 파이프, 안테나 소재 MAST 등 포함)
- (3) 긴급 상태란 특대, 중대 안전 방송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즉시 비상 대응책을 가동하여 조속히 방송 복구 혹은 안전 방송에 영향을 주는 외부 위협을 제거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45조 본 규정은 201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6월 17일 원(原) 광전총국이 발포한 <유선 TV 시스템 기술 유지 운행 관리 잠정 규정>, 2002년 4월 2일 국가광전총국이 발포한 <유선 방송 전송 오버레이망 안전 관리 방법>과 2002년 8월 23일 국가 광전총국이 발포한 <유선 방송 전송 오버레이망 케이블의 안전 방지 관리 방법>을 동시에 폐지한다.

8.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관리 임시 시행 규정

제목	有线广播电视运营服务管理暂行规定
제재일	2011-12-02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관리 임시 시행 규정

(2011년 12월 2일 국가광전총국령 제67호 공포)

(2021년 3월 23일 <국가광전총국의 2차 부문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관리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유선 방송 전송 오버레이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업무는 고객 중심, 안전 원활, 공평 합리, 공익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과학 신중, 안전 신뢰, 효율 향상 원칙에 따라 유선 TV와 차세대 정보 통신기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스마트화 방송 서비스와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유선 방송 네트워크가 국가 중요 정보 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자원 플랫폼이 되게 해야 한다.

제4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 원칙을 따르고 정부 감독관리, 업계 자율, 사회 감독이 상호 결부된 메커니즘을 실행하면서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고객 커버율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5조 국가광전총국은 전국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의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유관 규정에 따라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업무 중 두드러진 기여를 한 조직, 개인에 대해 장려한다.

제2장 서비스 기준

제7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회에 그의 업무 종류, 서비스 범위, 서비스 시한, 비용 표준을 공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 품질 지표와 서비스 품질 지표는 국가와 업계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8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회에 전송하는 기본 시청 채널 목록을 공포해야 한다.

기본 시청 채널 중 국가광전총국이 중계를 요구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중계를 요구하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현지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 아래 상황 외에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전송하는 기본 시청 채널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광전총국이 법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
- (2) 신호원(源)이 전송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이미 방송 중단이 된 경우
- (3) 프로그램 공급업체와의 계약 유효기간 만기 혹은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위약 책임을 지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 규장 규정의 기타 상황

기본 시청 채널 전송을 중지할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관련 고객에게 공고를 하고 아울러 대책을 세워 기본 시청 채널 수량을 보장해야 한다. 상기 조항 제2항 규정 상황일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당일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특정 업무 경영을 중단할 경우 최소한 근무일 15일 전에 유관 고객에게 공고 통지하고 고객 A/S업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서면 혹은 기타 형식으로 고객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서식 계약조항은 공평하고 합리적, 정확하고 전면적, 간단명료하고 적당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공급업체의 책임 면제 혹은 제한 조항에 유의하라고 일깨워줘야 한다.

제12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네트워크 규모와 고객 분포 현황에 따라 서비스 거점을 설치하고 서비스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고객의 유관 사항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특빈층 등 고객에 대해서는 비용 감면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13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에는 설치, 서비스 개통, 이전, 변경, 일시 중단, 회복, 중지(해지), 고장 수리, 비용 납부, 상담, 신고와 공고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고객이 서비스 개통 시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의 기능, 사용 범위, 취소 방식, 비용 기준 및 납부 방법, 서비스 보장, 고객 서비스 전화 등 내용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제15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고객의 설치 혹은 업무 개통 신청 접수 후, 도시지역의 고객에게 영업일 2일 내에 답변을 주고 농촌 혹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고객에게는 영업일 5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원인을 고지해야 한다.
- 제16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통합 A/S 전화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7x24시간 고장 수리 신청, 문의와 신고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중 고장 수리 신청은 7x24시간 상담원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17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고객의 고장 수리 신청을 접수한 후 방문 수리해야 할 경우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에 고객과 방문 수리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 제18조 도시 고객의 네트워크와 장비 고장은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신고 접수일 익일부터 혹은 고객이 동의한 방문 수리 시간부터 24시간 내에 복구해야 하고 중대 고장은 48시간 내에 복구해야 한다. 농촌 혹은 교통 불편 지역 고객의 고장은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접수일 익일부터 또는 고객이 동의한 방문 수리 시간부터 72시간 내에 복구해야 한다.
- 제19조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해 약속한 시간에 방문 수리 혹은 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즉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복구 시한은 불가항력 원인이 사라진 후부터 계산한다.
- 제20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파견한 방문 수리 기사는 예약 시간을 준수하고 직원 카드를 보여주고 자사 로고를 착용하고 고객의 시설을 아껴야 한다. 비용을 수취할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 제21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디지털 방송 채널 순번을 정정, 조정하거나 혹은 시스템 장비 및 회로 계획 점검, 장비 이전, 공사 접속,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예측 가능 원인으로 인해 고객의 시청 혹은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72시간 전에 관련 고객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동시에 소재지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원인 제거 후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즉시 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22조 불가항력, 중대 네트워크 고장 혹은 돌발 사태로 인해 고객의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관련 고객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기타 예측 불가 원인으로 인해 고객 사용에 영향을 줄 경우 공고를 할 수 없지만 고객이 문의하면 원인을 고

지해야 한다.

제23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국가 유관 가격 관리 규정을 집행하고 정찰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요금 표준, 요금 계산 방식 등 중요 사항을 조절해야 할 경우 고객에게 공고해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고객의 요금 납부와 조회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1년 내의 요금 납부 기록 조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고객이 기한 내에 약정에 따른 유선 방송 기본 시청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해당 업무 서비스를 일시 중단 혹은 중지할 수 있지만 24시간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에 중앙1TV방송국(CCTV1)의 프로그램 신호 전송 서비스를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고객이 미납 요금을 전액 추가 납부했을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즉시 서비스를 회복해야 하고 늦어도 24시간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고객 신고처리제도를 구축하고 수리, 조사, 처리, 피드백, 평가, 보고, 개선, 기록 보관 등 과정을 포함한 완전한 작업 절차를 형성해야 한다. 고객의 서비스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영업일 10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방송 행정부처 혹은 그가 설립한 신고 처리기관이 전달한 고객의 신고를 접수한 후 요구하는 기한 내에 관련 신고 처리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예정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없을 경우 유관 방송 행정부처 혹은 신고처리기관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26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기타 업체에 의뢰하여 고객에게 설치, 고장 수리, 요금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기술력, 서비스와 관리 능력 보유, 공상관리기관에 등록, 불량 기록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정기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일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탁업체가 그의 서비스 행위로 인해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고객 정보 안전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여실히 등록하고 법에 의거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객의 허가 없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종사자에 대해 서비스 규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29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방송 행정부처의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와 정확을 여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의 요구에 따라 자사 서비스 품질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사회에 자사의 서비스 품질 현황을 공포해야 한다.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매년 자체 검사 현황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를 통해 국가광전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돌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방송 행정부처의 지휘배치 및 유선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조율을 수용해야 한다.

제32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여건을 만들어 유선 TV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통합, 운영과 관리하면서 그의 고객에게 본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3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업무 계획을 제정하여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품질 평가 활동을 진행하고 즉시 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향상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3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부정기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랜덤 검사를 진행하고 사회에 랜덤 검사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실제 상황에 따라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신고처리 기관을 설립하고 고객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잘 해결해야 하며 고객의 신고 현황을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품질의 평가 지표와 내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36조 방송 행정부처 혹은 신고처리기관은 고객의 신고를 접수한 후 기록을 하고 즉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고객이 의견 피드백을 원할 경우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7조 방송 행정부처의 관계자는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품질을 감독 검사하고 고객 신고를 처리할 때 아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 대상 업체 및 관계자에 대해 문의하고 관련 자료 제공 요구

검사 대상 업체의 업무 현장에 진입하여 관련 자료와 최초 기록을 조회 및 복제

제38조 방송 행정부처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감독 검사 업무는 2명 이상 스텝이 공동 진행해야 한다. 법 집행 인원은 법 집행 증명서류를 보여주고 조회, 복제한 자료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3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는 사회 의무 감독원을 초빙하여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의 고객 권익 침해 행위와 유관 부처 관계자의 감독 검사 업무 중의 위법 과실 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40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 규정 제10조,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를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행정부처가 경고를 준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방송 행정부처, 신고처리기관의 관계자가 본 규정에 따라 직책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타 직권 남용, 업무 태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장 부칙

제44조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업체는 서비스 구역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 기준보다 높은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제목	境外视听节目引进、传播管理规定（征求意见稿）
제재일	2018-09-20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광전총국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전파를 법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해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의견 수렴안)>을 작성했고 <규정 제정 절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대중은 아래 경로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중국정부 법제정보망(웹사이트 주소: <http://www.chinalaw.gov.cn>)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입법 의견 수렴'란에 들어가 의견 제출.
2. 서신을 통한 의견 제출: 서신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푸싱먼와이다지에 2호(北京市西城区复兴门外大街2号) 국가광전총국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우편번호: 100866
3. 팩스를 통한 의견 제출: 팩스 번호 010-86093288

의견 수렴 마감 시간은 2018월 10월 19일이다.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및 전파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전파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라디오·TV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라디오·TV 방송 기관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전파하는 다음과 같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할 시 이 규정을 적용한다.

- (1) 해외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2)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예능, 스포츠 등 기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해외 시사성 뉴스 프로그램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 전파하려면,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세계의 우수한 문화성과를 흡수하며, 중국과 외국의 문화 평등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전국의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전파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본 행정 구역 내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전파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 전파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면 부여받은 저작권 권한의 범위와 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

제6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 방송하는 기관은 중국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대중이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전파 활동을 감독할 수 있게 격려해야 한다.

제2장 프로그램 수입

제7조 중국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에 허가제를 시행한다.

제8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총량, 소재 및 생산지 등을 통제하고 계획한다.

제9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은 아래의 기관에서 수입한다.

- (1) 구역을 설정한 시급 이상 라디오TV 방송기관.
 - (2) 법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 영역에 상응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 (3) 법에 따라 <라디오·TV·VOD(Video On Demand)서비스허가증(갑종)>을 취득한 기관.
 - (4) 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선 디지털 유료 채널.
 - (5) 기타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
- 라디오·TV 방송기관에서 방영하는 해외 영화 드라마는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규정에 부합하는 업체가 수입한다.

제10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허가 업무를 책임진다.

- (1) 해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 (2) 중대한 소재 또는 국가 안보, 외교, 민족, 종교, 군사 등의 영역을 다루는 해외 다큐멘터리와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
- (3) 위성 전송 또는 생방송 등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중앙 정부와 국무원 직속 기관 및 그 산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중앙 기관이 법에 따라 개설한 유선 디지털 유료 채널이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가 심의 허가를 담당한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능, 스포츠 등의 분야의 해외 다큐멘터리 및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허가를 책임진다.

제12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신청은 라디오·TV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유

형별로 다음과 같은 전부 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신청서
- (2) 수입 계약서 (중국어,외국어)
- (3) 영상, 음성, 자막, 타임 코드가 심사 요청 사항에 부합하는 완전한 샘플 1세트
- (4) 매회 300자 이상의 줄거리.
- (5) 샘플 테이프 자막과 같은 오픈 크레딧과 엔딩 크레딧의 중국어 및 외국어 자막
- (6) 자료 진실성 및 합법성 확인서.

제13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가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은 수입업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에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초기심사 의견 및 모든 자료를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에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1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가 심의, 허가를 받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은 수입업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에 신청한다.

제15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가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는 기간은 20일이다.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를 발급하며,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수입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단을 꾸려야 할 경우, 심사 시간은 30일로 한다.

제16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위성 송출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허가 문건에 의거하여 <위성 송출 TV 프로그램 수신 허가증> 등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17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 (1) 중국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법률, 행정 법규 시행의 저항을 선동하거나 파괴하는 내용
- (2) 중국의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며,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가의 존엄과 명예와 이익을 해치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 (3)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폄훼하고 민족적 원한을 선동하며 민족차별하고 민족풍속을 침해하거나 민족사 또는 민족사적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며 민족적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 (4) 중국 국가의 종교 정책을 파괴를 선동하고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5) 중국 사회의 공중도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고, 음란, 도박, 마약을 선양하며, 폭력, 공포를 조장하고,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방법을 가르치는 내용
- (6)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

- (7) 다른 사람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유포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8) 기타 중국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제18조 중국의 존엄과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 안정을 해치며 민족감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외조직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개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수입, 전파할 수 없다.

제3장 전파규범(传播规范)

제19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정보네트워크 전파를 위한 일괄된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 목록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이를 사회에 발표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
<드라마배급 허가증>이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기타 허가 문건을 취득한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은 해외 시청 방송 목록에 올 수 있다.

제20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 할 때, 반드시 라디오·TV 주무부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프로그램 버전을 사용해야 하며, 타이틀 화면에 허가증 또는 허가문서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21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이외의 다른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재포장, 재편집해야 하며, 바로 프로그램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 해외 채널 로고나 관련 문자의 화면, 음성, 해외 매체의 채널을 선전하는 광고 등 유사한 내용은 프로그램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를 취득하고 해당 업무영역을 포함한 인터넷 시청 서비스 업체는 라디오·TV 방송기관이 생방송으로 수입한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실시간 중계할 수 있으며, 기타 기관과 개인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 할 수 없다.

제22조 라디오·TV 방송기관의 각 채널에서 매일 방영하는 해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기타 해외 방송 프로그램은 당일 이 종류 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라디오·TV 방송기관은 19:00-22:00에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영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방영할 수 있는 해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기타 해외 TV 프로그램은 이 종류의 프로그램 방송 총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기관은 프로그램의 완전한 내용 편집 및 심사, 안전 방송, 저작권 보호 등 콘텐츠 관리제도와 기술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라디오·TV 주무부처가

설정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에 필요한 수신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 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고 방송내용을 합법적으로 확정하는 총편집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26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 기관은 업무에 상응하는 전문 프로그램 편성 심사 인력을 배치하여 방송 전 심사와 재방송 재심사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방송하는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명칭, 내용 개요, 방송시간, 러닝타임, 출처 등 정보는 최소한 60일 보존하고 라디오·TV 주무부처에 협조해 법에 따라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 기관에서 해외의 시청각 프로그램을 생중계하는 경우, 필요한 지연 방송 등의 기술 수단과 응급처리 조치를 갖추고, 프로그램에 대한 감청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라디오·TV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 기관은 내용에 대한 민원 접수 메커니즘을 세워,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민원을 제때에 접수하고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9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프로그램의 감독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는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에 순차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라디오·TV 주무부처에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 고발할 수 있다.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대중 감독 고발 제도를 수립하여 고발 전화나 우편함, E-mail 주소를 발표하고, 대중이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및 전파활동을 감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31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방송 기관이 위법,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라디오·TV 주무부처는 그 업체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편집장과 약담(约谈, 중국제도)을 할 수 있다.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불법 수입 및 방송이 3회 이상이거나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승인 권한을 가진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해당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의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방송 비율을 낮춰야 한다. 시정 후 다시 위반 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가 심각하여,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입, 전파를 일시 금지할 수 있다.

제32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해외 시청 방송 프로그램의 규정위반 및 신용상실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여,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수입, 방영한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방송 기관 및 관련 책임자의 불량 업종 기록을 명단에 올리고, 사회에 공표한다. 명단에 오른 업체에 대하여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일상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영기업 기관의 관련 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면, 라디오·TV 주무부처는 그 기관에게 해당 인원 상대로 법에 의거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 공공이익의 필요성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특정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 또는 교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5장 법적책임

제34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입한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TV 주무부처가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면 <라디오·TV관리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5조 무단으로 위성 송출 방식으로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한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TV 주무부처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라디오·TV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본 규정 17조의 내용을 위반할 시, 현금 이상 라디오·TV 주무부처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라디오·TV관리조례>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7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위반 행위가 다음의 행위 중 하나일 때, 현금 이상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라디오·TV관리조례> 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 (1) 방송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 (2)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버전을 사용한 경우.
- (3) 방송 중 해외 채널 로고나 관련 문자의 화면, 음성, 해외 미디어 채널을 알리는 광고 등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경우.
- (4) 라디오·TV 주무부처의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수입 방송 수량, 비율, 시간대에 관한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3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행위 중 하나일 때, 현금 이상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콘텐츠 관리제도와 기술보장 체계를 요구사항에 따라 갖추지 못했을 경우.
 - (2) 방송하는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의 타이틀 화면에 허가증 또는 허가서류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3) 허위증명, 서류 등의 방법으로 허가증이나 허가서류를 취득했을 경우.
- 위 3 가지 행위에 속하면, 승인 기관은 반드시 허가증 혹은 허가 서류를 취소해야 한다

다.

제39조 라디오·TV 주무부처와 그 직원이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업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디오·TV관리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40조 극장 상영과 음반·영상 제품 출판에 사용되는 해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에서 따로 규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9월 23일 국가방송영화TV총국이 발표한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국가방송영화TV총국 령 제42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10. 해외 애니메이션의 프로그램 형식 방영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

제목	广电总局关于禁止以栏目形式播出境外动画片的紧急通知
게재일	2005-09-14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현재 중국 각 방송국 중, 특히 어린이 방송채널과 애니메이션 위성채널은 중국산 애니메이션 방영규모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속에서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창작과 제작은 전례 없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 몇몇 중국 TV방송국은 광전총국(广电总局)의 심의와 허가 없이 해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정보 프로그램이나 전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공공연하게 방영하고 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해외 애니메이션들은 잘못된 사고를 조장하고 미신과 폭력이 난무해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애니메이션 허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인 방송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치를 통한 시정이 필요하다. 각 방송기관은 특히 어린이 채널과 애니메이션 위성채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치, 책임의식, 그리고 다각도적인 사고를 한층 더 고양하여, 《미성년자의 도덕의식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중앙·국무원의 몇 가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또한 민족의 미래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애니메이션 방영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2. 해외 프로그램 방영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모든 해외 애니메이션은 광전총국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배급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모든 방송 채널은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을 6:4로 유지하여야 한다. 즉, 중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영 횟수가 6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광전총국의 심의 및 배급허가증 없이 방영되는 해외 애니메이션 및 해외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은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방영을 금지한다.
3.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관리 메커니즘을 점차 확립·정비하고 프로그램의 심의와 방영을 세심하게 점검한다. 그리고 해외 애니메이션회사로부터 구매하였거나 무료로 받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애니메이션은 방영할 수 없으며 사회중개기관이 추천하였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해외 애니메이션도 방영할 수 없다.
4. 본 통지의 발표일로부터 각 방송사들은 애니메이션 정보 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 전문 프로그램을 검열하여 이 같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현재 방영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거나 개편하여야 한다.
5. 각 성(省)급 방송감독위원회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영 현황 즉 애니메이션의 방영내용, 방영타입, 방영시간대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불법 혹은 복제판 국내외 애니메이션 방영과 해외 애니메이션 초과 방영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통보하고 엄격히 조사한 후 시정한다.

11.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제목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第61号)
게재일	2009-09-08, 2011-11-25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은 2009년 8월 27일 국가광전총국 업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광전총국 국장 왕타이화(王太華)
2009년 9월 8일

《〈라디오TV 광고방영 관리방법〉 보충규정》은 국가광전총국 2011년 11월 21일 업무회의 심의에서 통과 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광전총국 국장 : 차이푸차오(蔡赴朝)
2011년 11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 방송광고의 방영질서를 규범화하고 방송광고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방송관리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라디오TV방송국을 포함) 등 방송방영기관(이하 방송기관이라 한다)의 광고 방송 활동과 방송전송기관의 관련 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방송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를 포함한다.(상담서비스, 쇼핑방송, TV홈쇼핑 단편광고 등을 포함)

제4조 광고방송의 방영은 반드시 인간을 근본으로 삼아 합법성, 진실성, 공정성, 성실성, 신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방송·영상 행정부처는 광고방송 방영 활동에 대해 속지 관리하고, 등급별로 나누어 책임진다.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처는 전국의 방송광고 방영 활동의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영상 행정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방송광고 방영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6조 방송·영상 행정부처는 공익광고의 제작과 방영을 독려하고, 성과가 뚜렷한 조직과 개인

에게 표창한다.

제2장 광고내용

제7조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므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우수한 문화 품격을 수립하고, 방송프로그램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 방송광고는 아래에 포함된 내용을 금지한다.

-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 (2) 국가의 통일은 물론 주권과 영토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킨 경우
- (3) 민족 원한과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의 풍속습관을 침해하고 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고 종교정책을 위반한 경우
- (4)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경우
- (5) 사교(이단), 음란, 도박, 폭력, 미신을 전파하고 사회공중도덕 혹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위협하는 경우
- (6) 타인을 모욕, 경시, 혹은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 (7)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올바르게 지니지 않은 행동 혹은 가치관을 유발시키고 심신의 건강을 위협한 경우
- (8) 완강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중을 기만하고 잘못된 길로 이끈 경우. 그리고 고의로 잘못된 글자를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사성어를 고친 경우
- (9) 상업광고 중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가휘장, 국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국가지도자, 리더의 명의, 이미지, 목소리, 명언,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명의와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 (10) 약품, 의료기기, 의료, 건강 상담류 광고 중 완치율과 효과정도를 홍보하거나 의사, 전문가, 환자, 일반국민 등의 이미지를 통해 의료효과를 증명한 경우
- (11)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

제9조 아래의 방송광고는 금지한다.

- (1) 뉴스보도 형식의 광고
- (2) 담배제품 광고
- (3) 처방약품 광고
- (4) 악성종양, 간(과 관련된)병, 성병 혹은 성기능 향상약품, 식품, 의료기기, 의료 관련 광고
- (5) 성명분석, 운세분석, 인연테스트, 사교채팅 등의 음성정보서비스 광고
- (6) ‘모유대용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유제품 광고
- (7)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된 규정에서 방영을 금지한 기타 광고

제10조 시사 정치 뉴스 유형 프로그램은 기업 혹은 상품명칭 등을 타이틀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인물 특별취재, 기업특별보도 등의 프로그램 속에 주소와 연락처 등의 내용을 포

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 투자 상담, 금융재테크관리와 프랜차이즈가맹 등의 투자성 광고는 ‘투자위험’ 등의 경고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복지복권, 체육복권 등 법으로 승인한 광고 외, 기타 도박성 광고의 방영을 금한다.

제3장 광고 방송

제13조 방송광고의 방영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그 중, 상업광고는 방송량을 규제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방송광고의 방영이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추가된 것 외에 임의로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방송기관이 모든 프로그램의 매 시간대에 방영하는 상업광고는 1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중, 라디오방송국은 11시에서 13시 사이에, 방송국은 19시에서 21시 사이에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총 방영시간은 18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계방송을 진행하거나 생중계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업광고를 순서대로 미루어 방영할 수 있다.

제16조 방송기관이 모든 프로그램에 매일 방영하는 공익광고의 방영시간은 상업광고 방영시간의 3%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 중 라디오방송국은 11시에서 13시 사이에, 방송국은 19시에서 21시 사이에 공익광고를 방영해야 하며, 방영횟수가 4회 이하여서서는 안 된다.

제17조 드라마 방송 시, 회차별(45분 단위로 계산) 방송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 영화 방송 시, 광고 삽입은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실행한다.

제18조 영화나 드라마 혹은 프로그램의 타이틀 표지 외에는 어떠한 형식의 틈새광고도 방영을 금지한다.

제19조 영화나 드라마 혹은 프로그램 타이틀 표지에 아래의 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1) 단독으로 기업, 상품명칭이 등장하거나 극장, 프로그램 명칭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 (2) 표지의 크기가 타이틀보다 크거나 기업, 상품명칭의 글자크기가 극장, 프로그램 명칭보다 큰 경우
- (3) 빈번히 바뀌고, 매번 방영되는 시간이 5분을 초과하거나 매번 타이틀 표지의 방영간격이 10분에 미달하는 경우
- (4) 경영서비스 범위, 종목, 기능, 연락처, 광고모델 등의 문자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경우

제20조 영화나 드라마 혹은 방송프로그램은 피부병치료, 간질, 치질, 무좀, 부인과, 비뇨생식계통 등 질병의약품 혹은 의료기관으로 타이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을 중계방송, 송출 할 때 반드시 완벽한 중계방송, 송출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계방송, 송출 프로그램 속 광고를 교체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동적인 자막, 층층이 겹쳐지는 자막, 틈새광고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체적으로 구성된 광고는 삽입해 방영할 수 없다.

제22조 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입된 해외 TV채널에서 방영되는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상업광고의 방영은 반드시 대중들의 생활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6시 30분에서 7시 30까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및 18시 30분에서 20시까지, 국민들의 식사시간대에는 피부병 치료, 치질, 무좀, 부인과, 비뇨생식계통 등의 질병 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와 여성의 위생용품 광고를 금한다.

제24조 방송기관은 미성년자를 주요 전파대상으로 하는 주파수, 채널, 프로그램 속에 주류 상업광고가 방영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라디오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매 시간 방영되는 주류 상업광고는 2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매일 방영되는 주류 상업광고는 12개를 넘어서는 안 되며, 그 중 19시에서 21시 사이에는 2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초등학생, 중학생의 방학기간과 미성년자들이 집중 청취, 시청하는 시간대 혹은 미성년자를 주요 전파대상으로 하는 주파수, 채널, 프로그램 속에 미성년자가 청취하고 시청하기에 부적합한 상업광고를 방송하는 것을 금한다.

제26조 상업광고를 방영할 때 타이틀과 채널 표지를 숨기면 안 된다.

제27조 광고주와 광고경영인은 광고 방송 등의 방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방송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8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는 반드시 해당 행정구역 내의 방송광고 방영 활동의 감독 및 관리, 감독 관리제도와 기술수단 구축과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29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는 반드시 대중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전화를 공표해야 하며, 제때에 조사 및 처리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30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는 방송광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를 결

정한 후 5일의 근무일 내로 반드시 처리상황을 1급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31조 공공이익의 필요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 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는 지정된 시간대에 특정한 공익광고를 방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상업광고의 방영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제32조 방송기관이 광고경영활동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비광고 경영부서는 방송광고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기자는 취재 명목으로 광고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제33조 방송기관은 반드시 광고경영, 심사, 방송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방영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방송기관은 반드시 광고업무의 등록 및 심사결정 등 파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

제35조 약품, 의료기기, 의료, 식품, 화장품, 농약, 동물약품, 금융관리 등 반드시 관련 행정부처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업광고에 대해, 방송기관은 방영 전 반드시 법에 의거해 승인된 문서와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자료가 불충분하고 심사 통과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상업광고는 방영할 수 없다.

제36조 약품, 의료기기, 의료와 건강 상담류 광고를 제작, 방영할 시에는 의학전문가를 초빙해야 하며, 방송기관은 반드시 의사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직함증명 등의 관련 증명자료를 심사하고 광고 속에 제시해야 한다. 관련된 전문자격이 없는 사람은 초빙할 수 없다.

제37조 광고주, 광고경영인이 허위증명서를 제공하여 방영된 광고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라디오·TV 행정부처는 관련 방송기관에 대해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없애줄 수 있다.

제38조 국무원 라디오·TV 행정부처는 방송기관업계의 자체 조직 건립을 추진한다. 이 조직은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고할 수 있고, ‘방송 광고 방영 업계의 자체 시범기관’ 추천과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39조 본 방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는 위반행위를 정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명령 및 경고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의 발급기관이 《방송채널경영허가증》, 《방송 방영기관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0조 본 방법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22조 규정에 위반된 광고를 방영할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는 《방송관리조례》 제50조, 제5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41조 본 방법의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에서 제28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방법의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교체 및 은폐하여 광고를 방영한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TV 행정부처가 위법행위를 정지 또는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방송기관에 대해서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TV 행정부처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3조 라디오·TV 행정부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에 의해 불법을 행하거나 본 방법규정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맡고 있는 주관자(대표)와 직접적인 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44조 본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2003년 9월 15일 국가광전총국이 공표한 《방송 광고 방영관리 임시 시행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12. 위성TV 종합채널의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广电总局电视剧司关于进一步规范卫视综合频道电视剧编播管理的通知
게재일	2010-03-22
출처	광전총국 드라마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최근, 광전총국 드라마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라디오방송국(廣播影視局)과 CCTV, 중국교육방송국(CETV)에 《위성TV 종합채널 드라마편성 관리 규범화 강화에 관한 통지》를 전달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드라마 시청이 최근 중국 드라마 제작과 방송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미 국민의 정신문화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CCTV종합채널과 전국 성급 위성TV 종합채널이 드라마 방송에서 가장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성TV 종합채널 드라마방송에 관한 관리 강화와 질서 확립을 통해 위성TV 종합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며, 드라마산업의 효과적인 과학적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위성TV 종합채널 드라마방송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드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 형식으로, 선진문화를 알리고, 사회도덕을 수립하며, 사람들의 정신적 세계와 미적 감각을 배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각 성급의 방송영상 행정주무부처와 위성TV종합채널은 사회주의 선진문화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화로운 문화건설 관점에서 각 성급 위성TV드라마방송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치의식과 전반적인 책임감 등의 다양한 의식구조를 한 층 더 강화하며, 관리제도 및 방침을 개선하여 양질의 드라마 방송을 보장한다.

둘째, 위성TV 종합채널의 직무와 본질을 명확히 하여 언제나 사회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전국 각 성급 TV방송매체는 사상과 문화 전달의 중요한 매개체로 반드시 매체로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위성TV 종합채널은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채널이다. 따라서 위성TV 종합채널은 ‘드라마 채널’이나 ‘가족영화’ 등과 같은 채널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사회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드라마 방송은 홍보규정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드라마 편성 중, 전국 위성TV 종합채널은 드라마 방송의 홍보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즈니스행위와 혼동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무질서한 비즈니스 경쟁에는 더 더욱 뛰어 들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위성TV 종합채널 드라마방송규범강화를 위해 전국위성TV종합채널에 아래와 같이 특별히 규정한다.

- (1) 1일 중 드라마 방송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국가 법정공휴일⁶⁾ 기간에는 1일당 드라마 방송시간을 이 통지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한다.
- (2) 동일 드라마의 방송 횟수(재방송 포함)는 1일 최대 6편(한 편당 46분 이하)으로, 주말에는 동일 드라마 방송횟수(재방송 포함)가 하루당 8편으로 제한한다. 단, 국가법정 공휴일기간에는 같은 드라마의 방송횟수를 이 통지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한다.
- (3) 저녁 7시에서 12시 사이의 동일 드라마 방송횟수(재방송 포함)는 최대 3편을 초과하지 않는다

6) 원단(元旦), 춘절(春節:설), 노동절, 청명절, 단오, 추석, 국경절

다.

- (4) 1급 TV방송매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드라마심사관리규정》(총국 40호령)을 준수해야 하고, 드라마 배급허가증에서 승인하는 분량으로 방송해야 한다. 만약 특별 방송편성으로 인해 드라마 분량을 조정해야 할 경우, 먼저 드라마 저작권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다음 이 드라마의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광전총국 정부 사이트의 드라마 사무처를 통해 광전총국 드라마사(司)에 보고하고 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등록서류 별첨).
- (5) 이상 규정이 시행되는 과정 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먼저 총국에 반드시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 (6) 총국은 각 지역의 시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이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방송관리조례》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전국 위성TV 종합채널은 철저하게 이 통지사항을 시행한다. 이 통지가 발표된 날부터 잠정 시행하고, 2010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통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방송영상국(廣播影視局)이 해당 성급 방송국에 전달하여 상기 사항을 감독, 이행한다.

13.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제목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제재일	2010-05-14, 2016-05-04
출처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2010년 3월 26일 광전총국의 업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국가광전총국 국장 왕타이화(王太華)
2010년 5월 14일

(2016년 5월 4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8호 《일부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8년 10월 31일 국가광전총국 령 제2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서 설정한 증명서류를 취소하는 데 관한 국가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드라마 내용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드라마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며, 드라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방송관리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배급, 방송활동 영위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드라마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중국 내 방송국에서 방송하거나 국내외에서 배급되는 드라마(TV애니메이션 포함)를 말한다. 해당 드라마에는 중국산드라마(이하 중국드라마)와 해외기관과 공동 제작한 드라마(이하 합작드라마)가 포함된다.
- (2) 중국 내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해외에서 수입한 드라마(TV애니메이션 및 영화 포함, 이하 수입드라마)를 말한다.

제4조 드라마 내용의 제작 및 방송은 중국 국민과 중국 사회주의에 서비스하는 방향과 백화제방(百花齐放), 백가쟁명(百家争鸣)의 방침⁷⁾을 견지해야 하고, 실제와 생활에 가깝고 대중과 친밀해야 하며, 사회적인 효과를 우선시하되,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서로 결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문화예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제5조 드라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칙을 어기도록 종용하거나 저해하는 내용
- (2) 국가의 온전한 통일과 주권과 영토를 위협하는 내용

7) 다양한 장르와 경쟁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번영시키는 방침

- (3)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번영과 이익을 저해하는 내용
 - (4) 중국의 민족 갈등 및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의 풍습과 습관을 저해하고,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 (5) 중국의 국가 종교 정책을 위반하고, 종교 극단주의와 사이비 종교, 미신, 종교 신앙을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 테러, 마약 복용을 조장하고, 범죄를 중용하거나 범죄의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
 -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저해하는 내용
 - (10)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의 건강에 해로운 내용
 - (11) 기타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칙에서 금지하는 내용
-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위의 규정에 따라 드라마 내용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한다.

제6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중국 전역의 드라마 내용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드라마 내용을 관리 및 감독한다.

제7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드라마 심사승인 관리의 디지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완비하여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2장 등록과 공시

제8조 중국드라마와 합작드라마의 촬영제작에 대해 등록·공시제도를 실시한다.

제9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중국 전역에서 촬영 제작되는 드라마의 공시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해당지역 내 제작기관이 촬영 제작하는 드라마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심사 및 보고를 거쳐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에 공시를 요청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에 직접 등록을 하는 제작기관(이하 직접 등록 제작기관)은 제작한 드라마를 등록하기 전에 그 상급 업무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되는 제작기관은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공시를 신청할 수 있다.

- (1) 《드라마제작허가증(갑)》을 소지한 경우
- (2) 《방송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 (3) 직할구역이 설립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방송국(라디오·TV방송국, 방송영상그룹 포함)
- (4) 《영화촬영제작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5) 기타 《드라마제작허가증(을)》을 소지할 자격을 갖춘 제작기관.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와 직접 등록 제작기관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처에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법인 직인이 날인된 《드라마 촬영 제작 등록 공시표》 또는 《중대한 혁명 및 중대한 역사 소재 드라마 항목 입안 신청표》
- (2) 레퍼토리의 주요 사상, 주요 인물, 시대적 배경, 줄거리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술한 1500자 이상의 간략한 소개서
- (3) 중대한 제재 또는 정치, 군사, 외교, 국가 안전, 통일 전선, 민족, 종교, 사법, 공공치안 등 민감한 내용과 관련되는 소재(이하 특수소재)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이상 정부의 관련 주관부서 또는 관련 당국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등록·공시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규정된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 정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시한다. 공시 내용에는 드라마 제목, 제작기관, 분량(횟수), 줄거리 등이 포함된다. 드라마 공시 내용은 프린트하여 관련 절차의 수속을 밟을 때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등록·공시를 신청하는 드라마의 내용이 본 규정에 위배될 경우 공시하지 않는다.

제14조 제작기관은 공시 내용에 따라 드라마를 촬영·제작해야 한다. 제작기관은 이미 공시한 드라마의 주요 인물과 주요 스토리를 변경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공시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드라마의 제목과 분량(횟수) 및 제작기관을 변경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 또는 그 상급기관의 업무주관 부서에 동의를 얻은 후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에 관련 변경절차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와 허가

제15조 중국드라마, 합작드라마, 수입드라마 내용에 대해 심사 및 배급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배급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드라마는 배급, 방송, 수상할 수 없다.

제16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드라마 심사위원회와 드라마 재심사위원회를 설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드라마 심사기관을 설립한다.

제17조 드라마 심사 직무를 이행하는 방송영상행정부처는 건전한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고, 심사 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학술적으로 수준이 높고, 올바른 직업 윤리의식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를 신청한 드라마에 대해 심사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심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의견을 제시해

야 한다. 심사원이 심사신청자와 친족 등의 관계에 있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주거나 해당 드라마의 레퍼토리 창작에 참여한 경우는 당연히 신청을 회피해야 한다.

제19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 드라마 심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직접 등록 제작기관이 제작하는 드라마를 심사한다.
- (2) 합작드라마 시나리오(또는 매회 줄거리)와 완성된 작품을 심사한다.
- (3) 수입드라마를 심사한다.
- (4)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가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에 심사를 요청한 드라마를 심사한다.
- (5) 사회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공공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의 심사가 필요한 드라마를 심사한다.

제20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 드라마 재심사위원회는 심사신청기관이 관련 드라마 심사위원회 혹은 드라마 심사기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재심사 신청을 낸 드라마에 대해 심사를 담당한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 드라마 심사기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행정구역 내 제작기관이 제작한 중국 드라마를 심사한다.
- (2) 해당 행정구역 내 제작기관과 해외기관이 제작한 합작드라마 시나리오(또는 매회 줄거리)와 완성된 작품을 1차 심사한다.
- (3) 해당 행정구역 내 방송국 등의 기관이 심사 신청을 낸 수입드라마를 1차 심사한다.

제22조 중국드라마 심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이상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가 일괄적으로 인쇄한 《중국드라마 신청표》
- (2) 레퍼토리 공시 인쇄물
- (3) 매회 500자 이상의 드라마 줄거리
- (4) 화면, 소리, 자막, 타임 코드 등 심사 요구에 부합하는 온전한 상태의 샘플 한 세트
- (5) 온전한 상태의 드라마의 오픈 엔딩 크레딧 및 엔딩 크레딧과 노래 자막 표
- (6) 외국인의 중국드라마 창작 참여를 동의한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의 승인 문서 복사본
- (7) 특수소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관련당국의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심사 신청을 제출한 합작드라마, 수입드라마는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이상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모든 심사 자료를 받은 후 5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중 심사 기간은 30일이다. ‘허가’ 일 경우 드라마배급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불허’ 일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신청기관은 수정 후 본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드라마배급허가증은 국무원 방송영

상행정부처가 일괄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25조 심사신청기관은 ‘불허’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불허’ 일부터 60일 내에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재심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중 심사 기간은 30일이다. 재심사를 통과한 경우 드라마배급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6조 이미 방송영상행정부처에 심사 신청을 했지만, 아직 드라마배급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심사신청기관은 기타 방송영상행정부처로 심사 신청을 전이할 수 없다.

제27조 이미 드라마배급허가증을 취득한 드라마에 대해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수정 명령을 내리거나, 방송을 중단하거나, 배급 또는 수상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28조 이미 드라마배급허가증을 취득한 드라마는 심사를 통과한 내용에 따라 배급하고 방송해야 한다. 드라마 제목, 주요 인물, 주요 스토리, 방송 분량 등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심사신청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기존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29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정기적으로 중국 전역의 드라마배급허가증 발급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방송관리

제30조 방송국은 드라마를 방송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드라마배급허가증을 검사해야 한다.

제31조 방송국은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본 규정의 내용 심사 기준에 따라 방송할 드라마의 내용을 심사하고 재방송을 재심사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가 적시에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에 처리 신청을 해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중국 전역의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의 총 분량, 범위, 비중, 방송 시기, 시간대 등에 대해 거시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 드라마 방송 시 매회의 시작 부분에 해당 드라마 배급허가증 번호를 명시하고, 매회의 끝부분에 해당 드라마 제작허가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34조 방송국은 드라마 방송 시 법에 의거해 건전한 방송을 해야 하며, 관련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5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드라마를 제작, 배급, 방송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했는데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방송관리조례》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제작, 배급, 방송된 드라마가 본 규정의 제 5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방송관리조례》 제 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본 규정의 제 26조를 위반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이상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심사 신청 책임 이전을 수리하지 않는다. 사기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배급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드라마배급허가증을 취소당한다.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이 실수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자를 비롯한 직무 책임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38조 방송영상행정부처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 수행에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본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39조 심사원이 본 규정의 제 18조를 위반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이상 정부의 방송영상행정부처는 경고 조치를 내려야 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해당 심사원을 이후의 심사에 초빙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부칙

제40조 중대한 혁명 및 중대한 역사를 제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관리 및 합작드라마와 수입드라마에 대한 심사·승인과 방송 관리는 각각 중국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4년 9월 20일 중국 국가 광전총국이 공표한 《드라마 심사 관리규정(총국 령 제40호)》과 2006년 11월 14일 중국 국가 광전총국이 공표한 《〈드라마 심사 관리규정〉 보충 규정》(총국 령 제 53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드라마 콘텐츠 제작 통칙》

제1조 회원업체의 국가 관련 법규, 정책에 의거한 드라마 제작을 지도하기 위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표한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电视剧内容管理规定)》 등 관련 법규 조항에 따라 드라마 제작기관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드라마콘텐츠제작통칙(电视剧内容制作通则)》을 제정한다.

제2조 드라마 제작기관은 본 통칙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본 통칙이 제창하는 내용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고 본 통칙이 금지하는 내용을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드라마 제작은 ‘두 가지를 위하’는 방향과 ‘쌍백(雙百)⁸⁾’ 방침을 고수하고 근대 중국의 가치 관념과 중화문화정신을 구현하며 중국인의 심미 추구를 반영하면서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우수한 작품을 제작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국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국민을 표현의 주체로 사용하며 국민의 마음의 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을 위해 표현하고, 감정과 심경을 토로하면서 국민의 정신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두어야 한다.
- (2)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선도역할을 견지하면서 애국주의 중심의 민족정신과 개혁 혁신 중심의 시대적 정신을 널리 알리면서 대중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 및 견지하도록 유도한다.
- (3) 현실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 삶, 대중들에게 다가가며 시대의 발전상과 사회진보를 기록한다.
- (4)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한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문명을 전승하며 중화민족 후손들의 자존, 자신, 자강을 격려한다.
- (5) 진선미를 선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다. 사회책임을 명심하고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영예감을 높이도록 선도한다.
- (6)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중국 정신을 선양하며, 중국 역량을 응집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여한다.
- (7) 굳건히 사회적 효과를 최우선시하여 사상적, 예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아울러 시장에서 사랑 받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상호 일치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
- (8) 명품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상이 심오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며, 훌륭하게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드라마 제작기관은 정확한 정치 방향, 가치 취향과 심미 성향을 고수해야 하고 아래 내용이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규정의 실시를 거부 혹은 파괴하도록 선동하는 내용
- (2) 국가 통일, 주권과 영토 완전을 파괴하는 내용
- (3)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명예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내용
- (4) 민족 혐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풍속 관습을 침해하고 민족 정서를 해치며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 (5) 국가의 종교정책에 위배되고 종교 극단주의와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양하며 종교 신앙을 차별, 모욕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 테러, 마약을 선양하며 범죄를 부추기거나 혹은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비방하는 내용
-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해를 가하는 내용

8) 백화제방, 백가쟁명, 즉 누구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는 뜻

- (10)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
- (11)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5조 드라마에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실정과 사회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파괴
 - 1. 국가 이미지, 국가제도와 방침정책을 폄하
 - 2. 인민군대, 무장경찰, 국가안전, 공안, 사법 종사자 등 특정 직업, 계층 그리고 사회조직, 단체의 공공 이미지를 실추
 - 3. 사회문제를 과장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표현하고 보여주기
 - 4. 대중의 역사발전 추진 역할을 폄하
 - 5. 악역을 주요 표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반동, 낙후, 사악, 불법적인 사회 세력, 사회조직과 인물을 위해 전기를 쓰고 공덕을 치하하며 그의 긍정적인 한 면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기
 - 6. 중국 역사상 봉건왕조의 대외적인 무력 정복을 선양
 - 7. 식민주의 색깔이 있는 대사, 호칭, 화면 등을 선양
 - 8. 국가 실정을 벗어났고 기본적인 현실 생활 근거가 부족하며 호화로운 생활 등을 선양
- (2) 민족단결을 파괴
 - 1. 민족 정서를 해치는 이야기 줄거리, 대사, 호칭, 인물 형상, 화면, 음향 효과 등
 - 2. 독특한 민족 풍속과 종교 신앙에 대해 엽기적이고 과장되게 묘사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모욕함
 - 3. 민족 정서를 해치는 민족 전쟁, 역사 사건을 표현
 - 4. 역사상 민족 간의 징벌을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 등으로 표현
- (3) 국가의 종교정책을 위배
 - 1. 종교 극단주의와 사이비 종교를 선양
 - 2. 서로 다른 종교, 교파의 우열을 적절하지 못하게 비교하여 종교, 교파간의 갈등과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음
 - 3. 종교 교리, 계율, 의식 등 내용을 지나치게 전시 및 선양
 - 4. 종교 내용에 대해 해학적으로 서술하고 조롱하는 등
- (4) 봉건 미신 선양, 과학 정신 위배
 - 1. 영혼이 몸에 붙고, 환생, 굿 등 봉건미신사상을 선양
 - 2. 우매, 사악, 기괴하고 황당함 등 봉건문화 찌꺼기 선양
- (5) 테러 폭력을 과장되게 묘사, 추악한 행위를 표현 심지어 범죄 유발 가능
 - 1. 폭력, 살인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표현
 - 2. 흉악하고 참혹한 범죄과정 및 육체, 정신적 학대를 상세하게 보여줌
 - 3. 수사 방법과 디테일을 노출시켜 범죄를 유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을 장악할 수 있음
 - 4. 기괴하고 황당한 범죄사건을 표현
 - 5. 진위, 선악, 미추(美丑)에 대한 가치판단이 흐리고 정의와 비정의의 기본 경계선을 혼동

6. 마약 흡입, 무절제한 음주, 도박 등 불량 행위를 상세하게 표현
 7. 과도한 공포, 생리적 고통, 히스테리를 표현하여 강렬한 감각기관, 정신적 자극을 조성하여 심신이 편치 않는 화면, 대사, 음악 및 음향효과 등을 초래
 8. 폭력은 폭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을 선양하기 위해 극단적인 복수 심리와 행위를 선양
- (6) 음란물과 저속한 취미를 과대하게 묘사
1. 매춘, 음란, 강간 등 추악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2. 불륜, 동성애, 성적 변태, 성범죄, 성학대 및 성폭력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 성행위를 표현
 3. 외도, 원나잇, 성 자유 등 건전하지 못한 연애, 결혼관과 상태를 보여주고 선양
 4. 양이 많은 사람들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신(scene), 및 유사한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간접 표현 혹은 암시
 5. 선명한 성희롱, 성추행, 성적인 모욕 혹은 유사한 효과의 화면, 대사, 음악 및 음향효과 등이 있음
 6. 남녀 성기 등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거나 의상 착용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등
 7. 거친 언어 등을 사용
 8. 미성년자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화면, 대사, 음악, 음향효과 등
- (7)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
1. 중요한 역사인물 및 기타 실존 인물의 이미지, 명예를 실추시켜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
 2. 타인의 직업 신분, 사회적 지위 혹은 신체 특징을 폄하
- (8)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왜곡 및 폄하
1. 민족의 우매 혹은 사회의 낙후된 부분을 지나치게 묘사, 과장하거나 집중 표현
 2. 기본적인 역사 사실을 위배하고 이미 결정이 난 역사인물, 역사사건을 ‘뒤집거나’ 혹은 아직 논쟁이 있는 역사인물, 역사 사건을 위해 ‘명분을 바로 잡음’
 3. 명작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원작의 정신적 본질을 왜곡
 4. 기본적인 역사상식을 위배하고 기본적인 역사 근거가 부족하며 역사를 마음대로 곡해
 5. 역사 특히 혁명 역사에 대해 과도한 오락과 게임 형식으로 표현
- (9) 사회공덕을 해치고 미성년자에 대해 나쁜 영향을 초래
1. 미성년자의 풋사랑, 흡연과 과도한 음주, 패거리 싸움 등 불량 행위를 표현
 2.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처에서 규정한 흡연 장면과 흡연 모습을 위반
 3. 인물 캐릭터가 지나치고 과장되게 이상하여 미성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
 4. 기타 사회공덕을 위반한 문명하지 못한 행위
- (10)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 내용
1. 국가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모 특별 업무의 내부제도, 절차를 공개하는 내용
 2. 국제 분쟁 유발 혹은 나쁜 국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3.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로고, 쿨 사인, 호칭, 용어를 남용, 오용하는 내용
 4. 드라마 속의 제품과 서비스 정보 삽입이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처의 유관 규정

을 위반하는 내용

5.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

6. 법률, 법규 정신을 위반하고 국가의 건설과 발전에 불리한 기타 내용

제6조 제작 과정에서의 디테일을 엄숙하고 신중하게 대하며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1) 소수민족 언어문자, 혁명 선구자 및 기타 중요한 인물 형상, 특정 부호와 로고 사용 및 도형, 도표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드라마 내용이 인민군대, 무장경찰, 국가안보, 공안, 법조인,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 계층 및 사회조직, 단체를 표현하는 경우

(3) 특정 역사시기, 직업군의 의상, 배경 소품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7조 드라마 제작기관은 국가 언어문자 규범 표준에 따라 드라마의 문자 품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여 글자와 단어의 정확하고 규범화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드라마의 자막은 서예로 쓴 프로그램 명칭 및 관련 문자 외에 규범화된 한자이어야 한다. 드라마에 가사가 있는 곡, 외국어 제목, 대사, 특정 함의가 있는 단어 및 로고 등은 중문 자막을 넣어야 한다.

제8조 드라마 제작기관이 본 통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나쁜 영향을 끼칠 경우, 협회는 경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동 기관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비평, 경고, 업계 전체 및 사회 대중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내리며 경위가 악랄할 경우 회원자격을 취소하고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법과 규정에 의해 수사를 진행한다.

14.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

제목	广电总局办公厅关于严格控制电影、电视剧中吸烟镜头的通知
제재일	2011-02-12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관리정책

현재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창작, 제작, 송출 등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한편 사회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가 대중들 삶 속에 미치는 영향력에 입각하여 국가 관련부서, 사회 각 계층에서 영화와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시청자 특히 미성년 시청자들에 안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다.

국가광전총국 판공청은 《영화, TV드라마의 흡연장면 엄격 제한에 관한 통지》를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방송영상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⁹⁾ 방송영상국, 성/자치구/직할시 방송국(廣播電視臺), 영화제작사, CCTV, 중국교육방송채널, 중국공산당 중앙직속기관 사무 관리국 관련 단체를 상대로 공표하였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이 시청자에게 흡연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고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멀리하며 건강한 생활을 제창하며 인문 사회적 소양의 양성을 위해 영화와 드라마 속 흡연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1. 영화와 드라마 속에 담배 브랜드 로고와 관련 내용 및 형식이 바뀐 담배 광고를 삽입할 수 없다. 정부에서 흡연금지 할 것을 요구하는 곳 및 흡연금지 로고가 있는 장소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삽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거나 흡연하는 등 담배와 미성년자를 연결하는 장면,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삽입할 수 없다.
2. 담배와 관련된 스토리와 장면을 규제한다. ‘예술적인 수요’, ‘개성 표현’ 등 명목으로 흡연 장면을 내보내지 말아야 하고 흡연으로 표현해야 할 캐릭터의 심리와 현장 분위기 등 스토리는 다른 형식을 채택해서 보여줘야 한다. 스토리상 흡연 장면이 꼭 필요할 경우, 흡연 장면의 시간과 빈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 CCTV, 군부 예술 부서 등 기관은 영화와 드라마 속 흡연 장면 규제가 사회에 주는 시범 및 인도 역할을 중요시하고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직무를 발휘하여 영화, 드라마 제작사가 연기 없는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도록 하며 감독과 배우도 흡연 장면을 촬영하지 않도록 인도해야 한다. 성급 영화 심의기관, 드라마 송출기관은 드라마와 영화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여 드라마와 영화 속 흡연 장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흡연 장면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국가광전총국의 영화/드라마 우수작품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없다.

9)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본 통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 25일 광전총국 드라마 제작사에서 공표한 《국가광전총국 드라마 관리사에서 드라마 속 흡연 장면을 규제하는 것에 관한 통지》(극심자[2009]043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15.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意见
게재일	2012-01-01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광전총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34개의 위성 종합채널을 상대로 시사프로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과도한 오락화 및 저속화를 방지하고 시청자들의 다양한 고품격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일부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것에 관한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에서는 위성 종합채널은 시사프로를 위주로 다루는 종합채널인 만큼 뉴스, 경제, 문화, 과학과 교육, 어린이 프로,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2년 1월 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종합채널에서 송출되는 시사 프로그램은 최소 2시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오후 6시부터 오후 23시 30분까지 자체 제작하는 시사프로그램 2가지를 송출해야 하며 뉴스 프로는 최소 30분이어야 하며 중화민족의 전통미덕과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알리는 도덕 프로도 제작해야 한다. 2011년 9월 1일부터 각 채널마다 도덕 프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다루며 채널마다 범람하고 있는 짝짓기 프로, 퀴즈 프로, 감성 스토리 프로, 오락 경기 프로, 오락프로, 토크쇼, 리얼리티 쇼 등 프로에 대해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매일 저녁 7시 30분~저녁 10시 사이 위 프로그램은 총 9개를 넘지 말아야 하고 종합채널 별로 1주일 동안 최대 2개까지 송출 가능하다. 매일 저녁 7시 30분~저녁 10시 사이 위 프로그램은 최대 90분까지 송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진행할 것이다.

방송국은 사회적 수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정착시켜야 하고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유기적인 통합을 견지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프로그램 종합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 매기기, 단순 시청률 순위만으로 프로그램 폐지시키기, 단순 시청률 순위로 프로그램 송출기관과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등 3가지를 절대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모든 방송 행정관리 부서는 관리감독 직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며 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문제점을 제때에 발견하여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프로그램 송출기관은 3대 심의제도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 종합채널의 프로그램 송출기관은 최고 책임자 책임 제도를 정착시키고 성급 방송 행정관리 부서는 전문 시청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오락화 저속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추적 및 검토한다. 프로그램 중에 나타난 정치적 방향, 가치적 방향, 격조/기본 정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비평, 수정할 것을 요구 또는 경고하고, 프로그램 시간대 조절 또는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관련 산업의 자율화 강화, 사회 감독 지원, 교육 진행, 우수 프로그램 장려, TV프로그램 형태 수입 관리 강화 등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16.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및 방영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广电总局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境外影视剧引进和播出管理的通知
제재일	2012-02-09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2018년 10월 31일 국가광전총국 령 제2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서 설정한 증명서류를 취소하는 데 관한 국가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수정)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⁰⁾ 방송영상방송국, CCTV, 중국 영화그룹, 중국국제TV총공사: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송출 관리규정》(국가광전총국 제42호), 《해외 프로그램 기획 강화에 관한 통지》(광발외자[2002]948호)와 《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외 영화와 드라마를 송출하는 위법 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광발[2009]82호)가 그동안 시행되어 왔고, 시청자들의 문화생활을 더 다양하게 하고 해외 우수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해외 영화와 드라마와 수입과 송출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입항 및 심사승인 관리 강화

- (1) 국가광전총국은 수입자의 입항(立項) 신청은 1년에 2회 접수한다. 접수시간은 매년 1월과 7월의 1일부터 10일까지이다. 수입자는 입항 신청 시 《해외 드라마/영화 수입 입항 기획 신청서》(별첨1 참조)를 작성하여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에 신청하고, 1차 심의를 거쳐 국가광전총국의 심의를 받는다.
- (2) 입항을 통과한 해외 영화/드라마는 규정한 시간 내에 국가광전총국의 후속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계약서(중문/외국어 버전), 판권 증명(중문/외국어 버전) 등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신청서》(별첨2 참조)를 작성하여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에 신청하여, 1차 심의를 거쳐 국가광전총국의 심의를 받는다.
- (3)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고 고화질 프로그램 소스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고화질 영화/드라마를 최우선으로 수입해야 한다. 해외 영화/드라마 1편당 최대 50회로 규제한다.
- (4)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정치적 방향과 격조를 지키고 입항부터 소재와 내용을 엄격히 심의하며 사건에 연루된 소재를 다뤘거나 폭력적이고 저속한 내용의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지 말아야 하는 등 1차 심의 관리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 (5) 해외 영화/드라마가 입항 후, 후속 심의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심의 심사가 통과되지 못한 경우,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일 제작지역, 동일 소재의 프로그램을 1회 변경할 수 있다.

2. 해외 영화 드라마 재계약 후, 재 배급의 심사 승인 관리 강화

10)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 (1)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를 받고 수입한 해외 영화/드라마의 《드라마 배급 허가증》이 만료된 후, 수입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측과 수입 계약 및 판권 위임증을 다시 체결하고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재 배급 가능하다.
- (2) 재계약 후 재수입을 신청하는 해외 영화/드라마는 수입 계약서(중문/외국어 버전), 판권 증명(중문/외국어 버전) 등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재계약 신청서》(별첨3 참조)를 작성하여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에 1차 심의를 신청한다.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관련 내용을 재 심의한 후, 심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국가광전총국에 신청, 심의를 신청한다.
- (3) 국가광전총국은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신청한 수입 재계약 신청 및 내용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시·존별 마지막 월에 심의를 진행한다. 재 배급을 허가하는 해외 영화/드라마에 대해서는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재발급한다.

3. 수입 드라마 송출 관리 강화

- (1) 송출기관은 해외 영화/드라마를 송출할 경우, 국가광전총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과 허가 서류들을 검토해야 하고 영화/드라마 시작 부분에 배급 허가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 (2) 해외 영화/드라마의 경우, 프라임 타임(오후 7시~오후 10시)에는 송출할 수 없다. 매일 송출하는 해외 영화/드라마는 해당 채널 영화/드라마 총 송출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3) 방송국에서 신청하여 국가광전총국의 수입 허가를 받은 해외 영화/드라마의 경우, 우선 먼저 해당 방송국에서 송출한 후, 기타 채널에서 송출 가능하다.
- (4) 국가광전총국의 심의 및 배급 허가증을 받지 않은 해외 영화/드라마의 경우, 프로그램 단막극 혹은 해외 영화/드라마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송출할 수 없다. 해외 영화, 드라마를 삽입해야 할 경우, 최대 3분 이상을 넘을 수 없고 누적하여 이용한 장면은 총 10분 이상을 송출할 수 없다. 해외 영화/드라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분까지 해당 영화/드라마를 삽입할 수 있다.
- (5) 일정한 기간 내에 일부 나라 혹은 지역의 영화/드라마를 빈번하게 송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마/영화 수입 나라별 관리를 강화한다.
- (6)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TV채널에서 해외 영화/드라마를 송출하는 것에 관한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며 관련 법규 위반 채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규를 위반한 상황이 발견되면 성급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송출기관에 《정개(整改)¹¹⁾통지서》를 하달하고 기간 내에 정돈 및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돈 및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진행한 후 180일 내에 또 법규 위반 상황이 발견되면 《법규위반처리결정서》를 하달하는 한편 통보 비평한다. 법규 위반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가광전총국은 《법규 위반 처리결정서》를 하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해당 안전에 대해 통보 비평한다.

본 통지는 통지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과 송출 관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광발사자[1995]547호) 및 《지방 방송국에서 해외 드라마 재송출하는 것을 관리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광발사자[1999]489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11) 정돈 및 개정

17.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管理的通知
게재일	2012-07-09
출처	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영상국(广播影视局), 당위원회 해외선전판공실, 인터넷정보판공실

최근 수년,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은 신형 온라인 문화업종으로서 급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정신문화생활을 제공하고 대중의 문화 건설을 위해 새로운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은 내용과 격조가 저속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선양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도과 규범화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건전하고 진취적인 네트워크 문화를 한층 더 번영시키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광전총국, 정보산업부령 제56호)에 따라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장려]

하나. 건전하고 진취적인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의 제작 장려

- (1) 건전하고 진취적인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은 온라인 문화를 발전 번영시키고 온라인 콘텐츠 구축 사업을 시행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사회대중을 위한 문화상품으로서 반드시 시종일관 정확한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스스로 법률법규와 사회도덕을 준수하고 주류가치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트렌드를 이끌고, 대중을 교육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 (2) 중국 정부는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업체 등 각 기관이 온라인 전파에 적합하고 시대 정신을 구현하며 진선미를 선양하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생산 제작하도록 장려한다.

[관리]

둘.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업체의 진입 관리 강화

- (1)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에 종사하는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심사 수요에 부합되는 국가 또는 성급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업계협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 인재를 보유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콘텐츠 편집 및 심사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법에 의해 방송영상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정보 네트워크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 허가증》을 취득하여 업무 허용범위에 따라 업무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 (2) 생산 제작에 종사하고 자체 사이트에서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동시에 법에 의해 방송영상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과 이를 허가하는 《정보 네트워크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심사]

셋.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콘텐츠의 심사 강화

- (1)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네트워크 운영자 책임제’ 원칙에 따라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해 선(先)심사 후(後)방송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 심사승인 인력을 구성하여 방송예정인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해 콘텐츠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만이 온라인에서 방송할 수 있다.
 1. 웹 드라마 방송 자격이 있는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인터넷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동영상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면 3명 이상의 심사원을 구성하여 콘텐츠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심사에 통과된 후 자사의 콘텐츠 관리 담당자가 재심사 및 서명하여 발급한다. 심사 통과된 모든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인터넷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드라마, 다큐멘터리는 프로그램 타이틀에 심사업체가 작성한 심사 시리얼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전문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 자격을 갖춘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문예(文艺), 오락, 과학기술, 경제, 스포츠, 교육 등 전문 분야 동영상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면 2명 이상의 심사원을 구성하여 콘텐츠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통과된 후 자사 콘텐츠 관리 담당자가 재심사 및 서명하여 발급한다.
- (2)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동영상 프로그램을 전제·업로드하는 것은 동 업체의 자체 제작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며 동 업체에서 동일 기준에 따라 선심사 후방송 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사이트에 동영상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진실한 신분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3)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을 해치는 내용 3.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또는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 4. 민족 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5. 사이버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미성년자의 불법 범죄를 유도하고 폭력, 선정적인 것, 도박, 테러활동을 선양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공민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손상시키는 내용 10. 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금지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 (4)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이 중대한 혁명 및 역사 소재와 관련이 있을 경우 방송영상의 유관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5) 방송영상 행정기관에 등록 및 공시했지만 《영화 상영 허가증》,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와 드라마 등은 온라인에서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구축]

넷.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심사팀 구축 강화

- (1) 국가와 성급 방송영상 행정기관은 중국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와 성급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업체협회를 지도하여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심사원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과 평가 표준은 중국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가 국가 방송영상 행정기관의 가이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정한다.

- (2)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심사원은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업무 교육을 거쳐 시험에 합격해야 만이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3) 라디오·TV 방송기관의 프로그램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중급 직함 이상 인원이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심사원이 되려고 신청할 경우 교육과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

다섯.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 (1) 각 지역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주무부처는 지도 조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방송영상 행정기관이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 콘텐츠 관리업무를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속지 내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고수하도록 지도 및 독촉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건전하고 진취적인 네트워크 문화를 크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심사업무팀과 콘텐츠 점검 메커니즘을 정착시켜 법에 따라 엄격히 사이트를 구축하고 사이트를 문명적으로 운영하며 업계 자율과 사회 감독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
- (2) 방송영상 행정기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업계협회는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1. 각급 방송영상 행정기관은 속지관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콘텐츠의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리감독 역량을 내실 있게 다지고 기술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완비시킨다.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의 관련 관리기준의 시행을 독촉하고 검사해야 한다.
 2.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설립 주체 직무를 이행하고 사회 책임을 고수하며 자사의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절차를 구축 및 완비시켜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관을 엄격히 점검하고 모든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은 일률적으로 선심사후 방송해야 한다.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방송감독제도를 수립하여 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처리한다.
 3.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업계협회는 방송영상 행정기관의 지도하에 업계 자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회원사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전파하도록 유도하며 문명적이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의 심사원 교육과 평가 업무를 잘 하고 관련 업무 메커니즘의 구축과 완비 업무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 (3)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심사 통과된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정보를 자사 소재지 성급 방송영상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자체 심사한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인터넷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드라마, 다큐멘터리는 심사 통과된 프로그램 이름, 내용 줄거리,

심사원과 자사 콘텐츠 관리 담당자가 사인한 프로그램 심사서류 등 정보를 자사 소재지 성급 방송영상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서 개설 및 자체 심사한 전문분야 동영상 프로그램 코너는 심사 통과된 프로그램 코너 명칭, 코너 내용 줄거리 등 정보를 자사 소재지 성급 방송영상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4) 방송영상 행정기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업계협회는 불만신고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대중의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신고를 적시에 수리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

[퇴출]

여섯. 퇴출 메커니즘 강화

(1) 방송영상 행정기관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개설 주체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대해 법에 의해 업무 퇴출 메커니즘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2)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는 방송되는 동영상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규칙을 위반하고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방송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에 대해 방송영상 행정기관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에 의하여 경위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며 5년 내에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에 투자하여 종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벌칙을 내린다.

(3) 규칙을 어기고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을 방송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대해 방송영상 행정기관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에 따라 경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등 처벌을 한다. 규칙 위반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방송TV(广播电视) 관리조례》에 따라 불법 활동 장비 몰수, 불법 소득 몰수, 허가증 말소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18.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보충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完善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管理的补充通知
게재일	2014-01-02
출처	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TV방송국

《웹드라마 및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進壹步加強網絡劇、微電影等網絡視聽節目管理的通知)》(광발〔2012〕53호)가 발표된 이래, 각 지역의 관철 집행 상황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를 규범화함에 있어서 촉진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을 자체 심사 및 자체 방송함에 있어서 심사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동일 프로그램에 서로 다른 버전이 나타난 상황,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자격을 갖추지 않아 일부 편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재편집을 위해 제작자를 연락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 일부 프로그램이 요구에 따라 즉각 등록 신고하지 않은 상황 등이 발생 하고 있다. 관리를 개선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며 내용이 저속하고 격조가 떨어지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선양하는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를 한다.

1. 각 지역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는 관할 지역 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주체적인 직무를 전면 이행하고, ‘선 심사, 후 방송’의 관리제도를 성실히 집행하여 방송 심사를 엄격히 하며, 온라인 전파에 적합하고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며 ‘진·선·미’를 선양하고 대중들이 즐겁게 시청하는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을 생산 제작하는 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발급하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서 제작한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3. 개인이 제작 및 업로드 한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을 중계 방송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생산 제작 기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오로지 개인 정보 인증을 하고 콘텐츠 관리규정에 부합되는 개인이 업로드 한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만을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사용자가 업로드 한 해당 유형의 프로그램을 중계방송 해서는 안 된다.

4. 각 지역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을 생산 제작하는 주요 창작 인력에 대해 핵심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진보적인 소재를 선정하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창작좌담회를 개최하거나 우수 프로그램 수상자를 선정하거나 산업자율과 문화 예술 비평을 하는 등 방식을 취하여 주요 창작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방향을 고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5.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자체 심사 및 자체 방송하는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은 온라인 방송이 시작되기 전, 프로그램 정보 등록 신고와 등록번호 표시 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요구에 따라 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6.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이 방송 된 후, 대중들이 신고 하거나 또는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가 프로그램 내용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 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내려야 한다. 그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비록 문제가 있지만 재편집 후 방송 가능 할 경우, 즉각 프로그램 제작기구와 접촉하여 재편집을 해야 하며, 재편집 된 프로그램은 관련 행정부서의 심사를 통과 한 후 통일된 버전을 형성 한 뒤에야 재 업로드 가능하다.
7.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에서 생산 제작한 온라인 드라마, 단편 영화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의 내용이 라디오·영화·드라마 관련 관리규정을 위반 할 경우, 주무부처는 《라디오·TV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 관리규정(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管理規定)》(광전총국 령 제34호)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각 지역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는 본 《통지》를 관할 지역 내 《정보 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해당 허가증 보유 기관들이 통지에서 제출한 각 요구 사항들을 구체화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4년 1월 2일

19.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

제목	上星综合频道调控政策
게재일	2013-10-20
출처	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관리정책

신화통신 베이징 2013년 10월 20일 소식(바이잉(白瀛) 기자)에 따르면,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근 통지서를 하달하여 2014년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을 확정지었다. 매년 방송되는 해외 판권 수입 방식의 신규 프로그램을 1개로 한정 지었고, 분기별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1개 선별하여 황금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신문출판광전총국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각 위성 종합채널은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매주 평균 30% 이상 시간을 편성하여 뉴스,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생활 서비스,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다큐멘터리, 농민 대상 등 공익성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그중에서 매일 6시에서 다음날 1시 사이 시간대에 적어도 평균 30분씩 중국산 다큐멘터리를 방송해야 하고, 매일 8시에서 21시 30분 사이 시간대에 적어도 평균 30분씩 중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도덕 건설 유형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6시에서 24시 사이 시간대에 방송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신문출판광전총국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그램 등록 신고, 황금시간대 편성, 각종 우수상 평가 선정 등 면에서 우선적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며, 각 TV 위성 종합채널에서 매년 방송되는 해외 판권 수입 방식의 신규 프로그램을 1개로 한정 지었고, 같은 해에는 19시 30분부터 22시 사이 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신문출판광전총국은 무더기로 방송되는 비슷한 유형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거시적인 조정을 진행한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반드시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며 신문출판광전총국은 분기별 평가회의를 통해 우수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1개 선별하여 황금시간대에 편성하여 방송되도록 하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19시 30분에서 22시 30분 사이에 편성되어 방송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통지에 따르면 신문출판광전총국은 방송국의 명절맞이 야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하며 원칙상 중요한 명절기간에 해당 유형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채널은 매일 3개를 넘어서는 안 되며 승인을 받지 못한 방송국의 명절맞이 야회 프로그램과 명절 축하 공연은 편성 방송 되어서는 안 되고 홍보 보도 되어서도 안 된다.

신문출판광전총국 대변인에 따르면, 내년 위성 종합 채널 조정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전문가 및 업계 인사들이 논증에 참여 했으며 최종 목적은 종합채널의 포지셔닝을 더욱 더 확실하게 하고 TV 프로그램 종류를 더욱 더 풍부하게 하여 시청자들의 다양한 시청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저장(浙江)TV방송국 샤천안(夏陈安) 부편집장은 이번 조정 정책이 현재 TV프로그램의 창조성이

부족하고 복제가 심하며 예능이 범람하고 경쟁이 과열하며 소비가 과도한 등 대중들이 주목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핵심을 조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장쑤(江蘇)위성TV 편집실 류위안(劉原) 부주임은 내년 장쑤 위성 TV는 중국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도덕 건설, 생활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더욱 더 추가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자사 프로그램의 독창적인 우세를 고수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다각화, 소재의 다양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탐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TV방송국 쉬타오(徐滔) 부편집장은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의 방송을 추가하는 규정은 미디어의 책임을 반영했고 성(省)급 위성TV의 프로그램 유형은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칭(重慶) 위성TV 장쉬안(張萱) 총감독은 새로운 규정이 위성TV 전파 주류의 가치관인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적 문화 제품을 제공하는 직무를 더욱 더 명확히 했고 이와 더불어 위성TV 간의 선의의 경쟁과 프로그램의 창의력 향상에 적극적인 촉진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의 이행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게재일	2014-09-02
출처	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²⁾ 라디오TV국

《라디오TV 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국무원 령 제228호),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互聯網視聽節目服務管理規定)(광전총국, 정보산업부 령56호), 국가광전총국 《인터넷 전파 영화·드라마 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關於加強互聯網傳播影視劇管理的通知)》(광발〔2007〕122호) 등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는 해외 영화 드라마는 법에 의거해 《영화상영허가증(電影片公映許可證)》 또는 《드라마배급허가증(電視劇發行許可證)》을 취득해야 한다. 온라인 문화를 번영 발전시키고 중국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이어받고 선양함과 더불어 세계의 우수한 문화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 정보 네트워크 전파 해외 영화·드라마(이하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로 약칭) 관리 강화 관련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중국 민족 문화의 주체적 지위를 유지함과 더불어 정보 네트워크 전파 공급용으로 적당한 량의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여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정신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킨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내용이 건강하고 제작수준이 높으며 ‘진·선·미’를 선양하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여 방송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온라인에서 방송되는 해외 영화, 드라마는 법에 의거 신문출판광전부서에서 발급한 《영화상영허가증》 또는 《드라마배급허가증》 등 승인 문서를 취득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위임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취득해야 한다. 《영화상영허가증》 또는 《드라마배급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영화·드라마는 일괄적으로 온라인에서 방송될 수 없다.
3. 법에 의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급한 《정보네트워크전파시청프로그램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을 취득하였고 인가 항목 중에 ‘제2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제5항: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청프로그램의 취합, 방송 업무’가 포함된 웹사이트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할 수 있다.
각 사이트는 본 사이트 방송에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사이트에서 방송함과 동시에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기타 영화·드라마 방송 자격을 갖춘 허가증 소지 사이트에 판매하여 방송하도록 할 수 있다. 각 사이트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기타 사이트에 판매하여 방송되도록 할 수 없다.
단일 사이트에서 한 해 동안 수입하여 방송하는 해외 영화·드라마의 전체 수량은 해당 사

12)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이트가 전 년도에 구입하여 방송한 중국산 영화·드라마 전체 수량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각 사이트에서 수입 한 해외 영화·드라마의 내용과 스타일은 건강하고 진보적이어야 하고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방송 관리규정(境外電視節目引進、播出管理規定)》(광전총국 령 제42호) 제15조 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1. 중국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중국의 국가 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 3.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중국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4. 중국의 민족 원한 및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중국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중국의 민족 풍습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 사이비 종교(邪教)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중국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국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중국의 사회公德 또는 중국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10. 기타 중국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한다.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는 사이트는 본 사이트의 연간수입계획을 전년도 연말 전으로 성(省)급 신문출판광전국의 제1차 심사를 거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신고(중앙 직속 기관 소속 사이트는 직접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수입 계획 중인 영화·드라마의 명칭, 회차, 생산 지역, 저작권자, 내용 개요 등 정보 및 해당 사이트가 전 년도에 중국산 영화·드라마를 구입한 관련 증명서가 포함 되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매년 2월 20일 전으로 각 사이트에서 신고한 전체 계획 요구에 부합되는 수입 계획중인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를 관련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정보 통합등록플랫폼(網上境外影視劇引進信息統壹登記平臺)’에 공표한다.

각 사이트에서 만일 한 해 동안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의 수입 계획에 대해 조정을 할 경우, 매년 8월에 조정 후의 수입 계획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매년 9월 30일 전으로 조정 후의 수입 계획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를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발포한다.

6.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발포된 관련 정보에 따라 각 사이트는 연간 수입 계획에 따라 저작권자와 수입 협의서를 체결하며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수입하는 관련 샘플, 계약서, 판권 증명서, 줄거리 개요 등 자료를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광전부서에 제출하여 내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의에 통과 할 경우, 《드라마배급허가증》(정보 네트워크 전용으로 표기)을 발급하며 더불어 판권 시작과 종료 일자를 명시한다. 중앙 직속 기관 소속 사이트에서 수입하는 해외 영화·드라마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내용 심사를 받는다.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의 내용 심사 기준은 영화, 드라마의 내용 심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7.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수입 한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는 모두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각 업체에서 해외 영화·드라마의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구입 한 후, 계약 체결 후의 근무일 3일 안에 수입한 해외 영화·드라마의 명칭, 회차, 판권 시작과 종료 일자, 내용 개요, 내용 심사 기관 등 정보를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정보 통합등록플랫폼’에 업로드 해야 한다. 아래의 몇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 (1)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여 영화관에서 상영 되고,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별도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취득한 해외 영화
 - (2) 《드라마배급허가증》을 취득하여 TV방송국에서 방송되고,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별도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취득한 해외 드라마
 - (3)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급한 수입 음반·영상 제품 승인 문서를 취득하여 이를 국내에서 복제, 발행하고,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별도로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취득한 해외 영화·드라마 음반·영상 제품
 - (4) 본 규정에 따라 수입한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
8.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각 업체에서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정보 통합등록플랫폼’에 업로드 한 관련 정보를 검토 한 후, 프로그램 등록 일련번호를 배분하며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해외 영화·드라마 리스트를 신문출판광전총국 정부 사이트에 공지한다.
- 각 사이트에서는 해외 영화·드라마를 방송 할 시, 프로그램 타이틀에 해당 등록 일련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각 사이트는 플랫폼에 등록 및 공지가 되지 않은 해외 영화·드라마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9. 신문출판광전부서의 승인을 거쳐 수입되고, 중국 국내 영화관, TV방송국에서의 방영권을 이미 취득한 해외 영화·드라마, 또는 중국 국내에서의 복제, 발행권을 이미 취득한 해외 영화·드라마 음반·영상 제품에 대해, 웹사이트, TV방송국, 출판사 등 각 업체에서 만일 해당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을 재구입 할 경우, 연간 수입 계획에 따라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신고 할 필요 없이 직접 계약하여 구매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신문출판광전부서의 심의를 통과한 프로그램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 음반·영상 제품 출판업체가 해외 영화·드라마 음반·영상 제품을 수입 시, 만일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만 수입 할 경우, 본 통지에서 정보 네트워크 전파에 전문 사용되는 해외 영화·드라마의 수입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10. 2015년 3월 31일 전으로, 각 사이트는 본 사이트에서 방송 중인 해외 영화·드라마의 명칭, 회차, 구매 계약서, 판권 시작과 종료 일자, 내용 개요, 내용 심사 상황 등 정보를 ‘온라인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정보 통합 등록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등록해야 한다. 2015년 4월 1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영화·드라마는 온라인에서 방송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등록을 마쳤지만 신문출판광전부서로부터 수입 승인 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온라인에서 방송 중인 해외 영화·드라마에 대해 각 사이트는 더 이상 판권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판권기간이 만료 된 후, 더 이상 방송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21.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开展网上境外影视剧相关信息申报登记工作的通知
게재일	2015-01-19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최근 ‘인터넷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정보 통합등록플랫폼’ (이하 ‘통합등록플랫폼’ 으로 약칭함) 이 기본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일부터 각 신문출판광전국은 관할 구역 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들이 통합 등록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해외 영화 드라마 관련 정보 신고 등록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하길 바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영화 드라마 방송 자격을 갖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정보 인터넷 전용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계획 신고방법》에 따라 2015년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리한다. 각 업체는 반드시 통합 등록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다음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한다.

- (1) 웹사이트에서 2015년 수입 예정인 해외 영화 드라마의 명칭, 소재, 산지, 시간(횟수), 제작진, 시놉시스 등 정보를 작품별로 작성한다.
- (2) 웹사이트에서 이미 구매하여 2014년 신규 온라인 방송된 중국산 영화 드라마의 명칭, 소재, 시간(횟수), 온라인 서비스 일자, 방송 인터넷 주소 등 정보를 작품별로 작성하고 구매 계약서의 스캔본을 업로드한다.

각 업체는 작성 완료 후, 자동 생성된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계획 온라인 신고표’, ‘구입 방송 중국산 영화 드라마 정보 집계표’ 를 온라인 프린트하여 해당 법인의 직인 날인 후(종이로 된 중국산 영화 드라마 구매계약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광전국(중앙 직속 기관에 소속된 웹사이트의 신고 자료는 직접 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사(司)에 제출한다)에 제출한다. 각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신고 자료의 마감 일자는 2015년 2월 10일이다.

2. 각 성의 신문출판광전국은 웹사이트의 신고 자료를 접수 받은 후, 《정보 인터넷에 전용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 신고 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 계획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1차 심사 의견을 작성한다. 1차 심사 의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1) 웹사이트에서 수입 신고한 해외 영화 드라마가 소재 및 내용 등 면에서 관리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
- (2) 웹사이트에서 작성한 중국산 영화 드라마의 구입 방송 정보의 사실 여부
- (3) 웹사이트에서 수입 신청한 해외 영화 드라마 수량이 중국산 영화 드라마 구입 방송 수량의 30% 이내인지 여부(횟수를 단위로 하고 한 회당 45분으로 계산함).

각성 신문출판광전국은 1차 심사 완료 후, 자동 생성된 각 업체의 ‘인터넷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 신고표’, ‘구입 방송 중국산 영화 드라마 정보 집계표’ 를 프린트하여 직인을 날인 후 2015년3월10일 전으로 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사(司)에 제출한다.

3. 영화 드라마 방송 자격을 갖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해외 영화 드라마 정보 등록 관리방법(网上境外影视剧信息登记管理办法)》의 요구에 따라 자사의 온라인 방송중인 해외 영화 드라마에 대해 온라인 등록을 진행하도록 하며 등록 마감일자는 2015년3월 31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방송중인 해외 영화 드라마 등록 범위에는 각 업체가 2014년12월31일 전에 이미 계약 완료 수입되어 이미 온라인에서 방송된 해외 영화 드라마 등이 포함된다.

각 업체는 반드시 종합 등록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방송중인 영화 드라마의 명칭, 산지, 시간(횟수), 관련 기간, 시놉시스 등 정보를 작품별로 온라인 작성하고 수입 계약서, 관련 증명서, 본 업체 내용 심사 의견의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4. 2015년1월1일부터 모든 신규 온라인 방송되는 정보 인터넷 전용 해외 영화 드라마는 반드시 《온라인 해외 영화 드라마 관리 관련 규정을 이행 강화에 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통지(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신광전발[2014]204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절차 인가 신청을 받은 후에야 온라인에서 방송될 수 있다.

그중에서 2014년12월31일 전에 이미 계약 완료 수입되어 이미 온라인 방송 되고 있으나 일부 회차가 2014년 연말 전에 방송 완료되지 않은 해외 드라마에 대해 만일 웹사이트에서 2015년1월1일 후 계속하여 나머지 회차를 방송할 경우, 해당 드라마는 각 웹사이트의 2015년 해외 드라마 수입 계획에 포함되며 나머지 회차는 2015년 해외 드라마 수입 계획 지표를 차지하게 된다.

5. 통합 등록 플랫폼의 로그인 주소는 <https://211.146.10.133>(반드시IE브라우저 사용해야 함)이고 로그인 시 반드시 행정관리부처에서 일괄 발급한 U-key를 사용해야 한다.

U-key를 처음 사용하기 전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며 각 업체는 <http://jmba.tv.cn/guide.rar>를 방문하여 관련 드라이버와 설치 가이드를 취득할 수 있다. U-key사용자 초기 PIN코드는111111이다. 각 업체의 통합 등록 플랫폼 아이디와 ‘웹 드라마, 마이크로 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정보 등록시스템(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信息备案系统)’ 아이디는 일치하며 초기 비밀번호는 111111이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관공청
2015년 1월 19일

22.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真人秀节目管理的通知
게재일	2015-07-22
출처	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관리정책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15년 7월 22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공표한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真人秀节目管理的通知)》(이하 《통지》로 약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TV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인기가 날로 상승하여 위성 TV 종합채널의 중요한 프로그램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 광범한 시청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시청 선택을 제공하였다. 다수의 TV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정확한 지향성과 건강한 내용으로 사회적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긍정에너지의 최고봉에도 오르려 하지 않고 부정에너지의 마지노선도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으며 시청률이 높으나 가치의 선도가 부족하며 일부는 심지어 잘못된 가치관을 전파하거나 저속하게 나아가 비판 여론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현재 일부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대한 유도과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의 과도한 오락화와 저질화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전형 업그레이드와 개선 향상에 노력하여 사상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진선미를 선양하며 긍정에너지를 전달하여 긍정적인 교육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자발적으로 녹아들어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의 가치 선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기획과 실행 등 각 단계에서 모두 코너별 규칙, 상황 스토리, 캐릭터 언행 등을 통해 발랄하고 생동감 있게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찬양해야 할 것과 부정적이고 반드시 반대해야 할 것을 알려주어 훌륭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도덕 건설, 짝 짓기 등 유형의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갈등을 격화시켜 나쁜 현상과 비이성적인 정서를 확대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시험’, ‘테스트’의 명의로 인위적인 ‘나쁜 인간’ 사건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의 게스트는 도덕성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스캔들과 나쁜 행적이 있거나 마약, 성매매 등 불법 범죄행위가 있는 자를 프로그램 제작에 섭외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게스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기준에 부합되도록 엄격히 심사하여 잘못되고 부당한 언행이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2. 뜨거운 현실 생활에 밀착하고 사상 문화 내용과 사회적 의의를 발굴해야 한다.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굳건히 차이나 드림을 테마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중국의 위대한 개혁 개방의 과정과 대중의 분투와 창조를 적극 반영하며 대중이 사회 문제와 생활 속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적극 추구하여 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얻도록 인도하여 사상 계발, 심령 온화, 인생 수양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현실 및 대중과 단절된 지루한 게임과 사치스러운 향연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하고 프로그램이 뿌리 없는 부평초, 무병한 신음소리, 영혼 없는 육체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사회에 경솔한 심리 상태와 퇴폐적이고 활기가 없는 풍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3.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우수한 작품을 생산하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각급 광전부처는 뚜렷한 중국 특색, 중국 스타일, 중국 기상을 갖춘 창작 프로그램 포맷을 적극 장려하고 당대 예술 이념과 현대 기술 수단을 서로 융합한 통합 혁신을 강력하게 제창하며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 수량을 적당하게 통제하고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중화 문화 요소와 중화 미학 정신을 충분히 이용하여 수입한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현지화 개조를 진행하여 나를 중심으로 한 창의력과 개혁을 굳건히 해야 한다.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고 해외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의존 심리를 벗어나 맹목적인 수입을 단호하게 시정하고 협력 방식의 편법으로 수입한 현상에 대해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

4.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고수하고 일반 대중에 관심을 가지고 과도한 스타효과를 피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스트를 확정 짓고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대중의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에 의존하여 시청률 상승효과’를 노리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단순히 스타의 성향에 의존하는 것을 시정하며 프로그램이 스타 대결과 부를 자랑하는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높은 출연료와 높은 비용의 폐풍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중앙 ‘8항 규정’의 요구를 성실하게 관철시켜 겉치레와 사치스러움을 제거하고 검소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고집해야 한다.

5. 건강한 격조와 품위를 고수하며 저속하고 과도한 오락화 경향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의 본질은 시대정신과 생활 본질을 반영하는 리얼 TV 여야 하고 저속한 오락 쇼장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리얼과 진정성을 반영해야 하고 사람의 특정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활동과 리얼한 감정을 반영하고 사물 발전과 인간관계의 일반적 규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극적인 효과를 위해 사태의 발전을 일부러 간섭하거나 생활 논리를 위배하고 일상생활 경험과 크게 대조되는 코너와 ‘불거리’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진실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혹을 불리일으켜서는 안 되며 특히 스타 게스트가 가짜 쇼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핵심가치관과 공서양속을 위배한 프로그램 규칙과 저속한 우스개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참여를 최대한 줄이고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소수의 프로그램에 대해 상업화, 성인화 및 과도한 오락화의 불량한 경향 및 미성년자의 권익을 해치는 현상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6. 관리와 조정을 확실히 강화하고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광전총국은 상기 원칙에 따라 각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심사를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결부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시간대에 진입’ 하는 관리이념에 따라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 등록 신고, 각종 우수상 선정 등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것을 제창하고 열등한 것을 억제하며 과학적인 조정을 진행한다. 우수한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가치와 의미가 부족한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을 억제하며 내용이 저속하고 해로운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대해 단호히 시정하고 단속한다. 각 성급 신문출판 광전행정부서는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방송 기관에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을 개선 향상시키도록 독촉 지도해야 하며 상부에 신고 등록된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각급 라디오 TV 청취 시청 기관은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문제를 발견 하면 즉각 보고하고 즉각 경고하며 즉각 시정하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

23.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 기획 구축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原创视听节目规划建设和管理的通知(新广电发〔2016〕198)
게재일	2016-09-20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 관리정책

신광전발(新广电发)[2016] 198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³⁾ 신문출판광전국: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管理的通知)>(광발[2012] 53호),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 개선에 관한 추가 통지(关于进一步完善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管理的补充通知)>(신광전발[2014]2호)를 발표하여 실행한 후, 각 지역 신문출판 광전부서와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의 콘텐츠 품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 업계가 건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창작 영상 프로그램의 품질을 더 향상하며 사상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고 예술성이 우수하며 훌륭하게 제작한 작품으로 대중들의 정신적인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터넷 오리지널 영상 프로그램의 창작과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초를 선양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전파한다.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다양한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은 온라인 문화예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각급 신문출판 광전행정부서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 생산하는 문화 예술 사업의 중심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정책적 지원, 자금 지원, 평가 표창, 전시 송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업체와 주요 창작인력이 창작 과정에서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을 지향하고 대중들의 수요, 사회적 이익, 작품의 품질과 의미를 중요시하며 온라인 전파 규칙을 잘 알고 시대적 발전에 따라 현대 중국의 가치 관념을 전파하고 중화문화의 정신을 보여주며 중국인의 심미적 추구를 반영하고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 등을 통합한 우수한 온라인 영상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2.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기획 지도를 강화하여 명품 프로그램을 더 많이 창작한다.

각급 신문출판 광전부서는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참신한 형식, 현실 반영,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여

13)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양질의 명품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창작하고 전파하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 다채롭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국가와 성급 신문출판 광전부서는 중점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 사이트는 중점적인 인터넷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명칭, 제작기관, 소재, 시간 및 최소 1,500자의 줄거리와 최소 300자의 의미 해석 등 정보를 창작 기획단계에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정보 등록시스템(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信息备案系统)”에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중대형 소재 혹은 정치, 군사, 외교, 국가안보, 통일전선, 민족, 종교, 사법, 공안 등 특수 소재의 프로그램을 촬영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주무부서 혹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가와 성급 신문출판 광전부서는 제때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프로그램 소재, 사상성, 예술성 등을 심의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사이트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여 명품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 조건 중의 하나를 충족하는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 영화 및 웹에서 최초로 방영하는 영화 드라마 유형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문화예술(종합예술), 예능,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 영상 프로그램은 중점적인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 가)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투자를 유치하여 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 나)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사이트(클라이언트)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계획하는 프로그램
- 다) 사이트 회원에게 우선먼저 방영할 것을 계획하는 프로그램
- 라) 5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한 웹드라마 혹은 1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한 웹 영화(마이크로무비)
- 마)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기타 중점 온라인 창작 영상 프로그램

3. 업계 조직의 자율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터넷 오리지널 프로그램 콘텐츠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국가와 성급 신문출판 광전행정부서는 각자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산업 협회의 자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치적으로 신뢰성이 있고 예술적 소양이 높으며 온라인 문화예술 분야에 익숙하고 업계에서 유망한 전문가를 발굴 및 섭외하여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 심의 전문가 풀을 구축 및 완비하여 인터넷 시청 사이트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해당 사이트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심의 및 심사하도록 전문가 풀에서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4. 업계 관리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여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성급 신문출판 광전행정부서는 현지 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편집장 책임제를 구체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여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기획, 창작 생산, 심사 등 과정을 심사하도록 한다.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콘텐츠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중점적인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

로그래를 업로드하기 전에 콘텐츠를 표본 조사해야 한다.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방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당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업체에 대해 그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법적으로 충고 담화, 시정 명령, 행정처벌 등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처리하도록 한다.

5. 문화예술 평론 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각급 신문출판 광전행정부서는 문화예술 평론의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 생산에서의 중요한 인도 역할을 중요시해야 하고 문화예술 평론 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업계 협회, 관련 업체, 학술기구, 전문가 학자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역사적, 대중적, 예술적, 미학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 감상하고 진실과 윤리를 밝히며 우수한 작품이 더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 본보기와 모범이 되도록 하는 한편 프로그램 창작 전과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제때에 지적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아 인터넷 오리지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심미적 가치의 지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24.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게재일	2016-04-25
개정일	2021-03-23
출처	국가라디오TV총국(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방송관리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령 제6호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은 2015년 11월 23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심사 통과되었고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4월 25일

국가라디오TV총국령 제8호

<국가광전총국의 제2차 부문 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20년 12월 31일 국가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표하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네천시(聂辰席)

2021년 3월 23일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정연한 발전을 촉진하며 대중과 관계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이익과 공공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수립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칭하는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란, TV, 휴대폰 등 각종 고정, 휴대용 전자장비 등을 수신 단말기로 하고 LAN 및 인터넷으로 가설한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혹은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지정 방향 송출 루트로 하여 대중들에게 라디오방송·TV프로그램 등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사설망 모바일 TV, 인터넷 TV 등 형식으로 콘텐츠 제공, 통합 송출, 전송 배포 등 활동이 포함된다.

제3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는 전국의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할 때, 대중들에게 서비스하고 사

회주의에 서비스하며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 긍정 에너지를 선양하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자발적으로 헌법,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더 우수한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 대중들의 정신생활을 더 다채롭게 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산업 조직에서 업계 자율, 인도,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대중들이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장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설립

제5조 콘텐츠 제공, 통합 송출 제어, 전송 배포 등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은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업무 유형, 서비스 내용, 전송 네트워크, 커버 범위 등에 따라 분류 별로 발급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업무 지도 목록은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 신청 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가) 법인 자격을 구비한 국유 독자 혹은 국유업체가 지분을 지배하는 업체
 - 나) 건전한 프로그램 콘텐츠 편집 심사, 안전한 송출 관리제도와 안전한 보호 조치 구비
 - 다) 업무에 적합한 기술역량, 사업장과 관련 자원 보유
 - 라)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 보유
 - 마) 기술방법은 국가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
 - 바)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정한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전반 기획, 분포 및 업무 지도 목록에 부합
 - 사)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조건
- 외국인투자 독자(獨資)회사는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콘텐츠 제공 서비스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승인하여 설립한 지(시)급 이상의 라디오TV 방송 기관 혹은 중앙 뉴스업체 등 기관이어야 하고 2,0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콘텐츠 비축과 30명 이상의 프로그램 전문 편집 심사 인력도 갖춰야 한다.

통합 송출 제어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승인하여 설립한 성, 자치구, 직할시급 이상의 라디오TV 방송 기관이어야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전송 서비스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서에서 승인하여 합법적인 기초 네트워크 운영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고 또한, 일

정한 규모의 공공정보 기초 네트워크 시설 자원과 유저들에게 장기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명예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제8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TV라디오 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중앙 직속기관은 직접 국무원 TV라디오 주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TV라디오 주무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초보적인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초보적인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서류를 국무원 TV라디오 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TV라디오 주무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 혹은 초보적인 심사 의견을 받은 날부터 40일 내에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중에 전문가 평가 심의 시간은 20일이다. 허가할 경우, 신청자에게 <정보인터넷방송시청 프로그램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불허할 경우, 서면 형식으로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내에 본 규정의 제6조, 제7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로 본 규정의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갱신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에 기록한 사업 유형, 서비스 내용, 전송 네트워크, 커버 범위 등 사업 항목과 주주, 지분 구조 등 중대형 사항을 변경할 경우, 서전에 본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명칭, 사업장, 법인대표를 법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5일 내에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합자, 합작 형식으로 프로그램 생산 판매 매입, 광고, 시장 홍보, 사업 협력, 요금결산, 기술 서비스 등 경영성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합자, 합작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15일 내에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무 지도목록에 명기된 업무 분류 외 신제품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광전총국에 신고하여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은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말소한다.

특별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종료를 신청할 경우, 60일 전에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말소한다.

신고하지 않고 연속 60일 동안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기존의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업무 종료로 처리하고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3장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규범

제13장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에 기록한 사항에 따라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적합한 보안관리 제도, 보장체계와 기술보장 수단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TV라디오 주무부서에서 설립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신호 접속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15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TV라디오 주무부서의 관리규정과 관련 표준 시행 규범에 따라 서로 연결해야 하고 연결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술 시스템과 단말기 제품은 국가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

어떠한 업체도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서버 관리 의뢰, 네트워크 전송, HW/SW 기술 지원, 수급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은 법률, 행정법규, 부서 규칙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실행을 거부 혹은 파괴하도록 선동
- 나) 국가 통일, 주권과 완전한 영토에 해를 끼치고 나라의 기밀을 누설하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나라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
- 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훼손하고 민족적 원한, 민족적 차별대우를 선동하며 민족 풍습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역사와 민족 역사 인물을 왜곡하고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며 민족 단결에 해를 끼침
- 라) 종교 미신을 선양하고 종교 화목에 해를 끼치며 종교인의 종교 감정을 상하게 하며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단결을 훼손,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선양
- 마) 사회도덕에 해를 끼치고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며 사회적인 안정을 파괴하고 음란, 도박, 마약을 선양하며 폭력, 테러를 과장되게 묘사하며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방법을 전수
- 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를 끼침
- 사) 타인을 모독, 비방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유포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

해

아)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

제18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선전하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은 국가 TV라디오 영화 관련 관리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송출하는 시사 영상 프로그램은 지(시)급 이상의 라디오TV영화 송출기관에서 제작하고 송출하는 뉴스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불법 방송TV 채널 프로그램, 불법 영상 사이트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공급 서비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중계, 링크, 집합, 통합해서는 아니 된다.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저작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판권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사업을 책임지고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조직, 편집, 심사해야 한다.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은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에서 설립한 통합 송출제어 플랫폼을 통해 일괄로 통합된 후, 유저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합법적으로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콘텐츠 제공 플랫폼의 프로그램이 본 규정의 제16조 조항과 판권 관리 요구사항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송출 전에 심사해야 한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프로그램 심의, 안전 송출 등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고 프로그램 전문 심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송출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콘텐츠 개요, 송출시간, 소요시간, 출처 등 정보를 최소 60일 동안 보관해야 하고 라디오 TV 주무부서의 합법적인 조회에 협조해야 한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하며 라디오TV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라디오TV 주무부서의 관리 요구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제21조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는 통합 송출제어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책임져야 하고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의 일괄 통합과 송출 모니터링을 책임져야 하며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클라이언트, 과금, 판권 등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는 통합 송출제어 플랫폼에 접속한 프로그램에 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프로그램 소스를 차단하고 라디오 TV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는 안전 송출제어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고 기술 보안 관리제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 송출제어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라디오TV 주무부서의 관리규정에 따라 송출제어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한다.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는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때,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확인해야 하고 우수한 신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송출한 프로그램 신호를 무단으로 삽입 송출, 차단,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송출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승인한 송출 로고,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제24조 전송 배포 서비스 업체는 라디오TV 주무부서의 관련 안전 전송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안전 전송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온라인 전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송 배포 업체는 전송 배포 서비스 제공 전에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의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통합 송출제어 플랫폼에서 발송한 프로그램 신호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클라이언트, 과금, 판권 등 제어신호를 무단으로 삽입 송출, 차단,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성급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서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고 대중들의 감독 제보 제도를 구축하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제때에 불법 부정당 콘텐츠를 처리하지 않고 관리감독 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주요 책임자, 법인대표, 편집장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6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무단으로 진행할 경우, 현급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 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27조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송출하는 콘텐츠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 관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현급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가) <정보인터넷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에 기록한 조항에 따라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나) 불법으로 시사 영상 뉴스 프로그램을 송출할 경우

다)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에서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일괄

통합과 송출 제어를 진행하지 않거나 혹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클라이언트, 과금, 판권 등 관리를 책임지지 않을 경우.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 관리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가)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서 불법 방송TV 채널 프로그램, 불법 인터넷 시청 사이트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중계, 링크, 집합, 통합할 경우

나)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에서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송출한 프로그램 신호를 무단으로 삽입 송출, 차단, 변경할 경우

다) 전송 배포 업체가 통합 송출제어 플랫폼에서 발송한 프로그램 신호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클라이언트, 과금, 판권 등 제어신호를 무단으로 삽입 송출, 차단, 변경할 경우

제30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를 경고할 수 있고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전에 심사 승인 없이 주주, 지분 구조 등 중대한 조항을 변경할 경우

2)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명칭, 사업장, 법인대표를 법에 따라 변경한 후, 제때에 기존의 허가증 발급 기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3) 새로 추가한 신제품 혹은 새로운 업무를 국가광전총국에 보고하고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4) 합자, 합작 형식으로 프로그램 생산 판매 매입, 광고, 시장 홍보, 사업 협력, 요금결산, 기술 사업 등 경영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때에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5)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와 전송 배포 서비스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가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본 규정에서 요구한 국가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적합한 안전 송출제어, 프로그램 콘텐츠, 안전 전송 등 관리제도, 보장체계를 구축, 완비하지 않을 경우

7)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송출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송출 로고,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8)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판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프로그램 송출 정보를 저장하지 않거나 혹은 라디오TV 주무부서의 조회에 협조하지 않고 또한, 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발견 시 제때에 삭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혹은 라디오TV 주무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9) 통합 송출제어 서비스 업체가 통합 송출제어 플랫폼의 프로그램에 본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도 프로그램 소스를 제때에 차단하거나 라디오TV 주무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술 시스템과 단말기 제품이 국가 관련 표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11)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사설망 및 시청각 프로그램 지정 방향 전파 서비스 관련 서버 관리 의뢰, 네트워크 전송, HW/SW 기술 지원, 수금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12)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설립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에 필요한 신호 접속 조건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 13)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같은 해에 3회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 14) 라디오TV 주무부서에서 합법적으로 감독 조사하는 것을 거부, 대항, 지연하거나 혹은 감독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제공할 경우
 - 15) 허위증명, 서류 등 수단으로 <정보네트워크 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발급받을 경우.
- 위 15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허가증 발급기관은 <정보네트워크 방송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31조 라디오TV 주무부서 관계자의 직권남용, 직무태만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영상 및 오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 통합 및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제공하고 타인에게 영상 프로그램 업로드 송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라디오TV총국, 공업정보화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한다.

제33조 본 규정을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7월 6일 라디오TV영화총국에서 발표한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법(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국가라디오TV영화총국 제39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25. 드라마 및 관련 광고 방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规范电视剧及相关广告播出管理的通知
제재일	2016-02-25
출처	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신광전판발(新广电办发)[2016]21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¹⁴⁾ 신문출판광전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 홍보국, CCTV방송국, 중국교육TV방송국:

각급 라디오TV영화 행정부서, 라디오TV 방송기관, 인터넷 시청 사이트는 중국의 드라마와 광고 방영 규정을 실행하면서 양호한 방송 질서를 유지하고 드라마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와 광고가 비규범적으로 방영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대중들의 정상적인 시청 권익을 유지하고 드라마와 관련 광고 방영 관리 사업을 더 규범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직무를 더 명확하게 하고 관리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각급 라디오TV영화 행정부서, 라디오TV방송기관, 인터넷 시청 사이트는 전반적인 정세의 의식과 책임 의식을 증대하고 드라마 관리와 방영 과정에서 <방송TV 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와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电视剧内容管理规定)>의 관련 규정을 실행한다. 각급 라디오TV영화 행정부서는 현지 관리 원칙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의 드라마 내용 심사조사, 제작 허가증 발급 허가증 관리와 발급 직무를 이행한다. 각급 라디오TV 방송기관, 인터넷 시청 사이트는 방영 전 심사, 재방송 재심사 원칙을 이행하며 콘텐츠 심사조사, 드라마 제작 및 배급 허가증 검사 직무를 이행한다.

2. 허가증 발급 기관, 배급 허가증 번호, 드라마 제작 허가증 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심의에 통과한 드라마는 매회 드라마의 제목이 나타나는 화면에 글자체가 뚜렷하고 글자크기가 적합한 간체로 화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가로 두 줄로 된 드라마 행정허가의 발급기관과 배급 허가증번호를 표시하며 표시시간은 최소 3초 유지해야 한다.

예시:

중국에서 허가증을 발급한 중국산 드라마 제목 표시 문자:

허가증 발급기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배급 허가증번호: (광극)극심자(2015)제012호

성급 행정관리부서에서 허가증을 발급한 중국산 드라마 제목 표시 문자:

허가증 발급기관: 저장성(浙江省)신문출판광전국

14)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배급 허가증번호:(절)극심자(2015)제036호

매회 드라마의 엔딩 화면에 해당 드라마의 <드라마 제작 허가증(갑, 을종)> 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 규범을 2016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3. 드라마 홍보 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각급 라디오TV 영화 행정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의 드라마 홍보 행위에 대해 관리 직책을 부담한다. 드라마 홍보 활동에 표시된 문자, 포스터, 홍보 영상 및 비하인드 스토리 등 홍보물에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에서 금지한 대사, 내용, 화면, 줄거리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 홍보물에 배급 허가증을 발급 받은 버전 외의 대사, 내용, 화면, 줄거리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각급 라디오TV 방송기관, 인터넷 시청 사이트와 드라마 제작사는 “완전판”, “무삭제판”, “무취소판”, 및 “삭제 내용” 등 컨셉으로 과대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광고 방영 행위를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각급 라디오TV 방송기관은 중국의 <방송TV 광고방영 관리방법(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광전총국령 제61호), <방송TV 광고방영 관리방법의 추가 규정(〈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的补充规定)>(광전총국령 제66호) 관련 규정에 따라 매회(45분 기준) 드라마의 중간에 어떠한 형식이든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프로그램 혹은 코너든 삽입해서는 안 되며 드라마 화면에 어떠한 형식의 프로그램 혹은 코너의 예고편이든 방영해서는 아니 되며 매회 드라마의 시간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광고를 변칙 삽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드라마 제목 화면이 나타난 후, 줄거리가 시작되기 전, 드라마 줄거리가 끝난 후, 엔딩 자막 전 및 연출자 명단 등 엔딩 자막 내용을 송출할 때 어떠한 형식이든 광고 방영을 금지한다.

성급 라디오TV 영화 행정부서는 관할 구역의 라디오TV 방송기관, 인터넷 시청 사이트에 이 통지를 준수하도록 전달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2016년 2월 25일

26.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참여 관리 강화 문제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视听节目持证机构参与“全国中小企业股份转让系统”管理有关问题的通知
게재일	2016-05-10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⁵⁾ 신문출판광전국: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을 보유한 기관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전국 주식양도시스템”이라 함) 참여 심사관리 업무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광전총국, 정보산업부령 제56호)에 근거하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전국 주식양도시스템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현지 성급 신문출판 광전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고 성급 신문출판 광전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전국 지분 양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2.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전국 주식양도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2년 내에 중대한 부정당 문제가 없음
 - 나)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 다) 건전하고 적극적인 영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송출하고 신문출판 광전관리부서의 관리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며 업계 자율화를 자발적으로 진행
 - 라) 신청서류를 완비
3.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서의 거래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가) 주식 양도는 외국자본이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나) 회사는 투자자와 거래 의향에 합의한 후, 조절하려는 주식 구조 비율이 다음의 상황에 도달할 경우,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신문출판 광전 관리 부서에서 심사 승인 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만 거래를 마칠 수 있다. (A) 지분 양도로 인하여 회사 지분에 변화, (B) 투자자와 협력하는 자가 보유한 권익의 누적 증가 혹은 감소한 비율이 회사 주식의 5%에 해당

15)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4.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에서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신청 보고서
 - 나) 회사 정관, 사업자등록증, 현 단계 지분 구성, 법정 대표자의 기본사항을 포함한 기업 기본 정보
 - 다) 시스템 등록 방법
 - 라) 이 통지 제3조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방법 실행
 - 마) 신청 조건에 충족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기타 서류
5.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한 기관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이미 등록한 경우,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고 심사 수속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서 주식 거래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 승인 수속을 다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총국은 해당 기관을 위한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갱신 수속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6.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 등록한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 보유 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2016년 5월 10일

27.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16-11-04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제1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보안과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온라인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決定)>, <국무원에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 작업을 위임관리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授权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负责互联网信息内容管理工作的通知)>,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과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작성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때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생방송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와 문자 등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활동이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와 유저를 포함한다.

제3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확한 방향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선양하고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진취적이고 선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며 우수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고 국가이익과 공공 이익을 유지하며 네티즌 특히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정보 콘텐츠의 관리감독 및 법집행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직무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정보 콘텐츠의 관리감독 및 법집행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관리부서는 직무에 근거하여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각급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일상적인 감독 점검과 정기적인 조사를 접목한 관리감독 체도를 구축하여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법규와 서비스 협의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적으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 범위에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진행하는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는 법적으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온라인 공연,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주체적 책임을 실행해야 하고 서비스 규모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정보 심사, 정보 보안 관리, 당직 순찰, 비상 처리, 기술 보장 등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 정보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편집장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생방송 콘텐츠 심사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터넷 생방송의 콘텐츠 유형, 유저 규모 등에 따라 등급별, 유형별로 관리해야 하고 이미지와 문자, 동영상, 오디오 등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플랫폼 로고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 뉴스 정보 생방송 및 해당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 선(先) 심사 후(后) 게시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적응하는 기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방법은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라의 안전에 해를 끼치고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주며 사회 질서를 혼잡하게 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등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 콘텐츠를 제작, 복제,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전제하는 뉴스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하며 뉴스 정보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잘 보이는 곳에 출처를 밝혀야 하며 뉴스 정보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동영상 댓글 자막 등 생방송 인터랙션(소통)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관련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가 생방송을 진행할 때 법률,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방송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생방송 활동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유저가 생방송 인터랙션에 참여할 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이성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백그라운드 실명, 포그라운드 자원(后台实名、前台自愿)”¹⁶⁾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유저에 대해 휴대폰 번호 등 방식을 기반으로 한 진실된 신원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에 대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증¹⁷⁾ 등을 기반으로 인증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

16) 백그라운드(운영자 관리 시스템)에서는 실명으로 등록하고, 포그라운드에서는 실명제 또는 익명제 가능

17) 조직기구코드증: 국가기술감독국에서 발급하는 법인코드증을 가리키는데 현재 공상 영업등록증(营业执照)과 합병되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의 진실한 신원정보를 심사해야 하고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 분류별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집행부서에서 법적으로 조회할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 신원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누설, 왜곡, 훼손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와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상대방이 법률, 법규와 플랫폼 협약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계약과 플랫폼 협약의 필수 조항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지도하여 작성한다.

제14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법규와 서비스 협의를 위반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상황별로 경고, 게시 중단, 계정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불법 부정당 생방송 정보 콘텐츠를 제때에 삭제해야 하며 그 기록을 저장하여 관련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 신용 등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용 등급과 연결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블랙 리스트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블랙 리스트에 포함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계정을 재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블랙 리스트 통보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과 로그 정보를 기록하고 60일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부서의 법에 따른 감독 점검을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혹은 허가 범위 이상으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기타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와 지방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직무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온라인 공연,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 법규를 위반하면 관련 부서에서 법적으로 처벌한다.

제18조 관련 업계 조직에서 업계 공약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 장려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며 업

면서 영업등록증 번호로 대체한다.

계 신용 평가 체계와 서비스 심의 제도를 구축 완비하며 업계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한다.

제19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인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회적 신고 적발 채널을 완비해야 하며 편리한 신고 적발 창구를 마련하여 대중들의 신고 적발 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이 규정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제목	网络视听节目内容审核通则
게재일	2017-06-30
출처	중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은 2017년 6월 30일 중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 상무이사회에서 심의 통과하여 공표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은 2012년 협회가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자율공약〉의 내용에 따라 제정 발표한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을 토대로 개정 보완하여 완성했으며 취지는 각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업체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업무를 지도하여 인터넷 창작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

(2017년 6월 30일 중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 상무이사회 2017년 제1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을 서비스하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에 따라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이하 약칭 ‘협회’)에서 본 총칙을 발기 및 제정한다.

제2조 본 통칙이 지칭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아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1)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 무비, 영화 및 드라마 유형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 (2)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 분야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 (3) 기타 인터넷의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

제3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는 본 통칙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본 통칙이 제창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하며 본 통칙이 금지하는 내용을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심사 원칙

제4조 본 통칙에서 지칭하는 콘텐츠 심사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관련 업체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 방송 예정인 시청각 프로그램 작품과 작품 홍보, 소개 등 목적으로 제작한 사진과 문자 및 동영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심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정치 성향, 가치 성향과 심미 성향

- (2) 줄거리, 화면, 대사, OST, 음향 효과, 인물, 자막 등

제5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

(1) 선 심사, 후 방송 원칙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는 내용이 방송되기 전의 심사제도, 심사의견 보존제도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고 업무발전 수요에 걸맞은 심사원을 배치하고 심사하면서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가 방송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반드시 심사원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2) 심사통과원칙

- 1) 심사원은 프로그램 심사 시, 프로그램 시작과 종영 부분이 포함된 전체 내용을 모두 심사하면서 봐야 하고 빠르게 돌리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되며, 각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 무비, 영화 및 드라마 유형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는 3명 이상의 심사원이 심사해야 하고, 매회 전문분야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최소한 2명 이상의 심사원이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서면 형식의 프로그램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심사의견에서는 시정해야 하는 문제점, 방송 동의 여부를 명확히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3) 심사원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 높은 문화 수양, 양호한 직업윤리를 갖추고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방침 정책을 숙지해야 한다. 심사원은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업무 교육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후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3장 방향 요구

제6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는 정확한 정치방향을 고수하고 중심을 잡고 전체를 위해 서비스해야 하며 ‘두 가지를 위한다’¹⁸⁾는 방향과 ‘쌍백(雙百)’¹⁹⁾ 방침을 고수하면서 근대 중국의 가치 관념과 중화문화정신을 구현하고 중국인의 심미 추구를 반영하면서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우수한 작품을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국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고수하고 국민을 표현의 주체로 사용하면서 노력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가장 아름다운 인물을 그리며, 국민의 마음의 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을 위해 표현하고, 감정과 기분을 토로하면서 국민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주안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 (2)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선도역할을 고수하면서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애국주의 중심의 민족정신과 개혁 혁신 중심의 시대적 정신을 널리 알리면서 조국을 노래하고, 영웅을 찬미하며, 시대를 위해 구가하면서 대중들이 정확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수립 및 고수하도록 유도한다.

18) 문화예술은 국민을 위해, 사회주의를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

19) 백화제방, 백가쟁명: 누구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뜻

- (3) 현실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실제 상황, 삶, 대중들에게 다가가며 시대의 발전상과 사회진보를 기록한다.
- (4)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한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문명을 전승하며 중화민족 후손들의 자존, 자신, 자강을 격려한다. 인애를 강조하고, 민본을 중요시하며, 신용을 지키고, 정의를 숭상하며, 화합을 숭고하게 여기고, 공통점을 찾는 등 핵심 사상이념을 심도 있게 서술한다.
- (5) 진선미를 선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다. 사회책임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데 쉬지 않으며, 일에 전념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등 전통미덕을 계속하여 선양하고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력과 영예감을 높이도록 선도한다.
- (6)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중국 정신을 선양하며, 중국 역량을 응집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여한다.
- (7) 굳건히 사회적 효과를 최우선시하여 사상적, 예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아울러 시장에서 사랑 받는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상호 일치한 작품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 (8) 명품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여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창작 능력을 높이며 사상이 심오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며, 훌륭하게 제작한 웰메이드 작품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나리오 설계에서 바른 기풍을 선양하고, 정의를 주장하면서 진선미를 전파하고 거짓과 추악함을 채찍질하며 선을 쌓으면 덕이 되고, 아름다운 덕행을 널리 알리는 윤리적 지향을 구현해야 한다.

제4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표준

제7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는 정확한 정치 방향, 가치 취향과 심미 성향을 고수해야 하고 아래 내용이 있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헌법이 확정된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법률, 행정 법규 실시를 거부 혹은 파괴하도록 선동하는 내용
- (2) 국가 통일, 주권과 영토 완전을 파괴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존엄, 명예와 이익에 해를 끼치며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 (3)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비방하고, 민족 혐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며 민족의 풍속 관습을 침해하고 민족역사와 민족의 역사인물을 왜곡하며 민족 정서를 해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 (4) 국가의 종교정책 파괴를 선동하고 종교에 열광적인 것을 선양하며, 종교 화목을 해치고 종교가 있는 국민의 종교 감정을 해치며, 종교가 있는 국민과 종교가 없는 국민의 단결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5)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음란, 도박, 마약을 선양하며 폭력, 테러를 과장하고 범죄를 부추기거나 혹은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 (6)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

- (7)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혹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퍼뜨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8)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8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 아래 내용 혹은 이야기 줄거리가 있을 경우 편집 삭제 후 방송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프로그램 전체를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 실정과 사회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파괴
 - 1) 국가 이미지, 국가제도와 방침정책을 폄하
 - 2) 혁명 지도자, 영웅인물의 이미지, 명예를 폄하, 패러디, 실추
 - 3) 인민군대, 무장경찰, 국가안전, 공안, 사법 종사자 등 특정 직업, 계층 그리고 사회조직, 단체의 공공 이미지를 실추
 - 4) 부정적, 퇴폐한 인생관, 세계관과 가치관을 선양하고 사회문제를 과장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표현하고 보여주기
 - 5) 대중의 역사발전 추진 역할을 폄하
 - 6) 악역을 주요 표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반동, 낙후, 사악, 불법적인 사회 세력, 사회조직과 인물을 위해 전기를 쓰고 공덕을 치하하며 그의 긍정적인 한 면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기
 - 7) 중국 역사상 봉건왕조의 대외적인 무력 정복을 선양
 - 8) 식민주의 색깔이 있는 대사, 호칭, 화면 등을 선양
 - 9) 국가 실정을 벗어났고 기본적인 현실 생활 근거가 부족하며 호화로운 생활 등을 선양
- (2) 민족단결을 파괴
 - 1) 민족 정서를 해치는 이야기 줄거리, 대사, 호칭, 인물 형상, 화면, 음향 효과 등 포함
 - 2) 독특한 민족 풍속과 종교 신앙에 대해 엽기적이고 과장되게 묘사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모욕함
 - 3) 민족 정서를 해치는 민족 전쟁, 역사 사건을 표현
 - 4) 역사상 민족 간의 징벌을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 등으로 표현
- (3) 국가의 종교정책을 위배
 - 1) 종교 극단주의와 사이비 종교를 선양
 - 2) 서로 다른 종교, 교파의 우열을 적절하지 못하게 비교하여 종교, 교파간의 갈등과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음
 - 3) 종교 교리, 계율, 의식 등 내용을 지나치게 전시 및 선양
 - 4) 종교 관념, 종교 신앙과 종교 호칭을 왜곡, 비난 혹은 차별함
 - 5) 종교 내용에 대해 해학적으로 서술하고 조롱하는 등
- (4) 봉건 미신 선양, 과학 정신 위배
 - 1) 영혼이 몸에 붙고, 환생, 굿 등 봉건미신사상을 선양
 - 2) 우매, 사악, 기괴하고 황당함 등 봉건문화 찌꺼기 선양
- (5) 테러 폭력을 과장되게 묘사, 추악한 행위를 표현 심지어 범죄 유발 가능
 - 1) 폭력, 살인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표현
 - 2) 흉악하고 참혹한 범죄과정 및 육체, 정신적 학대를 상세하게 보여줌

- 3) 수사 방법과 디테일을 노출시켜 범죄를 유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을 장악할 수 있음
- 4) 기괴하고 황당한 범죄사건을 표현
- 5) 진위, 선악, 미추(美丑)에 대한 가치판단이 흐리고 정의와 비정의의 기본 경계선을 혼동
- 6) 마약 흡입, 무절제한 음주, 도박 등 불량 행위를 상세하게 표현
- 7) 과도한 공포, 생리적 고통, 히스테리를 표현하여 강렬한 감각기관, 정신적 자극을 조성하여 심신이 편치 않는 화면, 대사, 음악 및 음향효과 등을 초래
- 8) 폭력은 폭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을 선양하기 위해 극단적인 복수 심리와 행위를 선양
- (6) 음란물과 저속한 취미를 과대하게 묘사
 - 1) 매춘, 음란, 강간, 자위 등 구성을 구체적으로 표현
 - 2) 불륜, 동성애, 성적 변태, 성범죄, 성학대 및 성폭력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 성행위를 표현
 - 3) 외도, 원나잇, 성 자유, 스와핑 등 건전하지 못한 연애, 결혼관과 상태를 보여주고 선양
 - 4) 비교적 긴 시간 혹은 양이 많은 사람들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베드신, 키스신, 스킨십, 샤워 및 유사한 성행위와 관련이 있는 간접 표현 혹은 암시
 - 5) 선명한 성희롱, 성추행, 성적인 모욕 혹은 유사한 효과의 화면, 대사, 음악 및 음향효과 등이 있음
 - 6) 남녀 성기를 보여주거나 혹은 신체로 덮거나 또는 아주 작은 덮개로 인체를 가리는 등 은밀한 부위 및 의상 착용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등
 - 7) 미성년자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화면, 대사, 음악, 음향효과 등 포함
 - 8) 거친 언어 등을 사용
 - 9) 성인 영화, 포르노 영화, 노출 영화, 몰래 촬영, 노출 및 각종 성희롱 문자 혹은 이미지로 동영상 프로그램 제목, 분류 혹은 홍보물로 사용
- (7)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
 - 1) 중요한 역사인물 및 기타 실존 인물의 이미지, 명예를 실추시켜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
 - 2) 타인의 직업 신분, 사회적 지위 혹은 신체 특징을 폄하
- (8)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왜곡 및 폄하
 - 1) 민족의 우매 혹은 사회의 낙후된 부분을 지나치게 묘사, 과장하거나 집중 표현
 - 2) 기본적인 역사 사실을 위배하고 이미 결정이 난 역사인물, 역사사건을 ‘뒤집거나’ 혹은 아직 논쟁이 있는 역사인물, 역사 사건을 위해 ‘명분을 바로 잡음’
 - 3) 명작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원작의 정신적 본질을 왜곡
 - 4) 기본적인 역사상식을 위배하고 기본적인 역사 근거가 부족하며 역사를 마음대로 곡해하고 인류문명, 타국 문명과 풍속관습 등을 존중하지 않음
 - 5) 역사 특히 혁명 역사에 대해 과도한 오락과 게임 형식으로 표현
- (9) 사회공덕을 해치고 미성년자에 대해 나쁜 영향을 초래
 - 1) 패러디 방식으로 큰 자연재해, 사고, 테러사건, 전쟁 등 재난 장면을 묘사

- 2) 긍정, 찬성하는 기조 혹은 모방 방식을 도입하여 패거리 싸움, 타인 모욕, 저속한 말 등을 표현
 - 3) 미성년자의 풋사랑, 흡연과 과도한 음주, 패거리 싸움, 마약 남용 등 불량 행위를 표현
 - 4)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처에서 규정한 흡연 장면과 흡연 모습을 위반
 - 5) 인물 캐릭터가 지나치고 과장되게 이상하여 미성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
 - 6)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인물의 성행위 등을 보여줌
 - 7) 기타 사회공덕을 위반한 문명하지 못한 행위를 포함
- (10)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 내용
- 1) 국가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모 특별 업무의 내부제도, 절차를 공개하는 내용
 - 2) 국제 분쟁 유발 혹은 나쁜 국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 3)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로고, 쿨 사인, 호칭, 용어를 남용, 오용하는 내용
 - 4) 프로그램 중의 제품과 서비스 정보 삽입이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처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 5)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국가보호 동물을 포획, 먹는 내용
 - 6)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내용
 - 7) 모방, 표절 혹은 허가를 받지 않고 리메이크 등 방식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프로그램
 - 8) 중국의 국가 존엄, 영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 안정을 위협하며 민족정서를 해치는 등 활동의 조직과 개인이 제작 혹은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 9) 법률, 법규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내용

제9조 전문 분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정확한 정치 방향, 가치 취향, 심미 성향을 고수하고 고품격의 건전한 심미 취향과 문화 품위를 구현하며 사람들이 올곧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 (1) 시비와 선악을 가리지 않고, 추악이 미라고 생각하며, 흑백이 뒤바뀐 잘못된 경향을 단호하게 저지한다. 각종 주류 사상과 주류 가치를 모독하는 내용을 단호하게 저지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반동을 미화하며, 숭고함을 조롱하고, 영웅모범을 부정하는 틀린 성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교묘한 속임수²⁰⁾, 암묵적인 관행, 편 가리기 등 봉건문화 찌꺼기와 부패한 사상 유독(遺毒)을 단호하게 저지한다. 금전만능주의, 향락주의, 극단개인주의 등 나쁜 풍기와 과도한 상업화, 오락화 경향을 단호하게 저지한다. 저가의 웃음소리, 무절제한 오락과 절개가 없는 쓰레기를 단호하게 버린다. 저속, 졸렬, 세속에 영합하는 저급 취미를 단호하게 저지한다. 몸값 높은 스타의 숭배, 무료한 게임, 사치스러운 연회 등 불량 풍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 (2) 불량한 가정관, 결혼관, 금전관(金錢觀)을 선양해서는 아니 된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조정하는 등 프로그램에서는 진실 원칙을 고수하고, 폭발적

20) 중국어 원문은 厚黑學(후후학). 후후학은 자애롭고 손이 부드러운 자는 관리로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인의가 있는 자는 큰 상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낮가죽(臉皮·검피)은 두텁고(厚·후) 마음씨(心腸·심장)는 시커메야(黑·흑) 한다는 의미

- 인 반응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허위, 기이한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 사전에 설계한 포즈로 대화하고 허위 이야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대중을 우롱해서는 아니 된다.
- (3)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회자, 게스트, 심사위원, 참가자 등 인물에 대해서는 선별 심사하고 스캔들 낙인, 마약 흡입, 매춘 등 위법 범죄 행위가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논쟁이 있거나 혹은 비주류화 관점을 갖고 있는 인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프로그램 인물의 언어, 행위, 의상, 장신구, 헤어 스타일, 무대 매너 등은 대중의 심미 관념에 부합해야 한다.
 - (4) 프로그램 사회자가 게스트, 심사위원, 참가자 등 인물을 응대하는 언어화 행동을 정확하게 유도하고 언어와 행위의 저속을 방지하며 잘못된 관점과 언론에 대해서는 즉시 반박해야 한다. 사회자 간에는 상호 비꼬고, 치켜세우며, 희롱해서는 아니 된다. 게스트, 심사위원은 평가의 전문성과 상대성을 강화하고 과장된 쇼맨십, 상호 패러디 및 문명적이지 못한 언어 사용과 행동은 피하며 주객이 전도되고 술수와 볼거리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프로그램이 스타가 자신을 홍보하는 무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참가자는 눈길을 끌기 위해 선정적인 쇼를 하고 과장된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비통한 분위기를 과하게 표현해서는 아니 된다.
 - (5)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급적 미성년자의 참여를 줄이며 소수의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업화, 성인화와 과도한 오락화의 좋지 않은 경향 및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을 단호하게 근절시킨다.
 - (6)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은 스타 참여 인원수를 줄이고 일반 대중의 참여 비중을 높여 대중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스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세속에 영합하면서 격려해서는 아니 되며 스타가 부와 향락을 자랑하고 프로그램 출연료를 조작하는 것을 근절한다.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타 자녀를 포장하고 띄워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전문 분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상기 조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총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 외에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도 아니 된다.

- (1) 귀동냥한 정보를 화제로 만들어 주관적인 추측으로 토론, 논의하는 경우
- (2) 엄숙한 화제를 조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경우
- (3) 논쟁 유발이 쉬운 부정적인 화제로 토론, 논의하는 경우
- (4) 스타의 부와 향락 자랑이 주요 내용인 경우
- (5) 스캔들, 추문, 프라이버시, 나쁜 기록이 주요 내용인 경우
- (6) 위험 정도가 높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고, 청소년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인 경우
- (7) 미성년자가 명예와 이익, 사랑 등 화제를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미성년자를 유도하여 현장 표를 얻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실패 퇴출당한 느낌을 묻는 경우
- (8) 가정불화에 대해 미성년자를 인터뷰하고 미성년자가 가정불화와 현장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 (9) 눈길을 끌기 위해 저속한 술수를 만들고, 추악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거나 혹은 거짓 쇼를 하고, 갈등을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며 불량 현상과 이성적이지 못한 분위기를 부각시켜 ‘시험’, ‘테스트’ 명목으로 ‘인성이 악하다’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보여주는 경우

- (10) 게스트를 고의적으로 자극하고 난처하게 하여 시청자를 웃기게 하는 경우
- (11) 타인을 풍자하고 상호 치켜세우거나 혹은 거칠고 저속한 대역을 하는 경우
- (12) 거칠고 장난이 심한 자막을 사용하고 기이한 음양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 (13) 섹스, 성생활에 대한 디테일한 인터뷰, 토론을 화제로 하는 경우
- (14) 대중이 참여하는 각종 성형, 성전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경우
- (15) 기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공서양속을 위배하는 내용

제11조 프로그램 디테일을 엄숙하고 신중하게 대하며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1) 혁명 선구자 및 기타 중요한 인물 형상, 소수민족 언어문자, 특정 부호와 로고 사용 및 도형, 도표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프로그램 내용이 인민군대, 무장경찰, 국가안보, 공안, 법조인,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 계층 및 사회조직, 단체를 표현하는 경우
- (3) 특정 역사시기, 직업군의 의상, 배경 소품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12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의 기타 관련 요구사항

- (1)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중의 문자 자막은 서예로 쓴 프로그램 명칭 및 관련 문자 외에 규범화된 문자이어야 한다. 작품에 가사가 있는 곡, 외국어 제목, 대사, 특정 함의가 있는 단어 및 로고 등은 중문 자막을 넣어야 한다.
- (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명칭, 대사, 자막 등 언어문자는 국가통용언어문자 유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존중하게 예를 지켜야 하며 엄격하게 규범화된 서법과 표준에 따라 국가통용언어문자의 문자, 단어, 구, 성어 등을 사용해야 한다. 같은 독음을 남용하고, 단어의 뜻을 제멋대로 만들며, 뜻을 함부로 곡해해서는 아니 되고 규범화하지 않은 인터넷 언어와 틀린 단어 그리고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 때는 정확한 방향을 고수하고 어법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저속, 졸렬, 세속에 영합된 저급 취향을 스스로 버리고 희롱, 불결, 악독, 모욕, 욕설 등 극단적인 언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명칭, 대사, 자막, 더빙 등 언어문자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출연자, 제작진, 사회자, 게스트 및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통용언어문자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며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이 중대한 혁명과 역사 소재 및 정치, 군사, 외교, 국가안보, 통일전선, 민족, 종교, 사법, 공안 등 특수 소재와 관련될 경우 방송 및 영화 유관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4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체가 본 통칙의 규정을 위반하면 협회는 경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동 기관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통보 비평을 하고 업

계 전체 및 사회에 공개한다. 경위가 악랄할 경우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위법 및 규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법과 규정에 의해 수사를 진행한다.

제6장 부칙

제15조 본 통칙은 협회가 발표한 당일부터 시행하며 협회 회원은 본 통칙의 구속을 받는다.
2012년 7월 13일 중국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29.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항목 추가 심사에 관한 통지

제목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办公厅关于做好移动互联网视听节目服务增项审核工作有关问题的通知
게재일	2016-05-27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신광전판발(新广电办发)[2015]10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생산건설병단²¹⁾ 신문출판광전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광전총국, 정보산업부령 제56호)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총국의 승인을 거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허가 추가 신청을 하는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내용과 표현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한 종류이며 표현 형태에는 휴대전화 WAP 사이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등 방식이 포함된다. 승인을 받고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공공망 휴대전화 WAP 사이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통신망 휴대전화 TV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업무의 규범 요구에 따라 전용망 휴대전화 TV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승인을 거쳐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선보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유형은 허가증 한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출시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모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업체가 휴대전화 WAP 사이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혹은 모바일 이동통신망 휴대전화 TV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모두 일치한 방송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2.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려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정보 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는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허가 추가 신청의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 1) 신청하는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신청 업체가 컴퓨터 단말기를 상대로 진행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업무 유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 2) 휴대전화 WAP 사이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혹은 이동 통신망 휴대전화 TV 포털

21)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사이트 등 방식을 통해 제공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는 대응하는 프로그램 출처를 갖추고 판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클라이언트, WAP 사이트 등 다양한 루트의 프로그램은 버전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신청업체는 <정보 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과 허가증>을 취득한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해야하고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적 없어야 한다.
- 4) 신청업체는 신청하는 업무항목과 상호 매칭되는 심사팀을 갖추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1개 단일 항목 업무가 갖춘 심사 인력(교육을 거쳐 합격한 사람)은 최소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이동 통신망 휴대전화 TV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용망 휴대전화 TV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업무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승인을 거쳐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공공망 방식의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전용망 방식의 휴대전화 TV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용망 휴대전화 TV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유관 기준에 따라 총국이 설립 승인한 이동 통신망 휴대전화 TV 통합 방송통제 플랫폼과 플랫폼 접속 협의를 체결하고 실제로 동 통합 방송통제 플랫폼의 심사를 거쳐 접속하며 직접 이동 통신망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총국이 이미 전용망 휴대전화 TV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승인한 업체는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혹은 항목이 추가, 변경되어 허가증을 교환할 경우 업무항목을 ‘이동 통신망 휴대전화 TV 콘텐츠 서비스’에서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로 일괄 변경한다.

4. 항목을 추가하여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항목 추가 신청 보고서. 업체의 기존 업무 진행 현황에 대한 총체적인 소개, 진행 예정인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에 관한 설명 등 분야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2) 허가증 교환 신청서
 - 3) 항목 추가 업무의 관련 자격 증명. (1) WAP 사이트 도메인의 등록 증명서, (2) 신청 업체가 취득한 신청과 관련된 허가 혹은 등록신고 증명서
 - 4) 구체적인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방송 내용 일정 및 관련 프로그램 구매 계약서, 의향서 등 프로그램 출처 증명 서류
 - 5)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기술방법. 네트워크 접속 방법 및 프로그램 방송 기술 플랫폼의 구조, 기능, 적재 용량 등 내용 포함, 그리고 네트워크 광대역 임대 협의서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술 장비 리스트를 제공
 - 6) 모바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 심사제도와 절차, 안전방송 관리제도와 비상대책 방법
 - 7) 편집, 기술 등 관련 전문 인력의 수량, 전공 배경 혹은 실무 경험 상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광전총국의 교육을 받고 합격한 시청각 프로그램 심사 인력 명단
 - 8) 기타 신청업체가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6년 5월 27일

30.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시 관리 업무의 개선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办公厅关于进一步完善规范电视剧拍摄制作备案公示管理工作的通知
게재일	2016-04-27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신광전판발(新广电办发)[2016] 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생산건설병단²²⁾ 신문출판광전국, 중앙TV방송국(CCTV),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 홍보국, 중국교육TV방송국, 중앙직속 유관 기관:

최근 들어 각급 라디오&TV 및 영화 행정부처, 드라마 제작기관이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총국령 제63호),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신고 공시 관리방법>(광발[2013]65호)을 이행하여 드라마의 발전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신고 공시 관리업무를 한층 더 보완 및 규범화하고 관리방법을 최적화하며 행정효율을 높이고 드라마의 사회이익과 방향 주도 의식을 부각시키며 작품의 사상내용을 강화하고 업계의 소재 선택 및 기획과 등록 신고 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신고 공시 단계에서 드라마 명칭 변경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등록신고 공시 심사는 엄숙한 드라마 촬영제작의 관리 과정이며 등록신고 심사를 통해 공시한 드라마 명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작기관의 엄숙한 창작 자세를 촉진하고 사회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통지 배부 당일부터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신고 공시 단계에서는 드라마 명칭 변경을 진행할 수 없다. 드라마 명칭 변경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완성작 심사과정에서 성급 광전국 혹은 총국이 내용 심사를 완성한 후 방향이 정확하고, 내용과 드라마 명칭이 일치한 전제하에서 절차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2.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신고 공시를 신청하는 레퍼토리의 1500~2000자 시놉시스는 반드시 사상 내용에 대해 요약 설명을 해야 한다.

드라마 창작은 시종일관 사회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작품의 사상가치와 문화적 함의를 스스로 높여야 한다. 본 통지 배부 당일부터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신고 공시를 신청하는 레퍼토리의 1500~2000자 시놉시스는 반드시 사상내용에 대해 요약 설명해야 한다.

본 통지 수령 후 즉시 해당 관할 구역, 해당 계통 내의 드라마 제작기관에 전달하고 상기 내용을 준수하면서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2016년 4월 27일

22)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31.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게재일	2017-05-02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호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관리규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실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쉬린(徐麟)
2017년 5월 2일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정보내용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국무원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인터넷정보내용관리업무를 위임관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뉴스정보에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공공업무에 관한 보도, 논평, 그리고 사회 돌발사태에 관한 보도, 논평이 포함된다.

제3조 인터넷뉴스정보를 제공하려면 헌법,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사회주의를 위한 서비스 방향과 올바른 여론 방향을 고수하고 여론의 감독 역할을 발휘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하며 진취적이고 선을 따르는 인터넷문화를 형성하도록 촉진하여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수호한다.

제4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의 감독관리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무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의 감독관리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허가

제5조 인터넷 사이트, 앱(APP), 토론방, 블로그, 미니 블로그, 공공계정,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온라인 생방송 등 형식을 통해 사회 대중에게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허가범위를 벗어난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은 금지한다.

상기 조항에서 지칭하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에는 인터넷뉴스정보 취재 편집 및 배포 서비스, 전재 서비스, 전파 플랫폼 서비스가 포함된다.

제6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
- (2) 주요 책임자, 편집장은 중국 국민
- (3) 서비스에 걸맞은 전담 뉴스편집 인력, 내용심사 인력과 기술보장 인력 보유
- (4) 완비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관리제도 보유
- (5) 완비된 정보보안 관리제도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보장 대책 보유
- (6) 서비스에 걸맞은 장소, 시설과 자금 보유

인터넷뉴스정보 취재 편집 및 배포 서비스 허가 신청 업체는 반드시 언론기관(그가 지배하는 기관 포함) 혹은 언론홍보부처가 주관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특별관리지분제도를 실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에 의해 통신 주무부처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 허가 혹은 등록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제7조 그 어떠한 조직도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과 외자경영의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업체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업체는 국내외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과 외자경영 업체와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업무와 연관 있는 합작을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취재 편집 업무와 경영 업무는 분리되어야 하며 비(非)국유자본은 인터넷뉴스정보 취재 편집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

제9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허가 신청 시, 신청 주체가 중앙언론기관(그가 지배하는 업체 포함) 혹은 중앙언론홍보부처가 주관하는 업체일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수리하고 결정한다. 신청 주체가 지방 언론기관(그가 지배하는 업체 포함) 혹은 지방의 언론홍보부처가 주관하는 업체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수리하고 결정한다. 신청 주체가 기타 업체일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수리하여 1차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결정한다.

국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에 계속 종사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정기적으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허가 수리와 결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주요 책임자, 편집장이 중국 공민이라는 증명 서류
- (2) 전담 뉴스편집 인력, 내용심사 인력과 기술보장 인력의 자격 현황
- (3)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관리제도
- (4) 정보보안 관리제도와 기술보장조치
- (5)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안전성 평가 보고서
- (6) 법인 자격, 장소, 자금과 지분구조 등 증명 서류
- (7)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제3장 운영

제11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편집장을 두어야 하고 편집장은 인터넷뉴스 정보의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편집장은 관련 업계 실무 경험이 있고 관련 조건에 부합하며 국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법에 의해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뉴스 취재 편집 활동에 종사하려면 뉴스 취재 편집 인력 직업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일괄 발급하는 언론 기자증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배포 심사, 공공정보 순찰, 비상대책 등 정보보안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보장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를 위한 인터넷뉴스정보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신원정보와 일지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누설, 왜곡,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판매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그의 종업원은 뉴스정보 취재 편집, 배포, 전제, 삭제, 그리고 뉴스정보 노출 혹은 검색 결과 등 방식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뉴스정보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등록한 사용자와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자가 공공계정을 개설할 경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의 계정 정보, 서비스 자격, 서비스 범위 등 정보를 심사한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분류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뉴스정보를 전제할 경우 중앙언론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언론기관 등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기관이 배포한 뉴스정보를 전제해야 하며 뉴스정보 출처, 원작자, 원제목, 편집인 실명 등을 표기해야 하며 제목의 원래 뜻과 뉴스정보내용을 왜곡, 의도적으로 수정해서는 아니 되며 뉴스정보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록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뉴스정보를 전제할 때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장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내용을 제작, 복제, 배포,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규정 제3조 혹은 상기 조항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동 정보 전송을 즉각 중단하고 제거 등의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남기고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주요 책임자, 편집장, 주관업체, 지분구조 등 허가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원래 허가 기관에서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신기술을 사용하고, 뉴스인론 속성 혹은 사회 동원능력이 있는 응용 기능을 조정 및 추가할 경우 반드시 국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선명한 위치에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허가증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자각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고 사회 신고 고발 루트를 구축하여 편리한 신고 고발 창구를 만들어 대중의 신고 고발 건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19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일상 검사와 정기 감사가 상호 결합된 관리감독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법에 의해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유관 업체,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완비된 법 집행인원 자격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법 집행인원은 법 집행 활동 진행 시, 반드시 법에 의해 법 집행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20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본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사회에 고발 수리방식을 공개하고 고발을 접수한 후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신용 기록을 만들고 신용상실 블랙리스트제도와 상담약정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무원의 통신, 공안, 신문출판광전 등 부처와 함께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업무 소통과 협업 협조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공동 법 집행 등 전문 감독검사 활동을 진행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2조 본 규정의 제5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활동을 진행할 경우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무에 의해 관련 서비스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운영 과정에서 허가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래 허가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경과해도 여전히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뉴스정보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어도 여전히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교환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4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무에 따라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경위가 심각하거나 혹은 시정을 거부할 경우 뉴스정보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무에 의거하여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경위가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뉴스정보 업데이트를 일시 중단하고 2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27조 본 규정이 지칭하는 언론기관이란 법에 의해 설립한 신문사, 잡지사,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통신사와 뉴스영화제작사를 일컫는다.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울러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통신 주무부처로 전달하여 법에 의해 처리한다.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 온라인출판서비스 등에 대해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동시에 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 시행 전에 발표한 유관 규정과 본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의 분류 목록(시행)> 조정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调整《互联网视听节目服务业务分类目录（试行）》的通告
게재일	2017-03-10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의 분류 목록(시행)> 조정에 관한 통지〔2017〕 1호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광전총국, 신식산업부령 제56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광전총국은 2010년 3월 17일 발표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 분류 목록(시행)>(IPTV, 인터넷 TV, 전용망 휴대전화 TV의 업무 분류 불포함)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별첨: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 분류 목록(시행)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7년 3월 10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 분류 목록(시행)(2017년)

제1부분 목록

공공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포함)을 이용하여 컴퓨터,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시청각 프로그램(IPTV, 인터넷 TV, 전용망 휴대전화 TV 업무 불포함)을 제공하는 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1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형태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 (1) 시사 정치 시청 뉴스프로그램 최초 배포 서비스
- (2) 시사 및 정치와 사회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사회, 인터뷰, 논평 서비스
- (3) 자체 개설한 뉴스, 종합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 서비스
- (4) 자체 개설한 전문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 서비스
- (5) 중대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활동, 사건의 실황 동영상/음성 생중계 서비스

2. 2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 (1) 시정부류 시청 뉴스 프로그램 전제 서비스
- (2)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사회, 인터뷰, 보도, 논평 서비스
- (3)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제작(인터뷰 불포함), 방송 서비스
- (4) 웹드라마의 제작, 방송 서비스

- (5)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류 시청각 프로그램의 취합, 방송 서비스
- (6)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취합, 방송 서비스
- (7) 일반 사회단체의 문화 활동, 스포츠 경기 등 활동의 실황 동영상/음성 생중계 서비스

3. 3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 (1)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취합 서비스
- (2) 네티즌이 업로드 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서비스

4. 4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중계방송 서비스)

- (1) 라디오&TV 프로그램 채널 중계방송 서비스
- (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 중계방송 서비스
- (3)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중계방송 서비스

비고: IPTV, 전용망 휴대전화 TV, 인터넷 TV의 통합 방송 컨트롤 서비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형태에 속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는 전용망 및 시청각 프로그램 포지셔닝 전파 서비스이다. IPTV, 전용망 휴대전화 TV, 인터넷 TV의 통합 방송 컨트롤 서비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와 전송 부류 서비스의 업무 분류 목록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부분 업무 정의

1. 1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형태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 (1) 시사 및 정치 시청 뉴스프로그램 최초 배포 서비스
 시사 및 정치 뉴스, 사회 뉴스 부류의 시청각 프로그램을 취재, 제작 혹은 주문 제작하여 제일 먼저 대중이 온라인에서 클릭하여 시청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주문 제작이란 기타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가 방송하도록 제작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시정과 사회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사회, 인터뷰, 논평 서비스
 사회, 인터뷰, 연설하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치, 사회사건 혹은 소재를 중심으로 논평하고 대중이 온라인에서 클릭하여 시청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 (3) 자체 개설한 뉴스, 종합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 서비스
 라디오&TV 프로그램 채널과 같은 편집 방송 방식으로 시정 뉴스, 사회뉴스 내용이 있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대중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 (4) 자체 개설한 전문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 서비스
 라디오&TV 프로그램 채널과 같은 편집 방송 방식으로 시정 뉴스, 사회뉴스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영화 및 드라마,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 분야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대중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 (5) 중대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활동, 사건의 실황 동영상/음성 생중계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중대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활동 혹은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동영상/음성 실황 생중계 서비스이다.

2. 2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 (1) 시사 및 정치 시청 뉴스프로그램 전채 서비스

라디오&TV, 뉴스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에 게재하고 방송했던 시청 뉴스, 그리고 정치, 사회 논평 소재가 있는 사회, 인터뷰, 보도 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채하여 대중들이 클릭하여(다운로드 혹은 재방송 포함) 시청,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방송이란 단일 시청각 프로그램 완성품을 반복 방송하거나 혹은 몇 개의 시청각 프로그램 완성품을 패키지로 묶어 고정 순서에 따라 인터넷에서 반복하여 교대로 방송하는 것이며 라운드당 방송시간이 60분이 넘지 않는 방송 활동이다.

- (2)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사회, 인터뷰, 보도, 논평 서비스

취재, 사회, 인터뷰 등 프로그램 형식으로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분야의 사건에 대해 보도, 논평하고 대중들이 온라인에서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3)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제작(취재 불포함), 방송 서비스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을 생산 제작, 주문 제작, 편성하여 대중들이 온라인에서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4) 웹드라마의 제작, 방송 서비스

웹드라마를 생산 제작, 주문 제작, 편성하는 서비스이다.

- (5)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프로그램의 취합, 방송 서비스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영화), 모바일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 등 프로그램을 구매, 수집, 편성하여 대중들이 클릭하여 시청(다운로드 혹은 재방송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6)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 시청각 프로그램의 취합, 방송 서비스

문예, 오락, 과학기술, 재경, 스포츠, 교육 등 전문분야의 특집 프로그램(개인 DV 작품 포함)을 구매, 수집, 편성하여 대중들이 클릭하여 시청(다운로드 혹은 재방송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7) 일반 사회단체 문화 활동, 스포츠 경기 등 활동의 실황 동영상/음성 생중계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일반 사회성, 단체성 문화 활동,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해 대중에게 실황 동영상/음성 생중계를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3. 3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1)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취합 서비스

인터넷상의 시청각 프로그램 정보를 동일 사이트로 편집, 배열하여 대중들에게 프로그램 조회,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활동이다.

(2) 네티즌이 업로드 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서비스

네티즌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 혹은 정보 업로드 통로를 제공하여 네티즌이 본인 혹은 타인의 프로그램 소스를 사이트의 정보 배포 시스템 혹은 시청 인터페이스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여 대중들이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포함 서비스: ① 프로그램 업로드 서비스, 네티즌이 프로그램을 사이트의 서버로 업로드 하여 대중들이 시청, 청취(다운로드 포함)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② 정보 업로드 및 배포 서비스, 네티즌이 프로그램 명칭, 링크 주소 등 정보를 사이트의 서버로 업로드 하여 대중들이 프로그램을 검색, 선택한 후 기타 플레이어에 링크하여 시청, 청취(다운로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4. 4부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중계방송 서비스)

(1) 라디오&TV 프로그램 채널을 중계 방송하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TV 프로그램 채널, 주파수를 완전하게 중계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완전 중계방송이란 채널 로고를 보류하고 프로그램 신호 중에 내용을 삽입하여 방송하지 않고 그 어떠한 원래 채널의 프로그램 내용과 사진 및 문자 정보도 수정, 삭제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을 중계 방송하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채널(1부류 제3항 혹은 1부류 제4항)을 완전 중계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3)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중계방송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기타 사이트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활동 혹은 사건에 대한 실황을 동영상/음성으로 생중계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중계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33.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제목	关于把电视上星综合频道办成讲导向、有文化的传播平台的通知
게재일	2017-07-20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TV 위성 종합채널의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관한 통지 (신광전발[2017]16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생산건설병단²³⁾ 신문출판광전국, CCTV방송국, 중국교육TV방송국, 영화채널프로그램센터, 감독관리센터: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문 정신을 관철 집행하고, 고차원의 TV 위성 종합채널을 방향성 및 문화적 전파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당과 정부 목소리의 전파자, 사회 주류 가치의 선양자, 긍정적인 마인드 에너지의 선도자,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이 상호 일치한 실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인도하고자 유관 업무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정확한 정치 방향, 가치관, 여론 방향을 굳건히 고수한다.

TV 위성 종합채널은 더 높은 방송국 운영 표준을 고수하면서 정확한 운영 방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정치가의 방송국 운영 및 당의 미디어 관리 원칙을 고수하며 정치의식, 대세의식, 핵심의식, 정령의식을 확실하게 강화하면서 사상, 정치, 행동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완전 일치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언론 업무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방향을 선도하며, 중심을 둘러싸고, 대세를 위하며, 국민과 단합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기풍을 만들어 사람을 감화시키고, 결속력을 응집하며, 오해를 해명하고, 시비를 가리며, 국내외를 연결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직무 사명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면서 정확한 정치 방향, 가치관, 여론 방향 고수를 최우선시하고 진영과 관문을 잘 지켜야 한다. 뉴스종합채널의 포지션을 고수하고 뉴스로 방송국을 세운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문 정신과 치국이정(治国理政)²⁴⁾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충분히 홍보하며 안정 속에 발전을 꾀하는 총체적인 기조를 장악하고 이데올로기 안보와 문화안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전망 안정, 사상 안정, 인심 안정’이라는 중요한 책임과 ‘전사회 사상 통일, 인심 안정 유지’라는 중요한 사명을 잘 담당해야 한다.

2. 대중의 위대한 실천을 노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사하도록 노력한다.

TV 위성 종합채널은 언론 전선의 ‘주전개(走转改)’²⁵⁾캠페인과 문예 전선의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고,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다’ 캠페인을 일상화, 제도화해야 하고 기층 보도, 기층 프로그램

23) 병단(兵团):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24) 치국이정(治国理政):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함

25) 주전개(走转改): ‘走基层·转作风·改文风’의 약칭으로, 기층으로 내려가고, 기풍을 전환하고, 문풍을 변경

램 비중을 높이며 편집, 기자, 연출, 제작자, 아나운서, MC 등 프로그램 주요 제작 인력은 조별로 정기적으로 기층에 깊숙이 들어가 치열한 현실 생활, 생생한 기층 이야기, 소박한 서민 정서, 다양한 대중 문예를 뉴스 보도와 각종 프로그램에 녹여 현실감이 넘치는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며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시종 일관 고수하고 현실에서 정신을 수련하며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고 소박함 속에서 숭고함을 발견하며 당대 중국 서사시와 같은 실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참된 지식을 깨달으며, 영감을 분발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시대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고 대중의 정신적 수요에 맞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지방의 TV 위성 종합채널의 프로그램은 고표준을 고수하고 CCTV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표본으로 기본을 지키고 방향을 장악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도록 노력해야 한다.

3. TV 위성 종합채널의 공익 속성과 문화 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TV 위성 종합채널은 시종일관 사회적 효익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의 상호 일치를 고수하고 사회적 효익을 세분화하는 평가 가이드, 평가 지표를 강화하며 가치관, 예술수준, 심미 취향, 대중의 입소문 등을 중요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유독 시청률만 따지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시청률 조작을 단호히 제재한다.

TV 위성 종합채널의 뉴스, 경제, 도덕 구축, 과학 교육, 생활 서비스,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다큐멘터리, 농업 등 공익 속성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대와 비율이 규정한 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광전총국은 TV 위성 종합채널이 황금시간대에 공익, 문화, 과학기술, 경제 분야의 프로그램 방송 수량과 횟수를 늘리는 것을 장려한다. 공익 주제 프로그램 코너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기획을 강화하고 표현 형식을 다양화시키며 예술수법을 혁신하여 프로그램의 가치 함양과 예술적 매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으로 사랑의 온정을 전달하고 공익을 추진해야 한다.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감화, 교육시켜야 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 문화 자원을 발굴 및 이용하고 새로운 시대 특징 및 실천 요구와 결합시켜 사상적 깊이, 정신적 높이, 문화적 두께가 있는 문화 분야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 및 방송해야 한다.

4. 종합 예능, 리얼리티 쇼 등 프로그램 관리 및 조정 컨트롤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TV 위성 종합채널은 긍정적 취미 에너지를 선도하고 고품위, 고품격을 고수하면서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의미의 내용과 더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종합 예능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진선미를 전파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며 저속적이고 과도한 오락화, 상업화 등의 불순 경향을 절대로 반대해야 한다. 스타를 따라다니고 스타를 띄우는 것을 단호하게 제재하고 연기분야 스타가 참여한 예능, 리얼리티 쇼 등 프로그램은 방송 양과 방송 시간대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광전총국은 스타와 일반인이 결합된 예능과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장려한다. 광전총국은 중화 문화 특색이 있는 독자적인 창작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는 것을 선도하고 장려하며 원칙적으로 황금 시간대에는 해외 포맷을 수입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방송하지 않는다.

5. 중점 시기 황금 시간대의 드라마 방송 관리 및 컨트롤을 강화한다.

각 성급 신문출판 및 방송 영상 행정부처는 정치의식과 주체책임의식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관할 구역 TV 위성 종합채널의 드라마 방송 업무 지도를 강화하면서 감독관리 직무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정치관, 가치관, 심미관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중점 드라마의 창작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총괄 효율을 강화하며 밀접히 추적 지도하면서 중요한 홍보기간의 드라마가 약속된 시간에 안전하게 방송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TV 위성 종합채널은 미디어 진영 의식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익 최우선시를 시종일관 고수하며 품질을 핵심으로 엄격하게 작품을 선별하고 최선을 다해 편성하며 드라마 선별 관문, 방송 관문을 확실하게 잘 지키고 방송 전 심사, 재방송 재심사 직무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중요한 홍보기간에 맞춰 방송 편성 계획을 역배치하고 원칙적으로 오락성이 강하고, 소재 내용이 민감한 드라마를 편성 방송할 수 없으며 전체 홍보 분위기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드라마 홍보 평론을 유도하는 것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6. 사회자와 게스트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TV 위성 종합채널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방송 사회자와 게스트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신광전발[2015]129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사회자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회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자가 프로그램에서의 유도, 컨트롤 직무를 발휘하면서 정확한 가치관을 전달하고 사회의 문명 기풍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게스트 MC’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게스트를 엄격하게 선별하여 최적화되게 배치해야 하며 연예 스타를 게스트로 초빙할 경우 반드시 도덕 품행, 예술 성과를 첫 번째 표준으로 정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우수한 문화학자, 도덕과 예술을 겸비한 예술가 등 한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사람을 게스트로 초빙하여 프로그램의 교육 유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국민 중심의 업무 방향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대중의 프로그램에서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기층 대중이 프로그램의 게스트,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대중을 스타의 들러리 혹은 배경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고 프로그램 속지 관리직무를 강화한다.

각급 라디오·TV 방송기관은 이데올로기 업무책임 기준에 따라 관리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3심제와 재방재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부정 행위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중요한 민감 프로그램은 주요 책임자가 직접 심사하고 사인해야 한다. 각급 신문출판 및 방송 영상 행정부처는 직무를 잘 이행하고 속지관리를 강화하며 인원 교육, 보고 심사, 일상 감독관리, 홍보 알림, 감독 적발 등 직능을 강화하고 담당자가 책임이 있고, 담당자가 책임을 지며, 담당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별 검사를 진행하여 불안 요소를 즉시 제거하고 여론 환경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방송 공간을 정화시켜야 한다. 각급 시청 및 청취 기관은 업무 강도를 높여 중점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추적 감청, 감시를 진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34.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视听节目创作播出管理的通知
게재일	2017-05-16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창작 방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²⁶⁾ 신문출판광전국, CCTV3, 중국교육TV방송국, 중앙 직속 기관<정보네트워크의 시청프로그램 전파 허가증> 보유 기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문화산업이 나날이 번영하고 전파 영역의 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라디오TV 및 인터넷 등 각종 전파 플랫폼 상의 시청각 프로그램이 급성장 추세를 나타냈고 많은 국민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문화 상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중 가치적 왜곡, ‘오락’ 지상주의, 저속한 콘텐츠, 저급한 품질, 저속한 격조, 거친 언어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인도와 통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주의의 선진적 문화의 전파와 건강하고 적극적인 인터넷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반드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해야 한다.

각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창작과 생산은 모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교육과 선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소한 것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시대적 정신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여야 한다.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인애를 강조하고, 민본을 중요시하며, 신용을 지키고, 정의를 숭상하며, 화합을 숭고하게 여기고, 공통점을 찾는 등 핵심 사상이념을 심도 있게 서술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일에 전념하면서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며 노인을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려야 한다. 후흑학(厚黑学)²⁷⁾, 암묵적인 관행, 불량 문화 등 봉건적 잔여 문화와 부패한 유독(遺毒) 사상을 단호하게 저지하고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 개인주의 등 불건전한 풍조를 철대 반대해야 한다. 가정 문명 건설을 크게 홍보하고 ‘가훈을 전승하고 가규를 수립하며 가풍을 선양’ 하는 활동을 잘 보도하며 ‘가훈, 가규, 가풍’이 주제인 도덕적 프로그램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혁명 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선양하고 애국주의가 핵심인 민족정신과 개혁 창조가 핵심인 시대적 정신을 선양하며 조국과 영웅과 시대를 찬양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 수립과 고수를 인도함으로써 각종 주류 사상과 주류 가치를 비방하는 내용을 반대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반동을 미화하며, 숭고함을 조롱하고, 영웅모범을 부정하는 틀린 성향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무비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줄거리는

26)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27) 후흑학(厚黑学): 낮가죽(臉皮·검피)은 두텁고(厚·후) 마음씨(心腸·심장)는 시커메야(黑·흑) 함

정의를 선양하고 주장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진선미를 전파하고 거짓과 추악함을 채찍질하며 선을 쌓으면 덕이 되고, 아름다운 덕행을 널리 알리는 윤리적 지향을 구현함으로써 도덕 교화와 가치의 인도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 문명 건강의 심미적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무비, 인터넷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각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국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고수하고 생활과 국민에게 밀착하여 분주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며 건강한 격조를 고수해야 한다. 또한 자각적으로 저급 취미를 멀리하고 저가의 웃음소리, 무절제한 오락과 절개가 없는 쓰레기를 단호하게 버리며 도덕의 마지노선과 사회적 양심을 침범하는 행위를 무정하게 배척하고 절대 시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락 보다는 숭고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절대 스캔들, 추문, 프라이버시, 나쁜 기록 등을 조작하여 조회수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무비 등은 고가의 스타 숭배, 무료한 게임, 사치스러운 연회 등 불량 풍기를 단호하게 반대하여 게임적인 인생 심리 상태와 과장된 풍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공서양속을 유지하고, 절대 속임수와 쇼, 고의로 모순 격화,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 확대해석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대중을 오도하여 옹고 그름을 헛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절대 저속적인 속임수와 나쁜 품행을 나타내거나 음란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타의 자녀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3. 반드시 국가 통용 언어문자의 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각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국가 통용 언어문자 유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존중하게 예를 지켜야 하며 엄격하게 규범화된 서법과 표준에 따라 국가통용언어문자의 문자, 단어, 구, 성어 등을 사용해야 한다. 같은 독음을 남용하고, 단어의 뜻을 제멋대로 만들며, 뜻을 함부로 곡해해서는 아니 되고 규범화하지 않은 인터넷 언어와 틀린 단어 그리고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 때는 정확한 방향을 고수하고 어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저속하고 졸렬하며 세속에 영합된 저급 취향을 스스로 버리고 희롱, 불결, 악독, 모욕, 욕설 등 극단적인 언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명칭, 대사, 자막, 더빙 등 언어문자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출연자, 제작진, 사회자, 게스트 및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통용 언어문자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며 국가 통용 언어문자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반드시 “표준화, 동일화(一个标准 一把尺子)”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라디오TV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과 요구를 고수하여 정치, 가치, 심미 기준을 잘 지키고 통일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드라마, 영화는 웹드라마, 웹무비로 방영을 하지 못한다. 가이드의 부정확성,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라디오TV 예능 프로그램도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의 명의로 인터넷, IPTV, 인터넷TV에서 방송을 할 수 없다. 라디오TV에서 방송이 불가한 프로그램은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포함)에서도 방송을 불가한다.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포함)에서 방송을 금지한 프로그램은, 라디오TV에서도 방송을 금지한다. 내용이 규정을 위반해서 삭제된 경우,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방영을 금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이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에 진입 시,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홍보 가이드를 만들어 긍정적인 여론 우세를 형성해야 한다.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한 이론으로 관중들의 관심 화제를 해석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로 인터넷의 안 좋은 기운을 없애고 건강한 내용이 많아지도록 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온오프라인 모두 ‘동심원’화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5. 반드시 유효한 심사 제도를 보완 구축한다.

각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전면적으로 주체적 책임을 실시하고 유효한 심사 체계를 보완 구축해야 한다. 방송 전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총 편집 책임제와 프로그램 등록 등의 규정을 실시한다. 지도책임을 취재 편집 제작 방송 각 파트와 구체적인 부서에 실시하여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책임 회피 문제를 피하도록 한다. 인재 교육, 정치적 자질, 업무 수준을 강화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내부 책임 규명 제도를 보완하여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의 책임인지 검사하여 실수한 직원에게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관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안 된다.

6. 반드시 업계 관리의 법정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신문 출판 라디오TV 행정 부처는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실시하고 소속 관리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신이 담당한 업무는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일상 관리, 전문 관리, 업무 훈련, 홍보 지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기관의 관리와 가이드를 강화해야 한다. 책임 회피, 규정 위반 내용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서비스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경고, 벌금 나아가 <정보 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 취소 조치를 취한다. 규정 위반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벌금,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 취소 조치를 취한다. 불법으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통신 관리 부처에 폐쇄, 엄중 처벌을 요청한다. 불법으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을 영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라디오TV 영상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한다.

각급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감시 관리 기관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평가, 문제점 분석, 규정 위반 내용의 발견, 연구 판단을 실행해야 한다. 관련 업계 조직은 업계 자율성과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35.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支持电视剧繁荣发展若干政策的通知
게재일	2017-06-26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한 통지 (신광전발〔2017〕19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상무청(위원회), 인적자원 사회보장청(국):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문예 번영 발전에 관한 의견>을 관철 집행하고 더 많은 사상이 심오하고, 예술적 조예가 깊으며, 제작 품질이 우수한 드라마를 출시하고 대중의 문화생활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 정책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드라마 창작 계획을 강화한다. 2017-2021년 드라마 창작 생산 계획을 작성하고 당, 조국, 국민, 영웅을 노래하는 일련의 우수 작품을 내놓으면서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한다.
2. 드라마 대본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선도하는 것을 고수하고 중대한 혁명과 역사 소재, 현실 소재, 농촌 소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창작을 지원하며 중요한 시간대에 방송하는 소재 선택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치 함의와 예술 품격이 일치한 우수한 대본 선별, 자금 지원, 홍보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3.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드라마 투자, 배분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시킨다. 창작을 충분히 존중하고 격려하며 투자와 배분에서 창의와 지식의 가치를 구현한다. 업계에서는 드라마 예산 배분 비율 지도의견을 구성하여 내놓고 제작업체가 드라마 예산 투입 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출연료 배분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도록 유도한다. 구매, 방송, 홍보 행위를 규범화하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며 방송기관이 스타를 유일한 가격 협상 표준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능 프로그램, 웹드라마는 TV드라마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4. 드라마 방송 구조를 개선한다. CCTV방송국 종합채널과 드라마 채널, 각 성 위성TV 종합채널, TV방송국 형태 서비스에 종사하는 중점 동영상 사이트는 매년 황금시간대에 중대한 혁명 역사, 농촌, 소수민족, 군사 등 소재의 드라마 방송을 배치하여 시대적 모티브를 대대적으로 선양하고 각종 소재 구조 비율이 적당한 방송 구조를 형성한다.
5. 드라마 시청 조사와 관리를 규범화한다. 시청 조사 활동을 규범화하고 시청률 조사기관이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며 법에 의해 시청률 조작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업계 질서를 유지한다. 시청 데이터 응용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청률을 드라마 구매 가격의 유일한 근거로 해서는 아니 되며 시청률이 드라마의 우열과 직원에 대한 상벌을 평가하는 유일한 표준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토대로 하는 중국 특색 시청 조사 체

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조사기관이 기존의 랜덤 조사, 대표본 시청 조사, 다양한 스크린 시청 등 시청 조사방법과 방식을 완비시키도록 유도한다.

6. TV드라마, 웹드라마 관리를 총괄한다. 미디어 융합이라는 총체적 사고방향에 따라 TV드라마, 웹드라마에 대해 동일 표준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중점 웹드라마 창작 계획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행하고 프로그램 서비스 전 사상적, 예술적 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 플랫폼 사이트의 주체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한다. 우수한 TV드라마 제작업체가 웹드라마 제작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웹드라마의 전체적인 창작 수준을 높인다. 각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가 우수한 품질의 중국산 TV드라마를 제작, 구매, 방송하는데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영화, 드라마의 온라인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신문출판광전부처가 발급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드라마와 영화는 일체 온라인에서 방송할 수 없다.
7. 우수한 TV드라마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영화 및 드라마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TV드라마의 국제 협력, 합작 촬영을 강화하고 ‘TV 중국 극장’ 브랜드를 만들어 우수한 TV드라마와 관련 영화 및 드라마 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중국 TV드라마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TV드라마 수출 장려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TV드라마 수출에 대한 지원 장려 강도를 확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산 TV드라마 저작권 구매, 번역 제작, 국제 버전 제작 등 부분을 지원한다. 매년 제작업체를 조직하여 국제 영향력이 있는 국제 영화 및 드라마 페스티벌에 참가시키고 전시부스를 만들어 프로그램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한다.
공공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TV드라마의 해외진출을 위해 중점 국가별 투자 및 무역정보를 제공하며 영화 및 드라마 업체가 해외시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조건이 되는 각종 시행 주체가 합병, 합자, 협력 등 방식을 통해 중국 영화 및 드라마 프로그램 방송 채널, 시간대를 개설하고 해외에 사업체를 세워 해외 제작 및 전파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8. TV드라마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드라마 작가 육성 계획을 실시하고 중앙과 성, 구, 시 주무부처, 문학연합회, 작가협회 및 영화 및 드라마 업계에서 드라마 작가 창작 연구반, 집필반 등을 만들고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는’ 장기 효율 메커니즘을 완비시켜 대량의 핵심 드라마 작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TV드라마 제작기관의 주요 책임자, 제작자, PD의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5년에 한번 씩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국제 협력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특별 연수반 개최, 국내 TV드라마 제작 마케팅 주요 인력의 해외 연수 진행 등 형식을 통해 국제 합작 촬영, 제작, 마케팅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한다. TV드라마 기반의 직업 기능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학교, 영화와 드라마 학교 및 관련 직업기술학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영화 및 드라마 직업 기능 인재 양성기지를 인정하며 학교와 기업이 연합하는 등 방식을 통해 촬영, 녹음, 미술, 의상, 분장, 소품, 화기, 세트 등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TV드라마 발전에 맞고 종류가 완비한 전문화 인력풀을 형성하여 TV드라마 종사자의 전체적인 자질을 높인다.
9. TV드라마 종사자의 사회 권익을 보장한다. TV드라마 기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촬영기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작진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TV드라마 창작 프로젝트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모색하며 드라마 촬영 및 제작에 참여하는 농민공 등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권익을 보장하고 상업보험 가입을

통해 드라마 종사자의 직업 위험 보장수준을 확실히 높이고 드라마 종사자의 적법한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사회단체, 민간자본 등이 드라마 촬영 제작 인력의 업무상 상해 및 장애 등에 대해 구제하도록 장려하며 조건이 되면 드라마 종사자 공익보장펀드를 받기 및 설립해도 된다.

10. 새로운 문예계층의 직함 평가 루트를 명확히 한다. 새로운 문예계층 중 영화 및 드라마 인재의 전문 기술 직함 평가 업무는 문학연합회, 작가협회 등 대중 단체와 관련 부처가 조율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직함 평가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직함 평가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기율을 엄격히 하며 평가 시험을 강화하고 추적 조사 및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1. TV드라마 홍보 평가를 강화한다. 각급 각종 미디어를 총괄하여 우수한 TV드라마의 홍보 업무를 진행한다. 각급 문예평가기구, 연구기관, 대학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장하며, 칭찬과 질책이 있는 TV드라마 논평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TV드라마 수상자 선정 심사 개혁을 심화시키고 심사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며 수상자 선정 행위를 규범화하고 수상자 선정 장려 및 유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12. TV드라마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투입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정부와 시장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을 토대로 현존 자금 루트를 통해 투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TV드라마의 번영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13. 민간자본이 TV드라마의 번영 발전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규범화한다. 투입 방식을 혁신하고 기업, 사회기관이 TV드라마 창작 생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규범화한다.
14. 조직 영도를 강화한다. 각급 발전 개혁, 재정, 상무, 교육,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처는 TV드라마의 번영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중요시하면서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각급 신문출판 광전부처는 책임 의식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구체적인 시행 업무를 중시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한다.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의해 정책조치 이행 상황의 추적 감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36.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电视剧网络剧制作成本配置比例的意见
제재일	2017-09-22
출처	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TV제작위원회, 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연기자위원회, 중국 TV드라마제작 산업협회,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TV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비 배분 비율에 관한 의견

각 회원업체, 영상제작기관과 TV 드라마&웹드라마 종사자:

중국의 영상업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산업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우수한 영상작품들이 창작되어 방송되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일부 배우들의 개런티가 지나치게 높은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고 이로 인해 영화 드라마의 제작비 구성이 불합리해지고 소득 배분 비율이 균형을 잃었으며 더 나아가 영화 드라마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5개 부처 및 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드라마 발전을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에 관한 통지>와 전국드라마업무간담회의 관련 취지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제작업체의 드라마 투자 대비 비용 구조의 합리적인 배치와 개런티 배분 시스템의 최적화를 인도하며 ‘작품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하는 프로정신을 선양해 양호한 업계 기풍을 형성함으로써 영상업계의 투자와 산출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각 회원업체 및 영상제작기관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배우 개런티의 비율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며 전체 배우의 총 개런티는 총 제작비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중 주연 배우의 개런티는 총 개런티의 70%를 넘어서는 안 되고 기타 배우의 개런티는 총 개런티의 30%를 넘어야 한다.
2. 전체 배우의 총 개런티가 총 제작비의 40%를 넘을 경우, 제작업체는 소속협회(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TV제작위원회, TV드라마제작 산업협회 또는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 및 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연기자위원회에 등록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3. 각 회원업체, 영상제작기관 및 TV 드라마&웹드라마 종사자는 도덕성과 예술성의 검비를 직업적 이념과 추구 목표로 삼아 불합리한 거액 개런티 등 불량한 업계 기풍을 자제해야 한다.

본 통지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37.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规范和促进4K超高清电视发展的通知(新广电发〔2017〕230号)
게재일	2017-11-09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4K UHD TV 발전의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생산건설병단²⁸⁾ 신문출판광전국, 총국 직속 각 기관, 중국교육TV방송국:

최근 수년 TV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기술의 진보와 TV 단말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부 기관은 승인을 받고 4K UHD TV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과 전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UHD TV 발전의 촉진을 위해 유익한 모색과 실천을 진행했지만 관리 불규칙, 기술 품질의 표준 미달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4K UHD TV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4K UHD TV 발전의 중요성과 막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실을 토대로 하는 정책 유도 강화를 고수한다. 4K UHD TV를 발전시키는 것은 신문출판방송영화부처가 중앙의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관철 집행하고,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방송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대중의 더 높은 시청 체험 수요를 만족시키며 문화산업과 민족공업의 발전을 촉진 및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4K UHD TV 발전은 방송 및 영화의 또 한 번의 중대한 기술 진보와 전환 및 업그레이드이기도 하며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영향이 큰 바,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다. 현재, 중국의 4K UHD TV는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고 비교적 성숙한 산업사슬과 생태계 사슬을 형성하지 못했다. 각 기관, 각 부처는 4K UHD TV 발전의 중요성과 막중함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깊게 고민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상황과 방송 발전의 현실과 긴밀히 결부시켜 현실을 토대로 하는 것을 고수하고 조직 영도를 강화하며 정책보장을 완비시켜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HD TV 발전이 비교적 좋은 성(省)과 기관의 4K UHD TV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범 선행, 안정 속 발전을 고수한다. 몇 년의 육성을 거쳐 현재 국내 HD TV는 안정적인 발전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의 수요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격차가 있으며 홍보 강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처는 HD TV와 UHD TV의 발전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잘 해야 한다. HD TV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4K UHD TV를 발전시키는 기반이며 광전총국은 HD TV 발전이 좋은 성, 기관이 4K UHD TV 시험을 진행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시범을 통해 콘텐츠 구축, 기술 지원, 운영 관리, 조치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과 실천을 하고 경험을 얻은 후 점차 확대한다.
3. 4K UHD TV 기술표준체계 구축을 한층 더 강화하고 표준 규정을 통일시켜 기술 품질을 보장

28)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한다. 4K UHD TV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표준을 통일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하여 통일된 기술 표준체계 구축 및 완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K UHD TV 시범업체는 <고효율 오디오/동영상 코딩 제1부분: 동영상>, <UHD TV 시스템 프로그램 제작과 교환 참고 수치> 등 국가와 업계 기술표준을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4K UHD TV 수신 단말기(유선TV 단말기, IPTV단말기, OTT단말기 및 TV 복합기)는 TVOS 스마트 TV 운영 시스템, AVS2표준 해독 및 HDR과 3D Audio 표준을 지원해야 한다.

4. 4K UHD TV 콘텐츠 구축, 콘텐츠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공급을 높여야 한다. 4K UHD TV 프로그램 제작 능력 구축을 강화하고 정확한 방향을 장악하여 우수한 작품 창작을 장려하고 프로그램 생산능력과 저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4K UHD 시청 콘텐츠 생산의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발전 초기에는 조건이 되는 제작, 방송, 전송 기관이 광전총국의 일관된 배치와 요구에 따라 스포츠 경기, 다큐멘터리, 영화 및 드라마, 문화기술 등 프로그램에서 4K UHD TV 발전을 모색하도록 격려한다. 유선TV망이 4K UHD TV 동영상 방송 업무를 진행하도록 장려하며 조건이 되는 방송기관이 UHD TV 송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여 조건이 성숙될 경우 적당한 시기에 4K UHD TV 채널 시범을 신청할 것을 장려한다.
5. 발전 모델을 혁신하고 제작과 방송, 전송, 서비스 협업 일체화 발전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여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4K UHD TV 발전은 미디어 융합, 스마트 방송, 광대역 방송 등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아울러 라디오 TV방송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방송, 고효율 협업 전송과 스마트 단말기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융합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협업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광전총국은 4K UHD 발전에서 발전모델 혁신을 장려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스마트 협업 서비스, UHD 홈시어터 등 신모델, 새로운 업무 경영 형태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4K UHD 기술 조건하에서의 방송 미디어 발전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방송 기술의 진보와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데 노력한다.
6. 규범화 발전을 고수하고 4K UHD TV 채널 시범과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K UHD TV는 방송의 새로운 여론 홍보 진영이며 규범화 발전을 고수하고 이데올로기 책임제를 엄격히 이행하며 정확한 정치방향과 가이드를 고수해야 한다. 4K UHD TV를 방송 감독관리체계에 포함시켜 가이드 안전, 방송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심사승인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고 승인 없이는 그 어느 업체든 유선TV, 지상파 TV 시스템은 물론 IPTV 및 인터넷 TV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4K UHD TV 채널과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무단으로 개설해서는 안 된다.
7.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부처와 협업하면서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각 기관은 4K UHD TV 발전에 대한 조직 영도, 총괄 계획, 치밀한 배치, 조율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각급 정부의 사회발전 계획 및 관련 배치와의 효과적인 연결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유관 부처와 협업 연동을 잘하여 적극적으로 각급 당 위원회 정부와 사회 각계의 주목과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자간의 협업과 힘을 모아 4K UHD TV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양호한 정책 환경과 발전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38. 라디오·TV 프로그램 등록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进一步加强广播电视节目备案管理和违规处理的通知(新广电发[2017]254号)
게재일	2017-12-06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신문출판광전국, CCTV3채널, 중국교육TV방송국, 관리감독센터: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의 취지를 관철해 실행에 옮기고 라디오·TV 홍보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며 라디오·TV의 전파력, 인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의 실행과 기반 건설 및 관리 강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중점 프로그램의 등록 관리 강화

방송국에서 국제 뉴스 프로그램, 군사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면 1개월 전에 위성 TV 종합 채널에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이브닝 파티,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프라임 타임에 예능 프로그램, 리얼리티 쇼, 토크 쇼, 짝짓기 프로그램, 장기자랑 대결 쇼, 휴먼 스토리, 게임 대결형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면 2개월 전에 성급 신문출판광전국에 등록해야 하며 성급 신문출판광전국의 심사 승인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등록해야 한다. 각급 라디오·TV 행정부처와 방송기관은 중점 프로그램의 등록을 중요시해야 한다. 전담자가 담당하고 관련 리더가 직접 심사 점검함으로써 관련 자료가 제때에 정확하게 제출되어 등록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규정 위반 프로그램의 엄격한 처리 처벌

방송 프로그램은 품위, 품격을 지키고 책임을 저야 하며 저속하고 세속에 영합한 내용을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돈 개선, 경고, 방송 정지 제도를 보완하고 정치적 인도, 가치적 인도, 심미적 인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 광전총국이 문제를 발견하거나 <청취 시청 일보>를 통해 지명 비판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비판한 프로그램의 경우, <라디오·TV 방영기관 규정위반 처리방법(시행)>(광발[2009]30호)의 관련 조항에 의거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전총국의 정돈 개선, 경고,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은 전체 영상, 편집 영상, 메이킹 영상 등 각종 방식으로 재방송 또는 변칙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인터넷 뉴미디어를 통해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3. 관련 일체화 제도의 완비

광전총국의 정돈 개선, 경고,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은 당해 광전총국의 혁신 창조 분기별 추천 우수 프로그램, 연간 우수 프로그램 평가에 참가해서는 안 되며 각종 프로그램 우수상 평가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광전총국의 경고를 받은 프로그램은 즉각 프라임타임에서 빠져야 한다. 경고,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방송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책

임자와 직접적인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광전총국은 관련 라디오/TV 방송국, 주파수/채널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관련 라디오/TV 방송국은 주파수/채널 담당자,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문제 프로그램의 공개적 비판 제도 수립

광전총국은 처분 받은 문제 프로그램을 <청취 시청 일보>와 매주 전국 TV 전화 홍보 정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통보 비평 또는 지명 비평을 하며 개별적으로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문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광전총국의 정돈 개선, 경고,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의 명칭, 문제점, 소속 제작 방송 기관, 처리 상황 등을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보존 비치해야 한다.

5. 속지관리와 심사감독의 강화

각급 신문출판광전행정부처는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와 속지관리 책임을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 문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도하고 기본 의식을 강화하며 관할구역 내 제작 방송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 보고하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 각급 라디오·TV 방영기관은 방송 전 3급 심사, 재방송 재심 등 기본 제도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프로그램 심사기준, 시행세칙 및 문책제도를 수립 보완하며 제작과 방송의 각 부분 위험 요인을 정리하고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의 주요 책임자는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의 1차 책임자로서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을 능동적으로 이행하고 프라임 타임 프로그램과 민감한 중점 프로그램을 직접 심사하여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각급 청취 시청 기관은 라디오·TV 프로그램을 24시간 끊임없이 모니터링 평가함으로써 뚜렷한 문제점을 판별 분석하고 규정을 어긴 해로운 내용을 즉각 연구 판단해 처리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39. 여름방학기간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做好暑期网络视听节目播出工作的通知
게재일	2018-07-06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신문출판광전국:

여름방학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광범위한 청소년들의 여름방학기간 문화생활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이 쾌적한 사이버공간에서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며, 우수한 시청각 프로그램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유도, 인격도야, 취미유도와 지식교육의 역할을 발휘하는 한편, 시청 웹사이트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방송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 전파

각 성급 광전행정부처는 관할구 내 시청 웹사이트가 여름방학기간 프로그램 배정과 유도를 활성화하도록 지도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양하고, 청소년들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며, 선진 과학문화지식을 전파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어 광범위한 청소년들이 사상성·교육성·과학성·취미성이 일치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즐기며 획득감이 있도록 유도한다.

2. 청소년 심신 건강 보호

각 성급 광전행정부처는 각 시청 웹사이트가 여름방학기간에 프로그램 지침, 콘텐츠를 엄밀히 점검하도록 독촉하고, 저속한 유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량한 콘텐츠가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이돌 양성 유형의 프로그램, 사회 광범위한 참여로 선발하는 노래자랑대회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를 동원하여 주제구상, 가치지향, 사상의미, 분야설정 등 분야에서 엄격히 평가하여 프로그램 지침이 정확하고 콘텐츠가 건강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확보하되, 프로그램의 지나친 오락화와 배급 향락 선양, 명리에 급급한 등의 잘못된 현상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여름방학기간 건강하고 명쾌한 인터넷 시청환경을 공동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40.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直播服务管理工作的通知
제재일	2018-08-01
출처	전국 ‘싸오황다페이(掃黃打非)’ ²⁹⁾ 공작소조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싸오황다페이(掃黃打非)’ 공작영도소조판공실, 통신관리국, 공안청(국), 문화청(국), 신문출판광전국, 중공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최근 연간 인터넷 생방송업무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이하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정보를 전파하는 현상이 다발하는 문제에 비추어 관계 부처는 업무역량을 꾸준히 확대하여 규정위반 불법 기업을 조사 및 타격했다. 현재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과 저속한 정보를 전파하는 문제가 억제되었고, 기업이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의식과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접속하는 부분적인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유해 정보를 전파하여 사회 위해성이 커서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영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비영업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 관리방법>, <통신사업 경영허가 관리방법>,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관리 강화 문제 관련 통지> 등 관련 규정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사이버공간을 정돈하기 위해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업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허가 및 등록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의거해 통신 주무부처에 웹사이트 ICP 등록을 하고, 통신사업 및 인터넷 뉴스 정보, 인터넷 공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등 업무와 관련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관계 부처에 통신사업 경영,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 정보 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등의 라이선스를 신청해 취득하며, 또한 생방송 서비스 개통 30일 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 공안기관에 가서 공안 등록수속을 이행한다.

인터넷접속 서비스업무, 인터넷데이터센터 업무, 콘텐츠 전송 인터넷업무(이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ICP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 업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않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모바일 지능형 단말기 응용소프트웨어 전송 플랫폼(이하 ‘앱스토어’)은 ICP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관련 업무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모바일 지능형 단말기 응용 소프트웨어(이하 ‘APP’)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기반관리 사업을 강화한다. 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공업정보화부의 ICP/IP주소/도메인 정보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지의 통신관리국에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ICP, IP주소, 도메인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 부처는 불법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 블랙리스트를 구축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ICP, IP주소, 도메인 정보를 확인하며, 정보가 일치

29) 싸오황다페이(掃黃打非)는 중국 정부의 음란물 및 불법 침해 단속 활동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임, 역자주

하지 않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웹사이트, APP를 위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앱스토어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APP를 위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각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대로 사용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인터넷 진행자 관리를 강화하며, 진행자 블랙리스트제도를 수립하고, 생방송 콘텐츠 모니터링, 심사제도와 불법 유해 콘텐츠 처분조치를 정비시켜야 한다.

3. 보존량 규정위반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정돈사업을 전개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앱스토어는 즉각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ICP 등록수속 또는 관련 업무 라이선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인터넷 생방송 제공자가 2개월 내에 관련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2개월 후에 여전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정지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즉각 서비스를 정지해야 한다.

4. 건전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규제사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라이선싱 범위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되, 생방송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및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콘텐츠 심사, 정보 여과, 신고 고발 처리 등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7×24시간 비상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술 관리제어 방법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요구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과정에서의 규정위반 불법행위를 처분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생방송 서비스 사용자의 발표 내용과 일지 정보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메모리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메모리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의거해 관계 부처의 감독검사, 조사증거 취득에 협조하고, 또한 필요한 문헌,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5.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 앱스토어가 라이선싱, 등록수속 심사 및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 정보의 전파를 초래했을 경우, 관계 주무부처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조사 처분한다.

41.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의견 공개 수렴 통지

제목	《境外人员参加广播电视节目制作管理规定（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
게재일	2018-09-20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 광전총국의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관련 의견 공개 수렴 통지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를 규범화하고 라디오·TV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광전총국은 <규정 제정 절차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을 작성하여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대중은 아래 경로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중국정부 법제정보망(웹사이트 주소: <http://www.chinalaw.gov.cn>)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입법 의견 수렴’란에 들어가 의견 제출
2. 서신을 통한 의견 제출: 서신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푸싱먼와이다지에 2호(北京市西城区复兴门外大街2号) 국가광전총국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우편번호: 100866
3. 팩스를 통한 의견 제출: 팩스 번호 010-86093288

의견 피드백 마감 시간은 2018월 10월 20일이다.

국가광전총국
2018년 9월 20일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외국인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라디오·TV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라디오·TV 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와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해외 및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의 인력(이하 ‘해외 인력’으로 약칭)을 중국 내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해외 인력을 고용해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는 경우, 국민 중심의 창작 가이드를 견지하고 사회적 효과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과 중화 민족의 우수

한 전통문화를 선양하고 중국의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중국 전역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의 해외 인력 고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본 행정 구역 내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의 해외 인력 고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해외 인력 고용 등록 관리 전자 사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

제2장 고용 및 방송 규범

제6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통일, 주권, 영토 보전과 국가 존엄, 명예,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2) 중화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고 미풍양속을 위배하면 안 된다.
- (3)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 (4) 긍정적인 대중 이미지와 건강한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 (5) 프로그램 요구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과, 전문 기술 혹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 (6)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있어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모범과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

제8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기관은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킬 해외 인력 고용 시, 노동 계약서 혹은 합의서를 체결해 업무 내용과 권리 의무 등 사항을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

제9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기관은 해외 인력 고용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 본 법규 제6조, 제7조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고용하면 안 된다.

제10조 라디오·TV 방송기관은 라디오·TV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해외 인력을 고용하면 안 된다. 라디오·TV 방송 기관과 해외 라디오·TV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외에 방송하는 프로그램 및 국제 채널, 국제 주파수 등 외국인 사회자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기관은 고용한 해외 인력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완비된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인력 관리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제12조 라디오·TV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방송 예정인 라디오·TV 방송 기관이 재방송의 재심사

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 과정에서 고용한 인력의 조건이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본 프로그램을 재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라디오·TV 방송 기관은 라디오·TV 광고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광고 속의 해외 인력이 본 규정 제6조, 제7조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해당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등록 요구

제14조 중국은 해외 인력을 주제작자로 중국산 드라마, 예능, 토크쇼 등 라디오·TV 프로그램(이하 ‘기타 라디오·TV 프로그램’으로 약칭) 제작에 참여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앞서 언급한 중국산 드라마의 주제작자는 중국산 드라마의 작가, 기고자, 감독, 주요 출연자 및 주요 스태프 등을 가리킨다. 기타 라디오·TV 프로그램 주제작자는 라디오·TV 프로그램 프로듀서, 감독, 게스트, 주요 출연자 등을 가리킨다.

제15조 한편의 중국산 드라마에서 주제작자로 고용된 외국인 수는 동종 인력 전체 인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지역 인력은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작가와 감독은 해외 인력이 동시에 담당해서는 안 된다, 극 중 남녀 주인공은 해외 인력이 동시에 담당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한 회의 예능, 토크쇼 등 라디오·TV 프로그램에서 주제작자로 고용된 외국인 수는 동종 인력 전체 인원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지역 인력은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중앙 라디오·TV 방송국, 중국 교육TV방송국 및 중대 소재 혹은 정치, 군사, 외교, 국가안보, 통일전선, 민족, 종교, 사법, 공안 등 민감한 내용의 드라마의 해외 인력 고용 등록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 지역 내의 중국산 드라마 제작 기관, 라디오·TV 제작 및 방송 기관의 해외 인력 고용 등록을 책임진다.

제18조 해외 인력을 중국산 드라마 제작 주제작자로 고용 시, 고용 기관은 모든 해외 인력과 계약 체결 후 5일 내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 주요 내용: 드라마 명칭, 해외 인력 기본 상황, 담당 역할, 본 규정의 제15조 비중 조건 부합 여부 등.

제19조 해외 인력을 기타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주제작자로 고용 시, 고용 기관은 모든 해외 인력과 계약 체결 후 5일 내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 주요 내용: 프로그램 명칭, 해외 인력 기본 상황, 담당 역할, 프로그램의 방송시간과 방송 플랫폼, 본 규정의 제16조 비중 조건 부합 여부 등.

제20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고용 기관의 등록 정보를 수령한 후 5일 내에 고용 기관에게 서면으로 된 등록 수령증 혹은 디지털 파일 등록 수령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라디오·TV 방송 기관은 해외 인력이 주제작자로 참여한 기타 라디오·TV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 제작 기관의 해외 인력 프로그램 제작 참여 등록 수령증 구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제22조 드라마 제작 기관은 중국산 드라마 심사 제출 시 중국산 드라마 해외 인력 고용 등록 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관리감독

제23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건전한 프로그램 청취 및 시청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일상적인 청취 및 시청 모니터링, 특별 검사, 현장 표본 검사 등 방법을 활용해 해외 인력을 고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4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해외 인력을 고용한 중국산 드라마 제작 기관, 라디오·TV 제작 방송 기관의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25조 라디오·TV 방송 기관은 매 분기에 프로그램 등록을 책임지는 라디오·TV 주무부처에게 해외 인력이 참가한 라디오·TV 프로그램의 청취 및 시청 효과, 사회 평가의 서면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2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반년에 한 번씩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에게 해당 행정 지역 내의 해외 인력이 참가한 라디오·TV 프로그램의 사회적 평가 상황의 서면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28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국산 드라마 제작 기관,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방송 기관을 규정위반 및 신용상실 리스트에 올리고 사회에 발표하며 법집행 검사 강도를 강화한다. 라디오·TV 방송 기관은 규정위반 및 신용상실 리스트에 오른 제작 기관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관련부처와 함께 완비된 규정위반 및 신용상실 공동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국산 드라마 제작 기관, 라디오·TV 제작 방송 기관 및 그 주요 책임자에게 공동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29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방송 기관이 본 규정의 제19조 규정을 위반해 라디오·TV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관련 프로그램 방송 정지를 명령하고 그 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금 이상

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규정 위반 기관에게 통보 비평이 가능하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중국산 드라마 제작 기관이 본 규정의 제18조 규정을 위반해 라디오·TV 주무부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드라마에게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31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방송 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엄격한 고용 인력 조건 심사를 하지 않아 관련 프로그램에서 본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인력이 등장한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관련 프로그램 방송 정지를 명령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규정 위반 기관에게 통보 비평이 가능하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 라디오·TV 방송 기관이 본 규정의 제12조, 제13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해 심사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관련 프로그램 방송 정지를 명령하고 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 라디오·TV 방송 기관이 본 규정의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관련 프로그램 방송 정지를 명령하고 규정 위반 기관에게 통보 비평을 진행한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라디오·TV 방송 기관이 본 규정의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의 라디오·TV 주무부처에서 경고 조치하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라디오·TV 제작 방송 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또는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는 법에 의거해 책임이 있는 인력 또는 직접 책임자를 처분, 처리해야 한다.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처벌 대상의 주무부처 또는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에게 상황을 통보하고 책임이 있는 인력 또는 직접 책임자의 처분, 처리 건의를 제안하고 우편으로 처분, 처리 결과를 문의할 수 있다.

제36조 라디오·TV 주무부처 직원이 본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해 처분을 진행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37조 라디오·TV 제작 방송 기관이 해외 인력을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 관련 법률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 령 제63호) 제22조 제7항 규정은 본 규정의 제22조에 따라 집행한다.

제39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의 해외 인력 고용도 본 규정을 따른다.

제40조 본 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 규정의 기한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법정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1조 본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의 《<외국인의 라디오·영상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규정>의 인쇄 배포 관련 통지》(광발외자[1999]269호), <홍콩, 마카오, 대만 종사자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강화 관련 통지>(광발외자[1999]518호), <홍콩, 마카오, 타이완 종사자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 심층 강화 관련 국가광전총국의 통지>(광발외자[2002]99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42. 영상업 세수질서 관련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规范影视行业税收秩序有关工作的通知
게재일	2018-10-02
출처	국가세무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국가세무총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중양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주 각지 특파원 사무소, 국(局) 내 각 기관:

중양 선전부 등 5개 부처가 영상업계 관련 현안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따른 조치로, 국가세무총국이 업무요건에 대한 조세징수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바탕으로 최근 세무기관에서 적발한 영상업계의 고수입자의 탈세 등의 문제에 관하여 《조세징수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영상업의 조세징수 질서를 규범화하고 영상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통지 한다.

1. 규범화된 영상업 조세징수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최근 중국 내 영상업계는 빠른 발전으로 전체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동시에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 탈세 등의 문제가 드러나 공정한 정의적인 사회에 훼손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업계 이미지와 업계의 발전에 큰 손해를 끼쳤다.

각 세무기관은 이러한 현상에 심각성을 느껴 중양선전부 등 5개 부처가 영상업계의 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파악하고, 영상업계의 조세징수 질서 규범화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

이에 영상업계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꾸준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영상업계에 만연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시정하여, 영상업계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준법 납세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며, 세수관리를 완전하게 실시하여 영상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2. 영상업의 세수질서 규범화 작업의 정확한 임무파악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종료할 계획으로 자진시정, 독촉교정, 심층조사, 총결 등의 단계로 영상업 세수질서 규범화작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1) 자진시정

2018년 10월 10일부터 각지의 세무기관은 본지역의 영상물제작회사,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회사, 연예인 소속사 등 기업 및 영상업계의 고소득 종사자들의 2016년 이후의 납세상황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 및 납세하도록 한다.

2018년 12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영상기업 및 종사자 개인에게 행정처벌과 벌금을 면하도록 한다.

각지 세무기관은 관할지내의 영상기업 및 종사자의 자진 시정업무에 대해 성실히 지도 및 도움을 주도록 한다.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을 설치하여 세무 서비스청 혹은 세무기관의 전문 담당자가 자문을 맡아 자진시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답하고, 자진시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납세인의 자진납세 및 시정 과정 중 방문 세무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2) 독촉 시정

201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자진시정 등의 상황에 맞추어 관련 납세자가 한 단계 더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 및 독촉하는 동시에 안내 및 지도 업무를 강화하도록 한다.

세무기관의 안내 후 자진하여 시정을 진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벌을 감면해주는 한편 위법사항이 경미할 경우 행정처벌을 면제해주도록 한다.

(3) 심층조사

2019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세무기관은 자진시정, 독촉시정 등의 상황을 근거로 시정을 진행하지 않은 영상기업 및 종사자 개인에게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법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한다.

(4) 총결

2019년 7월 말까지 영상업의 세수질서 규범화 작업 중 발생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관리조치를 개선하며, 전체 영상업계 세수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효력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동시에 전체 세수업무 내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세수집행 중 발생하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업 세수질서 규범화 과정 중 세무기관과 세무직원의 위법행위 및 큰 규모의 탈세행위 발생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다.

3. 영상업의 세수질서 규범화 작업의 정착

(1) 조직 리더십 강화

세무총국은 영상업 세수질서 규범화 작업을 위한 지도소조를 만들어 세무총국의 국장이 소조장을 맡도록 하며,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은 팀원이 되어 조직의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각 성의 세무국은 관련 소조와 비교하여 그대로 특별 근무조를 구성하며 세무총국의 통일된 배치 아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부서간 긴밀한 협조

각 세무기관은 영상업 세수질서 규범화 작업에서 능동적으로 현지 당위원회, 정부에 보고하며 지도를 받도록 한다. 또한 선전, 문화, 광전, 시장감독관리,公安, 인민은행 등의 부처와 소통, 협조하여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세분화된 업무분담

각 세무기관은 맡은바 책임 임무에 근거해 세분화된 조치사항들을 연구하고 스케줄 및 책임자를 확정한다. 감독,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여 각 항의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엄격한 기율 준수

보안유지에 각별히 주의하고, 법에 의거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

지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업무기율을 엄격히 시행하여 작업 중 직무유기나
비리행위 관련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도록 한다. 뉴스 기율을 엄격히 준수하여 직무에 따라 사
회적 관심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도록 한다.

43.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문예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제목	国家广播电视总局关于进一步加强广播电视和网络视听文艺节目管理的通知
게재일	2018-10-31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강생산건설병단³⁰⁾ 신문출판광전국, 중앙 라디오TV 총방송국 판공청, 중국교육TV방송국: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각 라디오TV방송기관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핵심에 포커스를 두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원칙으로 우수작품의 생산에 적극적이고 대중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문예 창작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능프로그램에 과도한 스타들의 출연이나, 맹목적인 스타에 대한 추종, 지나친 오락화, 고가의 출연료, 시청률(클릭수)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제작비의 상승으로 업계 질서를 훼손하고 청소년의 맹목적인 스타추종과 배급주의 조장, 벼락스타 등의 그릇된 가치관이 퍼져 이에 상응하는 유효한 조치와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예능프로그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통지한다.

1. 바른 정치방향을 확고히 하고, 가치관을 강화하도록 인도

각 라디오TV방송기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기관, 프로그램 제작기관은 시진핑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사상의 지도아래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과 전국 사상 선전 업무회의의 정신을 학습하고, 정치인이 방송국과 사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견지하는 동시에 ‘이위(二为)³¹⁾’ 방향과 ‘쌍백(双百)³²⁾’ 방침을 견지하여 밝은 문화 환경과 건강한 정신공간을 창조하는데 힘쓰는 한편, 사상계몽과 올바른 마음의 육성, 심미관의 함양, 건강한 사회풍조 등의 중요한 사명을 수행한다.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예능프로그램은 품위와 격조, 책임감을 갖추고 저속하거나, 통속적이며 세속적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저해하는 내용 등을 배제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고 하한선을 지키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은 사회적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무조건적으로 사회이익에 양보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의 조류에 방향을 잃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노예가 되어 작품이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유지, 스타추종의 엄격한 억제, 과도한 오락화 방지

각 라디오TV 방송기관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인식을 갖고 맹목적인 스타추종과 과도하게 오락화 되어가는 등 문제의 위해성에 대해 인식하고 스타들이 판매도구가 되거나, 스타에 의존하여 주목을 끄는 방법,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스타의 자녀들이 참

30) 병단(兵团):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31) 이위(二为): 문예는 국민을 위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스

32) 쌍백(双百): 백화제방, 백가쟁명

여하는 종합예능프로그램과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다. 각 라디오TV 주무부처들은 구조화 관리와 거시적 조정을 강화하여 스타들이 출연하는 오락 및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디션프로그램 방송을 줄이는 반면, 뉴스, 경제, 문화, 과학교육, 생활, 아동, 애니메이션, 다큐, 농촌 공익성 프로그램의 방송 제작을 적극 늘려 더 풍성한 시대적 분위기와 건강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도록 한다.

3. 고퀄리티 콘텐츠로 승부 보도록 장려하여, 프로그램 형식을 혁신하고 패널 출연료 통제

각 라디오TV 방송기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기관, 프로그램 제작기관은 고퀄리티 콘텐츠로 승부를 보고 대중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형식을 새롭게 창출하며, 화려함을 버리고, 검소함을 중시하며,고가 출연료를 자제하여 낭비를 막아 스타들의 프로그램 출연료를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또한 스타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 사명감을 갖고 공익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고가의 개런티로 스타출연을 경쟁하는 불량한 현상을 막도록 한다. 각 방송국의 위성 종합 채널은 19:30~22:30에 방영되는 종합예능프로그램은 사전에 광전총국에 프로그램의 패널의 명칭, 출연료, 출연료와 제작비의 비율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모든 패널의 출연료는 프로그램 제작비의 40%를 넘을 수 없다. 더불어 주요 초대 손님의 출연료는 패널들의 총 출연료의 70%를 넘을 수 없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의 인터넷 종합예능 프로그램 역시 위에서 기술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로드 전에 국가광전총국에 위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지상파 TV채널과 기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의 종합예능 프로그램의 패널 및 초대 손님 관리 역시 위에서 기술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지 라디오TV 주무부처로부터 등록 관리와 일상 감독 관리를 받도록 한다.

4. TV드라마, 웹드라마(웹영화 포함) 관리를 강화하여 업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

이미 출범된 TV드라마, 웹드라마(웹영화 포함)의 제작비 구성 비율의 업계 자율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각 TV드라마, 웹드라마(웹영화 포함)의 출연 연기자의 총 출연료는 총 제작비의 40%를 넘을 수 없으며, 그 중 주연급 연기자의 출연료는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출연자 출연료 총액이 제작비의 40%를 초과할 경우, 제작기관은 소속 협회(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TV제작위원회, TV드라마제작 산업협회 또는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 및 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연기자위원회에 등록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사실을 숨기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 협회는 국가광전총국에 이를 보고하고 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해 프로그램 방영을 중지하거나 영구적으로 방영 및 제작 자격 등을 취소한다. 중국 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TV제작위원회, TV드라마제작 산업협회,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협회는 TV드라마, 웹드라마(웹 영화포함)의 실행 가능한 출연료 표준을 연구, 제정하여 출연자의 최고 출연료 한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업계에 자율규정으로 반영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동시에 업계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규정을 위반한 TV드라마, 웹드라마(웹 영화포함)의 출연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사항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개 발표하도록 한다. 라디오TV 방송기관과 프로그램 제작기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기관과 배급사는 방영하는 TV드라마, 웹드라마(웹 영화)의 구매가격을 올리는 악성 경쟁을 중단하고 스타가 구매의 유일한 표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자금, 면세의 공익기금은 오락성, 상업성이 짙은 TV드라마, 웹드라마(웹 영화)에 참여 및 투자할 수 없다. 출연자의 출연료가 제작비 구성

비율 규정을 넘거나 최고 출연료 한도를 넘는 TV드라마, 웹드라마(웹영화)는 당위원회나 정부부처, 기타 조직이 진행하는 수상 및 표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5. 동일표준, 동일척도 전지로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프로그램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 도모

라디오와 TV, 위성채널과 지상파채널, 온오프라인 일치 표준으로 획일적인 관리를 한다.

각급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방송국과 인터넷을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예능프로그램의 콘텐츠, 방향, 출연자, 출연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문제 있는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모두 방영을 금한다. 또한 정보기술 발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여 각자의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 예능프로그램이 이념, 콘텐츠, 장르, 소재, 형식, 방법과 수단 등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사상과 예술의 정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힘쓴다.

6. 시청률(클릭수) 조사데이터의 사용관리를 강화하여 시청률(클릭수) 조작행위 척결

각 라디오TV방송기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기관은 종합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프로그램의 종합평가를 정확하게 개진하여 합리적인 시청률(클릭수) 데이터의 운영으로 시청률 지상주의를 반대한다. 또한 방영기관이 제작기관에 일정 시청률 확보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시청률을 계약조건으로 거는 것을 엄금한다. 또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시청률(클릭수) 데이터에 관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관련 업계협회와 사단조직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하며, 전체 회원들이 시청률(클릭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도록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항들을 광전총국과公安 등의 부처들과 연합하여 시청률(클릭수) 조작을 단속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시청률(클릭수) 조작 등의 위법행위에 참여 및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사례들을 사회에 공개하여 업계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한다.

7.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 정착과 해당 관리 책임과 속지 관리책임 강화

각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당이 매체를 관리한다는 원칙아래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정착하고, 해당 관리 책임과 속지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라디오TV와 인터넷시청 예능프로그램의 스타에 대한 맹목적 추종, 과도한 오락화, 고액 출연료, 시청률(클릭수) 조작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 해결한다.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라디오TV 주무부처가 《라디오TV 관리조례》, 《라디오TV 방송기관의 위반처리방법 (시행)》 등의 법규에 의거 처벌, 처리하여 사회에 공개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공동 징계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또한 위반한 기관의 주무부처 혹은 처벌 기관은 책임관련 인원과 직속 책임자에게 처벌 및 처리를 집행한다. 사회적으로 엄중한 영향을 미친 작품은 방영을 금하고 법에 의거 처벌하며 관련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처벌 및 처벌받은 기관의 주무부처 혹은 처벌기관에 처벌 상황을 통보하고, 관련 인사의 처벌 및 처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후속 처벌, 처분 조치를 우편으로 문의할 수 있다. 각 급 청취 및 시청 그리고 모니터링 관리감독기관은 프로그램의 청취 및 시청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시에 적발, 판단,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통지한다.

44. 각급 세무기관의 영상업계 세금부과 관리 강화

제목	国家税务总局要求各级税务机关加强影视行业税收征管
게재일	2018-07-13
출처	세무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최근 중공중앙선전부 등 5개 부처의 영상업계 고가 출연료, ‘이면계약’, 탈세 등 문제 처리와 관련한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통지>를 발표하고, 각급 세무기관이 세금 부과분야의 ‘완화, 관리, 서비스’ 개혁을 심층 추진하고, 영상업계의 세금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세금부과 질서를 규범화하고, 영상업계의 건강한 발전 지원에 적합한 세금부과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영상기업과 영상업계 종사자가 법에 의거해 세금을 사실대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업계 납세자는 실제 업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실대로 발행하고,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지 않은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타인이 본인을 위해 발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영수증을 소득세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영상업계 납세자가 적용하는 세금우대정책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해 적용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또한 세금부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통지>에서는 각급 세무기관이 영상업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각지의 세무기관은 선전, 문화, 시장 감독, 광전 등 부처와 협력메커니즘을 구축 및 정비하고, 영상기업과 영상업계 종사자의 경영활동, 수입, 납세 등 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한다. 영상업계 납세자가 재무제도를 정비하고 장부를 개설하도록 지원 및 독촉하며, 법에 의거해 영상업계 납세자의 세금부과 방식을 확정한다. 영상기업과 영상업계 종사자의 세금 위험에 대한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중·저 위험과 고위험 납세자에 대해 각각 위험경고, 세무사찰 등의 조치를 채택해 세금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처리하며, 또한 규정에 따라 세금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관련 부처에 발송하여 공동 징계한다.

<통지>에서는 각급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해 세금우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영상업계의 규범화 발전을 지원하는 세금관리 서비스조치를 채택하여 성실하게 경영하고 법에 의거해 납세한 영상업계 납세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세금처리 그린채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세법 홍보와 정책 해석을 목적성 있게 강화하고, 영상업계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세금 준수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45.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规范网络视听节目传播秩序的通知(新广电办发〔2018〕21号)
게재일	2018-03-16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관공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최근 들어 일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이 규범화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어떤 프로그램은 고전 문예작품을 왜곡, 패러디, 희화화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고전 문예작품, 방송 영상 프로그램과 인터넷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무단으로 잘라서 연결하거나 더빙을 다시하고 자막을 새로 입혀 본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악의적으로 패러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하여 사회적으로 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또 어떤 프로그램은 불법 인터넷 시청 플랫폼 및 관련 불법 시청 제품에 타이틀 스폰서십을 하여 불법 시청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전파되도록 채널을 제공하였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전파 질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사이버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청각 프로그램의 불법 캡처, 편집 행위를 단호히 금지한다.

모든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는 고전 문예작품을 왜곡, 패러디, 희화화한 프로그램을 제작, 전파해서는 안 되고 고전 문예작품, 방송 영상 프로그램, 인터넷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편집, 재더빙하거나 자막을 새로 입혀서는 안 되며 여러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자른 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방송해서는 안 되고, 편집 후 본 의도가 왜곡되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작품 프로그램 장면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네티즌이 업로드 한 콘텐츠 포함 재편집 유형의 프로그램을 엄격히 관리하고 유도성 문제, 저작권 문제, 콘텐츠 문제가 있는 편집된 시청각 프로그램에게 전파채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라디오TV 방송기관, 영상 제작기관의 신고가 있는 프로그램은 즉각 내려야 한다.

2. 인터넷상의 메이킹 영상, 예고편 등 시청각 프로그램의 관리를 강화한다.

각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가 방송하는 메이킹 영상, 예고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송영상 프로그램, 인터넷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드라마, 등록되지 않는 인터넷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 및 방송영상 행정부처로부터 통보 또는 처분 받은 방송 영상 프로그램,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그에 상응하는 메이킹 영상, 예고편도 방송할 수 없다. 제작, 방송되는 메이킹 영상, 예고편 등 프로그램은 정확한 방향성을 고수하고 본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악의적인 패러디로 이슈몰이해서는 안 된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끌어 저속한 아이템으로 클릭수를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미승인’ 버전 또는 ‘승인결과 삭제’ 버전 등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3. 각종 프로그램의 타이틀 스폰서십, 협찬의 관리를 강화한다.

방송TV프로그램,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은 타이틀 스폰서십, 협찬 등을 받을 때 우선 타이틀 스폰서십 또는 협찬사의 자격을 심사해야 하며 <정보 인터넷 방송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방식에는 인터넷 생중계, 타이틀 스폰서십, 광고 또는 협찬이 포함된다.

4. 속지관리책임을 엄격히 구체화한다.

각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처는 관할구역 내 방송TV기관,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를 지도 감독하여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제도를 완비시켜야 하며, 관련 관리 요구를 구체화해야 한다. 인터넷 상 전파되는 재편집된 프로그램, 메이킹 영상과 예고편 및 각종 프로그램의 타이틀 스폰서십과 협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 시정하고 처리해야 하며 심각하게 규정을 어긴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에 통지한다.

46.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정보등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통지

제목	关于网络视听节目信息备案系统升级的通知(广电办发〔2018〕158号)
게재일	2019-01-02
출처	국가광파전시총국 판공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광파전시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신문출판광전국, 중앙 직속 기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기구, 총국 직속 각 기관:

2012년, 총국은 ‘웹드라마, 웹단편영화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정보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구축·관리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총국은 최근 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등록 시스템’ 모듈을 증설하고, 관련 정보 등록 방식을 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9년 2월 15일부터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웹드라마, 웹영화, 웹애니메이션 포함)를 제작하기 전에 제작사는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등록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프로그램 제목, 소재 및 장르, 시놉시스, 제작 예산 등 기획 정보를 등록한다.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에는 투자 총액이 500만 위안을 넘는 웹드라마(웹애니메이션), 100만 위안을 넘는 웹영화가 포함된다.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이외의 기타 인터넷 오리진널 시청각 프로그램의 등록 작업은 기존 절차 및 관리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2. 국가 및 성급 광파전시 행정부문은 각 제작기구의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 등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행정부문의 심의를 거친 프로그램 기획 정보는 등록시스템에서 생성된 기획 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등록시스템은 기획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국 각 성(구, 시)의 제작 예정 프로그램 정보를 자동 취합하고, 총국은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3.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의 촬영 제작이 끝나면, 제작기구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플랫폼, 실투자금, 배우 출연료 등 관련 정보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프로그램 완성본을 소재지 성급 광파전시 행정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 직속 기관인 광파전시 프로그램 제작 경영 기구는 프로그램 완성본을 총국에 제출한다. 광파전시 행정부문의 내용 검수를 거친 프로그램은 등록시스템에서 생성된 업로드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등록시스템은 업로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국 각 성(구, 시)의 프로그램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고, 총국은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4. 업로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중점 웹드라마, 웹영화, 웹애니메이션은 각 시청각 프로그램 웹사이트(클라이언트용) 초기 화면에서 방영하거나 홍보할 수 있으며, 또는 프로그램 시청웹사이트의 광고 유치 홍보, 회원 추천, 업데이트 추천, 프로그램 추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주소는 <http://211.146.10.132/NAVP/>이며, 각 기구의 로그인 계정과 정보 기재에 관한 구체적 요구는 별도로 통지한다.

6. 각 성급 광파전시 행정부문은 본 사업을 각별히 중시하여 관련 업무의 요구사항을 관할 구역 내의 <광파전시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증>을 소지한 기구 및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전송 허가증>을 소지한 기구에 즉시 통지하여, 각 제작기구가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 정보 등록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각 시청각 프로그램 웹사이트는 중점 인터넷 드라마·영화를 업로드 하기 전에 등록번호 검증 작업을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각 성 광전국은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여 본 사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심의 전문가팀을 구축하여 콘텐츠 점검 품질 및 효율을 보증해야 한다.
이상 통지한다.

국가광파전시총국 판공청
2018년 12월 27일

담당자: 류샤오후이, 쉬이허
연락처: 010-86096054

47.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제목	网络短视频平台管理规范
게재일	2019-01-09
출처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쇼트클립을 서비스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반드시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체규범

(1) 쇼트클립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정보네트워크전파 시청프로그램 허가증(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AVSP)> 등 법률에 규정된 관련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반드시 허가증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2)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반드시 주류 언론매체와 당정군(党政军) 기관단체 등의 계정 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전면적으로 양질의 쇼트클립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3)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총편집인의 콘텐츠 관리 책임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4)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선(先)심의 후(后)방영제도’를 시행 한다. 플랫폼 상에서 송출되는 모든 쇼트클립은 내용 심의 후 방영이 가능하며, 심의 영역에는 제목, 간단한 소개, 탄막³³⁾, 댓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5) 인터넷 플랫폼이 쇼트클립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해당 업무 규모를 근거로 해야하며, 정치적 소양이 높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심의팀을 구축해야 한다. 심의요원은 반드시 성급(省级) 이상 광전 관리 부서에서 조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심의요원의 수는 쇼트클립의 업로드 및 스트리밍 횟수에 맞춰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의요원 수는 해당 플랫폼에서 매일 새로 노출(공개 및 배포)되는 쇼트클립 수의 천분의 일 이상이어야 한다.

(6) 본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책임추궁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 업로드(제휴) 계정 관리규범

(1)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해 쇼트클립을 업로드하는 주체에 대해 ‘실명인증관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단체가 계정을 등록해 쇼트클립을 업로드 하는 경우(소위 PGC)에는 반드시 동 단체의 조직코드등록증(기업등록코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용자가 쇼트클립을 업로드 하는 경우(소위 UGC), 반드시 사용자의 신분증 등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해

33) 弹幕, 영상화면에 올라가는 실시간 댓글

야 한다.

(2)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기관 계정과 개인 계정에 대해, 사전에 본 <규범>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해야 업로드 기능을 개통할 수 있다.

(3) <정보네트워크전파 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한 PGC 업체에 대해, 플랫폼은 업로드 된 프로그램이 허가증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허가 범위 외의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반드시 합작을 중단해야 한다. <정보네트워크전파 시청프로그램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PGC 업체가 올린 프로그램은 쇼트클립 플랫폼의 프로그램 소재로만 사용 가능하며, 플랫폼 심의를 통과후 이용허락을 받았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4)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반드시 ‘법규 위반 업로더 계정 명단 DB’를 구축해야 한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법규 위반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 UGC 계정 및 심각한 불법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 UGC 계정에 대해, 플랫폼은 반드시 신상정보, 프로필사진, 계정명 등의 정보를 ‘법규 위반 업로더 계정 명단 DB’에 올려야 한다.

(5) 각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법규 위반 업로더 계정 명단 DB’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실행한다. ‘법규 위반 업로더 계정 명단 DB’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 각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규정된 기간 동안 업로더 계정을 개설해 줄 수 없다.

(6) ‘법규 위반 업로더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배포 금지 기간은 규정 위반 프로그램 업로드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1년, 3년, 영구 세 단계로 나눈다.

3. 콘텐츠 관리규범

(1)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콘텐츠 레이아웃 배치에 있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양을 위주로 해야 하며, 순방향적 의제 설정을 강화하고, 긍정적 에너지 콘텐츠의 건설과 축적을 강화한다.

(2)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반드시 저작권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이용허락 없이 자체적으로 영화, 드라마, 웹영화, 웹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편집 또는 각색해서는 안 된다. UGC가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웹영화, 웹드라마 등 각종 영상물을 전송할 수 없다. PGC 업체가 제공한 저작권 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PGC 업체가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웹영화 등 각종 영상물을 재전송할 수 없다.

(3)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반드시 국가신문프로그램관리규정을 준수하여, UGC가 업로드한 시사류(时政类), 사회류(社会类) 뉴스 쇼트클립을 재전송할 수 없다. PGC의 영상뉴스프로그램 제작자격유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PGC가 업로드한 시사류, 사회류 뉴스 쇼트클립을 재전송할 수 없다.

(4)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국가가 아직 허가하지 않은 영화, 드라마, 웹영화, 웹드라마 의 일부 및 국가가 금지한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전송할 수 없다.

(5)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의 프로그램 내용 심의는 국가광파전시총국과 중국인터넷시청각 프로그램서비스협회가 규정한 콘텐츠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4. 기술 관리규범

(1)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합리적인 스마트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 긍정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2)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사용자의 페르소나, 안면인식, 지문식별 등 신기술을 적극 이용해 사용자 실명관리 제도 시행을 확실히 해야 한다.

(3) 인터넷 쇼트클립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미성년자의 이용시간을 제한해야 하며, 미성년자 보호자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미성년자의 과도한 쇼트클립 이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48.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제목	网络短视频内容审核标准细则
게재일	2019-01-09
출처	중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쇼트클립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잘못된 허위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며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규인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심의 통칙>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1.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의 기본 기준

- (1)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6 조에 열거된 10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 (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내용 심의 통칙’ 제 4 장 제 7, 8, 9, 10, 11, 12 조에 열거된 94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의 구체적 세칙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의 기본 기준에 따라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쇼트 클립 프로그램과 그 제목, 명칭, 댓글, 탄막, 이모티콘 등은 그 언어와 표현, 자막,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없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

(1) 국가 정치제도와 법률제도를 공격하는 내용

예시 :

- 1)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과 이론, 제도와 문화 및 국가가 정한 중요한 방침과 정책을 조롱, 풍자, 반대, 매도하는 것, 예(생략)
- 2) 헌법 등 국가의 중요 법률 법규 제정과 개정에 대해 곡해, 부정, 공격, 매도하거나 혹은 그 중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조롱하고 풍자하거나 반대, 매도하는 것
- 3)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약화, 배반, 공격, 비방하는 것
- 4) 개혁 개방 이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 방침과 정책에 대해 조소, 부정, 공격하는 것, 예(생략)
- 5) 중국 정치제도와 법률제도의 특정한 명사와 명칭을 의도적으로 고치고 희화해서 해석하는 것, 예(생략)

(2) 국가 분열과 관련된 내용

예시 :

- 6)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一国两制)’를 반대, 공격, 곡해하는 것

- 7) 타이완, 홍콩, 티베트, 신장 독립 등의 언행과 활동, 상징을 반영한 것으로, 영상자료, 작품, 말소리, 의견, 이미지, 텍스트, 반동적 깃발, 표어, 슬로건 등 각종 형식을 포함(중앙 뉴스 기관의 뉴스 방송 제외);
- 8) 타이완,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을 분리된 국가로 보는 관점을 가진 연예인 및 조직단체가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예능 보도, 작품을 선전하는 것
- 9) 영토와 역사적 사건에 관련된 묘사가 국가의 정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 예(생략)

(3) 국가 이미지를 해치는 내용

예시 :

- 10) 중국의 국가 및 민족 이미지와 정신, 기질을 폄하, 모욕,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것, 예(생략)
- 11) 국기와 국장(국가의 휘장)을 불태우고, 훼손하고, 낙서하고, 더럽히고, 깃밟고, 악의적으로 패러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욕하며, 부적절한 오락적 상업성 행사 등의 장소에서 국기와 국장을 사용하는 것
- 12) 국가(国歌)를 왜곡,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며, 부적절한 상업과 엔터테인먼트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 혹은 부적합한 상황에서 국가를 불러 국가(国歌)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 예(생략)
- 13) 당과 국가 지도자의 연설 일부분을 잘라 본뜻을 왜곡하고 남에게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거나, 동영상의 일부분을 잘라 전문적으로 음질을 편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과 국가 지도자의 말투와 말뜻, 태도를 왜곡하고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 14) 국가의 권한 위임이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대역 전문 배우나 일반 대중이 분장을 통해 당과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모방해서 진행을 맡거나, 공연, 연설, 촬영 등의 활동에 참여해 이득을 취하고 말재주로 대중의 관심을 사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법적으로 승인받은 영화작품이나 문화예술 공연 등은 제외)
- 15) 프로그램 속 인물이 당과 국가 지도자의 두상이 새겨진 옷, 신발, 모자를 착용한 후 그것을 흔들거나 접는 행위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만드는 것;

(4) 혁명 지도자 및 영웅 열사의 이미지를 해치는 내용

예시 :

- 16) 혁명지도자, 영웅 열사의 사적(事迹)과 정신을 왜곡, 회화, 경시, 부정하는 것, 예(생략)
- 17) 혁명지도자, 영웅 열사의 이름과 사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것, 예(생략);

(5)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예시:

- 18) 국가의 각급 당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하여 발언하는 것, 예(생략)
- 19) 국가의 각급 당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전문적인 업무의 내용과 절차, 업무 배치를 누설하는 것, 예(생략)
- 20) 국방, 과학기술, 군수 산업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예(생략)

21) 당과 국가 지도자의 개인 업무와 사생활 정보, 당과 국가 지도자 가족의 정보를 사사로이 전하는 것

(6)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내용

예시 :

22)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군중 시위 사건, 예(생략)

23) 비 성급(省級) 이상의 보도기관에서 발표한 재난사고 소식을 유포하는 것, 예(생략)

24) 보도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작한 재난사고의 영향 및 결과에 대한 프로그램, 예(생략)

(7) 민족과 지역 단결을 해치는 내용

예시:

25) 언어, 호칭, 분장, 사진, 음악 등의 방식을 통해 민족과 지역감정을 조소, 희롱하거나 손상시켜 안정과 결속을 파괴하는 것, 예(생략)

26) 정상적인 안전 보호 조치를 민족 편견과 대립으로 과장하는 것, 예(생략)

27)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 예(생략)

28) 독특한 민족 습관과 종교적 신앙에 대해 엽기적으로 과장하거나 심지어 추악하게 묘사해 모욕하는 것, 예(생략)

29) 역사상 민족 간 정벌의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찬동, 칭송하는 태도로 표현하는 것, 예(생략)

(8) 국가 종교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

예시:

30) 종교 극단주의와 이단 종교 조직 및 그 주요 구성원의 활동과 그들의 교리와 사상을 보여주는 것, 예(생략)

31) 서로 다른 종교와 교파의 우열을 부적절하게 비교하여 종교, 교파 간의 갈등과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예(생략)

32) 종교의 교리와 교칙, 의식 내용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알리는 것, 예(생략)

33) 종교 극단주의와 합법적 종교 활동을 동일시하여 정상적인 종교 신앙과 종교 활동을 극단적 사상과 행동으로 과장하거나, 극단적 사상과 행동을 정상적인 종교 신앙과 종교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 예(생략)

34) 종교적 내용을 희화하고 조소하며, 여러 가지 악의로 민족종교 감정과 해치는 발언을 하는 것

(9) 테러리즘을 전파하는 내용

예시:

35) 나라 안팎의 테러 단체를 표현하는 것, 예(생략)

- 36) 테러 행위를 상세히 보여주는 것, 예(생략)
- 37) 테러리즘과 그 주장을 전파하는 것, 예(생략)
- 38)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분신자살, 자살 폭탄 테러, 폭력, 파괴, 약탈, 방화 등의 수단을 통해 자행되는 폭력적인 테러 활동 동영상을 유포하거나(중앙 뉴스 매체의 공개 보도 제외), 이런 활동들에 대해 사실과 진상을 왜곡한 편파적인 보도와 동영상을 방송하는 것, 예(생략)

(10)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는 내용

예시:

- 39) 명작을 의도적으로 고쳐 원작의 정신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 예(생략)
- 40) 고전 명작 속의 중요 인물 설정을 뒤집는 것, 예(생략)
- 41) 기본적인 역사 정론을 어기고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 예(생략)
- 42) 역사, 특히 혁명역사에 대해 악의적인 패러디를 하거나 지나치게 희화해 표현하는 것, 예(생략)

(11) 악의적으로 인민군대, 안보, 경찰, 행정, 사법 등 국가 공무원과 공산당원의 이미지를 헐뜯거나 해치는 내용

예시:

- 43) 법 집행 공무원의 법 집행 과정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공무원의 정상적인 법 집행을 폭력적인 과정으로 만드는 것
- 44) 확인되지 않은 군복을 착용한 사람들의 싸움과 집회, 시위, 항의, 문제 해결 요구를 유포하는 것
- 45) 해방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연출할 때 지나치게 과장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예(생략)

(12) 부정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미화하는 내용

예시:

- 46) 마약과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법자 및 조직폭력배를 위한 선전의 장을 제공하고, 그 일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
- 47) 이미 부정적인 인물로 결정된 사람의 공과 덕을 칭송하는 것, 예(생략)

(13) 과학 정신에 위배되는 봉건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예시:

- 48) 굿판, 액막이 제사, 저주, 바늘로 인형을 찌르거나 도사가 술법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채널과 코너,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무술(巫術) 술법 등 봉건적 미신 사상을 선양하는 것
- 49) 무속인의 술법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 예(생략)
- 50) 민간의 고전 전설을 이용해 봉건 미신 사상을 퍼뜨리는 것

(14) 불량하고 퇴폐적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퍼뜨리는 내용

예시:

- 51) 배금주의와 향락주의를 펴뜨리는 것, 예(생략)
- 52)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타락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 예(생략)
- 53) 상실의 문화(90년 이후 세대 사이에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유행 문화)와 자살 게임을 선전하고 알리는 것, 예(생략)
- 54) 불륜과 원나잇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

(15) 폭력의 잔인함, 추악한 행동, 공포스러운 장면을 과장하는 내용

예시:

- 55) 조직 폭력 세력의 흥기를 든 패싸움, 살인, 폭력적인 빗 독촉, 패거리 모집, 청부 살인 등 흥포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
- 56)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 과정 및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예(생략)
- 57) 마약 복용 후 극도로 흥분된 생리 상황과 일그러진 표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각종 마약 복용 도구와 마약 복용 방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예(생략)
- 58) 만취 후 통제 불능 상태를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 예(생략)
- 59) 슬롯머신, 코인도저, 낚시 게임기, 점수 올리는 도구, 치팅 도구 등의 도박 기구와 트릭 및 트릭 풀기 등 도박 기술과 행위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
- 60) 과도한 생리적 고통과 정신적 히스테리로 평범한 시청자들의 오감과 정신에 강한 충격을 주며 그로 인해 심신의 공황, 초조, 혐오, 구토 등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화면, 대사, 음악 및 음악 효과를 보여주는 것, 예(생략)
- 61)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극단적 복수심과 행위를 보여주는 것, 예(생략)

(16) 음란물, 저속한 취향, 건전하지 못한 비주류 결혼관을 보여주는 내용

- 62) 매춘, 성매매, 음란행위, 강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 63)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예(생략)
- 64) 동영상 속에 선정적인 광고가 나타나는 것, 예(생략)
- 65) 신음, 교성 등의 소리, 특수효과가 들어가는 것
- 66) 엽기적인 것을 선양하는 방식으로 외국 사창가를 촬영하는 것
- 67) 성매매 내용이 있는 야간 유흥업소, 목욕탕, 안마시술소 등을 보여주는 것
- 68)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성행위를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
- 69) 불건전한 결혼관과 연애관 및 그러한 결혼과 연애를 보여주고 선양하는 것;
- 70) 비주류 결혼관과 연애관을 선양하는 것;
- 71) 단순한 감각기관 자극을 목적으로 키스, 애무, 샤워 및 유사 성행위와 관련된 간접적인 표현과 암시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알몸 노출이나 가슴과 둔부 등의 부위에 장시간 초점을 맞추는 것, 몰래 촬영하는 것, 드러난 속살이나 유두에 초점을 맞추는 것, 발 페티시즘이나 착용했던 스타킹 등의 성적 기호 과장 포함
- 72) 명백한 성적 도발, 성희롱, 성적 모욕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화면, 대사, 음악 및 음악 효과가 있는 것, 예(생략)

- 73) 남녀의 성기 노출 혹은 신체로 가리거나, 아주 작은 물건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거나, 지나치게 노출한 옷차림을 보여주는 것;
- 74) 거칠고 속된 언어를 사용과 저속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예(생략);
- 75) 모호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 성행위와 성기가 연상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
- 76) 성인영화, 에로영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로 심의에 의해 삭제된 내용이 있는 영상의 ‘완전판’ ‘무삭제판’ ‘풀버전’ ‘삭제된 부분’ ‘모음판’을 동영상 프로그램 제목으로 삼아 분류하거나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
- 77) 몰카, 속살이 비침, 노출 및 각종 자극적인 글과 사진을 동영상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삼아 분류하거나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 예(생략)
- 78) 성적 연상을 쉽게 유발하는 글을 제목으로 삼는 것, 예(생략)

(17) 타인을 모욕, 비방, 비난, 놀리는 내용

예시;

- 79) 역사 속 인물 및 실제 인물의 이미지와 명예를 모욕, 비방,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것
- 80)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패러디하여 국제분쟁이나 혹은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 81) 타인의 직업, 신분, 사회적 지위, 신체적 특징, 건강 상태를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는 것, 예(생략)

(18) 사회 공중 도덕에 위배되는 내용

예시:

- 82) 심각한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테러 사건, 전쟁 등의 재난 장면을 악의적인 패러디로 묘사한 것
- 83) 싸움, 타인에 대한 모욕, 상스러운 말을 긍정하고 찬성하는 기조 혹은 모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표현하는 것, 예(생략)
- 8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사회도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를 보여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예(생략)

(19)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내용

예시:

- 85) 미성년자의 이른 연애 및 흡연, 폭음, 싸움과 마약 남용 등의 나쁜 행동을 보여주는 것, 예(생략)
- 86) 인물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기괴해서 미성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예(생략)
- 87)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 이미지를 가진 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인물의 성행위를 보여주거나 성적 망상을 일으키는 것, 예(생략)
- 88)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것, 예(생략)

(20)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역사를 널리 알리고 미화하는 내용

예시:

- 89) 파시즘,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를 널리 알리는 것, 예(생략)
- 90)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고 잘못된 입장에 서서, 침략 전쟁 중 정의롭지 않은 쪽의 침략 행위는 따지지 않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정의로운 쪽의 일부 잘못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
- 91) 식민주의 성향을 띤 어휘와 명칭, 화면을 사용하는 것, 예(생략)

(21) 기타 국가 관련 규정과 사회 도덕 규범을 위반하는 내용

예시:

- 92) 정치 내용, 고전 문화와 진지한 역사 문화를 지나치게 희화해서 보여주고 주류 가치관을 사라지게 하는 것
- 93) 반중국, 반공산당, 분열, 테러활동을 하는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제작 혹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과 그들이 개설한 채널, 코너, 홈페이지, 계정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 94)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나 추문의 당사자가 제작 혹은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 95)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건강과 질병, 개인 주택, 혼인 관계와 사적 공간, 개인 활동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것, 예(생략)
- 96) 국가 유관기관의 규정이 명확한 표어, 구호, 명칭, 용어를 남용, 오용하는 것, 예(생략)
- 97)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국가에서 정한 보호 동물 종류를 죽이거나 먹는 것, 예(생략)
- 98) 개인이 소지한 살상력을 가진 위험 물품을 보여주는 것, 예(생략)
- 99) 프로그램에 불법적이고 규정을 어기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는 것, 예(생략)
- 100) 그 외 법률과 법규,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것

49.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 (2019-2022년)

제목	超高清视频产业发展行动计划 (2019-2022年) (工信部联电子〔2019〕56号)
게재일	2019-03-01
출처	공업정보화부 · 국가광파전시총국 · 중앙광파전시총대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신장 생산건설부대의 공업과 정보화, 방송 주관 부처, 관련 기관:

<초고화질 영상산업발전 행동계획(2019-2022)>을 발표하오니, 실제 상황에 맞게 충실히 이행을 바란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파전시총국
중앙광파전시총대

2019년 2월 28일

초고화질 동영상은 영상의 디지털화 및 고화질화에 이은 새로운 중대한 기술혁신으로 영상 수집, 제작, 전송, 노출, 응용 등 산업체인 각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다. 초고화질 영상 산업 발전의 가속화는 대중들이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영상을 핵심으로 하는 업종의 스마트화 전환을 추진하며 중국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실력향상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산업체인의 핵심 프로세스를 중고급화하고,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가속화하여, 완전한 산업생태계 건립을 위해 본 행동계획을 제정한다.

1. 전체 요구

(1) 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하에 당의 19대표대회와 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제3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긴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유지하고 질 높은 발전요구를 실천하며, 혁신적인 추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또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정보기술을 충분히 발휘해 중고급 소비를 불러일으켜 대중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초 작용을 한다.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의 핵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초고화질 동영상 콘텐츠의 풍부한 공급을 하며, 인터넷 전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보급 응용을 강화하며, 공공지원 시스템을 완비하여 중국의 초고화질 영상산업의 빠른 발전을 전면적으로 촉진한다.

(2) 기본원칙

시장이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도록 견지한다.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견지하며 양호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한다. 혁신요소가 기업으로 집결하는 것을 촉진해 기업이 커지고 강해지며 우월해지도록 이끈다.

시스템의 배치와 총괄적 추진을 견지한다. 최상층의 설계를 강화하고 산업체인의 각 프로세스별 발전 기초와 지역별 발전 조건을 토대로, 산업체인을 둘러싼 혁신체인 배치, 혁신체인을 둘러싼 자금 체인을 완비하여 산업체인 상하층간의 협동발전을 실현한다.

모든 부품이 뒷받침되도록 하여 핵심 돌파를 견지한다. 산업발전의 관건인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완제품 산업화를 통해 자원을 집중시키고 핵심 돌파를 실현하여, 초고화질 영상 산업체인 각 프로세스의 총체적인 향상을 이끌어낸다.

응용에 의한 견인과 융합 혁신을 견지한다. 초고화질 동영상과 중점산업 영역의 융합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여 업무방식을 혁신하며, 새로운 시장, 새로운 업무, 새로운 서비스를 육성하고 동영상을 핵심으로 하는 업계의 혁신적인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개방 발전과 공동이익 추구를 견지한다. 국내외 우수 자원의 통합 이용을 촉진하고, 해외 우수 지역, 우수 기업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생태에 융합해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의 국제화 발전을 추진한다.

2. 발전목표

“4K선행, 8K고려”의 전체적인 기술 노선에 따라 초고화질의 영상 산업발전과 관련 분야의 응용을 강력히 추진한다. 2022년 중국의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의 전체 규모는 4조 위안을 초과하고, 4K 산업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완비하고, 8K 핵심 기술 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돌파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다수 배출한다. 초고화질 동영상의 콘텐츠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인터넷 탑재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제작 방송, 전송,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하여,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완비해 기술, 제품, 서비스와 응용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2020년까지 4K카메라, 모니터, 스위처(Switcher) 등 취재, 편집 전용 설비의 산업화 능력을 배양한다.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HDR), 광색역, 3D 오디오, 고프레임률(HFR), 색심도 요구에 부합하는 4K TV 단말기의 판매량이 전체 TV 판매량의 40%를 넘도록 하여, 보다 완전한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방송국(CCTV)과 조건이 되는 지방방송국은 4K 채널을 운영하여 최소 5개 성시의 유선TV네트워크와 IPTV플랫폼에서 4K 생방송 전송 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실시하여 초고화질 프로그램 제작 능력 연간 1만 시간 초과를 실현한다. 4K 초고화질 영상 이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한다. 문화·교육·오락, 보안 모니터링, 의료건강, 스마트교통, 산업 제조 등 분야에서 초고화질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응용 시범사례를 발굴한다.

2022년까지 CMOS 이미지 센서, 광학렌즈, 전문 영상처리 칩, 코팅 해독 칩 등 핵심 부속품이 새

로운 진전을 이루어 8K 선단 핵심설비 산업화 능력을 형성한다.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HDR), 광색역, 3D 오디오, 고프레임률(HFR), 색심도 요구에 부합하는 4K TV 단말기를 전면 보급하고, 8K TV 단말기 판매량이 TV 총 판매량의 5%를 초과하도록 한다. 4K 채널 공급 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유선방송 업그레이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초고화질 프로그램 제작 능력은 연간 3만 시간을 넘도록 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 프로그램을 8K로 제작해 방송 테스트를 실시한다. 초고화질 동영상 이용자 수는 2억 명을 달성하고, 문화·교육·오락, 보안 모니터링, 의료건강, 스마트 교통, 산업제조 등의 분야에서 초고화질 영상의 규모있는 활용을 구현한다.

3. 중점 임무

(1) 핵심 중요 부품의 새로운 진전

모든 부품이 뒷받침되도록 하여 초고화질 이미지, 광역폭 실시간 전송, 초고속 저장, HDR 디스플레이 호환 및 동태 적합성, 3D 오디오 코드와 렌더링, 3D 오디오 수집, 영상 안면 인식, 행위 동태 분석, 의학 영상 진단 등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초고화질 관련 SOC 핵심 칩, 음성 영상 처리 칩, 코덱 칩, 메모리 칩, 그래픽 센서, 신형 모니터 부품 등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한다. 4K/8K 디스플레이 패널 혁신을 강화하고, 정밀 광학렌즈 등 핵심 부품을 발전시킨다.

(2) 핵심 상품의 산업화 촉진

응용 영역의 견인을 강화하여, 초고화질 TV의 핵심 제작 방영 설비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초고화질 카메라, 극 저조도 카메라 등 영상 수집 장비의 연구개발을 지지한다. 초고화질 TV의 스위처 및 시스템, 총괄 제어와 방송 시스템, 시각음향 매트릭스, 음향 콘솔, 모니터링 카메라 등 핵심 제작 설비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초고화질 동영상에 적합한 고용량, 고속 스토리지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지원한다. 초고화질 TV, 셋톱박스, 가상현실(증강현실) 장비 등의 보급을 추진하고, 대형 디스플레이와 영화 프로젝터 등 상용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발전시키고, 초고화질 영상단속, 공업 카메라, 의료 영상 장비 등 업계 전용 시스템 설비의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3) 인터넷 전송 능력 향상

고속 광섬유 전송과 접속, 대용량 공유 교환, 5G 통신, SDN/NFV (소프트웨어 정의의 인터넷/인터넷 기능 가상화)등의 인터넷 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유선 인터넷의 IP화 및 광섬유화를 추진한다. 통신 네트워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클라우드화와 스마트화를 촉진, 네트워크 구조의 최적화, IPTV 인터넷의 탑재능력을 강화하여 4K와 8K비디오 전송을 위한 저지연(짧은 딜레이), 높은 광대역, 고신뢰, 고보안의 응용 수요를 만족시키고, 초고화질 디지털 방송 수신용 셋톱박스의 보급을 추진한다. 전국 유선방송 네트워크 상호 연결 상호 통신 플랫폼을 건설하여 4K 초고화질 TV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함께 건설한다. 5G의 초고화질 영상 전송에의 활용을 탐색하여 초고화질 영상서비스와 5G의 협력 발전을 구현한다.

(4) 초고화질 TV 프로그램 공급 보장

4K 초고화질 TV 콘텐츠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콘텐츠 생산을 혁신하고, 풍부한 초고화질 TV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린다. 4K 초고화질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강화하여 스포츠 경기·다큐멘터리·영화 및 드라마·문화 및 과학기술 등 초고화질 TV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한다. 조건이 만족되는 지역에 초고화질 TV 콘텐츠 제작 생산기지를 만들고 초고화질 TV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5) 산업 혁신 응용의 가속화

1) 방송 통신 분야

초고화질 TV 콘텐츠의 수집 및 제작·총괄 방송·인터랙티브 배포·데이터 센터·관리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투입을 확대하여, 초고화질 TV 생방송 채널 개설을 추진한다. 초고화질 영상 VOD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여, 초고화질 영상의 생산·취합·분배·응용을 지원하는 융합 업무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고화질 TV가 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와 인터넷 TV 영역에서 응용되도록 추진한다.

2) 문화 교육 오락 분야

게임·만화·애니메이션·영화 등 분야에서 초고화질 영상의 응용을 추진하여, 초고화질 게임 제작 툴·영화 촬영과 상영 장비·초고화질 디지털 액자 등 상품의 연구개발과 양산을 지원한다. 가정 이용자를 위한 원선 준동기화, 개인화 VOD원선 등 혁신적인 모델을 탐색, 보급하여 4K 영화관 건설을 지원한다. 초고화질 교육용 태블릿·프로젝터·회의용 태블릿·사물IOT 등 교육제품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박물관·진위 감정·예술 감상 등 분야에서 초고화질 동영상 기술의 응용을 추진한다.

3) 보안 감시 분야

초고화질 모니터링 카메라 등의 연구개발 양산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보안 감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초고화질 영상에 기반한 안면 인식·행위 인식·목표 구분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범위와 식별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여 스마트 초고화질 보안 감시 응용 테스트 기지를 구축한다.

4) 의료 건강 분야

초고화질 수술용 카메라·내시경 수술 장비·수술용 디스플레이·의학 영상 및 장비 중앙제어 장치·의학 영상 진단 모니터·회진 모니터 등 초고화질 제품의 연구개발 및 응용 추진을 가속화하여, 원격 의료·수술 교육·내시경 수술·의료 영상 검사 등 분야에서 초고화질 영상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한다. 초고화질 의료 영상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결합을 강화하여 의료 영상 식별 분석·스마트 회진 등 스마트 알고리즘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5) 스마트 교통 분야

초고화질 영상 기술의 스마트 네트워킹 자동차 분야 활용을 추진하여 초고화질 차량용 이미지 센서 및 차량용 스크린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강화하고, 차량 감지 능력과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 체험을 향상시킨다. 초고화질 영상 기술을 교통관제에 활용하여 복잡한 환경에서 차량 번호판, 차종 식별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초고화질 하드웨어, 스마트 알고리즘 등 일체화된 교통 스마트화의 테스트 활용을 진행한다.

6) 공업제조분야

초고화질 공업용 내시경·공업 카메라·생산라인 자동 검사 설비 등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공업의 가시화·결함 검사·제품 조립 위치 추적 인도·로봇 순찰, 인간과 기계의 협력 등의 상황에 초고화질 동영상 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전자·자동차·항공·우주 등 규모가 크거나 정밀도가 높은 공업 생산 상황을 아울러 추진 가능한 모범적인 활용을 만들어 낸다.

(6) 지원 서비스 보장 강화

수집, 제작, 전송, 구현, 응용 등 전 산업 체인을 커버할 수 있는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통합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여 기준을 먼저 갖추도록 한다. 국가/산업 표준과 단체 표준의 동반 발전을 장려한다. 초고화질 영상 제조업 혁신 센터를 건설하여 혁신자원을 모으고 산업의 앞선 핵심 공통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산업의 단점을 극복한다.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협동 센터를 건설하여 초고화질 영상 촬영 편집 시스템의 통합과 검증을 실시하고, 초고화질 콘텐츠의 수집, 제작, 전송, 구현 등 산업 밸류체인의 시너지가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하여 산업 생태계 체계 구축 서비스 능력을 강화한다.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을 제정하며, 평가 인증, 동영상 제작, 저작권 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인재 양성, 국제 교류 협력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보장조치

(1) 총괄적인 협력 강화와 협동 사업 메커니즘 구축

초고화질 영상 산업 발전 부문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 및 통합 계획을 강화하여 산업 발전에서의 중대한 사항과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르는 상하연동을 강화하고, 협동 사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대 프로젝트의 실시와 산업 밸류체인의 완비를 추진한다. 추적 연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분야의 통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혁신 강도 제고와 자금 투입 메커니즘 보완

초고화질 영상 산업 체인의 콘텐츠 제작과 방송, 인터넷 전송 및 관리감독, 단말기 보급과 핵심 설비 제조 등 핵심 취약점에 초점을 맞추어 초고화질 영상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초고화질 영상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한다. 초고화질 영상 기업과 금융기구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 분야의 자본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초

초고화질 영상 산업의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산업 협회가 컬러TV 기업과 연합하여 컬러TV의 ‘새 제품으로 교체’ 하는 것을 지지하며 초고화질 TV 보급을 확대한다.

(3) 역(逆)지원 메커니즘 구축으로 산업의 지속 발전 추진

초고화질 TV 콘텐츠 산업의 상위층 견인 작용과 관련 설비 제조업의 하위층 촉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원 방식과 경로를 혁신하여, 초고화질 TV 콘텐츠 생산의 높은 투입과 저생산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고 상위층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하위층 설비 제조 및 판매가 상위층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역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연구, 구축하여 상하위층 산업의 협력과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고품질 프로그램 콘텐츠의 공급을 보장하며 중국의 초고화질 영상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4) 인재육성 가속화와 지적자원의 고지 구축

육성과 도입의 상호 결합 방식으로 초고화질 영상 산업 인재 풀 형성을 강화하고, 고급·복합형 리더 인재를 육성한다. 산학연(产学研)의 협력을 권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초고화질 동영상 관련 학과와 전공 신설 강화를 지원하여 직업학교가 산업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기술능력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이끈다. 선두기업 또는 업계 서비스 기구 등이 수준 높은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인재를 양성, 교육하도록 격려한다.

(5) 부성(部省)³⁴⁾의 협력 추진으로 산업 응용 보급 강화

지방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의 자원을 동원하여 부성의 합작을 추진하여 발전 및 협력을 이루어낸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차별화 행동방안을 제정하도록 지도하고, 확실한 조치를 실시하며, 조직적인 실시를 강화한다. 지방의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협동 센터, 제조업 혁신 센터 등의 건설을 지원하고, 산업 혁신 단체 구축하여 시범 인도 및 전파 견인 역할을 발휘한다. 기업 주체, 시장화 운영 모델에 따라 방송 텔레비전, 문화 교육 오락, 보안 방법 감시, 의료 건강, 스마트 교통, 공업 제조 등 핵심 영역에서 시범 응용을 전개하고, 선진 경험을 취합하여 전체 산업에 보급한다.

(6) 사회단체의 역할 발휘와 국제교류와 협력 심화

산업 연맹 및 협회 등 사회단체가 생태계 시스템 구축, 비즈니스모델 혁신, 단체 기준 설정, 산업 규범 자율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우수 자원을 통합하고 전체 산업 밸류체인인 협동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 연맹 등 단체가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발전 수요지침’을 발표하여 사회 자금 자원의 투입을 유도하고, 중국 내외 관련기업이 공동으로 초고화질 영상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초고화질 영상 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 산업 협회 및 선진 국가의 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초고화질 영상 산업의 국제 교류와 협력 채널을 확대한다. ‘수입’과 ‘수출’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 국내외의 기술, 인재, 자금, 시장 등 자원의 상호 작용을 추진하여 기회 공유와 공동 발전, 협력 상생을 실현한다.

34)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50.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

제목	未成年人节目管理规定 (国家广播电视总局令 第3号)
제재일	2019-04-03
출처	국가광파전시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규정〉은 2019년 2월 14일 국가광파전시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하여 이와 같이 공포하며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광파전시총국국장 네천시
2019년 3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미성년자³⁵⁾ 방송 프로그램을 규범화하여,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교육으로 미성년자들을 이끌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널리 퍼뜨리고자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방송 텔레비전 관리 조례〉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급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를 주요 참여자로 하거나 미성년자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3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급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민족 부흥의 중임을 맡을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 양성에 착안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을 기본적인 임무로 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널리 알려, 혁신 발전을 견지하고 창작 능력을 키운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자각하고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발전과 성장법칙을 존중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한다.

제4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 업무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여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인격 존중 등 합법적 권익 보호를 중요시하고, 교육과 보호 모두 지속적으로 중시함으로써 사회 공동 관리를 실시하여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화, 성인화, 과도한 오락화 경향을 방지한다.

35) 중국 법률상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함

제5조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전국의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방송 텔레비전과 인터넷 시청 분야 조직은 업계 특징에 맞게, 법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업계의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직업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업무 교류를 촉진하고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 및 선양, 긍정적 교육의 강화, 현실 생활 밀착, 콘텐츠 형식의 혁신, 양호한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등의 방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및 미성년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활동에 뛰어난 공헌을 한 조직 및 개인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프로그램 규범화

제8조 국가는 다음 각항의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을 지지, 권장한다.

- (1)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널리 알린다.
- (2)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혁명문화 및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널리 알린다.
- (3)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이끈다.
- (4) 중화민족의 전통적 가정의 미덕을 발전시키고 훌륭한 가풍을 정립한다.
- (5)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규율과 특성에 부합한다.
- (6)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과 감정을 보호하여 인간적 배려를 구현한다.
- (7) 미성년자의 건전한 생활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적 면모를 반영한다.
- (8) 자연 지식과 사회과학 지식을 보급한다.
- (9) 국가적 지원, 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기타 내용.

제9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1) 폭력, 잔인함, 공포를 과장하고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방법을 알리는 내용.
- (2) 건강하고 과학적인 성교육을 제외한 성과 관련된 화제나 장면.
- (3) 미성년자의 조기 연애를 긍정하고 찬성하는 것.
- (4)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비방하거나 왜곡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 (5) 민족 역사나 민족 역사인물을 왜곡, 희화화, 모독하거나 영웅의 업적과 정신을 부정하는 것.

- (6)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통치를 실시했던 국가, 사건, 인물을 선양, 미화, 숭배하는 것.
- (7) 사이버 종교, 미신 또는 소극적이고 퇴폐적인 사상 관념을 선양하는 것.
- (8) 불량한 가족관, 결혼관, 연애관, 이익관념을 선양하거나 긍정하는 것.
- (9) 경제적인 부, 가정 배경, 사회적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
- (10) 자살, 자해 및 기타 미성년자가 모방하기 쉬운 위험행위 및 게임 종목 등을 소개하거나 보여주는 것.
- (11) 마약 흡입, 마취 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 및 기타 금지 약물의 남용.
- (12) 흡연, 담배 판매, 폭음(술)을 표현하는 것.
- (13)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량한 행동거지를 표현하는 것.
- (14) 비밀조직, 폭력조직의 각종 의식을 과장하는 것.
- (15)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이롭지 않은 온라인 게임을 선전하거나 소개하는 것.
- (16)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과학 보급, 교육, 경고의 목적으로 제작 및 보급하는 프로그램 중 상술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선명한 이미지 또는 음성 등 방식으로 이를 표시하는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알림을 표시하고, 상응하는 화면과 음성을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지나친 노출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역할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비광고류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토크쇼의 제작 및 배급은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 프로그램 제작 기구는 연령별 미성년자의 심신발전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고, 뚜렷한 이미지 또는 음성 등 방식으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미성년자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박, 유인, 매수 등의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도록 강박, 유인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제작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인신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충분한 학습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미성년자가 개인 및 그 가족,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하도록 질문 또는 유인하여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는 관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보도가 필요한 미성년자 위법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사건 중의 미성년자 이름, 주소, 사진, 이미지 등 개인정보와 미성년 당사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상기 내용의 화면이나 소리를 포함할 경우, 기술적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미성년자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킬 경우, 그 의상과 동작은 미성년자의 연령 특징과 시대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명예와 재물, 애정 등의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은 아역 스타 효과를 홍보하거나 스타의 자녀를 포장하거나 인기를 얻도록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은 경연 순위의 설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너무 지나친 물질적 상금을 설정해서도 안 되며, 미성년자가 현장에서 득표수를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미성년자가 실패하여 탈락한 소감을 물어보아서는 안 된다.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가정 갈등 분쟁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인터뷰하거나, 프로그램 녹화나 현장 조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고, 미성년자가 직접 가정 갈등과 감정 분쟁을 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성년자에 대해 품행과 도덕적 방면의 테스트를 진행하여 불량현상과 비이성적 정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법률에 의거해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언행과 메이크업이 미성년자의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 내에서 이끌어가면서 콘트롤하는 임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게스트는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규정에 따라 도덕적 품행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엄격히 선발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스캔들과 부도덕한 행실, 위법 범죄 등의 행위로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하는 인원을 선정해서는 안 되고, 일반 대중이 프로그램 게스트로 출연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제17조 국산 오리지널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은 반드시 중화 문화요소를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외국 이름, 지명, 의상, 형상, 배경 등의 사용은 줄거리 전개상 필요해야 한다.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통용 언어 문자와 관련한 법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8조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를 방송하거나 방송 과정에서 중간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전용 주파수, 채널, 구역, 링크, 페이지에 의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좋지 않은 게임 광고 및 기타 미성년자의 관람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해선 안 된다. 기타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상술한 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

(2)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학부모에게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모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광고모델로 선정할 수 없다.

- (4) 미성년자의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 시간당 광고는 12분을 초과할 수 없다.
- (5) 미성년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방영 중 또는 일시 정지 중에 광고를 삽입해 보여 주어진 안 되며, 콘텐츠 전환 시의 광고 시간은 3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전파규범

제19조 미성년자 전용 주파수와 채널은 자체 제작, 구매, 프로그램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주파수, 채널의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의 시청 수요를 만족시킨다.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뚜렷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전용 코너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시청하고 청취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전용 주파수 채널과 인터넷 전용 코너는 미성년자가 시청, 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급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배급하는 모든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녹화본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 전에 심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생방송 프로그램은 생방송 시간이 딜레이 될 경우와 예비 프로그램 교체 등 필요한 기술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배급하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 본 규정 제9조 제1항의 금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미성년자보호 전담인원제도를 구축하여 미성년자보호 업무 경험이 있거나 교육이력이 있는 인력이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의 방송 전 심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도록 배치함과 동시에, 미성년자가 시청하거나 청취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해 방송시간을 조절하거나 방송 유예 건의를 제안하도록 하고, 방송 유예 건의는 해당 프로그램 심사부서에서 전문가 논증을 거쳐 실시한다.

제22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배급 중 최소 30분마다 잘 보이는 위치에 알아보기 쉬운 휴식 알림 정보를 내보내야 한다.

제23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는 법정 휴일과 학교 방학 기간 중 매일 8:00부터 23:00까지, 법정 휴일과 학교 방학 이외는 매일 15:00부터 22:00까지 모든 사람이 시청하기에 적합한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한다.

미성년자 전용 주파수 채널에서 하루 종일 방송하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의 비율은 반드시 국무원의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매일 17:00~22:00 사이에는 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기타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고, 영화와 드라마, 수입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해당 시간대에 우수한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방송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미성년자 전용 주파수 채널, 인터넷 미성년자 전용 코너에서 매일 방송하거나 또는 VOD 형식으로 제공가능한 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의 비율은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4조 인터넷 사용자가 미성년자의 이미지,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거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에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통지를 받으면 신분을 확인한 후 즉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인터넷 사용자가 업로드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의 감독 신고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중의 서면 제보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이 본 규정 제9조 제1항의 금지내용을 포함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금지 프로그램 유형에 속하는 경우,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즉시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미성년자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평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미성년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 방송 전, 방송 중, 방송 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 시 미성년자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평가 의견은 프로그램 방송 지속 또는 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 심사 부서는 평가 의견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사회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적시에 평가 프로그램의 개선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는 미성년자 보호 상황을 매년 현지 인민정부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에 서면으로 연도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보고서의 주 내용은 평가 위원회의 업무상황, 미성년자 보호 전문가의 직무 수행 상황, 사회평가 상황으로 한다.

제4장 관리감독

제29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건전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 특별 조사, 표본 추출 등 방식으로 운영하여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의 위법 행위 경고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경고 기록에 포함되고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 방송 텔

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에 대해 방송 주관 부처는 즉시 사회에 공표하고 진술, 해명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정 위반과 신용도 상실에 대한 완전한 연합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본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한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 기구,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 및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하여 연대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위법 행위 신고제도를 만들고 신고 전화, 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공표하여야 한다.

모든 기구 또는 개인은 본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신고를 접수하면 기록하고 즉시 법률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사안이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전국의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 업계 조직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의 구체적인 업계 기준을 제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며, 훈련 상황을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에 서면으로 연도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4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본 규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거나, 과학 보급, 교육, 경고의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 중에서 본 규정 제9조 제1항의 금지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명확하게 경고하거나 기술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 규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경우에는 <방송 텔레비전 관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방영, 송출한 시간이 규정을 초과하였거나 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의 송출 비율이 국무원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송 텔레비전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본 규정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금 이상 인민 정부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고지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가 법률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37조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 기구,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인터넷 시청 서비스 기구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 부처 또는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률에 의거하

여 책임이 있는 실무자 또는 직접적인 책임자를 처분, 처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는 처벌 받은 기구의 주요 관련 부서 또는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상황을 통보하고, 실무자 또는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분, 처리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를 보내 후속 처분,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제38조 방송 텔레비전 주관 부처의 직원이 직권 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 또는 본 규정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직접적 책임자를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구라 함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구와 전문 사이트 및 맞춤형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구를 뜻한다.본 규정에서 말하는 학교의 방학 기간이란 방송 텔레비전 송출 기구 소재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기구 등록지의 교육행정부처가 규정한 기간을 말한다.

제40조 본 규정에서 지칭한 미성년자 방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에 미성년자의 이미지나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관련 내용의 규범과 법률 책임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41조 본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1.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

제목	关于推动广播电视和网络视听产业高质量发展的意见 (广电发[2019] 74号)
게재일	2019-08-19
출처	국가광파전시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광파전시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과 관광국, 총국 직속 각 단위, 중앙광파전시총대판공청, 중국교육방송국 :

총국의 동의 하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발행하니 실제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광파전시총국
2019년 8월 11일

당 중앙과 국무원이 고품질 발전 추진결정 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전체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에 따라 중국공산당 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9기 제2차, 3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4개 의식³⁶⁾’을 기억하고 ‘4개 자신감³⁷⁾’을 확고히 하며 ‘2개 유지보호³⁸⁾’를 이루어내어 대중이 중심이 되는 발전사상과 새로운 발전 이념을 철저히 이행하고, <영상업계 종합개혁 심화를 통한 중국 영상업계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인술과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자원 배치의 효율을 제고하고, 산업의 고품질 혁신 발전을 추진을 목표로 올바른 방향의 혁신을 견지하고 자원 통합을 강화하며 지원 인도를 보강함으로써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 구조 배치를 부단히 최적화한다. 또한 현대 산업체계와 시장체계를 보완하고 신형 업종과 소비 모델을 양성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과 문화소비를 촉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더욱 만족시킨다.

(2) 기본 원칙

정확한 가이드를 견지한다.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 방향, 가치 지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류 문

36) 정치의식, 거시 국면 의식, 핵심의식, 일치의를식(역자주)

37)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방향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역자주)

38) 시진핑 총서기 당 중앙의 핵심과 전당의 핵심 지위를 유지보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인술을 유지 보호한다(역자주)

화를 책임지는 역할을 고수한다. 사회적 효익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의 상호 통일을 실현한다.

개혁 혁신을 전지한다. 중점 영역과 핵심 부분을 고려하여 시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체제와 메커니즘의 개혁, 과학기술과 관리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자주적 혁신이 발전을 이끌도록 한다.

품질 제고와 업그레이드를 전지한다. 새로운 발전이념을 깊이 관철하고 융합발전, 전체 산업체인 발전,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 산업경쟁의 새로운 장점을 키우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변혁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3) 발전 목표

2025년까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콘텐츠 창작 생산을 더욱 번영시키고 작품 품질을 더욱 정밀화하여 신시대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사상과 예술 면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면서 시장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우수 작품을 더욱 많이 생산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5G 인터넷과 스마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하이테크를 심층적으로 융합하여 응용하고 인터넷 종합 처리 능력과 스마트화 수준을 현저하게 제고해 정부용, 민간용, 상업용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청 수요와 정보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킨다. 산업구조와 배치를 더욱 최적화하여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창강 삼각주(长三角: 상해를 중심으로 한 창강 영향권), 위에강아오(粤港澳: 광둥성, 홍콩, 마카오) 등 지역 산업 협력 발전에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그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산업시장은 특색이 선명하고 비교적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중견기업과 선두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구성이 합리적이고 집약 인도 효과가 강대한 산업기지와 산업단지를 배출하여, 기능 융합, 서비스 다원화, 장점이 뛰어난 신제품, 새로운 업종이 하이테크 시청 소비, 창조 디자인 개발 융합, 차세대 모바일 통신망 구축, 상하위의 전자설비 생산 등 업계 연계 발전, 하나로 융합된 신시대 시청의 전 산업 밸류체인 시장 발전 구도 형성을 이끌도록 하여 문화정보와 전자설비 소비에 있어서 중견 역할을 발휘하게 함으로써문화산업의 번영, 디지털 경제 발전, 내수 확대의 강력한 엔진으로서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과 정보 소비의 향유감,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2. 신형 산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가속화

(4)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번영 추진

‘신시대 프리미엄 공정’의 실시를 기점으로 좋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등 핵심 창작 계획을 실시하고, 우수 테마 선별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보완하고 상황 조정 관리를 강화하며 특별 자금의 지원 강도를 높인다. 구조적 관리, 거시적 조정, 지원 안내, 평가분석 교류, 홍보 추천 등 다양한 조치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혁신과 최적화를 추진하여 창작 테마 선별 계획을 보완하고 창작 생산 가이드를 강화하여 시대적 테마와 시대적 맥락을 잘 파악하고 신시대를 구가하는 프리미엄 우수작품을 더 많이 창작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우수한 플랫폼, 좋은 시간대로 진입하도록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종합평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발표와 운용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여론 인도와 시장 장려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콘텐츠

생산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기업 혁신, 문화 기업 혁신 활용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품 형태를 지속적으로 혁신한다. 상품 개발과 파생상품 시장을 적극 확대하여 콘텐츠산업 밸류체인을 업그레이드하며 창조 제작과 관련 산업의 혁신적 융합을 촉진하고 또한 프리미엄 프로그램의 성과 전환율, 사회영향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산업의 양호한 순환과 종합적 효익 증가를 촉진한다.

(5)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의 품질 제고와 업그레이드 가속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5G인터넷 건설을 가속화하여 집약융합 미디어 전송, 스마트 방송 처리, 스마트 사물 인터넷, 모바일 통신 운영, 국가 공공 서비스, 그린 안전 감독이 일체화된 신형 국가 정보화 기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국 유선방송 인터넷 통합 발전 인솔 조직의 배치에 따라 전국의 ‘하나의 망(一张网)’ 실현을 가속화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5G인터넷 건설과 일체화를 추진한다. 전국 유선방송 인터넷 통일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한다.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초고화질 프로그램 교환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선방송 인터넷의 디지털화, 광섬유화, 광대역화, IP화 개조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이로써 유선방송 인터넷이 광대역 업무, 교환 업무, 초고화질 업무의 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며, 종합 정보 서비스와 스마트화 APP 등 새로운 업종을 확장하고 신형 가정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대소형 스크린의 상호 연동을 실현하여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 사용자들이 충분한 모바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여러 스크린, 구역, 네트워크, 단말기를 넘나드는 시청 및 정보 수요를 만족시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어떤 모바일이나 어떤 단말기에서도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무선, 위성, 유선 인터넷의 융합 발전을 강화하고 스마트 방송 생태계를 양성하여 인터넷강국, 디지털경제, 스마트도시, 스마트농촌 건설이라는 핵심 처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6) 서비스 능력과 과학기술의 더 깊은 융합 발전 가속화

국가 과학기술 계획과 특별 기획의 인도 및 지지 작용을 발휘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및 전송 보급률에 있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IPv6, 5G, VR, AR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배치와 응용을 가속화한다. 5G를 지향한 고품질 포맷과 응용 정경을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사용자 시청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한 콘텐츠 생산을 전개하고 시청 콘텐츠의 구현방식을 혁신하여 시청 체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산업이 중고급 가치 체인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끈다. 고화질 텔레비전과 4K/8K 초고화질 텔레비전의 수집 제작, 취합 방영, 인터랙티브 배포, 데이터 센터, 관리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여 고화질, 초고화질 텔레비전 채널 구축을 추진하고, 유선방송, IPTV, 인터넷TV에서의 고화질, 초고화질 응용을 추진하고, 고화질, 초고화질의 셋톱박스 보급을 추진한다. 중점 공정과 프로젝트 구축을 기반으로 업무 응용과 기술 표준의 견인력을 발휘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정보 수집 제작, 방영 배포, 전송, 인터넷 저장, 플랫폼 관리 등 핵심 설비의 연구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 핵심 설비 업그레이드와 국산화, 산업화를 추진하여 고화질, 초고화질 텔레비전과 모니터, 셋톱박스 및 각종 시청 기능을 구비한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몰입식 체험설비 등 스마트 단말기의 응용과 배치를 선도하고 전자설비 규모화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이끈다.

3. 산업 구조의 대대적 최적화

(7) 우수 산업구역의 우선 발전 장려

중점을 부각하여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경제기초가 비교적 양호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자원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적 우세가 뚜렷한 지역, 성 및 국가의 중심 도시, 광역도시권이 우선적으로 발전하여 문화산업이 더 나아가 지역 국민경제발전의 전략적 고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일대일로’ 건설의 강화, 징진지(京津冀)의 협동 발전, 창강 삼각주(长三角)의 일체화 발전, 위에강아오대완구(粤港澳大湾区: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홍콩, 마카오 및 광둥성의 연해도시들로 이루어진 항만구역)의 구축, 하이난의 전면적인 심층 개혁 개방 등 국가의 중대한 전략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지역 자원의 통합 이용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 협력체 구축을 추진하며, 지역 자원 통합과 협동연동을 강화하여, 산업 협동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지방이 지역 특색 우세산업에 의지함을 지지하며, 지방 토지, 정책, 자금, 인재 등 지원 조건과 고품질 발전 목표의 구속성을 강화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의 어느 한 영역 혹은 종합적 산업 발전 선도구역(시범구역)을 구축한다. 선도구역 중대발전 프로젝트를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 문화개혁 발전계획, 구역발전계획,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문건에 포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홍보 보급, 프로젝트 추천 지원, 개혁 시험 거점, 테스트 혁신 등 방면에서 지원한다.

(8) 고품질 산업기지(단지)의 영향력 전인 역할 발휘

기획 인도와 정책 지원,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의 우수 자원, 우세산업, 우수기업 집중 집약 발전, 크고 우수하고 강해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도한다. 고품질, 혁신적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방송통신과 인터넷 시청의 전문적 혹은 종합적 산업기지(단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산업기지(단지)의 전문화, 규모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모범이 되도록 한다. 기지(단지)의 신고, 인정, 명명 절차를 규범화하고 추적심사를 강화하며 건전한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경영이 부실하고 사회 효익이 부진하며 시범 역할이 부실한 산업기지(단지)는 자격을 취소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수집 제작 전송 분배와 스마트 인터넷 전송, 스마트 단말기 수신, 하이테크 시청각 프로그램과 융합서비스 등 전체 산업체인의 하이테크 시청 산업 시범기지(단지) 구축을 탐색한다.

(9) 브랜드 전시회의 시장 영향력 제고

법규에 따라 실무적이고 효율적이며 검소한 전시회와 축제를 개최하도록 견지하고 각종 전시회의 교역 활동 심사 절차를 규범화하여 정확한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조직적 지도를 강화하고, 전시 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교역 업종을 혁신하고 브랜드 가치를 키워 전시회의 시장화, 전문화, 국제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하여 산업 고품질 발전의 길잡이를 만든다. 업계에 영향이 비교적 크고 사회적 효익이 뚜렷하며 시범 효과가 명확한 전시회에 대해서는 중대 활동의 조정, 정책의 분석과 해석, 데이터 보고 발표, 테마 포럼 개최, 홍보 선전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여 총국과 관련부처 및 지방과 함께 공동으로 산업 박람회, 전시회, 마켓, 드라마 어워즈, 다큐

멘터리 어워즈, 만화·애니메이션 어워즈, 인터넷 시청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지원하여 방송의 특징이 두드러지고, 융합 특색 선명하며 이끄는 역할이 뚜렷한 핵심 전시회 브랜드와 국내외 일류 산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10)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대외무역과 문화교류 확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작품의 해외 보급을 강화하여 ‘시청중국-공공외교’ 방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의 를 알리고 중국의 소리를 전파한다. ‘수출 콘텐츠 상품의 창작 지원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연구개발, 창작 가이드, 해외 공동제작 등 방식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글로벌 표현에 부합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국제 전송 프로젝트를 실시해 실크로드 영상 브릿지, 중국과 아프리카의 영상합작, 우방국 전송, TV중국극장 등 프로젝트 공고히 하여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키운다. 국제 유명 TV페스티벌의 중국공동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날’, ‘중국주빈국’ 등 해외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를 계획하여 진행한다. 중국이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술 표준의 해외 수출을 지지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술, 설비 및 프로그램 설계, 도급제 등 프로젝트 서비스의 수출을 이끌어낸다. 영상 문화의 수출입 협력체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브랜드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한다.

4. 시장체계의 대대적인 보완

(11) 건전하고 질서 있는 상업 환경 조성

지속적으로 ‘방관복³⁹⁾’ 개혁의 심도있는 실시를 지속하여 법규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시장 진입 조건 완화에 대해 한층 더 연구하고 사회 역량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공 서비스 영역의 구축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 시장에서 발전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업종, 모델을 신속히 추적하여 적시에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리스트를 보완한다. 중국의 행정 서비스 센터를 잘 구축 이용하여 ‘인터넷+행정 서비스’, ‘인터넷+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쌍임의감사공개⁴⁰⁾’ 제도의 표준화, 규범화 구축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서비스 수준과 관리감독 효율을 제고한다. 중국에서 주관하는 협회 등 사회조직의 회비 수준과 표준을 규범화하고,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 위법 비용 수취 및 행정 영향력을 이용하여 각종 위법요금비용을 수취하는 프로젝트를 정리 취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특별단속 사업성과를 공고히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과 관련된 허가업무의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관리업무를 상시화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12) 건실한 중견기업 양성

39) 법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상표출원 심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부 서비스 간소화, 최적화를 말함(역자주)

40) 감사 대상을 랜덤으로 뽑고 집행 감사인원을 랜덤으로 파견하여 검사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역자주)

지도, 지원, 육성의 강도를 강화하여 생산요소가 우수한 기업에 집중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형 전문화 주체를 양성하고 규모화의 주력기업을 구축하여 선두효과와 응집효과를 형성한다. 융합 뉴미디어 자원의 통합 추진을 가속화하여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신형 미디어융합그룹을 구축한다. 국가 소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업은 회사제 개혁과 주주제 개조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자본 진입이 허락된 영역에서, 국가 소유 자본과 민영자본 자원의 통합과 상호소유(intersect holdings)를 지지하고 혼합소유제 개혁 거점의 추진을 탐색한다. 상장기업이 더 강하고 더 크게 발전하도록 지지하여 상장기업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지역, 업종, 소유제를 넘어선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하여 종합적인 산업그룹의 구축을 위해 힘쓴다. 전국적인 유선방송 인터넷 주식회사 구축을 가속화하여 업무 운영체제와 상품체제를 완비하고, 이용자 서비스와 체험을 개선한다. 국가와 업계의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기초가 탄탄한 인터넷 시청 기업 지원을 이끌어 자원통합과 신제품 프로모션 활용을 강화하여 주도산업을 키우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킨다. 조건이 구비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기업이 절차에 따라 하이테크 기술 기업 인정을 신청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한다.

(13) 산업과 금융시장의 연결 메커니즘 구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발전 연맹 구축을 모색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특색을 구현한 투융자 플랫폼을 만들어 구현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 역할을 발휘하고 기업 주체와 금융기구의 공급 수요에 맞는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각종 금융기구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문팀을 만들도록 격려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문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강도를 높인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금융시장과 연결하도록 격려하여, 목표성을 가지고 각종 자본시장에서 융자하고, 은행, 펀드, 보험, 담보, 융자임대 등 기구와의 제휴를 강화하여 자금 수요를 해결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주력기업이 지분투자펀드를 설립하도록 장려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의 인수합병, 구조조정에 참여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기업이 양질의 경영자원을 통합하여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도록 우선 지원하여 신속하게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확대 강화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영세기업들이 ‘창창(双创, 대중창업, 만인혁신)’ 플랫폼을 이용해 발전 조건을 완비하도록 우선 지원하여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화’의 발전 루트를 걷는다. 사모지분투자펀드, 창업투자펀드의 정책 허가 영역 진입 유도를 장려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고성장성 초창기 프로젝트의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5. 정책적 지원 강화

(14) 조직의 지도 강화

각 지방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부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인터넷 정보기술의 혁명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와 융합발전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산업 촉진 사업을 잘 해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한다. 조직의 영도를 강화하고, 산업 발전 업무를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제로 편입시켜,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 개선하여, 각 지방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

을 세우고 총괄 기획한다. 제때에 현지 정부 당위원회에 업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홍보, 발전개혁, 재정, 금융, 문화 관광, 인터넷 정보, 공업과 정보화 관련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 정책 지원을 획득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고품질, 혁신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5) 재정 세무 우대 정책의 충분한 활용

국가 경영성 문화 사업단위 기업으로의 체제 전환, 문화기업 발전 지원, 문화상품 수출, 민영기업 발전, 영세문화기업 발전, 하이테크 기술 기업 발전 등의 재정 세무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경영성 사업단위의 기업 전환시 기업 소득세 감면, 유선 디지털 텔레비전 기본 시청유지비와 농촌 유선 텔레비전 기본 시청비용 증치세(역주: 한국의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의중점 장려 문화 상품과 서비스 수출 증치세 감면 등의 정책을 실제로 필요한 곳에 실시하도록 추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16) 정부 구매 서비스 지원 달성

정부가 사회 역량⁴¹⁾으로부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산업 시장의 주체들간의 결합을 추진한다. 총국은 각 지방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부처가 정부의 사회 역량으로부터의 공공문화 서비스 구매 관련 정책을 잘 시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선진문화 전진방향에 부합하고, 시장화 방식의 제공을 적절히 채택하고, 위탁 주체가 명확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지역 정부의 사회 역량으로부터의 공공문화 서비스 구매 지도성 리스트에 적극 조정하여 포함시킨다. 기업이 대중의 수요에 근거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실제와 결합하도록 규범화하고 이끌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공공서비스 공급해 참여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17) 산업의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구축 및 완비

총국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발전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우수 상품 제작생산, 상품 업종 혁신, 인터넷 업그레이드와 융합발전, 핵심기술의 개발응용 등을 결합하여 업계 내 고품질의 혁신적인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점 산업 프로젝트를 양성하여 비축한다.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프로젝트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및 산업투자펀드와 적극 매칭하고, 여러 측면의 지원과 합작 기회를 얻도록 하며 정책 지원, 홍보추천, 기술 가이드, 성과 활용 등을 지원하여 각종 요소가 산업 밸류체인의 부가가치가 높고 발전 전망이 좋은 양질의 프로젝트에 집중되도록 이끌어 산업을 업그레이드를 가져온다.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라이브러리 진입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저작권 금상’, ‘중국 특허상’ 심사 참여에 추천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공 이익에 관련된 특허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추천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도 산업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정책 자금 지원을 늘린다.

(18) 인재 보장 강화

41) 사회 역량은 자연인, 법인, 단체 조직 등 형식을 말함(역자주)

‘각력, 안목, 사고력, 필력⁴²⁾’ 강화를 중심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종사자에 대한 사상교육과 정치 지도를 강화하여, 전문 인재풀 양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리더 인재 프로젝트’와 ‘청년 혁신 인재 프로젝트’의 시행을 통해 높은 자질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인재, 특히 산업관리와 경영, 국제교류 협력 인재의 배양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인재 기초를 튼튼히 한다. 중국의 미디어융합발전 전문가풀을 잘 구축해 이용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소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 산업의 선진연구 진행하도록 지원하여, 중국의 중점 사회과학 의제와 발전기획 의제를 담당한다. 인재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여, 업계 유명인, 학자, 기술 장인이 지적재산권, 독점기술 등 무형자산을 출자하거나 주식매입으로 기업 경영이나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19) 통계지원 완비

산업의 통계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산업 데이터 발표 제도를 구축하여 통계데이터의 목적성, 실효성, 지도성을 제고한다. 문화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일상적 서비스업의 발전과 수요에 긴밀하게 결합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산업의 통계범위와 통계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통계지표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통계기준을 완비하며 산업 발전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공급 소비, 농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스마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의 특별 통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의 고품질 발전을 반영한 ‘빅데이터 통계’ 체계를 구축한다. 통계정보 시스템의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통계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경로를 확장하고 통계데이터의 분석 이용을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지원과 분석 지침을 제공한다.

42)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하고, 누구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어떤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역자주)

52.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 건설 추진 관련 통지

제목	关于推动国家广播电视和网络视听产业基地（园区）建设发展的通知
게재일	2019-06-26
출처	국가광파전시총국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TV방송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관광국, 광전총국 직속 각 기관, 중앙라디오TV방송국 판공청, 중국교육TV방송국, 중앙 관련 기관:

전국의 TV방송 및 인터넷 영상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의 충분한 시범 선도 역할 발휘를 추진하고 규범화하며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의 집결 및 규모 효과를 강화하고 산업 규모와 품질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 건설 추진과 관련 업무 발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본요구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는 국가TV방송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에서 명명하며 주로 TV방송과 인터넷 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전파, 사용자 서비스, 기술 지원, 생태 건설 및 운영 관리 등의 분야에서 구현되고 과학기술 혁신, 첨단 시청각, 융합 발전, 체인 재구성, 플랫폼 클라우드화 등 방면의 연구개발, 실천, 응용의 우위 자원 집결에 관련되어 TV방송의 이념 혁신,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 경영방식 혁신,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의 발전과 사회적 투자를 효과적으로 이끈다. 중점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주도, 알고리즘 재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주제 선정 기획, 소재 통합, 수요 조합, 분석 예측, 창작 생산의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사용자 시청 행위 심층 분석에 기초한 전 프로세스 스마트화 콘텐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미디어 서비스의 모바일화, 인터랙션화, 맞춤형의 추세에 적응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 데이터, 5G, 초고화질 등의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융합미디어화 제작, 스마트화 전파, 정밀화 서비스의 스마트 TV방송 융합 미디어와 스마트 TV방송 생태계를 조성한다. (3) 국가의 ‘일대일로’ 건설 등의 개방 협력 사업을 위해 서비스하고 기업연맹과 서비스 플랫폼 등의 방식으로 TV방송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 (4) 관련 산업과 심층 융합 연결하여 TV방송 파생상품과 포스트 제품 개발 마케팅을 지원하고 TV방송 및 인터넷 정보 장치 생산의 산업 집결 발전 모델 등을 이끈다.

기지(단지)는 TV방송과 인터넷 영상 산업의 어느 한 분야 또는 어느 한 방향에 집중될 수 있고 산업의 여러 측면 여러 분야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보통은 산업 혁신 발전 측면에서 일정한 기초, 규모와 특색을 갖추고 특색 산업의 첨단 요소 집결을 핵심으로 본 지역과 주변 지역의 산업 발전에 시범 선도와 확장 선도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광전총국의 승인을 거쳐 각 지역이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를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산업기지(단지) 명명에 관한 일방 형식에 따라 ‘중국 (지역명)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로 명명할 수 있으며 중앙급 기관 및 업체가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를 신청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

기지(단지)* 로 명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명칭은 각 기지(단지)의 장점과 특징에 따라 확정한다.

2. 신청조건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의 신청은 상응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급 TV방송 행정부처는 지방이 신청한 기지(단지)에 대한 심사 후 광전총국에 보고한다. 중앙 관련기관은 소속 기간 및 업체가 신청한 기지(단지)에 대한 심사 후 광전총국에 보고한다.

1) 기지(단지) 신청 주체의 기본조건

- (1) 신청 예정인 기지(단지)는 이미 성급 중점 사업으로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지방의 신청은 성급 당 위원회, 정부 부처의 해당 기지(단지) 설립 허가의 정책 서류가 있어야 하고 중앙급 기관 및 기업의 신청은 주무기관의 설립 승인 서류가 있어야 한다.
- (2) 신청 예정인 기지(단지)는 상기 기본 요구 측면에서 강한 우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기술 연구개발 혁신역량이 뚜렷하여 기술 융합 응용 효과가 훌륭하고 혁신 역량이 두드러지며 입주한 과학연구, 융합 미디어 등 기업의 수량이 많아 일자리 창출력이 눈에 띄고 결집 역할이 뚜렷하며 업계 선두 기업 또는 핵심 기업이 이미 기지(단지)에 입주하여 주변 지역과 산업에 대한 선도 효과가 눈에 띄고 선두 역할이 두드러지며 인프라와 산업 서비스 플랫폼이 완비되어 플랫폼 효과가 두드러지며 관련 기술, 인재, 자본, 정책 등 자원이 풍부하여 산업 후발 우위를 갖추고 발전 잠재력이 뚜렷해야 한다.
- (3) 신청 예정인 기지(단지)는 완전한 발전계획, 건설계획과 건설 방안이 있어야 하고 지방 정부는 해당 기지(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는 토지, 자금 등 측면의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있어야 하며 기지(단지) 건설 지원을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4) 신청 예정인 기지(단지)는 상응하는 지도층 관리 체제가 있고 완비된 관련 관리기관과 운영주체를 확립하였고 완벽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

2) 기지(단지) 신청의 주요 자료

기지(단지) 신청 시, 아래의 주요 자료를 제공하고 진실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 (1) 설립 승인 서류, 지도층 관리 체제, 운영 주체,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분야,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 측면의 종합 현황을 포함한 기지(단지)의 기본 개요.
- (2) 기지(단지)의 주도산업, 우위 산업 현황 및 본 업종 또는 본 분야에서의 위치, 시범 선도 역할, 브랜드 영향력 및 최근 2년간 경영 현황.
- (3) 기지(단지)의 콘텐츠, 기술, 모델, 경영방식, 체제 시스템 혁신 등 측면에서의 두드러진 실적 및 근년에 획득한 표창 장려 현황.
- (4) 기지(단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발전계획.
- (5) 기지(단지)의 토지, 계획, 프로젝트, 금융, 자금, 인재 등 측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3. 규범화 관리

1) 광전총국, 명명과 거시적 지도 담당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따른다. 광전총국은 신청 예정인 기지(단지)에 대한 점검 연구 인

정 후 광전총국 사이트에 명명 예정인 국가 TV방송 및 인터넷영상산업기지(단지) 명단을 공시한다. 정식 명명 후 광전총국은 정책 지원 노력, 업무 지도 강화, 홍보 마케팅 시범, 업계 대형 행사 주관 지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지(단지) 건설 발전을 촉진한다. 기지(단지) 종합 분석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지(단지)의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의 통일을 달성하도록 추진한다.

동적 관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부적절한 관리 또는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수년 연속 상위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기지(단지)에 대해 광전총국은 해당 상황에 비추어 통보, 시정 명령, 경고 또는 명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성급 TV방송 행정부처 및 중앙 관련 기관, 지도 강화와 관리감독 담당

성급 TV방송 행정부처는 본 지역 기지(단지) 신청의 진실성,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심사를 담당함과 동시에 총괄계획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배치를 실현한다. 본 지역 내 이미 명명된 기지(단지)의 건설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노력을 하고 서비스 지도를 강화하여 지역 우위를 발휘하고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여 신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과 융합 혁신을 추진하고 특색화 혁신형 산업 프로젝트 실시를 독려한다. 본 지역의 기지(단지)에 대한 종합 조율, 동적 관리, 전면 감독을 강화하여 기지(단지)의 시범 선도 역할을 확실히 발휘한다. 중앙 관련 기관은 상기 요구에 따라 소속 중앙급 기관 및 기업의 기지(단지)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3) 기지(단지) 기관, 구체적인 건설과 운영 관리 업무 담당

기지(단지) 기관은 기지(단지)의 건설, 운영, 관리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진다.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실행에 옮기고 사회적 효과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목표 지향을 강화하고 발전계획과 건설 방안에 따라 기지(단지)의 고 퀄리티 혁신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각 지역의 기지(단지) 기관은 매년 1월 31일 전에 서면 방식으로 전년도 발전 현황 보고서를 성급 TV방송 행정부처를 거쳐 광전총국 계획재무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급 기관 및 기업의 기지(단지) 연간 발전 현황 보고서는 매년 1월 31일 전에 해당 주무기관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사항

광전총국의 이전에 이미 명명한 기지(단지)에 대해 TV방송 및 인터넷 영상 측면에 속할 경우, 전면 관리를 실시하며 본 통지의 정신에 따라 총괄 관리에 포함시켜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상기 시간의 요구에 따라 연간 발전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3. 온라인 토크쇼(인터뷰) 영상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上谈话（访谈）类节目管理的通知（网字〔2019〕56号）
게재일	2019-07-19
출처	국가광파전시총국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후난성, 광둥성 광파전시국:

최근 우리(국가광파전시총국인터넷시청프로그램관리사)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방영되는 일부 토크 프로그램(인터뷰, TV 및 라디오 토크쇼 포함)들이 언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우리의 주류 가치관과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우리는 각 시·성 광파전시국에 해당 관할구역 내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제작 방영하는 토크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크프로그램, 특히 유명인이 출연하거나 비교적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한 차례 전면 조사를 시행한다. 문제가 발견된 프로그램은 절대 온라인에서 방영되어서는 안 된다.
2. 새롭게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토크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한다. 일반인이나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 내에서 당의 역사나 중국 역사, 군사, 민족, 외교 등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언급한다면, 예외 없이 사전에 성 광파전시국에 보고해야 하고 이에 관한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온라인 방영이 가능하다.

54. 인터넷 TV 통합 플랫폼 관리와 방송질서 규범 강화 관련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强化互联网电视集成平台管理和规范传播秩序的通知
게재일	2019-09-27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중앙정부의 사이버 공간 종합 관리 지속 강화와 각 측의 공동 노력 하에 불법 유해 불량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파 기세는 크게 억제되었으나 온라인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투쟁 기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고 날카롭다. 최근 일부 불법 인터넷 TV 단말 제품 및 인터넷 TV 애플리케이션이 더욱 분산되고 은폐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가운데, 이들은 정상적인 인터넷 TV 시청이라는 명목 아래 해외 방송 TV 채널과 음란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함으로써 중국의 TV 화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각 인터넷 TV 라이선스 보유 업체(이하 ‘라이선스 업체’로 약칭)는 고도의 정치적 책임감과 긴박감을 안고 라이선스가 부여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플랫폼 관리 강화와 시장의 전파 질서 규범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힘을 발휘해 불법 유해 불량 콘텐츠가 TV 화면에 침투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1. 각 방송국은 《광전총국 판공청의 <인터넷 라이선스 보유 기관 운영 관리 요구> 인쇄 배포 관련 통지》(광판발망자[2011]181호)를 대조하여 본 인터넷 TV 통합 플랫폼(플랫폼 상의 앱 스토어, 서비스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에서 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모든 인터넷 TV 플랫폼과 단말 제품에 대해 하루 빨리 전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각 라이선스 업체의 통합 플랫폼 상의 불법 인터넷 TV 애플리케이션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각 라이선스 업체는 자신의 인터넷 TV 애플리케이션의 탑재 범위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선별을 진행해야 한다. 각 라이선스 업체가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인터넷 TV 애플리케이션의 공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그것이 불법업체의 불법 인터넷 TV 플랫폼 또는 제품에 탑재되어 불법 인터넷 TV 제품과 불법 콘텐츠의 확산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능동적인 조치를 취해 불법 플랫폼과 제품이 본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한데 묶어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행위를 단속하고 제때에 관리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라이선스 업체의 인터넷 TV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플랫폼 또는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업체는 해당 플랫폼 또는 제품에 대한 콘텐츠 보안 관리 통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콘텐츠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업체의 관리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3. 각 라이선스 업체는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제품을 출시한 자가 책임을 진다’를 확실히 수행하고 인터넷 TV 시장의 전파 질서를 규범화하여 깨끗한 인터넷 시청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 업체는 24시간 당직 제도를 실행하여 콘텐츠와 방송의 안전 보장 업무 예방 대책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 인원을 배치하고 책임을 다하고 확실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시청각 안전 방송 업무에 한 치의 착오도 생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대 상황은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광전총국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관리사
2019년 9월 27일

55.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설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创建广播电视媒体融合发展创新中心有关事宜的通知
게재일	2019-10-09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1. 혁신센터 주요 과제

- (1) 이론 연구. 미디어 융합 발전에 관한 이론 설명을 심화하고 방송TV 업계의 전 과정, 모든 정보, 모든 주체, 모든 효과의 미디어 구축에 포커스를 두며 전파력, 인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향상시켜 주류 사상 여론을 강화하며 생산, 전파, 서비스, 관리 등의 각 측면에서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추진의 기본 이론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 (2) 모델 탐구. 방송TV와 신홍 미디어의 정보 내용, 기술 응용, 플랫폼 단말, 관리 수단에서의 상호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의 경로와 방법, 체제와 메커니즘의 개혁 등을 탐구함으로써 실천 속에서 보급 가치가 있는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모델을 발굴해낸다.
- (3) 기술 응용. 발전 수요에 순응하여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에서의 신기술의 성과 전환과 구체적인 응용을 연구하고 방송TV 융합 미디어의 콘텐츠 생산과 제품 형태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방송TV 융합 미디어의 전송 배포와 이용자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조건을 구비했을 때 방송TV 특징과 선도성을 갖춘 원천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 (4)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방송TV 미디어 융합을 위한 혁신공간과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프로젝트를 육성하여 복제, 보급 가능한 전형적인 사례로 전환한다.

2. 혁신센터 설립 신청

혁신센터는 의탁기관이 신청을 제기하고 확실한 업무의 필요로 인해 몇 개의 공동 설립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의탁기관이 지방 기관일 경우, 성급 광전행정부처에서 심사 동의한 후 광전총국에 보고한다. 의탁기관이 중앙 직속 기관일 경우, 상급 주무부처에서 심사 동의한 후 광전총국에 보고한다.

1) 신청 조건

혁신센터의 의탁기관은 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고 아래 기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1)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측면에서 비교적 강한 혁신 능력과 연구 실력을 가지고 있고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을 업무 방향과 연구 핵심으로 삼는다.
- (2)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연구와 실천을 전개할 수 있는 인재풀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인재 구성이 합리적이며 책임자는 정치가 굳건하고 학술 정신이 엄밀하며 과감하게 혁신 탐구하고 업무 실적이 뚜렷하며 업계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이 있다.
- (3) 안정적인 경비와 사업장이 있어 혁신센터의 업무 전개와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잘 뒷받침할 수 있다.
- (4) 비교적 뚜렷한 발전계획과 완비된 규칙과 제도가 있다.

- (5) 비교적 강한 성과 전환 및 응용 보급 능력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선도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2) 신청 자료

- (1)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 신청서》.
- (2) 혁신센터의 위탁기관 및 공동 설립 기관 현황, 이미 갖춰진 업무 기반, 기존 성과 전환 및 응용 보급 현황, 책임자, 인재풀, 경비, 장소 현황.
- (3) 혁신센터의 업무 방향과 향후 3년 발전 계획.
- (4) 혁신센터의 관리 메커니즘, 규칙과 제도의 구축 현황.
- (5) 기타 혁신센터 설립에 도움이 되는 재료.

3. 혁신센터 관리

- 1) 국가광전총국은 혁신센터의 설립과 거시적 관리를 책임지는 가운데 업계 발전의 수요에 따라 혁신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진행하며 배치를 완벽하게 하고 구조를 최적화한다.
- 2) 성급 방송TV주무부처 또는 위탁기관의 상급주무부처는 혁신센터의 업무 전개와 운영 관리를 지도하고 혁신센터의 관련 보조 자원과 정책을 지원한다.
- 3) 위탁기관은 혁신센터의 책임 주체로서 업무 방향과 발전계획에 따라 혁신센터의 각종 과제를 완성하고 혁신센터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완비한다.
- 4) 공동 설립 기관은 혁신센터의 업무 전개와 운영 관리의 중요한 참여 주체로서 위탁기관에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완성한다.
- 5) 혁신센터는 연간 고과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4월 전 위탁기관은 연간업무계획과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소재지 성급 방송TV주무부처 또는 상급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친 후 광전총국에 보고한다. 업무보고서는 전년도 업무계획 완성 현황, 취득한 성과와 존재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다.
- 6) 광전총국은 혁신센터 업무 현황에 대한 고과를 진행한다. 고과결과 혁신센터가 주요 과제를 벗어나고 수년 연속 혁신 성과가 부족하거나 선도 시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광전총국은 시정 요구를 제기하고 위탁기관은 요구에 따라 시정을 진행해야 하며 시정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해당 혁신센터 자격을 취소한다.
- 7) 혁신센터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기간 만료 시 보존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은 절차에 따라 재차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 8) 혁신센터에 위탁기관의 구조 조정 등의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다시 인증해야 한다. 공동 설립 기관을 변경할 경우,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 9) 혁신센터의 위탁기관, 공동 설립 기관은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혁신센터의 명의로 기관, 편제를 새롭게 추가해서는 안 된다.
- 10) 혁신센터의 위탁기관, 공동 설립 기관은 혁신센터의 명의로 변칙적으로 회비, 가맹비 등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 11)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광전총국이 해석한다.

4. 지원정책

광전총국이 혁신센터에 대한 간판 명명을 하며 지방 기관이 신청한 혁신센터는 “중국 (지명)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로 명명하고 중앙 직속 기관이 신청한 혁신센터는 “국가 방송TV 미디어 융합 발전 혁신센터”로 명명한다.

선행 독려, 최적화 자원 배치, 우선적 발전계획 포함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혁신센터의 발전을 지원한다. 혁신센터가 취득한 각종 우수한 성과는 광전총국에서 우선적으로 전국에 보급하고 성과 전환 응용을 강화한다.

56. 방송TV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목	关于加强广播电视公共服务体系建设的指导意见
제재일	2020-01-06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공공서비스는 방송TV 행정관리부처의 중요한 직책이다.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중국의 방송TV 공공서비스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촌촌통(村村通 마을과 마을을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에서 ‘후후통(户户通 집집마다 방송 시청)’으로 진화하여 중국 전역의 국민이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방송TV 공공서비스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국민의 라디오와 TV를 잘 듣고 보고 사용하는 수요와 불균형의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표준화와 균등화 건설의 보강이 필요하고 적용범위와 적용성을 높여야 하며 국민의 고품질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정보기술 혁명의 발전 실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는 것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방송TV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더 강화하여 국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정신문화 생활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괄 요구사항

(1) 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와 19기 2중, 3중, 4중 전회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4개의 의식(四个意识)’을 단단히 수립하고 ‘4개의 자신감(四个自信)’을 굳건히 하며 ‘2개의 유지(两个维护)’를 해내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행하며 농촌 진흥, 지역 조화 발전과 스마트 방송TV 등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국민이 방송TV를 잘 듣고 보고 사용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표준화 건설을 주도로 균등화 공유를 기초로 커버범위와 적용성 향상을 핵심으로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을 방향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며 전송 네트워크 개선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체도를 보완하며 완비된 장기적인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스마트 광전(广电)+공공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 스마트 사회 건설에 깊이 융합시키며 방송TV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끊임없이 국민들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전감을 높인다.

(2) 기본원칙

방향을 견지하고 향방을 파악한다.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향방, 가치 지향을 공공 서비스 전체에 관통시켜 선전 사상 건설을 강화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도록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행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선양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정신적 동력과 문화적 지원을 제공한다.

기본에 입각하여 최적화 업그레이드한다. 방송TV의 혜민공정(惠民工程)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본 공공서비스가 중국 전역을 커버하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보 기

술 혁명의 기회를 잡고 ‘스마트 광전+공공서비스’를 추진하며 공공 서비스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여 국민의 신형 문화 시청과 종합 서비스의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킨다.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한다. 정부의 기본 공공서비스에서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다양한 사회적 역량의 참여를 동원하고 대중의 공동 건설 공유를 추진하여 공공서비스 주체가 더 다양해지고 메커니즘이 더 원활해지고 퀄리티가 더 향상되고 서비스가 더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중심을 아래로 옮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대중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의 해결에 착안하여 방송TV 접수 단말의 용이성, 유지 보수 서비스의 간편성, 콘텐츠 제공의 접근성, 수요 피드백의 상호성, 서비스 기능의 다양성 향상에 노력하여 직접 대중을 상대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공공 서비스의 ‘ラスト 마일(最后一公里)’을 원활하게 한다.

(3) 주요목표

2025년까지 체계적이고 완전하고 단계가 분명하며 연결되어 완성되고 과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체계를 전면 구축하며, 표준화 구축은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기본 루트가 된다.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총체적으로 실현하고 전국 응급 방송 체계가 기본 구축된다. 공공 서비스 적용 범위와 적용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콘텐츠 수요 피드백 메커니즘, 운영 유지 메커니즘, 장기 효과 서비스 메커니즘, 실적 고과 메커니즘, 정책 보장 메커니즘을 더 완비한다. 스마트 광전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고화질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모바일화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전환 업그레이드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후후통’에서 ‘런런통(人人通,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으로, ‘TV 시청’에서 ‘TV 사용’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

2.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체계 구축 가속화

(4) 국가 지도 표준의 조정을 추진한다.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을 실행하여 국가 지도 표준의 지도 역할을 발휘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체계 구축의 법적보장을 강화한다. 국가 지도 표준 업무를 중국의 공공서비스 일상 관리에 포함시키고 업무체도를 수립하여 국가 지도 표준의 동적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발전개혁, 재정 등 부처와 함께 새로운 방송TV 기본 공공서비스 국가 지도 표준을 적시에 발표 시행하여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 동적 조정 초기의 기초 업무를 잘 수행한다. 중대 과학 연구 과제를 설립하고 국가 지도 표준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강화하며 직접 방송 위성의 용량 확장 퀄리티 향상, 케이블TV의 기본 공공서비스 정책, 고화질TV를 기본 공공서비스에 포함 등의 핵심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국가 지도 표준이 경제사회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정보 기술 혁명의 발전과 서로 적응되도록 한다.

(5) 완비된 업계 표준 규범을 수립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완비된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체계 구축 관련 지도의견》을 실행하고 방송TV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체계 시행방안을 제정하여 기존 표준을 정리하고 응급 방송, 무선, 직접 방송 위성, 광전 5G 등의 시급한 단점 표준을 보완하며 중점적으로 시설 설비 구도와 구축, 인력 배치, 서비스 관리의 업계 표준 규범을 보완하여 표준화로 균등화, 보편적 특혜화, 간편화를 촉진한다. 업계 표준 규범은 국가 지도 표준을 실행해야 하며 각종 전송 기술 수단의 통합 연결을 중요시

하고 방송TV의 장기적인 발전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완비된 방송TV 공공서비스 통계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전송 적용과 시청 효과 모니터링 고과를 강화한다. 중국의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 체계 구축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종합적인 조율을 강화하고 중점 문제를 해결하며 지방의 표준화 업무를 지도한다.

- (6) 지방의 실시 표준을 세분화 보완한다. 성급 방송TV 행정관리부처는 표준화 구축을 공공서비스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동급 정부의 주체 책임 실행을 추진하여 본 지역의 기본 공공서비스 실시 표준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지방의 실시 표준은 국가의 지도 표준과 업계의 표준 규범에 따라 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구, 지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설 구축, 설비 배치, 인력 보유, 서비스 관리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요소를 세분화하고 보완하며 상응하는 보장 조치를 제기하여 표준을 실행 가능하고 재력에 보장이 있고 서비스가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지역이 표준을 적당히 높이도록 독려한다. 하부 조직의 공공서비스 표준화 구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현(縣)을 단위로 직접 대중을 상대하는 서비스기관의 표준화 관리를 추진한다. 기본 공공서비스의 성급과 현급 표준화 구축 시범을 실시하고 복제 가능한 경험을 정리한 후 적시에 중국 전역으로 보급한다.

3.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

- (7) 지역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지역 조화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방송TV 해민공정을 실시하여 빈곤지역, 민족지역, 변방지역, 혁명근거지 등의 공공서비스 취약점을 보완한다. 빈곤지역 현급 방송TV 제작 방송 능력 건설 공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전국의 민족 자치현과 변경현을 커버하도록 노력한다. 빈곤지역 민족자치주 관할현 농촌 종합 문화 서비스 센터 방송 기자재 배치 업무를 기한 내에 완성한다. 소수민족 언어 더빙 드라마 제작원의 기부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소수민족 언어 더빙 제작 교류를 강화하여 소수민족 지역 대중의 시청 콘텐츠를 풍부하게 한다. 변방 지역 방송TV 적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운용에 속도를 내어 변방의 공고함과 국경의 안전을 보장한다. 혁명근거지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깊이 연구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창장삼각주(长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등 지역이 통일 표준, 협력 연동, 시설 공유 등의 조치를 통해 방송TV 공공서비스의 일체화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한다. 관련 지역이 스스로 동·서부 협력에 융합하여 방송TV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 (8) 도시 농촌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향촌 진흥전략을 실행하고 농촌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하며 무선과 위성의 적용 성과를 공고히 하고 케이블 TV 네트워크 장점을 발휘하여 도시 농촌 공공서비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직접 방송 위성의 후후통 성과를 확대하고 직접 방송 위성 공공서비스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용량을 확대하고 퀄리티를 높이며 고화질 TV 프로그램을 증가하고 부가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은 지역의 시급 방송TV 프로그램이 직접 방송 위성을 통해 본 지역을 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해 파속 적용 구축을 강화한다. 직접 방송 위성 전송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응용에 속도를 가하고 위성 전송 시스템을 보완하여 서비스 적재 능력을 높이고 안전 송출을 보장한다. 케이블TV 네트워크 향촌 통달률(通达率)을 높이고 도시 농촌 인프라 일체화로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이끈다. 중앙방송TV프로그램 무선 적용 운영 유지 경비를 계속 보장하고 중앙방송

TV프로그램 무선 디지털화 적용 공정과 무선 발사대 인프라 구축 공정을 서둘러 완성하고 지방의 무선 보충 적용을 지원한다.

- (9) 군중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전국 위성TV채널의 모든 시간대에 실시간 자막을 입히도록 추진하고 중점 뉴스 프로그램의 수화 동시 송출을 실현한다. 서서통(舍舍通), 어선통(漁船通)을 계속 추진하고 목축 지역, 건축현장, 야외작업장, 교통수단 등 유동 인구와 빈곤 이주 주민 정착 지역 적용을 강화하여 기본 공공서비스의 상주 인구 전체 적용을 실현한다. 장애인 등 특수 집단을 위한 서비스의 기술 표준을 하루 빨리 제정 응용한다. 정책에 따라 특별히 어려운 군중을 위해 케이블 TV 요금 인하 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10) 응급 방송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관리 운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응급관리부처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상하 관통(上下贯通), 안전 신뢰(安全可靠), 신속 효율(快速高效), 평전 결합(平战結合)의 전국 응급 방송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관련 부처를 적극 조율하여 국가 응급 방송 관계센터를 세운다. 지속적으로 빈곤현의 응급 방송 체계 구축을 실시하고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 기간에 범위를 확대하여 변방 빈곤지역 현금 응급 방송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중앙 재정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아직 응급 방송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면 서둘러 구축해야 하고 이미 구축한 경우, 전국의 응급 방송 체계와 서로 연결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공공서비스의 적용성 강화

- (11) 하부 조직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한다. 구축과 관리를 동시에 중요시하고 완비된 방송 TV 운영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보완한다. 현금 방송TV 행정관리부처 또는 단체는 법률 법규에 따라 공공서비스 관리유지기관을 설립하고 하부 조직 서비스망에서 서비스 안내, 행위 규범, 퀄리티 약속, 실적 평가 등 제도를 수립하도록 추진하여 표준화 관리를 실현한다. 향진 서비스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조건을 구비하면 향진 방송TV스테이션을 설립할 수 있으며 단독 설립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종합 문화 서비스 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중점적으로 케이블 TV 향진 서비스망의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여 대중에게 촌촌통, 후후통, 촌촌향(村村响), 응급 방송, 케이블 TV와 지상 디지털 TV의 보수 유지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방송 위성 등 방송 TV 접수 장비 전문경영 서비스를 도맡는다. 지역 실정에 맞게 촌급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보완하여 마을 조직에 촌급 대행 서비스망 또는 전담자가 담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급 및 시급 방송TV 행정관리부처는 하부 조직 서비스 네트워크 보완을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 업무로 간주하여 계획 인도, 정책 보장, 인재 교육 등 방면에서 지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TV 헤민공정 중앙재정 운영 유지 경비사용 특별 연구를 진행하여 하부 조직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자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 (12) 콘텐츠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한다.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방송TV 콘텐츠 건설을 강화하며 문명의 향풍, 좋은 가풍, 순박한 민풍을 육성한다. 신시대 명품 공정을 실시하여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한다. 프로그램의 우수 작품 창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명품 프로그램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 과학 기술, 법치, 의료 위생 등 대중들이 반기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공익 광고 등 공

의 프로그램의 발전을 지원한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특히 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인다. 성급 방송 TV기관은 중심을 아래로 옮겨 성, 시, 현의 공동 건설 공유를 추진하고 농업 관련 브랜드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시급, 현급 방송TV기관이 지방 향토색이 짙고 현지 문화 특색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내놓도록 지원한다. 각급 방송TV기관은 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

- (13) 정부의 공공서비스 구매를 추진한다. 공급측구조개혁과 ‘放管服(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추진하고 방송TV기관의 적극성을 높이며 업계협회 등 각 사회단체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기업체·사업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공공서비스 주체의 다원화를 추진한다. 정부의 구매 서비스 지도목록을 세분화하고 구매 범위를 적극 확대하며 법률 범규에 따라 민간기업 등 사회 역량을 대상으로 개방한다. 전국 시현 방송TV프로그램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모색하고 콘텐츠 제작 경영기관과 시현 방송TV기관 간의 수급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기부, 공익 거래, 프로그램 협력 공동 건설 및 제작 방송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정부조달, 프로젝트 보조금, 지정 후원 등 정책 조치를 보완하여 방송TV콘텐츠 생산 창작 유도 자금의 지렛대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구매의 정책 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5. ‘스마트 광전+공공서비스’ 전면 추진

- (14) 콘텐츠 생산의 전환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한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방송TV와 인터넷 시청의 콘텐츠 생산 핵심 장점을 발휘하여 대중의 고퀄리티, 다양한 맞춤형 시청 수요를 충족시킨다. 방송TV기관의 전 과정 미디어(全程媒体), 전체 정보 미디어(全息媒体), 전원 미디어(全员媒体, 각 주체의 미디어 참여), 전체 효능 미디어(全效媒体)의 구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의 응용에 박차를 가해 콘텐츠 생산 전과 방식의 변혁을 실현한다. 전국 방송TV 미디어 제작 방송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제작 방송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호 연결을 촉진하며 현급 미디어 융합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참여한다. 고화질·초고화질 TV 발전에 박차를 가해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 말이면 전국의 시급 이상 TV방송국에서 기본적으로 고화질 송출을 실현하도록 한다. 첨단 영상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디지털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 방송TV프로그램 시청 종합 평가 빅 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텐츠 수요 피드백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콘텐츠 공급의 접근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15) 공공서비스 탑재 네트워크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모바일을 우선으로 케이블TV네트워크 통합과 광전 5G 발전을 모두 추진하고 스마트 광전, 모바일 통신, 만물인터넷을 하나로 통합한 신형 국가 정보화 기초 네트워크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고화질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모바일화를 촉진하여 후후통에서 런런통, 이동통(移动通, 이동중에도 방송 신호는 전달된다), 종단통(终端通, 모든 단말기에 방송 신호를 전달한다)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전국의 케이블 TV 네트워크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각급 네트워크 회사가 중요한 공공 서비스 주체가 되도록 추진하여 케이블 TV의 공공서비스 잠재력과 역할을 발휘한다. 광전 5G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어 공공서비스의 전환 업그레이드에 힘을 보태며

유무선, 방송 통신, 큰 스크린과 작은 스크린의 협동 발전을 추진한다. 방송TV 및 인터넷 시청 지능화 모니터링 감독관리 플랫폼에 의존해 케이블, 무선, 직접 방송 위성 전송 커버리지, 장비 사용과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실현하고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관리 수준을 높인다. IPTV와 공공서비스 특별 연구를 적극 전개한다. 공공서비스 탑재 사이버 안보 보호 능력 구축을 확실히 강화한다.

- (16) 서비스 기능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서비스를 기본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식, 서비스 기능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고수하고 대중의 방송 TV 및 인터넷 시청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신형 문화 소비를 촉진하여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에서 사용자로, ‘TV 시청’에서 ‘TV 사용’으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나리오 응용 개발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의료교육, 교통관리 등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며 기업 사용자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지능화 제조, 유연성 생산을 촉진하고 방송TV의 소비성 서비스에서 생산성 소비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사회, 스마트 농촌, 스마트 홈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당위원회 정부 각 부처의 ‘쉐랑공정(雪亮工程)’, 원격 당원 교육, 공공 관리, 신시대 문명 실천 센터 등 공정에 참여하여 하부 조직 선전 사상 문화의 장을 단단히 하고 확장한다.

6. 공공서비스 조직 보장 강화

- (17)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총국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직책을 확실히 이행하여 총괄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조율을 강화하며 표준화 구축을 기본으로 관련 부처와 직속 기관의 완비된 공공서비스 공동 추진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프로젝트 수립을 매개체로 계획 주도, 정책 지원, 규범 설계, 프로젝트 관리 및 인재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 공공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도를 확실히 강화한다. 조사 연구, 과제 합작, 시행 전개, 시범 공정 등 방식을 통해 지방과의 업무 연결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정책 수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방 방송 TV 행정관리부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방송TV 헤민공정 관리시스템 정보화 구축을 추진하여 관리 효율을 높인다.
- (18) 실적 관리를 강화한다. 방송TV 공공서비스 실적 고과 방법을 제정하여 고과 주체, 고과 내용 표준, 고과 방식과 상벌 조치를 명확히 하고 전면적인 실적 관리를 추진한다. 사회적 효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결과 지향을 중요시하며 원가 계산과 책임 제약을 강화하여 재정 예산 자금 실적 고과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TV 공공서비스의 퀄리티와 효율을 높인다. 자금 사용 실적 평가 제도와 시설 사용 효능 고과 제도를 보완하고 대중 참여를 도입한 평가제도 및 고과 결과 활용 제도를 수립한다. 제3자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공공서비스 사회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실적 고과를 총국의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화 구축 시행에 포함시킨다. 지방 각급 방송TV 행정관리부처는 본 지역의 공공서비스 실적 고과 업무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 (19) 팀 건설을 강화한다. 방송TV 공공서비스 전문가 라이브러리를 조성하여 표준화 구축, 전환 업그레이드, 법적보장 등에 대한 기초적, 선구적, 전략적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수준을 높인다. 공공서비스를 총국의 교육 계획의 중점 내용으로 삼아 성급 공공서비스

팀 건설을 강화하여 시급, 현급으로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 방송TV 기술의 발전 개혁에 따라 응급 방송, 케이블, 무선, 직접 방송 위성과 광전 5G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의 교육 훈련의 자원 우세를 발휘하여 위탁 교육, 연합 교육, 교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 교육 업무를 지원한다.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해 방송TV 공공서비스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전국의 현급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대 교육을 실시한다.

- (20) 책임 실행을 강화한다. 지방 각급 방송TV 행정관리부처는 직책을 이행하여 동급 정부의 법률 법규에 따른 공공서비스 주체 책임 실행을 추진하고 자금 보장을 강화하며 업무 고과를 강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적용을 보장하여 고퀄리티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성급 방송TV 행정관리부처의 책임은 중대하며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상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며 담당 역할을 강화하고 과감하게 개척하고 혁신하여 공공서비스 장기 효과 메커니즘 보완, 인프라 효과 향상,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등 중점 난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방송TV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

57. TV드라마와 웹드라마 창작생산 관리 관련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电视剧网络剧创作生产管理有关工作的通知
제재일	2020-02-06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TV방송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여행국, 중앙라디오TV 본부 사무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업무부 선전국, 중앙정부 직속 관련 기관, 중국라디오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중국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

제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시진핑 주석이 문화예술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중요지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인민을 중심으로 한 창작을 지향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근면성실한 태도로 창작을 위해 온 노력을 기울여 수많은 우수 작품을 창출해 냈으며, 드라마와 웹드라마 산업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드라마와 웹드라마 산업은 ‘높은 기점’과 ‘고점’ 상실, 창작역량 부족, 내용 늘리기 편성, 업계 질서 규범화 미흡 등 문제가 존재한다. 제18차 당대회와 19회 2중, 3중, 4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영상산업 종합개혁을 통한 중국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시행과 드라마·웹드라마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대중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역작을 다량 제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관리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

가. 근본적 조치 강화, 촬영 제작의 등록 및 공시 관리 개선

현재, 일부 드라마와 웹드라마의 제작 과정 중, 촬영 진도만 맹목적으로 쫓아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급히 촬영 제작에 뛰어들어 작품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가 상존한다. 제작기관의 신중한 창작 태도를 독려하고 제작 기반을 다짐으로써 경솔한 행위를 없애고, 소재를 이용해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만 급급해 하는 불량한 풍조를 철저히 막기 위해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신청등록 공시 시, 제작기관은 반드시 관련 방송 주관부처에게 기본적으로 완성된 각본 창작을 약속해야 한다. 또 내용이 정치, 군사, 외교, 국가안보, 통일전선, 민족, 종교, 사법, 공공치안, 부패척결 등 민감한 내용과 관련된 경우, 촬영제작 신청 등록 공시 이전에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 혹은 관계자 측의 서면 동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나. 내용 ‘늘리기’ 반대, 분량에 대한 규정

현재 일부 드라마와 웹드라마의 창작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상업성,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여 인위적으로 회차를 늘리거나 줄거리에 명백하게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가 나타나, 줄거리의 서술이 번잡해지고 예술성을 떨어뜨리며 그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여 드라마와 웹드라마를 창작할 때 규모와 수량보다 전체적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인위적인 내용 ‘늘리기’와 회차수를 늘리는 등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엄숙하고 신중한 창작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드라마와 웹드라마 촬영제작 회차수를 최대 40회로 제한하고, 30회 이내의 단편 창작을 장려한다. 내용 ‘늘리기’ 문제에 대한 종합 시책, 협동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협회는 보

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산업표준 제정을 연구해야 한다.

다. 제작원가 편성 비율 현황 보고업무 시행

2017년 중국라디오TV사회조직위원회 드라마제작위원회 등 산업협회가 <드라마와 웹드라마의 제작 원가 편성비율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2018년 광전총국이 <국가광전총국의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각 문예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통지>(광전발[2018]60호)(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수많은 제작업체와 제작자들이 ‘의견’과 ‘통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드라마와 웹드라마 제작원가 분배비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기자 출연료 분배제도도 더욱 개선되었다. 상기 제도의 장기적 효과를 높이고 일상적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드라마와 웹드라마 제작 완성작 심의 단계에서 제작업체는 반드시 제작 원가 결산 편성비율 현황보고, 출연료 계약 사본을 관련 방송 주관부처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드라마와 웹드라마의 전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는 총 제작원가의 4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주연 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구, 해당 제작업체에게 전달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드라마와 웹드라마 심사 책임을 지닌 방송 주관부처는 본 통지의 정신에 입각해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관련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한다.

국가광전총국
2020년 2월 6일

58.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기준 세칙

제목	网络综艺节目内容审核标准细则
게재일	2020-02-21
출처	중국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웹예능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잘못된 허위정보 및 유해한 콘텐츠의 전파를 저지하여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온라인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법규,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규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통칙>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가.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의 기본 기준

- (1) <인터넷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제6, 7조에 열거된 20개 기준
- (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관리규정> 제16조에 열거된 10개 기준
- (3)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통칙> 제4장 제7, 8, 9, 10, 11, 12조에 열거된 94개 기준

나.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의 구체적 세칙

웹예능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의 기본 기준에 따라 온라인에서 배포되는 웹예능 프로그램과 그 제목, 명칭, 평론, 댓글, 이모티콘 등을 포함해 언어, 연기, 자막, 배경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출현빈도가 높은 문제)

제1장 일반적 세칙

(가) 제작자 및 출연자 선정 문제

제작자는 연출가, 감독, 기획자 등을 포함하며, 출연자는 사회자, 코치, 평가위원, 특별출연, 선수,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다.

예를 들어,

1. 조소, 비방, 모독,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 혹은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 등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자의 선발, 예(생략)
2.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선발
3. 스캔들, 악행, 법규 위반, 범죄 등 행위로 인해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연예인의 선발
4. 외국국적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계 인사의 부적절한 선발

(나) 출연자 언행거동 상의 문제

예를 들어,

5. 출연자가 근본적 시비 문제에 대해 중국의 국가상황과 역사에 위배되거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혹은 관련 법률 법규에 어긋나며,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관점과 언론을 발표한 경우. 예(생략)
6. 출연자의 언행이 저급하거나 고의적 악의 등 교양이 없는 경우. 예(생략)
7. 출연자 상호 간의 과도한 비방, 헐뜯기, 과도한 자만, 희롱 혹은 그러한 암시나 성희롱 행위,

언어 등

8. 사회자, 특별출연자가 배금주의, 향락주의적 발언을 한 경우. 예(생략)
9. 사회자, 특별출연자가 경시, 비난 어조로 특정 사회집단을 묘사, 소개, 평가한 경우. 예(생략)
10. 사회자, 특별출연자가 출연자, 선수, 프로그램 참여자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신분을 고의로 강조하는 경우. 예(생략)
11. 선수가 주목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어 감정을 부추기는 쇼를 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고 비통한 심정을 과장하는 행위, 타인보다 출중해 보이기 위해 서로 비교하거나 악의적 경쟁을 하는 경우. 예(생략)
12.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관점, 언론이 발생했을 때, 사회자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3. 프로그램 후반 편집작업에서 화면에 그림, 음향효과 등 특수효과를 이용해 상기 언급한 문제를 강조하거나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 경우

(다) 디자인(헤어, 의상, 화장), 도구, 무대설계 등 설정 상의 문제

예를 들어,

14. 내용에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설정이 너무 과장되고 기이한 경우
15.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설정
16. 배경 설치, 의상, 도구 설정에 반동, 위법, 규정 위반의 요소가 포함된 경우. 예(생략)
17. 배경 설치, 의상, 도구 설정 또는 제작 완성 후 프로그램의 영상 출력화면 상에서 저급한 내용, 성을 암시하는 요인이 출현한 경우. 예(생략)
18. 무대 배경 효과음을 통해 성을 암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낸 경우
19. 성인용품 혹은 마약 등 법적으로 금지된 물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20. 출연자가 프로그램 촬영장 이외의 장소 또는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상황에도 고의로 성적 매력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의상을 사용하는 경우. 예(생략)

(라) 문자언어 사용상의 문제

예를 들어,

21. 프로그램의 제목, 자막(모션그래픽 형식의 자막 포함) 등에 대해 부적절한 수정을 가한 경우. 예(생략)
22. 프로그램 내용에 불필요한 인터넷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23. 인터넷 언어유희를 이용해 국내외 정계인사나 공인을 칭하는 경우
24. 서법으로 쓴 프로그램 명칭과 관련 문자 이외, 프로그램 중국어 자막에 규범에 어긋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25. 외국어로 된 노래가사, 제목 및 대사, 특정 의미를 지닌 단어 및 표시 등에 대해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중국어 자막을 생략한 경우
26. 욕설, 비속어 또는 회롱, 모욕, 조소가 섞인 언어를 사용한 경우. 예(생략)

(마) 프로그램 제작 편집상의 문제

예를 들어,

27. 인기연예인, 제작경비를 이슈화시켜 과도한 마케팅과 과대 홍보한 경우
28. 프로그램 후반작업 합성과정에서 조직 통일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요인, 사회주의제도를 공

- 격하는 인사 혹은 표식을 담은 영상, 사진, 문자를 소재로 사용한 경우
29. 프로그램 내용을 기존 의도에 맞지 않게 편집, 짜깁기한 경우. 예(생략)
 30. 소음이나 의성어를 이용해 프로그램 중의 비속어를 덮어 숨기거나, 더욱 두드러지도록 강조 효과를 내는 경우

제2장 분류별 세칙

(가) 인터뷰 및 토크쇼 유형 프로그램 관련 문제

예를 들어,

31. 토론, 평론, 결론의 내용에 관련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극적 언어가 존재하는 경우. 예(생략)
32. 일반 인물 또는 사건을 서술하는 담론에서 공산당 역사, 국가역사, 군사적 역사, 민족, 외교 등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였을 시, 그 방향성에 오류가 존재하거나 중국의 주류 가치관과 상충하는 경우
33. 강론, 의상, 거동, 행위 등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공산당이나 국가 지도자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하거나 조소하는 경우
34. 종교신앙에 대한 악의적 패러디, 조롱, 공격하는 경우
35. 민족 풍속, 명절 풍습, 전통예절에 악의적인 해를 입힌 경우
36. 폭력적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예를 들어 동물 학대 장면 인용 등
37. 악질의 사건 중 불쾌감을 주는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 예를 들어 살해사건 혹은 자살 자해로 인해 피가 흥건한 장면 등
38. 추악한 행위를 널리 퍼뜨리는 경우. 예(생략)
39. 미신 행동을 널리 퍼뜨리는 경우. 예(생략)
40. 사회문제를 편파적, 극단적으로 분석, 토론, 평가하는 경우
41. 사회적 의제를 편파적으로 해석하거나 곡해하는 경우
42. 연예인 개인의 결혼, 출산, 분쟁, 스캔들 등 사생활에 대해 토론하거나 사치 생활, 호화 결혼, 고가의 자녀교육 등을 화제 또는 주요 내용을 삼아 보여주는 경우
43. 성경험, 성적 체험, 성기관, 성 보조기구와 성적 효력이 있는 약에 관해 주제 혹은 주요 내용으로 삼은 경우
44. 미디어에서 공개적 토론, 심도있는 토론이 어려운 성에 관한 주제를 토론하는 경우. 예(생략)
45. 위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관련 관리부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공인 혹은 화제의 인물 관련 내용을 과장하거나 조작한 경우

(나) 오디션, 서바이벌 유형의 프로그램 관련 문제

예를 들어,

46. 각색, 공연 등 방식으로 모범 혁명 문학예술작품을 오락적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경우. 예(생략)
47.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대사, 가사, 브릿지 플롯(bridge plot)을 편집, 각색함으로써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역사 왜곡, 영웅에 대한 악의적 패러디, 숭고한 정신을 조롱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48. 보편적 가치관과 대중의 심미관에서 벗어난 선수 혹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추천, 홍보하는 경

우. 예(생략)

- 49. 특별출연자, 선수, 프로그램 참여자가 저급하고 속되며, 부정적, 퇴폐적인 관념과 태도를 집결, 선양 혹은 조작한 경우. 예(생략)
- 50. 프로그램 중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장면을 설정하여 고의적으로 네티즌에게 소비를 선동하거나 회원을 모으는 등 물질적 수단으로 선수에게 투표하도록 장려 또는 조력하는 경우
- 51. 선수 혹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추천, 홍보할 때, 그들의 내적 전문 소양을 경시하고 외적 조건만 과장하는 경우. 예(생략)
- 52. 여성을 사물화하고 소비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예(생략)
- 53. 사회자, 특별출연자가 선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소개할 시, 모욕,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연대모욕, 특정 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예(생략)
- 54. 관련 관리부처가 규정 위반을 사유로 명확히 금지한 곡을 프로그램에서 부르거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 55. 미성년자가 서바이벌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다) 연애 예능프로그램 관련 문제

- 56. 특별출연자 혹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언행이 전통적 도덕 관념과 윤리적 한계선을 넘은 경우
- 57. 부정적, 퇴폐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을 널리 알리는 경우
- 58. 배금주의, 사치풍조, 향락주의를 널리 퍼트리거나 경우. 예(생략)
- 59. 성적 자유, 성 개방을 널리 퍼트리거나 경우
- 60. 봉건미신 등 봉건적 문화의 잔재를 널리 알리는 경우
- 61. 프로그램 참여자가 의상, 헤어, 동작, 목소리, 눈길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암시를 한 경우
- 62. 연애, 결혼, 친구, 감정 테스트를 명목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각종 인성 테스트를 진행하여 약점을 들추어내는 경우. 예(생략)

(라) 아동, 가족 출연 프로그램 관련 문제

- 63. 프로그램의 배경, 화제 설정, 대화 정경, 연령 제한 등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 등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법규,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64. 프로그램의 내용 설정, 선전홍보, 현장 질의응답 등 분야에서 아동의 개인적 문제를 캐내려 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예(생략)
- 65. 아동의 의상 노출이 심하거나 어떤 성년을 모방하여 꾸민 것이 아동의 심신 건강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경우
- 66. 부를 자랑하거나 향락주의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성장의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 67. 아동이 주요 출연자로서 성인화, 상업화 오디션 활동을 하는 경우
- 68. 아동의 교우에 대해 성인화로 연역, 조작하는 경우. 예(생략)
- 69. 미성년자 프로그램에서 아역배우효과를 고무시키거나 연예인 자녀를 포장, 조작하는 경우
- 70.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술집, KTV, 유흥업소 등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경우
- 71. 성년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방관하며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생략)

- 72. 인성적 갈등과 충돌, 위험한 상황, 저속한 화제를 고의로 익살스럽게 보이도록 만든 경우
- 73.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극한운동(맨손 암벽등반, 번지점프, 저공낙하 등) 또는 아동이 참여했을 때 위험성이 잠재하는 운동(힙합댄스,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일륜차, 잠수, 호버보드 등)에 대해 사전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은 경우
- 74. 프로그램 내에서 ‘전문가 관점’, ‘교육 소개’ 등 분야의 내용에 가치관을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경우
- 75. 전문적 교육 배경 혹은 관련 전문 경험이 없는 특별출연자가 성에 대한 지식, 성교육 내용에 대해 토론한 경우
- 76. 국가계획생육정책을 편파적으로 해석, 곡해, 공격한 경우
- 77.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가수 서바이벌 유형의 프로그램, 리얼리티 쇼, 토크쇼 프로그램이 국무원 방송주관부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마) 생활체험 유형(여행, 요리 등)의 프로그램 관련 문제

- 78. 소수민족의 풍속에 대한 조롱, 풍자, 악의적 패러디
- 79. 연예인 단체 여행, 호화스러운 여행, 현지 주민들의 현실적 생활에서 벗어난 행동
- 80. 과학적 상식이나 생활에 유용한 기능, 환경보호 의식을 갖추지 않은 참여자를 볼거리와 갈등 요소로 만들어 오락적으로 표현한 경우
- 81. 현장 전문가의 지도와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위험성이 있는 활동에 도전하는 경우. 예(생략)

(바) 전문 경기(競技) 유형(지식, 체육, 기술, 예술 등 분야)의 프로그램 관련 문제

- 82. 전문성이 높은 경기 행위에 대해 경기 부문에 안전지도와 안전주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예(생략)
- 83. 전문성이 높은 경기 활동에 대해 그 전문성을 경시하거나 크게 주의를 두지 않고 오히려 오락성과 양방향성만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사) 게임형 리얼 버라이어티 유형의 프로그램 관련 문제

- 84. 안전 문제가 존재하는 게임에 대해 진행 시 안전적 지도와 안전에 대한 주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 85. 내용 설정 면에서 무절제하고 지조없는 악의적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예(생략)
- 86. 인위적으로 모순과 갈등을 자극하고, 고의로 저급한 꿈을 보이는 경우

(아) 역할 연기가 있는 이야기 추리, 연역형 프로그램 관련 문제

- 87. 이야기 추리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거나 제멋대로 짜여진 경우
- 88. 영웅열사의 사적(事迹)과 정신을 왜곡, 해학화, 모멸, 부정하거나, 열사의 이름, 초상에 악의적인 해를 입히거나, 역사적 인물과 모범적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 89. 추리 과정에서 오락성 연기와 표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예(생략)
- 90. 이야기 설정 연대와 맞지 않거나, 연기와 추론 과정에서 설정한 연대와 차이가 큰 당대 가치관, 언행방식, 유머 등을 대량 사용하는 경우
- 91. 공포, 혈성(血腥), 폭력적인 분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

92. 저급한 특수효과로 포장한 경우. 예(생략)

(자) 게임 각색형 프로그램 관련 문제

93. 게임 중의 허구 역할, 형상, 장면, 규칙 등을 그대로 실제 인물이 참가하는 현실 예능프로그램에 옮기는 과정에서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내용이 존재할 경우. 예(생략)
94.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폭력, 음란, 외설, 미신, 도박, 마약, 사이비종교, 혈성, 범죄교사 등을 조장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또는 혈성, 음란, 미신, 사이비종교, 금지약품 등으로 명명하는 경우

중국인터넷방송프로서비스협회
2020년 2월 21일

59.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

제목	全国有线电视网络整合发展实施方案
제재일	2020-03-26
출처	선전부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선전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청(국), 재정청(국), 주택도농건설청(위, 국), 농업농촌(농축)청(위, 국), 세무국, 광전방송국, 증감국: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을 아래와 같이 인쇄 발행하며, 현실에 입각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실시방안

19대 당대회 정신을 전면 실천하고 전국선전사업무회의, 전국선전부장회의의 정신과 중앙정부의 전면적 문화체제 심화개혁에 관한 정책적 결정의 철저히 시행에 입각하여 유선TV네트워크 통합과 방송부문의 5G 융합발전을 더욱 촉진하여 중국 방송사업 발전의 새 시대를 열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방안을 제정한다.

1. 총괄 요구사항

1) 지도사상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4개 의식’을 높이고, ‘4개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2개 보호’를 실현하고, 당의 지도하에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주도, 가치 지향, 인민을 중심으로 한 업무 수행을 견지한다. 기치를 내세우고 민심을 모으며 신인을 육성하고 문화를 흥성시키며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명과 임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네트워크강국 건설과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성취감과 행복감을 선사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5G 건설과 발전을 계기로 통합설계와 계획수립, 표준제정을 강화하여 전국 유선TV 네트워크 통합발전과 상호연계 추진 및 유선TV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문화선전과 종합정보 서비스 기능을 겸비한 특색을 가진 관리와 제어 가능, 안전성이 입증된 신형 스마트 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유선TV네트워크가 가진 이데올로기의 주요 경로이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의 신문여론 전파력, 지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인민들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정신적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2) 기본 원칙

- (1) 행정추진과 시장운영. 행정의 추진력 이용, 시장화 형식을 기반으로 중국라디오TV네트워크유한회사(이하 ‘중국광전’)가 앞장서 주도하고 성급 유선TV네트워크회사(이하 ‘성급네트워크회사’), 전략적 투자자 등과 연합하여 중국 방송네트워크주식유한회사(임시 명칭, 이하 ‘주식회사’)를 공동 설립한다. 이를 통해 전국 유선TV네트워크의 통일된 운영관리, 국유자산의 가치 보장 및 가치 증대를 실현한다.

- (2) 통일적 배치와 분류 시행. 당중앙, 국무원의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추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발전 영도소조(이하 ‘영도소조’)의 통일적 배치 하에, 각 성(구, 시)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급네트워크회사의 실제 현황에 근거하여 기업과 사업단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정한다.
- (3) 총괄적 계획 수립과 적극적 시행. 사상을 더욱 통일시키고 시대적 흐름에 자각적으로 참여하여 전국 유선TV네트워크 통합과 방송-5G 융합발전을 문화체제 개혁 심화의 중요한 우선과제로 삼아 시급히 추진하고, 대중들이 라디오를 듣고 TV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지방의 요구사항과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2) 업무목표

중국광전, 성급네트워크회사, 전략투자자가 함께 설립에 참여하여 중국광전의 주도 하에 현대적 기업제도관리에 따라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국일망(全国一网)’ 주식회사를 구성한다. 방송의 특성을 갖춘 5G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유선TV네트워크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서로 통하는 플랫폼에 기반한 유선TV네트워크 IP화, 스마트화 개조를 수행하여 유선TV네트워크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일망(全国一网)과 5G의 융합발전을 실현하고,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체계를 구축,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원가를 낮추는 한편, 유선TV네트워크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력을 강화하여 유선TV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2. 주요 과제

1) 전국일망 실현

중국광전은 5G 허가증 등 자질과 주파수 등 자원으로 주식회사에 참여하고, 관련 지분, 현금 등 자산을 출자하는 성급네트워크회사는 원칙적으로 납부승인방식으로 네트워크 지분에 참여하며, 전략적 투자자는 현금 출자를 통해 참여한다. 통일적 계획하에 각 성의 유선TV네트워크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방송 5G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운영을 협동하여 추진하고, 다시 평가 후의 관련 지분자산에 따라 권리를 확립하고 출자한다.

2) 통일적 운영관리체계 수립

주식회사 설립 이후, 기존 성급네트워크회사는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통일적 건설, 통일적 관리, 통일된 기준, 통일 브랜드의 요구에 따라 유선TV네트워크와 방송 5G의 통일적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규모화, 집적화, 유무선 융합의 경쟁력을 발휘한다.

3) 네트워크 개조 및 업그레이드 실시

전국적 유선TV네트워크 통합과 방송 5G 융합발전을 기회로 삼아 전국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교류 가능한 플랫폼 건설을 일괄적으로 추진 및 완수하고, 농촌유선TV네트워크의 건설 속도를 높이며, 유선TV네트워크 IP화, 스마트화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60.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관리 규정

제목	广播电视行业统计管理规定
제재일	2020-04-03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TV·라디오 방송 통계의 정보 건설 및 감독 역할을 발휘하고 TV·라디오 방송 통계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가 TV·라디오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통계자료(빅데이터 통계자료 포함)를 합법적으로 조사, 수집, 정리, 연구 및 제공하는 TV·라디오 방송산업의 통계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TV·라디오 방송산업의 각 기관 단체는 TV·라디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업무 행위에 종사하는 각종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업무는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지 및 강화하여 ‘4개 의식’을 높이고 ‘4개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2개 보호’를 실현함으로써 통계업무가 TV·라디오 방송산업의 혁신형 질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도록 한다.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통계하며, 산업 발전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건전한 통계지표체계, 통계표준 및 통계조사제도를 수립하여 통계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전국적으로 상영되는 TV·라디오 방송산업의 통계 감독과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국무원 통계주관부처의 업무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역 인민정부의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 감독과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각 행정구역과 동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TV·라디오 방송산업의 기관 단체는 각자 종합통계업무를 책임진다.

TV·라디오 방송산업의 기관 단체는 연간 예산에 필요한 통계업무 경비를 편성해야 한다.

제7조 TV·라디오 방송산업의 기관 단체는 현대 정보기술을 보급 응용에 힘써 통계정보시스템을 수립 및 정비하고 데이터 수집방식과 서비스 경로를 확장해야 하며, 통계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 활용을 추진하여 TV·라디오 방송 통계업무의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야 한다.

제2장 통계기구와 통계인력

제8조 TV·라디오 방송 통계업무는 통일된 지도, 등급별 책임제를 시행한다.

제9조 국무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종합통계기구를 설립하여 다음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 (1)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업무 관리방법, 통계표준, 통계조사제도, 조사과제 및 조사방안을 제정하고, 통계법률과 행정법규, 규장 및 통계 표준, 통계 조사제도의 시행현황을 감독한다.
- (2) 전국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전국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사업을 조직 추진하여, TV·라디오 방송산업의 발전현황에 대해 통계분석, 예측, 감독을 진행한다.
- (3) 전국 TV·라디오 방송 통계정보시스템(빅데이터 통계시스템 포함)을 구축 및 관리하고, 전국 TV·라디오 방송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립, 정비한다.
- (4)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자료를 심의, 관리, 공개, 출판,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전국 TV·라디오 방송산업 발전통계공보를 발표한다.
- (5) 중앙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성급 부문 소속의 TV·라디오 방송기관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지역 인민정부의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다음의 직책을 수행한다.

- (1) 각 지역의 TV·라디오 방송 통계업무를 조직, 협조, 지도, 감독하고, 통계법률, 법규, 규장의 해당 지역 TV·라디오 방송 기관 단체의 시행현황을 감독한다.
- (2) 해당 지역의 TV·라디오 방송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국가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제도에서 확정한 조사사업과 지방 통계조사과제를 수행한다. 해당 지역의 통계표, 통계분석보고 및 기타 통계자료를 규정에 따라 상급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에 보고 제출하고, 해당 지역의 TV·라디오 방송 발전현황에 대해 통계적 분석, 예측 및 감독한다.
- (3) 해당 지역의 TV·라디오 방송 통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통계데이터 수집, 처리, 전송, 저장 등 업무를 수행하며, 상급 부문과 협조하여 지역성 TV·라디오 방송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한다.
- (4) 해당 지역의 TV·라디오 방송 통계자료를 심의, 관리, 공개, 출판, 제공한다.
- (5) 해당 지역의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의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제11조 TV·라디오 방송산업의 각 기관 단체는 다음의 직책을 수행한다.

- (1) 기관 단체와 그 소속기구의 통계업무를 조직 및 협조하여 TV·라디오 방송 통계사업을 수행하고, 규정된 시간에 해당 기관 단체의 통계표, 통계분석보고 및 기타 통계자료에 보고 제출한다.
- (2) 기관 단체는 각자 업무와 관리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진행하고, 통계 컨설팅과 통계

감독을 전개한다.

- (3) 통계기초업무를 강화하고 온전한 원시기록과 통계장부를 수립하며, 통계업무 책임제를 엄격히 지키고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4) 기관 단체의 통계조사표, 통계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제12조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반드시 각종 행정관리 직능과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며, 내부적으로 연동, 협동, 조화를 이루어 TV·라디오 방송 통계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제13조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빅데이터 통계정보시스템에 근거하여 시청률, 청취률(조회수) 통계업무를 통합하고, 데이터의 수집, 발표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의 합법적인 시청률, 청취율(조회수) 통계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허위로 시청률, 청취율(조회수)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각 기관 단체는 법에 따라 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통계인력을 두거나 겸직 통계인력을 지정하여 통계인력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계인력은 반드시 통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제15조 통계기구, 통계인력은 법에 따라 통계조사권, 통계보고권, 통계감독권 및 기타 법적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조사제도

제16조 국무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전국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제도를 책임지고 제정, 조정, 개정하여 국무원 통계 주관부처의 승인 후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역 인민정부의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보충적 지방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제도의 제정을 책임지며, 상급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해당 행정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등록(비안)한 후 실시한다.
지방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자체적으로 전개한 TV·라디오 방송통계조사의 주요 내용은 전국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 내용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관리업무의 수요에 따라 TV·라디오 방송 특별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TV·라디오 방송 특별부문 통계조사사업(빅데이터 통계조사사업 포함)은 국무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가 제정하고 국무원 통계주관부처의 비준 혹은 등록(비안) 후 실시한다.
지방성 TV·라디오 방송 특별 지방통계조사사업은 해당 지역의 인민정부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가 제정하고 해당 행정등급의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비준한 후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전수통계조사가 아닌 필요한 수요만 얻기 위한 것으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회성으로 진행되며 상시적 조사는 아니다. 특별조사 내용은 원칙적으로 전수통계조사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다.

- 제18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해당 단체 관련 기관과 인력을 조직하여 국가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과제와 기타 특별통계조사사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통계기구와 통계인력의 통계조사업무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통계업무 책임제를 수립 및 정비하고, ‘집단지도체(集体领导)’와 역할분담의 상호 결합 ‘, ’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원칙에 입각해 통계조작, 허위 날조 등을 방지 및 처벌하기 위한 책임체계를 개선하고 실천한다.
통계 조작, 허위 날조의 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단체의 주요 책임자가 최초로 책임을 지고, 각 부문 책임자가 주요 책임을 지며, 통계담당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제20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통계데이터의 품질통제 책임제를 수립해야 하며, 원시데이터와 원시장부를 귀납 및 정리하여 통계표 기입 보고의 완전성, 진실성, 유효성에 대해 심의, 대조하고, 기관 단체의 책임자가 심의 후 서명날인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통계표 제출 보고 이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규정기한 내에 이를 정정해야 한다.
- 제21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의 책임자는 통계인력이 합법적으로 수집, 정리한 통계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계인력에게 통계자료를 날조, 왜곡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으로 직책을 이행한 통계인력이나 통계 위법행위를 거절, 제지하려는 통계인력에게 보복행위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통계자료의 관리와 공개

- 제22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반드시 건전한 TV·라디오 방송 통계자료의 심사제도를 구축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통계자료는 관련 직능기관이 분업하여 책임을 맡고, 종합통계기구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통계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원시데이터는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종통합된 통계자료는 최소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중요한 통계자료는 영구 보관한다.
- 제23조 전국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자료는 국무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의 심의를 거친 후 사회에 공표한다.
전국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데이터는 국무원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가 공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데이터는 각 등급의 인민정부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가 심의한 후 사회에 공표한다.
- 제24조 TV·라디오 방송산업의 각 기관 단체는 법에 따라 통계자료의 비밀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 단체와 개인은 모두 통계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개별 통계조사대상의 신분을 확실히 식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통계기구와 통계인력은 통계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기밀과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반드시 통계파일링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문건의 보관, 전용(轉用), 이관 시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통계정보 컨설팅업무를 통해 사회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통계 감독 및 상벌제도

제27조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반드시 TV·라디오 방송산업 통계업무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계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제도의 집행 현황
- (2) 통계기구와 통계인력의 배치 현황
- (3) 통계 원시데이터와 장부 수립 관리 현황
- (4) 통계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수준 등
- (5) 통계자료의 사용과 공포 현황
- (6) 기타 통계업무 관련 상황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국무원 통계주관부처의 통계 감찰 업무에 협조 지원하여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8조 TV·라디오 방송 주관부처는 정기적으로 TV·라디오 방송사업 통계업무 현황에 대해 심사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기구와 통계인력에게 상벌을 부여한다.

TV·라디오 방송산업 기관 단체는 본 규정에 따라 통계업무 상벌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처벌,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0조 해외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TV·라디오 방송 통계조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 해외 관련 통계조사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2020년 5월 5일부로 시행되며, 2005년 1월 27일 原국가광전영화방송총국이 발표하고 2016년 5월 4일 原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개정한 <TV·라디오방송산업 통계 관리방법>(국가광전영화방송총국령 제47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61.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규범

제목	网络直播营销行为规范
게재일	2020-06-26
출처	중국광고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건전한 시장소비 환경 조성 및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범을 지도하여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부당경쟁법> 등 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행위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범은 판매자, 방송진행자 등 참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SNS 플랫폼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라이브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는 반드시 국가 법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올바른 발전 방향, 성실신용, 정보의 진실성, 공정경쟁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한다. 행위의 내용은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및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발양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가 업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의 사회 공동관리, 공동 추진을 장려한다.

제4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거나 국가 법률, 법규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국가 주권, 통일 및 영토의 완전성을 해치는 경우
- (3) 국가안전에 위협하거나 국가 기밀 유출, 국가의 영예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 (4) 민족, 종족, 종교, 성적 차별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5)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에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
- (6) 음란, 도박, 미신, 공포, 폭력 또는 범죄를 교사하는 경우
- (7) 모욕, 비방, 협박, 타인의 사생활 등 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 (8)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경우
- (9) 기타 사회 공공도덕 혹은 민족의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경우

제5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는 반드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정보를 전면적이고 사실적이며 정확하게 공개하여 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라이브방송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며, 관련 법규와 약정에 의거하여 판매후 서비스를 실천해야 한다. 건전한 소비자 보호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6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주체는 주문량 조작, 신용 조작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거래 데이터와 사용자 평가를 임의로 왜곡하거나 날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에서 상업 광고를 발표한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주체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방면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주체는 법률과 상업 도덕을 지켜야 하고,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주체는 반드시 지식재산권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의 상업 기밀, 기타 특허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주체 간은 서로 관련 법 또는 플랫폼의 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을 정립해야 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주체는 반드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제2장 판매자

제12조 판매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주체를 말한다. 판매자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질과 허가를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증서 증명을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

제13조 판매자가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가입할 때, 반드시 진실되고 유효한 신분, 연락처, 관련 행정허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해당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를 갱신하고 플랫폼에 고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가 합법적이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의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법적 또는 금지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플랫폼 및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판매자가 마케팅하는 판매 상품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의 상품 품질과 사용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 성능, 표시 사용 기준 및 허가

등에 부합해야 한다. 인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해를 가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자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특수 의학용 처방식품 등 특수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질 혹은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6조 판매자는 반드시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규정에 따라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 있는 상표 등록 증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경영 증명, 브랜드 판매 라이선스 증명 등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판매자가 발표한 상품, 서비스 정보는 반드시 진실되고 과학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거짓 선전,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 서비스의 표준은 관련 국가 표준, 산업단체 표준과 일치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판매자가 마케팅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는 상업 광고에 속하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각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8조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고, 법에 근거하여 환불 교환 보장 등 판매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와 방송진행자 간에 약정한 책임 분담의 내용과 방식 등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 규칙을 따라야 한다.[3]

제3장 방송진행자

제19조 방송진행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서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 방송진행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일정한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률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방송진행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가입할 때, 유효한 개인 신분, 연락처 등 정보를 사실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만약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갱신하고 알려야 한다.

방송진행자는 법률, 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가입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방송진행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가입할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공개 명칭은 법률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애칭 혹은 기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방송진행자가 설정한 라이브방송 계정 아이디, 사용하는 프로필사진과 라이브 방송실 메인사진은 반드시 관련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법적이거나 불량하고 유해한 정보를 내포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방송진행자의 라이브 방송실과 방송 장소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및 인터넷 라이브방

송 마케팅 플랫폼 규칙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 (1) 국가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장소
- (2) 사회의 정상적 생산, 생활 질서에 영향을 주는 장소
- (3)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소

라이브 방송실의 설치, 전시는 상업 광고에 속하므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방송진행자는 라이브방송 마케팅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견지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행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사용자를 저속한 분위기로 끌어들이거나 실내에서 저속한 상호교류를 이끄는 행위;
- (2) 성적 암시, 성희롱, 저속한 관심을 보이는 행위;
- (3) 공격, 비방, 모욕, 조소,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 (4) 라이브방송 행위 도중 흡연이나 다른 형태로 담배제품(전자담배 포함)을 홍보하는 행위;
- (5) 허황된 내용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이 모방하기 쉬운 위험한 동작;
- (6) 기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행위.

제24조 방송진행자가 발표한 상품, 서비스의 내용과 상품 서비스 링크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또한 실시간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서 명시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소비 정보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에게 사용 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방송진행자가 라이브방송 행위에서 정보의 진실성, 합법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허위 홍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방송진행자가 라이브방송 행위 중 제시한 약속은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플랫폼 규칙에 따라야 하며, 그와 판매자의 약정에 부합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진행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플랫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과 협조하여 상호 소통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여론 규범 관리를 마련해야 한다.

제27조 방송진행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서 판매자,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자와의 사적인 거래를 하거나 기타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방송진행자는 판매자,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등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어떤 형식으로도든 트래픽 등 데이터에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되며, 거짓 구매, 판매 후 반품 등 방법으로 판매자를 속여 수수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제29조 방송진행자가 기관의 명의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방송 기관은 반드시 자신과 계약한 개인 진행자의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제30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이란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서 라이브방송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사회 마케팅 플랫폼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

제31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각 방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가 산업 표준화, 산업 직업훈련, 산업발전품질평가 등 업계의 자율적 공공서비스 구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 지원한다.

제32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시장 주체에게 실제 신분 혹은 자질 증명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가입자 명부를 등록, 수립해야 한다. 판매자, 방송진행자가 고지한 변경된 정보에 대해 반드시 즉시 심의하여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다음과 관련해 플랫폼 규칙을 수립, 정비, 집행해야 한다.

(1) 가입 주체에 대한 서비스 계약 및 규칙을 수립하여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의 규범,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 방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한다.

(2) 본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금지하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규칙을 제정한다.

(3) 판매자, 방송진행자의 신용평가 상벌제도 등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판매자와 방송진행자의 신용 준수 및 준법 의식을 높인다.

(4) 상품과 서비스 거래 정보 보유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거래 관련 내용을 보유한다.

(5) 플랫폼 간의 분쟁 처리 연결체제를 정비하고, 법에 따라 소비자를 위한 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법적 권익 보호에 적극 협조한다.

(6)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정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소송처리체제를 개선한다.

(7) 편리한 소송, 제보 체제를 구축하고 소송, 제보 방식 등 정보를 공개하여 즉시 소송, 제보를 처리한다.

(8)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의 건전한 발전에 유용한 기타 규정

제34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다음과 관련하여 서비스 규범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1) 법률 법규 준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
- (2) 각종 유형의 플랫폼 규정 수립 및 이행
- (3) 본 플랫폼 라이브방송 마케팅 내용의 심의 및 내용 안보 관리 강화
- (4) 방송진행자의 가입과 마케팅 행위를 규정하고 방송진행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리 강화
- (5) 본 플랫폼이 금지하는 마케팅 행위를 명시하고, 위법, 불량 등 마케팅 정보에 대한 처벌 제도 마련
- (6) 법에 따라 관련 부처의 감독과 검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 제공

제3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형의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판매자 주체에 대한 자질 규정을 강화하고, 판매자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경영업무 관련 행정허가 등 정보를 공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36조 콘텐츠 플랫폼 유형의 온라인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판매자, 방송진행자의 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방송진행자가 타 사이트로의 링크 전환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사적 오프라인 거래로 유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37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형의 온라인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운영자는 반드시 내부거래 질서를 규범화하여 방송진행자가 합법적 거래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자와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오프라인 거래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한다.
SNS 플랫폼 유형의 온라인 라이브방송 마케팅 운영자는 방송진행자가 단체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여 음란하고 외설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다단계 판매, 도박, 마약 거래 등 불법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기타 참여자

제38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진행자 서비스기관은 방송진행자를 육성하고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를 전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말한다. (예: MCN기관 등)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진행자 서비스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경영 주체로서의 자질을 취득해야 하고, 플랫폼 규칙에 따라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주체와 협의를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제39조 방송진행자 서비스기관은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과의 협력 진행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및 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진행자가 파트너 플랫폼에게 제공하는 주체 자질 증명자료, 등록계정 정보 등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진행자 서비스기관은 반드시 내부 관리 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방송 진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진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계약직 진행자의 기본 소양, 상황대처 능력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여 계약직 진행자의 업

무 능력과 준법의식을 높인다. 계약직 진행자가 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규정과 표준 규정 등을 숙지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방송진행자 서비스기관은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진행할 때, 협력 협의와 플랫폼 규칙을 이행하고, 계약직 진행자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규정, 중도 심의하거나 규정 위반 행위의 사후 즉시 처리를 맡아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제40조 방송진행자 서비스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당한 이익 취득, 예를 들어 계약직 진행자에 대해 부당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등
- (2) 계약직 진행자와 체결한 협력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차별대우, 부당한 계약조항 추가 등으로 인해 계약직 진행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조치를 하지 않아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 (3) 약속을 어기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경영행위, 예를 들어 이미 참여를 약속한 플랫폼 행사를 임의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 (4)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예를 들어 데이터 위조 혹은 조작 등
- (5)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 불법 사용, 타인 정보 유출, 타인의 재물 편취,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
- (6) 고의적이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에 실제로 참여한 방송진행자와 해당 기관이 제공한 방송진행자의 계정 신분 정보가 부합하지 않을 때

제41조 사용자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즉, 인터넷 라이브방송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인터넷 라이브방송의 상호 소통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국가 법률 법규 및 플랫폼 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며, 문명적 교류, 이성적 표현에 기반해야 하고, 라이브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부당한 여론을 발표하거나 타인의 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장려와 감독

제42조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위 주체가 국가의 빈곤탈피를 위한 전략적 사업, 농촌 진흥 등에 호응하도록 장려하고, 공익성 라이브방송을 적극 전개한다.

공익성 라이브방송은 반드시 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하고,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익성 라이브방송은 반드시 법과 기율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기관 및 해당 기관 근로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중국광고협회는 본 규정의 실시현황을 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사회에 규정 실시현황을 공시하며, 자율적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황에 따라 훈계, 시정 독촉, 공개적 비판을 진행하고, 만약 위법 행위에 속한다면 정부 감독관리기관에 요

청하여 법에 따라 조사 등 조치를 취해 서비스산업의 자율, 서비스산업의 권리 수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44조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62. 인터넷 라이브방송 영업행위에 관한 관리감독 지도의견 (의견수렴 초안)

제목	市场监管总局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
제재일	2020-07-29
출처	시장감독총국 홈페이지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장생산건설병단 시장감독관리국(청, 위원회):

최근 인터넷 라이브방송 영업 방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소비시장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무책임한 행위와 운영업자의 가짜 불량상품 판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허위 내용 유포 등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였다.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라이브 영업의 새로운 업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와 시장감독관리부처의 정책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괄 요구사항

시진핑 정권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지도사상으로 공산당 제19대 및 19기 2중, 3중, 4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이 결정한 정책적 배치의 철저한 시행을 기반으로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의 새로운 현황, 특징에 대해 감독관리 규범화 및 서비스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감독관리 이념의 전환 및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업태의 특징에 적합하고 공정경쟁에 유리한 감독관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인터넷 라이브를 통한 영업행위에서의 소비자 권리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를 관련 법에 따라 단속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관련 주체의 법적 책임 규명

- (1)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라이브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에게 인터넷 경영장소, 거래 중개, 정보 소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양자간 혹은 다자의 독립적인 거래 활동 전개를 도와주는 경우; 운영자 입점 기능을 오픈하여 인터넷 라이브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운영자에게 라이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만약 사용자에게 인터넷 라이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전자상거래법>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2) 인터넷 플랫폼의 광고, 홍보 참여 시 법적 책임.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광고법> 규정에 따라 광고게제자 혹은 광고경영

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3) 상품판매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 라이브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반부정당경쟁법>, <상품품질법>, <식품안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광고법>, <가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4)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법적 책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상품판매자를 위한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라이브 내용은 상업광고에 속하며, 그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광고법> 규정에 의거하여 광고미디어, 광고경영자 또는 광고 모델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영업행위의 엄격한 규범화

- (5) 상품 혹은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규정 강화.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해야 한다.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 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터넷 라이브 영업은 금한다. 담배 제품 등 법률 법규에서 상업적 판촉과 홍보를 금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도 불가하다. 특정 전영양소 배합식품 등 법률 법규 및 규칙에서 인터넷 거래를 금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6) 광고 게재 심사에 대한 규정 강화.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에서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심사가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경우, 반드시 광고 심의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은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의료, 의약품, 의료기계, 농약, 동물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의학용도 배합식품 등 법률 법규에서 게재 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고는 인터넷 라이브 형식으로 광고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7) 광고모델에 대한 규정 강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기관의 위탁을 받아 라이브 도중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걸고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하는 경우, 해당 라이브 내용은 상업적 광고에 속하므로 반드시 광고모델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에서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광고 모델로 이용할 수 없다. 허위광고의 추천, 증명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기관에게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광고모델로서의 행위를 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4.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처리

- (8) 전자상거래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에서 나타나는 ‘후기 조작’,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 문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위장거래, 사용자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날조하는 행위, 플랫폼 내 경영자의 소비자 법적 권리와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 불이행, 자질 자격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문제, 소비자에 대해 신체적, 재산적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한다.

- (9)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판매후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요구한 수리, 재제작, 교환, 반품, 상품수량 보충, 상품대금 환불 및 서비스료 또는 손해배상에 대해 고의적으로 연기하거나 이유없이 거절하는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한다.
- (10) 불공정 경쟁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등 문제에 대해 <반부정당경쟁법>에 의거하여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홍보를 하는 행위, 다른 경영자를 도와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홍보하는 행위, 상업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상업적 비방, 부당한 보상 판매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11) 상품 품질 관련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행위에 대해 <상품품질법>에 의거하여 상품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가짜를 섞는 행위,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행위, 불량상품을 우량 상품으로 대체하는 행위, 불합격 상품을 합격상품으로 속이는 행위, 상품의 생산지 위조, 타인의 공장 명칭과 공장 주소를 위조 혹은 사칭하는 행위, ‘3무(三無)’ 제품 판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12) 식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식품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경영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판매,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 판매, 생산일자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품질보증기간을 초과하는 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13) 광고 관련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허위 위법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 <광고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광고 게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위법 광고 게재 및 광고모델 규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14) 가격 관련 위법행위 조사.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 중 가격을 속이는 문제에 대해 <가격법>에 의거하여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 유포하거나 허위 가격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진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각 지역별 시장 감독관리부처는 인터넷 라이브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관부서를 조직하고 지도 및 독촉을 강화하여 본 의견에서 제시한 각 임무와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적 법 집행에 대한 시장 감독관리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서로 협조와 협력을 통해 감독관리의 합력을 높이며 각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2020년 월 일

63. 웹 영화/드라마 세부 내용 점검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切实加强网络影视剧细节把关的通知
게재일	2020-11-09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웹 영화/드라마 세부 내용 점검 강화에 관한 통지

최근 웹영화/드라마의 생산량과 품질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일부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우수한 작품으로 제작된 웹영화/드라마가 사회적으로 좋은 반향을 얻었다. 프로그램의 올바른 방향성과 콘텐츠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웹영화/드라마 제작과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 중 특정 화면, 경관, 음악, 번역·주해 등 세부사항을 잘 점검하는 것이 웹영화/드라마 콘텐츠 심사의 중요한 일환이다. 각 웹영화/드라마 제작기관은 출품 드라마의 제1책임자로서 엄격한 편집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총 편집심사자를 맡아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기관은 웹영화/드라마 방송 플랫폼으로서 본 기관 웹영화/드라마 콘텐츠 심사 절차를 끊임없이 완비하여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방송해야 한다.

각 성급 방송국 주관부서는 관할지역의 관리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프로그램 제작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웹영화/드라마 세부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제작기관과 방영플랫폼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웹드라마 세부사항과 책임 이행의 구체적 요구는 <국가라디오TV총국의 주체 책임 강화, 드라마 세부사항 강화에 관한 통지>(광전발[2020] 68호)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국가라디오TV총국 사이버사(国家广播电视总局网络司)

2020년 11월 9일

64. 라디오TV 방송기술 교체 실시방안(2020-2022년)

제목	广播电视技术迭代实施方案（2020-2022 年）
제재일	2020-12-07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서론

텔레비전은 흑백에서 칼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표준화질에서 고해상도로, 기능업무형에서 스마트서비스형으로, 일방적 신호수신에서 상호소통으로 매번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그 기술은 중요한 요소이자 추진동력의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AI 등 기술발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퀴즈커뮤니티, 인터넷라이브방송, 공공계정 등 계속해서 각종 새로운 매체가 생겨나 정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체의 판도와 생태계가 재구성되고 미디어의 정의 또한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렇듯 정보기술발전의 매체에 대한 영향은 유례없이 광범위하고 깊게 스며들고 있다.

19차5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목표에 대한 건의>에서 ‘현대화 건설 전반에 혁신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가방송국은 과학기술로 방송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패러다임 구축을 가속화하며 방송매체의 새로운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방송매체의 심층적인 융합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0-2022년 방송국은 ‘방송기술 세대교체 실시방안’을 수립했다. 콘텐츠 생산, 송출, 수신, 안전 감독 관리, 방송생태계 지원 등 해당 산업련을 둘러싸고 “프로젝트식 설계와 관리, 공정식 추진, 데스크탑 감사, 성과식 심사”의 작업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 교체의 주요 목표, 중점 임무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며, 방송 및 인터넷 시청각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방송의 혁신을 지원한다.

목록

가. 총체적 요구

- 1) 지도사항
- 2) 기본원칙
- 3) 목표

나. 주요임무

- 1) 매체영역
 - (1) 고해상도/초고해상도 발전
 - (2) 5G 콘텐츠
 - (3) 콘텐츠 생산의 신속, 스마트화추진
 - (4) 융합매체 시스템 IP화, 클라우드화 추진

2) 전파(송출)영역

- (5) 유선TV네트워크 IP화, 클라우드개조 추진
- (6) 유선TV서비스의 혁신발전 추진
- (7) IP TV기술과 서비스관리 업그레이드
- (8) 인터넷TV서비스의 업그레이드
- (9) 모바일방송 플랫폼 건설
- (10) 위성방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11) 위성라이브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12) 5G방송 기술연구응용
- (13) 신형 디지털 단파방송시스템 건설

3) 수신영역

- (14) 모든 매체의 스마트 소프트디바이스 응용 추진
- (15) 스마트TV 리모트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16) 스마트 소통기술 응용 추진

4) 안전영역

- (17) 스마트 감독관리 체계 구축
- (18) 스마트 안전컴퓨팅 건설 구축
- (19) TV스마트방송 시스템 구축

5) 방송생태계 영역

- (20) 라디오TV 방송 종합서비스 생태계 구축

다. 보장조치

- 1) 조직강화
- 2) 기술지원 강화
- 3) 자금지원 강화
- 4) 인재풀 확대

라디오TV 방송기술 세대교체 실시방안(2020년-2022년)

가.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시진핑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 지도 아래 당의 19차당대회와 19차 2중, 3중, 4중, 5중 전회 및 전국 사상업무회의의 정신으로 ‘4개의식’과 ‘4개 자신감’을 견고히 다져 이 두 가지 사향을 굳게 지킨다. 당 중앙의 미디어와의 심층적 융합, 전 언론 전파체계의 전략적 배치 수립, 신 발전 이념 견지, 정의 수호와 혁신 및 인민 중심의 견해를 지속하며, 중점 문제 해결·취약점 보완·강약점을 집중 처리하고 스마트 라디오TV 건설 공정의 심층적 실시를 주제로 한다. 방송 교체행동계획을 주축으로 시행을 촉진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인도와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라디오TV 기술의 혁신과 전환 고도화를 추진한다. 라디오TV 미디어와의 깊이 있는 융합과 “4전(四全)” 신형미디어를 구축하여 라디오TV방송과 인터넷 시청각의 질적 발전

과 혁신적 발전에 힘을 보태어 준다.

2) 기본원칙

시스템매치, 총괄적 추진: 모바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네트워크적 사고를 강화하는 한편, 상위계획 설계를 통해 전면적으로 방송의 프로세스를 재편하고 각 단계별 재조합, 분류별, 절차별 질서정연한 추진에 대한 총괄적 계획을 수립한다.

선진적 기술, 혁신선도: 높은 기준을 근간으로 정보기술 혁신 성과를 잘 활용하고, 기술의 미래성에 주목하며, 차세대 정보기술과 방송 분야의 융합 응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업계 전체의 질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뒷받침한다.

실질적, 안전·효율적: 실제와 결합하여 현지 상황에 맞도록 구성하고, 과학적으로 기술 교체 경로와 추진전략을 제정하여 계승과 발전, 혁신과 안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한다.

3) 목표

미디어의 심도있는 융합발전을 선진기술을 토대로 미디어 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발전형 TV매체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와 일체화된 미디어의 주류가 되도록 한다. 3년여의 시간을 통해 방송기술의 세대교체를 완성하여 TV방송매체의 전파력과 영향력, 공신력을 높여 인민대중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하도록 한다.

--- 콘텐츠공급 측면에서는 콘텐츠 생산 구조개혁과 신형 방송매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매체의 밀도있는 융합을 추진하여 고화질, 초고화질 화면과, 5G고화질화면을 가속화하여 대중들의 고화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또한 클라우드 라이브, 샷폼, 멀티채널 네트워크(MCN)운영모델을 적극 발전시켜 TV매체로서의 공신력을 높여 여론조성에 주도권을 잡도록 한다. 더불어 사용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밀화된 콘텐츠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공급능력을 강화하여 ‘뉴스+정치,서비스,비즈니스’의 운영모델을 건립하여 주식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한다. 그래서 스마트TV와 사회각계가 긴밀히 연결되도록 한다. 그러면 다양한 각종 서비스가 가능하여 사회 각계각층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초월한 정보에 대한 수요와 멀티미디어, 다중 정보, 다중 네트워크의 3다(多) 멀티서비스가 풀타임으로 제공 가능하다.

--- 안전보장측면에서는 녹색환경의 네트워크 공간을 목표로 기술의 네트워크 장악력을 높여 스마트운용과 스마트 감독관리로 모든 매체가 안전하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술활용 측면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원동력으로 차세대 정보기술과 방송산업의 융합을 추진하여 기술집약적 응용, 스마트방송을 촉진하고 미디어와도 융합을 촉진하여 미디어의 전파체계를 지원하도록 한다.

나. 주요임무

1) 매체영역

스마트방송 미디어와 매체간 융합을 추진하여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AI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융합과 응용, 콘텐츠 강화, 라이브방송, 플랫폼 등에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스마트방송의 콘텐츠공급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의 전파력, 선도력, 영향력, 공신력으로 공산당의 언론홍보를 수행할 사명이 있다. 더불어 초고화질 영상기술의 표준체계와 4K/8K초고화

질 UHD TV의 발전으로 초고화질 콘텐츠와 그 공급능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급형태를 구축하도록 한다.

(1) 고화질/초고화질 발전 추진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 발전 행동계획(2019-2022년)’의 달성을 위해, ‘4K 우선·8K 병행’으로 하는 기술노선형태로 초고화질 동영상 기술 혁신과 응용으로 4K/8K 초고화질 동영상 산업재편을 추진한다.

시행사항:

- ① 방송의 고화질을 촉진하여 과도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표준화질 채널은 점차 폐쇄
- ② 4K/8K 초고화질 영상기술 표준체계를 보완, 가속화하고 기술표준을 제정
- ③ 4K방송능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지원, 구축한다. 또한 4K클라우드 방송과 특별 서비스 플랫폼으로 콘텐츠 공급을 강화
- ④ 기존 채널에서 늘리지 않은 선에서 조건부로 방송국을 개설하고 4K채널을 개국하고 8K시범방송을 개진하는 한편, 행사와 예능 스포츠 등 빅이벤트를 늘림

최근 주요업무:

초고화질 국가표준 시스템제정, 4K초고화질 테스트 표준, 방송국의 4K초고화질 방송능력제고, 채널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4K채널 개국

(2) 5G 초고화질 정착

5G 고화질정착을 추진하여 고화질관련 신제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산업종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기술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사항 :

- ① 5G 고화질화면 기술백서 발행, 5G고화질 표준체계 수립, 양방향 소통채널제정, VR, 파노라마 생방송과 클라우드게임 등 5G하이엔드 영상 기술표준 제정
- ②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청두, 섬서성 스포츠체전, 호남 마란산 비디오산업원, 칭다오 5G비디오실험원, 청두 초고화질 비디오혁신 응용 산업단지에서 고화질 영상서비스 추진
- ③ 5G하이엔드 동영상 사업 조건부로 방송국개설

최근 주요업무:

고화질 영상서비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청두, 섬서성체전, 후난 마란산, 산둥 칭다오, 스촨 청두에서 정착

(3) 콘텐츠 생산의 간소화와 스마트화 추진

뉴미디어가 전파할 콘텐츠 내용발표 요구에 부응하여 매체간 콘텐츠를 융합하여 간소화, 스마트화를 이루고 미디어 콘텐츠 생산력과 뉴스보도의 시효성을 제고한다.

시행사항:

- ① 뉴미디어 방송의 경량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4G/5G기술, 드론, 인터넷라이드방송 시스템, 공유클라우드 등으로 방송코스트를 절감하고 뉴스생산의 시효성을 제고
- ② 빅데이터 기술의 콘텐츠 생산 및 이용자의 서비스 적용, 비디오 데이터구조의 표준체계구축, 데이터관리, 데이터발굴, 데이터구현 등의 기술로 콘텐츠 제작, 방송, 소통, 교화 중 필요한 빅데이터 응용서비스

- ③ 인공지능 기술 콘텐츠 제작추진, 스마트 편집응용, 스마트편집훈련 자원 데이터베이스 건립, 스마트형 편집 시스템의 연구개발
- ④ 스마트 로봇AI 캐스터, 로봇 수화기술 솔루션, 가상현실 방송, 애니메이션 수화 등의 기술로 뉴스, 예능, 기상, 과학기술 등의 프로그램에 적용

최근 주요업무:

가상진행자, 애니메이션 수화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편집기술, 기초 시험인증, 채용시스템 구축

(4) 융합 미디어시스템의 IP화, 클라우드화 추진

IP화 강화, 클라우드기술의 융합 미디어 플랫폼내에서 강화된 포지셔닝, 미디어의 제작, 방송, 전파, 업그레이드 유지보수에서의 유연성 강화, 시청각콘텐츠 생산과 전파능력을 제고한다.

시행사항:

- ① IP화 방송관련 기술정책과 표준의 제정 및 보완으로 프로그램의 IP화 방송체제구축 추진
- ② 융합미디어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정책과 표준수립, 융합매체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화 집약, 방송국의 조건부 개설과 기존 자원의 합리적 활용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구축. ‘뉴스, 정부, 서비스,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모델을 구축 및 확대하여 미디어의 영향력 강화와 서비스 다원화
- ③ 방송국의 조건부 개설, 다국어 뉴스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구축, 해외SNS사이트와 동영상플랫폼 개설 등으로 전파능력 제고
- ④ 현급(县级)융합 미디어센터 기술시스템 건설추진과 현급 융합 미디어센터의 전파 평가지표 체계 구축 등으로 현급 융합미디어센터의 전파효과를 높임

최근 주요업무:

<방송국의 융복합 미디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기술 실시 가이드라인>의 편성과 ‘방송국 IP화 방송체계 구축 기술 지도의견’, 편성완료된 오디오 스트림 IP화, IP링크보호, IP네트워크 정시표준 등

2) 전파(송출)영역

스마트방송망을 발전시켜 방송의 전파(송출)능력을 증강시킨다. 유선망과 무선망, 위성망을 총괄하여 전국 인터넷TV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5G방송 건설과 기술을 전개하는 등 표준을 제정하고 시험검증과 TV디바이스와 모바일디바이스를 개발한다.

또한 TV네트워크의 전파를 IP화, 클라우드화, 스마트화, 융합화하여 업그레이드 하는 동시 차세대 위성기술시스템의 응용배치를 진행하여 스마트파워를 높인다.

(5) 케이블TV네트워크의 IP화, 클라우드 리모델링

전국 케이블TV네트워크 통합과 5G방송 일체화 발전을 목표로 케이블TV네트워크의 고품질 혁신적 발전을 중심으로 기술 최적화, 시스템 재구성, 프로세스 재건, 케이블 TV네트워크 ‘클라우드’를 추진한다. 자원요소의 효율적 통합과 공유로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안전한 신형 케이블 TV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시행사항:

- ① <케이블TV네트워크 업그레이드기술 실지지침>을 편성하여 각 지역 유선방송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추진
- ② 전국 네트워크 통신 플랫폼 건설 총괄추진, 전국각지에 유선TV네트워크 상호통신을 실현, 공

용 콘텐츠, 데이터 중심자원을 공유, 콘텐츠 배포

- ③ IP협약에 기반한 업무표준체계 구축, 케이블TV네트워크의 IP화, 보안확보의 전제아래 케이블 TV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확장
- ④ <인터넷 협약 제6판(IPv6)규모부서행동계획>으로 케이블TV기반 네트워크와 운영지원 플랫폼 업그레이드
- ⑤ 유선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표준체계 구축과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의 적용추진 및 클라우드 자원의 통합과 시너지 촉진과 케이블TV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건설
- ⑥ 케이블TV네트워크의 스마트화에 박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광통신망에서 융합, 응용하여 스마트 운영, 스마트보안관리를 실현하는 등 전면적인 케이블 TV네트워크 전송의 스마트 서비스능력과 수준을 업그레이드
- ⑦ 5G시대에 케이블TV네트워크 자원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5G실내 복개기술과 설비를 연구개발 보급. 광성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동축케이블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 케이블TV의 네트워크 접속 능력을 향상, CDN노드 설치강화, 케이블TV의 네트워크 전파능력 제고, F5G(5세대고정 네트워크)기술의 케이블TV의 네트워크전송에 응용

최근 주요업무:

전국 인터넷통신 플랫폼 건설(1기), 케이블TV망 IPv6업그레이드 완성, <케이블 TV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기술실시 가이드라인>발표, 케이블 방송망 서비스 클라우드 표준 완성

(6) 케이블TV서비스 혁신발전 추진

케이블TV의 정부,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강으로 정부, 상용, 민간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대상을 계속 확장한다. 사용자를 지상주의로 하는 이념을 수립하고 건전한 서비스체계를 만들어 스마트시티, 스마트 구역 등 농촌진흥 전략에도 적극 참여한다. 그래서 농촌문화 및 정보기반 시설의 서비스능력을 제고하여 농촌지역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통합으로 인한 이득을 더 많은 지역의 인민과 대중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시행사항:

- ① 8K 초고화질 전송과 상호소통영상, 인터랙티브 영상, VR영상, 클라우드게임 등 새로운 영상서비스 가속 추진
- ② 스마트방송 서비스를 늘려 스마트시티, 스마트구역, 스마트 의료, 스마트교육 등 스마트한 사회인프라를 건설, 방송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농촌건설을 추진하여 방송의 업그레이드를 촉진
- ③ 완전히 새로운 단말기 기술 아키텍처를 통해 기업업무와 대중적 사업을 발전시키고, 유기적인 융합으로 정부와 기업 업무의 맞춤형 서비스, 개별화, 지능화를 실현, 이어 방송, 정부, 기업의 기술규범을 제정
- ④ 스마트홈을 위한 패밀리기구성 솔루션과 근거리와 원거리 음성교류의 결합, AI 및 IoT기술적용, 대형, 소형 TV디스플레이 결합서비스로 단순 방송서비스에서 유비쿼터스까지 전체적인 업그레이드
- ⑤ 5G활용,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정보기술에 따라 서비스의 스마트화 리모델링 추진
- ⑥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최근 주요업무

8K 초고화 화질전송 시험, 유선 아날로그 방송 종료, 스마트홈 솔루션 개발

(7) IPTV 통합방송 기술 및 서비스 관리 업그레이드 추진

IPTV통합 플랫폼 IPv6업그레이드, IPTV서비스 스마트화 업그레이드, 4K초고화질 응용 활성화, 8K 초고화질 화면전송시험, IPTV에서 5G영상서비스를 추진한다.

시행사항:

- ① IPTV통합플랫폼제정 및 IPv6업그레이드 방안
- ② IPTV통합 플랫폼 업그레이드와 IPTV통합 방송플랫폼, 전송네트워크, 단말기의 IPv6 프로세스 지원
- ③ 다양한 4K고화질 포맷 적용, 8K초고화질화면 전송시험
- ④ 인터랙티브 영상, 몰입영상, VR영상과 클라우드 게임 등 5G하이엔드 동영상서비스를 IPTV에서 응용 및 시험
- ⑤ 스마트홈 서비스활용 추진, 가정 이용자에게 다양한 스마트홈서비스 제공
- ⑥ IPTV앱스토어 기술규범 제정, 쇼핑몰에 동일하게 인터페이스 적용, IPTV앱스토어 구축, 이용자에게 다양한 앱 제공

최근 주요업무:

IPTV통합플랫폼 IPv6업그레이드, IPTV 4K초고화질 적용, IPTV 쇼핑몰 기술규범 제정

(8) 인터넷TV서비스 업그레이드 추진

인터넷 TV통합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IPv6로 업그레이드 및 전환하여 인터넷TV서비스를 지능화하고 4K초고화질과 5G영상전송 시험을 전개하는 동시, 첨단 동영상 서비스의 인터넷 TV에 적용하여 인터넷TV 애플리케이션(앱)의 검사 및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시행사항:

- ① 인터넷TV통합플랫폼 업그레이드, IPv6 전면지원
- ② 멀티코드율 4K초고화질 전송시험 실시, 스마트감지 인터넷 환경과 실시간 동적 4K초고화질 코드조정으로 이용자에게 중단없는 초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제공
- ③ 5G하이엔드 동영상 서비스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인터랙티브 비디오, 몰입형 비디오, VR, 클라우드게임 등 첨단 동영상 서비스를 인터넷TV에서 응용 및 시험
- ④ 스마트홈 사업 추진, 다양한 스마트홈 주거서비스 제공
- ⑤ 인터넷TV애플리케이션(앱) 단계별 불류 및 검사추진, 아전성 검증 플랫폼 구축

최근 주요업무:

인터넷TV 4K 초고화질 송출 시험 시작, 인터넷 TV건설, 애플리케이션(앱)검사, 검증 플랫폼 구축

(9) 모바일방송 플랫폼 건설 추진

모바일 우선 전략을 유지하면서 기존 융합미디어 플랫폼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 모바일방송 플랫폼 서비스능력을 지속 보완하여 일체화된 자원배치를 진행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합하고 플랫폼내 콘텐츠를 생산, 멀티채널 콘텐츠 배포, 멀티 디바이스서비스, 모든 프로세스의 스마트화된 조합으로 전문미디어와 자체 미디어가 참여하는 다원화 방송으로 새로운 판을 짜도록 한다.

시행사항:

- ① 숏폼(짧은 동영상) 가공서비스 강화, 자체미디어 제공하는 더빙, 사운드, 자막, 문자, 배경 등의 편집서비스 품질을 높여 이용자로하여금 창작열을 높임

- ② 자체 미디어의 숏폼영상의 기술연구강화, 기기 향상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심사
- ③ 콘텐츠 검토 공유 매커니즘 구축, 동일 콘텐츠의 중복 심사, 생산성 향상, 미디어 운영팀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심사
- ④ 모바일 클라우드 라이브방송 건설강화, 이용자의 상호소통을 위한 채널 증강, 모바일 방송의 기술력 제고
- ⑤ 모바일 전파 플랫폼 사용자 진입로 구축강화, 모바일APP다운로드 건수와 일일
- ⑥ MCN기술 솔루션 모색, 주류 미디어영향력 제고

최근 주요임무

콘텐츠 내용심사와 매커니즘 공유

(10) 위성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위성 전송 시스템의 채널 인코딩과 제어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진행능력을 제고하고 8K 초고화질 시험전송을 전개한다.

시행사항:

- ① 위성전송의 효율을 높여 기술 표준을 업그레이드
- ② 위성과 지구스테이션 간 초고화질 실시간 전송능력 업그레이드
- ③ 위성프로그램의 통합암호화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위성 전송시스템, 고화질, 초고화질, Ka주파수 대역 위성 시험 등

최근 주요임무:

위성전송 시스템의 전반적 업그레이드 방안 제정

(11) 위성중계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생방송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고화질이 진전되고 위성생중계의 초고화질 사업으로 5G 첨단 동영상서비스와 쌍방향 융합 위성생방송의 응용시험이 전개되어 자동화, 스마트화된 위성생방송스마트 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안전운행체제와 업무보장체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효율적 업무량과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행사항:

- ① 고화질 가속화되고 고화질 프로그램이 동시 방영되면서 2022년말까지 기본적으로 중앙과 성급(省级)위성 프로그램이 실현되면 기타 성급채널과 소수민족 언어 프로그램이 고화질로 동시에 방영 가능
- ② 차세대 생방송 위성채널 인코딩과 기술표준 제정 및 시험 적용, 4K,8K초고화질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위성에서 송출
- ③ 중성9호 위성접속의 연구개발, Ka주파수 증강 및 융합
- ④ 생방송 위성과 위성 커넥티드 네트워크의 기술융합연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 생방송 확충
- ⑤ 생방송 위성 양방향 융합업무 시험, 스마트홈 추진으로 고화질 영상 서비스, ‘디지털마을’과 앱스토어의 생중계 테스트
- ⑥ 생방송 위성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 건설과 운영관리 실현, 다중업무를 만족하는 빠른 개발과 배치
- ⑦ 신형위성 생중계기술 플랫폼 개발, 용량을 늘린 생방송 위성개조, 생방송 위성의 공공서비스 스마트 시스템 건설, 신형미디어와 융합된 방송시스템, 방송안전을 위한 스마트감시 시스템, 스마트컨트롤 시스템, 사이버 안보 제어시스템, 유저관리 시스템과 위치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드로 생방송위성의 디바이스가 광범위한 업무에 응용 및 적용될수 있도록 TVOS스마트TV운 영체제를 지원

최근 주요업무

고화질 동시방송시스템의 용량확대를 실시하여 중앙과 일부 성급위성채널이 고화질로 생중계를 동시에 방송할수 있도록 함. 생방송위성의 수신데이터 분석과 TV방송총국이 수신하는 종합평가 데이터의 연결, 차세대 위성 생방송 신호채널 인코딩과 전환기술표준 초안 작성

(12) 5G방송기술 연구추진

3GPP 5G 표준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5G방송표준을 수립 및 보완한다. 동시에 응용시 험망과 5G 방송시스템 성능테스트를 진행하고 5G방송 기술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사항

- ① 5G방송표준 연구편성, 3GPP 5G표준제정에 적극 참여
- ② 5G방송의 핵심기술 검증, 핵심설비의 연구개발 추진, END&END 시스템 연동 테스트, 5G방송 네트워크 시험, 성능테스트 시험
- ③ 5G방송 네트워크 장비, 단말기 향상장치 및 네트워크 커버효과 테스트, 5G방송망 향상기획 및 네트워크 최적화 능력제고
- ④ 5G차량용 TV, 승강장TV, 지역사회TV, 야외대형스크린TV, 빌딩TV, 5G
- ⑤ 응급방송 등 도시방송 시험
- ⑥ 베이징 동계올림픽 5G방송
- ⑦ 5G 채널탐색
- ⑧ 5G기술하의 방송서비스 발전의 새루트 모색과 새전략 제정

최근 주요업무:

5G방송 표준편성 검토 및 편입 추진, 3GPP 표준체계, 5G방송 설비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성 시험 및 시험증서 발급

(13) 신형 디지털 단파방송체계 구축 추진

단파방송의 우수함(원거리 전송, 넓은 범위 커버력)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단파 응용기술 방안을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구체화, 다양화한다. 또한 응급상황과 일상적인 방송 등에 모두 적용가 능한 새로운 디지털 단파방송 체계를 구축한다.

시행사항:

- ① 디지털 단파 응용기술방안과 다중전개식 응용시험 마련
- ② 디지털 단파 표준제정과 검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러 환경에서 검증
- ③ 디지털 단파 시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리모델링 혹은 새로운 디지털 단파방송 구축을 위 해 기초기술 다지기

최근 주요업무:

디지털단파 응용기술방안 제정후 용도시험 등 다양한 시험시도

3) 수신영역

스마트방송 디바이스를 발전시키고 방송서비스 능력을 강화한다. 방송용 디바이스를 표준화하고 지능화하여, 이를 가정용 정보서비스로 전환하여 스마트홈, 스마트구역과 스마트도시의 중요한 수용체가 되도록 한다.

(14) 미디어 스마트 소프트 디바이스 활용 추진

5G시대에 맞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운용환경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적인 방송산업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여 방송사업이 보다 원활히 망을 넘나들 수 있는 플랫폼을 배치하게 한다. 이로서 방송사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켜 방송서비스가 더욱 지능화되고 개성화 되도록 촉진한다.

시행사항:

- ① 소프트디바이스 기술 방안 제정, 스마트 결합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단말의 기술을 발전, 소프트 단말(soft terminal) 원형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참고 아키텍처 개발, 어댑티브 인터페이스, 안전관리, 감독 등 관련 관리정책에 대한 건의
- ② 소프트 단말 방송 및 인터넷 시청률의 서비스와 상호제어기술 연구, 이용자의 이용습관, 탑재설비의 인터랙티브 구성요소 설정, 신기술과 이용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요구사항 연구
- ③ 소프트 단말의 검사평가 및 관리기술 연구, 국가 사이버 안보법규와의 부합성평가, TV방송과 시청관리 조례 등의 요구로 소프트 단말기 개발의 세대별 생명주기, 클라우드화 연구,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단말기의 기술평가의 부합성 검사 관리와 추적 플랫폼
- ④ 소프트 단말 기술적용, 검측 평가, 안전관리, 검측 감독 등 정책과 제도
- ⑤ 케이블TV, IP에서 소프트 단말기개발, 인터넷TV, 5G방송 등 디바이스의 응용과 보급
- ⑥ 소프트 단말의 스마트 가구 응용과 보급 모색

최근 주요업무:

소프트 단말 기술 참고 아키텍처 및 기본기능 제정, 기술의 안정성 합규성 요구에 따라 소프트 단말의 원형개발

(15) 스마트TV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추진

국산 스마트TV운영체제기술을 제고하고, 세대교체, 업그레이드와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여 스마트 광전, 스마트도시, 스마트커뮤니티 등 각종 대형 화면에 스마트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및 지원하여 국가문화안전을 수호한다.

시행사항:

- ① TVOS4.0버전에 의거 Python응용 증가를 위한 설계계획, 인공지능 음성으로 컨트롤하며, 빅데이터수집, 8K초고화질 등 새로운 기능추가, 새로운 특징과 시스템에 최적화된 TVOS4버전 연구개발, TVOS4자동화 테스트작업 보완과 테스트 플랫폼 구축, 시청각 콘텐츠추가와 지능화 검측능력제고, 시스템 실험과 테스트로 안정된 TVOS4.0 배포
- ② 스마트 광전 전략에 따라 장산자오(长三角), 청위(成渝)지역의 지역케이블 TV네트워크, 스마트 단말 운영체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스마트광전+스마트방송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③ TVOS 4.0의 상용전개로 전국 케이블TV네트워크를 추진하고 IPTV, 인터넷TV등 스마트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TVOS상용화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수요 수집, TVOS4.1 버전 규격형성

최근 주요업무:

TVOS 4.0의 안정적 배포, 창산자오 지역 케이블TV네트워크에서 오픈형 DVB+IP전시표준화, 일체형 소형시험, TVOS 4.1제정에 수요되는 사항 제출

(16) 스마트폰 상호기술 적용 추진

인간과 컴퓨터의 소통 패러다임 탐색, 음성인식인공지능 기술 채택, 사용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기억과 예측 실현, 사용자의 리모콘 키조작에서 해방하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사용경험의 누적 데이터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시행사항:

- ① 리모콘 버튼 간소화, 배열판 레이아웃의 최적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사용자에게 길안내 추천하는 방식의 인간과 기계 상호소통체험 제공
- ② 홈네트워킹에서 음성인식능력 제고로 가정내 생방송, 쇼핑, 언어소통 만족

최근 주요업무:

리모콘 키값 표준 만들기, 가정내 음성인식 상호소통솔루션 개발

4) 안전영역

안전과 발전을 동시에 견지하여 라디오TV 방송 송출 방식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업모델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여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스마트 모니터링 감독체계를 건립한다. 과학기술을 통해 방송 및 인터넷 시청각 관리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요금을 규범화한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리스크 및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다.

(17) 스마트 모니터링 감독체계구축 추진

관리감독 체계를 완비하여 각급 감독관리 플랫폼 및 자원공유를 모니터링한다. 라디오TV 방송과 시청각 매체의 감독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안전한 방송과 여론주도 능력을 키운다.

(18) 스마트방송안전 구축 추진

사이버 안보를 이용한 정보, 보안 빅데이터 위협, 인공지능, 지식그래프 등 기술, 스마트방송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분석과 정보취합,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정보 활용을 활성화 한다. 라디오TV 방송의 기술특징을 기반으로 한 보안위협 사항에 대한 연구와 보안기술 솔루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미디어융합발전을 도모한다.

시행조치:

- ① 사이버 안보 위협 정보 수집 플랫폼 건설: 융합발전과 5G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고대역, 저연시, 멀티연결 응용하에 보안정보 취합, 빅데이터 분할분석, 융합식 컴퓨팅, 모델링 매칭, 연동식 방호 핵심기술과 응용방안 도출, 사이버안보연구소와 관련 기업의 보안정보 공유
- ② 스마트 안전플랫폼 건설: 스마트 컴퓨팅 보안데이터와 모델링으로 새로운 시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디어 융합에 대응하여 사이버 환경에서의 안정보장과 위협정보 제공등의 서비스 제공

최근 주요업무

스마트방송 안전 기술방안, 스마트광전 안전컴퓨팅 플랫폼 연구개발

(19) 스마트 방송 운영 유지체계 건설

스마트 방송운용 해결방안 제정은 국내의 서로 다른 규모의 방송(국)에 스마트 운용체계를 도입하도록 한다. 여러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운용과정, 운용기술, 운용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유지 측면에서 계획, 실행, 검사 처리(PDCA)의 능력을 키워 운영체계를 건전하게 향상시킨다.

시행사항

1. 스마트 운영자 표준체계 구축: 프로세스, 조작, 설비, 인원, 보장 등의 관리방면에 스마트 표준 체계와 관련 표준규범을 제정
2. 스마트 숙련도평가지표 계층화시스템 구축: 평가기준으로 건강도평가모델을 적용하여 계획, 집행, 검사, 처리(PDCA)등 지속적인 최적화 체계 유지, 각 책임주체 특히 하위단위의 방송안전관리수준과 하급인원의 방송안전 능력 강화
3. 차등적 계량화로 통일적으로 방송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인터페이스 규범으로 자기계측시스템과 행정부서 감시감독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 운영데이터를 축적하여 고장감지 및 알람을 실현

최근 주요업무:

스마트 운용체계 건설의 의견서 작성

5) 생태영역

(20) 라디오TV 방송 종합서비스 생태계 조성

방송종합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등 이상적인 발전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시행사항

- ① 라디오TV 방송 종합서비스 생태계 조성 백서 편찬
- ② 스마트 방송 서비스, 스마트시티 건설 등 관련 표준 제정: 연구개발 배치는 스마트 광전기술에 기초한 긴급방송과 정무정보, 사회커뮤니티 정보등이 융합된 다기능 스마트디바이스 개발
- ③ 시청종합평가 데이터와 인터넷 시청 이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종합 채집하여 데이터 규모 확대, 지표체계는 네트워크 방식과 디바이스를 넘나드는 다차원 융합 분석 및 프로그램 종합 평가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혁신적 산업발전을 위한 데이터가 되어야 함
- ④ 시청각 콘텐츠 거래서비스 플랫폼의 구축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전국적 오디오콘텐츠교역 플랫폼 기술방안과 실행가능 경로, 디지털 저작권의 거래, 저작권 보호강화, 동영상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환경조성, 등으로 업계발전가능
- ⑤ 인공지능 방송 앱개발과 공공서비스 플랫폼 개발은 전 업계가 인공지능 응용에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제품의 최적화, 테스트 평가, 자원공유, 시범사업 유도 등 개방적 공담대 제공

최근 주요업무:

방송 종합편성 서비스 생태계 건설 백서 편찬, 인터넷TV이용자의 시청데이터 및 시청각 사이트 접속 데이터 수집, <인터넷 시청각 종합 빅데이터 기술규범>, <인터넷 시청지표 규칙> 편찬, 지표 분석 작업 완료, 시청각 편성내용제출서비스 백서 편찬,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의 비디오 콘텐츠 관리솔루션 제정

다. 보장조치

1) 조직 강화

각급 행정 부서는 방안의 실행상황을 선전, 지도를 강화하고 실제 계획을 감독, 평가,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각 책임부문에서 방안의 사업목표와 주요업무를 전제하도록 촉구해야한다. 각 책임 부문은 실행방안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조치를 명확히 추진하여 목표를 관

철해야 한다.

2) 기술지원 강화

정보기술(IT)에 맞추어 미디어정보핵심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의 세대교체를 하도록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신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가속하여 업계의 전환과 발전을 지원한다.

3) 자금지원 강화

재정자금을 쟁취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초적·전반적 기술을 지원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방송 기술교체에 다방면으로 자금투입과 참여를 장려하고, 방안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한다.

4) 인재풀 확장

과학 기술 전문가 싱크탱크를 강화하고 자문기구 건설 및 업계 안팎의 전문가 자문과 지도 역할을 수행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전문 기술인재의 양성, 사용, 평가, 인센티브를 갖추고, 완벽한 인재들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의 최전방에서기술에 집중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방송 기술팀을 만들도록 한다.

65. 웹드라마 중 UCC상황극 콘텐츠 심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网络影视剧中微短剧内容审核有关问题的通知
게재일	2020-12-08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웹드라마 중 UCC상황극 콘텐츠 심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⁴³⁾

〈국가라디오TV총국 관공청의 인터넷 드라마 중 UCC 상황극(또는 모바일드라마) 콘텐츠 심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광전문발[2020] 293호)에 근거해, 현재 인터넷 UCC 상황극(또는 모바일드라마) 콘텐츠 심사 중 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1) 인터넷 UCC 상황극이라 함은 인터넷 드라마 중, 한 회차 동영상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드라마 작품을 말한다. 인터넷 UCC 상황극은 인터넷 드라마의 형식에 속하며, 그 콘텐츠 심사는 기존 장편 인터넷 드라마와 동일한 표준,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며, 광전 행정부처, 방송 플랫폼, 제작기관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에 따라 이를 모두 엄격히 검사해야 한다.
- 2) 인터넷 UCC상황극은 ‘일반 인터넷 상황극’과 ‘중점 인터넷 상황극’ 2가지로 분류하며, 등록 방식은 각 유형별로 상이하다. ‘방송플랫폼이 직접 유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한 경우’, ‘사이트 첫 페이지나 첫 화면에서 방송되는 경우’, ‘회원에게 우선 재생권을 부여한 경우’, ‘투자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점 인터넷 상황극’으로 분류한다. 중점 인터넷 상황극은 제작기관이 ‘중점 인터넷 상황극 정보 비안시스템’에 직접 비안(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소재지역 성급 방송 행정부처 심사 승인 후,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기획비안번호를 획득해야 한다.
- 3) 네티즌 개인 제작, 업로드한 한 회차 시간이 3분 이내인 인터넷 UCC 상황극(줄거리가 짧은 동영상)에 대해 해당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드라마 전문 심사위원을 조직해 심사해야 하며, 심사 통과 후 플랫폼이 자체 번호를 등록해서 방송한다. 관련 플랫폼은 매달 본 플랫폼이 방송하는 줄거리 짧은 동영상 프로그램 정보, 심사정보에 대해 excel 형식의 표로 종합해 광전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정보 등록 시스템’ ‘프로그램 관리’ 모듈 하의 ‘줄거리가 짧은 동영상 심사 정보 업로드’ 카테고리를 통해 업로드하여 등록한다.
- 4) 영상전문가, 유명 공인이 개인 창작물로 올린 짧은 동영상은 기관에서 제작한 인터넷 UCC 상황극 작품으로 간주하여 심사 관리한다.

43) 본 통지는 원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사를 토대로 작성함.

66.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교체업무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做好2021年度《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和《电视剧制作许可证（甲种）》换证工作的通知
제재일	2021-01-22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2021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교체 업무에 관한 통지 광전관 발송공문[2021]21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텔레비전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新疆生产建设兵团文化体育广电和旅游局), 중앙라디오TV총대판공청(中央广播电视总台办公厅), 영화채널프로그램센터, 중국교육텔레비전 방송국, 각 관련 중앙단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사상 선전 사업에 관한 중요한 논술과 라디오·TV 방송사업에 관한 중요한 지시(批示) 정신을 관철하며,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제작 경영 기관 관리업무를 더욱 잘하고 프로그램 제작경영업계의 건강한 번영과 질서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관리조례> (국무원령 제228호)와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 34호)등 유관 규정에 근거해 광전총국은 2021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전국 통합 교체 업무를 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가. 허가증 교체 범위

- 1)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소지기관
- 2)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 소지기관

제작기관이 신청한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이 이번 교체 범위에 속한 경우

나. 허가증 교체 심사부서

- 1) 광전총국은 베이징 중앙단위 및 그 직속 기관의 허가증 교체 심사 업무 및 전국 드라마 제작 허가증(갑종) 신청기관의 최종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2) 각 성급 방송국에서 주무부처는 본 관할내 관련 허가증 소지 기관의 교체 심사 업무 및 <드라마 제작 허가증(갑종)> 신청 기관의 1차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다. 교체 심사 내용

- 1) 라디오·TV 방송 행정 법규, 부서 규정 및 규범적인 문건 집행 상황
- 2) 프로그램제작, 대리, 거래, 수출 등 제작경영 실적 상황
- 3) 국유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의 <중공중앙선전부 국가광전총국의 ‘국유 영화기업의 사회

효익 평가 심사 시행 방법'에 관한 통지)(광전발[2019]107호) 발부에 따른 시행 상황
4)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 기타 상황

라. 교체심사표준

심사부서는 사회적 효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관리규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증 소지기관의 사회적 효익과 프로그램 제작경영 상황을 중요하게 심사해 '품질우선, 생산량 병행' 원칙을 고수하고 허가증 소지기관에 대해 일일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교체 업무에서 기존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일괄 조정하였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교체 발급 심사

- (가) 각 라디오·TV 방송 행정법규, 부서 규정 및 규범적 문건 집행 상황이 양호하고 제작경영 실적이 있으며, 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허가증 소지기관에 대해 교체 발급을 실시한다.
- (나)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허가증 소지기관에 대해서는 교체 발급을 실시하지 않는다.
 - (1) 제작, 경영 콘텐츠가 편향적이고 저속하며, 사회의 광범위한 폭평,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 (2) 각종 방식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대여, 양도, 판매
 - (3) 법률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작, 경영 또는 해외에 제공
 - (4) 해외자금 배경 또는 해외 유입 자금이 포함된 경우, 주주 중 해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 (5) 허가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해외로 판매하거나 해외 전시 상업행사에 참가한 경우
 - (6) 최근 2년간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7) 국유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이 <국유영상기업 사회효익평가시험 시행방법> 관련 요구에 따라 적시에 연도별 사회 효익평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 (8) 기타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상황

2)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교체, 신청 심사

(가) 교체발급 심사

- (1) 2019년 4월 1일 현재 6편 이상의 단막극 또는 3편 이상의 드라마(편당 3회 이상)를 완성하고 규정 위반 행위가 없는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소지기관은 교체 발급한다.
- (2) 사회 효익이 두드러지고 사회적 책임 이행이 우수한 허가증 소지기관은 참작하여 드라마 제작 실적 요구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 (3) 2년간 드라마 제작 실적이 없거나 작품 사회 평가가 일반적이고 실적이 미달되거나 규정 위반문제가 심각한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소지기관은 교체 발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 심사

신청기관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6편 이상의 단막극 또는 3편 이상의 연속극(편당 3회 이상)을 제작 완료하고 규정 위반행위가 없으면 각 성급 방송 주무부처의 1차 심사를 거쳐 요구에 따라 관련 신청자료를 광전총국 최종 심사에 일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사회적 효익이 두드러지고 사회적 책임 이행이 우수한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참작하여 드라마 제작 실적 요구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 드라마 제작실적 인정 기준

드라마 제작 실적은 주로 드라마 제작기관이 신청한 <드라마 배급허가증>을 인정기준으로 하고 계(計)는 <드라마 배급허가증>에 기재된 ‘신고기관’의 제작실적이다.

마. 교체 절차

1) 온라인으로 교체신청서 작성하여 보고

(가) 2021년 2월 19일 이전, 허가증 소지기관은 광전총국 정무서비스플랫폼(htzw.nrta.gov.cn)에 접속해 ‘통합사용자 로그인’ ‘법인사용자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제작경영기관’ ‘제작기관업무’ ‘교체신청/월보’ ‘신규 교체 신청’을 선택해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한다.

(나) 요구에 따라 제작기관 정보 및 <경영상황과 사회적 책임보고> 작성하여 보고한다.

(1) 각 허가증 소지 기구는 반드시 국무원과 광전총국의 기업정보 수집 요구에 따라 ‘제작기관업무’, ‘일반정보변경’의 모든 기관정보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정보가 누락된 허가증 소지기관은 새로운 허가증을 교체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2) 각 허가증 소지기관은 <경영상황과 사회적 책임보고>에 프로그램 창작생산과 경영상황, 대중 반응과 사회영향 상황, 내부제도와 대외 건설 현황 명기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사회 효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통합을 실현하는 등 관련 상황을 견지해야 한다.

(다) 중앙단위 및 그 직속기관은 온라인 보고를 마친 후, 그 업무 주무부처의 심사 도장이 찍힌 종이 심사표를 광전총국 정무서비스대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이심사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저장한 후 직접 인쇄할 수 있다.

(라) 2월 26일까지,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신청 기관은 광전총국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해 ‘제작기관업무’ - ‘갑종증 신청’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을 한다. 동시에, 아래의 종이 자료를 소속 성급 방송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중앙 단위 및 그 직속기관은 광전총국 정무서비스센터에 제출한다.

62.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

63. 최근 2년간 <드라마 제작허가증(을종)>을 소지해 제작 완성된 드라마 목록. 신청기관이 보유한 <드라마 제작허가증(을종)>과 <드라마 배급허가증>은 심사부서가 내부 정무시스템을 통해 검증한다. 기한을 넘기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폐쇄된다.

2) 관리부서 심사

광전총국과 각성급 방송 주무부처는 각각 관할 기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표준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 동시에, 각성급 방송 주무부처는 3월 5일 전에 아래 자료를 광전총국 전매사(传媒司)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가) 2021년 교체심사업무보고

(나) <2021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운영기관과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 기관 교체심사일람표> (‘기종결’ 항목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음)

(다)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신청 기관 심사표 및 관련 자료 1차 심사 동의서

3) 종합하여 공고

광전총국은 전국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과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소지기관 교체 심사 상황을 총결산하고 사회에 <드라마 제작허가증(갑종)> 교체,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바. 업무문의

중앙단위 및 그 직속기관 문의전화: 010-86097013

기타 허가증 소지 기관은 소재지 성급 방송 주무부처에 문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기술지원 전화: 010-86093681

광전총국 정무서비스센터(广电总局政务服务大厅)

연락처: 010-86098585

우편주소: 베이징시 푸싱먼와이대가 2호 국가광전총국 정무서비스센터, 우편번호: 100866

각지의 각 기관단체는 상기 사항을 고도로 중시하고 통지 요구 내용과 양식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시에 교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관할 허가증 소지 기관 수가 많은 성급 방송 주관부처는 관련 교육을 조직하고 실시하여 업무효율을 확실히 높이고 규정된 시간 내 업무를 완수한다.

국가광전총국판공청

2021년 1월 21일

67. 인터넷 생방송 규범 관리업무 강화 관련 지도의견

제목	关于加强网络直播规范管理工作指导意见
게재일	2021-02-09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인터넷 생방송 규범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신판(國信辦)發文[2021] 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불법 및 음란 출판물 제작 단속’ 판공실, 통신관리국, 공안청(국), 문화관광청(국), 시장관리감독국(청,위), 광전국

인터넷 생방송 업종의 규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업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 전국 ‘불법 및 음란 출판물 제작 단속’ 업무소조 판공실, 공업 정보화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라디오TV총국 등 7개 부서 위원회가 연합하여 <인터넷 생방송 규범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인쇄 발부하니 현지 실정과 결합하여 성실히 집행해 주길 바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전국 ‘불법 및 음란 출판물 제작 단속’ 업무소조 판공실
공업 정보화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방송총국

2021년 2월 9일

인터넷 생방송 규범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최근 인터넷 생방송은 그 콘텐츠 및 형식의 직관성, 즉시성과 상호작용성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인문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신기술·신응용의 빠른 세대 교체로 인해 인터넷 생방송 업종은 급속한 발전기로 접어들었고 그 매체의 속성, 소셜 속성, 비즈니스 속성, 엔터테인먼트 속성이 날로 부각되어 인터넷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생방송 업종에 존재하는 주체 책임 부재, 콘텐츠 생태계 불량, 천차만별인 진행자 자질, 충전·다상(打賞, 온라인 팁) 규범미비, 상업마케팅의 혼란, 청소년 권익 침해 등 문제는 인터넷 생방송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이데올로기 안전, 사회 공공 이익과 국민의 합법적 권익에 도전을 주기에 반드시 이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업계에 대한 긍정적 계도와 규범

관리를 강화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업종이 인터넷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향상심과 선을 지향하는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할 것을 제창하며, 인터넷 생방송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지도 의견을 제출한다.

가. 총체적 요구 확정

당의 19대와 19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 지향, 가치 지향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인터넷 생방송 업계의 특징 규율과 발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각된 문제, 어려운 문제,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업계 운영 규칙을 과학적으로 규범하고 양호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많은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이고 건강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인터넷 생방송 공간을 조성해준다.

나. 주체의 책임 이행 독촉

- 1) 플랫폼의 주체 책임을 명확히 정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생방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법정 직책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 주체책임 리스트를 시행하고 인터넷 생방송 업계 주요문제 리스트를 대조하여 건전하고 엄격한 총 편집 책임, 콘텐츠 심사, 이용자 등록, 댓글 평론, 비상대응, 기술안전, 진행자 관리, 교육 심사, 신고 접수 등을 시행하는 내부관리제도를 구축한다.
- 2) 진행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자연인과 조직기관은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라이브를 할 때, <인터넷 사용자 계정 명칭 관리 규정> 등 관련 요구를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인터넷실명제 가입계정 시행 및 사용자계정 명칭을 규범화해야 한다. 진행자는 법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을 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거나 사회 안정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음담패설 정보 유포 등 법률법규에서 금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인터넷 뉴스 정보를 배포할 수 없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충전·다상(打賞, 온라인 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플랫폼 내 또는 크로스 플랫폼 위법규정 위반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를 조직, 선동해 사이버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도박 또는 변형된 도박 등 온·오프라인 불법활동을 조직해선 안 된다.
- 3) 사용자 행위 규범을 강화한다. 인터넷 생방송 사용자가 생방송 인터랙티브에 참여할 때,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문명 상호작용, 이성적 표현, 합리적인 소리를 해야 한다. 생방송 중 위법 규정 위반 정보를 공포, 전파해서는 안 된다. 진행자나 사용자에 대한 공격과 욕설을 조직, 선동해서는 안 된다. 기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댓글 알바’를 조직해 부정적인 댓글이나 악의적 ‘댓글 도배’를 해선 안 된다. 부를 과시하거나 눈길을 끄는 등 좋지 않은 상호작용 분위기를 조성해선 안 된다.

다.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안전한 콘텐츠 확보

- 4) 주류(主流)가치를 향상시킨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사회 효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서로 통합해 의식을 이끌어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대대적으로 고취하고 자질이 뛰어난 진행자 지원에 힘을 쏟아 양질의 콘텐츠 생산 공급을 확대한다. 진행자의 정확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양성해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 ‘문화인으로서’의 정신적 자질과 문화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킨다.

- 5) 네티즌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용자의 신분, 지리적 위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수집 및 합법적 이용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사용자의 알 권리, 선택권과 프라이버시 등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 법과 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합리적인 소비, 이성적 다상(打賞, 온라인 팁)을 유도하고 규범화한다. 법과 규율에 따라 생방송 이미지, 대화형 댓글, 충전 및 다상(打賞) 등 기록을 남겨둔다. 각종 네티즌 권익 침해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 생방송 업계의 질서를 확실히 수호한다.
- 6)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해 진행자 계정 등록 서비스 제공을 금하며,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진행자 계정 등록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청소년 모드’를 제공해 미성년자가 인터넷 생방송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터넷 생방송 콘텐츠를 차단하고 미성년자에게 충전·다상(打賞)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미성년자 전속 고객센터를 만들어 미성년자 관련 민원과 분쟁을 우선 접수, 제때 처리하며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도용해 다상(打賞)한 경우 사실 확인 후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한다.
- 7) 정보보안 장벽을 공고히 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건전한 정보보안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정보내용 보안관리 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하며 혁신적인 발전에 상응하는 안전하고 제어 가능한 기술보장과 방법조치를 갖춘다. 신기술·신응용·신기능에 대한 여론 속성이나 사회동원능력을 갖춘 라이브 정보 서비스는 반드시 엄격한 보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딥러닝, 가상현실 등 기술제작, 발표에 기반한 가상 인터넷 생방송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 8) 위법·규정위반 행위는 엄벌에 처한다. 인터넷 생방송을 이용해 국가정권 전복, 역사적 허무주의 유포, 종교극단주의 선동, 민족분열사상 선전, 폭력공포 교사 등 위법행위와 범죄활동을 단호하게 단속한다. 음란색정, 날조비방, 도박사기, 불법복제, 국민개인정보 침해 등 위법 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저속, 봉건미신,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행위(擦邊球)’ 등 법에 저촉되거나 불량한 정보는 전면 삭제한다.

라. 건전한 제도 규범 구축

- 9) 진입시 비안(備案) 등록 관리를 강화한다. 경영성 온라인 공연활동을 하는 라이브 플랫폼은 반드시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을 소지하고 ICP 비안(備案) 등록을 한다.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브플랫폼은 반드시 <정보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또는 전국 인터넷 시청각 플랫폼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을 소지하고 ICP 비안을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 정보서비스를 하는 라이브 플랫폼은 반드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반드시 소재지 사이버안보·정보화 관련 주무부처에 즉시 기업 비안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생방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플랫폼은 반드시 즉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10) 업계 제도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관련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라이브 계정 분류·등급별 규범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진행자 계정에 주체 속성, 운영 콘텐츠, 팔로워 수, 생방송 인기도(熱度, 생방송 중 생방송룸에 표시된 인원수, 댓글 수, 선물량 등을 합한 데이터) 등에 기반한 분류·등급제 관리를 실시한다. 서로 다른 등급의 인터넷 진행자 계정에 대해 반드시 단일 회차에 받을 수 있는 다상(打賞) 총액, 생방송 인기도, 생방송 시간과 단일 생방송 횟수, 방송 간격 등에 대해 적정선을 설정해야 하며, 법을 어긴 진행자에 대해 필요한 경고조치를 취한다. 생방송 다상(打賞) 서비스 관리규칙을 세워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다상(打賞) 서비스가 정보와 오락의 소비서비스임을 명확히 하여 반드시 개별 가상 소비품, 단일(개별) 다상(打賞) 한도에 대해 합리적인 상한선을 설정해 일일 다상(打賞) 한도 누적이 해당 역치를 촉발하는 사용자에게 대해 소비 경고를 알림으로써 필요시 다상(打賞) 중단기 및 입금일 연장을 설정하도록 한다. 인터넷 생방송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진행자 계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케팅 자격을 가진 계정 등급을 규범화하고 설정하며, 법에 따라 소개 상품과 서비스 유형을 확정한다.

마. 종합 관리능력 강화

- 11)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각 부서는 반드시 직능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안보·정보화 부서는 인터넷 생방송 업계 관리의 총괄 및 조정과 일상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서간 협업 연동 장기효과체계를 구축하며 인터넷 생방송 업계의 건강한 발전, 생태 관리와 규범관리를 지지하고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불법 및 음란 출판물 단속’ 부서는 온라인 ‘불법 및 음란 출판물 단속’ 연석회의 건인 부서 직책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부처와 함께 중대한 사건을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서는 인터넷 접속 실명제 관리 요구를 엄격히 시행하고 ICP 비안(備案)등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公安부서는 인터넷 생방송 범죄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통제 단속한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공연업계 관리와 법 집행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 조직이 온라인 공연업계의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시장감독부서는 인터넷 생방송 분야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광전(广电, 라디오TV) 부서는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등 관리규범 및 진입표준 제정을 연구해야 한다.
- 12) 사회감독을 적극적으로 제창한다. 사회 각계가 인터넷 생방송 업계 정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과 정부, 미디어, 대중 간의 정보교류와 효율적 소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인터넷 생방송 규범관리에 양호한 여론환경을 구축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사회관리감독을 받고 신고 채널을 효율적으로 넓히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중의 신고를 적시에 수리, 처리 및 피드백한다.
- 13) 업계 조직이 역할을 발휘한다. 인터넷 사회조직은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업계 자율을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인터넷방송 환경 정화,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 수호에 참여한다. 완비된 인터넷 생방송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생방송 업계가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68.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체계

제목	视音频内容分发数字版权管理标准体系
제재일	2021-02-10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체계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체계(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미디어 융합, 초고화질 TV, 5G, 상업용 암호 응용 등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라디오·TV 및 인터넷 시청각 업계의 시청각 콘텐츠 배급 업무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실질적 수요에 입각한 케이블 디지털TV, IPTV, 인터넷TV, 인터넷 동영상 등 시청각 콘텐츠 배급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청각 콘텐츠 배급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표준화 구축과 규범화 운영 보장을 포괄한다.

가. 표준체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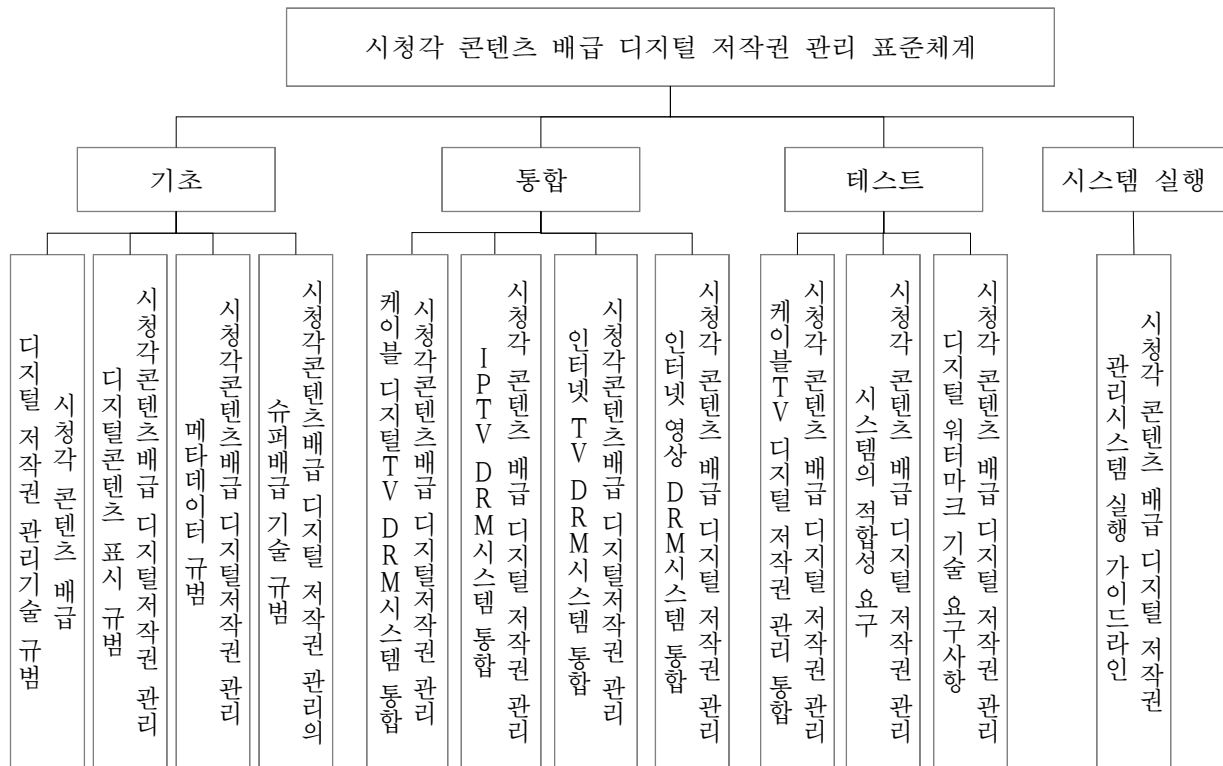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표준체계구조는 기초, 업무통합, 테스트, 시스템 실행 등 4대 영역의 총 12개 표준체제로 구성된다. 표준체계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표준체계에서 규정한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케이블 디지털TV, IPTV, 인터넷TV, 인터넷 동영상 등 업무 관련 시청각 콘텐츠의 배급부터 단말기의 수신과 방송, 단말기 간 전송과정 상의 콘텐츠의 저작권보호이다. 본 표준체계에서 규정한 단말기는 케이블TV셋톱박스, IP TV셋톱박스, 인터넷TV셋톱박스, 일체형 스마트TV,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 PC 등 시청각 콘텐츠의 신호를 받아 배급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단말기이다.

- 1) 기초 표준: 기초표준은 시청각 콘텐츠의 배급과정 중 시청각 콘텐츠의 유일한 표시, 저작권의 메타데이터, 콘텐츠 암호화 라이선스체계, DRM서비스단말기, DRM클라이언트단말기, 콘텐츠 저작권의 보호체계 등 시청각 콘텐츠 배급시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초 요구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시청각 콘텐츠 배급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기술규범과 디지털 콘텐츠 표시규범, 저작권 메타데이터 규범, 슈퍼배급(超分发) 기술규범 등 4항목의 표준을 포함하며 기타 유형 표준의 기초가 된다.
- 2) 통합표준: 다양한 배급 상황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통합을 규정한 표준으로 케이블디지털TV, IPTV, 인터넷TV, 인터넷 동영상 등의 DRM시스템 통합 등 4개 항목 표준을 포함하며,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의 배급 과정에서 DRM시스템의 효율적인 통합과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3) 테스트표준: 본 표준은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의 적합성 테스트방법, 적법성 요구 및 시청각 콘텐츠의 배급과정 중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요구와 테스트방법 등을 주로 규정하며, 표준 적합성 테스트, 시스템 적법성 요구, 영상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요구와 테스트방법 등 3가지 항목의 표준을 포함하고, DRM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안정적 운영을 기술적으로 보장한다.
- 4) 시스템 실행표준: 본 표준은 DRM시스템 실행가이드를 통해 케이블 디지털 TV, IPTV, 인터넷

TV, 인터넷 동영상 등 각 시청각 콘텐츠 배급 상황에 따른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제품 개발, 통합구축, 운영과 유지보수 과정에 필요한 기초, 통합, 테스트의 분류별 표준을 규정하여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건설과 규범화 운영을 지도한다.

[그림]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저작권 관리 표준체계도



나. 표준체계 명세표

No.	분류	표준항목명칭	주요내용	적용범위	표준번호	상태
1	기초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규범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논리구조, 기술체제, 콘텐츠 암호화, 허가증 양식, 허가증 획득 협의 및 DRM 서비스 단말기와 DRM클라이언트 단말기 관련 기술요구사항 규정	케이블TV, IPTV, 인터넷TV 등 시청각 콘텐츠 배급과정 중의 저작권 보호에 적용	GY/T 277-2019	발표
2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디지털 콘텐츠 표시	시청각 콘텐츠 배급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사용되는 유일한 표시의 구조, 분배와 사용에 관한 규칙 규정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시청각 콘텐츠 표시에 적용		입안 예정

3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저작권 메타데이터 규범	시청각 디지털콘텐츠스 배급 상의 저작권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코딩방법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상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적용		입안 예정
4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슈퍼배급 기술 규범	스마트단말간 시청각 콘텐츠스 전송과정 상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제와 기술요구사항	스마트 셋톱박스,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시청각 콘텐츠스 소비자단말기간 콘텐츠스 전송 과정 상의 저작권 보호		입안 예정
5	통합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케이블 디지털 TV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통합	케이블 디지털TV DRM 시스템의 통합프레임, 콘텐츠스 암호화, 암호키관리, 콘텐츠스 라이선스 및 단말기 통합 등 핵심체제와 인터페이스협약 규정	케이블 디지털TV DRM시스템 통합 배치·실행에 적용	GY/T 333-2020	발표
6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IPTV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통합	IPTV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통합, 라이브 콘텐츠스 암호화 및 라이선스, 콘텐츠스 재생 암호화 및 라이선스, DRM클라이언트 통합 규정	IPTV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통합 배치·실행에 적용	GY/T 246-2020	발표
7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인터넷 TV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통합	인터넷TV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기능, 인터페이스 협약 규정	인터넷TV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통합·실행에 적용	GY/T 334-2020	발표
8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인터넷 동영상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기능, 인터페이스 협약, DRM클라이언트 통합 등 요구사항 규정	인터넷 동영상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기능, 인터페이스 협약, DRM클라이언트 통합 등 요구사항 규정	PC, 모바일단말기 등의 인터넷동영상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통합·실행에 적용		입안 예정
9	테스트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표준 적합성 테스트	YE/277-2019의 적합성 테스트 내용과 테스트 방법 규정	YE/277-2019의 적합성 테스트에 적용	GY/T 335-2020	발표
10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적법성 요구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기능, 성능, 표준 부합성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과 운영 유지의 안전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규정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연구 개발, 통합, 구축 및 운영 유지에 적용	GY/T 336-2020	발표
11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영상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요구와 측정 방법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적 요구, 기능 측정방법, 화질 평가 측정방법, 건장성 측정방법 규정	시청각 콘텐츠스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별 영상 워터마크 기능의 통합, 테스트 및 인증에 적용		제정 중

12	시스템 실행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실행 가이드라인	시청각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실행 요구 및 제품 개발, 통합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규정	케이블 디지털TV, IPTV, 인터넷TV, 인터넷 동영상 등 비디오 콘텐츠 배급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기획, 설계, 연구개발, 생산, 통합, 구축 및 운영에 적용		제정 중
----	-----------	-----------------------------------	--	--	--	---------

69.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제목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제재일	2021-03-15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방법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령 제37호)

제1장 총칙

- 제1조 온라인 거래 활동 규범화, 온라인 거래 질서 수호, 온라인 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온라인 등 정보네트워크(이하 ‘온라인’ 이라 함)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 및 시장관리감독부서의 그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 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생방송 등 정보네트워크 활동 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 제3조 온라인 거래사업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자발, 평등, 공정,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률, 법규, 규장 및 상업도덕, 공서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여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체 책임을 다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조 온라인 거래관리감독은 혁신 장려, 건전성 수용, 최저한계선 엄수, 온.오프라인 일체화 관리감독의 원칙을 견지한다.
- 제5조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전국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관리감독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온라인 거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 시장관리감독부서는 온라인 거래 사업자, 온라인 거래 업계 조직, 소비자 조직, 소비자가 공동으로 온라인 거래시장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다원적인 참여, 효과적인 시너지, 규범적이고 체계적인 온라인 거래시장 관리체계를 완비하도록 추진한다.

제2장 온라인 거래 사업자

제1절 일반 규정

- 제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온라인 거래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말하며 온라인거래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내 사업자, 자체 사이트 사업자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온라인 거래 사업자를 포함한다.
-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거래 활동 중 거래 쌍방 또는

여럿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알선, 정보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해 쌍방 또는 여럿이 독립적으로 온라인 거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플랫폼 내 사업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을 하는 온라인 거래 사업자를 말한다.

온라인 소셜, 온라인 생중계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를 위해 온라인 사업장, 상품 검색, 주문 생성, 온라인 결제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술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플랫폼 내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법률, 법규, 국무원이 결정한 규정을 위반해 무허가, 무면허 경영에 종사해선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조가 규정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청소, 세탁, 봉제, 이발, 이사, 열쇠맞춤, 배관청소, 가전가구 수리, 조립 등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생활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온라인 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연 거래액 누계가 10만 위안 이하이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동일 사업자가 동일 플랫폼 또는 다른 플랫폼에서 여러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경우, 각 점포 거래액을 합해 계산한다. 개인이 종사하는 자질구레한 소액 거래는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해야 한다.

제9조 온라인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플랫폼 내 사업자가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온라인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일상 거주지를 주소로 등록하고, 그 주소 소재지의 현, 자치현,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시 관할구역 시장관리감독부서가 그 등록 기관이다. 같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온라인 사업장이 있으면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플랫폼 내 사업자가 온라인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입주한 온라인 거래 그를 위해 플랫폼이 등록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온라인 사업장 관련 자료를 발급해 준다.

제11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거래를 금지한 것,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제12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 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 사업자 주체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국가지장관리감독총국 전자상거래 영업허가증 검증시스템(亮照系统)에 링크해 그 영업허가증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장한다.

이미 시장주체등록을 한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아래의 영업허가증 정보 및 그 영업업무와 관련된 허가 등의 정보를 성실히 공시 또는 해당 정보의 링크를 걸어 놓는다.

- (1) 기업은 영업허가증에 등재된 통합 사회신용코드, 명칭, 기업유형, 법정대표인(책임자), 주소, 등록자본(출자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2)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등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 명칭, 경영자 성명, 사업장, 구성형식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3) 농민전문합작사, 농민전문합작사 연합사는 영업허가증에 등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 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구성원 출자 총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 없는 사업자는 자신의 실제 경영활동 유형에 근거해 아래의 자기성명(自我声明) 및 실제 경영주소, 연락처 등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링크 표시를 성실히 공시해야 한다.

- (1) 개인이 자가 생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2) 개인이 가내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른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3)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법에 따른 허가 취득이 필요 없는 대민 노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 (4) 개인이 자질구레한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른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공시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영업일 10일 이내 갱신 공시를 해야 한다.

제13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려면 반드시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정보수집, 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려면 수집, 사용규칙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일회성 불특정인에 대한 권한위임, 묵시적 권한, 기타 권한 연동, 설치 사용 중지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의 수집, 사용에 대해 동의할 것을 강요하거나 편법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경우 일일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를 해야 하며 법에 따른 관리감독 법 집행 활동 외에, 피수집자의 수권 동의 없이 관련 당사자를 포함한 그 어떤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제14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등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허위 또는 오해를 살 만한 상업적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 (1) 허위 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 (2) 소비자를 오도하는 전시 등 방식으로 좋은 후기는 앞에, 나쁜 후기는 뒤에 두거나 상품별 또는 서비스별 평가 등을 눈에 띄게 구분하지 않음
- (3) 현물 사칭, 허위 예약, 허위 사재기 등 방식으로 진행한 허위 마케팅
- (4) 조회수, 관심도 등 트래픽 데이터 조작 및 ‘좋아요’, ‘다상(打赏, 온라인 팁)’ 등 거래 상호소통 데이터 조작

인터넷 거래 사업자는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타인과 특정 관계가 있다고 오해를 일으키는 혼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허위 정보 또는 오도성 정보를 조작,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

되와 상품의 평판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15조 소비자 평가에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가 포함되면 인터넷 거래 사업자는 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그에게 상업적 정보를 발송해선 안 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상업적 정보를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진실한 신분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소비자들에게 현저하고 간편하며 무료의 지속 수신 거부 방식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반드시 즉시 발송을 중지해야 하며 명의 변경 후 재발송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직접 묶음 또는 다양한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서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다양한 선택 가능 방식을 제공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끼워팔기의 어떤 옵션도 소비자의 기본 동의로 설정해선 안 되며 소비자의 이전 거래에서 선택한 사항을 후속 독립 거래에서 소비자의 기본 선택사항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

제18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자동 기한 연장, 자동 결제 등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과 자동 기한 연장, 자동 결제 등 날짜 5일 전까지 해야 하며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제청하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긴다. 서비스 기간 내에 반드시 눈에 띄고 간편하게 수시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적시에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온라인 소셜, 온라인 라이브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을 하는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실제 경영주체, A/S 등 정보, 혹은 상술한 정보의 링크 표시를 보여주어야 한다.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거래 활동에 대한 생방송 동영상 보존 기간은 생방송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이다.

제21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 양식의 조항, 통지, 성명(声明) 등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제청하고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내용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다.

- (1)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수리, 재작업, 교환, 반품, 상품수량 보충, 대금 환불 및 서비스 비용, 손실 배상 등에 대한 책임 면제 또는 일부 책임 면제
- (2) 소비자의 수리, 교환, 반품, 손실배상 및 위약금과 기타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
- (3) 소비자의 법에 따른 불만, 신고, 조정청구, 중재신청, 소송제기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
- (4) 소비자의 법에 따른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
- (5)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석권 또는 최종 해석권을 누릴 것을 규정
- (6) 기타 소비자에 대한 불공평, 불합리한 규정

제22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는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과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성급 시장관리감독 부서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시간대, 특정 품목, 특정 지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

량, 판매액 등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제23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거래 활동을 중지할 때는 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온라인 거래 활동을 중지한다는 공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적시에 조치를 취해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제2절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24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플랫폼에 진입해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신분,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증 등 진실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검증, 등록, 등록파일을 만들어 최소 6개월마다 한 번 검증하고 업데이트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주체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동태 모니터링을 하고 본 방법 제8조 제3항의 규정 한도를 초과한 자는 법에 따라 즉시 시장주체등록을 할 것을 권고한다.

제25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감독부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매년 1월과 7월에 주소지 성급 시장관리감독부서에 플랫폼 내 사업자의 아래 신상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1) 시장주체 등록을 이미 마친 플랫폼 내 사업자의 명칭(성명), 통합사회신용코드, 실제 사업장 주소, 연락처, 온라인 상점 명칭 및 웹 사이트 주소 링크 등 정보
- (2) 시장주체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사업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실제 사업장 주소, 연락처, 온라인 상점 명칭 및 웹 사이트 주소 링크,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록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정황에 속하는 자기성명 등 정보: 그 중, 본 방법 제8조 제3항의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표시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시장관리감독부서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개방 형태 등 자동화 정보 보고 메커니즘 구축을 권장한다.

제26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가 법에 따른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내 사업자가 공시한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3 영업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플랫폼에 보고하고 플랫폼은 7 영업일 내 검증을 해 공시 업데이트를 마쳐야 한다.

제27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이미 시장주체등록을 마친 사업자와 시장주체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표시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8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서비스 협의 및 거래 규칙을 개정할 경우, 개정 버전 발효일 이전 3년 간의 개정전 버전을 모두 보존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순조롭고 완전하게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9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 및 그가 발표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대해 반드시 검사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상품 또는 서비스정보에 시장관리감독 법률, 법규, 규약을 위반해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고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고 플랫폼 주소지 현급 이상 시장관리감독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법률, 법규, 규약의 규정 또는 플랫폼 서비스 협의 및 거래 규칙에 따라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서비스 일시 정지 또는 종료 처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 조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플랫폼 내 사업자의 쇼핑몰 명칭, 위법행위, 처리 조치 등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경고, 서비스 잠정 중단 등 단기 처리 조치 관련 정보는 처리 조치 시행 만료일까지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제31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내 사업자 신상정보에 대한 보존기간은 플랫폼에서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다.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지급기록, 물류택배, 반품·교환 및 A/S 등 거래정보의 보존기간은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해 플랫폼 내 사업자의 플랫폼 내 거래, 거래 가격 및 기타 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 경영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검색순위 하락, 상품 내림, 경영제한, 점포차단, 서비스요금 인상 등 방식을 통해 플랫폼 내 사업자가 스스로 여러 플랫폼에서 선택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특정 플랫폼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도록 제한
- (2) 플랫폼 내 사업자가 택배물류 등 거래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선택 금지 또는 제한
- (3) 기타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제3장 관리감독

제33조 현금 이상 지방시장 관리감독 부서는 일상적인 관리와 법 집행 활동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 주소지 성급시장 관리감독 부서는 업무 수요에 따라 파악한 플랫폼 내 경영자 신상정보를 그 실제 사업장의 성급시장 관리감독부서와 제 때에 공유해야 한다.

제34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사건조사, 사고처리, 결함 소비재 리콜, 소비 분쟁 처리 등 관리감독 업무 집행 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플랫폼 내 사업자 신상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지불기록, 물류택배, 반품·교환 및 A/S 등 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시장관리감독부서에 적극 협조해 온라인 거래 위법 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를 위해 홍보 프로모션, 지급결제, 물류택배, 인터넷접속, 서버 위탁관리, 가상호스트, 클라우드서비스, 웹 사이트 웹 페이지 디자인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기타 서비스 제공자’라 함)는 시장관리감독부서가 온라인 거래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시장관리감독부서가 온라인 거래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해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 온라인 거래 플랫

품 사업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35조 시장관리감독부서는 위법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때 법에 따라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위법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장소 현장 점검
 - (2) 위법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어음,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 (3) 위법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전자 데이터를 수집, 조사, 복제
 - (4) 위법 온라인 거래 행위에 종사 혐의가 있는 당사자 문책
 - (5) 불법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조사해 관련 상황 파악
 - (6) 법률, 법규 규정으로 취할 수 있는 기타조치
- 전 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할 때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준 수속을 한다.

온라인 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장관리감독부서의 기술모니터링 기록 자료는 행정처벌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전자 데이터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제36조 시장관리감독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인터넷 거래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의 보안을 보호하고 그 중 개인정보, 사생활, 상업기밀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7조 시장관리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사업자에 대해 신용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인터넷 거래 사업자의 등록 등기, 기록, 행정허가, 추출 검사결과, 행정처벌, 경영이상 목록과 심각한 위법에 따른 신용 상실 기업 명단 등 정보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종합하여 공시한다. 중대한 위법 신용상실 행위가 존재하면 법에 따라 합동 징계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정보는 시장관리감독부서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엔진, 사업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 등 경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

제38조 인터넷 거래 사업자가 법에 따른 법정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터넷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는 직책에 따라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와 상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법률 책임

제39조 법률, 행정법규의 온라인 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미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본 방법 제10조를 위반해 입주한 플랫폼 내 사업자에게 인터넷 사업장 관련 자료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본 방법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를 위반했을 때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없는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그 직책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2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본 방법 제12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해 법정 정보 공시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그 중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8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본 방법 제 14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본 방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본 방법 20조를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없는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본 방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본 방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1조를 위반하여 법정검사의무, 등록의무, 관련 정보 보고 의무, 상품과 서비스정보의무, 거래정보보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본 방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본 방법 제29조를 위반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행정,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는 그 직책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본 방법 32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거래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한 것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2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가 신체, 재산상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플랫폼 내 사업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질 자격에 대해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53조 시장관리감독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감독 법 집행 활동에 대해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해 관련 자료,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인멸·이전하거나 기타 거부하여 관리감독 법 집행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기타 시장관리감독부서규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 기타 시장관리감독부서 규약에 규정이 없으면 시장관리감독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4조 시장관리감독부서의 직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상업비밀을 누설, 매각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56조 본 방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1월 26일 기존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 60호로 공포한 <인터넷 거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70. 중화인민공화국 방송법(초안)

제목	中华人民共和国广播电视法
제재일	2021-03-16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방송법 (초안)

제1장 총칙

- 제1조 방송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방송 관리 혁신과 미디어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대중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방송 활동은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방송 활동이란 유선, 무선 등 방식으로 유선, 모바일 등 단말기를 통해 단일 방향, 상호소통 등 형식으로 사회 대중에게 동영상, 오디오 등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의 관련 활동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방송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역할을 고수 및 강화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저등 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도하고 정확한 정치방향, 여론 주도방향, 가치 성향을 고수하고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를 고수하고 사회 효익을 최우선 시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상호 통합을 고수해야 한다.
- 제4조 국가가 방송 사업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한다.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는 방송 사업 및 산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수요와 재정 능력에 따라 점차 투자를 늘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퀄리티, 커버 수준, 기술 능력과 서비스 효능을 끌어올리도록 추진하여 국민의 문화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제5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가 전국의 방송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방송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방송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 국가는 스마트 방송 구축을 강화하고 방송 기술 혁신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방송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방송이 전체 미디어 전파체계에서 심층 융합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스마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7조 방송 관련 지식재산권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그 어떤 기관과 개인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은 지식재산권 의식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창조, 활용, 보호, 관리하는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 제8조 국가는 평등 호혜적 방송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 및 지원하여 국내외 문명이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도록 촉진한다.

제9조 방송 사업에서 가시적인 기여를 한 기관과 개인에게는 유관 규정에 따라 이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시장 진입 허가

제10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배급, 종합편성 방송, 전송 등 활동을 하려면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 혹은 등록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배급, 종합편성 방송, 전송 등 활동의 분류 목록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에서 제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제12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배급, 종합편성 방송, 전송 등 활동의 분류 목록이 불명확한 방송 신행 업무는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평가 후 시험 처리한다.

제13조 라디오TV 프로그램의 진행자, 사회자로 활동하는 자는 국가의 유관 직업 자격 진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의 뉴스 취재,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 유관 직업 자격 진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해외 방송기관이 중국 경내에서 중국 주재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 이행을 진행한 방송기관이 법정대표 혹은 주요 담당자, 장소 등 조건,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존 허가, 등록 기관에 신청하여 허가 변경, 재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기관, 전송기관이 관련 방송 활동을 일시 중단, 중지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3장 제작 및 방영

제16조 라디오TV 프로그램은 국민 중심의 창작 주도방향을 고수하고 소재, 장르, 형식, 방식을 혁신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선양해야 한다.

제17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는 방송 프로그램 창작 수요에 따라 창작자가 기층과 대중들 속에 들어가 삶을 체험하는 등을 위해 필요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 평가체계를 구축 및 완비한다.

제19조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다음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법률, 법규의 실시를 저지 혹은 파괴하도록 선동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왜곡, 부정하는 내용
- (2) 국가 통일, 주권과 영토 완전을 위해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보를 해치고 국가의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 (3)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비방하고 민족 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의 역사 혹은 민족의 역사 인물을 왜곡하고 민족 감정을 해치고 민족 단합을 파괴하는 내용
- (4) 혁명 문화,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 희화화, 모독, 부정하는 내용
- (5) 국가 종교정책을 위배하고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 공공도덕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음란, 도박, 마약 흡입을 선양하고 폭력, 테러, 범죄 교사를 과장하거나 범죄 방법을 전수하고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직업,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양하는 내용
- (7)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미성년자의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수립에 불리한 내용
-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유포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내용
- (9) 법률,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0조 뉴스 분야 방송 프로그램은 진실, 전면, 객관, 공정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뉴스 홍보와 여론 유도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활동 분류 목록의 규정에 따라 뉴스분야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방송 주무부처는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에 대해 조정할 수 있고 완전 중계방송, 일시적 방영 중단, 특정 프로그램 교체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2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매커니즘을 정착시켜 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전 심사, 재방영 재심사, 적절한 시기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본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발표 금지 내용이 있을 경우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능동적으로 혹은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방영을 중단하거나 혹은 사용자의 방문 금지, 삭제 등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 기술 품질 검사 매커니즘을 정착하여 기술 품질이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규정과 강제성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미성년자 전문 주파수 채널, 미성년자 전용 시간대, 미성년자 프로그램 전용 구역, 미성년자 모델 구축 등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전담자, 미성년자 프로그램 평가위원회 등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하고 미성년자 프로그램에 상업화, 성인화와 과도한 오락화의 등장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눈에 쉽게 띄는 방식으로 이를 게시하고, 방송 시간과 판면 구성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24조 사용자를 위해 프로그램 소재 전송, 평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소재, 평론에서 본 법 제19조의 금지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발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다른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의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전송 등 형식을 통해 사회대중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가 전송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본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25조 중계방송, 링크, 취합, 편성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이 방영하는 프로그램과 기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어야 한다.

제26조 방송기관이 제작 예정인 드라마일 경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드라마는 제작 완성 후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배급 허가증을 발급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드라마는 배급, 방영할 수 없다.

제28조 방송기관이 방영하는 상업 광고, 공익 광고는 법률, 법규와 국가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이익 수요 때문에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 라디오TV 프로그램 전송 기관에 지정 시간대에 판면에 특정 공익 광고를 방영하거나 혹은 상업 광고 방영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방송기관이 해외 단체, 개인과 합작하여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방송 프로그램 수입과 국제 방송 프로그램 교류, 교역 활동에서 전시용으로 방영하는 해외 방송 프로그램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 혹은 해외로 나가서 교류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본 법 제19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30조 해외 위성 TV채널을 중국 경내에서 방영할 경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본 법 제19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31조 방송 프로그램의 취재, 편집, 방송, 사회 등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법에 의거하여 소재기관 명의로 관련 업무에 종사할 때 생명 안전과 인격 존중이 침해를 받지 않는 등 권익을 향유한다.

방송 프로그램 주요 창작 인력의 보수 표준과 배치 비율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32조 방송 프로그램 주요 창작 인력이 관련 법률, 법규 위반으로 부정적인 사회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는 유관 프로그램의 방영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4장 오버레이 전송

제33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는 전국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축, 업무 운영, 관리와 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방송 오버레이 전송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방송 프로그램의 오버레이 전송 활동을 감독관리해야 한다.

제34조 대중교통, 종합 케이블 덕트 뱅크 등 인프라 구축 사업과 주거단지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계획 및 건설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전송 오버레이 시설 건설 공간 및 부대 자원을 남겨두고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시설의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제35조 방송 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핵심 인프라의 공사는 법률, 법규 규정과 강제성 표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의 핵심 인프라 공사는 준공 후 법에 의거하여 검사 합격을 받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6조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이 전송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합법적 출처가 있고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와 소재지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특정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전송해야 한다.
- 제37조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은 사용자 중심, 안전과 원활, 공평과 합리, 공익 우선의 원칙과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은 기술품질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전송하는 프로그램의 기술품질이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규정과 강제성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제38조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이 방송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여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프로그램을 오버레이 전송할 경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고 검증된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송출, 중계해야 한다.
- 방송 전용 주파수, 주파수 구간 및 관련 기술 매개변수는 무단 사용,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방송 전용 주파수, 주파수 구간은 임대, 양도해서도 아니 된다.
- 제39조 라디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위성을 이용하여 오버레이 전송할 경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공공서비스

- 제40조 국가는 방송 공공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방송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접근성, 실효성을 추진한다.
- 제41조 국가는 방송 기본 공공서비스 가이드 표준을 제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정한다.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 기본 공공서비스 시행 표준을 제정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정하며 대중을 상대로 방송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화 관리를 안내한다.
- 제42조 국가는 농촌지역 방송 발전을 지원하고 혁명노구(革命老区: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공산당 건립 혁명기지), 민족지역, 변방지역, 저개발지역의 방송 기본 공공서비스를 지원 육성하여 방송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방송기관이 미성년자, 노령층, 장애인, 유동 인구 등 그룹의 특징과 수요에 겨누어 이에 맞는 방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43조 국가는 비상 라디오 방송 구축을 추진하고 비상 라디오 방송을 비상관리체계와 공공문화서비스체계에 포함시켜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비상 정보 공표의 시효성, 정확성, 커버리지를 높인다.
- 재난 사고 다발 지역의 인민정부는 비상라디오체계 구축 표준과 커버리지를 높여 비상 라디오 방송의 재난 방지와 위험 도피 분야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 제4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대책을 세워 각종 주체가 방송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자극하고 자원 여건이 되는 방송 기관이 사회 대중에게 방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면서 방송 공공서비스 주체의 다원화를 추진한다.

제6장 지원 촉진

제45조 국가는 아래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을 지원한다.

- (1)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반영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전파하는 프로그램
- (2)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프로그램
- (3) 과학 교육 사업 발전과 과학 기술 보급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 (4) 문화 예술 혁신 성과를 보여주고 문화 예술 진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5)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 (6) 중화 문명과 세계 기타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배움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 (7) 기타 국가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46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는 재력 상황과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결부시켜 재정자금을 통합 배치하여 방송 발전을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문화산업 특별 자금, 펀드가 방송에 대한 투자 강도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국가는 금융기관이 방송 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저당, 신용대출, 보험, 담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47조 방송 업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세수 우대정책을 혜택을 받는다.

제48조 국가는 방송의 전국 통합시장체제와 산업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방송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송산업 기반의 고급화, 산업사슬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장려한다.

제49조 국가는 방송 기술 발전 계획과 기술 정책 지도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과 방송 표준체제 구축을 구성하여 방송의 중대한 핵심 기술 연구와 성과 전환을 추진한다.

제50조 국가는 방송 주요 분야, 핵심 업무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며 조건이 되는 대학교, 중등 직업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이 방송 관련 전공과 수업을 개설하여 인재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제51조 국가는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표창, 홍보, 교류와 확대 업무를 진행한다.

제7장 안전 보장

제52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는 방송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송 안전업무를 지도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안전한 방영 전송과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여 시청자와 청취자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 및 청취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53조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은 내용과 기술품질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이 고객을 위해 프로그램 업로드, 평론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에게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심사 등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은 방송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전송해야 하며 오버레이 전송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삽입, 저지, 수정해서는 안 된다.

방송 전용 주파수에 대한 점거, 교란을 금지하고 방송 프로그램 신호 삽입, 변조를 금지한다.

제55조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방송 시설 구축 총체적 계획, 특별 계획 작성을 구성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방송 시설 구축과 보호를 본 행정구역 도농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방송 시설 안전을 위협하고 시설 사용 효능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56조 방송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방송 정보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사용, 제공, 거래, 공개 등 행위를 규범화하고 방송 정보 데이터 안전을 보장한다.

제57조 방송 기관이 사용하는 핵심 설비 기자재는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방송망 가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감독관리

제5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일상 감독관리, 전문 검사 등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행정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생산 경영장소 진입 혹은 기술 검사 등 방식을 사용하여 검사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데이터, 샘플을 찾음.
- (2) 방송기관의 법정 대표, 주요 책임자 혹은 기타 관계자가 경영활동과 경영관리의 중대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함.
- (3)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체 혹은 개인의 관련 서류, 자료, 통신기록 및 기타 전자 데이터 등을 검열, 복사, 등록 보존함.
- (4) 위법 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압류하고 위법행위에 사용한 시설, 설비 등 재물을 압류, 압수, 제거함.
-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 방송기관, 방송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상기 조치에 대해 협조해야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5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체계와 플랫폼 구축을 완비하고 콘텐츠 감독관리와 기술 모니터링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방송기관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업무에 협조하고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플랫폼에 정확, 완전, 진실, 유효한 신호와 기타 필수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6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방송기관이 종합편성 방송기관, 해외 TV채널 운영 기관에 그들이 방영하는 내용이 허위적이고 공공이익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정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감독 검사에 협력을 하지 않고 감독 검사 과정에서 위법 단서 혹은 중대한 안전 리스크가 있다고 발견했을 경우 손해 발생 혹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에 서비스 일시 중단, 네트워크 접속 일시 중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방송 위법 행위 신고, 고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어떤 단체와 개인도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 고발할 권한이 있고 방송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신고, 고발을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방송계 종사자는 법률법규를 지키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직업 윤리를 지키고 양호한 사회적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방송계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주체가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신용 구축을 추진하고 업무 교류를 진행하며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 발전 질서를 규범화한다.

제9장 법률 책임

제63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분류 목록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종합편성 방송 혹은 오버레이 전송 활동에 종사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위법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전용 도구, 설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프로그램 매개체를 몰수하거나 혹은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삭제하고 투자 총액 혹은 위법 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투자 총액 혹은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내 관련 방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이 규정한 허가를 받은 후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방송 활동을 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에서 경고를 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위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위법 활동에 사용한 전용 도구, 설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프로그램 매개체를 몰수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삭제하며 투자 총액 혹은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투자 총액 혹은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동안 정돈하라고 명령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에 방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위법 활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고 및 징계할 수 있으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종합편성 방송 혹은 오버레이 전송활동에 종사하면서 분류 목록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 방송 신규 업무를 진행하면서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3)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장소 등 사항을 변경하면서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4) TV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65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위법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프로그램 매개체를 몰수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삭제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또는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

하고 7일에서 30일 휴업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 방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본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한 경우
- (2)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TV 작품을 배급한 경우
- (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여 취재, 편집, 방송, 사회를 맡은 경우
- (4)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국가의 유관 주요 창작자의 보수 표준, 배치 비율

제6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위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코너), 특정 채널(사이트, 전용 코너) 혹은 특정 채널(사이트, 전용 코너)의 상업 광고 등의 방영을 일시 중단하고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정돈하라고 명령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허가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에 관련 방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본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집적, 방영한 경우
- (2)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배급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TV 작품 배급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TV 작품 혹은 방송 주무부처에서 방영 중단을 명령한 방송 프로그램을 집적, 방영한 경우
- (3) 방송 주무부처의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한 경우
- (4)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완전 중계, 임시 방영 중단, 교체한 경우
- (5) 내용 심사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본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 심사, 규정 위반 알림, 내용 확산 방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6) 방송 프로그램의 중계, 링크, 취합, 집적의 출처가 불법일 경우
- (7)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지정 시간대, 레이아웃으로 특정 공익 광고를 방영하거나 혹은 상업 광고 방영을 일시 중단한 경우
- (8) 방송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창작 인력이 참여한 방송 프로그램 방영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경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유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업 광고, 공익 광고를 방영하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위법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코너), 특정 채널(사이트, 전용 코너) 혹은 특정 채널(사이트, 전용 코너)의 상업 광고 방영 일시 중단 등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정돈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특정 프로그램(코너), 특정 채널(전용 코너) 방영을 중단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에 관련 방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

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사안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 부처가 위법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전용 도구, 설비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혹은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정돈하라고 명령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 관련 방송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방송 전용 주파수, 주파수 구간을 임대, 양도, 무단 사용하고 허가한 기술 매개변수를 따르지 않고 관련 프로그램을 발사, 중계한 경우
- (2) 국가 유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TV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한 경우
- (3) 허가를 받지 않고 위성을 무단 사용하여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TV방송 프로그램을 오버레이 전송한 경우
- (4) 불법 출처의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 커버한 경우
- (5) 전송, 커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삽입, 차단 혹은 변경한 경우
- (6) 방송 전용 주파수를 점거, 교란하거나 혹은 방송 프로그램 신호를 삽입, 변조한 경우

제68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MC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경고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방송 면허증을 말소하고 3년 이상 5년 이내에 프로그램 방송, MC 관련 방송 면허증의 재신청을 금한다.

- (1) 방송 프로그램 방영의 위법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 (2) 기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 MC 행위 규범 기준을 위반한 행위
- (3)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MC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방송 면허증을 말소하고 그가 3년 이상 5년 이내에 프로그램 방송, MC 관련 방송 면허증을 다시 신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평생 프로그램 방송, MC 관련 방송 면허증을 다시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다.
- (4)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 (5) 기타 국무원 방송 주무부처의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MC 활동 자격조건 기준에 관해 위반한 행위

제6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 부처가 위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프로그램 매개체를 몰수하거나 혹은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삭제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혹은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휴업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허가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에 관련 방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중국 경내에서 무단으로 해외 위성 TV 채널을 방영하는 경우
- (2) 해외 위성 TV 채널의 프로그램에 본 법 제19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경우
- (3) 해외기관의 중국 주재 사무소를 무단 설립한 경우
- (4) 해외 단체, 개인과 무단 합작하여 TV 작품을 제작한 경우
- (5) 해외 방송 프로그램과 국제 방송 프로그램 교류, 교역 활동에서 기획 방영한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수입한 경우
- (6) 해외에 제공하거나 혹은 해외로 나가 교류한 방송 프로그램에 본 법 제19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경우

제70조 방송 기관이 사용하는 관건 핵심 설비 기자재가 네트워크 접속 인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기한 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심각한 위법 경위가 있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증, 자격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내 관련 방송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경고를 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혹은 위법 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본 법이 규정한 허가증, 자격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여, 매매하거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본 법이 규정한 허가증, 자격증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2) 기만, 뇌물 공여 등 부당한 수법으로 본 법이 규정한 허가증,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 기관이 법정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장소 등 조건을 변경하는데 기존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변경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는 경고를 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허가 변경 신청을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휴업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말소한다.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 오버레이 전송 기관이 관련 방송 활동을 일시 중단, 중지하는데 사전에 기존 허가기관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말소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 기관이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기한 내 시정하여 허가 조건을 다시 갖추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72조 방송계 종사 주체가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방송 주무부처에 유관 상황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의 활동 상황을 반영한 진실된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위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경고 및 징계를 할 수 있으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간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허가증, 자격증을 말소하고 1년 이상 5년 내에 관련 방송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3조 기관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징계를 하고 그의 법정대표, 주요 책임자에 대해 경고성 면담을 진행하고 기관의 주무부처 혹은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책임 있는 주관 담당자 혹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기관이 본 법을 위반한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하고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방송 주무부처는 처벌 대상 기관의 주무부처 혹은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상황을 통보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 혹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건의하고 추후에 후속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제74조 방송 기관이 본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해 허가증이 말소될 경우 그의 법정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 말소 당일부터 5년 내에 방송 기관의 법정 대표, 주요 책임자 혹은 기타 고위 관리직에 부임할 수 없다.

방송 기관이 관련 직무에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방송계 취업 금지를 당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7일에서 30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 허가기관이 해당 허가증을 말소해야 한다.

제75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방송 주무부처가 유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1) 방송 프로그램 방영 전, 프로그램 중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선명한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 (2)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이 고객에게 프로그램 업로드, 평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의 진실한 신원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혹은 진실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3) 방송 정보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사용, 제공, 교역, 공개 등 행위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6조 방송 주무부처의 스텝이 방송 감독관리 업무 중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62. 직무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63.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활동을 한 경우
64. 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5.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66. 기타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경우

제77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2년 내에 2회 이상 행정 처벌을 받고 또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하는 위법 행위일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제10장 부칙

제78조 해외 단체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방송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본 법과 국가의 유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투자 활동과 관련된 경우 국가 유관 외국인 투자분야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79조 본 법 아래 용어의 합의:

(1) 방송(라디오TV) 프로그램이란 유선, 무선 등 방식으로 고정, 모바일 등 단말기를 통해 단일 방향, 인터랙티브 등 형식으로 사회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영상, 음성 파일 등 시청 및 청취 프로그램을 말하며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TV 방송 프로그램,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작품이란 TV와 웹드라마를 말하며 TV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TV 영화, TV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웹 애니메이션, 웹 영화, 웹 다큐멘터리 등이 포함된다.

(2) 방송 기관이란 중국 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방송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배급 기관,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기관 등이 포함된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배급 기관이란 배급 혹은 자체 방영을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관 및 사용자 프로그램 소재의 심사,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기관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집적하여 대중에게 방송 프로그램 방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융합미디어센터,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공공 시청각 매개체 방영기관 및 집적 운영기관, 방송 유료 채널 운영기관 및 집적 운영기관, 방송 VOD서비스기관, 방송기지국 및 기타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기관이란 방송 프로그램 전송, 배포와 접속 등 활동에 종사하면서 사용자에게 시청하도록 공급하는 방송기관을 말하며 방송 발사대, 중계국, 방송 위성 운영기관, 위성 업링크 방송국, 위성 중계국, 극초단파국, 유선 방송 운영 서비스 공급기관, 광역망과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정보 네트워크 운영기관 및 기타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3) 방송 시설이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전송, 커버, 모니터링, 감독관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설, 방송 프로그램 종합편성 방송 시설, 방송 프로그램 오버레이 전송 시설,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 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80조 본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71. 라이브커머스 관리방법(시범시행)

제목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제재일	2021-04-23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라이브커머스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라이브커머스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라이브커머스의 건강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보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관리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미니프로그램(小程序) 등을 통해 동영상 라이브, 오디오 라이브, 라이브 텍스트 또는 다양한 라이브 결합 등의 형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비즈니스 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인터넷 라이브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음악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포함해 라이브커머스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플랫폼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운영자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하거나 자체 웹사이트 등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실을 개설하여 라이브커머스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과 기타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진행자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사회 대중에게 직접 마케팅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진행자 기획사는 진행자가 라이브커머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매니지먼트,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라이브커머스에 종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정의한 시장주체에 속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조 라이브커머스에 종사하려면 법률법규 준수,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준수, 상도덕 준수, 정확한 방향 견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고취를 통해 양호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제4조 국가인터넷부서와 국무원 공안, 상무, 문화와 관광, 세무, 시장감독관리, 방송 등 유관 주무부처는 관련 서류의 이관, 정보 공유, 공동 연구·판단, 교육 등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각자 직책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관련 감독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유관 주무부처는 각자 직책에 근거해 본 행정구역 내 라이브커머스 관련 감독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제2장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 제5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라이브커머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완비된 계정 및 라이브커머스 기능 등록 말소, 정보보안관리, 마케팅 행위 규범,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데이터 보안 관리 등 메커니즘과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라이브 콘텐츠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인터넷 라이브 콘텐츠 보안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비해야 하며, 기술방안은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 제7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인터넷 라이브커머스 관리규칙, 플랫폼 공약을 제정 및 공개해야 한다.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진행자 기획사, 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가 진행자 모집, 교육, 관리절차를 규범화하고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의 진실성, 합법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 상품과 서비스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해 법률법규가 규정한 생산판매금지, 인터넷거래 금지, 상업판촉금지 및 생방송 형식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유형을 열거해야 한다.
- 제8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운영자,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에 대해 신분증 정보, 통합사회신용코드 등에 기반해 진실한 신분정보 인증을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상정보와 기타 조세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조치를 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진실한 신분 동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해 생방송 전 모든 진행자 신분정보를 검증하고 신상정보가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발표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라이브커머스 발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라이브커머스 정보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발표심사와 실시간 순찰을 하여 위법과 불량정보를 발견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라이브 방송실 내 링크, QR코드 등 점프(jump) 서비스의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하여 정보 보안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 제10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위법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위험 마케팅 행위에 대해 팝업알림, 위반 경고, 유량 제한, 방송 일시 중지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완비된 리스크 인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플랫폼 밖 암거래 등 행위의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 제11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 결제 유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이브커머스에 대해 판촉, 홍보하여 상업광고를 구성하는 경우, 광고 발표자, 광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운영자, 진행자의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상업홍보에 도움,

편의를 제공해선 안 된다.

제12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해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에 힘써야 한다. 라이브커머스에 미성년자 심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정보 전시 전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알림을 해야 한다.

제13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신기술 신응용 신기능 오픈과 사용 관리를 강화해 인공지능, 디지털, 가상현실, 음성합성 등 기술을 이용해 선보이는 가상 이미지에 라이브커머스를 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4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운영자 계정의 적법한 상황, 팔로우 및 방문수, 거래량과 금액 및 기타 지표 차원에 근거해 등급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급에 따라 서비스범위 및 기능을 확정하고 중점 운영자에 대한 전담자를 배치해 실시간 순찰, 라이브 콘텐츠 저장시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법률·법규와 서비스 협의를 위반하는 운영자 계정에 대해 경고 알림, 기능 제한, 발표 일시 정지, 계정 말소, 재등록 금지 등 처분조치를 취해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해 위법·규정 위반 정황이 심각한 진행자 및 위법·도덕불감증으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관련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완비된 민원·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해 처리절차와 피드백 기한을 명확히 하고 위법·규정 위반 정보 내용, 마케팅 행위에 대한 대중의 민원 및 신고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는 라이브 방송실 내 링크, QR코드 등 방식을 통해 기타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를 받으며, 쟁의 발생 시, 관련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필요한 증거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반드시 운영자가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이나 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수입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및 진행자 기획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장 운영자와 진행자

제17조 라이브 진행자 또는 운영자는 자연인으로 만 16세가 되어야 한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진행자 또는 운영자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운영자, 진행자가 라이브커머스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법규와 국가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서양속(公序良俗)을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발표하며 아래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4)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규정> 제6조,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정보를 발표해 사용자를 기만, 오도하는 경우

(6) 위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인신보장,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7) 거래, 관심도, 조회수, ‘좋아요’ 수 등 데이터 트래픽 날조 또는 조작

- (8) 타인의 위법·규정 위반 또는 고위험 행위를 알거나 알아야 함에도 홍보, 유도하는 경우
- (9) 소란, 비방, 욕설 및 타인을 위협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 (10) 다단계 판매, 사기, 도박, 금지품 판매 및 단속 물품 등
- (11) 기타 국가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9조 운영자, 진행자가 발표한 생방송 콘텐츠가 상업광고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광고 발효자, 광고경영자 또는 광고모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진행자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타인 및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서 라이브커머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운영자, 진행자는 라이브 방송실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아래의 중점적인 사항은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위법 및 불량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암시 등 방식으로 사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 (1) 운영자 계정 명칭, 프로필사진, 프로필
- (2) 생방송실 표제, 커버
- (3) 라이브 방송실 세트, 소품, 상품 전시
- (4) 진행자 옷차림, 이미지
- (5)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쉬운 기타 중점 부분

제21조 운영자, 진행자는 플랫폼 서비스 협약에 따라 음성과 동영상 링크, 댓글, 동영상 댓글 자막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실시간 관리를 잘하고 삭제, 관련 불리한 평가 차단 등 방식으로 사용자를 기만,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운영자는 상품과 서비스 공급업체의 신분,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정보상황 등 정보를 검증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제23조 운영자, 진행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운영자, 진행자가 진행자 기획사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협력을 하는 경우, 진행자 기획사와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정보보안관리, 상품품질심사, 소비자 권익보호 등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제25조 운영자, 진행자가 타인 초상화를 가상 이미지로 사용해 라이브커머스에 중사하는 경우 반드시 초상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한 위조 등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자연인의 목소리에 대한 보호는 앞에 서술한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4장 감독관리와 법률책임

제26조 관련 부서는 필요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이행주체 책임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플랫폼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절,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관련 부서의 법에 따른 조사와 수사 활동에 기술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

제27조 관련 부서는 업종 협회상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업종 표준의 구축, 완비를 장려하며 법률법규를 홍보하고 업종의 자율화를 촉진한다.

제28조 본 방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이버안보·정보화(网信) 등 관련 주관부처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관련부서는 법률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라이브커머스 시장주체는 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법에 따라 연합 징계 처분한다.

제5장 부칙

제30조 본 방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2.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관리업무 강화 관련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综艺节目管理工作的通知
게재일	2021-05-10
출처	북경시광전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북경방송국의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제작 방송 관리 강화

최근 인터넷 원작 시청각 프로그램의 전과 질서를 규제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인터넷 시청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북경시방송국은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관리 강화 관련 통지'를 발간하고,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시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이 프로그램의 혁신과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의 창작·제작에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신적 문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팬들의 비이성적 합성·응원 구호, 스타 우상화·모방, 범오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도 강화와 즉각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통지는 북경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들에게 가치관 방침을 준수하고 프로그램 방향의 적정선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의 방향으로 삼아 신발전 이념을 철저히 관철하고, '이위(二爲: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 방향, '쌍백(雙百: 백화제방, 백가쟁명)' 방침을 기반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공간을 조성해 북경시 인터넷 방송업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인터넷 예능은 품위·격조·책임을 중시하고 저속·비열·비속함을 배격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각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사회와 경제적 이익을 통합하는 프로그램 제작 및 생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장 경쟁에서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통지문'은 모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이 국민 중심의 창작 지향과 격조있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예능프로그램은 인재를 선발 양성해 문화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문화 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 성악, 무용, 연극, 체육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하며 인민대중이 즐겨 듣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의 문화적, 교육적, 공익적 속성을 강화한다.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은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에게 다가서며 삶에 힘을 실어주고, 장인정신으로 분투하며 건강한 격조를 유지한다. 팬덤의 스타 우상화와 모방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거짓 쇼, 갈등 증폭,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무의미한 게임 등 불량 행위를 지양해 사회의 도덕적 한계선과 미적 한계선을 고수한다.

'통지문'은 과학적인 프로그램 선발체제 설계, 비이성적 응원 행위 단속 등 방면에서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베이징시 방송국은 오디오 유형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유행에 휩쓸려 따라 만들거나 같은 소재, 단지 외모만을 앞세우거나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행위, 과도한 오락화 등 나쁜 경향은 배격할 방침이다.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은 선발체제 설계에서 덕과 예술을 중시하고 정기를 고양하며, 전문가·미디어 대표·업계 대표·시청자 대표는 중

합적인 평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점과 진급 기준을 정해야 한다.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코너를 만들어선 안 되며, 네티즌에게 쇼핑·회원 충원 등 물질적 수법을 동원해서 지정 선수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돈 주고 표 사기', '집단으로 투표하기' 등의 형태로 데이터를 조작해 프로그램의 선발을 방해하는 것도 엄격히 금한다.

'통지문'은 모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에게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요원을 엄격히 관리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모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선수들의 배경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불법 범죄 기록, 개인 신용 불량 기록, 언론 스캔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출연자 선수 선발을 엄격히 금지한다. 미성년자의 오디션 관련 인터넷 예능 출연을 금지하고, 스타 자녀를 좋게 포장하거나 조작하는 일을 철저히 막는다. 인터넷 시청각 서비스 기관들은 늘 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고액의 스타를 쫓거나 지나친 낭비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방송 행정부처의 관리 규정에 따라 연예인들의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통지문'은 모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에게 스스로 주체적 책임을 다하고 편집장 내용책임제를 완비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은 정치적 관점에서 팬들의 비이성적 함성·응원 구호, 스타 우상화·모방, 범 오락화 등의 엄중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플랫폼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가광전총국의 관련 관리 규정을 엄격히 실천하며, 편집장 내용책임제와 프로그램 "3심제"를 완비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잘 편성해 승덕상예와 긍정적 기운을 널리 떨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전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광고주, 소속사, 제작사 등 관계자와 협력하며 주변 책임과 확장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내부 인력 양성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정치 자질·매체 소양·업무 수준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여론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고, 위험 예방 및 통제와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내부 책임추궁제도를 정비해 심각한 문제나 중대한 이슈가 생기면 즉각 책임소재를 가려 직무상 과실이 있거나 직권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해 부패를 일삼는 사람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73. 절강광전국의 드라마 배우 출연료 관리 시행 조치사항

제목	浙江广电局多措并举推动电视剧片酬管理
게재일	2021-05-13
출처	절강광전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절강 광전총국의 드라마 배우 출연료 관리 시행 조치사항

절강광전총국은 다양한 조치로 드라마 출연료 관리를 추진한다.

첫째, 학습과 홍보에 힘쓴다. 방송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과 요구를 학습하여 출연료 관리 업무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일상적인 감시를 강화한다. ‘1극 1 약속’ 제도를 도입해 이미 등록된 공시 드라마 목록에 대해 제작진의 주요 책임자가 관련 규정을 학습하고 서면으로 이를 약정한다.

셋째, 경각심을 일으키는 교육을 진행한다. 드라마 콘텐츠 창작생산, 관리 등 학습 훈련 기회를 활용해 전형적 출연료 사례를 분석하고 경각심 교육을 한다.

넷째, 방송 플랫폼을 환기시킨다. 절강성에서 제작된 TV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 방송기관에 배우의 출연료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도록 경고하여 출연료의 합법성과 준법성을 보장한다.

다섯째, 추적 서비스를 진행한다. 전방위적으로 드라마 창작생산 추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전 예심, 현장 방문, 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 창작, 생산, 콘텐츠 검열부터 방송까지 전요소 서비스와 검열을 진행한다.

74.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인원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文艺节目及其人员管理的通知
게재일	2021-09-02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국가광전총국판공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인원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광전판발〔2021〕26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광전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중앙광전총국판공청, 영화 채널 프로그램센터, 중국교육방송국:

최근 수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품위, 품격, 책임을 중시하고 저속, 비속, 세속적인 것을 지양하며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대중의 정신적 문화 수요를 만족시켰다.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연예인의 위법, 도덕성 상실, ‘팬덤’의 무질서 현상 등 문제점을 엄격히 다스리고 정치적 태도가 분명한 애당애국(爱党爱国: 당과 나라를 사랑하다), 숭덕상예(崇德尚艺: 도덕과 예술을 숭상하다)의 업계 기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 1) 법을 위반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인원의 채용을 저지한다. 방송기관과 인터넷 시청각 플랫폼은 프로그램 출연자와 게스트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정치소양,德行,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배역 선정의 표준으로 적용한다. 정치적 입장이 불명확, 당과 국가와 한마음 한뜻이 아닌 사람은 절대 선정하지 않는다. 법률법규 위반, 사회적 공평 정의의 마지노선을 터친 사람은 절대 선정하지 않는다.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고 언행이 도덕성과 기준을 상실한 사람은 절대 선정하지 않는다.
- 2) 유유량론(唯流量论: 오직 데이터 지표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논리)을 철저히 반대한다. 방송기관과 인터넷 시청각 플랫폼은 아이돌 육성 종류 프로그램을 방영하면 안되고, 스타 자녀가 출연하는 예능 및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방영해서도 안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투표 과정 설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장외 투표, 순위 조작 투표, 도움주기 등 고리와 통로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팬들이 쇼핑, 회원 충당 등 물질적 수단으로 변칙적인 돈을 쓰면서 투표하도록 유도, 장려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좋지 않은 ‘팬덤’ 문화를 철저히 저지한다.
- 3) 범오락화(泛娱乐化)를 철저히 저지한다. 문화 자신감을 단단하게 다지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대대적으로 선양한다. 프로그램의 올바른 심미 방향을 수립하고 출연자와 게스트 선정, 연기 스타일, 의상과 분장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냥파오(娘炮: 남자인데 행동, 성격 등이 여자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 등 기형적인 심미를 철저히 근절한다. 부를 자랑하는 향락, 스캔들과 프라이버시, 부정적인 핫 이슈, 저속한 ‘왕홍(网红: 온라인 인플루언서)’, 한계가 없는 심추(审丑: 사물과 예술품의 추한 면을 감상) 등 범오락화 경향을 철저히 저지한다.
- 4) 고액 출연료를 철저히 저지한다. 출연자와 게스트의 출연료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출연료

관리 고지 약속제도를 엄격히 이행한다. 출연자와 게스트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익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장려한다. 출연료 규정 위반, ‘이면 계약’, 탈세 행위를 엄격히 징계한다.

- 5) 종사자 관리를 강화한다. 진행자(MC)의 자격증 취득 후 업무 투입을 엄격히 집행하고 진행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온라인 정보 배포를 규범화한다. 종사자의 정치 자질 교육을 강화하고 마르크스주의 언론관, 문화예술관 교육을 심층 진행하고 시종일관 국민적 입장을 견고히 지키고 국민적 감정을 고수한다. 직업윤리 규범을 개선하고 직업윤리 구축을 강화하여 명예와 이익, 유혹을 스스로 저지하고, 직업적 신분과 개인 인지도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사회 감독을 능동적으로 받고 사회 공덕의 시범자로서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6) 전문 권위성이 있는 문화예술 평론을 진행한다.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방향, 가치 성향을 고수하고 진선미를 선양하고 거짓과 추악함을 비판하고 가치 유도, 정신적 선도, 심미 인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사회 효익, 사회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심오한 사상, 조예가 깊은 예술, 완성도 높은 제작 수준을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과학적으로 시청률, 클릭률 등 양적 지표를 대하고 ‘중국 시청(视听) 빅데이터’ 홍보 활용 강도를 확대한다.
- 7) 업계의 단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방송, 인터넷 시청업협회 등 사회단체는 업계 규범화와 자율 공약을 한층 더 완비하고 도덕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사상정치, 직업윤리 등 교육을 강화하고 노멀화 교육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교수 내용을 최적화하고 사례 수업을 강화하고 사례로 법을 설명하고 사례로 법을 보여준다. 업계의 불량 현상, 부정적 대표 사례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비평하고 무리 문화와 업계의 낡은 관습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근본부터 개혁하면서 업계의 양호한 기풍을 유지한다.
- 8) 관리 직책을 확실하게 이행한다. 방송 행정부처는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제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속지 관리 책임, 주관 주최 책임과 주체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방향, 콘텐츠, 인원, 출연료, 홍보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법과 도덕성 상실, 스타 만들기, 범오락화, ‘데이터 지상주의’ 등을 단호하게 철폐하며, 주요 정치사상과 긍정 에너지가 방송과 온라인 시청 공간에 넘쳐나도록 한다.

상기 내용을 특별 통지한다.

국가광전총국판공청
2021년 9월 2일

75.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준 세칙 (2021)

제목	网络短视频内容审核标准细则 (2021)
게재일	2021-12-15
출처	중국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쇼트클립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못된 허위·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아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과 법규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사 통칙(网络视听节目内容审核通则)>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1.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기본 기준

- (1)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제16조에 열거된 10개의 기준 항목
- (2)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 심의 통칙> 제4장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열거된 94개의 기준 항목

2.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의 세부 세칙

인터넷 쇼트클립 콘텐츠 심사 기본 기준에 따라 쇼트클립 프로그램 및 그 제목, 명칭, 댓글, 탄막⁴⁴⁾, 이모티콘 등 언어와 표현, 자막, 화면, 음악, 음향 효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

- (1) 중국 특색 사회주의⁴⁵⁾ 제도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
 - 1)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지도 사상과 행동 지침을 공격, 부정, 침해하거나 이를 위배하는 경우
 - 2)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 관한 최신 이론 성과나 지도적 지위를 조롱, 풍자, 반대, 멸시하는 경우
 - 3)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공격 또는 부정하거나 당 지도자를 공격,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경우
 - 4) 사회 상황이나 국가의 정세, 당의 상황을 배제한 채 특정 시기의 당과 국가의 발전사를 근거로 다른 시기의 당과 국가의 발전사를 부정하거나 역사 허무주의⁴⁶⁾를 조장하는 경우
 - 5)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의 100년 분투 속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에 위배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래 당과 국가에서 시행한 중요한 방침과 정책, 주요 조치 및 당과 국가에서 추진한 중대

44) 탄막(弹幕): 영상 재생 시 영상에 자막처럼 뜨는 댓글

45) 중국 특색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념으로, 국가 관리하에서 자본주의 제도가 시행되는 경제 체제라는 특색을 갖는 중국식 사회주의

46) 역사 허무주의(历史虚无主义): 역사의 발전 과정 및 역사적 관점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중국의 사회주의나 공산당을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짐

업무를 조롱, 부정, 공격하는 경우

- 6) 헌법 등 국가의 주요 법률·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곡해, 부정, 공격, 비난하거나 그중 구체적인 조항을 조롱, 풍자, 반대, 왜곡하는 경우
- 7)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근본 제도⁴⁷⁾와 기본 제도⁴⁸⁾, 중요 제도⁴⁹⁾를 흥미 본위로 해석, 왜곡하거나 그 안의 특정한 단어나 명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용

- 8)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⁵⁰⁾’를 반대, 공격, 곡해하는 경우
- 9) 대만 독립, 홍콩 독립, 티베트 독립, 신장 독립 등을 영상 자료·작품·음성·여론·이미지·문자·반동적인 깃발·표어나 구호 등 각종 형식을 포함하는 언행이나 활동, 상징 등으로 구현한 경우(중앙 뉴스기관의 뉴스 보도를 중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 10) 대만 독립, 홍콩 독립, 티베트 독립, 신장 독립 등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상을 가진 연예인 및 단체가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연예 뉴스, 작품 홍보가 포함된 경우
- 11) 국가의 정론에 부합하지 않게 영토 및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경우

(3)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

- 12) 중국 국가와 민족의 이미지, 정신, 기질을 폄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한 경우
- 13) 국기나 국가의 휘장을 소각,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더럽히거나, 짓밟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욕하는 경우, 또는 부적절한 오락 및 상업활동 등에서 국기나 국가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우
- 14) 국가(國歌)를 의도적으로 고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고, 부적절한 오락 및 상업활동에서 국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적절한 상황에서 국가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국가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
- 15) 당과 국가 지도자의 연설 장면을 일부만 편집하여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거나, 일부러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해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로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과 국가 지도자의 말의 뉘앙스나 말뜻, 어투를 확대, 왜곡하여 보여주는 경우
- 16)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인받지 않고 전문 대역 배우나 일반 대중이 당과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모방, 분장해 방송 진행이나 연설, 촬영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대중의 인기를 얻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드라마나 영화, 문화예술 공연 등은 제외함)
- 17) 프로그램 출연자가 당과 국가 지도자의 얼굴이 프린트된 옷이나 신발, 모자 등을 착용한 채 그것을 흔들거나 접어서 괴상한 표정을 만드는 경우

(4) 혁명 지도자와 영웅 열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

-
- 47) 근본 제도(根本制度): 인민 대표 대회 제도, 당의 주석 제도 등 중국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정치 제도를 가리킴
 - 48) 기본 제도(基本制度): 근본 제도하에서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기본 경제 제도와 기본 정치 제도 등을 가리킴
 - 49) 중요 제도(重要制度): 기본 제도의 하위에 있는 제도로 각 방면의 구체적인 기제나 법률, 법규 등을 가리킴
 - 50) 일국양제(一国两制):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중국이 홍콩, 마카오를 통치하는 원칙임

- 18) 혁명 지도자, 영웅, 열사의 업적과 정신을 깎아내리고 왜곡하거나 희화화하거나 모독, 부정하는 경우
- 19) 혁명 지도자, 영웅, 열사의 이름과 초상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경우

(5)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 20) 국가 각급 당정기관의 비공개 문건이나 발언을 누설하는 경우
- 21) 국가 각급 당정기관의 비공개된 특별 업무 내용이나 절차 및 업무 배정을 누설하는 경우
- 22) 국방, 과학 기술, 군수 산업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 23) 당이나 국가 지도자와 관련된 사적 업무 및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당이나 국가 지도자의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멋대로 공표하는 경우

(6)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

- 24) 사회적 이슈를 부풀리고 사회 갈등을 격화시켜 공공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5) 성(省)급 이상이 보도 기관이 발표하지 않는 재난사고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26) 보도 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작한, 재난사고나 공공 사건의 영향 및 결과를 다룬 프로그램

(7) 민족과 지역의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 27) 언어나 호칭, 분장, 이미지, 음악 등을 이용해 민족과 지역에 대한 감정을 비웃고 조롱하거나 해치며, 사회 안정과 단결을 파괴하는 경우
- 28) 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민족에 대한 편견과 대립으로 과장하는 경우
- 29)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 30) 독특한 민족 풍습과 종교 신앙을 엽기적인 것으로 과장하거나 추악하게 묘사하여 모욕하는 경우
- 31) 역사 속 민족 간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벌 전쟁에 찬성하거나 이를 칭송하는 태도로 다루는 경우

(8) 국가의 종교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

- 32) 종교 극단주의와 극단적인 사상, 이단 조직과 그 주요 구성원 및 신도의 활동, 교리, 사상을 보여주는 경우
- 33) 서로 다른 종교나 교파 간의 우열을 부적절하게 비교하여 종교나 교파 간의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4) 종교의 교리나 교칙, 의식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선전하는 경우
- 35) 종교 극단주의와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동일시해 정상적인 종교 신앙과 종교 활동을 극단주의 사상과 행동인 양 부풀리거나, 극단주의 사상과 행동을 정상적인 종교 신앙과 종교 활동으로 해석하는 경우

- 36) 종교적인 내용을 흥미 위주로 서술하고 조롱하거나, 악의적으로 민족 종교 감정을 해치는 각종 의견을 담은 경우

(9) 테러리즘을 전파하는 내용

- 37) 국내외의 테러 조직을 표현하는 경우
38) 테러 행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경우
39) 테러리즘 및 그 주장을 유포하는 경우
40) 분신(焚身), 자살 폭탄 테러, 폭력, 파괴, 약탈, 방화 등의 수단을 통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일어난 폭력적 테러 활동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활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적인 보도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중앙 뉴스기관이 공개한 보도를 중계하는 경우는 제외함)

(10)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내용

- 41) 명작을 의도적으로 고치거나, 원작의 정신과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
42) 명작 속 주요인물 설정을 뒤엎는 경우
43) 기본적인 역사 정론에 반하여 역사를 임의로 왜곡하는 경우
44) 역사, 특히 혁명 역사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하거나 지나치게 흥미 본위로 표현하는 경우

(11) 군대나 국가안전부, 경찰, 행정부처, 사법 부처 등 국가 공무원과 공산당원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헐뜯고 손상시키는 내용

- 45) 법 집행관의 공무 수행 과정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정상적인 법 집행을 폭력적인 집행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
46) 확인되지 않은 군복 착용자의 싸움, 집회, 시위, 항의, 문제 해결 요구나 군대, 국가안전부, 경찰, 행정부처, 사법 부처 등의 국가 공무원을 사칭해 공공장소에서 협잡을 부리거나 타인을 미혹시키는 내용을 퍼트리는 경우
47) 해방군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거나, 흥미 위주로만 다루는 경우

(12) 부정적인 인물을 미화하는 내용

- 48) 마약과 성매매를 포함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나 조직폭력배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49) 이미 부정적 인물로 규정된 자를 찬양하는 경우

(13) 봉건 미신을 퍼뜨리거나 과학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

- 50) 굿, 액막이, 주술, 저주 인형, 도사가 술법을 행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채널, 코너,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술이나 술법 등 봉건적인 미신 사상을 퍼트리는 경우
51) 술법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경우

- 52) 민간 고전과 전설을 이용해 봉건적 미신 사상을 퍼트리는 경우
- (14) 불량하고 부정적이며 퇴폐적인 인생관 및 세계관, 가치관을 퍼트리는 내용
- 53) 인기 지상주의, 퇴폐주의와 향락주의, 재산 과시나 배금주의 등 불량한 가치관을 퍼트리거나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타락한 생활을 자랑하는 경우
- 54) ‘팬덤’의 난맥상과 불량한 팬 문화를 보여 주고, 인기 지상주의, 기형적인 심미관, 지나친 연예인 추종, 팬들의 비이성적인 발성과 응원, 스타 스캔들 등을 부풀리고 선동하는 경우
- 55) 상실의 문화⁵¹⁾나 자살 놀이를 선전하고 퍼뜨리는 경우
- 56) 불륜이나 원 나이트 스탠드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 (15) 잔혹한 폭력이나 추악한 행위, 무서운 장면을 과장해서 묘사하는 내용
- 57) 조직폭력배 간의 흥기를 사용한 집단 난투나 살인, 폭력을 수반한 빗 독촉, 조직 세력원 모집, 청부 살인 등 흉포한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 58)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죄 과정 및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경우
- 59) 마약 복용 후 극도로 흥분한 생리학적 상태나 기괴한 표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거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각종 마약 복용 도구 및 복용법을 보여주는 경우
- 60) 저속한 행위나 심추 문화⁵²⁾를 자세히 보여주는 경우
- 61) 슬롯머신, 동전 뽑기 게임기, 사행성 낚시 게임기, 게임기 점수 조작기, 게임기 불법 조작기 등 도박 기구와 사기도박 트릭과 트릭 파괴 기술 등 도박 기술과 행위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경우
- 62) 과도한 생리적 고통과 정신적 히스테리를 표현한 화면이나 대사, 음악 및 음향 효과로 일반적인 시청자의 감각과 정신에 강렬한 자극을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공포, 초조함, 혐오감, 역겨움 등 불편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 63)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행위나, 극단적인 복수심과 행동을 널리 선전하는 경우
- (16) 음란한 내용을 보여주거나 저속한 취향을 과장해 묘사하거나 불건전한 비주류 결혼관을 퍼트리는 내용
- 64) 매춘, 성매매, 음란행위, 강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 혹은 신음, 성행위 시의 교성 등을 소리나 특수 효과로 삽입한 경우
- 65) 영상 중에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정보를 미끼로 한 광고를 삽입한 경우
- 66) ‘홍등가’나 성매매 서비스가 있는 야간 유흥업소, 목욕탕, 안마방을 엽기적인 것을 널리 퍼트리는 식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경우
- 67)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성행위를 표현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 68) 불건전하며 주류에서 벗어난 연애편, 결혼관이나 그에 해당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퍼트리는

51) 상실의 문화(喪文化): 90년대 이후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현상으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킴

52) 심추문화(審丑文化): 엽기적이거나 추한 것, 저속한 것을 감상하는 문화 현상

경우

- 69) 단순한 감각 기관의 자극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키스나 애무, 사위 및 이와 유사한 행동을 자세히 보여주는 경우, 명백한 성적 도발, 성희롱, 성적 모욕 또는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화면, 대사, 음악 및 음향 효과 등이 들어간 경우, 남녀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오직 손 등 신체나 작은 가리개만을 사용해 가리거나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
- 70)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상스러운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 71) 우회적이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성행위나 성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 72) 성인 영화나 예로 영화에서 심의로 삭제된 내용의 영상을 영상 제목이나 분류, 홍보 수단에 ‘완전판’, ‘무삭제판’, ‘삭제 장면’, ‘취합판’이라는 문구를 넣어 배포하는 경우
- 73) 몰카, 벗김, 노출 등 도발적이고 연상 작용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각종 문구나 사진을 영상의 제목이나 분류, 홍보 수단에 넣어 배포하는 경우

(17) 타인을 모욕, 비방, 비난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내용

- 74) 역사 속 인물 및 실제 인물의 이미지와 명예를 모욕, 비방, 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는 경우
- 75) 다른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패러디하여,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거나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76) 타인의 직업, 신분, 사회적 지위, 신체 특징, 건강 상태를 모욕하거나 폄하하는 경우

(18) 사회의 공중도덕에 위배되거나 저속하고 졸렬하며 지나치게 흥미 본위인 내용

- 77) 중대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 테러, 전쟁 등 재난 장면을 악의적으로 패러디해 묘사하는 경우
- 78) 폭행이나 타인에 대한 모욕, 저속한 말을 찬성·긍정적인 태도로 다루거나 모방하여 표현하는 경우
- 79) 내용이 천박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80) 자선이나 기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타인의 비참한 상황을 날조하거나 부풀려 가짜 자선 행위와 거짓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경우

(19)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내용

- 81) 미성년자의 이른 연애와 흡연, 폭음, 싸움, 마약 남용 등 불량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
- 82) 인물의 형상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괴상하여 미성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83) 미성년자를 이용해 불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 84)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경우

(20) 역사 속 침략 전쟁과 식민지 역사를 선전하고 미화하는 내용

- 85) 파시즘,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 차별주의를 미화하고 퍼트리는 경우
- 86) 옳고 그름의 분별 없이 잘못된 입장에 서서, 침략 전쟁 당시 정의롭지 못한 일방의 침략 행위는 무시하거나 등한시한 채 정의로운 일방의 일부 잘못만 부각시키는 경우
- 87) 식민주의 색채를 띤 어휘나 명칭,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

(21) 기타 국가의 관련 규정과 사회적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내용

- 88) 정치적인 내용, 고전 문화, 진지한 역사와 문화를 지나치게 흥미 본위로 해석하거나 주류 가치관을 배제하고 주류 가치관에 ‘저급한 애국주의나 극단적 애국주의’를 입히는 경우
- 89) 반(反)중국, 반(反)공산당, 분열 획책, 사이버 종교, 테러 활동을 하는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또는 해당 조직이나 개인이 개설한 채널, 코너, 홈페이지, 계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 90)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및 중대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보건, 교육, 체육을 포함한 기타 중요하고 민감한 활동이나 사건에 관한 보도를 취재, 편집하고 전파하는 경우
- 91) 범죄를 저질렀거나 추문에 얽혀 있거나 악행을 저지른 자가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혹은 그러한 자에게 명분을 주는 경우
- 92) 규정을 어기고 국가의 방영허가를 받지 않은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영화와 드라마의 일부 혹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외국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일부를 방영하는 경우, 이미 국가에서 방송 금지 명령을 내린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일부를 방영하는 경우
- 9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일부를 잘라내거나 재편집하는 경우
- 9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 및 질병, 집, 혼인 관계, 사적 공간 및 사적 활동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경우
- 95)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이미 명시된 표지나 구호, 호칭, 용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
- 96)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고 국가 지정 보호 동물을 사냥하거나 먹는 경우
- 97) 개인이 소지한 살상력을 갖춘 위험한 규제 물품을 보여주는 경우
- 98) 가상화폐 ‘채굴’ 과 거래, 투기에 참여하도록 대중을 유인하거나 교사하는 경우
- 99) 프로그램 내에 불법이나 위법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삽입하고 속임수를 사용해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 100) 이 외에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76. 인터넷 라이브방송 후원 기준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제목	规范网络直播打赏 加强未成年人保护的意見
게재일	2022-05-07
출처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관공실, 문화여유부, 국가광파전시총국,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관공실, 문화여유부, 국가광파전시총국,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인터넷 라이브방송 후원 기준 및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라이브방송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터넷 산업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책임 부재, 인터넷 방송인의 자질 부족, 규범에 어긋난 후원 행위 등과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성년자가 인터넷 라이브방송에 중독되어 금전적 후원에 참여하는 등 미성년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대중의 강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라이브방송 산업의 규범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등 법률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업무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사항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견지하고 미성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문제 지향적 태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바로잡고, 본질적인 부분과 지엽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공동 관리한다. 대대적인 규범 정비를 통해 각 주체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기적으로 유효한 업무 관리 감독 시스템을 수립하여 생방송 산업의 질서를 적절히 확립하고, 좋지 않은 경향이나 업계의 무질서를 단호히 제지해 인터넷 라이브방송 업계의 질서 있고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여, 문명화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2. 업무 조치

(1) 미성년자의 생방송 후원을 금지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유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보호 메커니즘을 정비 및 개선하여 실명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현금 충전, ‘선물’ 구매, 온라인 결제 등 각종 후원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의 후원을 유인하는 기능이 담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선물’ 서비스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웹사이트 플랫폼이 위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후원 기능을 정지하고 생방송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한

다.

(2) 미성년자의 방송 진행을 엄격히 규제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진행자 계정 등록 및 심사, 관리를 강화하여,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방송 진행자 계정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만 16세에서 만 18세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위 ‘어린이 인플루언서’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계정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하고 해당 웹사이트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는다.

(3) ‘청소년 모드’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청소년 모드’는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선별을 거쳐, 미성년자가 시청하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기존 ‘청소년 모드’를 기반으로 상품 유형과 콘텐츠 노출 방식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생방송 콘텐츠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내용 심의 및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해당 업무 규모에 적합한 전담 심사팀을 배치해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하는 동시에 ‘줄렬하고 저속하며 세속에 영합하는’ 콘텐츠는 근절해 보호자의 안심과 자녀의 만족, 사회의 호평을 끌어내야 한다. ‘청소년 모드’의 기능 구성을 최적화해 첫 화면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보호자 감독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각종 ‘덕질’ 서비스 및 현금 충전, 후원 기능을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4) 전담 서비스 팀을 구성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용 고객 서비스 팀을 마련하여 미성년자와 관련 신고 및 분쟁을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적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도용하여 후원 행위를 한 경우, 웹사이트 플랫폼은 개인 정보 보호를 전제로 즉시 확인하여, 사실인 경우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후원 서비스를 제공한 웹사이트 플랫폼과 미성년자의 후원을 유도한 매니지먼트 업체 및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

(5) 주요 기능의 응용을 규제한다.

순위와 ‘선물’은 청소년의 ‘관람’ 활동을 유인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본 의견이 발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후원 순위표시제도를 취소하고, 후원 액수를 기준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순위를 매기거나 상위에 랭크된 진행자를 추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후원 액수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순위를 매기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선물’의 명칭과 외관 디자인을 강화하여 과대 전시나 특수 효과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신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온라인 안전 평가를 강화하여 후원 액수를 유일한 평가 지표로 삼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

(6) 인터넷 주요 이용 시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매일 20시부터 22시까지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중점 규제 시간으로, 이 시간대에 단일 계정 라이브 방송 룸의 ‘마이크 연결 PK53’ 횟수

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PK 벌칙’ 링크를 설정하거나 ‘PK 벌칙’에 대한 기술적 구현 방법을 제공해 미성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매일 22시 이후 ‘청소년 모드’ 환경에서 각종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고, 일반 모드로의 접속 방식을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인터넷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가 인터넷 윤리 의식과 행동 준칙, 인터넷 법치 개념과 행동 규범, 인터넷 사용 능력 구축, 개인재산의 안전 보호 등을 중점을 두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안전 의식, 문화 소양, 행동 습관 및 보호 기능 등을 함양하도록 장려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 미성년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과 시연,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미성년자의 시야를 넓히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정서를 함양하고,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도록 돕는다.

3. 조직 지도

(1) 사상 인식을 높인다.

각 부서의 각 플랫폼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표준화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이해하여 이를 중요한 업무 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무 조치를 구체화하고 개선해 각 임무와 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2) 총괄 관리와 협력을 강화한다.

주관 부서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입각해 각 영역 및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총괄 관리가 힘이 있고 협조가 원활하며 각 부서가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리 감독 협력시스템을 형성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아 해결 방법 및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각 방면의 책임을 공고히 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정 등록과 자격 심사, 일상 관리 및 규정 위반 처리 등에 관한 제도적 요구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매니지먼트 업체가 법에 따라 인터넷 라이브방송 조직, 생산, 마케팅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준법 의식을 키우고 종합적인 소양을 쌓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면서도 새 시대의 새로운 기상을 반영하는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교육 및 지도한다.

(4)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부서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에 대한 소통과 연구 분석을 강화하여 업무 정착을 촉진한다. 주요 웹사이트 플랫폼을 대상으로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감독 내용을 게시하여 기

53) 마이크 연결 PK(连麦PK):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다른 진행자의 라이브 방송 룸과 연결해 두 방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인기나 후원 액수 등으로 승부를 겨루는 행위

한 내에 시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상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따른 해결 조치와 방법을 적시에 연구하고 제안한다.

77.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 매니지먼트 업체 관리 방법

제목	广播电视和网络视听领域经纪机构管理办法的通知
게재일	2022-05-30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광전발[2022]34호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광파전시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문화체육광전여유국, 총국 기관 각 부문, 직속 각 단위: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 매니지먼트 업체 관리 방법>이 국가광파전시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기에 이를 배포하니 실무와 결합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국가광파전시총국

2022년 5월 20일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 매니지먼트 업체 관리 방법

제1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규범화하고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의 관리를 강화하며,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 및 온라인 영상 콘텐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라디오·TV 관리 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 <방송 편집 기자 및 아나운서 자격 관리 잠정 규정(广播电视编辑记者、播音员主持人资格管理暂行规定)>,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 규정(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등의 법률·법규에 의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란 방송 및 온라인 영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배우, 게스트, 진행자, 온라인 방송 진행자 등을 위해 계약, 홍보, 대리 등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저란 상술한 조직에서 매니지먼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및 개인으로 활동하는 매니저를 말한다.

제3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의 질서와 바른 풍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올바른 정치적 성향과 여론 유도 의식, 가치관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드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의 방송 행정 부처는 전국의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의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 정부의 방송 행정 부처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의 관리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정직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허위나 사기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가 매니저와 고용관계를 맺을 때나 매니지먼트 업체 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매니저가 서비스 대상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제공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7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대상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이 업무와 관련한 자격이나 업무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제8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할 때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가 미성년자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박, 유인 또는 매수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미성년자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가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법에 의거해 미성년자의 인권과 재산권, 교육권, 휴식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참여하면 심신 건강을 해칠 활동을 기획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서비스 대상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법률 및 법규의 시행에 저항하거나 이를 위반하도록 선동하는 내용 또는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왜곡·부정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및 주권과 영토 보전에 위해를 끼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가의 존엄과 명예,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테러리즘, 극단주의, 허무주의를 선전하는 내용
- (3)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폄훼하고 민족의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민족의 풍속을 침해하고 민족의 역사나 역사 인물을 왜곡하여 민족 감정을 해치고 민족 단결을 깨트리는 내용
- (4) 혁명 문화와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 희화화하거나 모독하고 부정하는 내용
- (5) 국가의 종교 정책을 위반하고 사이비 종교나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사회의 공중도덕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및 외설, 도박, 마약을 퍼뜨리거나 폭력, 공포를 과장되게 묘사하고, 범죄를 교사하거

나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또는 민족이나 국적, 지역, 성별, 직업, 신체 결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7)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내용

(9) 법률, 행정 법규, 부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의 내용

제11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는 업계의 특성에 따라 업무적인 필요를 충족할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업무 인원과 서비스 대상의 인원수 비율은 원칙적으로 1:10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서비스 대상의 공식 팬클럽, 후원회 등의 계정에 대해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계정은 매니지먼트 업체의 권한 부여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매니지먼트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관련 계정의 그룹 개설자나 관리자를 담당할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팬의 행동을 지도하고 규범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거나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활동과 집회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게시물 발표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하며, 팬들의 다툼을 유발하거나 팬들을 이간질하는 내용을 직접 게시하거나 광고 계정을 고용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후원 순위 매기거나 불법으로 클릭 수 올리기, 댓글 통제, 허위 사실 날조, 유언비어 공격 등의 방법을 이용해 홍보해서는 안 되며, 거짓 소비나 후원 리드 행위, 후원을 위한 모금 행위 등의 방식을 통해 팬들의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모델을 맡은 광고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위법한 내용의 광고 계약에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사실 그대로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에 정해진 납세와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서비스 대상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감독 및 경고, 협조해야 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하거나 탈세를 야기할 수 있는 규범에 어긋난 계약 방식은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제16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는 정기적으로 매니저와 서비스 대상에게 정책·법규 교육 및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해 정치적인 소양과 준법 의식, 직업윤리 및 직업 소양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 매니저는 의식적으로 학습에 힘써 끊임없이 지식을 새로 쌓고, 종합적인 소양과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이 정치사상 수준을 높이고 법치 의식을 확립하며,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전문 능력을 향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시에 상기시키고 이를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제17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서비스 대상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즉시 제지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마케팅을 중단하거나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 제작 업체나 방송 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유관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 매니지먼트 산업 협회는 업계의 자율 기제를 완비하고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 매니지먼트 업무의 특징에 맞게 업계의 규범과 자율 협약을 제정해, 업계가 주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신용을 쌓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업무 교류를 진행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업계의 발전 질서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19조 방송 행정 부처는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저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하고, 산업 협회와 매니지먼트 업체가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0조 방송 행정 부처는 필요에 따라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를 대상으로 본 방법의 이행 상황을 감독 및 점검해야 한다.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는 방송 행정 부처에서 법에 따라 감독 및 점검을 시행할 경우,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협조를 해야 한다.

제21조 방송 및 온라인 영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와 매니저에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팬 층’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 데이터 조작 행위, 사회 질서와 풍습에 위배되는 행위, 업계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송 행정 부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조사 및 처분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기록 및 공시를 해야 한다.

제22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했을 경우, 방송 행정 부서는 매니지먼트 업체의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 및 해당 매니저와 면담을 진행 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 및 온라인 시청각 분야에 관련된 법률 및 법규가 규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방송 및 온라인 시청각 분야의 매니지먼트 업체가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 규정(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에 의거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본 방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

78.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위 규범

제목	网络主播行为规范
게재일	2022-06-22
출처	국가광전총국,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광전발[2022]3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여유청(국), 광과전시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문화체육광전여유국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직업윤리를 확립하며,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광과전시총국과 문화여유부는 공동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위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제 이를 배포하니 상황에 맞게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국가광과전시총국 문화여유부

2022년 6월 8일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위 규범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과학·문화 지식을 보급하고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방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안고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직업윤리를 더 강화하고 업무를 규범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확립해 적극적이고 발전적이며, 건전하고 질서 있으면서도 조화롭고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공동으로 조성하기 위해 본 행위 규범을 제정한다.

제1조 인터넷 플랫폼 라이브 방송, 이용자와의 실시간 교류 활동, 음성 및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을 포함해, 인터넷으로 온라인 공연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진행자는 본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가상 앵커 및 콘텐츠는 본 행위 규범을 참조한다.

제2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법규,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산업 주관부처의 감독·관리와 사회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3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인터넷 실명제 계정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플랫폼에 협조하여 유효한 실제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실명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규범에 맞는 계정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 제4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바른 정치 성향 및 여론 의식, 가치 기준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회 공공 도덕을 존중하며, 직업윤리를 지키고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해야 한다.
- 제5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국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기상을 반영하고 국민의 새로운 창조력을 찬양하는 인터넷 공연 및 콘텐츠를 전파해,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긍정적 에너지를 퍼뜨리며, 참됨과 선함, 아름다움을 구현하여 행복한 삶에 대한 대중들의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 제6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건전한 품격을 유지하고, 저속하고 속물적인 저질 취미는 의식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인기 지상주의나 기형적인 심미관, 팬덤의 무질서, 배금주의 등 부정적 현상은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위법 행위나 인터넷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사이버 윤리에 위배되고 인터넷 화합을 해치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 제7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이용자들이 성숙하게 상호 교류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며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교양 있고 건전한 인터넷 공연 및 시청각 콘텐츠 생태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 제8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방송 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퍼포먼스, 의상, 화장, 언어, 행동, 몸짓 및 화면상의 모습 등에 교양과 품위가 있어야 하며, 대중들의 심미적 취향과 감상 습관에 부합해야 한다.
- 제9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개인과 법인의 명예권 및 영예권을 존중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초상권을 존중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제10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지식 재산을 자발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수입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제12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표준 문자와 표준 의미에 준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언어문화 소양을 쌓아 저속하고 폭력적인 인터넷 언어의 확산을 의식적으로 억제하고, 건전하고 교양있는 인터넷 언어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
- 제13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스스로 학습에 힘을 쏟아 방송 진행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에 숙달해야 한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성(의료나 위생, 경제와 금융, 법률, 교육 등)이 필요한 라이브 방송 콘텐츠의 경우, 진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 수행 자격을 취득하고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직무 수행 자격을 보고해야 한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자

격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 및 국가의 법률·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2. 국가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의 통일 및 주권, 영토 보전을 해치는 내용이나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또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존엄성과 명예,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3.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및 개혁 개방을 약화, 왜곡, 부정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4.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폄훼하고 민족의 증오심과 민족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이나 민족의 역사와 역사 인물을 왜곡하고 민족 감정을 해치며 민족의 단결을 깨뜨리는 내용, 또는 민족의 풍습이나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5. 국가의 종교 정책을 위반하고 종교적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하거나, 종교 극단주의나 사이비 종교 등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6.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패러디, 폄훼, 왜곡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행위
7. 영웅 열사나 모범적인 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패러디, 왜곡, 희화화, 모독, 부정하는 행위
8. 얼굴 합성 등 딥 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당과 국가의 지도자나 영웅 열사, 공산당 역사, 중국 역사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9. 군대나 경찰, 판사 등 특정 직업이나 계층의 대외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
10.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직업,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11. 음란물, 도박, 마약을 전파하거나, 폭력, 공포, 다단계, 사기 등을 부각해 묘사하고,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방법을 전수하고 수사 수단을 노출하는 행위 또는 총기나 규제 무기류를 보여 주는 행위
12. 거짓 테러 소식이나 허위 위협 상황, 전염병, 재해, 사건 소식 등을 날조하고 고의로 퍼뜨려 사회의 치안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
13. 과도한 공포나 생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히스테리를 표현한 화면이나 대사, 음악이나 음향 효과 등으로 감각과 정신을 강렬히 자극해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14.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15.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16. 사회적 이슈나 민감한 문제를 과장해 다루거나, 의도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
17. 스캔들이나 추문, 악행을 과장해 다루거나 품격이 떨어지는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및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

18. 의상이나 화장, 언어, 행동,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의 인테리어 등으로 성적인 암시나 성적인 도발을 드러내는 행위
19. 자살이나 자해, 폭력, 위협한 동작 및 미성년자의 모방을 유발하는 기타 위협한 행동을 소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흡연이나 폭음 등 미성년자를 나쁜 습관으로 유도할 만한 내용을 표현하는 행위
20.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캐릭터를 이용해 광고 류 외의 상업적인 홍보·공연을 진행하거나 이들을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 상업적 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잘못된 가치관·인생관·도덕관으로 유도하는 행위
21. 봉건적인 미신 문화 풍습, 사상과 과학 상식에 위배되는 내용 등을 퍼트리는 행위
22.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고 국가 보호 동물을 사냥하거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
23. 길치레를 위해 음식 낭비하거나 거짓으로 먹기, 억지로 토하기, 폭식하기를 비롯해 기타 잘못된 음식 소비와 음식 낭비를 유발할 만한 시범을 보이는 행위
24. 이용자들의 저속한 상호 교류를 유도하거나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팬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5. 위조품,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인적·물적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마케팅하거나, 거래, 관심도, 조회 수, 좋아요 횟수 등의 데이터를 허위로 꾸며 내거나 조작해 인기를 부풀리는 행위
26. 과장된 선전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거짓된 약속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허가받지 않고 독점 판매 물품 등을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해 광고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7. 탄막⁵⁴⁾이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의 명칭, 공지, 음성 등을 통해 허위 및 스팸 광고를 유포하는 행위
28. 조직적인 노이즈 마케팅, 여론몰이용 인력을 고용해 후원⁵⁵⁾하기, 후원 시 상품 추천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기 등의 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거액을 후원하도록 암시, 유인, 장려하는 행위, 또는 미성년 이용자의 후원을 유도하거나 거짓 신상 정보를 이용해 후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9.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질서와 생활 질서에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나 기타 법률·법규로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 또는 방송을 하는 행위
30. 다량의 사치품, 보석, 현금 등의 자산을 보여주거나 이슈화하는 행위, 무절제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거나 저소득층을 비하하는 재산 과시 행위
31. 법률과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인터넷 공연 및 시청각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타의 행위

제15조 각 급의 문화여유 행정 부서와 광과전시 행정 부서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

54) 탄막(彈幕): 영상 화면에 올라가는 실시간 댓글

55) 후원(刷禮物, 打賞): 온라인 크리에이터나 온라인 방송 진행자, 콘텐츠 게시자에게 보상으로 선물이나 현금을 주는 것을 지칭함

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영상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업체,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주관의 책임과 주체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영상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한다.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업체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관련 상황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규범 업무를 표준화하고 문화여유 행정 부서와 광파전시 행정 부서의 자격 관리 및 통상 관리, 안전 검사, 콘텐츠 업로드 관리 시찰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16조 각급 문화여유 행정 부서, 광파전시 행정 부서, 문화 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은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업체에 대한 법 이행 상황 순회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단속 하며,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업체가 불법 콘텐츠 및 관련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즉시 조 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매니지먼트 업체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주체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본 행위 규범에 따라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교육과 훈련 및 통상 관리와 규범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방송 개설과 훈련, 통상 관리, 업무 평가 파일 및 '경고제 관리' 등 내부적인 제도와 규범을 수립 하고 개선한다. 발전적이고 선을 지향하며, 행위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긍정적 동기 부여를 주고,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는 경고와 단속을 강화한다. 문제의 성질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여러 차례의 지도에도 개선이 안 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경우, 계정을 막고 해당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블랙리스트'나 '경고 리스트'에 올려야 하며, 계정 변경이나 플랫폼을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법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은 공개 적으로 문예 공연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무대를 바꿔 복귀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터넷 공연 및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매니지먼트 업체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법률에 따라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8조 모든 관련 산업 협회는 지도를 강화하고, 본 행위 규범에 근거해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신용 평가 체계를 수립·정비하고 업계의 규범과 자율적인 협약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과 방송 진행자 간의 규제 관계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윤리 심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훈련과 지도 서비스를 강화해 바른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고 업계의 표준화 발전을 촉진한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모든 플랫폼이 공동으로 배척 하고 엄격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79.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규정 (의견 수렴안)

제목	广播电视和网络视听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征求意见稿）
게재일	2022-08-08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국무원의 ‘방관복⁵⁶⁾’ 개혁 정신을 철저히 실천에 옮겨,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의 제작·경영 활동을 더 규범화하고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며,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만족시키고자, 우리 부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규장 제정 절차 조례(规章制度程序条例)>에 근거하여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 규정(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원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령제34호)의 개정 작업을 토대로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회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 일반인은 다음의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중국 정부 법제 정보망(www.moj.gov.cn / www.chinalaw.gov.cn)에 로그인해, 메인 페이지 메뉴의 ‘입법 의견 수렴’에 들어가 의견을 제출한다.
2.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푸싱먼와이거리 2호 국가광파전시총국 정책법규사(100086)
3. 이메일로 의견을 발송한다. 주소: zcfgs@nrta.gov.cn
4. 팩스로 의견을 발송한다. 번호: 010-86093288

의견 수렴 기간은 2022년 9월 8일까지이다.

첨부파일:

1.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pdf
2.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에 관한 설명.pdf

국가광파전시총국
2022년 8월 8일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제1장 총칙

56) 방관복(放管服): 2015년 처음 제시된 행정개혁 지침으로,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관리 감독의 개혁 및 경쟁 촉진, 서비스 효율 상승 등을 골자로 함

제1조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대중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방송 TV 관리 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 등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뉴스 프로그램, 종합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라디오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드라마, 웹 드라마 등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급 등 제작·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와 관련한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광고 프로그램 제작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구는 <광고법(广告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의 관리에 근거해 제작과 경영 등의 활동을 한다.

제3조 국가광과전시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전국의 프로그램 제작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구도를 짜며 전국의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을 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방송 주관 부문은 해당 행정 구역 내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의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경영하거나 타인으로 조직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제작·경영하는 경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타인으로 조직을 구성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 <드라마 제작 허가증(电视剧制作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기관이 타인으로 조직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제작·경영하는 경우,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한 국가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해외의 조직이나 개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프로그램 제작·경영을 할 수 없으나,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프로그램 제작 산업 단체는 법에 따라 업계의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 종사자의 직업 훈련을 강화하며, 산업 주체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며, 직업 도덕을 지키고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유도해, 깨끗한 업계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2장 허가 규범

제7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국가의 프로그램 제작 산업에 관한 발전 계획과 구도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독립된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장 명칭과 조직체 및 정관이 있음
- (2) 업무 범위에 적합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함
- (3)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 국민이어야 함

- (4) 최근 3년 내 업체 및 그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신용 상실 행위 기록이 없음
- (5)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갖추

제8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신청 시, 신청 업체는 승인 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 보고서
- (2) 업체 정관
- (3)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신청 표
- (4) 주요 인력의 이력서 등 자료

제9조 베이징에 있는 중앙 단위 및 그 직속 기구에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면 광전총국은 성(省)급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 위탁하여 심사 및 허가한다. 다른 기구에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면 소재지의 성급 인민 정부 방송 주무 부처에서 심사 및 허가한다.

승인 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하고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고 신청한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승인 기관은 허가를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 상황을 광전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이하 ‘프로그램 제작 경영 업체’)가 다른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에 프로그램 제작·경영을 하는 지점을 설립한 경우, 지점은 설립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원 승인 기관과 지점 소재지의 성급 인민 정부 방송 주무 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매니지먼트 업체가 연예인, 게스트,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을 할 경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 취득해야 한다.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타인으로 조직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경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 취득해야 한다.

<라디오·TV 송출 업체 허가증(广播电视播出机构许可证)>을 보유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혹은 타인으로 조직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별도로 신청해 취득할 필요 없다.

제12조 아래의 업체는 <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 제작·경영 업체
 - (2) 지시급⁵⁷⁾(포함) 이상의 방송 송출 업체
- <드라마 제작 허가증> 신청 시, 신청 업체는 승인 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 보고서

57) 지시급(地市级): 중국 공무원의 행정상 등급 중 청(厅), 국(局) 급에 해당하는 말

- (2) 신청 등록료
- (3) 신청 업체가 제작자·감독·작가·촬영·주요 배우 등 주요 제작 인력 및 협력 업체 (투자 업체) 등과 맺은 계약서 또는 계약 의향서 사본
- (4) 면허를 가진 업체의 제작비 집행 관련 자료

제13조 광전총국은 성급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게 위탁해 <드라마 제작 허가증>의 심사, 허가를 시행한다.

승인 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하고 <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고 신청한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제14조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과 <드라마 제작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과 <드라마 제작 허가증>은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의 형식이 있으며 양자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과 <드라마 제작 허가증>의 발급 현황은 광전총국에서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한다.

제15조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가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갱신해야 할 경우, 허가증의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원 승인 기관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원 승인 기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가 합병, 분할하거나 경영 범위, 법정 대리인, 자본 구조 등 허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 승인 기관에 알려 기존 허가 항목의 변경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 승인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가 업체 명칭, 소재지 등 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달 이내에 원 승인 기관에 해당 항목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 승인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16조 프로그램 제작,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업체는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과 <드라마 제작 허가증>에서 허가한 제작, 경영 범위를 엄격히 지켜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방송 송출 업체를 통해 송출되는 뉴스 프로그램(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 공무 및 속보 보도, 인터뷰, 평론 프로그램 등을 포함)은 방송 송출 업체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

제17조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주제와 장르, 형식, 수단을 혁신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해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드높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방송 주무 부처에서는 깊이 있는 사상과 뛰어난 예술성, 정교한 제작이 서로 어우러진

양질의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대중에게 환영받는 프로그램 형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8조 다음의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급을 금지한다.

-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법률·법규의 시행에 저항하거나 이를 파괴하도록 선동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왜곡·부정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및 주권, 영토 보전을 해치는 내용이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및 국가의 존엄성과 명예,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 허무주의를 선전하는 내용
 - (3)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폄훼하는 내용, 또는 민족의 증오심과 민족 차별을 부추기거나 민족의 풍습이나 관습을 침해하고 민족의 역사와 역사 인물을 왜곡해,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의 단결을 깨뜨리는 내용
 - (4) 혁명 문화나 영웅 열사의 업적과 정신을 왜곡·희화화·모독·부정하는 내용
 - (5) 국가의 종교 정책을 위반하고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사회의 공중도덕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는 내용이나 음란물·도박·마약을 전파하거나 폭력·공포를 부각해 묘사하고,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또는 인종·국적·지역·성별·직업·신체적 결함·정신적 결함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 (7)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법률·행정 법규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위의 내용이 들어간 프로그램의 제작·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상술한 내용이 들어간 프로그램에 매니지먼트나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프로그램 제작·경영에 종사하는 업체는 감독이나 작가, 배우, 게스트, 성우, 진행자, 라이브 방송 진행자 등 주요 제작 인력을 선정할 때 정치적 소양이나 도덕적品行,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배우나 게스트 등은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나 역할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경영에 종사하는 업체는 광전총국의 관련 지도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의 배분 비율과 주요 제작 인력의 보수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주요 제작 인력의 보수가 프로그램의 사회적 효익 및 경제적 효과와 서로 연계되는 보수 구조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방송 주무 부처는 프로그램 제작비의 배분과 주요 제작 인력의 선정 및 보수 현황 등을 프로그램의 평가와 추천 및 자금 지원 업무 등의 중요 척도로 삼아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비 배분 비율과 주요 제작 인력의 보수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방송 주무 부처에서 해당 프로그램 및 제작 주체의 콘텐츠 품질, 종사 자질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20조 프로그램 제작·경영이나 매니지먼트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프로그램 제작 인

력의 개인 정보를 법에 따라 수집·처리·사용해야 하며,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제작·경영 또는 매니지먼트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이 일반 대중 및 기타 산업 주체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 주제나 제작비, 시청률, 조회 수 등에 대해 거짓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홍보를 진행하거나, 일반 대중 및 기타 산업 주체를 기만하거나 오도해 정상적인 산업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21조 중요한 혁명 관련 소재나 역사 관련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 웹드라마 및 주요 이론 문헌 TV 프로그램⁵⁸⁾ 등의 제작은 광전총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제22조 방송 송출 기구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기구 등은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또는 <라디오·TV 송출 기구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배급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드라마나 TV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는 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에 대해 통상적인 관리·감독과 특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업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는 프로그램 제작·경영상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 및 정비해야 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나 제보를 접수한 방송 주관 부처는 법에 따라 즉시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4조 본 규정의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하고 허가 없이 프로그램을 제작·경영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서 <방송 TV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서 <방송 TV 관리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또는 <라디오·TV 송출 기구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체가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서 <방송 TV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8) 이론 문헌 TV 프로그램(理论文献电视片):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론을 선전하고 해설하거나 공산당과 국가의 역사적 사건들을 선전하기 위한 TV 프로그램으로 보통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함

제27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나라도 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나 통보 비평⁵⁹⁾을 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본 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한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거나 마땅히 인지해야 함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경영에 참여하거나 매니지먼트,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2) 본 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배급한 경우
- (3)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혹은 <라디오·TV 송출 기구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배급하거나, <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주체가 제작한 드라마를 배급한 경우
- (4)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거짓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홍보를 진행하거나, 일반 대중이나 기타 산업 주체를 기만하거나 오도한 경우
- (5) 기만, 매수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 (6)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이나 <드라마 제작 허가증>을 변조·임대·양도·판매·위조한 경우

업체가 제(5)호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원 승인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나라도 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관 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경고를 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 프로그램 제작·경영 업체가 규정된 기한 내에 지점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 (2) 주요 제작 인력을 부적절하게 선정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제29조 프로그램 제작·경영이나 매니지먼트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 사용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업체나 개인이 감독·점검을 책임지는 방송 주무 부처에 관련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 또는 활동 상황을 반영한 실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이상 인민 정부의 방송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나 통보 비평을 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현금 이상의 인민 정부의 방송 주관 부처는 징계나 처분을 받은 단위의 주무 부처 또는 처분을 내릴 권리가 있는 단위에 상황을 통보하고 관련인의 처분이나 처리를 건의할 수 있으며, 후속 처분이나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다.

59) 통보 비평(通报批评): 징계의 일종으로 서면으로 잘못을 통보하고 비평하는 것

제5장 부칙

제32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관리 규정>(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령 제34호)는 폐지한다.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에 관한 설명

1. 수정의 필요성

기존의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령 제34호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 규정> (이하 ‘34호령’)은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 활동의 규범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올바른 방향성 견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번영과 발전 촉진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방송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방송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의 제작과 경영 업무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기에, 34호령을 개정하여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의 제작·경영 활동에 있어 사전, 사후를 포함한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감독 조치를 더욱 개선하고,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산업의 질 높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정의 주요 내용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 규정>의 개정을 토대로 <라디오·TV 및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 규정(의견 수렴안)> (이하 의견 수렴안)을 마련하였다. 34호에 대해 의견 수렴안의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제작·경영 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관리 대상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요구에 따라 웹드라마 등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을 관리 범위에 포함하고, 매니지먼트 업체나 온라인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등 프로그램 제작·경영에 종사하는 주체를 비롯해 타인으로 조직을 구성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주체까지 관리 범위에 명확히 포함했다.
- (2) 프로그램 제작·경영 행위 규범을 보완하였다. 산업 조직 및 산업 주체에게 자율을 요구하고, 프로그램에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보수액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시청률이나 조회 수 등의 거짓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3) 행정 허가 설정 측면에서는 국가의 ‘방관복’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행정 허가의 위탁 실시, 단계별 심사 절차 취소, 드라마 제작 허가 합병, 허가 조건 명확화, 신청 자료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최적화를 진행했다.
- (4) 프로그램 제작·경영의 위법 행위 처리를 보완하였다.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방송 행정 부서의 관리 책임, 업체 및 개인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했고, 위법 행위의 신고·제보 제도를 명시했다. 법률적 책임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관한 처벌 조치를 명확히 했다.

80. 미니 웹 드라마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 시행 업무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微短剧管理实施创作提升计划有关工作的通知
게재일	2022-11-14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미니 웹 드라마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 시행 업무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광파전시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문화체육광전여유국, 중국인터넷시청각 프로그램서비스협회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인터넷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영상 촬영 제작 기술이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롱폼·숏폼 동영상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편당 몇십 초~15분 분량에, 주제와 설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줄거리에 연속성과 완결성을 갖춘 미니 웹 드라마가 낮은 제작비와 가벼운 내용, 세분화된 타깃층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특수한 예술 형식과 비즈니스 모델, 배급 방식을 가진 새로운 인터넷 문예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광파전시행정관리부서에서는 롱폼 동영상 플랫폼의 VOD 서비스 및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계정별 추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미니 웹 드라마를 대상으로 관리와 지도를 계속 강화하고 전문화·고품질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 미니 웹 드라마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새로이 등장한 ‘미니 APP⁶⁰⁾’ 형태의 미니 웹 드라마가 기술적인 수단을 악용해 관리·감독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미니 웹 드라마는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서운 기세로 발전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류 작품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⁶¹⁾’ 악영향을 미쳐 인터넷 동영상 배급 질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니 웹 드라마의 모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미니 웹 드라마의 관리 강화와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의 시행에 관한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전반적인 요구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⁶²⁾ 사상을 길잡이로 삼아 당의 20대정신⁶³⁾을 심층적으로 학습 및 실천하고, 미니 웹 드라마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문화 상품으로서의 속성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잘 파악해, 올바른 정치적 방향 및 여론 흐름, 가치 취향, 심미관을 고수하도록 한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제작 방향을 견지하고, 미니 웹 드라마와 홍보 마케팅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주도적으로 접목하여, 관객의 정신적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을 출발점이자 목표로 삼아, 사회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미니 웹 드라마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60) 미니 APP(小程序): 위챗 등 어플 내에서 별도로 동작하는 미니 프로그램을 가리킴

61)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다(劣币驱逐良币): 그레섬의 법칙이라고도 하며, 불량한 제품들이 좋은 제품을 몰아내는 현상을 가리킴

62)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념으로, 2017년 처음 주창됨. 국가 관리하에서 자본주의 제도가 시행되는 경제 체제라는 특색을 갖는 중국식 사회주의임

63) 20대정신(二十大精神):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주창한 내용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강조한 여러 원칙을 가리킴

번영과 발전을 추진한다.

2. 관리 원칙

당이 미디어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량개소유⁶⁴⁾’의 요구를 확고히 이행하고 이데올로기 교육 책임제를 실천한다. 또한, 발전과 안정, 활력과 질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규제와 활성화, 원칙 수호와 부담 완화 양쪽을 모두 중시한다. 미니 웹 드라마 및 웹 드라마, 웹 영화를 동일한 표준과 척도에 의거해 관리하며, 미니 웹 드라마 제작 및 배급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 단계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작품은 장려하되 나쁜 작품은 처벌하고 시장을 정화해 미니 웹 드라마의 배급 질서를 지속해서 표준화하고 콘텐츠의 질을 꾸준히 향상한다.

3. 주요 시책

(1) ‘미니 APP’ 형태의 미니 웹 드라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확실히 엄격하게 진행한다.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 수준이 낮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이 담긴 ‘미니 APP’ 형태의 미니 웹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각 성(省)급 광파전시관리부서에서는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상황별 대책을 마련해, 관할 구역 내 ‘미니 APP’의 접속 및 배포가 가능한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검열 및 개선을 즉시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한다. 문제가 있는 미니 웹 드라마는 시정 명령이나 배포 금지 처리를 하고, 규정을 어긴 미니 웹 드라마를 배포하는 ‘미니 APP’ 및 그 운영 주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링크 끊기, 배포 중지, 등록 취소, 서비스 접속 중지, 관련 허가 취소, 공동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내부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느슨하고, 안전상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비교적 크며 문제점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니 APP’을 접속·배포하는 플랫폼은 법률·법규에 의거해 집중 관리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추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질 좋은 미니 웹 드라마의 추천을 늘려 더욱 깨끗한 인터넷 동영상 시청 환경을 조성한다.

(2)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제작 업그레이드 계획을 실시한다.

① 법률·법규에 의거해 관리한다. 미니 웹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각 주체 및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관리의 일관성 원칙을 준수해 통합 관리를 실행한다. 미니 웹 드라마 형태의 ‘미니 APP’을 포함한 미니 웹 드라마 서비스 운영 주체는 <정보통신망 시청각 프로그램 배포 허가증(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을 취득하거나 규정에 따라 광파전시행정관리부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미니 APP’ 제공자 및 접속·배포 플랫폼은 국가의 모바일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미니 APP’ 형태의 미니 웹 드라마를 포함해 인터넷으로 배포되는 모든 미니 드라마는 광파전시행정

64) 량개소유(两个所有): 여론 동원 기능이 있으며 미디어의 속성을 갖는 모든 플랫폼과 미디어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원칙을 가리킴

관리부서의 콘텐츠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와 더불어 <웹 영화·드라마 배급 허가증(网络剧片发行许可证)>을 취득하거나 웹 영화·드라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시청각 프로그램 배포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광파전시행정 관리부서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미니 APP’ 형태의 미니 웹 드라마, 혹은 이용자 개인이 올린 미니 드라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측에서 자신들이 접속을 제공하거나 배포, 링크 연결, 취합, 배급한 미니 웹 드라마 등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 주체 또는 제작 업체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전 심사 후 방영하는 관리 제도를 구현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한 미니 드라마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링크 끊기, 배포 중지, 접속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작 기획 지도를 강화한다. ‘내용이 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방송 매체나 전문 기구로부터 미니 웹 드라마 창작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긍정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주요 미니 웹 드라마의 프로그램 기획 정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주요 미니 웹 드라마는 국가광파전시총국이 통합적으로 등록하고 공시하는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투자자가 추천하는 경우
- 롱폼·숏폼 동영상 플랫폼이 PC나 모바일 등 각 단말기의 메인 페이지에 추천 영상으로 방영하거나 전용 코너 상단에 고정 방영하는 경우
- 회원 우선 관람이나 유료 관람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미니 웹 드라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주체적인 책임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심사·감독을 강화하도록 성(省)급 광파전시행정관리부서에서 지도한다.

③ 주요 드라마의 밀착 지도를 강화한다. 주요 미니 웹 드라마를 대상으로 월별, 분기별, 연도별 밀착 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당과 국가의 중대 의제 홍보 및 주요 시점에 초점을 맞춰 전국의 주요 미니 웹 드라마 제작 리스트를 유동적으로 입안, 조정 및 보완한다. 우수한 인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할당하고 주요 작품 창작 지도 의견에 대한 피드백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적시에 제작 업체에게 경고 및 리스크 예보를 발송한다.

④ 우수 작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지도 정례 회의, 우수 작품 제작 지원 등의 제도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니 웹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격려와 동기부여가 되는 인물이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돕는다. 미니 웹 드라마를 하위 프로젝트로 삼아, 국가광파전시총국의 인터넷 시청각 우수 작품 창작 전파 사업이나 ‘중국몽’을 주제로 한 우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공모 및 배포·상영 사업, 분기별·연도별 우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추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한다. 사상성, 참신성, 예술성, 문화성 측면에서 비교적 수준이 높은 미니 웹 드라마는 인터넷 영화·드라마의 콘텐츠 심의, 허가증 발급, 보조금, 수상 심사 평가, 문예 비평, 알고리즘 추천 등 각 방면으로 지원한다.

⑤ 콘텐츠 심사를 강화한다. 미니 웹 드라마의 가이드, 제목, 내용, 심미성, 인력, 출연료, 홍보, 방영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특수한 소재를 다루는 인터넷 웹 드라마는 규정에 따라 유관 부서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구하게 한다. 성(省)급 광파전시주관부서로부터 온라인 등록 번호 또는 <웹 영화·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심사·발급받은 미니 웹 드라마가 홈페이지(PC 클라이언트) 메

인 페이지에 추천으로 방영되거나 전용 코너 상단에 고정 방영되는 경우 유관 규정에 의거해 국가광전총국에서 총괄 관리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되거나 연결 링크가 걸려 있는 미니 웹 드라마를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 재심사, 등록, 등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발견된 프로그램이나 계정은 단호히 정리하고, 문제가 있는 플랫폼의 경우 단호히 시정 조치한다.

⑥ 구조화된 관리를 강조한다. ‘소재 다양화, 구조 최적화, 품질 향상, 수량 축소’라는 노선에 따라 주요 미니 웹 드라마 방영 플랫폼에 업로드된 미니 드라마를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방영 관리 체제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이 종류에 따라 개별 플랫폼 및 전체 플랫폼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어떤 형태로 노출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인 페이지나 전용 코너, 히트 차트 등 중요한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여 문제가 있는 작품이 배포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동일한 소재의 콘텐츠가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주제별 우수 작품이 널리 보급되도록 돕는다. 방영 플랫폼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우수 미니 드라마 코너, 특별 카테고리, 특별 코너 등을 개설하고, 미니 드라마 브랜드 코너를 만들어 우수한 미니 드라마 프로그램의 호감도를 높이도록 독려한다.

⑦ 허가증을 엄격히 발급한다. 중국 웹 영화·드라마 배급 허가 서비스 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해, 요구와 조건에 부합하는 미니 웹 드라마를 대상으로 <웹 영화·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획득한 작품이 온라인으로 방영될 경우, 작품 시작 시 잘 보이는 위치에 통일된 로고와 허가 번호를 표시해 대중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온라인 방영 기간 내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웹 영화·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니 웹 드라마는 메인 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퇴출한다.

⑧ 관리 마지노선을 준수한다. 각 성(省)급 광파전시행정관리부서는 ‘주관하는 부서가 책임을 진다’, ‘심사·결제한 부서가 관리·감독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제작 업체에 대한 정치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생산, 심사 등 각 단계에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미니 웹 드라마의 관리에 ‘빨간 불’을 밝히고, ‘빨간 선’을 그어,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영을 엄금하고, 역사 허무주의⁶⁵⁾적 창작 경향을 엄격히 배격한다. 또한 ‘겉으로만 사상적으로 올바른 척’하거나 ‘합리성이라는 외표하에 당과 국가를 저격하는’ 문제를 엄격히 예방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종합적인 관리 강화 요청을 철저히 실행하고, 연예인을 추종하는 행위, 미디어 조작으로 연예인을 만드는 행위, 과도한 희화화, 왜곡된 심미관, 범죄를 저지르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는 연예인, 재력 과시나 배금주의, 현실성 없는 내용 등의 문제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⑨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다진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도록 감독하고,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이용자 개인이 업로드하거나 접속 및 배포하는 ‘미니 APP’ 형태의 미니 드라마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미니 웹 드라마의 콘텐츠 심사 및 규범화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총괄 편집 책임제, ‘삼심제(三審制)’, 콘텐츠 심의 인력 양성 등 각종 제도와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플랫

65) 역사 허무주의(历史虚无主义): 역사의 발전 과정 및 역사적 관점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중국의 사회주의나 공산당을 부정하는 행위로 여겨짐

품 내 문제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심사 및 후속 조치하는 능력을 높인다. 기획 보고, 작품 심사, 상영 관리, 비상 상황 관리·통제 등의 규정을 구체화한다.

⑩ 업계의 자율 규제와 업무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문가 집단은 제 역할을 발휘해 미니 드라마 제작의 방향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비롯해 육성, 비평을 강화함으로써 제작 업체의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다. 인터넷 시청각 협회 등 사회단체가 가교 구실을 해, ‘미니 APP’의 미니 드라마 방영 행위 규범 및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 간행물 발표나 리스크 예보, 위반 예시 및 법규 이해를 위한 실례 발표, 업계 자율 규약 및 공익 제안서 발표 등의 방식으로 상벌을 명확히 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려 업계의 합의와 협력을 도출해 미니 웹 드라마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광파전시총국의 <라디오·TV와 인터넷 시청각 영역의 매니지먼트 업체 관리 방법(广播电视和网络视听领域经纪机构管理办法)>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MCN⁶⁶⁾ 업체의 지도와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니 웹 드라마 제작 행위를 규범화하고, 젊은 인재 배양과 양질의 콘텐츠 공급, 긍정 에너지 전파를 촉진한다.

4. 조직의 지도력 강화

(1) 당의 문예 관련 방침과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본을 지키되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정치 선도와 사상 건설·방법 지도를 강화한다. 책임과 권리 주체를 일치시키고 직급에 따라 책임을 부여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니 웹 드라마 관리 업무 책임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이데올로기 교육 책임제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인터넷상의 이데올로기적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며, 미니 웹 드라마의 위험 여론 예측, 회의를 통한 연구와 대책 마련, 즉각적인 조정 및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한다. 교육 경험을 실시간으로 종합해 통합적으로 계획 및 조정하고 대응 조치를 보완·정비하는 한편 정책과 관리를 위한 틀을 다양화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방법을 병용해 전체 전략을 잘 이끌도록 한다.

(3) 관할지 책임 관리를 이행하고, 미니 웹 드라마의 제작 업체와 방영 업체가 콘텐츠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지도 및 독려한다. 현장에 밀착해 관할 구역 내 미니 웹 드라마의 안전한 발전에 있어 마주하는 돌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의 목적성과 과학성,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고품질 미니 웹 드라마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획과 지도, 조직, 점검, 조정, 보증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지한다.

국가광전총국 판공청

2022년 11월 14일

66)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인터넷 방송인이나 크리에이터들을 광고주와 연결해 주거나 콘텐츠 유통, 저작권 관리 등을 대리해 주는 일종의 기획사

81.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경영 활동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规范网络演出剧（节）目经营活动推动行业健康有序发展的通知
게재일	2023-01-17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경영 활동 규범화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여유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여유국

최근 몇 년 동안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일부 단위는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 형식으로 제공하고 공연(프로그램) 형식을 혁신하여 인터넷 문화 산업을 풍요롭게 하고 대중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켰다. 이에 시장 질서를 더욱 표준화하고 새로운 형식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 및 법규와 ‘인터넷 문화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통지에서 말하는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이라 함은 공연(프로그램)을 인터넷(이동통신망, 모바일 인터넷 포함)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거나 오디오 및 비디오 형식으로 업로드 및 유통하여 형성된 인터넷 문화상품을 말한다. 공연(프로그램)에는 콘서트, 음악축제, 연극(희극, 연극, 오페라, 무용극, 뮤지컬 등 포함), 곡예, 서커스 및 토크쇼와 같은 공연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공연(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인터넷 문화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급 문화여유부서에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 범위에 대한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 (1) 해외에서 개최되는 공연(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경우
- (2) 녹화된 공연(프로그램)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 (3) 인터넷 배포를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공연(프로그램) 또는 가상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 (4) 인터넷을 통해 기타 공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업성 공연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단위가 수입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문화여유부

에 신고하여 콘텐츠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통과한 후에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연(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상업성 공연 허가를 받은 공연(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으로 재심사 또는 재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수의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단위가 동일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단위가 심사 또는 접수를 주도할 수 있고, 다수의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단위가 각각 심사 또는 접수할 수 있다.

수입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에는 출연자 중 해외 배우가 있거나 공연장 또는 녹화 장소가 해외이거나 가상 배우 및 가상 공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외국투자기관 또는 해외 관계자에게 귀속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 배우의 경우 해외 배우에 준하여 관리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의 자본을 포함한 기관은 외자 기관에 준하여 관리한다.

4.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에는 '인터넷 문화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운영 단위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콘텐츠 심사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의 콘텐츠 관리를 담당하며, 댓글, 탄막 등 이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생방송으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지연된 생방송으로 방송해야 하며,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콘텐츠에 문제가 발견됐을 시 조속히 차단하고,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5. 각 성급 문화체육부서는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및 법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요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법률 및 규정 위반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6.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단위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고품질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공연단체, 공연 대행사 및 공연장 운영 단위가 인터넷을 활용해 대중에게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연 개발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7. 관련 공연 산업 조직은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에 관한 업계 연구를 강화하고 업계 표준을 확립 하되 업계 자율을 수행하고 업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인재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인재 서비스 보장을 조정하고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82. 만기 출소자가 숏폼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제목	网络视听坚决抵制刑满释放人员通过短视频和网络直播博取流量
제재일	2023-01-22
출처	중국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만기 출소자가 숏폼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최근, 만기 출소자가 숏폼 동영상과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인기를 얻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출현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광둥성(广东省) 등 성·시의 광파전시국에 신속히 업무를 배정해 더우인(抖音), 콰이서우(快手), 웨이보(微博), 비리비리(哔哩哔哩), 샤오홍수(小红书), 텡쉰(腾讯) 등 주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바로 조사해 시정 조치하고, ‘만기 출소’라는 태그를 달고 사람들을 웃기거나 동정심을 유발해 인기를 얻은 불량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조치하였다.

2023년 1월 21일 밤까지 규정을 위반한 계정 222개를 적발해 조치하였고,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 3,345개를 삭제하였으며, 관련 게시물 207개를 블라인드 처리하였다. 해당 내용은 주로 복역 경험을 과시하고 교도소의 생활을 미화하는 내용이나 국가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내용, ‘복역 밈’을 이용한 코믹한 동영상, 만기 출소라는 ‘컨셉트’를 이용한 상품 홍보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였다.

이번 점검에서 각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은 심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와 통제를 하였다. 계정정보의 경우 관련 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별명, 자기소개, 배경 사진 등 기본 정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는데, 일례로 계정 아이디와 자기 소개란에 ‘만기 석방’, ‘출소’, ‘복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플랫폼 측은 해당 계정에 대해 강제로 계정정보를 초기화하고, 계정 정보 수정을 7일로 제한했다. 숏폼 동영상의 경우 사이트 내를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하여 글·사진·동영상 샘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규정 위반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확충·보완하고, 전용 식별 모델을 구축해, 만기 출소자 계정이 업로드하는 숏폼 동영상 전체에 수동 모니터링 및 심의를 실시한다. 인터넷 라이브방송의 경우, 관련 계정을 수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넣어 방송 습관 분석과 온라인 리스크 분석, 방송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및 판단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키워드의 경우, 검색어나 댓글 등을 중심으로 키워드 세트 83종을 수집·정리하여 직접적인 검색어, 검색 연관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키워드 조합이 걸리는 경우 자동 식별을 통해 수동 대기열로 정확히 이동시켜 규정을 위반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한다.

현재 텡쉰, 샤오홍수 등의 플랫폼은 이미 해당 사례와 관련한 공지를 내 건전하고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을 건설하겠다고 명확히 밝히는 한편, ‘만기 출소’를 컨셉트로 해 팬을 끌어모아 위법 행위로 끌어들이는 행태를 엄격히 단속하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해 위법 행위에 경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광파전시총국에서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어 법을 어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영상에 출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또한, 방송진행자나 게스트 선정 시 심사를 엄격히 하되 정치적 소양 및 도덕적 품행, 예술 수준, 사회적 평가라는 선정 기준을 지켜서 정치적 입장이 모호하거나 법률·법규를 위반한 사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 부도덕하고 비(非) 모범적인 사람은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중국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는 관련 공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한편, 해당 여론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전담 처리를 상시화해 주관자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만기 출소자의 법규 위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심의·관리 인원을 조직해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형사 사건을 저지른 전과자의 신분 식별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해당 인물이 인터넷으로 해로운 콘텐츠를 발표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83.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车载音视频管理的通知
게재일	2023-09-14
출처	국가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 정책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광전발[2023]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중앙 정부 직속 계획도시), 신장생산건설병단 라디오 및 텔레비전·공업정보화·시장감독관리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중앙방송총국,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기관, 각 관련 단위

자동차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은 대중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고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얻는 중요한 채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능형 네트워크 커넥티드 자동차에 차량용 무선방송 수신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수신 모듈이 추가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 형태와 시청각 소비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풍부해졌다. 그러나 개별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기관의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무선방송은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익성, 응급성, 보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가 법령의 원활한 소통과 이념적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송 수단이며 비상사태 시 대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위 있는 비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주류 이데올로기 여론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목소리와 비상정보가 차량 공간에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차량용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새로운 패턴의 여론을 형성하여 다양하고 개인화된 대중의 정신적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차량용 무선방송 수신 단말기 관리 표준화

- (1) 무선방송 수신 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한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국산 및 수입 자동차의 차량용 단말 장치에 무선방송 수신 모듈을 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한다. 무선방송 수신 모듈은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일반 기술 조건(车载音视频系统通用技术条件)>,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의 전자파 호환성 요구사항 및 측정방법(车载音视频设备电磁兼容性要求和测量方法)>과 같은 국가표준 및 관련 산업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무선 방송 주파수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선 주파수 분할 규정(中华人民共和国无线电频率划分规定)>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기업이 디지털 라디오방송(DRM) 및 FM 디지털 오디오 방송(CDR)과 같은 디지털 무선방송 수신 모듈의 구성을 촉진하고 기술 연구 및 개발을 늘려 무선 디지털 방송 제품의 형태를 풍부하게 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여 차량 내 방송 시청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한다.

- (2) 무선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한다. 지역 무선 방송국이 디지털 라디오 방송(DRM), FM 디지털 오디오 방송(CDR)과 같은 무선 디지털 방송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 빠른 전송, 넓은 커버리지, 안전 및 신뢰성을 갖춘 무선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의 전송 횟수와 신호 품질을 개선하여 대중에게 고품질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지역별, 프로그램별로 무선방송 송신국의 모듈러 동시 방송 및 동등한 커버리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아날로그 방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로 전환한다.
- (3) 차량용 무선방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차량용 무선방송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흑색 방송(黑广播)⁶⁷⁾’과 같은 불법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방송국 주파수 사용을 표준화하여 무선방송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한다.

2.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관리 표준화

- (1)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기관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부서에 <정보 인터넷방송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을 신청하고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자격을 취득하며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에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을 등록해야 한다.
- (2)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소스 공급을 강화한다. 각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및 융합미디어 센터가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기관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더 많은 주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설치 및 푸시하도록 독려한다. 중앙라디오방송총국의 ‘중국의 소리’ 라디오 프로그램과 ‘뉴스 채널 CCTV-13’의 TV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우선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소스로 차량용 인터넷 오디오 및 비디오 앱은 대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액세스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 (3)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차량 내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응용 소프트웨어만 차량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다. 불법 응용 프로그램 및 불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라디오 방송국’ 등의 이름을 불법 및 무단으로 명명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고 불법 차량 내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를 시정하고 차량 공간에서 주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확산을 촉진하고 차량 내 온라인 오디오 및 비디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한다.

67) 흑색 방송(黑广播): 정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불법 라이브 방송국을 의미함. 주로 불법 마약 및 위조 의약품 판매와 같은 상업활동에 사용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3.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운영 및 관리 표준화

- (1) 고품질 주류 미디어의 콘텐츠 제작을 늘린다. 각급 방송국과 융합미디어센터가 주류 미디어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식 현대화, 새로운 발전 이념, 사회주의 핵심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차량 내 오디오 및 비디오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품질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장려하여 주류 목소리를 통합하고 강화한다.
- (2) 중앙정부의 목소리가 원활하게 전파되도록 보장한다. 무선 방송 수신 모듈 또는 사전 탑재된 차량 내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APP의 대중화를 통해 차량 공간에서 주류 사운드의 전파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중앙 주류 미디어의 직접 전송 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조작 및 유해정보 삽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홍보 사상 및 문화의 안전지대를 보장한다.
- (3)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 플랫폼 관리를 표준화한다.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정치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며 유해한 사운드에 대한 프로그램 식별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기관이 풍부하고 다양하며 건전한 가치를 지향하고 대중이 좋아하는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조직 리더쉽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부서는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기관에 대한 액세스 관리 및 일일 감독을 강화하고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차량 내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의 건강하고 유익한 전송을 보장한다. 또한,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국내 생산 자동차와 차량용 네트워크 오디오 및 비디오 앱 및 관련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시장감독관리 주관부서는 지침을 강화하여 국산 및 수입 자동차에 무선 방송 수신 모듈을 장착하도록 장려한다.

광전총국, 공업정보화, 시장감독관리 주관부서는 차량용 오디오 및 비디오 관리를 중시하고 조직의 리더십과 협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업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고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 및 개선하여 작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연구 및 해결함과 동시에 차량 내 오디오 및 비디오 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네트워크 전송, 플랫폼 운영 등 관련 산업 체인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차량 내 양질의 오디오 및 비디오 통신 공간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2023년 8월 14일

□ 영화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1981.10.13	1981.10.13	국무원	수입영화 관리방법	수입영화에 관한 모든 업무는 중국영화발행방영공사(차이나필름)가 경영 관리함
2	2001.12.25	2002.02.01	국무원	영화관리조례	①중국에서 영화의 제작, 수출입, 배급, 상영 등에 적용 ②중국의 영화사업은 허가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영화 및 라디오TV 행정부문이 주관함 ③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영화의 제작, 수출입, 배급, 상영 등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음
3	2003.09.28	2004.01.01	광전총국 상무부 문화부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회사, 기업과 함께 합자,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영화관을 신축, 개조하여 영화상영 업무에 종사하는데 적용
4	2005.04.08	2005.05.08	광전총국 상무부 문화부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	홍콩과 마카오 업체의 영화관 투자 관련 규정 추가
5	2004.07.06	2004.08.10	광전총국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중국과 외국 영화제작자가 합작하여 제작하는 영화(필름 영화, 디지털 영화 및 텔레비전 영화 포함)에 적용함
6	2004.10.10	2004.11.10	광전총국 상무부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중국 영화기업의 제작, 배급, 상영, 수출입 업무 및 외국기업의 제작, 상영 참여 자격 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
7	2005.03.07	2005.05.08	광전총국 상무부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홍콩, 마카오 업체가 중국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산 영화를 배급하는 시범 운영 허용
8	2006.05.22	2006.06.22	광전총국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중국에서 상영하는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심의 및 수입영화 심의에 적용
9	2011.11.29	2011.11.29	광전총국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영화산업의 이익배분에 관한 건의
10	2016.11.07	2017.03.0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영화의 창작, 제작, 발행, 방영, 지원, 법률 책임 등을 규정
11	2014.03.18	2014.03.18	신문출판 광전총국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영화관리조례>의 의해 해외영화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영불가
12	2014.01.17	2014.01.17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관리규정
13	2014.02.18	2014.02.18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중국산 영화 속지(屬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중외합작영화는 성급 광전부서 영화심사기관의 심사 통과 후 중국영화합작영화공사 심사 통과를 거쳐 《영화심사결정서》를 발표
14	2014.05.31	2014.05.31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영화산업 발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 지원 정책
15	2014.07.21	2014.07.2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 관리에 관한 시행 세칙
16	2015.01.19	2015.01.19	국가신문출판	인터넷 해외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정보 온라인 통합 등록 플랫폼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광전총국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 온라인 신고·등록 업무 진행에 관한 통지	을 구축, 2015년 해외 영화 드라마 수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리함
17	2017.04.21	2017.04.2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VOD 영화관·VOD 원선의 경영관리를 규범화에 관한 통지	개인 영화관 및 개인 원선의 경영관리 규범화 규정
18	2018.11.08	2018.12.01	국가영화국	중국산 영화 재산영 임시 규정	영화 재산영 시 심의 신청 필요 재산영 영화 상영규모는 상영관 최대 2500개로 제한
19	2018.03.06	2018.03.30	광전총국	VOD 영화관, VOD 원선 관리규정	VOD 영화관, VOD 원선의 업무허가, 경영규범 등 규정
20	2018.09.18	2018.09.18	중국영화배급 방영협회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제3자 티켓판매 플랫폼, 영화관 웹사이트 또는 자체 APP는 ‘취소 및 변경’ 주의사항을 공시해야 함
21	2018.12.13	2018.12.13	국가영화국	영화관 건설 속도 증진에 관한 영화시장 발전 촉진 의견	2020년까지 전국 도시 영화원선 가입 영화관 스크린 수 8만 개 이상, 원선제 개혁 지속, 특색 원선 발전 가속화, VOD 영화관 및 원선 규범화
22	2020.08.07	2020.08.07	국가영화국	SF 영화 발전촉진 관련 약간의견	중국 SF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창작생산, 배급, 상 영, 특수효과, 인재 육성 등에 대한 10대 지원정책 제시
23	2021.04.28	-	국가영화국	쇼트클립 내 영화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쇼트클립 및 개인형 미디어, 공중계정 생산 운영자가 타인의 영화 작품을 허가 없이 복제, 편집, 유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
24	2022.02.21	-	국가영화국 외 5개 부처	영상기지 규범 건강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의견	영상기지의 산업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급 주요 영상 생산기지에 대한 지원 강화, 영상기지 관련 산업 규모의 합리적 통제, 발전 방향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작성

■ 영화

1. 수입영화 관리방법

제목	进口影片管理办法
게재일	1981-10-13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영화관리 정책

제1조 수입영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0년 4월 14일, 중국 공산당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내부 참고 영화 무분별 배포 제지에 관한 통지(关于制止滥放内部参考影片的通知)》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 및 홍콩, 마카오 지역으로부터 수입 배급된 영화 혹은 시사영화복제 (35mm, 16mm 및 8mm 이상 영화 비디오테이프와 영화 레이저 디스크 등 포함. 이하 모두 영화라 칭함)에 속하는 모든 업무는 중국영화배급상영공사(이하 중국영화공사라 칭함)가 관리한다.

영화 수입 시 세관은 중국영화공사가 작성한 수입화물 신고서를 심의하고 이를 통관시킨다. 전국을 대상으로 배급되는 상업성 수입영화의 경우 수입 시에 관세 납부수속을 거쳐야 한다. 비상업성 영화의 경우 관세납부가 면제된다. 비상업성 영화가 수입 후에 심의를 거쳐 전국에 배급될 경우, 중국영화공사는 규정에 의거 베이징 세관에 관세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조 중국영화자료관이 수입하는 자료영화(중국영화자료관과 외국영화자료관 상호 간에 선택 구매, 교환, 증정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한 자료의 영화 포함), 비상업성 영화에 대하여 세관은 해당 기관이 작성한 수입화물 신고서에 따라 심의를 하고 면세 통관시킨다.

수입한 자료 영화가 심의를 거쳐 전국에 배급될 경우 중국영화공사는 베이징 세관에 세금 납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 과학기술, 산업, 농업, 교육, 보건, 뉴스, 대외무역, 외교 등의 기관에서 업무상의 필요로 인하여 수입한 전문성이 있는 다큐멘터리, 과학교육영화 가운데 국무원 계열 기관이 수입한 경우는 국무원 산하 각 부처 위원회(총국)가 심의를 하며 지방 기관에서 수입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심의를 한다.

영화가 수입될 때 세관은 각 부처 위원회(총국),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의한 서류와 신청기관이 작성한 3부로 구성된 수입화물 신고서에 따라 면세로 통관처리하며, 세관의 직인이 찍힌 통관신고서를 문화부 영화사업관리국에 발송 접수시킨다.

제5조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단체 혹은 개인이 기관, 단체, 학교 등의 기관에 반입한 극영화의 경우 국무원 관련 기관에서 접수한 경우 문화부 영화사업관리국의 심의를 받으며, 지방기관이 접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국(영화국)이 심의를 하며 관련

문서 사본을 문화부 영화사업관리국에 접수시킨다.

영화 수입 시 세관은 인수기관에서 작성한 수입신고서와 심의 문서에 따라 심의하고 면세 통관을 실시한다.

인수 기관은 인수한 영화를 중국영화자료관에 제출하여 통일 보관하도록 하며, 업무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은 상급 주관부서에 심의 문건에 의거 이를 자료관리관에 제시하고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담당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외부 대여, 초대 상영, 대중에 공개 상영 등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자료를 열람한 후에 반드시 중국영화자료관에 반납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수입한 극영화가 심의를 거쳐 전국에 배급되는 경우 중국영화공사가 세관에 관세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 외국인, 화교, 홍콩 및 대만의 동포 등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입국 시에 소지하여 국내의 개인에게 업무상의 참고자료로서 기증하는 과학기술영화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을 허용하며, 영상물을 인수하는 개인이 작성한 수입화물 신고서 및 소속 기관의 증명문서에 의거 심의하고 통관절차를 실시한다. 국내의 개인에게 기증하는 극영화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관은 이를 반송한다.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문화부가 세관총서와 검토하여 처리한다.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재외공관의 직원, 외국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어 상주하는 파견직원(외국 상주 기자포함)과 외국에서 초빙되어 국내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문화교육, 경제, 과학기술 전문가 포함)들이 휴대(혹은 국외에서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것)하고 있는 영화의 경우 세관의 현행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영화가 수입된 후에는 관련 부서에서 엄격히 통제하며,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상영하는 것만을 허용하며, 중국측 기관이나 개인의 대여 상영은 불허한다.

제7조 홍콩의 창청(長城), 피닉스(鳳凰), 신롄산(新聯三)사가 중국 국내에서 촬영하는 것, 국무원 홍콩 사무실이 관련지구 관련기관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이외에 중국과 해외, 혹은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지역과 합작으로 제작하는 업무는 모두 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가 관리한다. 합작제작영화의 수입은 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가 세관에 수입 통관 절차를 실시하며, 승인을 받고 전국에 배급될 경우 중국영화공사가 규정에 의거 베이징의 세관에 관세를 납부한다.

제8조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했거나 밀수 수입한 영화의 경우,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몰수한 영화 중 보관 참고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부의 영화사업부관리국을 통하여 중국영화자료관에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 본 방법은 배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영화관리조례

제목	电影管理条例 (第342号)
제재일	2001-12-25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영화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화사업을 번영 발전시키며, 대중들의 문화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과학교육영화, 미술영화, 특집영화 등 영화의 제작, 수입, 수출, 배급, 상영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영화의 제작, 수입, 수출, 배급, 상영 등의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헌법과 관련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에게 봉사하며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의 방송영상 부서는 전국의 영화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영화를 관리하는 행정부서는 (이하 영화행정부서라 칭함)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 구역 내의 영화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영화의 제작, 수입, 수출, 배급, 상영, 영화의 공개 상영에 대하여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화의 제작, 수입, 수출, 배급, 상영 등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증을 득하지 않은 영화는 수입, 수출, 배급, 상영을 할 수 없다.

본 조례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허가증과 인가서류는 임대, 임차, 판매 혹은 기타 어떤 방식으로의 양도가 불가하다.

제6조 전국적인 규모의 영화업종 사회단체는 해당 정관에 의거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지도 아래 자율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을 장려한다.

제2장 영화제작

제8조 영화제작기관을 설립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영화제작기관의 명칭, 정관
- (2)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 인증에 부합하는 주최기관 및 기타 주관 기관
- (3) 확정된 업무 범위
- (4) 업무범위 수요에 적응하는 조직기구와 업무인원

(5) 업무범위 수요에 적응하는 자금, 장소, 설비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영화제작기관 설립 심의는 상기에 열거한 조건 이외에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제정한 영화제작 총 수량, 배치, 구조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영화제작기관 설립 신청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에 심의를 통한 동의를 득한 수 국무원의 방송영화영상 행정부서에 심의를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영화제작기관의 명칭, 주소, 경제적 성격

(2) 영화제작기관의 주체가 되는 기관의 명칭, 주소, 성격 및 기타 관련기관

(3) 영화제작기관의 법정대표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 서류

(4) 영화제작기관의 자금출처 및 금액

제10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영화제작기관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승인시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영화제작허가증》을 발부하고 신청인은 이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등록수속하고, 법에 의거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영화제작기관은 해당기관의 전체 법인 재산에 대해 법에 의거 민사상의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영화제작 기관이 변경 혹은 사업을 종료할 경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기존에 등기한 공상행정관리 부서에서 등록변경 혹은 등록해지를 해야 한다.

제13조 영화제작기관은 아래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영화의 촬영제작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이 제작한 영화의 복제품 제작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전국범위로 해당기관이 제작한 영화의 배급 및 영화와 복제품에 대한 공개 상영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이 촬영하고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와 복제품의 수출

제14조 영화제작기관은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영화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제15조 영화제작기관은 제작한 영화에 대하여 합법적인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16조 영화제작기관 이외의 기관이 단독으로 영화촬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인가를 받고, 해당 문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해당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화제작기관이외의 기관이 심의를 얻은 후 영화를 제작하려면 사전

에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일회용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영화제작기관이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 부담을 참조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17조 국가는 기업, 사업기관과 기타 사회조직 혹은 개인이 자금 후원, 투자의 형식으로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18조 영화제작기관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해외영화제 작자와 합작으로 영화제작을 할 수 있다. 기타 기관과 개인은 해외 영화제작자와 합작으로 영화제작을 할 수 없다. 영화제작기관과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소지한 기관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인가를 취득하고 해외의 영화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조직 혹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영화제작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9조 중외합작으로 제작하는 영화는 중국 측 합작자가 먼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에 입안 신청을 해야 한다.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 규정에 부합될 경우 신청인에게 1회성 《중외합작 영화제작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중외합작 영화제작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규정에 의거 중외합작 영화제작 계약서에 서명한다.

제20조 중외합작 영화제작에 있어 설비, 기자재, 필름, 도구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중국측 합작자는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인가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수입 혹은 임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해외영화제작자가 중국측 합작자와 합작 혹은 다른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중화민족의 미풍양속을 존중해야 한다.

제22조 영화원판, 건본의 현상작업 및 후기 작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완성해야 한다. 특수한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완성해야 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류에 표기된 요구 사항에 의거 집행해야 한다.

제23조 영화현상기관은 《영화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취득하지 않은 기관의 영화 원판, 건본의 현상가공을 할 수 없으며 《영화상영허가증(电影片公映许可证)》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 복제본의 현상작업을 할 수 없다. 해외의 영화 원판, 건본과 영화 복제본 현상작업 위탁을 받은 영화현상기관은 먼저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고 승인문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가서 관련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현상가공된 영화 원판, 건본, 영화복제본은 모두 해외로 송출해야 한다.

제3장 영화 심사

제24조 국가는 영화심사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영화심사기관(이하 영화심의기관이라 칭함)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영화는 배급, 상영, 수입, 수출할 수 없다. 과학연구, 교육참고용으로 특집영화 수입과 중국영화자료관이 수입한 영화자료는 본 조례 3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25조 영화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과 영토의 보존을 침해하는 내용
 - (3)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고, 국가의 안보를 해치며,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실추시키는 내용
 - (4) 민족의 증오, 민족차별을 부추기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내용
 - (5) 미신과 사이비를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8) 타인을 비방, 모욕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의 공중도덕 혹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 영화기술품질은 국가의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영화제작기관은 본 조례 25조의 규정에 의거 영화심의기관에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영화심의기관은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촬영 준비 중인 영화 시나리오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영화심의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영화심의기관은 등록한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본 조례 25조에 금지된 내용을 발견하면 적시에 영화제작기관에 촬영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7조 영화제작기관은 영화의 촬영이 완성된 후에 영화심사기관에 심사를 의뢰하며 영화 수입경영기관은 영화의 임시 수입 수속을 밟은 후에 영화심사기관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영화심사비용기준은 국무원의 가격 주관부서에서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영화심사기관은 심사의뢰 영화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영화상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영화제작기관 혹은 영화수입경영기관은 《영화상영허가증》의 번호를 동 영화 복제품 맨 앞에 인쇄해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수정 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한은 본 조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제29조 영화제작기관과 영화수입경영기관이 영화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심사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영화재심기관에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영화상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제4장 영화의 수입 및 수출

제30조 영화수입 업무는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지정한 영화수입행정기관이 운영하며, 지정을 받지 못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영화수입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1조 공개상영 될 수입영화는 수입 전에 영화심의기관에 심사 의뢰해야 한다.
영화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한 영화는 지정된 영화수입운영기관이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임시 수입인가 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임시 수입절차를 밟는다. 임시 수입된 영화는 영화심의기관의 심사 합격 후에 《영화상영허가증》과 수입 승인서류가 발급되며, 후에 영화수입운영기관이 수입 승인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수입 수속을 밟는다.

제32조 과학연구, 교육목적으로 수입된 특집 영화의 경우 수입기관은 국무원의 관련행정주관 부서를 통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며, 허가문서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수입 수속을 밟으며, 수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서류 접수를 한다. 그러나 과학연구, 교육을 명분으로 극영화를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 영화자료관은 영화자료를 수입하여 직접 세관에 수입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중국 영화자료관은 수입한 영화자료를 분기별로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본 규정 이외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무원 방송영화영상행정부서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영화를 수입할 수 없다.

제33조 영화수입경영기관은 영화작품 저작권 사용허가를 취득한 후에 허가된 범위 내에서 영화작품을 사용하며, 사용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화작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 영화제작기관이 해당 기관의 영화를 수출할 경우 《영화상영허가증》을 소지하고 세관에서 영화 수출 수속을 밟는다. 중국과 외국이 합작한 영화를 수출할 경우 중국측 합작 당사자가 《영화상영허가증》을 소지하고 세관에서 수출 수속을 밟는다. 중국과 외국이 합작 촬영 제작한 영화 소재를 수출의 경우, 중국측 합작 당사자는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수출(出境) 수속을 해야 한다.

제35조 중국과 해외의 영화전시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해외영화전시회, 영화페스티벌 등에 영화를 출품할 경우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 규정의 영화 전시회,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는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영화제, 영화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영화는 승인을 받은 후 전시회 참가자가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승인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임시 수출 수속을 밟는다. 중국 국내에서 열리는 중국과 해외의 영화전시회나 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해외 영화는 승인을 받은 후 개최자가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승인서류를 소지하고 세관에서 임시 수입 수속을 밟는다.

제5장 영화의 배급과 상영

제36조 영화배급 기관, 영화상영기관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영화배급기관, 영화상영기관의 명칭, 정관
- (2) 확정된 업무범위
- (3) 적용업무 범위에 필요한 조직기관, 전문인원
- (4) 적용된 업무 범위에 필요한 자금, 장소와 설비
-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37조 영화배급기관을 설립할 경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국한되지 않는 광역단위 영화배급기관을 설립할 경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방송영상 행정부서나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영화배급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자는 이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하고 법에 의거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8조 영화상영기관을 설립하려면 소재지의 현 또는 설치 지역의 시 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소재지의 현 또는 설치 지역의 시 인민정부의 영화행정부서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가를 할 경우 《영화상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자는 이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가서 등기를 하고 법에 의거 영업집조를 발급받는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 영화배급기관, 영화상영기관이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영화배급기관, 영화상영기관과 M&A 또는 합병, 분립으로 새 영화배급기관, 상영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본 조 제37조 혹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승인수속을 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상응하는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영화배급기관, 영화상영기관이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영화배급, 상영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원래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며 동시에 심사 승인한 영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40조 농촌에 16mm 영화배급, 상영업무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직접 가서 등기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의 영화행정부서에 등록을 한다. 등록 후 전국의 농촌에 16mm 영화배급, 상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기업, 사업기관, 기타 사회조직이나 개인이 영화관의 건설 및 개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가는 중국과 해외의 합자나 합작방식으로 영화관의 건설 및 개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국무원의 문화행정부서, 국무원의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 제정한다.

제42조 영화는 법에 의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발급한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배급 및 상영이 가능하다.

이미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에 대하여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특수한 상황일 경우, 배급, 상영의 중지 혹은 수정 후 배급, 상영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정 후 배급, 상영이 결정된 영화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수정을 거절할 경우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배급, 상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가 배급, 상영 정지명령을 내리면 영화의 배급기관, 상영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43조 영화를 이용하여 음반·영상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국가의 음반·영상제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영화자료를 사용하여 배급, 상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중국산영화와 수입영화 상영비율을 따라야 한다. 상영기관은 연간 중국산영화상영시간이 연간영화상영시간의 2/3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45조 영화상영기관은 영화관의 공공질서와 환경위생을 지키며, 관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6장 영화사업의 보장

제46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영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영화사업을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영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영화 전문 인력을 중시하고 배양하며, 영화이론 연구를 중시하고 강화하여 영화 창작을 번영시키고 영화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영화사업발전 전문자금을 설립하고 기타 우대조치를 취하여 영화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영화사업발전 자금의 납부 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영화사업발전 전문자금은 아래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가가 제창하고 공인한 중요 영화의 제작과 우수한 영화 시나리오의 응모

- (2) 중점영화기지의 기술 개조
- (3) 영화관의 개조와 상영 시설의 기술 개조
- (4) 소수민족지역, 변경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화사업 발전
- (5)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타 사업

제50조 국가는 과학교육영화, 다큐멘터리, 미술영화 및 아동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권장, 지원한다.

제51조 국가는 소수민족지역, 변방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농촌 지역의 영화 상영, 배급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국가는 농촌에 16mm 영화의 배급과 상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 국무원 문화행정부서가 국무원의 재정 부서와 함께 규정할 수 있다.

제52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본 행정구역의 건설계획에는 영화관과 상영설비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화관 및 상영설비의 개조, 철거는 소재지의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53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간섭, 저지,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조치를 취해 제지하고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대중전파매체는 불법영화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제7장 벌칙

제54조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와 현금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 혹은 기타 관련 부서 및 관계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편의를 제공받고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영화의 제작을 승인한 경우, 제작, 배급, 상영기관 혹은 감독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형법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및 기타 범죄 규정에 의거 법에 의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이 안 될 경우 강등 또는 직위해제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한 기관 혹은 제멋대로 영화제작, 수입, 배급, 상영 행위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에서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형법의 불법 경영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불법 경영한 영화 및 불법소득, 위법경영활동에 사용한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20만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 본 조 제 25조에 금지된 내용을 담은 영화 혹은 현상작업, 수입, 배급, 또는 본 조 제 25조에 금지된 내용을 담은 영화임을 분명히 알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했을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의거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영화행정부서는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불법 경영한 영화와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이면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이면 20만 이상 5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이 허가를 취소한다.

제57조 밀수영화는 형법의 밀수 관련 조항에 의거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관이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58조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를 수출, 배급, 상영 한 경우, 영화행정부서에서는 불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불법 경영한 영화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이면, 불법 소득 10배 이상 1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및 기존의 허가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한다.

제59조 아래의 조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영화행정부서는 불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리고 불법경영과 관련된 영화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이면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이면 10만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및 기존의 승인 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한다.

- (1) 승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해외의 기관 혹은 개인과 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해외에서 영화 촬영을 한 경우
- (2) 제멋대로 해외에서 영화의 원본, 샘플의 현상 혹은 후기제작을 하거나 승인문서에 명기된 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 (3) 《영화제작허가증》,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취득하지 않은 기관이 촬영한 영화 원판, 건본의 현상작업 혹은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 복제본의 현상작업
- (4) 승인 없이 해외영화원판, 건본 또는 영화복제품의 현상가공 업무를 의뢰 받거나 현상 가공한 해외영화원판, 건본 또는 영화복제품을 전부 해외로 운송하지 않았을 경우
- (5) 영화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성이 있는 배급, 상영행위에 종사하거나 변칙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 (6) 규정의 시간비율에 의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국무원의 방송영상 행정부서의 배급과 상영 정지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제60조 해외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영화촬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불법 활동 정지명령을 내리고 불법 촬영한 영화와 불법 활동에 사용된 도구, 장비를 몰수하며 아울러 30만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제61조 허가를 얻지 않고 제멋대로 중국 및 해외 영화전시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혹은 제멋대로 해외 영화전시회 및 영화페스티벌에 영화를 출품할 경우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는 불법행위의 정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으로 참가한 영화와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이 2만 위안 이상이면,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고, 불법 소득이 2만 위안 이하이면 2만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승인 없이 영화관 또는 상영시설을 사사로이 개조 또는 철거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행정부서는 기한 내 영화관이나 상영시설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책임진 담당자나 기타 직접 담당자에게 법에 따라 기율처분을 내린다.

제63조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회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반드시 국가의 해당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변경 및 등록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집조를 회수한다.

제64조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회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법정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가 허가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영화의 제작, 수입, 수출, 배급과 상영기관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인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제멋대로 영화의 제작, 수입, 배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중국 및 해외 영화 전시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또는 해외의 영화제 및 전시회에 영화를 출품할 경우 5년 이내에 관련 영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5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화사업발전 전용자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행정부서는 기한 내 납부를 명령하고 미납일로부터 매일 미납부금액의 1만분의 5의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66조 본 조례의 규정대로 실시하는 행정처벌은 해당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대로 벌금결정과 벌금수금 분리를 실시한다. 접수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67조 국가는 《영화제작허가증》과 《영화배급경영허가증》,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의 연간 검사제도를 실시하며, 연간검사 방법은 국무원 방송영상 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68조 본 조례는 2002년 2월1일 부로 시행되며 1996년 6월19일 국무원이 배포한 《영화관리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3.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제목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제재일	2003-11-25, 2015-08-28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광전총국령 21호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는 2003년 9월 28일 국가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문화부의 동의를 얻어 이에 배포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광전총국 국장 쉬광춘(徐光春)
상무부 부장 뤼푸위안(吕福源)
문화부 부장 순자정(孙家正)

2003년 11월 25일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 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조 개혁개방의 수요에 부응하고, 해외의 자금을 유입시키고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시키며, 중국 영화산업의 번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이하 외국 합자경영 당사자라 칭함)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정부의 인가를 얻어 중국 국내의 회사, 기업 (이하 중국측 합자경영 당사자라 칭함)과 함께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기업, 기업이 영화관의 신설, 개조, 영화 상영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외국인은 단독으로 영화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원선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제4조 외국인투자 영화관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현지의 문화시설의 배치 및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고정적인 영업(상영) 장소가 있어야 한다.
- (3) 중외합자영화관의 중국측 합자 당사자는 등록자본 가운데 자신의 투자 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시안(西安), 우한(武汉), 난징(南京) 등 지역의 중외합자영화관의 경우 외국의 합자 당사자의 등록자본 가운데 투자 비율이 최고 75%를 상회해서는 안 된다.

- (4) 합자, 합작 기한은 3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5)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조 중국측 합자 당사자가 국유재산(현금투자 제외)으로 투자에 참여했을 경우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 영화관의 설립 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합자 당사자 가운데 중국 측이 소재지의 성급 상무부의 행정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투자 영화관 설립 사업 신청서
 - 2. 합자 당사자 중 중국측의 법인 자격 증명 자료, 영화관 토지 사용권 관련 자료
 - 3. 합자 당사자 중 외국측의 자격 증명자료
 - 4. 공상행정부서가 발급한 외국기업투자 영화관 명칭 예비 심의 통지서
 - 5. 타당성 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 6. 법률, 법규 및 인가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 (2) 소재지의 성급 상무부의 행정부서는 성급 영화행정부서의 재가를 얻은 후에 국가의 외국기업의 투자 법률, 법규에 의거 심의를 진행하며, 상무부, 국가광전총국, 문화부에 서류 접수를 한다. 인가를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를 발급한다.
- (3) 설립 허가를 취득한 외국기업 투자 영화관은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를 취득한 후 1 개월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를 소지하고 성급 공상행정부서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 외상이 투자하는 영화관의 건립, 개조 임무를 시행한 후 유관부서의 검수에 합격하면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 《영업집조》를 소지하고 성급 영화행정부서에서 《영화상영 경영허가증(电影放映经营许可证)》을 수령하면 영화 상영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제7조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영화관이 지분 및 투자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규정 제6조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 영화관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영화관리조례》에 의거 경영활동을 하고 중국정부 관련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으며, 상영하는 영화는 국가광전총국이 발급한 《영화상영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밀수, 불법복제판 영화의 상영을 불허하며 영업적인 비디오, VCD, DVD의 상영을 금지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 영화관의 부속사업으로 하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국내에서 영화상영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설립하려 할 경우 본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1조 본 규정 및 첨부 문건은 2004년 1월1일 부로 시행된다. 본 규정 및 첨부 문건이 시행되는 날, 2000년 10월25일 국가방송영상 총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서, 문화부가 배포한 《외국인 영화관 투자 임시규정(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은 폐지된다.

첨부분서 :

홍콩, 마카오 지역과 중국 대륙이 보다 긴밀한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중국 내 영화상영업에 종사하는 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국무원이 인가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와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영화관 임시규정》중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업체가 영화관에 투자하는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둔다.

1. 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내에서 합자, 합작의 형식으로 영화관의 경영, 개조, 설립 하는 것을 허용한다.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2.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서 영화관에 투자하는 별도의 규정은 《외국인투자 영화관 임시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

제목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的补充规定
제재일	2005-04-08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광전총국령 제49호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은 국가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200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광전총국 국장 왕타이화(王太华)
상무부 부장 버시라이(薄熙来)
문화부 부장 순자정(孙家正)

2005년 4월 8일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의 추가 규정은 홍콩, 마카오와 중국 대륙이 더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하고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업체가 중국 대륙에서 영화 상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안배(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의 추가 협의>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밀접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의 추가 협의>에 따라 현재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국가광전총국 상무부 문화부령 제21호) 및 별첨 문건 중의 홍콩과 마카오 서비스업체의 영화관 투자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한다.

1. 2005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업체가 대륙에서 합자, 합작 혹은 독자 형식으로 영화관을 설립, 개조 및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본 규정의 홍콩 서비스업체와 마카오 서비스업체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 및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 중의 ‘서비스업체’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홍콩, 마카오 서비스업체의 중국 대륙 영화관 투자에 관한 기타 규정은 여전히 <외국인 영화관 투자 임시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본 규정은 200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제목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第31号)
제재일	2004-07-06, 2016-05-04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은 2004년 6월 15일 국가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쉬광춘(徐光春)

2004년 7월 6일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2004년 7월 6일 광전총국 령 제31호로 발표, 2016년 5월 4일 《일부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12월 11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1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의 폐지, 수정 및 실효 선언에 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제1조 중국영화 창작 생산을 발전시키고 중외합작 영화의 제작자 및 관련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중외 영화교류 촉진을 위하여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일컫는 중외합작영화는 법에 의거 《영화제작허가증(摄制电影许可证)》 혹은 《영화제작허가증(단편)(摄制电影片许可证(单片))》을 취득한 국내 영화제작자 (이하 중국 측이라 칭함)와 해외 영화제작자 (이하 외국측이라 칭함)가 중국 국내에서 공동 촬영, 협력 촬영, 위탁 촬영을 하는 영화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중외합작 영화제작자가 중국 국내에서 합작으로 제작하는 극영화, 미술영화, 과학교육영화, 다큐멘터리, 특집 등 영화(필름 영화, 디지털 영화, TV영화 포함)를 가리킨다.

제4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는 중외합작영화의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중외합작영화는 아래의 형식을 포함한다.

- (1) 공동촬영, 즉 중국 및 해외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자금, 노무, 실물 포함)하여 공동으로 촬영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며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작방식
- (2) 협력제작, 즉 외국측이 출자를 하고 중국 국내에서 촬영을 하며 중국측이 설비, 기자 재, 촬영장소, 노무 등을 제공 협조하는 제작 방식
- (3) 위탁촬영, 즉 외국측이 중국측에 위탁해 중국 국내에서의 촬영을 대행하는 촬영 형식

제6조 중외합작 촬영제작 영화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중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중국의 각 민족의 미풍양속, 종교, 신앙, 생활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 (3)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4) 중국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도덕 건설 및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5) 중국과 해외의 영화 교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6)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국가는 중외합작 영화에 대하여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국내의 어떤 업체 혹은 개인이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 혹은 인가서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외의 업체 혹은 개인과 영화의 합작 제작을 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의 업체,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단독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

제8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을 신청하려면 유관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도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중국 측 제작업체는 원칙상 2편 또는 이상의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중국산 영화의 투자에 참여한 적 있어야 함
- (2) 중외합작 쌍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영화관리조례》 위반으로 인한 영화 촬영제작 금지 처벌 기한 내에 있지 않음

제9조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에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중국 측 제작업체의 촬영 입안 신청
- (2) 중국 측 제작업체가 투자에 참여한 중국산 영화의 영화상영허가증 사본(2편 또는 이상)
- (3) 영화문학시나리오(표준 한자) 1식 3부
- (4) 외국 측의 신용증명 및 합작 영화 현황
- (5) 중외 쌍방의 합작 의향서 및 협의서에는 쌍방의 투자 비율, 중국 측 주요 창작멤버 비율, 국내 및 해외 영화제(전시회) 참가 여부 등의 내용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
- (6) 주요 창작멤버 프로필

제10조 중외합작 영화의 입안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 측 제작업체가 광전총국에 신청서 제출
- (2)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는 《행정허가증(行政许可法)》 관련 규정 기한에 따라 신청 업체가 제출한 서면 신청서 처리
- (3)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광전총국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입안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영화시나리오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의는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 (4) 공동 촬영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1회성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을 발급하며, 협조촬영, 위탁촬영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가 문서를 받

급한다. 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제11조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인가 문서를 수령한 후에 중국 및 해외 쌍방은 인가된 서류에 내용에 의거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제12조 《중외합작영화제작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13조 공동으로 촬영을 하는 영화가 해외의 핵심멤버를 초빙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에 보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외국측 주요 출연진의 비율이 전체 출연진의 2/3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제14조 공동으로 촬영을 한 영화는 중국어 보통화 버전을 제작을 해야 하며 그 자막은 표준한자를 써야한다. 영화의 배급 수요에 의거 보통화 버전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지역, 소수민족에 관련된 언어문자 버전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15조 중외합작으로 촬영 제작을 완성한 영화는 현지 성급 방송영상행정부서에 초심의견 제출을 거친 후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 영화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중앙 및 국가기관 소속 영화제작 기관과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소지한 기관이 입안을 신청하고 촬영을 마친 영화는 광전총국 영화심의위원회에 직접 보고해 심사를 받는다.

제16조 공동으로 촬영한 영화는 심사에 합격을 한 후에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가 발급한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중국 국내 및 해외에 배급 및 상영될 수 있다.

제17조 중국 및 해외 쌍방이 이미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동으로 촬영한 영화가 중국 및 해외 영화제(전시회)에 참가해야 할 경우 주최측 및 중외 영화제(전시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에 의거 국무원 방송영상행정부서에 등록한다.

제19조 외국 측은 중국 측을 통하여 중국 국내의 영화 창작 및 스태프를 선발하고 중국의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응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화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및 대만 지역의 영화제작자가 국내에서 합작으로 촬영 작업을 할 경우 적용된다.

제22조 본 규정은 2004년 8월10일 부로 시행된다. 광전총국 《중외합작영화제작관리규정(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광전총국령 제19호)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6.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제목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第43号)
게재일	2004-10-10, 2015-08-28
출처	광전총국, 상무부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은 국가광전총국의 2004년 6월 15일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0월 10일

국가광전총국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의 역량을 충분히 동원하여 영화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시장 주체를 육성하여 시장 진입을 규범화 시키고, 영화산업의 전체 실력 및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사회주의 영화산업의 번영을 촉진시키며, 폭 넓은 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 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국내 회사와 기업, 기타 경제조직의 영화제작, 배급, 상영, 수출입 업무 경영 및 해외 회사와 기업 기타 경제조직의 영화제작, 상영업무에 참여 경영하는 자격 허가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국가는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수출입 경영자격에 대하여 허가증 제도를 시행한다.

제4조 국가방송영상 총국 (이하 ‘광전총국’ 이라 칭함)은 전국의 영화제작, 배급, 상영, 수출입 경영자격을 허가하는 업종행정 관리부서이다.

제2장 영화제작

제5조 국가는 중국 국내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외국인투자기업 제외)이 영화제작 회사

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영화제작회사의 설립 신청은 국내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광전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1) 《영화제작허가증(摄制电影许可证)》을 이미 취득한 국내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외국인투자기업 제외)이 공동으로 영화제작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신청서, 계약서, 정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각 당사자의 영업집조 사본, 회사 명칭 예비 인허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영화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국내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외국인투자기업 제외)은 최초 영화 촬영 시에 반드시 영상문화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영상문화회사가 《영화제작허가증 (단편)(摄制电影片许可证(单片))》을 신청하여 수취한다.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취득하는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시)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된 각종 영상문화업체는 모두 《영화제작 신청서(단편)》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2. 신청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영업집조 사본, 제작 영화의 자금출처 증명, 촬영 예정 영화의 문학 시나리오(시놉시스)를 1식 3부 제출한다.
 3. 광전총국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촬영허가 자격 및 영화 문학 시나리오(시놉시스)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발급한다. 신청 기관은 광전총국이 발급한 인가 문건을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가서 관련 수속을 밟으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4.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취득한 기관은 영화 1회에 한하여 출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품자는 독립작품, 혹은 다른 제작업체와 (영상문화업체 포함)과 공동으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5.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은 편당 1회 시행한다.
- (3) 이미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취득한 국내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외국인투자기업 제외) 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영화제작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의 형식으로 2편 이상의 영화를 투자 촬영한 기관
 2. 신청서,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영업집조(공동설립한 영화제작 회사의 경우 계약서, 정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각 당사자의 영업집조 사본을 제시해야 함), 회사 명칭 예비 인허가 통지서 제출
 3. 2편 이상의 영화를 투자 제작한 《영화제작허가증(단편)》, 《영화상영허가증(电影片公映许可证)》 등 관련 자료
- (4) (1), (3)항에 부합될 경우 광전총국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영화제작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 기관은 광전총국이 발급한 인가 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고 광전총국에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측이라 칭함)이 해외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이하 외국측 이라 칭함)과 합자 및 합작의 형식으로 영화제작회사를 설립(이하 합영회사라 칭함)하는 것을 허용한다. 합영기업 설립신청은 중국측에서 광전총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 측이 이미 《영화제작허가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이미 2개 이상의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취득한 경우
- (2) 외국 자본의 비율이 등록자본 가운데 49% 이하인 경우
- (3) (1)~(2)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국 측이 광전총국에 사업신청서, 타당성 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합영 각 당사자의 등록등기증명(혹은 신원증명), 회사 명칭예비 인허가 통지서 등을 제출한다. 광전총국은 법에 의거 심의를 한다. 심의에 합격한 경우 인가서류를 발급하고 《영화제작허가증》을 발급한다.
- (4) (1)~(3)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국 측이 광전총국이 발급한 인가서류 및 본 조항에 나열된 서류를 소지하고 상무부에 심의를 신청한다. 상무국은 법에 의거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를 발급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 (5) 신청기관은 광전총국, 상무부의 승인 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7조 본 규정의 5조, 6조에 의거 《영화제작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제작회사는 《영화관리조례》에 의거 국영영화제작기관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8조 국내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외국인투자기업 제외)이 영화기술회사를 설립하여 영화제작, 상영 인프라시설 및 기술 설비 개조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신청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발급한 영업집조(공동으로 영화기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정관, 각 당사자의 영업집조 사본을 제출해야 함), 회사 명칭 예비 인허가 통지서 등 제출
- (2) 상기 (1)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 기관은 광전총국이 발급한 인가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관련 수속을 밟고 광전총국에 서류 접수를 한다. 인가가 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제9조 국내의 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이하 중국측이라 칭함)이 해외의 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이하 외국 측)과 합작 및 합자로 영화기술회사를 설립하여 영화제작, 상영 인프라시설 및 기술설비 개조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신청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자본의 비율이 등록자본 가운데 49% 이하이며 국가의 인가를 받은 성과 시에서 회사 지배 가능
- (2) 상기 (1)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국 측이 광전총국에 신청서, 타당성 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합영 당사자의 등록등기증명(혹은 신원 증명), 회사명칭 예비 인허가 통지서 등을 제출한다. 광전총국은 법에 의거하여 심의를 하고 합격한 경우 심의승인문서를 발급한다.
- (3) (1)~(2) 조항에 부합되는 경우 중국 측이 광전총국이 발급한 인가서류 및 본 조항(3)에 열거한 서류를 소지하고 상무부에 심의를 요청하며 상무부는 법에 의거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승인증서》를 발급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 (4) 신청기관은 광전총국, 상무부가 발급한 승인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3장 영화의 배급, 상영

제10조 국내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외국인투자기업 제외)이 중국산영화배급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신청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영화출품기관의 배급대행 위탁을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혹은 TV 드라마 출품 기관의 배급대행 위탁을 받은 2편의 드라마
- (2) 신청서,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발급한 영업집조 사본, 회사의 명칭 예비 인허가 통지서, 이미 배급대행을 한 영상의 위탁 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1)~(2) 항목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광전총국에 전문 중국산영화 배급회사 설립을 신청한 경우 광전총국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중국산영화를 전문으로 전국에 배급하는 《영화배급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현지의 성급 영화행정관리부서에 중국산영화배급 전문회사 설립을 신청한 경우는 현지의 성급 영화행정관리부서에서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해당 성(구, 시)의 중국산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영화배급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기관은 영화행정관리 부서가 발급한 승인서류를 지참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수속을 밟는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 한다.

제11조 광전총국은 중국산영화의 배급 공개상영에 관한 연간검사 관련 규정에 의거 《영화배급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에 연간검사를 실시한다.

제12조 원선회사가 긴밀하거나 느슨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광역단위의 원선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 관리를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새롭게 실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전체 원선을 합병하는 것을 불허한다. 원선의 통합은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지분 참여의 형식으로 기존의 원선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 참여 기관은 3년 이내에 3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자금은 관련 원선의 영화관 신축, 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 지분 인수 형식으로 기존의 원선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 인수 회사는 해당 원선의 영화관 신축, 개조에 쓰이도록 3년 이내에 4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단독으로 성 내부 혹은 전국 단위의 원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기관은 3년 이내에 5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해당 자금은 관련 원선의 영화관의 신축, 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
- (2) 성(구, 시) 내부에 원선을 설립하는 경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 부의 영화행정관리부서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인가를 내주어야 하며 광전총국에 이를 서류 접수해야 한다. 광역단위 원선을 설립하는 경우 광전총국에서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며, 신청 기관은 영화행정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승인문서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서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국내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외국인투자기업 제외)이 아동영화배급 공개상영 원선

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 (1) 성(구,시) 내부에서 20개 이상의 초등·중고등학교와 어린이회관, 아동활동센터, 영화관, 강당 등과 영화공급 협의를 체결한 경우 현지의 성급 영화행정관리부서에 신청을 하면 성(구,시) 내부의 소년아동영화 배급공개상영 원선을 설립할 수 있다.
- (2) 광역단위(구,시) 성과 3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어린이회관, 아동활동센터, 영화관, 강당 등이 영화공급 협의를 맺은 경우 광전총국에 신청을 하면 광역단위(구,시) 소년아동 영화배급 상영 원선을 설립할 수 있다.
- (3) 성(구,시) 내부에 원선을 설립하는 경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영화행정관리 부서에서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광전총국에 서류를 접수한다. 광역 원선을 조직하는 경우 광전총국이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며 신청 기관은 영화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승인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제14조 국내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영화관리조례》에 의거 전국의 농촌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의 배급, 상영업무를 경영하는 것과 도시의 거주지역, 학교에서 영화 상영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5조 국내회사, 기업, 기타경제조직 및 개인이 영화관의 건설 및 개조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영화 상영 업무를 경영하는 기관은 현급 이상의 지방 영화행정관리부서에 승인을 받아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관련 수속을 밟는다. 외국기업이 투자한 영화관은 《외국인 영화관 투자 임시규정(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에 의거 관리한다.

제4장 영화의 수입과 수출

제16조 영화의 수입 업무는 광전총국이 승인한 영화수입 경영기업이 전문 경영하며, 수입영화의 전국 배급 업무는 광전총국이 승인한 수입영화 전국 배급권이 있는 배급회사가 배급을 실시한다.

제17조 영화촬영회사가 다양한 경로로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중국산영화의 수출을 장려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 광전총국이 발급한 《영화제작허가증》, 《영화배급경영허가증》은 2년에 1회 검사를 받는다. 지방의 영화행정관리 부서는 관리 권한에 의거 발급한 《영화배급경영허가증》, 《영화상영경영허가증》에 대하여 연간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제19조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영화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광전총국, 상무부가 해석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본 규정은 2004년 11월10일 부로 시행한다. 광전총국의 《영화제작, 배급, 상영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电影制片、发行、放映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광전총국령 20호), 《영화제작허가증(단편) 취득에 관한 자격인증제도의 실시 세칙 (시행)(关于取得〈摄制电影许可证(单片)资格认证制度的实施细则(试行)〉)》(광발관자[2001]1483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7.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의 보충 규정

제목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的补充规定
게재일	2005-03-07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2005년 3월 7일 국가광전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상무부 령 제50호 발표, 2005년 5월 8일부터 시행)

홍콩, 마카오 지역과 중국 대륙지역이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하고 홍콩, 마카오 서비스업체가 중국 대륙에서 중국산영화 배급업체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추가 협의》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추가 협의》에 따라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국가광전총국 상무부령 제4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2005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 서비스업체가 중국 대륙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중국 대륙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산 영화를 배급하는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배급업체의 등록 자본금은 최소한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본 규정의 홍콩 서비스업체와 마카오 서비스업체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 중의 ‘서비스업체’ 정의 및 관련 규정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본 규정은 200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제목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第52号)
게재일	2006-05-22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은 2006년 4월 3일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광전총국 국장 왕타이화(王太华)

2006년 5월 22일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규정

(2006년 5월 22일 광전총국 령 제52호로 발표, 2017년 12월 11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1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의 폐지, 수정 및 실효 선언에 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과 영화 관리 제도를 규범화하고, 영화의 퀄리티를 높이며, 영화창작을 활성화시키고, 폭넓은 대중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며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화관리조례》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심사제도를 실행한다. 등록을 거치지 않은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는 배급, 상영, 수입, 수출할 수 없다.

제3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상영되는 각종 극영화, 다큐멘터리, 과학교육영화, 애니메이션, 특집 영화 (상기 각종 유형의 중국과 해외 합작 영화 포함)의 영화시나리오 (시놉시스) 등록과 영화심사 및 수입영화 심사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방송영상 총국 (이하 ‘광전총국’ 이라 칭함)은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과 영화 심사의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광전총국의 영화심의위원회와 영화제심위원회는 영화의 심의를 책임진다.

성급 방송영상행정부서 (이하 성급 방송부처)는 신청 받은 건에 대하여 광전총국의 위탁을 받아 영화심의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구역 내에 《영화제작허가증》을 소지한 영화제작기관이 촬영한 부분의 영화 심사업무를 주관한다. (이하 속지심사라 칭함)

제2장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제5조 영화 제작 예정인 법인, 기타 조직(이하 제작회사로 약함)은 영화 촬영 전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영화 주무부처에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으로 촬영한 영화인 경우 관련 촬영 기관 중의 한 곳이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수속을 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1) 촬영 예정 영화의 등록 보고
- (2) 1천자 이상의 영화 줄거리 시놉시스 1부. 영화의 주요 인물과 줄거리가 외교, 민족, 종교, 군사, 치안, 사법, 역사 유명인물과 문화 유명인사 등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이하 특수 소재 영화라 칭함) 사전에 1식 3부로 구성된 영화문학극본을 1부씩 성급 혹은 중앙, 국가기관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3)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판권의 협의(수권)서

제7조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절차

- (1) 영화제작 기관은 광전총국 혹은 속지심사를 실행하는 성급 방송부서에 문서접수를 한다.
- (2) 광전총국 혹은 속지심사를 담당하는 성급 방송부서는 《행정허가법(行政许可法)》의 규정된 기한에 의거하여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수증(电影剧本(梗概)备案回执单)》을 발급한다. (관련 양식은 첨부 문서 참조)
접수한 날짜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영화촬영 기관은 문서접수를 한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에 의거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문서 접수한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에 수정 의견 혹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영화 촬영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영화시나리오가 별도의 관련 주관부서 및 전문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 일자를 2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촬영 기관에 통지한다.

제8조 속지심사를 실행하는 성 단위 방송부서는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현황을 광전총국에 문서를 보고하며, 광전총국은 기일을 정하여 관련 매체에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현황을 공표한다.

제9조 중요한 혁명 및 중요한 역사 소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상부에 시나리오 입안 심의를 의뢰해야 하며, 광전총국의 중요 혁명 및 역사적 소재 영화시나리오 입안 및 완성영화의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중요한 문헌 기록을 촬영하는 영화는 상부에 시나리오의 입안 심사를 의뢰하며 광전총국의 중요 문헌기록 영화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11조 해외와 합작으로 촬영하는 영화는 극본의 입안심사를 상부에 의뢰해야 하며, 광전총국은 해외합작영화촬영에 관한 관리규정에 의거 이를 처리한다.

제3장 영화의 심의

제12조 국가는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을 갖추고 현실, 생활, 대중들에 친근하며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영화의 창작을 장려한다.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를 지원하며, 낙후된 문화의 개조를 위해 노력하며 진부한 문화에 대해 단호히 제제를 가한다.

제13조 영화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 (1)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존을 해치는 내용
- (3)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를 해치며,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실추시키는 내용
- (4) 민족 복수심과 민족차별을 부추기며, 민족의 단결을 해치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5) 국가의 중시정책에 위배되고 불온한 종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며,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의 공중도덕을 침해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폄하하는 내용
- (10) 국가의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4조 영화에 아래의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삭제 및 수정해야 한다.

- (1) 중화문화 혹은 중국 역사를 곡해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내용, 타국의 역사를 곡해하며 타국의 문명과 미풍양속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 혁명 지도자, 영웅 인물 및 중요한 역사 인물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내용, 중국 및 해외의 유명 저서 및 유명 저서 가운데 중요한 인물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내용
- (2) 악의적으로 해방군, 무장경찰, 경찰 및 사법권의 이미지를 폄하하는 내용
- (3) 음란하고 비속한 저급한 내용이 섞여 있어, 음란, 강간, 매춘, 윤락, 성행위, 변태적인 성행위 등의 줄거리 및 남녀의 성기관 등 기타 은밀한 부위가 드러나는 내용. 불결하고 저속한 대사, 노래, 배경음악 및 목소리 효과 등이 담긴 내용
- (4) 살인, 폭력, 공포 등의 내용이 섞여 있으며 사실과 거짓,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가치 성향을 전도시키고, 정의와 정의롭지 못한 것의 기본 성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불법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묘사하며, 특수한 조사 수단을 노출시키는 내용, 자극적인 살인, 폭력, 혈연이 난무하거나, 마약, 도박 등의 내용을 담은 것, 포로를 학대하고 범죄자 및 용의자에 대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을 담은 내용, 과도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 대사,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 등.
- (5)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선양하고 의도적으로 민족의 낙

- 후 된 면모와 사회의 어두운 면을 확대 부각 시키는 내용
- (6) 종교극단주의를 고취시키고, 각 종교 및 종파, 종교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모순과 충돌을 부추기고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내용
 - (7)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확대, 포획 사살, 국가보호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선양하는 것

제15조 영화의 서명, 자막 등 언어문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신용 언어 문자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通用语言文字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해야 한다.

제16조 영화의 기술품질은 국가의 관련 영화기술표준에 의거 심의해야 한다.

제17조 촬영을 완성한 영화는 관련 영화심의기관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의뢰하는 영화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음성 및 화면 녹음필름

1. 음성 및 화면녹음 필름 1세트 (베타 녹화테이프를 사용하여 음성 및 화면 녹음필름을 대체할 경우 별도로 광전총국의 심의를 받아야 함), 디지털 영화는 고화질 디지털 프로그램 1세트
2. 중국산영화는 심의 시에 1식 4편
3. 영화의 주요 창작인원 명단
4. 영화의 영문 번역명 보고 (보통 사전에 심사 보고)
5. 원작 개편 의견서
6. 공동촬영 제작 계약서
7. 완성대본 1부
8.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수증》

(2) 표준 복사

1. 표준 복사 2세트 (광전총국 및 중국영화자료관 각각 1세트)
2. 영화의 1/2 녹화 테이프 3세트 (중외합작 촬영 3세트), 베타 녹화테이프, 베타 홍보 테이프, 녹화비디오테이프(终混八轨带) 각 1세트
3. 심의의뢰 표준 복사 기술 감정서
4. 민족 언어 번역제작으로 지정된 영화의 음향효과 소재
5. 완성 대본 3세트 (민족 언어 번역제작 영화 4세트)
6. 관련 스틸픽처

디지털영화의 기술심사 표준 및 제출 요망 자료는 광전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영화의 심의 절차

- (1) 영화 촬영 기관은 광전총국 영화심의위원회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광전총국 영화심의위원회는 음성 및 화면 녹음 필름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이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영화는 《영화심사결정서(影片审查决定书)》와 《영화상영허가증》 타이틀을 발급한다. 불합격한 영

화 혹은 수정을 해야 하는 영화는 《영화심사결정서》 중 설명을 하고, 이를 영화 제작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3) 광전총국 영화심의위원회는 표준 사본(디지털 프로 테이프)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이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합격한 경우 《영화상영허가증》을 발급하며, 불합격 또는 수정을 가해야 하는 영화는 영화제작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 (4) 영화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수정을 가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심사 기한은 다시 계산된다.
- (5) 영화제작 기관이 영사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영화심사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광전총국 영화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광전총국 재심위원회는 업무일 기준 22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한다. 재심에 합격한 경우 《영화상영허가증》을 발급하며, 불합격한 경우 영화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 한다.
- (6) 속지심사를 시행하는 성급 방송부서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영화심사를 해야 하고, 합격한 영화는 《영화심사결정서》와 《표준 복사 기술 감정서 심의 의뢰(送审标准拷贝技术鉴定书)》를 발급하며, 심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18조 (1), (3), (4)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영화제작 기관은 《영화심사결정서》와 《표준 복사 기술 감정서 심의 의뢰》 및 본 규정 17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광전총국에서 《영화상영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9조 속지심사를 진행하는 성 단위 방송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영화심의를 광전총국 영화심의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영화 제작기관은 성급 방송부서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광전총국 영화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공동 촬영한 영화는 등록수속을 한 기관이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영화심의 기관에 심의를 실시한다.

제21조 중요 혁명 및 중요 역사, 중요 문헌 기록 등을 소재로 다룬 영화, 특수 소재 영화, 해외 합작 영화는 성급 방송 부서에서 초심 심의 동의 후에 광전총국의 심의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중앙 및 국가기관에 소속된 영화제작기관 및 모든 《영화제작허가증(단편)》을 소지한 기관이 촬영한 영화는 광전총국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직접 심의를 받는다.

제23조 수입 영화의 심의는 《영화관리조례》 제3장의 영화수입과 본 규정의 제3장 영화 심의에 관한 관련 조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4장 부칙

제24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화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2006년 6월22일 부로 시행된다. 1997년 1월 16일 방송영화영상부서가 배포한 《영화심사규정(电影审查规定)》(방송영화영상부령 제22호)와 2004년 7월 6일 광전총국이 배포한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입안, 영화심사 임시규정(电影剧本(梗概)立项、电影审查暂行规定)》(광전총국령30호)은 동시에 폐지된다.

9.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제목	关于促进电影制片发行放映协调发展的指导意见
게재일	2011-11-29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

통일되고 개방적인 경쟁 질서를 갖춘 현대 영화시장 체계를 구축하고, 영화업계 개혁발전의 성과를 확대하며 영화산업 전체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총국에서는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의 조율발전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영화제작과 배급 상영의 이익 배분 수준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시장 규율에 부합되는 영화 투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관례를 참고하여 영화관은 영화의 최초 상영의 분장(分账)비율이 원칙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영화관 건설을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영화관 건설, 경영 원가를 낮추며, 영화산업의 전체 이익을 보호하고 영화관 건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영화관의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영화관의 연간 토지 임대료는 원칙상 연간 흥행수입의 15%를 넘지 않도록 건의한다.
3. 원선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원선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며, 원선의 ‘브랜드 통일, 영화공급 통일, 경영 통일, 관리 통일’의 경영 이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 배급 상영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시행 세칙(시행)(关于改革电影发行放映机制的实施细则(试行))》(광발판자 [2001] 1519호)의 관련 취지에 따라, 영화관이 서약하는 형식으로 원선(院線)에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은 원칙상으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에 영화관이 계약을 변경하여 자산 연계 50% 이상으로 원선에 가입하려 할 경우 서약 원선과 협의를 통하여 자산 연계 원선에 가입할 수 있다. 원선은 서비스 정신을 수립하고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여 우수한 서비스 수준으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4. 영화관 광고 상영 관리를 규범화시키고 영화광고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화 배급 상영이익 조정이 합리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영화관 광고 상영 경영권은 점진적으로 영화관에 돌아가게 하도록 하며, 영화제작사는 영화 상영 광고 경영에 다시는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영화관 광고의 상영과 관련된 기타 규정은 국가 및 해당 업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5. 각 영화기관은 거국적인 인식과 책임의식을 확립하여 국가의 영화관리 관련 법규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실제로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영화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귀 협회에서는 《지도의견》을 해당 업계 관계자에 전달하고 관련 조정 작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각 영화기관은 국가의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개혁을 심화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상황에 맞는 영화산업 발전 경영방식을 모색하고 서로 단결 협력하며 중국의 영화산업의 전면적인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과 공헌을 해주기 바란다.

10.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제목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게재일	2016-11-07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54호)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은 2016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시진핑

2016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2016년 11월 7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영화 창작, 제작
- 제3장 영화 배급, 상영
- 제4장 영화산업 지원 및 보장
- 제5장 법적책임
-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영화산업의 건전한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알리며 영화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중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영화의 창작, 제작, 배급, 상영 등 활동 (이하 영화 활동이라 칭함)에 종사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영화란 시청 기술 및 예술적 수단을 운용하여 촬영 제작한 것으로 필름 혹은 디지털 매체 기록물이며 일정한 내용을 표현하는 유성 혹은 무성의 연속 화면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에서 규정한 영화 기술표준에 부합되는 영화관 등 고정 상영 장소 혹은 이동 상영 장비를 사용하여 공개 상영되는 작품을 말한다.

인터넷, 통신망(电信网), 방송망(广播电视网)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영화를 전파할 경우, 인터넷, 통신망, 방송망 등 정보네트워크 관리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영화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대중에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를 견지하고, 사회적 효과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상호 통일을 실현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을 굳건히 지향하고 백화제방(百花齐放)과 백가쟁명(百家争鸣)의 방침을 견지하며 영화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영화 창작인들이 실제에 가깝고 생활과 친근하며 대중에 다가설 수 있도록 지도하며 창작의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이 서로 통일을 이루는 우수한 영화를 만드는 것을 장려한다.

제5조 국무원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현지 상황에 의거하여 영화산업 발전을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영화 및 관련 산업정책을 제정하여 통일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영화시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영화시장의 번영을 촉진한다.

제6조 국가는 영화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응용을 장려하며 영화기술표준을 제정 및 보완하여 기업 주체, 시장 지향, 산학연이 상호 결합된 영화 기술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영화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업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적재산권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조치를 취하여 영화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영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영화 활동에 종사하는 공민, 법인체와 기타 기구는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을 운영, 보호,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는 공민, 법인체와 기타 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영화 캐릭터 상품 등의 파생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8조 국무원 영화주무부처는 전국의 영화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영화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유관 기관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된 영화 업무를 책임진다.

제9조 영화업계 단체는 법에 따라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하여 업무교류를 진행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배우, 영화감독 등 영화업계 종사자는 도덕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추고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직업윤리를 엄수하며 자율을 강화하여 양호한 사회적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영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화 평론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우수한 영화 및 영화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한 기관이나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제11조 국가는 평등하고 상호 윈윈하는 영화국제협력과 교류를 장려하여 해외 영화제(전시회) 참여를 지원한다.

제2장 영화창작, 촬영

제12조 국가는 영화의 시나리오 창작 및 소재, 장르, 형식, 수단 등의 혁신을 장려하고 영화 학술 연구 토론 및 업무 교류를 장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영화 창작의 수요에 근거해 영화 창작자들이 기층과 대중 속에 진입해 생활을 체험하는데 편의와 도움을 준다.

제13조 영화를 촬영하고자 하는 법인, 기타 기관은 영화 시놉시스를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이중 중요한 소재 혹은 국가 안보, 외교, 민족, 종교, 군사 등 분야와 관련된 소재일 경우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영화 시놉시스를 상급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영화 시놉시스 또는 영화 시나리오가 본 법 제16조 규정에 부합될 경우, 국무원 영화주무부처는 촬영할 영화의 기본 상황을 공지하고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에서 등록 신고 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승인 문건을 발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에서 제정한다.

제14조 법인 및 기타 기관은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해외 기관과 영화를 공동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며 민족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활동에 종사하는 해외 기관과는 합작할 수 없으며 상기 행위가 있는 개인을 조빙하여 영화 촬영에 참여시켜도 아니 된다.

합작하여 촬영한 영화가 창작, 출자, 수익 분배 등 분야의 비율 기준에 부합될 경우 동 영화는 중국 국내 법인, 기타 기관이 촬영한 영화로 간주한다.

해외 기관은 국내에서 단독으로 영화 제작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해외의 개인은 국내에서 영화 제작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공안, 문물보호, 경관 명승지 관리 등 부서와 협력하여 법인 및 기타 기관이 본 법에 따라 영화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영화 제작 활동에 종사할 경우, 환경보호, 문물보호, 경관 명승지 관리 및 안전 생산 등에 관련된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고 촬영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 영화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1)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저항을 부추기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집행을 파괴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의 보존을 해치고,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

- 를 침해하며 국가의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하는 내용
- (3)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비방하고 민족의 복수심, 민족 차별을 부추기며 민족의 미풍양속을 침해하고, 민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역사 인물을 왜곡하며, 민족의 감정을 해치고 국민의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 (4) 국가중시정책을 파괴하도록 선동하고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5) 사회의 공중도덕을 침해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며, 음란, 도박, 마약 등을 선양하고 폭력과 공포를 과도하게 묘사하며, 범죄를 부추기거나 범죄의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 (6)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내용
 - (7) 타인을 비방, 모독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유포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8) 법률, 행정 법규상 금지된 기타 내용

제17조 법인 및 기타 기관은 해당 제작이 완성된 영화를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는 신청 수리일부 터 30일 안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하는 영화는 공개상영을 허용하며, 《영화상영허가증(电影公映许可证)》을 발급하고 이를 공표한다. 본 법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영화는 상영을 불허하며 신청인에게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국무원 영화주무부처는 본 법에 의거하여 영화 심사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표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영화 심사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표준을 제정하려면 사회 각계로부터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전문가를 구성하여 논증을 해야 한다.

제18조 영화 심사를 진행할 때, 최소한 5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 및 기타 기관이 전문가들의 심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심사의견을 심사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심사 전문가에는 전문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전문가와 영화 소재에 근거하여 특별 초빙한 전문가가 포함된다. 전문가 선정과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에서 제정한다.

제19조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영화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영화를 제작하는 법인 및 기타 기관은 취득한 《영화상영허가증》의 로고를 영화의 타이틀 부분에 배치해야 한다. 영화 상영이 미성년자 등 관객의 신체 혹은 심리적 부적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경우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화는 배급, 상영해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 통신망, 방송망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어서도 아니 되고 음반·영상 제품으로 제작되어서도 아니 된다. 단,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제작 완성된 영화는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해야 만이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다. 해외 영화제에 참가할 의향이 있을 경우 전시회 참여 법인 및 기타 기관은 동 해외 영화제 진행 전 관련 자료를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22조 공민, 법인과 기타 기관은 해외 영화의 필름 현상 및 프린트, 가공, 후반 작업 등 업무를 하청 받을 수 있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에 보고하여 등록 신고한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 안정을 해하며 민족감정을 해치는 등의 내용이 있는 해외 영화 관련 업무를 하청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국가가 설립한 영화당안기관(영화기록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영화 당안(档案)⁶⁸⁾을 접수, 수집, 정리, 보관하며 이를 사회에 개방한다.

국가가 설립한 영화당안기관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선진 기술을 사용하여 영화 당안관리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영화를 제작한 법인 및 기타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영화 당안의 보관 업무를 진행하고, 국가가 설립한 영화 당안기관에 영화 관련 문서를 이관, 기부, 보관한다.

제3장 영화 배급, 상영

제24조 기업이 영화배급 활동에 적절한 인력, 자금 등 조건을 갖추 경우,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영화 배급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업, 개인사업자가 영화상영 활동에 적절한 인력, 장소 및 설비 등 조건을 갖추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영화관 등 영화 고정 상영 장소의 영화상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25조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영화 배급, 상영 활동의 심의를 담당하는 영화주무부처는 신청 수리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이를 인가하며 《영화배급경영허가증(电影发行经营许可证)》 또는 《영화상영경영허가증(电影放映经营许可证)》을 발급하고 이를 공포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인가를 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제26조 기업 또는 개인이 영화 유동 상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 해당 명칭 또는 경영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상영 장비 등 현황을 경영구역이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68) 기록 파일

제27조 국가는 농촌의 영화 상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정부가 출자하여 농촌 영화 공익 상영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및 보완하고 사회 자본이 농촌 영화 상영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농촌 지역의 영화 관람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농촌지역 대중들의 영화 관람 수요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농촌 영화 공익 상영을 농촌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농촌 영화 공익 상영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농촌의 영화 공익 상영 활동에 종사할 경우, 허위 보고, 사칭 등의 방법으로 농촌 영화 공익 상영 보조금을 편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국무원의 교육, 영화주무부처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익한 영화를 공동 추천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이 무료로 관람하도록 지원하며 취학 중인 학교에서 배치한다.

국가는 영화관 및 영화 유동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이 티켓 우대, 다양한 조건의 영화관 건설 및 거주 지역 상영관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성년자, 노인층,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및 농촌 이주근로자 등의 영화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며 영화관 및 영화 유동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 소재지역의 인민정부는 이에 대하여 장려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영화관은 중국의 내국 법인 및 기타 기관이 제작한 영화의 상영 횟수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상영 분량은 연간 상영 영화 분량 전체 합계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영화관 및 영화 유동 상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은 영화 상영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영화관의 시설, 장비 및 유동 상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영화 상영 기술의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영화관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전산 티켓 판매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제31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느 누구도 상영 중인 영화를 녹음 녹화할 수 없다. 녹음 녹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화관 관계자는 이를 저지하고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영화관에서 퇴장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국가는 영화관이 관객에게 명시한 영화 상영 시작 전에 공익 광고를 상영하도록 장려한다.

영화관은 관객에게 명시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부터 영화 상영 종료까지 광고를 내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영화관은 치안, 소방, 공공장소 위생 등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여 상영장소 내의 공공 질서와 환경위생을 지키고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그 누구도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독극물, 부식성 등이 있는 위험물품을 영화관 등 상영 장소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으로 총기, 탄약, 관리 통제 기구를 영화관 등 상영 장소에 반입해서도 아니 된다. 불법으로 상기 물품을 휴대한 자를 발견했을 경우 영화관 관계자는 그가 입장을 못하도록 막고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은 사실대로 영화 판매 수입을 통계하고 진실 되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거래, 판매 수입 허위 신고, 부정 신고 등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관객을 기만 오도하고 영화시장 질서를 교란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 국내에서 해외 영화제(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영화산업 지원 및 보장

제3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영화의 창작 및 제작을 지원한다.

- (1)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특수 소재의 영화
- (2)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화
- (3) 예술혁신 성과를 선보이며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영화
- (4) 과학교육사업 발전과 과학기술 보급을 추진하는 영화
- (5) 기타 국가 지원 정책에 부합되는 영화

제37조 국가는 관련 문화산업 전문 자금 및 기금이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각 단계 및 시기별 영화산업의 발전 상황에 비추어 자금력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결부시켜 재정자금의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합 배치하며 아울러 관련 자금, 기금의 사용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제38조 국가는 필요한 세수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과 세무 주무부처에서 재정과 세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제정한다.

제39조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대중의 수요와 영화시장 발전의 수요에 근거해 영화관 건설 및 재건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전체 발전 계획 및 도농 건설 전체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영화관 부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기존의 영화관 부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영화관 건설과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금융기관이 영화 사업 종사 및 영화 인프라 개선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의거하여 영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담보 업무를 전개하고 신용대출 등 방식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보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영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융자담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영화산업에 담보융자를 제공하고 재 담보, 공동담보 및 담보와 보험 상호 결합 등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국무원의 영화주무부처가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지한 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출 기한 및 이율을 책정한다.

제41조 국가는 법인 및 기타 기관이 해외로 진출하여 영화 공동 제작 등 방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며, 법에 의거하여 그의 대외무역, 해외 융자 및 투자 등 합리적인 외화 사용 수요를 보장한다.

제42조 국가는 영화 인재 육성 계획을 실시한다.

국가는 여건이 되는 대학교, 전문대, 중등 직업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이 영화 관련 전공과 수업을 개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산업 발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영화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기관이 학교의 관련 인재 양성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43조 국가는 조치를 취해 농촌지역, 국경지역, 빈곤지역과 소수민족지역에서 영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소재의 영화 창작을 장려 및 지원하고 영화의 소수민족 언어문자 번역 작업을 강화하여 소수민족지역 대중들의 영화 관람 수요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제44조 국가는 우수한 영화의 외국어 번역 작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외교, 문화, 교육 등 해외 교류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의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기관이 영화의 해외홍보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5조 국가는 민간 역량이 기증, 후원 등의 방식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법에 의해 혜택을 준다.

제46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영화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본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만 신고, 적발을 수리하여 즉시 사실 확인, 처리, 답변을 준다. 영화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정황은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47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등 활동에 종사 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업무 분장에 따라 이를 금지시키고 영화 필름 및 불법소득과 불법 활동에 사용된 전문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아래의 상황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속하는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이 관련 허가증을 말소시키고 관련 승인 혹은 증명서류를 취소시킨다.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본 법에서 규정한 허가증, 승인 혹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매매하거나 혹은 다른 형식으로 불법 양도를 할 경우
- (2) 사기, 뇌물 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본 법 규정의 허가증, 승인 혹은 증명서류를 취득한 경우

제49조 아래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영화 필름과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배급, 상영한 경우
- (2)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영화 내용을 변경하고,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허가증》을 다시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급, 상영,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 (3)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영화제(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제50조 중국의 국가 존엄,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며 민족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해외 영화의 현상, 가공 및 후반 작업 등 업무를 수주 받은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는 불법 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영화 필름과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경우 영화주무부처가 이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51조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허위 거래, 판매 수입 허위 및 부당 신고 등 행위로 영화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및 정리 정돈 명령을 내리며 사건 경위가 특별히 심각할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말소한다.

영화관이 관객들에게 명시한 영화 상영 시작 시간 이후 영화 상영 종료 전에 광고를 내보낼 경우, 현금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는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내에서 해외 영화제(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는 위법활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전시회에 출품한 영화 필름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처벌 처분을 받은 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외영화제(전시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이 무단으로 해외 영화제(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영화제(전시회)에 무단으로 출품시킬 경우, 5년 안에 관련된 영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국무원 영화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는 위법활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전시회에 출품한 영화 필름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할 경우 처벌 처분을 받은 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영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법인, 기타 기관 또는 개인사업자가 본 법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허가증이 말소됐을 경우, 말소된 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법인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 말소 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화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기관의 법인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54조 아래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및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가한다.

- (1) 국가의 유관 규정을 어기고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제멋대로 음반·영상제품으로 제작한 경우
 - (2) 국가의 유관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 통신망, 방송망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무단으로 전파한 경우
 - (3) 허위 신고, 명의 사칭 등 수단으로 농촌 영화공익상영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 (4) 영화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5) 법에 따라 영화파일을 접수, 수집, 정리, 보관, 이관하지 않은 경우
- 영화관이 상기 제(4)항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고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5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관계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1)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혹은 다른 이득을 수취할 경우
- (2) 본 법 규정을 어기고 승인 활동을 했을 경우
- (3) 감독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4)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
- (5) 농촌 영화 공익 상영 보조금 또는 관련 전용 자금 및 기금을 횡령, 유용, 차단, 착복한 경우
- (6) 기타 본 법 규정을 어기고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제5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해 2년 안에 2차례 행정처벌을 받았고 본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제57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 및 해당 관계자는 본 법에서 규정한 처벌 종류와 강도를 엄격히 따라야 하고 위법행위의 성격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행정 처벌권을 행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에서 제정한다.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가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위법행위와 관련된 장소, 시설을 폐쇄하거나 또는 위법행위에 사용된 재물을 차압, 압수할 수 있다.

제58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영화주무부처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본 법에 따라 내린 행정처벌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 신청을 하거나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중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에서 내린 영화 상영의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우선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9조 해외 자본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영화기업을 설립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본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제목	关于地方对等交流互办单一国家电影展映活动审批职责下放省级新闻出版广电行政部门的实施细则的通知
게재일	2014-03-18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방송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⁶⁹⁾ 방송국:

《국무원의 50개 항목의 행정심의항목 취소 및 이관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取消和下放50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국발 2013 27호) 및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주요 직무 내설기관과 인원 편제규정(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국판발[2013] 76호)에 2013년 8월부터 지방이 대등하게 교류하며 상호 처리해온 단일 국가 영화전시상영 활동의 심사 직권을 성급 신문출판 방송행정 부서에 이관한다. 지방이 관련 행정 심의 및 활동 조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방송영상축제(전시회) 및 프로그램 교류행사 관리규정(广播影视节(展)及节目交流活动管理规定)》(광전총국령 38호)를 참고하여 광전총국은 《지방의 대등하게 교류하며 상호 처리해온 단일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关于地方对等交流互办单一国家电影展映活动审批职责下放省级新闻出版广电行政部门的实施细则)》을 제정하였다.

단일 국가 영화전시상영행사 심사 직권의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로 이관 관련 시행세칙

- 본 실시 실시세칙이 지칭하는 지방이 대등하게 교류하며 상호간에 처리해온 국가, 지역 영화 전시상영행사란 주로 성급 신문출판방송부서의 인가를 거쳐 성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특정 국가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영화 전시 상영 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전시상영행사는 영화문화교류라는 공익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각 성급 신문출판 방송행정부서는 이러한 외부 영화 전시 상영 행사를 개최할 때 국가의 관련 외시정책을 진지하게 관찰 집행하여야 하며 본 지역의 해외 문화교류업무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평등호혜의 원칙과 쌍방향 교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총국은 각 지역의 신문출판방송부서 및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외 교류 채널을 개척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부서가 해외에 나가 다양한 형식으로 중국영화전시상영행사를 갖는 이른바 중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장려한다. 아울러 현지 성급 신문출판방송행정부서를 거쳐 상기의 행사를 총국에 문서로 등록해야 한다.
- 각 성급 신문출판방송행정부서는 이런 행정심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명확히 하고 해외영화심사팀을 구성하여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중 확정된 심사표준에 근거하여 해외영화에 대한 내용의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해외영화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심의한 행사에 상영되어서는 안 된다.

69) 병단(兵团):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4. 각 성급 신문출판방송행정부서는 행사의 국내외 주관, 주최, 협찬기관의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 영화의 전시 상영행사와 관련된 주관 및 주최 기관은 성급 신문출판방송부서의 인가를 얻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영화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 이를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5. 각 성급 신문출판방송행정부서는 이러한 외국영화 전시 상영행사를 심의하고 계획할 때에 행사의 규모 행사에 참가하는 영화의 수량, 상영 범위와 상영 회수 등에 대하여 적당히 한계를 설정하고 인가된 전시상영 행사가 현지의 영화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참가영화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여 각종 형식의 침해 및 불법복제판 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6. 각 성급 신문출판 방송행정 부서는 이러한 해외영화 전시상영행사를 심의하는 동시에 중국에 문서 보고한다. 문서 보고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사명칭 및 명의, 주최 및 주관기관, 관련 국가 (지역), 행사 시간 및 장소, 참가 영화 제목 및 상영장소와 횟수. 중국은 문서보고 내용에 의거하여 《영화카피 임시통관 공문(影片拷贝临时入出关函)》과 《수입방송영화영상프로테이프 인출서(进口广播电视电视节目带(片)提取单)》, 영화 순번 등을 발급하여 주최기관이 영화 필름 복제 임시 통관수속 및 영화 상영 극장을 안배 할 수 있도록 한다.
7. 중앙, 국가기관 및 관련 직속 기관이 개최하는 해외영화 전시상영 행사, 각 성(시, 구)가 개최하는 다국적 해외 영화 상영행사도 중국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8. 국가의 중대 외교 행사 및 관련 국가 및 지역이 체결한 영화교류 협의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직접 인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영화 전시 상영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상황이 있을 경우 관련 성급 신문출판방송행정부서는 지원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이 세칙은 배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해석권은 광전중국의 영화국에 있다.

12.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电影市场管理规范票务系统使用的通知
게재일	2014-01-17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 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

2014년 1월 17일 신광전발(新广电发)[2014]1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영상국, 국가영화특별자금관리위원회 관공실, 각 원선, 관련 영화사, 중국영화제작자협회,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

최근, 국가문화산업정책의 추진 하에 중국 영화산업은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화창작 생산, 영화관 건설과 영화 박스오피스가 수년 연속 고속 성장해 보기 드문 발전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영화관 시장에서 일련의 법규에 어긋나는 경영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박스오피스 탈루 허위신고 행위가 각종 형식으로 나타나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영화의 명예를 손상시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산업의 고속 발전에 따라 생기는 시장의 무질서를 제때에 관리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영화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공개·공정·공평·투명’한 영화시장시스템 구축 및 완비, 전국을 일괄적으로 개방하고 질서 있게 경쟁하는 영화 시장환경 조성,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최근 발표한 《영화관 티켓팅 관리 시스템 기술 요구와 측량방법》(GY/T276-2013) 시행 및 영화시장 규범화를 위하여 영화시장 현황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통지한다.

하나. 티켓팅(발매관리) S/W제품 시장진입제도를 엄격히 완비한다.

- (1)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은 현행 《영화관 컴퓨터 티켓팅 관리시스템 S/W 기술규범》(GY/T207-2005)을 기초로 수정한 것이며 신 표준은 과학기술진보와 영화시장발전의 수요를 구현했다. 각 관련 영화사와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S/W(이하 ‘영화관 티켓팅 S/W’라 함) 제공업체는 제때에 S/W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영화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관 티켓팅 S/W를 새로 설치해선 안 된다.
- (2) 영화관 티켓팅 S/W는 제품검측과 등록의 엄격한 진입관리를 시행하며 제품은 검사를 거쳐 등록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영화관 티켓팅 S/W는 발표한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량방법》(GY/T276-2013)의 모든 규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규범요구의 모듈과 기능과 관련해 변동 또는 업그레이드 발생 시 뉴버전 S/W제품으로 다시 등록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 (3)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국가영화특별자금관리위원회 관공실(‘영화자금관공실’로 약칭)에 위탁하여 전국 영화 티켓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화관 티켓팅 S/W제품의 등록관리를 담당하며 합격한 영화관 티켓팅 S/W제품을 등록 공시한다. S/W 제공업체는 영화관 티켓팅 S/W제품 등록을 신청할 때 영화자금관공실에 S/W 제품 등록 신청, S/W 설치디스크, 필요한 파일, 설계 파일, 사용자 매뉴얼 및 S/W 저작권등기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4) 광전충국은 영화기술품질시험소에 위탁해, 최근에 발표한 《영화관 티켓팅 관리 시스템 기술 요구와 측정방법》에 따라 영화자금관공실이 관리하는 영화관 티켓팅 S/W 제품의 표준부합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한 파일, 설계파일, 사용자 매뉴얼, S/W 저작권 등기문서 등 관련 파일을 검사하며 검사에 통과한 S/W 제품에 대해 시험보고서를 발부한다.

둘. 티켓팅S/W제품의 시장 응용관리를 강화한다.

- (1) 영화관 소재지 현금 이상(현금 포함) 영화주관부서는 영화관 티켓팅 S/W 설치 후 검수 및 샘플링 추출하여 검사한다. 영화관은 같은 시기 국가가 발표한 표준에 부합하고 등록을 통과한 영화관 티켓팅 S/W제품을 1세트만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영행위를 심각하게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 (2) 영화관은 최초 설치 또는 다른 업체의 티켓팅 S/W를 교체 설치할 때 S/W업체에 S/W 제품등록증서 사본 비치를 요구해야 하며 설치 또는 교체 설치 후 영화관 소재지 현금 이상(현금 포함) 영화 주무부처에 검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검측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영화관이 설치한 티켓팅 S/W에 검수검측을 진행하며 영화자금관공실 티켓팅 S/W제품등록정보와 심사 대조해 검측을 통과한 티켓팅 S/W에 대해 확인 및 파일로 저장해 향후 사용과정에서 샘플추출의 검측 근거로 삼는다.
- (3) 영화관은 이미 설치 사용하고 검수검측을 통한 티켓팅 S/W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S/W업체에 영화자금관공실이 발급한 해당 버전 S/W 업그레이드 등록설명 비치를 요구해 샘플검사 특징과 영화자금관공실 비치정보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 (4) 영화관은 일상 경영에서 규정에 따라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에 따라 티켓을 판매하고 규정된 시간요구에 따라 국가영화티켓팅종합정보시스템에 티켓팅데이터를 발송한다. 특수 상황에서 기타 방식으로 티켓을 판매하면 표준 규정 시간 내 판매정보를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에 보충해서 입력하고 보충일의 티켓팅 데이터를 국가영화티켓팅종합정보시스템에 보낸다. 영화관은 설치한 영화관 티켓팅시스템S/W 및 관련 데이터에 수정을 해선 안 되며 임의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경영 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영화관의 기초정보(영화관 명칭, 영화상영관, 좌석, 영화관 주소, 법인대표 및 연락방식 등) 변동이 발생하면 제때에 《영화관 기초정보 변경표》에 기입해 성급 영화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성급 영화주관부서는 변경신청 접수 후 7일(공휴일 제외) 내 심사를 완료하고 전국 영화 티켓팅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 (6) S/W업체는 영화관에 티켓팅 S/W제품 설치 및 A/S과정에서 영화관에 이미 설치한 티켓팅 S/W 및 관련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변경해선 안 된다. 영화관 정보의 변경이 발견되면 S/W업체와 영화관 쌍방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
- (7) 모든 티켓팅 S/W는 검측, 검수 통과 후 등록하고 2~3년마다 영화자금관공실에 신고하고 영화자금관공실은 티켓팅 S/W 등록증서를 다시 심사 발급한다. 구체적 시기는 영화자금관공실에서 각 S/W버전의 수정, 변경 및 업그레이드 상황에 따라 확정하고 각 티켓팅 S/W업체에 통지한다. 각 지역 영화주관부서 및 성 특별자금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각 영화관 티켓팅 S/W에 3년 내 재조사를 한다. 정기 재검사 외에 부정기 샘플검사를 통하여 영화관이 티켓팅 S/W시스템을 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 영화관 경영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 (1) 도시 주류 원선의 영화관에 가입하려면 국가가 인정한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을 설치 사용해 판매와 티켓팅을 관리하며 새로 발표한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관련 시장관리법 규를 엄격히 집행한다.
- (2) 영화관이 판매하는 영화표는 등록 허가된 자동 티켓판매 시스템을 통해 인쇄된 컴퓨터 표로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하고 영화관 명칭, 영화명, 상영시간, 가격, 상영관 명칭, 좌석번호 및 판매 S/W가 생성한 영화표 정보 바코드 등 필요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중에게 수기표 및 수기로 고친 표 또는 필요정보가 완전하게 프린팅되지 않은 자동티켓팅 표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영화티켓 판매를 엄격히 금한다.
- (3) 영화관은 관람객이 소지한 본 영화관이 허가한 각종 영화카드, 교환권, 바코드 및 인터넷 판매증빙 등 관람 증거에 대해 반드시 등록 인가된 자동티켓판매시스템을 통해 영화표를 교환해준다.
- (4) 자동발급 티켓에 인쇄된 가격은 관람객이 실제 지불한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판매가격이 관람객이 지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 (5) 자동발급 티켓에 인쇄된 영화명은 반드시 관람객이 실제로 관람하는 영화와 일치해야 한다. 영화표에 인쇄된 영화명과 관람객이 실제로 보려는 영화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 및 영화명이 명확하지 않은 영화표의 판매 및 사용을 엄격히 금한다. 영화관 티켓판매시스템은 영화표 인쇄, 발급에만 사용하며 기타 비용은 모두 단독으로 증빙을 발급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자동차극장 등 각종 영업목적 상영장소에도 적용된다.
- (6) 영화관은 무단으로 디지털상영서버를 등록지점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하면 안 된다.
- (7) 임의의 업체 및 개인은 《영화관리조례》와 국가 기타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상영 및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엄격히 금한다.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한 영화를 포함해 블루레이, DVD, 인터넷 다운로드 등 영화관 상영이 아닌 매개체를 통한 영화관의 영업목적 영화 상영을 엄격히 금한다.

넷. 산업관리감독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 (1) 각급 영화행정주관부서와 각 영화업체는 ‘공개·공정·공평·투명’한 시장시스템 구축, 규범 관리와 규범경영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일괄적 개방, 공정성실, 체계적 경쟁 시장 환경을 공동 조성하고 영화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2) 각급 영화행정주관부서는 시장관리직능을 강화해 일상 관리감독능력과 수단을 제고하고 각종 법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 (3)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는 업계관리, 감독, 규제, 직업윤리 구축 등 분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업계의 자율적 구축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공약을 완비해 시장시스템 구축에 있어 회원사들이 업계규범과 준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영화산업 위법위규 경영행위 신고제도와 통보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전화를 설립해 법규를 어기는 영화관에 대해 제때에 통보, 공개한다.
- (4) 각 원선은 규범화, 과학화 관리수준을 제고해 관할 영화관의 경영행위에 대해 순찰과 일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고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중용 또는 은폐해선 안 된다.
- (5) 관리감독회사는 전국 영화 배급상영시장 관리감독회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상업계약에 의거 각종 영업목적 영화관의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사찰할 때 그 행위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문명감찰을 하고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영화주무부처에 제 때 위법 위규 행위를 통보한다.

- (6) 각 상영회사는 판매 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회사의 소비자고발전화와 산업협회 신고전화 번호를 공시하고 자발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는다.

다섯. 위법위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1) 배급측, 원선과 영화관은 법률의식을 확고히 해 관련 법규와 행위규범에 따라 배급상영계약을 제정하고 경제적 계약을 통해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각급 영화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신을 지키는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2) 상술한 1,2,3 조항의 관련규정, 일반적 위규행위에 대해 계약 이익측이 계약에 따라 위약측에 위약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사정의 경중에 따라 단독 또는 동시에 아래 처벌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는 위법위규 회사에 경고 및 업계 내부에 통보하고 업계협회사이트, 《중국영화보》, 《중국영화시장》 등 매체에 공개한다.
 2.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 중국영화제작자협회 공동영화제작자, 배급측은 규정시간 내 위법위규 회사에 모든 영화 공급을 임시 중단하도록 한다.
 3. 국가영화자금판공실은 성급 특별자금사무실과 함께 1년 동안의 영화특별자금 선납세 후환급 자격, 각 자금후원, 포상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영화배급상영협회는 스타등급영화관평가 참가 자격을 취소한다. 상술행위에 존재하는 스타등급 영화관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한다.
- (3) 하기 국가 관련 법률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화상영경영허가증》 심사발급 기관은 해당 증서의 처리결정을 잠시 중단 또는 철회한다.
 1. 미등록 티켓팅 S/W제품 사용 또는 2세트 이상 티켓팅 설비 또는 티켓팅 S/W 사용해 티켓팅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티켓팅데이터를 조작해 박스오피스 허위보고 및 탈루탈세한 경우
 2. 영화관에서 영화를 불법복제, 불법 상영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영화상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영화를 상영 또는 블루레이, DVD, 온라인 다운로드 등 영화관 상영이 아닌 매개체로 상영하는 경우
- (4) 티켓팅 S/W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S/W제품을 판매 또는 영화관이 티켓팅데이터 왜곡, 2세트이상의 티켓팅 S/W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면 영화자금판공실이 해당 S/W업체 제품 등록증을 취소하고 공시하며 S/W업체의 진입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5) 각 영화경영회사의 위법위규 행위가 국가의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각급 영화주관부서는 관련정보를公安, 재정, 세관, 세무 등 유관부서에 통보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 (6) 영화관 위규사항이 처리완료 되기 전에 원선을 변경해선 안 된다. 각급 영화주관부서는 심사시 위규 영화관이 기업명칭, 법인 변경 등 방식으로 처벌을 회피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여섯. 기타 요구

- (1) 이상 규정이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에 연관되지 않을 경우 본 통지 발표일부터 집행한다.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과 연관될 경우 신규 표준에 따라 영화관 티켓팅 S/W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영화관 티켓팅 S/W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영화관은 영화상영 경영행위에 종사해선 안 된다.
- (2) 각급 영화주관부서는 본 통지가 규정한 집행과 시행을 엄격히 감독조사하고 특별 정돈 단속을 통하여 영화경영의 제도화, 규범화, 질서화를 보장한다.
- (3) 이 규정 집행과정에서 각 관련 회사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끊임없이 경험을 정리하고 관련 조치를 완비해 영화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

13. 중국산 영화 속지(属地)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제목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试行国产电影属地审查的通知
게재일	2014-02-18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국산 영화 속지 심사 시행에 관한 통지 신광전발(新广电发)〔2014〕2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영상국, 신장건설병단⁷⁰⁾ 광전국, 광전총국 각 사국, 직속 각 기관, 전국 각 영화제작기관:

간정부권(简政放权)⁷¹⁾ 정책의 강화, 행정심사승인제도 개혁, 문화 체제메커니즘 혁신, 지방 광전 주무부처의 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영화관리조례》(국무원령 제 342호),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 관리규정》(국가광전총국령 제52호)와 《국가광전총국의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심사업무 개선 및 완비에 관한 통지》(광발(2010)19호문)에 의거, 2010년 7월 이후 영화는 ‘1등급 2심제(一备两审制)’ 기초 하에 전국적으로 중국산영화 속지심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하나. 관리직무의 명확화, 심사절차 규범화

(1) 성급 광전부서와 영화심사기관의 직무

1. 본 행정구역 내 소속 영화제작사가 촬영 제작한 각종 영화의 심사를 담당하고 규정된 행정 허가기한 내 심사 결정하여 《영화심사결정서》와 관련 문서를 발표하고 영화심사 중 관련된 제작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중대 혁명과 중대 역사적 소재의 영화는 규정에 따라 성급 광전부서 영화심사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대혁명과 중대역사소재 영상창작영도소조에 보내 최종심사를 받고 《영화심사결정서》(첨부1(중대혁명과 중대역사소재영화 심사신청 설명)참고)를 발표한다.
3. 중대문헌다큐영화는 규정 요구에 따라 성급 광전부서 영화심사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대문헌다큐영화영도소조에 보내 최종심사에 통과한 후 《영화심사결정서》(첨부2《중대문헌다큐영화심사신청 설명》참고)를 발표한다.
4. 중외합작영화는 성급 광전부서 영화심사기관의 심사를 통과 후 중국영화합작영화공사 심사통과를 거쳐 《영화심사결정서》(첨부3《합작영화심사신청 설명》참고)를 발표한다.
5. 영화사는 성급 광전부서가 발표한 《영화심사결정서》와 관련 문서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내 《영화상영허가증》 관련 수속(첨부4《중국산영화심사신청 설명》과 첨부5《<영화상영허가증>설명 수령》참고)를 처리한다.
6. 영화사는 성급 광전부서 영화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70)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71)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다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영화심사기관의 직무

1. 전국의 영화관리와 영화심사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속지심사영화(관련 소재 포함)에 대한 심사승인을 담당하고 샘플추출검사를 해서 영화심사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면 속지심사의견을 기반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성급 광전 주관부서에 《영화심사표준의견서》를 하달한다.
3. 중앙과 국가기관(군대) 소속 영화제작사가 촬영한 각종 영화 및 수입영화에 대한 심사(중대혁명과 중대역사소재 영화, 중대문헌다큐영화와 중외합작영화는 먼저 관련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를 담당하고 규정된 행정허가 기한 내 심사결정을 하며 《영화심사결정서》와 관련 문서를 발표하고 영화심사 중 관련된 영화관리업무를 담당한다.
4. 각 영화에 《영화상영허가증》 발부 관련수속을 처리한다.
5. 영화사는 영화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의 심사업무를 수리한다.

둘. 심사제도 완비, 관리수준 제고

중국산영화의 속지심사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영화 관리업무를 개혁하는 중대 조치이므로 각 성의 광전부서는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사상을 통일하며 인식을 높여 업무를 개선해야 하며 이하 몇 가지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 (1) 기관을 완벽하게 완비한다.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기존의 영화관리부서와 영화심사기관의 토대에서 조정 및 보강한다. 첫째, 정치소질이 좋고 전문수준이 높으며 책임 관념이 확고하고 서비스의식이 강한 우수인재를 영화관리와 심사업무에 영입해야 한다. 둘째, 영화심사의 기술설비시설을 완비해 속지심사업무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2) 심사표준을 엄격히 한다. 창작사상성, 예술성, 감상성 통일을 제창하고 실제, 생활, 대중에 가까우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영화, 정확한 창작지향성을 견지하고 선진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지원 및 낙후문화 개조에 힘쓰며 부패한 문화를 결사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영화관리조례》와 관련 영화심사의 법규를 엄격하게 따라 영화의 의법심사를 통해 영화창작의 정확한 지향성을 끊임없이 구현 및 견인하고 영화 예술의 품질을 부단히 제고한다.
- (3) 서비스의식을 강화한다. 엄격하게 법에 따른 심사를 함과 동시에 행정심사승인 규정 시한에 따라 영화를 제때에 심사하고 심사결정을 내리며 영화사에 질 좋고 효율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 업무 중의 부정기풍을 철저히 근절한다.
- (4) 업무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각 성 광전부서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소통협조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영화심사와 관리업무에서 각 성의 성공노하우를 수용해 문제를 제때 파악하고 조사연구, 교육, 지도감독 등 방식으로 타깃성 있는 협조와 지도를 한다. 영화심사 품질과 영화관리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영화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통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별 성급 광전부서가 기술설비 등의 원인으로 영화 심사를 잠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첨부: 1. 중대혁명과 중대역사소재 영화 심사신청 설명

2. 중대문헌 다큐영화 심사신청 설명

3. 합작촬영영화 심사신청 설명

4. 중국산영화 심사신청 설명
5. 《영화상영허가증》 수령 설명

첨부1: 중대혁명과 중대역사소재 영화(‘중대소재’로 약칭함) 심사신청 설명

(1) 심사신청 절차

중대소재영화 촬영완료 후 제1 출품사 등록 소재지의 성급 광전부서가 1차 심의를 한다. 1차 심의 통과 후 중대혁명과 중대역사소재 영상창작영도소조영화팀(‘중대소조’로 약칭함)에 다시 보고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소속 영화제작사가 신청 입안하고 촬영 완료한 중대소재영화는 중대소조에 직접 보고한다.

(2) 심사신청에 필요한 자료

1. HD 마스터 테이프(HDCAM) 1세트
2. 중대소조가 입안에 동의한 회답
3. 성급 광전부서가 발급한 《영화심사의견표》(대표자 사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 부서 직인 날인 필요)
4. 《영화 심사 인정 신청표》 전자파일 3부 1세트(제1 출품사 직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5. 《주요 창작자 등록표》 1부 전자파일 첨부
6. 출품사 추가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답의 복사본 또는 계약서, 출품사 수와 출품자 수가 서로 부합해야 함
7. 완성대본 전자파일
8. 《영화촬영허가증(단편)》 또는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수증》 반환
9. 영화 영문 번역명 보고서(사전 서면신청 필요, 동의 후 중문영화 이름으로 인쇄제작)
10. 영화명 수정에 동의한 회답 복사본
11. ‘《영화상영허가증》 타이틀’(‘드래곤 마크’로 약칭함)을 수령한 담당자의 위임장(제1 출품사 직인 날인 필요)

첨부2: 중대문헌다큐영화 심사신청 설명

(1) 심사신청 절차

중대문헌 다큐영화 촬영제작완료 후 제1 출품사 등록 소재지의 성급 광전부서가 최초 심의를 하며 최초 심의 통과 후 중대문헌 다큐영화 창작영도소조팀에 다시 보고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소속 영화제작사가 신청 입안하고 촬영제작을 완료한 중대문헌 다큐영화는 중대문헌다큐영상 창작영도소조팀에 직접 보고한다.

(2) 심사신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HD 마스터 테이프(HDCAM) 1세트
2. 중대문헌 다큐영상 창작영도소조팀이 입안에 동의한 회답
3. 성급 광전부서가 발급한 《영화심사의견표》(대표자 사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 부서 직인 날인 필요)
4. 《영화 심사 인정 신청표》 3세트 1부 전자파일(제1 출품사 직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5. 《주요 창작자 등록표》 1부 전자파일 첨부
6. 출판사 추가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답의 복사본 또는 계약서, 출판사 수와 출판자 수가 서로 부합해야 함
7. 완성대본 전자파일
8. 《영화촬영제작 허가증(단편)》 또는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수증》 반환
9. 영화 영문 번역명 보고서(사전 서면신청 필요, 동의를 거친 후 중문 영화명으로 인쇄제작)
10. 영화명 수정에 동의한 회답 복사본
11. 드래곤 마크를 수령한 담당자의 위임장(제1 출판사 직인 날인 필요)

첨부 3: 합작촬영영화 심사신청 설명

(1) 심사신청 절차

중외합작 촬영제작을 마친 영화는 성급 광전부서 영화심사기관이 심사 통과 후 중국영화합작 제작사 심사 통과를 거쳐 성급 영화심사기관이 《영화심사결정서》를 발표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소속 영화제작사가 신청입안하고 촬영 제작 완료한 합작영화는 중국영화합작제작사가 관련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다.

(2) 드래곤 마크 수령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HD 마스터 테이프(HDCAM) 1세트
2. 성급 광전부서가 발급한 《영화심사결정서》(성급 광전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3. 성급광전부서가 발급한 《영화심사의견표》(대표자 사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4. 중국영화합작영화사 심사의견(합작사 직인 날인 필요)
5. 《합작영화 심사 인정 신청표》 3세트 1부 전자파일 첨부(제1 출판사 직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6. 《주요 창작자 등록표》 1부 전자파일 첨부
7. 영화 영문 번역명 보고서(사전 서면신청 필요, 동의를 거친 후 중문 영화명으로 인쇄제작)
8. 출판사 추가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답의 복사본 또는 계약서, 출판사 수와 출판자 수 서로 부합해야 함
9. 완성대본 전자파일
10. 《중외합작촬영영화 허가증》 반환
11. 영화명 변경에 동의한 회답 복사본
12. 드래곤 마크를 수령한 담당자의 위임장(제1 출판사 직인 날인 필요)

첨부 4: 중국산영화 심사신청 설명

(1) 심사신청 절차

중앙과 국가기관 소속이 아닌 영화제작사가 촬영 제작한 일반소재의 중국산영화는 성급 광전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광전부서가 발표한 《영화심사결정서》와 기타 자료를 가지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내 드래곤 마크를 수령하는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2) 드래곤 마크 수령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HDCAM(또는 더빙된 믹싱테이프, BETA 버전 테이프) 1세트와 영화 DVD 1세트
2. 성급 광전부서가 발급한 《영화심사결정서》(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3. 성급 광전부서가 발급한 《영화심사의견표》(대표자 사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4. 《중국산 영화 심사 인정 신청표》 3부 1세트 전자파일 첨부(제1 출품사 직인, 성급 영화심사기관 또는 성급 광전부서 직인 날인 필요)
5. 《주요 창작자 등록표》 1부와 전자파일 첨부
6. 영화명 변경 동의서
7. 출품사, 촬영사 추가 또는 변경에 동의한 인가신청 및 계약서(출품사 수와 출품자 수가 서로 부합해야 함)
8. 영화 영문명 인가신청
9. 완성대본의 전자파일
10. 《영화제작허가증(단편)》 또는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수증》 반환
11. 드래곤 마크를 수령한 담당자의 위임장(제1 출품사 직인 날인 필요)

첨부5: 《영화상영허가증》수령 설명

(1) 심사신청 절차

영화 (중대혁명과 역사소재, 중대문헌다큐영화, 중외합작촬영영화 등) 드래곤 마크 수령 후 드래곤 마크를 타이틀에 넣고 심사 통과한 판본에 따라 완성판을 제작하고 다음 자료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영화상영허가증》을 수령한다.

(2) 《상영허가증》수령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디지털 마스터 테이프 1세트(D5 테이프, HDSR 테이프 또는 하드디스크) 또는 표준 사본 1세트(드래곤 마크를 타이틀에 넣고 각 테이프와 포장케이스의 정면, 측면 모두에 영화명 및 출품사의 마크를 붙인다. 아래도 같음)
2. 완성영화 제출에 있어 표준 사본만 있다면 중국영화자료관이 발급한 접수 영수증 필요
3. 영화 DVD 3장
4. HDCAM 또는 Beta 테이프 1개
5. DVD 홍보 영상 1세트(10~15분)
6. 최종 믹싱음 소재 1세트
7. 국제 음향효과 1세트
8. 디지털 마스터 테이프는 《영화 디지털마스터테이프 제작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준 사본은 인화가공 회사가 발급한 《심사표준카피기술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영화에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완성 대본의 전자파일을 제출한다.
10. 스틸컷 또는 포스터 디지털 파일(CD 첨부)
11. 공동 출품, 공동 제작회사를 추가한 경우 계약서 1부
12. 《영화상영허가증》(종이)을 취득한 담당자의 위임장(제1 출품사의 직인 날인 필요)

14. 영화산업 발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支持电影发展若干经济政策的通知
제재일	2014-05-31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재교(财教)[2014]56호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등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청(국), 주택 도농건설청(위원회), 국가세무국, 방송영상국,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본점, 각 은행, 영업관리부, 성회(수도) 도시센터 지점, 부성급 도시센터 지점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중국영화의 번영발전을 촉진하며 중국영화의 전반적 실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국영화가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촉진하며 영화대국에서 영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영화발전을 지원하는 몇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영화사업발전 특별자금의 관리를 강화한다.

영화사업발전 특별자금의 징수 수수,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여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을 제고한다.

2. 영화우수작품 특별자금 지원 강도를 강화한다.

중앙재정은 영화 우수작품 특별자금을 지속적으로 배정해 영화창작 및 생산을 촉진한다. 그중 매년 1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고 중점영화 개별안전승인요청 방식을 채택하여 5~10편의 영향력 있는 중점소재영화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3. 문화산업발전 특별자금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을 중점 지원한다.

문화산업발전 특별자금에서 자금을 특별 배정해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주로 5개 분야에 사용한다. 첫째, 영화제작에서 첨단기술의 응용을 추진한다. 둘째, 중국 영화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중요 영화산업프로젝트와 첨단기술 핵심기지건설을 지원한다. 넷째,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요 영화를 후원한다. 다섯째, 중점 전문 영화사이트 구축을 강화한다.

4. 영화산업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영화제작기업이 영화복제(디지털복제)판매, 판권양도로 취득한 수입, 영화배급기업이 취득한 영화배급수입, 영화상영기업의 농촌에서의 영화상영수입에 대해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일반납세자가 제공하는 도시영화상영서비스는 현행 정책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간이과세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중서부지역 현급 도시 영화관 건설자금 보조금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재정은 영화산업발전 특별자금을 통해 보조자금을 배정하고 중서부지역 및 동부 빈곤지역 현급(县级) 도시 디지털영화관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현지 경제발전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현성(县城) 디지털영화관 건설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6. 영화배급상영 공공서비스와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완비한다.

영화 기술혁신, 산업 업그레이드와 발전추세에 적응하고 영화배급상영 공공서비스와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을 강화 및 완비해 영화배급상영의 운영, 서비스와 관리가 현대화, 스마트화로 전환되도록 추진한다.

7. 영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을 장려해 영화산업 수요 특징에 적합한 신용대출상품의 혁신 추진을 가속화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 융자리스대출, 매출채권담보금융, 산업사슬 융자, 주식담보대출 등 영화기업특징에 적합한 신용대출 혁신상품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며 무형자산 담보대출업무를 모색하고 진행해 영화기업 대출담보물의 범위를 넓힌다.

영화산업 수요 특징에 적합한 서비스모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을 지원해 영화기업의 각 발전단계와 금융수요 특징에 따라 신용대출업무와 결산업무, 국제업무, 투자은행(IB)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은행기업업무, 판매업무, 자산부채업무와 중간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한다. 은행, 투자기금, 보험 등 기관이 투자기업주식, 채권, 자산지원계획 등 다양한 형식을 공동 채택하도록 장려하여 영화기업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기업 직접융자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영화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영화기업배급 회사채, 기업채, 집합신탁과 집합채, 중소기업사모채 등 비금융기업 채권융자수단을 장려한다. 사모주식투자자금, 창업투자기금 등 각종 투자기관이 영화산업에 투자하도록 유치한다. 중앙재정은 국가중점지원 영화기지, 기업과 사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출이자 보조와 보험료 보조금을 준다.

8. 영화관건설 차별화 용지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영화관 부지 출처형식, 상영방식이 다양하므로 영화관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단독 신축, 사업부대시설 건축, 개축(기존장소), 타지역 이전 신축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관람시설을 늘리고 상황별로 협의, 등록 등 차별화된 토지공급정책을 각각 시행한다. 첫째, 신축한 개별 영화관 건설용지는 등록판매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영화관 부지를 공급할 때 영화관 건설표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 등록방식을 통해 토지 사용권자를 확정한다. 둘째, 복합상업시설사업 중 영화관 부대건물 등의 건설경로 및 토지공급 방식을 적극 모색한다. 시, 현은 복합상업용지 또는 기타 부동산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 중 영화관 부대시설건축 영화관 관련요구를 판매조건에 넣고 법에 따라 영화관 건설 후의 처치 방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영화관이 개조건설을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계획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영화관 개조는 일정 규모의 상업, 서비스, 사무 등 기타 용도를 겸용하고 협의방식에 따라 용지수속을 보충 처리한다. 넷째 기타 공익장소건설을 장려해 영화상영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한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과 청소년 활동장소

등 비영리 공공문화시설에 대해 영화상영설비와 장소에 적합하도록 건설한다. 메인 용도는 《계획용지목록》에 부합하고 대체방식으로 공급용지를 승인하며 영화관 부지부분은 문화·체육·오락 용도에 따라 협의방식을 채택해 공급수속을 처리한다. 다섯째 기존산업, 창고 등 재고를 이용해 영화관 건설을 장려한다. 판매측과 계획관리부서의 동의를 거쳐 문화·체육·오락 용도에 따라 협의방식을 채택하고 용지수속을 한다. 여섯째, 영화관 용지 공급 후 관리감독을 엄격히 한다. 영화관 용지 용도변경 심사절차를 엄격히 한다. 영화관 부지사용자는 토지판매계약 약정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 경영하며, 계약 약정한 토지용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판매측과 시, 현 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 공급한 단독 영화관 건설부지에 대해 판매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하며 토지용도를 바꾸려면 정부가 법에 따라 회수 후 재공급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은 현지 영화관 건설과 발전의 실제상황에 따라 영화관 건설입지와 총량을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낮은 수준의 중복건설과 지나친 경쟁을 방지해 영화관 건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영화관 건설이 지나치게 많은 지역은 영화관 신축 수를 엄격히 통제하여 영화관 분포, 구조의 최적화 조정을 중점으로 한다. 영화관 건설이 낙후되는 지역은 관련 계획에 따라 영화관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9. 실행을 힘써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발전개혁, 재세, 금융, 국토자원, 주택도농건설부처는 영화발전 지원에 관한 각종 경제정책을 성실히 시행하고 각 부대정책조치와 방법을 조속히 제정 완비한다. 특별자금 사용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자금의 거시조정과 평가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각급 신문출판광전 부서는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구체적 시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해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검토 해결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

2014년 5월 31일

15.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제목	电影院票务系统（软件）管理实施细则
제재일	2014-07-21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

(2014년 7월 21일 영자(影資)[2014]40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방송영상국, 국가영화특별자금 각 성급 관리위원회, 각 원선(院线), 각 티켓팅(발매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 중국 영화배급상영협회:

국가영화특별자금관리위원회 관공실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关于加强电影市场管理规范电影票务系统使用的通知)》(신광전발 新广电发〔2014〕12호)와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电影院票务管理系统技术要求和测量方法)》(GY/T276—2013)을 시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시행 세칙(电影院票务系统（软件）管理实施细则)》을 제정하여 공포하오니, 세칙에 입각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티켓팅 시스템(SW) 관리를 규범화하고, 일괄적 시스템 개방과 질서 있는 경쟁이 가능한 영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영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영화시장 관리강화와 영화 티켓팅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신광전발〔2014〕12호)와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에 의거하여 본 시행세칙을 특별 제정한다.

총 칙

- (1) 국가영화사업발전특별자금관리위원회 관공실(이하 ‘영화자금관공실’)은 전국 영화관 티켓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국가데이터플랫폼’)을 구축 및 관리하고, 전국 영화관의 티켓팅 관련 데이터 접수·통계·서비스 및 전국 영화관 자동티켓판매시스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2) 성·자치구·직할시의 영화행정 주관부서와 영화특별자금 성급 관리위원회 사무실(이하 ‘성급 영화 주관부서’)은 관할지역 내의 영화관 자동티켓판매시스템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 (3) 본 세칙에서 말하는 영화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고정된 장소를 가진 영업적 성격의 영화상영기관을 의미한다.
- (4) 본 세칙은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SW와 각종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 티켓팅 SW(이하 ‘티켓팅 SW’)의 테스트, 등록, 판매, 사용에 적용된다.
- (5) 본 세칙에서 말하는 티켓팅 SW업체는 시스템 테스트와 등록을 마치고, 중국 내에서 영화관 티켓팅시스템 SW를 판매하는 모든 기관과 기업을 의미한다.(영화티켓 판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도 포함된다)

- (6) 영화관은 반드시 테스트와 등록을 마친 티켓팅 SW를 설치 사용해 매표 및 티켓팅을 관리해야 하며,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이하 ‘현행 기술표준’)과 관련 시장관리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하나. 티켓팅 SW 관리

(1) 티켓팅SW 제품등록

1. 중국 시장에서 판매, 설치, 사용되는 티켓팅SW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공표한 현행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제품은 영화자금판공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티켓팅 SW 제품등록 신청 시, 영화관 티켓팅SW업체는 영화자금판공실에 SW제품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부분), SW설치디바이스(SW패키지 다운로드 가능한 HTTP 제공 가능), PRD(Product-Requirement-Document), 프로그램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서비스보증서(첨부 참조) 및 SW저작권 등록증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영화자금판공실은 영화관 티켓팅 SW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에 테스트위탁서를 발급한다. 광전총국 기술품질검측소는 이 제품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며, 테스트비용은 티켓팅 SW업체에서 지불한다. SW테스트 보고서에 근거해, 영화자금판공실은 테스트를 통과한 티켓팅 SW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동시에 관련 웹페이지에 이를 공시한다.
4. 영화티켓 판매대행 SW 제품등록 신청 시,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업체는 영화자금판공실에 온라인 판매대행SW제품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부분), ICP허가증, 서비스보증서, SW저작권 등록 증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영화자금판공실은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한 후에 테스트 위탁서를 발급한다. 광전총국 기술품질검측소는 이 제품(무인발권기 인터페이스 테스트 포함)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며, 테스트비용은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업체에서 지불한다. SW테스트 보고서에 근거해, 영화자금판공실은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티켓 온라인판매대행SW에 대해 등록을 허가하고, UsbKey하드웨어 디지털증서를 발급하여 영화관 현지 티켓팅SW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장진입을 허가 받은 모든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SW는 국가데이터플랫폼에 읽기전용 데이터인터페이스를 개방해야 한다. (좌석 선택 티켓판매 소스데이터 및 퍼블릭키 요청 포함)
7. 티켓팅 SW 업체는 티켓팅 SW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설치·사용되는 티켓팅SW가 등록된 티켓팅SW와 동일제품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티켓팅 SW를 위조하거나 개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티켓팅SW제품 정기심사

1. 등록된 티켓팅 SW의 유효등록기간은 3년이다. 제품 버전이나 기능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유효 등록기간 만기 60일 전에 영화자금판공실에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영화자금판공실은 심의 후 티켓팅SW등록증서와 UsbKey하드웨어 디지털증서를 발급한다.
2. 영화자금판공실은 재심결과를 공시하고, 사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SW를 변경한 티켓팅SW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시한다.

(3) 티켓팅 SW 업그레이드

1. 유효등록기간 내에 티켓팅SW제품에 현행 기술표준에서 요구되는 모듈이나 기능상의 변화 혹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영화자금판공실에 버전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테스트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2. 유효등록기간 내에 티켓팅SW제품에 현행 기술표준에서 요구되는 모듈이나 기능상의 변화 혹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영화자금판공실에 SW설치패키지를 제공하고 MD5 키 값을 할당 받아 국가데이터플랫폼 등록DB에 등록한다. 영화자금판공실은 비정기적으로 추출검사를 진행하여 현행기술표준 부합여부를 점검한다.
3. 기술표준에 조정이 일어날 경우, 티켓팅SW 업체는 규정된 시간 내에 SW를 수정하여 테스트 및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이미 설치된 티켓팅SW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영화관 티켓팅시스템SW에 대한 디버깅과 설치 그리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둘. 영화관 티켓팅SW 사용관리

(1) 영화관의 티켓팅 SW 설치(교체)

1. 영화관은 같은 기간에 등록 통과한 제품 중 단 한 세트의 영화관 티켓팅SW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신규 영화관은 국가데이터플랫폼의 공공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영화관 관련 기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 영화관 영업허가증, 상영허가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영화 주관부서는 심사를 통과한 영화관에 대해 영화관코드와 UsbKey하드웨어 디지털증서를 발급한다.
3. 영화관 티켓팅SW에는 반드시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며, 티켓팅 SW시스템 시간은 베이징 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4. 티켓팅SW를 설치 혹은 교체할 경우, 영화관측은 반드시 티켓팅SW 업체에 티켓팅SW제품 등록증서 사본을 요구하여 비치해 두어야 한다.
5. 티켓팅SW를 설치 혹은 교체한 후, 영화관 측은 반드시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통해 영화관코드 등의 정보를 로딩하고, 영화관 소재지 현금 이상(현금 포함) 영화 주관부서에 접수신청을 해야 한다.
6. 각지의 현금 이상(현금 포함) 영화 주관부서는 영화관 접수신청 접수 후, 성급 영화 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관과 함께 영화관에서 설치한 티켓팅SW에 대해 검수테스트를 진행하고, 국가데이터플랫폼 등록정보시스템과 대조한다. 티켓팅SW검수를 통과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설치검수확인서를 발급한다.
7. 영화관 티켓팅SW의 좌석배치도와 《영화관기본정보표》는 일치해야 한다.

(2) 영화관 기본정보 변경

1. 등록을 마쳤거나 혹은 정상영업 중인 영화관의 기본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영화관 측은 즉시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갱신하고, 성급 영화 주관부서는 이 사실을 심의 확인한다.

2. 영화관이 원선을 변경한 경우, 영화관측은 즉시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갱신하고, 영화자금관공실은 이 사실을 심의 확인한다.

(3) 영화관 티켓팅SW 사용정지 및 등록취소

1. 영화관이 폐업 혹은 휴업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현급 포함) 영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한 영화관은 반드시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성급 영화 주관부서는 이 부류에 속하는 영화관의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영화자금관공실에 보고해 등록한다.
2. 영화상영업무 휴업·폐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매표자료를 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영화관에 대해, 성급 영화 주관부서는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휴업 혹은 폐업한 영화관이 재개업 하고자 할 경우, 본 세칙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티켓팅 SW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4. 등록 취소된 영화관은 영화관코드를 봉쇄해야 하며, 다른 영화관(신규 영화관 포함)은 이 영화관의 영화관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

(4) 영화관 매표관리

1. 영화관 티켓팅SW 가운데 영화상영계획 편성에 사용되는 영화제목, 영화코드 및 기타 기본 정보는 티켓팅SW정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2. 영화관이 티켓팅SW에서 편성한 영화상영계획(상영영화와 개봉시간 등 포함)은 반드시 실제 영화상영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실제 상영횟수(대관 상영 포함)는 반드시 티켓팅SW에 상영계획이 사실대로 편성 혹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영화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영화관 티켓팅SW를 사용하여 영화티켓을 판매해야 하며, 현행 기술표준에 명기된 시간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매표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적 여건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영화티켓을 판매한 경우, 규정시간 내에 영화관티켓팅시스템(SW)에 접속하여 티켓판매정보를 입력하고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보고해야 한다.
4. 영화관에서 판매한 영화티켓은 등록허가를 받은 티켓팅SW에서 인쇄한 티켓으로, 현행 기술표준에 부합하고, 영화관 명칭·영화제목·상영시간·가격·상영관·좌석번호 및 티켓정보 QR코드 등의 필수정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영화관 티켓팅SW로는 단지 영화티켓을 프린트하고 발행할 수 있을 뿐이다. 온라인 판매대행 채널을 통해 취득한 영화티켓의 경우, 영화티켓상에 티켓가격과 온라인 판매대행비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비용은 단독의 영수증으로 발급되어야 하고, 또 영화관에서 눈에 띄는 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5. 상영관 입장 시, 관객은 티켓팅SW를 통해 등록·인쇄(현행 기술표준에 부합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무인발권기에서 인쇄한 티켓 포함)된 영화티켓을 가지고 입장(티켓팅SW 고장으로 티켓발행이 불가능한 상황 제외)해야 하며, 1인 1티켓을 원칙으로 한다. 영화티켓이 아닌 각종 교환권, 영화카드, 자유이용권, 단체티켓 및 온라인 판매대행증빙을 지참한 경우, 영화관 티켓팅SW에서 등록·인쇄한 티켓으로 교환 후 입장 가능하다. 무인발권기는 영화관 티

켓판매SW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영화관 영업장소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티켓상의 티켓가격은 관객이 실제 지불한 티켓가격 및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보고한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티켓상의 영화제목 역시 관객이 실제 관람한 영화제목과 일치해야 한다.

(5) 티켓 환불 및 추후 입력

1. 정전이나 기계고장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영화상영이 불가능한 경우, 영화관은 해당 영화상영시간이 끝나기 전에 영화관티케팅SW를 통해 관객에게 티켓 환불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영화관 티켓팅SW에서 티켓 환불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고장원인 해결 당일에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티켓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2. 정전이나 기계고장 등의 원인으로 티켓팅SW(영화관의 정상적 상영업무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음)로 발권이 불가능한 경우, 영화관은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서 인가한 예비티켓으로 티켓을 대신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예비티켓 판매 상황을 티켓팅SW(예비티켓사용 관리규정은 각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서 자체 제정함)에 추후 입력해야 한다.
3.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영이 끝난 후에 티켓 환불이 필요하거나 7일이 지난 후에 추후 입력이 필요한 경우, 영화관은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4.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 티켓 환불 혹은 추후입력 신청이 접수되면, 성급 영화담당부서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영화관은 48시간 이내에 관련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관련 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영화관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 중, 티켓 환불 업무는 영화자금관공실에서 최종 심사하고, 추후 입력업무는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한다.

(6) 데이터보고

1. 영화관은 당일 12시 전에 전 영업일의 통계데이터를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보고해야 한다. 통계 데이터 내용에는 전 영업일의 모든 상영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데이터는 시간 내에 빠짐없이 기입되어야 하고 기입내용은 착오 없이 정확해야 한다. 당일 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영화관은 영업상황 정보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시스템고장으로 인해 통계데이터를 보고할 수 없는 영화관은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성급 영화 주관부서가 사실을 확인한 후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미보고 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영화관은 시스템 장애 복구 후 국가데이터플랫폼에 통계데이터를 추후 보고한다.
2. 영화관(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업체 포함)은 티켓판매 후 10분 내에 모든 티켓의 관련 소스데이터를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이나 온라인 장애로 인해 소스데이터 보고가 중단된 경우, 장애복구 후 추후 보고해야 한다.

(7) 알림과 소식

1. 영화관 티켓팅SW는 주관부서가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발송한 각종 알림과 소식을 수령해야 하며, 관련 알림과 소식이 게시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조작자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알림·소식 내에 작업임무가 첨부된 경우, 영화관은 요구된 규정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해야 하며, 국가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알림·소식을 발송한 주관부서에 진행상황을 피드백한다.

(8) 데이터복구 (이전 및 정리)

1. 티켓팅SW시스템 내의 과거데이터와 관련일지는 최소 3년을 보관해야 한다. 티켓팅 SW데이터복구(데이터 이전 및 정리)를 실시할 경우, 24시간 전에 영화관 소재지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성급 영화 주관부서는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대표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오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티켓팅SW 업체 및 영화관에 데이터복구(이전 및 정리) 실행허가를 문서로 통지한다.
2. 영화관 티켓팅SW내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대표통계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복구할 수 있다.

셋. 점검 및 감독

(1) 영화관 티켓팅SW사용 점검

1. 각 지역 현금 이상(현금 포함) 영화 주관부서는 관할지역 내 영화관 티켓팅SW 검수 및 점검작업을 주관하고, 성급 영화 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관이 실제 업무를 담당한다. 실시방법과 점검 비용 기준은 각 성에서 자체 제정한다.
2. 영화관 티켓팅SW 신규설치 및 교체 시 검수·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은 3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이 외에 비정기 추출 검사를 시행하며, 각 점검결과는 즉시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보고한다.
3. 점검은 완전한 점검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현장에서 영화관 티켓팅SW 특정코드를 수집하여 국가데이터플랫폼 등록정보시스템과 대조 검증한다.
4. 티켓팅SW 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영화관 현지 서버 내 티켓팅SW의 설치목록, Linux서버 읽기전용 권한의 유저네임·비밀번호 등의 점검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영화관 티켓팅SW사용 감독

1. 영화자금판공실은 전국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 웹사이트에 UsbKey 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발행하고 정지하는 등의 일괄 관리를 담당한다.
2. 성급 영화 주관부서는 성내 영화관에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발행하고 정지하는 등의 일괄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영화관객은 구매한 티켓에 표시된 바코드 스캔을 통해 국가데이터플랫폼에서 영화티켓 진위유무를 검증 받을 수 있다.

넷. 규범위반행위 및 처벌

(1) 티켓팅SW 업체의 위규행위

1. 허위 등록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등록되지 않은 티켓팅SW를 영화관에 제공하여 설치 및 사용하게 한 경우
3. 각 버전 티켓팅SW가 추출검사에서 현행기술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영화관과 공모하며 2세트(2세트 포함) 이상의 티켓팅SW를 설치한 경우
5. 영화관과 공모하여 매표데이터를 조작 및 위조한 경우
6. 연례 검사기한이 만기된 경우
7. 업그레이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위규 행위

(2)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업체의 위규행위

1. 허위 등록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영화관과 공모하여 매표데이터를 조작 및 위조한 경우
3. 국가데이터플랫폼에 매표정보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판매된 실제 티켓가격 및 서비스비용 금액이 영화관 티켓팅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데이터 캡슐화 혹은 데이터 호출 등의 방식으로 제 3자에게 온라인 판매대행 인터페이스를 개방한 경우, 혹은 기타 영화티켓 온라인 판매대행업체 데이터인터페이스를 통해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 경우
6. 규범화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무인발권기를 통해 영화티켓을 인쇄하는 경우 (인쇄된 영화티켓상의 내용이 현행 기술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허위 바코드 기재)
7. 온라인 판매대행 단말기(홈페이지, 모바일 단말기 등의 판매대행 인터페이스) 상에 영화티켓가격과 온라인판매 대행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연례검사 기한이 만기된 경우
9. 기타 위규행위

(3) 영화관의 위규행위

1. 미등록 티켓팅SW를 설치 및 사용한 경우
2. 같은 기간에 2세트 이상(2세트 포함)의 영화관 티켓팅SW제품을 설치·사용한 경우
3. 티켓팅SW 및 관련 매표데이터를 조작한 경우
4. 관객에게 비정규 영화티켓(수기로 작성 및 수정한 티켓, 티켓상에 명기되어야 하는 필수정보가 모두 인쇄되지 않은 티켓 포함)을 발권한 경우, 영화관에서 발권한 가격과 관객이 지불한 가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영화티켓상에 인쇄된 영화제목과 관객이 실제 관람하는 영화제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티켓상에 정확한 영화제목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데이터보고주소, 보고문건 작성 경로, 보고 헤더파일 등 시스템 내 설정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6. 매표데이터를 보고하지 않고 관련 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탈루, 은폐, 허위보고 및 매표변경의 행위로 티켓팅 데이터통계의 진실성을 훼손한 경우
8. 기타 위규행위

(4) 처벌

위규행위를 범한 티켓팅SW 업체와 영화관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영화시장 관리강화와 영화 티켓팅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서 규정한 처벌 이외에, 이하 처벌을 단독 혹은 복수로 적용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한 티켓팅SW 업체에 대한 처벌은 영화자금판공실에서 위규행위 정도를 판단하여 티켓팅 SW 등록자격을 취소하고,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를 정지시킨다.
2. 규정을 위반한 영화관에 대한 처벌은 성급 영화 주관부서에서 위규행위 정도를 판단하여 영화관 UsbKey하드웨어디지털증서 사용정지 시간을 정한다.

다섯. 부칙

본 세칙에 대한 해석 권한은 문건을 발행한 단체나 기관에 있다.
본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 : 티켓팅시스템(SW)공급업체 보증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영화시장 관리 강화와 영화 티켓팅시스템 사용 규범화에 관한 통지》(신전발〔2014〕12호)에서 통지한 요구사항 및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의 기술기준에 의거하며, 본사에서 생산한 (V버전) 티켓팅 SW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상기 티켓팅 SW 제품은 《영화관 티켓팅 관리시스템 기술요구와 측정방법》(GY/T276-2013)에 부합함을 보증합니다.

설치·사용하는 티켓팅 SW 제품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지정한 테스트 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국가영화특별자금사무실에 등록된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티켓팅 SW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권리침해로 인해 야기되는 소송과 배상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질 것을 보증합니다.

설치·사용하는 티켓팅 SW가 테스트를 통과한 티켓팅SW와 동일제품임을 보증하며, 티켓팅 SW에 대한 조작이나 위조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감독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만약 본사 티켓팅 SW의 설치 및 사용 과정 중 위규행위가 발생한다면, 국가영화행정 주관부서와 국가영화자금판공실의 처벌조치를 수용할 것이며, 위규행위로 인해 관련 당사자에게 야기시키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회사(직인)

년 월 일

16.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 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开展网上境外影视剧相关信息申报登记工作的通知
게재일	2015-01-19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문서
신광전판발(新广电办发)〔2015〕14호

인터넷 해외 영화·드라마 관련 정보 신고·등록 업무에 관한 통지

방송정책 18번 77페이지 참조

17. VOD영화관 · VOD원선의 경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规范点播影院、点播院线经营管理工作的通知
게재일	2017-04-21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VOD영화관 · VOD원선의 경영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신광전발[2017] 81호 문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중국영화과학기술연구소, 중국 영화디지털프로그램관리센터, 중국 영화기술품질검사소, 국가영화사업발전 전용자금 관리위원회 판공실, 각 원선회사, 영화관, 중국영화배급방영협회:

영화산업의 건전한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더 잘 선양하고 대중의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화된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며 영화산업의 신업종을 적극적으로 개척 및 육성하면서 영화 시장 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VOD영화관, VOD원선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VOD영화관이란 인터넷 혹은 영화기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신청 영화 플레이, 재방송, 다운로드 플레이 등 방식으로 그룹형 관객에게 영리성 영화방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정 장소를 일컫는다.

일정한 수량의 VOD영화관으로 구성된 영화 방영 조직과 관리기관을 VOD원선이라고 부르며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프로그램 소스를 취득하고 관할 영화관을 위해 합법적인 방영권을 취득한 영화 소스를 방영하고 운영 서비스를 지도하고 규범화한다.

2. VOD영화관, VOD원선의 영화 방영, 배급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헌법과 유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법에 의해 영화 주무부처에서 심사 발급하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3. 국무원 영화주무부처가 전국 VOD영화관, VOD원선의 영화 방영, 배급 서비스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VOD영화관, VOD원선의 영화 방영, 배급 서비스의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4. VOD원선의 설립 신청은 공상등록 정보 외에 예측되는 원선, 사용하는 VOD영화관 매출 통계 시스템과 방영 시스템 장비 등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전문 <영화방영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5. 성(省) 내 VOD원선의 설립 신청은 관할 VOD영화관 수량이 30개 이상이고 소재지 성급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전문 <영화배급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여러 개 성에 분포되는 VOD원선의 설립 신청은 관할 VOD영화관 수량이 60개 이상이고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전문 <영화배급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6. VOD영화관, VOD원선이 방영, 배급하는 영화는 반드시 법에 의해 심사에 통과되어야 하며 법에 의해 공개 방영 허가를 받은 국내외 영화와 법에 의해 설립한 방송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도입한 영화 등이 포함된다. 상기 영화는 모두 합법적인 방영 권한을 취득해야 한다.
7. VOD영화관은 각종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VOD영화관 잠정 기술규범>(별첨 참조)에 부합하는 VOD영화관 매출 통계 시스템과 방영 시스템 장비를 사용하면서 경영을 규범화하고 방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8. VOD영화관은 반드시 치안, 소방, 공공장소 위생 등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방영장소의 공공질서와 환경 위생을 유지하면서 관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9. 현재 영화 방영, 배급 경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VOD영화관, VOD원선은 본 통지 배부 당일로부터 30일 내에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시정하고 각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주무부처, 성급 영화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정 중인 <VOD영화관의 영화 방영 관리방법> 발표 이후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VOD영화관, VOD원선에 대해 허가증명 서류를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금지하고 처벌을 내린다.

10. 각 성급 영화주무부처는 본 통지 발표 당일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VOD영화관, VOD원선의 기본 상황을 국무원 영화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7년 4월 21일

18.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 규정

제목	国产电影复映暂行规定
제재일	2018-11-08
출처	국가영화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 규정》은 우수한 영화 문화의 선양과 승계, 영화시장의 풍부한 작품 공급, 영화 재상영 관리의 규범화와 보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가영화국이 발표한 규정이다.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임시 규정》은 2018년 11월 8일 발표되어 2018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중국산 영화 재상영 잠정규정

우수한 영화 문화의 선양과 승계, 영화시장의 풍부한 작품 공급, 영화 재상영 관리의 규범화와 보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재상영 영화는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상영허가를 취득하고 처음 상영이 완료되고 2년이 지난 후 재차 배급해 상영하는 중국산 영화를 가리킨다.

영화의 재상영은 각 저작권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리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투자사와 배급사 간 정식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쌍방의 권리, 의무와 법률적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

재상영 영화는 속지관리원칙에 의거 영화의 최대 투자사의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의 영화주무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재심 의견과 상영계획을 국가영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관련 부처와 위원회, 관련 인민단체, 군부대 소속 영화기관이 최대 투자사인 영화는 국가영화국에 재심의를 직접 신청한다.

영화 창작의 적극성과 시장질서 보호를 위하여 재상영 영화는 상영규모를 통제하여 전체 상영범위를 상영관 2500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각 영화관의 재상영 영화 상영관은 1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제목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제재일	2018-03-06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은 2018년 2월 12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네천시(聂辰席)

2018년 03월 06일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영화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고양하며, 영화산업의 산업종을 규범화하여 국민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과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VOD영화관, VOD원선 영화 상영과 배급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VOD영화관은 영화관과 이동 상영활동장소 외에,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보여주도록 상영서비스 경영활동을 제공하는 문화오락장소이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VOD원선은 일정 수의 VOD영화관으로 구성되어 일정 수의 영화 배급권을 가지고, 관할 VOD영화관의 영화상영활동에 대해 영화를 제공하고 운영 관리하는 배급기업이다.

제3조 VOD영화관, VOD원선의 영화상영, 배급활동에 종사할 경우,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수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의 일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영화 주관부서는 전국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영화배급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 VOD영화관, VOD원선의 영화 상영배급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제2장 업무허가

제5조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VOD영화관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에 신

청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상영설비, 상영 품질과 빌링시스템은 국무원 영화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술 규범에 부합
- (2) 단일 상영관 스크린의 넓이는 6m를 넘지 않으며, 관객석은 20개 미만
- (3) 가입 예정이거나 혹은 설립 준비 중인 VOD원선 확보
- (4) 법인대표나 주요 책임자가 영화업 종사 금지기간에 처하지 아님

제6조 기업이 성 내에 설립한 VOD원선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에 신청한다. 성을 벗어나 설립한 VOD원선은 국무원 영화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업무에 적응하는 영화 출처 확보
- (2) 빌링시스템은 국무원 영화 주관부서가 규정한 기술규범에 부합
- (3) 법인대표나 주요 책임자가 영화업 종사 금지기간에 처하지 아님
- (4) 성 내 VOD원선이 관할하는 VOD영화관은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성을 벗어나 관할하는 VOD영화관은 60개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조건에만 부합하면 관계 영화 주관부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 설립준비 동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설립준비기간 내에 위의 제4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관계 영화 주관부서에 허가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영화 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VOD영화관에 영화상영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VOD원선에 영화배급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제8조 VOD영화관이 이미 가입한 VOD원선 혹은 설립준비 중인 VOD원선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영화상영 경영허가증의 발급을 재신청해야 한다.

제9조 VOD영화관의 영화상영 경영허가증과 VOD원선의 영화배급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3장 경영규범

제10조 국무원 영화 주관부서는 전국의 VOD영화관 경영관리 정보시스템과 영화 저작권 수권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제11조 현금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는 영화상영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에 관련 심사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

VOD영화관은 허가를 거쳐 설립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허가한 관련 정보를 가입한 VOD원선에 발송해야 한다.

제12조 VOD원선은 전국의 VOD영화관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내 등록을 책임지고, VOD영화관 코드를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자료에 의거하여 전국 VOD영화관 경영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재한 VOD영화관 관련 정보를 대조 확인한다. 확인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VOD원선의 신청서에 의거하여 관할 VOD영화관 코드를 발급한다.

제1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는 영화배급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10일 내에 전국 VOD영화관의 경영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동시에 VOD원선에 VOD원선 코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VOD영화관 코드와 VOD원선 코드는 영화 주관부서가 VOD영화관과 VOD원선을 관리하는 유일의 디지털표시이다.

제15조 VOD원선은 관할 VOD영화관에 대한 영화공급을 책임진다.
VOD영화관은 가입한 VOD원선이 배급하는 범위 이외의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VOD영화관이 상영하고 VOD원선이 발급하는 영화는 법에 의거하여 영화 개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VOD원선이 발급하는 영화는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가 허가한 VOD영화관의 상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VOD원선은 영화 저작권 수권 상황을 영화 저작권 수권 정보조회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제18조 영화 저작권자가 작품이 영화관에서 VOD영화관에 진입해 상영하는 기간에 대해 제한할 경우, VOD원선은 제한된 기간 내에 배급할 수 없다.

제19조 VOD영화관은 중국 경내 법인과 다른 조직이 촬영 제작한 영화 상영 횟수와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상영기간은 연간 상영하는 영화시간 합계의 2/3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20조 VOD영화관은 동일한 상영관 내에서 영화관의 영화상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VOD영화관은 치안, 소방, 공공장소 위생 등의 법률과 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상영장소의 공공질서와 환경위생을 지키며, 관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VOD영화관, VOD원선은 빌링시스템과 상영시스템 설비의 일상적인 유지보호를 강화하여 영화 상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23조 VOD원선은 관할 VOD영화관의 제도 수립, 상영내용과 품질관리, 기술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보호, 데이터 발송, 인력 교육훈련 등 운영활동을 관리한다.

제24조 VOD영화관은 가입한 VOD원선의 요구에 따라 관련 경영 데이터를 적시에 발송해야 한다.

VOD원선은 국무원 영화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할 VOD영화관의 경영 데이터를 전국 VOD영화관 경영관리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영화 매출액 통계에 기입한다.

제4장 관리감독

제25조 영화 주관부서는 VOD영화관, VOD원선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영화 주관부서 직원이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직무를 이행할 시, VOD영화관과 VOD원선은 이에 협조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되, 거부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영화 주관부서는 관리감독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관련 법집행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

제27조 임의의 기관 또는 개인이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본 규정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영화 주관부서에 고소, 고발 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영화 주관부서는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위법행위 경고기록파일을 작성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경고기록에 편입된 VOD영화관과 VOD원선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9조 VOD영화관과 VOD원선 산업협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산업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법에 의거한 규범화 경영을 촉진 및 지도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0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영화 상영배급활동에 무단 종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영화 상영/배급 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여, 매매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불법 양도하거나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위의 허가증을 취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영화개봉 허가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 및 배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아래와 같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허위로 거래하거나 거짓으로 매출액을 보고하여 영화시장 질서 교란
- (2) 영화 상영이 시작해서 끝나기 전에 광고를 방영

제33조 아래와 같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영화 주관부서는 개정기간을

주고 경고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해진 기간 내 VOD영화관 코드와 VOD원선 코드를 미등록
- (2) VOD영화관이 가입한 VOD원선의 배급범위 이외의 영화를 상영
- (3) VOD원선이 정해진 기간에 경영데이터를 미발송
- (4) VOD영화관이 동일한 상영관 내에서 영화관의 영화상영활동 전개
- (5) VOD원선이 운영관리 책임을 지지 않아 관할 VOD영화관에 위법행위가 발생
- (6) VOD영화관과 VOD원선이 VOD영화관 기술규범이 요구한 빌링시스템과 상영시스템의 설비를 사용하지 않아 상영 품질이 기준 미달

제34조 VOD영화관과 VOD원선이 저작권 법률·법규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6장 부칙

제35조 본 규정에서 제안되지 않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과 《영화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 해외 자본이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영화 상영 및 배급 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화관과 영화원선의 외자 진입 관련 국가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7조 공익적인 VOD영화관과 VOD원선의 업무허가 및 경영규범과 관리감독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8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电影票“退改签”规定的通知
게재일	2018-09-18
출처	중국영화배급방영협회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에 관한 통지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영화배급방영협회, 영화산업협회, 각 상영관 체인, 영화관투자회사, 영화관, 제3자 온라인 티켓판매 플랫폼: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을 구체화하고, 관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사업은 광범위한 관객들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되고, 영화시장의 경영질서와 관련된다. 영화시장의 각 경영주체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해 티켓 서비스수준을 적절히 높이고, 관객의 체험을 꾸준히 개선하여 영화산업의 사회적 공신력과 신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계 각 측은 업종 자율을 강화하며, 제정한 ‘취소 및 변경’ 규정은 모두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공정하고 합리하며 국민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는 한편, 관객에 대한 고지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관객의 열람과 사회감독에 편의를 주어야 한다.

각 상영관 체인, 영화관투자회사, 영화관은 제3자 티켓구매 플랫폼과 영화티켓 위탁판매 협정을 체결할 시,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정조항은 가급적으로 세분화하여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각 영화관은 홀의 눈에 띄는 위치에 티켓구매 ‘취소 및 변경’ 주의사항을 공시하여 관객들이 영화관 매표소에서 티켓구매 시,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취소 및 변경’ 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취소 및 변경’에 동의하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취소 및 변경’을 허용하는지의 여부
2. ‘취소 및 변경’에 동의할 경우, ‘취소 및 변경’ 서비스 프로세스 및 ‘취소 및 변경’ 서비스 전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 티켓판매 플랫폼, 영화관 웹사이트 또는 자체 APP는 관객이 티켓을 구매해 결제하기 전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규정 협정 팝업 화면을 띄우고, 관객이 규정을 파악하였음을 확인한 후, ‘동의’를 클릭하여 전송하면 관객이 티켓료를 지불할 수 있다. 영화티켓 ‘취소 및 변

경' 규정 협정 팝업 화면에서 확정된 사항은 '제2조'의 영화관에 대한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영화시장 각 관계 경영주체는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영화티켓 '취소 및 변경' 사업의 실시 방안을 제정 및 개선하고, 또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중국영화배급방영협회, 전국영화시장전문처리관공실과 각 성(시, 자치구) 영화배급방영협회, 영화산업협회는 본 통지의 구체화 상황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

21. 영화관 건설 속도 증진에 관한 영화시장 발전 촉진 의견

제목	关于加快电影院建设促进电影市场繁荣发展的意见
게재일	2018-12-13
출처	국가영화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영화관 건설 속도 증진에 관한 영화시장 발전 촉진 의견

국영발[2018] 4호

<영화관 건설 속도 증진에 관한 영화시장 발전 촉진 의견(关于加快电影院建设促进电影市场繁荣发展的意见)>을 통지하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영화 주관부문과 영화원선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영화국

2018년 12월 11일

당의 19차 정신을 더욱 철저하게 관철시키고 대중의 날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며, 중국영화가 새로운 시대에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영화 대국에서 영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영화관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영화 시장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1. 중요 의견

당의 18차 대회 이후, 중국 영화 발전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고, 영화 창작의 질을 계속 높여가는 동시에, 영화 시장은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화 인프라 건설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세계 제2의 영화시장으로 자리 잡은 중국은 스크린 수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관객 수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여 영화가 점차 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문화 오락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 건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스크린 수가 급속 증가하고 있지만, 영화관 건설 발전은 불균형적이며 불충분하다. 중서부 지역, 특히 현(縣)급 도시 및 그 이하 지역의 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영화원선 제도 개혁 심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등의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영화관은 영화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이며, 대중이 영화를 감상하는 주요 장소인 동시에, 영화 가치를 실현하고 영화 투자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영화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스크린 수를 대폭 늘려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대중의 문화적 향유감과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영화시장이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고, 영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발전 요구를 실천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대중이 중국 영화의 발전성과를 누리게 할 수 있다.

각급 당 위원회, 정부 및 선전, 문화, 광전총국 등 부서는 영화관 건설의 가속화를 영화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영화관 건설 발전이 더욱 큰 성과를 이루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전체적인 요구와 목표 임무

(1) 전체적인 요구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로 대중 중심의 사업 노선을 견지하고, 영화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며, 현대영화산업 체계와 시장 체계를 완비한다. 영화관 건설의 총괄적 기획과 분류 지도를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의 강도를 높여 사회자본의 투자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전면적인 커버리지, 합리적인 분포, 선진적인 시설, 도농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영화관 건설 발전구도를 구축함으로써 통일된 허용, 과학적 관리, 질서 있는 경쟁, 활력이 넘치는 영화 시장을 만든다.

(2) 목표 임무

- 1) 2020년까지 전국 도시 영화원선에 가입한 영화관 스크린의 총수가 8만 개 이상에 달하고, 영화관과 스크린의 분포가 더욱 합리적이며, 도시화 수준과 인구 분포가 더욱 균형을 이룬다.
- 2) 중대형 도시의 영화관 건설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선진 상영기술과 시설은 폭넓게 응용되며, 쾌적함 등 관람 체험 면에서 한층 더 향상된다.
- 3) 현급 도시의 영화관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의 도시 원선에 가입하는 향진(중국에서 도시와 상반된 지방 작은 도시, 농촌을 가리킴) 영화관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 4) 원선제 개혁의 지속적인 심화로 실력이 강하고, 경영이 모범적인 자산 연계 위주의 대형 중견 영화원선을 배출하여 특색원선이 차별화된 장점을 갖춘다.

3. 주요 조치

(1) 영화관 건설 발전의 가속화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영화 발전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실천에 옮겨, 영화관 건설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격려한다.

- 1) 기업들이 영화관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격려한다. 각급 영화 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영화관 건설 투자에 대해 심사 편의를 제공하고, 영화관 부지 선정 분포에 대해 기획 지도를 강화한다.
- 2) 영화관이 적극적으로 선진 기술을 채택하도록 격려하고, 상영 환경과 설비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상영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 영화사업 발전 특별자금으로 영화관 대형 스크린 시

스텝과 레이저 영사기 등 선진 기술 설비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설비 구매 지출의 20%를 넘지 않으며, 영화관 당 50만 위안을 미만이다.

3) 국가 영화사업 발전 특별자금으로 중서부 지역(국무원이 규정한 조건 비교를 통해 서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서부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타지역)의 현성(현급시) 신축(개증축) 영화관에 국가 영화사업 발전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신축 영화관 당 30만 위안미만, 개증축 영화관은 당 20만 위안 미만이다. ‘특별 빈곤 지역’에 위치한 현급 도시 영화관의 운영 발전에 대해서는 영화관 당 10~15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한다.

4) 신축 또는 개증축 후 도시 원선에 가입하는 향진 영화관에게는 영화관 당 30만 위안미만을 지원한다.

5) 영화관 등급 평가 작업을 실시하여, 영화관의 건설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2) 영화원선제 개혁 심화

영화원선 회사의 발전을 격려하고, '통일된 브랜드 통일된 영화 상영 일정, 통일된 경영, 통일된 관리'의 요구에 따라 영화관 건설이나 인수에 투자하여 규모를 키우고, 관리를 강화하며,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격려한다.

1) 영화원선 회사 설립은 아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한다:

- ① 지배 영화관 수가 50개 이상 혹은 스크린 수 300개 이상.
- ② 지배 영화관의 전년도 합계 흥행 수입 5억 위안 이상.
- ③ 소속 영화관 영화사업 발전 특별자금 정상 납부.
- ④ 최근 3년간 위법 또는 규정 위반 경영행위가 없고, 행정처벌 또는 및 기타 처분을 받지 않음.
- ⑤ 최근 3년 간 위법 또는 규정 위반 경영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기타 처분을 받은 영화관이 세 곳 이하로, 처벌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처벌 조치가 이미 확실하게 집행되고 완전히 개선됨.

영화원선 회사를 설립하려면 국가 영화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한 개성 이상의 영화원선 회사 설립은 국가영화국에서 심사 비준하고, 성내 영화원선 회사 설립은 소재지의 성급 영화 주관 부서가 심의 비준하여 국가영화국에 보고해 기록한다.

2) 법규에 근거한 영화원선 회사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장려한다. 지역 구분과 소유제를 뛰어 넘어 영화원선 통합을 장려하며, 영화원선의 규모화와 집약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통합 과정에서 영화원선과 소속 영화관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고 이행하여, 영화관이 주도로 영화원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 한다.

영화원선 회사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은 국가영화국에 보고하여 허가 받는다. 각급 영화 주관

부서는 법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영화원선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위해 편의와 보장을 제공한다.

3) 영화원선의 연간점검 제도를 실시하여 영화원선의 상벌 및 퇴출 시스템을 완비한다. 2년마다 영화원선 회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과성 원선⁷²⁾은 국가영화국에서 정기 점검을 담당하며, 성내(省内) 원선은 성급 영화 주관 부서가 정기 점검을 담당한다. 심각한 경영 법규 위반과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선 회사와 영화관은 법률에 의거해 영화 배급 상영 자격을 취소한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경영이 부진한 영화원선 회사는 시장 퇴출을 실행한다.

(3) 특색 원선의 발전 가속화

‘인민원선(人民院线)’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국산 우수 주선율 영화의 상영 기회를 확대한다. ‘인민원선’에 가입하고 관련 상영 업무를 수행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예술영화 상영 연맹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우수 예술영화에 더 많은 상영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영화 상영 연맹에 가입하고 관련 상영 업무를 수행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캠퍼스 원선 등 특색 원선 발전을 장려하여, 특정 관객층에 긍정적 역할을 발휘한다.

(4) VOD 영화관과 VOD 원선 규범화

<VOD 영화관, VOD 원선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기술 표준과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 정비하고, VOD 영화관과 VOD 원선 규범화 발전을 추진하여, 영화 상영의 혁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한다.

4. 실행 보장

각급 당 위원회, 정부 관련 부처는 본 의견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영화관 건설 발전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방향 제시를 강화하여,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추진한다. 해당 구역 내 영화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흥행 수입을 늘리거나 누락하거나 속이는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영화관 건설의 더욱 빠른 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영화 시장의 지속적인 건강한 번영을 촉진한다.

본 의견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국가영화국의 해석에 따른다.

72) 두 개 성 이상을 아우르는 원선

22. SF영화 발전촉진 관련 약간의견

제목	关于促进科幻电影发展的若干意见
게재일	2020-08-07
출처	국가영화국
분류	중국 영화관리정책

최근 국가영화국, 중국과학협회는 <공상과학(SF)영화 발전촉진 관련 약간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공개 발표하며, SF영화를 영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성장점이자 신동력으로 삼고 우수 영화 창작을 구심점으로 하여 중국이 영화 대국에서 영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SF영화의 창작생산, 배급 상영, 특수효과, 인재 육성 등에 대해 더욱 강력해진 10대 지원 정책을 제시해 ‘SF 10조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과 영화사업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 및 의견과 그 정신을 본받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SF영화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창작 이념을 수립하며, 그 근본을 다지고 혼을 다하여 중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중화(中華) 미학의 전승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 당대 중국의 창조혁신에 뿌리를 두고 미래 과학기술 개발, 과학적 사고 전파, 과학자 정신 발양을 통해 과학 정신과 인문 정신의 융합을 추진하여 깊은 사유와 심오한 예술성을 담은, 제작 품질이 우수한 중국의 SF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에 따르면, SF영화 각본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작 창작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SF문학, 애니메이션, 게임 등 자원의 전환을 촉진한다. SF영화 콘텐츠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다차원적이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한 SF 영화 각본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샤옌컵(夏衍杯, Xiayan Cup) 우수 영화 각본 모집, 청년 우수 영화 극작 계획, 영화각본 인큐베이팅 계획 등 사업에서 SF 장르를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영화제에서 SF영화 부문 등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중국 전국적으로 SF 및 대중과학 영화상영연맹의 조직을 장려하고, 각 등급별 과학기술관, 과학관, 산업박물관, 청소년궁, 문화테마공원 등의 가맹을 지원하며, 자원의 공유로 풍부한 원작 작품 공급을 이루고, 전국 영화 박스오피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F영화의 특수효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영화의 특수효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자체적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영화 특수효과 기본 핵심기술과 플랫폼 톨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영화 디지털 콘텐츠의 가공처리와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등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한다. 국산 고급 첨단 영화장비의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영화 특수효과 기술표준체계를 수립 완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영화 특수효과기술 관련 기업은 국가 첨단기술기업(고신기술기업), 기술선진형서비스기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산업 발전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 정보 소비 업무의 업그레이드 및 확대를 추진하고 풍부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고무하여 문화 자원의 디지털화

를 촉진하고, 영화 디지털 특수효과기술 콘텐츠 가공처리를 신형 정보 소비시범사업의 중점 지원 분야에 포함시킨다. 기술, 표준, 검사테스트 및 인증 등 방면에서 다차원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의견>은 재정·세무 지원 정책의 시행도 강조하였다. SF영화 관련 기업은 문화산업단지(기지), 국가문화 및 과학기술 융합 시범기지, 국가문화수출기지,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국가첨단기술 산업화기지, 자유무역시험구,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등에 입주하여 임대 등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금융기관이 SF영화 특성에 맞는 신용대출 제품과 대출 방식을 모색하고, 공급사슬 용자,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 등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보험기관의 SF영화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보험, 단체의외상해보험, 특정배우 생명상해보험 등 업무 개발과 시행을 장려한다. 용자 담보기관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SF영화에 용자담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SF영화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명가 및 ‘4대 문화부문 인증(四个一批: 이론, 언론, 출판, 문예 분야 인재 육성사업)’ 인재, 사상과 문화 홍보 청년 인재, 중국 청년 영화감독 지원계획, 중국 영화 신동력 포럼 등을 추진하고, SF영화 인재 육성에 힘을 더욱 실어줄 계획이다. 고등교육기관은 경쟁우위를 활용하여 SF영화 관련 인재 육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SF 대중과학영화를 보급해 이를 과학 교육에 적극 이용한다.

<의견>에 따르면, SF영화 발전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 및 촉진하여 국가영화국, 중국과학협회의 선두지휘 하에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국무원 국자위,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국가국방과기공업국,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등 기관과 관련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며, 업무 연락을 위한 일반 사무기관을 중국과학협회 과학기술 전파 및 영상 융합 사무실에 설립한다. SF영화 과학 컨설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가 원사와 과학기술 근무자를 위촉해 SF영화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지원 등 과학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쇼트클립 내 영화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제목	加强电影版权保护依法打击短视频侵权盗版行为
게재일	2021-04-28
출처	국가영화국
분류	영화정책

국가영화국: 영화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쇼트클립 내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행위 단속, 영화의 질적 발전 위한 인터넷 환경 마련

최근 일부 영상업계협회, 영상회사와 배우 등이 발의한 쇼트클립 저작권 침해 방지 문제에 대해 국가영화국 관계자는 영화 저작권 보호는 영화산업의 건강한 선순환 발전을 보호하고 혁신적 창작활동을 제고하며 영화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영화국은 영화 저작권 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중시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공안, 저작권 등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영화 불법복제, 불법 재생 등 위법 범죄행위를 단속했고, 영화 작품을 저작권 보호 조기 경보 명단에 포함시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사전에 불법 복제 행위를 예방하거나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영화국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부서 배치를 성실히 관철하여 최근 비교적 두드러진 ‘XX분 영화보기’ 등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 국가 저작권국에 협조하여 쇼트클립 영화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쇼트클립 및 개인형 미디어, 공중계정 생산 운영자가 타인의 영화 작품을 허가 없이 복제, 편집, 유포하는 권리 침해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하며 많은 영화 저작권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가영화국은 영화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을 지원해 자체적인 구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영화 작품 저작권집단을 관리하며 상영관 체인(院线) 영화 저작권 보호연맹 등과 공동으로 영화 저작권에 따른 권익을 보호해 영화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을 편리하게 하였다.

국가영화국은 각 인터넷 플랫폼 및 개인형 미디어, 공중계정 생산운영자를 창도하고, 저작권보호 법률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영화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허가 없이 타인의 영화작품을 복제, 편집, 유포해선 안 되며 자체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영화 저작권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여 쇼트클립이 영화홍보, 평론, 연구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한다.

24. 영상 기지 규범 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의견

제목	关于促进影视基地规范健康发展的意见
제재일	2022-02-21
출처	국가영화국 외 5개 부처
분류	중국 영화관리 정책

국영발[2022]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영화 주무부처, 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 주무부처, 생태환경청(국), 주택도농건설청(위, 관위), 광파전시국:

<영상 기지 규범 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의견>을 배포하니, 실무와 결합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국가영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건설부 국가광파전시총국

2022년 2월 21일

영상 기지 규범 건강 발전 촉진을 위한 관련 의견

최근 몇 년간, 각 지역은 잇따른 투자를 통해 여러 곳의 영상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영화 산업의 창작 및 생산 수준을 높이고 산업 시스템을 개선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상 기지 건설 진행에 있어 무계획적인 개발이나 수준 낮은 중복 건설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기회 삼아 부동산 개발을 하는 정황도 나타났다. 영상 기지 규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와 19기 전회⁷³⁾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철저히 실행에 옮겨, 과학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 및 개혁과 혁신을 통해, 주 업무 분야에 뛰어나고 앞선 기술과 우수한 서비스 및 분명한 특색을 갖춘 영상 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견인하도록 한다.

73) 19기 전회(十九届全会):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가리키는 말로, 1기는 5년을 주기로 하며 일반적으로 5년 동안 7회가 개최됨

(2) 기본 원칙

올바른 방향을 견지한다. 영상 제작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파악하고 영상 기지 내 촬영 제작 업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며,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지고 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확실히 한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채택한다. 중국의 영화 산업 발전 단계와 각 지역의 독특한 자원 요소에 입각해, 영상 기지 건설의 발전 법칙에 따라 실사구시의 자세로 역량에 맞게 실행하되, 총량을 통제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질서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구도를 형성한다. 또한, 계획 없이 무턱대고 달려들거나 조류에 편승해 덩달아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주 업무 분야를 강조한다. 영상 기지의 산업적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고, 영상 제작 산업 지원을 핵심 업무로 삼아 고품질의 영상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영상 기지의 부대 산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업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고, 영상 기지 설립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방지한다.

모범 사례를 통한 선도를 지속한다. 발전과 규범화의 관계성을 잘 조율하고, 긍정적인 면은 복돋우고 부정적인 면은 바로잡으며 ‘경제 발전과 사상 발전을 함께 이뤄내도록’ 한다. 선진적인 영상 기지를 모범 사례로 심분 활용하여, 본보기를 세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지도를 강화한다.

2. 주요 임무

(3) 개념의 범주를 확정한다. 본 의견에서 지칭하는 영상 기지란, 시장화·기업화의 방식으로 건설 및 운영하고 폐쇄식 혹은 반 폐쇄식으로 관리하며, 인공 세트와 스튜디오 등을 중심으로 영상 편집실, 기자재 장비 창고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추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웹 영화, 웹 드라마 등의 촬영 및 제작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를 말한다.

(4)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업무 책임 시스템을 구현한다. 각 영상 기지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적인 위치에 두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길잡이로 삼아 기지 내에서 영상 작품을 촬영하고 제작할 때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영상 주무부처의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영화, 드라마, 웹 영화, 웹 드라마 등의 촬영 및 제작 활동은 모든 영상 기지에서 일률적으로 받지 않아야 하며, 관련 제작팀에 형식을 막론하고 일체의 촬영 제작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영상 기지는 제작팀이 위법한 영상 작품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정황을 포착하면 그 즉시 해당 지역의 영상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5)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한다. 영상 기지 건설은 엄격한 법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의 영화 산업 발전 수준과 비교 우위 요소에 근거해, 엄격한 과학적 논증을 거쳐 영상 기지 프로젝트의 규모와 부지 선정 및 배치를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검토해야 한다. 영상 기지 주변에는 호텔과 식당, 교통 등 서비스 시설 건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영상 기지와 무관한 주택, 오피스 빌딩 등의 시설은 규제한다. 영상 기지 안에는 주로 영상 촬영 및 제작 관련 인력을 지원할 부대 상업 시설을 설치한다.

- (6) 주 업무 분야에 힘을 쏟는다. 영상 촬영 및 제작 업무 시의 요구 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업계의 자원 요소를 집결시켜 서비스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 설비를 적시에 갱신해 현장 환경을 개량한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영상 기지 건설 수준과 품질 효율성을 끊임없이 높여, 주 업무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영상 기지의 발전 방식과 경영 모델을 혁신하고 산업 체인을 합리적으로 확장하며, 가치 사슬을 확대한다. 영상 기지 브랜드 구축에 힘을 쏟고, 특성화와 차별화 및 내적 발전을 실현한다.
- (7)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인다. 영상 산업의 발전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상 기지 기업의 과학 기술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가상 디지털 촬영,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버, 인공지능, 5G 협업 제작 등 새로운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문화 빅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영상 특수 효과 제작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 (8) 시범 선도를 강화한다. 영상 기지의 개선과 발전을 독려한다. 국가급(級) 중점 영상 산업 기지 여러 곳을 지정해 자금이나 정책, 업무 등의 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여 시범 선도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한다.
- (9) 부동산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영상 기지 건설과 관리 운영 주체가 기지 주변에 주택, 오피스 빌딩 등의 부동산 항목을 끼워 개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계획 조정을 통해 영상 기지 프로젝트에 부동산 개발 용지를 부설해서는 안 된다. 새로이 입안되는 영상 기지 프로젝트는 엄격히 심사하여 ‘영상 기지의 탈을 쓴 부동산’인 경우를 방지한다.
- (10) 용지 관리를 엄격히 한다. 경작지 보호 제도와 절약 용지 제도를 무엇보다 철저히 시행한다. 영상 기지의 부지 선정은 도시나 마을의 개발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용지 규모를 정해야 한다. 영상 기지의 용지는 남은 구역과 비효율적인 건설 용지를 우선 선정하되, 새로 건설 용지를 늘리는 것은 엄격히 통제한다. 농경지, 1급 보호 임지(林地), 천연 임지, 국가급 공익 임지와 도시나 마을의 공원 녹지를 점유하는 것은 금지하며, 불법으로 간척하여 영상 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금지한다.
- (11) 생태 보호 홍선⁷⁴⁾을 엄수한다. 철저한 생태 환경 보호 제도를 실시하여 생태 보호 홍선 안이나 자연 보호지, 문화 자연 유산,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을 부지로 선정해 영상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국토 공간 용도 관리 제도와 생태 환경 구역별 관리 통제 요구를 엄격히 시행한다.

3. 조직 시행

- (12) 속지 책임주의를 확실히 한다. 각 지역은 충분히 논증을 거쳐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영상 기지 건설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영상 기지가 진정으로 영상 제작과 영상 제작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토지 용

74) 생태 보호 홍선(生态保护红线): 한국의 그린벨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구역임

도와 건설 방안 요구 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상 기지 토지를 이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 (13) 부처별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영상 주관 부서는 영상 기지와 관련한 표준 및 규범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콘텐츠 관리와 업계 지도, 시범 선도 및 홍보를 통한 지도를 강화한다. 발전개혁, 자연자원, 생태환경, 주택도농건설 등의 부처는 각자의 기능을 결합하여 영상 기지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심사 허가 전에 성(省)급 이상의 영상 주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영상 주관 부처는 관련 부처가 설립을 승인한 영상 기지 경계선 및 기타 공간 정보를 국토 공간 계획 관련 정보 시스템에 신속히 포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테마파크 등으로 사업을 확장·운영하는 영상 기지의 경우 관련 부서에서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한다.
- (14) 업계의 자율을 강화한다. 영상 기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 조직 발전을 육성 및 지원하고, 산업 협회가 영상 기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표준, 규범 제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산업 협회는 산업 연구와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 동향을 적시에 파악해 산업 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정책과 법규를 홍보하고 회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산업의 권익을 보호해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가영화국

2022년 2월 21일

□ 애니메이션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2004.09.23	2004.10.23	광전총국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해외TV프로그램 가운데 포함될 수 없는 내용 명시
2	2005.04.28	2005.04.28	중앙기구 (6개 부문)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해외 문화상품 심사, 허가, 수리 절차 문화상품 수입경영허가증 제도 근거 중외 합작 애니메이션 관련 제도 내용
3	2006.04.25	2006.04.25	국무원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우수 창작 애니메이션 평가, 장려, 보급 메커니즘 구축 관련 내용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전문자금 설립 명시 애니메이션산업기지 건설지침 및 산업연 발전 방향 내용
4	2007.12.02	2007.12.02	광전총국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터넷 유통 영상물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강화 관련 정책성 문건 《애니메이션 배급 허가증》 취득 및 심의사항 규정
5	2008.02.19	2008.02.19	광전총국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중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황금시간대 17:00~21:00시로 확대 조정 1일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 7:3 명시
6	2008.08.13	2008.08.13	문화부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중국산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지원 방침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성 문건
7	2009.06.04	2009.06.04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건 만화·애니메이션기업 관련 인정, 평가, 관리,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영업세, 증가세, 소득세 혜택 중국 측 합작 파트너 선별 시 참고
8	2010.05.14	2010.07.01	광전총국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드라마 및 TV방영 애니메이션 내용규정 공동제작 등록 공시 제도 명시 내용 심사 및 배급허가증 제도 내용
9	2016.08.01	2016.08.08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연계 잠정규정	2016.1.1~2020.12.31 애니메이션 개발, 생산업체가 수입해야 하는 생산용품에 관한 수입관세 규정
10	2018.04.19	2018.04.19	재정부 세무총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애니메이션산업 세금 환급 정책

■ 애니메이션

1.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제목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게재일	2004-09-23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은 2004년 6월 15일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쉬광춘(徐光春)

2004년 9월 23일

중국 방송관리정책 5번 30페이지 참조

2.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 방법

제목	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제재일	2005-04-28
출처	중앙기구(6개 부서)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중선발(中宣发)(2005)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선전부, 문화부(국), 광전국(청), 신문출판국, 상무 주무부처, 세관 광둥분서(广东分署), 세관 텐진(天津), 상하이 특별파견관공실, 각 성 직속세관:

중국의 대외개방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문화상품 수입이 점차 성장하는 추세이다. 문화상품의 수입은 세계의 우수한 문화적 결과물을 도입하고, 인민 대중의 다방면, 다차원의 정신적 문화 요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하지만 현재 문화상품 수입 업무 중에는 관리 미비와 불법복제판 밀수 등의 문제가 만연하여 문화 분야의 대외개방과 문화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국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조류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상품(문화서비스 포함) 수입 관리를 강화, 개선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는 동시 국가 문화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1. 당위원회 선전부서는 문화상품 수입관리를 지도하는 협조업무를 담당한다. 문화행정부서는 음반·영상물, 미술품과 공연프로그램 수입 등 분야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라디오영화TV행정부서는 라디오TV프로그램과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의 수입을 담당하고 중외합작 제작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과 해외 위성TV채널 방송 등 분야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서적신문간행물, 전자출판물 수입을 담당하고 판권무역 및 협력출판 활동 등 분야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상무주무부처와 각급 세관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문화상품 수입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수입 수량 통제와 상품 종류 구조 최적화’의 원칙에 따라 중앙선전부는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등 부서에 협조하고 문화상품 수입의 총체적 계획, 년도계획과 수입 심사기준을 통일 제정하며 문화상품 수입에 대한 거시적 제어와 분류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문화상품의 수입 심의허가 등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관리부서 간의 일상 업무 협조메커니즘과 데이터 종합분석제도를 마련한다. 관련 국제관례를 참조하고 기술표준 인정, 콘텐츠 심의 감정과 총량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라디오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음반·영상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의 수입 수량과 상품 종류 등을 통제한다.
3. 국가는 문화상품 수입에 대해 프랜차이즈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경영기업에 대해 문화상품 수입 경영허가증 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경영허가증은 국무원 문화,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의하여 발급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직무 분업에 따라 문화상품 수입에 대한 심의허가 제도, 콘텐츠 심의제도와 등기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표준을 완비하고 절차를 규범화한다. 수입 문화상품에 대해 진입제도를 실행하고 각 급 세관은 문화,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의 발급한 문화상품 진입 문건에 근거하여 검수 수속을 진행한다.

4. 서적·신문·간행물, 전자출판물, 음반·영상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라디오·TV프로그램 등 문화상품 수입 업무는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국유 문화업체가 경영한다. 해외 공연단체 또는 개인의 중국 국내에서의 공연은 공연 경영자격을 갖춘 공연 매니지먼트기관이 경영해야 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문화상품 수입경영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경영업체에 대해 년도심사제를 실행한다. 규정을 어기고 문화상품을 수입한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입자격을 취소하며 가까운 시기에 더 이상 문화상품 수입업체 승인을 불허한다. 기존의 문화상품 수입 경영기업에 대해서는 수량 통제, 배치 합리화와 구조 최적화의 원칙에 주의하여 정돈해야 한다.
5. 음반·영상물 완성품 수입 업무는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가 독자 경영한다. 음반·영상출판기업은 허가 받은 출판업무 범위 내에서 수입 음반·영상물의 출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음반·영상출판기업은 '책임편집 초심, 부주임 2심과 편집장 최종심의' 제도를 견지하여 콘텐츠 초심 단계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문화부 음반·영상물 심의위원회는 콘텐츠 심의 표준과 내부 업무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전문가 정례회의 제도를 완비하여 콘텐츠 심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수입 음반·영상물에 대한 재심의와 완성품 등록 제도를 강화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수입한 음반·영상물의 출판, 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판 발행 과정 중 심사요구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침삭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유관 관리법규에 따라 수입업체에 대해 통보하고 처벌한다. 국내에서 해외 음반·영상물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온라인게임의 수입 관리는 문화부가 사용절차에서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고,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 진행을 담당한다. 신문출판총서는 해외저작권자가 위임한 인터넷 게임출판물의 출판에 대해 심의허가를 진행하고, 게임출판물의 인터넷 출판발행에 대한 사전 심의허가와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온라인게임의 내용 심의를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심의를 중시하여 외설, 폭력, 공포 등 유해 내용을 포함하는 온라인게임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한다. 수입 승인을 받은 온라인게임 출판물은 무단으로 제품 명칭을 변경하거나 제품 내용을 침삭할 수 없다.
7. 공연 매니지먼트기관이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의 중국 공연 유치를 신청할 경우 문화부에 심사승인을 신청한다.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 와서 가무 오락장소에서 지정 영업성 공연 유치를 신청하거나 홍콩·마카오·대만지역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 대륙에 와서 영업성 공연 유치를 신청할 때 공연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심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8. 미술품 수입 경영활동 종사자가 중국 국내에서 해외 미술품 전람행사를 개최할 경우 개최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예술품 경영기관은 중국 국내에서 예술품 수입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9. 해외 드라마, 영상 애니메이션 및 TV프로그램의 수입은 광전총국에 심사승인을 신청하고, 수입 프로그램 심사보고제를 실행하며, 자격을 갖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한다. 위성전

송방식 등을 통한 해외TV프로그램 수입은 성급 이상 국가광전총국 행정부서가 심의허가 후 광전총국에 심사승인을 신청한다. 수입 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TV프로그램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수량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불법복제판(해적판) 방영과 인터넷 불법 전송을 엄격히 금지한다.

10. 영화수입 업무는 광전총국이 지정한 수입업체가 전문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수입 영화의 전국 배급업무는 광전총국이 승인한 배급사가 배급한다. 수입 영화에 대해서는 총량 통제와 상품 종류 구조 최적화를 실행해야 한다. 각 방송국과 각 영화채널에서 수입하여 전문적으로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영화는 광전총국의 심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개최되는 해외 영화전시회, 국제영화제 등의 행사 개최는 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해외합작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항목 입안 관리를 강화하고 합작영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엄격히 심의한다. 합작영화의 중국 국내 배급 및 방영, 합작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중국 국내 배급과 방송국 방송은 광전총국이 교부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가 합작한 영화는 중국 대륙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 대륙 이외의 지방에서 인화할 수 있다.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가 합작한 드라마는 중국 대륙 주무부처의 심의를 통과한 후 중국산 드라마 방송과 배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12. 해외 위성TV채널의 중국 국내에서의 방송은 광전총국이 지정한 기구가 독점 대리하여 엄격한 심사승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 프로그램은 지정기구의 콘텐츠 감독 처리 실행을 득한 후 통일적으로 전송된다. 원칙상 해외 위성TV채널의 중국 국내 방송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방송 승인을 받은 기존의 해외TV채널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강화한다. 유해 프로그램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필요한 통제수단을 취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과 기업은 위성TV접수시설을 설치, 사용할 수 없다. 유선라디오TV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등 각 종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전송되는 해외 위성TV프로그램을 엄격히 금지하고, 중국 국내에서 무단으로 해외 위성TV채널과 관련 접수설비의 보급과 소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13. 도서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수입 업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기업이 경영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기업은 수입하려는 출판물 목록을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문서로 보고하고 아울러 자사가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한 내용 심의를 담당한다.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수입 출판물에 대한 내용 심의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신문출판총서는 특정 출판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해외 도서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전람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4. 해외 간행물의 중국 국내에서의 발행은 분류 관리와 정기구독 예약구매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어떤 기업과 개인도 해외간행물을 시장에 무단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국내 기업과 개인은 간행물 수입경영기관에 예약 구매하는 해외 간행물의 심사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는 원판 수입간행물의 해외장소에서의 판매업무를 독점 경영하고 판매 상품 종류는 신문출판총서의 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기업이 수입경

영범위를 확대하는 행위와 비출판물 수입경영기업 또는 개인이 무단으로 출판물 업무를 경영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개인이 문화상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과 우편으로 문화상품을 우송 입국하는 것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15. 협력출판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출판기구와의 협력을 엄격히 통제한다. 중국 국내 출판사와 해외 출판기구는 중국 국내에서 합자로 출판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중국 국내 과학기술류 간행물과 해외 간행물의 판권협력 관계 구축을 허가한다. 협력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협력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경우 심의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중국측은 콘텐츠의 최종심의권을 가지며 외국측 인원은 중국측 간행물의 편집, 출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6. 판권무역의 관리를 강화한다. 연간 수입판권에 대한 총량 통제를 강화하고 출판사가 수입하는 판권의 수량을 제한하여 수출입 작품의 종류 및 수량 추세가 균형을 이루도록 힘쓴다. 등기등록제도를 완비하고 중요 테마선정은 유관 규정에 따라 심의허가, 등록해야 한다.
17. 해외 출판물, 음반·영상물을 증정받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증정을 받은 기관이 접수한 해외 증정출판물이 100권(세트, 부)이상, 음반·영상물이 200개 이상일 경우 문화,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심의허가를 거쳐야 하고 국무원 문화,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8. 중요 문화상품의 수입 및 중요 비즈니스 협력 프로젝트의 항목입안은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심사승인 전에 중앙선전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는 본 방법에 따라 본 부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완비하며 중앙선전부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한다.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방법을 하달한 후 본 방법과 저촉되는 모든 부서의 규장은 각 부서가 정리하고 수정한다.

중공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세관총서

2005년 4월 28일

3.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推动我国动漫产业发展的若干意见
게재일	2006-04-25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국판발(2006)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 각 직속기구:

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상무부, 문화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动我国动漫产业发展的若干意见)》은 국무원의 동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송부하니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06년 4월 25일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我国动漫产业发展的若干意见)

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상무부, 문화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많은 인민대중, 특히 미성년자들이 좋아하는 문화상품이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은 인민대중의 정신적 문화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미성년자들의 사상 도덕 건설을 촉진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제성장거점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과 인민대중이 부단히 증가하는 정신적 문화수요와 부단히 발전하는 시장수요 간에는 아직도 큰 격차가 있고,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발달한 국가와의 격차는 더 크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사상과 기본 사고 및 발전목표

- (1)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창의(Creative)'를 핵심으로 하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표현형식으로 하며 만화책, 간행물, 영화, TV, 음반·영상물, 무대극과 현대 정보 전파기술 수단을 기반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신제품 등을 포함하는 만화·애니메이션 직접 상품의 개발, 생산, 출판, 방송, 공연과 판매 및 만화·애니메이션 이미지와 관련된 의상, 완구, 전자게임 등 파생상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 (2) 지도사상.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번영 및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요구에 따라 중화민족

의 우수한 문화를 선양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내용과 친대중적인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창작을 촉진하여 인민대중의 정신적 문화수요를 만족시키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전한 산업시스템과 날로 합리적인 구조배치, 전체 기술수준의 선진화, 질서 있는 시장경쟁, 현저한 경제 이익을 지닌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구도를 점진적으로 형성한다.

- (3) 기본 사고.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실제상황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과 사회주의 선진문화건설의 특징과 규율에 따라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 메커니즘과 제도적 장애 제거에 노력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해 양호한 사회 환경과 시장조건을 조성한다.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자주적인 선순환 발전 능력을 증강시킨다. 국내기업의 자주적인 연구개발과 중국의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만화책, 간행물, 영화, TV, 음반·영상물, 무대극과 현대 정보전과 기술수단에 기반한 만화·애니메이션 신제품 등 만화·애니메이션 직접 상품의 개발, 생산, 출판, 방영, 공연과 판매를 중점 지원한다. 만화·애니메이션 이미지와 관련된 의상, 완구, 전자게임 등 파생상품의 생산과 경영을 장려한다.
- (4) 발전 목표. 정책 추진을 통해 예술 이미지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생산 공급과 판매단계가 서로 맞물리는 성숙한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사슬을 형성한다. 탄탄한 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만화·애니메이션 선두기업을 만들고, 활력이 충만하고 전문성이 강한 중소 규모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을 육성하여 중국 스타일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브랜드를 창조한다. 5-10년간 중국산 오리지널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생산 수량을 대폭 증가시키고 제품의 질을 현저히 제고하며 기술혁신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명품 걸작을 부단히 창조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창작 개발과 생산능력이 세계 만화·애니메이션 대국과 강국 반열에 오르도록 하고 국내 주요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한다.
- (5)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부서간 연석회의제도를 구축한다. 부서간 연석회의는 문화부가 앞장서고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정보산업부, 상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등, 부서의 담당자가 참가하며, 판공실은 문화부에 둔다.

2. 투입강도 강화, 오리지널 창작행위 중점 지원, 성숙한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사슬 형성 추진

- (6) 중앙재정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전담자금을 설립한다. 전담자금은 주로 우수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상품의 창작 생산, 민족·민간 만화·애니메이션 소재 데이터베이스(D/B) 건설 및 만화·애니메이션 공공기술서비스시스템 구축 등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사슬 발전의 관건적인 단계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투입을 확대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창작 행위를 적극 지원하여 성숙한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사슬 형성을 추진한다.
- (7) 우수 오리지널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선정, 장려와 보급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가급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시상식을 설립하여 내용이 건강하고 예술성이 강하며 혁신성이 높고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제품을 표창한다.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제품의 방송, 공연, 출판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대회와 전람회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만화·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제품을 보급한다.

- (8) 만화·애니메이션 출판과 방영기구가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출판, 게재와 방송 비용을 늘리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출판, 게재, 방송과 공연에 대한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비용 보상을 늘리는 것을 장려한다.

3.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발전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9) 투자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사회자본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진입하는 각종 장애를 없애고 중소기업이 창업투자 관련 기금을 이용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리스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의 실력 있는 대기업이 출자, 지배 또는 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공유자본이 평등하게 각종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연구개발과 창작생산에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과 문화분야의 외자도입 관련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다양한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연구개발과 창작생산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한다. 정책성 은행은 조건에 부합하는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조건을 구비한 만화·애니메이션 중소기업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후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조건에 부합하는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중국 국내 증시에 상장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한다.
- (10)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인증을 거친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자주적으로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은 국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우대 정책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자주적으로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이 영업세 과세대상 노무에 해당될 경우 (광고업, 엔터테인먼트업 제외) 3%의 세율을 적용, 영업세를 감면 징수한다. 상기 우대정책을 향수하는 만화·애니메이션 제품과 기업의 범위 및 관리방법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 (11) 국무원 유관부서의 인증을 거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자주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제품에 수입이 필요한 상품은 수입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의 감면 징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면세상품 범위 및 관리방법은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4. 국가 만화·애니메이션산업 기지 건설 지원 및 만화·애니메이션 산학연 통합 발전 촉진

- (12) 인재 교육과 양성, 기술 연구개발 및 서비스, 선두기업 집약적 발전, 중소규모 기업 인큐베이팅 및 국제경제기술협력 등 다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만화·애니메이션산업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서간 연석회의는 국가 만화·애니메이션산업기지를 잘 배치하고 계획하며 기지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기지의 인증을 담당하며 관련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13) 새로 인증한 국가 만화·애니메이션산업기지 건설은 우선 하이테크기술개발구와 소프트웨어 단지 건설과 결합하여 기존의 정책, 기술, 서비스, 장소 등의 조건을 십분 활용한다.
- (14) 국가 만화·애니메이션산업기지는 우승열패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3년에 1회 평가와 조정을 진행한다.

5. 만화·애니메이션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보장 제공

- (15) 과학기술, 정보산업 등 부서는 기존 루트를 통해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중 기초성, 전략성과 전망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강도를 확대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기술 설비와 공공기술플랫폼 지원서비스시스템 및 공유메커니즘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 (16) 국내외 기업, 과학연구원(소), 대학(원) 등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관기관에 만화·애니메이션 창작도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6. 만화·애니메이션 인재 육성 지원 및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뒷심 증강

- (17) 국내 교육과 양성자원 우위를 발휘한다. 만화·애니메이션 인재 육성을 국가 문화예술류 인재육성계획에 포함시키고 적당히 지원한다. 시장 수요와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만화·애니메이션 인재 육성 비용 분담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인재육성 규모를 확대하며 인재육성 모델을 개혁하는 한편 직업교육, 현대 원거리교육 등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만화·애니메이션 인재를 양성한다. 창작대회 개최와 흥미소조 설립 등 방식을 통해 대중의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에 대한 창작 흥미와 소비습관을 육성하고 유도하여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영향력을 확대시킨다. 만화·애니메이션기업, 과학연구원(소), 업종협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등 기구와 기관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기술과 인재육성을 전개한다.
- (18) 해외 우수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수요 만족을 주력 방향으로 '출국유학경비' 등 루트를 통해 만화·애니메이션 교사대오와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해외 만화·애니메이션 창의, 기술과 기업 경영관리 전문가를 중국으로 초빙하여 학술 강연 및 업무에 참여시킨다.

7. 시장 감독관리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 (19)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는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생존 발전의 근본적인 보장으로 만화·애니메이션제품 저작권 등기를 적극 장려하고 법에 의거하여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중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운영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밀수입, 권리침해와 불법 복제하는 행위를 척결한다.
- (20)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수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콘텐츠의 긍정성과 건강성을 확보한다.

8.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및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공간 확장

- (21) 만화·애니메이션산업 해외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수출 번역 및 제작경비를 적당히 보조한다.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 자금' 루트를 통해 우수한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작품과 제품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국수출입은행은 만화·애니메이션 선 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수출을 위해 수출 크레딧(Credit)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

수출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만화·애니메이션 제품의 해외시장 마케팅을 촉진한다.

- (22) 만화·애니메이션 제품 수출 기업은 국가가 통일 규정한 수출환급(면세) 정책을 누린다.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수출 기업에 적당히 장려할 수 있다.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해외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획득한 해외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9. 업종 자율 선도 및 만화·애니메이션 발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추진

- (23) 각 급 문화,广电, 신문출판과 정보산업 등 부서는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해 업종관리와 감독을 행해야 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클러스터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의 만화·애니메이션 업종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업종협회가 정부부서와 협력하여 업종 표준과 만화·애니메이션 분급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루트를 원활히 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한다. 각급 업종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회원이 공동 부담한다. 또한 승인을 거쳐 일정한 사회 찬조를 받을 수 있다.

10. 만화·애니메이션 업종 표준제정과 지원정책을 누리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작업

- (24)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업종표준과 본 의견에서 규정한 정책을 누리는 만화·애니메이션 기업 인증 표준은 부서간 연석회의에서 제정한다.
- (25) 본 의견에서 규정한 정책을 누리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해 년도심사제도를 실행한다. 년도심사에 불합격한 기업은 관련 우대정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 (26) 본 의견에서 규정한 정책을 누리는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인증과 년도심사 조직 업무는 성급 이상 문화,广电, 신문출판, 정보산업, 세무 등 부서가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

11. 조직지도와 조율 협력 강화 및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공동 추진

- (27) 각 지역과 각 유관부서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을 의사일정에 편성시켜 각 조항 정책 범규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상호 지원 및 조율 협력을 강화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서의 중대 문제를 적시에 연구하고 해결함으로써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공동 발전을 추진한다.
- (28)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유관부서는 본 의견의 정신에 따라 실제와 결부하여 부대 실시세칙과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4.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互联网传播影视剧管理的通知
게재일	2007-12-28
출처	광전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广电总局关于加强互联网传播影视剧管理的通知)

2007년 12월 28일, 광전총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방송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라디오방송국에 《광전총국의 인터넷 영상물 전파 관리 강화통지(广电总局关于加强互联网传播影视剧管理的通知)》를 발송했다. 통지에서는 현재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는 불법복제판과 사회의 도덕에 위배되고 포르노, 외설 심지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전파하며 우수 전통문화를 발양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터넷 영상물(국내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기타 상응하는 음반·영상물 포함, 이하 동일)의 건설과 관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 발전 수요에 부응하고 영상물 생산과 인터넷 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급 광전국은 영상물 프로그램 제작기관이 인터넷상에서의 전파에 적합한 내용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영상물의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한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여 중국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건설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2. 인터넷 전파 영상물 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의 특징과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선진문화 건설의 요구에 따라 지도를 강화하고 직무를 명확히 하며 임무를 이행하여 인터넷 전파 영상물의 관리를 확실히 강화함으로써 관리를 통해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을 통해 번영을 촉진한다. 인터넷 전파에 사용되는 영상물은 라디오영화TV관리의 유관 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국가광전총국이 교부한 《영화방영허가증(电影片公映许可证)》, 《드라마발행허가증(电视剧发行许可证)》 또는 《TV애니메이션배급허가증(电视动画片发行许可证)》을 취득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인터넷 방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 전파에 사용되는 이론문헌 영상물은 국가광전총국이 교부한 《이론문헌영상물방영허가증(理论文献影视片播映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영화방영허가증》을 미취득한 국내외 애니메이션 및 《이론문헌영상물방영허가증》을 미취득한 이론문헌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일률적으로 전파할 수 없다.
3. 관리 강도를 확실히 확대하여 인터넷 환경 정화에 노력한다. 각급 광전국은 법에 의거한 행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강도를 확대하여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 양호한 인터넷 환경을 창조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하 업무를 전개한다.
 - (1)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터넷 포르노물을 자각적으로 억제한다. 각 지역은 라디오TV, 간행물 및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조직하고 유도하여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위해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전파되어 야기되는 사회 위

해성에 대한 홍보강도를 확대하고 건강한 문명의 인터넷 시청문화를 적극 선도하여 대중, 특히 미성년자가 각 중 유해 시청각 프로그램을 자각적으로 억제하고 멀리하도록 한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방송TV 관리조례(广播电视管理条例)》, 《영화 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규정(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등 관련 라디오영화TV 법규에 대한 홍보와 해석을 진행하고 교육시청서비스 종사기관은 반동 유해성·외설적, 선정적이며 폭력적이고 저속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 등 《인터넷시청프로그램 관리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방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네티즌이 업로드하는 영상물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하도록 교육하고 인터넷 업종의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많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건강하고 문명적인 인터넷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 (2)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시청서비스를 전개한다. 각 지역 광전국은 지도를 강화하고 직무를 명확히 하며 직무를 이행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당 관할지역 내 웹사이트에 중국의 관리요구를 전달하여 웹사이트 법인대표와 해당 지역 전자통신기업 각급 자회사 책임자가 관련 관리규정과 관리 요구를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 지역은 역량을 조직하고 핵심을 부각시켜 해당 관할지역 내의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기관에 대해 1회 전면적인 특별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기관이 인터넷에서 전파하는 영상물의 관련 규정 부합 여부와 기관의 《정보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许可证)》 소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 (3)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복제판 및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해 내용 영상물을 전파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각 지역은 온라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감독통제 강도를 강화하여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의 영상물을 적발하는 즉시 제거 명령을 내린다.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전파하는 경우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외설 선정 척결 특별행동 업무방안(依法打击网络淫秽色情专项行动工作方案)》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조직에 적시에 정리할 것을 통보한다. 인터넷 위법 범죄에 관련될 경우 공안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입안 처리한다. 내부 프로그램 관리제도가 해이하고 안전 위험이 비교적 크며 방송프로그램에 불법복제와 내용 방면의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인터넷시청서비스종사기관에 대해서 중점 시정을 진행한다. 사안이 심각하고 수차례의 교육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시청프로그램 관리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통신관리부서에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각 성 광전국은 추진 상황을 관철하여 국가광전총국 사회관리사에 적시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

5.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电视动画片播出管理的通知
제재일	2008-02-19 (송부일 2009.02.16)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2008년 2월 14일, 국가광전총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영상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⁷⁵⁾ 광전국(新疆生产建设兵团广电局), CCTV, CETV를 대상으로 《TV 애니메이션 방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전달했다.

TV 애니메이션 방송질서 확립과 TV 애니메이션 방송 제어 및 관리 강화 그리고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ARTOON 채널, 어린이 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 채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채널은 중국산 애니메이션 방송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위성채널들은 사고방식을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창작조건 조성에 힘써, 중국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사고 및 도덕관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상적으로 훌륭하며, 예술적 조예가 깊고, 제작 수준이 높은 우수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또한 중국산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2. 2008년 5월 1일부터, 전국 각 방송국의 모든 채널들에서 해외 애니메이션, 해외 애니메이션 정보소개 프로그램 및 해외 애니메이션 관련 프로그램 방송 불가시간대가 기존 17:00~20:00에서 17:00~21:00로 1시간 확장되었다. 해외기업과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이 시간대에 방송하기 위해서는 국가광전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3. 각 애니메이션 채널은 17:00~21:00 시간대에 반드시 중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중국산 애니메이션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어린이 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 채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채널은 이 시간대에 반드시 중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자체 제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며,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을 방송할 수 없다.
4. 각 급 방송국들이 해외 애니메이션 인형극,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극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각 급 방송국들은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수입 애니메이션 인형극,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극을 방송할 수 없다. 또한 17:00~21:00 시간대에는 해외 애니메이션 인형극,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극을 방송할 수 없다.
5. 모든 중국산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성급 이상 국가광전총국 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중국산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애니메이션은 TV에서 방송할 수 없다. 해외와 공동제작 한 애니메이션이나 수입 애니메이션 역시 반드시 국가

75)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광전총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을 취득해야, TV 방송이 허가된다. 각 급 방송국은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 미취득 국내외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없다.

6. ‘CARTOON 채널, 어린이 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 채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채널은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편성비율을 7:3보다 낮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7. 각 급 방송국들은 방송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국내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작품구매 경로를 한 층 규범화하고, 불법 복제판 국내외 애니메이션 방송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발행허가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을 중국 국내에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방송국은 허가 받지 못했거나 허가증 유효기간이 지난 해외 애니메이션을 구매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8. 각 급 방송 행정부서 및 방송국은 ‘CARTOON 채널, 어린이 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 채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채널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강한 정치적 역량과 업무 능력 그리고 올바른 업무 풍조를 지닌 지도부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커버리지 능력을 확대하고, 중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및 구매 경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9. 각 급 행정 부서는 관할 방송국들이 방송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와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규정을 어긴 불법복제 국내외 애니메이션과 발행허가증이 만기된 해외 애니메이션 그리고 규정 시간과 양을 초과한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을 즉각 통보하고, 개선 작업을 엄격히 진행한다. 성급 이상 방송 행정부서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배치를 통해 애니메이션 방송심의와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10. 모든 ‘CARTOON 채널, 어린이 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 채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채널들은 본 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편 방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 성 국가광전총국은 관할 지역 내의 ‘CARTOON 채널, 어린이 채널, 청소년 채널, 아동 채널’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채널 등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편성방법을 일괄 보고한다. CCTV는 어린이 채널 프로그램 편성방법을 보고한다. 편성방법은 4월 1일 이전에 국가광전총국 홍보관리부서에 팩스로 전달되어야 한다.

6.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진흥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扶持我国动漫产业发展的若干意见
제재일	2008-08-13(송부일 2009.2.17)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문화부 직속 산하기관:

《국가 11·5기간 문화발전 계획요강 (国家‘十一五’时期文化发展规划纲要)》 및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미성년자 사상관 및 도덕관 수립 심층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약간 의견 (中共中央, 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对改进未成年人思想道德建设的若干意见)》 (중앙발표(中發) [2004]8호 문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국무원관공청이 재정부등 부서에 전달하는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발전추진을 위한 약간 의견에 관한 통지》 (국무원관공청발표 (國辦發)[2006]32호 문건)의 내용과 《국무원관공청의 문화부 주요 책임 내부기구와 인력 편제 규정의 인쇄 및 발행에 관한 통지》 (국무원관공청발표 [2008]79호 문건)의 규정에 의거,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관계 부처간 연합회의의 총체적 업무 배치에 따라 중국 문화부는 여기서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기본 상황과 지도 사상

- (1) 최근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은 수량적 증가는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했으며, 일부 관련 기업과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대중의 정신문화적 수요 및 시장의 왕성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창성과 인재양성, 기술개발, 산업사슬의 통합, 저작권 보호 등 다방면에서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10년 안에 세계적 만화·애니메이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도 멀다.
- (2)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관을 드높이고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한다.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화합의 문화를 건설하는 한편, 청소년의 사상도덕적 건설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독창적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창작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함으로써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민족적 스타일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함께 고려한 산업 발전의 길을 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수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유 저작권을 가진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브랜드를 구축한다.
- (3) 과학적 발전관을 보다 심화, 구현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전면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자원의 배치에 대한 시장의 기본작용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회적 자금의 투입을 유도,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산업사슬을 완성한다. 현실에서 출발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모색하고 내부적 발전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통일된 기획과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 자원의 통합을 통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지역적

특성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맹목적 발전을 경계하고 무질서한 경쟁을 지양한다. 산업의 메커니즘을 적극 혁신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스템적 장애물과 메커니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발전 국면을 형성하고, 통일되고 개방되어 있으며 경쟁과 질서가 공존하는 바람직한 시장 구조를 만든다.

2. 중화민족 고유의 독창성 지원 및 산업 사슬의 완성

- (4)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진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독창적 작품의 창작 생산력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정적 측면의 지원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다양한 소유제 기업들로 하여금 현실감 있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친밀감, 중국의 문화적 정신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함양하고,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확산, 전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첫째, 중국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대상을 선정하고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내용과 예술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성이 뛰어나며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활동을 장려한다. 둘째,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을 지원한다. 매년 몇 편의 우수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온라인 웹 만화·애니메이션,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과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 등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 지원한다. 셋째,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관련 인재를 육성한다. 해마다 만화와 온라인 웹 만화·애니메이션,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의 창작 작업에 종사하는 작가를 선정, 지원한다. 넷째, 창작 만화·애니메이션을 적극 보급한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회, 특히 청소년 계층에 우수한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을 확산시킨다.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의 독자적 제작능력과 파생상품의 개발 및 디자인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활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만화·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을 키워내며, 중국만의 스타일과 세계적 영향력을 고루 갖춘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브랜드를 육성한다.
- (5)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산업사슬을 구축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만화(단행본/잡지)와 애니메이션(영화/TV/DVD),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 온라인 웹 만화·애니메이션,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등으로 이루어진 산업사슬을 가지고 있다. 만화 창작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바탕이고, TV나 극장용 만화·애니메이션은 산업의 주체이며,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은 산업의 외연을 확장시킨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웹 만화·애니메이션과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은 산업의 미래 향방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의류와 장난감, 문구제품과 게임 등 파생상품들도 산업의 범주에 속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을 구성하는 각 분야의 내재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내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6) 창작 만화를 지원해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에서 만화가 발휘하고 있는 기반적인 역할을 높이 중시하는 한편, 만화 창작 지도를 보다 강화하고 만화 창작과 연구 관련 주요 간행물을 지원한다. 또한 성과가 뛰어나고 만화 발전에 기여한 만화 작가는 시상한다. 미술관이나 문화센터, 아트센터, 박물관 등의 협조를 받아 걸작 만화를 전시함으로써 만화 예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시장을 확대시킨다.
- (7)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을 발전시킨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극이나 아이돌 드라마의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을 장려하고 이를 멀티미디어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중국 국유 문화 예술 공연단의 창작 주체들이 제 몫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공연 횟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

급하는 형식으로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이 공연되도록 지원한다. ‘중국 국가 무대예술 명작 프로젝트’는 이러한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의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창작 만화·애니메이션이 공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국적 스타일의 고전적 캐릭터를 구축한다. 또한 만화·애니메이션 기업들이 공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지분 참여나 보유,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단체의 기업화를 허용함으로써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브랜드가 보다 널리 확산되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코스프레(cosplay) 등 공연단체와 그들의 공연활동에 대한 법률적 관리와 규범화를 강화한다.

- (8) 온라인 웹 만화·애니메이션과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의 발전에 주력한다. 첨단 기술과 최신 생산방식을 이용해 새로운 만화·애니메이션 장르를 개척한다. 생산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전파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웹 &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디지털과 인터넷 등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로 설명되며, 핵심 기술과 현대적 생산 방식을 총동원해 생산과 전파에 있어 혁신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인터넷 유통을 통해 보다 풍부한 표현 형식과 자유로운 전파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의미의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관련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인터넷 문화기업들이 웹 만화·애니메이션 서비스와 관련 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사이트가 웹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일구는 중요한 무대가 되도록 한다. 클릭수가 높고 시장의 반응이 좋은 우수 작품의 경우 전통적 경로를 통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재정자금과 사회자본 등이 웹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어플리케이션에 투입됨으로써 신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만화·애니메이션이 제작, 전파,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중국 창작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실현시키는 한편, 창작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질적 수준을 끊임 없이 향상시켜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삼는다.

3. 지원 시스템의 완비, 플랫폼 건설 가속화

- (9) 이론적 연구를 강화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지원과 관련한 관계 부처간 연합회의 전문가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만화·애니메이션 기업과 관련 고등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이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기초이론과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관련 자원의 통합 및 연구 시스템의 완비와 동시에 중국 정부의 사회과학 기금 지원을 획득하는데 적극 나서 이론연구의 지원영역을 확대한다. 중국 문화부의 문화 ‘혁신상’을 통해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이론 및 실제적 혁신에 대한 장려의 폭을 보다 확대시킨다.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10) 인재 육성 수준을 제고시키고 프로 만화·애니메이션 인력을 양성한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 기초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의 육성을 전면 추진한다. 예술 교육과 훈련과 관련한 문화행정 부서의 자원적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만화·애니메이션 인력을 국가 문화예술 인재육성 계획에 편입시키고 학과 및 학위(석박사 과정 포함), 강의연구 경비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편다. 고등 직업학교를 기반으로 만

화·애니메이션 종사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추진하는데 힘쓴다. 기업과 학교, 산업협회 등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 관련 인재교육을 전개한다. 사회 예술 분야 자격증 시험에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시험을 신설한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을 이끄는 고급인력을 육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고급 연수생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 또한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인재육성 방법을 마련, 이들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11)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국 국가 만화·애니메이션 산업기지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산업단지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기준과 평가 메커니즘을 엄격히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과열 또는 범람을 방지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 산업기지들이 인재양성과 기술 R&D, 서비스, 공공 기술플랫폼 지원, 선두 기업의 집약적 발전,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국제교류와 협력 등 주어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중국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게임엑스포 등 관련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중국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지역별로 개최되는 만화·애니메이션 전시회와 축제에 관한 기획과 지도를 보다 강화한다. 해외 행사 및 국제 전시회, 대회참가 등의 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문화부에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2) 만화·애니메이션산업 공공 정보/서비스/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 정보 플랫폼에는 정책관련 정보의 발표, 산업 통계 데이터, 전문가 위원회의 업무교류 등이 포함되며,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는 중국의 민족과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관리 플랫폼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온라인 신청 및 공시 시스템이 운영되며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관계 부처간 연합회의 판공청 항목관리의 실제 업무 플랫폼이기도 하다.
- (13) 국제 교류와 협작을 촉진하여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정부간 교류와 협작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해외 교류 및 협작을 장려하는 한편,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합자, 합작, 프로세싱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협작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 참여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창작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만화·애니메이션 수출기업의 작품을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지도 목록》으로 지정한다.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국제 유명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직하여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중국산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수출 장려금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담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긴다.

4. 관리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 환경의 최적화

- (14)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중국산 창작 만화·애니메이션의 브랜드와 캐릭터, 그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의 강도를 높인다. 일상적 감독관리와 전담 정비를 통해 불법 경영활동을 근절시키고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호한다. 또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에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마련한다.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기여한 단체나 개인은 표창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 (15) 만화·애니메이션 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 환경을 정화한다. 지나친 폭력이

나 음란한 내용, 사회도덕과 민족적 전통문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은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만화·애니메이션의 범주에 포함되는 미술품,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 온라인 웹 만화·애니메이션,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등 수입 문화 상품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우수한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을 질서 있게 도입하는 한편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의 종류와 장르를 보다 풍부하게 확장시키며 이를 통해 특히 청소년의 심미적 능력과 감상 능력을 제고시킨다. 심사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만화·애니메이션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만화·애니메이션을 통한 저속한 불량 문화의 전파를 막는다. 만화·애니메이션 문화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문화 환경을 만든다.

- (16) 만화·애니메이션 협회가 구성되도록 지도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만화·애니메이션 학회와 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고 협상, 협력, 협조를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적 위치에서 학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루 감안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 협회를 조정, 개선시키고 보다 알차게 하거나 또는 협회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자원과 산업 자원이 통합을 통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산업협회가 정부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위해 서비스하고 산업의 자율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한다.
- (17) 지도부와 부서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각급 문화 행정부서는 사상적 통일과 인식의 제고, 지도의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구, 편성, 직무를 규정하는 이른바 ‘3정(三定)’ 방법에 따라 문화 행정부서에 맡은 바 직무책임을 부여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전개한다. 해당 지역의 만화·애니메이션 발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직무를 전면 이행하는 동시에 국무원 판공청의 국판발[2006]32호 문건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소요 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만화·애니메이션산업 계획과 산업기지, 프로젝트 건설, 전시회를 통한 판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산업협회에 대한 지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업무를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완수한다. 만화·애니메이션 발전 지원 부처간 연합회의 판공청의 일상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하고 판공청의 내부적 역량 강화에도 힘써 종합 협조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부서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국무원 판공청 발표[2008] 79호 문건에 따라 문화부는 만화·애니메이션산업 계획, 산업기지, 프로젝트 건설, 전시회를 통한 판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산업협회에 대한 지도 등의 새로운 직무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 대책을 제정하고 이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8월 13일

7.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범시행)

제목	动漫企业认定管理办法(试行)
제재일	2009-06-04
출처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문화청(국),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动漫企业认定管理办法)(试行)》(문산발〔2008〕51호, 이하《방법》으로 약칭한다)을 이행하고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작업을 수행하며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완비된 업무 메커니즘의 조속한 구축 및 인증 진전 가속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는 동급 재정, 세무부서와 함께 성급 인증기구 설립에 박차를 가해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면서 인증 업무를 순조롭고 규범적으로 엄격히 집행하는 상황 하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초심과 자료 보고 작업을 조속히 펼친다. 성급 인증기구 판공실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에 둔다. 인증업무 중에 봉착하는 문제는 적시에 검토하여 해결하고 전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 업무판공실에 보고한다. 문화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만화·애니메이션산업 세수정책 집행에 대한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한다.

2. 인증 표준의 엄격한 파악

《방법》에서 말하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만화 출판, 발행을 포함하지 않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방영, 인터넷 만화·애니메이션 전파 및 만화·애니메이션 파생상품 생산, 판매 등을 주영업업무로 하는 기업이다.

기업이 보유하는 자주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기업이 최근 3년 내에(서면 보고일 전까지) 취득한 자주 지적재산권을 가리킨다.

기업 영업장소 재산권 증명 또는 임대동의서(임대인의 재산권 증명 포함), 영업장소가 기업 자기 소유 부동산인 경우 집문서 사본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공한다. 영업장소가 기업이 임대한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집문서 사본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거나 또는 소유주의 사인을 서명하여 제공하고 아울러 주택임대계약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공한다.

3.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년도심사 신청 접수 기간은 매년 5월 1일 - 7월 31일이다.

4. 계획단열시 소재 성 문화청은 편리하고 빠른 원칙에 입각하고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계획단열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5. 《방법》 제14조에 규정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신청 자료 양식은 본 통지 별첨 1을 참고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본 통지 별첨 2의 양식을 참고하여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

문시발〔2008〕5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문화청(국),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관리방법(시행)》을 공표하오니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의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육성하고 정부의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금 우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판공청의 재정부 등 기관의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 관련 의견 전달에 관한 통지》(국판발〔2006〕32호, 이하 《통지》로 약칭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 따라 인증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만이 신청하여 《통지》에서 규정한 관련 우대와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3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 업무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을 위해 봉사하고,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고수하며 공개, 공평, 공정 원칙에 따른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다음과 같다.

- (1) 만화창작 기업
- (2)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 기업
- (3) 온라인 만화·애니메이션(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포함) 창작, 제작 기업
- (4)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프로그램)제작, 공연 기업
- (5)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6) 만화·애니메이션 파생 상품 연구개발, 디자인 기업

제5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은 다음과 같다.

- (1) 만화: 1컷 만화(one frame comics)와 다중 만화(multi frame comics), 삽화, 만화 도서, 애니메이션 프레임 캡처 도서, 만화 간행물, 만화 원화(原画) 등
- (2)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 제품, 영화 및 드라마 특수효과 중의 애니메이션 부분, 과학교양·군사·기상·의료 등 영화 및 드라마 프로그램 중의 애니메이션 부분 등

- (3) 온라인 만화·애니메이션(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포함): 컴퓨터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등 정보 네트워크를 주요 전파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및 각종 휴대 전자제품을 수신 단말기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만화 작품이며 FLASH 애니메이션, 네트워크 이모티콘, 휴대전화 만화·애니메이션 등을 포함
- (4)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프로그램): 만화·애니메이션 평면과 영화 및 드라마 등 형식으로 개편한 작품의 무대 연출극(프로그램), 만화·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사용하거나 또는 만화·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포함한 무대 연출극(프로그램) 등
- (5)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만화 평면 설계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제작 전용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후기 음성 및 동영상 제작 도구 소프트웨어 등
- (6) 만화·애니메이션 파생 상품: 만화·애니메이션 이미지와 관련된 의상, 완구, 문구, 전자게임 등

제2장 인증관리

제6조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전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 업무의 방향을 함께 확정하고 전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및 그의 만화·애니메이션상품의 인증업무를 지도, 관리 및 감독하며 인증에 통과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7조 전국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업무 관공실(이하 ‘관공실’로 약칭)은 문화부에 설립했으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실행
- (2) 인증 및 관련 정책 이행 중의 큰 문제를 조율 및 해결
- (3)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 업무 플랫폼’의 조직 구축 및 관리
- (4) 이미 인증한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와 연간 감사(年審)를 진행하고 상황 변화와 산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세부적인 인증 표준에 대해 동태적 조정 진행
- (5) 관련 제보를 수리, 검증 및 처리

제8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기관과 동급의 재정, 세무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 기관(이하 ‘성급 인증기관’)을 구성하여 본 방법에 따라 다음 업무를 진행한다.

- (1) 본 행정구역 내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및 그의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에 대한 인증 1차 심사업무 담당
- (2) 본 행정구역 내의 인증에 통과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 발급 담당
- (3) 본 행정구역 내의 인증에 통과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연간 감사 담당
- (4) 본 행정구역 내의 관련 제보를 수리, 검증 및 처리, 필요 시 관공실에 보고
- (5) 관공실에서 의뢰한 기타 업무

제9조 각급 인정기관은 본 관할구역 내의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인증 업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인증 업무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하고 고효율, 편리한 인증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인증기관의 동급 재정부처에서 지원한다.

제3장 인증 표준

제10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다음 표준에 동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중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
- (2)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을 취급하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주요 영업수입이 기업 당해 총수입의 60% 이상을 차지
- (3) 자주(自主)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수입이 주요 영업수입의 50% 이상을 차지
- (4)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가 만화·애니메이션 인재 전문 인증에 통과하고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개발 또는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기업 당해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이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당해 전체 종업원의 10% 이상을 차지
- (5)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개발 또는 해당 서비스 등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와 업무장소 보유
- (6)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연구개발 비용이 기업 당해 영업수입의 8% 이상을 차지
- (7)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건전하며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없음
- (8) 기업의 재산권이 명확하고 관리가 규범적이며 법을 준수하면서 경영

제11조 자주(自主)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이란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자주 창작,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제작, 공연하는 본 방법 제5조 규정에 부합되는 만화·애니메이션 상품(만화·애니메이션 파생상품 불포함)을 일컫는다. 외국의 만화·애니메이션 고안에 대해서만 간단한 아웃소싱, 모방 또는 역외 제조를 진행한다. 자주 지적재산권이 없고 핵심 경쟁력이 없는 것은 제외된다.

제12조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호 표준 중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만화제품의 판매 연 소득이 100 만 위안(간행물 300 만 위안) 이상 또는 연간 판매량이 10 만 권(신문 1000 만부, 간행물 100 만 권) 이상, 애니메이션 상품의 판매 연 소득이 1000 만 위안 이상, 온라인 만화·애니메이션(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포함) 상품의 판매 연 소득이 100 만 위안 이상, 만화·애니메이션 무대극(프로그램) 공연 연 소득이 100 만 위안 이상 또는 연 공연 횟수가 50 회 이상인 경우
- (2)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저작권 수출 연 소득이 10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국제, 국가급 특별상을 수상한 경우
- (4) 성급 인증기관, 전국적 만화·애니메이션업계협회, 국가만화·애니메이션산업기지 등의 추천을 받은 사상 내용, 예술 스타일, 기술 응용, 시장 마케팅, 사회영향 등 분야에서 모범적 의의가 있는 만화·애니메이션상품

제13조 본 방법 제10조 표준에 부합되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전에 1편 이상의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을 개발생산하고 다음 각호 표준 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등록 자본금이 1000 만 위안 이상일 경우
- (2)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연간 영업수입이 500 만 위안 이상, 연속 2년 적자가 아닌 경우
- (3)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저작권 수출과 대외무역 연간 소득이 200 만 위안 이상, 그리고 자주 지적재산권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수출 소득이 총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4) 성급 인증기관, 전국적 만화·애니메이션업계협회, 국가만화·애니메이션산업기지 등의 추천을 받은 자금, 인력 규모, 예술 창의, 기술 응용, 시장 마케팅, 브랜드 가치, 사회영향 등 분야에서 모범적 의의가 있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제4장 인증절차

제14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자아 평가 및 신청

기업이 인증표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성급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2)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1.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신청서
 - 2. 기업 영업허가증 부분 복사본, 세무등기증 복사본
 - 3.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 서류
 - 4. 기업의 임직원 수, 학력 구조 및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의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설명
 - 5. 영업장소 재산권 증명 또는 임대 의향서(임대인의 재산권 증명 포함)
 - 6. 개발, 생산, 창작, 취급하는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리스트, 판매 계약서 및 판매 계약서 약정 금액의 은행 입금 증명서류
 - 7. 자주 개발, 생산과 자주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상황 설명 및 관련 증명 서류(저작권 등기증서 또는 특허 증서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증서의 복사본)
 - 8. 유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업무 종사와 연관된 행정 허가증서 복사본
 - 9. 자질이 있는 중개업체의 감정을 거친 기업재무연도 보고서(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리스트 포함) 등 기업의 경영상황 및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용 상황 리스트,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설명 자료 첨부
 - 10. 인증기관이 발급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 (3) 서류 심사, 인증과 발표

성급 인증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해 1차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1차 심사에 통과된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신청서류를 관공실에 제출한다.

문화부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본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서 통과할 경우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인증에 통과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명단을 공동 발표한다.

성급 인증기관은 인증에 통과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명단에 따라 기업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를 발급하고 동 업체를 해당 연도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리스트에 첨부한다. 그리고 본 방법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리스트 중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속성 분류 및 자주 개발 생산에 속하는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여부 등 상황에 대해 표시를 한다.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지사를 설립할 경우 기업 법인 등록지에서 신청한다.

제15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를 취득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이 본 방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할 경우 관공실에 중점 만화·애니메이션상품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인증 신청서
 2. 기업의 영업집조 부분 복사본, 세무등기증 복사본,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 복사본
 3. 본 방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되는 관련 증명서류: 자질이 있는 중개업체의 감정을 거친 기업재무연도보고서(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리스트 포함) 등 기업 경영상황, 그리고 각 항목의 상품 판매수입 상황 설명을 첨부. 수상 경력 증명 복사본 또는 저작권 수출무역 계약서 복사본 등 저작권 수출소득 증명서, 유관기관의 추천 증명
 4. 인증기관이 발급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관공실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본 방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표준에 부합할 경우 관공실에서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문서’를 발급한다.

제16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를 이미 취득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본 방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할 경우 관공실에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 신청서
 2. 기업의 영업집조 부분 복사본, 세무등기증 복사본,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 복사본,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문서’ 복사본
 3. 본 방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서류: 자질이 있는 중개업체의 감정을 거친 기업의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자산부채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리스트 포함) 등 기업의 경영상황 또는 저작권 수출무역 계약서 복사본 등 저작권 수출소득 증명, 유관기관의 추천 증명
 4. 인증기관이 발급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관공실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본 방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표준에 부합할 경우 문화부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인증에 통과한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명단을 공동 발표하고 판공실에서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인증은 연간 감사제도를 시행한다. 각급 인증기관은 본 방법 제10조, 제13조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이미 인증에 통과하여 증서를 발급 받은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해 연간 감사를 진행한다. 연간 인증에서 합격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서와 연간 자주 개발생산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리스트에 연간 감사 전용도장을 찍어준다.

연간 감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간 인증에서 불합격한 기업은 그의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자격이 기한 만료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성급 인증기관은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한 연간 감사 상황, 연간 인증 합격 및 불합격 기업 명단을 판공실에 제출하여 등록하고 판공실에서 발표한다.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판공실 연간 감사에 통과한 후 더 이상 성급 인증기관의 연간 감사를 받지 않는다.

제18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연간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발표 후 근무일 20일 내에 판공실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을 한 기업은 재심 신청서 및 유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판공실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재심 심청에 대해 조사 및 검증하고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재심 결정을 내리며 성급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제19조 인증을 받은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경영활동에 변화(예를 들어 명칭 변경, 조정, 분류, 합병, 재편 등)가 생길 경우 근무일 15일 내에 원래의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변경수속을 하고 변화 후 본 방법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성급 인증기관은 판공실에 심사 신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그의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를 취소하고 자격을 중지시킨다. 본 방법에서 규정한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판공실에서 직접 그의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증서’를 취소하고 자격을 중지시킨다.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개명할 경우 기존의 인증기관은 동 기업을 위해 변경수속을 처리한 후 증서를 다시 확인 발급하며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제20조 인증을 받은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해당 연도의 유효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증서’,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증서’ 및 당해 연도에서 자주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리스트,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문서’를 근거로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통지》에서 규정한 관련 세수 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제21조 중점 만화·애니메이션 상품, 중점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국가 및 지방의 각종 재정자금, 신용 대출 등 분야의 지원정책을 우선 누린다.

제5장 벌칙

제22조 인증 신청과 이미 인정을 받은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이 다음 각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고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동 기업의 인증 신청 수리를 중단하거나 또는 증서(문서)를 취소하면 동 기업의 자격을 중지하고 이를 발표한다.

- (1) 인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2) 탈세, 조세 포탈, 납세 거부 등 세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 (3) 불법 내용 존재 또는 해적판 권리 침해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제작, 생산, 판매, 전파에 종사했거나 또는 라이선싱 허가를 받지 않은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을 사용한 경우
 - (4) 기타 불법 경영행위가 있고 유관 부처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증서가 취소된 기업은 인증기관에서 3년 내에 동 기업의 인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23조 증서가 취소당하고 연간 인증에서 불합격한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에 대해서는 그가 《통지》에서 규정한 각종 재정 및 세금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을 동시에 중단시킨다.

제24조 만화·애니메이션 기업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인원은 담당하는 인증업무에 대한 신의성실 및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인증 신청한 기업의 유관 자료 정보에 대해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만화·애니메이션 기업 인증업무의 관련 요구와 기율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판공실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제6장 부칙

제26조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증서’, ‘중점만화·애니메이션상품 문서’, ‘중점만화·애니메이션기업 증서’ 등 증서, 문서는 판공실에서 일괄적으로 감독 제작한다.

제27조 본 방법에 따라 인정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및 그가 자주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이 누리는 재정 및 세금 우대정책의 구체적 범위, 구체적 내용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제28조 본 방법에서 숫자와 관련된 규정을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모두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

제29조 본 방법은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해석을 담당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부판공청

2008년 12월 26일

8.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제목	电视剧内容管理规定
게재일	2010-05-14
출처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3월 26일 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금 공표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광전총국 국장 왕타이화(王太華)

2010년 5월 14일

(중국 방송정책 10번, 50페이지 내용 참조)

9.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제목	动漫企业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免征进口税收的暂行规定
제재일	2016-08-01
출처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재관세[2016]36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계획단열시(중양 직속 중점 개발 도시) 재정부(국), 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⁷⁶⁾ 재무국, 세관총서 광둥(廣東)분서, 직속 세관: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수입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용품 세수 정책을 계속 실행한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허가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서 만화·애니메이션 직접 제품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입해야 할 상품에 대해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2.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문화부와 함께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이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动漫企业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免征进口税收的暂行规定)>(별첨 참조)을 공표한다.

각 업체는 이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1일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수입 시 세수면제 잠정규정

1. 국무원에서 승인한 만화·애니메이션 기업의 수입 세수 정책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수립한다.
2. 이 규정에서 언급한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허가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76)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 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 (1) 문화부 등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허가 기본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 (2) 만화·애니메이션 직접 제품을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 이 규정에서 언급한 만화·애니메이션 직접 제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1) 만화: 1컷 만화와 장편만화, 삽화, 만화 도서, 애니메이션 캡처 도서, 만화 간행물, 만화 원고 등
 - (2)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TV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음반 및 영상물 제품, 영화 드라마 특수효과에서의 애니메이션 장면, 과학기술/군사/날씨/의료 등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에서의 애니메이션 장면 등
 - (3) 온라인 만화·애니메이션(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포함): 컴퓨터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등 정보 네트워크를 주요 송출 플랫폼으로 하고, 컴퓨터, 휴대폰과 다양한 휴대용 전자 장비를 수신 단말기로 한 애니메이션, 만화 작품 등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온라인 이모티콘, 모바일 만화·애니메이션 등이 포함된다.
4. 이 규정의 제2항 표준을 충족하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매년 9월 말 전에 문화부에 신청하고 문화부에서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수입 면세 자격을 심의한다. 심의에 합격되면 문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연합하여 매년 11월 말에 차기 연도 수입 세수 우대정책을 받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5. 수입 면세 자격을 갖춘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해 문화부에서 연도별로 갱신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문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차기 연도 수입 세수 우대정책을 받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리스트를 발표하는 한편 연도별 갱신 심사에 통과된 회사 리스트와 미통과 회사 리스트를 발표한다. 연도별 갱신에서 통과되지 못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경우, 차기 연도부터 수입 세수 정책을 적용받는 자격이 취소된다.
-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 자격을 취득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 대해, 문화부에서 사실을 조사한 후, 관련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수입 면세 자격을 취소한다. 문화부에서는 관련 상황을 제때에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통지한다. 관련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은 즉각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수입 세수 정책으로 면제받은 수입 관련 상품의 관련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6. 수입 세금 면제 자격을 취득한 만화·애니메이션기업에서 <만화·애니메이션기업 수입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세금 면제 리스트>(별첨) 범위의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 관세와 수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 리스트는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중국 국내 부대 산업의 발전상황과 만화·애니메이션기업의 실제 수요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절한다. 세관에서 수입상품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의할 때, <만화·애니메이션 기업 수입 애니메이션 개발 생산 용품 세금 면제 리스트>에서 규정한 상품 명칭과 기술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무원에서 규정한 면세 불가의 수입상품 20종은 위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7. 문화부는 매년 3월 말에 전년 실제 수입된 상품, 수량, 면세금액과 적용된 사업을 통합하여 재정부에 알리고 세관총서와 국가 세무총국에 전달한다.

8. 만화·애니메이션 직접 제품의 자발적인 개발과 생산에 이용되는 상품을 면세하여 수입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저당, 질권 설정,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와 세관의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정책적인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수입 세수 우대 정책을 적용받는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리스트의 경우, 문화부에서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별도로 발표한다.
10.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이다.
11. 이 규정은 재정부에서 세관총서, 국가 세무총국과 함께 해석한다.

별첨: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만화·애니메이션 개발·생산용품 수입 시 세금면제 리스트

별첨: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만화·애니메이션 개발 생산용품 수입시 세금 면제 리스트

번호	제품 유형	HS code	유형	제품명	기술 규격 설명		
					기능 용도	주요 규격	제품 설명
TF001	2D 컴퓨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와 장비	85234020	소프트웨어	2D 컴퓨터 애니메이션 이미지 구축, 애니메이션 입모양 동기화, 특수효과 제작 등 전 과정 지원 소프트웨어		동작모드: 도트 매트릭스, 벡터 지원 해상도>=1080 입모양 자동 매치	디스크
		84715040	SW/HW 일체형	디지털 기기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림판과 비슷한 디지털 입력 도구를 제공, 다양한 전통적인 그림붓, 브러시와 마크펜의 필촉 표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가능, 21.3인치 이상의 화면에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조작 가능	화소수>=1600×1200 해상도>=0.005밀리미터/포인트 필압감 등급>=2048급	디지털 인터랙션 제작 화면 및 디지털 그림펜
TF002	스톱 모션 창작 소프트웨어	85234020	소프트웨어	스톱 모션 창작 소프트웨어	스톱 모션 제작 전 과정 지원 소프트웨어	매초 30 컷의 속도로 애니메이션 영화 미리보기 영상 입력 네온 광고물 기능 지원(이미 캡처한 그림과 비교) Rig Removal 툴을 이용하여 촬영시에 이용한 컴포넌트 삭제	디스크
TF003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85234020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컴퓨터 3D 도형의 모델링 창작, 표현과 수정:3D 도형 애니메이션의 제작	컴퓨터 운동 제어를 자유롭게 작성 설정, 저장, 출력, 도입, 멀티플렉스 3D 모델링 지원, 애니메이션, 시각적 디자인, 특수효과, 렌더링 등 기능 지원 시뮬레이션 옷감과 모발 형태의 도구 제공	디스크
TF004	렌즈 웨적 모션 제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85234020 84289090 84714920 84714940	SW/HW 일체형	모션 촬영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정밀 기계와 전자 장치, 설치한 카메라의 모션 제적에 대해 정밀하게 제어하고 기록	렌즈 회전 속도 1초 90도 이상 시스템 이동 속도 > 2미터/초 모션 오차 <0.01밀리미터 유효한 부하 30kg 이상	홀더 기계 제어 압 회전 제어 몸체 촬영 장비와 설치대 정확한 궤도
TF005	필름 스캔 장비	84716050	하드웨어	필름 디지털화 기기	애니메이션 사전 제작의 필름 입력, 영화 필름을 디지털 화면으로 전환	35밀리미터 4홀 필름 스캔 해상도 4K 이상 디지털 색심도 12bit 이상 2K 전송율 4컷/초 이상	콘솔 필름 디지털화 기기 및 시스템 제어기
TF006	3D 스캔 장비	90314990	하드웨어	3D 레이저 스캐너	물체 공간 외형과 구조 디지털화 정보를 취득하여, 애니메이션의 가상 캐릭터와 장면 설계, 제작	판독 시간<20초 ; 스캐너 텍스터 매핑 해상도:1280×1024 ; 1초당 3만개 이상 데이터 처리	레이저 스캐너 메인 제어 장비 스캔
		90314990	하드웨어	3D 광학 스캐너		정밀도:1프레임 <=0.15mm 멀티 프레임<=0.05mm 해상도:1프레임>=200'000 points 전송률>=30km/h 캡처 시간< 1s	광학 스캐너 메인 제어 장비 스캔
TF007	모션 캡처 장비	90314990	하드웨어	광학 모션 캡처 시스템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용, 연기자의 바디 모션 혹은 얼굴 표정을 디지털화로 수집	캡처 정확도 오차<0.001밀리미터 ; 수집 속도>120회/초 해상도 400만 화소 이상 멀티 셀, 멀티 카메라의 3D 모션 데이터 수집 지원	높은 해상도, 고속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 장갑 화면 데이터 허브 전용 수집 복장
		90314990	하드웨어	관성 모션 캡처 시스템		노드수 > 10개 전송범위(옥외) > 100미터 전송범위(실내 장애물 없음) > 50미터 센서 해상도 < 0.1도 실제 해상도 < 2도	기계식 센서 그룹웨어 화면 데이터 허브
TF008	클러스터 렌더링 소프트웨어와 관리 시스템	85234020	소프트웨어	3D 렌더링 소프트웨어	컴퓨터 3D 도형 전문 렌더링 소프트웨어	국부적 광선 추적 지원 전역 조명 지원 HDRI 지원 심영 효과 지원, 영화에서 생동한 모발 모션과 그림자 모션 표현	디스크
		85234020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3D 화면을 클러스터 렌더링에	렌더링 노드와 관리 노드 허가 포함	디스크

			트웨어	터 렌더링 관리 시스템	기타 기기로 전달하여 처리, 네트워크 렌더링, 온라인 렌더링 결과 조회, 멀티 유저 관리, 빌딩 관리, 배치 관리 등 기능 제공	멀티 노드 릴리즈 렌더링 지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전송 렌더링 지원:3DsMax, Maya, Nuke, Skakeemd	
TF009	디지털 특수효과 합성, 후반 검색과 디밍 소프트웨어와 장비	85234020	소프트웨어	시각 특수효과 설계와 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통해 영상 혹은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고 이미지 처리, 원 영상과 이미지 소재를 계산하여 새로운 영상과 이미지 생성, 애니메이션에서 입체적 가상의 특수효과 구현, 애니메이션 소재 합성, 2D 애니메이션 특수 효과, 3D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창작과 제작 포함	생동한 3D 합성 환경 제공 대다수 일반 이미지 파일 지원 4트랙 이상 이미지 지원 부동 포맷의 이미지 합성 지원	디스크
		85234020 84714120 84714140 84714920 84714940	SW/HW 일체형	시각 특수효과 설계, 합성, 후반 검색과 디밍 SW/HW 일체형 시스템		2K 이상, 코딩하고 압축하지 않은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재생, 제작 출력 지원 색감도 10Bit 이상 입출력 포맷 고해상도 10Bit 이상 내장 색채 시정 관리 시스템 포함	초고성능 워크스테이션 호스트 전용 제어판 고급 디스플레이 장비 외장 고급 특수 저장 장치 고성능 특수 화면 처리 카드
TF010	디지털 편집 소프트웨어 및 장비	85234020	소프트웨어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	현대 애니메이션 영상의 편집 작업은 컴퓨터로 디지털화 제작. 비선형 편집의 경우, 업로드를 한번만 하면 여러 회 편집, 신호 품질은 변하지 않음, 장비, 인력 절약, 효율 향상. 비선형 편집은 전문 편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고, 대다수 애니메이션 제작기관은 이 시스템 채택	대다수의 통합, 편집, 오디오, 미술, 문자 제작, 도형 설계와 시각 특수 효과 창조 도구 대다수의 주요 미디어 포맷 지원, 고해상도 1920x1080 이상의 편집 가능	디스크
		85234020 84714120 84714140 84714920 84714940	SW/HW 일체형	비선형 편집 SW/HW 일체형 시스템		고해상도의 모든 포맷 파일 편집 지원 edl와 cutlist파일 지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호스트 디스플레이 장비 고성능 이미지 처리 카드
TF011	필름 기록 장비	84716060	하드웨어	필름 기록 장비	애니메이션 후반 제작의 필름 출력,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 혹은 영상 시퀀스를 필름에 노출	해상도:35밀리미터 필름에 2K, 4K 혹은 더 높은 해상도 기록 가능 기록 전송률: 2K 해상도의 전송률 최소 2초/컷 ; 4K해상도의 전송률 최소 6초/컷 가능한 필름 유형: 최소 인터미디어트(Intermediate)와 원판 포함 밀도 범위:인터미디어트에 2.046개의 밀도값 기록 가능	콘솔 기록기기 호스트
TF012	이미지 영상 전환, 출력 장비	84714120 84714140 84718000	하드웨어	이미지 영상 전환, 출력 장비	기록 장비를 통해 디지털 영상 신호 기록, 수집 장비를 통해 디지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영상 문서 혹은 이미지 파일로 전환, 출력 장비를 통해 디지털 영상 파일 혹은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 영상 신호로 전환	이미지 기록 비트율 440MB 이상 8 트랙 이상의 미압축 오디오 동시 기록 가능 미압축 DPX 포맷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 기록 가능, SDI 포트를 이용하여 이미지 출력 가능	디지털 영상, 문서 컨버터 초고 비트율 디지털 VTR
TF013	오디오 후반 처리 장비와 소프트웨어	85234020	소프트웨어	오디오 후반 처리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오디오 처리 및 가공	동시 처리 가능 오디오 트랙 수 > 128개 최대 1024 트랙 오디오 동시 재생 혼합 지원	디스크
		85234020 85437099	SW/HW 일체형	디지털 오디오 믹서		동시 처리 가능 오디오 트랙 수 > 128개 최대 1024 트랙 오디오 동시 재생 혼합 지원 오디오 전체 믹서 모듈은 자동화 메모리 기능 갖춘, 타이밍에 따라 개인과 페이지 위치를 기억 가능, 모든 조작을 무한 복구 가능	워크스테이션 디지털 오디오 믹서

10.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延续动漫产业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8〕38号)
제재일	2018-04-19
출처	재정부, 세무총국
분류	중국 애니메이션 관리 정책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2018〕3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⁷⁷⁾ 재정국:

중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독자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에 대해 17%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부가가치세의 실제 조세 부담이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즉시 환급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2.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화·애니메이션기업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가 독자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에 대해 16%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부가가치세의 실제 조세 부담이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즉시 환급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3.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은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4.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 상품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1] 100호) 중의 소프트웨어 상품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만화·애니메이션 기업과 독자 개발, 생산한 만화·애니메이션 상품의 인정 표준과 인정절차는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만화·애니메이션 기업 인정 관리방법(시행)’ 배부에 관한 통지>(문시발[2008] 51호)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만화·애니메이션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3] 98호)는 만기되어 이행을 중지한다.

77)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 출판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2001.08.02	2001.08.02	국무원	인쇄업 관리조례	외자가 중외 합작, 합자 형식으로 인쇄 영역에의 진입 허용
2	2002.01.29	2002.01.29	신문출판총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외자는 독자, 혹은 합자, 합작의 형식으로 중국 시장 진입 가능
3	2004.06.17	2004.08.01	신문출판총서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음반·영상 제품출판사의 설립과 관리 및 복제 등에 대한 규정
4	2008.02.21	2008.05.01	신문출판총서	도서출판 관리규정	출판사의 설립, 출판, 감독관리 등에 관한 규정
5	2008.02.21	2008.04.15	신문출판총서	음반·영상물 제작관리규정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 또는 외국의 기관 및 개인과 함께 음반·영상물을 합작 제작할 수 있음
6	2008.03.17	2008.04.15	신문출판총서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전자출판물출판사는 중국정부의 진입 정책에 의해 외국인 진입 불가능
7	2008.11.12	2009.01.01	신문출판총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홍콩, 마카오의 업체가 중국에서 포장 장식 인쇄품의 인쇄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저 등록 자본 요구 사항은 중국기업과 비교 대조하여 실행
8	2009.01.07	2009.01.07	신문출판총서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출판물 번호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등 현상을 제거하고 출판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9	2010.11.23	2011.01.01	신문출판총서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홍콩, 마카오 기업은 중국에서 음반·영상 제품의 제작업무에 종사 가능
10	2011.03.17	2011.03.25	신문출판총서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출판물 발행 관련 기본 규정. 외자는 독자, 혹은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출판물 발행시장에 진입 가능
11	2011.03.16	2011.03.19	국무원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음반·영상물의 수입은 국무원 출판행정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음반·영상 제품 수입업체만이 취급할 수 있음
12	2011.03.16	2011.03.19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중국 내 모든 출판업무에서의 기본 근거로 되는 조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출판물경영허가증 취득 필요 등 일부 내용 추가 혹은 수정
13	2011.03.17	2011.03.25	신문출판총서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외국 출판물 수입에서의 주요 법규
14	2011.03.17	2011.04.06	신문출판총서, 국가세관총서	음반·영상 제품 수입 관리방법	음반·영상 제품의 내용 심사 강화
15	2011.12.28	2012.01.01	신문출판총서	《중국표준녹음제품 코드》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 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방법》 발행 관련 통지	저작권 보호와 관련 산업표준의 국제화 추진 / 음반·영상에는 음반·영상제품 전용 출판물번호 사용, 전자출판물에는 전자출판물 전용 출판물번호 사용
16	2012.11.21	2012.11.21	신문출판총서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계열 국가표준실시에 관한 통지	전통출판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디지털출판과의 연계성 강화
17	2012.12.11	2012.12.11	신문출판총서	1.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전자출판물 제작회사가 국외업체의 위탁을 받아 전자출판물을 제작하는데 관한 심사권을 신문출판총서로부터 성급 신문출판국에 이양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8	2012.12.12	2013.01.01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장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홍콩, 마카오 사업자의 자본 소유비율이 70% 이내에서 중국에서 출판물 및 기타 인쇄업종 종사 허용
19	2013.12.27	2014.02.0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신문출판 분야에서 기초로 되고 일반화되는 방법, 제품, 기술, 관리 등 각종 표준으로 규범화된 생산과 관리를 진행
20	2014.04.18	2014.06.0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인터넷 게임 및 전자게임 출판물 신고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지	외국인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임작품과 전자게임 출판물의 출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신청자료 내용 포함
21	2016.01.24	2016.03.0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허가증의 제작 및 발부, 사용과 변경, 관리, 법률적인 책임 등 규정
22	2016.02.04	2016.03.10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의 업체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무 종사 불가
23	2016.05.31	2016.06.0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상무부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중국 출판물 시장 관리 법규
24	2016.11.04	2016.11.04	국가판권국판 공정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판권 심사, 작품 무단전파 방지
25	2017.01.22	2017.03.0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중국 해관총서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출판물 수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규
26	2017.06.14	2017.07.0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사회이익에 대한 정의, 평가 내용, 평가 프로세스, 평가 결과의 사용 등을 규정
27	2020.06.05	2020.06.05	국가신문출판 서	인터넷문학 출판관리 강화 관련 통지	콘텐츠 심의제도 수립 / 평가심사 진행 등 인터넷문학 출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발표
28	2020.06.11	2020.06.11	국가판권국	사진저작물 판권 질서 규범 관련 통지	사진 작품 저작권자의 법적 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 통지
29	2020.12.14	2021.07.01	국가신문출판 서	출판물 감정관리방법	출판물 감정 샘플의 불법 출판물 혹은 금지 위반 출판물 여부에 대해 분석, 심사, 감별을 진행하고 감정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에 대한 규정
30	2023.07.06		국가신문출판 서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 개선에 관한 통지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의 개선을 위해 정기간행물 출판권 양도 금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원고의뢰 및 투고 위탁 금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 취재편집과 경영 분리 등 총 8가지 내용이 포함됨

■ 출판

1. 인쇄업 관리조례

제목	印刷业管理条例(第315号)
제재일	2001-08-02, 2016-02-06, 2017-03-01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출판정책

인쇄업 관리조례

(2001년 7월 26일 국무원 제43회 상무회의 통과, 2001년 8월 2일부터 시행, 2016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령 제666호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령 제676호 《일부 행정법규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례는 인쇄업 관리를 강화하고, 인쇄업 경영자의 합법적 권리와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본 조례는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과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출판물에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지도, 세화, 그림, 달력, 그림책 및 음반·영상 제품, 전자출판물의 장정표지 등이 포함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포장 장식 인쇄물에는 상표표지, 광고 홍보물 및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의 인쇄물이 포함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타 인쇄물에는 문서, 자료, 도표, 구매권, 증명서, 명함 등이 포함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쇄경영활동에는 경영성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복사, 영인, 프린트 등 활동이 포함된다.

제3조 인쇄업 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 효과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금지 인쇄에는 반동적이고 음란하고 미신적인 내용과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인쇄를 금지하는 기타 내용의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과 기타 인쇄물이 포함된다.

제4조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에서 전국의 인쇄업을 주관하여 감독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의 출판관리를 책임지는 행정부서(이하 ‘출판행정부서’로 약칭)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의 인쇄업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각급 정부의公安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인쇄업을 감독 관리한다.

제5조 인쇄업 경영자는 인쇄검증제도, 인쇄등록제도, 인쇄물보관제도, 인쇄물교부제도, 인쇄활동불량품소각제도 등을 수립 및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인쇄업 경영자는 인쇄경영활동 중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公安부서 또는 출판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인쇄업종의 사회단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부서의 지도하에 자율적 관리를 실행한다.

제2장 인쇄기업의 설립

제7조 인쇄기업은 정기적으로 출판행정부서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판행정부서는 법에 의거해 연간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즉각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8조 정부는 인쇄경영허가제도를 실행한다.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인쇄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업체나 개인 모두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9조 기업이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기업의 상호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3)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생산경영장소와 필요한 자금, 설비 등 생산경영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직기구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
 -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인쇄경영활동 승인 신청에 있어서 상기 조항 규정을 따르는 이외에도 국가 관련 인쇄업체의 전체 수량, 구조 및 분포의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인쇄경영허가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인쇄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기업이 포장 장식 인쇄물 및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려고 신청하려면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의 시급 정부 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을 경우, 인쇄경영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개인은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개인이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출판행정부서는 본 조례 제10조에서 신청한 당일부터 6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의 결

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을 승인할 경우, 인쇄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을 기각 할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쇄경영허가증에는 인쇄기업이 종사하는 인쇄경영활동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인쇄경영허가증을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인쇄업 경영자가 겸업 또는 변경 신청하여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인쇄업 경영자를 합병하거나 또는 합병 및 분립으로 인해 새로운 인쇄업 경영자를 설립할 경우,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쇄업 경영자가 명칭, 법정 대표자 또는 담당자, 주소 또는 경영장소 등 주요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인쇄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기존에 설립 승인을 받았던 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출판행정부서는 정부의 사회신용정보플랫폼 구축의 전체적 요구사항에 따라公安부서, 公商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인쇄기업 정보에 대한 네트워킹 공유를 구현해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중외 합자 경영의 인쇄기업 및 중외 합작 경영의 인쇄기업의 설립을 유히하며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기기업의 설립을 유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함께 제정한다.

제15조 회사 내부에 인쇄공장(인쇄소)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회사 내부에 설립한 인쇄공장(인쇄소)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 된 인쇄물을 인쇄할 경우, 비밀업무부서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 내부에 설립한 인쇄공장(인쇄소)는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해선 안되며,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인쇄

제16조 정부는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국내외 신규 우수 문화성과의 출판물을 시기적절하게 인쇄하고, 전통문화 우수작품 및 가치 있는 학술저서의 인쇄를 중요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출판 금지하는 출판물 및 출판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출판하는 출판물을 인쇄해선 안 된다.

제18조 출판물을 인쇄하는 위탁 인쇄 업체 및 인쇄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19조 인쇄업체가 출판업체로부터 도서, 간행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출판업체

가 날인한 인쇄위탁서를 확인 및 간수해야 하며, 인쇄 전에 출판업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인쇄업체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밖의 출판업체로부터 도서, 간행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인쇄위탁서는 반드시 사전에 별도로 인쇄업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인쇄위탁서는 국무원 출판행정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을 규정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인쇄업체가 출판업체로부터 신문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출판업체로부터 신문, 간행물의 증면 및 증간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주관하는 출판행정부서에서 증면 및 증간의 출판을 승인한 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20조 인쇄업체가 내부자료 성격의 출판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현금 이상 지방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 발급한 인쇄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인쇄업체가 종교적 내용의 내부자료 성격의 출판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사무관리부서의 승인문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 발급한 인쇄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출판행정부서는 내부자료 성격의 출판물 또는 종교적 내용의 내부자료 성격의 출판물의 인쇄 신청을 접수 받은 당일부터 30일 안에 인쇄면허증의 심사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인쇄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인쇄업체가 해외 출판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관련 저작권의 합법적 증명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인쇄한 해외 출판물은 반드시 전부 해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거나 배포되어선 안 된다.

제22조 위탁 인쇄업체는 반드시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인쇄한 출판물에 출판업체의 명칭, 주소, 도서번호, 간행물 번호 또는 출판번호, 출판일자 또는 간행물 기수, 그리고 출판물 인쇄 위탁을 받은 업체의 명칭과 주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인쇄업체는 출판물을 완성한 인쇄당일부터 2년 안에 위탁 인쇄의 출판물 샘플 1부를 보존 비치해야 한다.

제23조 인쇄업체는 출판물을 불법복제판으로 인쇄해서는 안 되며, 위탁 인쇄를 받은 출판물을 판매, 무단으로 추가 인쇄 또는 제3자의 위탁으로 추가 인쇄를 해서는 안 되며, 위탁 인쇄를 받은 출판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 등을 기타 업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인쇄업체는 출판물을 주문, 판매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명의를 가장 또는 도용하여 출판물을 인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

제25조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에 종사하는 기업은 가짜, 위조된 등록상표표지를 인쇄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 홍보물과 제품의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인쇄물을 인쇄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인쇄업체가 등록상표표지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상표등록자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서명 날인한 《상표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위탁인이 제공한 등록상표견본을 대조 검사해야 하며, 등록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위탁을 받아 등록상표표지를 인쇄 할 경우, 인쇄업체는 등록상표 사용허가 계약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쇄업체는 해당 확인 및 대조 검사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서명날인을 받은 《상표등록증》 사본, 등록상표견본, 등록상표 사용허가 계약서 사본을 2년동안 검사 확인용으로 보존해야 한다.
등록상표표지의 인쇄에 대한 국가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인쇄업체는 해당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인쇄업체가 광고 홍보물,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인쇄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위탁 인쇄 업체의 영업허가증 또는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광고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광고 홍보물을 인쇄 할 경우, 광고 경영자의 자격 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28조 인쇄업체가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인쇄물의 완제품, 반제품, 불량품과 인쇄판, 지형, 필름, 원고 등을 위탁 인쇄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교부해야 하며 무단으로 보존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인쇄업체가 해외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쇄한 포장 장식 인쇄물은 반드시 전부 해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판매되어선 안 된다.

제5장 기타 인쇄물의 인쇄

제30조 국가기밀 등급의 표시가 있는 문서, 자료, 도표 등을 인쇄 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1조 게시문, 공고문, 중대 행사 스탬프,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 사용되는 구매권을 인쇄할 경우, 위탁 인쇄업체는 반드시 인쇄업체에 주관부서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인쇄업체는 반드시 주관부서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주관부서의 증명서 등본을 검사 확인용으로 2년 보존해야 하며 상기 인쇄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위탁하여 인쇄해서는 안 된다.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 사업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유가 구매권 또는 무가 구매권을 인쇄하거나 또는 기관명칭을 포함한 소개장, 스탬프, 회원증, 출입증, 학위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학업증명서 등 전용 증명서를 인쇄 할 경우, 위탁인쇄업체는 반드시

시 위탁인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인쇄업체는 위탁인쇄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쇄업체는 앞서 두 가지 인쇄물에 대해 견본 또는 견본쇄를 보존해서는 안 된다. 업무 참고용으로 견본 또는 견본쇄를 보존해야 할 경우, 위탁인쇄업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보존하는 인쇄물에 ‘견본’ 또는 ‘견본쇄’ 도장을 날인한 후 보관해야 하며 분실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인쇄업체가 종교적 용품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종교사무관리부서의 승인문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 발급한 인쇄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는 종교적 용품의 인쇄 신청을 접수 받은 당일부터 10일 안에 인쇄면허증의 심사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인쇄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국가기밀 등급의 표시가 있는 문서, 자료, 도표 등을 인쇄 할 수 없고, 계시문, 공고문, 중대 행사 스템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 사용되는 구매권을 인쇄 할 수 없으며, 기관, 단체, 군부대, 기업 사업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유가 구매권 또는 무가 구매권과 기관명칭을 포함한 소개장, 스템증, 회원증, 출입증, 학위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학업증명서 등 전용 증명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종교적 용품을 인쇄할 수 없다.

제34조 해외 기타 인쇄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쇄한 기타 인쇄물은 반드시 전부 해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제35조 인쇄업체와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타인의 기타인쇄물을 불법 인쇄해서는 안되고, 위탁인쇄한 기타 인쇄물을 판매, 무단으로 추가 인쇄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추가 인쇄할 수 없으며, 위탁 인쇄한 기타 인쇄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 등을 기타 업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벌칙

제3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인쇄기업을 무단 설립했거나 또는 인쇄경영활동에 무단 종사했을 경우, 출판행정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정 직권에 의거 해당 사항을 단속하고, 인쇄물과 불법소득 및 불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압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업체 내부에 설립한 인쇄공장(인쇄소)에 대해 본 조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인쇄업 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는 불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며 인쇄물과 불법소득을 압수한다.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출판행정부서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을 무단으로 겸업하거나 또는 변경하여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인쇄업 경영자를 무단으로 합병 할 경우
- (2) 합병, 분립으로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인쇄업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속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3) 인쇄경영허가증을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 했을 경우

제38조 인쇄업 경영자가 본 조례 제3조 규정에서 금지하는 인쇄내용을 포함한 출판물, 포장 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을 인쇄하거나,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출판 금지하는 출판물 또는 출판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출판한 출판물을 인쇄 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公安부서는 법정 직권에 의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며 인쇄물과 불법소득을 압수한다.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인쇄업 경영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 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公安부서는 법정 직권에 의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인쇄검증제도, 인쇄등록제도, 인쇄물보관제도, 인쇄물교부제도, 인쇄활동불량품소각제도 등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 (2) 인쇄경영활동 과정에서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公安부서 또는 출판행정부서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3)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주소 또는 경영 장소 등 주요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인쇄경영활동을 종료 시, 원 설립 허가 기관인 출판행정부서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참고용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 내부에 인쇄공장(인쇄소)를 설립 할 때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재지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 비밀업무부서에 등록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 비밀업무부서는 법정 직권에 의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린다.

제40조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원 증서 발부 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타인의 위탁 인쇄 출판물을 접수 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쇄위탁서, 관련 증명서 또는 인쇄허가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쇄위탁서를 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2) 타인의 명의를 가장 또는 도용하여 출판물을 인쇄할 경우
- (3) 타인의 출판물을 불법인할 경우
- (4) 인쇄 위탁을 받은 출판물을 불법으로 추가 인쇄하거나 또는 판매 할 경우
- (5) 출판물을 주문 또는 판매할 경우
- (6) 출판업체에서 인쇄를 위탁한 출판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 등을 무단으로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 (7)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출판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거나 또는 인쇄한 해외 출판물을 해외로 전부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41조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위탁을 받아 등록상표표지 인쇄 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서명 날인한 《상표등록증》 사본, 등록상표견본 또는 등록상표 사용허가계약서 사본을 확인 및 대조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 (2) 위탁을 받아 광고 홍보물 및 제품 포장 장식으로 사용되는 인쇄물 인쇄 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인쇄 업체의 영업허가증 또는 개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광고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광고 홍보물 인쇄 시, 광고경영자격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 (3) 타인의 포장 장식 인쇄물을 불법 인쇄할 경우
- (4) 위탁을 받아 해외 포장 장식 인쇄물 인쇄 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쇄한 해외 포장 장식 인쇄물을 전부 해외로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쇄업체가 등록상표표지, 광고 홍보물의 인쇄 위탁을 받았을 시, 국가 관련 등록상표, 광고 인쇄 관리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인쇄물과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 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인쇄물과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위탁을 받아 기타 인쇄물을 인쇄 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 (2) 위탁을 받아 인쇄하는 기타 인쇄물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재위탁하여 인쇄 할 경우
- (3) 위탁을 받아 인쇄하는 기타 인쇄물의 지형 및 인쇄 필름을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 할 경우
- (4) 학위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국가기관 공문서 및 증명서 또는 기업 사업 기관, 인민단체의 공문서 및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거나 타인의 기타 인쇄물을 불법 인쇄했을 경우
- (5) 위탁 받아 인쇄하는 기타 인쇄물을 불법으로 추가 인쇄하거나 또는 판매 할 경우
- (6) 위탁을 받아 해외 기타 인쇄물 인쇄 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인쇄한 해외 기타 인쇄물 전부 해외로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 (7)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범위를 벗어나 경영할 경우

제43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인쇄물과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인쇄경영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게시문, 공고문, 중대 행사 스텝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 사용되는 구매권을 인쇄 시, 인쇄업체가 주무부처의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 인쇄물을 타인에게 재 위탁하여 인쇄 했을 경우
 - (2) 인쇄업 경영자가 학위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국가기관 공문서 및 증명서 또는 기업 사업 기관, 인민단체의 공문서 및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 했을 경우
- 게시문, 공고문, 중대 행사 스텝증, 통행증, 사회에서 유통 사용되는 구매권을 인쇄 시, 위탁 인쇄 업체가 주무부처의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정부 출판행정부서는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 인쇄업 경영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포장 장식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위탁 받아 인쇄한 포장 장식 인쇄물의 완제품, 반제품, 불량품과 인쇄판, 지형, 인쇄 필름, 원고 등을 무단으로 보존 했을 경우
- (2)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이 기타 인쇄물의 견본 또는 견본쇄를 무단으로 보존하거나 또는 보존한 견본 또는 견본쇄에 ‘견본’ 또는 ‘견본쇄’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경우

제45조 인쇄업체가 허가증 말소 행정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당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는 허가증 말소 당일부터 10년 안에 인쇄업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기타 인쇄물의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허가증 말소 행정 처벌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말소 당일부터 10년 안에 인쇄경영활동에 종사 할 수 없다.

제46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벌을 실행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과 과태료 수납 분리를 실행하며 수납한 과태료는 반드시 전부 국고에 귀납해야 한다.

제47조 출판행정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처에서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에게 독단적으로 승인을 취 허가증, 승인서류를 취득하게 했거나 또는 감독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낳았을 경우, 담당할 주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강등처분 또는 해고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8조 본 조례 실행 전, 이미 법에 의거 설립된 인쇄기업은 본 조례 실행 당일부터 180일 안에, 출판행정부서에 가서 《인쇄경영허가증》을 교환 수령해야 한다.
본 조례에 의거 발급되는 허가증은 공인표준에 의거 원가비용을 수취하는 이외에 기타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해선 안 된다.

제49조 본 조례는 발표당일부터 실행된다. 1997년3월8일 국무원이 발표한 《인쇄업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2.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제목	设立外商投资印刷企业暂行规定
게재일	2002-01-29,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령 제16호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은 현재 발표와 동시에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스중위안(石宗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장 스광성(石广生)

2002년 1월 29일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조 개혁개방의 수요에 한층 더 적응하고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국 인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인쇄업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중국 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인쇄업체이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투자 인쇄업체란 외국기관, 회사, 기업(이하 외국인 투자자로 약칭)이 평등 및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중국 회사, 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외 공동 경영(합자, 합작 포함) 인쇄업체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외자(外资) 인쇄업체를 일컫는다.

제3조 중국 정부는 출판물, 포장장식 인쇄물,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 공동 경영 인쇄업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아울러 포장장식 인쇄물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자 인쇄업체의 설립도 허용한다.

제4조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인쇄업체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쇄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투자 인쇄업체의 정당한 경영활동 및 각 투자자의 적법한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중국측 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값을 매긴 출자 또는 합작 조건으로 하는 경우 포함)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국유자산평가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예정인 국유자산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투자자는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인이고 직간접적으로 인쇄경영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2)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각 항 기준 중의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인쇄경영관리모델 및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 선도수준의 인쇄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교적 풍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3)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설립 신청 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 (4) 출판물, 기타 인쇄물의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 공동 경영 인쇄기업은 공동 경영의 중국측 투자자가 지배하거나 또는 주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중, 출판물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중외 공동 경영 인쇄기업의 대표이사는 중국측에서 담당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중국측 이사가 외국측보다 많아야 한다.
 - (5) 경영기한은 보통 30 년을 넘지 않는다.
-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설립 신청은 상기 조항 규정 외에 국가의 유관 인쇄기업 총량, 구조와 구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설립은 우선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신청서
 - (2) 각 투자자의 법정대표자가 체결한 프로젝트 제안서 및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보고서.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 각 투자자의 이름, 주소
 2. 설립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이름, 법정대표자, 주소, 경영범위, 등록 자본금 및 투자 총액
 3. 각 투자자의 출자방식과 출자금액
 - (3) 각 투자자의 등록등기 증명서(사본),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서(사본)
 - (4) 국유 자산관리기관의 투자 예정 국유자산 평가보고서에 대한 확인 서류
-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은 규정된 모든 서류 접수일부터 영업일 10일 내에 1차 심사 의견을 제시한 후 신문출판총서로 발송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8조 신문출판총서로 발송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설립 신청 서류
 - (2)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의 1 차 심사 의견
 - (3) 법률, 법규와 신문출판총서에서 규정한 다른 서류
- 신문출판총서는 규정된 모든 서류의 접수일부터 영업일 30일 내에 승인 여부에 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9조 신청인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 서류를 확보한 후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대외무역경제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1) 신청인의 설립 신청 서류 및 신문출판총서의 승인 서류
- (2) 각 투자자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가 위임한 대표가 체결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계약서, 정관
- (3) 설립 예정인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각 투자자의 이사 위임파견서
- (4)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승인 통지서
- (5) 법률, 법규와 대외무역경제 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타 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대외경제무역 행정기관은 투자 총액 3000만 달러 이하이고, 포장장식 인쇄물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 예정인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에 대한 심사승인을 진행한다. 규정된 모든 서류의 접수일부터 영업일 3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설립 신청을 승인할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 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이사 약칭 외경무부)로 발송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출판물, 기타 인쇄물의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중외 공동 경영 인쇄기업 및 투자총액 3000만 달러 이상(3000만 달러 포함)인 포장장식 인쇄물의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 예정인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대외무역경제 행정기관은 규정된 모든 서류의 접수일부터 영업일 10일 내에 1차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로 발송하여 심사 승인하도록 한다.

제10조 대외경제무역협력부로 발송하여 심사승인을 받으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대외무역경제 행정부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인의 설립 신청 서류
- (2)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대외무역경제 행정부서의 1차 심사 의견
- (3) 법률, 법규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규정된 모든 서류의 접수일부터 영업일 3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설립 신청을 승인할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 설립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서류 및 《외국인투자 기업 승인증서》를 소지하고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인쇄경영 허가증》을 수령하고 《인쇄업 관리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특종 산업 허가증》과 영업집조(营业执照-사업자등록증에 해당)를 수령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은 지사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이미 설립한 중외 공동 경영 인쇄기업이 출판물, 포장장식 인쇄물 또는 기타 인쇄물 인쇄 경영활동의 겸업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겠다고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또는 이미 설립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이 다른 인쇄업 경영업체를 합병할 경우, 또는 합병, 분리하

여 신규 인쇄업 경영업체를 설립할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외무역경제 기관에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법에 따라 해당 등록등기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기타 사항의 변경은 현행 유관 규정에 따라 기존의 승인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등록등기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자 또는 책임자, 주소 또는 사업장, 지분 비율 등 주요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인쇄 경영활동 중단 등에 대해서는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문서기록을 하도록 한다.

제14조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경영기한이 만료되고 특별 상황으로 인해 경영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경영기한 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고 기존의 승인기관으로 발송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5조 승인을 거쳐 설립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은 승인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유관 등기등록 수속을 모두 완성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도록 완성하지 못할 경우 승인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현금 이상 신문출판 행정기관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설립하여 인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에 대해 《인쇄업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각급 신문출판 및 대외무역경제 행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의 설립을 무단 승인하거나 또는 부합되지 않는 조건을 변경할 경우 《인쇄업 관리조례》에 따라 유관 책임자 및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인쇄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인쇄업 관리조례》 실시 전, 유관 기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인쇄경영 허가증》으로 교체하며, 이중 출판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투자규모 확대 및 경영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6조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997년 5월 1일 이후 《인쇄업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한 외국인투자 인쇄기업은 본 규정 시행 일부터 180일 내에 성급 신문출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인쇄경영 허가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19조 본 규정의 해석은 신문출판총서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담당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한다.

3.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제목	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 (第22号)
게재일	2004-06-17,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신문출판총서 령 제22호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音像制品出版管理规定)》은 2004년 5월 8일 신문출판총제1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署长) 서장 스쥬위안(石宗源)

2004년 6월 17일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2004년 6월 17일 신문출판총서 령 제22호로 발표,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12월 11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1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의 폐지, 수정 및 실효 선언에 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음반·영상 제품 출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의 음반·영상 출판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의 음반·영상 제품 출판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음반·영상 제품은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녹음테이프(AT), 비디오테이프(VT), 콤팩트디스크(CD), 비디오콤팩트디스크(VCD) 및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등을 가리킨다.

제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모두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에서 전국 음반·영상 제품 출판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정부의 출판 관리 담당 행정부처(이하 ‘출판행정부서’로 약함)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 음반·영상 제품 출판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주무기관 및 주취기관은 출판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음

반·영상 출판업체의 출판활동에 대해 관리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정부는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 모두 허가 없이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음반·영상 제품 출판의 허가증명서와 승인문서는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양도 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음반·영상 출판업계의 사회단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부서의 지도하에 자율적 관리를 실행한다.

제2장 출판업체의 설립

제7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명칭과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주최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이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직기구와 국가출판전문기술자자격을 취득한 편집인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인원수는 10명 이상 이어야 하며, 그중에서 음반·영상 출판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중급이상 출판전문기술자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5명 이상 이어야 한다.
- (5)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 (6)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설비와 작업장이 있어야 한다.
-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설립신청을 심사 허가할 때 상기 조항에 명기한 조건 외에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총 수량, 분포 및 구조 관련 정부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주최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료와 함께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설립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명칭, 주소
 - (2)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주최기관 및 해당 주무부처의 명칭, 주소
 - (3)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음반·영상 출판전문인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류
 - (4)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증명서
 - (5) 음반·영상 출판업체 작업장 사용 증명 서류
- 신청서에는 출판업체의 정관과 출판업체 설립의 주최기관 및 주무기관의 관련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신문출판총서는 신청서 접수 당일부터 6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를 통해 주취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주취기관은 승인 결정을 받은 당일부터 60일 안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하여 《음반·영상 제품 출판허가증(音像制品出版许可证)》(이하 ‘출판허가증’으로 약함)을 수령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등록을 마친후 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을 하며 법에 의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등록 당일부터 180일 안에 출판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등록한 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을 말소시키고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앞서 조항의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출판행정부서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명칭, 주취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타 음반·영상 출판업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합병 및 분립으로 인해 새로운 음반·영상 출판업체를 설립 할 경우, 본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련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음반·영상 출판경영활동을 종료 할 경우,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변경 또는 등록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30일 안에 신문출판총서에 이를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급 이상 출판전문기술자 전문자격과 3년 이상 음반·영상 출판 업무 종사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에서 조직한 근무교육을 통해 《근무교육합격증서(岗位培训合格证书)》를 취득해야 한다.

제15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편집, 출판, 시정 등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반드시 국가출판전문기술자 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하여 규정된 레벨의 출판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출판전문 기술자 전문자격증서 (中华人民共和国出版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证书)》를 소지하고 근무해야 한다.

제3장 출판활동의 관리

제16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출판허가증이 확정한 경영범위를 벗어나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국가표준 및 기타 관련 규정의 표지에 따라 《중국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이하 ‘출판번호’로 약함)을 사용해야 한다. 출판번호는 신문출판총서에서 관리하고 컨트롤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서 발부한다.

제18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편집책임제도를 실행하여 음반·영상 제품에 게재된 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제19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연간출판계획 등록제도를 실행하며 출판계획의 내용에는 제목 명칭, 제작업체, 주요 창작 멤버, 종류, 저장 장치, 내용 요약, 프로그램 러닝타임, 계획 출판일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 출판계획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본 연도 지난 연도의 12월 20일 이전에 본 연도 출판계획을 제출하고 본 연도 3월1일—20일, 9월1일—20일에 본 연도 출판 조정 계획을 제출한다.
- (2) 출판계획 및 출판조정계획은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3)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부서는 출판계획 제출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음반·영상 출판업체에 심사 의견을 회신하고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0조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국가 보안, 사회 안정 등 분야에 관련된 중대 과제를 출판 할 경우, 중대 과제 등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중대 과제를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도서출판사,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전자출판물 출판사에서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신청서와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 출판 신청서는 반드시 본지 출판물의 명칭, 제작업체, 주요 창작 인력, 주요 내용, 출판일자, 프로그램 러닝타임, 복제 수량과 저장 장치 방식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23조 출판업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해당 신청서와 견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동의할 경우, 출판번호를 배부하고, 복제위탁서를 발급하며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심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4조 허가를 받아 출판되는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은 해당 명칭이 반드시 본지 출판물과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본지 출판물과 통일된 세트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독으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25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허가를 받아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하는 기타 출판업체는 해당 출판된 음반·영상 제품 및 해당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출판업체의 명칭, 주소 및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번호, 출판일자, 편집 담당자, 저작권자 및 바코드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한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26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명칭을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도 양도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출판번호를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든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명칭을 구입, 임대, 차용, 무단 사용하거나 또는 출판번호를 구입,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음반·영상 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음반·영상 제품 제작허가증(音像制品制作許可證)》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할 수 없다.

제29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허가를 받아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하는 출판업체는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하는 당일로부터 30일 안에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과 신문출판총서에 각각 견본을 무료로 보내야 한다.

제4장 비매품의 관리

제30조 무상 증정, 발급 및 업무교류에 사용되는 음반·영상 제품은 음반·영상 비매품에 속하며 가격을 정해선 안 되고, 판매 또는 변칙 판매 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복제업체가 위탁을 받아 음반·영상 비매품을 복제 할 경우, 반드시 위탁업체 또는 개인의 신원증명서와 그들이 발행한 음반·영상 비매품 복제위탁서를 검증해야 하며 의뢰인에게 비매품 사용목적, 명칭, 제작업체, 주요내용, 발송대상, 복제수량, 프로그램 러닝타임과 저장 장치 방식 등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32조 음반·영상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음반·영상 비매품의 포장과 디스크(테이프)의 뚜렷한 위치에 ‘음반·영상 비매품’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제5장 위탁복제의 관리

제33조 음반·영상 제품 위탁 복제 시, 반드시 복제위탁서를 사용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는 반드시 복제위탁서에 관한 국가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복제위탁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34조 복제위탁서는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서 수령한다.

제35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는 규정에 따라 복제위탁서를 제출 또는

작성해야 하며 복제위탁서를 직접 복제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위탁 복제 업체는 반드시 복제위탁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복제위탁서를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는 반드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복제위탁서를 관리하고 사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복제위탁서 사용기록에는 제출시간, 음반·영상 제품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 대응하는 출판번호, 관리자 서명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제위탁서 사용기록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7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는 음반·영상 제품의 복제 완성 당일부터 30일 안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본 업체 및 복제업체가 서명 날인한 복제위탁서 두 번째 페이지 및 음반·영상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 또는 음반·영상 비매품의 출판 신청을 한 업체가 승인을 받은 당일로부터 90일안에 출판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복제위탁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39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출판하는 음반·영상 제품, 기타 출판업체에서 출판하는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 음반·영상 비매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복제업체에 위탁하여 복제되어야 한다.

제6장 심사 등록

제40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심사등록제도를 실행하며 2년에 한 번씩 심사등록을 진행한다.

제41조 심사등록을 신청하는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 심사등록표》
- (2) 음반·영상 제품 출판업무 상황 보고서. 보고서는 출판관리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실행한 상황, 출판경영상황, 인력, 장소, 시설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3) 2년 안에 출판한 음반·영상 제품 등록표
- (4) 출판허가증 사본

제42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심사등록연도의 1월 15일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에 연간 심사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의 등록신청을 한 음반·영상 출판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2월 안으로 심사등록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43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음반·영상 출판업체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

행정부서는 등록을 윤택한다.

- (1)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부합 될 경우
- (2) 2년 안에 출판관리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없을 경우
- (3) 2년 안에 출판한 음반·영상 제품이 10가지 이상 일 경우

제44조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지 않는 음반·영상 출판업체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등록유예 결정을 내린다.

등록유예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등록유예 된 출판업체가 해당 기간 안에 정리정돈을 진행하여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조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린다.

등록유예의 기간 만료 전,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등록유예 된 출판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조건에 도달했을 경우 등록을 윤택한다.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조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말소등록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말소등록 된 출판업체에 대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해당 출판허가증을 몰수한다.

제4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부서는 같은 해 3월 20일 전에 심사등록 상황 및 관련 자료 사본을 취합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음반·영상 출판업체를 설립하여 음반·영상 제품 출판업무에 무단으로 종사 했을 경우,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 처벌한다.

제47조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경우,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40조에 의거 처벌한다.

제48조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42조에 의거 처벌한다.

- (1) 기타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명칭, 음반·영상 제품 출판의 허가증서 또는 승인 서류를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했거나, 본 업체의 출판번호 또는 복제위탁서를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했을 경우
- (2) 《음반·영상 제품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 했거나 또는 법에 의거 설립되지 않은 복제업체에 위탁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 했을 경우

제49조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44조에 의거 처벌한다.

- (1) 연간출판계획과 국가안보, 사회 안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규정에 따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2) 명칭, 주취기관 또는 주무기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경영범위 등을

- 변경 시, 본 규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심사, 등록 수속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 (3) 해당 출판된 음반·영상 제품 및 해당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본 규정에서 규정한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4) 규정 기간 안에 음반·영상 제품 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50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행정부서에서 불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기타 출판업체에서 본지 출판물과 세트로 음반·영상 제품 출판 시, 해당 명칭이 본지 출판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단독으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경우
- (2) 음반·영상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가 본 규정의 제36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기간에 따라 비치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 (3) 비매품의 위탁 복제 업체가 비매품을 판매 또는 변칙판매하거나 또는 비매품으로 비용을 수취할 경우
- (4) 비매품의 위탁 복제 업체가 비매품의 포장과 디스크 또는 테이프의 뚜렷한 위치에 비매품의 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8장 부칙

제51조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허가증은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52조 본 규정의 관련 행정허가의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53조 본 방법은 2004년8월1일부터 실행되며, 신문출판총서에서 1996년 2월 1일 발표한 《음반·영상 출판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4. 도서출판 관리규정

제목	图书出版管理规定 (第36号)
게재일	2008-02-21,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도서출판 관리규정(图书出版管理规定)》은 2007년 12월 2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업무회의에서 통과 되었고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류빈제(柳斌杰)

2008년 2월 21일

도서출판 관리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도서출판을 규범화하고 도서출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도서출판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출판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도서출판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서는 서적, 지도, 세화, 그림, 그림책 및 문자, 도화내용을 포함한 달력 및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저장 장치 방식을 가리킨다.

제3조 도서출판 사업은 반드시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한 서비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泽东) 사상 및 덩샤오핑(邓小平) 이론, ‘3가지 대표’의 지도사향을 고수하고, 과학적 발전관과 정확한 여론 유도 및 출판 방향을 관철 집행하며, 사회적 효과를 우선시 하되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잘 접목시키는 원칙을 고수하며, 민족의 자질을 향상하고,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에 유익한 과학기술과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축적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선양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국민의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도서출판 활동을 감독 관리하고 완전한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전국 도서출판의 총 수량, 구조, 분포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도서출판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 제5조 도서출판업체는 법에 따라 도서의 편집, 출판 등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체의 합법적인 출판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모두 불법으로 간섭, 저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
- 제6조 신문출판총서는 중국의 도서출판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도서출판업체 및 개인을 장려하고 우수한 도서를 선정 및 장려한다.
- 제7조 도서출판업계의 사회단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지도하에 자율적 관리를 실행한다.

제2장 도서출판업체의 설립

- 제8조 도서는 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출판업체에서 출판한다. 도서출판업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거쳐 도서출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서출판업체는 국가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설립되고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거쳐 등록수속을 이행하는 도서출판 법인실체를 가리킨다.
- 제9조 도서출판업체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도서출판업체의 명칭과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주최기관 및 주무기관이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도서출판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 (5) 도서출판 수요에 적응하는 조직기구와 국가에서 규정하는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편집·출판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 (6) 확정된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해당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국내에 오래동안 거주한 완전행위능력을 구비한 중국 국민이어야 한다.
 - (7) 주최기관과 동일한 성급 행정지역의 고정적인 작업장이 있어야 한다.
 - (8)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도서출판업체의 설립은 상기 조항에서 열거하는 조건 이외에도 도서출판업체의 총 수량, 구조, 배치에 관한 국가의 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 제10조 북경에 있는 중앙 기관에서 도서출판업체를 설립할 경우, 주최기관에서 신청을 하며 주무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주최기관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시스템 내에서 도서출판업체를 설립할 경우, 주최기관이 신청을 하며 중국인민해방군 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기타 기관에서 도서출판업체를 설립할 경우, 주무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주최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을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1조 도서출판업체 설립 신청 시, 반드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요구에 따라 작성된 도서출판업체 설립 신청표
- (2) 주무기관, 주취기관의 관련 자격 증명자료
- (3) 임명 예정인 도서출판업체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력서, 신분증명 서류
- (4) 편집·출판 인력의 출판전문자격증서
- (5)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 증명서
- (6) 도서출판업체의 정관
- (7) 작업장 사용 증명서
- (8) 도서출판업체 설립의 실행 가능성 입증 보고서

제12조 신문출판총서는 도서출판업체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9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직접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를 통해 주취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도서출판업체 설립 신청을 한 주취기관은 신문출판총서로부터 승인서류를 받은 당일로부터 60일 안에 아래와 같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승인 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도서출판업체 등록표를 수령하고 주무기관의 심사 서명날인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2) 도서출판업체 등록표는 1식 5부로 하며 도서출판업체, 주취기관, 주무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접수일 당일부터 15일 안에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 (3) 신문출판총서는 도서출판업체 등록표를 심사한 후, 10일 안에 중국표준도서번호센터를 통해 해당 출판자 번호를 배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4)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도서출판업체 등록표를 심사한 후, 10일 안에 주취기관에 도서출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5) 도서출판업체는 도서출판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법에 의거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4조 도서출판업체의 주취기관이 신문출판총서로부터 승인 서류를 받은 당일로부터 60일 안에 등록 수속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승인 서류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등록기관은 더 이상 등록을 수리하지 않으며 도서출판업체의 주취기관은 관련 승인 서류를 신문출판총서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체가 등록일로부터 180일 안에 도서출판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등록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을 말소시키고 도서출판 허가증을 회수하며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도서출판업체는 기존에 등록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기 신청을 할수 있다.

제15조 도서출판업체는 법인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승인등록을 마친후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전부 법인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도서출판업체가 명칭, 주최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를 변경하거나 인수합병 또는 분립을 통해 자본 구조를 변경할 경우, 본 규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서출판업체는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변경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을 변경 할 경우, 해당 주최기관과 주무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7조 도서출판업체가 도서 출판을 종료할 경우, 주최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주최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말소 절차를 밟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신문출판총서에 등록 신고한다.

제18조 도서출판그룹을 설립 할 경우 본 규정 제10조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장 도서의 출판

제19조 어떠한 도서든 《출판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도서출판은 편집책임제도를 실행하며 도서내용이 국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21조 사전, 지도, 초중고 교과서 등 종류의 도서 출판은 자격허가제도를 실행하며 출판업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서 허가한 경영범위에서 출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22조 도서출판은 중대주제등록제도를 실행한다. 국가 보안, 사회 안정 등과 관련된 중대 주제, 중대 혁명 소재 및 중대 역사 소재와 관련된 주제는 신문출판총서의 주제등록관리 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 수속을 밟는다.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중대 주제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도서출판은 연간출판계획등록제도를 실행한다. 도서출판업체의 연간출판계획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4조 도서출판업체는 주제논증제도, 도서원고 3차심사 책임제도, 편집 담당자 제도, 교정 담당자 제도, 도서 재판전 심사제도, 원고 및 도서 자료 분류 보관제도 등 관리 제도를 실행하여 도서 출판 품질을 보장한다.

- 제25조 도서에서 사용되는 언어 문자는 국가 언어 문자 법률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서 출판 품질은 반드시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신문출판총서에서 도서 출판 품질에 관한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26조 도서는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전국통일도서번호, 도서 바코드 및 도서 재판 편찬 목록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표준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27조 도서출판업체는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명칭,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전국통일도서번호를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 제28조 도서출판업체는 한 개의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전국통일도서번호로 여러 가지 도서를 출판해서는 안 되며,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전국통일도서번호로 정기간행물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중국표준도서번호 사용방법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제29조 도서출판업체가 형판을 임대하여 도서를 출판, 협력하여 도서를 출판, 자비로 도서를 출판할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 제30조 도서출판업체와 해외출판기구가 국내에서 협력하여 출판을 할 경우, 협력 출판한 도서에 양측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 도서출판업체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출판한 도서에 도서 판본 기록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제32조 도서출판업체는 법에 의거 설립된 출판물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도서를 인쇄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인쇄위탁서를 사용해야 한다.
- 제33조 도서출판업체는 반드시 국가통계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34조 도서출판업체는 도서출판 30일 안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신문출판총서에 무료로 견본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 제35조 도서출판의 감독관리는 속지주의를 실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행정지역 내의 도서출판 활동을 감독 관리하고, 해당 행정지역 내의 도서출판업체의 심사등록, 연간검사 및 해당 출판 도서의 심사, 품질 평가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제36조 도서출판관리는 심사제도, 품질보장 관리제도, 출판업체 등급별 관리제도, 출판업체 연간검사제도와 출판 종사자 전문자격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제37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도서 심사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 지역에서 출판한 도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신문출판총서에 정기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8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문출판총서의 《도서 품질 관리규정》 등 규정에 따라 도서의 품질을 검사하고 상벌을 실행한다.

제39조 신문출판총서에서 도서출판업체 등급 평가방법을 수립하고 도서출판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등급별 관리를 실행한다.

제40조 도서출판업체는 연간검사제도를 실행하며 2년에 한 번씩 연간검사를 진행한다. 연간검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도서출판업체는 연간 자가검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도서출판 연간검사표를 작성하며 도서출판업체의 주취기관, 주무기관의 심사 날인 후, 규정된 시간 안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한다.
- (2)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도서출판업체의 자가검사 보고서, 도서출판 연간검사표 등 연간검사자료를 받은 후 30일안에 심사검증을 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한다.
- (3) 신문출판총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제출한 도서출판업체 연간검사자료와 심사의견을 받은 후, 60일 안에 연간검사 통과 여부에 대한 회답을 준다.
- (4) 도서출판업체는 신문출판총서에서 연간검사를 통과시킨 회답 서류, 도서출판 허가증 부분 등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1조 도서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 했을 경우, 연간검사를 유예한다.

- (1) 기한부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중일 경우
- (2) 심사를 통해 위법 상황을 발견하여 처벌을 가했을 경우
- (3) 주무기관, 주취기관이 관리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지 않아 도서 출판관리 혼란을 초래했을 경우
- (4) 제출한 연간검사 자기검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심각하게 다를 경우
- (5) 기타 위법 혐의가 있어 진일보 조사 검토가 필요할 경우

연간검사의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한다. 연간검사 유예기간에 도서출판업체는 교과서, 인쇄 중인 도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는 이외에 기타 도서 출판은 전부 정지한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본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42조 도서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 했을 경우, 연간검사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 (1) 출판 방향이 관리규정을 심각히 위반하고 이를 즉각 교정하지 않았을 경우

- (2) 불법행위로 단속 받은 후 시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정돈기간 만료 후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
 - (3) 도서출판 품질이 규정된 표준에 장기간 도달하지 못할 경우
 - (4) 경영악화로 이미 채무초과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 (5) 이미 본 규정 제9조 규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 (6) 등록 유예 기간 만료 후, 연간검사 기본조건에 여전히 부합되지 않을 경우
 - (7)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고, 재촉 통고에도 여전히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 (8) 기타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 연간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도서출판업체에 대해, 신문출판총서는 도서출판 허가증을 취소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등록을 말소시킨다.

제43조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연간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 도서출판 종사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판전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5조 도서출판업체의 사장, 편집장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재직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도서출판업체의 사장, 편집장은 반드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조직한 근무교육에 참가하여 근무교육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근무 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6조 도서출판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통지서를 하달한다.
- (2) 비평을 통보한다.
- (3) 공개적으로 자기비판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4)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5) 중국표준도서번호 수량을 심사 삭감한다.
- (6) 도서의 인쇄 제작 및 발행을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7) 도서를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8) 주취기관, 주무기관에서 도서출판업체를 감독하여 정리 정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법을 어긴 도서출판업체에게 하달하며 위법 도서출판업체의 주취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에 사본을 보낸다.

본 조항에서 열거한 행정조치는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제47조 허가 없이 도서출판업체를 무단 설립하거나 도서출판 업무에 무단 종사했을 경우와 도

서출판업체 명칭을 가장, 위조하여 도서를 출판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도서출판업체가 《출판관리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서를 출판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도서출판업체가 본 규정 제27조를 위반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 도서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명칭, 주취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 자본구조를 변경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2) 규정에 따라 해당 연간출판계획을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3) 규정에 따라 중대 주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4) 규정에 따라 견본 도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51조 도서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규정에 따라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전국통일도서번호, 도서 바코드 및 도서 재판 편찬 목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2) 도서출판업체가 본 규정 제28조를 위반했을 경우
- (3) 도서출판업체가 국내에서 해외출판기구와 함께 무단으로 협력 출판을 하고 협력 출판한 도서에 양측이 공동으로 서명했을 경우
- (4) 규정에 따라 도서 판본 기록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5) 도서출판업체가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출판물 인쇄업체에 의뢰하여 도서를 인쇄하거나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인쇄위탁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52조 도서출판업체가 형판을 임대하여 도서를 출판, 협력하여 도서를 출판, 자비로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신문출판총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경고를 주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 도서출판업체가 품질 불합격의 도서를 출판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도서 품질 관리규정(图书质量管理规定)》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도서출판업체가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통계국에서 공동으로 공포한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도서출판업체에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주취기관과 주무기관

에 이를 고지해야 하며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도서출판업체에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주최기관과 주무기관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주요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분 또는 직무 전임을 제안 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6조 본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기존의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도서출판에 관한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음반·영상물 제작관리 규정

제목	音像制品制作管理规定
게재일	2008-02-21,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음반·영상물 제작관리규정》(국가신문출판총서령 제35호)은 2007년 12월 2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류빈제(柳斌杰)

2008년 2월 21일

음반·영상물 제작관리 규정

(2008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35호로 발표,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7년 12월 11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령 제1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의 폐지, 수정 및 실효 선언에 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음반·영상물의 제작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영상물 제작업계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 《음반·영상물 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음반·영상물의 제작은 녹음, 녹화 등 기술 수단을 통해 소리, 이미지, 문자 등 내용을 음반·영상물 프로그램 소스로 정리 가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모두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을 포함한 음반·영상물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정부는 음반·영상물의 제작 경영활동 종사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하며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 모두 허가 없이 음반·영상물의 제작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음반·영상물의 제작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음반·영상물 제작허가증(音像制品制作许可证)》을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신문출판총서는 중국 전역의 음반·영상물의 제작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

현급(县级) 이상 정부의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해당 행정지역 내 음반·영상물의 제작을 감독 관리한다.

제2장 음반·영상 제작 업무 영위 신청

제6조 음반·영상 제작 업무 영위 신청 시,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상호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경영 범위의 수요에 적응하는 조직 기관과 음반·영상 제작 전문 기술인력이 있어야 하며 음반·영상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5명 이상 이어야 한다.
- (3) 필요한 기술 장비가 있어야 한다.
- (4) 고정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음반·영상 제작 업무 영위 신청에 대한 승인은 상기 조항에서 열거하는 조건 이외에 해당 지역의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총수, 배치, 구조에 관한 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제7조 음반·영상 제작 업무 영위 신청 시,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신청을 수리한 당일 부터 6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승인할 경우, 《음반·영상물 제작허가증》을 발부하고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음반·영상 제작 업무 영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 신청서에는 업체 명칭, 주소, 제작 업무범위, 자금출처 및 금액,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등 내용
- (2) 업체 정관
- (3) 전문 기술인력의 경력 증명서류
- (4)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 증명서
- (5) 경영장소 사용증명서

제9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영상 제작업체를 합병 인수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새로운 음반·영상 제작업체를 설립할 경우, 본 방법의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음반·영상 제작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10일 안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음반·영상물 제작허가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안에 음반·영상물 제작 업무를 시작 하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 1년이 될 경우,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에서 《음반·영상물 제작허가증》을 취소시킨다.

제3장 제작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제12조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소재지의 지역 시급 이상 신문출판 행정부처에서 조직한 근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반드시 완전한 내부관리제도를 구비해야 하고 제작 문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작 문서 기록은 반드시 서류로 남겨져 조사 대비용으로 2년 보관되어야 한다.

제작 문서 기록은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한다.

제14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위탁을 받아 음반·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탁측과 제작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신분증명 서류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상기 언급된 계약서, 《영업허가증》 및 신분증명 서류 사본을 서류로 남겨 조사 대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15조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허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탁 받아 제작한 음반·영상물을 위탁측 이외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음반·영상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음반·영상물은 국가 관련 품질, 기술 표준 및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법에 의해 음반·영상 제작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는 자사가 출판한 음반·영상물 및 해당 포장에 서명할 권리가 있다. 기타 업체 또는 개인 모두 제작업체의 명의로 음반·영상물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2년에 한번씩 연간검사 수속을 밟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에서 연간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연간검사 업무를 완성한 후 30일 안에 연간검사 현황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국가의 통계 규정을 지켜야 하며 법에 따라 신문출판 행정부처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 또는 외국의 기관 및 개인과 함께 음반·영상물을 합작 제작할 수 있다(이하 ‘음반·영상물 합작 제작’으로 약칭함). 단,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제작 완료 후 10일 안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1조 음반·영상물을 합작 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등록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합작 제작하는 음반·영상물의 명칭, 프로그램 시간, 저장매체 형식 및 내용 개요 등
- (2) 협력 양측의 명칭, 기본상황, 투자금액
- (3) 프로젝트 협력 계약서

제4장 법적책임

제22조 승인을 받지 않고 음반·영상물 제작 경영활동에 무단 종사할 경우,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음반·영상 제작업체 이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제작업체의 명의로 음반·영상물에 서명할 경우, 음반·영상물 제작 경영활동에 무단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제23조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금지내용을 포함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음반·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위탁을 받아 음반·영상물을 제작할 시,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역 또는 외국의 기관 및 개인과 함께 음반·영상물을 합작 제작할 시, 본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음반·영상물 관리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영상 제작업체를 합병 인수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해 새로운 음반·영상 제작업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2)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제작 경영활동을 종료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제27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행정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본 규정에 따라 근무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 (2) 본 규정에 따라 제작 문서 기록을 작성 제작하지 않았거나 서류로 남겨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 (3) 비(非) 출판업체의 위탁을 받아 음반·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 위탁업체의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본 규정에 따라 조사 대비용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
- (4) 위탁 제작한 음반·영상물을 허가 없이 위탁측 이외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했을

경우

(5) 제작한 음반·영상물이 국가 관련 품질, 기술 표준 및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6)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제28조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법에 따라 신문출판 행정부처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서 연합 발표한 《신문출판 통계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에 의거해 처벌 받는다.

제5장 부칙

제29조 《음반·영상물 제작허가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신문출판총서에서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인쇄 제작한다.

제30조 본 규정 시행 전에 《음반·영상물 제작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경영기간 만료 전 계속하여 음반·영상 제작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기간 만료 후 경영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제목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게재일	2008-02-21,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국가신문출판총서 령 제34호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은 2007년 12월 2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류빈제(柳斌杰)

2008년 2월 21일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출판물 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승인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수입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은 디지털 코드 방식으로 지식성, 사상성 내용의 정보가 편집 가공된 후 고정적 물리 형태의 자기, 빛, 전기 등 매체에 저장되고, 전자 열람, 디스플레이, 방송 설비를 통해 읽고 사용되는 대중 전파 미디어를 가리킨다. 즉, 읽기 전용 광디스크(CD-ROM, DVD-ROM 등), 1번만 저장할 수 있는 광디스크(CD-R, DVD-R 등), 리라이터블 광디스크(CD-RW, DVD-RW 등),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스마트 카드 등, 및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한 기타 미디어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 전자출판물은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5조 정부는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 모두 전자출판물의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출판업체 설립

제6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명칭과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주무기관과 주취기관이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전자출판물 출판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에 적응하는 설비와 작업장이 있어야 한다.
 - (5) 경영범위 수요에 적응하는 조직기구가 있어야 하고, 2명 이상이 중급 이상 출판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조건을 따르는 이외에도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총 수량, 구조, 배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은 해당 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주취기관에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요구에 따라 작성된 신청표에는 출판업체의 명칭, 주소, 자본구조, 자금 출처 및 금액, 출판업체의 주무기관 및 주취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2) 주취기관, 주무기관의 관련 자격 증명 서류
- (3) 출판업체 정관
- (4)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본 규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관련 인력의 자격증 명서와 신원증명서
- (5) 실행가능성 입증 보고서
- (6)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증명서
- (7) 작업장 사용 증명서

제9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9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직접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를 통해 주취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각 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전자출판물출판업체를 설립한 주취기관은 승인 결정을 받은 당일부터 60일 안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신문출판총서에서 발급한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电子出版物出版许可证)》을 수령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1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등록 당일부터 180일 안에 출판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을 말소시키고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회수하며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명칭, 주취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인수합병 또는 분립 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하며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련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해당 주무기관 또는 주취기관의 동의를 거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변경을 신청 한 후,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반드시 관련 등록 변경 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출판활동을 종료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관련 등록 말소 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 신청 시, 주취기관 동의를 거친 후, 주취기관에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은 고정적인 명칭이 있고, 권, 기, 책 또는 년, 월 순서 번호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출판되는 전자출판물을 가리킨다.

제1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에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정기간행물, 미디어 형태, 경영범위, 구독자 대상, 칼럼 설치, 문서 종류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2) 주취기관의 심사의견.

신문, 정기간행물과 세트가 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출판 신청 시, 반드시 신문, 정기간행물 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승인을 받아 출판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해당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출간기간과 출판범위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출판행정부서는 전자출판물 제작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신고제 관리를 실행한다.

전자출판물 제작업체는 업체 설립 등록 및 관련 변경 등록 당일부터 30일 안에 업체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영업허가증 사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원증명서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의 제작은 창작, 가공, 설계 등 방식을 통해 출판, 복제, 발행에 사용되는 전자출판물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제3장 출판관리

제18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편집책임제도를 실행하며 전자출판물의 내용이 관련 법규,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19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매년 12월 1일 전에 다음해의 출판계획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 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0조 전자출판물 출판은 중대 주제 등록 신고 제도를 실행한다. 국가 보안, 사회 안정 등에 관련된 중대 주제, 중대 혁명 소재와 중대 역사 소재와 관련된 주제는 신문출판총서의 주제 등록 신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등록 신고를 거치지 않은 중대 주제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 다른 저장 장치 형태 및 양식의 전자출판물은 각각 서로 다른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사용하여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명칭, 전자출판물 중국표준도서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양도, 임대, 판매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전자출판물은 국가의 기술, 품질 기준과 규범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자출판물 저장 장치의 인쇄 표지면 또는 해당 장정의 뚜렷한 위치에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업체의 명칭,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 및 바코드, 저작권자 명칭 및 출판 일자 등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24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동의 후,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에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내용 안내, 위임자 명칭, 위임자 기본 상황 소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신청업체의 심사 보고서
- (3) 견본 및 필요한 내용 자료
- (4) 신청업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저작권 계약서 등록 증명서류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게임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반드시 게임의 주요 캐릭터와 주요 배경 이미지 자료, 퍼블리싱 업체의 영업허가증, 발행 계약서 및 발행기관 도매허가증, 게임 문자 스크립트 전문 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신문출판총서는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의 출판 신청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각 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을 심사 출판할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총 수량, 구조, 분포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27조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 저장 장치의 인쇄표지면 또는 해당 장치의 뚜렷한 위치에 수입출판 허가문서번호와 저작권 위임계약서 등록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28조 이미 허가를 받아 출판하는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에 대해, 만일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판 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게임 테스트 디스크 및 해외 온라인게임 작품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시디를 출판 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와 해외기관이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 할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주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합작 출판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는 합작 출판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저장 장치 형태, 내용 안내, 협력 양측

의 명칭, 기본 상황, 협력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하고 협력 출판 계획인 전자출판물의 관련 문자 내용, 이미지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협력 의향서

(3) 주무기관의 심사의견

제3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와 해외기관이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이 출판된 30일 안에 견본 디스크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33조 출판업체가 본 판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동의 할 경우, 전자출판물 중국표준도서번호와 복제위탁서를 발급하며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34조 출판업체가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본지 출판물, 출판 계획인 전자출판물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어 출판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제작업체, 주요내용, 출판일자, 복제수량과 저장 장치 방식 등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제35조 전자출판물 발행 전, 출판업체는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과 신문출판총서에 무료로 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6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종사자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출판전문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사장, 편집장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하는 재직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사장, 편집장은 반드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조직하는 근무교 육에 참가해야 하며 근무교육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근무할 수 있다.

제37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국가 통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수입관리

제38조 전자출판물 완제품을 수입 할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승인하는 전자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사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9조 전자출판물의 수입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에는 수입 전자출판물의 명칭, 내용 안내, 출판자 명칭, 주소, 수입 수량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2) 주무기관의 심사의견

(3) 신청업체가 수입 전자출판물에 관한 심사 보고서

(4) 수입 전자출판물의 견본 및 필요한 내용 자료

제40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수입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수입을 심사할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총 수량, 구조, 분포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41조 수입 전자출판물의 외부포장에는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고 수입 승인 문서번호 및 중문으로 명기한 출판자 명칭, 주소, 저작권자 명칭, 출판일자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5장 비매품 관리

제42조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할 경우, 반드시 의뢰인 또는 수탁인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에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사용목적, 명칭, 내용, 발송대상, 복제수량, 저장 장치 방식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비매품 내용은 공익 홍보, 기업 기관 업체 업무 홍보, 교류, 상품 소개 등으로 제한하며 가격을 정해서는 안되고 판매 또는 번치판매 되거나 또는 기타 상품과 세트가 되어 판매 되어서는 안 된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위탁 복제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발급하며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4조 전자출판물 비매품 저장 장치의 인쇄표지면 및 해당 장치의 뚜렷한 위치에는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번호는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꺾쇠괄호 안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자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전자출판물 비매품’ 문구이며, 세 번째 부분은 소괄호 안의 연도이고 네 번째 부분은 순서번호이다.

제6장 위탁 복제 관리

제45조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복제업체에 의뢰하여 복제해야 한다.

제46조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할 경우, 반드시 복제위탁서를 사용해야 하며 복제위탁서에 관한 국가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복제위탁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47조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작성한 복제위탁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작성된 복제위탁서를 복제업체에게 반드시 직

접 전달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업체의 복제위탁서를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전자출판물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전자출판물이 복제 완성된 당일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본 업체 및 복제업체가 서명 날인한 복제위탁서 두 번째 페이지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반드시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 네번째 페이지를 2년간 보존해 참고용으로 비치해야 한다.

제49조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가 승인을 받아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취득한 당일부터 90일 안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위탁서를 발급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복제위탁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7장 연간검사

제50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연간검사제도를 실행하며 연간검사는 2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 대해 연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내용에는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등록항목, 설립조건, 출판 경영 상황, 준법 상황, 내부 관리 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51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연간검사 진행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 연간검사 등록표
- (2)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2년간 총괄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는 출판 법규를 수행한 상황, 출판 실적, 자산 변화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2년간 출판된 전자출판물 출판 목록
- (4)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의 사본

제5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연간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해당 검사 연도의 1월 15일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간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 조건, 업무 전개 및 법규 수행 등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연도의 2월 말 전으로 연간검사 업무를 완성하며 연간검사 요구에 부합되는 업체에 대해 등록을 시키고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갱신시킨다.
-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검사 연도의 3월 20일 전으로 연간검사 상황 및 관련 서면 자료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53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 했을 경우, 연간검사를 유예한다.

- (1) 본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 (2) 출판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기한부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중일 경우
 - (3) 심사를 통해 위법 상황을 발견하여 처벌을 가했을 경우
 - (4) 예전에 출판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고도 정돈 개선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여전히 위법 문제가 있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을 경우
- 연간검사의 유예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확정하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동안,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를 독촉 및 지도하여 정돈 개선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연간검사 유예기간 만료 후, 연간검사 요구에 도달한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 대해 등록을 시키고, 여전히 연간검사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 대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의견을 제시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소시키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수속을 밟는다.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서면 재촉 통고에도 여전히 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의견을 제시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소시키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수속을 밟는다.

제5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업체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에 참가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56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통지서를 하달한다.
- (2) 비평을 통보한다.
- (3) 공개적으로 자기비판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4)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5) 전자출판물의 복제 및 발행을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6) 전자출판물을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7) 주취기관, 주무기관에서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를 감독하여 정리 정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법을 어긴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게 하달하며 위법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주취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에 사본을 보낸다. 본 조항에서 열거한 행정조치는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제57조 허가 없이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를 무단으로 설립하고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무단 종사하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 또는 연속형 전자출판물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표준 도서번호를 위조, 사칭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한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반·영상 등 출판업체가 허가 없이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전자출판물을 출판 할 경우,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무단 종사한 경우에 속하며 상기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을 제작, 출판 할 경우
- (2) 타인이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타인에게 본 출판업체의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표준도서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 바코드 및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 할 경우

제59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본 업체의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표준도서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명칭, 주취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인수합병 또는 분립,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 할 경우,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승인 및 등록 변경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2) 승인을 받아 출판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해당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출간기간과 출판범위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 할 시,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3)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규정에 따라 연간출판계획과 중대 주제 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4) 출판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 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본 규정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자출판물을 수입 했을 경우

제61조 전자출판물출판업체가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통계국에서 공동으로 공표한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전자출판물 제작업체가 본 규정 제17조를 위반하고 등록 신고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2)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본 규정 제21조를 위반하고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3)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출판한 전자출판물이 정부의 기술, 품질 기준과 규범화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본 규정 제2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

우

- (4)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을 출판 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관련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와 해외기관이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30조에 따라 주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본 규정 32조에 따라 견본 디스크를 제출하여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6) 전자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본 규정 제41조를 위반했을 경우
- (7)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위탁 복제에 있어서 본 규정 제42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8) 전자출판물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가 본 규정 제4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설립된 복제 업체에 위탁하여 복제 하거나 또는 복제위탁서와 관련된 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9장 부칙

제63조 본 규정은 2008년 4월 15일 부터 시행되며 신문출판총서에서 1997년12월30일 공표한 《전자출판물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기존의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수입활동에 대한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7.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제목	关于《设立外商投资印刷企业暂行规定》的补充规定(一)(第38号)
게재일	2008-11-12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关于〈设立外商投资印刷企业暂行规定〉的补充规定)》은 2008년 8월 28일에 신문출판총서 업무회의와 상무부에서 통과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사장 류빈제(柳斌杰)
상무부 부장 천더밍(陈德铭)

2008년 11월 12일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1)

홍콩, 마카오 지역과 중국 대륙 지역 간의 더욱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촉진하고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중국 대륙 지역에서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보충협약의 5》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보충협약의 5》에 의거,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设立外商投资印刷企业暂行规定)》(신문출판총서, 대무무역경제협력부 령 2002년 제 16호) 중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인쇄 분야에 투자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규정을 내린다.

1.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포장 장식 인쇄품의 인쇄기업을 설립할 시 최저 등록 자본 요구 사항은 중국 대륙 기업과 비교 대조하여 실행한다.
2. 본 규정에서의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와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중에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인쇄 분야에 투자하는 기타 사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8.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관리방법(시행)

제목	书号实名申领管理办法(试行)
게재일	2009-01-07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 기능을 진일보 변환하고 관리 체제를 혁신하며 도서출판 관리를 개선하고 중국 도서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출판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방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제2조 도서번호 관리방법의 개혁과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는 과학적 발전관을 철저히 관철 집행하고 정확한 출판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출판업의 번영과 발전에 유익해야 하고 좋은 도서를 많이 출판하는데 유익해야 하며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문화적 수요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출판관리 업무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키는데 유익해야 하고 거시적인 조절과 자원 통합에 유익해야 하며 도서번호, 바코드, CIP 등 출판 기본 정보의 통합을 점차 실현하여 업계 발전을 위해 서비스해야 한다. 출판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 하는데 유익해야 하고 권리 침해 해적판 활동을 효과적으로 타격해야 하며 도서번호 거래 행위와 ‘한개 번호를 여럿이 사용’ 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

제3조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은 속지 관리 및 주관자가 책임지는 원칙을 실행하여, 출판업체의 주무기관과 주취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문출판총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 중앙출판업체 주무부처와 출판업체의 등급별 관리 방법을 개선하며 직무가 명확하고 운행이 규범화한 도서번호 관리 체계를 형성한다.

제4조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은 출판업체가 도서출판활동 과정에서 원고 실명제에 따라 도서번호를 신청 수령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원고에 따라 도서 하나 당 번호 하나를 발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도서번호는 중국표준도서번호를 가리킨다.

제2장 등급별 관리

제5조 신문출판총서에서 전국 출판업체의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의 출판업체의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발급 및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중앙재경출판업체 주무부처 관할 출판업체가 일정 수량에 도달하고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출판업체 관리에 종사 할 경우, 신문출판총서에서 해당 주무부처에 위탁하여 관할 출판업체의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기타 중앙재경출판업체의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는 주무부처의 지도하에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가 기술적 측면에서 도서번호의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출판업체는 반드시 출판법규에 따라 신고하는 원고 내용, 원고 품질 및 해당 출판활동에 대해 엄격히 점검하며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1. 출판업체는 규정에 따라 원고 ‘3차 심사’ 절차를 완성한 후에야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을 할 수 있다.
2. 중국공산당과 국가 지도자 등과 관련된 중대 소재 작품과 국가 보안, 사회 안정 등과 관련된 중대 주제는 중대 혁명과 중대 역사 소재 작품 관리 방법과 도서 중대 주제 등록 신고 방법을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중대 주제 등록 신고 수속을 이행 한 후에야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을 할 수 있다.
3. 출판업체는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도서번호를 판매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신청 수령 절차

제9조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통과는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며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와 관련된 부서, 업체는 업무 프로세스와 기능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출판업체는 ‘3차 심사’를 완료한 원고에 대해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서번호 신청 수령 관련 정보는 완전성, 진실성,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출판된 후, 출판물 관련 정보를 즉각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부서에 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1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행정부서(또는 중앙출판업체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관할 출판업체의 신청에 대해 근무일 7일 안에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出版管理司)에서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업무를 관리, 감독 하며 문제 발견 시 즉각 바로잡는다.

제13조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통해 도서번호 편성과 바코드 배분 업무를 진행하고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 정보 시스템 및 출판물 정보 데이터를 보호하여 해당 보안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며 바코드 제작, 발급 등 분야에서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과 적용되는 업무 모델을 탐구한다.

제4장 부칙

제14조 출판업체가 도서번호 실명제 신청 수령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1. 허위의 출판 정보를 제공 할 경우
2. 《중국표준도서번호》 표준에 따라 도서번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3. 원고 출판 후, 출판물 정보를 즉각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15조 출판업체가 본 업체 도서번호를 판매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0조와 《도서출판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신문출판총서

2009년 1월 7일

9.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제목	关于《音像制品制作管理规定》的补充规定
게재일	2010-11-23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신문출판총서 령 제47호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령 제47호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关于〈音像制品制作管理规定〉的补充规定)》은 2010년 10월 19일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리우빈지에(柳斌杰)

2010년 11월 23일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관한 보충규정

홍콩, 마카오 지역과 중국 대륙 지역간의 더욱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촉진하고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중국 대륙 지역에서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대륙과 홍콩이 더욱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수립하는데 관한 안배〉 보충협약 7(〈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七)》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가 더욱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수립하는데 관한 안배〉 보충협약 7(〈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补充协议七)》에 의거,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音像制品制作管理规定)》(신문출판총서 령 제3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규정을 내린다.

1.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독자기업,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음반·영상 제품 제작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유효한다.
2. 본 규정에서의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이 더욱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수립하는데 관한 안배(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가 더욱 더 긴밀한 경제 무역 관계를 수립하는데 관한 안배(内地与澳门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중에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음반·영상 제품 제작기업에 투자하는 기타 사항은 《음반·영상 제품 제작관리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10.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제목	出版物市场管理规定(第52号)
게재일	2011-03-25,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출판물시장 관리규정(出版物市场管理规定)》은 2011년 3월 17일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와 상무부에서 통과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서 사장 류빈제(柳斌杰)

상무부 부장 천더밍(陈德铭)

2011년 3월 25일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출판물 발행 활동 및 해당 감독 관리를 규범화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되고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출판물 시장 체계를 건립하며 사회주의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출판관리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출판물 발행활동 및 해당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출판물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반·영상 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발행은 총괄 발행, 도매, 소매 및 임대, 전시 판매 등 활동을 포함한다. 총괄 발행은 유일한 공급업체가 기타 출판물 경영자에게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도매는 공급업체가 기타 출판물 경영자에게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매는 경영자가 직접 소비자를 향해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대는 경영자가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독자에게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시 판매는 주최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출판물 경영자를 조직하여 출판물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 주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정부는 출판물 발행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하며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 모두 허가 없이 출판물 발행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에서 전국의 출판물 발행활동을 감독 관리하며 전국 출판물 발행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의 출판물 발행활동을 감독 관리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물 발행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성급

이하 각 급 정부의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출판물 발행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출판물 발행업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실체에 부합되고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발행업의 사회단체는 해당 정관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지도하에 자율적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제2장 출판물 발행업체의 설립

제6조 출판물 도매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가 출판물 도매 업무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확정된 기업명칭과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2) 출판물 도매 업무에 적응하는 조직기구와 발행인력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1명의 담당자가 중급이상 출판물 발행원 전문 자격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출판물 발행 전문과 관련되는 중급 이상 전문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출판물 도매 업무에 적응하는 설비와 고정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 출판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단일 점포의 영업면적이 50m²이상 이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경영장소를 설치한 업체는 영업면적이 200m² 이상 이어야 한다.
 - (4) 완전한 관리제도와 업계 표준에 부합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5) 최근 3년간 신문출판행정부서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타 엄중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출판물 발행기업이 법에 따라 설립한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지사를 제외하고, 도매 업체는 회사제 법인 이어야 한다.

제7조 출판물 도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가 출판물 도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지역 시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후자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 한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신청자는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각 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자료에는 아래의 서면 자료가 포함된다.

- (1) 신청서에는 업체 기본 상황 및 신청 사항이 명기 되어야 한다.
- (2) 기업 정관
- (3)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증명서
- (4) 경영장소의 상황과 사용권 증명서
- (5) 법정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의 신원증명서
- (6) 책임자의 발행원 전문자격증서 또는 기타 전문기술 자격증명자료

- (7) 기업 정보관리시스템 상황의 증명자료
- (8) 기타 필요한 증명 자료

제8조 출판물 소매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 및 개인이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확정된 명칭과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2) 적어도 1명의 담당자가 초급이상 출판물 발행원 전문 자격 또는 신문출판총서가 인정하는 출판물 발행 전문과 관련되는 초급 이상 전문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고정적인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9조 출판물 소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 및 개인이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정부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 한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 현급 정부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물 경영허가증》를 발급하며 동시에 상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하며, 그중에서 영업면적이 5000m²일 경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신청자는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각 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자료에는 아래의 서면 자료가 포함된다.

- (1) 신청서에는 업체 기본 상황 및 신청 사항이 명기 되어야 한다.
- (2) 경영장소의 사용권 증명서
- (3) 경영자의 신원증명서와 발행원 전문자격증서 또는 기타 전문기술 자격증명자료

제10조 출판물 임대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타 업체 및 개인이 출판물 임대업에 종사하려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안에 영업허가증 사본 및 경영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상황 등 자료를 소지하고 현지 현급 정부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정부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발행활동에 종사하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의 설립을 유폴하며 음반·영상 제품 발행활동에 종사하는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설립을 유폴한다. 그중에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체인경영 업무에 종사하고 체인 점포가 30개를 넘을 경우에는 외국 자본의 지배를 유폴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변칙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기 30개의 체인 점포 관련 규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출판물 총괄 발행, 도매, 소매, 체인경영 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구비해야 할 조건 및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승인 절차는 본 규정 제6조에서 제15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문출판행정부서로부터 승인 서류를 받은 후,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무주무부처에 별도의 신청을 하여 외국인 투자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90일 안에 승인 서류와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外商投资企业

批准证书》를 소지하고 기존 승인 기관인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신청자는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본 규정에 따라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투자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존에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출판물 발행업체가 승인을 받은 경영범위 안에서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 할 경우, 온라인 출판물 발행업무를 시작 한 후 15일 안에 기존 승인기관인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출판물 발행에 종사하는 도서 동호회, 구독자 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물 발행기업은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도서 동호회, 구독자 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설립 후 15일 안에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기존 승인기관인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신고 해야 한다.

제14조 출판물 발행업체는 기존 승인기관인 신문출판행정부서의 관할 행정지역 일정한 장소 및 일정한 시간 안에 일시적 소매점을 설립하여 해당 경영범위 내의 출판물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사전에 소매점 소재지 현금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고 소재지 기타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출판물 총괄 발행업체는 출판물 도매 및 소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출판물 소매업체는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출판물 발행업체가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행지점을 설립할 경우, 설립 계획 중인 지점의 경영범위에 따라 각각 출판물 총괄 발행, 도매, 소매 업체의 설립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업체가 본지 출판물을 발행하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행지점을 설립 할 경우, 출판업체는 반드시 《출판물 경영허가증》 사본 및 지점 설립 주소, 인력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지점 설립 후 15일 안에 지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6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출판물 경영허가증》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인수, 합병, 분립 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기존 승인 기관인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고, 승인 문서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국인 투자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하고 기존 승인 기관인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출판물 발행 활동 관리

제17조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 모두 아래의 출판물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 (1) 《출판관리조례》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지 출판물
- (2) 각종 불법 출판물. 즉,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 인쇄 또는 복제한 출판물, 출판 업체 또는 신문·잡지 명칭을 위조, 사칭하여 출판한 출판물, 불법 수입한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 (3) 타인의 저작권 또는 독점 출판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 (4)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을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출판물

제18조 내부적으로 발행한 출판물은 공개적으로 홍보, 진열, 전시, 판매 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 자료 성격의 출판물은 오로지 해당 계통, 해당 업계 또는 해당 업체 내부에서만 무료로 배포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 모두 이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발행활동 과정에서 공정적이고 합법적이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공급 판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법에 따라 설립된 출판 발행 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야 한다. 수입 출판물 발행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야 한다.
- (2) 출판물 발행 구입 판매 명세서 등 관련 비(非) 재무 어음을 적어도 2년 보존하여 검사사용으로 비치해야 한다.
- (3)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승인 한 경영범위를 벗어나 경영해서는 안 된다.
- (4)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또는 사기성 문자를 포함한 예약 구독 리스트, 광고와 포스터를 붙이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 (5) 출판물 판권 페이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6) 《출판물 경영허가증》은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야 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해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을 펼치는 웹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에 등재한 관련 정보 또는 링크 표지를 공개해야 한다.
- (7)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승인 서류를 수정, 변조,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출판물 발행업체는 전문교육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과 국가에서 확정한 직업 분류 및 출판물 발행원 직업기능기준에 따라 본 업체의 종사자를 조직하여 국가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친 심사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기능평가심사에 참가해야 한다.

제21조 출판업체는 본지 출판물에 대한 총괄 발행권을 갖고 있다.

출판업체는 출판물 총괄 발행권이 없는 업체에게 출판물 총괄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

는 변칙 양도해서는 안 되고, 출판물 도매권이 없는 업체에게 출판물 도매 또는 출판물 도매업무 대행을 위탁해서는 안 되며, 비(非) 출판물 발행업체에게 출판물 발행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출판물을 발행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해야 하며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지도와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발행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출판물 발행을 신청하는 경영주체의 신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바, 경영주체의 영업허가증,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확인하고 해당 사본을 보존하여 비치해야 한다. 해당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을 완비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 발행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각종 불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해야 하며, 또한 소재지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와 전국적인 출판, 발행 산업 협회는 전국적인 출판물 전시판매활동을 신청 주최할 수 있으며, 반드시 6개월 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출판, 발행 산업 협회는 여러 성을 뛰어 넘은 전문적인 출판물 전시 판매 활동을 주최할 수 있다. 시, 현급 신문출판행정부서와 성급 출판,발행 협회는 지역적인 출판물 전시 판매 활동을 주최할 수 있다. 주최기관은 반드시 2개월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4조 초중고 교과서 발행업체는 교과서 발행업무 수요에 적응하는 자금, 조직기관과 인력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문출판총서에서 승인한 교과서 발행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는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되기에 해당 발행업체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구매법(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기타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이든 모두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초중고 교과서 발행 관리방법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25조 어떠한 업체와 개인 모두 본 규정 제22조에서 열거한 출판물의 예약 구독, 저장, 운송, 우송, 배달, 배포, 부가 증정 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 저장, 운송, 배달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신문출판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신문출판 통계관리 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그 어떤 핑계로 통계자료를 제출거부, 지연제출, 허위제출, 거짓제출 및 위조와 수정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 발행업체가 행정허가의 법적 조건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을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에서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장 벌칙

제27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물 발행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발행지점, 출판물 도매시장을 설립하거나 무단으로 전국적인 출판물 전시 판매 활동을 주최하거나 본 조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주최기관이 무단으로 지역적인 또는 여러 성을 뛰어 넘는 전문적인 출판물 전시 판매 활동을 주최 할 경우, 상기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금지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2조에 따라 처벌한다.

신문출판총서에서 수입 금지하는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하는 수입 출판물을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로부터 들여오지 않았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3조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불법 출판물과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을 공개적으로 금지하는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5조에 따라 처벌한다.

금지출판물 또는 불법 출판물을 발행 했을 시, 당사자가 해당 출처에 대해 설명, 지목한 것이 조사·증명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출판물과 불법소득을 압수하고, 기타 행정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29조 본 규정을 위반, 타인의 저작권 또는 독점 출판권을 침해한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법에 따라 심사 결정 되지 못한 초중고 교과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법적 방식으로 확정 되지 않은 업체가 초중고 교과서의 발행업무에 종사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5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출판물 발행업체가 규정에 따라 심사 변경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7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물 경영허가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해당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직접적인 책임자의 출판물 발행원 전문자격 증서를 취소시킨다. 해당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이 취소된 당일부터 10년 안에 발행업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

제3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불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최근 2년간의 출판물 발행 구입 판매 명세서 등 관련 비(非) 재무 어음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 (2)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승인한 경영범위를 벗어나 경영할 경우
- (3)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또는 사기성 문자를 포함한 예약 구독 리스트, 광고와 포스터를 붙이거나 배포할 경우
- (4) 출판물 판권 페이지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 (5)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지 않았거나 웹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에 등재한 관련 정보 또는 링크 표지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 (6)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판매, 대여, 임대, 양도 또는 무단으로 수정, 변조할 경우
- (7) 내부 자료성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또는 내부에서 발행하기로 규정한 출판물을 공개적으로 홍보, 진열, 전시, 판매할 경우
- (8) 총괄 발행권이 없는 업체에게 출판물 총괄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변칙 양도하거나, 출판물 도매권이 없는 업체에게 출판물 도매 또는 출판물 도매업무 대행을 위탁하거나, 비(非) 출판물 발행업체에게 출판물 발행을 위탁할 경우
- (9) 출판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10) 본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11)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34조 본 규정 제22조에서 열거한 출판물을 예약 구독, 저장, 운송, 우송, 배달, 배포, 부가 증정 할 경우, 본 규정 제33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본 규정 제31조를 위반, 통계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출판물 발행기업을 설립 할 경우, 본 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래와 같은 보충규정을 해야 한다.

- (1)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단독 투자, 공동 출자의 방식으로 음반·영상 제품(영화 부가 제품 포함)의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율허한다.
- (2) 같은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체인경영에 종사하는데 대해,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율허 하지만 출자비율이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중에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37조 법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출판물 도매시장을 제외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출판물

도매시장을 더 이상 설립 또는 변칙 설립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경영업체는 출판물 판매 전, 반드시 출판물 견본을 도매시장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검사용으로 제출한 출판물 견본은 반드시 판매하는 출판물과 일치해야 한다.

제38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국적인 체인경영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뛰어 넘은 체인경영을 가리킨다.

제39조 《출판물 경영허가증》 정본, 부분의 양식은 신문출판총서에서 규정하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40조 본 규정은 공포일 부터 시행되며, 이전 신문출판총서와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出版物市场管理规定)》, 《음반·영상 제품 도매, 소매, 임대 관리방법(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管理办法)》,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外商投资图书、报纸、期刊分销企业管理办法)》과 《중외 합작 음반·영상 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中外合作音像制品分销企业管理办法)》 및 관련 보충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 시행 전 본 규정과 일치 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

11.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제목	国务院关于修改〈音像制品管理条例〉的决定(第595号)
게재일	2001-12-25, 2011-03-19, 2013-12-07, 2016-02-06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출판정책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은 2011년 3월 16일 국무원 제14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3월 19일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41호로 발표, 2011년 3월 19일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3년 12월 7일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2016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령 제666호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3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음반·영상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영상 업계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콤팩트디스크(CD)와 비디오콤팩트디스크(VCD) 등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대여 등 경영활동에 적용한다.

음반·영상 제품을 라디오/TV방송에서 사용할 경우 방송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른다.

제3조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대여 등 경영활동은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윤리, 과학기술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음반·영상 제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지 못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
- (3)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며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4) 민족의 원한 및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미풍양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邪教)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4조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처는 전국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와 대여를 감독 관리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국무원의 규정과 직무 분업에 따라 관련 음반·영상 제품의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출판관리를 책임지는 행정주무부처(이하 ‘출판행정주무부처’라고 약칭)는 해당 행정지역의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와 대여를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관련 음반·영상 제품의 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5조 국가는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에 대하여 승인제도를 실행한다. 임의의 업체나 개인은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발부한 허가증과 승인서를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음반·영상 업계의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전국의 음반·영상 출판업체와 음반·영상복제업체의 전체 수량, 분포 및 구조를 확정한다.

제7조 음반·영상 제품 경영활동의 감독 관리부서 및 해당 관계자는 음반·영상 제품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 또는 변칙 종사할 수 없고 음반·영상 제품 경영업체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 또는 변칙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출판

제8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상호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인정하는 주최기관 및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직기구와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조건을 갖춘 음반·영상 출판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 (5)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자금, 장비와 근무 장소가 있어야 한다.
-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설립 신청을 심사 허가할 때 상기 조항에 명기한 조건 외에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총 수량, 분포 및 구조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설립을 신청할 때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허가를 취득한 후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신청 접수 일부터 6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음반·영상 제품 출판 허가증》을 발부하고 신청인은 《음반·영상 제품 출판 허가증》을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법규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기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한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상호와 주소
- (2)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주최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의 명칭, 주소
- (3)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문서
- (4)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자금출처와 금액

제10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상호, 주관업체 또는 주관기관, 경영범위 또는 기타 음반·영상 출판업체를 인수합병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영상 출판업체를 설립할 경우 본 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하고 원 등록기관인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진행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출판경영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출판업체는 원 등록기관인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수속을 진행하고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11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연간출판계획과 국가안보, 사회 안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중요한 주제로 제작된 음반·영상제품은 출판 전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출판하지 못한다.

제12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출판하는 음반·영상 제품 및 포장에는 선명한 위치에 출판업체 상호와 주소, 음반·영상 제품 출판번호, 출판시간, 저작권자 등 사항을 표기하고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경우 수입 승인문서번호도 명시해야 한다.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과 국무원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무상으로 샘플을 제공한다.

제13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상호를 임대, 대여, 판매 또는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출판번호를 판매 또는 기타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임의의 업체와 개인은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상호를 구매, 대여, 차용,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출판번호를 구매 또는 위조하는 방법으로 음반·영상제품 출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도서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전자출판물 출판사는 본 출판물과 세트가 아닌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단,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본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수 있고 음반·영상 출판업체를 참조하여 관련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5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또는 외국의 조직, 개인과 협력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제정한다.

제16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편집책임제를 실행함으로써 음반·영상 제품의 내용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17조 음반·영상 출판업체 외의 업체에서 설립한 독립적으로 음반·영상 제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하 ‘음반·영상 제작업체’로 약함)의 음반·영상 제품 제작 업무 수행 신청은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신청 승인을 내린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신청 접수 일부터 6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승인을 한 경우 《음반·영상제품 제작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각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한다. 라디오방송과 TV 방송 콘텐츠 제작을 경영하는 업체의 설립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다.

(1)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상호 및 주소

(2)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증명문서

(3)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자금출처와 금액

음반·영상 제작 업무 수행 신청을 승인할 때 상기 조항에 명기된 조건 외에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총 수량, 분포 및 구조를 감안한다.

제18조 음반·영상 제작업체의 상호, 경영범위 또는 기타 음반·영상 제작업체를 인수합병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영상 제작업체를 설립할 경우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한다.

음반·영상 제작업체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제작경영활동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음반·영상제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에 의뢰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할 수 없다.

음반·영상 제작업체에서 음반·영상 제품 제작 의뢰를 받았을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을 의뢰한 출판업체와 제작의뢰 계약서를 체결하고 제작의뢰 출판업체의 《음반·영상 제품 출판 허가증》 또는 해당 출판물의 증명서류 및 제작의뢰 출판업체의 회사 도장이 날인된 음반·영상제품 제작의뢰서를 확인한다.

음반·영상 제작업체는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할 수 없다.

제3장 복제

제20조 음반·영상 제품 복제 업무를 수행하고자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

다.

- (1) 음반·영상 복제업체의 상호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3)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조직기구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시키는 자금, 장비와 복제 장소가 있어야 한다.
-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음반·영상 복제 업무 수행 신청 심사 허가할 때 상기 조항에 명기된 조건 외에 음반·영상 복제업체의 총 수량, 분포 및 구조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21조 음반·영상 복제 업무를 수행하고자 신청할 때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신청 승인을 내린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신청 접수 일부터 2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복제 경영허가증(複制經營許可證)》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1) 음반·영상 복제업체의 상호 및 주소
- (2) 음반·영상 복제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 (3) 음반·영상 복제업체의 자금출처와 금액

제22조 음반·영상 복제업체의 경영범위 또는 기타 음반·영상 복제업체를 인수합병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영상 복제업체를 설립할 경우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한다.

음반·영상 복제업체가 상호,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복제 경영활동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3조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음반·영상 제품 복제 의뢰를 받았을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제를 의뢰한 출판업체와 복제의뢰 계약서를 체결하고 복제의뢰 출판업체의 《음반·영상 제품 출판허가증》, 영업허가증 사본, 의뢰업체의 회사도장이 날인된 음반·영상 제품 복제의뢰서 및 출판업체로부터 취득한 위임서를 확인한다. 복제의뢰를 받은 음반·영상 제품이 비매품일 경우 의뢰업체의 신분증명과 의뢰업체에서 제출하는 음반·영상제품 비매품 복제의뢰서를 확인해야 한다.

음반·영상 복제업체는 음반·영상 제품 복제작업 완료 후 2년간 의뢰계약서와 복제한 음반·영상제품의 샘플 및 기 확인한 관련 증명서류의 부분을 보관하고 향후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4조 음반·영상 복제업체는 음반·영상 출판자격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의 의뢰를 받아 영업성 음반·영상제품을 복제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음반·영상제품을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음반·영상제품을 도매, 소매할 수 없다.

제25조 콤팩트디스크(CD)를 복제하는 음반·영상 복제업체는 콤팩트디스크를 복제할 때 반드시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허가한 레이저 디지털 저장디스크 소스 식별코드가 식각되어 있는 사출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음반·영상 복제업체가 해외 음반·영상 제품 복제를 의뢰받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법규에 따라 저작권자의 위임장을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 제출하여 등록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복제한 음반·영상제품은 전부 해외로 반출해야 하고 국내에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수입

제27조 음반·영상제품의 완성품 수입 업무는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음반·영상 제품 완성품 수입경영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의 업체나 개인은 음반·영상 제품 완성품 수입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28조 출판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 및 도매, 소매, 대여 등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완성품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신청하여 내용에 대한 심사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음반·영상 제품 내용심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승인서를 발급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입한 음반·영상제품을 출판에 사용하는 출판업체,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 업무를 경영하는 업체는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제29조 출판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의 해당 저작권은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하여 등록수속을 진행한다.

제30조 연구, 교학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은 음반·영상 제품 완제품 수입 업무를 경영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람/전시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허가를 득한 후 세관에서 임시 수입통관수속을 진행한다.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입한 음반·영상 제품은 영업성 복제, 도매, 소매, 대여 및 방영할 수 없다.

제5장 도매, 소매 및 대여

제31조 음반·영상 제품 도매, 소매 업무 수행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음반·영상 제품 도매, 소매업체의 상호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3)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하는 조직기구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를 만족하는 자금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
-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 음반·영상제품 도매 업무 수행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음반·영상제품 소매 업무 수행을 신청할 경우 현급 지방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심사허가 신청을 제출한다.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한다.

《출판물 경영허가증》에는 음반·영상 제품 경영활동의 종류를 명시한다.

제33조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업체의 상호, 경영범위 또는 기타 음반·영상 제품 도매/소매업체를 인수합병 또는 합병, 분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영상 제품 도매/소매업체를 설립할 경우 본 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수속을 진행한다.

음반·영상 제품 도매/소매업체가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음반·영상 제품 소매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범위,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원 허가기관인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34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업체에서 출판하는 음반·영상 제품을 도매, 소매할 수 있다. 본 업체에서 출판하지 않은 음반·영상 제품을 도매/소매할 경우 본 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35조 국가는 음반·영상 제품 발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제36조 음반·영상 제품 도매업체와 음반·영상 제품을 소매, 대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는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출판하지 않은 음반·영상 제품 또는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복제하지 않은 음반·영상 제품을 경영할 수 없고 공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음반·영상 제품을 경영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반·영상 제품을 경영할 수 없다.

제6장 벌칙

제37조 출판행정 주무부처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처 및 해당 관계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의 허가증, 승인 서류 취득을 승인했거나 또는 감독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검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담당자는 법규에 따라 강등처분으로부터 해고처분까지 내려진다.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일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목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38조 음반·영상 제품 경영활동 감독 관리부처의 담당자는 음반·영상 제품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 또는 변칙 종사할 경우, 또는 음반·영상제품 경영업체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 또는 변칙 참여할 경우 법에 따라 해직, 해고처분을 내린다.
- 음반·영상 제품 경영활동의 감독 관리부처가 상기 행위가 있을 경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관계자를 상기 규정대로 처벌한다.
- 제39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반·영상 제품 출판, 수입업체를 설립했거나 또는 무단으로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업무 또는 수입, 도매, 소매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 공상행정관리부처는 법적 직권에 따라 검거하며 형법의 불법경영 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는 사건은 불법경영을 진행한 음반·영상 제품과 불법소득 및 불법활동에 사용된 전용도구, 장비를 몰수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0조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을 담은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 또는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을 담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음반·영상제품을 제작, 복제, 도매, 소매, 대여, 방영할 경우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는 사건은 출판행정 주무부처,公安부처에서 각 자의 직권에 근거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고 정리정돈을 명령하며 음반·영상제품과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제41조 음반·영상 제품을 밀수할 경우 형법 밀수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는 사건은 세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 제42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는 위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경영을 진행한 음반·영상 제품과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한다.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고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기타 업체, 개인에게 본 업체의 상호를 임대, 대여, 판매 또는 임의의 형식으로 양도하고 본 업체의 출판번호를 판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 (2)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음반·영상 제품 제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의뢰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였거나 또는 《복제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에 의뢰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하였을 경우
 - (3)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반·영상 제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 (4) 음반·영상 제작업체,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본 조례의 규정대로 음반·영상 출판업체의 의뢰서,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 (5)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하였거나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영업성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하였거나 일방적으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하였을 경우

제43조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또는 외국 조직, 개인과 합작하여 제작한 음반·영상제품,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의뢰를 받아 복제한 해외 음반·영상 제품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 허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복제한 해외 음반·영상제품을 전부 해외로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경영한 음반·영상 제품과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하며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44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에서 연간 출판계획과 국가안보, 사회 안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2)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제작, 복제, 도매, 소매업체의 상호, 주소, 법적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경영범위 등이 변경되었지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 신고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 (3)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출판한 음반·영상 제품 및 포장의 선명한 위치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 (4)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샘플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5)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향후 조사 대비용 서류를 남기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 (6) 콤팩트디스크 복제업무를 경영하는 음반·영상 복제업체에서 콤팩트디스크를 복제할 때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허가한 레이저 디지털 저장디스크 소스 식별코드가 식각되어 있는 사출금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45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는 불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불법 경영 음반·영상제품과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한다.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고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음반·영상 출판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출판한 음반·영상제품 또는 음반·영상 복제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복제한 음반·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방영할 경우
- (2)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음반·영상제품을 도매, 소

- 매, 대여 또는 방영할 경우
- (3) 연구, 교학참고용 또는 전람/전시용 수입 음반·영상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또는 방영할 경우

제4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관련 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 말소 일부터 10년 내에 음반·영상제품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음반·영상제품의 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허가증 말소 일부터 10년 내에 음반·영상 제품 소매업을 경영할 수 없다.

제47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처벌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결정과 과태료 징수를 분리하고 징수한 과태료는 반드시 국고에 귀납되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48조 본 조례 제 35조를 제외하고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등 경영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49조 본 조례에 근거하여 발부한 허가증은 법정표준에 따라 원가 및 비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외 그 어떤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50조 본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8월 25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12. 출판관리조례

제목	国务院关于修改出版管理条例的决定(第594号)
제재일	2001-12-25, 2011-03-19, 2013-07-18, 2014-07-29, 2016-02-06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출판정책

《〈출판관리조례〉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修改〈出版管理条例〉的决定)》는 2011년 3월 16일 국무원 제14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3월 19일

출판관리조례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43호 발표, 2011년 3월 19일 《〈출판 관리 조례〉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594호)에 따라 1차 수정, 2013년 7월 18일 《일부 행정 법규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638호)에 따라 2차 수정, 2014년 7월 29일 《일부 행정 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 령 제653호)에 따라 3차 수정, 2016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령 제666호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4차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출판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출판산업과 출판사업을 발전·번영하고, 법에 의거해 국민의 출판 자유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출판 활동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출판 활동은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을 뜻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출판물은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반·영상제품, 전자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출판 활동은 반드시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한 서비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및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가지 대표’의 지도사상을 고수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 집행하며 민족의 자질을 향상하고,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에 유익한 과학 기술과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축적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선양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국민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4조 출판 활동은 사회적 효과를 우선시하되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잘 접목시켜야 한

다.

제5조 국민은 법에 근거해 출판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고, 각급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은 출판 자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기타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중국 전역의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처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관련된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의 각급 정부가 출판 관리를 책임지는 행정 부처(이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된 출판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불법 혐의 증거 획득 및 제보에 근거해 불법으로 출판물을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등 활동에 종사하는 혐의 행위를 검거·처벌할 때 불법 혐의 활동과 관련된 물품과 영업장소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 활동과 관련된 물품임이 증명될 경우 차압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제8조 출판 업계의 사회단체는 그 규정에 의거하여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지도에 따라 자율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제2장 출판기관의 설립과 관리

제9조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음반·영상제품, 전자 출판물 등은 출판기관이 출판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출판기관은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도서출판사, 음반·영상출판사, 전자 출판물 출판사 등을 포함한다.
신문사 및 정기간행물 출판사의 설립 없이 법인이 출판한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그 설립된 신문편집부 및 정기간행물 편집부를 출판기관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중국 전역 출판기관의 총 수량, 구조, 배치에 대한 계획을 확립하고, 출판산업과 출판사업의 발전을 지도하고 조율한다.

제11조 출판업체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출판업체의 상호와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처에서 인정하는 주최기관 및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과 고정된 업무 장소가 있어야 한다.
- (5) 경영 범위의 수요에 적응하는 조직 기관과 국가가 규정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편집·출판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판기관의 설립 승인은 상기 조항에서 열거하는 조건 이외에 출판기관의 총수, 규모, 배치에 관한 국가의 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출판기관의 설립은 그 주최 기관이 소재지인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심사·승인을 신청한다. 설립할 출판기관이 사업기관이라면 기관 편성 승인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출판기관 설립 신청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1) 출판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출판기관의 주최 기관 및 그 주무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3) 출판기관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주소, 자격 증명 문서
- (4) 출판기관의 자금 출처 및 액수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또는 신문사 편집부, 정기간행물 편집부 설립 시, 설립 신청서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명칭, 간행 기간, 판형 또는 도서 크기, 인쇄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는 출판기관의 정관과 출판기관의 설립 주최 기관 및 그 주무 기관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출판기관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주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출판기관을 설립하는 주최 기관은 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하고 출판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등록 관련 사항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제정한다.

출판기관은 출판허가증을 수령한 후, 사업기관법인에 속하는 기관이라면 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사업기관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고, 법에 의거하여 사업기관법인증서를 수령한다. 기업법인에 속하는 기관이라면 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고, 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제16조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 도서 출판사, 음반·영상 출판사와 전자 출판물 출판사 등은 법인의 조건을 갖추고 심사·승인·등록을 거쳐 법인 자격을 획득하고, 그 모든 법인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단독 부담해야 한다.

본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기관의 신문 편집부, 정기간행물 편집부가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해당 주최 기관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17조 출판기관이 명칭, 주최 기관 또는 주무 기관, 업무 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리하거나, 지점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신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거나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본 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기관이 사업기관법인에 속한다면 승인서를 소지하고 사업기관등록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법인에 속한다면 승인서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처를 방문하여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상기 변경 사항 외의 기타 변경 사항은 출판기관이 주최 기관 및 주무 기관의 심사·동의를 거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고,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한다. 출판기관이 사업기관법인에 속한다면 승인서를 소지하고 사업기관등록관리기관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법인이라면 승인서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등록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출판기관이 출판 활동을 중단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등록하고 그 이유와 기한을 설명해야 한다. 출판기관의 출판활동 중단기간은 18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출판기관이 출판활동을 종료할 경우, 주최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무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주최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밟으며 이를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한다. 출판기관이 사업기관법인이라면 승인서를 소지하고 사업기관 등록관리기관을 방문하여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업법인에 속하는 출판기관이라면 승인서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9조 도서 출판사, 음반·영상 출판사, 전자 출판물 출판사가 등록일로부터 180일 내에 출판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신문사, 정기간행물 출판사가 등록일로부터 90일 내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등록한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등록을 말소시키고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신청을 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출판기관은 기존에 등록한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도서 출판사, 음반·영상 출판사, 전자 출판물 출판사의 연도 출판 계획이 국가 안보, 사회 안전 등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된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승인을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중요한 프로젝트와 관련될 경우 출판 전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출판할 수 없다. 세부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제정한다.

정기간행물 출판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상기 조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출판기관은 자사의 명칭, 도서 번호, 간행물 번호 또는 출판물 번호, 인쇄 레이아웃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안 되며 자사의 명칭, 간행물 번호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출판기관 및 종업원은 출판활동을 이용하여 기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출판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무료로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출판문의 출판

제23조 국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에 국가 사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 사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염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과학 연구, 문학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한 자신의 성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합법적인 출판물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출판물의 출판을 불법으로 간섭, 제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출판기관은 편집책임제를 실시하여 출판물에 게재된 내용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됨을 보장한다.

제25조 어떠한 출판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
- (3)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4) 민족의 원한 및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미풍양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
- (7) 음란 행위, 도박, 폭력 또는 범죄를 중용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에 해가 되는 내용
- (10)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와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내용

제26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은 미성년자들의 사회 공중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와 불법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포, 참혹한 내용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가 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공정하여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출판기관은 공개적으로 시정하고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법에 근거해 민사 책임을 진다.

신문, 정기간행물이 발표한 작품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공정하여 국민, 법인, 기타 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출판기관에 정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출판기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출판될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를 거부했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출판물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자, 출판인, 인쇄인 또는 복제자,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 도서번호, 간행물 번호 또는 출판번호, CIP(cataloguing in publication)데이터, 출판일자, 간행물 기간 및 기타 관련 사항이 명기 되어야 한다.

출판물의 규격, 판형, 인쇄 레이아웃, 제본, 감수 등은 반드시 국가 표준 및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출판물의 사용 언어문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규정과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출판기관의 명칭 또는 신문,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출판물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초중고 교과서는 국무원 교육행정 주무부처가 심사·결정하며, 해당 출판, 발행 기관은 교과서 출판, 발행업무에 필요한 자금, 조직기구와 인력 등 여건을 구비하여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승인하는 교과서 출판, 발행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의 구매범위에 채택된 초중고 교과서는 발행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기타 그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초중고 교과서의 출판, 발행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및 발행

제31조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허가를 받아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처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한 후에야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허가를 받고 관련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를 인쇄해서는 안 되며, 음반·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출판기관은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를 의뢰할 수 없다.

출판기관이 인쇄 또는 복제 기관에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를 의뢰할 경우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출판물 인쇄 또는 복제 규정에 부합되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에 근거해 인쇄 또는 복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쇄 또는 복제 기관은 비(非) 출판기관 또는 개인이 의뢰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의 인쇄 또는 음반·영상제품, 전자 출판물의 복제를 수락해서는 안 되며 일방적으로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를 인쇄 발행하거나 음반·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을 복제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인쇄 또는 복제기관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해외 출판물의 인쇄 및 복제 업무를 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인쇄 또는 복제된 해외 출판물은 반드시 모두 해외로 반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의뢰한 인쇄 또는 복제 출판물의 내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은 저작권 위임장을 소지하고, 저작권 행정관리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인쇄 또는 복제 기관은 심사에 대비해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 수락한 출판물 샘플 1부를 보관해야 한다.

제35조 출판물 도매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승인을 받아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출판물 소매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현급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심사승인을 받아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출판물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사업자는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비로소 출판물 발행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36조 인터넷 등 정보 온라인을 통해 출판물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사업자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온라인거래플랫폼 제공업체는 마땅히 온라인거래플랫폼을 통해 출판물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영주체 신분에 대해 심사하고 《출판물경영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제37조 출판물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사업자가 《출판물 경영허가증》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인수, 합병, 분리 시에는 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물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사업자가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승인을 내준 기존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38조 출판기관은 해당 출판기관이 출판하는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고, 기타 출판기관이 출판하는 출판물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중국정부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전자 출판물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40조 인쇄 또는 복제 기관, 발행 기관 또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 발행해서는 안 된다.

- (1)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 내용을 포함한 경우
- (2) 불법으로 수입된 경우
- (3) 출판기관의 명칭 또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 (4) 출판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5) 초중고 교과서가 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 하지 않은 경우
- (6)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제5장 출판물의 수입

제41조 출판물 수입업무는 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에서 경영하며, 기타 기

관과 개인은 출판물 수입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42조 출판물 수입경영업체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의 명칭 및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국무원 출판행정주무부처에서 인정하는 주최기관 및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수입출판물 내용에 대한 심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 (5) 출판물 수입업무에 적용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 (6)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 (7) 기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 출판물 수입경영업체 설립 시,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거쳐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심사 발급하는 출판물 수입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법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업체 설립 시, 또한 대외무역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제44조 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명칭, 업무범위, 자본구조, 주최기관이나 주무기관을 변경하고 합병 또는 분리, 지사를 설립할 때는 마땅히 본 조례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수속을 밟은 후 승인서를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해당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5조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의 수입출판물에는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는 자체의 수입출판물에 대한 내용심사를 책임진다. 성급 이상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의 수입출판물에 대해 내용심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해당 수입출판물의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내용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성급 이상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내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의 청구에 응해 해당 수입출판물의 내용을 심사하고 국무원 가격주무부처에서 승인한 표준에 따라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특정 출판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46조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는 출판물 수입 전에 수입예정인 출판물 목록을 성급 이상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성급 이상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수입금지 또는 수입 일시 중단된 출판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시에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에 통보하고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금지 또는 수입 일시 중단된 출판물에 대해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는 수입해서는 안 되고 세관도 통관시켜서는 안 된다.

출판물 수입등록의 세부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제정한다.

제47조 수입 출판물을 발행 할 경우, 반드시 법에 근거해 설립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에서 구입

해야 한다.

제48조 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국내에서 해외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는 그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해외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다.

상기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하는 해외 출판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수속을 해야 한다.

제6장 감독과 관리

제49조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 출판업체의 출판행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판업체의 주취기관 및 주무기관은 소속 출판업체의 출판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며 출판행정 주무부처를 협조하여 소속 출판업체의 각종 관리 규정 시행을 독촉해야 한다.

출판업체와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는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출판활동과 출판물 수입활동 상황을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50조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이행한다.

- (1) 출판물의 출판, 인쇄, 복제, 발행, 수입업체에 대한 업계의 감독관리, 그리고 관리 진입과 퇴출을 시행한다.
- (2) 출판활동에 대해 감독관리하고 본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검거한다.
- (3) 출판물 내용과 품질을 감독 관리한다.
- (4)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업 종사자를 관리한다.

제51조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관련 규정과 표준에 따라 출판물의 내용, 편집 교정, 인쇄 또는 복제, 장정 디자인 등 분야의 품질을 감독 확인한다.

제52조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출판업체 종합평가방법을 제정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분류하여 시행한다.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과 수입경영업체가 더 이상 행정승인 법정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만료 시까지 여전히 시정하지 않으면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행정승인을 취소한다.

제53조 국가는 출판업체에서 출판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직업자격제도를 시행한다. 출판전문 기술인력은 국가의 전문기술 인력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 사회보장 주무부처,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공동 제정한다.

제7장 보장과 장려

제54조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해 출판산업과 출판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촉진한다.

제55조 국가는 다음과 같이 우수하고 중요한 출판물의 출판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물
- (2)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선양하는데 있어서 국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와 민족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사회공중도덕, 직업윤리, 가정의 미덕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는 출판물
- (3)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제문화교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물
- (4) 문화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새로운 과학문화성과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는 출판물
- (5) 농업, 농촌과 농민에 대한 서비스, 대중문화 서비스 촉진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출판물
- (6) 기타 사상적, 과학적 또는 문화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출판물

제56조 국가는 교과서의 출판 및 발행을 보장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언어·문자 출판물과 점자 출판물의 출판 및 발행을 지원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변방지역, 경제 저개발지역 및 농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제57조 신문, 정기간행물을 우체국을 통해 발행할 경우, 우체국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발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출판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체는 출판물의 운송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8조 국가는 출판산업과 출판사업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한 기관과 개인에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59조 현금 이상 각급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출판물의 출판 및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을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저지,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해 제지해야 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60조 출판행정 주무부처 또는 기타 관련 부처의 관계자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의 허가증, 승인 서류 취득을 승인했거나, 감독·관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검거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직에서 해고 처분까지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일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기타 죄목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1조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기관이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립됐거나

또는 출판물의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업무에 승인 없이 임의로 종사하고, 출판기관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위조하거나 사칭하여 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 및 공상행정 관리부처가 법정 직권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리며, 불법 경영 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판물과 불법 소득 및 불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기자재와 장비를 몰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법에 근거해 민사 책임을 진다.

제6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형법에 저촉될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일정 기간 동안 정리하도록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출판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기존의 증명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본 조례 제 25조, 26조의 금지 내용이 들어간 출판물을 출판, 수입하는 경우
- (2) 출판물에 본 조례 제25조, 26조의 금지 내용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 발행하는 경우
- (3) 타인의 출판물에 본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 내용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자사의 명칭, 책자 번호, 간행물번호, 인쇄 번호, 편성 형식을 판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자사의 명칭과 간행물 번호를 임대하는 경우.

제63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불법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판물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기존의 증명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수입 금지하는 출판물을 수입, 인쇄 또는 복제, 발행하는 경우
- (2) 밀수한 해외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경우
- (3) 발행한 수입출판물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에서 구입한 출판물이 아닌 경우

제64조 출판물을 밀수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이 세관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내린다.

제6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출판행정부처에서 출판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

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기존의 증명 발급 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출판업체가 출판물의 인쇄 또는 복제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에 의뢰하여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경우
- (2) 인쇄 또는 복제 업체가 인쇄 또는 복제 승인을 받지 않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경우
- (3) 인쇄 또는 복제 업체가 비(非)출판업체와 개인의 의뢰를 받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경우
- (4) 인쇄 또는 복제 업체가 법정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하는 경우, 인쇄 또는 복제한 해외출판물을 모두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은 경우
- (5) 인쇄 또는 복제 업체, 발행업체 또는 개인사업자가 출판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지 않고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 발행하는 경우
- (6) 인쇄 또는 복제 업체, 발행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가 출판기관의 명칭 또는 신문,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 발행하는 경우
- (7) 출판, 인쇄, 발행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심사 결정하지 않은 초중고 교과서를 출판, 인쇄, 발행하거나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기관이 초중고 교과서의 출판,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66조 출판업체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경영 출판물,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 액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경영 액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기존의 증명 발급 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출판업체의 명칭, 도서번호, 간행물 번호, 출판 번호, 인쇄 레이아웃을 판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자사의 명칭, 간행물 번호를 임대하는 행위
- (2) 출판활동을 이용하여 기타 부정 수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67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행정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기존의 증명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출판기관이 명칭, 주최 기관 또는 주무 기관, 업무 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리하거나, 새로운 신문,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거나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출판기관이 기타 사항을 변경할 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가서 심사·승인 및 변경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2) 출판기관이 연도 출판계획 및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등 분야와 관련되는 중대한 과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 출판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의 샘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인쇄 또는 복제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에 대비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 (5) 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 출판물 목록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6) 출판기관이 무단으로 출판활동을 180일 넘게 중단한 경우
- (7) 출판물 발행기관, 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심사 승인 수속을 하지 않는 경우
- (8) 출판물 품질이 관련 규정과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68조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 출판물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불법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판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기존의 증명 발급 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69조 본 조례 제 25조, 26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출판물 또는 기타 불법 출판물을 인쇄 또는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배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불법 출판물의 출처를 설명하고 확인한 후 조사 결과 사실인 경우 출판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기타 행정 처벌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제70조 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증 말소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허가증 말소 당일부터 10년 내에 출판, 인쇄 또는 복제, 수입, 발행 기관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출판 종사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경위가 심각하면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해당 자격증서를 취소시킨다.

제71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벌금 행정 처벌은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수납을 분리하여 시행해야 하며, 수납한 벌금은 반드시 모두 국고에 귀납되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72조 행정 법규에서 음반·영상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복제, 수입, 발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기구 또는 개인 증정 출판물의 접수 관리방법, 해외 출판물의 정기 구독 예약 주문의 관리방법, 온라인 출판승인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가 본 조례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73조 본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7년 1월 2일 국무원이 발표한 《출판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13.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제목	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
게재일	2011-03-25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국가신문출판총서 령 제51호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은 2011년 3월 17일 신문출판총서 제1차 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공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류빈제(柳斌杰)

2011년 3월 25일

수입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제1조 중국 내 업체와 개인,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인의 수입출판물에 대한 독서 수요를 만족시키고 수입출판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와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의 수입출판물 구매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입출판물이란 출판물 수입업체에서 수입하는 외국 및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지역에서 출판한 도서, 신문(기한 경과 신문 포함), 정기 간행물(기한 경과 정기 간행물 포함), 전자출판물 등을 일컫는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출판물 수입업체란 《출판관리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수입업체를 일컫는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고객이란 출판물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출판물을 구매하는 국내 업체와 개인,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 학습, 생활하는 외국인 및 홍콩·마카오·타이완인을 일컫는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구매란 고객이 자사 또는 본인의 독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출판물 수입업체에 수입출판물을 예약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제3조 수입출판물은 한정 발행범위의 출판물과 비한정 발행범위의 출판물 두 가지로 분류하며 중국 정부는 수입출판물의 발행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시행한다.

수입 한정 발행범위의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은 정기 구독자 구매, 분류 공급 발행 방식을 시행한다. 비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은 자발적 정기 구독자 구매와 시장판매의 상호 결합 발행방식을 시행한다. 비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도서, 전자출판물 등은 시장판매 발행방식을 시행한다.

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의 종류는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에서 확정한다.

제4조 정기 구독자의 수입출판물 구매는 출판물 수입업체에서 경영한다. 이중, 정기 구독자 구매 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 업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서 지정한 출판물 수입업체가 경영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기관과 개인은 수입출판물 구입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출판물 수입업체가 비출판물 수입업체에 수입출판물의 대리 구매 또는 대리 배송을 의뢰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신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국내 회사고객의 비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구입은 회사 구입 신청서를 소지하고 직접 신문출판총서에서 승인한 신문, 정기 간행물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구매 수속을 밟는다. 국내 개인 고객은 회사를 통해 구입 수속을 처리한다.

제6조 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와 전자 출판물 구입 국내 회사고객은 신문출판총서에서 확정한다.

제7조 국내 기관고객이 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 등을 구입할 경우 중앙 기관고객은 소속된 중앙 각 부처와 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다. 지방 기관고객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기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동급의 당 위원회 선전부(宣传部)로 발송하여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고객은 기관의 구입 신청서와 관련 승인문서를 소지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지정한 출판물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구입 수속을 처리한다.

국내 기관고객의 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 구입 등은 상응하는 사용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8조 재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 학습, 생활하는 외국인과 홍콩·마카오·타이완인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구입은 기관 구입 신청서 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승인했거나 또는 지정한 신문, 정기 간행물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구입 수속을 처리한다.

제9조 출판물 수입업체는 한정 발행 범위의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 구입 고객에 대한 심사승인을 진행하고 심사승인 후의 고객 명단, 구매예정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의 품목과 수량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출판물 수입업체는 승인 후의 고객 명단 및 수입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전자 출판물의 품목과 수량에 따라 고객에게 공급한다.

제10조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입출판물 구입 업무에 종사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문출판 행정기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 조치를 취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 조 본 방법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신문출판총서가 2004 년 12 월 31 일에 발표한 《수입출판물구매관리방법》은 폐지된다.

14.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제목	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第53号)
게재일	2011-04-06
출처	신문출판총서, 세관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은 2011년 3월 신문출판총서 제1차 업무회의와 세관총서에서 통과되고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세관총서

2011년 4월 6일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음반·영상 제품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음반·영상 제품은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음반, 콤팩트디스크(CD)와 비디오콤팩트디스크(VCD) 등을 가리킨다.

제3조 외국에서 수입한 음반·영상 완제품과 수입되어 출판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음반·영상 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앞 조항에서 말하는 출판은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한 출판도 포함된다.

음반·영상 제품이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에 사용될 경우 방송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음반·영상 제품의 수입 감독 관리와 내용심사 등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본 방법에 따라 해당 행정지역 내의 수입 음반·영상 제품의 감독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각 급 세관은 해당 직무범위 내에서 음반·영상 제품 수입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음반·영상 제품 수입경영활동은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스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윤리, 과학기술

과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음반·영상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완정에 해를 끼치는 내용
- (3)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며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4) 민족의 원한과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邪教) 또는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7조 국가는 음반·영상 제품 수입업체 설립에 대하여 승인제도를 시행한다.

제2장 수입업체

제8조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 업무는 신문출판총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업체가 경영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은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 업무를 경영하지 못한다.

제9조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 경영업체를 설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음반·영상 제품 수입경영업체의 상호와 주소
- (2)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주최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
- (3) 확정된 경영범위
- (4) 수입 음반·영상 제품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능력
- (5) 음반·영상 제품 수입업무 수요를 만족시키는 자금
- (6) 고정적인 영업장소
- (7)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제10조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경영업체를 설립할 때 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하고 심사 허가를 거쳐 신문출판총서로부터 발부하는 음반·영상 제품 수입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해당 허가증을 갖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다.
또한 음반·영상 제품 수입경영업체는 대외무역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도서관, 음반·영상 자료실, 연구개발 기구, 학교 등 기관에서 연구, 교학참고용으로 음반·영상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취득한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경영업체에 의뢰하여 수입 승인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음반·영상 출판업체는 허가 받은 출판업무범위 내에서 수입 음반·영상 제품의 출판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심사

제13조 국가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허가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하여 내용을 심사 받고 심사 통과 후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입할 수 있다.

제14조 신문출판총서는 음반·영상 제품 내용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입 음반·영상 제품의 내용 심사를 책임진다. 위원회 산하에 판공실을 두고 수입 음반·영상 제품 내용 심사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15조 수입 음반·영상 완제품은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경영업체에서 신문출판총서에 신청하고 아래와 같은 문건과 서류를 제출한다.

- (1) 수입 녹음 또는 녹화 제품 심사신청서
- (2) 수입계약서 초안 또는 주문서
- (3) 프로그램 샘플, 중문과 외국어 가사
- (4) 내용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6조 출판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은 신문출판총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문건과 서류를 제출한다.

- (1) 수입 녹음 또는 녹화 제품 심사신청서
- (2) 저작권거래계약서 중문판과 외국어판 초안, 원본저작권 증명서, 저작권 위임장과 국가 판권국의 등록인증 문건
- (3) 프로그램 샘플
- (4) 중문과 외국어 곡목(曲目), 가사 또는 대사 내용
- (5) 내용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7조 전람/전시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은 전시회 행사 주관업체에서 신청하고 음반·영상 제품의 목록과 샘플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내용을 심사 받는다. 세관은 임시 수입화물로 관리한다.

제18조 수입업체는 신문출판총서에 내용 심사용으로 신청/제출한 샘플의 원 명칭과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신문출판총서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 심사신청 접수 일부터 3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승인하는 경우 음반·영상 제품 수입허가증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음반·영상 제품 수입허가증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수정해야 할 경우 재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음반·영상 제품 수입허가증은 1회 통관에 한해 유효하며 누적 사용할 수 없다. 이

중 음반·영상 완제품일 경우 수입허가증은 단 당해에 유효하고 출판용 음반·영상 제품일 경우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4장 수입관리

제20조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 복제, 도매, 소매, 대여와 영업성적인 방영을 하지 못한다.

제21조 임의의 업체와 개인은 연구, 교학참고용 또는 전람/전시용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영업성 복제, 도매, 소매, 대여, 방영을 하지 못한다.

전람/전시용으로 수입된 음반·영상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증정해야 할 경우 판매, 증정 전에 반드시 본 방법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승인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22조 수입업체가 외국 업체와 체결한 음반·영상 제품 수입관련 협의서 또는 계약서는 중국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경우 신문출판총서의 승인 서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단으로 프로그램의 명칭 변경과 내용을 증감할 수 없으며 승인한 프로그램 중문명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 프로그램은 음반·영상 제품 및 포장표면에 중문/외국어 명칭을 표시하고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 할 경우 반드시 음반·영상 제품 및 해당 포장의 선명한 위치에 국가관권국의 등록문서번호와 신문출판총서 수입허가증 번호를 명기하며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할 경우 반드시 관련 프로그램 페이지면에 상기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허가를 받고 출판에 사용되는 수입 음반·영상 제품의 저작권 위임기간 내에 음반·영상 제품 수입경영업체는 해당 음반·영상 완제품을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 수입 음반·영상 제품 출판 시 사용하는 언어/문자는 국가에서 공표한 언어/문자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수입업체는 신문출판총서에서 발부한 음반·영상 제품 수입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음반·영상 제품의 통관수속을 진행한다.

제27조 개인이 음반·영상 제품을 휴대 또는 우편으로 출입국 할 때는 자체 사용 건으로,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하고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수입 장비와 함께 수입되거나 수입 후 장비와 함께 수출되는 기록 O/S, 장비 설명, 전용 S/W 등 내용을 담은 음반·영상 제품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세관에서 수입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 상업송장 등 유효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통관시킨다.

제5장 벌칙

제29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반·영상 완제품 수입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음반·영상 제품관리조례》 제3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현금 이상 신문출판행정부문은 불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경영을 진행한 음반·영상 제품과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한다.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고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1)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출판 할 경우,
- (2) 신문출판총서의 수입허가를 거치지 않은 수입 음반·영상 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또는 방영할 경우,
- (3) 연구, 교학참고용 또는 전람/전시용으로 수입한 음반·영상 제품을 도매, 소매, 대여, 방영할 경우.

제31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수입 음반·영상 제품 출판 시 본 방법에 규정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고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원 증서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32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수입 음반·영상 제품 출판 시 사용하는 언어/문자가 국가에서 공표한 언어/문자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2) 수입 음반·영상 제품 출판 시 본 방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프로그램의 명칭 변경과 내용을 증감할 경우

무단으로 내용을 증감한 결과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한 음반·영상 제품의 내용 중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이 포함될 경우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세관법 및 관련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으로부터 음반·영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전자출판물의 수입도 본 방법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제36조 본 방법은 신문출판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세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7조 본 방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6월 1일 문화부, 세관총서에서 공표한 《음반·영상제품 수입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15. 《중국표준녹음제품코드》 국가표준 시행방법 및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방법》 발행 관련 통지

제목	中国标准录音制品编码国家标准/音像电子出版物专用书号管理办法
게재일	2011-12-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신출정발〔2011〕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⁷⁸⁾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 중국출판그룹(中国出版集团公司), 중국 교육출판 미디어그룹유한공사(中国教育出版传媒集团有限公司), 중국 과학기술 출판 미디어그룹유한공사(中国科技出版传媒集团有限公司), 전국 각 음반·영상·전자 출판, 제작, 복제 및 발행 업체:

중국 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中国标准音像制品编码)(ISRC로 약함, 즉 ‘출판번호’)는 199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음반·영상 출판활동을 규범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음반·영상 저장 매체의 끊임없는 변화, 특히 디지털 압축기술과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해외 업계와의 통합을 위해, 2010년 2월 중국은 신규버전인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中国标准录音制品编码)》 국가 표준을 수정 및 시행하였다. 신규버전ISRC코드는 오로지 녹음 프로그램과 음악 녹화 프로그램(예를 들어 콘서트, 뮤직비디오, 가라오케이 등)에만 사용되고, 제품등록은 싱글등록으로 변경되었으며 영화, 드라마 등 녹화 프로그램은 더 이상 ISRC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음반·영상 제품과 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ISBN)만 사용한다.

신규버전ISRC표준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ISRC코드 및 신규버전ISRC코드가 시행된 후 ISBN의 신청 수령 및 관리 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신문출판총서는 관련 기관과 연합하여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GB/T 133962009) 국가 표준 시행방법》과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방법(音像电子出版物专用书号管理办法)》을 작성했으며, 이를 공표하는 바, 각 관련 기관에서는 집행하기 바란다.

2011년 12월 28일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GB/T 133962009) 국가 표준 시행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GB/T 133962009) 국가표준(이하 ‘신규버전 ISRC표준’으로 약함)의 시행을 추진하고 녹음 제품 및 음악 녹화 제품의 출판 또는 전파를 규범화하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음반·영상산업 관련 표준

78)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 과 해외 등 업계 표준 간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신규버전 ISRC 표준 적용 제품의 범위에는 녹음 제품과 음악 녹화제품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제품은 녹음/녹화 완성된 녹음 또는 음악 녹화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장 장치와는 무관하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녹음 제품은 이미 녹음 가공 완성된 음성 완제품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매개 곡목 편절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음악 녹화 제품은 음성 신호와 영상 신호로 녹음/녹화된 제품을 가리키며, 그중에서 해당 공연성 음악 제품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구성한 것은 음성 신호로서 주로 MTV, MV, 가라오케이, 콘서트 등이 포함된다.
- 제3조 독립적인 사용 가능한 매개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은 반드시 한개 단독의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이하 ‘ISRC코드’로 칭함)가 배분되어야 한다. 해당 코드는 코딩되는 대상만 표시하고 출판물 표지로 할 수 없다.
-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ISRC 표준 시행의 주무부처이며, ISRC 표준의 시행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 센터(이하 ‘중국ISRC센터’로 칭함)를 설립하여 ISRC코드의 등록관리 및 표준 시행의 기술 서비스 기구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며, 중국 판권보호센터에서 이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제2장 등록자

- 제5조 ISRC코드의 등록자는 중국ISRC센터에 신청하여 등록자 코드를 취득한 기구 또는 조직이어야 한다.
등록자는 녹음/녹화하여 완성한 녹음제품과 음악녹화제품에 대해 중국ISRC센터에 ISRC코드를 신청 수령한다.
- 제6조 ISRC코드를 신청하는 등록자는 중국ISRC센터에 다음과 같은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요구에 따라 신청한 등록자 코드 신청표
 - (2)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음반·영상 제품 출판허가증(音像制品出版许可证)》, 《음반·영상 제품 제작허가증(音像制品制作许可证)》 등 자격 증명 서류 사본
 - (3) 기타 관련 증명 자료
- 제7조 중국ISRC센터는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청자료를 받은 당일부터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규정에 부합될 경우, 등록자 코드를 발급하고 공지를 내며, 이와 동시에 중국 ISRC코드 신청 수령 정보 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 및 로그인 도구를 배분한다.
등록자는 ISRC코드 신청 수령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ISRC코드 신청 수령 계정, 비밀번호 및 로그인 도구를 잘 보관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ISRC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등록자 자체로 부담한다.

- 제8조 《중국 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GB/T133961992) 국가표준에 따라 출판자 코드를 이

미 취득한 기구 또는 조직은 기존의 출판자 코드를 등록자 코드로 계속 사용하고 별도로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중국 음반 총공사(中国唱片总公司)는 여전히 A01등록자 코드(출판자 코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제9조 등록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중국ISRC센터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 (1) 업체 명칭
- (2) 업체 주소
- (3) 업무 담당자
- (4) 연락처
- (5) 기타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제3장 ISRC코드 신청 수령

제10조 등록자는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을 녹음/녹화 완료 한 후,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배분 받은 시스템 계정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제출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ISRC코드를 신청하여 취득한다.

제11조 등록자는 작성한 신청 정보와 제출한 제품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은 반드시 작성한 메타데이터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12조 제품의 내용과 판권 위임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 되어야 하며 제품 내용의 위법 또는 판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등록자가 자체로 부담한다.

제13조 등록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출판기구 또는 조직이 업무 수요로 인해 ISRC코드를 신청할 경우, 직접 중국 ISRC센터에 다음과 같은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ISRC코드를 신청 수령할 수 있다.

- (1) 요구에 따라 작성된 진실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제품 메타데이터 정보표
- (2) 규정에 부합되는 제품
- (3) 신청자의 관련 자격 자료 및 법정 대표자 신원증명서류
- (4)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녹음/녹화자 권한 또는 녹음/녹화 권한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증명 서류
- (5) 《음반·영상 제품 관리조례》, 《음반·영상 제품 출판관리규정》 등 법규, 규정 또는 기타 규범적 문서에 따라 취득한 승인 문서
- (6) 기타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

제14조 서면자료를 제공해야 할 경우, 중국 ISRC센터 웹사이트에서 통일 제작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제출하는 각종 서면자료는 중국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 증명서와 증명서류가 외국어 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ISRC코드를 신청 수령하는 문서는 국제표준 A4형 297mm×210mm(길이×넓이)종이를 사용해야 한다.

제15조 해외 및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으로부터 수입한 녹음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은 기존에 이미 ISO3901:2001 《정보와 문헌——국제표준 녹음제품 코드(ISRC)》 규범에 부합되는 ISRC코드를 갖고 있을 경우, 중국ISRC센터에 다시 신청 수령 할 필요가 없다. ISRC코드를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갖고 있는 ISRC코드가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ISRC코드를 신청 수령해야 한다.

제4장 ISRC코드 배분

제16조 등록자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ISRC코드 신청을 제출한 당일부터 근무일 7일 안에, 중국 ISRC 센터는 제품의 ISRC코드를 배분해야 한다.

제17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중국ISRC센터는 등록자에게 신청 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자는 근무일 7일 안에 자료를 보충해야 하며 기간 안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된다.

- (1) 제품의 메타데이터 작성이 완전하지 않고 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 (2) 제품의 메타데이터 정보와 제품의 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 (3) 증명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해야 할 경우
- (4) 기타 보충해야 할 상황

신청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한 당일부터 접수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ISRC코드를 배분하지 않는다.

- (1) 신규버전 ISRC코드를 이미 배분했을 경우
- (2) ISRC코드 배분 신청을 한 제품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경우
- (3)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할 경우
- (4) 기타 ISRC코드를 분배하지 않는 상황

제5장 공지와 조회

제19조 제품이 ISRC코드를 배분 받은 후, 중국ISRC센터 웹사이트에 기본 정보가 공지되며,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공지되는 제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명칭
- (2) 언어
- (3) 러닝타임
- (4) 등록자
- (5) 제작자
- (6) 공연자
- (7) ISRC코드
- (8) 기본 설명

제6장 ISRC코드 휴대

- 제20조 출판에 사용되는 녹음 제품과 음악 녹화 제품은 모두 신규버전ISRC표준의 규범 요구에 따라 ISRC코드를 휴대해야 한다.
상기 말하는 출판은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출판을 포함한다.
- 제21조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녹음 및 음악 녹화 제품의 ISRC 코드는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과 대응되어 모든 복제품에 영구적으로 로딩 되어야 하며 컴퓨터 설비를 통해 인식 및 읽기가 가능해야 한다.
- 제22조 ISRC코드는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의 모든 복제품에 명시 되어야 한다.
실물을 저장 자치로 할 경우, ISRC코드는 모든 복제품의 저장 장치 또는 첨부 자료에 명시되어야 한다.
음악 녹화 제품은 복제품 내용 중의 타이틀 위치에 별도로 방송 표시 가능한 상응하는 ISRC코드를 로딩해야 한다.
책, 잡지 등 본 판 출판물과 세트가 되어 출판될 경우, 본지 출판물 또는 해당 첨부된 자료에 관련 ISRC코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첨부자료는 제품 출판 시 동봉되는 자료를 가리키며 프로그램 소개, 가사 삽입 페이지, 전자파일, 제품 문서 속성 등 정보를 포함한다.
- 제23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을 출판할 경우, ISRC번호는 제품 문서의 속성 정보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제24조 본 방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규정에 따라 로딩 및 명시되는 ISRC코드는 뚜렷하고 완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ISRCNF121100721.

제7장 부칙

- 제25조 본 방법 시행 전, 《중국 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GB/T 133961992) 국가표준에 따라 이미 출판 생산 단계에 돌입 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상기 제품이 아직 생산 또는 판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더 이상 생산,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판, 재복제 또는 신판의 음반·영상 제품 중에서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과 관련 될 경우, 모두 반드시 신규버전 ISRC코드를 신청 수령 및 휴대해야 한다.
- 제26조 전자출판물(하드 디스크, 유에스비(usb), 메모리 카드 등 형태로 출판된 이동 저장식 전자출판물을 포함)이 음악 작품과 관련 될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 제27조 본 방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992년 《〈중국 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시행에 관한 신문출판총서의 통지(新闻出版署关于实施〈中国标准音像制品编码〉的通知)》중에 첨부된 《중국 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 관리 임시 시행 방법(中国标准音像制品编码管理暂行办法)》은 동시에 폐지된다.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관리방법》

- 제1조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GB/T133962009) 국가표준이 시행된 이후, 음반·영상제품과 전자출판물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본 방법을 특별 제정한다.
- 제2조 전국의 모든 정식 출판, 발행된 음반·영상 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은 모두 중국 표준 도서번호(이하 ISBN으로 약함)을 출판물 표시로 사용해야 한다. 음반·영상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음반·영상 제품 전용 도서번호이고 전자출판물에 사용되는 것은 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이다. 음반·영상 제품, 전자출판물 저장 장치 또는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반드시 ISBN를 명시해야 한다.
- 제3조 중국 표준 음반·영상 제품 코드 또는 중국 녹음 제품 코드(이하 ISRC로 약함)는 더 이상 음반·영상 제품 출판 번호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음반·영상 제품 전용 도서번호와 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의 사용 범위와 배분 원칙은 《중국 표준 도서번호(中国标准书号)》국가표준(GB/T57952006)과 《중국 표준 도서번호 사용 매뉴얼(中国标准书号使用手册)》의 규정을 참조하여 실행된다.
- 제4조 ISBN의 신청 수령과 심사 발급 원칙은 각 음반·영상, 전자출판업체의 연간 주제 계획을 심사 발급의 의거로 하고 과거 연간 심사 발급 수량을 참고하여 배분 및 심사 발급하는 연간 ISBN한도액을 확정 짓는다. 전년도의 12월에서 해당 연도의 1월까지가 전체 한해 동안 ISBN 심사 발급 취급 기간이다. 연간 주제 계획을 초과했을 경우, 실제 수요에 따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 ISBN의 신청 수령과 심사 발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과 국가기관 재정 출판업체의 ISBN 한도액은 출판업체가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직접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에 가서 신청하며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는 근무일 3일 안에 심사하며 《통지서》를 발급한다.
 - (2) 지방과 군부대 계통 출판업체의 ISBN 한도액은 각 성급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에서 취합 및 심사 후,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에 일괄 신청하며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는 근무일 5일 안에 심사하며 《통지서》를 발급한다.
 - (3) 각 음반·영상·전자출판업체는 주제 3차 심사를 마친 후 《바코드 신청서(条码申请单)》(출판물 정보 리스트 첨부)를 제출하여 ISBN바코드를 신청 수령한다. 각 성급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은 관할 출판업체의 신청 수령 업무를 담당하며 이미 심사 승인 받은 한도액 내에서 관할 출판업체에 본 회차 전용 도서번호 통지서를 하달하며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서 전용 도서번호 수령 수속을 밟는다.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는 중앙 재정 음반·영상·전자출판업체의 신청 수령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 녹음 프로그램과 음악 녹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음반·영상 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에 대해, 반드시 우선 먼저 중국 ISRC센터에 신규버전 ISRC코드 배분 신청을 한 후, 다시 ISBN 배

분 신청을 한다. ISRC의 신청 수령은 ISBN의 신청 수령의 전제 조건이다.

제7조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출판 되는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어 출판 되는 음반·영상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이 녹음제품과 음악 녹화 제품과 관련되어 앞으로 돌아와 ISRC를 신청 수령해야 할 경우, 승인 문서를 소지하고 직접 중국 ISRC센터에 ISRC코드를 신청 수령해야 한다.

제8조 ISBN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문출판총서에 연간 ISBN한도액 신청 또는 ISBN 사항 추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 신청표 (音像电子出版物专用书号申请表)》를 작성하고,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출판계획표 (音像电子出版物出版计划表)》, 《ISBN사용상황 등록표 (ISBN使用情况登记表)》 및 《샘플 제출 리스트》 수령증(관련 양식은 별첨 참고)를 첨부해야 한다. 상기 4가지 양식은 반드시 종이자료(출판업체 직인을 찍은 후)로 제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음반·영상·전자출판물 주제 계획표》, 《ISBN사용상황 등록표》 문서 파일을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의 업무용 이메일 yxdz-chu@126.com에 업로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 (2) 음반·영상 또는 전자출판업체가 아닌 업체가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음반·영상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마찬가지로 ISBN을 신청 수령해야 한다.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국 또는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의 승인 서류를 소지하고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서 ISBN수령 수속을 밟는다.
- (3)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서 연간(또는 추가) ISBN 및 바코드 신청 수속을 밟을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중앙 재경 출판업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에서 하달한 해당 연도 전용 도서번호 한도액 배분 통지서 및 직인을 찍은 바코드 신청서(관련 양식은 별첨을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2. 성급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 관할 출판업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에서 하달한 전용도서번호 한도액 배분 통지서, 성급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에서 하달한 출판업체 해당 회차 도서번호 통지서, 직인을 찍은 바코드 로트 사이즈 신청서(관련 양식은 별첨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는 심사 통과 후, 근무일 5일 안에 이메일 방식으로 각 신청 업체에 음반·영상 제품 또는 전자출판물 전용ISBN(바코드)를 발급한다.

제10조 출판업체가 다른 버전의 음반·영상 제품 또는 전자 출판물을 출판 할 경우, 반드시 상이한 ISBN을 사용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저장 장치 방식이 상이하거나 또는 상이한 포맷으로 출판되는 음반·영상 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은 반드시 상이한 ISBN을 사용해야 한다.
- (2) 세트중의 매개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판매 할 경우, 매개 프로그램은 모두 하나의 ISBN을 배분 받아야 한다.
- (3) 동일 버전 출판물이 상이한 제품 방식이 있고 단독으로 판매 가능할 경우, 매개 출판물

은 모두 하나의 ISBN을 배분 받아야 하며, 상이한 제품 방식 또는 상이한 포맷일 경우, 뒷부분에 괄호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ISBN 978-7117072014(고급 장정), ISBN 9787117071901(보통 장정)이다.

제11조 녹음 제품 또는 음악 녹화 제품과 관련된 재판 또는 재인쇄 되는 음반·영상 제품 또는 전자출판물에 대해, 내용, 저장 장치 방식과 포장에 있어서 전부 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재 신청이 필요 없이 기존의 ISBN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신문출판총서 바코드센터에서 ISBN(바코드)를 발급 한 후, 출판업체가 주제를 취소했을 경우, 기존 발급한 ISBN은 폐기된다. 출판업체는 이를 다른 출판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각 성급 출판행정부서는 음반·영상 제품과 전자출판물 전용 도서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청 수령과 심사 발급 절차를 규범화 해야 하며 실제와 결부하여 ISBN 심사 발급 방법을 제정하고 ISBN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출판물과 전용 도서번호간의 1대1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제14조 신문출판총서에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출판 통계 월(연)보고서, 음반·영상 제품 복제위탁서 중의 기존의 ‘ISRC’ 항목은 ‘음반·영상ISBN’ 항목으로 대체된다.

제15조 음반·영상 제품과 전자출판업체의 출판자 접두어의 신청 수령 또는 갱신 절차는 변하지 않는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17조 본 방법은 신문출판총서 출판관리사(出版管理司)에서 해석한다.

16.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실시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贯彻实施MPR出版物系列国家标准的通知
게재일	2012-11-21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⁷⁹⁾ 신문출판국, 해방군 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 서 직속 각 기관, 중국출판그룹(中国出版集团公司), 중국 교육출판 미디어그룹(中国教育出版传媒集团公司), 중국 과학기술 출판 미디어그룹(中国科技出版传媒集团公司), 전국 각 신문출판 업체:

2011년 12월 30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과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는 GB/T 27937.1-2011 《MPR출판물 제1부분: MPR코드 코딩 규칙》 등 5가지 국가 표준을 승인 및 발표하였다. 이에 해당 5가지 국가 기준을 귀 기관에 전달하는 바이며, 이를 준수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MPR(Multimedia Print Reader) 출판물, 즉 멀티미디어 인쇄 열람 출판물은 유일한 연관 코드를 기초로 하고, 인쇄 행렬식 바코드를 기계 가독형 부호로 하며, 여러가지 출판 저장 장치와 표현 방식에 대해 통합과 정확한 연관을 지어, 종이 인쇄 저장 장치를 기초로 하는 멀티미디어 복합 디지털 출판 형태의 출판물을 말한다. MPR출판물은 디지털 기술을 전통적 인쇄 기술 지원의 출판 활동에 도입하여 종이 출판물에 오디오 듣기 읽기를 실현하여 독자가 시각, 청각 등 여러 가지 감각기관과 추상적이고 구체화한 다각도로 정보를 취득하길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신기술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 열람, 깊이있는 열람, 다차원적인 열람을 실현 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 시대에 출판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이며 하나의 참신한 출판물 종류이기도 하다. MPR출판물 기술은 코드 용량이 거대하고, 원가가 저렴하며 신뢰성이 강하고 인쇄 제작이 편리한 등 특징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출판과 훌륭한 연결을 이루어 중국의 전통적인 출판 산업이 개혁 업그레이드와 안정적인 전환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PR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해당 산업이 보급되고 응용되는 속도를 빨리 하며, MPR출판물이 하루 빨리 출판산업에 혜택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신문출판총서는 각 출판업체가 《MPR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을 철저히 집행하고 MPR출판 업무를 적극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출판업체가 실천 속에서 탐구해낸 각종 효과적인 MPR출판물 경영 방식을 전체 업계 내에서 홍보 보급하며, 관련 부서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필요한 정책, 비용 지원을 주는 것을 협조한다.
2. 각 성급 신문출판국은 MPR출판물 기술의 응용과 보급 작업을 아주 중요시하고 이를 디지털

79)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출판업무를 진행하고 디지털화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중요한 임무로 다루며 해당 지역 출판업체가 《MPR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종이책 오디오 북의 출판을 규범화하며 해당 지역 출판업체가 《MPR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을 철저히 집행하는 산업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3. 신문출판총서는 《MPR출판물》 계열 국가표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MPR등록센터’를 설립하여, MPR이용자 등록, MPR코드 발급과 사용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출판 응용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결정한다. 해당 센터는 중국 음반·영상 협회에서 구축한다.
4. 각 출판업체는 2012년 12월 30일 전으로 ‘중국 MPR등록센터’ 웹사이트(www.mpreader.org)를 방문하여 온라인 등록을 하도록 한다. 동시에 ‘MPR출판자 등록표’를 다운 및 작성하여 날인후 2012년 12월 30일 전으로 ‘중국 MPR 등록센터’ 준비처에 우편으로 보내도록 한다. 각 출판업체는 온라인 등록 및 서면 신청을 완료 한 후, 해당 업체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무료로 취득하게 된다. 즉 MPR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MPR코드를 신청 수령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MPR관련 자료와 MPR출판 기술 자문 서비스를 취득하게 된다.

신문출판총서

2012년 11월 21일

(중국MPR등록센터 준비처 연락처: 중국 음반·영상 협회(中国音像协会))

주소: 베이징 시청구 렌화즈둥로 102번 텐렌빌딩10층
1006호(北京西城区莲花池东路102号天莲大厦10层1006房间)(100055)

준비처 담당자: 장완징(张传静)

전화번호: 010-65123917

온라인 등록업무 지원 번호: 0755-83597570/7367)

17. 제6차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 조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做好第六轮新闻出版行政审批项目取消调整后续工作的通知[2012]533号
게재일	2012-12-11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

2012년 10월, 국무원은 《제6차 행정심사항목의 취소와 조정에 관한 결정(关于第六轮取消和调整行政审批项目的决定)》을 발표했고 이중 취소되는 신문출판행정심사항목은 4개이고, 하급기관에 이양되는 항목은 5개이다.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의 취소와 조정은 중앙의 관련 정신과 요구를 철저히 집행하고 신문출판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정부기능 전환, 법에 따른 행정, 관리 혁신과 부패 반대 청렴 제창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 행정심사항목의 취소와 조정을 확실히 실현하고 실제 효과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상황 및 후속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국무원 제6차 취소 및 조정된 행정심사항목 중 취소된 4가지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간행물 출판 중간 심사 승인
- (2) 검사 몰수된 불법CD의 생산라인에 대한 처리 심사
- (3) 전자출판물 제작업체가 해외 위탁제작 출판물을 접수하는데 관한 심사 승인
- (4) 명함 인쇄 전문 기업의 설립에 대한 심사 승인

하급 기관에 이양된 5가지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성급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지역을 설립한 시급 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로 이양된다)은 다음과 같다.

- (1) 포장장식 인쇄물과 기타 인쇄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에 대한 심사 승인
- (2) 인쇄업 경영자가 포장장식과 기타 인쇄물 인쇄경영활동을 겸업하는데 관한 심사 승인
- (3) 포장장식 인쇄물과 기타 인쇄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인쇄경영활동(출판물 인쇄를 포함하지 않음)을 변경하는데 관한 심사 승인
- (4) 인쇄업 경영자가 기타 인쇄경영자(출판물 인쇄기업을 포함하지 않음)를 합병하는데 관한 심사 승인
- (5) 인쇄업 경영자가 합병, 분립으로 인해 새로운 인쇄업 경영자(출판물 인쇄기업을 포함하지 않음)을 설립하는데 관한 심사 승인

2. 신문출판총서는 이번에 취소된 신문출판 행정심사항목에 대한 감독관리조치와 하급 기관에 이양된 행정심사항목에 대한 심사 승인방법(별첨 참고)를 각각 연구하여 제정하였고 관련 입법 계획에 의거 이번에 취소 및 하급기관으로 이양되는 심사항목과 관련된 규정과 규범적 문서를 폐기, 수정한다. 그중에서 ‘정기간행물 출판 중간 심사 승인’ 취소에 관련하여, 신문출판총서는 이미 《정기간행물 출판 중간 심사 승인 취소 후속 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取消期刊出版增刊审批后续管理问题的通知)》(신출청발[2012]3호)를 특별히 하달하였다.

3. 본 통지 하달 당일부터 2개월 안에 각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심사항목을 취소하고 하급 기관에 이양하는 후속 감독관리조치와 시행방법을 제정 완료하고 이를 신문출판총서 관련 업무사/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시급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관련 심사제도 및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연결 업무를 잘 진행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시기적절하게 검사 및 지도 감독한다.
4. 각급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인식을 통일하며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행정심사항목이 취소된 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법률 범위 의거가 결여된 행정심사항목을 변칙 설치하는 것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행정심사제도 개혁의 심화와 부패 반대 청렴 제창 건설의 추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권력 행사를 규범화하는 감독규제체제를 수립하고 완벽하게 하며 신문출판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 판공청

2012년 12월 11일

18.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2)

제목	关于《设立外商投资印刷企业暂行规定》的补充规定（二）（第54号）
게재일	2012-12-12
출처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분류	중국 출판정책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设立外商投资印刷企业暂行规定)》에 관한 보충규정(2)

(2012년 12월 12일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령 제54호 발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홍콩, 마카오 지역과 중국 대륙이 보다 긴밀한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들이 중국 대륙 지역에서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보충협약의 9》 및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보충협약의 9》에 의거,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신문출판총서, 대무무역경제협력부 령 제16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규정을 내린다.

1.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첸하이(前海), 형친(橫琴)에서 시범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출판물과 기타 인쇄물의 인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홍콩 또는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지분 비율은 70%를 넘지 않는다.
2. 본 규정에서의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는 각각 《중국 대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와 《중국 대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중에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홍콩, 마카오 서비스제공자가 중국 대륙에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인쇄 분야에 투자하는 기타 사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19.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2014)

제목	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
게재일	2013-12-27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1호

《신문출판업 표준화 관리방법(新闻出版行业标准化管理办法)》은 2013년 12월 4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2013년 12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문출판업 기술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신문출판업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신문출판업 표준화 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는 국가표준화전략을 전반적으로 구체화하고, 신문출판 기술진보를 추진하고 신문출판업의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화로운 통일, 광범위한 참여, 혁신 장려, 국제 통합, 지원 발전의 표준화 업무 방침을 철저히 집행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조화롭게 추진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4조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의 주요임무는 전 업종에서 표준의 제정, 수정, 홍보 시행을 진행하고 표준화 수단을 운용하여 신문출판업의 기술진보를 촉진하며 신문출판업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제5조 표준화는 신문출판업의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서 각급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신문출판업 각급 발전규획, 계획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신문출판업 각 업체는 표준 없이 생산을 해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강제적 표준을 실행하고 추천하는 표준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국제표준과 해외 선진적 표준을 연구하고 중국 국정과 산업발전의 수요와 결부하여 적극 사용하고 관련 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제2장 조직기구와 직무 분업

제7조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이행한다.

- (1) 국가표준화업무의 방침, 정책 및 법률 법규를 관철 집행하고 신문출판업 표준화업무 관련 규정을 제정, 발표하며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의 거시적 관리를 담당한다.
- (2)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규획과 업무계획을 승인 발표한다.
- (3) 신문출판 분야 국가표준의 신고를 담당한다.
- (4)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을 승인 발표하며 이를 국가표준화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 (5) 국가표준화 주무부처의 의뢰를 받아 신문출판 분야의 전국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관리한다.
- (6) 신문출판 분야의 업계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 설립을 승인한다.
- (7) 신문출판 분야 표준 등록 관리기구 설립을 승인한다.
- (8)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의 기타 중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8조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주무부처는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이행한다.

- (1) 표준화 업무가 신문출판업에서 철저히 실행되도록 책임지고 신문출판업 표준화업무 관련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며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규획과 업무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실행하며 신문출판업 표준화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 (2) 신문출판업 표준화업무의 일상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기타 업계 표준화 업무와의 조화를 책임진다.
- (3) 신문출판 분야 국가 표준의 초안을 작성한다.
- (4) 업계 표준의 입안을 심사 및 승인한다.
- (5) 신문출판 분야 관련 표준의 제정, 수정, 재심을 담당한다.
- (6) 업계 표준 발표 전의 심사를 담당한다.
- (7) 업계 표준의 동향 유지와 표준 적합성 테스트와 평가를 진행한다.
- (8) 신문출판 분야의 표준을 홍보, 교육, 실시하며 표준의 관철 실시 상황에 대해 감독 조사한다.
- (9)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조직 및 관리하고 관련 표준화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도한다.
- (10) 신문출판 분야의 표준 등록 관리기구를 조직 및 관리한다.
- (11) 국제 표준화 기구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율하고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 (12) 신문출판업 표준화 업무의 기타 중대 사항을 책임진다.

제9조 신문출판광전총국 관련 업무부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이행한다.

- (1) 관련 표준화 업무의 방침, 정책과 법률 법규를 철저히 집행한다.
- (2) 본 부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표준의 제정, 수정 관련 입안 제안을 제출한다.
- (3) 본 부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표준의 관철 실시 및 감독 조사를 담당한다.
- (4)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서 표준화 홍보, 교육 업무를 진행하도록 협조한다.

제10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이행한다.

- (1) 관련 표준화 업무의 방침, 정책과 법률 법규를 철저히 집행한다.
- (2) 표준의 제정, 수정 관련 입안 제안을 제출한다.
- (3) 본 행정지역 내에서 표준의 관철 실시 및 감독 조사를 담당한다.
- (4) 본 행정지역 내의 각 신문출판업체 및 관련 산업협회, 학술단체의 표준화 업무를 지도한다.
- (5) 본 행정지역 내에서 신문출판 표준화 홍보, 교육 업무를 진행하도록 협조한다.

제11조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신문출판 분야의 전국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 및 업계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포함하며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귀속 관리되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전국적인 표준화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기구이며 기술 체계적 집중 관리 원칙에 따라 업무 범위를 나누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이행한다.

- (1) 관련 표준화 업무의 방침, 정책과 법률 법규를 철저히 집행한다.
- (2) 해당 전문 표준화 업무 계획을 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완전한 표준 체계를 수립한다.
- (3) 해당 전문 분야의 표준화 업무 수요를 분석하고 표준 입안 제안을 광범위하게 모집하며 해당 전문 분야의 표준 제정, 수정 계획 항목을 제출한다.
- (4) 각급 표준화 주무부처에서 승인한 표준 제정, 수정 계획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 표준의 제정과 수정 작업을 조직한다.
- (5)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한 표준의 전문내용과 텍스트 품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 (6) 해당 전문 분야의 표준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다.
- (7) 표준의 홍보, 교육, 해외 교류 업무를 진행하고 표준의 철저한 실시 상황에 대한 검사 작업을 협조하여 진행하며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 (8)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서 의뢰한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표준의 제정, 수정과 발표

제12조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의 제정, 수정과 발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술이 선진적이고, 조화롭게 결합되고, 실행 가능하고 경제사회 발전수요에 부합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신문출판 분야 국가기준의 제정, 수정과 발표는 《국가표준관리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어떠한 업체와 개인 모두 기술에 따라 체계적으로 귀속된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표준 입안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제출한 입안 제안이 기술에 따라 체계적으로 귀속 관리되는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없을 경우, 이를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서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제안을 접수하도록 한다.

입안 제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 (1) 신문출판 분야에서 기초, 통상, 방법, 제품, 기술, 관리 등 각종 표준을 제정하여 생산과 관리를 규범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2) 현행 표준이 적용 되지 않아 수정해야 할 경우

제14조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의 제정, 수정은 연간입안제도를 실행한다.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입안 제안에 대해 논증 통과 한 후, 매년 5월 31일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 다음 연도 표준입안 신청을 제출하며, 입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표준 항목 제안서
- (2) 표준 초안 또는 구성
- (3) 항목 입안 전문가 논증 의견
- (4) 기타 필요한 자료

제15조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는 매년 7월 31일 전 연간입안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항목 명칭, 항목 체계적 집중 관리의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 항목 담당자 등을 확정 짓고, 다음 연도의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 제정, 수정 계획을 형성하여 공시를 거친 후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하달한다.

제16조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는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 제정, 수정 계획에 들어간 표준 제정, 수정 항목에 대해 적당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준다. 보조금 비용의 사용은 반드시 신문출판광전총국 관련 비용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비용을 전용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기업이 표준의 제정, 수정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 제정, 수정 계획 실행 과정에서 필요시 계획 항목에 대해 보충,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항목 담당자는 계획이 확정된 기한 안에 표준의 초안 작성 작업을 완성해야 한다. 표준의 초안 작성은 광범위한 리서치, 깊은 연구, 충분한 조율과 시험 검증을 기초로 표준 편집 규칙에 따라 표준 의견 수렴 원고를 제출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집해야 한다.

제19조 항목 담당자는 항목 체계적 집중 관리의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 사무국에 항목 심사 신청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사무국에서 해당 심사 신청 보고 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 제출 여부를 확정 짓고 심사 요구에 도달 하지 못했을 경우 항목 담당자에게 반송하여 수정 보완한다.

심사 신청 보고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표준 심사 신청 보고 원고
- (2) 편집 설명 및 관련 별첨
- (3) 의견 수렴 요약 취합표 및 표준 의견 수렴 원고

제20조 표준에 대한 심사는 항목 체계적 집중 관리의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진

행하고 위원회 사무국에서 전문가 심사회를 열어 표준 심사 신청 보고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 의견을 제출하며 초보적인 심사를 통과한 후 전체 위원이 회의 심사 또는 서한 심사 방식으로 표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

제21조 표준에 대한 인가신청은 항목 체계적 집중 관리의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 신청을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표준 신고서
- (2) 표준 인가신청 원고
- (3) 편집 설명 및 관련 별첨
- (4) 의견 수렴 요약 취합표 및 표준 심사 신청 보고 원고
- (5) 심사회의 기록 또는 서한 심사 결론표

제22조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 인가신청 원고는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통과 한 후, 번호를 통일하고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승인 발표하며 국가표준화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한다.

제23조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은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출판업체에 위임하여 출판하며 관련 비용은 프로젝트 비용에서 지출된다.

제24조 신문출판 분야 업계 표준은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해석한다.

제25조 신문출판 분야 강제적 업계 표준의 코드는 CY이고 추천적 업계 표준의 코드는 CY/T이며 업계 표준화 지도적 기술문서의 코드는CY/Z이다.

제26조 신문출판 분야 표준이 시행 된 후,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신문출판업 발전 상황에 비추어 신문출판업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의 수요와 결부하여 시기적절하게 재심사를 해야 하며 재심사 보고서를 형성 한 후,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발표해야 한다. 재심사 주기는 보통 5년을 넘지 않는다.

제27조 동향 유지 방식을 통해서만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표준에 대해,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승인 발표 시, 해당 동향 유지 기구를 지정하여 해당 기구에서 기술 전문가를 조직하여 해당 표준의 동향 유지를 담당한다.

제28조 신문출판업 표준이 승인 발표 된 후,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이 개별적인 기술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반드시 소량의 수정 또는 변동을 해야 할 시,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위원회에 수정 제안을 제출하여, 해당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심사 인정 후 표준 수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심사 및 관련 결정을 내리게 한다.

제4장 표준의 실시와 감독

제29조 신문출판광전총국 표준화 주무부처는 표준 발표 후, 표준의 홍보와 철저한 집행을 조직해야 하고 표준의 시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0조 신문출판광전총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설립한 품질검사 기구는 긴밀히 협력하여 표준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고 관련 표준에 따라 신문출판 분야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신문출판 전문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각급 정부 관련 기구 및 품질검사기구를 협조하여 표준의 홍보와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32조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 신문출판 분야에서 생산, 경영 등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강제적 표준을 실행하고 추천적 표준과 업계 표준화 지도적 기술 문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업체에서 진행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은 관련 기업 표준 또는 프로젝트 표준, 공사 표준을 실행해야 한다.

강제적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한다.

제33조 신문출판 분야 각종 제품이 관련 강제적 표준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유통 영역에 진입해서는 안되며 표준검사와 표준 적합성 테스트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모두 관련 장려에 응모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표준이 과학성과에 속하고 기술 수준이 높고 뚜렷한 효과를 취득한 신문출판 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대해 신문출판 분야 관련 과학기술 장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35조 본 방법을 위반할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법에 의거 경고 및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벌을 내린다. 그중,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강제적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생산 또는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린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판물 품질이 관련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상황이 엄중 할 경우, 기한부 영업정지 및 정리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기존 증서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6조 표준화 주무부처, 품질검사기구와 표준테스트기구의 담당자가 직무 유기, 배임 등 원인으로 좋지 않은 결과 또는 중대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권 분야에 종사하는 표준화 활동은 본 방법을 참조 적용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문출판서가 2001년 1월 6일에 발표한 《신문출판업표준화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20.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인터넷 게임 및 전자게임 출판물 신고자료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规范出版境外著作权人授权互联网游戏作品和电子游戏出版物申报材料的 通知[2014] 111号
게재일	2014-04-18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출판정책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해외 저작권자가 인터넷 게임작품과 전자게임 출판물 수권에 따른 승인 작업을 보완하고 신청자료 누락, 내용이 완전하지 않는 등 원인으로 접수 및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피하고, 접수 및 승인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청업체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료를 간결하게 하고 절차를 줄이는 원칙으로 총국은 기존의 신청자료 요구사항에 대해 재차 정리했으며 신청자료 설명(별첨 1, 별첨 2 참고)와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인터넷 게임 출판 신청서 (出版境外著作权人授权互联网游戏作品申请书)》(별첨3),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전자게임 출판물 출판 신청서(出版境外著作权人授权电子游戏出版物申请书)》(별첨 4)를 조정하였다.

성(省)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할 때 아래의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해외 저작권자가 수권한 인터넷 게임작품과 전자게임 출판물을 출판 할때,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서류에는 게임의 출판업체, 운영(퍼블리싱)업체 및 저작권업체가 명시 되어야 한다.
2.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해 양식적인 검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인터넷 게임 출판 신청서》 또는 《해외 저작권자 권리허가 전자게임 출판물 출판 신청서》는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작성 되어야 한다.
 - 2) 서면 신청자료는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자료 목록 순서에 따라 제본되거나 정연하게 배열되어야 한다.
 - 3) 전자 파일의 디스크는 정상적인 읽기가 가능해야 하고 내용은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4) 인터넷 게임작품 클라이언트, 해외 저작권자가 수권한 전자출판물 디스크는 정상적인 설치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 또는 서버에 정상적인 로그인 및 연결이 가능해야 하며 테스트 계정은 정상적인 게임 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관련 기능 설치는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
3.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자료 완비 심사를 마친 후, 원칙적으로 근무일 5일 안에 심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요구 사항 및 관련 양식은 최근 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www.gapp.gov.cn)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행정허가’에 방문하여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일부터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상기 요구 사항에 따라 접수 수속 및 승인 사항을 처리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관공청

2014년 4월 18일

담당자: 쑤징(苏静)

연락처: 010-83138708

21.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제목	新闻出版许可证管理办法
게재일	2016-01-24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출판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4호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은 2015년 12월 30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2016년 1월 24일

신문출판 허가증 관리방법

(2016년 1월 24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4호로 발표, 2017년 12월 11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1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의 폐지, 수정 및 실효 선언에 관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신문출판 허가증(이하 약칭 ‘허가증’)관리를 강화하고 신문출판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 <음반 및 영상물 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 <인쇄업 관리조례(印刷业管理条例)>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허가증은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공민, 법인 혹은 기타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에 의해 심사하여 그가 신문출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 허가증명서류이다.

허가증의 설립, 설계, 인쇄, 제작, 배포, 사용, 교환 발급, 재발급, 변경, 말소 등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허가증 관리에서 의법(依法:법에 따르다), 공개, 규범, 편민(便民:국민을 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법규 의거가 없으면 그 어떠한 명목의 방식으로도 행정 대상자로부터 허가증과 관련된 유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전국 신문출판 허가증의 감독 검사, 통일 등록 신고와 정보 공지

등 직무를 담당하고, 지방의 신문출판행정부처는 해당 관할구역 허가증의 감독검사 직무를 담당한다.

각급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발급, 말소, 취소한 허가증을 정부 사이트 혹은 승인을 받고 공개 발행하는 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제2장 허가증의 설립, 설계, 인쇄, 제작과 배포

제5조 허가증의 설립이란 법에 의해 설정한 행정 허가항목을 지칭하며 허가증을 발급하는 형식을 허가증명서류로 간주한다.

허가증 설립은 반드시 법률 법규에서 설정한 행정허가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6조 허가증의 설계란 허가증의 등기 항목과 양식에 대한 설계를 지칭한다. 허가증 설계 시 반드시 그 유효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각종 허가증의 설립과 설계를 담당한다.

제7조 허가증의 인쇄란 허가증의 설계 양식에 따라 등기 내용이 없는 종이 허가증을 인쇄하거나 등기 내용이 없는 전자 허가증을 복제하는 것을 지칭한다.

허가증의 인쇄는 원칙적으로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책임지며, 실제 상황에 따라 상급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통일로 인쇄할 수도 있다.

제8조 허가증 제작이란 공백 허가증의 내용 작성, 도장 날인, 밀봉 등이다.

허가증은 반드시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법에 의해 행정 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본 방법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재발급, 교환 발급 수속을 이행한 후 제작한다.

허가증의 허가 등기항목 내용은 반드시 행정 허가에서 결정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허가증은 행정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기타 기관이 대신 작성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증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기를 처리한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허가증의 해당 위치에 변경 전용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허가증에 행정 허가를 시행하거나 혹은 변경 등기를 진행하는 신문출판 행정부처의 법인 도장 혹은 변경 전용 도장을 찍은 후, 원본,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기타 어떠한 부처 혹은 업체도 허가증에 법인도장을 찍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허가증 발급이란 허가증을 행정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허가증은 원칙적으로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발급한다. 행정 대상자의 편리를 위해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법에 의해 하급 신문출판 행정부처에 위탁하여 대신 발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행정허가 승인 결정 당일부터 근무일 10일 내에 허가증을 행정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을 대행할 경우 하급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행정허가 승인 결정과 허가증을 수령한 후 근무일 4일 내에 행정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행정 대상자에게 별도로 허가증 수령 수속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허가증의 사용, 교환 발급과 재발급

제10조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에 기재한 업무범위와 기한에 따라 신문출판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11조 허가증을 위조, 수정, 사칭하거나 매매, 대여 등 그 어떠한 형식으로 양도해서도 아니 된다.

제12조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만기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허가증 소지자는 법에 의해 취득한 허가증을 연장할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허가증 교환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 허가증이 파손, 분실될 경우 허가증 소지자는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새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파손된 허가증 원본을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후 근무일 5일 내에 예전의 허가증을 말소시키고 새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새 허가증을 교환발급 할 때 옛 허가증을 동시에 회수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직접 교환 발급하는 허가증 외에 기타 옛 허가증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속지 허가증 교환 발급 부처가 일괄적으로 폐기 등록을 하고 폐기 후 1개월 내에 교환 발급, 폐기 상황을 순차적으로 상급 신문출판 행정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4장 허가증의 변경 및 말소

제15조 허가증에 등기한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허가증 소지자가 제출한 허가 신청에 따라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권한에 따라 변경기록 페이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혹은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이 새 허가증을 교환 발급한다.

제16조 허가증에 등기한 비(非)허가 사항이 변경될 경우 행정허가를 시행하거나 혹은 위탁을 받은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허가증 소지자가 제출한 변경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허가증 사본 변경 기록 페이지의 변경 등록을 완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이 새 허가증을 교환 발급하고 행정 대상자에게 편리하고 고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연간 검사제도를 실행하는 행정허가는 허가증이 연간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 확인 도장을 날인 받은 후 계속 사용한다.

제18조 <행정허가법(行政許可法)> 제70조 규정의 상황이 있을 경우 행정허가를 시행하는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1개월 내에 허가증을 말소시키고 이를 공시한다.

제5장 허가증의 전자정보화 관리

제19조 국가는 일괄적인 허가증 정보화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전국신문출판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설계, 구축 지도 및 사용 조율 등 업무를 책임지고 허가증 정보의 전국 네트워킹, 집중 공시와 효율적 관리를 시행한다.

제20조 지방의 각급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요구에 따라 ‘전국신문출판허가증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결, 사용업무를 잘하고 정보 수집, 발송 등 직무를 엄격히 이행한다.

제21조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조건이 구비 될 때 전자허가증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전자 허가증은 종이 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6장 법적 책임

제22조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행정허가법> 제69조, 제74조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불법 및 규칙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행정 허가를 취소하며 아울러 발급한 허가증을 말소시킨 후 통보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부서의 주요 수장과 직접적인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 (1) 법적으로 정한 행정허가 근거가 없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서 허가증을 설립한 경우
- (2) 법이 정한 행정허가 없이 무단으로 허가증을 제작, 배포한 경우
- (3) 규정을 어기면서 허가증에 법인도장을 찍은 경우
- (4) 허가증 양식, 등록 항목을 무단 변경하여 허가증을 제작, 배포한 경우

제23조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의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한다.

- (1) 행정 대상자 혹은 기타 기관이 허가증 내용을 대신 작성한 경우
- (2) 행정허가에 따라 허가증 내용 작성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 (3) 허가증 배포 시 행정 대상자에게 별도로 허가증 수령 수속을 밟도록 요구한 경우
- (4)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즉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 (5)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옛 허가증 폐기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24조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허가증 관련 비용을 수취했을 경우 <행정허가법> 제75조에 의해 그의 상급 행정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관련 수장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수취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감독하며 징계를 내린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관련 부처에 인계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제25조 신문출판 행정부처 관계자가 허가증 관련 업무에서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길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행정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행정허가법>, <출판 관리조례>, <음반 및 영상물 관리조례>, <인쇄업 관리조례>와 유관 기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신문출판 행정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위가 심각할 경우 경고하거나 혹은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허가증 등기사항이 변경되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2) 허가증을 수정, 매각, 대여 혹은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
- (3) 사기, 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방식으로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 (4) 허가증에 기재한 업무범위에 따라 신문출판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칙

제27조 <언론 기자증> 등 유관 인력의 자격증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8조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처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29조 전자허가증과 ‘전국신문출판허가증 정보관리 시스템’의 관리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 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지역적인 법규가 행정허가 허가증의 설립, 설계, 인쇄, 제작, 배포, 변경등록사항, 말소 등을 설정할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게재일	2016-02-04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분류	중국 출판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령 제5호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은 2015년 8월 20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공업정보화부의 승인을 거쳐 현재 공표하며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공업정보화부 부장 마오위(苗圩)

2016년 2월 4일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질서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의 인터넷 출판서비스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출판서비스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출판물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출판물은 정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편집, 제작, 가공 등 출판 특징을 갖춘 디지털 작품을 가리키며 주로 다음의 범위가 포함된다.

- (1) 문화,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지식성, 사상성을 지닌 문자, 이미지,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과 만화, 음성 및 영상 도서 등 창작 디지털 작품.
- (2)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음반·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 등 콘텐츠와 서로 일치하는 디지털 작품.
- (3) 상기 작품을 선택, 편성, 집약 등 방식으로 형성된 인터넷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작품.
-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정한 기타 유형의 디지털 작품.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는 종류별로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첨단 문화의 전진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민족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추진하며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익한 모든 사상 윤리, 과학기술과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누적하여 날로 성장하는 국민 대중의 정신적 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계의 주무부처로서 전국 인터넷 출판서비스의 사전 승인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 업계 주무부처로서 그 직무에 따라 전국의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대한 상응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정부 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와 각 성급 통신 주무부처는 각각의 직무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인터넷 출판서비스 및 접근 서비스에 대해 상응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업무에 서로 협조한다.

제5조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이미 취득한 불법 혐의의 증거 또는 신고에 따라 불법으로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불법 혐의를 받는 행위에 관련된 물품과 영업장소를 검사할수 있으며 불법 행위와 관련된 물품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을 차압 또는 압류할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도서, 음반·영상, 전자, 신문, 정기 간행물 출판 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여 뉴 미디어와의 융합 발전을 가속화 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계 협회가 설립되어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지도 하에 업계 자율 규범을 수립하고 인터넷 문명을 창도하며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전파하고 불량한 유해 콘텐츠를 배척하도록 장려한다.

제2장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

제7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网络出版服务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는 도서, 음반·영상, 전자, 신문, 정기 간행물 출판 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인터넷 출판 업무에 종사하는 확정된 웹사이트 도메인, 스마트 단말 애플리케이션 등 출판 플랫폼.
- (2) 확정된 인터넷 출판서비스 범위가 있다.
- (3)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필요한 필수 기술 장비가 있고, 관련 서버와 저장 장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는 기타 업체는 제8조에서 열거한 조건 외에도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타 출판 업체와 서로 중복되지 않는 확정된 인터넷 출판서비스 주체의 명칭 및 정관이 있다.

- (2)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는 법정대표자와 주요 책임자가 있고 법정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내에 장기간 거주한 완전 행위 능력을 갖춘 중국 국민이어야 하고, 법정대표자와 주요 책임자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중급 이상 출판 전문 기술자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3) 법정대표자와 주요 책임자 외에 인터넷 출판서비스 범위 수요에 적당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정한 출판 및 관련 전문 기술 전문 자격을 구비한 전임 편집 출판 인력이 8명 이상 있고, 그중에서 중급 이상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3명 이상 이어야 한다.
- (4)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 심사 교정 제도가 있다.
- (5) 고정된 사업장이 있다.
- (6)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10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의 업체는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중국 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 기업 또는 해외 기관 및 개인과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무의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할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고자 신청할 시, 반드시 소재지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신청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신청 수리 당일부터 6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고자 신청할 시, 신고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 신청표(网络出版服务许可证申请表)》
- (2) 업체 정관 및 자본 출처 성격 증명서
- (3) 자금 사용, 제품 기획, 기술 조건, 설비 배치, 기관 설정, 인력 배치, 시장 분석, 위험 평가, 판권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서비스 타당성 분석 보고서
- (4) 법정대표자와 주요 책임자의 이력서, 주소, 신분증명 서류
- (5) 편집 출판 등 관련 전문 기술인력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 증명서와 주요 경력 및 교육증명서
- (6) 사업장 사용 증명서
- (7)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 증명서, 관련 서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승낙서

본 규정 제8조에서 열거한 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상기 (1), (6), (7)번에서 규정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제13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를 설립하는 신청자는 승인 결정을 받은 당일부터 30일 안에 등록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승인 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가서 《인터넷

넷 출판서비스 허가 등록표(网络出版服务许可登记表)》를 수령하고 작성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 등록표》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 안에 신청자에게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 등록표》는 1식 3부로 하며 신청자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15일 안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14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터넷 출판서비스 활동에 종사해야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본 규정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할 경우,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갱신 발급한다.

제15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승인을 받은 후, 신청자는 승인 서류,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주무부처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허가 등록 사항, 자본 구조 변경과 합병 또는 분립, 그리고 지사 및 지부 설립 시, 본 규정 제11조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울러 승인 서류를 소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주무부처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하고 해당 이유와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중단은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인터넷 출판서비스 종료 당일부터 3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가서 등기 취소 절차를 밟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주무부처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관련 정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18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등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원 등기한 출판 행정 주무부처가 등록 취소를 하고 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원 등기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심사 발급한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인위적으로 개입된 검색

순위, 광고,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대상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 및 업무 범위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승인 받은 업무 범위에 따라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해야 하며 승인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전차, 임대, 매각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가할 경우, 이는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제22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특별관리주식제도를 실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

제23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편집 책임 제도를 실행하여 인터넷 출판물의 합법적 내용을 보장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출판물 내용 심사 책임 제도, 편집 책임 제도, 교정 책임 제도를 실행하여 인터넷 출판물의 출판 품질을 보장한다.

기타 출판 업체가 중국 국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출판한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출판하고 또한 기존의 출판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인터넷 출판물의 상응하는 페이지에 원 출판업체의 명칭 및 도서 번호, 간행물 번호, 인터넷 출판물 번호 또는 인터넷 주소 정보를 뚜렷하게 명기해야 한다.

제24조 인터넷 출판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
- (3)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4) 민족의 원한 및 민족 차별을 부추기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 안정을 해치는 내용
- (7) 외설, 포르노,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 공중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5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출판물은 미성년자들의 사회 공중도덕

에 위배되는 행위와 불법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공포, 참혹한 내용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가 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폭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등 분야와 관련되는 중대한 과제의 내용을 출판할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중대 과제 등록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 신고 되지 않은 중대 과제의 내용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온라인 게임을 인터넷에서 출판하기 전,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신청하여 심사 승인을 받은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제28조 인터넷 출판물의 내용이 진실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아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관련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정정하여 영향을 해소해야 하며 법에 따라 기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인터넷 출판물에 대해 로고 관리를 실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0조 인터넷 출판물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과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출판물에서 사용되는 언어 문자는 반드시 국가의 법률 규정과 관련 표준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1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 또는 기술 표준에 따라 응용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배치하여 각종 관리제도를 구축 완비하고 정보 안전과 합법적 내용을 보장하며 출판 행정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역할을 이행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출판물을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라이선싱을 취득해야 한다. 그중에서 해외 저작권자가 라이선싱한 온라인 게임을 출판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의 제27조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자사가 출판한 인터넷 출판물에 본 규정의 제24조, 제25조에서 열거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각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소재지 현(縣)급 이상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자사가 출판한 작품의 내용 및 해당 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은 60일 보존해야 하고 국가 관련 부처에서 법에 의해 조회할 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국가 통계 규정을 지켜야 하며 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

에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36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는 속지 관리 원칙을 실행한다.

각 지역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 및 해당 출판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다음의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 (1)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에 대한 업계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본 규정 위반 상황을 단속하고 이를 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 (2)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감독 관리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 (3) 인터넷 출판물 내용과 품질을 감독 관리하고 정기적인 내용 심사와 품질 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 (4) 인터넷 출판 종사자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근무 교육 및 업무 교육 그리고 고과를 실시한다.
- (5) 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협조하고 관련 부처와 조율하며 하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지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제37조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감독 관리 역량과 기관 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취해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관리해야 한다. 출판 행정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검사 등 법 집행 직무를 수행 할 시,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감독 관리 상황을 서면 보고서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연간검사제도를 실행하며 연간검사는 매년 한번씩 진행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에 대한 연간검사를 시행하고 관련 상황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연간검사 내용에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설립 조건, 등록 항목, 출판 경영 상황, 출판 품질, 법률 및 규범 준수 상황, 내부 관리 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39조 연간검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1)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본 연도 정책 법률 집행 현황, 상벌 현황, 웹사이트의 출판, 관리, 운영 업적과 성과 현황, 인터넷 출판물 목록, 연간검사 기간 내의 범법 반칙 행위에 대한 시정 현황, 편집 출판 인력 교육 관리 현황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또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일괄적으로 인쇄 제작한 《인터넷 출판서비스 연간검사 등록표(网络出版服务年度核验登记表)》를 연간 자체 검사 보고서와 함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 (2)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설립 조건, 등록 항목, 업무 전개 및 법규 집행 등 현황에 대한 전면 심사를 진행,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연간 자체 검사 보고서와 《인터넷 출판서비스 연간검

- 사 등록표》 등 연간심사 자료를 받은 후 45일 안에 전면 심사 검증 작업을 완성한다. 연간검사 요구에 부합되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에 대해 등록을 해주고 해당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에 연간검사 도장을 찍어준다.
- (3)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전면 심사 검증 작업을 완료한 후 15일 안에 연간심사 현황 및 관련 서면 자료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40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연간검사를 유예한다.

- (1) 현재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중일 경우
 - (2) 출판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가해야 할 경우
 - (3)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관련 관리규정을 요구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 (4) 내부 관리가 혼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인터넷 출판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을 경우
 - (5)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불법 혐의가 있어 한층 더 검증이 필요할 경우
- 연간검사의 유예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확인한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하며 최대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간검사의 유예기간 안에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 연간검사 유예기간 만료 후 본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41조 본 규정의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간검사에 통과시키지 않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등록 말소시킨 후 현지의 통신 주무부처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연간검사 사항을 조정 한 후, 관련 상황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연간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는 편집 출판 등 관련 전문 기술 인력 및 해당 책임자는 국가에서 편집 출판 등 관련 전문 기술인력 전문 자격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조직한 근무교육에 참가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일괄적으로 인쇄 제작한 《근무교육 합격증서(岗位培训合格证书)》를 취득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근무교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교육 후 《근무교육 합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계속 담당할 수 없다.

제5장 보장과 장려

제45조 국가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인터넷 출판서비스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 과학적 진리의 홍보, 선진적 문화의 전파, 과학 정신의 제창, 아름다운 마음의 형상화, 사회의 바른 기풍 선양 등 선진적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장려하여 건강한 문화 작품과 우수한 문화 작품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전파를 추진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합법적인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모두 간섭, 저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이 우수하고 중요한 인터넷 출판물의 출판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물
- (2)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데 있어서 국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와 민족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사회 공중도덕, 직업 윤리, 가정의 미덕, 개인적 품성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출판물
- (3)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물
- (4) 자주적인 지식재산권과 우수한 문화적 내포를 갖고 있는 출판물
- (5) 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새로운 과학 문화 성과를 적시에 반영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는 출판물
- (6) 공공 문화 서비스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물
- (7)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건강하거나 기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전문 출판물
- (8) 기타 사상적, 과학적 또는 문화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출판물.

제47조 인터넷 출판서비스업의 발전과 번영에 지대한 기여를 한 업체와 개인에 대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48조 국가는 인터넷 출판물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 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 등 저작권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한다.

제49조 인터넷 출판물의 출판을 불법으로 간섭, 저지,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출판 행정 주무부처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즉각 조치를 취해 제지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0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다음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 통지서 하달
- (2) 비평 통보, 시정 명령

(3) 공개 검토 명령

(4) 불법 내용 삭제 명령

경고 통지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일된 격식을 제정하고 출판 행정 주무부처가 관련된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에 하달한다.

본 조에 열거한 행정 조치는 병용할 수 있다.

제51조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게임(해외 저작권자가 라이선싱한 온라인게임 포함)을 무단 출판할 경우, 《출판 관리 조례》 제6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정 직권에 의해 이를 단속하며 또한 소재지 성급 통신 주무부처가 관련 부서의 통지에 근거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 명령 등 처벌을 내린다. 이미 형법에 저촉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아직 형사처벌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관련 인터넷 출판물을 전부 삭제하고 불법소득과 불법 출판 활동에 종사한 주요 설비, 전용 도구를 압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2조 본 규정의 제24조, 제25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출판물을 출판, 전파할 경우, 《출판 관리 조례》 제62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 및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압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한부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소시키고 통신 주무부처에서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통지에 의거 해당되는 통신 업무 경영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명령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 제1항의 행위가 있는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인위적으로 개입된 검색 순위, 광고, 홍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해당 관련 서비스의 제공 중지 명령을 내린다.

제53조 본 규정 제21조를 위반할 경우, 《출판 관리 조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불법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압수한다.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한부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소시킨다.

제54조 다음과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 관리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한부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명령을 내리거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소시킨다.

- (1)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의 등록 사항, 자본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서 허가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합병 또는 분립, 그리고 지사 및 지부 설립 시, 본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2)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출판물을 규정에 따라 출판하지 않았을 경우
- (3)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독단적으로 인터넷 출판서비스를 중단한 지 180일이 넘을 경우
- (4) 인터넷 출판물 품질이 관련 규정과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55조 본 규정 제34조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급 통신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며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또는 웹사이트 임시 폐쇄 명령을 내린다.

제56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법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통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통계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에 의해 처벌을 가한다.

제57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본 규정 제2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또는 뇌물수수 등 부당한 수단으로 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이에 해당되는 허가를 취소시킨다.

제58조 다음과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여 국내외 중외합자 경영, 중외합작 경영 및 외자경영의 기업과 무단으로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무에 관련된 협력을 진행할 경우
- (2) 본 규정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 관련 정보를 명기하지 않았거나 관련 웹사이트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검사하지 않았을 경우
- (3) 본 규정 제23조를 위반하여 편집 책임 제도 등 관리 제도를 규정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 (4) 본 규정 제31조를 위반하여 규정 또는 표준에 따라 응용 관련 시스템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았거나 관련 관리 제도를 완비하지 않았을 경우
- (5)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연간검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 (6) 본 규정 제44조를 위반하여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근무교육 합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 (7)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인터넷 출판에 관련된 기타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59조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이 취소되는 행정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당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담당자는 허가증이 취소된 당일부터 10년 내에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하는 편집 출판 등 관련 전문 기술인력 및 해당 담당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경위가 심각할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해당 자격증서를 취소시킨다.

제7장 부칙

제60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출판물 콘텐츠 심사 책임 제도, 책임 편집 제도, 책임 교정 제도 등 관리제도는 《도서 품질 보장 체계(图书质量保障体系)》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된다.

제61조 본 규정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전 국가신문출판총서, 정보산업부가 2002년 6월 27일에 반포한 《인터넷 출판 관리 잠정 규정(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은 동시에 폐지된다.

23.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제목	出版物市场管理规定
게재일	2016-05-31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상무부
분류	중국 출판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 제10호

《출판물시장 관리규정(出版物市场管理规定)》은 2016년 4월 2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상무부의 동의를 거쳐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상무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2016년 5월 31일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출판물 발행 활동 및 해당 관리 감독을 규범화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되고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출판물 시장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출판물 발행 활동 및 해당 관리 감독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출판물은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반·영상 제품,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발행은 도매, 소매 및 임대, 전시 판매 등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는 공급업체가 기타 출판물 경영자에게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매는 경영자가 직접 소비자를 향해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대는 경영자가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시 판매는 주최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출판물 경영자를 조직하여 출판물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 주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정부는 출판물 도매, 소매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출판물 도매, 소매 활동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출판물 경영허가증에 의해 출판물 도매, 소매 활동을 진행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 모두 허가 없이 출판물 도매, 소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비(非)출판물 도매, 소매 업체 혹은 개인에게 출판물 판매 또는 출판물 대리 판매 업무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전국의 출판물 발행활동을 관리 감독하며 전국 출판물 발행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출판물 발행 활동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출판물 발행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성급 이하 각 급 인민정부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출판물 발행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출판물 발행업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하고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실제에 부합되고 발전을 촉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가는 발행업의 발전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보장 및 촉진하고 오프라인 서점, 농촌 발행 네트워크, 발행물류체계, 발행업 정보화 건설 등을 육성하며 온라인 발행 등 새로운 업종의 발전 및 발행업과 기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발행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6조 발행업의 사회단체는 해당 정관에 따라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지도에 하에 자율적 관리를 실행한다.

제2장 출판물 발행 업무 종사 관련 신청

제7조 출판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공상등록을 마치고 법인 자격을 갖춘다.
 - (2) 공상등록 경영범위에 출판물 도매 업무를 포함한다.
 - (3) 출판물 도매 업무에 걸맞은 장비와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 면적이 50㎡이상이어야 한다.
 - (4) 완비된 관리제도와 업계 표준에 부합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사업장은 기업이 공사행정 주무부처에 등록한 주소이다.

제8조 업체가 출판물 도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소재지 지역 지시급(地市级)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지시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신청자료 접수 당일부터 근무일 10일 내에 심사를 완성하고, 심사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신청업체는 직접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도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접수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기각 할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 서류에는 아래의 서면 자료가 포함된다.

- (1) 영업허가증(营业执照) 원본, 사본, 복사본
- (2) 신청서, 업체 기본 정보 및 신청사항 기재
- (3) 기업 정관
- (4)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증명서

- (5) 사업장 정보 및 사용권 증명서
- (6) 법정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의 개인정보
- (7) 기업 정보관리시스템 상황의 증명자료

제9조 업체 및 개인이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공상등록을 마쳐야 한다.
- (2) 공상등록 경영범위에 출판물 소매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업체 및 개인이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신청 접수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 하며, 이중 사업장 면적이 5000m² 이상일 경우, 동시에 성급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기각 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 업체, 개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 서류에는 아래의 서면 자료가 포함된다.

- (1)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복사본
- (2) 신청서, 신청서에는 업체 또는 개인 정보 및 신청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3)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

제11조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에 종사하려는 업체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승인한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을 취득하여 승인한 구역 범위 내에서 초중고 교과서 발행 활동을 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를 종사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출판물 발행을 주요 경영 품목으로 하는 회사형 법인
- (2)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에 적합한 조직기구와 발행 인력 보유
- (3) 초중고 교과서 보관 품질 기준을 보장하고 경영 품목 및 규모에 적합한 보관 운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에서의 물류창고 면적이 5000m² 이상이고 초중고 교과서 발행에 적합한 자체 물류배송 체계를 보유
- (4)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에 적합한 발행 네트워크 보유.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에서의 기업 소속 출판물 발행 네트워크가 현지 70% 이상의 현(시, 구)를 커버하고 출판물 소매가 주요 업무이고 해당 초중고 교과서의 저장, 조정, 물량 보충, 소매 및 A/S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5)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6) 완비된 관리제도 및 위험 방지 통제 시스템과 돌발 사태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7) 출판물 도매업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최근 3년 내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기타 심각한 위법 불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의 승인은 상기 조항의 조건 외에도 국가의 초중고 교과서 발행업체에 관한 구조, 분포의 거시적인 조정과 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를 신청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접수 당일로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승인 혹은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서면으로 회답하고 아울러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증을 발급한다. 승인 불가일 경우 신청업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 서류에는 아래의 서면 자료가 포함된다.

- (1) 신청서, 업체 정보 및 신청사항을 기재
- (2) 기업 정관
- (3) 출판물 경영 허가증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복사본
- (4) 법정 대표자 및 주요 책임자의 신분 증명, 관련 발행인의 자격 증명
- (5) 최근 3년의 기업법인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 및 기업 신용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 (6) 사업장, 발행 네트워크와 물류장소의 상황 및 사용권 증명서류
- (7) 기업정보관리시스템 상황 증명 서류
- (8) 기업이 초중고 교과서 발행과정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 보장 조치
- (9) 기업의 법정대표자가 사인한 법에 의해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를 경영한다는 협약서
- (10)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기업 기본정보, 경영상황, 물류 능력, 발행 네트워크 등에 대한 실사 의견
- (11) 기타 필요한 증명 서류

제13조 업체 및 개인이 출판물 임대 업무에 종사하려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내에 현지 현금 인민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복사본
- (2) 사업장 현황
- (3)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 현황

관련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근무일 10일 내에 등록 신고 신청을 한 업체, 개인에게 등록 신고건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판물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 출판물 발행 기업 설립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출판물 발행 사업에 종사하려면 신청인이 지방 상무 주무부처에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 출판물 발행 기업의 계약서, 정관을 제출하고 외국인투자 심사승인 수속을 해야 한다. 지방 상무 주무부처는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 혹은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를 발급하고 경영범위 뒤에 《업체 경영 허가에 따라 전개》라고 표기한다. 승인 불가일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신청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승인증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거나 혹은 영업허가증 기업경영범위 뒤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본 규정 제7조~제10조 및 제13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

여 승인 혹은 등록 신고 수속을 이행한다.

제15조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본 규정 제7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 개인이 승인을 받은 경영범위 안에서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 할 경우, 온라인 출판물 발행업무를 시작한 후 15일 안에 승인해준 기존의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물 경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복사본

(2) 업체 혹은 개인의 기본 정보

(1) 출판물 온라인 발행을 종사하는데 토대로 하는 정보 네트워크 상황

출판물 행정 주무부처는 근무일 10일 내에 등록 신고 업체, 개인에게 등록 신고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도서 동호회, 구독자 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이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9조, 제10조의 유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심사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17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개인은 기존 승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 구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임시 소매장소를 설립하여 그의 업무 범위 내의 출판물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임시 소매장소 설립 시간은 10일 미만이며 사전에 설립할 장소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등록 신고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소재지의 기타 유관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물 경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원본, 사본, 복사본

(2) 업체, 개인의 기본 정보

(3) 임시 소매처 설립 장소, 시간, 출판물 판매 품목

(4) 기타 관련 부처가 임시 소매장소 설립을 승인한 서류

제18조 출판물 도매업체는 출판물 소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출판물 도매, 소매 업체가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발행 지점을 설립하거나 또는 출판업체가 본지 출판물을 발행하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발행 지점을 설립 할 경우, 별도로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단, 법에 의해 지점의 공상등록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15일 내에 기존의 출판물 경영 허가증 발급 기관과 지점 소재지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등록 신고 해야 한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물 경영 허가증 혹은 출판업체의 출판 허가증 및 지점의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복사본

(2) 업체의 기본 정보

(3) 업체가 법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발행 지점을 설립하는 경영 장소, 경영 범위 등 상황

관련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근무일 10일 내에 등록 신고 업체, 개인에게 등록 신고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출판물 경영 허가증》 등록 사항을 변경 하거나 또는 합병인수, 합병, 분립 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해준 기존의 출판 행정 주무부처를 방문하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신청 접수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승인 혹은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할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교환 발급하고, 승인 불가일 경우 신청 업체, 개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 서류에는 아래의 서면 자료가 포함된다.

- (1) 출판물 경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원본, 사본, 복사본
- (2) 신청서, 업체 혹은 개인의 기본 정보 및 변경 신청 사항 기재
- (3) 기타 필요한 증명 서류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15일 내에 출판물 경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승인을 해준 기존의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하고 해당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3장 출판물 발행 활동 관리

제20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아래의 출판물을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 (1) 《출판관리조례》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금지 출판물
- (2) 각종 불법 출판물. 즉,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 인쇄 또는 복제한 출판물, 출판 업체 또는 신문·잡지 명칭을 위조, 사칭하여 출판한 출판물, 불법 수입한 출판물
- (3) 타인의 저작권 또는 독점 출판권을 침해하는 출판물
- (4)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출판, 인쇄 또는 복제, 발행을 분명히 금지시킨 출판물

제21조 내부적으로 발행한 출판물은 공개적으로 홍보, 진열, 전시, 구독 주문, 판매 혹은 대중에게 발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발행활동 과정에서 공정, 합법,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공급 판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법에 의해 출판물 도매, 소매 자격을 취득한 출판 발행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 수입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설립된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 (2)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승인한 경영범위를 벗어난 경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3) 법률, 법규에서 금지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사기성 문자, 사실과 다른 구독 주문 리스트, 광고와 홍보 그림을 붙이고 나누어 주고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 (4) 출판물의 판권 페이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5) 《출판물 경영허가증》은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야 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을 펼

치는 웹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에 게재한 관련 정보 또는 링크 표지를 공개해야 한다.

- (6)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승인 서류를 수정, 변조,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개인은 물품공급업체의 출판물 경영 허가증을 확인하고 복사본 혹은 전자파일로 보관해야 하며 출판물 발행의 물품 구입 및 판매 리스트 등 비(非)재무 관련 서류는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 보관해야 한다.

물품 구입 및 판매 리스트에는 구입 및 판매되는 출판물의 명칭, 수량, 할인, 금액 및 물품 공급업체와 구매업체의 인감도장(서명 날인)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출판물 발행 종사자는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조직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판물 발행업체는 직업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자사의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법에 의해 승인을 거친 직업기능 감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발행 종사자 직업기능감정 교육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출판업체는 자사에서 출판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다. 자사에서 출판하지 않은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 수속을 해야 한다.

제26조 출판물 발행 업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등록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등록 신고하여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지도와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복사본
- (2) 업체 기본 정보
- (3)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기본 정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근무일 10일 내에 등록 신고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등록 신고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출판물 발행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출판물 발행을 신청하는 경영주체의 신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바, 경영주체의 영업허가증,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확인하고 해당 복사본 혹은 전자파일을 보관하여 훗날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해당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을 완비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출판물 발행 업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거래 위험 방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훗날의 검사에 대비하여 플랫폼 내에서 진행한 출판물 발행 업무 경영 주체의 거래 기록을 2년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각종 불법출판물 발행 활동에 종사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재지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 행정 주무부처와 전국적인 출판, 발행산업협회는 전국적인 출판

물 전시 판매 활동 및 각 성(省)간의 전문적인 출판물 전시활동을 주최할 수 있다. 주최기관은 2개월 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시, 현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와 성급 출판, 발행협회는 지방의 출판물 전시판매 활동을 주최할 수 있다. 주최기관은 2개월 전에 상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전시판매활동 주최기관
- (2) 전시판매활동 시간, 장소
- (3) 전시판매활동 장소, 참가업체, 전시판매 출판물 품목, 활동 준비 등 현황

제28조 초중고 교과서 발행업무는 반드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초중고 교과서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2)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된 초중고 교과서는 발행업체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 (3) 교육 행정 주무부처와 학교에서 선정한 초중고 교과서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발행 임무를 완성하고 《개강 전에 책이 도착하고 학생마다 1권》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초중고 교과서 발행이 지연될 경우 즉시 보완 대책을 세우고 아울러 소재지 출판 행정과 교육 행정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4) 초중고 교과서 발행과정에서 무단 주문, 수업용 도서목록 외의 출판물을 묶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5)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임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도급주어서는 아니 된다.
- (6)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증을 수정, 되팔기, 임대,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7) 초중고 교과서의 발행율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발행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 (8) 초중고 교과서의 조정, 물량 보충, 소매와 A/S 등 관련 업무를 잘해야 한다.
- (9) 발행 임무 완성 후 근무일 30일 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소재지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 초중고 교과서 발행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 출판업체는 규정한 시간 내에 법에 의해 확정된 초중고 교과서 발행업체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초중고 교과서 발행자격이 없는 업체에 초중고 교과서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본 규정 제20조에서 열거한 출판물의 구독 주문, 보관, 운송, 우송, 배달, 배포, 부가 배송 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출판물 보관, 운송, 배달 등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출판 행정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 《신문출판 통계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그 어떤 핑계로도 통계자료 제출거부, 지연제출, 허위제출, 거짓제출 및 위조와 수

정해서는 아니 된다.

출판물 발행업체, 개인이 행정허가의 법적 조건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에서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초중고 교과서 발행업체가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의 법적 조건을 더 이상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는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증서발급기관에서 초중고 교과서 발행자격증을 취소한다.

제4장 법적책임

제31조 승인을 받지 않고 출판물 발행 업무에 무단 종사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출판 금지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2조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수입 금지한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혹은 법에 의해 승인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수입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3조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불법 출판물과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출판, 인쇄 혹은 복제, 발행을 분명히 금지한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5조에 따라 처벌한다.

금지된 출판물 혹은 불법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당사자가 해당 출판물의 출처에 대해 설명, 지목하고 검증 결과 사실일 경우 출판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기타 행정처벌을 줄이거나 혹은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 본 규정을 위반하면서 타인의 저작권 혹은 독점 출판권을 침해한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초중고 교과서 발행 과정에서 본 규정을 어기고 다음 행위 중 하나만 있을 경우도 《출판관리조례》 제65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법에 의해 심사 확정하지 않은 초중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 (2)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초중고 교과서 발행 활동에 종사할 경우
-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달법》이 유관 규정에 따라 확정하지 않은 업체가 정부 조달 범위에 포함시킨 초중고 교과서 발행 활동에 종사할 경우

제35조 출판물 발행 업체가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7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업체,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물 경영허가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는 허가증이 취소된 당일로부터 10년 안에 발행업체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로 부임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불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최근 2년간의 출판물 발행 구입 판매 명세서 등 관련 비(非) 재무 서류 혹은 명세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류가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2)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승인한 경영범위를 벗어나 경영할 경우
- (3)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사기성 문자가 있고 사실과 다른 구독 주문서, 광고와 포스터를 붙이거나 배포, 게재할 경우
- (4) 출판물 판권 페이지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 (5)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경영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지 않았거나 웹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판물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에 게재한 관련 정보 또는 링크 표지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 (6) 《출판물 경영허가증》을 판매, 임대, 대여, 양도 또는 무단으로 수정, 변조할 경우
- (7) 내부에서 발행하기로 규정한 출판물을 공개적으로 홍보, 진열, 전시, 구독 주문, 판매하거나 사회 대중에게 발송할 경우
- (8) 출판물 도매, 소매 자격이 없는 업체 혹은 개인에게 위탁하여 출판물을 판매 혹은 출판물 판매 업무를 대행시킬 경우
- (9) 법에 의해 출판물 도매, 소매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출판발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 (10) 출판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11) 본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12)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38조 초중고 교과서 발행과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불법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이미 선정된 초중고 교과서를 무단 교환할 경우
- (2) 수업용 도서 목록 외의 출판물을 무단 주문하고 묶어서 판매할 경우
- (3)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임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외주 주는 경우
- (4)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증을 수정, 되팔기, 임대, 대여하는 경우
- (5) 규정 시간 내에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6) 국가의 유관 규정을 어기고 초중고 교과서 발행비용을 수취한 경우
- (7) 규정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의 조정, 물량 보충, 소매와 A/S 업무를 잘하지 못한 경우
- (8) 규정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 발행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9) 출판업체가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초중고 교과서를 공급한 경우
- (10) 출판업체가 규정 시간 내에 법에 의해 확정된 초중고 교과서 발행업체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경우
- (11) 초중고 교과서 발행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하거나 혹은 기타 초중고 교과서 발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39조 본 규정 제20조에서 열거한 출판물을 구독 주문, 보관, 운송, 우송, 배달, 배포, 부가 증정할 경우, 본 규정 제32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 본 규정 제30조에 따라 통계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 통계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41조 홍콩, 마카오의 영구 거주 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중국대륙 유관 법률, 법규와 행정 규정에 따라 중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출판물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자본 심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4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초중고 교과서는 국무원 교육 행정 주무부처에서 심의 결정한 것과 권한을 위임 받아 심의 결정한 의무교육 수업용 도서(보조 그림 책자,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포함)이다.

초중고 교과서 발행에는 초중고 교과서의 구독 주문, 보관, 배송, 분류 발송, 조정, 물량 보충, 소매, 결제 및 A/S 등이 포함된다.

제43조 출판물 경영 허가증과 초중고 교과서 발행 자격증의 설계, 인쇄, 제작과 배부 등은 《신문출판허가증 관리방법(新闻出版许可证管理办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본 규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상무부와 함께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5조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前신문출판총서, 상무부가 2011년 3월 25일에 발표한 《출판물시장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본 규정 시행 전 본 규정과 불일치한 기타 규정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24.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文学作品版权管理的通知
게재일	2016-11-04
출처	국가판권국판공청
분류	중국 저작권 관리 정책

인터넷 문학작품의 판권 관리를 강화하여 인터넷 문학작품의 판권 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등 법률, 법규에 따라 유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모든 조직 혹은 개인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문학작품을 전파하고 사용자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문학작품을 전파하도록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권리인의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며 인터넷 문학작품의 판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2.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문학작품 및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판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권리침해 작품 처리 매커니즘을 정착시키며 법에 의해 인터넷 문학작품의 판권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문학작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법에 의해 전파하는 문학작품의 판권 심사와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권리인의 허가 없이 그의 문학작품을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4.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문학작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판권신고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권리인의 신고를 능동적으로 수리하고 법에 의해 권리인의 합법적인 주장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5. 검색엔진, 브라우저, 토론방, 클라우드, 앱 스토어 및 티에바(贴吧, 인터넷 카페), 웨이보(微博, Microblog), 위챗(WeChat, 微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권리인의 허가 없이 문학작품을 제공하거나 혹은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문학작품을 변칙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고객을 위해 권리인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문학작품을 전파하면서 편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6. 검색엔진, 브라우저, 토론방, 클라우드, 앱 스토어 및 티에바(카페), 웨이보, 위챗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그가 서비스하는 플랫폼의 가장 선명한 곳에 권리인 통지, 신고 방식을 게재하고, 권리인의 통지, 신고를 즉시 수리해야 하며 아울러 권리인의 통지, 신고를 받은 24시간 내에 권리침해 작품을 삭제하고 관련 링크를 차단해야 한다.
7. 검색엔진, 브라우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확정된 검색 혹은 링크, 및 편집, 취합 등 방식을 통해 권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학작품을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8. 티에바(카페), 토론방, 앱 스토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테비바(카페) 운영

자, 토론방 개설자, 앱 개발자 등의 이름, 계정, 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심사하고 보관해야 한다.

9. 문학작품 혹은 작가로 명명한 티에바(카페), 토론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티에바 운영자, 토론방 개설자 등이 책임을 지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문학작품이 권리인 본인이 제공하거나 혹은 권리인의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10. 정보 저장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국가판권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권 질서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준수하면서 권리를 침해한 문학작품을 자발적으로 차단, 삭제하고 사용자가 권리 침해 문학작품을 업로드, 저장 및 공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1.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 관리감독의 ‘블랙&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여 문학작품의 권리를 침해한 해적판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블랙 리스트’, 인터넷 문학작품 중점 관리감독 대상 ‘화이트 리스트’를 적절한 시기에 공표한다.
12. 각급 판권 행정기관은 인터넷 문학작품 판권의 법 집행 관리감독 강도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인터넷 문학작품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적판 행위를 수사하여 인터넷 문학작품의 판권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13. 본 통지는 배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판공청(国家版权局办公厅)

2016년 11월 4일

25.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제목	出版物进口备案管理办法
게재일	2017-01-22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12호)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은 2016년 4월 2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고 해관총서의 동의를 얻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네천시(聂辰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서장: 위광저우(于广洲)

2017년 1월 22일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관리방법

제1조 출판물 수입 등록신고 행위를 규범화하고 출판물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 〈음반 및 영상물 관리조례(音像制品管理条例)〉 등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출판물 수입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출판물이란 수입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음반 및 영상물(완성품) 및 전자출판물(완성품),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이다.
본 방법이 지칭하는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란 〈출판관리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판물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이다.

제3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허가한 업무범위에 따라 출판물 수입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4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출판관리조례〉 및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성급 이상 출판 행정 주무부처에서 수입 출판물 등록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제공한 등록신고 서류가 완비되지 않거나 혹은 진실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등록신고를 담당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관련 등록신고 정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등록신고 업무에 대해 검사 지도를 실시한다.

제5조 도서를 수입하는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수입 전 성급 이상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신청하여 수입 등록신고 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신고 신청 시, 등록신고 신청과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발급한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등록신고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다.

- (1) 도서 명칭
- (2) 출판기관
- (3) 수입원 국가(지역)
- (4) 저자
- (5) 국제표준출판코드번호(ISBN)
- (6) 언어 종류
- (7) 수량
- (8) 유형
- (9) 수입 항구
- (10) 주문업체
- (11)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제6조 성급 이상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의 수입도서 등록신고 신청 서류 접수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도서목록의 등록신고 수속을 완성해야 한다.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등록신고를 담당하는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에 통관 서신을 발급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세관에 통관서신을 제출하면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검사통과 수속을 처리하고 통관서신이 없으면 세관은 검사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음반 및 영상물(완성품) 및 전자출판물(완성품)을 수입할 경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음반 및 영상물 수입 관리방법>,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요구에 따라 해당 수입 심사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세관에 검사승인 문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검사통과 수속을 하고 승인 문서가 없으면 세관은 검사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음반 및 영상물(완성품) 및 전자출판물(완성품) 수입 이후, 근무일 15일 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등록신고를 신청한다. 등록신고 신청 시, 음반 및 영상물(완성품) 및 전자출판물(완성품)의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아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1) 명칭
- (2) 출판기관
- (3) 수입원 국가(지역)
- (4) 국제표준 음반 및 영상물 코드번호(ISRC) 혹은 전자출판물 코드번호 등
- (5) 언어 종류
- (6) 수량
- (7) 유형
- (8) 수입 항구
- (9) 매개체 형식
- (10) 수입 통관통과일자
- (11) 수입승인문서 번호
- (12) 주문업체
- (13)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9조 수입 이후의 음반 및 영상물(완성품) 및 전자출판물(완성품)의 사용은 기타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0조 신문, 정기 간행물을 수입할 경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수입 출판물 구매 관리방법(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입 심사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세관에 검사 승인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검사통과 수속을 처리하고 승인 서류가 없으면 세관은 검사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신문, 정기 간행물 수입 이후, 분기별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동시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출판행정 주무부처로 발송한다. 등록신고 신청 시, 실제 수입상황에 따라 아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문, 간행물 명칭
- (2) 출판기관
- (3) 수입원 국가(지역)
- (4) 국제표준 연속 출판물번호(ISSN)
- (5) 언어 종류
- (6) 수량
- (7) 유형
- (8) 수입 항구
- (9) 발간 기간
- (10) 수입통관통과 일자
- (11) 주문자
- (12)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2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경내로 수입하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국무원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승인한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수입 자격을 보유한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수입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수입을 진행할 경우 엄격하게 <출판관리조례>, <음반 및 영상물 관리조례>, <수입 출판물 구매 관리방법> 등 법규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가 수입하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심사(수입 전의 내용 심사와 수입 후의 갱신 내용 심사 포함)를 진행하여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수입 등록신고, 심사승인 수속을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수입한 이후, 매년 자연년(自然年) 연말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등록신고를 신청한다. 등록신고 신청 시,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수입 정보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1) 명칭
- (2) 해외 공급업체
- (3) 수입원 국가(지역)
- (4) 언어 종류

- (5) 사용자 수량
- (6) 유형
- (7) 개통 시간
- (8) 현재 계약의 개시와 종료 시간
- (9) 수입 금액
- (10) 국내 주문 업체
- (11) 동태 관리감독 인원
- (12) 관리감독 시설의 IP 주소
- (13) 관리감독 방식
- (14)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4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는 실제 수입한 출판물에 대해 내용 심사를 진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심사 열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본 방법 요구에 따라 등록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한 내에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16장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심사 열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수입 내용에 <출판관리조례> 제25조, 제26조의 금지 내용이 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출판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경영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경영금액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기한 내에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기존의 허가증 발급기관에서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제17조 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등록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불완전하고 진실하지 않거나 혹은 본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성급 이상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수입 행위 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관총서와 함께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제목	关于印发《网络文学出版服务单位社会效益评估试行办法》的通知
게재일	2017-06-14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출판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 관련 업체:

인터넷문학은 중국 디지털 출판 산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인터넷문예의 중요한 유형이며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중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문화 창조 및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문학도 양은 많지만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작품은 많지만 우수한 작품이 적고 경제성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두드러진 문제점과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공중앙의 사회주의문예 번영발전에 관한 의견>을 철저히 집행하고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국민 중심의 창작 출판 방향을 고수하도록 유도하며 시종일관 사회적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상호 일치를 실현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국유문화기업이 사회적 이익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상호 일치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에 따라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을 제정했다. 현재 각 기관에 배부하오니 철저하게 관철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7년 6월 14일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시행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문학은 중국 디지털 출판 산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인터넷문예의 중요한 유형이며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문화 창조 및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문학도 양은 많지만 질이 떨어지고, 작품은 많지만 좋은 작품이 적으며, 표절 모방, 내용이 유사하고 기계적 생산, 패스트푸드식 소비 및 일장적인 경제성 추구 등 두드러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문학은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문화기업이 사회적 이익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상호 일치를 실현하도록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중판발[2015]50호) 정신에 따라 인터넷문학의 발전 현실과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이란 자사의 인터넷문학 출판 활동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 혹은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를 시행하는 취지는 작품의 내용과 품질을 높이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며 발전환경을 최적화시켜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우수한 작품 출판을 중심

으로 하도록 유도하며 사상성, 예술성과 가독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우수한 작품을 끊임 없이 내놓으면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키는 것이다.

제3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를 시행하려면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고수하고 국민 중심의 창작 출판 방향을 고수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시리즈 연설 정신을 가이드로 당의 18대와 18기 3중, 4중, 5중, 6중 전회의 정신을 관철 집행하면서 <중공중앙의 사회주의 문예 번영발전에 관한 의견>의 유관 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선양해야 한다. 인터넷문학의 창작과 출판 특징을 충분히 존중하고 각종 형식의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정신문명건설 기준을 따르고 출판전과규칙을 준수하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도록 추진하면서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상호 일치를 실현하여 더 많은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출판한 작품이 국민의 인정, 전문가의 평가와 시장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는 객관, 공정, 공평 원칙을 고수하고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업체 자체 평가와 관리기관의 평가를 상호 결합한 업무방법을 취하며 양적 지표체계를 통해 그의 사회적 이익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제5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문학 출판 업체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인터넷문학 작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하며 주로 창작 인터넷문학 사이트, 인터넷문학 독서 플랫폼을 만든 업체를 포함한다.

제6조 각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본 방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평가 내용

제7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는 출판 품질, 전파 능력, 내용 혁신, 제도 구축, 사회와 문화 영향 5가지로 나뉜다. 이중 출판 품질, 전파 능력, 내용 혁신, 제도 구축 4가지가 기본 점수이며 사회와 문화 영향은 가산점 항목이다.

제8조 출판품질 평가는 주로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도서품질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공개 출판한 작품이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고수하는지 여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 여부, 주요 기초, 긍정적 에너지 작품을 대대적으로 출판 전파하는지를 평가한다. 사상 격조, 심미 취향이 건전하고 진보적인지 여부, 가치 유도, 정신적 견인, 심미 계서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가 총 45점이고 주로 가치 견인과 사상 격조, 문학 가치와 문화 전승, 편집 및 교정 품질, 자원관리 등 지표가 포함된다.

제9조 전파능력 평가는 인터넷문학 발전 실체와 결합하여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우수한 창작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광고하는지, 전파방식, 투고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우수한 작품의 투고 시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지, 우수한 인터넷문학작품의 커버 범위를 확대하는지를 평가하며 총 15점이고 주로 플랫폼 메인 페이지와 코너 구축, 랭킹 설치, 투고 효능, 평론 인도 등 지표가 포함된다.

제10조 내용혁신 평가는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혁신정신 유무, 내용 유사, 표절 모방, 편일률 등 동질화 경향을 중요시하고 조치를 취해 이런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지 여부, 소재, 장르, 형식의 혁신 여부, 관련, 내용, 스타일의 특색 유무 여부, 개성화, 창조성이 있는 작품을 적극적으로 출판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총 10점이고 주로 다양성과 다양화, 창조성과 개성화 등 지표가 포함된다.

제11조 제도 구축 평가는 주로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규장제도, 내부 매커니즘 구축과 집행 상황, 팀의 전문화 자질, 구성 및 인재육성상황 등을 평가하며 총 30점이고 주로 편집 책임제도, 저자와 독자 서비스제도, 작품관리 및 품질통제제도, 판권관리제도, 팀 구축과 인재육성 매커니즘, 경영관리제도, 당건(党建)과 사상정치업무 등 지표가 포함된다.

제12조 사회와 문화 영향 평가는 가산점이며 전문가 평가, 독자의 입 소문, 시장 반향 등을 종합하여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우수 작품 출판 분야에서 거둔 두드러진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며 최고 30점이고 주로 수상 내용, 사회 평가, 문화 영향, 국제 영향과 공익 서비스 가산점이 포함된다.

제13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가 출판한 작품이 심각한 정치적 오류, 사회적 악영향이 나타날 경우, 플랫폼 메인 페이지 혹은 중점 코너에서의 추천 가이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작품, 정치 기율과 정치 규칙 등을 위반할 경우 사회적 이익성 평가는 ‘1표 부결’을 시행하며 평가 결과는 불합격이다.

제14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 결과는 우수(90점 및 이상), 양호(80-89점), 합격(60-79점), 불합격(60점 이하)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점수 표준은 별첨 서류를 참조한다.

제3장 평가 절차

제15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는 연도에 따라 진행하고 업체 자체 평가, 속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평가 등 2가지 부분으로 구성한다.

제16조 매년 1월말 전,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는 본 방법 및 속지 출판행정 주무부처의 기준에 따라 전년도 사회적 이익성 상황에 대해 점수를 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이익성 자체 평가 보고를 형성하여 속지 출판행정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제17조 속지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본 방법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기관의 자체적인 평가 점수 및 평가 보고에 대해 분석, 재평가, 승인을 진행하여 그의 최종 점수와 등급을 확정한다.

제18조 매년 3월말 전, 각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해당 지역의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 보고 및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19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각 지역이 제출한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 상황에 대해 랜덤으로 검사하며 허위로 날조하고 문제점을 은폐하여 보고하거나 혹은 제때에 평가를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 엄중하게 처리한다.

제4장 평가결과 사용

제20조 사회적 이익성 평가결과에서 불합격한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에 대해 속지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처는 통보 비평을 하고 즉시 책임자와 면담 약속을 잡으며 아울러 해당 업체의 당해 각종 우수작품 평가, 수상자격 평가를 취소한다. 2년 연속 사회적 이익성 평가에서 불합격한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보 비평을 하고 해당 업체의 책임자와 면담 약속을 잡고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1조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결과가 2년 연속 우수할 경우 선진 업체 및 우수 작품 평가, 작품 홍보, 해외 교류 및 관련 출판기금과 특별자금 등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본 방법의 평가지표와 점수평가 표준은 인터넷문학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별첨: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사회적 이익성 평가지표와 점수평가 표준

순번	1급 지표	2급 지표	점수평가 표준
1	출판품질	가치 전 인파 사	1. 사회주의 선진문화 전진방향 고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양, 작품의 가치 유도, 정신적 유도 등 분야 역할 중요시, 주요 기초, 긍정적 에너지 작품 대대적으로 출판, 1년 동안 잘못된 가이드가 있는 작품을 미발견, 총 30점

2	(45점)	상 격조 (30점)	2. 선명한 규정 위반 내용이 없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콘텐츠 창작을 유도하지 않고, 주요 기조가 고양되지 않고, 긍정적 에너지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사회주의 가치관을 선양한 작품 비율이 낮을 경우 상황에 따라 10-20점 감점
3			3. 선명한 규정 위반 내용은 없지만 국민 중심의 창작 출판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오락성이 최우선이고 저속하고 엽기적인 현상이 있으며 가치 선도 역할이 약하면 상황에 따라 10-20점 감점.
4			4. 공서양속, 도덕규범을 무시하고 심미(審美)를 교란하며 작품이 정확한 인생관,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을 위배할 경우 10-20점 감점
5			5. 사상이 부정적이고 격조가 높지 않은 작품을 출판하여 독자가 신고 혹은 적발하고 사회적 영향이 안 좋을 경우 1부당 1점 감점
6			6. 의식이 강하지 않는 부분을 엄격히 심사하고 내용이 저속하고 가치 취향에 문제점이 있는 작품을 출판하여 작가 혹은 언론의 비평을 받을 경우 1부당 2점 감점
7			7. 당과 군, 그리고 나라의 역사 등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 파악 능력이 없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사실을 해학적으로 서술하고 대표작을 모독하면서 여러 가지 주관적 상상을 지어내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경우 1부당 3-5점 감점
8			8. 방향의 편차로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전개하는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 업체의 작품이 열독 평가에서 실명 거론당하며 비평을 받을 경우 1부당 3점 감점
9			9. 작품이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등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관리부처로부터 처벌을 받을 경우 1부당 5-8점 감점
10			10. 심각한 정치적 오류가 생기고 사회적 영향이 악랄하면 1표 부결을 실행하며 전체적인 평가는 불합격
11		문학가치와 문화 전승 (10점)	1. 사상성, 예술성과 가독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명품 우수작을 적극적으로 출판하면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선양하며 작품이 전체적으로 높은 문학수준과 예술가치를 갖고 있어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잘 만족시키는 경우 총 10점
12			2. 선명한 규격을 위반한 내용은 없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우수 작품 창작을 유도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작품의 예술적 추구와 문학적 고수를 간과하고 많은 작품의 문학수준이 낮고 예술적 가치가 부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5-10점 감점
13			3. 선명한 규격을 위반한 내용은 없지만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통문화의 전승과 선양이 부족하고 중화 문화 입장 및 중화의 심미 규범을 무시할 경우 상황에 따라 5-10점 감점
14			4. 내용이 엉성하고 구상이 무기력하며 언어가 거칠어 독자들이 신고하거나 혹은 미디어, 전문가의 비평을 받을 경우 1부당 1점 감점
15			5. 예술품질이 낮아 출판행정 주무부처에서 전개하는 인터넷문학 출판서비스업체의 작품 열독 평가에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비평을 받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평론하면서 비평할 경우 1부당 2점 감점
16		편집 및 감수 품 질 (3점)	1. 작품의 앞 표지, 삽화 등 디자인이 작품의 사상 내용에 눈에 띄게 부적합하거나 혹은 오류가 있을 경우 1점 감점
17			2. 문자사용이 규범하지 않고 <출판물 한자 사용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 경우 2점 감점.
18			3. 편집 감수 오차가 심각하고 <도서품질관규정>의 도서 오차를 표준을 3배 초과할 경우 3점 감점
19		자원관리 (2점)	콘텐츠 자원관리가 혼란스럽고 작품 링크, 저자 서명, 백그라운드 고나리 등에 많은 오차가 존재하거나 부족할 경우 2점 감점
20	전 과 능력 (15점)	플랫폼 메인 페 이지와 코너 구 축 (5점)	1.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실천, 진선미 선양, 긍정적인 에너지 작품에 대한 중점 홍보를 중요시하지 않을 경우 3-5점 감점
21			2. 시장 수요에 의도적으로 호응하면서 플랫폼 메인 페이지 혹은 코너 설치에 오직 조회수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5점 감점
22			3. 플랫폼 메인 페이지 혹은 중점 코너에서 문학 함양과 예술적 심미가 없는 작품을 홍보할 경우 1부당 2점 감점
23			4. 플랫폼 메인 페이지 혹은 중점 코너에서 안내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작품을 홍보할 경우 1표 부결을 실행하고 전체 평가는 불합격
24		순 위 표 설치 (5점)	1. 순위표 편집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을 간과하고 순위표 시범 가이드 역할을 발휘하는 조치가 부족할 경우 3점 감점
25			2. 시장 수요에 의도적으로 호응하면서 순위표 설치에 오직 조회수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감점 5점
26		투 고 효 능 (3점)	1. 주요 기조, 긍정적 에너지 작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기술, 방식이 낙후할 경우 1점 감점
27			2. 허위 홍보, 과장 홍보, 그리고 불성실한 수단 등으로 독자를 오도하고 소비를 유도할 경우 2점 감점
28			3. 시장의 폭발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부당한 홍보 방법을 기획하여 사회적으로 안 좋은 반향이 일어날 경우 감점 3점

29		토론 보 도 (2점)	사이트의 토론존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토론 유도 역할을 간과하며 실사구시적이 못되고 국민의 평가, 전문가 평가와 시장 점검의 종합 평가 표준을 고수하지 못하여 독자 혹은 사회 여론을 오도할 경우 2점 감점
30	내용 혁신 (10점)	다양성과 다양화 (5점)	1. 내용의 다양성, 주제의 다양화를 중요시하지 않고 전체 작품의 소재가 단일하고 주제가 단조로우며 구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감점 2점
31			2. 많은 작품의 내용이 유사하고 표절 모방하고 천편일률여서 동질화 현상이 보편적일 경우 5점 감점
32		창 조 성과 개 성화 (5점)	1. 창작 능력이 부족하고 작품의 장르, 형식, 스타일, 서술방식 등이 특색이 없을 경우 2점 감점
33			2. 혁신정신이 부족하고 관념이 낡고 수단이 낙후하며 저자의 창작활동을 유발하고 불리일으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할 경우 3점 감점
34			3. 작품의 조회수 기록만 일방적으로 추구하여 기계화 생산, 패스트푸드식 소비 경향이 있을 경우 5점 감점
35	제도 구축 (30점)	편집책임 제도 (5점)	1. 완비된 제도를 구축하지만 집행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편집감수 인력이 부족하여 일상 업무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2점 감점
36			2. 핵심 직무가 없고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며 내용 심사가 엄격하지 않을 경우 3-5점 감점
37			3. 편집책임제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5점 감점
38		저자와 독자 서 비스제도 (4점)	1. 비교적 완비된 저자, 독자 서비스제도를 구축했지만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을 경우 2점 감점
39			2. 저자 서비스제도가 불완전하고 저자 실명등록,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조치가 없어 저자의 권익에 손해를 입힐 경우 3-4점 감점
40			3. 독자 서비스제도가 불완전하고 독자의 피드백, 합리적인 요구에 호응하지 않아 독자의 권익에 손해를 입힐 경우 2-3점 감점
41			4. 저자, 독자 서비스제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5점 감점.
42		작품 관 리 및 품 질 통제 제도 (5점)	1. 완비된 제도를 구축했지만 집행에 힘쓰지 않았을 경우 2점 감점
43			2. 제도가 불완전하여 내용 품질이 저하될 경우 3-5점 감점
44			3. 작품 관리 및 품질 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5점 감점
45		관련관리 제도 (4점)	1. 비교적 완비된 제도를 구축했지만 집행에 힘쓰지 않았을 경우 2점 감점
46			2. 제도가 불완전하여 저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3점 감점
47			3. 제도에 결함이 있고 표절, 권리 침해 불법복제 등 행위로 인해 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4점 감점
48			4. 관련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4점 감점
49		팀 구축 과 인재 육성 매 커니즘 (4점)	1. 팀 구축을 중요시하지 않고 인재구조가 불합리할 경우 1점 감점.
50			2. 인재양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편집 등 관련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격이 없거나 혹은 1년 동안 관련 업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핵심 인력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즉시 조정하지 못할 경우 3점 감점
51			3. 업무인력들이 직업도덕, 직업정신을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사회적 영향이 심각할 경우 연인원 1명당 1점 감점
52			4. 팀 관리가 혼란스럽고 팀원들이 법과 기율을 위반하는 현상이 있을 경우 연인원 1명당 2점 감점
53			5. 팀 경영과 인재 양성 관련 유효조치, 관련 매커니즘이 부족할 경우 4점 감점
54		경영관리 제도 (4점)	1. 비교적 완비된 제도를 구축했지만 집행에 힘쓰지 않았을 경우 1점 감점
55			2. 제도가 불완전하고 업계 규범 혹은 시장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실하게 경영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경우 1회당 1점 감점
56			3. 경영관리가 혼란하고 관련 관리기관의 처벌을 받을 경우 1회당 2점 감점
57		당건(党 建)과 사 상정치업 무 (4분)	1. 당건 사업을 중요시하지 않고 당 조직기구가 불완전하여 당 조직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경우 4점 감점
58			2. 편집 등 핵심 직무에서 당원이 선봉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3점 감점
59			3. 유효한 조치를 취해 직원의 사상교육을 강화하지 못하여 기업정신이 없고 발전 이념이 부족할 경우 2점 감점
60			4. 직원의 사상동향과 이익 요구를 중요시하지 않고 직원의 사상 혹은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을 경우 1점 감점
61			5. 정치 기율과 정치 규칙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문제는 1표 부결을 시행하고 전체 평가는 불합격

62	사 회 와 문 화 영 향 (30점)	영예수상 (7점)	1. 작품이 성시(省市)급 상 수상, 육성 혹은 지역 홍보 등을 지원 받을 경우 1부당 1점 추가
63			2. 작품이 국가급 상 수상, 육성 혹은 전국적인 홍보 지원을 받을 경우 1부당 2점 추가
64			3. 회사 혹은 회사 직원이 성시급 상, 장려 등을 수상할 경우 1인(1회)당 1점 추가
65			4. 회사 혹은 회사 직원이 국가급 상, 장려 등을 수상할 경우 1인(1회)당 2점 추가
66			5. 상기 가산점은 누적 7점이 최고 점수
67		사회평가 (7점)	1. 작품이 중앙 미디어 혹은 전문 권위 있는 미디어에서 홍보 보도되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뚜렷할 경우 1부당 2점 추가
68			2. 작품이 전문가 연구 혹은 평가를 받고 학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혹은 제3기관이 중점적으로 연구 전파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1부당 2점 추가
69			3. 작품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소장량이 5000이 넘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1부당 1점 추가
70			4. 회사 혹은 회사 직원이 중앙미디어 혹은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매체에서 긍정적인 대표로 홍보 보도되고 효과가 뚜렷할 경우 1인(1회)당 2점 추가
71			5. 상기 가산점은 누적 7점이 최고 점수
72		문화 영 향 (7점)	1. 작품 판권이 도서로 전환되어 독자의 사랑을 받을 경우 1부당 1점 추가
73			2. 작품 판권이 영화 및 드라마, 게임 등으로 각색되어 사회 대중들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1부당 2점 추가
74			3. 상기 가산점은 누적 7점이 최고 점수
75		국제영향 (7점)	1. 작품이 판권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해외 연구자가 평가, 번역하여 세계무대에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전파하고 중국 정신을 소개하여 좋은 영향을 미칠 경우 1부당 1점 추가
76			2. 상기 가산점은 누적 7점이 최고 점수
77		공익서비 스 (2점)	사회 기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국민 열독, 농가 책방 구축 등에 참여하여 효과 및 영향에 따라 1-2점 추가

점수 평가 소개:

1. 본 도표 1~6항은 기본 부분이며 합계 100점, 실제 상황에 따라 점수 평가 표준에 따라 차감하지만 각항 지표의 최고 배정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2. 62~77항은 가산점 항목이며 합계 30점, 실제 상황에 의해 점수 평가 표준에 따라 점수를 추가하지만 각항 지표의 최고 배정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평가 최저 점수는 0점이다.

27. 인터넷문학 출판관리 강화 관련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文学出版管理的通知
게재일	2020-06-05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분류	중국 출판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각 인터넷문학 출판업체:

인터넷문학은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 방대한 독자를 보유하고,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문학업계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수작품과 사상성, 예술성, 가독성을 모두 갖춘 원작 창작품이 쏟아져 나왔고, 문학창작 생산 촉진과 대중들의 정신적 문화정보 수요 충족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목할 만한 경향성과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일부 작품은 다소 편향적이고 격조가 없거나 심지어 외설적이고 음란한 내용, 살해 폭력 등 자극적이고 시선을 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결여, 책임체제 미비, 주체자의 책임 실천 부족,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편파적 행위 등 문제가 존재한다. <출판관리조례>,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 등 법률규정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문학 출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인터넷문학업계의 질서를 규범화하며, 인터넷문학 출판업체가 시종일관 올바른 출판 방향을 지향하고, 사회적 효과와 공익을 우선순위에 두며, 질적 발전과 우수작품으로 인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힘쓰도록 지도하여 인터넷문학의 번영과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내용 심의제도 수립.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반드시 편집장을 두고 공정한 편집위원회를 수립하여 내용에 대한 직무와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 편집장은 내용의 지향성 문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발표작품의 내용 품질에 대한 총 책임을 진다. 주제선정 기획을 강화하고, 총량, 구조 개선, 품질 향상을 제어하며, 참신하고 우수한 내용을 지원하고 형식화, 동질화 경향을 지양한다. 엄격히 지도 관리하여 품질의 내부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주제선정 논증제도, 내용심의수정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편집 수정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고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내용의 지향점이 정확하고, 건전하고 격조있는 문학작품을 보장한다. 플랫폼 주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엄격히 집행하고, 선심의 후발표 원칙을 지키며, 작품 발표 전에 등재한 내용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미완성되거나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한 작품에 대해서는 추적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표할 수 없다. 작품 인기순위, 상호 평론 등 작품 관련 정보 발표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강화하여 독자의 읽는 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2. 등재발표 행위의 엄격한 규범화. 인터넷문학 창작자의 실명제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시스템 백스테이지에서는 실명, 인터넷 공개아이디는 자율적 선택’이라는 원칙에 따라,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반드시 창작자에게 진실한 신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진짜 신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창작자에게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하여 창작자의 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플랫폼에 등재규칙과 서비스약정을 명시하고, 창작자에게 등재발표 행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합법

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효성있는 제약을 가해야 한다. 원작 작품을 등재 발표할 때, 반드시 작품 표지 혹은 내용 첫 페이지에 제목, 작가, 편집자 및 판권 설명 등 관련 정보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해야 한다. 인터넷 공공계정 서비스업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등 최초로 인터넷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곳은 상기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재배포업무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재배포하는 제품과 내용에 대해 추적 조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계정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앞에서 서술한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여 주체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정기적 사회적 효과와 이익 평가 심사 진행.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관련 요구에 따라 사회적 효과와 이익에 대한 평가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적 효과와 이익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출판주관부처에 제출, 심의 인정받아야 함. 인터넷문학 출판업체가 발표 혹은 추천한 작품에 큰 과실이 나타난 경우, 사회적 효과와 이익 평가 심사는 불합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년 연속 심사 결과가 우수한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출판주관부처의 평가 시상 추천 및 재정적 지원 등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심사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서면형식으로 이를 주의시키고 주 책임자와 면담하여 책임지고 해당 문제를 시정할 것을 지시해야 하며, 시정하기 전에는 각종 평가선발 및 시상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평가대회 추천 선발 행사의 관리 강화. 각종 사회조직, 미디어단체, 학교, 연구기관 등은 전국 인터넷문학 평가대회를 개최할 때, 반드시 국가신문출판서에 신청해야 하고, 동의를 거친 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기업은 어떤 명목에서든 전국성 인터넷문학 평가대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성 인터넷문학 평가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현지 출판주관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시장질서 규범화. 인터넷문학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내용이 심각하게 편향된 경우, 행정적 감독관리, 경제적 처벌, 형사 처벌 등 다양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한다. 저속하고 속되며 세속에 영합하는 내용을 없애고, 유행에 따라 모방하는 등 불량한 경향을 저지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한다. 인터넷문학이 사회적 풍토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거짓 내용을 배포하거나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나타난 경우, 관련 인터넷플랫폼은 즉시 기능 제한, 임시중단 업그레이드, 계정 폐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플랫폼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독자의 불만 소송제기 바로가기를 설치하여, 여론의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용등록제도를 구축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위법행위를 한 기업 또는 종사자를 저신용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그 위법 정황의 경중에 따라 진입 제한, 진입 금지 등 조치를 채택한다.

6. 인터넷문학 출판팀 설립 강화.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관 교육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인터넷문학 종사자의 내용 방향성 책임 역량을 높이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시킨다. 근무팀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인터넷문학 출판업체에서 내용심의에 종사하는 편집인력은 규정된 시간에 출판전문기술인력을 위한 지속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매년 최소 72시간의 교육시간을 수료하여 출판주관부처가 발급하는 지속교육합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문학 출판업체의 법정대표인, 편

집장 또는 주 책임자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출판주관부처가 조직한 직위훈련을 받고 국가신문출판총서가 인쇄발급하는 직위훈련 합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광범위한 인터넷문학의 종사자가 독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품위도덕 수양 강화, 공공질서와 양속(良俗) 준수, 새로운 기풍과 정기(正氣) 발양을 도모하며, 힘써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인터넷문학산업의 높은 명성과 인터넷문학 출판 근로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 보호해야 한다.

7. 관할지역의 관리 직책 철저히 이행. 각급 출판주관부처는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엄격히 실천하고, 소재지의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 관할지역내 인터넷문학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낱알이 파악하고 장부를 구축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판 문제가 있는 작품, 기업, 관련 여론에 대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관할지역의 인터넷문학 출판업체의 중대 사항과 주요 출판물의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 문제는 즉시 연구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써 각종 관리 책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문학 출판업체의 편집 책임제도의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출판업체의 자원배치, 연간 정기평가, 프로젝트 평가심의, 평가선발 표창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인터넷문학 평가단을 수립하고 보강하여 추출조사와 전수조사를 강화하고, 아주 작은 문제라도 편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불씨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한다. 기술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니터링 감시를 강화하며, 분석 연구 및 판단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관리 효율성과 역량을 높인다.

본 통지에서 언급한 인터넷문학 출판업체는 인터넷문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전국성 인터넷문학 평가대회는 전국 범위 내에서 인터넷문학 분야의 인물, 작품에 대해 진행하는 평가 시상 행사로, ‘중국’, ‘중화’, ‘전국’ 등의 타이틀을 수여하는 인터넷문학 평가대회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나 ‘국제’, ‘전세계’, ‘중화권’ 등 타이틀을 수여하는 대회도 이에 포함된다.

본 통지는 인쇄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서

2020년 6월 5일

28. 사진저작물 판권 질서 규범 관련 통지

제목	关于规范摄影作品版权秩序的通知
게재일	2020-06-11
출처	국가판권국
분류	중국 출판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판권국:

사진 작품 저작권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진저작물의 판권 질서를 규범화하며, 사진저작물의 광범위적이고 질서있는 전파를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의 인터넷 배급권 보호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한다.

1.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4조 제(10)항의 특징에 부합해야 한다.

뉴스 사건을 주제로 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시사뉴스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법률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2. 뉴스기관,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 인터넷 공중계정, 갤러리 운영기관, 비미디어기관 및 개인 등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사진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를 취득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되거나 당사자끼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진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해당 사진저작물의 구도, 색채 등에 대한 실질적 수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작품의 주제와 기존 의도를 곡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사진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저작물 저작자가 법적 보유한 원저작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진저작물 저작권자는 효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저작권을 사진저작권 단체관리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위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관련 소송과 중재 행위를 할 수 있다.

허가받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은 사진저작권 단체관리 행위를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갤러리 운영업체는 반드시 온전한 판권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판권 운영 행위를 규정하며, 사진저작물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이 약속한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갤러리 운영업체는 사용자에게 사진저작물을 제공할 때, 반드시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창작자, 위임방식, 위임기한 및 위임범위 등 필요 정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갤러리 운영업체는 합리적으로 판권 허가사용료를 수취해야 하고, 사용료와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5. 갤러리 운영업체는 반드시 성실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 위임과 보호 행위를 전개해야 하며, 판권이 없는 사진 작품에 대해 허위로 판권을 조작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을 받지 않은 사진저작물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투기성의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권리 보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갤러리 운영업체가 저작권 보호 기간 만기 및 저작권자가 재산권을 포기한 사진저작물에 대해 수집, 정리, 편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창작자 및 사용이 허용된 권리 범위 등 필요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창작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된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판권 허가사용료의 명분으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7. 사진저작물의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반드시 <정보의 온라인 배급권 보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간편한 권리보호 채널을 제공해야 하고, 권리 침해 분쟁 소송을 즉시 처리하며, ‘통지--삭제’의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8. 9년제 의무교육과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편찬 출판된 교과서적에 대해, 작가의 ‘허가없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 성명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기발표된 단독 사진저작물을 교과서적에 실을 수 있으나, 반드시 <교과서적 법정 허가사용 작품의 비용 지불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 혹은 혹은 저작권 단체관리조직에게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작가 성명, 작품 이름을 명시하며, 저작권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된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진저작물 저작권자와 사용자, 갤러리 운영업체, 사진촬영산업조직 등은 합리적이고 간편한 사진저작물 권한 위임 체계를 함께 모색해야 하며, 사진저작물의 권한 위임거래체제를 계속 정비하여 사진저작물의 합법적이고 질서있는 배급을 촉진한다.

사진촬영산업조직은 판권의 자율적, 공정거래, 분쟁 중재, 법적 권리 보호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중소·영세기업 등 사용자의 소규모 수익 목적의 갤러리, 빈곤 및 과학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공공 갤러리 연구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0. 사진저작물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정관리부처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신청서, 권리 증명서,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저작물의 원본, 합법적 출판물, 저작권 등록증서, 권리 취득 계약서 등은 저작권을 취득한 증거로 인정된다. 권리 성명, 사진저작물 상의 수인(水印)은 단독으로 저작권 권리 소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처는 일상적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강도를 더욱 높여 법에 따라 사진저작물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사진저작물 판권의 허위 조작과 허위 권리 위임 행위를 엄중히 조사 처벌한다.

본 통지는 인쇄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9. 출판물 감정 관리방법

제목	关于印发《出版物鉴定管理办法》的通知
게재일	2020-12-14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분류	출판

국가신문출판서의 <출판물 감정 관리방법> 배부에 관한 통지

국신출發〔2020〕2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출판물 감정 관리방법>을 배부하오니 이에 따라 수행하기 바란다.

국가신문출판서

2020년 12월 14일

출판물 감정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출판물 감정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출판물 감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출판물의 감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판물 관리 조례>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출판물 감정이란 출판물 감정기관이 전문 지식 혹은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출판물 감정 샘플의 불법 출판물 혹은 금지 위반 출판물 여부에 대해 분석, 심사, 감별을 진행하고 감정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출판물 감정은 주로 아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불법 출판물. 승인 없이 무단 출판, 인쇄 혹은 복제한 출판물, 출판업체 혹은 신문과 간행물 명칭을 위조, 사칭하여 출판한 출판물, 불법 수입한 출판물 등 포함.
- (2) 금지 위반 출판물이란 <출판물 관리 조례>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금지 내용이 있는 출판물.

제4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출판물 감정 기관이란 출판물 감정 직책을 담당하는 출판 주무부처와 출판 주무부처에 속한 출판물 감정 직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소황타비(扫黄打非:불법 및 음란 출판물의 제작 등을 소탕하다)’ 업무기관, 문화 종합 법 집행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심판기관 등 행정과 사법 직능을 갖춘 국가기관과 업체의 위탁을 받고 출판물 감정 활동을 진행한다.

- 제6조 출판물 감정은 감정기관 책임제를 실시한다. 출판물 감정기관은 엄격히 국가 법률법규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출판물 감정 활동을 독립, 객관, 공정, 규범화 있게 진행해야 한다.
- 제7조 출판물 감정기관과 감정 관계자는 출판물 감정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국가 비밀, 업무 비밀, 상업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제8조 국가신문출판서는 전국 출판물 감정활동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성급(省级) 이하 출판물 주무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출판물 감정 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2장 출판물 감정기관

- 제9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완비한 업무제도와 전문 감정 인력을 보유하고 출판물 감정 활동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면서 해당 관리 책임과 법률 책임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0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위탁 수리, 위탁 수속 처리 등 업무절차를 규범화하고 감정 서류의 심사, 접수, 보관, 사용, 반환, 보관 등 업무제도를 구축 및 완비시켜야 한다.
중대한 사회 영향 관련 사건의 감정을 위탁 받은 후 출판물 감정기관은 위탁 접수 24시간 내에 동급 출판 주무부처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 출판물 감정 인력은 아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국가의 법률과 사회 공공도덕을 준수한다.
 - (2) 국가의 신문출판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 (3) 출판물 감정 업무 지식과 전문 스킬을 갖추고 있다.
 - (4) 신문출판 관련 업무 경험이 있다.
- 제12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출판물 감정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기관이 접수한 복잡, 난해하거나 혹은 큰 논쟁이 있는 감정 사항 등을 연구 결정해야 한다. 출판물 감정위원회는 본 기관 책임자, 감정 인원 및 감정 업무와 관련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구성 인원 수는 홀수이어야 한다.
출판물 감정기관은 기타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출판물 감정 사항을 위해 상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 출판물 감정 인원, 감정위원회 구성원이 아래 상황이 있을 경우 회피해야 한다.
- (1) 감정 사항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 (2) 감정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감정사항과 기타 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위탁 업체, 감정 관련 인원이 회피 신청을 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출판물 감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14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문서관리를 강화하고 감정 문서의 제작, 점검, 심사 및 발행, 발송 등 업무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감정 과정의 규범화와 고효율, 감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

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인원의 실무 교육, 평생 교육, 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감정 인원의 교육과 업무 교류 활동 참여를 지원하면서 감정 인원이 높은 정치적 소양과 강한 전문 기능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제3장 출판물 감정 절차

제16조 위탁업체는 같은 행정구역 내 동급 출판물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동급에 해당 감정 직책을 갖춘 출판물 감정기관이 없을 경우 상급 출판물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감정을 진행해야 한다. 유관 소수민족 언어문자 출판물의 감정은 위탁업체 소재 성급(省级) 행정구역 내에 감정 능력을 갖춘 출판물 감정기관이 없을 경우 성급 출판 주무부처의 동의를 얻어 위탁업체가 감정 능력이 있는 기타 성급 출판물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성급 이상 출판물 주무부처는 업무 수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해당 감정 직책을 지닌 출판물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감정 위탁을 수리할 수 있다.

금지 위반 출판물의 감정은 성급 이상 출판물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제17조 위탁업체가 출판물 감정기관에 제공하는 감정 서류는 진실, 객관, 완전, 충분해야 하고 감정 서류 및 그 출처의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8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위탁을 받은 후 위탁업체와 인계 수속을 하고 감정 서류의 명칭, 종류, 수량, 감정 제출 시간 등을 확인 및 기록해야 한다. 감정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감정 위탁 서신
- (2) 감정 사항 설명
- (3) 감정 샘플 및 리스트
- (4) 감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9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위탁 받은 당일부터 근무일 5일 내에 수리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잡하고 난해하거나 혹은 특수 감정 사항에 대해서는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근무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 사항, 감정 서류 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본 기관 감정 직책에 속하고 감정 서류가 감정 수요를 만족시킬 경우 수리해야 한다.

감정 서류가 불완전, 불충분하고 감정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출판물 감정기관은 위탁업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보완 후 감정 수요를 만족시킬 경우 수리해야 한다.

제21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 위탁일 경우 출판물 감정기관은 수리하지 않는다.

- (1) 감정 사항이 본 기관 감정 직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2) 감정 서류가 불완전, 불충분하고 보완 후 여전히 감정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3) 위탁업체가 동일 감정 사항에 대해 동시에 다른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감정하는 경우
- (4)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경우

제22조 출판물 감정기관이 감정 위탁을 수리한다고 결정한 경우 위탁업체와 위탁 수속을 하고 감정 사항, 감정 용도, 감정 시한 및 약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출판물 감정기관이 수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위탁업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감정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제23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위탁 수리 효력 발생 당일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감정을 완성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연장해야 할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연장 시한이 근무일 2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감정 시한을 연장할 경우 위탁기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서류를 보완하거나 다시 수령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관련 기관과 정보 확인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4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위탁을 수리한 후 2명 또는 2명 이상의 감정인원을 지정하여 감정해야 한다. 감정인원은 감정 방법과 감정 과정 등에 대해 기록하고 기록 내용은 진실, 객관, 규범, 완전해야 한다.

제25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과정에서 감정 샘플의 출판, 인쇄 혹은 복제, 수입 등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 업체와 확인할 때 서면 문건을 발행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업체는 출판물 감정기관이 제출한 확인 사항에 대해 진실되고 명확한 서면 설명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6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과정에서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정을 중지해야 한다.

- (1) 본 방법 제21조 규정에 있는 상황일 경우
- (2) 감정 서류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감정 의견 작성에 영향을 주고 위탁업체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3) 위탁업체가 감정 위탁을 철회한 경우
- (4) 불가항력으로 감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5) 복잡, 난해하거나 논쟁이 있는 감정 사항에 대해 감정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경우
- (6) 기타 감정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출판물 감정기관이 감정을 중지할 경우 위탁업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

제27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업체는 위탁 출판물 감정기관에 추가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 (1) 위탁업체의 원인으로 감정 사항에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 (2) 위탁업체가 기존 감정 사항에 대해 신규 감정 서류를 추가할 경우

(3) 기타 추가 감정을 해야 할 경우

(4) 추가 감정은 기존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하고 기존 감정기관의 직책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된다.

제28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업체는 출판물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재감정을 할 수 있다.

(1) 기존 감정기관이 감정 직책 범위를 벗어나 감정을 한 경우

(2) 기존 감정 관계자가 회피해야 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업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

제29조 출판물 감정 기관이 감정 의견을 내놓기 어려워 감정을 중지할 경우, 그리고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업체는 상급 출판물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출판물 감정기관이 감정은 완성한 후 감정 사항과 관련된 감정 샘플, 확인한 정보 자료, 기타 감정 서류, 감정 기록, 감정위원회 결정, 감정 전문가 의견, 감정 문서 등을 정리하여 서류철을 만들고 기록 보관해야 한다. 감정 샘플의 수량이 많을 경우 주요 정보 페이지의 스캔본, 복사본 혹은 사진을 보관할 수 있다.

위탁업체가 감정 서류를 가져가야 할 경우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샘플의 주요 정보 및 기타 감정 서류를 스캔, 복사하거나 촬영하여 보관해야 한다.

출판물 감정 기록 보관 기간은 30년 그 이상이고 중요한 감정사항 기록서류는 영구 보관한다.

제4장 출판물 감정 문서

제31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을 완성한 후 감정인원이 적시에 감정 문서를 규범 있게 제작해야 한다. 감정 문서 제작 완성 후 출판물 감정기관은 기타 감정 인원을 지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출판물 감정기관 책임자는 재심사한 감정 문서에 대해 승인 및 발행을 진행한다.

제32조 출판물 감정 문서는 일반적으로 제목, 번호, 기본 상황, 감정 상황, 감정 의견, 서명, 일시 등 내용이 포함되고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 제목, 출판물 감정기관의 풀 네임과 감정 문서 명칭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2) 번호, 출판물 감정기관의 약어, 문서 성질 약어, 연도 및 순번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3) 기본 상황, 위탁업체, 위탁 사항, 샘플 정보 등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4) 감정 상황, 감정 샘플 및 관련 감정 서류에 대한 심사와 분석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다.

(5) 감정 의견, 법에 의거하고 규범화하고 명확하며 타당성과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6) 부록, 감정 문서 중 해석이 필요하거나 혹은 열거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다.

(7) 서명, 출판물 감정기관 공식 명칭을 명기하고 출판물 감정기관의 감정 전용도장을 날인한다.

(8) 일시, 감정 문서 제작 일시를 명기한다.

제33조 출판물 감정기관은 규정 혹은 위탁업체와 약정한 방식에 따라 위탁업체에 감정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34조 감정 문서 발송 후 추가 감정, 재감정 혹은 기타 이유로 감정문서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할 경우 출판물 감정기관은 감정 문서를 재제작해야 하고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 “본 감정 문서는 xx호 감정문서의 수정본이고 원(原)감정문서는 폐기한다”. 수정 후의 감정문서는 원감정문서 회수 후 발송한다. 원감정문서는 수정 문서의 최초 증거로 보관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5조 출판물 감정기관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출판 주무부처가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주요 책임자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를 내린다.

- (1) 감정 직책범위를 벗어나 출판물 감정 활동을 진행한 경우
- (2)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위탁 수리를 거부한 경우
- (3) 출판물 주무부처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한 경우
- (4) 고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과실로 감정 서류 훼손, 분실을 초래한 경우

제36조 출판물의 출판, 인쇄 혹은 복제, 수입 업체 등 출판물 감정기관이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출판물 감정기관은 유관 상황을 동급 출판물 주무부처에 피드백하고 출판 주무부처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를 진행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 본 방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 동시에 신문출판서가 1993년 3월 16일 발표한 <신문출판서 출판물 감정 규칙>을 폐지한다.

30.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 개선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规范期刊经营合作活动的通知
게재일	2023-07-06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분류	출판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 개선에 관한 통지

국신출발[2023] 제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부처 및 위원회, 각 인민단체출판단위 주관부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선전국, 중앙중점출판그룹

정기간행물은 이념과 문화를 홍보하는 중요한 장이자 문화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다. 그러나 관리 과정에서 소수의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간행물 지면을 대여함에 있어 운영 파트너의 정기간행물 편집 개입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 질서를 어지럽히고 저자와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출판관리조례(出版管理条例)>, 국무원의 <비공유 자본의 문화산업 진입에 관한 약간 결정(关于非公有资本进入文化产业的若干决定)>, <정기간행물 출판관리 규정(期刊出版管理规定)> 등 관련 법규 및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경영협력활동규범 개선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정기간행물의 출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정기간행물 운영 파트너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광고 운영, 유통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의 인터뷰, 편집 등 출판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정기간행물의 출판단위와 주취주관단위는 운영 파트너가 ‘정기간행물의 전면 운영’, ‘간행물 타이틀의 창작 권리 향유’, ‘정기간행물의 무형자산 향유’, ‘편집 지사 설립’, ‘특별호 발간(특집판, 칼럼, 특별 주제, 부록)’ 등의 명목으로 정기간행물의 출판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운영 파트너는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법인 인감을 보관 및 사용할 수 없다.
2.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운영 파트너에게 원고의 정리 및 모집 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정기간행물 출판단위가 ‘논문 대리 발행’ 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영 파트너가 ‘논문 윤색’, ‘논문 조판 설계’, ‘추천 논문’ 등의 명목으로 정리한 원고를 접수할 수 없다.
3. 정기간행물과 해당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예비 심사, 재심사, 최종 심사는 정기간행물 출판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전체 심사 과정을 최종 심사로만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정기간행물 뉴미디어 계정과 온라인 문헌 데이터베이스 계정은 정기간행물 출판 부서에서 등록 및 관리해야 하며 운영 파트너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문헌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정기간행물을 수록할 때 ‘정기간행물 출판 허가증’ 원본과 매년 연간 검증 스탬프가 찍힌 원본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수록된 정기간행물의 온라인 버전과 정기간행물의 종이 버전을 일상 관리에서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확인하여 버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하고, 해당 지역

신문출판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책임자 임명은 간부의 인사 관리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운영 파트너의 인원이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책임자 혹은 편집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정기간행물 편집인력은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에서 고용하고 인사과를 실시해야 하며 운영 파트너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대신 관리해서는 안 된다.
5.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편집과 운영의 ‘분리’ 원칙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편집 직원에게 운영 및 수익 창출 임무를 할당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력과 운영인력은 겸직할 수 없으며, 편집인력은 외부와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 등 기타 사업운영에서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6. 정기간행물 출판단위는 정기간행물 ‘제2편집부’, ‘사무소’, ‘업무연락소’ 등의 명의로 정기간행물 편집 업무에 운영 파트너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7. 정기간행물의 주관·주최 단위는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념적 업무 책임제를 실시하며 산하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출판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3심 3교(三審三校)’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출판제도 시행상황, 업무 범위 및 간행물 준법출판상황 등에 대한 일상점검을 강화하고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재정관리를 엄격히 모니터링하며 관련 경영협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산하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불법 출판 운영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 감독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8. 각 지방 신문출판관리부서는 연간 정기 검사 및 특별 검사 등과 연계하여 정기간행물 출판단위의 운영 및 협력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출판관리규정(出版管理条例)> 및 <정기간행물 출판관리규정(期刊出版管理规定)>의 관련 조항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기한 내에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절차에 따라 <정기간행물 출판 허가증(期刊出版许可证)>을 취소한다. 시정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출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연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적시에 등록이 취소된다. 정기간행물의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기간행물의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며 정기간행물 출판팀의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본 통지는 발행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신문출판서

2023년 6월 26일

□ 게임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2000.09.25	2000.09.25	국무원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 허가 규정 외자 50% 초과 금지, 국내 외 상장, 외자 합자 시 심사 승인 필요 등 규정 중국 내 모든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한 관리규정
2	2004.05.14	2004.05.14	문화부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중국 내 모든 온라인게임은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문화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1. 문화부에서 조직한 수입 온라인게임 콘텐츠 심사 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심사를 받아야 함 2. 콘텐츠 심사 후 오픈 베타 베스트 진행, 문화부는 위원회 콘텐츠 심사 결과와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정식 서비스 허가결정
3	2005.04.28	2005.04.28	중앙선전부, 문화부 등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문화 상품 수입에 대한 관리 방법 1. 문화부 수입 온라인게임 관리 감독, 신문출판총서 온라인게임 출판물 심사와 온라인게임 온라인 출판 발행 전 심의 및 감독 진행 2. 기존에 심의에 통과한 온라인게임 허가 없이 상품 명 변경 혹은 콘텐츠 첨삭 불가
4	2008.03.17	2008.04.15	신문출판총서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중국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 및 해당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 - 출판기업 설립, 출판 및 수입 관리, 비매품 및 위탁 복사 관리, 감독 등
5	2009.03.01	2009.04.10	공업정보화부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중국 내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정의 및 상품 등록, 생산, 판매, 관리 감독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 1. 수입 소프트웨어 가운데 중국 내에서 현지화 개발 및 생산된 상품 중국 내에서 개발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와 원 개발 기업이 규정에 따라 상품 등록 신청 2. 소프트웨어 상품 등록증 유효기간 5년
6	2009.03.01	2009.04.10	공업정보화부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의 신청, 심사승인, 사용, 경영행위 규범, 변경 등 관리 방법 1. 기반 통신사업 기업은 기업의 국가 지분 혹은 주식이 51%가 되어야 함 2. 부가가치 통신사업 기업은 일부 지역 범위 서비스 할 경우 1백만RMB, 중국 전역 일 경우 1천만RMB 등록 자본금을 갖춰야 함 3. 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1년 안에 허가증 범위 내 통신사업 서비스 진행
7	2009.06.04	2009.06.04	문화부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에 대한 규제 정책 1. 사이버머니 거래 시, 실명제 도입 2. 사이버머니를 사행성(가차시스템) 등의 불법 행위에 사용하는 것 엄격 관리
8	2009.07.01	2009.07.01	신문출판총서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신문출판총서의 온라인게임 허가 권한 규정 1. 게임물의 인터넷 출시에 대한 사전 심의, 허가를 책임 2. 국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온라인게임 출시에 대한 심의, 허가를 책임 3. 유일하게 국무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입하는 온라인게임의 심의, 허가를 실시하는 부서 4. 수입되는 온라인게임은 신문출판총서의 사전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함
9	2010.06.03	2010.08.01	문화부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온라인게임 기업 자격 및 온라인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규정 1. 온라인게임 기업은 내자 법인으로 등록자본금 1천만RMB 이상,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취득 2. 온라인게임 기업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반국가적 등의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됨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3. 게임머니는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내 상품 및 서비스 이용 제한되며, 기타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
10	2010.12.07	2010.12.07	신문출판총서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인터넷을 통한 출판물 발행에 대한 신문출판총서 규범
11	2011.01.31	2011.01.31	문화부, 교육부 등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온라인게임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대해서 부모의 강호를 받게 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한 통지. 2012년 1월 온라인게임 사이트 내 안내문 게시 의무 미집행 운전자에 벌금형 진행
12	2011.02.17	2011.04.01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인터넷 문화 상품에 대한 정의 및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조건 1. 내자 법인으로 등록 자본금 1천만RMB 이상(화폐자본) 2. 경영에 적합한 설비와 장소 구비 3. 8명 이상의 관리 인력과 전문 엔지니어 구비
13	2013.01.30	2013.03.01	국무원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 내 합법적인 콘텐츠 전파 및 법정 허가, 관련 관리 기술 등에 대한 관리 규정 - 2013년 수정을 통해 범칙금 강화
14	2013.08.12	2013.12.01	문화부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인터넷문화경영기업은 '인터넷문화콘텐츠 관리임시규정'에 금지한 내용이 자사 콘텐츠에 있는지 자체 심의해야 함 1. 전문 콘텐츠 관리 부서를 개설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실시 2. 《콘텐츠 심사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심사해야 함
15	2014.03.31	2014.03.31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등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1. 외자기업의 게임기 생산과 판매 허가. 문화주관부 문 심사를 통과한 게임기는 중국내 판매 가능 2. 외상 개인투자의 오락시설 설립 허가
16	2015.03.19	2015.03.19	문화부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게임 홍보활동에 대한 관리 및 법 집행 강화
17	2016.02.04	2016.03.10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의 업체는 인터넷 출판서비스에 종사 불가
18	2016.05.24	2016.07.0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모바일게임은 '선심사 후서비스'로 하고, HTML5 기반의 게임 또한 판호 심사를 거쳐야함
19	2016.12.01	2016.12.01	문화부	온라인 게임 운영 중도 및 사후 감독관리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게임 경영기업은 유저들이 실명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게임 아이템의 취득 확율을 공개하며, 가상의 톨로 법정화폐 교환을 금지하고,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과 부적절한 내용 차폐 등
20	2016.05.24	2016.05.24	중국 음반과 디지털 출판협회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에서 작성한 모바일게임 개발 및 출판 심사 중 중요한 심사 기준임
21	2018.08.24		광전총국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	미성년자 프로그램 방송시간 등 규정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광고모델 기용 불가
22	2019.10.25		국가신문출판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과몰입 예방에 관한 통지	미성년자의 과도한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방지하기 위한 계정의 실명제 도입 및 이용시간대 등을 규정
23	2019.11.06	2020.01.01	국가광전총국	게임·오락 설비 관리방법	비디오 및 체형형 게임기와 콘텐츠에 관한 규범
24	2020.12.16		국가신문출판서, 중국음향디지털출판협회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적령 안내 식별부호를 규정함. 녹색은 8세 이상(8+), 파란색은 12세 이상(12+), 노란색은 16세 이상(16+) 등 색상별로 표시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25	2021.03.15	2021.04.01	중앙선전부 출판국	게임 심사 평점 세칙	'컨셉트 지향', '오리지널 디자인', '제작 품질', '문화 콘텐츠', '개발 정도' 등 5개 부문에서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총점을 도출
26	2021.08.30	2021.08.30	국가신문출 판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시행에 관한 통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엄격히 제한, 온라인게임 사용자 계정 실명 등록 및 로그인 등 요구
27	2021.10.29		교육부, 중앙선전부 등 6개 부처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	온라인 게임 심사 제도 및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
28	2022.04.15		광전총국, 중앙선전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게임 라이브방송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미성년자 보호법과 라이브 방송, 온라인 게임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6가지 요구사항이 포함

■ 게임

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제목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第292号)
제재일	2000-09-25, 2011-01-08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92호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은 2009년 9월 20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 주룽지(朱镕基)

2000년 9월 25일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2000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92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일부 행정 법규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뜻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와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두 종류로 나눈다.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정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의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성, 공유성 정보를 온라인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뜻한다.

제4조 국가는 영리성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하고,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실행한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신문,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고자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유관 주무부처의 심의허가를 반드시 획득해야 하고, 경영허가 신청 또는 등록 수속 이행 전에 법에 의거하여 유관 주무부처의 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다음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 (1)업무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 방법이 있어야 한다.
- (2)웹사이트 안전보장조치, 정보 안전기밀 관리제도, 사용자 정보안전관리 제도를 포함한 완비된 인터넷과 정보안전보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 (3)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5조 규정 범위에 속해야하며 유관 관리부처의 동의를 취득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

제7조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하 ‘경영허가증’으로 약칭)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는 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 하는 경우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가서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조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수속 시, 제출 자료:

- (1) 주최기관과 웹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상황
- (2) 웹사이트 주소와 서비스 항목
- (3) 서비스 항목이 본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범위에 속할 경우, 유관 주무부처의 동의 문건을 미리 취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등록자료가 완비된 경우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정보서비스종사자가 전자공시서비스를 개설하려는 경우 영리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허가 신청 또는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 시,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특별 신청서 또는 특별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와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했거나 이미 등록수속을 이행한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 제11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허가 또는 등록 항목을 초과한 서비스를 제공해선 아니 된다.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유상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항목, 웹사이트 주소 등의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30일 전에 원 심의, 증서 발급 또는 등록기관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 제12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 제13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사용자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공한 정보 내용이 합법적임을 보증해야 한다.
- 제14조 신문, 출판 및 전자공시 등 서비스 항목에 종사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한 정보 내용 및 그 발표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시간, 사용자ID,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백업본은 60일간 보존해야 하고, 국가 유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 제15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는 안 된다.
- (1) 중국 헌법에 기록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 (2)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 통일을 해하는 내용
 - (3) 중국의 국가명예를 훼손하고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중국 각 민족 간의 갈등과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방해하는 내용
 - (5) 중국의 국가종교정책을 훼손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며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외설,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공표를 유포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 제16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그 웹사이트에 전송된 정보가 본 방법 제15조에서 열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각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가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제17조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국내외 상장 또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합자, 협력 신청 시 사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18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신문, 출판, 교육, 보건, 약품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와 공안, 국가안보 등 유관 주무부처는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의 항목을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다.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등록된 항목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웹 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다.

제20조 본 방법 제15조에 열거된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컴퓨터정보 인터넷 국제인터넷안전보호관리방법(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安全保护管理办法)》 등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경영허가증 발급기관은 영업 중지 정돈에서 경영허가증 취소까지의 명령을 내리고 기업등기기관에 통지한다.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등록기관은 웹사이트 임시 폐쇄에서 웹사이트 폐쇄까지의 명령을 내린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본 방법 제4조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을 중지하고 정돈하게 하거나 웹사이트 임시 폐쇄명령을 내린다.

제2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그 경영허가증번호 또는 등록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본 방법 제1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경영허가증 발급기관이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등록기관이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다.

제24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그 업무 활동 중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신문, 출판, 교육, 보건, 약품 감독관리와 공상행정관리 등 유관 주무부처는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통신관리기구와 기타 유관 주무부처 및 기타 업무자가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담당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강등, 파면에서 제명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6조 본 방법이 공표되기 전에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한 경우 본 방법 공표일로부터 60일 내에 본 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재신청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游戏产品内容审查工作的通知
게재일	2004-05-14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⁸⁰⁾ 문화국:

문화부가 2003년 5월 10일 발표한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이하 《규정》으로 약칭)은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문화상품 및 그 경영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온라인게임의 수입 경영은 문화부에 보고하여 내용 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월 17일 《국무원 판공청이 문화부 등 부서에 송부하는 PC방 등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특별 정돈 전개의견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转发文化部等部门关于开展网吧等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专项整治意见的通知)》(국판발〔2004〕19호)에서는 “문화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게임, 음반·영상물, 공연 레퍼토리(프로그램), 예술품,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 문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무영업집조경영처벌방법(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에 따라 금지를 명한다. 문화부의 내용 심의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술한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을 전파하는 경우 문화부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고 정보산업부는 법에 의거하여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공중앙 국무원의 미성년자 사상도덕 건설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약간의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未成年人思想道德建设的若干意见)》(중발〔2004〕8호)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내용을 엄격히 심의하여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행위와 공포, 잔인성 등 유해 내용을 유발하는 것을 포함한 게임 소프트웨어 제품을 조사 처리한다. 미성년자의 정신 문화상품의 수입 기준을 엄격히 하고 수입 단계를 엄격히 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화상품을 선택적으로 소개하면서 해외 유해문화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재차 제기했다. 이상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온라인 전파 또는 모바일로 전파되는 모든 외국 온라인게임 제품은 반드시 문화부의 내용 심의를 거친 후에야 운영에 투입될 수 있다.
2. 문화부는 수입 게임제품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약칭)를 설립해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의 콘텐츠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위원회 산하에 판공실을 설치하여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을 심사하는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3. 인터넷 제품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영기업은 문화부가 심사 발급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취득해야 한다.
4.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수입 예정인 온라인게임 제품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80)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5.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이 없고 금지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영리성 문화업체는 문화부에 아래 자료와 함께 서면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1) 문화부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신청서(부록1 참고)와 문화부 수입 온라인게임제품 자료 등록표(부록2 참고)
- (2) 제품 테마 및 내용 설명서
- (3) 제품 조작설명서(중국어본과 외국어본)
- (4) 제품 샘플(중국어본과 외국어본, CD-ROM 또는 DVD CD의 온라인게임 소프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3부,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ID는 슈퍼바이저 권한(또는 최고 게임 등급)이어야 함
- (5) 게임 중 전체 대화, 내레이션, 묘사성 문자 및 게임 테마곡, 삽입된 가사 텍스트(중국어본과 외국어본)
- (6) 제품 판권무역 또는 운영대리협약서(중국어본과 외국어본), 오리지널 판권증명서, 판권수권서 부분 또는 사본
- (7) 제품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해당 게임 제품에 대한 등급평가서 또는 관련 증명
- (8) 신청기관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과 《영업집조》
- (9) 자체 심의결정 결과(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 내용의 관련 설명 포함)
- (10) 내용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6. 비독점 라이선스 사용의 게임 제품 수입 금지

게임제품 판권무역 또는 운영대리협약은 반드시 중국의 《계약법》, 《저작권법》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정원칙을 위배한 조항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7. 문화부는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 내용 심사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는 수입 인터넷 제품에 대해 내용 심의를 진행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한다. 초심에 합격한 경우 오픈 베타테스트를 실시한다.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지 30일 내에 오픈 베타 테스트 홈페이지에 《규정》 제17조 내용을 심사기준과 심의위원회 판공실의 E-mail을 게재해야 한다. 문화부는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내용 심의의견과 오픈 베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하는 경우, 승인문건을 발급해야 정식으로 운영에 투입될 수 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내용 심사와 오픈 베타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품을 수정해야 할 경우 적시에 수정해야 하고, 수정하지 않을 경우 승인하지 않는다.

8. 문화부의 승인을 거친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문화부 승인번호를 명시해야 하고, 무단으로 프로그램 명칭과 프로그램 내용을 침삭해선 아니 된다. 승인을 취득한 중국어 프로그램 명칭(외국어 명칭은 괄호 안에 표기)을 사용해야 한다.

운영 승인을 받은 온라인게임 제품에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보완’ 과 변경 버전 또한 문화부에 보고하여 내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국내에서 운영, 전파, 유통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는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수입 종료를 결정한 경우 문화부에 그 승인

번호를 취소한다.

9. 온라인게임 제품의 수입, 운영업체는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제품 운영 과정 중에 《규정》에서 금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수입, 운영업체의 원인이 아닌 금지 내용이 발생한 경우, 수입, 운영업체는 금지내용에 대해 즉시 삭제 처리를 진행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비분을 복제하고 아울러 적시에 문화부에 보고한다.
10. 중국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온라인게임 제품 수입은 외국 온라인게임 제품 처리 관련 수속을 참조한다.
11. 본 통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정식으로 운영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입 온라인게임제품은 9월 1일 이전에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문화부에 보고하여 내용심사 재발급 수속을 밟는다. 서면보고 심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무단으로 수입 온라인게임제품을 전파한 것에 따라 법에 의거 조사 처리한다.
12. 국내 온라인게임 제품 개발, 운영업체는 국가 법규와 본 통지의 관련 요구에 따라 게임 제품 개발하고 관리한다. 국내 온라인게임 제품도 9월 1일 이전에 중국 문화부 등록하여 등록 번호를 취득하고 아울러 온라인게임 제품 홈페이지에 명시한다. 국가 헌법을 위반한 경우 각급 문화행정부서는 법에 의거 조사 처리한다.

이상 내용을 통지한다.

- 부록 1. 문화부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 콘텐츠 심사 신청서
2. 문화부 수입 온라인게임 제품 자료 등록표

2004년 5월 14일

3.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제목	关于加强文化产品进口管理的办法
제재일	2005-04-28
출처	중공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해관총서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문화상품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방법 중선발(中宣发)〔2005〕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선전부, 문화부(국), 광전국(청), 신문출판국, 상무 주무부처, 해관 광둥분서(广东分署), 해관 텐진(天津), 상하이 특별과건관공실, 각 성 직속해관:

중국은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문화상품 수입이 점차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상품의 수입은 세계의 우수한 문화성과를 흡수하고 국민의 다방면, 다차원의 정신적 문화 요구를 한층 더 충족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하지만 현재 문화상품 수입 업무 중에는 관리 미비와 불법복제판 밀수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문화 분야의 대외개방과 문화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국 문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형세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상품(문화서비스 포함)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시키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외개방수준을 향상하는 동시에 국가 문화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래와 같이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1. 당위원회 선전부서는 문화상품 수입관리를 지도하는 업무의 협조를 담당한다. 문화행정부서는 음반·영상물, 미술품과 공연프로그램 수입 등 분야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라디오영화 TV행정부서는 라디오TV프로그램과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의 수입을 담당하고 중외합작 제작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과 해외 위성TV채널 방송 등 분야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서적신문간행물, 전자출판물 수입을 담당하고 판권무역 및 협력출판 활동 등 분야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상무주무부처와 각급 해관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문화상품 수입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수입 수량 통제와 상품 종류 구조 최적화'의 원칙에 따라 중앙선전부는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등 부서에 협조하고 문화상품 수입의 총체적 계획, 연도계획과 수입 심사기준을 통일 제정하며 문화상품 수입에 대한 거시제어와 분류관리를 강화한다. 해외문화상품의 수입 심의허가 등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관리부서 간의 일상 업무 협조메커니즘과 데이터 종합분석제도를 마련한다. 관련 국제관례를 참조하고 기술표준 인정, 콘텐츠 심의 감정과 총량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라디오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음반·영상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의 수입 수량과 상품 종류 구조를 통제한다.
3. 국가는 문화상품 수입에 대해 프랜차이즈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경영기업에 대해 문화상품 수입 경영허가증 제도를 실행한다. 수입 경영허가증은 국무원 문화,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의하여 발급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직무 분업에 따라 문화상품 수입에 대한 심의허가 제도, 콘텐츠 심의제도와 등기등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표준을 부단히 완비하고 절차를 규범화한다. 수입 문화상품에 대해 진입제도를 실행하고 각 급 해관은 문화, 국가광전

중국,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의 발급한 문화상품 진입 문건에 근거하여 검수 수속을 밟는다.

4. 서적신문간행물, 전자출판물, 음반·영상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라디오TV프로그램 등 문화상품 수입 업무는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국유 문화업체가 경영한다. 해외 공연단체 또는 개인의 중국 국내에서의 공연은 공연 경영자격을 갖춘 공연 매니지먼트기관이 경영해야 한다. 유관 행정부서는 문화상품 수입경영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경영업체에 대해 연도심사제를 실행한다. 규정을 어기고 문화상품을 수입한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입자격을 취소하며 가까운 시기에 더 이상 문화상품 수입업체 승인을 하지 않는다. 기존의 문화상품 수입 경영기업에 대해서는 수량 통제, 배치 합리화와 구조 최적화의 원칙에 주의하여 정돈해야 한다.
5. 음반·영상물 완성품 수입 업무는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가 독자 경영한다. 음반·영상출판기업은 허가 받은 출판업무 범위 내에서 수입 음반·영상물의 출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음반·영상출판기업은 '책임편집 초심, 부주임 2심과 편집장 최종심의' 제도를 견지하여 콘텐츠 초심 단계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문화부 음반·영상물 심의위원회는 콘텐츠 심의 표준과 내부 업무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전문가 정례회의 제도를 완비하여 콘텐츠 심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수입 음반·영상물에 대한 재심의를 완성품 등록 제도를 강화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수입한 음반·영상물의 출판, 복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판 발행 과정 중 심사요구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유관 관리법규에 따라 수입업체에 대해 통보하고 처벌한다. 국내에서 해외 음반·영상물 전시회를 열려면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온라인게임의 수입 관리는 문화부가 사용절차에서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고,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 진행을 담당한다. 신문출판총서는 해외저작권자가 위임한 온라인게임출판물의 출판에 대해 심의허가를 진행하고, 게임출판물의 인터넷 출판발행에 대한 사전 심사승인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온라인게임의 내용 심의를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심의를 중요시하여 외설, 폭력, 공표 등 유해 내용을 포함하는 온라인게임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한다. 수입 승인을 받은 온라인게임 출판물은 무단으로 제품 명칭을 변경하거나 제품 내용을 첨삭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연 매니지먼트기구가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의 중국 공연 유치를 신청할 경우 문화부에 심사승인을 신청한다.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에 와서 가무 오락장소에서 지정 영업성 공연 유치를 신청하거나 홍콩·마카오·대만지역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중국 대륙에 와서 영업성 공연 유치를 신청할 때 공연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심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8. 미술품 수입 경영활동 종사자가 중국 국내에서 해외 미술품 전람행사를 개최할 경우 개최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예술품 경영기관은 중국 국내에서 예술품 수입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9. 해외 드라마, 영상 애니메이션 및 TV프로그램의 수입은 광전총국에 심사승인을 신청하고, 수

입 프로그램 심사보고제를 실행하며, 자격을 갖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한다. 위성전송방식 등을 통한 해외TV프로그램 수입은 성급 이상 국가광전총국 행정부서가 심의허가 후 광전총국에 심사승인을 신청한다. 수입 드라마, 애니메이션 및 TV프로그램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수량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불법복제판(해적판) 방영과 인터넷 불법 전송을 엄격히 금지한다.

10. 영화수입 업무는 광전총국이 지정한 수입업체가 전문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수입 영화의 전국 배급업무는 광전총국이 승인한 배급사가 배급한다. 수입 영화에 대해서는 총량 통제와 상품 종류 구조 최적화를 실행해야 한다. 각 방송국과 각 영화채널에서 수입하여 전문적으로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영화는 광전총국의 심사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개최되는 해외 영화전시회, 국제영화제 등의 행사 개최는 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해외합작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항목 입안 관리를 강화하고 합작영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엄격히 심의한다. 합작영화의 중국 국내 배급 및 방영, 합작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중국 국내 배급과 방송국 방송은 광전총국이 교부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가 합작한 영화는 중국 대륙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 대륙 이외의 지방에서 인화할 수 있다.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가 합작한 드라마는 중국 대륙 주무부처의 심의를 통과한 후 중국산 드라마 방송과 배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12. 해외 위성TV채널이 중국 국내에서 방송되려면 광전총국이 지정한 기구가 독점 대리하여 엄격한 심사승인 관리를 실행하고, 그 프로그램은 지정기구의 콘텐츠 감독 처리 실행을 득한 후 통일적으로 전송된다. 원칙상 해외 위성TV채널의 중국 국내 방송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방송 승인을 받은 기존의 해외TV채널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강화한다. 유해 프로그램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필요한 통제수단을 취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과 기업은 위성TV접수시설을 설치, 사용할 수 없다. 유선라디오TV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등 각종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전송되는 해외 위성TV프로그램을 엄격히 금지하고, 중국 국내에서 무단으로 해외 위성TV채널과 관련 접수설비의 보급과 소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13. 도서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수입 업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하거나 허가한 기업이 경영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기업은 수입하려는 출판물 목록을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문서로 보고하고 아울러 자사가 수입하는 출판물에 대한 내용 심의를 담당한다.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수입 출판물에 대한 내용 심의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신문출판총서는 특정 출판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해외 도서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전람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4. 해외 간행물의 중국 국내에서의 발행은 분류 관리와 정기구독 예약구매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어떤 기업과 개인도 해외간행물을 시장에 무단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국내 기업과 개인은 간행물 수입경영기관에 예약 구매하는 해외 간행물의 심사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중국도서수출입총공사는 원판 수입간행물의 해외장소에서의 판매업무를 독점 경영하고

판매 상품 종류는 신문출판총서의 심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 수입 경영기업이 수입경영범위를 확대하는 행위와 비출판물 수입경영기업 또는 개인이 무단으로 출판물 업무를 경영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개인이 문화상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것과 우편으로 문화상품을 우송 입국하는 것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15. 협력출판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출판기구와의 협력을 엄격히 통제한다. 중국 국내 출판사와 해외 출판기구는 중국 국내에서 합자로 출판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중국 국내 과학기술류 간행물과 해외 간행물의 판권협력 관계 구축을 허가한다. 협력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협력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경우 심의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중국측은 콘텐츠의 최종심의권을 가지며 외국측 인원은 중국측 간행물의 편집, 출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6. 판권무역의 관리를 강화한다. 연간 수입판권에 대한 총량 통제를 강화하고 출판사가 수입하는 판권의 수량을 제한하여 수출입 작품의 종류 및 수량 추세가 균형을 이루도록 힘쓴다. 등기등록제도를 완비하고 중요 테마선정은 유관 규정에 따라 심의허가, 등록해야 한다.
17. 해외 출판물, 음반·영상물을 증정받는 것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증정을 받은 기관이 접수한 해외 증정출판물이 100권(세트,부)이상, 음반·영상물이 200개 이상일 경우 문화,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심의허가를 거쳐야 하고 국무원 문화,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8. 중요 문화상품의 수입 및 중요 비즈니스 협력 프로젝트의 항목입안은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의 심사승인 전에 중앙선전부의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는 본 방법에 따라 본 부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하고 완비하며 중앙선전부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한다.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실시된다. 본 방법을 하달한 후 본 방법과 저촉되는 모든 부서의 규정은 각 부서가 정리하고 수정해야 한다.

중공중앙선전부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해관총서

2005년 4월 28일

4.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제목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제재일	2008-02-21, 2015-08-2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게임관리정책

국가신문출판총서 령 제34호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은 2007년 12월 2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류빈제(柳斌杰)

2008년 2월 21일

(2015년 8월 28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령 제3호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출판물 사업의 건강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승인항목에 행정허가를 설정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수입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은 디지털 코드 방식으로 지식성, 사상성 내용의 정보가 편집 가공된 후 고정적 물리 형태의 자기, 빛, 전기 등 매체에 저장되고, 전자 열람, 디스플레이, 방송 설비를 통해 읽고 사용되는 대중 전파 미디어를 가리킨다. 즉, 읽기 전용 광디스크(CD-ROM, DVD-ROM 등), 1번만 저장할수 있는 광디스크(CD-R, DVD-R 등), 리라이터블 광디스크(CD-RW, DVD-RW 등),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스마트카드 등, 및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한 기타 미디어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 전자출판물은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는 전국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제5조 정부는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 모두 전자출판물의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출판업체 설립

제6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명칭과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신문출판총서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주무기관과 주취기관이 있어야 한다.
 - (3) 확정된 전자출판물 출판경영범위가 있어야 한다.
 - (4) 경영범위 수요에 적응하는 설비와 작업장이 있어야 한다.
 - (5) 경영범위 수요에 적응하는 조직기구가 있어야 하고, 2명 이상이 중급 이상 출판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조건을 따르는 이외에도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총 수량, 구조, 배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7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은 해당 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주취기관에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요구에 따라 작성된 신청표에는 출판업체의 명칭, 주소, 자본구조, 자금 출처 및 금액, 출판업체의 주무기관 및 주취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2) 주취기관, 주무기관의 관련 자격 증명 서류
- (3) 출판업체 정관
- (4)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및 본 규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관련 인력의 자격증명서와 신원증명서
- (5) 실행가능성 입증 보고서
- (6) 등록자본 금액, 출처 및 성격증명서
- (7) 작업장 사용 증명서

제9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 신청을 접수한 당일로부터 9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직접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를 통해 주취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각 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전자출판물출판업체를 설립한 주취기관은 승인 결정을 받은 당일로부터 60일 안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신문출판총서에서 발급한 《전자출판물출판허가증(电子出版物出版许可证)》을 수령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전자출판물출판허가증》을 소지하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제11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등록 당일부터 180일 안에 출판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을 말소시키고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회수하며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상기 조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명칭, 주최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인수합병 또는 분립 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하며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련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해당 주무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동의를 거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 변경을 신청 한 후,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반드시 관련 등록 변경 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출판활동을 종료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존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관련 등록 말소 사항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 신청 시, 주최기관 동의를 거친 후, 주최기관에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은 고정적인 명칭이 있고, 권, 기, 책 또는 년, 월 순서 번호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출판되는 전자출판물을 가리킨다.

제1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 출판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에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정기간행물, 미디어 형태, 경영범위, 구독자 대상, 칼럼 설치, 문서 종류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2) 주최기관의 심사의견.

신문, 정기간행물과 세트가 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출판 신청 시, 반드시 신문, 정기간행물 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승인을 받아 출판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해당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출간기간과 출판범위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출판행정부서는 전자출판물 제작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신고제 관리를 실행한다.
전자출판물 제작업체는 업체 설립 등록 및 관련 변경 등록 당일부터 30일 안에 업체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영업허가증 사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원증명서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의 제작은 창작, 가공, 설계 등 방식을 통해 출판, 복제, 발행에 사용되는 전자출판물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제3장 출판관리

제18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편집책임제도를 실행하며 전자출판물의 내용이 관련 법규,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19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매년 12월 1일 전에 다음해의 출판계획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 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0조 전자출판물 출판은 중대 주제 등록 신고 제도를 실행한다. 국가 보안, 사회 안정 등에 관련된 중대 주제, 중대 혁명 소재와 중대 역사 소재와 관련된 주제는 신문출판총서의 주제 등록 신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등록 신고를 거치지 않은 중대 주제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일한 내용, 다른 저장 장치 형태 및 양식의 전자출판물은 각각 서로 다른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사용하여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본 업체의 명칭, 전자출판물 중국표준도서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양도, 임대, 판매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전자출판물은 국가의 기술, 품질 기준과 규범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자출판물 저장 장치의 인쇄 표지면 또는 해당 장치의 뚜렷한 위치에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업체의 명칭,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 및 바코드, 저작권자 명칭 및 출판 일자 등 기타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24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동의 후,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에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내용 안내, 위임자 명칭, 위임자 기본 상황 소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신청업체의 심사 보고서
- (3) 견본 및 필요한 내용 자료
- (4) 신청업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저작권행정관리부서의 저작권 계약서 등록 증명서류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게임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반드시 게임의 주요 캐릭터와 주요 배경 이미지 자료, 퍼블리싱 업체의 영업허가증, 발행 계약서 및 발행기관 도매허가증, 게임 문자 스크립트 전문 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신문출판총서는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의 출판 신청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각 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을 심사 출판할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총 수량, 구조, 분포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27조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 저장 장치의 인쇄표지면 또는 해당 장치의 뚜렷한 위치에 수입출판 허가문서번호와 저작권 위임계약서 등록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28조 이미 허가를 받아 출판하는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에 대해, 만일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판 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게임 테스트 디스크 및 해외 온라인게임 작품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시디를 출판 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와 해외기관이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 할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주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심사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합작 출판 신청을 접수한 당일로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출판물 출판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는 합작 출판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저장 장치 형태, 내용 안내, 협력 양측의 명칭, 기본 상황, 협력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하고 협력 출판 계획인 전자출판물의 관련 문자 내용, 이미지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협력 의향서

(3) 주무기관의 심사의견

제3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와 해외기관이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이 출판된 30일 안에 견본 디스크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33조 출판업체가 본 판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심사동의 할 경우, 전자출판물 중국표준도서번호와 복제위탁서를 발급하며 이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34조 출판업체가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전자출판물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본지 출판물, 출판 계획인 전자출판물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어 출판되는 전자출판물의 명칭, 제작업체, 주요내용, 출판일자, 복제수량과 저장 장치 방식 등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제35조 전자출판물 발행 전, 출판업체는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과 신문출판총서에 무료로 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6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종사자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출판전문자격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사장, 편집장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하는 재직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사장, 편집장은 반드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조직하는 근무교 육에 참가해야 하며 근무교육 합격증서를 취득한 후 비로소 근무할 수 있다.

제37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국가 통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수입관리

제38조 전자출판물 완제품을 수입 할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승인하는 전자출판물 수입 경영업체가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심사동의 후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9조 전자출판물의 수입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에는 수입 전자출판물의 명칭, 내용 안내, 출판자 명칭, 주소, 수입 수량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2) 주무기관의 심사의견

(3) 신청업체가 수입 전자출판물에 관한 심사 보고서

(4) 수입 전자출판물의 견본 및 필요한 내용 자료

제40조 신문출판총서는 전자출판물 수입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며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수입을 심사할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총 수량, 구조, 분포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41조 수입 전자출판물의 외부포장에는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고 수입 승인 문서번호 및 중문으로 명기한 출판자 명칭, 주소, 저작권자 명칭, 출판일자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제5장 비매품 관리

제42조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할 경우, 반드시 의뢰인 또는 수탁인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에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사용목적, 명칭, 내용, 발송대상, 복제수량, 저장 장치 방식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비매품 내용은 공익 홍보, 기업 기관 업체 업무 홍보, 교류, 상품 소개 등으로 제한하며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되고 판매 또는 변칙판매 되거나 또는 기타 상품과 세트가 되어 판매 되어서는 안 된다.

제4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위탁 복제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20일 안에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발급하며 기각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4조 전자출판물 비매품 저장 장치의 인쇄표지면 및 해당 장치의 뚜렷한 위치에는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번호는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꺾쇠괄호 안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자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전자출판물 비매품’ 문구이며, 세 번째 부분은 소괄호 안의 연도이고 네 번째 부분은 순서번호이다.

제6장 위탁 복제 관리

제45조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은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복제업체에 의뢰하여 복제해야 한다.

제46조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할 경우, 반드시 복제위탁서를 사용해야 하며 복제위탁서에 관한 국가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복제위탁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47조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작성한 복제위탁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작성된 복제위탁서를 복제업체에게 반드시 직접 전달해야 한다.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업체의 복제위탁서를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48조 전자출판물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전자출판물이 복제 완성된 당일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본 업체 및 복제업체가 서명날인한 복제위탁서 두번째 페이지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출판물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는 반드시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 네번째 페이지를 2년간 보존해 참고용으로 비치해야 한다.

제49조 전자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비매품을 위탁 복제하는 업체가 승인을 받아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취득한 당일부터 90일 안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위탁서를 발급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복제위탁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7장 연간검사

제50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연간검사제도를 실행하며 연간검사는 2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해당 행정지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 대해 연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내용에는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등록항목, 설립조건, 출판 경영 상황, 준법 상황, 내부 관리 상황 등이 포함된다.

제51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연간검사 진행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 연간검사 등록표
- (2)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2년간 총괄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는 출판 법규를 수행한 상황, 출판 실적, 자산 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2년간 출판된 전자출판물 출판 목록
- (4)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의 사본

제52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연간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해당 검사 연도의 1월 15일 전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연간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행정지역 내의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설립 조건, 업무 전개 및 법규 수행 등 상황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연도의 2월 말 전으로 연간검사 업무를 완성하며 연간검사 요구에 부합되는 업체에 대해 등록을 시키고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갱신시킨다.
-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해당 검사 연도의 3월 20일 전으로 연간검사 상황 및 관련 서면 자료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53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 했을 경우, 연간검사를 유예한다.

- (1) 본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 (2) 출판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기한부 영업 정지 및 정리 정돈 중일 경우
- (3) 심사를 통해 위법 상황을 발견하여 처벌을 가했을 경우
- (4) 예전에 출판관리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받고도 정돈 개선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여전히 위법 문제가 있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출판활동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없을 경우

연간검사의 유예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확정하며 최장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동안,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를 독촉 및 지도하여 정돈 개선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연간검사 유예기간 만료 후, 연간검사 요구에 도달한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 대해 등록을 시키고, 여전히 연간검사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 대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의견을 제시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소시키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수속을 밟는다.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서면 재촉 통고에도 여전히 연간검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의견을 제시하고 신문출판총서에서 《전자출판물 출판허가증》을 취소시키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등록 말소 수속을 밟는다.

제55조 연속형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업체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연간검사에 참가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56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아래와 같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경고통지서를 하달한다.
- (2) 비평을 통보한다.
- (3) 공개적으로 자기비판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4)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5) 전자출판물의 복제 및 발행을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6) 전자출판물을 회수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 (7) 주취기관, 주무기관에서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를 감독하여 정리 정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경고통지서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법을 어긴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에게 하달하며 위법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의 주취기관 및 해당 주무기관에 사본을 보낸다. 본 조항에서 열거한 행정조치는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제57조 허가 없이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를 무단으로 설립하고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무단 종사하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 또는 연속형 전자출판물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표준도서번호를 위조, 사칭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한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반·영상 등 출판업체가 허가 없이 본지 출판물과 세트가 되는 전자출판물을 출판 할 경우, 전자출판물 출판업무에 무단 종사한 경우에 속하며 상기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전자출판물 제작, 출판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을 제작, 출판 할 경우
- (2) 타인이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을 출판하는 것을 분명히 알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타인에게 본 출판업체의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표준도서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 바코드 및 전자출판물 복제위탁서를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 할 경우

제59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본 업체의 명칭, 전자출판물 전용 중국표준도서번호,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임대, 대여,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 (1)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명칭, 주취기관 또는 주무기관, 경영범위,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인수합병 또는 분립,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 할 경우,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승인 및 등록 변경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2) 승인을 받아 출판되는 연속형 전자출판물이 해당 연속형 전자출판물의 명칭, 출간기간과 출판범위를 신규 추가 또는 변경 할 시,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3)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규정에 따라 연간출판계획과 중대 주제 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4) 출판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 건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본 규정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전자출판물을 수입 했을 경우

제61조 전자출판물출판업체가 법에 따라 신문출판행정부서에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신문출판총서와 국가통계국에서 공동으로 공표한 《신문출판 통계 관리방법(新闻出版统计管理办法)》에 따라 처벌한다.

제62조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전자출판물 제작업체가 본 규정 제17조를 위반하고 등록 신고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2)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본 규정 제21조를 위반하고 중국표준도서번호 또는 국내 통일된 연속출판물번호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3)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출판한 전자출판물이 정부의 기술, 품질 기준과 규범화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본 규정 제2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 (4)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해외 저작권자가 위임한 전자출판물을 출판 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관련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 (5) 전자출판물 출판업체와 해외기관이 협력하여 전자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 규정 제30조에 따라 주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본 규정 32조에 따라 견본 디스크를 제출하여 등록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6) 전자출판물 수입경영업체가 본 규정 제41조를 위반했을 경우
- (7) 전자출판물 비매품의 위탁 복제에 있어서 본 규정 제42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자출판물 비매품 통일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8) 전자출판물 출판업체 및 기타 위탁 복제 업체가 본 규정 제4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설립된 복제 업체에 위탁하여 복제 하거나 또는 복제위탁서와 관련된 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9장 부칙

제63조 본 규정은 2008년4월15일 부터 시행되며 신문출판총서에서 1997년12월30일 공표한 《전자출판물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기존의 신문출판행정부서에서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수입활동에 대한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

제목	软件产品管理办法(第9号)
제재일	2009-03-01
출처	공업정보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软件产品管理办法)》은 2009년 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제6차 부서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가 2000년 10월 27일 발표한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령 제5호)는 본 방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부장 리이중(李毅中)

2009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유관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 정책(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的若干政策)》(이하 《산업정책》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소프트웨어제품(중국산 소프트웨어와 수입 소프트웨어) 경영과 관리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기관 또는 개인이 자신이 개발하고 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타인에 위탁해 개발한 자가 사용 전문 소프트웨어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본 방법의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사용자에게 제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설치 중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집약, 응용서비스 등 기술서비스 제공 시 제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본 방법의 중국산 소프트웨어라 함은 중국 국경 내에서 개발 생산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리킨다.

본 방법의 수입 소프트웨어라 함은 중국 국경 외에서 개발하여 각종 형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경영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리킨다.

제4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등 활동은 중국의 유관 법률, 법규와 표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 (2) 컴퓨터 바이러스가 포함된 내용
- (3) 컴퓨터 시스템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 (4) 중국 소프트웨어 표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업정보화부로 약칭)는 전국 소프트웨어 제품의 관리를 책임지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 제품 테스트 표준과 규범 제정 및 발표
- (2)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 주무부처에 등기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등록을 진행한다.
- (3) 전국의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한다.
- (4) 소프트웨어 제품 모니터링기구를 지도 및 감독하고 중국 소프트웨어 제품의 표준 규범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테스트 표준 및 규범에 따라 부합성 검사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
- (5) 전국 통일의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번호 시스템 제정,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증서 제작
- (6)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 공시 발표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지역 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등기, 사안 보고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제품의 등기와 등록

제7조 소프트웨어 제품은 등기와 등록제도를 실행한다.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등기와 등록을 득한 중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은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관련 장려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8조 중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생산업체가 등기와 등록을 신청하고 아울러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제품 등기신청서
- (2) 기업법인영업집조 부분과 사본
- (3) 소프트웨어제품 샘플
- (4) 소프트웨어제품의 중국 경내 개발 및 신청기관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유효 증명
- (5) 소프트웨어 검사 및 테스트기관이 발급한 테스트 증명 서류
- (6) 기타 발급이 필요한 서류

제9조 수입 소프트웨어 중 중국 국내에서 현지화 개발, 생산을 진행한 제품의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부분은 저작권자와 원 개발업체가 중국 경내에서 개발한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본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등기등록자료를 제출하며, 등기 등록을 득한 후 《산업정책》에서 규정한 관련 장려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10조 수입 소프트웨어 제품의 등기등록은 수입을 담당한 업체가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 (1) 소프트웨어제품 등기신청서
- (2) 신청업체 영업집조 부분 사본
- (3) 소프트웨어제품 샘플

- (4) 소프트웨어제품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중국에서 경영하는 증명 자료
- (5)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관이 발급한 테스트 증명 자료
- (6) 국가 소프트웨어제품 수입절차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제품 자료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 제품 주무부처가 소재지에 위탁한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기관은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 신청의 수리와 심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 제품 등기기관은 본 방법 제8조, 제10조에서 열거한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치고 신청자료를 구비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에 보내 공업정보화부 등록을 심의 보고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지정한 매체에 보고한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해 공시를 진행하고, 공시 근무일 7일이 지나도 이의가 없으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는 소프트웨어제품 등기번호와 소프트웨어제품 등기증서를 심사 발급한다.

소프트웨어제품 등기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제품의 생산

제12조 중국 경내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중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술표준, 규범과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3조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업체가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향유하거나 또는 저작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가를 득하고 생산한 소프트웨어여야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제품 생산기관이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해 내용 검사를 진행한다.

제15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및 생산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의 관련 기술과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외관 포장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번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소프트웨어제품 등기번호, 소프트웨어 생산업체(수입업체)와 업체 주소, 생산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17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제품(수입한 것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국 소프트웨어 제품 포함)은 완비된 중국어 설명서, 사용가이드 등 설명 문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품 또는 설명문건 등 서면 문건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내용과 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제18조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업체는 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경영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 대리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리인(소프트웨어제품 판매업체)과 피대

리인(소프트웨어제품 개발 또는 생산업체)간, 총대리업체와 부대리업체 간에는 서면 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리계약 중 대리 권한, 지역, 기한, 기술서비스 및 공업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대리측은 그 경영장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대리자격증서를 걸어야 한다. 대리자격증서는 대리권한, 대리기한, 지역, 대리 등급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리측은 외국과 관련된 홍보, 광고 중에 상술한 내용을 사실대로 표현해야 한다.

제20조 허가증 무역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경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 경영업체는 생산업체와 서면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제품 경영업체는 소프트웨어제품 판매 시 사용자에게 고지해 허가증 협의를 읽게 하고 사용자가 읽은 후 동의여부의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제21조 소프트웨어 제품 경영업체가 판매한 소프트웨어제품은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아울러 서면 또는 파일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식과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체는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로 간주한다. 별도의 서비스 비용 수취를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 가격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테스트버전은 무료 제공임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영리성 판매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3조 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유관부서와 함께 전국 소프트웨어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각 급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는 현지 유관 주무부처와 함께 해당 행정지역 내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 판매,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제24조 이미 등기한 소프트웨어제품이 본 방법 제4조에서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내용 허위의 등기 등록자료로 소프트웨어제품 등기를 편취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등기번호, 등기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이미 누리는 세수우대혜택 등은 회수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는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한다. 공업정보화부는 경고를 하고 이 사실을 공표한다.

소프트웨어제품이 국가 기술표준, 규범과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소프트웨어제품이 사용 요구를 만족시킬 없으며, 생산업체 규격 또는 약속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증거 증명이 있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소프트웨어산업 주무부처는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유관 부서와 함께 법에 의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업체에 대해 처벌을 진행한다.

제 6장 부칙

제25조 본 방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10월 27일 발표된 《소프트웨어제품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령 제5호)은 본 방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6.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제목	电信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第5号)
제재일	2009-03-01
출처	공업정보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电信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은 2009년 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제6차 부서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가 2001년 12월 26일 공표한 《통신사업경영허가증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 령 제19호)은 본 방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부장 리이중(李毅中)

2009년 3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이하 ‘경영허가증’ 이라고 약칭)을 신청, 심사 승인하고 관리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업정보화부로 약칭)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이하 ‘통신관리기구’ 라 칭함)은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심사승인 관리하는 기구이다. 통신관리기구는 경영허가증 심사승인관리 중 반드시 대중 편의, 고효율, 공개, 공평, 공정 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통신사업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통신관리기구가 교부한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통신사업경영자는 통신사업경영활동 중 반드시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통신관리기구의 감독관리를 받고 협조해야 한다.

통신사업경영자는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업 경영 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장 경영허가증의 신청

제5조 기초통신사업경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초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업이면서 회사의 국유 지분 또는 지분은 51% 이상이어야 한다.
- (2) 업무발전연구보고와 네트워킹 기술방법이 있어야 한다.

- (3) 경영활동종사에 상응하는 자금 및 전문인력
- (4)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장소, 시설 및 상응하는 자원
- (5) 사용자를 위해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신용 또는 능력
- (6)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할 경우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은 1억 위안이다.
전국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경영할 경우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은 10억 위안이다.
- (7) 회사 및 그 주요 출자자와 주요 경영관리인원은 3년 내 통신감독관리제도를 위반한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 (8)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6조 부가통신사업경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회사
- (2) 경영활동 전개와 상응하는 자금과 전문인력
- (3)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한 신용과 능력
- (4)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은 100만 위안이다.
전국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금 최저한도액은 1000만 위안이다.
- (5)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술방법
- (6) 회사 및 그 주요 출자자와 주요 경영관리인원은 3년 내에 통신감독관리제도를 위반한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 (7)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신청할 때 공업정보화부에 아래의 신청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기초통신사업경영에 대한 서면신청이 있어야 한다. 통신사업 경영 신청종류, 업무 커버 범위, 회사 명칭, 회사 주소, 우편번호, 연락 담당자, 전화, E-mail 등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회사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분 및 사본
- (3) 회사 소개. 회사 기본정황, 종사하려는 통신사업의 기구설치와 관리 정황, 기술력과 경영 관리인원의 정황, 경영활동종사에 적합한 장소, 시설 등 정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회사의 최근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검사를 맡은 기업법인 연도재무회계보고 혹은 자본검 증보고 및 공업정보화부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회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 (5) 회사정관, 회사주식구조 및 주주의 관련 정황
- (6) 업무발전연구보고서. 통신사업 경영 신청업무의 발전과 실시계획, 서비스항목, 업무 커버 범위, 시장조사연구와 분석, 수금방법, 예상 서비스품질, 이익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네트워크 기술방법.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건설계획, 네트워크 상호연 결방법, 기술표준, 통신설비의 배치, 통신자원 사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와 품질보장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9)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 (10) 회사신용을 증명하는 관련자료
- (1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법에 따라 통신사업을 경영한다는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인은 반드시 회사의 기업명칭 심사허가통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 항의 제(2)항, 제(10)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 항의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신청서와 제(11)항에서 규정한 승낙서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전체 주주가 서명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전체 발기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8조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통신관리기구에 아래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부가통신사업경영에 대한 서면신청이 있어야 한다. 통신사업 경영신청종류, 업무키버범위, 회사명칭, 회사주소, 우편번호, 연락 담당자, 전화, E-mail 등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회사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분 및 사본
- (3) 회사소개. 회사 기본정황, 종사하려는 부가통신사업의 인원, 장소, 시설 등 정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회사의 최근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검사를 맡은 기업법인 연도재무회계보고 혹은 자본검 증보고 및 공업정보화부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회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 (5) 회사정관, 회사주식구조 및 주주의 관련 정황
- (6) 통신사업 경영신청업무의 업무발전, 실시계획과 기술방법
- (7)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와 품질보장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8) 정보안전보장조치
- (9) 회사신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
- (10)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법에 따라 통신사업을 경영한다는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경영을 신청한 통신사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고 관련 주무부처의 사전 심사승인 동의를 받은 경우 유관 주무부처에 심사승인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신청인은 반드시 회사의 기업명칭심사허가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전 항의 제(2)항, 제(9)항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 항의 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신청서와 제(10)항에서 규정한 승낙서는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전체 주주가 서명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전체 발기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3장 경영허가증의 심사승인

제9조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과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또 《광역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으로 나뉜다.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과 《광역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가 심사 승인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이 심사 승인한다.

외국인투자통신기업의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가 《외국인투자통신기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승인한다.

제10조 공업정보화부는 기초통신사업 경영을 신청하는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접수통지서를 발송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석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을 1회 고지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제7조 제1항 제(6), 제(7)항의 신청 자료에 대해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형성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심사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수여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통신관리기구는 부가통신사업 경영을 신청하는 신청 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면 신청인에게 신청 접수통지서를 발송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석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을 1회 고지한다.

통신관리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업무를 완성하고 승인 또는 불가 결정을 내린다.

승인하는 경우 《광역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수여한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경영허가증은 증서 발급기관의 승인문건과 허가증서로 구성된다. 경발급기관의 승인문건에는 경영허가증 사용규정, 경영자의 권리와 의무, 특별규정사항과 연도검사정황기록표 등의 문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 발급기관은 관리 필요에 따라 공업정보화부의 규정에 상응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허가증서에는 회사명칭, 법정대표자, 업무종류, 업무커버범위, 유효기간, 증서발급기관과 발급일자, 발급인, 경영허가증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경영허가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업정보화부가 법에 의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공업정보화부는 실제정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통신사업경영허가증 부록의 내용을 조정하고 새로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통신사업 종류에 따라 5년, 10년으로 나뉜다. 《광역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과 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내의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14조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 《광역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 및 외국인투자통신기업의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발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부가통신사업경영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국장이 발급한다.

제15조 경영허가증은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수령하거나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위탁서를 근거로 수령한다.

제4장 경영허가증의 사용

제16조 통신사업경영을 승인 받은 회사는 반드시 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통신사업종류에 따라 규정된 업무커버범위와 기한 내에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제17조 통신사업경영을 승인 받은 회사는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회사변경등기수속을 밟는다.

무선통신사업경영을 승인 받은 경우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무선관리기구에 가서 무선주파수 사용신청 수속을 밟는다.

제18조 광역통신사업경영을 승인 받은 회사는 반드시 경영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지사 혹은 자회사 등 관련기구를 설립하여 통신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기초통신사업을 경영자의 자회사 중 국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은 국가의 통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통신사업경영을 승인 받은 회사는 증서발급기관의 승인을 거쳐 소유 주식의 51%보다 적지 않고 통신사업경영조건에 부합되는 자회사에게 승인 받은 통신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줄 수 있다. 이 자회사의 명칭, 법인대표, 업무종류, 업무커버범위 등 내용은 증서발급기관이 승인 받은 통신사업경영회사의 경영허가증 부록에 기재한다. 같은 구역 내에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자회사에게 동일한 항목의 통신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줄 수 없다.

제20조 기초통신사업 혹은 광역 부가통신사업 경영을 승인 받은 회사는 반드시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기구에 가서 등록수속을 밟고 아래의 등록자료를 제출한다.

(1) 현지 업무 경영, 고객 서비스 등 사무를 책임진 상응 기관의 상황. 회사의 등록지 업무 경영, 고객 서비스 등 사무를 책임진 상응하는 기구의 명칭,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 담당자, 전화, E-mail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영허가증 사본

(3) 회사의 현지 업무 경영, 고객 서비스 등 사무를 책임진 상응기관의 영업집조 사본, 정관 등 관련 자료

(4) 현지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방법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전 항에서 규정한 등록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되면 15일 내에 등록확인서를 발송하고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5일 내에 서면으로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을 1회 고지한다.

등록수속을 밟기 전에는 현지에서 통신사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현지 업무 경영, 고객 서비스 등 사무를 책임진 기구는 통신사업 경영을 승인 받은 회사 자체 또는 그 등록지 외의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가 설립한 기구일 수 있다. 단, 반드시 경영허가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항에서 열거한 자료에 변화가 생길 경우, 현지 업무경영, 고객 서비스 등 사무를 책임진 상응 기구가 20일 내에 현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기구 및 증서발급기구

관에 보고한다.

제21조 경영허가증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사업경영자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경영허가증이 규정한 업무종류와 업무커버범위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경영허가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기해야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통신관리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동시에 경영허가증에 특별한 규정을 해야 한다.

제22조 어떠한 회사나 개인도 경영허가증을 위조, 변경, 사칭,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경영행위의 규범

제23조 기초통신사업 경영자는 공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에 관련 통신사업 경영에 필요한 통신서비스와 통신자원을 제공해야 하고, 무경영허가증 또는 등록수속을 밟지 않은 회사 또는 개인을 위해 통신사업 경영에 사용되는 통신자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업무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통신사업 경영자는 어떤 방식이든지 부정당한 경쟁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부가통신사업 경영자를 위해 네트워크 액세스, 수수료 대리와 업무협력을 제공하는 기초통신사업 경영자는 상응하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체신비용과 수수료, 협력행위 등에 대해 규범과 관리를 진행하고 아울러 상응하는 발견, 감독과 처치제도와 조치를 구축해야 한다.

제26조 기초통신사업 경영자는 부가통신사업 경영자 간의 협력 조건, 협의 등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부가통신사업 경영자에게 고지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관련 의견 수렴 상황 및 기록은 남겨야 하고 통신관리기구 감독 검사 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네트워크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한 부가통신사업 경영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상응하는 경영허가증을 임대로 획득한 기초통신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등 통신자원은 업무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기타 네트워크 액세스 서비스에 종사하는 부가통신사업 경영자에게 획득한 네트워크 액세스 등 통신자원을 전대차해서는 아니 된다.
- (2) 미허가 또는 미등록한 네트워크에 액세스 또는 수수료 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통신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네트워크 경영허가관리와 등록관리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사이트 사용자 정보의 동태 보호와 업데이트에 대한 대리보고를 실현함과 아울러 통신관리기구에 웹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4) 액세스하는 네트워크가 위법정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

국통신조례(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제57조 규정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였음이 확실한 경우 액세스와 수수료 대리 등의 서비스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아울러 국가 유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5) 통신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위법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서비스를 종료 혹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제28조 통신관리기구는 통신사업경영자의 위법행위 기록과 공시제도를 구축하고 위법 행위 기록이 있는 통신사업 경영자에 대해 중점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기초통신사업 경영자는 부가통신사업 경영자에게 네트워크 액세스, 수수료 대리 및 업무 협력 시 통신관리기구 공시의 관련 위법 행위기록을 고려해야 한다.

제29조 통신관리기구는 통신사업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한다. 관련 통신사업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통신관리기구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발송한다.

제6장 경영허가증의 변경과 취소

제30조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경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90일 전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경영허가증 연장신청을 제출한다. 더 이상 계속 경영하지 않을 때 90일 전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보고하고 사업이 종료되도록 처리한다.

제31조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회사 혹은 그 권리를 수여 받은 통신사업경영 자회사는 합병 혹은 분리, 유한책임회사 주주 변화, 업무경영권 이전 등 경영주체에 관계되는 변경정황이 있을 때 혹은 업무커버범위에 변화가 생길 때 반드시 회사에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할 수 있다. 그 중 유한책임회사 주주 변화, 업무경영권 이전과 관계되는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변경 후의 회사는 본 방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2) 신청서 제출 시, 회사의 업무는 이미 개통되어야 하고 아울러 통신감독관리제도를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32조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회사명칭, 법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공상변경등기수속을 완료한 후 3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의 변경수속을 밟는다.

제33조 경영허가증유효기간 내에 통신사업경영자가 경영을 중지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기초통신사업 경영을 중지하는 경우 통신관리기구가确定的 통신업종관리 총체적 배치에 부합해야 한다.
- (2) 타당한 사용자 원만한 처리방법이 있고 사용자 사후 문제를 이미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 내 통신사업 경영자가 경영 중지가 필요한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

에 아래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회사 법정대표자 서명 및 회사 직인을 날인한 통신사업경영 중지 서면신청. 회사 명칭, 연락방식, 경영허가증 번호, 경영 중지를 신청하는 통신사업 종류, 업무커버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2) 회사 주주회의 통신사업 경영 중지 동의에 관한 결정
- (3) 회사 법인대표가 서명한 사용자 사후 처리 업무를 잘 하겠다는 승낙서
- (4) 사용자 사후 문제 해결에 관한 회사의 정황 설명. 사용자 처리방법, 사회 공시 상황 설명, 사용자 의견 종합, 실시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 (5) 회사의 통신사업경영허가증 원본, 기업 법인 영업집조 사본

원 증서발급기관은 통신사업 경영 중지 신청을 접수한 후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한은 30일이다. 공시기한이 종료된 60일 내에 원 증서발급기관은 심사업무를 완성하고 허가 또는 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신사업시장 퇴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 원 증서발급기관은 승인하고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회수하고 취소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통신사업 종류 또는 통신사업 커버 범위를 취소한다. 통신사업시장 퇴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원 증서발급기관은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기초통신사업 또는 광역부가통신사업 경영 중지를 신청한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리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에 보고하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통신사업경영허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35조 통신사업 경영자가 관련 기관에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아 통신사업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원 증서발급기관은 그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해야 한다.

제36조 증서발급기관은 통신사업 경영자의 경영허가증을 말소 또는 취소한 후 상응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관은 통신사업 경영자의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 취소, 무효로 하고 사용자 사후처리 문제에 관련된 것은 입찰방식을 통해 업무승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당한 회사는 반드시 제때에 상응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7장 경영허가증의 감독검사

제37조 증서발급기관은 경영허가증에 대해 연도정기검사제도를 실행한다. 통신사업경영자는 반드시 보고한 해의 다음 해 1분기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아래의 연도정기검사 자료를 보내야 한다.

- (1) 본 연도의 통신사업경영정황, 네트워크 건설, 업무발전, 인원 및 기구변동 정황, 서비스 품질 정황, 국가와 통신관리기구의 관련 규정 집행 정황 등이 포함된다.
- (2) 회사의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 (3) 증서발급기관이 발송을 요구한 기타 자료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국은 지역을 벗어난 통신사업경영자가 현지에서 전개한 통

신사업의 관련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검사 결과를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한다.

제39조 증서발급기관은 경영허가증에 대한 연도정기검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통신사업경영자가 보내온 자료에 대해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아울러 그 경영주체, 경영행위, 통신시설 건설, 통신자료비와 서비스품질, 국가와 통신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집행한 상황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제때에 연도정기검사에 참가하여 연도정기검사 사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연도정기검사에 합격시킨다. 연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혹은 연도검사 사항에서 규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통신관리기구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때에 시정하는 경우 정돈을 거쳐 연도정기검사에 합격시키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연도정기검사에 불합격시킨다.

연도정기검사 결과와 처벌 상황은 경영허가증 부록 《연도검사와 위법기록(年检和违法记录)》에 기록하고, 사회에 공표함과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제40조 통신관리기구는 경영허가증에 대해 연도검사 감독조사를 실행한다. 통신사업 경영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통신관리기구의 경영허가증에 대해 연도검사를 실행하는 등 감독 조사 시 감독 검사한 상황 및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인원이 서명한 후 당안에 귀속한다. 대중은 감독 조사기록을 읽을 권리가 있다.

통신사업경영자는 국가가 규정한 서비스 표준, 체신비용 정책과 통신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안전, 편리,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보편적인 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서발급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휴업을 할 수 없다. 통신사업경영자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신관리기관은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법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그 의무 이행을 독촉한다.

제8장 벌칙

제41조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통신사업경영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신관리기구는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허가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경고를 주고 신청인은 1년 내에 해당 행정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기만, 뇌물수수 등 부정한 수단으로 통신사업경영허가를 취득한 경우 통신관리기구는 해당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경고를 준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청인은 3년 내에 해당 행정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본 방법 제16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본 방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 본 방법 제4조의 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제(3)항, 제(4)항, 제21조, 제23조, 제25조와 제 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와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통신관리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당사자가 통신관리기구가 내린 행정허가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재심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47조 통신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이 경영허가증관리사업 중 직무 태만, 직권남용, 사리를 도모하여 범죄가 구성된 경우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 혹은 상급 주무부처가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48조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제49조 본 방법은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26일 공표된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정보산업부 령 제19호)는 본 방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7.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游戏虚拟货币管理工作的通知 (2009) 20号
제재일	2009-06-04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관할시 문화청(국), 상무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⁸¹⁾ 문화국, 상무국, 베이징시, 텐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닝샤회족자치구 문화시장행정집행총대⁸²⁾:

최근, 온라인 게임이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가 온라인 게임 경영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는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와 사회문제를 초래했으며 이는 첫째, 사용자 권익 보장 부족, 둘째, 시장행위의 감독관리 부족, 셋째,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사용 중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게임시장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인터넷문화 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PC방 및 온라인게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网吧及网络游戏管理工作的通知)》(문시발〔2007〕10호)와 《온라인게임 경영질서 규범화화 및 온라인게임 이용 도박 조사 금지 관련 통지(关于规范网络游戏经营秩序查禁利用网络游戏赌博的通知)》(공통자〔2007〕3호)등 내용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 등 부처의 동의를 거쳐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 관리 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엄격한 시장진입과 주체관리 강화

- (1) 본 통지의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라 함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발행한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게임프로그램 밖에 존재하고 전자기 기록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됨과 아울러 특정 데이터단위로 표시되는 가상 환전수단을 가리킨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는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지정된 범위, 지정시간 내의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환전하는데 사용되고 표현은 온라인 게임의 선불 충전카드, 선불금액 또는 포인트 점수 등 형식으로 나타난다. 단, 게임 활동 중 획득하는 게임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문화행정부서는 시장진입을 엄격히 하고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 주체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 서비스’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의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승인 항목의 행정허가 설정에 대한 규정(国务院对确需保留的行政审批项目设定行政许可的决定)》(국무원 제412호 령)과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상술한 두 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 설립의 관련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기업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초심 후 문화부에 심사승인을 보고한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기업’이란 게임 사이버머니를 발행하여 사용서비스를 제공

81) 병단(兵团):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82) 행정집행총대(行政执法总队): 행정집행본부

하는 온라인 게임운영기업을 가리킨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기업’이란 사용자 간의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를 위해 플랫폼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동일한 기업은 동시에 두 조항 이상의 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 (3)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서비스’ 업무 종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관련 자료 외에 업무발전보고 중 게임 사이버머니 표현 형식, 발행범위, 업체 구매 가격, 서비스 중지 시의 환불방식, 사용자 구매방식(현금,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등 구매방식 포함), 사용자 권익보장조치, 기술안전보장조치 등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4)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려면 상무 주무부처의 전자상거래(플랫폼) 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 종류 기업은 신청 제출 시 법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자료 외에 업무발전보고 중 서비스(플랫폼) 모델, 사용자 구매방식(현금,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등 구매방식), 사용자 권익보장조치, 사용자ID와 실명 은행계좌 바인딩상황, 기술안전보장조치 등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5) 이미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 또는 거래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본 통지 인쇄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문화행정부서에 관련 경영업무를 신청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문화행정부서는 문건의 사본을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에 발송한다.

2. 발행과 거래행위 규범화를 통한 시장 리스크 방지 및 예방

- (6)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스스로의 경영상황과 제품운영상황에 의거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적당량 발행한다. 사용자의 선불자금 점용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발행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사이버머니 발행 총량 등의 상황을 분기별로 기업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7) 법정화폐 구매 이용을 제외하고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기타 어떠한 방식을 취하여 사용자에게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 시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사용자의 충전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해당 기록의 보존기한은 사용자의 충전일로부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8)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사용범위는 발행기업이 스스로가 제공한 사이버서비스 환전에만 국한되며, 지불, 실물제품 구매 또는 기타 기업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 환전에 사용하지 못한다.
- (9)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필요한 조치와 상소처리절차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명해야 한다.
- (10) 사용자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사용 과정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한 신분정보와 일치하는 개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 충전과 이전 기록을 제공하고 상소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당하였을 때,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증거수집과 조율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11)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그 제품과 서비스 제공 종료를 계획한 경우 6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서비스를 중지할 때 사용자가 이미 구매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에 대해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법정화폐 방식 또는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 접속 중지, 기술 장애 등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의 자체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30일 연속 중단된 경우는 종료로 간주한다.

- (12)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업체 구매가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사이버머니 발행종류를 새로 늘릴 때 본 통지 제3조에서 열거한 자료 내용에 근거하여 문화 행정부서에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13)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기술조치를 취해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사용자 계좌 간의 이전 기능을 금지해야 한다.
- (14)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 서비스기업은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관련 거래 서비스 제공 시 판매측 사용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을 실명으로 등록하고 그 바인딩과 실명등록정보가 일치하는 중국 국내 은행계좌를 요구한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기업은 사용자 간의 관련 거래기록과 재무기록을 보류해야 하며, 보류기간은 거래행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15)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기업은 위법거래책임추궁제도와 기술조치를 구축하여 거래정보의 진위를 엄격히 선별하여 위법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가 불법 획득임을 알았거나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 허위거래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거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 (16)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기업은 미성년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기업과 거래서비스기업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고,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조사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18)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사용자간의 사이버머니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조치를 취하여 이전기록을 보류해야 하고, 관련 기록은 180일 이상 보존해야 한다.

3. 시장감독관리 강화, 사이버머니를 이용 도박 등 위법범죄행위 종사 척결

- (19) 각 지역은 공안부, 문화부 등의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이 사행성 온라인 게임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에 협조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이용 도박에 종사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척결한다
- (20)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사용자가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를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등 대비뽑기, 야바위, 랜덤 추출 등 우연적인 방식을 취하여 게임 도구 또는 사이버머니를 분배한다.
- (21)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과 거래서비스기업은 관리부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기술적인 수단을 취하여 ID 해킹, 프리서버, 핵프로그램 등을 척결해야 한다.
- (23) 문화부 인증을 득한 온라인 게임 프리서버, 핵프로그램 사이트상에서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문화부는 중국인민은행에 통보한다.

4. 법 집행 강도 확대 및 시장 환경 정화

- (23)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과 거래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가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4) 본 통지 요구를 위반한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발행과 거래서비스 기업에 대해 문화행정부서, 상무 주무부처는 기한 내 시정을 통지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유관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 (25)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화폐관리업무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ID해킹, 프리서버, 핵프로그램, 불법이익 획득, 돈세탁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척결강도를 확대한다. 각 부서는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여 관련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고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 (26)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발행한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는 게임 내 도구의 명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게임 내 도구의 관리규정은 국무원 행정부서와 유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문화부
상무부

2009년 6월 4일

8. 수입 온라인게임 심의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新闻出版总署关于加强对进口网络游戏审批管理的通知[2009]266号
게재일	2009-07-01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⁸³⁾ 신문출판국, 해방군 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 각 게임출판운영기업:

온라인 게임 출판서비스업은 다년간의 규범적인 유도를 거쳐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총체적인 상황은 양호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일부 불법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외설, 폭력 등 불량한 게임작품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고, 어떤 기업은 심의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입 온라인 게임을 출판 운영하며, 어떤 해외기업은 기술수입의 구실로 관련 전람, 회의에서 심의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게임 작품을 대량 홍보, 데모(DEMO)하여 불량한 사회영향을 초래했다. 어떤 부서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지 않고 온라인 게임 사전 심사승인과 수입 온라인게임 심사를 자체 설치하여 중복 심의허가를 초래해 정상적인 관리절차를 방해했다. 온라인 게임 출판서비스의 사전 심사승인과 해외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의 온라인 게임 작품에 대한 심의허가와 감독관리 업무를 더 규범화하고 수입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대형회의 및 전람회 거래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무원 관공청의 국가신문출판총서(국가판권국) 주요 책임 내부기구와 인력편성 규정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新闻出版总署(国家版权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국판발〔2008〕90호)(이하 ‘3정 방안(三定方案)’으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문출판총서는 ‘게임출판물의 온라인 출판 발행에 대해 사전 심사승인을 진행한다.’ 중국 경내에서 온라인 게임 출판운영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신문출판총서의 사전심사승인을 거쳐 온라인 게임 출판서비스 범위가 구비된 ‘인터넷 출판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심사승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 출판 운영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적발되는 즉시 법에 따라 금지를 명한다.
2. 국무원의 ‘3정 방안’ 규정에 근거하여 신문출판총서는 ‘해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온라인 게임 작품의 출판에 대한 심사승인을 담당한다.’ 해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어떤 수입 온라인게임 작품도 신문출판총서의 심사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모두 중국 국내에서 출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위반자는 법에 따라 금지를 명하고 운영을 정지한다.
3. 신문출판총서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수입 온라인 게임의 심사승인을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이다. 만약 기타 부서가 월권을 행사해 사전 심사승인을 실시하는 위법 행정이 적발되면 유관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국무원 감찰부서에 신고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3)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4. 중국 국내에서 각종 게임의 회의 및 전람회 거래 경축행사를 주최할 때 해외 게임 작품의 전시, DEMO, 거래, 홍보 등의 내용에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수입 온라인 게임 심사승인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문출판총서에 심사승인을 보고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법에 의거하여 금지를 명하고 주최, 주관기관과 관련 기업의 책임을 추궁한다.
5. 관련 신문, 잡지 및 온라인 매체는 상술한 규정을 어긴 행위와 활동을 위해 보도와 홍보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동시에 여론 감독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6. 각 지역 신문출판행정부서는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관련 기업과 활동에 대해 1차 집중 정리를 진행한다. 국가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사 처리하여 시정시켜 온라인 게임 출판서비스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

2009년 7월 1일

9.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제목	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第49号)
제재일	2010-06-03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정책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령 제49호

《온라인 게임 관리 임시방법》은 2010년 3월 17일 문화부 부서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차이우(蔡武)

2010년 6월 3일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방법

(2010년 6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령 제49호로 발표, 2017년 12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령 제57호 《일부 부처 규정의 폐지, 수정에 관한 문화부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온라인게임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게임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하며 온라인게임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안전 보호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과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등 국가의 법률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온라인 게임의 연구개발과 생산, 온라인 게임의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거래서비스 등 형식의 경영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온라인 게임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정보데이터로 구성되고 인터넷, 이동통신네트워크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제품과 서비스를 가리킨다.

온라인 게임의 운영이라 함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라 함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발행한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게임프로그램 밖에 존재하고 전자기 기록방식으로 서버에 저장함과 아울러 특정 데이터 단위로 표시되는 가상 환전수단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주관부서는 그 직무 분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온라인 게임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이익과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시대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구현하는 사상문화와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대중의 건강과 적절한 게임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인류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5조 온라인 게임 업계협회 등 사회단체는 문화행정부서의 지도를 받으며,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제도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제정하고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면서 회원의 경영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2장 경영업체

제6조 온라인 게임의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및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거래 서비스 등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1) 업체의 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 있음
- (2) 확정된 온라인 게임 경영범위 있음
- (3) 온라인게임 경영활동 영위에 필요한 필수 전문인력, 설비, 장소 및 관리기술 조치 있음
- (4) 확정된 도메인네임 있음
-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

제7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신청 시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시에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표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업체 명칭, 사이트 도메인네임,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등록주소, 사업장 주소, 지분구조 및 허가받은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 허가증 발급기관에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허가를 받은 업무 범위에 따라 온라인게임 경영활동을 영위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기업의 웹사이트, 제품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서비스센터 등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전자태그 등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제3장 내용 준칙

제9조 온라인 게임의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1) 중국헌법에 확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 (2) 중국의 국가통일과 주권 그리고 영토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 (3)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명예를 훼손하고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중국 각 민족 간의 갈등과 민족적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방해하고, 중국 민족의 미풍양속과 생활습관을 해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전파하는 내용
- (6)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중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외설, 포르노,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중국사회의 공중도덕을 파괴하고, 중국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기타 중국 법률, 법규, 규장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제10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 내용을 심사하며, 아울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게임의 내용심사, 등록 및 감정에 대한 자문과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유관부서의 사전 심사승인을 득한 온라인 게임 출판물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을 허락한다.

제11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수입 온라인게임에 대한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수입 온라인 게임은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의 내용심사에 통과한 후에야 운영이 허락된다. 내용심사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수입 온라인게임의 제품 내용설명서(중국어, 외국어), 제품 조작 설명서(중국어, 외국어), 서술적 문자, 대사, 내레이션, 가사 텍스트(중국어, 외국어)
- (2) 오리지널 저작권 설명서(중국어, 외국어), 원산지 등급별 증명서(중국어, 외국어), 운영 협의서 또는 위임장(중국어, 외국어) 원본의 스캔본
- (3) 수입 온라인게임의 내용에 대한 신청업체의 자체심사보고서
- (4) 신청업체의 기업과 사용자간 협의서
- (5)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제12조 수입 온라인게임의 내용심사는 법에 따라 독점 위임을 받은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신고해야 한다. 수입허가를 득한 온라인 게임의 운영기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운영기업은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수입허가를 득한 중국산 온라인 게임은 그 운영사이트의 지정위치와 게임 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승인번호 전자태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중국산 온라인 게임은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미 등록수속을 밟은 중국산 온라인 게임은 그 운영사이트의 지정위치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등록번호 전자태그를 명시해야 한다.

제14조 수입 온라인 게임 내용이 운영된 후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해야 하는 경우 온라

인 게임 운영기업은 변경 필요 내용을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내부심사제도를 구축하고 명확한 전담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온라인 게임 내용과 경영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게임 내용과 경영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제4장 경영활동

제16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온라인 게임의 내용, 기능, 적령자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 가이드북 및 경고설명을 작성하고 아울러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은 미성년의 모방으로 인해 사회공중도덕에 위배되고 범죄를 유도하는 내용, 그리고 테러, 잔혹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유지에 방해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가 부적합한 게임이나 게임기능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게임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해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운영자격이 없는 기관에 온라인 게임 운영을 위임하지 못한다.

제18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온라인 게임 중에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강제적 대전을 설치하지 못한다.
- (2) 온라인 게임의 보급과 선전에 본 방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3) 랜덤 추출 등 우연적인 방식을 취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법정화폐 또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제품과 서비스를 받도록 유혹하지 못한다.

제19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발행함에 있어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사용범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에 한 국한되며, 결제, 실물 구매 또는 기타 기관의 제품과 서비스 태환에 사용하지 못한다.
- (2)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은 사용자의 선불자금을 악의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3)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구매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저장기간은 사용자가 마지막 1회의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4) 규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종류, 가격, 총량 등 상황을 등록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 기업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미성년자에게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 (2) 심사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온라인 게임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 (3) 서비스 제공 시에는 사용자가 유효 신분증을 사용하여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용자의 등록정보와 일치한 은행계좌에 바인딩시켜야 한다.
- (4) 이해관계자, 정부부서, 사법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에 협조하여 거래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확인을 거쳐 불법거래에 속하는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거래서비스를 중지시키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5) 사용자간의 거래기록과 재무기록 등 정보를 저장하는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온라인 게임사용자가 유효 신분증을 사용하여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사용자 등록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제22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온라인 게임의 운영을 종료하거나 온라인 게임 운영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와 아직 실효되지 아니한 게임서비스는 사용자가 구매 시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기타 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 접속 정지, 기술 고장 등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의 자체적인 원인으로 인해 그 서비스가 30일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그 서비스 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분쟁 처리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격식화 계약서 필수조항(网络游戏服务格式化协议必备条款)》을 제정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서비스 계약서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격식화 계약서 필수조항》의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계약서 기타 조항이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격식화 계약서 필수조항》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법률, 법규 또는 서비스 계약서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반포한 불법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이나 서비스 계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거나 온라인 게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게 그 등록주소 신원정보와 일치한 개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진실함이 확인된 경우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증거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진실성 심사에 통과된 실명 등록 사용자를 위해 입증하는 책임을 진다.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을 했으나 해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어떠한 기관도 불법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불법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28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술과 관리조치를 취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과 공격 파괴 방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사용자의 등록정보와 운영정보, 유지 일지 등 정보 저장을 포함하는 온라인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국가기밀과 상업 기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9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온라인 게임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또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거래서비스 등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을 영위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이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영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려 신용 징계를 내린다.

제30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하여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기에 이른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본 방법 제9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2) 본 방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 문화부의 내용심사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온라인게임을 운영한 경우
- (4) 본 방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수입 온라인 게임의 운영기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따라 다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5)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 수입 온라인 게임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을 실시하고도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본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발행함에 있어서 본 방법 제19조 제(1),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9조 제(3), (4)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3조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 서비스기업이 본 방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방법 제20조 제(2),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 방법 제20조 제(4), (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본 방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5조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본 방법 제8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36조 본 방법에서 뜻하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문화 분야의 행정처벌권 및 관련 감독검사권, 행정강제권을 상대적으로 집중 행사하는 행정집행기관을 가리킨다.

제37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이 위법 경영활동을 조사 처리 시에는 위법 경영행위를 실시한 기업등록지 또는 기업의 실제 경영지가 관할하고, 기업등록지와 실제 경영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 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이트의 정보 서비스 허가 지 또는 등록지가 관할하며,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 서버 소재지가 관할하고,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지역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온라인 게임의 인터넷 출판 사전 심사승인과 해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온라인게임 작품의 출판 심사승인은 유관부서가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3정’ 규정 중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및 문화시장 종합집행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중앙기관편제위원회 판공심의 해석》과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부 판공청

2010년 6월 9일

10.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促进出版物网络发行健康发展的通知
게재일	2010-12-08
출처	신문출판총서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신출자〔2010〕5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⁸⁴⁾ 신문출판국, 해방군 정치부 홍보부 신문출판국:

출판물 온라인발행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인터넷을 통한 출판물 발행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출판물시장관리규정(出版物市场管理规定)》(신문출판총서 령 제23호)와 《음반·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 관리방법(音像制品批发, 零售, 出租管理办法)》(문화부 령 제40호)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인터넷을 통한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영상물과 전자출판물(이하 ‘인터넷 발행’으로 약칭한다)발행은 출판물 발행의 신형식으로 거래 비용이 낮고 유통효율이 높으며 판매 범위가 넓고 서비스가 편리한 등의 장점으로 인해 사회와 소비자의 인정과 환영을 받았다.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인터넷을 통해 법에 따라 각 종 건강한 내용의 출판물 판매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인터넷 발행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인터넷 서점의 설립은 현지 출판물 발행 점포망 건설 계획의 수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출판물 발행에 종사하는 인터넷 서점 설립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 내에서 출판물 발행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 발행에 종사하며 《출판물시장관리규정》과 《음반·영상제품 도매, 소매, 임대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제품제작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려면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 소매에 종사하는 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출판물시장관리규정》 제10조의 규정(그 중 그 업무와 상응하는 고정된 경영장소가 있을 것)에 부합해야 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 도매에 종사하는 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출판물시장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그 중 등록자본은 200만 위안 이상, 경영장소의 영업면적은 50m² 이상이어야 한다)에 부합해야 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해 출판물 총발행에 종사하는 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출판물시장관리규

84)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정》의 제6조 관련 조항을 참조하고 아울러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미 《출판물경영허가증》의 출판물 총발행 기업, 도매기업, 프랜차이즈 경영기업, 소매기관을 취득하고 《음반·영상제품제작허가증》의 음반·영상물 도매기업, 프랜차이즈 경영기업, 소매기관을 취득하여 승인 경영범위 내에서 인터넷 발행을 전개하는 경우 인터넷 발행을 전개한 30일 내에 원 승인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와서 등록하고,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제품제작허가증》 경영범위 뒤에 ‘인터넷 발행’의 문구를 추가 명기한다.

(5)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간행 판매기업의 인터넷 발행 전개는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유통판매기업 관리방법(外商投资图书, 报纸, 期刊分销企业管理办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인투자 음반·영상제품 유통판매기업의 인터넷 발행 전개는 《중외합작 음반·영상제품 유통판매기업 관리방법(中外合作音像制品分销企业管理办法)》 제9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승인을 득한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에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출판물경영허가증》 경영범위 뒤에 ‘인터넷 발행’ 문구를 추가 명기하는 동시에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문서로 보고한다.

신청자는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수령한 후 30일 내에 공상등록등기를 처리한다.

5.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려면 공평, 합법,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이익과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도 아니 된다. 인터넷 발행을 통한 출판물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고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인터넷을 통해 아래 출판물을 발행할 수 없다.

(1)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한 금지 출판물

(2) 각종 불법 출판물. 이에선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판, 인쇄한 출판물, 출판기관 또는 간행물 명칭을 위조, 가짜로 출판한 출판물이 포함된다.

(3) 지적재산권을 침범한 출판물

(4) 승인을 득하지 않고 수입한 출판물

(5)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출판, 인쇄복사, 발행을 공개적으로 금지한 출판물

7.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음반·영상제품제작허가증》과 영업집조가 등재된 관련 정보 또는 링크 표식을 공개해야 하고 아울러 신문출판행정부서의 관리와 연도검사를 받는다.

8. 출판물 인터넷 거래 플랫폼 구축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하고 신문출판행정부서의 지도와 감독관리를 받는다.

출판물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출판물 발행에 종사하는 경영주체 신분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성명과 주소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출판물 인터넷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경영증명서 및 허가증 확인조사제도를 구축

해야 한다. 경영주체의 영업집조, 《출판물경영허가증》, 《음반·영상제품제작허가증》을 확인하고, 증명서와 허가증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증명서와 허가증이 없거나 증명서와 허가증 미비 경영자에게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출판물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 내에 각 중 위법 및 금지 활동을 발견한 경우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제지하고 소재지 신문출판행정부서에 적시에 보고한다.

9. 본 통지 발표 전 이미 국내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는 경우 2011년 1월 31일 전에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소재지 신문출판행정부서에 가서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처리해 경영활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출판물경영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고 종전대로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는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금지를 명하는 동시에 공안, 공상, 통신 주무부처에 위법 웹사이트 폐쇄를 제출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인터넷 서점을 설립하거나 무단으로 인터넷 발행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판관리조례》 제55조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출판물과 금지 출판물을 발행한 경우에 대해 《출판관리조례》, 《출판물시장관리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기한 내 영업정지 또는 원증서 발급기관이 허가증 취소 명령을 내린다.

10. 각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통지의 정신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인터넷 발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과 개인이 법에 따라 등록등기, 준법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 발행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신문출판총서

2010년 12월 7일

11.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제목	“网络游戏未成年人家长监护工程”实施方案的通知[2011]6号
게재일	2011-01-31
출처	문화부, 중앙문명판, 교육부, 공업정보화부,公安부, 위생부, 공청단중앙, 전국부녀연합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문화부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중앙문명판) 교육부 공업정보화부公安부 위생부 공청단중앙 전국부녀자연합회의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网络游戏未成年人家长监护工程’实施方案)》에 관한 통지

2011년 1월 15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교육청(교육위원회), 통신관리국,公安청(국), 보건청(국), 공청단위원회, 부녀자연합회, 신장생산건설병단⁸⁵⁾ 문화방송TV관리국,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행정집행총대⁸⁶⁾:

온라인 게임 종합 단속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부의 지도하에 2010년 2월 일부 온라인 게임 경영기업들은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网络游戏未成年人家长监护工程’)(이하 ‘친권자 보호공정’이라 약칭한다)을 시범 가동했다.

각 경영기업은 ‘친권자 보호공정’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용회선 자문전화를 공표하여 온라인 접수루트와 기타 접수방식을 개통하여 부모들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했다. 이 공정은 시행 이후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과도 몰입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친권자 보호공정’의 커버리지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과 사회, 부모(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문화부, 중앙문명판, 교육부, 공업정보화부,公安부, 공청단중앙, 전국부녀연합은 검토를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 업종에서 ‘친권자 보호공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网络游戏未成年人家长监护工程’实施方案)》을 공표하고 다음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바이다.

1. 협력 증진, ‘친권자 보호공정’ 감독관리 책임 이행

각 부서는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협력을 증진하여 ‘친권자 보호공정’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온라인 게임 미성년자 보호 강도를 확대한다.

문화부 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 주무부처 직무를 이행하고 온라인 게임 경영기업에 대한 감독관

85)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86) 행정집행총대(行政执法总队): 행정집행본부

리를 강화하며 요구에 따라 실시작업을 잘하도록 독촉하고 유관부서에 협조하여 시행 중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시행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중앙문명판)은 각 종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정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성년자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에 유리한 양호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 위생, 공청단, 부녀연합 등 부서는 상호 협력하여 미성년자 특히, 학생, 부모의 심리건강 보조역할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과학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친권자 보호공정’을 통해 부모들의 인터넷 관여 능력을 제고하도록 도와 예방에 착수하여 미성년자의 부당한 인터넷 사용을 예방한다.

통신관리부서는 문화 등 부서에 협조하여 유관부서가 인증한 ‘친권자 보호공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유관부서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공안기관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신분관계 검증작업에 잘 협조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을 보장하면서도 온라인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공청단 조직은 청년 자원봉사자의 도우미 역할을 발휘하여 미성년자 및 감독자가 인터넷에 건전하게 접속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미성년자를 돕는다.

2. 감독강화, ‘친권자 보호공정’ 시행 효과 제고

시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부 행정부서는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의 ‘친권자 보호공정’ 교육 심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각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의 ‘친권자 보호공정’ 시행상황에 대한 조사 평가를 진행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친권자 보호공정’에 대한 감독 진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12318 문화시장 신고전화의 역할을 계속 잘 발휘하고 친권자 및 사용자 신고를 성실히 처리하여 신고가 있으면 필히 조사하는 동시에 조사처리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한다. ‘보호공정’ 시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에 대해 문화부 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 실시방법》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보호공정’은 정부부처, 인민단체의 지도하에 사회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온라인 게임 경영기업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행동이며, 이는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감독을 강화하여 미성년자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여 조화로운 가정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 공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친권자 보호공정’의 주요 내용

- (1)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용회선 자문전화를 공표하여 전문적인 접수루트를 개통하고 접수방식을 소개한다.
- (2) 부모가 자녀의 게임 활동을 이해, 유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는 온라인 게임 경영기업에 합법적인 후견인 자질증명, 게임 명칭 ID 및 규제 조치 등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 조치는 매일 또는 매주 게임을 하는 시간제한, 게임하는 시간대 제한 또는 완전 금지를 포함한다.
- (3)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미성년자의 계정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해당 계정의 활동을 적시에 피드백하여 부모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미성년자의 부당한 게임행위를 제지하고 제한한다.

2. ‘친권자 보호공정’시행의 구체적인 요구

각 급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은 전문가 책임, 전용회선전화, 전문코너 설치,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한다.

(1) 전문가 책임

- 1) 전문적인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 및 연락방식을 지정하여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한다.
- 2) 전문 서비스인력을 교육하여 ‘친권자 보호공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 문답과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부모가 피후견인의 오락행위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 부모에게 피후견인과 소통을 하도록 건의한다.
- 3) 서비스인력은 매 신청을 계속 추적하여 부모와 소통하여 이 계정의 활동 상황을 즉시 피드백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참여 활동을 이해하여 부모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2) 전용회선전화

- 1) 단독 전용회선 서비스전화(보통 서비스 핫라인과 구별됨)를 개통하여 자문 상담과 접수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기존의 고객센터 전화 중 전용회선서비스 전화를 접속하는 링크를 제공한다.
- 3) 여러 종류의 서비스 루트를 제공하여 부모가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신청(팩스, 인터넷 신청, 이메일, 서신 우편발송, 방문 신청 등)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문코너 설치

- 1) 사이트에 ‘친권자 보호공정’ 전문코너를 설치하고, 주요 운영제품을 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이 공정에 진입하는 홈페이지로 진입하는 링크 방식을 설치한다.
- 2) 전문코너는 공정 상황, 신청 조건, 처리 프로세스, 취할 수 있는 감독결과 등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 3) 전문코너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감독서비스 신청 입구, 접수방식(부모감독 전용회선)을 설치한다.
- 4) 전문코너에 문제와 답안을 미리 설치하거나 가상 사례 조작 프로세스 및 결과를 전시하여 부모가 열람하고 참고하도록 한다.
- 5) 전문코너에 서비스 신청 진도 조화를 설치한다.
- 6) 전문코너에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에 건강하게 참여하기 위한 제시(未成年人健康参与网络游戏提示)》(부록2)을 게재하여 미성년자가 건전하게 게임을 하고 건전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한다.

(4) 분기별 보고

각 온라인게임 경영기업은 매 분기말에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친권자 보호공정’ 상황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 내용은 자문 수량 신청수량, 접수와 완성 상황, 중점사례분석, 난제 설명을 포함하며 공정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의견 또는 건의를 제출한다.

3. 정보공개와 사회감독 강화

문화부는 중국문화시장네트워크에서 ‘친권자 보호공정’ 전문칼럼을 설치하고 온라인게임 경영업체 명단, 각 경영업체 ‘친권자 감독공장’ 서비스 사이트 홈페이지, 핫라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표하여 부모와 사회에 조회 및 감독을 제공한다.

문화부 온라인게임 내용 심사 전문가위원회, 중국교육학회 초중등학교 정보기술교육위원회, 중국청소년온라인협회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에 건강하게 참여하기 위한 팁》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접촉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미성년자가 게임에 건전하게 참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업종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부모도 감독과 유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공한다.

- 1) 게임시간을 능동적으로 제어한다. 게임은 단지 학습, 생활의 윤회유일 뿐이므로 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부모가 자신이 온라인게임에서의 행위와 체험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MMORPG)을 하지 않고, PK류가 설치된 게임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매주 게임시간을 2시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매월 게임에 쓰는 돈이 10위안을 넘지 않아야 한다.
- 3) 게임을 정신적인 위안물로 삼지 않는다. 특히 현실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좌절에 부딪혔을 때 가족, 친구에게 더 많이 털어 놓아야 하며 게임에만 의존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는 안 된다.
- 4) 적극적이고 건강한 게임 마음가짐을 기른다. 비교, 과시, 증오심과 복수 등의 심리를 극복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타인을 약탈하는 등 불량한 온라인 행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5) 개인 가정, 친구 신원정보, 가정, 학교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정보보호에 주의하여 온라인 함정과 인터넷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12.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제목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게재일	2011-02-17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령 제51호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은 2011년 2월 11일 문화부 부서업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차이우(蔡武)

2011년 2월 17일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2011년 2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령 제51호로 발표, 2017년 12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령 제57호 《일부 부처 규정의 폐지, 수정에 관한 문화부의 결정》에 따라 수정)

제1조 인터넷 문화의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문화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중국 인터넷 문화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보안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维护互联网安全的决定)》과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등 국가의 법률 법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인터넷 문화상품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생산, 전파와 유통되는 문화상품을 가리키며, 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인터넷 전파를 목적으로 전문 생산하는 인터넷 음악·쇼, 온라인게임, 인터넷 공연 레퍼토리(프로그램), 인터넷 공연, 인터넷 예술품,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 문화상품
- (2) 음악·쇼, 게임, 공연 레퍼토리(프로그램), 공연, 예술품, 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을 일정한 기술을 통해 제작,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전파하는 인터넷 문화상품

제3조 본 규정의 인터넷 문화 활동이라 함은 인터넷 문화상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뜻하며, 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인터넷 문화상품의 제작, 복제, 수입, 발행, 방송 등의 활동
- (2) 문화상품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통신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유선전화기, 모바일 전화기, 텔레비전, 게임기 등 사용자 단말기 및 PC방 등 인터넷상 서비스 영업장소로 발송하여 사용자에게 열람, 감상, 사용 또는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파 행위
- (3) 인터넷 문화상품의 전람, 경기 등 활동.

인터넷 문화활동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두 종류로 나뉜다.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요금을 수취하거나 전자상거래, 광고, 협찬 등의 방식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여 인터넷 문화상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문화상품 및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 이다.

제4조 본 규정에서 뜻하는 인터넷 문화업체는 문화행정부서와 통신관리기관의 승인 또는 등록을 거쳐 인터넷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문화 활동에 종사한다면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5조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시에는 헌법과 유관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서비스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선양하는 한편, 민족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진보를 촉진하는데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과 문화 지식을 전파하여 인민의 정신생활을 풍족하게 하도록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인터넷 문화발전과 관리의 방침,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전국 인터넷 문화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신청 업체에 대해 심의허가를 진행하고,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신청 업체에 대해 등록을 진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해당지역 내 인터넷 문화활동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인터넷 문화 활동 종사자가 국가 유관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제7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신청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 (1) 업체의 명칭, 주소, 조직기구와 정관 있음
- (2) 확정된 인터넷 문화활동 범위 있음
- (3) 인터넷 문화활동 필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설비, 사업장 및 상응하는 경영관리 기술조치 있음
- (4) 확정된 도메인 네임 있음
- (5)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유관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제8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신청 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심사 승인을 승인한다.

제9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표
- (2) 영업집조와 정관
- (3)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 서류

- (4) 업무범위 설명
- (5) 전문인력, 사업장 및 상응하는 경영관리 기술조치의 설명자료
- (6) 도메인 네임 등록 증명서
- (7) 법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를 신청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심사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불허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경영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연장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는 설립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1) 등록표
- (2) 정관
- (3)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 서류
- (4) 도메인 네임 등록 증명서
- (5) 법에 의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영위 신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소재지 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12조 인터넷 문화업체는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문화행정부서가 교부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하고,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가 교부한 경영허가증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업체의 명칭, 도메인 네임,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등록주소, 경영주소, 지분구조 및 허가경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성,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명칭, 주소, 도메인 네임,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인터넷 문화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말소 수속을 밟는다.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의거하여 기업등기를 처리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어도 인터넷 문화활동을 전개하지 않는 경우 원래 심의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말소하

는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통지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인터넷 문화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원래 등록업무를 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등록을 말소하는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 통지한다.

제15조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의 경영활동은 문화행정부서가 심사 발급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실시해야 하고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은 문화부에 보고하여 콘텐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부는 콘텐츠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전문가 심의 소요시간 제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하는 경우,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문화부의 승인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무단으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침삭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에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수입업체는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수입 종료를 결정한 경우 문화부는 그 승인번호를 취소한다.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경영하는 중국산 인터넷 문화상품은 정식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급 이상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문화부 등록번호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명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인터넷 문화업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문화상품을 제공해선 아니 된다.

- (1) 중국헌법에 확정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2) 중국의 국가통일과 주권 그리고 영토 완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 (3) 중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국가명예를 훼손하고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
- (4) 중국 각 민족 간의 갈등과 민족적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간의 단결을 방해하고, 중국 민족의 미풍양속과 생활습관을 해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와 미신을 전파하는 내용
- (6)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중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외설,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중국사회의 공중도덕을 파괴하고, 중국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해치는 내용
- (10) 기타 중국 법률, 법규, 규장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제17조 인터넷 문화업체가 제공한 문화상품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터넷 문화업체는 법에 의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문화업체는 내부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전담부서에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인터넷 문화상품 내용과 활동에 대한 내부 조사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문화상품의 내용과 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 제19조 인터넷 문화업체는 제공된 인터넷 문화상품에 본 규정 제16조에 열거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각 제공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복사하여 문화부에 송부한다.
- 제20조 인터넷 문화업체는 제공한 문화상품의 내용 및 그 시간,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기록 백업해야 하며, 기록 백업본은 60일 간 보존하고 국가 유관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조사할 때 제공한다.
- 제21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을 영위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이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영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려 신용 징계를 내린다.
- 제22조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기간이 지나도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 문화활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3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종사자가 본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활동 종사자가 본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 문화활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4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을 정지하고 정돈하는 것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취소명령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터넷 문화활동 정지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5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을 경영하면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문화부 승인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중국산 인터넷 문화상품을 경영하면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문화부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00위안 이하에 벌금을 부과한다.
- 제26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침삭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제공 정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정돈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취소명령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해 중국산 인터넷 문화상품을 경영하면서 기간이 지나도록 문화행정부서에 등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인민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8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문화상품을 제공하거나 문화부 수입승인을 득하지 않은 인터넷 문화상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제공 정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영업 정지 정돈에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취소명령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한 포함한 인터넷 문화상품을 제공하거나 문화부 수입승인을 득하지 않은 인터넷 문화상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제공 정지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0조 영리성 인터넷 문화업체가 본 규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규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영업정지 및 정돈 명령 또는 웹사이트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린다.

제32조 본 규정에서 뜻하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문화 분야의 행정처벌권 및 관련 감독검사권, 행정강제권을 상대적으로 집중 행사하는 행정집행기관을 가리킨다.

제33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이 위법 경영활동을 조사 처리 시에는 .위법 경영행위를 실시한 기업 등록지 또는 기업 실제 경영지가 관할하고, 기업 등록지와 실제 경영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 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허가지 또는 등록지가 관할하며,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 서버 소

재지가 관할하고,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지가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본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10일 반포, 2004년 7월 1일 개정 한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13.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제목	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제재일	2006-05-18, 2013-01-30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2006년 5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68호 공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634호 《〈정보인터넷전파권보호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修改〈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的决定)》은 2013년 1월 16일 국무원 제23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13년 1월 30일

정보인터넷전파권 보호조례

제1조 저작권자, 공연자, 녹음녹화 제작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권리자가 향유하는 정보 인터넷 전파권은 저작권법과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 녹화제품을 정보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제공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얻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법적으로 금지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권리자가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행사할 시에는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기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의적으로 기술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조치 회피 또는 파괴에 주로 사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고의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공중에 제공하지 못하며, 고의적으로 타인의 기술조치 회피, 파괴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권리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고의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 관리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 단 기술상 원인으로 인해 삭제 또는 수정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정보 인터넷을 통해 권리자의 허가가 없이 권리관리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변연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에게 제

공한 경우

제6조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작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

- (1) 특정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중에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 (2)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중에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그것을 인용하여야 하는 경우
- (3)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이나 과학연구를 위해 소수 수업, 과학연구 인원에게 이미 발표된 작품을 소량 제공하는 경우
- (4)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중에게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 (5) 중국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한어 문자로 창작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 경내 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경우
- (6) 비영리 목적으로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맹인에게 이미 발표된 문자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 (7) 대중에게 정보 인터넷상 이미 발표된, 정치, 경제문제와 관련한 시사성 문장을 제공하는 경우
- (8) 대중에게 공중집회에서 발표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 도서관, 당안(檔案)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고 정보 인터넷을 통해 본 관 건물 내의 서비스대상에 본 관이 소장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디지털작품과 법에 따라 진열하거나 버전보관의 필요로 디지털화 형식으로 복제한 제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버전의 진열이나 보관 필요를 위해 디지털화 형식으로 복제한 제품은 이미 훼손되거나 훼손에 직면하거나 또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그 저장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울러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또는 분명히 높게 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제8조 정보 인터넷을 통해 9년제 의무교육이나 국가 교육규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 이미 발표된 작품의 단편이나 짧은 문자작품, 음악작품 또는 한 폭의 미술작품, 촬영작품으로 교육용 코스웨어를 제작하여 코스웨어를 제작하였거나 법에 따라 코스웨어를 취득한 원격교육기구에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빈곤구조를 위해 정보 인터넷을 통해 농촌지역의 공중에게 무료로 중국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미 발표한 재배양식, 질병예방과 퇴치, 재해방지와 감소 등의 빈곤구조와 관련한 작품과 기본 문화수요에 부합되는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하기 전에 제공하고자 하는 작품과 그 작자, 지불할 보수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작권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그 작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고일로부터 30일이 만료되어도 저작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그 작품을 제공하고 공고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작품을 제공한 후 저작권자가 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삭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고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작품 제공기간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 항 규정에 따라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보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그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 조례 제6조 (1)호에서 (6)호, 제(7)호 규정 상황은 제외하고 작자의 사전성명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한 작품을 제공할 수 없다.
- (2) 작품의 명칭과 작자의 성명(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 (4) 본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대상 그 밖의 타인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얻지 못하도록 기술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대상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5) 저작권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공연, 녹음녹화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조치를 피할 수 있다. 단 타인에게 기술조치를 피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법에 의해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1) 학교의 교실강의 또는 과학연구를 위해 정보 인터넷을 통해 소수 강연, 과학연구 인원에게 정보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이미 발표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 (2) 비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맹인이 감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맹인에게 보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이미 발표된 문자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 (3) 국가기관이 행정, 사법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 (4) 정보 인터넷에서 컴퓨터 및 그 시스템이나 인터넷 안전성능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

제1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정보 인터넷 전파권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인터넷주소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자가 그 서비스와 관련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자기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을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권리관리전자정보가 삭제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저장 공간 또는 검색,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받

송하여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또는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링크를 중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및 주소

(2) 삭제 또는 링크 중단을 요구한 권리침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인터넷주소

(3) 권리침해를 구성한 초보적 증거자료.

권리자는 통지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켜야 하며, 동시에 통지서를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대상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 인터넷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통지서의 내용을 정보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대상은 인터넷서비스대상이 전달한 통지서를 받은 후 그가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서면 설명서를 제출하여 삭제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회복하거나 또는 중단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회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설명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및 주소

(2) 회복을 요구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인터넷주소

(3)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은 초보적 증거자료.

서비스대상은 서면설명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삭제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회복하거나 또는 중단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동시에 서비스대상의 서면설명서를 권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다시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키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침해, 영향제거, 사과, 손실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주로 사용한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정보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공중에게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2) 고의적으로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한 경우

- (3) 고의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관리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 권리자의 허가를 거쳐 권리관리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한 경우
- (4) 빈곤구조를 목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농촌지역에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공고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권리자가 그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은 후 지체 없이 삭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에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이나 저자, 공연자, 녹음녹화제품 창작자의 성명(명칭)을 밝히지 않았거나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서비스대상 그 밖의 제3자가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권리자의 이익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하는 서비스대상의 복제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에 주로 사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에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 (1)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장치나 부품을 고의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기술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고의적으로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2) 정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여 경제이익을 취득한 경우
- (3) 빈곤구조를 목적으로 정보 인터넷을 통해 농촌지역에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제공하기 전에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저자, 공연자, 녹음녹화제품 제작자의 성명(명칭) 및 보수기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의 지령에 따라 인터넷 자동접속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에 자동전송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1) 그가 전송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변경하지도 아니한 경우
- (2) 지정한 서비스대상에게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한 동시에 지정한 서비스대상 그 밖의 기타인의 취득을 방지한 경우.

제21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전송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취득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고 기술안배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1) 자동 저장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2)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서비스대상의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 취득상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경우
- (3) 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수정, 삭제 또는 차폐를 할 때 기술안배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정, 삭제 또는 차폐를 한 경우.

제22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에게 정보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서비스대상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1) 당해 저장공간은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한다고 명확히 표시함과 아울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연락처, 인터넷주소를 공개한 경우
- (2)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3) 서비스대상이 제공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권리를 침해한 것을 모르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4) 서비스대상에게 제공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 (5)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한 경우.

제23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대상에게 검색 또는 연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통지서를 받은 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한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이 권리를 침해한 것을 번연히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공동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권리자의 통지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잘 못 삭제하거나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과의 연결을 잘 못 중단시켜 서비스대상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는 마땅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서비스대상의 성명(명칭), 연락방식, 인터넷주소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에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한다.

제26조 본 조례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정보 인터넷전파권이라 함은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중에 작품, 공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그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 공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취득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기술조치라 함은 권리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열람, 감상하거나 또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작품, 공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유효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가리킨다.

권리관리전자정보라 함은 작품 및 그 저자, 공연 및 그 공연자, 녹음녹화제품 및 그 제작자의 정보, 작품과 공연, 녹음녹화제품 권리자의 정보와 사용조건을 설명하는 정보, 그리고 상술한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또는 코드를 가리킨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 실시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实施网络文化经营单位内容自审管理办法的通知
게재일	2013-08-12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문시발(文市发)〔2013〕 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⁸⁷⁾ 문화방송TV관리국,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시 문화시장행정집행총대⁸⁸⁾, 티벳자치구 문화시장종합집행총대:

국무원의 정부기능 전환과 행정기구 간소화 및 하부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에 관한 요구를 관철 이행하고 각급 문화행정부서가 실제상황에 따라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 하부기관으로 이양,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직무는 기업 또는 사회조직에 맡기고 정부부처는 서비스와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근거하여 인터넷 문화건설과 관리의 현실과 발전수요를 종합하여 문화부는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网络文化经营单位内容自审管理办法)》(이하 《방법》으로 약칭한다)을 제정했다. 목적은 기업의 자주적인 관리능력과 자율적인 책임을 증강시키고 인터넷 문화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하기 바란다.

1. 문화부 문화시장사는 인터넷 문화 관리 교육교재를 조직 집필하고 《인터넷음악 콘텐츠 심의허가 업무지침(网络音乐内容审核工作指引)》, 《온라인게임 콘텐츠 심의허가 업무지침(网络游戏内容审核工作指引)》을 출판하여 트레이너 자료풀과 문제은행을 구축해 각 지역에 교육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각 지역 문화청(국)은 《방법》 시행 전 관할구역 내 실제 인터넷 문화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의 콘텐츠 심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피교육자 수량은 기업의 실제 업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기업이 결정한다.
3. 교육은 현장과 인터넷을 서로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인터넷 교육플랫폼은 문화부가 구축한다. 교육에 처음 참가하는 인원은 현장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콘텐츠 심사원 자격증(内容审核人员证书)》을 발급한다.
2009년 이후부터 문화부 및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조직한 교육에 참가하여 시험에 합격한 콘텐츠 심사원은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방법》 시행 전에 《콘텐츠 심사원 자격증》을 재발급한다.
4. 각 지역 문화청(국)은 업종협회, 중개기구를 자체적으로 조직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이 적은 지역은 주변지역과 공동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규모가

87) 병단(兵团):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88) 행정집행총대(行政执法总队): 행정집행본부

크고 심사원이 많은 회사도 지점 전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5. 문화부는 전국 인터넷 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심사원 정보풀을 구축하여 각 지역 문화청(국)에 본 급 정보풀을 구축하고 아울러 콘텐츠 심사원 정보를 문화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시에 보고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문화부

2013년 8월 12일

《온라인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자체심사관리방법(网络文化经营单位内容自审管理办法)》

제1조 인터넷 문화 콘텐츠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문화경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콘텐츠 자체심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취득한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이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법에 의거하여 제공하려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콘텐츠에 대해 사전 심사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제4조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은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은 완비된 콘텐츠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전문적인 콘텐츠 관리부서를 설립하고 심사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콘텐츠 관리를 책임져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 콘텐츠의 합법성을 보장한다. 인터넷 문화경영기업 콘텐츠관리제도는 콘텐츠 심의허가 업무의 직무, 표준, 프로세스 및 책임추증방법d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의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콘텐츠 심의허가 작업은 《콘텐츠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한 심사원이 실시한다.

제7조 콘텐츠 심사원의 직무

- (1) 콘텐츠 심사의 정책 법규와 관련 지식 숙달
- (2) 심의허가 의견의 독립적인 표현
- (3) 문화행정부서가 조직한 업무 교육 참가

제8조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콘텐츠 심의허가 작업은 2명 이상의 심사원이 시행하고 심사원은 심의의견을 기입하고 서명한 후 해당 기업 콘텐츠 관리 책임자에 보고하여 점검 사인을 받는다.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 콘텐츠의 합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행정지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문화행정부서는 10일 이내에 회신을 보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심사기록의 보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은 기술수단을 통해 웹사이트(플랫폼) 운영의 상품 및 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를 적발한 경우 즉각 제공은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중대한 문제는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문화부는 인터넷 문화경영기업 콘텐츠 심사원의 교육 시험업무에 총괄 협조하고 인터넷 문화상품 콘텐츠 심사업무 지침을 지도 제정하며 교육교재와 문제은행을 조직 집필하고 심사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다.

제12조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콘텐츠 심사원 교육 시험 및 검사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업무는 현장과 인터넷을 서로 결합한 방식을 취하여 진행한다. 시험 합격자에게는 《콘텐츠 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심사원 정보D/B 통일 관리에 편성시킨다. 자격증을 취득한 콘텐츠 심사원은 매년 최소 1회 재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제13조 콘텐츠 심사원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서발급부서는 그 《콘텐츠 심사원 자격증》을 회수하여 말소한다.

- (1) 2년 연속 규정에 따라 재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2) 직무태만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한 경우
- (3) 중대한 심의허가 실수가 있는 경우

제14조 본 방법에 따라 자체 심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인터넷 문화경영기업은 현급이상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이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법규 규장 규정에 따라 문화행정부서에 인터넷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심사 또는 등록을 보고하고 자체 심의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제목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的通知〔2014〕18号
제재일	2014-03-31
출처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상하이시 공상국, 상하이시 품질기술감독국, 상하이해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등 5개 부서가 제정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공표에 관한 통지

각 구, 현 인민정부, 시정부 각 위원회, 판공실, 국: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시 공상국, 시 품질기술감독국, 상하이 해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은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공표하니 성실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상하이시인민정부 판공청

2014년 4월 10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국무원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国务院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국발〔2013〕38호), 《국무원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임시조정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 규정한 행정심의 또는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국발〔2013〕51호)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문화부 통지(文化部关于实施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管理政策的通知)》(문시발〔2013〕47호)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1. 외자기업이 게임 오락설비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문화 주무부처의 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게임 오락설비는 중국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1)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시험구’로 약칭한다) 내 공상부서가 승인 발급한 영업집조를 획득하고 아울러 영업집조 범위에 ‘게임 오락설비 생산 및 그 상품 판매’라고 명시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에 콘텐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 중국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게임 오락설비는 합법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녀야 하며, 과학적이고 예술적이며 인문지식을 전파하는데 유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익해야 한다. 《오락장소관리조례(娱乐场所管理条例)》(국령〔2006〕458호) 제13조의 금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점수 저장, 코인 환불, 구슬 환불 등 도박기능을 포함해서도 아니 된다. 설비외관, 게임 내용, 게임방법 설명은 중국 통용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3) 게임오락설비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콘텐츠 심사 신청 시 게임 내용을 미리 내장한 게임 오락설비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게임오락기 시장진입 기종 콘텐츠 심의허가 신청서(游戏游艺机市场准入机型机种内容审核申请表)》와 《게임오락기 품종 콘텐츠 심의허가 자료 등록표(游戏游艺机产品内容审核材料登记表)》
 - ② 기업 영업집조 사본
 - ③ 게임오락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증명 자료. 해당 게임 오락제품의 지적재산권 증명 서류 또는 해당 게임오락제품의 지적재산권 수권 서류
 - ④ 게임오락설비 중 내용 전 과정의 동영상 파일 또는 게임 오락 소프트웨어의 동영상 데모(DEMO) 파일, 동영상 파일 또는 동영상 DEMO 파일은 게임오락설비의 최종 상장 버전 중의 모든 게임오락 내용을 가리키며, 정상적인 게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CD ROM 또는 DVD 디스크를 매체로 함)이어서는 안 된다.
 - ⑤ 제품 전체 외관과 실제 판매제품과 일치하는 전자사진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정면사진 1장, 측면사진 2장, 격식은 '*.JPG'로 통일하고, 사진 해상도는 800×600이상이어야 한다.
 - ⑥ 게임오락 사용의 오디오 파일, 명칭 리스트와 가사의 전자 텍스트, 전자 텍스트는 게임오락설비 중 사용되는 전체 배경음악(BGM), 곡목 리스트, 오디오 파일과 가사의 중국어본과 외국어본 대조 텍스트
 - ⑦ 게임오락 내용 중 전체 대화, 내레이션, 묘사성 문자 및 조작설명서의 중국어와 외국어 전자 텍스트
 - ⑧ 게임오락설비를 위한 게임오락내용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게임오락설비를 위해 게임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 내용을 제공하는 기업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제출해야 한다.
- (4)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심사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게임오락설비 콘텐츠 심의허가 확인서(游戏游艺设备内容审核确认单)》를 발급하고 아울러 문화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5) 외국인투자기업은 《게임오락설비 콘텐츠 심의허가 확인서》를 취득한 후 중국 국내 시장에 그 게임오락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게임오락설비의 게임오락내용, 오락기 모델, 기종이 업그레이드되고 버전이 수정되는 등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에 내용 심사를 다시 신청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 및 판매한 게임오락설비의 제품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은 국가와 본 시 유관 표준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및 그 포장은 제품의 명칭, 생산공장명과 주소를 중국어를 사용하여 명기해야 한다.
- (7) 중국 국내에 판매되는 그 게임오락설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게임오락설비 국내 판매 수속을 밟을 때 정상적인 관리규정에 따른 해관수속을 제외하고 해관부서에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이 발급한 《게임오락설비 콘텐츠 심의허가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8) 인터넷상에서 게임오락설비를 위해 게임 내용을 제공하는 기업은 문화부가 발표한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게임제품은 문화부의 승인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기타 방법을 통해 게임오락설비를 위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9) 공상부서, 품질기술감독부서와 세관은 각자 직능에 따라 관련 관리직무를 행사한다.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이하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관련 외자기업의 일상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2. 외자 공연 매니지먼트기구의 지분 제한을 취소하고 외상 독자가 공연 매니지먼트기관을 설립하여 상하이시 행정구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 (1)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공상부서가 심사발급한 영업집조를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에 공연 매니지먼트기구에 《영업성연출허가증(营业性演出许可证)》과 연출장소 경영업체 등록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합자, 합작 공연 매니지먼트기구 설립과 공연장소는 외국 투자자의 외자지분 비율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 (2) 외국인투자 공연 매니지먼트기구가 《영업성연출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공연매니지먼트기구 설립 신청등록표(设立演出经纪机构申请登记表)》
 - ② 기업 영업집조 사본
 - ③ 3명이상 전직 공연 매니저 인원의 자격증서
- (3)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심사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영업성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무역지역 내에 공연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취득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연출장소경영업체등록표(演出场所经营单位备案表)》
 - ② 기업 영업집조 사본
 - ③ 소방, 보건 등 행정관리부서의 승인 서류 사본
 - ④ 공연장소의 방위도와 내부 평면도
- (5)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공연 매니지먼트기구가 영업성 공연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①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국내문예공연단체와 연극자가 참여하는 영업성 공연에 대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중 중국 국내 문예공연단체와 배우가 참가한 영업성 공연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영업성 공연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② 자유무역시험구 외, 상하이시 행정지역 내 해외 또는 홍콩·마카오·대만의 영업성 공연의 경우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내 문예공연단체와 배우가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일 경우 공연 개최장소지의 구(현)문화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현)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6) 자유무역시험구 내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연장소의 본 공연장소 내에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외상독자의 오락장소 설립을 허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서비스 제공

- (1) 자유무역시험구 내 공상부서가 발급한 영업집조를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에 《오락경영허가증(娱乐经营许可证)》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오락장소는 건설 단계로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법에 의거하여 외자기업에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 무역구역 내에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오락장소관리조례(娱乐场所管理条例)》(국령〔2006〕458호), 《오락장소관리방법(娱乐场所管理办法)》(문화부령〔2013〕55호) 등 법규, 규장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아울러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에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오락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게임오락설비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상황, 외국인투자 공연 매니지먼트기구, 공연장소, 오락장소의 경영활동 상황은 상하이 문화시장경영주체 성실신용관리시스템에 포함된다.

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와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게임오락설비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 설립, 공연 매니지먼트기구 설립, 공연장소와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본 실시세칙을 적용한다.

6. 본 실시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
상하이시 품질기술감독국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2014년 3월 31일

16.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游戏宣传推广活动监管的通知
게재일	2015-03-19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⁸⁹⁾ 문화라디오방송국, 티벳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 행정법 집행총대(总队)⁹⁰⁾:

다년간 각 지역 문화행정기관과 문화시장 종합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온라인게임 홍보 활동에 대한 관리와 법 집행을 강화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마케팅 현상이 많이 적어졌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홍보에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허위와 사기, 저작권 침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시키며 법률과 법규 행위를 단속하고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지도사상을 수립하여 온라인게임의 홍보내용을 관리감독 범위에 한층 더 포함시킨다. 문화행정기관과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전 분야 관리감독 이념을 수립하여 온라인게임 홍보 활동을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소재지 온라인게임 업체의 홍보 활동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정보 기록문서를 분류 구축하고 중점 예의주시 기업과 중점 관리감독의 홍보 형식을 확정해야 한다. 최종 단계의 단속과 앞 단계 관리의 상호 결합, 그리고 온라인 관리감독과 오프라인 관리감독의 상호 결합을 주목하는 한편 ‘사건 마케팅’ 또는 기타 대중이 참여하는 현장 마케팅 활동에 대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규정을 위반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온라인게임업체를 엄격히 조사하여 제1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광고 홍보 연맹을 함께 단속한다. 온라인게임업체가 진행하는 홍보활동 중 홍보 대상이 온라인게임 상품이라면 온라인게임업체는 이중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1의 책임을 져야 하고, 문화행정기관과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진행한다. 각 지역은 대표 사례를 확보하고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며 법규 위반 문제가 존재하는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수사하면서 위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경영하는 온라인게임 광고 홍보연맹에 대해서는 현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공상부 등 기관과 연합하여 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3. 정보통보 메커니즘과 신고 루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강화한다. 각급 문화행정기관과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전국 문화시장 기술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 및 각 지역의 문화시장 기층의 관리감독 정보담당자 역할을 발휘하면서 온라인게임의 홍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국 문화시장 신고 사이트(www.12318.gov.cn)와 현지 12318 신고 전화 등 신고 루트를 원활하게 만들어 온라인게임 홍보와 관련된 신고 단서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확보된 증거가 사실일 경우 처벌하는 즉시

89)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90) 종합집행본부

발표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公安部, 公업정보화부, 公상부 등 기관의 管轄에 속할 경우 적시에 신고 및 사건 단서를 통보해 부처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4. ‘블랙 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유재량권 표준을 규범화한다. 규정 위반 홍보 기업 ‘블랙 리스트’ 제도를 정착시켜 사회에 기업의 규정 위반 정보를 적시에 발표한다. 홍보의 규정 위반 횟수, 규정 위반 경위 등 요소에 따라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 분류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수 차례 타일러도 시정하지 않고, 몇 번을 가르쳐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인다. 본 통지 발표 당일부터 온라인게임 확산과 홍보 과정에서 《온라인게임 관리 잠정방법》 제9조의 금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게임 경영업체에 대해 규정 위반 1회이면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 위반 2회이면 게임운영 15일 중단을 명령하고, 규정 위반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의 《온라인 문화경영 허가증》 중의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경영범위를 삭제한다.
5. 기업교육과 적극적인 유도를 강화한다. 문화행정기관과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온라인게임업체가 《네트워크 문화경영업체의 콘텐츠 자체심사 관리방법》을 엄격히 수행하도록 지도 및 독촉하고 온라인게임업체의 건전한 게임 상품 개발을 유도하며 합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와 저속한 마케팅을 스스로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6. 각 지역 협회의 역할을 발휘하여 업계 자율을 강화한다. 각 지역은 현지 네트워크 문화협회 및 업계조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업계의 저속한 마케팅 저지, 업계 이미지 유지 공약을 발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7. 부처간의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부처간 연계를 강화한다. 각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논의, 단서 이송, 공동 법 집행 등 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홍보활동 관련 사건이 형사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적시에 公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문화부

2015년 3월 19일

17.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게재일	2016-02-04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공업정보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령 제5호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络出版服务管理规定)》은 2015년 8월 20일자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공업정보화부의 승인을 거쳐 현재 공표하고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공업정보화부 부장 먀오위(苗圩)

2016년 2월 4일

중국 출판정책 22번 427페이지 참조

18.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移动游戏出版服务管理的通知（新广出发〔2016〕44号）
게재일	2016-05-24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신광출판발(新广出发)[2016]44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⁹¹⁾ 신문출판광전국,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 정치부 홍보국, 각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 질서를 더 규범화하고 모바일게임 사업 신청의 수리와 심사승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및 관련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이 통지에서 언급한 모바일게임이란,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저들이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에서 인터랙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작품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를 운영 매체로 한다.

이 통지에서 언급한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란, 정보 통신망을 통해 대중들이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에서 인터랙션으로 이용하도록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출판 운영 서비스 행위이다.

이 통지에서 언급한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인터넷 출판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여 사업범위에 게임 출판이 포함된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체이다.

2.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는 모바일게임의 콘텐츠 심사, 출판 신청 및 게임 출판물 번호 수령 업무 등을 책임진다.

3. 정치, 군사, 민족, 종교 등 소재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스토리나 구성이 간단한 퍼즐, 파쿠르, 비행, 카드보드, 퀴즈, 스포츠, 뮤직 댄싱 등 컨셉의 레저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가)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는 <출판관리조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등 요구사항에 따라 중국음반·영상물과 디지털 출판 협회에서 작성한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을 참고하여 출판을 신청하는 모바일게임 콘텐츠를 심사하고 <중국산 모바일게임 작품 출판 신청서>(별첨)을 작성한 후, 온라인에서 출판(OBT)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예정일 최소 영업일 20일 전에 이 도표와 관련 증빙 서류의 사본(2부)을 현지의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성급 행정 출판 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받은 후, 영업일 5일 내에 다음의 업무를 마쳐야 한다. a) 신청서류의 완비성과 정확성을 심사한다. b) 요구사항에 부합되면 신청서류 1부

91)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와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의 심사 의견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서 보관한다. c)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납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의 서류를 받은 후, 영업일 1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 통지한다. 성급 행정 주무부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회답 의견을 받은 후, 영업일 3일 내에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에 통지한다.

라)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는 회답 서류를 받은 후, 회답 서류의 요구사항에 따라 게임 온라인 출판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게임을 온라인에서 출판하여 운영한 후, 영업일 7일 내에 현지의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 서면형식으로 온라인 출판 운영 시간, 다운로드 가능 주소, 운영기관 수 및 주요 운영기관의 명칭과 충전 서비스 오픈 여부 등 출판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출판 운영 예정일이 영업일 20일 이상 초과할 경우, 현지의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 서면형식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이 통지의 제3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해외 저작권자가 허가한 인터넷 게임 작품과 전자게임 출판물 신청 서류를 더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신광출판함[2014]111호)(이하 <규범 통지>라 약함)와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실명제 인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신출연[2011]10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이중에서 <규범 통지> 별첨 1에서 규정한 신청서류 중 2~6호 항목은 <중국산 모바일게임 작품 출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꾼다.

5. 해외 저작권자가 허가한 모바일게임의 출판을 신청할 경우, <규범 통지>와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실명제 인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에 따라 진행한다.

6. 이미 승인을 받아 출판한 모바일게임의 업그레이드 작품 및 확장팩(스토리, 미션 내용, 맵 형식, 캐릭터 성격, 캐릭터 특징, 인터랙션 기능 등이 확실하게 변경, 또한 부가 명칭, 즉 게임명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제목 추가 혹은 게임명 앞에 형용사 추가, 예컨대 <new xxx> 혹은 게임명 끝에 버전 변화를 알려주는 숫자 추가, 예컨대 <xx2> 등으로 광고 홍보)은 신규 작품으로 간주하고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유형 별로 관련 심사 승인 수속을 다시 이행한다.

7. 이미 승인을 받아 출판한 모바일게임의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 게임명 혹은 주요 운영기관이 변경될 경우, 관련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의 심사 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변경수속을 보고하여 진행한다.

8. 모바일 게임을 온라인에서 출판하여 운영할 때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는 게임 콘텐츠의 완전성을 책임지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게임 충고>를 한 후, 게임 저작권자, 출판서비스 업체, 승인번호, 출판물 번호 등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승인한 정보를 표시하는 전문 페이지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승인한 콘텐츠에 따라 출판 운영해야 한다.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는 게임의 일상적인 업데이트를 심사하고 기록하는 책임이 있고 불량한 내용을 무단으로 추가할 경우, 제때에 제지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제때에 현지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지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게임 출판 승인 철수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

9. 모바일게임 연합 운영업체에서 모바일게임을 연합 운영할 때 해당 모바일게임의 심사 수속이 완전한지 여부와 관련 정보를 표기했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모바일게임을 연합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10. 모든 휴대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의 생산 및 경영업체는 모바일게임을 사전에 세팅할 때 해당 모바일게임의 심사 수속이 완전한지, 관련 정보를 표기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복제한 해적판을 세팅할 수 없다.
11.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영업일 30일에 현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모바일게임의 출판 상황을 심사 감독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12. 이미 승인을 받고 외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의 신청을 접수한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에서 이 통지 제11조에 따라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외지 운영 기관 소재지의 성급 출판 행정 주무부서는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협조해야 한다.
13. 이 통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은 온라인에서 출판하여 운영할 수 없다.
14. 이 통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온라인에서 출판하여 운영한 모바일게임(사전 셋팅 모바일게임 포함)의 경우, 각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와 관련 게임업체는 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계속 온라인에서 출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이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2016년 10월 1일 전에 현지의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서에 관련 승인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심사승인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계속 출판하여 운영할 수 없다.
15. 이 통지에 따라 관련 심사승인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출판하여 운영하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 출판행정 법집행부서에서 불법 출판물로 간주하여 조사하여 처리한다.
16. 성급 출판행정 주무부서에서는 이 통지에 따라 실행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때에 업무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별첨: 중국산 모바일게임 작품 출판 신청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

2016년 5월 24일

별첨

중국산 모바일게임 작품 출판 신청서

1. 게임 출판서비스 업체 기본정보			
명칭			
주소		우편번호	
출판 허가 업무 범위	(출판허가증 사본 첨부)		
담당자 (업무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2. 게임 작품 기본현황			
게임명		게임 운영체제	☐ iOS ☐ Android ☐ 기타____ (구체적으로 기재)
저작권 증명 (사본 첨부)	☐ 저작권 등록증서 ☐ 공증서 ☐ 기타		
저작권자 증명 (사본 첨부)	☐ 저작권자 신분 증명 ☐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 기타		
게임 콘텐츠 장르	☐ 퍼즐 ☐ 파쿠르 ☐ 비행 ☐ 카드보드 ☐ 퀴즈 ☐ 스포츠 ☐ 뮤직 댄싱 ☐ 기타____ (구체적으로 기재)		
온라인 출판 운영 예정시간	년 월 일		
게임 신청 심사 승인 유형	☐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제3조 범위 ☐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에 관한 통지> 제4조 범위		
3. 게임 주요 운영기관 기본정보(복수의 경우, 1개 업체만 기재)			
명칭			
주소		우편번호	
법인대표 (주요 담당자)		기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 회사 유형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통신사업 영업허가증 번호	(통신사업 영업허가증 사본 첨부)		
담당자 (업무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19. 온라인 게임 운영 중도 및 사후 감독관리 업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

제목	文化部关于规范网络游戏运营加强事中事后监管工作的通知(文市发〔2016〕32号)
제재일	2016-12-01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문시발(文市发)[2016]32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⁹²⁾ 문화/라디오TV국, 티베트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행정법집행총대⁹³⁾: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은 온라인 문화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들의 문화 오락 생활을 다양하게하며 문화 소비를 확대하고 인도하는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급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경영 사업자의 운영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비정상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점, 사용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역량이 미비한 점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시장 질서를 더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온라인 게임 산업의 건전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온라인게임관리 잠정방법(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온라인 게임 운영 범위 명시

- (1) 온라인 게임 운영이란,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온라인 게임의 회원 가입을 오픈하거나 혹은 온라인 게임 다운로드 등 방식을 제공하여 대중들에게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게임 유저들로부터 요금을 수취하거나 전자상거래, 광고, 협찬 등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2)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회원 가입 오픈, 온라인 게임 빌링시스템 오픈, 직접 서버에 등록 로그인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 기술테스트는 온라인 게임 운영에 포함된다.
- (3)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기타 운영업체의 온라인 게임 제품에 유저 시스템, 빌링시스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홍보 프로모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게임 운영 수익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연합 운영 행동에 포함되며 관련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온라인 게임 사이버 아이템 발행 서비스 규범화

- (4)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에서 발행하고 사용자가 법정 화폐로 직접 구매하거나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구매하거나 혹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취득하고, 또한, 게임의 기타 사이버 아이템 혹은 부가가치 서비스로 전환하는 기능을 갖춘 사이버 아이템의 경우, 온라인 게임 사이버 화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5)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 게임의 버전을 변경하고 사이버 아이템의 종류를 증가하며

92)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93)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사이버 아이템의 기능과 사용기간을 조절하고 임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제때에 해당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게임 내 잘 보이는 곳에 이와 관련된 사이버 아이템의 명칭, 기능, 가격, 전환 비율, 유효기간 및 상응한 증정, 양도 혹은 거래 방식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6)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랜덤 추첨 방식으로 사이버 아이템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유저에게 법정화폐 혹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제때에 해당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랜덤 추첨 페이지에 추첨 가능하거나 합성할 수 있는 모든 사이버 아이템과 부가가치 서비스의 명칭, 성능, 내용, 수량과 추첨 혹은 합성 확률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된 랜덤 추첨 관련 정보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 (7)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게임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게임 내 잘 보이는 곳에 참여한 유저의 랜덤 추첨 결과를 발표해야 하고 관련 부서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최소 90일 저장해야 한다. 랜덤 추첨 결과를 공시할 때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8)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에서 랜덤 추첨 방식으로 사이버 아이템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저에게 기타 사이버 아이템 전환,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로 직접 구입 등 기타 동일 성능의 사이버 아이템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취득하는 방식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 (9)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유저에게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로 법정화폐 혹은 실물을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에서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종료할 때, 법정화폐 혹은 유저가 받을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 유저가 이용하지 않은 사이버 머니를 환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유저에게 사이버 아이템으로 법정화폐를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유저에게 사이버 아이템으로 소액 실물을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물 내용 및 가치는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온라인 게임 유저 권익 보호 강화

- (11)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유저가 유효한 신분증의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유저의 가입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온라인 게임 유저에게 게임의 충전 혹은 소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12)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유저가 단일 게임에서의 1회 충전 금액을 한정해야 하고 유저가 충전 혹은 소비할 때 유저에게 확인 정보를 발송해야 한다. 확인 정보에는 충전 혹은 소비한 법정화폐 혹은 사이버 머니 금액, 취득한 사이버 아이템 혹은 부가가치 서비스의 명칭 등 내용 및 적당하게 오락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유저의 충전 및 소비 등 정보 기록을 최소 180일 저장해야 한다.
- (13)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미성년자 학부모 보호 프로젝트”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가 “온라인 게임 미성년자 학부모 보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미성년자 유저 소비한도 설정, 미성년자 유저 게임 시간 한정, 미성년자 유저에게 적합하지 않는 장면과 기능 등을 차단하도록 기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
- (14)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게임 내 잘 보이는 곳에 유저 권익 보장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온라인 게임 유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혹은 온라인 게임 유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게임 유저에게 회원 가입 당시의 신원 정보와 일치한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의 진실성을 심사한 후, 온라인 게임의 유저를 협조하여 증거물을 수집해야 한다. 진실성 심사를 거쳐 실명으로 가입한 것이 확인된 유저에 대해,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는 법적으로 증거물을 수집할 책임이 있다.

- (15)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유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유저 개인 정보의 누설,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허가 없이 유저의 정보를 임의 방식으로 제3자 기업 혹은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4. 온라인 게임 운영의 사중사후 감독 관리 강화

- (16) 지역별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 기관은 온라인 문화 시장의 법집행 협력 매커니즘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해 “이중 랜덤, 한 가지 공개”의 감독 관리업무를 실행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무작위 추출조사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보 신고가 많은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에 대해 무작위 조사와 일상적인 조사 횟수를 늘려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해야 한다. 제때에 사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 (17) 지역별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신용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처벌하는 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원칙에 따라 부정당, 불법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거나 경고 대상 명단에 포함시켜 관련 부서와 함께 처벌하도록 하며 부정당, 불법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신용 구속을 강화한다.
- (18) 각급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 기관은 구역 내의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에 대한 지도, 서비스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성급 문화 행정부서는 기업체를 지도하여 정책 법규와 업무 규범 교육을 진행해야 하고 기업의 콘텐츠 자가 심사와 운영 규범 등 관련 제도의 실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온라인 게임 경영업체에 행정지도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5. 불법, 부정당 운영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처리

- (19)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의 (1), (2), (3)에서 규정한 활동에 종사하고 승인번호를 취득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을 운영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0조, 제34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온라인 게임 다운로드를 제공하거나 혹은 전자상거래, 광고, 협찬 등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 규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0)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의 (4)에서 규정한 온라인 게임 사이버 머니 발행 사업에 종사할 경우,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1)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 (5), (6), (7), (8)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1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2)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 (9)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2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3)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 (10)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0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4)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 (11)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4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5)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 (13)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1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 (26)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이 통지 (12), (14)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방법> 제35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이 통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문화부

2016년 12월 1일

20.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제목	移动游戏内容规范（2016年版）
게재일	2016-05-24
출처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버전)>의 배포에 관한 통지 음수협자(音数协字)[2016]제005호

각 회원 업체 및 관련 기업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모바일게임 출판서비스 관리업무를 잘 진행하도록 협조하기 위해, 협회는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판)>을 작성하였으며, 관련 기업체는 이 규범을 모바일게임 연구개발과 출판 운영 콘텐츠 심사의 중요한 참고 근거로 이용해야 한다.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협회의 게임출판업무위원회에 반영하길 바란다.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2016년 5월 24일

모바일게임 콘텐츠 규범(2016년 버전)

제1조 업계의 자율화를 인도하고 모바일게임 콘텐츠의 제작 사업을 강화하며 모바일게임의 출판 사업이 건전하게 번영 발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출판 관리 조례>,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등 국가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 및 <중국 음반과 디지털 출판 협회 정관>에 따라 이 규범을 작성한다.

제2조 이 규범에서 언급한 모바일게임이란, 휴대폰 등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를 운영 매체로 하여,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들에게 다운로드 혹은 온라인에서 상호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게임 작품이다.

이 규범에서 언급한 모바일게임 콘텐츠란, 모바일게임 작품에 포함된 언어 문자, 스토리 배경, 줄거리(지도), 캐릭터, 도구 장비, 음악 효과, 미션 기능, 설명, 광고 등이다.

제3조 모바일게임은 <게임 출판물에 <건강하게 게임을 하는 충고>를 게재하는 것에 관한 통지> (신출음[2003]861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게임 시작 화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건강하게 게임을 하는 충고>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

제4조 모바일게임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범용 언어 문자법>, <출판물 한자 이용 관리규정>, <출판물 문자 이용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등 규정에 따라 문자를 규범화하게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온라인에서 상호 연동하여 이용하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의 경우, 불량한 내용을 차단하도

록 불량 내용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모바일게임에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원칙 반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인민민주정치를 반대하고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 민족 구역 자치와 특별 행정구 제도, 군사제도,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복수의 정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 기본 경제제도와 분배제도 등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 모독, 폄하, 왜곡, 부정적으로 묘사
- (2)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반대하고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위상, 집권 능력과 집권 이미지를 공격, 모독, 폄하, 왜곡, 부정적으로 묘사.
- (3)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의 지도를 반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를 공격, 모독, 폄하, 왜곡, 부정적으로 묘사.

제7조 모바일게임에는 “나라의 통일, 주권과 영토와 완전성 훼손”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타이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와 다오위다오, 츠웨이위, 난하이 제도 등 중국의 임의 지역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할.
- (2) 타이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중국의 지역을 주권 나라로 표시.
- (3) “중앙연구원”, “행정원”, “총통” 등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타이완 지방 당국의 공식기관 및 직무 명칭에 따옴표를 쓰지 않음.
- (4)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타이완 지방 당국의 공식기관 로고 표시.
- (5) 침략 내용을 선양하는 경우:
 - 가. 역사사실을 왜곡하고 침략자를 미화하고 침략행위를 고의적으로 과장되게 묘사, 침략자의 역할 연출
 - 나. 해외 무장인력, 조직 혹은 개인이 중국 영토, 영공, 영수, 전속 경제구역, 대륙붕 및 저토(底土)에 침입하는 내용을 꾸며 냄
 - 다. 해외 무장인력, 조직 혹은 개인이 테러리즘, 추적 등의 명목과 핑계로 중국 영토 혹은 중국 주 해외 영사관을 공격하거나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주권을 침범하는 활동
- (6) 외국 민용 선박, 항공기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영토, 영공, 영수, 전속 경제구역, 대륙붕 및 저토에 진입하여 개발 작업을 하는 등 활동을 표현, 묘사.
- (7) 중국 영토, 영공, 영수, 전속 경제구역, 대륙붕, 저토 및 기타 나라와 분쟁이 있는 국경 및 구역의 명칭 표기 오류.
- (8) 중국 국경 지도라 주장하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날조, 유사하게 표기 혹은 기타 중국 지도라고 명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이라고 표시한 지도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인접국이 체결한 국경 조약, 협정, 의정서 및 부도에 따라 제작하지 않음.
 - 나.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인접국에서 국경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경을 표기한 지도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의 국경선 표준에 따라 제작하지 않음.
 - 다. 중국 역사적 국경이라고 표기한 지도, 1840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기간까지의

경우, 중국 역사 국경 표준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지 않음. 1840년 전의 경우, 역사적 국경에 따라 제작하지 않음.

라. 중국 지도 국경과 관련된 기타 내용의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위반.

제8조 모바일게임에는 “국가 기밀 누설, 국가 안전 훼손, 혹은 국가 명예와 이익을 훼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다음의 비밀유지 내용:

가. 중국공산당과 국가 사무의 중대한 의사결정의 기밀 사항 포함.

나. 비밀유지 지도와 내부 지도 포함.

다. 국방 건설과 무장역량의 비밀 사항 포함.

라. 외교와 해외 활동의 비밀 사항 포함.

마. 국민경제, 사회발전과 과학기술의 비밀 사항 포함.

바. 국가 안전 활동을 유지하고 형사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의 비밀유지 사항 포함.

사.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타 비밀유지 내용.

(2) 분열세력, 중국 반대 조직, 스파이 기구를 과장되게 묘사, 선양, 미화, 표창하는 내용 포함.

(3) 임의 조직, 개인이 임의 형식으로 중국 정부를 뒤엎고, 중국을 분열하고, 중국 국가 안전을 훼손하도록 선동, 교사, 격려하는 내용 포함.

(4) 중국 국기, 국가, 국가의 휘장, 당기, 당의 휘장, 군기, 군가, 군의 휘장, 천안문, 인민대회당, 만리장성, 화표 등 중국 국가, 정권, 군대와 민족의 표지물을 공격, 부정적으로 묘사, 소각, 훼손, 모욕, 모독 및 기타 장중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내용.

(5) 중국, 중국공산당, 중국 군대 역사와 걸출한 인물의 이미지를 공격, 폄하, 부정적으로 묘사, 왜곡, 날조, 의도적으로 수정하는 내용.

(6) 중국의 해외 정책, 국제준칙 입장을 위배하고 다른 나라의 정권, 민족, 정당과 지도자, 군대 등 이미지를 공격, 비방, 부정적으로 묘사, 왜곡, 훼손하는 내용.

(7) 파시즘을 선양하고 침략전쟁, 군대와 전범 이미지를 미화하고 위에서 언급한 군대 혹은 인물을 옵션 캐릭터로 정하는 등.

제9조 모바일게임에는 “민족적 원한, 민족적 차별 대우, 민족단결 훼손, 혹은 민족 풍습/습관을 침해하는 것을 선동”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민족 모순, 충돌과 분쟁 등을 날조, 과장되게 묘사, 과장하는 등.

(2) 중화민족의 이미지 예컨대 민족적 특징, 인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모욕, 부정적으로 묘사, 왜곡하는 등

(3) 중화민족의 역사, 지위, 역할, 기여와 가치를 깎아 내리고, 왜곡, 부정하는 등.

(4) 임의 민족, 임의 종교가 지배적 위치에 있고 특권이 있다는 등 선양.

(5) 민족단결, 종교의 화목, 신앙 자유 등을 훼손.

(6) 중화민족의 전통풍습, 금기 및 민족적 특징을 갖춘 상징을 비방, 훼손, 부정적으로 묘사, 모욕 하는 등.

(7) 외국 세력이 중국 민족 단결 훼손, 종교 간섭을 선양하는 등.

제10조 모바일게임에는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양”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법륜공” 등 나라를 적대시하고 정부를 반대하며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이비 종교 조직 선양.
- (2) “교주 숭배”를 선양하고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 초상을 표현, 사이비 종교의 주요 인물을 신격화.
- (3) 사이비 종교의 규율, 교의, 경서, 전적, 로고 등을 선양.
- (4) 사이비 종교 활동에 종사하도록 선양.
- (5) 사설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며 타인을 현혹, 기만, 정신적으로 통제.
- (6) 전통적인 종교 교의를 왜곡 혹은 의도적으로 수정.
- (7) 미신적인 점, 벽사 등 기능 설정.
- (8) 과학의 명목을 구실로 현실 생활의 초물리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억조, 과대, 과장되게 묘사.

제11조 모바일게임에는 “사회질서 혼란, 사회 안정 파괴”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현실의 사회생활을 게임 배경으로 하고 관련 기능 혹은 줄거리를 설정하여 사회 질서를 혼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활동 선양.
- (2) 폭력, 협박 등 수단으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저항, 방해하는 것을 선양
- (3) 특정 구역의 사람 혹은 인종을 악의적 부정적으로 묘사, 공격.
- (4) 구체적인 규칙을 표기하지 않고 랜덤 추천 등 우연한 방식을 이용하여 유저가 직간접으로 법정화폐로 게임 제품 혹은 서비스를 취득하도록 유도.

제12조 모바일게임에는 “음란, 도박, 폭력 혹은 범죄 교사를 선양”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음란, 선정적 내용 포함:
 - 가. 불륜, 강간, 윤간, 집단 음란 등 행위의 과정과 세부내용을 표현하거나 혹은 관련 기능 설정.
 - 나. 미성년자의 성행위 혹은 어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표현하거나 혹은 관련 기능 설정.
 - 다. 구체적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표현하거나 혹은 관련 기능 설정.
 - 라. 성 변태 행위 혹은 성 변태 관련 폭력, 학대, 모욕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관련 기능 설정.
 - 마. 매춘 과정과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관련 기능 설정.
 - 바. 사람 혹은 사람과 비슷한 나체와 생식기관을 구체적으로 표현.
 - 사. 동물의 생식기관을 구체적으로 표현.
 - 아. 성인용품 혹은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
 - 자. 성행위 혹은 성을 암시하는 성교를 표현하는 행위 및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
 - 차. 성 기교를 구체적으로 표현, 설명 혹은 전수.
 - 카. 성 행위와 관련된 매독, 임병, 에이즈 등 질병을 구체적으로 표현.
 - 타. 성 행위 거래, 성 심리, 성행위, 성 체험 등을 노골적인 언어로 설명.

파. 성 개방, 성 자유를 선양.

(2) 도박이 포함된 내용:

가. 도박 형식과 도박 기구의 이용방법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설명.

나. 도박 기능을 설정, 도박 서비스 제공.

다. 수취 혹은 “사이버 머니” 등 방식으로 게임의 승부와 관련된 수수료를 편법으로 수취.

라. 게임 마일리지로 승부를 배팅, 맞추기 등 기능을 설정, 유저의 회당, 1일 당 게임 마일리지 승부 수량을 미설정.

마. 게임 마일리지 거래, 전환을 제공하거나 혹은 “사이버 머니” 등 방식으로 현금화, 재물 전환 등 편법적인 서비스 제공

바. 유저 사이의 증여, 양도 등 게임 마일리지 이체 서비스 제공.

(3) 폭력, 테러, 잔혹 등 내용을 포함:

가. 불완전 인체 혹은 인체 해체 등을 생동하게 표현, 설명, 상해 과정과 피가 솟구쳐 나오고, 피물이 흐리며 바닥에 피물로 젖힌 장면을 명확하게 표현.

나. 시체 노출, 시체 해부, 시체 작살, 시체 학대 등 비정상 행위를 의도적으로 표현.

다. 대규모 살상성 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반인류무기 등 작용과 효과를 선양, 과장하고 대규모 살상의 테러 장면을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묘사.

라. 외형이 공포스러운 역할, 이미지 혹은 장면을 의도적으로 표현, 설계.

제13조 모바일게임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이 권한을 침해”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언어 혹은 제스처, 동작으로 타인을 고의적으로 비웃고 모욕.

(2) 정치인물, 공인의 이름 혹은 이름의 독음과 비슷한 단어를 악의적으로 이용.

(3) 타인의 심리, 정신적인 결함을 고의적으로 표현, 타인의 인격 존엄을 침해.

(4)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모를 당하도록 함.

(5) 타인의 초상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

(6)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간섭.

제14조 모바일게임에는 “사회 윤리 혹은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훼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사랑의 기본 윤리 요구를 위배.

(2) 싸움, 욕, 아무 곳에나 가래 뱉기 등 불결하고, 거칠며, 저속적이고 비천한 언행을 고의적으로 표현.

(3) 나라의 문물, 고적지, 정부의 사무장소, 랜드마크 등을 침범, 훼손, 파괴.

(4)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웃고 차별대우하며 모욕하는 것을 표현.

(5) 시비, 선악, 미추의 경계를 뒤섞거나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에 불리한 줄거리를 표현.

(6) 금전주의, 낭비, 부부 체인지, 불륜, 원나잇, 정부, 첩, 스폰서 등 타락하고 기생하는 생활방식을 선양.

(7)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으로 금전거래, 권력으로 성의 거래 등.

(8)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유린하고 악의적으로 증대한 역사, 문화 사건과 대표 인물의

이미지를 수정.

- (9) 중범 관념, 남존여비, 일부다처, 일처다부 등 내용을 선양.
- (10) 중화민족 우수한 문화 전통의 역사적 지위와 존재 가치를 약화, 훼손, 부정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허무화, 저속화하며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대항하는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선양.
- (11)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단결통일, 평화를 지향하고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자강불식의 위대한 민족정신을 폄하 혹은 부정.

제15조 모바일게임에는 미성년자가 사회 윤리를 위반하고 불법 범죄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을 유발하는 내용 및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 불법, 범죄를 선양하고 미성년자의 모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가. 범죄 수단, 방법,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설명하여 미성년자가 모방 범죄를 범하도록 유발 혹은 선동.
 - 나. 범죄 이미지를 미화하여 미성년자가 범죄에 쉽게 동정하거나 찬성.
 - 다. 비정당 수단으로 나라, 집단과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선양. 예: 도적 역할, 절도, 사기, 강탈 혹은 약탈 등 행위.
 - 라. 범죄자가 법의 제재에서 벗어나고 법률의 존엄을 멸시하는 것을 표현. 예를 들면 범죄 세탁 기능 설정, 횡령, 탈옥 등.
 - 마. 조직폭력배 성격의 조직과 행위를 선양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
 - 바. 악의적인 pk를 선동, 유도, 장려.
- (2) 마약, 마약 판매를 선양하고 미성년자의 모방을 유발하는 내용 포함.
 - 가. 양귀비 등 마약의 원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
 - 나. 마약을 제조, 밀수, 운송, 판매, 구입하는 것을 선양, 구체적으로 표현.
 - 다. 마약 흡입, 주사 혹은 타인이 흡입, 마약을 주사하는 방법 혹은 과정을 유인, 교사, 기만, 강박하는 것을 선양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
 - 라. 마약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능 효과를 선양, 과장.
 - 바. 마약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선양 및 구체적으로 표현.
- (3)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기타 내용 선양.
 - 가. 격조가 저속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
 - 나. 미성년자 음주, 흡연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게임에서 담배 도구 등장.
 - 다. 미성년자가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
 - 라. 미성년자 동거, 결혼 등 미성년자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격려.

제16조 모바일게임에는 국가, 법률, 법규,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

제목	未成年人节目管理规定（征求意见稿）
제재일	2018.08.24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법치화 궤도에 편입시켜 프로그램 내용을 지도하고 규범화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국가광전총국은 <규정제정절차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을 작성해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대중은 다음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정부 법제 정보망(사이트:<http://www.chinalaw.gov.cn>)에 로그인하여 첫 페이지 메인 메뉴의 ‘입법의견수렴’ 란에 들어가 의견을 제출한다.

서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우편으로 부친다. 주소는 베이징시 시청구 푸싱먼와이거리 2번지(北京市西城区复兴门外大街2号) 국가광전총국 정책법제사(政策法制司), 우편번호: 100866 팩스를 이용해 의견을 010-86093288로 보낸다.

의견 피드백 마감시간은 2018년 9월 23일이다.

국가광전총국

2018년 8월 24일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규정(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목적]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규범화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미성년자 육성을 교육인도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라디오·TV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제작, 전파활동에 종사하면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 규정이 말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를 주요 참여자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주요 시청대상인 라디오·TV 프로그램과 정보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3조 [프로그램 원칙]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제작, 전파활동에 종사하면 응당 민족부흥 대입의 시대적 새 인물 육성을 착안점으로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육성 및 실천을 근본 임무로 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전통 미덕을 승계하고 혁명 문화를 선양하며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혁신발전을 견지하며 오리지널 창작 능력을 강화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자발적으로 보호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제4조 [업무원칙] 미성년자 프로그램 관리업무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인격 존엄 보호를 중요시하며 교육과 보호를 모두 중요시하고 사회와 함께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상업화, 성인화 및 과도한 오락화 경향을 방지해야 한다.

제5조 [주무부처]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가 전국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업계 자율단속] 라디오·TV 및 정보 네트워크 시청 업종 조직은 업종 특징을 결합해 법에 따라 미성년자 프로그램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고 업계 업무교류를 촉진하며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7조 [장려 메커니즘]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정확한 가치관 견지, 적극적인 교육 강화, 현실 생활 밀착, 콘텐츠 형식 혁신, 좋은 사회적 효과 창출 등 측면에서 성과가 눈에 띄는 미성년자 프로그램 및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제작, 전파활동에서 두드러지게 공헌 한 조직, 개인을 유관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한다.

제2장 프로그램 규범

제8조 [프로그램 콘텐츠 규범] 국가는 하기 콘텐츠를 담고 있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제작, 전파를 지원, 장려한다.

- (1)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육성 및 실천
- (2) 중화 우수전통문화 선양
- (3)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인도 수립
- (4) 미성년자 심신발전 규율과 특징에 부합
- (5) 미성년자 감정을 보호하고 인문정신을 구현
- (6) 자연과 사회과학지식을 보급
- (7) 기타 국가 지원, 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내용

제9조 [프로그램 콘텐츠 규범]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아래의 콘텐츠를 포함해선 안 된다.

- (1) 폭력, 유혈, 공포의 과장된 묘사, 범죄교사 또는 범죄방법 전수
- (2) 건강, 과학적 성교육 이외의 성(性) 관련 화제, 화면. 미성년자 조기 연애 찬성
- (3) 비방, 왜곡 또는 부당한 방식으로 중화 우수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 표현
- (4) 민족역사 또는 민족역사인물 왜곡, 영웅열사 사적과 정신을 부정적으로 묘사, 모독, 부정

- (5) 과거 중국을 대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식민통지를 시행한 국가, 사건, 인물을 선양, 미화, 숭배
- (6) 이단, 미신 또는 무기력한 사상 관념 선양
- (7) 불량한 가정관, 혼인관, 이익관 선양 또는 긍정
- (8) 재산, 가정배경, 사회적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 또는 과도하게 표현
- (9) 자살, 자해 및 기타 미성년자가 모방하기 쉬운 위험행동, 게임 항목 등을 소개 또는 전시
- (10) 마약, 흥분제 등 금지 약물 사용 또는 술주정, 흡연, 약품 남용 표현
- (11) 사회 공공도덕 위반, 사회질서 교란 등 불량행위를 표현
- (12) 갱, 조직폭력배의 각종 의식을 과장되게 묘사
- (13) 각종 전자게임 홍보, 소개
- (14) 법률, 법규로 금지한 기타 내용

과학보급, 교육, 경고를 목적으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 중 상술한 내용을 확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적재적소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한 알림을 설정해야 하며 해당되는 소리, 화면에 기술적 처리를 해서 과도하게 보여지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제10조 [프로그램 유형 규범] 아래의 미성년자 프로그램 유형은 제작, 전파해선 안 된다.

- (1)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 역할을 이용해 상업홍보를 하는 비광고류 프로그램
- (2) 미성년자를 용의자, 범인 또는 피해자로 공개하는 교육, 경고류 프로그램
- (3) 미성년자가 참여한 오디션 프로그램

미성년자 토크쇼,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을 제작 전파하려면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동의와 보장] 미성년자에게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요청하려면 먼저 부모 또는 기타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협박, 기만, 매수 등의 방식으로 미성년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도록 강요, 유혹해선 안 된다.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제작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및 충분한 학습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미성년자 프로그램 제작 과정 중, 미성년자에게 질문 또는 유도해 개인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서는 관점을 요구해선 안 된다.

보도해야 하는 미성년자 위법 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사건 중 미성년자 당사자의 성명, 주소, 사진, 이미지 및 해당 미성년자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선 안 되며 피하기 어려울 때는 유효한 기술수단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제13조 [성인화와 과도한 오락화 방지] 미성년자를 초청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의상, 표현은 미성년자 연령 특징과 시대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명리, 애정 등 화제를 논의도록 유도해선 안 된다.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아역스타 효과 또는 스타 자녀 포장, 홍보를 선양해선 안 된다.

제14조 [심리보호 및 상업화 방지]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순위경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과도한 물질 보상을 설정해선 안 되며 미성년자가 현장에서 표심을 잡도록 유도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실패 퇴출되는 느낌을 질문해선 안 된다.

감정 이야기, 갈등 조정 등 유형의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가정 갈등과 관련해 미성년자를 취재해선 안 되고 미성년자에게 프로그램 녹화 및 현장 조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선 안 되며 미성년자가 직접 가정 갈등 충돌과 감정 싸움을 목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성년자의 품행, 도덕 분야의 테스트를 해선 안 되며 불량한 현상과 비이성적 정서를 증폭시켜선 안 된다.

제15조 [진행자와 패널]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법에 따라 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언행과 메이크업이 미성년자 심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 중 맡은 바 직무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패널 선정은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규정에 따라 도덕품행이 최우선 기준이며 엄격하게 선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추문, 스캔들 또는 위법,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선발해선 안 되며 일반 대중을 프로그램 패널로 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제16조 [외국 요소와 언어 문자] 중국산 오리지널 창작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줄거리 외에, 외국의 인명, 지명, 의상, 이미지, 배경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미성년자 프로그램 중의 문자설명, 자막 등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규범화 사용해야 한다.

제17조 [광고 규범] 미성년자 프로그램 전후 또는 중간에 광고 방영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미성년자 전문 채널, 주파수, 전문 존(ZONE), 링크, 웹페이지는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성형, 온라인게임 광고 및 기타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방영해선 안 되며 기타 미성년자 프로그램 전후 상술한 광고를 방영해선 안 된다.
- (2)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는 가장에게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가 불안전 행위를 모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
- (3)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광고모델로 기용해선 안 된다.
- (4) 미성년자 라디오TV 프로그램은 학교 겨울 여름 방학기간, 시간당 방송광고는 10분을 넘겨선 안 되며 기타 시기에는 시간당 12분을 넘겨선 안 된다.
- (5) 진행자 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관련 프로그램 또는 애니메이션 방영 과정 중 방영해선 안 된다.
- (6) 미성년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방영 또는 방영 잠시 중단 과정 중, 광고 삽입,

전시해선 안 되며 내용 전환 과정 중의 광고시간은 30초를 넘겨선 안 된다.

제3장 전파 규범

제18조 [인터넷 전문 ZONE과 자체제작 프로그램] 정보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전파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에 전문 존을 구축해서 미성년자 청취 및 시청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전문 방영해야 한다.

미성년자 전문채널, 주파수는 자주혁신을 견지해야 하며 자체제작 명품 프로그램을 늘려 미성년자의 청취 및 시청 니즈를 만족시켜야 한다.

미성년자 전문채널, 주파수, 인터넷영역은 미성년자가 청취 및 시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영해선 안 된다.

제19조 [방영 전 심사와 생방송 요구]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방영하는 녹화방송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유관 규정에 따라 방영 전 심사해야 한다. 생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예비 프로그램 교체 등 필요한 기술수단을 채택해 방영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에 본 규정 제9조 제1항의 금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휴식 알림]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미성년자 프로그램 방영과정 중 최소한 30분에 한번 씩 명확한 휴식 알림 정보를 설정해야 한다.

제21조 [평가 위원회]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미성년자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성년자 프로그램 평가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방영 전, 방영 중, 방영 후에 평가해야 한다. 평가의견은 프로그램 지속 방영 또는 조정되는 중요 근거로 해야 하며 유관 프로그램 심사부처는 평가의견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22조 [보호 전문요원]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보호 전문요원제도를 구축해 관련 업무경험, 교육배경을 갖춘 요원이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프로그램, 광고의 미성년자 청취 및 시청 적합 여부 관련 심사의견을 내고 미성년자 청취 및 시청에 부적합한 프로그램, 광고에 시정 요구 또는 방영 금지 제안을 해야 한다.

제23조 [제작방송기관 평가수집] 라디오·TV방영기관,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프로그램 사회평가 의견수렴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적당한 방식으로 평가한 프로그램의 개선 상황을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24조 [연도 보고]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미성년자 보호 상황을 매년 현지 인민정부 라디오·TV 주무부처에 서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업무상황, 미성년자 보호 전문요원 직무 이행상황과 사회평가 의견수렴 상황은 연도보고서의 중요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제25조 [방영시간과 비율] 미성년자 프로그램 전파는 다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1) 라디오·TV 방영기관은 법정 공휴일과 학교 여름·겨울 방학기간 매일 8:00~23:00 사이 및 법정 공휴일과 학교 여름·겨울 방학 이외 시간 매일 15:00~22:00 사이,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시청자가 청취 및 시청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기타 시간대 방영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이 미성년자의 신체 또는 심리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면 방영 전 명확한 영상 또는 소리로 알림을 해야 한다.
- (2) 미성년자 전문채널, 주파수는 매일 17:00~22:00 사이 중국산 애니메이션 또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며 드라마 및 수입 프로그램을 방영해선 안 된다. 이 시간대 우수 미성년자 영화·드라마 방영이 필요하다면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3) 미성년자 전문채널, 주파수, 인터넷영역이 매일 방영 또는 리퀘스트 제공 가능한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비율은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구

제4장 관리감독

제26조 [정부 관리감독] 라디오·TV 주무부처는 건전한 미성년자 프로그램 청취 및 시청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일상 청취 및 시청 모니터링, 특별검사, 현장표본검사 등 방식을 운용해 미성년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7조 [위법행위 경고 기록]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 위법행위 경고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고 기록에 오른 프로그램 제작기관,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를 즉각 사회에 발표하고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라디오·TV 방영기관, 정보네트워크 시청 서비스업체 연도 보고서를 임의 추출 검사해 필요시 현장 검사를 하며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관련 업체를 경고 기록에 올린다.

제28조 [신용 상실 공동 징계] 라디오·TV 프로그램 주무부처는 유관 부처와 함께 완비된 규정 위반 신용 상실 공동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해 본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제작기관, 전파기관 및 그 주요 책임자에게 공동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29조 [사회 감독] 라디오·TV 주무부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 위법 행위 신고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신고전화, 이메일 등 연락방식을 발표해야 한다.

임의 업체 또는 개인은 본 규정을 위반한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라

디오·TV 주무부처는 신고를 접수하면 기록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본 부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즉각 유관 부처에 이송해야 한다.

제30조 [협회 직무] 전국적 라디오·TV, 정보네트워크 시청 업계단체는 본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프로그램 내용 심사의 구체적인 표준을 제정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상황을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31조 [프로그램 내용, 유형 위법책임] 본 규정을 위반해 본 규정 제9조 제1항 금지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제작, 전파하거나 과학보급, 교육, 경고를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본 규정 제9조 제1항 금지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명확한 알림을 설정하지 않고 기술처리를 하지 않거나 본 규정 제10조가 금지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 유형을 제작, 전파하는 경우 <라디오·TV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프로그램 방영비율 위법책임] 본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수입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이 국무원 라디오·TV 주무부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라디오·TV관리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기타 위법책임] 본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금 이상 인민정부 라디오·TV주무부처가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유관 주무부처, 처리 권리가 있는 기관 협조 책임] 미성년자 프로그램의 제작기관, 라디오·TV방영기관, 정보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업체의 주무부처 또는 처리 권리가 있는 기관이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 또는 직접 책임자를 처벌, 처리해야 한다.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라디오·TV 주무부처는 처벌 받은 업체의 주무부처 또는 처리 권리가 있는 기관에 상황을 통보하고 책임이 있는 담당자 또는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 처리 제안을 하며 후속처벌, 처리결과를 우편 문의할 수 있다.

제35조 [법적책임 경합] 본 규정을 위반하고 동시에 기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법률, 법규가 해당 위법행위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라디오·TV 주무부처 담당자 위법책임] 라디오·TV 주무부처 담당자가 직권 남용, 직무 소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 [정의] 본 규정이 지칭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와 사설망 및 포지셔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업체를 말한다.

본 규정이 지칭하는 학교 여름·겨울 방학기간이라 함은 라디오·TV방영기관 소재지, 정보 네트워크 시청 서비스업체 등록지의 교육행정 주무부처가 규정한 시간대를 말한다.

제38조 [비(非) 미성년자 프로그램 규범] 본 규정이 지칭하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중 미성년자 이미지, 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유관 내용 규범과 법적책임은 본 규정을 참조해 집행한다.

제39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2.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예방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
게재일	2019-10-25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각 온라인게임 업체, 관련 업계조직:

최근 몇 년간 온라인게임 업종은 대중의 레저 오락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일부 주목할 만한 문제점들, 특히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과소비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 미성년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온라인게임 업체가 사회적 효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인도하여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과소비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미성년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것은 시진핑 총서기의 청소년 업무 관련 중요 지시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고 온라인게임의 번영과 건전하고 질서 정연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현재 관련 업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온라인게임 이용자 계정의 실명 회원가입 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반드시 유효한 신원정보를 사용해야만 게임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 본 통지 시행일부터 온라인게임 업체는 이용자 실명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명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신규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본 통지 시행일부터 2개월 안에 온라인게임 업체는 반드시 기존 이용자 전부에 대해 실명 회원가입을 완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실명 회원가입을 완성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게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가 제공한 실명 회원가입 정보를 온라인게임 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적절히 보관, 보호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자사의 게임 서비스에 대해 1시간 이내의 방문자 체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방문자 체험 모드에서 이용자는 실명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요금 충전과 유료 소비를 할 수 없다. 같은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체는 15일 안에 방문자 체험 모드를 중복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대, 시간을 엄격히 통제한다. 매일 22시에서 다음날 8시까지 온라인게임 업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성년자를 위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게임 업체가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는 매일 누적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기타 시간은 매일 누적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규범화한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민사행위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만 8세 이하의 이용자에게 게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같은 온라인게임 업체가 제공하는 게임 유료 서비스의 경우, 만 8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이용

자는 매번 충전금액이 5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매달 충전금액이 누계로 2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이용자는 매번 충전금액이 1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매달 충전금액이 누계로 4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업계 관리감독을 확실히 강화한다. 본 통지에서 앞서 서술한 각 요구사항은 모두 온라인게임의 인터넷 출판 운영의 필요조건이다. 각 지역의 출판관리부처는 해당 지역의 관리감독 직책을 확실히 이행하고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 온라인게임 업체 및 그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각 지역의 출판관리부처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각 지역의 출판관리부처는 관련 법 집행 기관이 관리감독 법 집행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조율한다.
5. 적령 제시 제도를 탐구 실시한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게임 내용과 기능의 심리적 수용도, 대항 치열도, 인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방 수준, 유료 소비 수준 등 다각도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인터넷 출판 운영의 온라인게임에 대해 연령대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제시 메시지를 탐구하고 이를 이용자의 다운로드,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 등 위치에 뚜렷하게 명시해야 한다. 관련 업계조직은 적령 제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표준과 규범을 탐구하고 온라인게임 업체가 적령 제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미성년자가 과몰입하게 되는 원인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과몰입을 초래한 게임 내용, 기능 또는 규칙을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6. 학부모, 학교 등 사회각계의 역량들이 미성년자 보호책임을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온라인게임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미성년자를 도와 정확한 온라인게임 소비 관념과 행위 습관을 수립하도록 적극 인도한다.
7. 본 통지에서 칭하는 미성년자는 만 18세 이하의 공민을 가리키며 온라인게임 업체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23. 게임·오락 설비 관리방법

제목	游戏游艺设备管理办法
제재일	2019-11-06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제1장 총칙

제1조 게임·오락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오락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며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날로 늘어나는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락장소 관리조례(娱乐场所管理条例)》, 《오락장소 관리방법(娱乐场所管理办法)》,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복제가능 개혁시험 경험을 보급하는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게임·오락 설비는 게임·오락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전자, 기계 조작 설비를 가리킨다.

제3조 게임·오락 설비의 모델 기종은 비디오게임 설비(콘솔)와 오락 설비로 나뉜다.

비디오게임 설비(콘솔)는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과 콘텐츠 통합 방식으로 주로 오락장소 또는 기타 경영장소에 게임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임 내용, 방식 등 면에서 미성년자의 독립적 또는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대전 격투형 게임·오락 설비 등과 같은 전용 설비를 가리킨다. 오락 설비는 비디오게임 설비(콘솔) 이외의 기타 게임·오락 설비를 가리킨다.

국가의 법정 공휴일 이외 오락장소 및 기타 경영장소에 설치된 비디오게임 설비(콘솔)는 미성년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기업이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의 가치 내포를 충분히 발굴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적극 선양하며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민족정신을 보여주며 건강하고 진취적인 콘텐츠를 포함하고 운동 체험, 기능 훈련, 지능계발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기능을 갖춘 게임·오락 설비를 연구개발 생산하도록 독려한다.

제5조 국내 시장을 상대로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게임·오락 설비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 (1) 《오락장소 관리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을 포함한 경우
- (2)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경우
- (3)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 상황

제6조 게임·오락 설비는 아래와 같이 도박을 선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1) 포인트 배팅, 포인트 환불, 코인 환불, 스틸 볼 환불 등의 기능을 갖고 있거나 변칙적으로 갖고 있을 경우
- (2) 낚시게임기 등 배당률을 설정하여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피하는 경우
- (3) 슬롯머신, 룰렛, 배팅게임기 등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
- (4) 기타 도박을 선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제7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수입, 판매, 경영하는 게임·오락 설비의 외관 표시, 게임 내용, 조작 설명 등은 국가에서 통용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8조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게임·오락 설비 관리 정책을 제정하고 감독 실시한다.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본 관할지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게임·오락 설비에 대한 콘텐츠 심사와 모델 기종 분류를 담당한다. 지방 현급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본 관할지역의 게임·오락 설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9조 성급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실제에 결부하여 게임·오락 설비 심사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게임·오락 설비 콘텐츠의 심사, 모델 기종 분류 등을 위한 자문, 감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자문, 감정 등의 서비스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콘텐츠 심사

제10조 국내시장을 상대로 생산한 게임·오락 설비의 생산 기업은 소재지의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콘텐츠 심사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심사 신청서
- (2)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게임·오락 설비에 내장된 음악·동영상 파일(전체 배경음악, 노래 및 그 명칭 리스트와 가사의 전자 텍스트), 외국어에 관련될 경우 중국어와 해당 외국어의 대조 텍스트 별도로 제공
- (4) 게임·오락 설비 콘텐츠 소개, 조작 설명 텍스트(상 반환 방식 등 포함), 백그라운드 관리 조작 설명 텍스트 및 완전한 게임 과정을 보여주는 조작 시연 동영상
- (5) 게임·오락 설비의 전체 외관을 반영할 수 있는 이미지와 설명(정면, 좌우 측면, 콘솔, 동전 투입구, 백그라운드 제어화면 등 최소 각 1장의 이미지와 해당되는 설명, 이미지는 “JPG” 파일, 해상도는 최소 1280×720화소)
- (6) 게임·오락 설비 및 그 콘텐츠의 관련 지식재산권 서류(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증명서, 특허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않음) 또는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증명.

제11조 국내 시장을 상대로 수입 게임·오락 설비를 판매하기 전, 수입 업체는 해당 소재지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콘텐츠 심사 신청을 제기해야 하고 본 방법의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신청 자료와 해당 게임·오락 설비를 수입하는 독점적 권한 위임 경영 협약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즉석에서 또는 근무일 5일 안에 신청자에게 보충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될 경우, 즉석에서 접수하고 신청 접수일부터 근무일 20일 안(전문가 심사, 상급 부처 재점검, 이의 처리, 공시 등의 시간 포함하지 않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신청 접수일부터 근무일 5일 안에 콘텐츠 심사 및 모델 기종 분류의 1차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설비 제공을 요청하여 실물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확실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묻거나 문화관광부에 재점검을 의뢰할 수도 있다.

제14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1차 심사에 통과된 게임·오락 설비의 기본정보, 이의접수방식 등을 산하의 정부 포털사이트에 대중을 상대로 7일간 공시해야 한다. 기본정보는 생산기업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 통합사회신용코드, 소재지, 게임·오락 설비의 명칭, 모델 타입, 조작 설명, 외관 이미지, 모델 기종, 생산지 또는 수입지, 지식재산권 서류 또는 성명 등을 포함한다.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이든 공시된 게임·오락 설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기간 안에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이의 신청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조사 확인을 해야 하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 1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15조 공시기간 만료에도 이의가 없거나 확인을 거쳐 이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신청자에게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승인서를 제때에 발행하고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승인서를 취득한 후 게임·오락 설비의 생산기업, 수입업체는 국내 시장을 상대로 해당 게임·오락 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상업 홍보를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전시되는 게임·오락 설비는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승인서를 취득해야 한다.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는 전국 문화시장 기술 감독 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에서 자동 생성하며 내용은 게임·오락 설비의 기본정보 및 심사기관 명칭, 승인번호, 승인시간과 감독 전화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의 표준은 문화관광부에서 일괄 제정한다.

제16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콘텐츠 승인서를 발행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안에 게임·오락 설비의 기본 정보 및 승인 번호 등을 정부 포털사이트에 대중을 상대로 발표해야 한다.

제17조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또는 모델 기종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아래 상황 중

의 하나가 있을 경우, 기존 심사기관에 콘텐츠 심사 신청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 (1) 업그레이드 또는 개편 등으로 인해 콘텐츠에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 (2) 게임 아이템을 추가한 경우
- (3) 주요 기능 버튼을 변경한 경우
- (4) 외관에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 (5) 기타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오락장소 또는 기타 경영장소를 상대로 게임·오락 설비를 판매하기 전, 생산기업 또는 수입업체는 게임·오락 설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를 붙이고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서 확정한 모델 기종의 유형에 따라 ‘오락 설비’ 또는 ‘비디오게임 설비(콘솔)(국가 법정 공휴일 이외 미성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제3장 감독 관리

제19조 문화관광부는 중국문화오락산업협회에서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자체심사 규범을 제정하도록 지도한다.

게임·오락 설비 생산기업과 수입업체는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자체심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전담 콘텐츠 심사 담당자를 배치하여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자체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기타 경영장소에 게임·오락 설비를 설치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게임·오락 설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영자의 실명, 연락처 등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경영 전에 장소 소재지 현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등록 신고 시 게임·오락 설비의 기본 정보, 수량, 설치 주소 및 구체적인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고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차 등록 신고해야 한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이미 게임·오락 설비를 설치한 경우, 본 방법 시행일부터 60일 안에 등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21조 오락장소 또는 기타 경영장소는 안전 생산에 관련된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을 지켜야 한다.

게임·오락 설비를 이용해 경품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출처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건강하며 안전하고 해롭지 않은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가짜를 진짜로 속이고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속여서는 안 되며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상품 목록 등 관련 정보는 소재지 현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2조 게임·오락 설비가 확률적 방식으로 실물 보상을 제공할 경우, 경영자는 게임·오락 설비

정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확률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23조 오락장소 및 기타 경영장소는 법에 따라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를 취득한 게임·오락 설비를 경영해야 하며 《오락장소 관리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을 포함하거나 문화관광 행정부처의 콘텐츠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실질적 콘텐츠를 변경한 게임·오락 설비를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법에 따라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승인서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게임·오락 설비의 생산 기업 또는 수입 업체 및 그 주요 책임자를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또는 중점 주목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신용 공동 징계를 내려야 한다.

- (1) 게임·오락 설비의 진실을 숨긴 경우
- (2)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 (3) 증명 서류를 위조한 경우
-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25조 문화관광 행정부처의 실무자가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률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사중(事中) 사후(事后) 관리감독 과정에서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서 심사 통과시킨 게임·오락 설비에 콘텐츠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해당 부처에 콘텐츠 승인서를 취소시킬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4장 법적책임

제26조 본 방법의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장소에 설치된 비디오게임 설비(콘솔)가 국가 법정 공휴일 이외에 미성년자에게 제공된 경우, 현금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오락장소 관리조례》제48조 제(4)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게임·오락 설비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제20조,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경영자를 중점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점 주목 리스트 또는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 본 방법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장소가 상품 목록을 소재지 현금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등록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오락장소 관리방법》제3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게임·오락 설비의 경영자에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29조 본 방법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장소가 《오락장소 관리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금지내용을 포함한 게임·오락 설비를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오락장소 관리조례》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게임·오락 설비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기타 경영장소가 문화관광 행정부처의 콘텐츠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실질적 콘텐츠를 변경한 게임·오락 설비를 이용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현금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오락장소 관리방법》제3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게임·오락 설비의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0조 대형 놀이기구 및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게임·오락 설비의 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1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기타 경영장소는 별도의 보호구조가 없는 장소에 소비자가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게임·오락 설비를 설치한 분산형 경영장소를 가리킨다.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실제로 결부하여 어린이 놀이 오락장소, 가상현실 놀이 오락장소, 전문경영 ‘인형 뽑기 기계’ 등의 선물형 놀이 오락장소의 발전에 적합한 사용 면적과 소비자 일인당 점유 사용 면적의 최저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현금 이상 지방 문화관광 행정부처를 지도하여 본 방법의 시행 전 또는 시행 과도기 안에 오락장소 또는 기타 경영장소에 설치한, 아직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를 붙이지 않은 게임·오락 설비에 대해 표시 분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붙인 표시는 게임·오락 설비의 명칭, 모델 기종, 감독 전화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본 방법의 시행 전 또는 시행 과도기 안에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를 아직 발급하지 않았으며 아직 국내를 상대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결부하여 생산 기업 또는 수입업체에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33조 시행 과도기가 지난 후 각 지역은 전국 문화시장 기술 감독 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게임·오락 설비의 콘텐츠 심사, ‘게임·오락 설비 전자 표시’의 발급 및 기타 경영장소의 게임·오락 설비 경영 등록 신고 등의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외자기업의 게임·오락 설비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데 관한 문화부의 통지(文化部关于允许内外资企业从事游戏游艺设备生产和销售的通知)》(문시한〔2015〕57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시행 과도기는 본 방법의 시행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이다. 본 방법 시행 후 문화관광부는 더 이상 게임·오락 설비 정보를 일괄 발표하지 않는다.

24.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제목	网络游戏适龄提示
게재일	2020-12-16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중국음향디지털출판협회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발표

12월 16일 오전, 2020년 중국 게임산업 연차총회 미성년자 보호 서브포럼 및 미성년 보호생태 공동건설 발표회에서 중국음향·디지털 출판협회 제1 부 이사장 겸 게임공정위원회 장이권(張毅君) 주임위원은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단체 기준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단체 기준은 국가신문출판서 지도로, 중국음향디지털출판협회 게임 공정위원회 조직이 협조하고, 텐센트 연합·왕이(網易)·인민망(人民網) 등 53개 기업체가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 기준은 시행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개념 제시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취지를 살리고, 가장 광범위하고 절실한 여론에 호응함으로써 게임업계의 규범화·건전화 추진에 지속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준 시행문은 적령 안내 식별부호를 규정하여 녹색은 8세 이상(8+), 파란색은 12세 이상(12+), 노란색은 16세 이상(16+) 등 나이별로 세 가지 색상으로 표시한다. 식별부호의 다운로드 경로, 전시 시간, 크기 비율, 업데이트 빈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표시 사용과 안내표시 용어를 약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비한다. 적정 연령 안내표시는 게임물 인터페이스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고 게임 제품의 가시성을 강조해야 한다.

<게임 적정 연령 안내>

국가신문출판서의 지도 하에 중국 음향·디지털출판협회 게임공정위원회 조직 관련 연구기관, 미디어, 게임업체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게임 적정 연령 안내' 단체 표준을 제작해 12월 16일 정식 시행본을 발표했다. 적정 연령 안내 단체 표준은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의 요구사항과 국가신문출판사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서>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표준이 반포됨에 따라 중국음향·디지털협회는 게임 기업은 단체 표준의 요구에 따라 적령 안내 응용작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01. 적정 연령 안내란?

연령대별 미성년자의 성장 특성에 따라 게임 작품의 유형, 콘텐츠, 기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적합한 미성년자 연령대를 제시하고 게임 작품 관련 인터페이스에 이를 명확히 건의한다.

02. 적정 연령 안내를 왜 사용해야 할까요?

적정 연령 안내는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의 기본 요구사항을 따랐으며, 미성년 사용자와 학부모

모에 대한 체계적 지도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적정 연령 안내는 보호자와 사회 대중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게임업계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준다.

03. 적정 연령 안내는 등급제를 말하는 건인가요?

적정 연령 안내는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해외 게임업계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인 등급제를 채용하는데, 특히 성인 그룹에 '18세 이상(18+)'의 성인·폭력·범죄 등의 내용을 제한하는 상세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적정 연령 안내란 우리나라의 엄격하고 규범적인 콘텐츠 심사의 보완조치로, 게임 콘텐츠 심사 기준이 아니다. 모든 게임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접촉이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학부모와 사회 각계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25. 게임 심사 평점 세칙

제목	游戏审查评分细则
게재일	2021-03-15
출처	중앙선전부 출판국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게임 심사 평점 세칙

가. 총체적 요구

게임 평가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게임업체는 게임심사에 엄중히 임하도록 하고 게임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게임 작품의 정치적 지향, 가치 지향, 문화적 내실을 더욱 중시한다. 중앙선전부 출판국은 2명 이상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게임물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임 품질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심사 비준 작업에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참고 근거를 제공하며, 사전 심사 비준의 “풍향계”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업계의 질적 발전을 촉진한다.

나. 기본 원칙

1. ‘콘셉트 지향’, ‘오리지널 디자인’, ‘제작 품질’, ‘문화 콘텐츠’, ‘개발 정도’ 등 5개 부문에서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총점을 도출한다.
2. 총점과 항목별 배점 범위는 0~5점, 5점이 최고점, 0점이 최저점, 3점 합격점, 어느 한 항목에서나 0점이 나온 게임은 ‘1표 부결(一票否决)’한다.
3. 항목별 점수를 계산한 후 총점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 방법은 5개 항목의 점수 평균을 산출하고 심사 작업 중 이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로 조정하는데 변동 범위는 0.5점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게임의 각 항목 평균이 3.2점이라면, 전체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판단될 시 3.5점, 그렇지 않을 시 3점이다.)
4. 게임마다 최종 심사가 끝나면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점수를 매긴다. 점수를 매길 때는 주로 게임의 최종 버전에 근거하지만, 게임의 초기 버전과 수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게임 초기 버전에서 내용이 너무 거칠거나 오류가 빈발하고, 수정 과정에서 태도가 진지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참작하여 점수를 줄여야 한다.

다. 채점 근거

1. “컨셉지향” : 주로 게임 주제, 플레이어 역할, 주요 게임 플레이어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지, 미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올바른 역사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따져본다. 게임은 명백한 정치 지향과 가치 지향의 편차가 없는 경우, 기초가 격조있고,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면

3점을 준다. 올바른 가치관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전달하면 참작해서 가산점을 준다. 방향성에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경우 0점을 주고 '1표 부결'한다.

2. ‘오리지널 디자인’ : 동종 게임과 비교하여 플레이하는 방법에 새로운 점이 있는지, 미술 디자인, 예술적 스타일, 세계관 구성 등에서 합리적인 혁신이 있는지 등을 주로 고려한다.

‘오리지널 디자인’ 기준은 3점으로 나뉘는데, 같은 장르의 게임에 비해 창의적인 디자인에서 중간 수준의 점수를 받은 뒤, 앞서 열거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심사 중 게임에 플레이어의 충전을 명백히 유도하고 주류 가치관과 배치되는 플레이 설계가 존재하거나, 표절 의혹이 있는 내용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감점해야 하며, 명확한 표절 행위가 발견되면 0점을 받아 한 표로 부결시켜야 한다.

3. “제작 품질” : 게임 장면, 캐릭터 설정, 극본 등의 제작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지, 과학, 역사적 사실, 합리적인 상상에 기초하여 진지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본 게임의 특성과 스타일에 부합하는지,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주로 따져본다.

“제작 품질” 기준은 3점으로 나뉘는데, 같은 장르의 게임에 비해 제작품질면에서 중간 수준이면 점수를 받고, 앞에서 열거한 기준을 참작하여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한다.

4. “문화적 함의” : 게임이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하고 드높일 수 있는지, 플레이어에게 정확하고 과학 문화 지식을 전파하고 과학 정신을 선도하는지, 플레이어의 두뇌를 쓰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는지, 플레이어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유익한 사고와 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지 등을 주로 고려한다.

“문화적 함의” 기준은 3점으로 구분하여 위 열거한 기준에 따라 참작하여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할 수 있으며, 심사 중 게임에 국가·민족·종교의 역사·문화 지식을 부당하게 선전하고 언어 문자사용이 규범에 맞지 않아 지적·상식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감점한다.

5. “개발 완성도” : 게임 캐릭터가 합리적이고 충분한지, 게임 이야기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게임의 기능 플레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지, 게임 운영이 안정적인지 등 게임의 완성도를 주로 고려한다.

‘개발 완성도’ 기준은 3점으로 나뉘는데 위 열거한 기준 따라 적절히 점수를 가감한다. 심사 중 게임사가 제기된 각종 문제를 삭제하거나 게임 기능, 캐릭터 장면 등이 분명 완전히 개방된 것이 아닌데 게임사는 이미 ‘전부 개방’을 약속한 것이 발견되면 참작하여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라. 결과 운용

전문가 채점 결과, 게임을 승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몇 명의 전문가가 모두 2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게임은 반려하고 해당 상황을 설명한 후 주의하도록 한다. 3점 이상이면 승인할 수 있고, 동등한

조건에서 4점 이상 게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채점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유지하고,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항목별 점수를 충분한 근거를 통대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비밀 유지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6.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시행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严格管理切实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
게재일	2021-08-30
출처	국가신문출판서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각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업계 조직:

한동안 미성년자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심지어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 학습과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각 방면에서 특히 많은 학부모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조치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요구사항을 통지한다.

- 1)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모든 온라인게임 업체는 금, 토, 일, 법정공휴일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미성년자에게 1시간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엔 어떠한 형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 2) 온라인게임 사용자 계정 실명 등록 및 로그인 요구를 엄격히 시행한다. 모든 온라인게임은 국가신문출판서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실명검증시스템에 접속하고 모든 온라인 게임 사용자는 반드시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정보를 사용해 게임 계정을 등록하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야 하며 온라인게임업체는 어떠한 형식(방문객 체험모드 포함)으로도 실명 미등록 및 로그인 사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 3) 각급 출판관리부서는 온라인게임업체의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 시간대 길이, 실명등록과 로그인, 유료화 등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엄격히 시행하지 않은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 4) 가정, 학교 등 사회 각 방면에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보호 직책을 수행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진실한 신분검증을 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미성년자의 양호한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을 유도해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방지한다.
- 5) 본 통지가 말하는 미성년자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말하며 온라인 게임업체라 함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본 통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서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업무에 관한 통지>(국신출발[2019]34호) 관련 규정과 본 통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신문출판서

2021년 8월 30일

27.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预防中小学生沉迷网络游戏管理工作的通知
제재일	2021-10-29
출처	교육부, 중앙선전부 등 6개 부처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교기청합[2021]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당위선전부, 인터넷정보판공실, 통신관리국, 공안청(국), 시장감독관리국(청, 위원회), 신장생산건설병단⁹⁴⁾의 교육국, 당위선전부,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국, 시장감독관리국: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등 법률, 법규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을 성실히 실행하고, 초중고생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초중고생의 건강한 성장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초중고생의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 관리 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1. 건전하고 깨끗한 콘텐츠를 보장한다.** 각 지역 출판 관리 부서는 온라인 게임 업체가 사상이 바르고 내용이 깊이 있으며, 종류가 다양하면서도 교육적 기능을 띤 온라인 게임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해 건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콘텐츠를 보장하도록 한다. 내용 심의를 강화하도록 온라인 게임 업체를 독려해 관련 법률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한다. 온라인 게임 내에 초중고생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 행위나 사회 공공도덕에 어긋나는 행위 및 위법한 범죄행위 또는 테러나 폭력, 저속한 포르노, 봉건적 미신 등 초중고생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철저히 근절한다. 온라인 게임 업체가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상품을 분류해 적정 연령을 표시하고, 초중고생이 부적절한 게임 또는 게임 기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게임 사전 심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승인받지 않은 게임은 운영할 수 없게 한다.
- 2. 중독방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온라인게임 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과 〈국가신문출판서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 시행에 관한 통지(国家新闻出版署关于进一步严格管理切实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국신출발[2021]14호) 규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이용자 계정의 실명 등록과 로그인 요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제출한 모든 실명 등록 정보는 반드시 국가신문출판서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미성년 이용자로 확인되면 반드시 통합된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관리 하에 들어가야 한다. 온라인 게임 업체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의 20~21시에 초중고생에게 1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초중고생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94) 병단(兵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3. **교내 교육 관리를 엄격히 한다.** 각 지역의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가 신청을 거쳐 교내에 반입된 휴대전화 등 단말기 제품을 일괄 관리하고, 교실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설비에는 미성년자 보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 보호 기술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이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저지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 학교는 각종 문화 체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학생들이 취미를 배양하고 인터넷의 해로운 유혹을 자발적으로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소양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에 관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 초중고생의 바른 인식과 과학적 대처, 합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유도한다.
4.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촉진한다.** 지역의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정교육 지도 업무를 진행해 학부모가 온라인 게임 중독의 위해성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이끌어, 가정과 학교의 협력 교육 체제를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가 감독 및 보호의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자녀들의 본보기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들의 일상 학습과 생활을 잘 계획해, 자녀들이 집안일이나 야외 활동, 체력 단련 등을 많이 하게 만들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도록 독려한다. 학교와 학부모 측은 학생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거나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서로에게 알리고 함께 교육과 계도를 진행하여 불량한 행위를 적시에 교정하고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5. **감독과 관리 및 문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각 지역의 출판 관리 부서와 인터넷정보판공실, 통신관리국,公安국, 시장관리감독국 등의 부서에서는 온라인 게임 업체의 중간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게임운영 중 중독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법, 불량 데이터를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정보판공실, 시장 관리 감독 부서는 초중고생용 온라인 교육 인터넷 플랫폼 및 제품에 불량한 온라인 게임 데이터가 게시되어 있거나, 온라인 게임 링크 또는 온라인 게임 광고가 등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벌 및 폐쇄 조치한다. 각 지역의 출판 관리 부서는 관련 조직이나 개인을 독려해 실명 등록 요구나 시간제한, 게임 머니 충전 제한 등을 따르지 않거나 불량한 콘텐츠를 올린 온라인 게임 업체와 플랫폼을 신고하게 한다. 교육 감독 부서는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 업무를 지방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 직책 평가와 책임 독학⁹⁵⁾의 일상적인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감독 결과를 지역 교육 업무 및 학교 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부판공청 중앙선전부판공청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비서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판공청 시장감독관리국판공청

2021년 10월 20일

95) 책임 독학(责任督学): 관련 법률에 의거해 시(市)나 현(縣) 정부의 위탁을 받아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를 감독 및 점검, 지도하는 직책으로 별도의 자격증이 있음

28.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게임 라이브방송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视听节目平台游戏直播管理的通知
게재일	2022-04-15
출처	국가광전총국, 중앙선전부
분류	중국 게임관리 정책

왕합[2022] 27호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 후베이성 신문출판국, 광파전시국:

한동안 무질서한 온라인 생방송과 청소년의 게임 중독 등의 문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온라인 생방송, 온라인 게임 등에 관한 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불법 게임을 퍼뜨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웹 드라마, 웹 예능, 온라인 생방송, 쇼트클립 등 각종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을 생중계할 수 없으며, 생방송 등의 형식을 통해 각종 플랫폼의 불법 게임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없다.

2. 게임 생방송 콘텐츠의 방송 관리를 강화한다.

각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특히 게임 생방송 플랫폼은 콘텐츠 제공부터 마케팅 및 상호 교류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온라인 게임 생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게임 생방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게시, 댓글 리뷰, 비상 대응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프로그램과 여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

3. 게임 생방송 진행자의 행동 규범과 지도를 강화한다.

각 플랫폼은 진행자와 이용자 간의 교양있는 상호 작용, 이성적인 표현,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문명화되고 건강한 온라인 시청각 생태계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온라인 생방송 진행자는 건전한 취향과 품격을 견지하고, 저속하고 속물적이며 저급한 문화를 배제하고, 인기 지상주의나 기형적인 심미관, 무질서한 팬덤, 배금주의 등의 부정적 현상에 반대하며 온라인 문화를 훼손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윤리와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4. 부도덕한 사람이 생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은 진행자와 게스트의 선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정치적 소양, 도덕적인 품행, 예술적 수준과 사회적 평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부도덕하고 비(非) 모범적인 사람은 출연을 금지한다.

5.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은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다.

각 게임 생방송 플랫폼 또는 게임 생방송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중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청소년 모드’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실명제 요구를 시행하고 미성년자의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후원⁹⁶⁾을 금지하며, 미성년자의 후원 반환을 위한 특별 처리 루트를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한다.

6. 게임 생방송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게임 생방송 프로그램의 등록, 방송, 게시는 생방송 프로그램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광전행정 관리부서에 보고해서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시청각 플랫폼(관련 플랫폼에 개설된 각종 내·외국인 및 기관의 계정 포함됨)이 외국의 게임 프로그램이나 경기를 생방송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성(省)의 해당 국(局)은 관할 구역 내 주요 온라인 시청각 플랫폼과 관련 게임 기업을 감독하고, 뚜렷이 나타나는 문제점에 집중하여 관리 조치를 개선하며 공동 관리를 강화해, 관련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국가광파전시총국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관리사 중공중앙선전부출판국

2022년 4월 12일

96) 후원(打赏): 온라인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게시자에게 보상으로 선물이나 현금을 주는 것을 지칭함. 우리나라에서는 별풍선을 쏜다거나 콘텐츠를 구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됨

□ 음악/공연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1997.06.27	1997.08.01	문화부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외국과 상업성 공연 진행 시 반드시 문화부 및 현지 문화국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함
2	2005.09.01	2008.07.22	국무원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중국측 보유주식 51% 이상의 조건 혹은 중국측이 주도적 위치에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합자 또는 합작 방식으로 공연경영기구 설립이 가능함
3	2014.12.15	2014.12.15	문화부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해외 영업성 공연은 심사 승인을 받아야함
4	2014.03.31	2014.03.31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등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척	외자 공연기관의 주식비율 제한 폐지, 외국 개인투자 공연기관 설립 허가
5	2015.07.08	2015.07.08	국가판권국	인터넷 음악 플랫폼 음악작품 불법 전송 금지 명령 통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인가받지 않은 음악 작품 전파 금지
9	2015.10.23	2015.10.23	문화부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업무 강화 및 개진에 관한 통지	인터넷 음악 내용의 심사 주체, 사중사후 관리 방법, 책임의식 강화
6	2015.11.17	2015.11.17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1. 음악 기업의 해외 고급 음악 인재, 특색 음악 프로젝트 및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입 지원 2. 음악기업과 '일대일로'국가와의 협력 추진 3. 국내 및 해외 유명 음악회사, 유지선의 음악산업기지 입주에 조건 창조
7	2016.07.01	2016.07.01	문화부	온라인 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 공연자, 경영자의 책임, 콘텐츠에 대해 모니터링 방법, 처벌 방법을 설명
8	2016.12.02	2017.01.01	문화부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온라인 공연 콘텐츠에 관한 규정 및 관리방법
10	2019.12.05	2019.12.05	문화관광부	공연시장 관리강화 관련 문화관광부의 통지(의견수렴안)	상업 공연의 콘텐츠 심사, 티켓판매, 공연시장 관리에 관한 규범 의견수렴안
11	2020.09.14	2020.09.14	문화관광부	‘시장기능 강화·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와 공연시장 변형에 관한 통지	순회공연 신청비준의 간소화, 외국인 투자 정책, 공연시장 소비 촉진, 새로운 업태 발전 규범화, 공연 소재 심의 강화, 주체의 책임 이행 감독 등에 대한 규정
12	2020.11.23	2020.11.23	국가광전총국	온라인 라이브공연 및 라이브커머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 라이브공연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실, 진행자, 심사위원 수의 보고, 보상 통제 등의 관리 메커니즘 정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규제
13	2021.07.26	2021.10.01	문화관광부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 임시시행규정	오락시설 노래 신청 시스템 플레이의 곡목, 스크린 화면 등에 대한 규정으로, 콘텐츠 공급업체에 대한 규제 및 자체 심사 진행을 요구
14	2021.08.30	2021.08.30	문화관광부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 관리방법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의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공연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며, 온라인 공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
15	2021.09.29	2021.09.29	문화관광부	공연 매니지먼트 규범화와 연예인 관리 강화, 공연시장 질서 확립 발전에 관한 통지	공연 자격 관리, 연예인 행위 규범화, 공연 활동 감독 관리 강화, 이성적인 팬덤 문화 정착, 건전한 공연 생태계 구축에 관한 규정
16	2021.12.24	2022.03.01	문화여유부	공연 기획자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중국 내 공연기획자의 자격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규정으로 공연 기획자는 반드시 공연기획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됨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7	2022-12-21		중국공연산업 협회	토크쇼 공연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의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코미디 시장의 발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콘텐츠의 독창성 보호, 공 연 허가심사 기준 확립, 코미디 인재양성, 공연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됨
18	2023-01-16	2023-02-16	문화여유부	홍콩, 마카오, 대만의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국무원이 발표한 방역 조치 완화 관련 문건에 근거해 각 지 역 문화여유행정부서가 2월 16일부터 홍콩·마카오·대만의 상업성 공연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재개하나, 중국 현지 이미 체류 중인 인원을 제외한 국외 상업성 공연에 대한 신 규 승인은 보류한다는 내용임
19	2023-03-16	2023-03-20	문화여유부	국외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공연시장 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각 지역 문화여유행정부서 가 3월 20일부터 국외 상업성 공연의 접수 및 심사를 재개 한다는 내용
20	2023-04-16		문화여유부	공연시장 관리규범 및 질서 강화에 관한 통지	중국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로 침체했던 공연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양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공연시장 접근 시스템의 엄격한 구현, 공연 활동의 승인 및 관리강화, 지속적인 공연장 관리 감독, 대규모 공 연 활동 현장 감독 강화 등 총 7가지 요구사항 제시
21	2023-09-13		문화여유부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의 규범관리 강화를 통한 공연시장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최근 상업성 공연이 다시 대규모로 개최되면서 발생하고 있 는 양표거래, 비이성적 팬 활동, 비애너 공연관람 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임

■ 음악/공연

1.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제목	涉外文化艺术表演及展览管理规定
게재일	1997-06-27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화부 해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리규정

(1997년 6월 27일 문화부 령 제11호 발표, 1997년 8월 1일 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해외 문화 예술 공연 활동은 중국과 외국 간에 펼쳐지는 각종 음악, 무용, 연극, 희곡, 설창 문예, 곡예, 서커스, 동물 공연, 마술, 나무 인형, 그림자극, 민간 문예 공연, 패션 공연, 무술 및 기공 공연 등 교류활동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해외 문화 예술 전시활동은 중국과 외국 간에 펼쳐지는 각종 미술, 공예 미술, 촬영(사진), 서예 비첩, 전각, 고대 및 전통 복장, 예술 소장품 및 테마 문화 예술 전시 등 교류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적용된다.

- (1) 중국과 외국 정부간의 문화 협정과 협력 문서에서 확정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 (2) 중국과 외국간 민간 채널을 통한 비상업적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 (3) 중국과 외국간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 (4) 문화교류 범위에 속하는 기타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제4조 문화재 전람 해외 교류 활동 관련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5조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은 반드시 국가 외교 업무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전반을 따라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중국 전역의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집중 관리와 거시적인 조절·통제를 책임지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국가급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계획을 총괄 배치하고 시행한다.
- (2) 중국 전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단체의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업무를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다.

- (3)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입안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 (4)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 민간 단체의 개인이 사적인 채널을 통해 출국하여 진행하는 문화 예술 공연 또는 전시활동의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 (5)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 민간 단체 및 소속 기구 해외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조직자의 자격을 검증한다.
- (6) 중국 전역에서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경영기구의 자격을 심사 및 검증한다.
- (7)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기구 및 활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 (8) 중대한 영향을 끼친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중에서 발생한 위법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 (9) 문화부에서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은 해당 지역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주무부처이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계획을 총괄 배치하고 조직 실시한다.
- (2) 해당 지역의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을 조율하고 균형을 잡는다.
- (3) 해당 지역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전시(전시판매)활동 경영 기구 자격 검정의 1차 심사, 인가신청, 실행 등 사항을 책임진다.
- (4) 문화부 승인을 받은 해당 지역 해외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20일 이내의 연장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 (5) 해당 지역의 개인이 사적인 채널을 통해 출국하여 진행하는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의 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 (6) 해당 지역 해외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조직자의 자격을 검정한다.
- (7) 해당 지역 경영장소에서 중국 방문 외국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고 검정한다.
- (8) 해당 지역의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기구의 활동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 (9) 상급 지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해당 지역의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중 발생한 위법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 (10)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제8조 승인을 받은 제7조 제(4)항, 제(5)항과 제(7)항의 항목은 모두 문화부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2장 조직자의 자격 검정

제9조 문화부는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자에 대해 자격검정제도를 실행한다.

제10조 다음의 부서와 기구는 해외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추었다.

- (1) 문화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및 해당 문화청(국)
- (2) 문화부에서 검정한 해외 문화 교류 임무를 갖고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단체
- (3)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이 검정한 해당 지역에서 해외 문화 교류 임무를 갖고 있는 부서와 단체
- (4) 문화부가 검정한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자격을 갖춘 경영기구
- (5)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검정한 중국 방문 외국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영장소(중국 방문 프로젝트에만 제한)

제11조 문화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은 본 규정에 따라 해외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입안 신청을 접수함과 동시에 신청기관의 업무와 임무 성격, 업무 조직력에 따라 해당 자격 검정을 진행한다.

제12조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을 신청하는 경영기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문화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의 검정을 받은 해외 문화 교류 업무와 역량이 있어야 한다.
- (2) 독립적인 법인 자격과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 (3) 해외 문화 활동에 필요한 알맞는 자금, 설비 및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 (4)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에 알맞는 전문관리인력과 조직력이 있어야 한다.
- (5) 완전한 외환재무관리제도와 전문직 재무 회계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한다.

제13조 중국 방문 외국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 신청의 경영장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본 규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조건
- (2) 공연 또는 전시에 적합한 고정된 영업장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 (3)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안전, 소방 및 위생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경영기구와 경영장소의 자격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본 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춘 경영기구 또는 경영장소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또는 해외 문화 교류 임무가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에 신청을 제출한다.
- (2) 경영기구의 자격 검정은 해당 소재지 문화청(문화국), 소속 관계가 있는 중앙 또는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통과된 후 유효 증명서를 발급받아 문화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 (3) 경영장소의 자격 검정은 해당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취급한다.

- (4) 경영기구는 신청시 영업허가증, 신용증명서, 자산사용증명서, 전문인력 경력증명서와 재무제도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5) 경영장소는 신청시 상기 자료 외에 문화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관련 허가증과公安부서에서 발급한 《안전허가증(安全合格證)》을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 (6) 문화부 및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은 신청을 받은 당일부터 승인 기간 안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합격자에게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경영활동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5조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영기구와 경영장소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검증제도를 실행한다.

자격검정부서는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영업체에 대해 해당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의 경영자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 시킬수 있다.

제3장 파견 및 도입 프로젝트의 내용

제16조 다음과 같은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의 해외 진출을 권장한다.

- (1)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내용
- (2) 중국의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
- (3) 현재 중국의 문화 예술 수준을 구현하는 내용
- (4)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는 내용
- (5) 중국과 세계 각국 국민 간의 우정을 촉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제17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을 금지한다.

- (1) 국가이익과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
- (2) 정부의 해외 방침과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
- (3) 중국의 민족 단결과 국가 통일에 불리한 내용
- (4) 봉건 미신과 우매한 풍속을 선양하는 내용
- (5) 공연에서 국격,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예술적으로 거칠고 저속하고 저급한 내용
- (6) 출국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종교적 신앙과 풍속 습관에 위배되는 내용
- (7) 중국과 기타 국가 간의 관계를 손상 시킬수 있는 내용
- (8)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8조 다음과 같은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중국 방문을 권장한다.

- (1) 우수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내용
- (2) 내용상 건강하고 예술적으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내용
- (3) 전통 문명, 민족 민간의 내용
- (4) 대중적 예술 감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 (5) 중국과 기타 국가간의 우정을 촉진 하는 내용

제19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

- (1) 중국의 국가제도와 정책을 반대하고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모독하는 내용
- (2) 중국의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
- (3) 중국의 민족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통일을 방해하는 내용
- (4)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내용
- (5) 사상이 진부하고 퇴폐적이며 표현방식이 저속하고 광란적인 내용
- (6) 미신, 선정, 폭력, 공표, 마약 복용을 선양하는 내용
- (7) 관중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는 내용
- (8) 중국의 사회적 도덕규범에 위배되는 내용
- (9) 중국과 기타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에 영향줄 수 있는 내용
- (10)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0조 문화부는 세계에서 유행하고 예술적 표현 수법이 독특하지만 중국의 민족 풍습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비교적 큰 사회적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예술 작품의 도입에 대해 규제를 한다. 해당 예술 작품은 공개적인 공연 또는 전시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중국 국내 전문가들의 참고 또는 전학용으로 제공 할 수 있다.

제4장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

제21조 프로젝트 인가신청 절차

- (1) 프로젝트 주최자(프로모터)는 행정소속 관계에 따라 해당 소재지 해외 문화 교류 임무를 갖고 있는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등 주무부처에 입안 신청을 제출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2) 상기 주무부처에서 프로젝트 신청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합격이라고 인정 할 경우, 이를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중국과 외국 정부간의 문화 협정과 협력 문서에서 확정된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프로젝트는 문화부에서 해당 임무 통지서를 하달하며 각 지방, 각 업체는 이를 성실히 구체화시켜야 한다.

제23조 중국과 외국이 민간 채널을 통해 펼치는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활동은 문화부에서 임부를 확정 짓고, 이를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 통보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해외 문화 교류 자격을 갖춘 기구에서 규정 절차를 통해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24조 중국과 외국이 진행하는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은 반드시 문화행정부서의 검정을 받은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해외 경영 자격을 갖춘 기구, 장소 또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소재지 문화청(국), 소속관계가 있는 중앙 또는 국가기관 각 부(部) 위원회, 해방군 계통과 전국적인 민간 단체를 통해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외국측과 정식 계약서를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를 문화부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한다.

제25조 해외 비(非) 상업적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신청 보고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최자(프로모터) 또는 개인의 명칭 및 배경 자료
- (2) 행사 단체 조직의 명칭, 인원 구성 및 명단 등
- (3) 행사 내용, 시간, 장소, 회차, 비용 출처 및 비용 지급 방식
- (4) 전체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 전시품 사진 및 문자 설명 등
- (5) 출국 프로젝트일 경우, 본 조 (2), (3) 항 내용을 포함한 외국측의 초청장 또는 양측이 가계약한 의향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6조 해외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프로젝트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1) 중국측이 외국측 에이전시의 신용 상황을 확인 한 후, 해당 측과 가체결한 의향서
의향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행사의 조직기관 또는 개인의 국가, 명칭 및 소재지
 2. 행사의 내용, 시간, 장소 및 단체 조직 참여 인원 구성
 3. 공연 또는 전시 회차
 4. 왕복 국제 여행비, 운송비, 보험료, 현지 숙식 교통비, 의료비, 공연 및 전시 대관료, 인건비, 홍보비와 생활잡비의 부담 책임
 5. 가격, 개런티, 지급 방식 및 수익 배분 방법
 6. 위약 배상 등 조항
- (2) 해외 상업적 및 유료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활동 자격 증명서
- (3) 해외 협력측의 관련 배경자료, 신용증명서 등
- (4) 전체 프로그램 녹화 테이프, 전시품 사진 및 문자 설명 등
- (5) 프로그램 또는 작품 내용에 대한 문화행정부서의 감정 의견서(세계 명극과 명작은 제외)
- (6) 예술 단체 또는 전시단체의 출국 프로젝트를 신청 할 경우, 중개기관과 관련 예술단체, 전시박물관 또는 기타 부서 간의 협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 중국과 외국의 자매 성, 주, 시 간의 비(非) 상업적 문화 예술 공연(곡예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 및 전시 교류 프로젝트는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에서 동급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이를 문화부에 등록 신고한다.

제28조 중국과 외국의 자매 성, 주, 시 간의 상업적 및 유료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곡예 출국 공연과 자매 성, 주, 시를 넘어선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프로젝트는 반드시 본 규정의 절차에 따라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곡예단이 판다를 데리고 출국 공연 할 경우, 반드시 문화부와 외교부 및 임업부를 거쳐

국무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타 희귀 동물을 데리고 출국 또는 중국으로 와서 전시 공연 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 검역과 수출입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1조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 및 지역과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승인 절차에 따라 문화부와 외교부를 거쳐 국무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뛰어넘는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을 조직할 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의 동의 서한을 첨부해야 하며, 이를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는 반드시 프로젝트 실행 2개월 전 문화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5장 활동의 관리

제34조 어떠한 기구 또는 개인 모두 허가 없이 해외에 약속을 하거나 또는 외국측과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전시 판매) 활동 관련 정식 계약서를 체결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신청 기관은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의 주최자 또는 프로모터여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서류의 판매 또는 양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36조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단체조직을 파견 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해외로 출국하는 예술 공연 및 전시 단체 조직은 반드시 전문인력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외국에 있는 기간 반드시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의 기율을 엄격히 해야 한다.
- (3)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4)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차 해외로 출국하는 기회를 이용해 관광 또는 번칙 관광을 하는 행위, 승인을 받지 않은 상업 활동을 경영하는 행위, 국격과 인격을 손상시키는 활동에 참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37조 용역 수출 수입의 명의로, 또는 관광, 친척 방문과 친구 방문 등 채널을 통해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를 하는 해외 교류 활동을 금지한다.

제38조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의 프로모터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정부 문화행정부서, 세관, 공상, 재정, 세무, 물가,公安, 위생, 검역, 회계 감사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관리,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주최자가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거나 또는 정식 계약서를 체결 할 시, 이미 승인을 받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행사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30일 전에 별도의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중의 하나가 발생 할 경우,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에서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문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시키는 등 처벌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허가 없이,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단체 조직을 파견 또는 초청할 경우
- (2) 허가 없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연장할 경우
- (3) 허가 없이, 외국측과 공연 및 전시 계약서를 체결 또는 경영성격의 활동을 진행 할 경우
- (4) 프로젝트 승인 서류를 전매할 경우
- (5) 프로젝트 신청 과정에서 허위 날조할 경우
- (6) 국격과 인격을 해치는 공연 또는 전시 활동을 할 경우
- (7) 악영향을 끼치거나 외교 사건을 일으킬 경우

상기 규정한 처벌 상황은 동시 처벌 가능하다.

제41조 제40조 상황이 발생한 부서 또는 지역에 대해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서는 상황에 따라 통보하여 견책하거나 해외 문화 활동을 일시 정지 시키는 등 처벌을 가할수 있다.

제42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와 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손실 배상 명령을 내리고 당사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주무부처는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 업무 과정에서 직무 유기, 부정행위, 직권을 남용한 직원에 대해 상황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적인 지도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4조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계약서 분쟁의 해결은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45조 국경 지대 성, 자치구와 인접 국가의 국경 지역 간의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교류 활동은 문화부 관련 관리 방법에 따라 실행된다.

제46조 해외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관련 재무관리는 문화부, 재정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제47조 문화부에서 이전에 발표한 관련 규정 중에서 본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제48조 본 규정은 문화부에서 해석한다.

제49조 본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목	关于修改《营业性演出管理条例》的决定(第528号)
제재일	2005-09-01, 2008-07-22, 2013-07-18, 2016-02-06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음악/공연정책

(2005년 7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令) 제439호로 발표, 2008년 7월 22일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수정에 관한 국무원의결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28호)》에 따라 1차 수정, 2013년 7월 18일 《일부 행정 법규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2016년 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 령 제666호 《일부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3차 수정)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영업성 공연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문예사업의 번영과 국민들의 문화생활의 수요 만족,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촉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의 영업성 공연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기활동을 말한다.

제3조 영업성 공연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사회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모두 실현하여 인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제4조 정부는 문예공연단체, 연기자들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통일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구현하며 인민대중의 환영을 받는 우수한 작품을 창작·공연하는 것을 장려하고, 농촌과 광공업 기업을 위한 공연 및 유소년을 위한 무료 또는 우대 가 공연을 격려한다.

제5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전국의 영업성 공연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公安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영업성 공연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영업성 공연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公安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자체 직무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영업성 공연에 대한 관리감독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영업성 공연 경영주체의 설립

제6조 문예공연 단체가 영업성 공연 활동에 종사하려면 해당 업무에 걸맞은 전문 배우와 기자재

설비가 있어야 하고 현금 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공연에이전시가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3명 이상의 전문 공연중개인과 업무에 합당한 자금이 있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업체에게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교부하고 기각된 기업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7조 영업성 공연장소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소방, 위생관리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업체는 영업허가증 수령 후 20일 내에 현지 현금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 문예공연단체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영업성 공연 경영업체의 업무범위가 변경될 경우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 영업성 공연 허가증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업체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최초 등록 신고 기관에 다시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제9조 영업성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출연자(이하 개인 출연자)와 영업성 공연의 중개, 대리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연출매니저(이하 개인 연출매니저)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 출연자, 개인 연출매니저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금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법에 따라 중외합자, 중외합작 경영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있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 문예공연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외자경영 공연에이전시나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중외합자경영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 시 중국 투자자 투자 비율이 51%를 하회해서는 아니 되고 중외합작경영의 공연에이전시나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 시 중국 투자자가 경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경영의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 시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경영의 공연에이전시가 영업성 공연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중외합자, 중외합작 경영의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공연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를 거쳐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에 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의 심사의견을 보고 받은 후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한 경우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각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는 중국 본토에서 합자, 합작, 독자 경영의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에이전시는 중국본토에서 지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합자, 합작 경영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있되 중국 본토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1%를 상회해야 하며, 본토 투자자들이 경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합자, 합작, 독자 경영 문예공연단체와 독자 경영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본 조 규정에 따라 설립 된 공연에이전시가 영업성 공연경영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설립 된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공연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한 경우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각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 조 규정에 따라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경우, 중국의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도 지켜야 한다.

제3장 영업성 공연 규범

제12조 문예공연단체, 개인 출연자는 스스로 영업성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영업성 합동공연에 참가할 수도 있다.

영업성 합동공연은 공연에이전시가 개최해야 한다. 단 공연장소 경영업체는 본 업체가 경영하는 장소 내에서 영업성 합동공연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공연에이전시는 영업성 공연 중개, 대리, 브로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개인 공연매니저는 영업성 공연의 중개, 대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3조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장소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본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며 서면으로 통지해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공연에이전시 외에 기타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 모두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단체나 개인이 참가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예공연단체가 스스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할 경우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단체나 개인을 초청할 수 있다.

외국이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단체 또는 개인이 참가한 영업성 공연 개최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개최하는 영업성 공연에 알맞은 자금
- (2) 2년 이상의 영업성 공연 개최 경력
- (3) 영업성 공연 개최 전 2년 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음

제15조 해외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 개최 업체는 공연장소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문예공연단체나 개인이 참석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 개최 업체는 공연장소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하고, 대만지역의 문예공연단체나 개인이 참석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개최 업체는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 심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영업성 공연 개최 신청 시 제출 자료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연명칭, 공연 개최 업체와 공연 참석 문예공연 단체 및 출연자
- (2) 공연시간, 장소, 횟수
- (3) 프로그램 내용 및 시청 자료

영업성 합동공연 개최 시 문예공연단체와 출연자의 공연 참석에 동의한다는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성 공연 신청 자료 변경 시 본 조례 제14조와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7조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공연장소를 제공할 때 공연 개최업체의 허가증을 검증해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영업성 공연에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공연장소 경영업체는 공연장소 건축, 시설이 국가 안전기준과 소방 안전 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소방법전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즉시에 유지보수 및 갱신해야 한다.

공연장소 경영업체는 안전보장 방법과 소화, 응급피난 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공연 개최업체가 공연장소에서 영업성 공연 개최 시 공연장소 경영업체의 소방법전 시설 검사 기록과 안전 방법, 소화 및 응급피난 대비책에 대해 검사하고 공연장소경영업체와 공연활동 중 돌발 안전 사건의 방비 및 처리 등 사항과 관련하여 안전책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 공공장소에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할 경우 공연 개최업체는 관련 안전, 소방 법률 및 행정 법규와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밟고 안전 방법과 소화, 응급피난 대비책을 제정해야 한다. 공연장소에 비상방송,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출입구를 명확히 표시하며 안전출입구가 잘 소통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임시로 무대 또는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 공연 개최 업체는 국가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 무대, 관람석을 설치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임시 무대, 관람석을 설치한 영업성 공연 심사 시 문화주관부서는 공연개최 업체의 다음 문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 (1) 법에 근거하여 검수 후 취득한 공연장소 허가증
- (2) 안전 방법과 소화, 응급피난 대비방법
- (3) 법에 따라 취득한 안전, 소방 승인 문서

제21조 공연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관객 수는公安부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公安부서가 관중구역과 완충구역을 구분하며 완충구역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연 개최업체는公安부서가 승인한 관중수와 지정된 관중구역에 따라 입장권을 작성 및 판매해야 한다. 검표 시 공연장소에 입장하는 관광객 수가 승인 수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대기하는 관중이 있을 경우 검표를 즉시 중단함과 아울러 공연장소 소재 현급 이상 인민정부公安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중이 관중석 이외의 입장권 또는 위조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장을 거절함과 동시에 공연장소 소재 현급 이상 인민정부公安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전염병병원체 보유자 또는 폭발성, 이연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물질이나 총기, 탄약, 규제 기구 소지자의 영업성 공연장소 입장을 거절한다.

공연장소 경영업체는公安부서의 요구에 따라 안전 검사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성 공연장소에 진입하는 관중에 대해 필요한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중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상술한 금지 행위가 있을 경우 공연장소 경영업체는 그의 입장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23조 공연 개최업체는 영업성 공연의 안전, 소방 조치에 대해 검사하고 영업성 공연장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공연 개최업체와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영업성 공연장소의 질서가 어지러운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공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公安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공연 개최업체는 정부 또는 정부부서의 명의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영업성 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의 문구가 찍혀있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잘못 전달하거나 관중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것
- (2) 국가통일, 주권, 영토완정 및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며 국가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것
- (3) 민족증오 선동, 민족차별, 민족풍속습관 침해 또는 민족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단결 방해, 종교정책에 위반되는 것
- (4) 사회질서 교란 및 사회 안정 방해
- (5) 사회도덕 또는 민족 문화 전통에 해를 입히는 것
- (6) 음란, 포르노, 사교, 미신 또는 폭력을 선전하는 것
- (7)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 (8) 공연방식이 공표를 자아내고 잔인하며 참혹하여 출연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것
- (9) 장애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관중들을 동원하는 것
- (10)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6조 공연장소 경영업체, 공연개최업체는 영업성 공연에 본 조 제26조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제지함과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公安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영업성 공연에 참석하는 문예공연단체, 주요 출연자 또는 주요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공연개최업체는 즉시 관중에게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중은 입장권을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

공연 과정 중 불가항력 요인 외에 공연 개최업체는 공연을 중지할 수 없으며 출연자는 공연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출연자는 립싱크로 관중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공연개최업체 또한 출연자가 립싱크하도록 조직해서도 안 된다.

공연개최업체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공연 진행 과정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립싱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29조 영업성 공연 경영업체는 영업성 공연의 경영수입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연개최업체는 출연자의 출연 보수 지급 시 법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0조 자선모금공연 수입은 필요한 비용 지출 외에 모두 기부를 받는 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연개최업체와 문예공연단체 또는 출연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영업성 공연 허가증, 승인문서 또는 영업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여, 매매해서는 안되며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위조, 변조 또는 위조·변조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전매해서도 아니 된다.

제4장 관리감독

제32조 문화주관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특색과 국가수준을 반영하는 공연을 보조하는 것 외에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부서는 영업성 공연에 후원, 협찬 또는 변칙적으로 후원, 협찬해서는 안되며 공금으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이 소비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문화주관부서는 영업성 공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해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석한 영업성 공연과 임시 무대 설치 영업성 공연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타 영업성 공연에 대해 현장 발췌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문화 법률집행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의무 감독원을 초빙하여 영업성 공연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 방식으로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고전화를 공개하고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사회 의무 감독원의 보고 또는 대중의 신고를 받은 후 기록하고 즉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7일 내에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기여를 한 사회의무감독원을 표창하고 대중이 신고한 경우 확인 후 신고인을 장려해야 한다.

제35조 문화주관부서는 영업성 공연 경영주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신용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된 신용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처벌 정보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

제36조公安부서는 유관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영업성 공연에 대해 공연 개최 전 공연 현장의 안전상황에 대해 현장 조사하고, 잠재 안전 위협에 대해 위

험을 제거한 후 영업성 공연을 개최 하도록 해야 한다.

공안부서는 영업성 공연장소 입장 관중에 대해 필요한 안전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본 조례 제23조 1항의 금지 행위가 발견될 경우 안전 위험을 제거한 후 입장하도록 해야 한다.

공안부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공연개최업체를 협조해 영업성 공연 현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제37조 공안부서는 관객 수가 승인수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대기하는 관중이 있다는 보고 또는 공연질서가 혼란스럽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38조 현장 관리 검사 업무를 맡은 공안부서와 문화주관부서 인원은 영업성 공연 장소 출입 시 당직근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문화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영업성 공연에 대해 감독 및 검사 시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감독검사자 사인 후 보관해야 한다. 대중은 감독검사 기록에 대해 열람할 권한이 있다.

제40조 문화주관부서, 공안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근무인원은 공연개최업체, 공연장소 경영업체에 공연 입장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국무원 문화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농촌과 광공업 기업에 대한 공연, 유소년에 대한 무료·우대 공연에서 표현이 뛰어난 문예공연단체, 출연자에 대해 표창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 선전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주관부서는 농촌과 광공업 기업에 적합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자 허가를 받은 후 문예공연단체 또는 출연자에게 농촌이나 광공업 기업 공연 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문화주관부서는 문예상 수상자 선정 시 응모자의 농촌이나 광공업 기업 공연 횟수에 대해 적당히 평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촌, 광공업 기업 공연 문예공연단체와 출연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제42조 공연산업협회는 장정에 따라 산업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회원들의 경영 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3조 다음 각 호 중 한가지를 만족할 경우 현금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단속하고 공연 기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본 조례 제6조, 제10조,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할 경우
- (2) 본 조례 제12조,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범위 외 경영성 공연활동에 종사할 경우
- (3) 본 조례 제8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성 공연 경영 항목을 변경하고 최초 허가증 발급 기관에 영업성 공연허가증 갱신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8조,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무단 설립하거나 영업성 공연경영활동에 무단 종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단속하고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본 조례 제14조,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거치지 않고 경영성 공연을 개최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공연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가 심각할 경우 최초 증서 발행기관에서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소한다.

본 조례 제1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 공연 개최 업체, 공연 참가 문예단체, 출연자 출연 프로그램이 변경됐지만 상급기관에 승인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술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공연 명칭, 시간, 장소, 공연횟수 변경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처분을 내리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성 공연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현금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45조 본 조례 제32조 규정 위반 즉 영업성 공연허가증, 승인 문서 또는 영업허가증을 위조, 변조, 임대, 대여, 매매 또는 불법으로 영업성 공연허가증이나 승인문서를 취득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영업성 공연허가증,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영업성 공연이 본 조례 제26조의 금지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

부서가 공연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가 심각할 경우 최초 증서 발행기관에서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관리조례를 위반했을 경우公安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연장소 경영업체, 공연개최업체가 영업성 공연 중 본 조례 제26조 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발견하여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인민정부 주관부서,公安부서가 법적권한에 따라 경고를 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公安부서가 법적 권한에 따라 경고하고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다음 각호의 경우 공연개최업체, 문예공연단체, 연출자에 대해 국무원 문화주관부문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공연개최업체, 문예공연단체는 2년 내에 재차 공표될 경우 발행기관에서 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하며, 개인출연자가 2년내 재차 공표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 (1) 불가항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공연을 중단하거나 공연 중 퇴장할 경우
- (2) 문예공연단체, 주요 출연자 또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됐지만 즉시 관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 (3) 립싱크 하여 관중을 기만할 경우
- (4) 출연자 립싱크를 위해 조건을 제공할 경우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발생할 경우 관중은 퇴장 후 관련 소비자권익 보호 법률 규정에 따라 공연 개최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공연개최업체는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문예공연단체, 출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거나 영업성 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 문구가 찍혀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잘못 시정을 거부하거나 결과가 심각할 경우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서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소한다.

영업성 공연 광고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관중을 기만 또는 기타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표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9조 공연개최업체 또는 그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자선모금공연 수입을

착복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반환 및 기부금 접수기관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문화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각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사회적으로 관련 행위위반자의 명칭과 성명을 공표하며 최종 증서 발급 기관이 공연 개최업체의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예공연단체 또는 출연자가 자선모금 공연 수입을 착복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기부금 접수기관에 위법소득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50조 본 조례 제9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변경되었지만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 영업성 공연허가증 갱신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례 제8조 8항, 제9조 2항, 제10조 2항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하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다음 각호의 경우公安부서나公安소방기관은 법적 권한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본 조례 안전, 소방관리규정 위반
- (2) 영업성 공연 입장권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 영업성 공연 입장권 전매

공연개최업체가公安부서가 승인한 관중수와 관중 좌석 이외의 입장권을 인쇄제작 및 판매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각자 직권에 따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최초 증서 발급기관에서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공연장소 경영업체, 개인 공연매니저, 개인 출연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경과가 심각할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각자 직무에 따라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한다. 이 중 공연장소 경영업체 경영범위에 기타 경영업무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등기를 변경하도록 하며 기한을 넘겨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주관부서가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해 영업허가증 취소 또는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처벌을 받은 날부터 당사자가 기관일 경우 관련 법인대표, 주요책임자는 5년 내에 문예공연단체, 공연에이전

시 또는 공연장소 경영업체의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직분을 맡을 수 없고, 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 출연자는 1년 내에 영업성 공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인 출연매니저는 5년 내에 영업성 공연 중개 및 대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영업성 공연에 본 조례 제26조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문화주관부서에 의해 영업성공연허가증이 취소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해 영업허가증 취소되거나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차 영업성 공연 또는 영업성 공연 대리, 중개, 매니저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본 조례 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2년 내에 2차례 행정 처벌을 받고 또 본 조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제54조 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부서가 법률을 위반하여 공연을 후원, 협찬 또는 변칙적으로 후원, 협찬하거나 공금으로 영업성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이 소비하였을 경우 관련 재정 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하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한다.
기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통보하여 비판한다.
직접 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중과실 기록을 남기고 정황에 따라 직급강등 또는 해직, 제명 처벌을 한다.

제55조 문화주관부서,公安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사로운 이익 추구 또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56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민간예술인의 공연활동에 대하여 본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본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1997년 8월 11일 국무원이 발표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는 폐지된다.

3.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开展涉外营业性演出审批公示工作的通知
게재일	2014-12-15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화부관공청(辦公廳)에서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공시 업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판시함(辦市函)[2014]544호

《국무원 일부 행정 심사 및 승인 항목의 취소 및 이양 등 사항 관련 결의(国务院关于取消和下放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국무원 발표[2013]19호)에 따라, 문화부는 2013년 6월 《문화부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 항목의 취소 및 이양 업무 관련 통지(文化部关于做好取消和下放营业性演出审批项目工作的通知)》(문시(文市)발표[2013]27호)(아래는 《통지》로 약칭)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성 외국문예공연 단체, 개인 비(非)가무오락장소 중국 방문공연의 심사 및 승인을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公安部, 문화부에서 공동으로 공표한 《외국인이 중국에서 단기 업무를 수행과 관련된 업무처리 프로세스(시행)(外国人入境完成短期工作任务的相关办理程序(试行) >》(인사부(人社部)[2014]78호)에 따라 문화행정부서에서 외국단체의 중국 공연을 심사 및 승인하는 동시에, 입국하여 단기(90일내) 영업성 공연을 하는 외국문예공연단체, 개인에게 단기근무증명서 발행을 요구했다.

권한 이양,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간 심사 및 승인정보의 공유, 문화 행정부서 행정 심사, 승인, 공시 직무의 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항》에 따라 문화부에서 외국단체의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시방식

문화부 포털사이트에 문화부 해외 영업성 공연의 심사 및 승인 정보 관련 전문 공시 시스템을 이용한다.

나. 공시사항

1.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 사항의 설립 근거, 심사 및 승인의 조건 및 프로세스
2. 문화행정부서에서 승인한 해외 영업성 공연의 항목. 예컨대 해외 영업성 공연을 승인하는 문서의 번호, 승인제목, 공연명칭, 공연주최업체, 공연장소, 공연날짜, 승인시간, 심사 및 승인 감독 전화 등이 포함

다. 정보 수집의 공시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의 정보를 수집, 보고,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2014년 12월 20일까지 문화부 문화시장사(文化市場司)에 제출해야 한다.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하기 내용을 포함 및 한정하지 않는다.

1. 심사 및 승인 항목의 기본 정보

승인문서의 번호, 승인 제목, 승인 시간: 공연주최업체, 공연명칭, 공연날짜, 주요 공연 단체/개인의 국가(지역), 공연 프로 명칭, 공연지, 공연 장소, 공연 횟수, 공연형식, 공연 책임자/담당자(이름, 연락처, 공연중개직원 자격증번호)

2. 공연 참여자 주요정보

이름, 성별, 출생 날짜, 국가 (지역), 입국 증명서류 유형, 입국 증명서류 번호, 입국증명 유효기한, 단기 근무증명서 번호, 근무날짜, 근무기한

라. 정보 보고의 공시

1. 보고 시스템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문화부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보고하고 공시한다. 문화부 포털 사이트(www.mcprc.gov.cn) 온라인 근무 칼럼 중의 “문화부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 정보 공시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http://114.255.59.60:8080/credit/admin.jsp>를 입력해 공시화면 및 등록화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정보공시담당자의 등록계좌번호는 시스템을 통해 개통한다. 전국문화시장기술 감독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토대로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진행하는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 심사 및 승인 정보를 공시시스템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2. 보고 및 공시 시한.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심사 및 승인 완료 후 5일내 문화부에 보고하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심사 승인 완료 시간은 공연날짜까지 5일 미만의 시간이 남는 경우, 공연 전 즉시 보고, 공시해야 한다.

2014년도 심사 및 승인한 해외 영업성 공연의 정보, 보고내용은 본 통지 제2조 ‘공시 사항’ 제2항에 포함된 정보이다. 2015년의 공시정보에는 심사 및 승인 항목의 기본정보 및 공연 참여자 주요정보를 명문화시켜야 한다.

마. 공시 정보 사용

1. 문화행정부서에서 심사 및 승인한 해외 영업성 공연활동은 공연주최기관, 문예공연단체 및 개인, 공연내용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공연활동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공연지를 추가할 시, 사전등록관리를 실시한다. 등록업체는 전국 문화시장기술 감독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에서 직접 관련정보를 조사해 중복사항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공시한 정보의 진실성, 즉시성에 대해 책임진다. 부정확한 공시 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공시정보가 부정확한 증거가 있을 시, 문화행정부서에 수정 요청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3. 공시 시스템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公安부의 외국인 입국관리정보베이스와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한다.

해외 영업성 공연 심사 및 승인 정보의 통일 공시 업무는 2015년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각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서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공시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관련 준비업무를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4.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제목	关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的通知 (2014) 18号
게재일	2014-03-31
출처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상하이시 공상국, 상하이시 품질기술감독국, 상하이해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등 5개 부서가 제정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공표에 관한 통지

각 구, 현 인민정부, 시정부 각 위원회, 판공실, 국:

시 문화방송영상물관리국, 시 공상국, 시 품질기술감독국, 상하이 해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은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공표하니 성실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상하이시인민정부 판공청

2014년 4월 10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개방프로젝트 실시세칙

《국무원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国务院关于印发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국발〔2013〕38호), 《국무원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 임시조정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 규정한 행정심의 또는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内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和国务院文件规定的行政审批或者准入特别管理措施的决定)》(국발〔2013〕51호)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문화부 통지(文化部关于实施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管理政策的通知)》(문시발〔2013〕47호)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중국 게임정책 15번 547페이지 참조

5. 인터넷 음악 플랫폼 음악작품 불법 전송 금지 명령 통지

제목	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
게재일	2015-07-08
출처	국가판권국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인터넷 음악 플랫폼 음악작품 불법 전송 금지 명령 통지

각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

음악 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 전파 음악 작품 판권의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정보 인터넷 전파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및 <저작권 행정처벌 시행방법(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등 관련 규정 및 ‘검망 2015(剑网2015)⁹⁷⁾’ 특별 행동 관련 업무의 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2015년 7월부터 중국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음악 판권 규범화를 위한 특별 정돈 관리 행동을 개시하여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판권에 대한 집법감독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양호한 온라인 음악 판권질서와 운영 생태가 구축되도록 추진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가 인가받지 않은 음악 작품을 전파하는 상황이 심각한데 비추어 각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들이 수권 받지 않은 음악작품의 전파를 즉각 정지하고 2015년 7월 31일 전까지 수권 받지 않은 채 전파되는 음악 작품을 전부 내리도록 명령한다.

2015년 7월 31일 이후에도 수권 받지 않은 음악 작품을 여전히 전파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에 대해 국가판권국은 법에 따라 엄벌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국가판권국

2015년 7월 8일

97) 국가판권국은 국가인터넷판공실, 공신부,公安部와 공동으로 인터넷 저작권 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사항

6.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网络音乐内容管理工作的通知
게재일	2015-10-23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⁹⁸⁾ 문화/라디오TV국, 티베트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 행정(종합)법집행총대⁹⁹⁾: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을 촉진하고 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며 인터넷 음악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문화부령 제51호), <온라인문화경영업체 콘텐츠 자체심사 관리방법(网络文化经营单位内容自审管理办法)>(문시발[2013]39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 음악 콘텐츠 관리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문화관리부서에서 중간, 사후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관리제도를 적용한다.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서로 통일되고 사회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콘텐츠 심사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제공할 인터넷 음악에 대해 콘텐츠를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후에야 온라인에서 운영할 수 있다.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기업의 자체 심사 작업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강화하고 인터넷 음악 시장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과 랜덤 표본조사를 강화하며 인터넷 음악 시장 경고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 등 신용 관리제도를 구축하며 중간,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 인터넷 음악 콘텐츠 자체 심사 제도를 실행하고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 주체 책임을 강화한다.

(1)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온라인문화경영업체 콘텐츠 자체심사 관리방법>과 <인터넷음악 콘텐츠 심사작업 가이드(网络音乐内容审核工作指引)> 등 표준 규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인터넷 음악 콘텐츠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내 작업 프로세스와 책임제도를 구축하며 인터넷 음악 콘텐츠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네티즌들이 창작, 표현 및 개인 음악을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온라인 플랫폼(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공간)에 대한 실시간 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불법 내용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2)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자사 콘텐츠 관리제도, 부서 설치, 인력 배치, 업무 직무, 심사 프로세스, 업무 규범 등 상황을 “전국 문화시장 기술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이하 “관리감

98)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99)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독과 서비스 플랫폼”이라 약함)을 통해 현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발급받은 후부터 30일 내에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위 등록을 마쳐야 한다.

- (3)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분기별 첫 달 월말 전에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지난 분기의 인터넷 음악 콘텐츠 자체 심사 관련 정보를 문화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내용에는 콘텐츠 자체 심사 전반 상황, 심사한 인터넷 음악 수량(심사 통과한 것과 미통과 포함, 이하 동일), 심사한 인터넷 음악 리스트(곡명, 판권사, 작곡가, 작사가, 공연자 포함) 등 정보가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의 등록내용은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 문제 발견 처리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보고한 정보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 (4)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인터넷 음악 콘텐츠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힘들 경우, 성급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에 행정지도를 신청할 수 있고 문화 행정부서는 신청을 받은 후부터 영업일 7일 내에 답장을 줘야 한다.

3. 업무 지도와 중간,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음악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 (1) 문화부는 인터넷 음악 콘텐츠 심사 업무를 총괄 지도하고 인터넷 음악 콘텐츠 심사 작업 지도 인도 등 표준 규범을 수립하고 발표하며 콘텐츠 심사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인터넷 음악 콘텐츠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을 진행하며 경고 리스트와 블랙리스트 등 인터넷 음악 시장의 신용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 (2) 성급 문화 행정부서는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가 자체 심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예하면 업체의 자체심사 인력 교육에 대한 지도, 업체의 자체심사 제도 실행 상황에 대한 랜덤 표본 조사 및 확인, 인터넷 음악 콘텐츠 자체 심사 작업에 대한 행정지도 제공 등이 포함된다. 성급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는 수요에 따라 콘텐츠 심사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인터넷 음악 콘텐츠의 합법성에 대해 인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 각급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인터넷 음악 시장에 대한 중간 지도 점검과 사후 관리감독 법집행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관할 구역의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에 대한 지도, 서비스와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인터넷 음악 시장의 순찰, 랜덤 조사제도를 구축하며 불법, 부정당 행위와 관련 책임업체를 조사 처리하며 경고 리스트와 블랙리스트 등 인터넷 음악 시장의 신용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 (4) 산업협회 등 민간조직은 문화 행정부서의 지도하에 업체와 정부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 역할을 발휘하며 업계 자율을 자발적으로 강화하고 업계표준과 경영 규범을 수립하고 업계 교육을 진행하며 업체들의 준법 경영을 촉진한다.

이 통지에서 언급한 인터넷 음악이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한 음악 제품으로 노래, 악보

및 화면을 음악 제품의 보조 수단으로 한 뮤직 비디오(MV)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란, 인터넷 음악 서비스에 종사한 경영성 인터넷 문화 업체이다.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음악 경영업체는 2016년 4월 1일부터 인터넷 음악 자체 심사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타 문서와 이 통지가 서로 모순될 경우, 이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문화부

2015년 10월 23일

7.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大力推进我国音乐产业发展的若干意见
게재일	2015-11-17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중국 음악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신광출발(新广出发)〔2015〕8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⁰⁰⁾ 신문출판국, 해방군정치부홍보부 신문출판국, 중앙 및 국가기관 각 부처 위원회,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출판기관 주무부처, 중국출판그룹회사(中国出版集团), 중국교육출판미디어그룹유한회사(中国教育出版传媒集团), 중국과학기술출판미디어그룹유한회사(中国科技出版传媒集团),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청두(成都) 국가음악산업기지 및 각 음악단지, 전국 각 관련 음반·영상 업체:

음악은 대중들이 즐겨 듣는 정신적 문화 상품이다. 음악산업은 긴 산업고리, 수많은 연관 산업, 강력한 침투력으로 인해 문화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발전 공간과 시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 디지털 기술, 인터넷 기술 및 방송 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음악의 창작, 생산, 전파 및 소비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현대 음악산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창작능력이 빈약하며 음악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고 높은 자질을 갖고 있는 인재가 부족하며 판권 보호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등 문제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민족 음악 상품의 창작 출판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둥 및 청두에 4개 국가음악산업기지를 잇따라 승인 설립하였다. 중국 음악 산업 통합 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음악산업기지의 시범 및 확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큰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자, 중국 음악 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1)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발전목표

1. 지도사상.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및 제18기 3중, 4중, 5중 전회 내용을 가이드로 하고, 시진핑(习近平) 총서기의 중요 연설 내용을 철저히 구체화하며 ‘네개 전면¹⁰¹⁾’ 전략 배치를 중심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과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생산 지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선도하고 음악 산업 구조 전환 가속화를 핵심으로 음악 산업 선두 기업의 육성과 신흥 문화 경영 방식에 의존하여 첨단, 고효율적, 고부가가치의 음악 산업 요소 집결을 동력으로 산업 기능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민족 창작 음악 작품의 생산과 출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핵심 경쟁력을 갖춘 일부 중견 음악기업을 육성하며 대중들의 정신

100) 병단(兵团):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01) 四个全面, 즉 샤오강(小康)사회의 전면 건설, 전면 심화 개혁, 법에 따른 전면 법치(法治), 당을 엄한 기준으로 전면 관리

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충족시켜 사회주의 문화 강국의 건설과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기여한다.

2. 기본원칙. 첫째, 사회적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서로 통일시킨다. 둘째, 산업 발전과 창작 음악 작품을 서로 결부시킨다. 음악 산업 고리를 대대적으로 통합하여 산업 클러스터와 규모 효과를 형성하고 음악의 콘텐츠 생산을 중요시하여 명품 역작을 많이 생산한다. 민족 음악 상품의 개발 창작을 가장 뚜렷한 위치에 두어 콘텐츠 생산 수준과 창작성을 힘껏 향상시킨다. 셋째, 기지 건설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서로 결합시킨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음악 문화기업의 결합, 합병, 재편성을 추진하고 혁신역량과 뚜렷한 실적 그리고 강력한 핵심경쟁력을 갖춘 대형 음악그룹회사와 특색 음악기업을 지원 성장시켜 민족 음악 자체 브랜드를 구축 및 수립하고 중국 음악 산업 구조 조정과 전략적 구조 전환을 촉진한다.
3. 발전목표. ‘제13차5개년 개발 계획(13·5)’ 기간, 음악 창작, 녹음, 출판, 복제, 발행, 수출입, 판권 거래, 공연, 교육 훈련, 음악 파생 상품 등 수직적 산업 고리를 관통시키고 음악과 방송,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넷, 하드웨어 방송 장비, 악기 생산 등 수평적 생산 고리를 연결시켜 상하 서로 호응되고 각 부분 요소가 서로 지탱되는 음악 산업 통합 시스템을 기본 형성한다. 일부 영향력 있는 음악 작품을 내놓고 일부 혁신형 음악 기업을 탄생시키고 일부 중량급 음악 인재를 양성하여 ‘13·5’ 기말, 전반 음악산업 생산총액 3000억 위안 달성하며, 그중 국가 음악산업 기지에서 생산총액 1000억 위안 달성하여 국내외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견 음악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한다.

(2) 주요과제

4. 우수 중국산 창작 음악 작품의 출판을 추진한다. 명품 전략을 실시, 원작과 현실 음악 소재의 창작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고 중화 문화 정신을 보여주며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선양하는 보다 많은 음악 작품을 창작 출판한다. 중국산 우수 창작 음악 작품이 국가 중점 음반·영상 전자출판물 출판 계획과 중국 출판 정부상, 중화 우수 출판물상, 중국 골든디스크상에서의 비율을 향상시킨다. 국가출판기금, 민족문화 출판 특별 자금 등을 통해 우수 민족 음악, 우수 창작 어린이 노래 등 음반·영상 제품을 지원한다. 우수 음악 작품, 음악 인재가 국가 예술 기금 신고에 참여하도록 추천한다. 사회 조직, 산업 협회, 기업 및 사업 단체들이 중국 우수 창작 음악 지원 기금과 음악 산업 발전 기금을 설립하여 우수 음악 작품, 우수 음악 기업과 우수 음악 인재들을 또는 장려하도록 격려한다.
5. 음악 창작 생산 활력을 자극한다. 음악 창작 사회화 조직, 메커니즘, 다각화 음악 창작 주체 장려 메커니즘과 음악 작품 홍보 보급 메커니즘을 구축해 음악 창작 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혁신 활력을 자극하여 일부 전문적이고 일류의 특급 중소형 음악 제작 기업을 육성한다. 인터넷 음악 플랫폼이 중국산 창작 음악 작품에 대한 집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사회적 효과를 굳건히 고수하면서 원작 음악의 창작 생산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인디 뮤지션의 규범화 성장을 적극 인도하여 생활에서 시작된 다양한 형식, 건강한 내용의 대량의 음악 작품을 창작하도록 한다.

6. 대형 음악 그룹 회사를 육성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정책 방향과 결부시켜 인수, 합병, 재편성, 주식제 전환 등 방식을 통해 음악 콘텐츠 개발 생산을 핵심으로 산하에 유명 브랜드 기업과 우위 제품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자산 규모와 영업수익이 모두 50억 위안을 넘는 국내외에서 비교적 영향력을 갖춘 종합적 음악 그룹 회사를 2, 3개 육성한다. 이와 더불어 음악 기업의 상장 용자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경쟁력과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킴으로서 업계의 주력군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7. 음악과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가속화한다. 《‘인터넷 플러스’ 행동을 적극 추진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行动的指导意见)》과 《빅 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 강령(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에 따라 ‘인터넷 플러스’와 빅 데이터의 발전 기회를 잡고 인터넷의 혁신 성과와 음악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여 전통 음악 산업의 기술 향상, 융합 혁신, 경영 방식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음악 기업과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인터넷, 무선 통신망, 유선 TV 네트워크, 위성 직접 방송 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파 채널을 확장하며 휴대폰, 모바일 멀티미디어 단말 및 외장 하드, IC카드, 데이터베이스 등을 캐리어와 표현방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음악 출판 발행 방식을 개발하여 디지털 음악이 인터넷 조건에서 더욱 편리해지고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유료화가 더욱 규범화 되도록 한다. 음악 기업과 하드웨어 장비 제조업체간의 심층 협력을 장려하여 음악 분야 웨어러블 장비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가속화한다.
8. 음악 산업 표준화 건설을 추진한다. 음악 기업과 기술회사들이 음악 상품, 디지털 음악 등 관련 산업 표준 수립 업무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중국 표준 녹음 제품 코드(ISRC)가 음악 싱글 등록, 판권 인증, 음악 유료화 등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도록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중국의 소리 있는 문헌의 디지털화 복구 및 소장 표준을 적극 수립하여 중국 민족 음악과 세계 음악 간의 상호 교환 및 교류를 강화한다.
9. 대형 음악 전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음악 산업 빅 데이터 인프라 건설을 총괄 기획하고 전국적인 음악 데이터 통계 플랫폼, 음악 판권 거래 및 감독 관리 플랫폼의 건설을 추진하며 대형, 권위적인 음악 정보 서비스 및 교류 플랫폼, 음악 생산 제작 플랫폼, 음악 전시 및 판매 플랫폼, 디지털 음악 출판 전파 플랫폼, 음악 작품 홍보 발표 플랫폼, 음악 공연 및 패션 레저 체험 플랫폼을 건설하도록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 고품질, 고수익의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정부 관리의 표준화, 산업 서비스의 편리화, 민생 서비스의 보편화를 점차 실현한다.
10. 국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평등 협력, 호혜 윈윈의 원칙을 고수하여 음악 산업의 국제 협력 메커니즘을 점차 구축 보완한다. 음악 기업에서 해외 고급 음악 인재, 특색 음악 프로젝트 및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음악 기업이 중국의 풍부한 문화 자원에 의존해 해외 음악회사 및 뮤지션과의 협력을 통해 민족 음악 상품을 개발 제작하여 협력 상품의 중국 문화 요소를 향상시키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 음악기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여 자원 상통, 채널 공유, 콘텐츠 공동 개발의 교류 협력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11. 중국 음악의 '해외 진출(走出去)'전략을 추진한다. 중국(선전)국제문화산업박람회(中国(深圳)国际文化产业博览交易会),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北京国际图书博览会), 중국국제판권박람회(中国国际版权博览会), 베이징국제음악페스티벌(北京国际音乐节) 등 전시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음악 도서, 음악 작품 실물 수출, 판권 수출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음악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원, 그 힘을 빌려 중국산 우수 음악 상품이 해외에 진출하여 국제 시장 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악 장비 기업이 '해외진출' 속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이 해외 공장 건설, 인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여 세계 첨단 분야에서의 중국 음악 브랜드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국내 음악 기업이 프랑스 칸 세계 음악 박람회(MIDEM) 등 국제 음악 전시회 및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12. 음악 인재 육성 계획을 실시한다. 음악 기업과 음악 학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하고 음악 편집, 녹음 기사, 프로듀서, 매니저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인재 육성 모델을 혁신하고 다차원적 다양한 유형의 음악 복합형 인재, 실용형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 완비하며 인재 육성 사회화를 점차 실현한다. 음악 인재 근무 평정 작업을 규범화하고 음악 인재를 중공중앙 선전부 홍보 문화 시스템 '4개 부분' 인재에 포함시키도록 적극 추천한다. 음악 기업과 민간 조직이 중국 음악 인재 육성 기금을 설립하고 관련 공익 기금회와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13. 국가 음악 산업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 음악 산업 기지의 집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정책 인도, 자금 지원을 통해 기지를 음악 창작 및 음악 인재 집결의 인큐베이터로 육성하여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부스터가 되도록 한다. 각 관련 성(시)는 국가 음악 산업 기지(단지) 조정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각 기지는 기지 건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야 하며 국내 및 해외 유명 음악회사, 뮤지션의 입주에 조건을 창조해준다. 각 관련 성(시)는 국가 음악 산업 기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관할구 내 기지(단지)의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지(단지)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실시 의견을 제시하여 특색화, 차별화 발전의 길을 걷는다. 새로 건설된 국가 음악 산업 기지는 《국가신문출판산업기지(단지)관리방법(国家新闻出版产业基地(园区)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며 기지 발전 현황과 발전 추세가 좋을 경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 국가 음악 산업 기지 칭호를 수여받는다. 정부는 음악 산업 기지 건설에 대해 연간 보고 추출 검사 제도를 실행하고 기지(단지)는 반드시 《국가신문출판산업기지(단지) 관리방법》에 따라 매년 관련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며 제때에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중대한 문제를 발견할 경우, 통보 비판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해당 국가 음악 산업 기지(단지) 칭호를 취소한다.

(3) 보장조치

14. 프로젝트 선도 전략을 실시한다. 중국 오랜 음반 디지털 자원 बैं크, 중국 음악 작품 디지털 자원 बैं크, 중국 음악 디지털 출판 전과 플랫폼 등 핵심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한다. 소수민족 음악 보호 출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민족 전통 음악을 수집 정리하며 소중한 녹음 녹화 자료에 대해 복구 및 디지털화 보호를 진행하고 중국 민족 악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출판하며 민족 음악 자원 बैं크를 건설한다.
15. 산업자금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핵심 음악 프로젝트가 국가신문출판개혁발전프로젝트에 포

함되도록 지원하고 관련 음악기업이 국가문화산업발전특별자금을 신청하도록 장려 및 협조하며 핵심 음악기업이 기획한 특색 음악 프로젝트, 핵심 음악 프로젝트가 문화건설특별자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16. 업계 조직의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지도 아래 관련 산업협회에 의존해 국가 음악 산업 기지 건설과 중대 음악 산업 프로젝트의 진행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음악 대회를 조직하여 음악 산업 발전 특별 기금을 설립 및 관리하며 중국 음악 산업 발전 포럼을 조직하여 중국 음악 산업 발전 연간 보고서 등을 발표한다. 업계 자원을 강화하고 음악 기업을 인도하여 직업윤리를 고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음악 상품 품질을 힘껏 향상시키며 비속하고 저속하고 세속에 영합하고 불법 복제한 음악 작품을 자발적으로 저지한다. 음악, 음반·영상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이 창작 장려, 사용 촉진 등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이 음악산업 업계협회 간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이 음악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에 대한 권리 보호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17. 판권 보호와 시장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저작권법(著作权法)》의 제3차 수정을 추진하고 음악 작품 특히 디지털 음악 작품에 대한 판권 보호를 강화, 허가 없이 전파되는 음악 작품의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권리자와 사용자가 판권 협력을 진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음악 작품 상호 권한 부여 및 광범위한 전파를 추진하며 관련 업체가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악 작품 전파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양호한 인터넷 음악 판권 질서 및 운영 생태를 구축하도록 추진하여 디지털 음악의 정품화 운영을 점차 실현한다. 불법 복제 반대 적발 및 단속 장려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인터넷 불법 전파, 출판 업체를 가장한 제작 출판 등 각종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를 포함한 음악 작품을 법에 따라 단속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5년 11월 17일

8. 온라인 공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表演管理工作的通知(文市发〔2016〕12号)
게재일	2016-7-1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시발(文市发)[2016]12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⁰²⁾ 문화/라디오TV국, 티베트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행정(종합)법집행총대¹⁰³⁾:

온라인 공연은 온라인 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최근에 중국 온라인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문화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문화 소비를 확대하고 인도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공연 운영업체는 책임성 결여, 관리 혼란, 일부 공연자들이 저속하고 선정적인 부정당, 불법 내용으로 관심을 모아 사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고 있다. 온라인 공연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문화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 시장에 대한 일상적인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제때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법적으로 부정당,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규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와 공연자의 책임을 구체화할 것을 독촉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연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와 경영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내용의 합법성, 질서 있는 경영 그리고 출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콘텐츠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충직한 콘텐츠 심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공연자의 공연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유저와의 상호연동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모니터링 조치를 엄밀하게 보장하고, 신고 제보 루트를 원활하게 하며 돌발사건 비상 처리 매커니즘을 완비하며 부정당, 불법 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부정당, 불법 콘텐츠가 포함된 온라인 공연을 발견하면 공연 채널을 차단해야 하고 온라인에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을 저장한 후, 소재지 성급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연자는 본인의 온라인 공연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연자는 합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온라인 공연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저속, 선정적, 폭력성 등 나라의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공연자는 직업적 소양을 자발적으로 향상하고 윤리 자율을 강화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온라인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 각급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현지 온라인 공연 경영 업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가 부정당, 불법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발견하고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102)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03)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그들의 주체적 책임을 법에 따라 강화해야 하며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법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부정당 콘텐츠 공연 활동을 법적으로 조사 처리

콘텐츠 관리는 온라인 공연 관리 사업의 중점업무이다. 각급 문화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금지 내용을 제공하는 등 부정당, 불법 공연 활동을 중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을 포함하거나 혹은 인체 결함 혹은 인체 변이 등 방식을 이용하여 유저의 관심을 끌거나 혹은 공연자의 건강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등 방식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연 활동을 제공한다. 부정당, 불법 문화 제품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연 활동을 진행한다. 온라인 공연 활동에 대해 저속한 광고 홍보와 시장 보급 행위 등을 진행한다.

위에서 규정한 부정당, 불법 온라인 공연을 제공한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 대해,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인터넷 문화관리 임시규정>에 따라 조사 처벌하고 불법 소득을 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심지어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철회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범죄의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도 추궁한다. 지방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처벌하는 주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상황에 따라 부정당, 불법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경고 리스트에 포함한다.

부정당, 불법 온라인 공연을 제공하는 공연자에 대해 지방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공연자 채널을 차단할 것을 소속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 명령할 수 있고 부정당, 불법 공연자의 정보와 증빙서류를 문화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문화부는 상황에 따라 부정당, 불법 공연자를 블랙리스트 혹은 경고 리스트에 포함한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연자는 전국 범위에서 온라인 공연 및 기타 영업성 공연 활동을 진행할 수 없고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부정당, 불법 경위에 따라 정한다.

문화 행정부서는 블랙리스트를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부정당, 불법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와 공연자에 대해 “한 곳에서 불법 상황이 적발되면, 다른 곳에서도 제한을 받는” 신용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연합 처벌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각급 산업협회는 각자 범위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와 공연자에 대해 통보하고 배척해야 한다.

3. 온라인 공연 시장에 대해 “검사대상과 검사인원을 랜덤으로 선정하고 검사결과 공개(双随机一公开)”¹⁰⁴ 실행

지역별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행정구역 내의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여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문화 시장 법집행 협력 매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여 온라인 공연시장에 대해 “검사대상과 검사인원을 랜덤으로 선정하고 검사 결과 공개”를 실행하며 정기적으로 랜덤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제때에 사회에 조사 결과 그리고 온라인 공연 시장의 블랙리스트와 경고 리스트를 발표해야 한다.

104) 双随机一公开: 두가지(검사대상과 검사인원)를 랜덤으로 선정하고, 하나(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

지역별 문화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법집행기관은 현장조사와 온라인 순찰을 주요 표본조사 방식으로 하고 온라인 공연 콘텐츠를 중점 표본조사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연 랜덤 표본조사 업무 실행방법과 랜덤 조사 사항 리스트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야 한다. 신고 적발 횟수가 많은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의 경우, 랜덤 조사 횟수를 늘려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전국문화시장 기술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랜덤 표본조사 대상, 법집행 검사인원, 검사사항,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여 전반 추적 기록을 남겨 전반 과정의 근원을 확보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통지에서 언급한 온라인 공연이란, 현장에서 진행하는 문화 예술 공연, 온라인 게임 등 문화 제품 기법을 표시 혹은 해설 하는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 혹은 오디오/동영상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전파하여 유저가 온라인에서 검색, 시청, 이용 혹은 다운로드하도록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이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문화부

2016년 7월 1일

9.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제목	网络表演经营活动管理办法
제재일	2016-12-02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에 관한 문화부 통지(문시발[2016]33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⁰⁵⁾ 문화/라디오TV국, 티베트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행정법집행총대¹⁰⁶⁾:

온라인 공연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온라인 공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부는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문화 관리 잠정방법(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온라인 공연 경영 관리 방법>을 작성하여 인쇄 배포하니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은 온라인 문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각급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 기관은 온라인 공연 시장에 대한 관리 및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문화 경영업체를 인도하여 합법적으로 경영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내용이 건전하고 진취적이고 선을 지향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데 유익한 우수한 온라인 공연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중국 온라인 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문화부

2016년 12월 2일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

제1조 온라인 공연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연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온라인 공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 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작성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온라인 공연이란, 현장에서 진행하는 문화 예술 공연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정보 네트워크, 모바일 통신망,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혹은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업로드 송출하여 생성한 인터넷 문화 제품이다.

온라인 공연 경영 활동이란, 유료 서비스, 전자상거래, 광고, 협찬 등 방식을 통해 수익을

105) 병단(兵團):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06)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창출하고 대중들에게 온라인 공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온라인 게임 기법 표현 혹은 해설 내용을, 정보 네트워크, 모바일 통신망,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혹은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업로드 송출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관리 한다.

제3조 온라인 공연 경영에 종사 할 때,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대중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사회주의에 서비스하는 가치를 고수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고수하는 방향에 따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자발적으로 선양해야 한다.

제4조 온라인 공연 경영에 종사하는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문화 행정부서에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의 경영범위에 온라인 공연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홈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자사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공연 경영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문화관리 잠정 규정>과 <온라인 문화 경영업체 콘텐츠 자체 심사 관리 방법(网络文化经营单位内容自审管理办法)>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콘텐츠 심사 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하고 자체 심사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자격을 갖춘 심사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콘텐츠 관리 수요에 적응되는 기술 관리감독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콘텐츠 자체 심사와 실시간 관리 감독 역량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공연 채널을 개국해서는 아니 된다.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콘텐츠 자체 심사를 거치지 않은 네트워크 공연 제품의 경우, 대중들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온라인 공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
- (2) 공연방식이 공표, 잔인, 폭력, 저속, 공연자의 건강을 학대하는 내용
- (3) 인체 결함 혹은 인체 변이 등 방식을 이용하여 유저의 관심을 끄는 내용
- (4) 도촬, 도청 등 방식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 (5) 동물을 학대하는 등 방식으로 공연
- (6) 문화 행정부서의 콘텐츠 심사 승인 번호 혹은 등록 번호를 갖추지 않은 온라인 게임 제품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기법 표현 혹은 해설

제7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연의 경우, 미성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공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연자를 상대로 공연 채널을 개통할 경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률과 법규 그리고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공연자와 체결해야 한다.

제9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실명 인증을 진행할 것을 공연자에게 요구해

야 하고 인터뷰, 통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합법적으로 공연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가 해외 혹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의 공연자(이하 “해외 공연자”라 함)에게 공연 채널을 개통하여 대중들에게 온라인 공연 제품을 제공할 경우, 온라인 공연 채널을 개통하기 전에 문화부에 관련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공연자에게 공연채널을 개통해서는 아니 된다. 국내 공연자에게 공연 채널을 개통할 경우, 공연자가 공연활동을 진행한 날부터 10일 내에 공연 채널 정보를 문화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공연 채널 및 공연 영상에 경영업체의 로고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공연자 신용 등급, 제공한 공연 내용 유형 등에 따라 공연 채널에 대해 목적성 있는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유저 등록 정보를 저장하고 유저 정보 보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저 등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 혹은 서비스 계약서에 근거하여 유저의 행동을 감독하고 구속하는 것을 강화하며 유저가 불법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유저에 대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사내 순찰 관리 감독 제도를 구축하여 온라인 공연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모든 온라인 공연 동영상 자료를 기록하고 저장해야 하며 자료 저장시간은 최소 60일이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법적으로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가 대중들에게 제공한 비실시간 온라인 공연 영상(유저가 업로드한 내용 포함)에 대해 먼저 자체 심사한 후, 업로드 하는 것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14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돌발사건 비상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자사에서 제공한 온라인 공연에 불법, 부정당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하며 즉시 해당 업체 등록 지역 혹은 실제 경영지역의 성급 문화 행정 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분기별 첫 달 월말에 해당 회사의 지난 분기 자체 심사 정보(실시간 운행 감독 상황, 발견한 문제 처리 상황과 불법 부정당 콘텐츠를 제공한 공연자 정보 등 포함)를 문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제보 시스템을 완비하여 네티즌과 사회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보 접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제보 문제를 유효하게 처리하는 사내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홈페이지 및 공연자의 공연 채널 페이지의 잘 보이는 곳에 “12318” 전국 문화시장 제보 사이트 링크를 설정해야 한다.

제17조 문화부는 전국 온라인 공연 시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통일된 온라인 공연 경고 리스트, 블랙 리스트 등 신용 관리감독 제도를 구축하며 온라인 공연 심사 작업 지도 등 표준 규범을 수립하고 발표하며 전국 온라인 공연 시장의 랜덤 표본조사 업무를 실행하여 온라인 공연 콘텐츠의 합법성에 대해 최종 확인을 한다.

제18조 각급 문화 행정부서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은 온라인 공연 시장에 대한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더블 랜덤, 1가지 공개”를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의 법집행 협력 매커니즘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관할구역의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 대한 지도, 서비스와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랜덤 표본조사 작업 실행방법과 랜덤 표본조사 사항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시장의 종합 법집행기관은 조사 상황에 근거하여 경고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 등 신용 관리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제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9조 온라인 공연 산업 협회, 자율조직 등은 자발적으로 업계 자율을 강화해야 하고 업계 표준과 경영 규범을 수립하며 업계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20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서 이 규정의 제4조 내용을 위반하고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 공연 경영에 종사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 기관에서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허가증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 공연 활동을 진행할 경우,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 규정> 제24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1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서 제공한 공연 내용이 이 규정의 제6조 내용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 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2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서 이 규정의 제10조 내용을 위반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공연자에게 공연 채널을 개통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 기관에서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등록 기한을 넘길 경우,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27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는 2017년 3월 15일부터 이 규정의 제10조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문화시장 기술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문화부에 신청하거나 등록한다.

제23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서 이 규정의 제13조 내용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공연 영상 자료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31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4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서 이 규정의 제14조 내용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 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30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5조 온라인 공연 경영업체에서 이 규정의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위반하고 자체 심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 행정부서 혹은 문화 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에서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제29조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26조 정보 네트워크 실시간 온라인으로 영업성 공연 활동을 송출할 경우, <인터넷 문화 관리 잠정규정>,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와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행 세칙(营业性演出管理条例实施细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공연시장 관리강화 관련 문화관광부의 통지(의견수렴안)

제목	공연시장 관리강화 관련 문화관광부의 통지(의견수렴안)
제재일	2019-12-05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관광국: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공연 시장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더 풍부해진 공연 프로그램, 더 다양해진 공연 유형과 더불어 관광 공연, 음악 축제 등의 경영 형태가 활기를 띠면서 문화 소비를 이끌고 대중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영업성 공연의 콘텐츠 심사, 티켓 판매, 현장 관리감독 등 면에서 여전히 취약점이 드러나 공연시장의 고퀄리티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공연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의 다양한 정신문화 수요를 더욱 더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공연 행사 관리 강화

- (1) 콘텐츠 심사를 강화한다.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정치적 위치를 높여 영업성 공연의 콘텐츠 심사를 강화하고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여 헌법, 법률, 법규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대한 혁명과 역사 관련 소재, 당과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 배치 관련 소재, 민족과 종교 관련 소재의 공연 연극(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엄격한 콘텐츠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연행사의 정확성, 건강한 내용, 규범화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 (2) 감독 관리의 중점을 두드리지게 한다. 음악 축제형 공연 행사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일렉트릭, 랩뮤직과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엄밀히 진행해야 하고 공안 등 부처에 협조하여 공연현장, 전자 스크린의 내용 및 관객과 호흡하는 파트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사람이 밟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공연 주최자를 독촉해야 한다. 몰입식 공연 행사에 대해선 공연 전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봉건 미신, 피비린내, 공포 등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응급관리 등 부처에 협조하여 공연 주최자에게 밀폐 공간 응급 관리, 소방 통로 안전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소극장 공연 행사에 대해선 토크쇼, 만담(相声) 및 전위파 연극, 실험 연극 등 언어형 프로그램의 콘텐츠 심사와 현장 관리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광 공연 행사에 대해선 관련 경영주체에게 법에 따라 《영업성 공연 허가증(营业性演出许可证)》을 취득하고 공연 프로그램 승인 절차를 밟으며 공연 현장의 안전 훈련과 검사를 강화하고 공연행사가 감독 관리에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 (3) 심사 지도를 강화한다. 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심사 전문가 자문제도를 수립하여 영업성 공연의 콘텐츠 심사 업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중점 영업성 공연의 콘텐츠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어려울 경우, 1차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연 티켓 서비스 시장질서 규범화

- (1) 티켓 서비스 정보 공개를 잘 수행한다. 공연 주최자, 공연 티켓 서비스 경영업체는 《영업성 공연 티켓 서비스 시장 경영 질서 규범화 관련 문화부의 통지(文化部关于规范营业性演出票务市场经营秩序的通知)》(문시발〔2017〕15호)의 요구에 따라 전체 공연장 판매 가능 티켓 수, 좌석 구역별 티켓 가격을 제때에 발표하고 판매 완료, 판매 예정 구역을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 공개 판매되는 공연 티켓 수가 공안 부처가 승인한 관객 수의 7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공안 부처의 승인을 거쳐 공연장 전체 판매 가능 티켓 수를 확실히 조정해야 할 경우, 상응하는 구역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 (2) 중점 공연 티켓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해외 영업성 공연, 대형 콘서트 및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배우가 참여하는 공연 행사 등의 티켓 판매 상황에 대한 사전 연구와 예측을 강화하여 티켓팅 경쟁 또는 암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공연 행사를 중점 감독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정기적으로 중점 영업성 공연 목록을 발표하여 각 지역의 사전 예방을 지도한다. 중점 감독 관리 대상에 포함된 공연 행사에 대해 공연 주최자 또는 티켓 서비스 경영업체는 공연 개최 전 티켓 판매 방안, 좌석 구역 분포도 및 스텝용 티켓, 미디어와 스폰서 초대권 등 비매 티켓 수량 및 대응하는 좌석 구역 등 상황을 승인부처와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팀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중점 영업성 공연의 공개 판매되는 공연 티켓 수는 공안 부처에서 승인한 관객 수의 8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스텝용 티켓, 초대권의 사용 등을 규범화하여 되팔아 이익 챙기는 현상을 방지하고 중점 공연 행사 티켓 서비스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3) 티켓 발매 출처 행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 네트워크 기술을 충분히 활용한 전국적 통일된 공연 티켓 판매 감독 관리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모색하여 공연 티켓 발매 출처 및 행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티켓 현황 공개를 추진하며 공연 티켓 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공연 주최자 또는 티켓 서비스 경영업체는 공연 티켓 판매 기록 및 관련 계약서를 추후 조사 확인에 대비하여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연의 새로운 경영 방식 관리 강화

- (1) 포용하고 신중하게 감독 관리한다. 각 지역은 공연의 새로운 경영 방식에 관심을 두고 영업성 공연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분석하고 예측하며 이데올로기 안전과 생산 안전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키면서 목표가 뚜렷한 감독 관리 서비스 조치를 제기하고 감독 관리 메커니즘과 감독 관리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서비스 수준을 최적화하고 공연의 새로운 경영 방식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2) 공연의 인터넷 라이브 중계 관리를 강화한다. 영업성 공연 행사의 인터넷 라이브 중계가 필요한 경우, 공연 주최자는 공연 허가 신청 시 해당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한다. 연예인을 조직하여 오프라인 현장 공연에 종사하는 인터넷 라이브(공연) 동업 조합 조직은 《영업성 공연 경영 허가증(营业性演出经营许可证)》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터넷 라이브 중계는 지연 방송 방식을 취해야 하며 최소 3분간 지연 방송해야 한다. 공연 주최자와 인터넷 라이브 중계 업체는 라이브 중계 관리 프로세스와 돌발사건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담자를 배치하여 공연 라이브 중계 내용과 네티즌 댓글 등 상호 소통 내용에 대한 실시간 심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 처리하고 영상 자료는 조사용으로 최소 60일간 보존해야 한다.

- (3) 공연의 녹화 중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문예 공연 행사를 영상으로 녹화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장에서 경영업체가 관객에게 방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 제25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공연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콘텐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4)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공연 관리를 강화한다. 홀로그램, 인공지능, 초고화질 등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며 영업성 공연을 진행할 경우,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현장 시연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엄밀히 진행해야 한다.

4. 공연 시장 활력 자극

- (1)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한다. ‘광관부(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와 ‘증조 분리(证照分离,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와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 요구를 실천에 옮기고 전국 문화시장 기술 감독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이용해 영업성 공연의 승인을 실시하고 공연 시장 주체의 설립 및 공연 행사 승인의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를 실현함으로써 승인 효율을 높이고 시장 진입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 (2) 외자 진입 문턱을 낮춘다.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버전)》과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버전)》의 관련 규정을 실행하여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중국 측이 지배 지분을 보유한 합자 문예공연단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전국 범위에서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공연 매니지먼트기관, 공연장 경영업체의 설립을 허용하여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시장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 일으킨다.
- (3) 공연 시장 소비를 촉진한다. 음악 창조 인재 지원 계획을 실시하여 지방이 음악, 연극, 곡예, 무용 등 공연 축제 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조건을 갖춘 A급 관광지, 전역 관광 시범구역, 특색 마을이 지방 문화 특색을 갖춘 관광 공연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야간 공연 소비를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5. 공연시장 주체 책임 강화

- (1) 문예 공연단체와 배우의 주체 책임을 강화한다. 문예 공연단체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보다 많은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우수한 공연 작품을 창작 생산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 기술을 충분히 활용한 콘텐츠와 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공연의 감화력과 표현력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의 통일을 실현한다. 연예인은 스스로 도덕 품격 수양을 높여 품위를 중요시하고 연예인의 도덕을 중요시하며 스스로 저속, 졸렬, 세속에 영합하는 풍습을 배척하고 훌륭한 프로 정신을 키워 개인의 좋은 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 (2) 공연 매니지먼트기관의 주체 책임을 강화한다. 공연 매니지먼트기관은 주체 책임을 확실히 실행하여 영업성 공연 프로그램의 콘텐츠 심사 및 연예인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공연 홍보, 티켓 판매, 안전 보장 등 경영 활동의 전 과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공연 매니지먼트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공연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공연 프로젝트별 최

소 1명의 공연 매니지먼트 요원을 배치하여 구체적인 조율 연락, 콘텐츠 관리 등의 매니지먼트 서비스 업무를 맡아야 한다.

- (3) 공연장 경영업체의 주체 책임을 강화한다. 영업성 공연 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관련 승인 서류를 대조 확인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공연행사의 현장 순찰을 맡도록 해야 한다. 완비된 안전 작업 책임제를 수립하고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실행하며 소방 점검, 무대 장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장소의 안전 방비 작업의 노멸화를 보장해야 한다.
- (4) 공연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실행한다. 공연 주최자, 공연장 경영업체는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공연 현장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연장에 들어오는 관객에 대한 필요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슬로진, 플랜카드, 현수막, 형광판 등 홍보 내용물을 포함한 물품은 안전 점검을 통과한 후 휴대하여 입장할 수 있다. 티켓 서비스 시스템, 홍보 포스터, 문명 공연 관람 안내 방송 등의 방식을 통해 관객의 문명한 공연 관람을 유도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내용과 품위 없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문화관광 행정부처 및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5) 업계협회의 역할을 발휘한다. 공연업계협회가 연결 고리 역할을 발휘하여 업계 자원을 강화하고 영업성 공연의 비용 투자 및 수익 배분 비율의 지도 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투자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공연 시장 각 부분의 위험 공동 부담, 수익 공유를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공연 매니저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공연 매니저 등급별 유형별 관리 실시를 모색하여 공연 업계의 직업화 수준을 높인다. 업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연 종사자의 소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준법 경영을 촉진한다.

6. 업무 체제 보완

- (1) 협동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영업성 공연의 조율 공동 의논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여 홍보, 외사, 공안, 안전생산, 통일전선 등 부처와의 소통 연락을 강화하고 적시에 새로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중점 공연에 대한 사전 예측을 하며 잠재적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약속 후 상담을 가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악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는 제때에 문화관광부에 보고해야 한다.
- (2) 신용 감독 관리를 보완한다. 영업성 공연 경영주체 블랙리스트 제도를 보완하여 신용 등급에 따른 분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신용 제약과 공동 징계를 실시하여 감독 관리 효율을 높인다.
- (3) 홍보를 잘 수행한다.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조직 지도를 강화하여 업무 책임을 실행하고 정책의 확실한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에 즉각 대응하며 사회 예상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통지한다.

문화관광부

2019년 월 일

11. ‘시장기능 강화·서비스 개선’ 개혁 심화와 공연시장 번영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深化“放管服”改革促进演出市场繁荣发展的通知
게재일	2020-09-14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화관광부의 ‘시장기능 강화·서비스 개선(放管服)’ 개혁 심화와 공연시장 번영에 관한 통지 문여시장發 [2020] 6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관광국:

지속적인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放管服)’ 개혁 심화,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발전 내재적 동력 강화, 공연시장의 번영 촉진, 인민대중의 다양·다층적 정신문화 수요 충족,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가. 승인 효율성 제고

1) 온라인 원스톱 처리서비스 지속 추진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과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의 개혁 요구를 관철하여, 전국 문화시장 기술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비준을 진행하며, 공연시장 주체 설립 및 영업성 공연활동 허가의 원스톱 처리를 실현하여 비준의 효율을 높이는 등 시장접근에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순회공연 신청비준의 간소화

이미 문화관광 행정부에서 허가한 상업적 공연행사는 공연 개최조직, 공연단체 및 개인의 공연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해당 공연행사의 첫 개최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 공연지역 신청분에 대해 비준없이 기비안한 것으로 대신한다.

3) 외자 유입정책 실행

전국에 외자기업의 공연연출기관, 공연장임대 회사 설립시 신청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시험구역에 중국측이 주주로 있는 외자공연연출기업 설립을 허락하고,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의 성급 문화관광부의 <영리성 연출관리조례> 측이 지배하는 외자 문예공연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역 소재지의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를 자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관광부 는 <영리성 공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준한다.

4) 공연시장의 소비촉진

공연 티켓 관리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티켓팅 정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공연시장의 소비 환경을 개선한다. 음악·연극·서커스·무용 등의 공연의 시즌제행사 등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특색의 관광, 오락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도모한다. 양질의 공연 상품과 서비스 공급 프로그램을 공적 자금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서비스 구매·쿠폰 지급 등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새로운 업태 발전의 규범화

1)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태도 유지

각 지역에서는 공연계의 새로운 업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연 시장의 새로운 정세와 상황, 새로운 문제를 분석하여 판단하고, 이념의 안전과 생산안전의 한계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업태의 발전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창조하여 공연시장의 새로운 업태 발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2) 온라인 공연관리의 규범화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실황공연을 제공하는 경우 영리성공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터넷 문화사업 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 문화회사가 온라인 전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연 주최측은 신고 시 온라인 전파서비스 업체 허가증과 관람 홈페이지, 비상 시나리오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전파서비스업체는 공연 내용, 라이브댓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뒤 법령상 금지된 내용을 발견하면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소 60일 이상 동영상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개인 생중계로 제공되는 온라인 공연은 <인터넷 방송경영활동 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3) 명확한 신업태 감독관리 규칙

영리 목적으로 극장 등 공연장에서 공연 동영상 상영이나 온라인 관람을 할 경우, <영리 공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중 이미 승인된 영리성 공연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허가를 하지 않는 등 이전 신청자료로 관리 하도록 한다.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디지털 시각디자인,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해 가상 이미지를 선보이는 상업적 공연은 영리성 공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세밀한 관리 실시

1) 중점 공연의 소재 심의 강화

각급 문화와 관광 행정부서는 중요한 혁명과 역사 소재, 당과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 관련소재, 민족과 종교 소재, 영웅 열사 소재의 공연극(연극제)의 공연에 대한 심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내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2) 중점공연의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뮤직페스티벌의 활동은 전자음악, 랩뮤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공연장 모니터 콘텐츠 및 인터랙티브 코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몰입형 공연에 대해서는 봉건 미신, 외설적이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도록 공연 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소극장 공연에 대해서는 토크쇼와 만담, 현대연극, 실험연극 등 영역의 콘텐츠 심사와 현장 감시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광연예 및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리는 영리성 공연에 대해서는 해당 경영자에게 허가절차를 밟도록 독려해 감시선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3) 중점 공연의 심의에 대한 지도강화

문화관광부는 전문가자문제도를 마련하여 영리적 공연내용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한다. 성급 문화와 관광 행정부서는 중점 영리성 공연내용에 대해 파악이 정확하지 못하면, 첫 심리의견에 문화관광부의 지도를 요청하도록 한다.

라. 주체의 책임 실천

1) 예술공연단체와 배우들의 책임 이행

예술공연단체는 공연을 중심으로 깊은 사상철학과 예술성이 뛰어난 공연물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배우는 스스로 도덕성을 높이고 품위를 중시하며 도덕적 수양을 쌓는 동시 세속적 풍조를 배격하고 품격있는 직업적 소양을 배양하여 좋은 사회상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공연매니지먼트로서의 책임 이행

공연매니지먼트기관은 공연프로그램 관리 및 출연진 관리를 주로 강화하고, 배우 매니지먼트, 공연홍보, 티켓팅 운영, 공연현장관리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공연장의 안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공연마다 최소 1명의 전담 공연매니저를 배치해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연락하는 등의 서비스도 맡도록 한다.

3) 공연장 운영단체로서의 책임 이행

영리적 공연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단체는 관련 승인서류를 검증받고 공연행사 현장순찰 전담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안전근무 책임제를 마련하여 안전생산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소방안전시설 및 무대설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장소의 안전방법 업무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마. 조직강화

1) 협동 감독관리 강화

각급 문화관광부 행정부서는 선전, 공안,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등의 부서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협동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업계의 자율성 강화

공연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공연업종의 영업기준과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영리적 공연의 투입원가 구조를 최적화하여 공연업계의 리스크를 공유하고 수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3) 조직의 선전강화

각급 문화관광부의 행정부서는 조직의 지도력 강화하고 업무의 책임을 다하며 정책선전에 주력하는 등 사회적 관심에 제때에 대응하는 동시 사회적 예측을 합리적으로 이끌도록 한다. 더 불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통지한다.

문화관광부

2020년 9월 14일

12. 온라인 라이브공연 및 라이브커머스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秀场直播和电商直播管理的通知
게재일	2020-11-23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국가광전총국의 온라인 라이브공연 및 라이브커머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광전총국發〔2020〕 7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공연 생방송과 전자상거래의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의 빠른 증가로 온라인 경제활동이 가장 활성화된 가운데,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구축 및 관리업무가 중시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온라인 라이브공연 및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규범 안내와 기준과 가치 지침을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저속, 비속, 세속적 등의 나쁜 풍조가 만연하지 않도록 저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가. 온라인 라이브공연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진선미를 보여주며, 건강한 정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온라인 시청 공간을 건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의 내용과 형식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청자의 특성과 연령층에 맞추어야 하고 노동 창출 추구, 유익한 재능과 건전한 생활 정취 등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방송해야 한다. 가치 지향적 고품질 라이브 방송실 단지 혹은 클러스터를 만들어, 품격 있고 의미있고 재미있고 따뜻한 생방송 프로그램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전송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출연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하고, 부의 과시와 숭상, 저속, 저질 미화 등 불량한 분위기가 생방송 영역에서 자생 만연되는 것을 억제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충격을 주고 온라인 시청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온라인 쇼 생방송 또는 라이브커머스의 플랫폼을 개설할 때는 주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온라인 생방송 업무의 각종 관리 제도, 책임 제도, 콘텐츠 안보 제도와 인적 자재 배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하며, 업계 분위기 조성 and 업계 자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라인 공연 생방송 및 온라인커머스가 질서 있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규범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의 플랫폼은 2020년 11월 30일 전까지 설립 주체 정보 및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전국 온라인 시청각 플랫폼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등록 주소는 <http://115.182.216.157>)해야 한다.

다. 온라인 공연 생방송 또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관리과 구축과 동시화 원칙을 정착시켜야 하며, 플랫폼 관리 능력과 스튜디오 개설 능력이 서로 부합될 수 있는 요구를 정확하게 구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일선 심사 인원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실 전체의 비율이 1 대 50 이상이야 하며, 심사 인원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과한 심사 인원을 '심사원 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유능한 플랫폼이 전체적인 배분의 요구보다 우선하여 채택되어 심사 능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여론 변화에 맞춰 라이브 방송실 및 진행자 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능력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강화한다. 플랫폼은 반드시 분기마다 성급 방송의 주관 부서에 라이브 방송실 수, 진행자 수, 심사위원 수를 보고해야 한다. 사회 저명인사 및 국외 인사가 라이브 방송실, 플랫폼을 개설할 때는 반드시 방송 주관 부서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라. 온라인 공연 생방송 플랫폼은 생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해당 진행자의 태그별 분류를 관리해야 한다. '음악' '춤' '노래' '헬스' '게임' '여행' '맛집' '생활 서비스' 등으로 정렬하여 기재한다. 콘텐츠별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대상에 맞게 우수한 것을 도와주고 열등한 것을 관리하는 조치를 선택한다. 각각의 공연 라이브 방송실은 생방송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종류와 라이브 방송실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진행자가 생방송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마. 온라인 공연 생방송 플랫폼은 라이브 방송실과 진행자의 업무 평점 파일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품질 평점과 위반 평점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점을 추천 홍보와 연계해야 한다. 진행자 특히 프리미엄 크리에이터에게 정책 법규와 관련 지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라이브 방송실과 그 진행자 에 대해서는 추천 정지, 시간제한, 하위 순위, 시한부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위가 심각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라이브 방송실을 폐쇄하고 관련 진행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여 방송 주관 부서에 보고해 '계정'이나 플랫폼을 변경하여 다시 방송하는 일을 방지한다.

바. 온라인 라이브공연 플랫폼은 온라인 진행자와 보상(打赏, 온라인 팁) 이용자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미성년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실명 검증, 안면인식, 수동 검토를 통해 실명제 요구가 이행되도록 하고, 미성년 사용자의 보상 기능을 금지한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최고 보상 금액을 매회, 일일, 월별로 제한해야 한다. 사용자가 일일 혹은 월간 누적된 "보상"액이 한도의 절반에 도달할 때 플랫폼에서 반드시 소비 알림을 제공해야 하며, 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 후 다음 단계의 소비를 할 수 있다. "보상"액이 일일 혹은 월간 한도에 도달하면,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보상" 기능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플랫폼은 청구 기한까지 보상 지연을 설정해야 하며, 진행자가 위법 행위를 하면, "보상"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플랫폼은 사용자의 비이성적인 "보상"을 장려하는 운영 전략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진행자와 그 매니저가 저속한 내용을 유포하고, 조직적인 과대광고,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선물 쓰기 등의 수법으로 이용자에게 거액의 '보상'을 암시·유혹하거나, 미성년사용자를 허위 신분 정보로 '보상'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플랫폼은 진행자와 매니저를 처벌하고, 관심 명단에 포함하고, 방송 주관 부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사.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를 엄격히 전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범위를 벗어나 상품 판매와 무관한 논평류 등의 시청각 프로그램을 규정을 어겨 제작·방송해서는 안 된다. 라이브 방송실, 생방송 공연, 생방송 예능 및 기타 생방송 프로그램 형태로 방송 비즈니스 데이, 판촉일 등 테마별 전자상

거래가 진행되며,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활동 14일 전에 방송 출연자, 진행자, 콘텐츠, 설치 등의 정보를 방송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빈곤퇴치, 산업 업그레이드와 수급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주제로 한 전자상거래 활동을 조직하도록 권장한다.

아.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라이브 방송 상품 판매를 개설한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관련 자격 심사와 실명 인증을 시행하고, 심사 및 인증 기록을 완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무자격·무실명·등록을 사칭하는 사업자나 개인을 위해 라이브 방송 상품 판매 상거래 서비스를 열어주는 안 된다. 플랫폼은 관련 정보의 진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프리미엄 라이브 방송실, 인기 진행자와 해당 계정, 전송량이 많거나 혹은 거래량이 많은 생방송 판매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규격 준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실시간 동태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상, 별, 퇴출, 금지의 방법을 설정하며, 데이터 조작을 선별하고 방지하는 능력을 높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 온라인 생중계와 온라인 생중계 플랫폼을 개설할 때 빅데이터, 인공지능(AD) 등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방송 프로그램을 선도해야 하고, 알고리즘이 양질의 시청 콘텐츠 제공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불법 불량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시 차단을 실현해야 한다. 높은 조회 수, 과장된 거래량, 큰 ‘보상’ 금액, 문제가 생기기 쉬운 분야의 생방송에 대해서는, 사람과 기기를 함께 활용해 감시하는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의 동태를 추적하며, 여론과 원인을 분석하고, 제때 조치를 해, 오류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급 방송국의 주관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쇼 생방송, 전자상거래 중계 업무를 하는 플랫폼의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본 통지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연 생방송, 라이브커머스 업무 전반에 대해 정리, 분석 및 검토하여 사전 심사의 요구에 맞지 않는 생방송 콘텐츠를 정리·정비해야 한다. 규정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관련 플랫폼을 감독하고 생방송 콘텐츠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심사하는 제도를 수립하며 라이브 방송실, 진행자, 심사위원 수의 보고, 보상 통제 등의 관리 메커니즘을 정비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생방송 업무의 요건과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플랫폼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합동하여 생방송을 중단시킨다. 이 사업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 등록 및 검증 실태와 관리 규정 작업의 성과를 종합 보고하고 중요 상황은 수시로 보고한다.

담당자 : 쟁원(郑雯), 창펑썬(昌朋森)

전화 : 86096146 86096573

이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국가라디오TV총국

2020년 11월 12일

13.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 임시 시행규정

제목	歌舞娱乐场所卡拉OK音乐内容管理暂行规定
제재일	2021-07-26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화관광부의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의 임시 시행 규정> 배부에 관한 통지 문여시장발〔2021〕7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과 관광국: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면서 오락시설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의 임시 시행 규정>을 제정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란다.

문화관광부

2021년 7월 26일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의 임시 시행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국가의 문화 안전과 이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법>, <가무오락시설 관리 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란 오락시설 노래 신청 시스템 플레이의 곡목, 스크린 화면 등을 말한다.
- 제3조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가 오락시설에 건강하고 진취적인 노래방 음악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가무오락시설 노래 신청 시스템에 좋은 노래 전용코너를 설치하여 주요 사상을 선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도록 장려한다.
- 제4조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전국 및 지방 문화오락업협회가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의 자율 규범 및 감독 실시 업무를 제정한다.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공급업체, 오락시설가 가무오락시설·노래방 음악 콘텐츠의 자체 심사 등 업무를 책임진다.
- 제5조 문화관광부가 전국 노래방 음악 콘텐츠 심사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전국 노래방 음악의 규정 위반 곡목 리스트제도를 만든다.

제2장 콘텐츠 자체 심사

제6조 오락시설에서 재생하는 노래방 음악은 <오락장소 관리 조례> 제13조의 금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1) 헌법이 확정된 기본 원칙을 위반한 내용
- (2) 국가 통일, 주권 혹은 영유권을 해치는 내용
- (3)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혹은 국가 영예, 이익을 해치는 내용
- (4) 민족 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혹은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통합을 파괴하는 내용
- (5) 국가 종교정책을 위반하고 사이비 종교, 미신을 홍보하는 내용
- (6) 음란, 도박, 폭력 및 마약과 관련된 위법 범죄 활동을 선양하거나 혹은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7) 사회公德 혹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배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고 타인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7조 오락시설은 출처가 합법적인 노래방 음악을 사용해야 하고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래방 음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는 오락시설에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노래방 음악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의 노래방 음악 콘텐츠 자체 심사 매커니즘 구축을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노래방 음악의 곡목, 스크린 화면 등 콘텐츠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노래방 음악의 출처와 내용이 합법적임을 보장한다.

제9조 전국 문화오락업협회가 전국 노래방 음악 콘텐츠의 자체 심사 규범을 제정하여 업계의 콘텐츠 자체 심사 업무 진행을 위해 전문가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 리스트 관리

제10조 지방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오락시설에서 재생하는 노래방 음악에 <오락장소 관리 조례> 제13조의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경우 상세한 상황을 문화관광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가 자체 심사 과정에서 노래방 음악에 법률법규의 금지 내용이 있다는 혐의를 발견할 경우 전국 문화오락업협회를 통해 상세한 상황을 문화관광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지방 문화관광 행정부처 및 전국 문화오락업협회가 상부에 보고한 노래방 음악은 전국 노래방 음악 콘텐츠 심사 전문가 그룹의 심사를 거쳐 법률법규의 금지 내용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문화관광부가 전국 노래방 음악 규정 위반 곡목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제13조 지방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오락시설에서 재생하는 노래방 음악에 대해 법률법규의 금지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문화관광부에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관광부는 전국 노래방 음악 콘텐츠 심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노래방 음악에 대한 인정을 진행하고 관련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는 전국 노래방 음악의 규정 위반 곡목 리스트에 포함

된 노래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오락시설은 전국 노래방 음악의 규정 위반 곡목 리스트에 포함된 음악 상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전국 문화오락업협회는 업계가 콘텐츠 자율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 오락시설가 적시에 법률법규의 금지 내용이 있는 음악상품을 삭제하도록 알려주고 업계 주무부처가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팀은 전국 노래방 음악의 규정 위반 곡목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오락시설에 대한 검사와 랜덤 검사를 강화하고 법률법규의 금지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가 오락시설에 제공한 노래방 음악에 법률법규의 금지 내용이 있다고 발견했을 경우 상담 약속 등 행정 지도 방식을 통해 경고, 제지할 수 있다. 오락시설에 이미 전국 노래방 규정 위반 곡목 리스트에 포함된 노래방 음악을 제공한 것을 발견할 경우 사회에 해당 노래 신청 시스템 콘텐츠 제공업체의 명칭, 규정 위반 곡목 등 정보를 공개하고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19조 코인 노래방 노래방 음악 콘텐츠 관리는 오락시설 콘텐츠 관리를 참조한다.

제20조 본 규정의 해석은 문화관광부에게 책임이 있으며, 2021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14.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 관리방법

제목	网络表演经纪机构管理办法
게재일	2021-08-30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화여유부의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문여시장發〔2021〕9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온라인 문화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연 질서를 규범화하며,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연예계의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 부서는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배포하니,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매니저 자격 인정업무에 따라 《온라인 공연경영법》 시행 전에 이미 온라인 공연 매니저 활동을 한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이번 법이 시행 후 18개월의 유예기간 내 매니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내에 매니저 자격이 없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여유부

2021년 8월 30일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 관리 방법

제1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의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공연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며, 온라인 공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시행세칙」 「인터넷 문화관리 잠행 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가리킨다.

- (1) 온라인 공연의 조직, 제작, 마케팅 등의 경영 활동
- (2) 온라인 공연자의 계약, 홍보, 대행 등의 관리 활동

제3조 온라인 매니지먼트사는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유도하여 인민대중의 문화생활을 지속해서 풍부하게 해야 한다.

제4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공연경영 활동을 할 때 법에 의거 영업 공연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신청할 때,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시행세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 영업성 공연 허가 신청 요건, 신청 서류와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는 반드시 자신의 회사가 전개하는 온라인 공연 경영 활동에 대해 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플랫폼 내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

제6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온라인 공연자에게 온라인 공연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면접·영상통화 등을 통해 온라인 공연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온라인 공연자의 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공연자에게 공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해 쌍방의 권리 의무를 약정하며, 온라인 공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한 공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위한 공연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에게 의견을 구할 때는 보호자에게 온라인 공연자의 권리·의무·책임·위약 조항을 설명하고 관련 교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계약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법규와 직업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온라인 공연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금지 내용과 행위를 명확히 하며, 공연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공연자를 올바른 직업윤리로 인도해야 한다.

제9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영업적 공연관리 조례> 25조, <온라인 공연 경영 활동 관리법> 6조가 금지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공연을 구성·제작·마케팅할 수 없다.

제10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공연 계약자가 제공한 공연에 대해 위법성이 발견되면 공연자에게 공연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매니지먼트사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허위 소비, 선도 보상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공연 생방송 플랫폼에서의 이용자의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보상 순위, 허위 홍보 등의 방법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계약한 공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자극적인 언어, 부당한 특혜, 사례비 약속, 오프라인 접촉 및 교제를 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공연 생방송 플랫폼에서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온라인 공연 계약자의 위법 사항 처리 결과, 민원, 신고 처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때에 따라 서비스 제한, 제휴 정지, 업계협회의 제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사칭해 계약하면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가 업계협회에 제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관련 부처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3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온라인 공연 경영 활동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업무상 요구를 충족하는 온라인 공연 중 매니저를 배치해야 한다. 온라인 공연 매니저와 계약한 온라인 공연자 수 비율은 원칙적으로 1대 100 미만이어야 한다.

온라인 공연 매니저는 공연 매니저 활동에 종사할 때,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공연 매니저사는 업종의 자율을 강화, 업종 기준과 경영규범 제정, 업종 교육, 청렴 교육 강화하고, 신용을 상실한 명단에 들어있는 회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회원의 자격을 취소시키며, 공동 제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이 법 제4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문화관광부서가 《영업성 공연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라 단속한다.

제17조 온라인 공연매니지먼트사는 온라인 공연경영 활동 이외의 관리 활동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5. 공연 매니지먼트 규범화와 연예인 관리 강화, 공연시장 질서 확립 발전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规范演出经纪行为加强演员管理促进演出市场健康有序发展的通知
게재일	2021-09-29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문화여유부의 공연 매니지먼트 규범화와 연예인 관리 강화, 공연시장 질서 확립 발전에 관한 통지 문여시장發〔2021〕10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과 관광국:

공연 매니지먼트는 공연 시장의 중요한 주체로서 공연의 자원 배치 최적화, 공연 상품 공급의 다양화, 공연시장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동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나타난 연예인의 불법과 윤리 도덕 상실, ‘팬덤’의 무질서 등 문제점은 업계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사회 기풍을 해치고 공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기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의 반응이 아주 강렬하다. 공연 매니지먼트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연예인 관리를 확실히 강화하고 공연시장의 질서 확립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엄격한 공연 자격 관리

- (1) 연예인 계약, 홍보, 대행 등 공연 매니지먼트 활동에 종사하는 공연 매니지먼트, 작업실은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및 그 실시 세칙의 공연 매니지먼트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따르면서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영업성 공연 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 (2) 공연 매니저 자격 인정제도를 엄격히 수행하고 연예인 계약, 홍보, 대행 등 공연 매니지먼트 활동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공연 매니저 자격 인정시험에 통과하여 공연 매니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 (3)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예인 계약, 홍보, 대행 등 업무를 취급하는 경영업체는 문화관광 행정부처에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4) 공연 매니저가 업무 활동에서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25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공연을 위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연예인에게 법을 위반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를 중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문화관광 행정부처에서 그의 자격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2. 연예인의 업무 행위 규범화

- (5) 연예인은 스스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민심을 모으고 신인을 육성하며, 문화를 부흥시키고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사명과 임무를 짊어져야 하고 품위, 품격, 책임을 강조하면서 끊임 없이 사상 도덕 수양, 직업 윤리 소양과 인문 예술 함양을 높이고 도덕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문화 예술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6) 연예인 매니지먼트, 작업실은 연예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인 관리 책임을 담당하면서 정치 소양, 도덕 품행을 연예인 채용과 육성의 중요한 표준으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교

육을 시켜 연예인의 준법 의식과 도덕 수양을 높여야 한다. 연예인 자율과 자아검사 업무제도를 수립하여 연예인의 업무 행위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리스크를 찾아내어 적시에 시정하도록 독촉한다.

- (7) 연예인 매니지먼트 종사자는 연예인에 대한 교육, 주의 환기를 강화해야 하고 연예인이 불법률 레드라인을 두려워하고 윤리 커트라인을 엄격히 지키고 직업윤리를 높이면서 숭덕상예(崇德尚藝:도덕과 예술을 숭상하다), 견현사재(見賢思齊:어진 이를 보면 것처럼 되길 생각하라)의 좋은 풍기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 (8) 미성년자 계약, 홍보, 대행 등 공연 매니지먼트 활동에 종사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작업실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그의 규정 연한의 의무 교육을 받고 완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연예인 연습생’ 모집 등 명의로 미성년자에게 ‘유명해지려면 일찍 시작해야 한다’ 등 잘못된 관념을 주입시켜 미성년자의 가치관을 오도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 공연 활동 감독관리 강화

- (9)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등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 활동의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위배, 사회 공덕 혹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 훼손, 공공질서와 양호한 풍속 위반, 기형적인 심미 등의 행위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올바른 심미 유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10) 공연 매니지먼트업체가 영업성 공연 활동을 개최할 경우 전문 공연 매니저가 공연 활동의 조율과 연락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협조하여 업계 감독관리를 잘하고 법에 의거하여 납세 및 유관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 관련 영업성 공연 활동을 하려면 외사, 공안 등 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일상 관리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 (11) 공연 활동에는 아주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친 법을 위반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연예인을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25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도형, 화면, 오디오, 동영상과 문자 등을 사용하여 공연 홍보, 티켓 판매와 공연 장소 배치 등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립싱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립싱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공연은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2) 연예인이 무단으로 공연 내용 혹은 연기 내용, 연기 행위를 변경하여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44조,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 개최업체 및 해당 연예인을 계약한 공연 매니지먼트에 대해 처벌을 내린다.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25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도형, 화면, 오디오, 동영상과 문자 등을 사용하여 공연 홍보, 티켓 판매와 공연 장소 배치 등 활동을 했을 경우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 개최업체에 대해 처벌을 내린다. 립싱크로 관객을 속이거나 혹은 출연자에게 립싱크 조건을 제공했을 경우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 주최업체와 출연자를 처벌한다.

4. 긍정적 팬 행위 유도

- (13)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작업실은 팬의 응원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팬클럽

위임, 후원회 온라인 계정의 콘텐츠에 대한 감독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온라인 공공질서와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팬덤에 대해 연예인이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 (14) 공연 주최업체는 공연 장소 관리를 잘해야 하고 공연 장소 질서를 유지하고 공연장 장외 응원, 선물 응원, 순위를 위한 투표 등 팬의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자를 응원 집회 등 활동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미성년자가 정상적인 공연 관람 이외의 응원 소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5. 건전한 공연 생태계 공동 구축

- (15) 민족 특색과 국가 수준을 구현한 우수한 공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각 지역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공연성 공연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의 유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면서 더 많은 사상이 심오하고, 예술 조예가 깊고, 제작 완성도가 높은 명품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한다.
- (16)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성 공연시장 주체 및 종사자를 문화시장 신용불량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신용 징계를 해야 한다.
- (17)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작업실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하고 영업성 공연의 일상 순찰을 잘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해야 한다.
- (18) 업계협회는 공연 매니지먼트 및 종사자의 자율과 규범화를 완비하고 리스크 모니터링 연구 판단 매커니즘과 규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을 위반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연예인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아주 나쁜 사회 영향을 미친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작업실 및 연예인에 대해 자율 징계와 보이콧을 실시해야 한다.
- (19)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 업계협회는 노밀화 교육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종사자의 사상정치, 법률법규, 직업윤리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종사자의 종합 자질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 번영과 질서가 있는 공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2021년 9월 29일

16. <공연 기획자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목	演出经纪人员管理办法
게재일	2021-12-24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여유청(국),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문화체육광전여유국:

공연 기획 인력을 양성하고 공연 기획자의 관리를 강화하며 공연 시장의 번영과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문화여유부에서는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연 기획자 관리 방법>을 수정해 배포하니, 실무와 결합하여 성실히 이행하기 바라며, 이에 통지한다.

문화여유부

2021년 12월 13일

공연 기획자 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공연 기획 인력을 양성하고 공연 기획자 관리를 강화하며, 공연 기획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연 기획 업무를 규범화해 공연 시장의 번영과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와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실행 세칙(营业性演出管理条例实施细则)> 및 국가 직업 자격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공연 기획자는 개인 공연 기획자와 공연 기획사에 소속된 공연 기획자를 포함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공연 기획 활동은 공연 기획 및 제작, 마케팅과 공연 중개, 대행, 대리 및 공연 출연자의 계약, 홍보, 대행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 국가는 공연 기획자의 직업 자격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공연 기획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연 기획자 자격 인정 시험을 통과해 공연 기획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5조 문화여유부는 공연 기획자의 자격 인정 및 실무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한다. 현(縣)급 이상 지역의 문화여유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공연 기획자의 실무 활동에 대

해 관리 감독을 시행한다.

제6조 공연 기획사는 공연 기획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해 종합적인 자질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7조 공연 기획자는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사상을 발전시키고 품성과 소양을 기르며, 업무 능력을 키우고 공연 업계의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제8조 공연 산업 단체는 법에 따라 공연 기획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야 하며, 자율적으로 규범을 제정해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2장 자격 인정

제9조 공연 기획자의 자격 인정 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매년 1회 시행한다. 문화체육부 조직은 시험 요강과 시험 과목, 시험 문제를 마련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한편, 시험 합격 기준을 확정한다. 현급 이상 지역의 문화체육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 지역의 시험이 질서 있게 시행되도록 책임진다.

제10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공연 기획자 자격 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
-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치적 소양과 업무 능력 및 도덕적 품행이 양호한 자
- (3) 고등학교나 중등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4) 만 18세 이상으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

제11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 기획자 자격 인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시험 규율 위반, 시험 질서 교란 등의 이유로 시험 자격이 취소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자
- (2)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및 그 시행 세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 시장의 신용 상실 주체로 확정된 자

제12조 문화체육부는 공연 기획자 자격 인정 시험이 끝난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한다.

제13조 공연 기획자 자격증은 문화체육부에서 발급하며, 전국이 동일한 양식으로 통일된 체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4조 문화체육부는 공연 기획자의 자격증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공연 기획자 자격 인정 시험을 통과한 자는 합격 커트라인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 문화 시장 기

관리 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연 기획자 자격증을 수령한다. 개인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변동 후 3개월 이내에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3장 업무 규범

제15조 공연 기획자는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와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실행 세칙> 및 관련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공연 기획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2곳 이상의 공연 기획사에서 일하는 행위
- (2) 공연 기획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대여해 주는 행위
- (3)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제25조에 제시된 금지된 내용의 공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4) 공연 기획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 (5) 공연 활동에 대해 허위 선전을 하는 행위
- (6) 기타 공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17조 공연 기획자는 공연 기획 활동 시에 법에 따라 공연 출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공연 출연자가 법률과 법규를 지키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상기시키고 독려해야 한다.

제18조 공연 기획자는 정기적으로 상응하는 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 내용과 규정은 문화체육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9조 공연 기획자가 업무 활동 중 본 방법의 제16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체육 행정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엄중한 사안일 경우 법률에 따라 문화 시장의 신용 상실 주체로 확정하고 공동으로 징계한다.

제20조 문화체육부는 공연 기획 활동의 특성을 살려 공연 기획자의 등급 및 등급별 관리 세칙을 정해 업계의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제21조 현금 이상 문화체육 행정 부서는 공연 기획자 인력 양성에 힘써,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며 신용 감독을 강화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영주권자 중 중국 공민과 타이완 지역의 거주자가 공연 기획자 인정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23조 본 방법은 문화체육부에서 해석을 맡는다.

제24조 본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문화체육부의 ‘공연 기획자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문시발[2012]48호)는 폐지된다.

17. 토크쇼 공연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의서

제목	促进脱口秀演出市场规范发展倡议书
제재일	2022-12-11
출처	국가공연산업협회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토크쇼 공연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의서

스탠드업 코미디라고도 하는 토크쇼¹⁰⁷⁾는 새로운 방식의 코미디로 중국에서는 1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 <토크쇼 대회(脱口秀大会)>의 지속적인 인기와 더불어 토크쇼 문화가 중국 내에 보급되고, 중국 각지의 클럽 수가 두 배로 증가하면서 토크쇼는 일정한 규모의 관객층을 갖추게 되었고, 토크쇼 종사자와 참여자, 애호가들을 흡수하면서 코미디 공연의 한 형식에서 새로운 시장을 갖춘 업종으로 발전하였다. 1차적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토크쇼 오프라인 공연 관객은 350만 명 이상이며 관람 수익이 약 4억 위안에 육박할 정도로, 토크쇼라는 업종은 이미 중국 내 공연시장에서 주요한 새 역량으로 자리매김했다.

토크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업계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쇼 산업은 보다 규범을 갖춰 발전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토크쇼 업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공연산업협회(中国演出行业协会) 주도하에, 협회 회원 중 토크쇼 공연 사업에 종사하는 ‘샤오궈원화(笑果文化)’, ‘단리런시취(单立人喜剧)’ 등 13개 코미디 클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 문화적 책임과 직업적 사명을 새긴다. 토크쇼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책임감을 안고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진보적인 문예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각 코미디 클럽은 업계의 질 높은 발전을 주도하는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우수한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
2. 콘텐츠의 독창성 보호를 중시한다. 토크쇼의 콘텐츠는 반드시 독자적인 창작품이어야 한다. 토크쇼는 탄생 초기부터 독자 창작을 핵심으로 하였다. 독자적인 창작을 고수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표절이나 아이디어 차용, 원고 세탁¹⁰⁸⁾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3. 무대 상연의 기준을 확립한다. 토크쇼 출연자가 상업적인 공연을 할 때의 상연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토크쇼 출연자가 자신의 예술적 수준이나 종합적인 소양을 높이고, 업계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공연을 지양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근절하도록 한다.
4. 코미디 인재를 발굴 및 배양한다. ‘오픈 마이크¹⁰⁹⁾’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관객의 출처와

107) 토크쇼(脱口秀): 중국에서의 토크쇼는 스탠드업 코미디와 유사한 의미로, 한 사람이 관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간단한 재주를 펼치는 장르임

108) 원고 세탁(洗稿): 표절 혐의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콘텐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두되 글을 짜깁기하고 새로 쓰는 것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오픈 마이크’는 토크쇼 무대를 향한 첫걸음으로 신인 배우와 토크쇼 애호가들에게 더 많은 무대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오픈 마이크’ 행사를 해야만 토크쇼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효과적으로 마련된다.

5. 토크쇼 인재 육성 시장을 규범화한다. 토크쇼 신인 양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전문화된 육성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신인 선발 및 육성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의 전문적인 소양과 직업윤리 소양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업무 능력 훈련은 신인 배양 및 훈련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공연 운영을 표준화한다. 각 코미디 클럽은 토크쇼 공연의 생산 및 운영 주체로서, 공연 운영을 엄격히 표준화해야 하며, <상업성 공연관리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의 관련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상업성 공연 콘텐츠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인 공연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관리해야 한다.

7. 질 좋은 공연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적인 무대와 조명, 음향은 훌륭한 콘텐츠를 더 부각시키고, 관중들이 오프라인 토크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토크쇼 전문 극장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공연자와 관객에게 더 좋은 공연 및 관람 환경을 제공해, 양측 모두가 전문적인 환경에서 우수한 공연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8. 공연시장의 질서를 지킨다. 토크쇼 공연시장에 보이는 저가 손님 끌기, 좋은 평을 올리면 초대권 주기, 영양가 없는 시간 늘리기, 박리다매 등의 현상은 토크쇼 공연시장의 평판에 영향을 주고 토크쇼 공연자의 성장을 저해한다. 공연 주최 측은 콘텐츠의 질을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한편, 경제적인 이익만 좇느라 코미디 예술의 미학을 잃어버린 공연은 배제하여 토크쇼 공연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

시장의 규범화된 발전은 업계 동료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는 뜻이 같이하는 토크쇼 관련 업체와 공연 주최자가 더 많이 제안에 응해, 업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 전진하면서, 마지노선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여 업계의 발전을 돕는다면, 토크쇼가 더 많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토크쇼 공연시장이 끊임없이 번영하고 발전하리라 믿는다.

제안 발기 업체 (순서 없음)

상하이 샤오귀 연예 그룹 유한 공사(上海笑果演艺集团有限公司)
베이징 단리런 문화 전매 유한 공사(北京单立人文化传媒有限公司)
후난 샤오마 문화 전매 유한 공사(湖南笑嘛文化传媒有限公司)
우한 카이판 문화 전매 유한 공사(武汉开饭文化传媒有限公司)
샤먼 웨이라이핑 문화 전매 유한 공사(厦门未来疯文化传媒有限公司)
지난 니러 문화 전매 유한 공사(济南泥乐文化传媒有限公司)

109) 오픈 마이크(开放麦):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본 무대 전이나 후에 신인이나 일반인이 자기 무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습 무대

충칭 샤오바 문화 전매 유한 공사(重庆笑吧文化传媒有限公司)
원난 모런 문화 전매 유한 책임 공사(云南摩人文化传媒有限公司)
다평텐시취 (선양) 문화 오락 유한 공사(大风天喜剧(沈阳)文化娱乐有限公司)
칭두 귀짜이 문화 전파 유한 공사(成都过载文化传播有限公司)
푸저우 푸즈쉬 문화 전매 유한 공사(福州福之说文化传媒有限公司)
시안 커러 문화 전매 유한 공사(西安可乐文化传媒有限公司)
카미디 문화 전매 (난징) 유한 책임 공사(卡米地文化传媒(南京)有限责任公司)

18. 홍콩, 마카오, 대만의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优化涉港澳台营业性演出管理政策的通知
게재일	2023-01-16
출처	문화여유부 시장관리사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홍콩, 마카오, 대만의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여유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여유국

국무원 합동방역체 종합팀(国务院联防联控机制综合组)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고,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공연 시장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을류을관(乙类乙管, 2급 전염병에 대한 2급 관리)’ 실시에 관한 총체적 방안>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간의 인적 교류 개선 조치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각 지역의 문화여유행정부서는 2023년 2월 16일부터 홍콩, 마카오, 대만 상업성 공연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단, 국외 상업성 공연 활동에 대한 신규 승인은 보류한다(공연 연출, 출연진, 스태프 등이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 제외)

각 지역은 상업성 공연에 대한 심사와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공연 주최자에게 ‘을류을관’(乙类乙管: 2급 전염병에 대한 2급 관리 조치)’ 이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공연 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여유부 시장관리사

2023년 1월 16일

19. 국외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优化涉外营业性演出管理政策的通知
게재일	2023-03-16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국외 상업성 공연 관리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여유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여유국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공연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지역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국무원 합동방역체의 관련 작업 요구사항에 따라 2023년 3월 20일부터 국외 상업성 공연의 접수 및 심사를 재개한다.

모든 지역은 상업성 공연 활동에 대한 심사 및 점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공연 주최자가 ‘을류을관(乙类乙管, 2급 전염병에 대한 2급 관리)’ 후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하며, 공연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인민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여유부 시장관리사

2023년 3월 16일

20. 공연시장 관리규범 및 질서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演出市场管理规范演出市场秩序的通知
게재일	2023-04-26
출처	문화체육부 판공청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공연시장 관리규범 및 질서 강화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체육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여유국

최근 공연시장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공연 활동이 크게 증가하며 문화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개별 공연 활동에서 현장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일부 인기공연에서는 티켓 판매 압표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연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연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공연시장 질서를 표준화하며, 소비 촉진과 성장 안정에 있어 공연시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문화시장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첫째, 공연시장 접근 시스템을 엄격하게 구현한다.

지방문화체육행정부서는 ‘상업공연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공연단체 및 공연 중개 기관에 대한 행정허가를 시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연장 운영 단위를 등록하여 관련 자격과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업계 감독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한다.

둘째, 공연 활동의 승인 및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지방문화체육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공연 활동의 심사 비준 업무를 담당하며 상업공연 범주에 속하는 농촌 마을 공연과 이동 공연을 심사비준관리에 포함시키고 공연 주최자의 ‘상업공연 허가증’, ‘공연장소 등록 증명서’ 등 자격 서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요구사항을 통일하며 내용 감독을 잘 수행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연 활동에 안전, 화재 예방 등 기타 승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공연 주최자가 공연 전에 관련 승인문서를 확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법적 승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승인은 단호히 거부된다.

셋째, 공연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문화체육행정부서는 공연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연장의 소방안전시설 검사기록, 안전 및 보안 프로그램, 화재진압, 비상대피계획 및 기타 자료를 확인하고, 공연장이 정기적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공연장이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공연장에 입장하는 관객에게 필요한 안전 검사를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물 또는 통제 장비를 공연장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연장을 감독하여 현장 순찰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공연 활동을 순찰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현장 관객 관리를 잘 수행하며, 혼잡, 압사 및 기타 사고를 단호히 방지하고, 공연장의 안전을 보장한다.

넷째, 대규모 공연 활동에 대한 현장 감독 강화에 중점을 둔다.

무대, 스탠드를 임시로 설치한 콘서트, 음악축제 등 대규모 공연 활동의 경우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공연 현장을 감독하고 공연 주최자의 공연승인서류 및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배우 정보 및 공연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 및 공연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립싱크, 핸드싱크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함에 있어公安부서와 협력하고, 공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공연 티켓 시장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제한다.

지방 문화여유행정부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티켓 수급이 빠빠한 상업 공연을 주요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공연 주최자 및 공연 티켓 운영자가 시장에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상업 공연의 티켓 수량은 승인된 관객 수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티켓 판매 과정에서 티켓 투기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 주최자 및 공연 티켓 운영자와 즉시 면담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公安, 시장감독 등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티켓 투기, 허위 선전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공연 주최자의 주요 책임을 통합한다.

공연 주최자는 공연시장의 제작 안전을 책임지는 첫 번째 책임자로서 지방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공연 주최자가 공연 내용, 티켓 운영, 배우 조직, 현장 관리 등 전 과정을 통제하고 업계의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곡예 공연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공연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공연 주최자가 배우 및 현장 관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우 안전 보험에 가입하며 현장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주요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일곱째, 상업공연시장의 법 집행과 사건 처리를 강화한다.

지방 문화여유행정부서와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불법 상업공연 활동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여 무단으로 상업공연 운영 활동을 하거나 무단으로 상업공연 활동을 개척하고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연 내용의 무단 변경, 립싱크, 핸드싱크, 금지된 공연 내용의 조사 및 처벌에 초점을 맞춰 상업공연 활동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인기 상업공연 활동의 티켓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연 중개 기관의 의무 불이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한다. 상업공연 시장에서 대표적인 법 집행 사례를 적시에 공개하고 법률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억제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여유부판공청

2023년 4월 21일

21.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의 규범관리 강화를 통한 공연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大型营业性演出活动规范管理促进演出市场健康有序发展的通知
게재일	2023-09-13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음악/공연 정책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의 규범관리 강화를 통한 공연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여유청(국), 공안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광전여유국, 공안국

최근 공연시장의 빠른 회복과 발전으로 콘서트, 음악축제 등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암표 거래, 비이성적 팬활동, 비매너 공연 관람 등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관객 5,000명 이상의 대형 상업성 공연 활동(이하 '대규모 공연 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공연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통지한다.

1. 명확한 운영원칙

- (1) 대규모 공연 활동은 인민과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사회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통합을 실현하며 인민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 (2) '개최하는 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공연 주최자는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수립 및 구현하며 안전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위험 평가 및 비상 대응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 및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연 주최자는 법에 따라 공연 승인 절차를 밟고, 공연 프로그램의 내용을 준비하며, 공연 티켓팅 및 현장 관리를 책임지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관객을 잘 안내하고, 여론 동태를 파악하여, 적시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수용하며 주도적으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3) 문화여유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은 관할 지역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대규모 공연 활동의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여 대규모 공연 활동이 원활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엄격한 승인 관리

- (4) 성급 문화여유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대규모 공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대규모 공연 활동을 승인하기 전에 성급 문화여유행정부서와 관할 공

안기관의 위험성 평가와 종합적인 연구 및 판단을 거쳐야 한다.

- (5)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공연 주최자가 대규모 공연행사 개최를 신청하기 전에 티켓판매, 현장 관리, 온라인 여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최 신청 시 제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 (6) 성급 문화여유행정부서와 관할 공안기관은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공연 주최자는 위험성 자체평가를 시행할 때 사람, 사물, 장소와 같은 전통적인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온라인 인기, 여론 반응, 네티즌 평가 등 온라인 기능을 평가 범위에 통합하여 온·오프라인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7) 성급 문화여유행정부서와 관할 공안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공연 활동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연 활동의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3. 티켓 관리 강화

- (8) 대규모 공연 활동은 티켓 실명 구매 및 실명 입장제를 실시하여, 공연마다 1인당 한 장의 티켓만 구매가 가능하며, 티켓을 구매한 사람과 실제 공연에 입장하는 사람의 신분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공연 주최자와 공연 티켓판매 플랫폼은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무단 액세스 및 개인 정보 유출, 변조 및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 (9) 공연 주최자는 대규모 공연 활동에 대한 티켓 환불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티켓 구매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10) 대규모 공연 활동의 티켓판매 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연 주최자가 시장에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티켓 수량은 승인된 전체 관객 수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15%의 티켓 역시 공연 시작 24시간 전에 개인 정보를 연동해 실명 입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11) 공연 주최자는 공식 티켓 판매 대행 기관을 명시해 소비자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티켓 구매, 입장 및 환불 규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2)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공연 주최자와 공연 티켓판매 플랫폼이 대규모 공연 활동의 티켓정보(공연의 명칭, 공연시간, 공연횟수, 티켓 수량, 티켓판매방안, 티켓판매 수입 등 정보 포함)를 국가문화시장 기술관리감독서비스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감독하고 대규모 공연 활동의 티켓 정보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13) 문화여유행정부서와 공안기관은 대규모 공연 활동 주최자와 공연장에 대한 업무용 티켓 관리를 강화하고 발급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며, 업무용 티켓이 시장에 유입되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공연장 관리 강화

- (14) 문화여유시장관리부서와 종합 법 집행 기관은 대규모 공연 활동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배우 정보 및 공연 프로그램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배우 및 공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립싱크, 핸드싱크 등 기타 불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15) 공안기관은 대규모 공연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공연 주최자가 사전 안전평가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안전 작업 계획 수립 및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며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 차량, 물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충분한 보안 인력을 갖춰 비상 대응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안전 작업 실시상황을 감독하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위법범죄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고 긴급상황을 처리한다.
- (16) 공연 주최자는 문화여유행정부서 및 공안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공연장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요구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17)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공연 티켓판매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티켓판매 사업자의 자격 및 공연 승인서류 미확인, 티켓 재판매 서비스 제공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18) 공안기관은 공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투기성 티켓판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며 티켓 가격의 인상, 투기 단서를 적시에 발견하고 온·오프라인 티켓 재판매 및 사기 등 불법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 (19)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트래픽 조작, 유언비어 유포, 사생활 침해, 집단 소란, 난동 등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는다.
- (20) 공안기관은 대규모 공연 활동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공연 주최자와 공연장 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대중공연 활동을 개최해 행사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대규모 대중활동 안전관리조례(大型群众性活动安全管理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6. 관객의 매너 있는 관람 유도

- (21) 공안기관은 공연 주최자에게 입장 보안 검사를 잘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관객이 정상적인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객이 매너있게 공연을 관람하도록 장

려한다. 또한, 공연 주최자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비매너 공연 행위를 적시에 중단하여 공연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22)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와 관련 연예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배우 교육 및 계몽을 강화하여 배우가 법적 레드라인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도덕적 마지노선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배우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관객이 공연장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며 공연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도록 독려한다.

7. 신용 감독 강화

- (23) 문화여유행정부서는 <문화여유시장 신용관리에 관한 규정(文化和旅游市场信用管理规定)>에 따라 대규모 공연 활동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티켓 판매 수량이 전체의 85% 미만이거나 티켓을 암거래하거나 공연 업무용 티켓을 매매한 공연 주최자 및 티켓판매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문화여유시장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로 간주한다.
- (24) 문화여유행정부서와公安기관은 신뢰할 수 없는 주체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주체의 상업성 공연, 대규모 대중활동 등의 행정허가 신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포상 및 칭호 부여에 있어 중점을 두어 심사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여유부 公安부

2023년 9월 12일

□ 종합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1	2002.08.02	2002.09.15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외국인 창작작품이 중국에서 음향제품으로 제작 발표 시 중국 저작권 보호를 받음
2	2005.07.06	2005.07.6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허용 조건 등
3	2007.12.29	2008.01.31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에 대한 규정. 해당업종의 종사자가 갖춰야할 허가증 및 신청 등
4	2009.11.25	2010.03.01	국무원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외국 투자 통신 기업의 등록 자본 규정. 부가가치 통신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 투자 통신 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 필요조건, 부가가치 통신사업을 진행하는 외국투자 통신 기업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위반 벌금 등의 관리 방법
5	2010.02.26	2010.04.01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국 내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기본 법률(2021년 개정)
6	2010.04.08	2010.04.08	9개 부서/위원회 연합문건	문화산업 진흥 발전에 금융지원 지도의견	중앙과 지방 재정부처는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마련한 특별자금 등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문화기업에게 대출이자 할인과 보험금 보조 등 혜택을 부여. 금융자본의 합법적인 참여 장려
7	2014.03.14	2014.03.14	국무원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1.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등 신형 고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 2. 해외 고급 인재 유치
8	2014.03.17	2014.03.17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1. 문화기업의 해외 M&A,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2. 문화 무역 투자의 외환 관리와 결산 편리화를 추진 3. 금융기관에서 해외 문화기업에 융자를 제공하는 규정을 보완
9	2014.07.11	2014.07.11	문화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10	2015.06.11	2015.06.11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 보안공실 공안부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 '검망 2015' 특별 단속 진행에 관한 통지	4 개 부처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행위 공동 대응
11	2015.07.02	2015.07.02	문화부	'선조후증' 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행정심사 과정 개선
12	2016.02.29	2016.02.29	문화부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신규 버전 사용에 관한 통지
13	2016.06.20	2016.06.20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14	2016.09.18	2016.09.18	문화부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15	2016.03.30	2016.07.01	재정부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방법
16	2016.11.10	2016.11.10	재정부, 과학기술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2016.1.1~2017.12.31 기간 텐진, 상하이 등 15 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구역에서 적용되는 특혜정책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17	2016.11.07	2017.06.01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사이버 안보, 인터넷 콘텐츠 안전에 관한 규정
18	2016.12.16	2016.12.16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웨이보·위챗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는 시청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
19	2017.05.02	2017.06.01	국가인터넷정보보안공실	인터넷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법 집행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
20	2017.08.04	2017.08.04	국무원 판공청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장려, 규제, 금지하는 해외 투자 규정
21	2017.09.07	2017.10.08	국가인터넷정보보안공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규정
22	2017.09.07	2017.10.08	중공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규정
23	2017.09.20	2017.09.20	국가신문출판총국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신문, 출판, 방송, 영상 분야 13차 5개년 발전계획
24	2018.06.01	2018.06.01	문화관광부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해외 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공연예이전시, 공연장소 운영기관, 오락장소 등의 설립 허용
25	2018.06.19	2018.06.19	문화 관광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26	2018.08.30	2018.08.30	교육부 외 7개 부처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아동청소년 근시 예방 관련 방안 제시
27	2018.08.31	2019.01.01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제반 규정
28	2018.02.14	2018.02.1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인터넷 생방송 퀴즈프로그램 문제, 선택항 등 콘텐츠 사전 등록 심사
29	2018.02.13	2018.02.13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신문출판 방송 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 관리 업무 가이드
30	2018.05.21	2018.05.21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가상현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정 예정
31	2019.03.15	2020.01.0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대외개방 확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 외상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외상투자 관리를 규범화한 법률
32	2019.06.30	2019.06.3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판)	외국인 투자 진출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 통일적으로 명시
33	2019.08.13	2019.08.13	국가과학기술부 등 6개 부문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문화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강화, 혁신체계 건설 개선, 산업화 보급 가속화,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
34	2019.08.23	2019.08.23	국무원 판공청	문화와 관광 소비의 잠재력 개발에 관한 의견	문화와 관광 소비의 질적 수준 향상과 주민 소비 의욕 고취 통한 고품질의 문화와 관광 공급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35	2019.10.29	2019.10.29	국가광전총국	국가광전총국 2019-2028년 입법업무 계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관련 입법계획에 따른 향후 5-10년 안에 1건의 법규, 12건의 행정법규, 및 24건의 부처 규약의 제정, 개정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
36	2019.11.15	2019.11.15	국무원	자유무역시범구 ‘증조분리’ 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	전국의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리스트화 하여 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증조분리’ 개혁 적용에 대한 시행을 결정함
37	2019.11.18	2020.01.01	국가인터넷정보 보안공실 등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중국내 온라인 영상정보 서비스 종사자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주체 명시
38	2019.11.24	2019.11.24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의견	중국내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2022년과 2025년까지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 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제시
39	2019.12.13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산업 촉진법 (심사원고 초안)	문화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 중인 법안
40	2019.12.15	2020.03.01	국가인터넷정보 보안공실	인터넷정보 콘텐츠생태 관리규정	양호한 인터넷 생태 조성으로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41	2019.12.26	2020.01.01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외국인의 투자 촉진 및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
42	2020.01.20	2020.03.01	국가광전총국	국가광전총국의 입법 업무 규정	광전총국의 입법업무에 대한 체계관리 규정
43	2020.02.06	2020.03.01	국가광전총국	국가광전총국 행정 규범성 문건 관리 규정	광전총국의 행정규범성 문건관리에 관한 신규규정
44	2020.06.18	2020.06.18	국가판권국 등	‘검망 2020’ 특별행동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이 여러 관련 기관들과 연합하여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프로젝트
45	2020.06.23	2020.06.23	상무부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중국내 해외투자자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내 자국보호 사업범위
46	2020.11.18	-	문화관광부	디지털 문화산업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 신형 인프라 구축, 디지털 문화 신규 업종 육성 등 디지털 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디지털 문화 생태계 구축
47	2021.01.08	2021.02.22	국가인터넷정보 보안공실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견수렴)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
48	2021.03.05	-	국무원, 문화관광부	2021 정부업무보고 중 문화 관련 중점 업무	선진적 사회주의 문화 발전, 사회 문명의식 제고,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개선, 현대적 문화산업체계 건설
49	2021.04.15	-	문화관광부, 국가개발은행	문화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발성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	문화, 관광 및 금융협력의 심화를 촉진하고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투자 및 융자 체계를 정비하여 개발적 금융지원을 확대
50	2021.05.06	2021.05.06	문화관광부	14차 5개년 문화산업 발전규획	문화산업의 혁신 발전, 수요-공급 구조 개선, 지역별 문화산업 균형 발전,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 문화시장 주체 활성화, 국제협력 등 비전 제시
51	2021.05.27	2021.05.27	문화관광부	오락시설 및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허가 관련 조정 통지	외국인 오락시설 투자 설립 허용, 유치원 주변에 오락시설과 인터넷서비스업소 설립 금지, 심사 비준 효율 제고 및 심사절차 최적화 등
52	2021.06.10	2021.09.01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한 법률
53	2021.06.15	2021.06.15	국가인터넷정보 보안공실	팬덤 무질서 현상 정비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연예인 순위차트를 위한 투표·소비 유도, 여론 형성, 댓글알바, 상호 비방 등 주요 문제 중점 단속
54	2021.07.02	-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의견수렴안)	가격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정상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벌 규정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55	2021.07.10	-	국가인터넷정보 보 판공실	사이버안보 심사방법 (개정 의견수렴)	국가 사이버 안보심사 업무체계 구축, 사업자의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안보 리스크 예측 및 심사 진행에 관한 법규
56	2021.07.12	-	공업정보화부	사이버 안보산업 고품질 발전 3년 행동계획(2021-2023) (의견수렴안)	사이버 안보산업 공급 강화,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산업·금융 협력 강화, 사이버 안보 산업생태계 육성 등 계획과 보장조치를 제시
57	2021.08.03	2021.08.3	문화관광부	감염병 방역작업 강화 관련 긴급 통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광·문화업계의 방역 지침
58	2021.08.17	-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인터넷 부정당 경쟁행위 금지 규정(초안)	인터넷 상의 부정경쟁 행위를 제지, 예방하여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정책
59	2021.08.25	2021.08.25	국가인터넷정보 보 판공실	팬덤 문화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무질서한 팬덤 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조치
60	2021.08.30	2021.08.30	문화관광부	연예인 교육 관리 및 도덕성 강화 관련 통지	문화, 연예 분야에 만연한 위법행위, 부도덕적인 현상과 관련해 종사자의 교육 관리와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61	2021.09.14		중공중앙 판공청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 의견	사이버공간 내의 사상 선도, 문화육성, 도덕성, 행위 규범, 사이버 생태계, 사이버 문명 창출 강화를 강조
62	2021.09.22		국무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요강(2021-2035)	지식재산권 창조,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지식재산권 강국을 목표로 한 전략 계획
63	2021.10.25		상무부 등 17개 부처	국가 문화 수출 기지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조치 관련 통지	국가 문화 수출 기지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조치 관련 통지 발표. 새로운 형태의 문화 기업 등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통 문화 및 문화 창작물, 영상, 게임 등의 디지털 상품 수출을 지원한다는 내용
64	2021.11.14		국가인터넷정보 보 판공실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의견 수렴안)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을 발표. 100 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소유한 데이터 처리자가 국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온라인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함
65	2021.11.29		문화여유부	온라인 문화 시장 미성년자 보호 강화 관련 의견	급성장한 온라인 문화 시장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고 루트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
66	2022.05.13	2022.05.13	문화여유부	오락 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노래방이나 클럽, 오락실 등 오락 시설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기존 초중학교 주변 지역 외에 유치원 주변 지역을 추가로 포함
67	2022.05.22		중국공산당중앙 위원회, 국무원	국가문화 디지털화 전략 추진에 관한 의견	<14차 5개년(十四五)> 기간 말까지 문화 디지털화 인프라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온오프라인 융합 상호작용과 문화 서비스 공급 시스템 도입 계획에 관한 내용
68	2022.06.14	2022.08.01	국가인터넷정보 보 판공실	모바일 앱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6년만의 개정안으로 앱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더욱 세분화 되고 앱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은 정보 콘텐츠 안전 및 생태 관리·데이터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 됨
69	2022.06.25		문화여유부 등 5개 부처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관리강화 관련 통지	역할을 정해 임무를 완성하는 형식의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콘텐츠 관리, 미성년자 보호 및 안전설비 강화, 준법 운영, 업계의 자율적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한 내용
70	2022.06.27	2022.08.01	국가인터넷정보 보 판공실	인터넷 이용자 계정정보 관리규정	인터넷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부기관·기업·신문매체·사회조직 등을 사칭하는 계정이름 및 이미지 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
71	2022.09.09	2022.09.30	국가인터넷정보 보 판공실 외 2개 부처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 규정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적 스캔들, 과장된 사건, 재난사고 등 인터넷 팝업창을 활용한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구분	발표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72	2023-10-31		시장감독관리 총국 외 6개 부처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 규범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허위광고, 광고 트래픽 유발을 위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 모델 섭외, 미디 어들의 무분별한 송출 등 소비자 권리 침해와 시장질 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임. 내용에는 연 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범위와 기업의 모델선발 기준, 관리감독 책임부문 등이 포함됨
73	2022-11-04			사이버폭력 관리의 실질적 강화에 관한 통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강화와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 구 축, 네티즌 권리 보호 등 인터넷 환경 개선을 목적으 로 한 것으로 사이버폭력 식별·경고 시스템 구축, 사 이버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 콘텐츠 확산 방지 등 총 5가지 내용이 포함됨
74	2022-11-16	2022-12-15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	5년여 만의 개정안으로 총 16개 조항으로 이루어지며,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 고 이용자 준수 요구사항 등이 추가됨
75	2022-11-25	2023-01-10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외 2개 부처	인터넷 정보서비스 답페이크 관리규정	답페이크 서비스의 불법정보 제작과 배포 및 타인의 명예훼손, 신분사칭 규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됨
76	2023-03-20	2023-05-01	시장감독관리 총국	인터넷 광고 관리 임시방법	지난 2016년부터 발표·시행한 <인터넷광고 임시 관 리방법>을 보완한 것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77	2023-04-13		문화여유부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 임시규정	해당 규정은 스크립트킬, 방탈출 등 영리성 목적으로 경영자가 현장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나누거나 특정 배 경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형식의 문화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총칙, 콘텐츠 관리 및 미 성년자 보호, 극본 및 장소등록, 관리감독, 법률책임 등 총 6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됨. 의견수렴은 5월 13 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78	2023-06-19		시장감독관리 총국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작업 내실화 관련 통지	이번 통지는 각 지역 시장관리감독 부문에 인쇄 배포 되는 문서로 최근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한 일종의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임
79	2023-07-13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사진, 음성, 비 디오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중국영토 내 대 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분류별·등급별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80	2023-09-15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해당 의견은 온·오프라인 신고 플랫폼 다원화, 시스 템 기술 구축, 신고 접수 및 처리제도 규범 보완 등 업무 제반 환경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인·기업의 합법 적 보호 범위 등을 명문화함
81	2023-09-25		최고인민법원 외 2개 부처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여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모 욕,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질서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에는 형법 제246조 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 도록 함. 또한, 범죄의 침해대상, 목적, 방식, 정보전 파의 범위,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종합

1.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목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제재일	2002-8-2, 2011-1-8, 2013-1-30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2002년 8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359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일부 행정 법규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3년 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모종의 유형 형식으로 복제되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

제3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은 문학, 예술과 과학 작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지적 활동을 가리킨다.

타인의 창작을 위해 업무를 조직하고 자문 의견,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창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작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문학 작품은 소설, 시사, 산문, 논문 등 문자 형식으로 표현 한 작품을 가리킨다.
- (2) 구술 작품은 즉흥적인 연설, 수업, 법정 변론 등 구두 언어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가리킨다.
- (3) 음악 작품은 노래, 교향악 등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는 가사가 있거나 가사가 없는 작품을 가리킨다.
- (4) 희극 작품은 연극, 오페라, 지방극 등 무대에서 공연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 (5) 설창 문예 작품은 만담/재담, 쾌서(快書), 대고(大鼓), 평서(評書) 등 설창을 주요 형식으로 공연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 (6) 무용 작품은 연속적인 동작, 자세, 표정 등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 (7) 곡예 예술 작품은 곡예, 마술, 서커스 등 신체의 움직임과 기교를 통해 표현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 (8) 미술 작품은 회화, 서예, 조각 등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갖고 있는 평면 또는 입체적인 조형 예술 작품을 가리킨다.
- (9) 건축 작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 형식으로 표현한 심미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가리킨다.

- (10) 촬영 작품은 기계의 힘을 빌어 감광 재료 또는 기타 매개체에 객관적 물체의 형상을 기록하는 예술 작품을 가리킨다.
- (11)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은 일정한 매개체에 촬영되고 일련의 소리를 동반하거나 소리를 동반하지 않는 화면으로 구성되었고 적당한 장치의 힘을 빌어 방영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파되는 작품을 가리킨다.
- (12) 도형 작품은 시공, 생산을 위해 그린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및 지리적 현상을 반영하고 사물의 원리 또는 구조를 설명하는 지도, 설명도 등 작품을 가리킨다.
- (13) 모형 작품은 전시, 시험 또는 관측 등 용도를 위해 물체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진 입체 작품을 가리킨다.

제5조 저작권법과 본 조례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시사 뉴스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단순한 사실적 정보를 가리킨다.
- (2) 녹음 제품은 공연의 소리 및 기타 소리에 대한 모든 녹음 제품을 가리킨다.
- (3) 녹화 제품은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이외의 모든 소리를 동반하거나 소리를 동반하지 않는 연속적인 관련 형상, 영상의 녹화 제품을 가리킨다.
- (4) 녹음 제작자는 녹음 제품의 최초 제작자를 가리킨다.
- (5) 녹화 제작자는 녹화 제품의 최초 제작자를 가리킨다.
- (6) 공연자는 배우, 공연 업체 또는 기타 문학,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6조 저작권은 작품의 창작이 완성되는 당일부터 생긴다.

제7조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출판된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의 해당 저작권은 최초로 출판된 당일부터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이 해외에서 최초로 출판된 후 30일 안에 중국 국내에서 출판 될 경우, 해당 작품이 중국 국내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고 간주한다.

제9조 합작 작품을 분할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저작권은 합작 작자가 공동으로 갖게 되며 서로 협상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어떠한 한 측도 다른 측이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 단, 취득한 소득은 모든 합작 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제10조 저작권자가 타인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영화 작품 또는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촬영하도록 허락 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해 필요한 변경을 진행하는 것에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러한 변경은 원 작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에서 직무작품에 관한 규정 중의 “직업 임무”는 국민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조직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무를 가리킨다.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 직무작품 관련 규정 중의 “물질 기술 조건”은 해당 법인 또는 해당 조직이 국민의 창작 완성에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금, 설비 또는 자료를 가리킨다.

제12조 직무작품 완성 2년 안에, 업체의 동의를 거쳐 제3자가 업체와 같은 사용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도록 작자가 허락하여 취득한 보수는 작자와 업체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작품 완성 2년의 기간은 작자가 작품을 업체에 교부한 당일부터 계산한다.

제13조 작자 미상인 작품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서명권 이외의 저작권을 행사한다. 작자 신원이 확정된 후 작자 또는 해당 상속자가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14조 합작 작자 중의 하나가 사망한 후, 해당 합작 작품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 까지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해 상속자가 없거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기타 합작 작자가 해당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작자가 사망한 후, 해당 저작권 중의 서명권, 수정권과 작품 완전성 보호권은 작자의 상속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보호한다.

저작권이 상속자가 없고 유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해당 서명권, 수정권과 작품 완전성 보호권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보호한다.

제16조 국가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작품의 사용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관리를 받는다.

제17조 작자 생전 미발표 작품에 대해 만일 작자가 발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을 경우, 작자가 사망한 후 50년 안에 해당 발표권은 상속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상속자가 없고 유증을 받은 자가 없을 경우, 해당 발표권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가 행사한다.

제18조 작자 미상의 작품은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해당 보호기간은 작품이 최초로 발표 된 후 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이다. 작자 신원이 확정된 후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작자의 성명,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속이 있거나 작품 사용 방식의 특성 때문에 명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기존에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허락하여 대중에게 공개한 작품을 가리킨다.

제21조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존에 발표된 작품

을 사용 할 경우, 해당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불합리적으로 저작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제2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작품의 보수 지급 기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국무원 가격 주무부처와 함께 제정, 공포한다.

제23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사용 허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사용 허가의 권리가 독점 사용권일 경우 서면방식을 취해야 한다. 단, 신문사, 잡지사에 게재한 작품은 제외한다.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독점 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서를 통해 약속하며 계약서에서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 내용이 불분명 할 경우, 실시권자가 저작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음으로 간주한다. 계약서에서 별도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락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25조 저작권자와 사용 허가 독점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체결 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등록 신고 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법 및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작권 관련 권익은 출판자가 자신이 출판하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판식 설계에 대해 가지는 권리, 공연자가 자신의 공연에 대해 가지는 권리, 녹음 녹화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녹음 녹화 제품에 대해 가지는 권리,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이 자사가 방송하는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가리킨다.

제27조 출판자, 공연자, 녹음 녹화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작품과 원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28조 도서출판 계약서에서 도서출판자가 가지는 독점 출판권을 약속하였으나 해당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도서출판자가 계약서 유효기간 안에 계약서에서 약속한 지역 범위 안에서 동종 문자의 원판, 수정판으로 도서를 출판하는 독점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저작권자가 도서출판자에게 우편으로 부친 주문서 2부가 6개월 안에 이행 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 제32조에서 말하는 도서 매진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제, 발췌 불가 성명을 할 경우, 해당 작품을 신문, 정기 간행물에 게재할 시 성명을 첨부해야 한다.

제31조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제40조 제3항 성명에 따라 해당 작품에 대해 녹음 제품을 제작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작품이 녹음 제품으로 합법적으로 녹음 시 성명해야 한다.

제3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작품을 사용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무국적인의 중국 국내 공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신의 공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외국인, 무국적인이 중국 국내에서 제작, 발행한 녹음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신이 제작, 발행한 녹음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외국의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은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사에서 방송한 라디오, TV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저작권법 제48조에서 열거한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 하였고, 또한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켜 불법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불법경영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경영금액이 없거나 불법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37조 저작권법 제48조에서 열거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고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킬 경우, 지방 정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서 이를 조사 처리한다.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중국 전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 침해 행위를 조사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본 조례는 2002년 9월 15일 부터 시행된다.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승인하고, 1991년 5월 30일 중국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에서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實施條例)》는 동시에 폐지된다.

2.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文化领域引进外资的若干意见
게재일	2005-7-6
출처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문판발(文办发) (2005) 1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위원회, 각 직속기관, 각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 광전국(청), 신문출판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 주무부처: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동 작성한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공표하오니 성실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05년7월6일

문화영역 외자 유치에 관한 의견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문화영역의 외자유치업무를 더 규범화 하며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질과 수준을 향상하며 국가 문화 안전을 지켜 문화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제1조 외국인이 독자 혹은 합자, 합작 방식으로 포장·장식·인쇄, 신문·간행물 판매, 녹화 가능 CD 생산, 예술품 경영 등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측에서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중국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하에 외국인이 합자, 합작 방식으로 출판물 인쇄 및 읽기 전용 CD 복제 등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의 음반과 영상물 콘텐츠 심사 권한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협력 및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영화 외의 음반과 영상물 판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중국측에서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중국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하에 외국인이 합자, 합작 방식으로 공연장소, 극장, 연예인 매니지먼트, 영화 기술 등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며 국유 서적 음반제품 배급기업 주식제 개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3조 홍콩과 마카오 서비스 제공업체가 중국 내륙 지역에서 합자, 합작, 독자 경영 방식으로 공연장소 설립, 연예인 매니지먼트 지사기관 설립, 합자, 합작 경영하는 공연 매니지먼트 기

관 설립, 내륙지역에서 지분을 통제하는 인터넷 문화 경영기관과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소 설립, 지분 70% 이하를 소유하는 음반/영상물 판매 합자 회사와 70% 이하 권한을 소유하는 음반/영상물 판매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독자형식으로 극장을 신축/개축하며 중국에서 중국산영화를 배급하는 독자회사를 시범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4조 외국인 투자로 뉴스기관,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TV라디오 전송망,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회사, 영화 제작회사, 인터넷 문화 경영기관과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소(홍콩, 마카오 제외), 문화공연단체, 영화 수입과 배급 및 녹화 방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 투자로 신문/간행물의 출판, 총 배급, 수입사업, 음반/영상물과 전자 출판물의 출판, 제작, 총 배급과 수입사업 그리고 정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뉴스 사이트와 인터넷 출판 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 투자는 출판물 판매, 인쇄, 광고, 문화시설 개조 등 경영활동을 통해 채널, 주파수, 판권, 지면, 편집과 출판 등 홍보사업 분야에 우회 진출할 수 없다.

제5조 문화, 신문출판, TV라디오영화 주무부처는 책임지고 산업 진입 허용 조건을 엄격히 하여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회사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에 따라 사전 심사 승인을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의 사용범위와 지분 비율을 규범화한다. 사전 심사 승인 후,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에서 확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경영규모에 부합되는 자금, 전문 인력과 경영장소를 갖추어야 하고 3년 연속 법률, 법규 위반 및 기타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행정 심사승인의 실행기관은 법정 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외국인 투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막강한 실력, 규범화된 관리, 선진적인 기술, 중국과 우호적인 해외 문화기업을 선정하여 합자, 합작을 해야 한다.

제7조 음반/영상물 판매, 문화공연장소, 공연 매니지먼트, 신문/간행물 판매, 녹화 가능 CD 생산, 읽기 전용 CD 복제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인터넷 문화 경영기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영업소 분야에서 홍콩, 마카오 지역 자본을 유치할 경우, 성급 행정 주무부처의 심사를 통해 국무원 주무부처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국가광전총국(국가광전총국)은 중국과 외국에서 합작하여 촬영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심사 승인한다. 외국인투자자 극장을 설립할 경우, 성급 영화 주무부처의 동의를 받은 후, 외국인 투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편 국가광전총국, 문화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 출판물 인쇄와 포장·장식·인쇄 분야에서 외자를 유치할 경우, 성급 신문출판 주무부처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부처의 심사승인을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WTO 가입 시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별, 부처별로 무단으로 외국인 자본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야 하고 권한을 초과하여 지역성, 산업성 개방 정책과 심사승인 항목을 수립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 서적, TV라디오 방송국 등 주요 뉴스 매체의 광고, 배급, 인쇄 등 기업 및 배급, 영화그룹회사에서 외자를 유치할 경우, 국무원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앙선전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중국의 WTO가입 시 약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제때에 시정해야 하고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11조 시장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라이선스의 발급을 엄격하게 진행하며 연간 심사 제도를 실행한다. 규정을 어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법에 따라 경고, 벌금, 허가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허가증을 취소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는 말소등록 혹은 변경등록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12조 각급 문화, TV라디오영화, 신문출판 주무부처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거시적 제어와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자 유치 관리 사업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후속 관리감독도 완비해야 한다. 통합 법률 실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행동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제13조 문화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총서는 본 의견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작성하고 완비해야한다

3.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 규정

제목	互联网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07-12-29 발표 2015-08-28 수정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제1조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대중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대중에게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포함, 이하 ‘인터넷’으로 약함)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는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 통합 및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고 타인을 위해 시청각 프로그램 업로드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업계 주무부처로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산업 발전, 업계 관리, 콘텐츠 구축 및 보안 규제를 총괄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는 인터넷 업계 주무부처로서 통신 업계 관리 정책에 따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해당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와 지방 통신관리기관은 각자 정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및 접속 서비스에 대한 해당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및 그 관련 인터넷 운영 업체는 중요한 인터넷 문화 구축 역량으로 중국 특색의 인터넷 문화 구축 및 인터넷 문화 정보 안전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스스로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를 지키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계 주무부처와 인터넷 업계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로 구성된 전국적인 사회 단체는 업계의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문명한 인터넷 접속과 문명한 인터넷 운영을 제창하며 문명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부패하고 낙후된 사상 문화의 확산을 저지하며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의 지도 아래에서 활동을 전개한다.

제6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와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데 유익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고 정확한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적 효과와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도덕 규범을 지키며 시대의 발전과 사회 진보를 구현하는 사상 문화를 크게 선양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크게 선양하며 보다 훌륭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 날로 증가하는 인민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민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풍족하게 하며 마음을 적시고 인격을 연마하며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문화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좋은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건설하고 함께 누리는 정신적 고향을 형성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정보 인터넷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이하 <허가증>으로 약함)을 취득하거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 지도 목록은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가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와 상의하여 제정한다.

제8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려고 신청할 경우, 동시에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법인 자격을 갖추고 국유 독자 또는 국유 홀딩스 업체이며 신청일 전 3년 안에 위법 및 규정 위반 기록이 없다.
- (2) 완비된 프로그램 안전 전파 관리 제도와 안전 보호 기술 조치가 있다.
- (3) 자신의 업무에 적합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자원이 있다.
- (4)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역량, 인터넷 자원이 있다.
- (5) 자신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있고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가 신청일 전 3년 안에 위법 및 규정 위반 기록이 없다.
- (6) 기술 방안이 국가 표준, 업계 표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된다.
- (7)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서 확정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총체적 기획, 배치 및 업무 지도 목록에 부합된다.
- (8)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

제9조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형태의 서비스와 시사 정치 유형의 시청각 뉴스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 제8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에도 라디오TV방송기관 허가증 또는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그중 자체 채널 방식으로 시청각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지(시)급 이상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중앙뉴스업체가 신청해야 한다.

사회, 토크, 보도 유형의 시청각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 제8조 규정에 부합되는 외에도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과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자체 제작 웹드라마(영화)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라디오TV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승인 없이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 인터넷에서 라디오 TV 전용 명칭으로 서비스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를 통해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 신청해야 하며 중앙 직속 업체는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1차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신청 또는 1차 심사 의견을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중 전문가 심사 시간은 20일이다. 허가할 경우,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불허할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증>에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방송 로고, 명칭, 서비스 유형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계속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해야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안에 본 방법 제8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관련 자료를 지니고 기존 증서 발급 기관에 갱신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시)급 이상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중계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성급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앙 뉴스 업체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중계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업체는 프로그램 방송 시작 30일 전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명칭, 중계 예정인 라디오TV채널, 프로그램 명칭 등 관련 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등록 상황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에 따라 (자치구, 직할시) 통신 관리 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이하 ‘통신 주무부처’로 약칭)에 통신 서비스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관련 등록 수속을 밟고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처에 가서 등록 등기 또는 등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통신 주무부처는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의 허가에 따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주주, 지분 구조를 변경하여 중대한 자산 변동이 있거나 상장 등의 중대한 용자 행위가 있을 경우, 그리고 서비스 항목이 <허가증>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

그램 서비스 업체의 사업장, 법정 대표자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명칭을 법에 따라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5일 안에 성급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와 통신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공상 등기와 관련될 경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부처에 가서 등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허가증>을 취득한 90일 안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한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존 증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특별한 원인으로 인해 증서 발급 기관의 동의를 거쳐 서비스 종료를 신청할 경우, 60일 전에 기존 증서 발급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증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연속 서비스 중단이 60일 넘을 경우, 기존 증서 발급 기관이 서비스 중단 처리를 진행하고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4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허가증>에 명시되거나 등록된 사항에 따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전개해야 하며 방송 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서 승인한 방송 로고, 명칭, <허가증> 또는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어떠한 업체든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대리 수급 및 시그널 전송, 서버 호스팅 등 금융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국유 전략 투자자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하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차세대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특징에 적합한 신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모바일 멀티 미디어, 멀티 미디어 사이트를 위한 적극적이고 건전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생산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공급 역량을 힘껏 향상시킬 것을 독려하며 영상물 생산 기지, TV 프로그램 제작 업체가 온라인 전파에 적합한 영화/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하여 민족 온라인 영상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독려하고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공익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파할 것을 독려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저작권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지키고 판권 보호 조치를 취해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운영 업체가 접속시킨 시청각 프로그램은 법률, 행정법규, 부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미 방송한 시청각 프로그램은 최소 60일 완전하게 보류해야 한다. 시청각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해치는 내용
- (3)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시키는 내용

- (4) 민족 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깨뜨리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버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를 유도하고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를 과장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며 공민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의 공중도덕을 해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손상시키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 관련 및 국가에서 금지 규정을 내린 기타 내용.

제17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활용되는 영화 드라마 유형의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은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에 관한 국가의 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방송하는 시사 정치 유형의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은 지(시)급 이상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에서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과 중앙 뉴스 업체 사이트에 실린 시사 정치 유형의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개인을 위한 시청각 프로그램 업로드 전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개인이 시사 정치 유형의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팟캐스트, 영상 공유 등 시청각 프로그램 업로드 전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업로더에게 본 규정을 위반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든 불법 라디오 TV채널,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중계, 연결, 취합, 통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제지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본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시청각 프로그램을 즉각 삭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주무부처의 관리 요구를 실행해야 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는 방송 및 업로드된 시청각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는 법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통신업무 경영 허가증 또는 라디오TV프로그램 전송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 운영 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사용자 정보를 비밀 유지해야 하며 허위 홍보를 진행하거나 사용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에게 대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의 유형, 범위, 요금 기준 및 기한을 뚜렷한 방식으로 공포하고 사용자에게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조건과 방식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운영 업체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시그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전송 보안을 보장해야 하며 시청각 프로그램 시그널을 무단으로 삽입, 차단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허가증> 또는 등록 증명 서류를 검사하고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 또는 등록 범위에 따라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라디오·영화·TV와 통신 주무부처는 대중 감독 고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대중은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의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관련 주무부처는 제때에 처리해야 하고 떠넘겨서는 안 된다. 라디오·영화·TV, 통신 등 감독 관리 부처가 발견한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본 부처의 직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처리 권한이 있는 부처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신 주무부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 필요한 기술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웹사이트 데이터 조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법에 따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업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의 근무자는 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진행할 때 관련 증명서를 주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23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에게 경고를 주고 동시에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인터넷에서 라디오 TV전용 명칭을 무단 사용하여 서비스를 전개한 경우.
- (2) 주주, 지분 구조를 변경하거나 상장 융자하거나 중대한 자산 변동이 있을 때 승인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 (3) 완비된 프로그램 운영 규범을 수립하지 않고 판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유해 콘텐츠 전파에 대한 알림, 삭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방송 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방송 로고, 명칭, <허가증>과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 프로그램 기록 보류, 주무부처에 사실대로 조회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대리 수급 및 시그널 전송, 서버 호스팅 등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7)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에 명시된 사항 범위 이외의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8) 허위 홍보를 진행하거나 사용자를 오도할 경우.
- (9)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정보와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경우.
- (10) 인터넷 시청각 서비스 업체가 동일 연도에 규정을 어긴 행위가 3번 발생한 경우.
- (11)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서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독 검사를 거부, 저해, 지연하거나 감독 검사 과정에서 허위로 날조한 경우.

(12) 허위 증명, 서류 등 수단으로 <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본 조 제12항의 행위가 있을 경우, 증서 발급 기관은 해당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24조 무단으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파한 시청각 프로그램 콘텐츠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가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관리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허가증에 명시되거나 등록된 사항에 따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시사 정치 유형의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관리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 라디오TV채널과 시청각 프로그램 사이트의 콘텐츠를 중계, 연결, 취합, 통합할 경우, 무단으로 시청각 프로그램 시그널을 삽입, 차단할 경우, 현금 이상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는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방송TV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본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 대해 통신 주무부처는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의 서면 의견에 근거해 통신 관리와 인터넷 관리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상응하는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철회하며 해당 업체에게 시그널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운영 업체에 접속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접속 서비스 정지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통신조례> 제57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에서 <통신조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6조 라디오·영화·TV, 통신 등 주무부처가 규정된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려야 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7조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에게 중대한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가 나타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그의 주요 출자자와 경영자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가 처벌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오디오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상 사설망을 설치하여 대중에게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업계 주무부처에 신청을 해야 하고 국무원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사전 승인하고 국무원 라디오·영화·TV 주무부처에서 심사 승인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제29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반포된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4.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제목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第567号)
게재일	2009-11-25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는 2009년 8월 19일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09년 11월 25일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경내 동업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제1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파트너십기업)을 설립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동업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며 해외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合夥企業法)》(이하 《동업기업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을 설립한다는 것은 2곳 이상의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 및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중국의 자연인,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이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동업기업법》 및 그 밖의 유관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을 설립하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구비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을 설립하여 현대서비스산업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출자에 사용하는 화폐는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한 외국화폐여야 하며 법에 따라 획득한 인민폐도 가능하다.

제5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의 동업기업의 설립은 전체 공동조합원들이 지정하는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탁하는 대리인이 국무원 상공행정관리부서(國務院工商行政管理部門)가 수권한 지방 상공행정관리부서(이하 ‘기업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의 신청은 기업등기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中華人民共和國合夥企業登記管理辦法)》이 규정하는 문서 및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설명을 제

출하여야 한다.

기업등기기관이 등기를 준한 경우 동시에 관련 등기정보를 동급의 상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동업기업(이하 ‘외국인투자동업기업’으로 약칭한다)의 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동업기업이 해산된 경우 《동업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동업기업의 외국합동인 전체가 탈퇴한 후에도 해당 동업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동업기업이 등기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동시에 등기의 변경 또는 말소에 관한 정보를 동급의 상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동업기업의 등기관리사무에 대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과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동업기업을 설립하는데 관련된 재무회계, 세무, 외환 및 세관, 인원의 출입국 등의 사무는 유관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중국의 자연인,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이 중국 국경 내에서 설립한 동업기업에 있어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가입한 경우 이 방법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설립한 동업기업이 정부가 승인하는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경우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가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투자를 주요한 업무로 하는 동업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업 또는 개인이 대륙에 동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목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제재일	1990-9-7, 2001-10-27, 2010-2-26
개정일	2020-11-11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1990년 9월 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수정

2010년 2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수정)

2020년 11월 11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수정

본 결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와 그 권리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4절 권리의 제한

제3장 저작권 허가 사용과 양도 계약

제4장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제1절 도서, 신문·잡지의 출판

제2절 공연

제3절 녹음·녹화

제4절 라디오·TV, 방송국 방송

제5장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문학, 예술과 과학 작품 작가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적 문명과 물질적 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권장하며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의 국민과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작품은 발표 여부를 막론하고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

외국인과 무국적인의 작품이 해당 작자의 소속 나라 또는 평소 거주지 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협의서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가지는 저작권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과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판될 경우,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

중국과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의 작자 및 무국적인의 작품이 최초로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출판되거나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 출판될 경우,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본 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지적 성과를 말한다.

- (1) 문학 작품
- (2) 구술 작품
- (3) 음악, 연극, 설창 문예, 무용, 곡예 예술 작품
- (4) 미술, 건축 작품
- (5) 촬영 작품
- (6) 시청각 작품
- (7)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설명도 등 도형작품과 모형작품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 (9) 작품 특징에 맞는 기타 지적 성과

제4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공공이익을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작품의 출판, 전파를 감독 관리한다.

제5조 본 법은 아래와 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과 기타 입법, 행정, 사법 성격을 띤 문서, 및 해당 정부 당국의 정식 번역문
- (2) 단순 사실 기사
- (3) 역법, 통용 수표, 통용 도표와 공식

제6조 민간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7조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에서 전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 저작권 주관부처에서 해당 행정지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 저작권자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는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에 위임하여 저작권 또

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은 비영리법인이고 위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저작권 관련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의 소송, 중재, 조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저작권 단체 관리조직은 권한 위임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한다. 사용료 수취 기준은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과 사용자 대표가 협상을 통해 확정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재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은 사용료의 수취와 이전지급, 관리비의 인출과 사용, 사용료의 미분배 부분 등 총체적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하고 권리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에 대해 감독,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의 설립 방식, 권리 의무, 사용료의 수취와 배분 및 그에 대한 감독과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와 그 권리

제9조 저작권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작자
- (2) 기타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가지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제10조 저작권은 아래에 열거한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 (1) 발표권, 즉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 하느냐를 결정하는 권리
- (2) 서명권, 즉 작자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하는 권리
- (3) 수정권, 즉 작품을 수정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정하는 권리
- (4) 작품 완전성 보호권, 즉 작품이 왜곡, 곡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
- (5) 복제권, 즉 인쇄, 복사, 탁본, 녹음, 녹화, 복제, 디지털화 등 방식으로 작품을 1부 또는 여러 부 제작하는 권리
- (6) 발행권, 즉 판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대중에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하는 권리
- (7) 임대권, 즉 타인이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유상으로 임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권리,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하는 주요 표적물이 아닌 경우 제외
- (8) 전람권, 즉 미술 작품, 촬영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진열하는 권리
- (9) 공연권, 즉 공개적인 작품 공연 및 각종 수단으로 작품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권리
-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영사기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촬영, 시청각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권리
- (11) 방송권, 즉 유선 혹은 무선방식으로 작품을 공개 전파 또는 중계 방송, 그리고 학

성기 혹은 기타 부호, 음성, 이미지를 전송하는 유사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전파, 방송하는 권리이며, 단 본 조항의 (12)에 규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않음.

(12)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하여 대중이 해당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3)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저장 장치에 고정시키는 권리

(14) 각색권, 즉 작품을 변경하여 독창성을 갖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하나의 언어 문학에서 다른 언어 문학으로 전환하는 권리

(16) 편집권, 즉 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를 선택 또는 편성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모으는 권리

(17) 저작권자가 가지는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타인이 상기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가 수 있으며 약정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저작권은 작자에게 있으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작품 창작의 자연인은 작자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주최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의지를 대표하여 창작되며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책임을 지는 작품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을 작자로 간주한다.

제12조 (1)작품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작자로 하고 해당 작품에 상응하는 권리가 존재하지만 상반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

(2)작자 등 저작권자는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가 인정한 등록기관에 작품 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는 위 2개 항목(1), (2)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13조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만든 작품은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자가 해당 저작권을 가진다. 단,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2명 이상이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은 합작 작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합작 작자가 될 수 없다.

합작 작품의 저작권은 합작 작자가 협상 일치를 통해 행사한다. 협상 일치를 이룰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임의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양도, 타인의 단독 사용 허용, 질권 이외의 기타 권리 행사를 저지해서는 아니 된다. 단, 취득한 수익은 다른 합작 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주어야 한다.

합작 작품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작자는 각자 창작한 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단,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합작 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약간의 작품, 작품의 일부 또는 작품을 구성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편집함에 있어서 해당 내용의 선택 또는 편성에서 독창성을 보여주는 작품은 편집작품으로 인정하며 해당 저작권은 편집자가 가진다. 단,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원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집성하여 만든 작품을 출판, 공연하고 이를 녹음·녹화 제품을 제작할 경우 해당 작품 저작권자와 원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시청각 작품 중 영화 작품, TV 드라마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나, 작가, 감독, 촬영, 작사, 작곡 등 작자는 서명권을 가지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전 항목 규정 외의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 귀속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거나 혹은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제작자가 가지지만 작자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는 권리가 있다.

시청각 작품 중의 시나리오, 음악 등 단독 사용 가능한 작품의 작자는 해당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작업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며 본 조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저작권은 작자가 가진다. 단,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은 해당 업무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작품 완성 2년 안에, 업체의 동의 없이 작자는 제3자가 업체에서 사용하는 같은 방식으로 해당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직무작품은 작자가 서명권을 가지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가지며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작자를 장려할 수 있다.

- (1) 주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되고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책임을 지는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직무작품
- (2)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의 스텝이 창작한 직무 작품
- (3) 저작권을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가진다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했거나 또는 계약에서 약속한 직무작품

제19조 위탁을 받아 창작되는 작품일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계약을 통해 약속한다. 계약에서 명확히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은 수탁인에게 있다.

제20조 작품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 저작권의 귀속을 바꾸지는 않지만 미술, 카메라 촬영 작품의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가진다.

저자가 발표하지 않은 미술, 카메라 촬영 작품의 원본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해당 원본을 전시할 때 저자의 발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21조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있을 경우, 자연인이 사망한 후, 해당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기간 안에 법에 의거하여 이전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게 있을 경우,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변경, 종료 후, 해당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기간 안에, 해당 권리 의무를 계승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가진다. 해당 권리의 의무를 계승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없을 경우, 국가가 가진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2조 작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성 보호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3조 자연인의 작품의 경우, 그 발표권과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작자의 한평생 및 작자가 사망한 후의 50년으로서 작자가 사망한 후 5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만약 합작 작품일 경우, 그 기간은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작자가 사망한 후 5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작품 및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저작권(서명권 제외)을 가지는 직무작품인 경우, 그 발표권과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작품이 최초 발표된 후 5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작품 및 저작권(서명권 제외)이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가지는 직무 작품인 경우, 그 발표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작품 창작 완성 후의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작품 최초 발표 후의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단, 작품 창작 완성 후 50년 안에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더 이상 본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시청각 작품의 경우, 그 발표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고 작품 창작 완성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작품 최초 발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단, 작품 창작 완성 후 50년 안에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더 이상 본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4조 아래의 상황에서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작자의 성명 혹은 명칭, 작품의 명칭을 명시하고, 해당 작품의 정상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을 위해 타인이 기존에 발표한 작품을 사용할 경우

(2) 한 작품을 소개, 논평하거나 또는 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작품 속에서 타인이 기존에 발표한 작품을 적절히 인용할 경우

- (3)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TV 방송국 등 미디어에서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할 경우
 -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TV 방송국 등 미디어가 기타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TV 방송국 등 미디어에서 기존에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을 게재 또는 방송할 경우, 단, 작자가 게재 및 방송 불허 성명을 한 경우 제외
 -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TV 방송국 등 미디어가 대중 집회에서 발표된 연설을 게재 또는 방송할 경우, 단, 작자가 게재 및 방송 불허 성명을 한 경우 제외
 - (6) 학교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번역, 각색, 집성, 재창하거나 소량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 연구 인력이 사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단, 출판하거나 발행해서는 안 된다.
 - (7)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해,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경우 ;
 - (8) 도서관, 기록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이 진열 또는 판본 보존의 수요를 위해 본 관에서 소장하는 작품을 복제할 경우
 - (9)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해당 공연이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연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10)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 작품에 대해 모사, 회화, 촬영, 녹화할 경우
 - (11) 중국의 국민,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기존에 발표한 한어 문자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 국내에서 출판 발행할 경우
 - (12) 열독 장애자가 감지할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그에게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제공하는 경우
 - (13)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타 경우
- 상기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데 적용한다.

제25조 의무교육과 국가의 교육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편집 출판한 교과서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교과서에 이미 발표된 작품의 일부 또는 짧은 문자 작품, 음악 작품 또는 단편의 미술 작품, 카메라 촬영 작품, 도형 작품을 취합하여 편집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저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가지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상기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데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 허가 사용과 양도 계약

제26조 타인의 작품을 사용 시 저작권자와 허가 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 사용 계약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1) 허가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
- (2) 허가 사용하는 권리는 독점 사용권인지 아니면 비독점 사용권인지
- (3) 허가 사용하는 지역 범위 및 기간

- (4) 보수 지불 기준과 방법
- (5) 위약책임
- (6) 양측이 약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27조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에서 제(17)항까지 규정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권리 양도 계약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1) 작품의 명칭
- (2)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지역 범위
- (3) 양도 금액
- (4) 양도 금액을 지급하는 일자와 방식
- (5) 위약책임
- (6) 양측이 약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내용

제28조 저작권 중 재산권을 저당물로 제공할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법에 의거하여 질권 등록을 한다.

제29조 허가 사용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에서 저작권자가 허가, 양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상대측 당사자는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작품 사용의 보수 지급 기준은 당사자들 끼리 약속할 수 있고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당사자 간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 저작권 주무부처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31조 출판자, 공연자, 녹음 녹화 제작자, 라디오 TV 방송국 등이 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작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성 보호권과 보수 취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제1절 도서, 신문·잡지의 출판

제32조 도서출판자는 도서 출판 시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3조 도서출판자가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출판한 작품에 대해, 계약서 약속에 따라 가지는 독점 출판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해당 작품을 출판할 수 없다.

제34조 저작권자는 계약서 약속 기간에 따라 작품을 교부해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서에서 약속한 출판 품질, 기간에 따라 도서를 출판해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서 약속 기간에 따라 출판하지 않았을 경우, 본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작품을 재인쇄, 재판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도서가 품질된 후 도서출판자가 재인쇄, 재판을 거부할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서를 종료할 수 있다.

제35조 저작권자가 신문사, 잡지사에 투고한 후, 원고 발송 당일부터 15일 안에 신문사로부터 게재 결정의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원고 발송 당일부터 30일 안에 잡지사로부터 게재 결정의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같은 작품을 기타 신문사, 잡지사에 투고할 수 있다. 양측이 별도의 약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작품이 게재된 후, 저작권자가 전재, 발췌 편집 불가 성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신문·잡지사는 전재하거나 요약 및 자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6조 도서출판자는 작자의 허가를 받아 작품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요약을 할 수 있다.

신문사, 잡지사는 작품에 대해 문자성 수정 및 삭제 요약을 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은 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출판자는 자신이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의 판식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는것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상기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 이며 해당 판식 디자인을 사용한 도서, 정기간행물이 최초 출판된 후 제1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제2절 공연

제38조 타인의 작품으로 공연할 경우, 공연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연 조직자가 공연을 조직할 경우, 해당 조직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의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만든 작품으로 공연을 할 경우, 작품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한 저작권자와 원 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39조 공연자는 해당 공연에 대해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1) 공연자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2) 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 (3) 타인이 현장에서부터 해당 현장 공연을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할 수 있도록 유포하고 해당 보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4) 타인이 녹음 녹화 할 수 있도록 유포하고 해당 보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5) 타인이 해당 공연을 녹화한 녹음 녹화 제품을 복제, 발행,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 타인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해당 공연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자가 상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0조 공연자가 공연업체의 공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기는 직무 연기이고 공연자는 신분 표명과 연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가지며 기타 권리 귀속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당사자 약정이 없거나 혹은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직무 연기의 권리는 공연업체가 가진다.

직무 연기의 권리를 공연자가 가질 경우 공연업체는 그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 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본 법 제39조 제1항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본 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해당 공연 발생 후 제5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제3절 녹음 녹화

제42조 녹음 녹화 제작자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녹음 녹화 제품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녹음 제작자가 타인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녹음 제품으로 녹음한 음악작품을 사용하여 녹음 제품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 불허 성명을 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녹음 녹화 제작자가 녹음 녹화 제품을 제작 할 경우, 공연자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4조 녹음 녹화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녹음 녹화 제품에 대해, 타인이 이를 복제, 발행, 임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 할 수 있도록 유포하고 해당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해당 제품이 최초 제작 완성 된 후 제50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이다.

실시권자가 녹음 녹화 제품을 복제, 발행, 임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할 경우, 저작권자 및 공연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5조 녹음 제품을 유선 혹은 무선의 공개 전파에 사용하거나 혹은 소리를 전송하는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공개 재생할 경우 녹음 제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절 라디오 TV 방송국 방송

제46조 라디오 TV 방송국에서 타인이 발표하지 않은 작품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라디오 TV 방송국에서 타인이 기존에 발표한 작품을 방송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47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아래의 행위를 금지 시킬 수 있다.

- (1)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 방식으로 재방송 하는 행위
- (2)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녹화 및 복제하는 행위
- (3)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이 상구 규정을 행사하는 권리는 타인의 저작권 행사 혹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라디오, TV에서 첫 방송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제48조 TV 방송국이 타인의 시청각 작품, 녹화 제품을 방송 할 경우, 시청각 작품 저작권자 혹은 녹화 제작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타인의 녹화 제품을 방송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5장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제49조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기술적 조치를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유관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혹은 대중에게 제공해서도 아니 되고 타인의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혹은 파괴하기 위해 기술 용역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기술적 조치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 연기, 녹음 녹화 제품을 열람, 감상하거나 또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 연기, 녹음 녹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효한 기술, 장치 혹은 부품을 말한다.

제50조 아래 상황은 기술적 조치를 피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기술적 조치를 피하는 기술, 장치 혹은 부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권리자가 법에 의거하여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아니 된다.

- (1) 학교 교실 수업 혹은 관학 연구를 위해 소량의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제공하고 강의 혹은 연구 인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지만 해당 작품을 정상 루트를 통해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열독 장애자가 감지할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그에게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제공하지만 해당 작품을 정상 루트를 통해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3) 국가 기관이 행정, 감찰, 사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 (4) 컴퓨터 및 그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의 안전성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경우

(5) 잠금 장치 연구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상기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데 적용한다.

제51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작품, 판식 디자인, 연기, 녹음 녹화 제품 혹은 라디오, TV의 권리 관리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혹은 수정한다. 단, 기술적인 원인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작품, 판식 디자인, 연기, 녹음 녹화 제품 혹은 라디오, TV의 권리 관리 정보를 허가 없이 삭제되거나 혹은 수정한 것을 알거나 또는 알아야하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제공한다.

제52조 아래와 같은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정지, 피해 해소,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작품을 발표했을 경우
- (2) 함께 합작한 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했을 경우
- (3) 창작에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의 작품에 서명했을 경우
- (4) 타인의 작품을 왜곡, 곡해했을 경우
-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
-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시청각 작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 해당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지급 했을 경우
- (8)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음 녹화 제품의 저작권자, 연기자 혹은 녹음 녹화 제작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작품 또는 녹음 녹화 제품의 원본 혹은 복제본을 임대했을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9) 출판자의 허가 없이 출판자가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의 판식 디자인을 사용 했을 경우
- (10) 공연자의 허락 없이, 현장으로부터 해당 현장 공연을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거나 또는 해당 공연을 녹화 할 경우
- (11)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53조 아래와 같은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본 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 행위가 공공이익까지 해칠 경우 저작권 주무부처가 권리 침해 행위 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 복제품 및 주요 권리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 무해화 폐기처리를 하고 위법 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 경영금액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경영 금액 몰수, 위법 경영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혹은 5만 위안 미만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복제, 발행, 연기, 방영, 수라디오 방송, 취합 편집,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했을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2)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를 출판했을 경우
- (3) 공연자의 허가 없이, 해당 공연을 녹화한 녹음 녹화 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또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공연을 대중에게 전파했을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4) 녹음 녹화 제작자의 허가 없이, 해당 제작자가 제작한 녹음 녹화 제품을 복제, 발행,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했을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5) 허가 없이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방송, 복제 또는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했을 경우, 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피하거나 또는 파괴한 경우, 기술적 조치를 피하고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장치 혹은 부품을 고의로 제조, 수입 혹은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고의로 기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 판식 디자인, 연기, 녹음 녹화 제품 혹은 라디오, TV의 권리 관리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작품, 판식 디자인, 연기, 녹음 녹화 제품 혹은 라디오, TV의 권리 관리 정보가 허가 없이 삭제되었거나 혹은 수정한 것을 알거나 또는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제공한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8)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작품을 제작, 판매했을 경우

제54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 했을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혹은 침해자의 불법 소득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혹은 침해자의 불법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권리의 사용료를 참조하여 배상할 수 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혹은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해 경위가 심각할 경우 상기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를 배상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침해자의 불법 소득, 권리 사용료를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 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라고 선고한다.

배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시키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필요한 증거 확보 책임을 다했지만 권리 침해 행위 관련 장부, 자료 등이 주로 권리 침해자가 장악했을 경우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 침해 행위 관련 장부, 자료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가짜 장부, 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그가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저작권 심리 분쟁 사건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에 대해 특수 상황 외에 폐기 명령을 내린다. 주로 권리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재료, 도구, 설비 등에 대해 폐기 명령을 내리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 혹은 특수 상황에서 상

- 기 재료, 도구, 설비 등의 유입 상업 루트를 금지하라고 명령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제55조 저작권 주무부처는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 혐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때 유관 당사자에게 문의하면서 불법 혐의 행위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 불법 혐의 행위의 장소와 물품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불법 혐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유관 서류를 검열, 복제한다. 불법 혐의 행위의 장소와 물품에 대해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 저작권 주무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상기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 협력을 해야 하고 거절,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56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타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 그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 또는 곧 실시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즉시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기소 전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재산 보호, 일부 행위 진행 또는 일부 행위 진행 금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7조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또는 추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기소 전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8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소득, 권리 침해 복제품 및 불법활동에 사용된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 제59조 복제품의 출판자 및 제작자가 해당 출판 및 제작이 합법적 위임을 받은 것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음 녹화 제품의 복제품의 임대인이 해당 발행, 임대하는 복제품이 합법적인 출처를 갖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소송 절차 중 피소 권리 침해자가 본인이 권리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를 제공하여 권리자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증명하거나 또는 본 법이 규정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 제60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 가능하며, 당사자 간에 달성한 서면중재협의를 또는 저작권 계약서 중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서면중재협의를 없고 저작권 계약서에서도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제61조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 의무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아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 행사, 보전 신청 등은 유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부칙

제62조 본 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은 판권을 말한다.

제63조 본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출판은 작품의 복제 및 발행을 가리킨다.

제64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보호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5조 카메라 촬영 작품, 그의 발표권, 본 법 제10조 제1항 제(5)항부터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2021년 6월 1일 전 이미 만기되었지만 본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보호기간 내에 있을 경우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제66조 본 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자와 출판자, 공연자, 녹음 녹화 제작자, 라디오 TV 방송국의 권리는 본 법 시행일에 본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본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본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또는 계약 위반 행위는 해당 권리 침해 또는 계약 위반 행위 발생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본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6.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

제목	关于金融支持文化产业振兴和发展繁荣的指导意见
게재일	2010-4-8
출처	광전중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지도의견》銀發〔2010〕94호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당위선전부(直轄市黨委宣傳部) 및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총부(中國人民銀行上海總部), 각 지점, 영업관리부, 각 성도(省都 또는 수부(首府))도시센터 지점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재정청(財政廳, 또는 국(局)), 문화청(文化廳 또는 국(局)), 방송영상국(廣播影視局), 신문출판국(新聞出版廳), 은감국(銀監局), 증감국(證監局), 보감국(保監局), 각 정책성 은행, 국유(國有)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中國郵政貯蓄銀行):

《문화산업 진흥기획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國發) [2009] 30호)의 내용을 이행하고, 중국 문화산업의 금융서비스를 한 단계 더 개선하며, 문화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한 의의를 인식한다.

(1) 문화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금융업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 전면적인 샤오강사회(小康社會)¹¹⁰⁾ 건설과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함에 있어, 금융에 의한 자원배치, 경제 운영 조절, 경제사회를 위한 서비스는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된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중앙(中央)에서 실시한 중요한 전략적 배치와 정책적 조치로 문화체제개혁이 심화(深化)되고, 문화산업이 한층 더 발전함에 따라, 문화산업이 양호한 발전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바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경제 성장 유지, 내수 확장, 경제 구조 조절,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산업과 금융업의 접목을 추진하는 사업은 새로운 경제 원동력 개발과 문화발전 촉진 그리고 국가 문화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향상과 국가 문화의 안전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각 금융부문은 문화산업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중요전략목표로 삼고, 업무범위를 개척하고 새로운 수익 성장점을 육성하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 문화기업의 특징에 적합한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더불어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 향상시켜 건강하고 신속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문화산업의 특징에 적합한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고효율적인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110) 샤오강사회(小康社會):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다소 여유 있는 사회

- (2) 다원화 및 다양한 레벨의 신용대출 상품 개발과 혁신을 추진한다. 경영패턴이 안정적이며, 경제효율이 높고, 성숙기에 접어든 문화기업을 우선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의 공급사슬을 대상으로 용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M&A 용자를 지원하여 산업사슬 통합을 촉진한다. 물류와 현금흐름(Cash flow)이 안정적인 기업에 한하여 매출채권 저당과 창고증권 저당대출을 실시한다. 공연, 전람,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내용의 수집, 가공, 제작, 저장과 출판물 유통, 인쇄복제,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전송, 집성(集成) 및 영화상영 등 관련 설비를 임대하는 기업에 한하여 금융리스대출을 실시한다. 이에 문화기업의 무형자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문화류의 무형자산 처리를 보장해준다. 또한 양호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구비한 기업에 한하여, 권리저당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수익권저당대출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3)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관한 다양한 대출패턴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상업은행은 용자규모가 크거나 프로젝트가 많은 기업에 한하여, 상업은행은 협조용자(Syndicate Loan) 등의 금융지원 방식을 장려한다. 이에 협조용자의 리스크 분담체계를 모색 및 개선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실효적으로 줄인다. 상업은행이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 또는 산업사슬에 속해있는 중소기업에게 연합보증 연합대출 등의 방식을 모색하여 금융지원 하는 것을 장려한다.

3. 여신업무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산업에 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 및 개선한다.

- (4) 이율 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대출기한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각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제어 및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원칙을 토대로, 각기 다른 문화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되는 원활한 차별화 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또한 일부 문화산업의 주기성 특징과 리스크 특징을 타깃으로 하여, 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주기성 자금수요와 현금흐름의 분포정황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출기한을 확정한다. 국가가 기획한 중점지원에 편성된 문화산업 프로젝트 또는 그러한 기업에 한하여, 금융기관은 효과적인 리스크 예방의 범위안에서 대출기한을 적절히 연장한다.
- (5) 과학적인 신용등급평가제도와 업무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금융기관은 내부평가 요소와 내부평가지수 계획 체계, 체제 모델과 점수기준 평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화기업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제도를 구축한다. 또한 외부 등급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내, 외부 등급평가를 접목한 등급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업무 심사 평가 절차와 심사방법을 한층 더 개선하고 발전시켜 문화산업의 금융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전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와 문화산업 발전의 촉진을 결합하여 장려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출항목의 경우, 업무책임의 이행과 전면적인 수준평가 및 종합 보고 심사를 토대로 실제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면제해 준다. 즉 직무에 최선을 다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고, 직무를 소홀히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문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 (6) 문화산업의 금융 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한다. 각 금융기관은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 전문가 팀과 전문 서비스 부문을 개설하여 문화기업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

한다. 국가중점지원의 문화기업과 프로젝트 관한 심사절차를 최적화 및 간소화하여 대출심사의 효율을 제고시킨다. 금융기관의 여신고객 진입기준을 만족하는 전제조건하에, 교육과정을 개최한 기업과 교육과정 참여 인원에게 신용대출을 지원 한다. 또한 은행업계의 금융기관과 비 금융기관은 공동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신용대출, 채권, 신탁, 펀드,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항목이 접목된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이로써, 문화기업이 초창기부터 성숙기까지 거친 각 발전 단계에 대한 융자 방식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다.

(7) 문화소비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문화소비에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금융기관은 문화산업 소비자 신용 대출시장(Consumer Credit)을 형성하고, 소비신용대출 상품의 혁신을 통해 문화산업의 다양한 소비신용대출수요를 만족시킨다. 또한 분할상환 등의 소비신용대출 상품을 통해 연예, 전람 및 관광, 예술품, 공예품,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 상품, 창의설계와 도서, 잡지,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웹 출판, 디지털 출판 등의 출판 상품 및 서비스, 인쇄, 복제, 발행, HDTV, 유료TV, 모바일 TV, 영상상품 등에 대한 종합소비신용대출의 공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보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웹 서비스 & 컴퓨터 서비스를 향상시켜 관련 기획 서비스 및 레저 등 업종의 온라인 결제 응용 프로그램 수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의 지급결제와 신용조회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은행카드 결제 환경을 신속히 개선한다. 또한 문화오락, 방송영화, 신문출판, 관광광고, 예술품 거래 등 업종의 카드결제 문화를 정착시켜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8) 문화기업의 외환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산업의 무역과 투자의 편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문화기업의 해외투자를 편리하게 하고 문화기업의 대외무역과 해외융자 및 투자 등 합리적인 외환수요를 만족시킨다. 외환관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외환관리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 및 간소화하여 문화기업의 외환자금 운용 효율을 제고시키며, 재무비용 절감을 통해 중국문화기업의 핵심 경쟁력의 향상을 촉진시킨다.

4. 다양한 자본시장의 대대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기업의 직접 융자규모를 확대한다.

(9) 조건에 부합되는 문화기업의 상장융자를 추진한다. 성숙기에 이르고 경영이 안정적인 문화기업이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상장된 문화기업이 주식을 공개발행(公開發行), 비공개 발행 등 재융자 방식을 통해 M&A와 구조조정을 장려한다. 선전문화부처(宣傳文化部門)와 증권감독관리부처(證券監管部門)의 프로젝트 정보의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 및 구축한다. 이에 차스닥(GEM)의 중소문화기업 프로젝트에 적합하도록 선별하고 지급준비금을 강화하여 프로젝트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을 한다.

(10) 문화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문화기업이 기업채, 집합채(集合債), 회사채(會社債) 등을 발행하는 방식의 융자를 장려한다. 중채신용증진투자주식회사(中債信用增進投資股份有限公司) 등 전문기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단기 융자권, 중기어음, 집합어음의 발행을 통해 중소문화기업 융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국가정책규정에 부합되는 중소문화기업에게 직접채무융자를 발행하고 중개업체의 관련 비용을 적절히 절감하여 문화기업의 융자 비용부담을 줄인다. 또한, 성숙된 운영과 안정적인 미래

현금 흐름을 갖춘 안정된 문화산업항목은 양호한 문화자산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권을 토대로, 문화산업항목 자산증권화의 시범을 모색한다.

- (11) 다방면의 자금의 문화산업 발전 지원을 장려한다.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보험기업 기관투자자와 보험자금유자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문화기업의 채권과 주주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회사와 문화기업투자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조건 기준을 적합하게 완화하여 리스크 선호형 투자자가 리스크 투자 펀드, 사모주주권펀드 등을 통해 초창기 단계 및 시장 장래가 촉망한 신흥문화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5. 문화산업보험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 (12) 보험서비스를 한 층 더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기존 업무를 토대로, 각 보험회사는 문화기업의 특징에 따라 문화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한다. 더불어 수익성 up&리스크 down 원칙에 따라,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선전문화부문(宣傳文化部門) 이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기업과 문화산업항목은 보험심사/계약승낙(acceptance/approval)과 보험금 지급(claim settlement)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루트를 구축해야 하며, 양호한 신용과 저(低) 리스크를 위해 적절하게 보험요율을 인하해야 한다. 이에 문화산업의 보험시장을 신속히 육성 및 개선하고 보험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범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 문화산업의 항목 운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킨다.
- (13) 보험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한다. 각 보험회사는 기존의 보험상품을 토대로 연예, 전람,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각 종 출판물의 인쇄, 복제, 발행, 방송&TV영상 매스미디어(TV영상 방송 포함) 상품완성보험, 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등 문화기업의 특징을 갖춘 보험과, 다양한 신행보험과 여러 종류의 보험업무를 모색 및 확대한다. 또한 보험기업이 신용보험업무를 모색 및 확대하여, 기존 실시되고 있는 신용담보체제가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지원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따라서 문화수출기업의 보험서비스를 한 층 더 개선 및 강화한다. 보험회사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수출 지도목록(文化產品和服務出口指導目錄)》의 부합 조건 중에 《국가문화수출중점기업 목록(國家文化出口重點企業目錄)》과 《국가문화수출중점항목 목록(國家文化出口重點項目目錄)》에 특별히 편성된 문화수출기업과 항목에 대해 수출신용 보험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문화기업이 국제경쟁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장려한다.

6. 금융지원문화산업발전에 유리한 완벽한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14) 문화기업의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을 추진하여, 회사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한다. 체제 혁신, 메커니즘 전환, 시장지향형, 활력 증진의 원칙에 따라, 문화산업의 현대기업제도 수립을 추진한다. 이에 현대 회사기관체제와 현대 기업 재무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와 회계 감사의 절차를 규범화시키며, 정보공시투명도를 제고하고, 재무관리능력의 강화하여 금융지원 문화산업발전에 양호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 (15) 중앙과 지방 재정부문이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설립자금 등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문화기업에게 대출이자할인과 보험금 보조 등 혜택을 부여한다. 문화산업투자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부문이 자본주입을 인도하여 금융자본의 합법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 (16) 다양한 대출 리스크 분담 및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여러 종류의 담보기관의 문화산업에 대한 융자담보를 장려한다. 이에 재담보(再擔保), 연합담보(聯合擔保) 및 담보와 보험을 접목한 다양한 방식 및 루트로 리스크를 분산 시킨다. 또한 기업신용담보기금(企業信用擔保基金)과 지역성 재담보기관(區域性再擔保機關)의 설립을 연구하여 주주의 경영참여, 위탁경영과 리스크 보상의 제공 등 방식으로 담보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지원하여 문화산업의 융자수요에 알맞게 대응한다. 따라서 문화기업의 대출 리스크 보상기금의 설립을 모색하고, 대출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킨다.
- (17)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체계를 개선하여 각 방면의 수익을 철저히 보장한다.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자산평가, 저당, 등록, 위탁관리, (자금·물건) 회전, 현금화 관리방법을 신속히 재정 및 개선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에 의거하여, 관련 저당등기(抵當登記)의 규정을 수정한다. 그리고 거래시장을 적극 양성하고 상하이문화재산권거래소(上海文化產權交易所), 선전문화산권거래소(深圳文化產權交易所)의 거래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기업의 저작권거래, 상표권거래 및 특허기술거래 등 문화재산권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문화시장의 고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각 무형자산의 유통거래시장을 개선하여 투자자, 채권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장한다.

7. 정책협조와 실행효과 감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 (18) 신용대출정책과 산업정책의 협조를 강화한다. 《문화산업투자지도목록》을 정기적으로 개선 및 재정하여 갱신된 문화산업발전에 대한 항목정보를 발표한다. 또한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문화기업의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은 《문화산업투자지도목록》중 ‘장려’ 문화산업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제한’ 문화산업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와 승인심사를 거쳐야만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 (19) 여러 부문의 정보교류 메커니즘과 문화산업투자융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문화기업 투자융자(文化企業投融資)의 우수항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세미나, 심포지엄, 협의회(상담회) 등 형식을 통해 문화항목과 금융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한다. ‘은행, 정부, 기업’의 협력을 추진하여, 금융기관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고 선전문화부처가 추천한 우수한 항목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20) 정책 수행과 평가를 강화한다. 각 인민은행의 지점과 기관은 동급(同級)의 선전문화(宣傳文化), 재정(財政), 은행감독관리(銀監), 증권감독관리(證監), 보험감독관리(保監) 등 부처와 함께 지도의견의 정신에 따라 관할구역의 실제상황과 접목하여, 금융지원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및 조치를 제정하고 개선한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업무에 대한 목표를 관철하고 철저히 이행한다. 또한 각 금융기관은 금융지원문화산업발전에 대한 전문 통계제

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문화산업대출 상황의 통계와 관리감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각 인민은행의 지점과 기관은 관할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금융지원문화산업발전의 신용대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효과평가제도를 수립한다.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재정부(財政部)

문화부(文化部)

광전총국(廣電總局)

신문출판총서(新聞出版總署)

은감회(銀監會), 증감회(證監會), 보감회(保監會)

2010년 3월 19일

7.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

제목	国务院关于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与相关产业融合发展的若干意见
제재일	2014-3-14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국발〔2014〕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 각 직속 기관: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새로운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의 가속화에 따라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는 이미 사회 경제의 각 산업을 관통하여 상호 융합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는 높은 지식집약형, 높은 부가가치, 낮은 에너지 소모 및 저오염의 특징이 있다.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등 신형 고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와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국가 문화의 소프트 파워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자 혁신형 경제 발전, 경제 구조조정과 발전 방식의 전환 촉진,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의 전환 실현을 가속화하는 내재적 요구이며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촉진, 신흥 산업의 탄생, 고용 창출, 다양한 소비요구의 만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와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의 총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개혁 혁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동력으로 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및 혁신형 인력자원 개발을 핵심으로 하여 녹색,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이념의 견고한 수립, 시장 역할의 충분한 발휘,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촉진, 혁신 드라이브 강화, 혁신 원동력 증강, 발전환경 최적화, 중국의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과 핵심 경쟁력 제고, 관련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구조 전환 고도화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내수 확대와 국민들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본원칙

총괄적 조화 및 중점 돌파. 각종 자원을 총괄하고 조화 협조를 강화하며 문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건축 디자인 서비스, 전문디자인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장비 제조업, 소비품 산업, 건축 산업, 정보 산업, 관광 산업, 농업과 스포츠 산업 등 중점 분야의 융합 발전 추진에 힘쓴다. 지역별 실제상황, 산업별 특성에 따라 선행시범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우위를 발휘하여 다양화, 차별화 발전을 촉진한다.

시장 주도 및 혁신 드라이브. 시장을 목표로 삼고 기업을 주체로 하여 산·학·연·응용이 협력하고 정부의 기능을 전환하여 지원과 인도를 강화하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산업과 지역의 장벽을 해소하여 사회 각 측면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혁신, 산업 혁신, 콘텐츠 혁신, 모델 혁신과 관리 혁신을 촉진하며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의 산업화, 전문화, 집약화, 브랜드화의 발전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과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여 신기술, 신공예, 신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킨다.

문화 계승 및 과학기술 지원.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창조 및 디자인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활용하는 경로를 확대하여 문화유산 자원이 산업과 시장의 접목 속에서 전승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한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접목을 강화하고 창조와 디자인 제품 서비스의 생산, 거래 및 성과 전환을 촉진하며 중국의 특색 있는 현대 신제품을 창조하여 문화가치와 실용가치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한다.

(3) 발전목표

2020년까지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의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관련 산업과 전방위적, 심층적, 폭넓은 분야의 융합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문화적 함량을 현격히 향상시켜 높은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여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을 마련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를 구축하여 특색 있는 융합 발전 도시, 클러스터 구역과 신형 도시를 형성한다. 문화산업에서 문화 창조와 디자인 서비스가 문화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저히 높이고 관련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현격히 높여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2. 중점업무

(1) 제조업의 새로운 우위를 마련한다.

신기술, 신공법, 신장비, 신소재, 신수요를 바탕으로 디자인 응용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 디자인이 고급 통합 디자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며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확장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철도교통 등 장비 제조업의 경우, 제품의 외관, 구조, 기능 등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브랜드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용품, 레저용품, 가전제품, 의류 패션, 가구용품, 디지털제품, 식품, 문화스포츠용품 등 소비품 산업이 혁신 창조로 전환되는 것을 추진하며 다양한 공급을 증대하여 소비의 고도화를 인도한다. 소비류 제품이 신제품 디자인과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와 현대 트렌드의 융합을 강화하며 관리경영 방식을 혁신하여 창조와 디자인으로 무역 유통업의 혁신을 인도하고 광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소비품의 문화적 의미와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면서 브랜드 가치체계를 완비하고 종합적인 실력을 갖춘 자체 브랜드를 형성하여 전반적인 성과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2)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전파, 소비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정보 산업에 대한 문화의 콘텐츠 지원, 창조 및 디자인의 향상을 강화하며 양방향으로 심도 있게 융합된 신문화산업의 육성을 가속화 한다. 국가 문화 과학기술 혁신 사업을 심도 있게 실행하고 디지털 기술

과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문화 콘텐츠, 장비, 소재, 공법,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해 문화기업의 기술개선을 가속화한다. 전통 문화업체에서 인터넷 뉴미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통 매체와 신홍 매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여 선진 문화 인터넷 전파 흡인력을 향상시킨다. 우수한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애니메이션, 게임 등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민족 브랜드를 구축한다. 애니메이션, 게임과 가상현실 기술이 디자인과 제조 등 산업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망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차세대 TV 방송망과 인터랙션 인터넷 TV 등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홈의 건설을 추진한다. 통신 설비 제조, 인터넷 운영, 통합 송출과 통제, 콘텐츠 서비스 업체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판권 집약 수준을 높이고 스마트 단말기 산업의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제품 디자인 및 콘텐츠 서비스, 앱스토어 모델의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디지털 TV 단말기 제조업과 디지털 가정 산업 및 콘텐츠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여 전체 산업사슬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친환경 인쇄 발전을 추진하고 인쇄 복제 가공의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인도하며 신문 출판의 디지털화 전환과 경영 양식의 혁신을 추진한다.

(3) 대중의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킨다.

인간 중심, 안전 집약, 생태환경보호, 혁신 계승의 이념을 견지하고 도농 기획, 건축 디자인, 정원 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며 기능을 최적화하여 문화의 품위를 향상시킨다. 문화재 보호기관, 역사 문화 유명 도시 및 전통 마을의 보호를 중시한다. 도시 건설 디자인과 경관 계획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을 강조하며 역사 문화거리와 역사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원 녹화, 도시 공공예술 디자인의 질을 높이며 기능 완비, 합리적인 구성, 이미지가 분명한 특색 있는 문화 도시를 건설한다. 마을 건설 기획을 강화하고 마을 건축 디자인 시장을 육성하며 아름다운 환경, 시설 완비, 행복한 문명의 사회주의 신 농촌을 건설한다. 에너지, 토지, 물, 재료를 절약하는 건축디자인 이념을 실행하고 기술 계승 혁신을 추진하며 친환경 건축을 적극 발전시킨다. 지역에 맞는 문화 요소를 융합하고 관련 건축표준 및 규범의 갱신 혹은 개정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건축, 정원, 도시 디자인, 도농 기획 등 디자인 방법 입찰 제도를 완비하고 문화적 요소에 대한 심사를 중시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혁신을 장려하고 인테리어 상품과 재료의 고도화를 선도한다.

(4) 관광 발전의 문화적 의미를 향상시킨다.

건강하고 문명적이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이념을 견지하여 문화로 관광의 의미와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으로 문화의 소비 전파를 확대한다. 건강, 웰빙, 스포츠, 오락, 체험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광 레저상품을 개발하고 레저구역, 특색 마을, 관광 리조트 구역 등을 건설하도록 지원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서비스 디자인의 개성화, 과학화 수준을 높여 대중들의 차별화된 관광 수요를 만족시킨다. 자연, 문화 유적지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용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관광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여 문화관광 명품을 구축한다. 지혜로운 관광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광과 인터넷의 융합 혁신을 촉진하여 지역특색과 민족 풍속을 갖춘 관광 공연과 관광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특색 있는 관광 요식업과 테마 호텔의 발전을 장려한다.

(5) 특색 있는 농업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한다.

농업 분야의 창조와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농업과 문화, 과학기술, 생태, 관광의 융합을 추진한다. 레저 농업과 시골 관광 영업장소의 창조와 디자인을 강화하고 농경체험, 정원관광, 교육 전시, 문화전승 등이 일체화된 레저농업지역을 건설한다. 농촌의 문화자원 발굴을 중요시하고 농업제품, 농사경관, 친환경 포장, 향토문화 등 창조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며 레저 농업의 유명 브랜드를 육성하여 농업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창조 및 디자인 제품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건물 옥상이나 발코니 등에서의 간이농업을 발전시켜 레저농업의 발전 공간을 한층 더 확대한다. 전문 농산물 시장에서 특색 있는 농산품의 전람관 및 전시관(단지)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여 특색 있는 농산품 문화 홍보교류를 추진한다. 랜드마크의 기술 표준 체계, 품질 보장 체계 및 검사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여 랜드마크 상품을 지원하고 랜드마크와 농산품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강화한다. 농업기업의 녹색 친환경 상품 및 원산지 표시 신청과 소개를 지원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해 지역문화의 특색이 있는 농산품 마케팅 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장려한다.

(6) 스포츠 산업의 발전 공간을 확대한다.

스포츠 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대중의 스포츠 소비를 인도한다. 전통축제의 행사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방에서 현지 자연 및 인문 자원특색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영향력이 크고 참여도가 높은 대회를 기획하여 스포츠 경기 관람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스포츠 서비스 조직의 발전을 장려하고 경기의 계획, 경기장 운영, 기술 훈련, 정보 컨설팅, 중개 서비스, 스포츠 보험 등을 중점으로 하여 스포츠 서비스의 규모를 점차 확장한다. 경기와 관련된 판권의 개발 및 보호를 추진하고 중국 국내 경기의 중계권 시장경쟁 범위를 완화하며 스포츠 경기 관련 판권 거래 플랫폼의 구축을 모색한다. 스포츠 제품의 브랜드 구축을 강화하고 기술 함량이 높고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갖춘 스포츠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포츠 파생 상품의 창조와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7)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시킨다.

올바른 문화상품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문화산업의 각종 영역에 창조 및 디자인 수준과 문화 의미의 향상에 힘쓰며 합리적인 구조, 다양한 종류, 높은 기술 함량,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높은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한다. 각 지역에서 현지의 문화특징에 접목한 창작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새로운 예술 양식을 적극 발전시키며 특색 있는 문화 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신홍 인터넷 문화 산업을 강화 및 규범화하고 신홍 인터넷 문화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여 문학, 예술, 영화·TV, 음악 창작과 전파 사업을 크게 발전시킨다. 무대미술 디자인, 무대 장식 창조와 무대 기술설비의 혁신을 강화한다. 전승과 혁신 발전을 접목하는 것을 견지하고 예술 파생 상품, 예술 라이선싱 상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며 공예미술 제품과 전통 수공예품의 현대 과학기술 및 현대적 요소와의 융합을 가속화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문화 시설 기능을 완비하고 전시수준을 높인다.

3. 정책 조치

(1) 혁신 동력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지적재산권의 활용 및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 창조와 디자인 장려제도를 완비한다.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 보호 법규의 홍보 및 보급을 강화하여 창조 및 디자인 발전에 유리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한다.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 등 법률 법규를 보완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문제의 연구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의 감독과 법률 실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을 강화하며 법적 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지적재산권의 신청 및 심사 제도를 최적화하고 특허 우선 심사 경로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신속 등록 경로를 구축 및 완비하여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상표 등록 심사 체계를 완비한다. 지적재산권의 주식 매입, 배당 등 형식의 장려 메커니즘과 관리 제도를 완비한다.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유통을 촉진한다.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종합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산권 우위를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기업, 대학교(대학원), 과학기술 연구소가 전략적 연맹 등을 조직하는 것을 장려하고 창조와 디자인, 과학기술 혁신 등의 요소를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연맹의 지적재산권 관리 역량 구축을 확대하며 지적재산권의 클러스터식 관리를 추진한다.

(2)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문화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인재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제도의 장벽과 신분제한을 해소하여 창조형 인재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한 우수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전공 설정을 최적화하고 일반 학부와 R&D연구소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설립하여 이론연구를 장려한다. 무형문화유산 전승 인재 육성을 직업 교육 시스템에 포함하여 직업교육이 문화 전승 혁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민족문화 전승 혁신 전공을 설립한다. 민간 전통 수공업의 전승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문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술 기능 인재를 육성한다. 산·학·연·응용 협력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학위 과정의 대학원 교육을 발전시키며 관련 산업과 산업단지, 선두기업과 일반 대학, 직업학교,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인재 육성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 및 장려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박사 후 과학연구 스테이션을 지원하고 학위교육 및 직업교육을 병행, 창조와 디자인 및 경영관리를 접목한 인재 육성의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여 다양한 단체의 복합성 인재 육성을 가속화한다. 핵심인재, 중점분야의 전문인재, 고급기술 인재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지원 역량을 확대하여 산업리더를 양성한다. 정부 장려, 기업체 장려, 사회 장려 등 서로 보완하는 다양한 창조와 디자인 인재 장려 체계를 완비하고 다양한 창조와 디자인 인재의 창작활동, 연수, 국제교류 등의 활동에 대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창업 인큐베이터를 강화하고 창조 및 디자인 인재의 창업 혁신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창조 및 디자인 대회 행사 개최를 규범화 및 장려하고 창조와 디자인 인재의 혁신 결과물의 전시와 거래를 촉진한다. 다양한 인재 유치 및 해외 고급인재 영입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한다. 창조 및 디자인 인재 특징에 부합되는 이용, 유동, 평가 및 장려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유기업, 연구소의 기업 전환, 직업학교 및 일반대학과 과학연구소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주주권 장려 정책을 한층 더 실행하고 직업 기능 감정 및 기능 평가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적인 인재 관리를 강화한다.

(3) 시장 주체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전문화된 창조 및 디자인 기업이 전문적이고 정밀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중국 전통 브랜드 등 민간 특색의 전통 기법과 서비스 이념의 발굴, 보호, 발전을 장려하고 지역 특

색을 지닌 창조 및 디자인 기업을 육성하며 디자인, 광고, 문화 소프트웨어 작업실 등 각종 형식의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창의와 디자인 우위기업들이 산업연계에 근거하여 범지역, 범산업, 혼합소유제 업무협력을 실행하고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는 산업 그룹과 산업 연맹 구축을 추진한다. 조건을 갖춘 대형 기업에서 산업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급 산업디자인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관련 사업 부문의 분류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유 문화기업이 전략적 자본을 유치하고 주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장려하며 민간 자본이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M&A, 연합경영, 지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국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을 지원한다. 문화 등 서비스 분야의 순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여 건축 디자인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해소한다. 산업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기술 표준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관련 분야의 중요한 국가표준의 제정을 가속화한다. 업계조직과 중개조직 및 기업에서 국가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체 표준의 국제화를 지원한다.

(4) 시장 수요를 육성한다.

전 국민의 문화 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 소양을 높이며 소비개념의 전환을 추진하고 창조와 디자인 상품 서비스의 소비를 자극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이 주민의 문화 소비 보조를 통해 문화 소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에서 각종 디자인 기술과 디자인 성과를 활용하여 디자인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디자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는 것을 장려한다. 공공문화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의 창조와 디자인 상품 서비스의 구입 역량을 확대한다. 부서 제한과 지역 장벽을 없애고 통일 개방적이고 경쟁이 질서 있는 국내 시장 형성을 촉진한다. 상하이와 선전(深圳)의 문화재산권거래소 등 시장과 문화산업, 광고, 디자인 전시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거래 질서를 규범화하고 거래 플랫폼의 정보화와 네트워크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제품과 서비스 거래를 촉진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창조와 디자인 산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기업 또는 초소형 기업과 창조 및 디자인 창업 인재의 시장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이 국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자체 특성에 따라 지역성 및 산업성 거래시장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무역 유통업 개조 및 업그레이드에서 창조 및 디자인을 활용하여 전문시장과 특색 있는 상업거리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도매, 소매, 숙박, 요식업 등 생활서비스 기업이 가게 인테리어, 제품 진열, 상품 포장 및 마케팅에서 창조와 디자인을 부각시키고 에너지 절감, 친환경 등을 더 중시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순응하는 것을 장려한다.

(5) 집약적인 발전을 인도한다.

기존의 각종 문화, 창조와 디자인 단지를 바탕으로 규범 인도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자원정보, 투자유자, 거래 전시, 인재육성, 교류협력 등 서비스 역량의 구축을 강화하며 혁신 창업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각종 산업단지의 이익을 높이고 산업 클러스터 우위를 발휘하는 것을 촉진한다. 각 지역에서 자원조건과 산업별 우위에 근거하여 발전 중점을 명확히 하고 융합발전 클러스터 구역 건설을 과학적으로 기획하여 지역성 혁신센터와 성과전환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지역 협력 메커니즘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클러스터 내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분업과 협업을 이루어 장점을 상호 보완하고 상호 촉진하는 지역 발전의 구도를 구축한다. 각 부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초성, 인도성의

대형 사업과 중점 사업을 실행하여 산업 전체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한다.

(6) 재정 및 세무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산업발전 특별자금 규모를 늘리고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녹색 및 에너지 절감 친환경을 지향하고 조작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세수 지원정책을 완비한다.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영역에서 첨단기술 기업 인정 관리 방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문화 창조와 디자인 서비스 내용을 문화 지원 기술 등 분야에 포함시키며 첨단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은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여 15%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원 교육관련 경비 지출의 경우, 급여의 8% 범위 내에서 소득세 납부 시 공제를 허용한다. 기업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되는 창조 및 디자인 비용에 한하여 세전 공제 정책을 실행한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수출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한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하는 시범운영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범위의 국가 중점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하거나 혹은 면세하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창조 및 디자인 제품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0%의 세율을 적용한다.

(7)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기업의 무형자산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회사채, 기업채, 집합신탁과 집합채권, 중소기업 사모채권 등 비 금융기업 채무 융자 상품을 장려한다. 금융기관에서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대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대출 자산 증권화 시범운영을 지원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에 관련된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금융기관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기업에 적합한 융자 상품을 늘리며 대출 담보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형자산과 수익권 저장 등록 공시제도를 완비하며 무형자산 담보 및 수익권 담보 대출 등의 업무를 모색하는 것을 장려한다. 사회 자본투자의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각종 담보기관에서 융자 담보 및 재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보험회사에서 혁신형 문화산업 보험 상품의 개발역량을 확대해 보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 문화산업 보험조직 기관의 설립을 모색해 문화산업 보험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정부에서 인도하여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 투자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사모 주주권 투자 펀드, 창업 투자 펀드 및 각종 투자기관에서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8)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현행 행정심사 승인 사항을 평가, 정리하고 보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심사기한을 엄격히 통제하며 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심사효율을 향상시킨다. 토지 할당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기업은 현재 확보한 건물, 기존 토지에서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도농 기획에 부합되는 조건하에 토지용도와 사용권자를 임시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1년 이상 연속 경영하고 토지 할당 목록에 부합할 경우, 토지 할당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 수속을 진행한다. 토지할당 목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협의양도 방식으로 토지 사용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광고 분야에서 문화사업의 건설비 과세범위는 광고매체 회사와 옥외광고 회사로 엄격히 한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요금을 정돈하며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

기업의 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 사용 비용을 산업용과 동일하게 실행하도록 추진한다. 도농 기획과 건축 디자인 비용 제도를 완비하고 우수한 품질의 우수한 가격 제도를 추진 및 장려한다. 정부의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조직의 역할을 발휘하며 인재 건설을 강화하고 창업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며 연구 토론 등의 교류를 진행한다.

4. 조직 실행

각 지역, 각 부처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 본 부처, 본 업종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문화 창조 및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 융합 발전에 대한 조직 인도를 강화하고 전문 기획, 행동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부대 문건 등을 작성한다.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역 간, 부서 간, 산업 간의 협동 연동을 강화하여 모든 임무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홍보를 강화하고 전반 사회에서 혁신을 지원하고 창조와 디자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 산업 진흥관련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 및 제도를 완비한다. 문화산업의 통계 제도 완비를 중시하고 문화 창조와 디자인 서비스부문 산업 통계, 정산 및 분석을 강화한다. 관련 산업협회(상인 연합회, 학회) 및 중개조직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산업 연구, 표준 수립 등 방면에서 업계조직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본 의견의 실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검사 감독하며 중대 사항 발생 시 국무원에 즉시 보고한다.

국무원
2014년2월26일

8.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深入推进文化金融合作的意见
게재일	2014-3-17
출처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문화와 금융의 협력 심화에 관한 의견 문산발[2014]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재정청(국), 각 계획단열시 문화국, 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상하이 분사, 각 지사, 영업관리부, 성도(수부) 도시 중심 지사, 부성급 도시 중심 지사; 국가개발은행, 각 정책성 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 우정저축은행: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금융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결합을 장려’ 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 실현하고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문화부 등 부처의 《금융분야에서 문화 산업 진흥과 발전 번영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은발[2014]94호)의 시행 성과를 확대하며 문화와 금융의 협력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문화 산업이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1. 문화금융 협력을 더 추진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

(1) 문화 금융 협력은 이미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뚜렷한 특징이고 중요한 성과이며 중국 문화산업이 지속적이고도 건전하게 발전하는 원동력이다. 《금융분야에서 문화 산업 진흥과 발전 번영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을 시행한 후, 각급 정부는 정책적 인도와 조직적 조율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문화산업과 금융업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금융기관은 문화산업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문화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였고 금융은 문화산업을 지원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에 유력한 자금지원을 제공하였다. 문화기업은 금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체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대 기업 제도를 완비하였고 회사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다양한 사회 자본이 문화산업에 투입되어 다양한 단계, 다채널, 다각화의 문화산업 투자/융자 체계를 마련하였다. 문화산업의 신속한 발전은 금융업의 발전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업 사업확장 전환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2) 문화산업이 사회경제발전과 문화 건설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관련 산업과의 융합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기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경제발전의 새로운 추세, 국민들의 정신문화 생활 수요의 새로운 변화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고 전면적인 개혁은 문화 금융의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금융분야에서 문화 산업 진흥과 발전 번영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의 다양한 조치를 더 구체화해야 하고 혁신 드라이브를 견지하고 정책적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며 차별화, 정밀화, 과학화 원칙에 근거하여 중점 문화 산업 사업의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문화산업의 미약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완비하고 문화기업의 과학적인 투자 경영을 인도하며 문

화산업의 투자/용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금융 서비스 공급과 문화 발전 수요 간의 모순을 해소하여 문화 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 문화 금융 체제 메커니즘 혁신

- (3) 문화 금융 서비스 조직형식을 혁신한다. 금융기관에서 문화산업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특색 있는 지사와 문화 금융 전문 서비스 팀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재무 자원과 인력자원 측면에 적당하게 치우쳐 사업 위임을 확대하고 과학적으로 경제 자본 점유 비율을 확정하며 대출 종사인력의 성과 장려를 확대하고 문화 금융 서비스의 전문화 수준을 높인다. 문화류 소액 대출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고 소액 대출회사는 경영 결정과 사내 관리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과 문화 창의 인재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건하에 문화 산업의 발전에 전문화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민간 자본이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형 은행을 발족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 (4) 문화 금융 중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 문화 금융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정책적 인도, 사업 연결, 정보 서비스, 서비스 교육, 신용 증대, 자금 지원 등 방식을 통해 문화기업과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와 금융의 연결을 촉진하며 핵심 문화기업과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지원하고 문화 금융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의 평가와 거래를 촉진하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문화류 무형 자산의 평가, 등록, 신탁 유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법률, 회계, 회계감사, 자산평가, 신용평가 등 중개기업이 문화 금융 협력에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다양한 거래장소를 정리 정돈하는 것을 기반으로 문화 재산권 거래소에서 문화 금융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인도한다. 다양한 단계, 다양한 분야, 차별화 된 용자 담보 체계를 구축 완비하여 은행업 금융기관과 용자성 담보기관에서 규범화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며 문화기업 용자에 신용 증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5) 문화 금융 협력 시험구역의 건설을 모색한다. 금융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다양한 자본이 문화 금융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인도 및 촉진하며 문화 금융 협력 발전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부,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일부 문화산업 발전이 성숙하고 금융 서비스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문화 금융 협력 시험구역을 건설하여 지방정부, 문화, 금융 등 여러 부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지방정부의 자금 투자 방식 혁신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는 것을 인도 및 촉진하며 문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 금융 발전의 정책적 환경을 완비하고 우수한 자원을 집중하며 선행선시범을 진행하여 본 지역의 특징에 부합되는 새로운 문화 금융 혁신 모델을 모색한다.

3. 문화 산업 발전 수요 특징에 부합되는 금융제품과 서비스 혁신

- (6) 문화기업의 특징에 부합되는 대출상품과 서비스 방식의 혁신 추진을 가속화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문화기업 특징에 부합되는 금융 서비스 특화상품을 개발하

는 것을 장려한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조건하에 융자/렌탈/대출, 미수금 저당 융자, 산업사슬 융자, 주주권 저당 대출 등 문화기업 특징에 부합되는 대출 혁신 상품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무형 자산 저당 대출 사업을 모색하며 문화기업의 대출 저당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 금융 서비스 양식의 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문화기업의 발전 단계와 금융 수요에 근거하여 대출업무와 결산업무, 국제업무, 투자은행(IB)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지원하며 은행 업무, 소매업무, 자산부채 업무와 중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통합 대출 플랫폼, 통합 신용공여 등 방식을 활용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은행, 보험, 투자 펀드 등 기관에서 연합하여 투자기업 주주권, 채권, 자산지원 기획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기업에 통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 (7) 문화기업 대출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문화기업 혹은 문화사업 융자를 대상으로 신용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는 것을 장려하고 외부 평가 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하여 문화기업 혹은 문화 사업 대출의 신용 평가 효율을 향상시킨다. 문화 대출 이용 평가 메커니즘과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문화기업 혹은 문화사업의 자금 흐름 특징과 리스크 특징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평가를 실행하며 대출 기한과 상환 방식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 (8) 문화기업의 직접 융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중대형 문화기업에서 단기 융자권, 중기 어음, 자산 지원 어음 등 채무 융자 상품으로 융자 구조를 최적화 하는 것을 장려한다. 성장성이 높은 중소문화기업에서 집합채권, 구역별 집합채권, 산업별 집합채권, 중소기업 사모채권 등을 통해 융자채널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모 주주권 투자 펀드, 창업 투자 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관에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인도한다. 문화기업에서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융자, 재융자(refinance) 및 M&A하는 것을 지원한다. 문화기업 상장지수지도를 육성하고 문화기업 사장 자원 저장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을 모색하며 유형별 문화기업과 자본시장 연결을 지도하는 것을 검토한다. 문화기업 M&A를 장려하여 문화 자본의 범지역, 범업종, 혼합소유제의 통합을 실현한다. 문화기업이 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과 지역성 주주권 거래 시장을 통해 주주권 융자를 구현하는 것을 지원한다.
- (9) 해외 문화 무역 특징에 부합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홍보한다. 문화기업의 해외 M&A,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무역 투자의 외환 관리와 결산 편리화를 추진하며 금융기관에서 해외 문화기업에 융자를 제공하는 규정을 완비하며 개인 자산 저당 등 해외 담보 모델을 모색하고 문화기업의 외환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이며 환율 리스크를 방지한다. 문화 금융이 자유무역지대, 실크로드 경제 벨트, 해상 실크로드 등 사업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 (10) 금융산업이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역량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에서 공연극장 체인,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품의 인터넷 거래 등 결제 지급 시스템의 개발을 장려하고 제3자 지급 기관에서 시장과 지급 편의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하여 문화 소비의 편의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문화게임, 예술품의 거래 등 산업의 은행카드 결제 소비 환경을 완비한다.

다. 예술품, 공예품의 자산 신탁 사업을 모색하고 문화 소비 대출 사업을 장려한다. 문화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인터넷 금융을 접목하여 문화 분야의 정보 소비를 촉진한다.

- (11) 문화 산업과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중국 특색이 있는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가 문화산업에 마련해준 새로운 기회 그리고 문화산업과 정보업, 건축업, 관광업,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의 추세와 융자 특징을 접목하여 사업 융자의 산업 표준을 연구한다. 인터넷 금융사업과 문화 사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관에서 기술, 정보, 자금 우월성을 발휘하여 문화 창업 창 의 인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특색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 (12) 문화 자산 관리 방식을 혁신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문화 대출 사업의 자산 증권화를 추진하여 대출 자원을 방출하며 금융기관 자본 충족을 부담을 해소하여 존량 자산을 활성화하며 문화 채무 관리를 형성한다. 자산 관리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시장화로 문화기업 자산을 개혁하는 것을 장려한다. 문화류 불량 자산의 처분 효율을 높인다.

4. 조직적 실행과 부대 보장 강화

- (13)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에서 문화 금융 협력 부처간 상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문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방 문화 주무부처, 인민은행 지사, 재정부서는 본 의견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추어 문화 금융 사업의 지도 사업을 강화하며 본 지역의 문화 금융 사업의 구체적 조치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문화기업과 금융 기업을 상대로 홍보와 협조를 강화하며 정부와 은행 협력을 긴밀히 하여 은행과 기업의 연결을 강화하며 실행한다. 문화 주무부처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정부부처의 협조 우월성과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우월성을 발휘하여 협력방식, 내용, 규모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모색하고 실천한다. 금융기관은 문화 금융 서비스의 전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문화 금융 서비스 전문 기관의 구축, 관리와 자원 협조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 금융 사업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 점차 개척하고 혁신한다. 문화기업은 자체 경영관리와 재무 운영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금융기관과 연결하여 문화기업과 금융기관의 가격 협의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14) 문화 금융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문화 산업 융자 규모 통계를 연구하고 문화 금융 서비스 표준의 작성을 모색한다. ‘문화부 문화 산업의 투자/융자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한다. 문화 산업 중점 융자 산업 목록을 작성하고 융자 사업의 추천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문화 산업 투자/융자 분야의 금지목록을 작성하며 지역별로 문화기업 융자 산업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중점 사업의 시범 인도 역할을 발휘한다. 문화기업의 신용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은행의 신용 시스템, 문화시장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 등을 바탕으로 신용 정보 기초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추진하며 시장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문화기업과 금융기업간의 정보 연동을 촉진한다. 문화부와 금융기관의 협력 메커니즘을 한층 더 완비하는 한편 보험, 채권, 증권, 투자 등 기관의 협력을 추진한다. 문화 금융 협력의 정책, 경험과 성과 효력을 홍보 및 확대하고 문화 금융 지식을 보급하며 문화 금융 인재 육성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시스템, 문화기업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역량을 높여 문

화 금융 발전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한다. 연결고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 금융 사회화 조직의 구축을 모색한다.

- (15) 재정에서 문화 금융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은 문화 산업 발전 전문 자금에서 전문 자금을 마련하여 문화 금융 협력의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 금융 지원 계획’을 실행하여 문화기업이 사업 실행에서 더 많은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정정책, 산업정책과 문화기업의 수요가 잘 연결되도록 한다. 이자보조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문화 금융 협력 대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의 구축을 추진하며 사업의 진입, 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라이브러리에 진입하는 사업의 질을 확보한다. 재정정책의 인도 시범과 추진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대출 이자보조, 보험료 보조 등 정책 조치를 완비 및 구체화하고 금융자본이 문화사업에 투자되도록 인도하여 문화 산업 대출 리스크 분담 보상 메커니즘을 점차 구축하여 문화기업의 융자에 리스크를 방지한다.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2014년 3월 17일

9.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제목	关于大力支持小微文化企业发展的实施意见
제재일	2014-07-11
출처	문화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지원 시행의견 문산발〔2014〕2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중소기업 주무부처·행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¹¹¹⁾ 문화라디오방송국·중소기업 주무부처·재무국, 각 계획단열시 문화국·중소기업 주무부처·재정국: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급성장하면서 문화시장 활성화, 산업활력 주입, 문화혁신 촉진, 사회 취업 증가, 문화공급 다양화, 대중들의 정신문화 수요 만족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고 중국 문화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런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은 경영, 원가, 자금조달, 인재, 시장환경 등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다양한 형식의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지원’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국발(2012)14호)에 근거하고 기존의 발전 상황에 접목하여 본 의견을 제정한다.

1.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을 증시해야 함

(1)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전면적 개혁 심화 전략 배치의 구체적인 임무이자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전략목표의 중요한 조치와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임무의 중요한 일환이다. 본 의견에서 지원하는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란 문화예술 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게임 산업, 문화 산업, 예술품 산업, 공업 미술 산업, 문화 컨벤션 산업, 창의 설계 산업, 온라인 문화산업, 디지털 문화 서비스 산업 및 무형문화유산 생산성 보호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 분류 표준 규정》(공신부연기업(2001)300호)에 부합되는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을 의미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혁신 역량 향상, 발전규모 확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우수한 환경을 마련하여 문화 생산력을 한층 더 자유롭게 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 창조 활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2. 혁신 발전 역량 증대

(2) 기업 발전의 우위를 육성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인도하여 대중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만족하는 것을 지향하고 창의와 혁신 드라이브로 ‘전문, 정밀, 특색, 새로움’ 및 대기업과 협력 발전하는 방향으로 특화 경영, 혁신 제품과 특화 서비스를 펼치고 과학기술 역량

111)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과 창작 수준을 향상하는 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육성한다. 문화 창 의와 설계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 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의 부대 조치를 수립하여 관철 실행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지원하여 장비 제조 산업, 소비품 공업, 건축 산업, 정보 산업, 관광 산업, 스포츠와 특색 있는 농업 등 산업과의 융합 발전 공간을 확대한다.

- (3) 기업의 혁신 의식을 고취시킨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서 전통문화와 현대 요소를 접합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재산권, 저작권, 기술, 정보 등 요소 시장의 육성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문화 창의 성과 전환과 시장화 활용 수준을 향상하는데 조건을 마련한다. 문화 브랜드의 건설을 강화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전문화, 브랜드화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 법규, 대표적인 사례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 (4)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업무교육, 대표적인 사례 수립, 정리양식, 경험 보급 등 형식을 통해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 단계와 발전 목표에 적합한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관리수단을 혁신하며 정보화 관리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도하여 기업 성장 활력을 향상시킨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서 전자상거래, 제3자 결제 플랫폼 등을 활용하고 경영 분야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 원가를 낮추며 자원 활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문화 산업의 표준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 상품·서비스·관리 등 관련 표준을 수립하고 보급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지원한다. 창업 서비스기관, 관리 컨설팅 기관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상대로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3. 우수한 발전 환경 마련

- (5) 문화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문화분야에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장려 및 인도하는 정책을 관철 실행하고 사회자본이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투자 및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문화 시장의 행정 심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 및 감소시키고 행정심의 승인을 취소 및 이양하는 사업을 실행한다. 문화시장의 행정 심의 정보 공개 제도를 한층 더 완비하고 행정 심의 승인 효율 및 문화시장 행정 심의 승인사항을 조회 및 진행하는 등 편의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 문화시장 신용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신용 상실에 대한 처벌과 신용 준수에 대한 격려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성실, 자율, 신뢰, 믿음 경영을 하도록 인도한다. 12318 문화시장 신고체계를 완비하고 권한유지 신고 채널을 원활하게 하며 불법 경영활동을 단속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6) 창업 매개체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 문화산업단지, 기지 혁신 운영 관리 모델을 인도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에 서비스하는 수준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서비스 효과를 국가급 문화 산업 시범단지, 시험단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한다. 방치해둔 공장, 장소와 폐기된 산업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우수한 창업 지도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규범화 운영, 실적이 우수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창업단지로 개조 건설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특색 있는 문화 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규범 및 인도를

강화하고 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완비하며 관련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클러스터 발전 환경을 개선한다. 인터넷 창업 플랫폼, 거래 플랫폼 등 신흥 창업 매개체의 발전을 장려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인터넷 창업 발전 채널을 확대한다. ‘성장형 소형 및 초소형 문화 지원 플랜’을 실행하여 발전 잠재력을 갖춘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과 인큐베이터 효과가 우수한 소형 및 초소형 문화 창업 발전 매개체를 육성한다.

(7) 인재 육성을 가속화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육성사업을 ‘국가 중소기업 은하 교육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경영관리 역량의 육성을 강화한다. 대학교, 직업학교, 산업협회,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창업 매개체와 사회 교육 서비스 기관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경영자와 창업자에게 목적성 있는 지식교육과 기능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인터넷 강의실 구축을 추진하고 인재 육성 모델을 혁신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교육사업의 커버리지 범위를 더 확대한다. 문화인재 기능 평가의 체제 장벽을 해소하고 사회 문화 예술 인재에 개방된 직함 평가 제도를 점차 구축한다. ‘문화산업 창업 창의 인재 지원플랜’을 실행하고 창업 창의 인재 성과 전환, 시장 확대의 수요에 적응하고 시장화 방법을 활용하여 두루 혜택을 받는 원칙을 구현하며 적합한 플랫폼을 통해 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표현기회를 제공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여 창의 성과의 전환과 창업단체의 육성을 촉진한다.

(8) 기업의 마케팅 경로를 확대한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 산업 전시회, 중소기업 전시회,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상대로 하는 목적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정부부처는 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문화 전시행사에 참가하고 참가 정원, 비용 등 측면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적당하게 치중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육성한다. 해외 영사관 문화처(팀), 해외 중국문화 센터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해외 문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지원 조치를 검토 및 작성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국제 문화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9) 공공문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정부에서 사회역량에 서비스를 구입하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문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이 사업 보조, 목적성 있는 후원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도록 한다. 정부 조달 과정에서 각급 문화 주무부처는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및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지분이 30%에 달하는 연합체에서 자주 지적재산권을 가진 입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격과 우대정책 규정 범위 내에서 높은 표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금융 서비스 체계 건전화

(10) 금융 서비스 방식을 혁신한다. 문화 행정부처, 중소기업 주무부처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더 심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대한 대출 역량을 강화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상대로 기업 재무 컨설팅, 사업 연결, 대출 전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며 보험기관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특징에 부합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며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모색한다. 금융기관을 인도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금융서비스 편의화, 규모화, 차별화 수준을 더 향상시키도록 한다. 각급 정부에서 구축한 중소기업 담보 플랫폼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문화 금융 지원 플랜’을 실행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 서비스 규모와 수준을 향상한다.

- (11) 기업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집합채권, 집합신탁, 단기 융자권과 산업 집합 채권 등을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소액 대출 회사 등 기관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은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 체계와 지역성 주주권 거래 시장에서 지분 융자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다양한 유형의 사모 주주권 투자 펀드, 창업 투자 기업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다양한 종류의 거래 장소를 정리 정돈하는 기반 위에 문화 재산권 거래 장소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문화 금융 서비스 센터를 바탕으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5. 재무·세무 지원 정책 완비

- (12) 재정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재정정책 인도 시범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며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창업 발전을 촉진한다. 중앙재정 문화산업 발전 특별자금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보조금, 대출이자 보조, 보험료 보조 등 조치를 완비 및 실행하여 재정정책, 산업정책과 기업 수요의 효과적인 연결을 구현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이 사업실행 중 금융자본,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곳에서는 ‘문화 금융 지원 플랜’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한다. 각급 재정부처는 현지 실제상황에 접목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을 촉진 및 인도하는 것을 강화하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인큐베이터 육성 전문 플랜을 수립 및 실현하는 것을 장려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융자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한다.
- (13) 세율 우대 정책을 실행한다.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 최저한도를 높이고 일부 소형 및 초소형 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일시 면제하고 소형 및 초소형 기업의 소득세를 50% 감면하며 일부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문화사업 건설비를 감면하고 일부 예술품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등 이미 출범된 세율 우대 정책을 실행한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애니메이션 기업 인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애니메이션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세율 우대 정책을 실행한다. 무형문화유산 생산성 보호 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연구해 완비한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하는 개혁 시험에 접목하여 문화 서비스 산업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하는 시범 범위에 포함시킨다.

6.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

- (14) 공공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문화사업의 투자/융자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한층 더

완비하고 정보 발표, 정책 조회, 용자 지도, 인재 교육 등 서비스 내용을 더 다양화 한다. 전국 문화시장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사업을 가속화하고 정책 지도, 정보 교류, 사업과 상품 조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의 경우,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상대로 한 특색 있는 전문 서비스 상품 개발을 모색할 수 있으며 플랫폼 네트워크 확산역할을 발휘하여 서비스 수준을 점차 향상시키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조건을 갖춘 경우, 국가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으로 인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신용시스템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신용도가 우수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 (15) 사회조직 역할을 발휘한다. 문화산업협회, 상인 연합회에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가입을 유치하도록 장려하고 산업협회, 상인 연합회가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산업의 자율화를 진행하며 산업표준을 수립하고 무역 분쟁을 조율하는 등 측면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산업협회, 상인 연합회가 다양한 유형의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매개체와 발전기획, 정보교류, 시장 소개, 창 의 전환, 투자유자, 인재육성 등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창업 발전을 지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한다.
- (16)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언론매체와의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매체의 장점을 발휘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추세와 지원정책을 광범위하게 보도하며 성공한 기업의 대표적인 노하우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의 혁신, 창업 정신을 자극하며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창업과 발전에 유리한 여론환경을 조성하여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 자신감을 더 확고히 한다.
- (17) 지도 조율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각급 문화 행정부처, 중소기업 주무부처, 재정부처는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을 발전하는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실행하며 현지, 해당 부처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문화 건설사업의 전반 사업 배치에 포함시킨다. 현지에서 중소기업, 소형 및 초소형 기업 발전 사업 지도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화 행정부처를 지도팀에 포함시켜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을 지도, 조율하는 업무를 진행하여 정책 중복의 우위를 형성한다.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표본추출 검사와 일반화 모니터링 분석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각급 문화 행정부서는 현지 발전 상황에 접목하여 중소기업 주무부처, 재정부처와 함께 소형 및 초소형 문화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속히 검토 작성하여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 임무를 세분화하여 모든 정책 조치의 실행을 추진한다.

문화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2014년 7월 11일

10.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침해 단속 ‘검망2015’ 특별 단속 진행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开展打击网络侵权盗版“剑网2015”专项行动的通知
게재일	2015-6-11
출처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공업정보화부,公安部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침해 단속 ‘검망2015’ 특별 단속 진행에 관한 통지

각 성(자치구, 직할시) 판권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인터넷 홍보 판공실, 인터넷 관리 판공실), 통신 관리국, 공안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¹²⁾ 판권국,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상하이(上海)시, 충칭(重庆)시 문화시장행정집행총대¹¹³⁾: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량 위조품 제조 판매 단속 업무에 대한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중국국가판권국,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公安部(이하 ‘국가판권국 등 4개 부처’)는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제11차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 특별 관리 ‘검망행동’(이하 ‘검망2015’ 특별단속)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업무 목표

2015년 6월부터 6개월 간 중대 사건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조사 처리를 핵심으로 음악, 영화·드라마, 뉴스, 게임, 문자, 소프트웨어 등 작품을 불법 전파하는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해적판) 사이트와 스마트 모바일 단말 제3자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특별 정비함으로서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 인터넷 광고 연맹, 스마트 모바일 단말 앱스토어, 인터넷 자막팀, 온라인 판매 플랫폼 및 웨이보(微博), 위챗(微信) 등 정보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법 집행 감독 관리 방식 및 수단을 혁신하며 부처간, 지역간 정보 공유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단속의 발 빠른 대응과 장기간 효력이 있는 체계를 보완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에 대한 행정 처벌 및 형사 단속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인터넷 공간을 관리하고 인터넷 저작권 환경을 정화하며 인터넷 저작권 생태를 최적화한다.

2. 핵심 과제

첫째, 인터넷 음악 저작권을 규범화하는 특별 단속 활동을 개시하여, 음악 사이트의 저작권에 대한 법 집행 감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허가 없이 전파되는 음악 작품의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며 음악 사이트의 저작권 자율 및 상호 라이선싱을 추진하고 양호한 인터넷 음악 저작권 질서 및 운영 생태를 구축한다. 둘째,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규범화하는 저작권 특별 단속 활동을 개시하여,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핵심기업이 자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검사하여 스스로 바로잡도록 추진하고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를 진행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조사 처리하며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이

112) 병단(兵團):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13) 집행종합본부

용해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하는 추세를 억제한다. 셋째, 스마트 모바일 단말 제3자 애플리케이션(APP)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특별 단속 활동을 진행하여 애플리케이션 기업 및 앱스토어의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한다. 넷째, 인터넷 광고 연맹을 규범화하는 특별 정돈 행동을 개시하여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를 고의로 지원하는 인터넷 광고 연맹에 대해 단속하고 대형 인터넷 광고 연맹을 지도하여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하여 디지털 출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저작권 감독 관리 강도를 높이며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불법 전재 또는 전파하는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전통 출판과 신흥 매체간의 융합 발전을 보장하고 추진한다.

3. 업무 조치

- (1) 대중의 신고 고발을 적극 장려한다. 신문, 방송, TV, 뉴스 사이트 등 뉴스 매체를 충분히 이용해 특별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중 신고 고발 채널을 원활하게 활용하며 매체를 통해 신고 전화, 편지, 이메일, 위챗(微信) 등 신고 고발 방식을 반복적으로 공표하여 권리자 및 사회 각계가 사건 단서를 적극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사건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전형적인 사건을 분석하며 경고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특별 단속 활동 진행에 좋은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
- (2) 전면적인 단속 현황 검사를 진행한다. 관할 구역 내 인터넷 웹사이트의 수량을 파악하고 끊임 없이 업데이트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음악, 영화·드라마, 뉴스, 게임, 문학, 소프트웨어 등 작품을 전파하는 핵심 웹사이트와 스마트 모바일 단말 제3자 애플리케이션(APP) 및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 인터넷 광고 연맹, 스마트 모바일 단말 앱스토어, 인터넷 판매 플랫폼 등을 저작권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전면 단속 현황 검사를 진행한다. 관할 구역 내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시정하여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문제를 찾아내도록 하며 기업들이 발견한 문제를 기한 내에 정돈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정돈 개선하지 못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
- (3) 신속 처리 시스템을 완비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활동을 진행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행정 집행 부처는 법에 따라 해당 불법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통신 주무부처에 해당 인터넷 접근을 임시 정지하도록 즉각 요청하며 통신 주무부처는 관련 법률 범규에 따라 조치를 취해 인터넷 접근을 즉각 임시 정지시킨다. 각 지역 저작권 행정 집행 부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주무부처와 통신 주무부처의 지도 아래 기초 통신기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업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보-저작권 침해 삭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시켜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삭제시킨다.
- (4) 사건 조사 처벌에 전력한다. 각 급 판권 행정 집행부처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안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중요 안전을 확인하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여 사건 처리 수량과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저작권 침해 사실이 심각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웹사이트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하며 범죄 구성 혐의가 있을 경우, ‘두개 법 연결(两法衔接)¹¹⁴⁾’ 시스템에 따라

114) 행정집행과 형사사법의 연결, 필자주.

공안부처로 즉각 이관하여 입안 조사 처리해야 한다.

- (5) 장기적으로 효력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관권국 등 4개 부처는 공동 연합으로 일부 중대한 목적물, 심각한 불법 죄질, 사회적 영향이 열악한 중대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감독 처리하며 감독 처리에 포함된 안전에 대해 전문적인 테마로 연구 토론하고 감독 검사하는 등 방식으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각 지역은 상시적인 연합 감독 처리 체계를 완비하여 정기적으로 일부 중요한 사건을 감독 처리하며 즉시 감독·즉시 보고·즉시 사건 종결하도록 한다. 중요 음악 웹사이트·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터넷 광고 연맹에 대한 감독 관리 조치 및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업무 체계와 제도로 즉각 전환 한다. 권리자 및 기관이 인터넷 기업과 저작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웹사이트 판권 데이터 뱅크·권리자 권리 보호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하고 개선한다.

4. 행동 절차

- (1) 업무 배치 단계(6월1일—6월30일). 1.국가관권국 등 4개 부처는 특정 주제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특별 단속 활동을 전면 개시한다. 2.각 지역은 업무 계획과 시행 방법을 상부에 보고한다. 3.각 지역은 홍보 방법을 수립하고 특별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 (2) 단속 현황 검사 단계(7월1일—7월31일). 1.각 지역은 중요 인터넷 기업이 스스로 검사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문제를 찾아낸다. 2.국내외 권리자 및 기관 그리고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신고 고발하도록 동원하여 사건 단서를 수집한다. 3.법 집행 교육을 진행, 각 관련 부처의 단속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3) 집중 단속 단계(8월1일—10월31일). 인터넷 음악 특별 단속,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공간 단속, 인터넷 광고 연맹 특별 단속, 스마트 모바일 단말 앱스토어 특별 단속의 규범화를 중심으로 각 지역은 상급에서 이관하거나 또는 자체 수집한 사건 단서에 따라 단속 활동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행정 처벌과 형사 단속을 강화하여 일부 중대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집중 조사 처리한다.
- (4) 감독 총결산 단계(11월1일—11월30일). 1.국가관권국 등 4개 부처는 중요 지역, 중요 기업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하여 특별 단속 활동이 철저히 실시되도록 한다. 2.각 지역은 업무 상황을 취합하고 업무 경험을 총결산하여 부족한 점을 찾는다. 3.국가관권국 등 4개 부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본 특별 단속 활동에서 취득한 성과를 공개한다. 4.특별 단속 활동에서 성과가 뚜렷한 업체와 개인은 2015년 판권 집행 공로 업체 및 개인 장려 범위에 포함시켜 장려하며 중대한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 특별 장려를 한다.

5. 업무 요구

- (1) 고도로 중요시하고 심사에 포함시킨다. 각 지역은 본 특별 단속 활동을 고도로 중요시해야 하는바, 국가관권국 등 4개 부처는 해당 업무를 이미 2015년 전국 ‘두 가지 단속’¹¹⁵⁾ 업무의

핵심 심사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적시에 전국 ‘두 가지 단속’ 업무지도소조에 활동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각 지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 (2) 조율을 강화하고 세밀하게 배치한다. 각 지역 판권 행정 관리 부처는 현지 상황에 따라 문화 종합 집행 부처, 인터넷 정보 콘텐츠 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 부처 등을 조율하여 업무 과제를 배치하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며 6월 30일 이전까지 업무 계획을 국가판권국에 보고한다.
- (3) 정보를 취합하여 즉각 상부에 보고한다. 각 지역은 ‘검망2015’ 특별 단속 활동에 대한 정보 취합 및 상부 보고 업무를 고도로 중요시해야 한다. 성급 판권국, 문화시장 집행팀 및 인터넷 정보 콘텐츠 주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부처는 현지 관련 정보를 각각 취합하여 관련 업무 통계표(별첨 1,2 참고)를 작성하고 월별로 국가판권국 등 4개 부처에 각각 올려야 한다. 성급 판권국, 문화시장 집행팀은 12월 10일 이전까지 국가판권국에 본 특별행동단속 활동의 업무 총결산을 올려야 하며 상부 보고 자료는 글자수 2000자를 넘기지 않는다.
- (4) 긴밀하게 협동하고 연합 행동을 강화한다. 각 지역 판권부처, 인터넷 정보 콘텐츠 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부처 등은 협력을 강화하고 협동 작전을 펼치며 분업에 따라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다. 판권 행정 관리 부처는 특별 단속 활동의 선도 업무를 담당, 세부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정리하고 사건 단서를 수집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하며 통신 주무부처에 웹사이트 접근을 임시 정지하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하고 판권 감독 관리 업무를 진행, 특별 단속 활동의 홍보 및 장려 업무를 조직하며 문화시장 종합 집행기관을 지도, 조율하여 판권 집행 업무를 진행한다. 인터넷 정보 주무부처는 관련 부처에서 인터넷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조율하며 독촉한다. 통신 주무부처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사건의 조사 증거 수집 업무에 협조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의 등록 정보를제공에 협조한다. 저작권 또는公安부처의 단속결과 저작권 침해 현황이 심각한 웹사이트는 법에 따라 통신 업무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등록 말소시키고 관련 접속 서비스 이용 업체에 통보한다. 업계 자정 활동을 조직하여 진행한다.公安기관은 판권부처에서 이송한 범죄 혐의 안건을 즉각 수리하고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즉각 입안하여 저작권 불법복제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별첨: 1.’검망2015’업무 현황 통계표
2.’검망2015’단속 사건 정보표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2015년 6월 11일

115)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량 위조품 제조 판매 단속을 말함, 필자주.

11. ‘선조후증’ 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제목	文化部关于落实“先照后证”改进文化市场行政审批工作的通知
게재일	2015-7-2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선조후증’ 실행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문시합[2015] 62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¹⁶⁾ 문화라디오&TV방송국, 시장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행정법집행총대¹¹⁷⁾: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방법 배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 등 사항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 부처의 행정 심사승인 행위를 규범화하여 행정 심사승인 유관 업무를 개선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관철 집행하고 문화시장 진입에서 선조후증(先照后证)¹¹⁸⁾ 제도를 시행하고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를 개선하여 일부 지역의 일부 심사승인 항목 무단 중단, 심사승인 등급 무단 조정, 심사승인 조건의 무단 변동 및 규정 기한 경과 심사승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문화시장 주체 진입의 ‘선조후증’ 제도를 관철 집행한다. ‘선조후증’ 제도 실시는 행정 심사승인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며 시장 활성화에 유리하다.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문화부는 공연, 오락, 온라인 문화 등과 관련된 주체 진입의 심사승인 항목에 대해 ‘선조후증’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행정부처는 편리, 효율, 규범 원칙에 따라 업무 절차를 보완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실행하며 법에 의해 행정 심사승인 업무를 규범화한다.

(1) 업무 연결을 잘 해야 한다. 공상행정부처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공상등기정보 발송 매커니즘을 이미 구축한 경우 문화행정부처는 공상 발송 정보를 접수한 근무일 2일 내에 정보 입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시장 주체의 허가 신청을 처리하라고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공상등기정보 발송 매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문화행정부처는 문화시장 주체가 경영활동 개시 전 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능동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2) 신청서류를 간소화한다. <영업성 공연 허가증>, <오락경영허가증>,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 신청 업무 수리 시, 공상행정부처가 등록 승인한 경영주체의 명칭, 주소, 등록 자본금, 경제 유형, 법인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등 사항은 영업허가증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문화행정부처는 영업허가증 발급 시 이미 제공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3)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 업무를 시행한다. 경영성 인터넷 문화업체 설립에 필요한 최저 등록자본금 100만 위안, 온라인게임 경영활동 종사에 필요한 최저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이라는

116)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17)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118)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관련 허가증 발급

제한을 취소한다. 문화행정부처는 공연 매니지먼트, 공연장소, 오락장소, 온라인문화 등 경영업체 설립을 심사승인 할 때 신청인이 관련 자산보고서 혹은 자금증명 및 설립 정관, 계약서, 기업관리제도 등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4) 주소(경영장소) 등기수속을 간소화한다. 문화행정부처는 전자게임기를 포함한 유희오락장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총량과 분포 계획에 대한 기준을 취소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오락장소관리조례> 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 규정의 조건에 따라 현지 실제 상황 및 관리 수요와 결부시켜 시장주체 진입의 편리, 미성년자 권익 보호 원칙에 따라 경영장소 설립 지점의 확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문화행정부처는 심사승인 수리 후, 현지 통일 측량 표준에 따라 장소 설립 지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장소 주변 환경과 초중고와의 거리가 설립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하여 서면 의견을 제출한다.

2. 권력 리스트를 작성하여 행정 심사승인 행위를 규범화한다. 문화부는 국무원의 관련 기준에 따라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사항 리스트(별첨 1 참조)를 발표하고 심사승인 항목, 설립 의거와 심사승인 등급을 명확히 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처는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사항 리스트에 따라 해당 부처의 권력 리스트를 작성하고 담당하는 심사승인 항목, 조건, 절차와 기한을 발표해야 하며 마음대로 항목을 변동하고 심사승인 문턱을 높이거나 낮추고 처리 기한을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 (5) 심사승인 등급을 규범화한다. 현재, 개별 성의 문화행정부처는 문화시장 분야의 해외 심사승인 항목을 한층 더 하급기관으로 이양하여 지역을 초월한 승인 신청이 어려워지고, 심사승인 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과 정책 장벽을 유발하여 문화상품의 전국적인 유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 2013년 이후 문화부가 이양한 해외 행정 심사승인 항목에 대해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원칙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더 이양하여 심사승인 등급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6) 정부정보공개를 잘해야 한다. 문화행정부처는 담당하는 모든 행정 심사승인 항목에 대해 업무처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신청조건, 서류, 기본 절차, 심사승인 기한, 주의사항 등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시범 견본 및 자주 나타나는 틀린 사례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처리 지침서는 신청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처는 법에 의해 심사승인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기밀, 상업기밀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 외에 해당 부처 행정 심사승인 사항의 수리, 진전 상황과 결과를 즉시에 정확하게 공개하여 신청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법에 의해 향유하는 행정 재심의 신청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 (7) 심사승인 행위를 규범화한다. 문화행정부처는 담당하는 심사승인사항에 대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심사승인 절차, 표준, 요점을 세분화하고 행정 재량권을 엄격하게 규범화해야 한다. 행정 심사승인 대장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시켜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심사승인 상황(별첨 2 참조)을 제출해야 한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신청인 평가논의제도 구축을 시행하여 매년 무작위로 일정 수량의 신청인을 추첨하여 심사승인 평가 논의를 진행한다. 심사승인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허가 법규 위반, 배임 및 직무유기를 저지른 실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과 기율에 의해 엄격하게 처리한다.

- (8) 랜덤 추출 검사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문화행정부처는 해당 지역의 문화시장과 법 집행 조직을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랜덤 추출과 일상 검사를 상호 결합한 감독검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부처의 권력 리스트에 따라 건별로 문화시장 검사항목을 정리한다. 법규에서 현장 검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 검사를 해야 하고 명확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년 해당 관할구역의 모든 문화시장 주체에 대해 최소한 보편성 검사를 1회 진행한다. 문화행정부처는 해당 지역의 랜덤 추출 검사 방법을 제정하여 무작위로 추출 검사 업체를 확정하고 추출 검사 범위, 비율, 빈도, 결과 공시 등 내용을 명확히 한다.

3. 심사승인 요원의 직무 이행 능력을 높인다. 문화행정부처는 교육, 문건 검사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사승인 요원의 업무 능력과 직무 이행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 (9) 전자정무를 추진하고 온라인 심사승인 업무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행정부처는 전국 문화시장의 기술 관리감독과 서비스 플랫폼에서 심사승인 업무를 진행하도록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 2015년 12월이 되면 모든 심사승인 업무는 모두 플랫폼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 (10) 심사승인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문화부는 교육 강사 인력풀 구축, 교육 교재 편집,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고 성급 문화행정부처의 심사승인 책임자와 강사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최소한 매년 1회 진행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해당 지역의 연간 교육 계획을 제정하여 시, 현(구)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관리부처의 책임자를 교육시키고 행정 심사 창구 담당자와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신입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 투입 전 교육을 진행한다.

문화부는 정기적으로 행정 심사승인 평가 검사업무를 진행하고 지방 문화시장의 일상 관리감독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추출 검사할 예정이며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감독 지도,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별첨

1.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항목 리스트
2.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대장 보고서

문화부
2015년 7월 2일

별첨 1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항목 리스트

1. 심사승인 등급: 문화부

- (1) 심사승인 사항: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공연매니지먼트 설립에 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1조
- (2) 심사승인 항목: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에 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1조
- (3) 심사승인 항목: 인터넷 문화업체의 수입 인터넷 문화상품의 내용 심사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확실하게 보류해야 하는 행정 심사승인 항목 설정의 행정 허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412호) 제194항

2. 심사승인 등급: 성급 문화행정부처

- (1) 심사승인 항목: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오락장소 설립에 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가무오락장소 설립에 대한 심사승인, 중외 합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유희오락장소 설립에 대한 심사승인
설립 근거: <오락장소관리조례>(국무원령 제458호) 제6조
- (2) 심사승인 항목: 홍콩, 마카오 서비스 공급업체의 중국 대륙에서의 중국측 지배 합자공연단체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중국대륙과 홍콩의 더 긴밀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하는데 관한 배치>(CEPA) 추가 협의 9, <중국대륙과 마카오의 더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CEPA) 추가 협의 9, <문화부의 [‘중국대륙과 홍콩의 더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 추가 협의 9]와 [‘중국대륙과 마카오의 더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에 관한 배치’ 추가 협의 9] 유관 사항에 관한 통지>(문시함[2012] 1916호)
- (3) 심사승인 항목: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의 중국대륙에서의 합자, 합작, 독자 경영 공연매니지먼트 투자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2조,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3] 44호) 제40항
- (4) 심사승인 항목: 타이완지역 투자자의 중국대륙에서의 합자, 합작경영 공연매니지먼트 투자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2조,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3] 44호) 제42항

- (5) 심사승인 항목: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의 중국대륙에서의 합자, 합작, 독자경영 공연장소 경영업체 투자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2조,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3] 44호) 제41항
- (6) 심사승인 항목: 타이완지역 투자자의 중국대륙에서의 합자, 합작경영 공연장소 경영업체 투자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2조,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3] 44호) 제43항
- (7) 심사승인 항목: 공연매니지먼트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7조
- (8) 심사승인 항목: 외국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외국문예공연단체 혹은 개인이 공연장소 경영업체 및 임시 구축장소에서 진행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에 관한 심사승인, 외국문예공연단체 혹은 개인이 비공연장소 경영업체에서 진행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에 관한 심사승인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6조,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 등 사항의 취소 및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3]19호) 제86항
- (9) 심사승인 항목: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6조
- (10) 심사승인 항목: 타이완지역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 개최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6조
- (11) 심사승인 항목: 미술품 수출입 경영활동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일반 미술품 수출입 경영활동에 관한 심사승인, 해외 상업성 미술품 전시활동에 관한 심사승인
 설립 근거: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 심사승인 항목 설정의 행정 허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제193호, <일련의 행정 심사승인 항목 취소 및 이양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3] 44호) 제39항, <‘미술품 수출입 관리 잠행규정’ 배부에 관한 문화부, 해관총서의 통지>(문시발[2009] 21호)
- (12) 심사승인 항목: 경영성 인터넷문화업체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 심사승인 항목 설정의 행정 허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第193项
- (13) 심사승인 항목: 게임유희장비 내용에 대한 심사확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역의 복제가능 개혁시범 경험
확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4] 65호) 별첨 1 제22항, <국내외기업의
게임유희장비 생산과 판매 허용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문시합[2015] 576호)

3. 심사승인 등급 : 현금 문화행정부처

(1) 심사승인 항목 : 오락장소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 가무오락장소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유희오락장소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설립 근거 : <오락장소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58호) 제9조

(2) 심사승인 항목 : 문예공연단체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7조

(3) 심사승인 항목 : 공연장소 경영업체 등록신고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8조

(4) 심사승인 항목 : 개인 배우, 개인 공연 매니저의 등록신고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0조

(5) 심사승인 항목 : 영업성 공연의 심사승인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 <영업성공연관리조례>(국무원령 제528호) 제14조

(6) 심사승인 항목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업체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 (현금 이
상)

서브 항목: 없음

설립 근거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363호) 제4조

12. 문화부의 뉴버전 문화시장경영허가증 사용에 관한 통지

제목	文化部关于启用新版文化市场经营许可证的通知
게재일	2016-2-29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¹¹⁹⁾ 문화라디오&TV방송국, 시장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 행정 법 집행총대(总队)¹²⁰⁾:

국가의 간정부권(简政放权)¹²¹⁾, 선조후증(先照后证)¹²²⁾의 개혁 요구를 관철 시행하고 문화시장의 행정 심사승인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문화시장 경영허가증(이하 약칭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는 뉴버전의 허가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뉴버전 허가증의 표지 양식은 한가지로 통일하며 원본과 사본으로 나뉜다. 원본과 사본의 정면 내용은 일치하며 <뉴버전 문화시장 경영허가증 인쇄제작 표준>(별첨 1)에 따라 인쇄제작하고 <뉴버전 문화시장 경영허가증 출력 표준>(별첨 2)에 따라 출력한다.
2. 뉴버전 허가증은 옛 버전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대해 조정했고 총 9가지 양식이며 각각 상이한 유형의 시장 주체에 적용된다. 허가증 양식 및 조정 후의 기재사항은 <뉴버전 문화시장 경영허가증 출력 표준>을 참조한다. QR코드에 허가증의 기본정보, 특별 정보와 처벌정보 등을 게재한다.
3. 뉴버전 허가증과 옛 버전 허가증은 한 동안 병행 사용한다. 2016년 4월 1일부터 뉴버전 허가증을 사용하고 옛 버전 허가증 발급을 중단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옛 허가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옛 버전 허가증의 사용은 늦어도 2017년 3월 31일을 넘기지 않는다.
4. 민족자치구지역은 허가증에 해당 민족의 문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성(자치구) 문화청에서 소수민족 문자를 사용하는 허가증 원본, 사본 샘플을 문화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각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해당 관할 구역의 허가증 인쇄제작 업무를 책임진다. 유관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고정 인쇄제작업체를 확정하고 <뉴버전 문화시장 경영 허가증의 인쇄제작표준>이 규정한 표준에 따라 뉴버전 허가증 인쇄제작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인쇄제작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 인쇄제작 품질이 불합격된 허가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출고를 금지하고 폐기 처분하도록 한다.

119) 병단(兵團): 신장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20) 종합집행본부

121) 정부기관을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

122)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관련 허가증 발급

6. 뉴버전 허가증은 문화부에서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설계하고 판권은 문화부 소유이다. 뉴버전 허가증의 소스 파일은 문화부에서 성급 문화행정부처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조직을 강화하여 뉴버전 허가증 교환발급 업무를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뉴버전 허가증의 사용 과정에서의 상황 및 문제점은 문화부에 즉시 보고한다.

상기 내용을 통지한다.

- 별첨: 1. <뉴버전 문화시장 경영허가증 인쇄제작 표준>
2. <뉴버전 문화시장 경영허가증 출력 표준>

문화부
2016년 2월 29일

13.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게재일	2016-6-20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최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각 방송 텔레비전 기구는 중앙의 이념과 중국의 관련 요구를 성실하게 실천하여 우수 혁신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혁신 창작과 혁신 집약 및 수입 후 활용 재창작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정확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주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유형의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일부 방송 기구가 여전히 지나치게 해외 프로그램 포맷에 의존하여,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비율이 비교적 낮고, 우수한 작품이 많지 않으며, 영향력이 크지 않고 원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여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건강한 발전 제약에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각급 방송 부문은 시진핑 총서기의 사상 선전 사업에 대한 일련의 중요 담화의 정신을 열심히 학습하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문화적 자신감, 문화적 자각, 문화 자강 의식을 수립하고,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적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연구개발하고 중국 문화 특색이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주의 문화 예술 번영 발전을 위해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 담화의 정신을 열심히 학습하고 철저하게 실천하여 방송 프로그램 자주 혁신 업무를 강력히 추진한다. 각급 신문출판방송행정부처와 각 방송기구, 특히 TV 위성 종합 채널은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 정신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혁신 정신을 문화예술 창작 생산 전 과정에 관철하고, 문화 예술 창작력 향상” 등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이 문화 건설이라는 전략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화문화 DNA와 중국 특색, 중국 스타일, 중국 기풍을 갖추어야만 중국몽(中国梦) 주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애국주의와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내포할 수 있고, 중국의 이야기를 더욱 잘 풀어내고 중국 정신을 선양할 수 있으므로, 방송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자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방송 편성과 홍보, 수상작 선정에 있어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 장려한다. 각 방송기구, 특히 TV 위성 종합 채널은 방송 프로그램 자체 창작 업무 강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오리지널 프로그램 제작을 자주 혁신 업무의 핵심으로 삼으며, 저녁 시간대에 자체 창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높이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하여 창작 인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자주 혁신 촉진에 유리한 통합 제도를 수립하여 개선함으로써, 자금·프로젝트·인재 등 각 방면에서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불러오는 훌륭한 혁신 모델을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 창작지도, 분기별 추천, 홍보 프로모션, 상벌 체제의 여러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정

부 부처, 산업 조직, 연구기관, 뉴스매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혁신 최적화 사업 메카니즘이 각 방송 기구가 제작하고 방송하는 자주 혁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기별, 연도별 작품 선정, 표창, 상금, 홍보 등 업무를 실시한다. 총국은 우수 혁신 프로그램 선정, 홍보 추천 및 황금 시간대 편성 등에 있어 자체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각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 부처는 이에 맞는 장려 지원 제도를 구축해 중국의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혁신 최적화 사업 기구와 각 지방 방송사의 프로그램 자주 혁신 제도가 상호 맞물리게 하고, 각 지방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강력 추진해야 한다.

3. 해외 저작권 포맷 프로그램 수입 등록허가 업무를 잘 수행하여 방송 질서를 보다 규범화한다.

각 TV 위성 종합 채널에서 방영하는 해외 포맷 수입 프로그램(2016년 새로 수입하거나 기존 수입한 프로그램 모두 포함)은 모두 2개월 전 이를 해당 성의 신문출판광전국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성의 신문출판광전국은 심의 및 동의 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수입 해외 저작권 포맷 프로그램은 방영할 수 없다. 해외 제작사와 공동 연구개발하고, 해외 인력이 주요 제작 업무를 맡거나 외국인이 프로그램 제작에 주요 지도 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은, 즉만약, 중국 측이 완전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외 저작권 포맷 수입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관리하여, 등록 절차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연간 해외 포맷 프로그램 수량에 합산한다. 각 TV 위성 종합 채널이 19시 30분부터 22시 30분 사이에 매년 방영할 수 있는 해외 저작권 포맷 수입 프로그램은 2편 이하로 제한된다. 모든 TV 위성 종합 채널의 연간 신규 방영 해외 저작권 포맷 수입 프로그램은 1편으로 제한되며, 첫해에는 19시 30분부터 22시 30분 사이에 방영할 수 없다.

각 TV 위성 종합 채널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수입 및 협력 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이미 방영했거나, 방영 중이거나, 방영 예정인 해외 저작권 포맷 수입 프로그램을 6월 15일까지 광전총국에 신고한다. 7월 1일부터 새로 방영되는 해외 저작권 포맷 수입 프로그램의 경우,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등록하지 않았음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즉시 방영이 중단되며, 해당 채널은 다음 1년 동안 해외 저작권 포맷 수입 프로그램의 방영할 수 없다. 각 방송기구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법률규정과 시장 규칙을 준수하며 표절, 모방,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4. 920 시간대(오후 9:20)를 프로그램 자주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기지로 삼아 편성한다.

각 TV 위성 종합 채널은 920 시간대 프로그램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자주 혁신 강화하고, 여러 가지 주제와 영역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TV스크린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의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1년에 한 시즌만 방영이 가능하다. 오락 프로그램의 과도한 재방송 편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920 시간대에는 전체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분명해야 하고, 소재를 고르게 배치 하며, 형태를 서로 구별하고, 품격이 각각 다양한 방송 효과를 드러내야 한다. 광전총국은 ‘전국이 통일적으로 움직인다’는 기조에 따라 920 시간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장르의 집중과 중복을 방지한다.

5.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평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각급 청취시청기구들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시청청취 평가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적시에 자주 혁신의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방법을 발견하여, 프로그램 자주 혁신 업무 강화에 대해 과학적인 건의를 제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방송과 동질화 추세에 대해서는 빠르게 경고해야 한다. 각 성급 신문출판방송행정 부처는 적시에 본 통지의 정신을 관련 방송기구에 전달하여, 관련 방송 기구의 프로그램 자주 혁신과 관련 질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지도하여, 광전총국의 각종 선전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등록된 수입 포맷(제휴) 프로그램에 대해 성실하게 심사하여 속지주의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한다.

14.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문화부의 의견

제목	文化部关于推动文化娱乐行业转型升级的意见
제재일	2016-09-18
출처	문화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문시발〔2016〕2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¹²³⁾ 문화라디오&TV 방송국, 시장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 행정 법집행총대¹²⁴⁾: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은 문화산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 부응, 문화소비 확대 및 유도, 취업 견인, 경제발전 촉진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무 오락과 게임 유희 등 전통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낡은 경영방식, 단일한 콘텐츠 유형, 협소한 소비군, 낮은 수준의 관리와 서비스 등 장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도 때때로 발생한다. 이는 업계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제약한다. 2013년 하반기부터 문화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서비스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참고 및 확대 가능한 사고방향, 방법과 길을 형성했다. 아울러 일부 가무오락과 게임유희기업이 선행 시범을 하고 있고 소비층 확대, 공공문화 서비스 참여 등 분야에서 성공적인 탐구를 진행했다. 이는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위해 유익한 경험을 쌓았다. 국가의 ‘안축조혜(稳促调惠)¹²⁵⁾와 ‘방관복(放管服)¹²⁶⁾에 관한 결정 배치를 관철 집행하고 문화소비를 확대하여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당의 18대 대회와 18기 3중, 4중, 5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시리즈 연설 정신을 심층 관철 집행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선도하고 융합 발전, 혁신 공급, 소비 대상 확대, 이미지 향상을 총체적 사고방향으로 하면서 사회적 효과를 최우선시 하도록 고수하며 정확한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업계의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대중의 문화오락생활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만든다.

123) 병단(兵團):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24)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125) 稳促调惠: 稳增长: 안정적인 성장, 促改革: 개혁 촉진, 调结构: 구조 조정, 惠民生: 민생 혜택

126) 放管服: 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 정부기관 간소화, 권력 기업으로 이양, 권력 이양과 관리 결합, 서비스 최적화

- (2) 기본 원칙. 관리감독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실현하며 주동적으로 서비스하고 양호한 상호 작용을 진행하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 양호한 시장 환경을 만든다. 기업의 주체 역할과 산업협회의 서비스 기능을 중요시하고 주체 책임을 실행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의 혁신발전의 내생동력을 자극하며 대중을 위해 내용이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주요 목표.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경영관리수준을 높여 해당 산업의 장소가 쾌적하고, 내용이 건전하고, 서비스가 규범화되고, 업종이 다양하며, 관객이 다양하고, 이미지가 긍정적이어서 다양한 소비층에 적합하고 대중의 문화생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문화 소비 장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 (1)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콘텐츠 구축을 강화한다.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은 사회적 효과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고수하면서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의 상호 일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선양하며 부패하고 낙후한 문화를 자각적으로 저지하면서 문화콘텐츠의 창작 생산에서 전파 전시까지 등 각 과정의 내용을 스스로 심사하도록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중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당대 중국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중화문화 정신을 구현하며, 중국인의 심미적 추구를 반영한 우수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더 많이 창작 생산하도록 장려한다.
- (2) 생산기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게임유희 장비 생산기업이 체감, 멀티 특수효과, 가상현실, 증강 현실 등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하고 지능 계발, 건강, 기능이 좋고 인터넷 경기기능을 갖춘 게임유희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장려한다. 하이테크기업이 자사의 연구 실력과 기술 우위를 이용하여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에 진입하고 합작하여 상품 개발 및 생산과 오락장소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업계가 신(新)이념, 신관념, 신기술을 흡수하도록 촉진하여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혁신창조의 동력과 활력을 강화한다. 상품개발로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전환 및 업그레이드로 상품 개발을 견인하여 단계별로 산업사슬의 상하부 라인 호응, 협력 상생 구도를 형성한다.
- (3) 오락장소가 경영 업종을 다양화하도록 장려한다. 게임유희 장소의 적극적인 새로운 장비 사용, 서비스 환경 개조, 경영방식 혁신을 장려하고 그가 온라인 서비스, 캐주얼한 피트니스, 체감 게임, e-스포츠, 음악 북 카페 등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가무오락장소가 장소와 장비 우위를 이용하여 법에 의거하여 영화 관람, 공연, 게임, 경기 중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멀티 기능을 갖춘 문화엔터테인먼트 체험센터로 거듭나도록 장려한다. 대형 상업종합시설에 온라인 서비스, 가무오락, 게임유희, e-스포츠 등 다양한 경영 아이টে을 아우르는 도시 문화엔터테인먼트 종합장소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인터넷+’ 발전 추이에 발맞추어 오락장소와 인터넷의 결합 발전을 장려하여 오락장소 안팎, 온오프라인의 상호 작용을 실현하고 오락장소의 체험식 서비스를 강화하여 신형 문화산업 업종을 끊임없이 확장한다.

- (4) 오락장소가 체인 경영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체인 경영 발전으로 장소 관리와 서비스 표준화, 규범화를 추진하고 브랜드와 규모 효과를 형성한다. 오락장소가 지역과 지역 간의 체인 경영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체인 장소가 도시 문화엔터테인먼트 종합시설에 입주하도록 장려한다. 체인기업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업계 혁신을 선도하며 체인기업의 증시 상장을 지원하고 업계 브랜드를 더 크게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각급 문화행정기관은 규범화 관리, 준법 경영을 하는 체인장소에 대해 지원하며 그가 새롭게 설립한 장소에 대해 행정 안내를 하면서 심사승인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 (5) 게임유희 경기대회로 업계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중국의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와 지방 각급 산업협회, 생산기업, 오락장소 등은 함께 지역적, 전국적 나아가 국제적 게임유희 경기시합을 만들도록 지원하며 경기 플랫폼을 토대로 기타 파생 사업을 전개하고 경기시합으로 게임유희 상품의 연구개발 및 홍보, 경영 업종의 전환과 업계 이미지 향상을 견인한다. 각급 문화행정기관은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각종 경기시합과 게임유희업계의 융합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 (6) 공공문화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오락장소가 중노년층, 저소득층 및 특수 계층을 상대로 하는 전용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오락장소가 기층 공공문화서비스에 동참하고 여건이 되는 경우 정부 구매 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성 문화 예술 활동을 조직 및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오락장소가 예술 강좌, 성악과 악기 및 무용 훈련, 피트니스 등 다양한 형식의 편민이민(便民利民) 공공문화서비스를 펼치도록 장려한다. 생산기업이 공공문화 서비스에 적합한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7) 오락장소에 대한 환경 서비스 전개 등급 평가를 모색한다. 산업협회는 오락장소의 환경서비스 평가표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환경서비스 등급 평가 업무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장소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환경 배치를 최적화하며 규범화 관리 수준을 높여 장소가 밝고 정결하고 개방적이고 규범에 맞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급 문화행정기관,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은 환경서비스 등급 평가가 높은 장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환경서비스 평가 등급이 낮은 장소에 대해서는 검사와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 (8) 엄격한 업계 자율을 시행한다. 오락장소는 의법(依法) 경영, 성실 경영을 해야 하고 음란물, 도박, 마약, 조폭사회와 연관이 없어야 하며 규칙을 어기지 않고 법과 규칙의 경계선에서 오가서는 아니 되며 안전생산 주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업계의 전체적 이미지를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 전환 및 업그레이드 명의로 법을 어기면서 오락장소의 경영활동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금지내용과 도박 기능이 있는 게임유희 장비의 생산, 판매, 경영을 엄격히 금지하며 오락장소에서 금지 내용이 있는 노래, 화면을 방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 업무 요구사항

- (1) 좋은 정책 환경을 만든다. 선조후증(先照后证)¹²⁷⁾을 실행하여 문화시장 행정 심사승인 업무

127)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관련 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를 개선하는데 관한 문화부의 통지>, <내자/외자(内外资)기업의 게임 장비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데 관한 문화부의 통지>, <게임유희 장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관한 문화부와 공안부의 통지> 등 이미 출범한 정책 조치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 심사승인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게임유희 장비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유희오락장소의 총량과 배치 기준을 전면적으로 취소해야 하며 총량과 배치 계획 등을 이유로 오락장소의 심사승인 접수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며 천편일률적인 업계 전체의 영업중단 정돈을 진행해서도 아니 되며 업계발전을 제약하는 정책 규제와 제도의 장벽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오락장소에서 생겨나는 신업종, 새로운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의 특징에 맞는 관리감독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혁신해야 한다. 세금주무부처에 협조하여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영개증(营改增)¹²⁸⁾ 정책을 잘 시행하여 업계의 세금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

- (2) 업계의 지원강도를 높인다. 문화산업분야의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수단을 잘 활용하여 업종 전환 및 업그레이드,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브랜드 기업의 지역 간 경영을 장려하고 민간자본이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며 기업의 증시 상장, 융자 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오락장소가 제공하는 무료 혹은 저비용 공공문화서비스를 해당 지역 정부가 사회역량으로부터 공공문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장소를 확정한다. 현장 견학, 시범 유도, 토론 교류, 업계 교육, 사례 발표, 경험 확대, 행정 장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업계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질서 있게 추진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최소한 3개 전환 업그레이드 중점 도시(구)를 확정해야 하고 각 중점 도시(구)는 각각 3-5개 가무오락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 장소와 게임유희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 장소를 발전시켜야 한다. 시범장소는 문화산업 우대정책과 정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누리고 정부의 공공문화 서비스 항목 구매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정부, 협회 등이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누리게 된다. 시범장소가 조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장소를 개설하는데 대해서는 행정 심사승인 편리를 제공한다.
- (4)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처와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내용 합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며 현장 순찰과 무작위 랜덤 검사를 강화하고 내용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며 법에 의해 법을 어기고 법과 규정의 경계선을 오가는 등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면서 시장 질서를 끊임 없이 규범화해야 한다. 신용관리감독 매커니즘을 정착시키고 오락장소의 기반을 파악하며 장소의 신용정보를 완비시키고 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오락장소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신용약속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연합 처벌 조치를 실시한다. 법에 의거하여 오락장소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장소를 취소하며 법에 의거하여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오락장소의 엔터테인먼트경영허가증을 말소시킨다.
- (5) 산업협회 역할을 발휘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처는 지방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산업협회의 구성 조율, 업계 서비스, 자율

128)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규범 등 역할을 발휘한다. 중국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가 업계 규범, 자율 공약을 제정하고 오락장소 환경서비스 등급 평가 업무를 진행하며 신용평가체계를 모색 구축하여 업계의 규범화된 발전을 유도하도록 지원한다. 각급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가 연간 총회, 포럼 등 업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계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업계의 경영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을 지원한다.

- (6)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만든다. 문화엔터테인먼트업계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홍보 보도와 여론 방향을 강화하고 전환 업그레이드를 위해 양호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각급 문화행정부처는 업계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 능동적으로 홍보 소개하고 현지 주요 언론 미디어를 초청하여 전환 및 업그레이드 업무의 진행에 대해 추적 보도, 특별 보도를 하도록 한다. 언론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환 및 업그레이드 업무의 진전을 통보한다.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범장소 업무 기록 문서를 만들어 시점장소의 신규(新旧) 변화를 이용하여 대표 사례 홍보, 시범 유도를 진행한다.

각 성급 문화행정부처는 2016년 10월 28일 전에 해당 지역의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사업 시행방법(중점 도시, 시범장소 이름, 주소, 담당자와 연락처 및 업무 조치 포함)을 문화부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말일에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사업의 시행 진도, 주요 성과, 문제점 등 상황을 문화시장사(文化市场司)에 보고한다. 문화부는 2016년 4분기부터 사업 진전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적당한 시기에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 조사연구 및 지도 감독을 진행하며 2017년부터 사업이 뛰어난 지역, 협회, 기업에 대해 표창 장려한다.

문화부
2016년 9월 18일

15.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제목	文化企业无形资产评估指导意见
게재일	2016-3-30
출처	중국자산평가협회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배부에 관한 통지 중평협[2016]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자산평가협회(공인회계사협회):

〈국유문화기업이 사회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사회이익과 경제이익의 상호 일치를 추진하는데 관한 지도의견〉 정신을 관철 집행하고 자산평가업계의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 및 지도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과 자산평가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공중앙 선전부와 재정부의 조직 및 지도 하에 중국자산평가협회는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을 발표한다.

각 지방 협회는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을 즉시 평가기관에 전달하여 평가기관과 자산평가사를 조직하여 학습과 교육을 시키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즉시 중국자산평가협회에 보고하기를 바란다.

중국자산평가협회
2016년 3월 30일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지도의견

제1장 서론

제1조 자산평가사의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업무 이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공공이익과 자산평가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평가준칙--무형자산〉에 따라 동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제2조 동 지도의견에서 지칭하는 문화기업에는 신문출판발행 서비스기업, 라디오&TV 및 영화 서비스기업, 문화예술 서비스기업, 문화정보전송 서비스기업, 문화 콘텐츠와 디자인 서비스기업, 문화레저오락 서비스기업과 공예미술품 생산기업 등이 포함된다.

제3조 동 지도의견에서 지칭하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이란 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통제하는 실물형태가 없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며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일컫는다.

제4조 동 지도의견에서 지칭하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평가란 자산평가사가 관련 법률, 법규와 자산평가준칙에 따라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추산하여 전문성이 있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와 과정을 일컫는다.

제5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 진행 시 동 지도의견을 준수해야 한다.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가치 추산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진행할 때 동 지도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평가는 관련 평가 준칙의 규정을 이행한다.

제2장 기본 요구

제6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관련 법률, 법규와 자산평가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은 정신 상품 제공, 사상정보 전파, 문화 전승 사명을 갖고 있는 특수 기업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고 시종일관 사회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사회이익과 경제이익의 상호 일치 실현을 고수해야 하며 문화기업의 사회이익이 문화기업의 무형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제8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 무형자산 평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전문화된 감당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독립, 객관, 공정 원칙을 지키고 근면 책임을 다하며 직업적인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평가 결론에 대해 큰 영향이 있는 소홀함과 누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10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경제행위 유형과 결합하여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 (1)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는 단일 항목 자산평가업무 중의 무형자산평가와 기업가치평가업무 중의 무형자산 평가로 나뉜다.
- (2) 단일 항목 자산평가업무 중의 무형자산평가와 관련된 경제행위에는 주로 담보, 출자, 양도, 라이선스 사용, 재무보고, 세금 관련과 소송 등이 포함된다. 기업가치 평가업무 중의 무형자산평가와 관련된 경제행위에는 주로 구조조정, 합병 재편성과 청산 등이 포함된다.

제11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목적, 시장조건, 평가 대상의 조건 등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토대 위에 가치 유형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담보를 목적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시장 가치를 선택하거나 혹은 담보법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금융관리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평가 결론의 가치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출자, 양도, 허가 사용 등 거래를 목적으로는 보통 시장 가치 혹은 투자 가치를 선택하며 재무보고를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준칙의 관련 기준에 따라 이에 맞는 가치 유형을 선택한다.

제12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가설과 한정 조건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와 가치 유형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정보를 적당하게 이용해야 한다.

제14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특수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전문가 업무를 적당하게 이용해야 한다.

제3장 평가대상과 범위

제15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 대상이란 문화기업 무형자산의 재산 권익 혹은 특정 무형자산 조합의 재산 권익을 일컫는다. 문화기업 무형자산에는 통상적으로 저작권, 특허권, 전문 기술, 상표 전용권, 판매 네트워크, 고객관계, 프랜차이즈 경영권, 계약 권익, 도메인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문화기업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회계 과목 채산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평가준칙의 무형자산 관련 정의에 부합하는 자산은 모두 무형자산 평가대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범위는 평가대상의 선택에 복종해야 하고 최종 확정권은 의뢰인이 갖고 있다. 평가기관과 자산평가사는 전문 경험에 따라 의뢰인에게 평가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을 건의하고 업무 약정서에 평가범위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제17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 가치평가업무 중의 무형자산평가를 진행할 때 회계정책, 기업경영 등 상황에 따라 평가 대상 기업 대차대조표 안팎의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해야 한다.

제18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저작권 자산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의 특징과 결부하여 저작권의 법률, 경제, 기술 등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 (1) 저작권 재산권리에는 복제권, 발행권, 임대권, 전시권, 공연권, 방영권, 방송권,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촬영제작권, 각색권, 번역권, 편찬권 및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재산권리가 포함된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에는 출판자가 그가 출판한 도서와 간행물의 판본 양식 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 연극자가 그의 연기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 녹음녹화 제작자가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 상품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자사가 제작한 라디오TV 프로그램에 대해 향유하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는 문화기업의 특정 상품(작품)과 관련된다. 작품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작품마다 모두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저작권 대응 작품에는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한 문학, 예술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 등 작품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형식으로는 문자 작품, 구술 작품, 음악, 희극, 곡예, 무용, 서커스 예술 작품, 미술, 건축 작품, 사진 작품, 영화 작품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약도 등 도형 작품과 모형 작품, 컴

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대응 작품에는 녹음 녹화 제품 등이 포함된다.

상이한 유형의 문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작품 형식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작품은 창작인원, 창작 절차, 창작 비용, 전파 방식, 전파 비용, 전파 범위 등 부분에서 각자의 특징과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종적으로 문화기업 제품의 원가와 수익에 반영된다.

- (3) 문화기업의 저작권 자산평가 대상은 문화기업의 구체적인 작품과 저작권 중의 각종 재산권리 조합 방식에 따라 표현되며 구체적으로 ‘작품 명칭+권리 명칭’ 혹은 ‘XX작품의 XX권’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경제행위, 평가목적과 일치해야 하고 한 작품의 단일 항목 권리 혹은 다수 항목 권리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다수 작품의 모 단일 항목 조합 혹은 다수 작품의 다수 항목 권리의 조합일 수도 있다.
- (4)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저작권 자산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저작권의 권리 속성을 주목하고 저작권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해야 한다. 허가 받고 행사하는 저작권을 평가할 때는 구체적인 허가 기한, 허가사용범위, 허가사용방식 등 허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 (5) 문화기업 작품의 저작권과 동 작품 실체의 물권은 연관되면서도 구별된다. 작품 물권의 이전은 결코 동 작품 저작권의 전부 혹은 부분 재산 권익의 동시 이전을 초래하지 않는다. 회화, 서예, 조소(雕塑) 등 미술 작품의 물권은 회화, 서예, 조소 등 실물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물권은 실물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문화기업이 회화, 서예, 조소 등 실물 작품의 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동 작품의 저작권을 필연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문화기업이 미술 작품과 관련된 실물에 대해 평가할 경우 자산평가사는 의뢰인에게 평가대상에 저작권 재산권익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의뢰인이 제공한 권속 증명서류에 대해 상응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특허, 전문기술의 자산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의 특징과 결부시켜 특허 자산, 전문기술 자산의 법률, 경제, 기술 등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 (1) 특허 자산의 유형에는 통상 발명 특허, 실용신안과 의장권이 포함된다. 전문기술 자산에는 통상 설계자료, 기술규범, 공법 절차, 배합 비법, 도면, 데이터, 경영 비결 등이 포함된다.
- (2)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특허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특허 자산의 기본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통상 특허 법률 상태, 특허 명칭, 특허 유형, 특허출원 국가 혹은 지역, 특허출원번호 혹은 특허 번호, 특허 신청인 혹은 특허권자, 특허 신청일, 특허 수권(授权)일, 특허 보호기간, 특허 유효성, 특허 권리 요구 등이 포함된다.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전문기술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전문기술이 속한 기술 분야의 기술발전단계와 기술개발 활약상과 결부시켜 기본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통상 동 전문기술의 객관적 존재를 반영할 수 있는 관련 특징이 포함된다.
- (3)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특허, 전문기술 자산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특허, 전문기술의 권리속성을 주목하고 권리, 전문기술자산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구분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특허, 전문기술 자산을 평가할 때는 구체적인 허가 기한, 허가사용범위, 허가사용방식 등 허가를 받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 (4)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특허, 전문기술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동 특허, 전문기술의 시행 상황, 그리고 그의 문화기업 산업 사슬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평가사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의 특허, 전문기술 자산평가를 진행할 때 기술의 경쟁우위 및 그와 기업의 초과소득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 (5)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특허, 전문기술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대상은 단일 항목 특허, 전문기술 자산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특허, 전문기술 자산조합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자산평가사는 의뢰인에게 평가 목적, 평가대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분리 혹은 합병을 요구하고 평가대상의 구체적인 형식을 합당하게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평가사는 라디오TV, 영화 서비스기업의 특허, 전문기술 자산 평가를 진행할 때 인터넷 데이터 전송, 저장, 방법 사슬 등 특허, 전문기술 자산과 관련된 경우 평가 목적, 평가대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허와 전문기술 자산에 대한 분류, 통합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 항목 특허 혹은 특허 조합, 단일 항목 전문기술 자산 혹은 전문기술 자산 조합, 특허와 전문기술 자산 조합의 형식을 적당하게 취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상표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의 특징과 결합하여 상표의 법률, 경제, 기술 등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 (1)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상표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상표등록자료와 결부하여 상표의 기본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통상 상표 도안, 문자, 등록번호, 등록기한, 승인한 등록 유형, 및 상표 등록, 양도와 승계 절차 처리 현황 등이 포함된다.
- (2)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상표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상표의 권리 속성을 주목하고 상표 전용권과 상표 허가권을 구분해야 한다. 상표 허가권 평가는 동 권리의 구체적인 허가기한, 허가사용범위, 허가사용방식 등 허가 대상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 (3)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상표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상표의 사용 현황 및 동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경영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 (4) 자산평가사가 문화기업의 상표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대상은 불특정 상표일 수도 있고 불특정 상표와 방어 상표, 확장 상표 등 관련 상표 조합 형식일 수도 있다.

제21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기타 문화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의 특징과 결부시켜 평가범위에 포함된 기타 각종 무형자산의 법률, 경제, 기술 등 특징에 대해 조사 분석해야 한다.

- (1) 판매 네트워크는 기업이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를 위해 기타 기업과 협력하여 구축한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전파루트이다.

예를 들면, 문예창작과 공연기업은 여행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고객 유동량을 높이기 때문에 동 기업은 판매 네트워크 무형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판매 네트워크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판매 네트워크 자산의 구성과 규모, 사용 상황 등을 파악하고 기업과 루트 구성원간의 협력방식, 권리와 의무 약정사항, 시장경쟁의 합법성 및 준법성, 판매 네트워크의 경제 공헌 등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 (2) 고객관계는 기업이 공급업체, 고객 등 바이어와 구축하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면서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래 관계이다.

예를 들면, 신문출판발행 서비스기업은 독서클럽 설립을 통해 안정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고객관계 자산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기업이 신규 고객 개발과 기존 고객 유지 방면에서 취한 조치, 고객의 통계자료와 유실 상황, 시장경쟁의 합법성, 고객관계의 경제공헌 등을 파악해야 한다.

-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권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프랜차이즈 경영권의 성격, 허가방식, 허가 연한과 허가 범위 등 약정 사항 및 프랜차이즈 경영권의 실시 원가와 수익 등을 파악해야 한다.

-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계약권의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계약의 종류, 계약기한, 약정한 권리와 의무 등 기본 조항, 법률상의 유효성, 약정 이행 리스크, 계약권익의 공헌 등을 파악해야 한다.

- (6) 영업권은 기업 전체 명예의 구현이며 무형자산 식별이 불가능하고 기업을 떠나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상이한 재무보고 혹은 세금제도하에 영업권은 다른 정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영업권 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영업권 자산의 정의와 내용, 취득 방식, 형성 원인, 식별 가능 자산과의 상호 관계 및 식별가능 자산의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화 및 드라마 업체와 유명 감독, 배우 등이 체결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 이런 종류의 계약 권익은 식별 가능 무형자산에 속한다.

제4장 운영 기준

제23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의 특징과 결부시켜 사회환경,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법률 보호 현황, 시장경쟁 상황, 경영조건, 생산능력, 문화 차이, 제품(작품) 유형 등 각종 요소가 무형자산 효능에 대해 발휘하는 제약과 격려 역할 및 그가 무형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기업이 정치 성향, 문화 창작생산과 서비스, 대중 반응, 사회영향, 내부제도와 팀 구축 등 분야에서 발생시킨 사회이익이 그의 무형자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 재산권익을 평가할 때 동일 작품의 권익이 상이한 문화기업의 운영방식에 서로 다른 수익모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자 다른 경제가치를 취득한다. 상이한 작품 유형의 자체 특징 차이는 그의 특정 전파 규칙이 있어 법률 관리감독, 예술 표현, 기술지원 분야에서의 차이를 유발하고 나아가 그의 수익방식, 원가 구성, 경제 수명 등에 영향을 준다. 상이한 재산권익은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이용방식을 구현하고 이러한 이용방식은 기술 발전 수준의 제약을 받아서 재산권익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

제24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무형자산의 특징과 결부하여 평가 대상 무형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에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 (1) 저작권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저작권 재산권리 유형, 권리속성, 작품 특징, 내용 방향, 수익방식, 전파 상황 등
- (2) 특허와 전문기술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특허의 법률 보호 상황, 전문기술의 비밀유지 현황, 특허와 전문기술의 기술특징, 권리속성, 실시 현황, 실시 제품 혹은 서비스의 경영상황 등
- (3) 상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상표등록 현황, 권리속성, 시장 영향력, 동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경영상황, 광고홍보 상황 등
- (4) 판매 네트워크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판매 네트워크의 구성과 범위, 판매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 등
- (5) 문화기업의 고객관계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고객 구성, 소비 취향과 소비 능력, 기업에 대한 충성도 등
- (6) 문화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프랜차이즈 경영방식, 허가경영기한과 범위, 허가 쌍방의 권리와 의무, 허가 요율 및 지불방식 등
- (7) 계약권익방식으로 구현하는 문화기업 인적자원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계약의 합법성, 공평성, 서비스 기한, 계약 약정의 인센티브, 비밀유지조항, 경쟁금지 조건 등
- (8) 문화기업의 도메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도메인 종류, 사이트 방문량, 동 도메인과 관련된 업무발전 현황, 잠재적인 수요자 등
- (9) 문화기업의 영업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포함 내용: 영업권의 정의, 형성방식과 구성 요소, 기업의 우월한 지리적 위치, 수준 높은 전담팀, 풍부한 생산경영 경험, 과학적이고 완비된 관리제도, 고효율의 조직기구,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긍정적인 기업문화, 양호한 사회관계 등 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목

제25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상이한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통상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된다.

- (1) 무형자산 실사 평가 명세표
- (2) 무형자산 법률 보호 상황 자료
- (3) 무형자산 권리인의 기본 정보
- (4) 무형자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 현황
- (5) 무형자산 담보 현황 자료
- (6) 무형자산 취득 원가와 과거 수익현황 자료
- (7) 무형자산 수익기간과 예상 수익현황 자료
- (8) 무형자산의 과거 거래현황 및 평가현황 자료
- (9) 무형자산 실행 과정에서 관련된 정치, 경제와 법률 환경 등 방면의 자료

제26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증 자료, 인터뷰, 조회확인, 현장 실사 등 방식을 선택하여 각종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 실행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무형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에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무형자산의 권속 현황,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목적에 따라 각종 무형자산 평가업무의 특징과 기준을 적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 (1) 자산평가사는 담보가 목적인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담보에 사용할 예정인 자산이 관련 법률법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분석 판단하고 차입인과 대출인의 서로 다른 시점의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수요 차이를 파악하고 이 기간에 차입인의 경제, 법률, 기술 등 특정 환경조건 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이용 방식을 신중하게 선정하여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을 도출해야 한다.
- (2) 자산평가사는 출자 혹은 기업 구조조정이 목적인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출자에 사용할 예정인 무형자산이 관련 법률법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 판단하고 평가 결론을 등록 자본금으로 환산하는 근거로 사용할지 아니면 등록 자본금과 소유자 권익 액면 가치 간의 관계 검증에만 사용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평가 결론으로 자본금을 책정할 경우 가급적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해 항목별로 식별하고 별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3) 자산평가사는 출자, 양도, 허가 사용 등 거래 혹은 기업 합병이 목적인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미래 권리인의 이용방법, 그리고 평가 보고서에 평가하고 가설한 경제, 법률, 기술 등 특정 환경과 미래 응용 상황이 맞지 않는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주목하고 무형자산 가치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4) 자산평가사는 재무 보고가 목적인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총체적 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는 토대 위에, 그리고 중요한 무형자산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별도로 평가하는 정황 하에 상황에 따라 간편한 방법으로 기타 각종 무형자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제28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대상 무형자산이 기타 자산과 역할을 함께 발휘하는지를 분석 판단해야 한다.

평가 대상 무형자산이 기타 자산과 역할을 함께 발휘할 경우 동 무형자산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거나 혹은 동 무형자산과 무관한 자산의 공헌도를 구분하고 제거해야 한다.

평가 대상 무형자산이 무형자산 조합일 경우 자산조합의 전체적 평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무형자산 조합 내부 각 무형자산의 기여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제29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주체가 분리 현상이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주체 분리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정황에 대해 각자의 비용 투입 현황, 관련 권리와 의무의 약정 등 가치 분할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형자산 각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표자산가치 평가는 상표 등록인과 사용자가 각기 다른 주체에 속할 경우 상표 사용자가 투입한 유지 비용의 상표자산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무형자산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기업의 경영상황과 결부시켜 평가해야 한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발급한 전문 보고서를 평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방법

제31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목적, 평가 대상, 가치유형, 자료 수집 현황 등 관련 조건에 따라 수익법, 시장법과 원가법 세 가지 자산평가 기본 방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여 하나 혹은 여러 자산평가 방법을 적당하게 선택해야 한다.

제32조 자산평가사가 각종 방법을 사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문화기업 사회이익의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상이한 유형의 문화기업이 사회이익을 중요시하는 정도와 관리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나아가 동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형자산 미래 수익 규모, 리스크 수준과 경제수명 연한 등 평가 매개변수에 반영하게 된다.

제33조 자산평가사가 수익법을 사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무형자산의 수익기한 및 미래 수익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1)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수익기한 확정은 무형자산 대응 제품과 서비스의 경제수명 기한, 관련 법률 보호 기한, 계약 약정 기한과 평가 대상 기업 및 그가 속한 업계의 발전 상황 등 영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산평가사는 대부분의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생명주기가 짧고, 중복 이용 가치가 낮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대응되는 무형자산을 기타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경제수명 기한은 동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수명 기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자산평가사는 무형자산 권리인이 무형자산을 유지 및 창조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술, 고정 자산, 인적자원과 외부환경 등 조건을 분석하고 각종 무형자산의 지속적인 수익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2)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수익 예측은 로열티 절약, 수익 배분, 증량 수익 혹은 초과수익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미래 수익 예측은 문화기업의 운영방식, 제품과 서비스 유형이 무형자산 수익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상이한 운영방식에서 무형자산은 서로 다른 수익모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수익을 얻게 된다. 통상적으로 자산평가사는 무형자산 권리인의 경제, 기술, 법률 등 특정 환경 조건에 따라 무형자산의 사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무형자산 사용방식이 환경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 자산평가사는 무형자산이 최적의 사용방식에 처해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산평가사는 상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통상적으로 기업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수익모델과 권리인의 생산경영조건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권리인의 사용방식에 따라 그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화기업은 주로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전파를 진행하고 내용은 문화상품의 핵심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자체 특징 때문에 창작 목적, 내용 매개체, 창작 인력, 창작 비용, 창작 절차, 전파방식, 전파 원가, 전파 범위 등 방면에서 모두 차이가 날 수 있고 나아가 수익 범위와 수익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작품 저작권 권익 예측은 거시경제환경, 산업정책 등 요소 외에 동 영화의 작품 유형, 제작자, 감독, 배우, 시나리오 및 제작 인원의 영화작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배급사, 극장, 방영 횟수와 방영 기간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영화작품 제작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지만 필연적으로 높은 박스오피스 수입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이미 방영된 영화작품에 대해서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 루트에서 발생 가능한 수익, 그리고 파생 상품을 형성시키는 가능성 및 그 수익에 주목해야 한다.

(4)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미래 수익 예측은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문화 인프라의 구축, 대중의 소득 수준, 문화 소질, 여가 시간 등 요소가 문화상품과 서비스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5)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미래 수익 예측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높은 고정 비용과 전파 한계비용이 단계별로 감소하는 등 특징을 고려하여 문화상품과 서비스 원가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6)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미래 수익 예측은 무형자산의 단계별 수익창출 능력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의 수익창출 능력은 통상적으로 창출 초기가 후기의 파생 권익 단계보다 높으며 후기 파생된 저작권 수익에는 전기(前期)의 기존 창작 저작권이 공유해야 하는 수익을 포함할 수 있다.

(7)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미래 수익 예측은 업계 특징과 결부시켜 무형자산의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각종 무형자산의 수익 기여도를 직접 구분하기 어렵거나 혹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종 무형자산의 공동 수익을 종합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8)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미래 수익 예측은 문화기업의 전체적 수익과 무형자산이 대응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익을 구분해야 한다.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익은 동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수익창출 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문화기업의 전체 수익은 새로운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전파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방송 영화 서비스업체는 주로 영화, 드라마 제작 및 배급, 방영, 정보 네트워

크 전파 등 방식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기업의 영화, 드라마 작품 제작능력은 평가 대상 기업의 브랜드, 자금 규모, 대본 비축, 전속 연예인, 전문 관리인원 등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전파 능력은 거시경제환경, 업계 발전 추이, 극장 방영 능력, 방송국 채널 자원,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등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제34조 자산평가사는 수익법을 사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할인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1)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할인율 추산은 리스크 누적 추가, 기업 평균 자본 원가 가중 루트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2)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할인율 추산은 문화소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소비자의 문화상품과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식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문화정책의 조정은 문화 수요 변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는 짧고 중복 이용 가치가 낮고 기술 교체 주기와 대체 상품의 경쟁으로 인해 기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 (3)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할인율 추산은 국가 혹은 지역의 유관 법률 규정 및 문화상품이 내용 심사, 전파 제한 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그리고 상품 복제 난이도 수준, 전파 원가, 법률 보호 강도, 법정(法定) 배상 등 요소를 주목하고 권리 침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별, 민족별, 성별, 연령별, 소득 계층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 (4)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할인율 추산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생산과 전파 과정에서 직면한 수익모델이 불명확하고 생산자원이 보장이 없거나 혹은 관리 효율이 낮은 등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 (5)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할인율 추산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생산 및 전파 과정에서 직면한 자금 부족 혹은 하이 레버리지로 인해 형성된 재무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제35조 자산평가사가 시장법을 사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취득한 거래 사례와 평가대상의 유사한 정도, 거래 사례 관련 데이터의 충분성과 신뢰성 등 요소에 따라 비교 가능한 사례를 적당하게 선택해야 한다.

문화기업 중 인적자원과 관련된 계약 권익 등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인재유동시장의 가격책정방식 혹은 문화기업과 생산요소 공급업체의 협력모델을 결부시켜 교역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제36조 자산평가사가 시장법을 사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과 비교 가능한 사례의 거래 시간, 권리 종류 혹은 형식, 유지 비용, 기여도, 리스크 수준, 경제수명기한 등 분야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 동 차이 요소가 무형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37조 자산평가사가 원가법을 이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무형자산 투입 원가와 가치의 관련 정도를 분석하여 원가법의 적용성을 적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예 창작과 공연 서비스업체, 문화 콘텐츠와 디자인 서비스업체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그가 투입한 원가와 가치의 관련 정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원가법을 사용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제38조 자산평가사가 원가법을 이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과 범위를 결부시켜 평가대상의 재 구매 원가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단지 관광 유형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관광단지 무형자산과 경관 자원의 원가에서의 합리적인 구분에 주목해야 한다.

재 구매 원가에는 합리적인 원가, 이윤과 관련 세금 등이 포함된다. 자산평가사는 무형자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R&D 인력, 관리자, 재료, 장비, 장소 등 투입 요소를 결부시켜 평가대상의 재 구매 원가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39조 자산평가사가 원가법을 사용하여 문화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할 경우 평가 대상의 가치 변화 법칙과 결부시켜 평가대상의 가치하락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권 자산의 가치하락은 그의 경제수명 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가 없어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의 가치하락을 확정해야 한다.

제40조 자산평가사가 동일한 무형자산에 대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미 취득한 각종 기본 가치 결론에 대해 분석을 진행한 후 합리적인 평가 결론을 형성해야 한다.

제6장 공개 기준

제41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평가절차를 이행한 후 <자산평가준칙 -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당하게 공개하여 평가보고서 사용자가 평가 결론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42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보고서에 무형자산 식별 과정과 근거를 중점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무형자산의 기본 상황, 법률 상황, 기술 특징과 경제 특징에 대해 조사 실시하는 과정, 방법과 결론을 포함한다.

제43조 자산평가사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업무를 진행할 때 평가 보고서에 무형자산의 평가 현황을 중점으로 공개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1) 무형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상황과 지역경제상황, 정책 요소, 법률 요소 등
- (2) 무형자산과 관련이 있는 업계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 (3) 무형자산과 관련이 있는 기업 업무, 재무, 자산상황 분석
- (4) 무형자산 평가 추산 근거, 중요 매개변수의 출처
- (5) 무형자산 평가 가설 전제 및 제한 조건
- (6) 무형자산 평가방법에는 평가방법의 선택 및 이유, 평가방법의 운용과 계산 과정이 포함
- (7) 평가 결론 및 분석

제7장 부칙

제44조 동 지도의견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在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地区推广技术先进型服务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 (财税〔2016〕122号)
제재일	2016-11-10
출처	재정부, 과학기술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재세[2016]122호

텐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저장, 후베이, 광둥, 쓰촨, 장쑤, 산둥, 헤이룽장, 충칭, 구이저우, 산시성(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상무주무부처, 과기청(위, 국), 발전개혁위원회: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해외 무역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유관 결정 정신에 따라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 시범지역에서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보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텐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와 하얼빈신구, 장베이신구, 량장신구, 구이안신구, 시첸신구 등 15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이하 약칭 ‘시범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을 실행한다.

- 1)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15% 낮은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 2)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실제로 발생한 종업원 교육 경비 지출이 급여 총 금액의 8%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차감하도록 허용한다. 초과된 부분은 다음 납세 연도로 이월되어 차감하는 것을 허용한다.

2.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이 부합해야 하는 조건 및 유관 관리사항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 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商务部科技部国家发展改革委关于完善技术先进型企业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재세 [2014] 5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중 기업이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분야 범위는 통지에 첨부한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분야 범위(서비스무역 유형)>에 따라 집행한다.

3. 시범지역 인민정부(관리위원회)의 재정, 세무, 상무, 과기와 발전개혁부처는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와 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기업 소득세 관련 정책 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재세[2014] 59호)는 계속 유효하다.

별첨: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분야 범위(서비스무역 유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6년 11월 10일

별첨:

기술선진형 서비스 업무분야 범위 (서비스무역 유형)

유형	적용 범위
1. 컴퓨터와 정보 서비스	
1) 정보시스템 통합 서비스	시스템 통합 상담 서비스, 시스템 통합 공정 서비스, 하드웨어 장비 현장 조립, 소프트웨어 설치와 테스트 및 관련 운영 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운행 검사 모니터링, 고장 위치와 제거, 성능 관리, 최적화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유지 서비스
2)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는 데이터 계획, 평가, 감사, 상담, 클리닝, 정리, 응용 서비스를 제공, 데이터 부가 서비스는 기타 미분류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
2. R&D와 기술 서비스	
3) 연구 및 실험 개발 서비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자학, 공학, 의학, 농업과학, 환경과학, 인류지리과학, 경제학과 인문과학 등 분야의 연구 및 실험 개발 서비스
4) 산업디자인 서비스	제품의 소재, 구조, 기계 시스템, 형상, 색상과 표면 처리에 대한 설계와 선택. 제품에 대해 진행하는 종합 디자인 서비스, 즉 제품 외관의 설계, 기계 구조와 회로 설계 등 서비스
5)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라이선스 및 양도	특허, 판권, 상표 등을 매개체로 하는 기술무역.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라이선스란 해외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특허, 판권과 상표 등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양도란 특허, 판권과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해외기관에 매각하는 것.
3. 문화기술 서비스	
6) 문화상품 디지털 제작 및 관련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무대극, 음악, 미술, 문물, 무형문화재, 문헌자원 등 문화 콘텐츠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해 디지털화 전환과 개발을 진행하여 각종 모니터 단말기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문화 콘텐츠를 전파, 경영하는 등 관련 서비스
7) 문화상품의 해외 번역, 더빙 및 제작 서비스	자국의 문화작품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 혹은 더빙, 다른 나라의 문화작품을 자국 언어로 번역 혹은 더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작 서비스
4. 중의약 의료 서비스	
8) 중의약 의료 보건 및 관련 서비스	중의약과 관련된 원격 의료 보건, 교육 훈련, 문화교류 등 서비스

17.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제목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제재일	2016-11-7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3호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1월 7일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공표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16년 11월 7일

목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사이버 안보 지지 및 촉진
- 제3장 네트워크 운영 안보
- 제4장 네트워크 정보 보안
- 제5장 모니터링 경보와 비상 대응
- 제6장 법률 책임
-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사이버 안보를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사이버 안보의 감독관리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발전을 동등하게 중요시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적 발전, 법에 의거한 관리, 안전 보장 원칙을 지키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상호연동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며, 사이버 안보 인력 배양을 지원하고 사이버 안보 보장체계를 정착시켜 사이버 안보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4조 국가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부단히 완비하고, 사이버 안보의 기본적인 요구와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며, 중점영역의 사이버 안보 정책, 업무 임무와 조치를 제시한다.

제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의 사이버 안보 위협과 위협을 모니터링·방어·처리하고, 핵심 정보기초시설이 공격·침입·간섭·파괴당하지 않도록 하며, 사이버 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여 사이버 공간안전과 질서를 유지한다.

제6조 국가는 성실신의, 건전하고 문명한 네트워크 행위를 선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를 촉진하며, 조치를 취해 전 사회의 사이버 안보 의식과 수준을 높여 사회 전체가 사이버 안보 촉진에 공동 참여하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한다.

제7조 국가는 사이버 공간 관리,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과 표준 제정, 사이버 불법행위 단속 등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극 진행하면서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사이버 공간 구축과 다차원적, 민주적이며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설립한다.

제8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기관은 책임지고 사이버 안보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확일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한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처,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부처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사이버 안보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縣級)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사이버 안보와 감독관리 직무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9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경영과 서비스 활동 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지키고, 사회 공중도덕, 상업도덕, 성실신용을 준수하며, 사이버 안보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제10조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은 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의 강제성 요구에 의거하여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이버 안보, 안정 운영을 보장하고 사이버 안보 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범죄활동을 방지하여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결성, 비밀유지성과 유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 네트워크 관련 업계의 기관은 정관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행위 규범을 제정하며 회원이 법에 의거하여 사이버 안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사이버 안보 보호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12조 국가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법에 의거한 네트워크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접속 및 보급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을 높여 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정보의 법에 의거한 질서있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그 어떠한 개인과 조직의 네트워크 사용도 헌법과 법률, 공공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사이버 안보에 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위협,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양, 사회주의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양, 국가통일 파괴, 민족의 원한과 민족 차별 선양, 폭력 전파, 음란정보, 날조, 거짓정보 전파로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과 기타 합법 권익을 침해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국가는 미성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성년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며, 미성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이버 환경을 제공한다.

제14조 그 어떠한 개인과 조직이든 모두 사이버 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네트워크 정보, 정보통신, 공안 등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적시에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시켜야 한다.

제2장 사이버안보 지지 및 촉진

제15조 국가는 사이버 안보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완비시킨다. 국무원의 표준화 행정 주무부처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된 사이버 안보 관리 및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와 운영 안전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제정 및 적시에 수정한다.
국가는 기업·연구기관·대학교·네트워크 관련 업계 조직 등이 사이버 안보 국가 표준·업계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16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통합 기획하고 투입을 확대하여 중점 사이버 안보 기술산업과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사이버 안보 기술의 연구개발, 응용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연구기관, 대학교와 기업의 국가 사이버 안보 기술혁신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제17조 국가는 사이버 안보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유관 기업과 기구가 사이버 안보 인증, 검사, 위험평가 등 보안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18조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와 이용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방을 촉진하며, 기술혁신과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사이버 안보 관리 방식의 혁신, 네트워크 신기술 운용, 사이버 안보 보호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의 관련 기관은 일상화된 사이버 안보 홍보교육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관이 사이버 안보 홍보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 및 독촉해야 한다.

대중 미디어 매개체는 확실한 목표시장을 기반으로 사회를 상대로 사이버 안보 홍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기업과 대학교, 직업학교 등 교육양성기관이 사이버 안보의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이버 안보 인력을 육성하여 사이버 안보 인력의 교류를 촉진한다.

제3장 네트워크 운영 안전

제1절 일반 규정

제21조 국가는 사이버 안보등급 보호제도를 시행한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이버 안보등급 보호 제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 네트워크가 교란, 파괴 또는 인가 받지 않은 방문을 차단하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한다.

1. 내부의 보안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사이버 안보 책임자를 확정하여 사이버 안보책임을 이행한다.
2. 컴퓨터 바이러스와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사이버 안보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취한다.
3. 네트워크 운행 상태와 사이버 안보 사건의 기술 조치를 검사·기록하고, 네트워크 일지를 최소 6개월간 보존한다.
4. 데이터 분류, 중요한 데이터 백업과 비밀번호 설정 조치를 취한다.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22조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는 관련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공급자는 악성 프로세스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의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의 보안 결함, 취약성 등 리스크의 존재성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유관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공급자는 그의 제품,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 유지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 기간 또는 당사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는 보안 유지 제공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촉하려면, 본 법과 유관 법률,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사이버 안보 전용제품은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의 안전인증에 통과 또는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된 후에야 판매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사이버 안보 전용제품의 목록을 제정 및 발표하고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결과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여 중복 인증 및 검사를 방지한다.

제24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용자를 위해 네트워크 접속,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의 통신망 가입수속을 처리하거나 또는 이용자를 위해 정보공개,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협의를 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확인할 경우 이용자가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용자가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전략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 신분 인증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상이한 전자 신분 인증간의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제25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사이버 안보 사건의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여 적시에 시스템의 취약성, 컴퓨터 바이러스,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보안 리스크에 대처한다. 사이버 안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하여 상응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26조 사이버 안보 인증, 검사, 위협평가 등 활동을 전개하고, 시스템의 취약점, 컴퓨터 바이러스,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사이버 안보 정보를 사회에 공지하고, 국가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그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타인의 네트워크 침입, 타인 네트워크의 정상 기능 방해, 네트워크 데이터 절취 등 사이버 안보에 해를 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네트워크 침입, 네트워크 정상기능 및 보호조치 방해, 네트워크 데이터의 절취 등 사이버 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사이버 안보에 해를 가하는 활동 실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광고 홍보, 지불 결제 등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구가 법에 따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범죄활동을 조사하도록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네트워크 사업자 간에 사이버 안보정보의 수집, 분석, 통보와 비상 대응 등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의 안전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관련 업계 기관은 본 업계의 사이버 안보 규범과 협력 매커니즘을 정착시켜 사이버 안보 리스크에 대한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리스크를 알리고 회원의 사이버 안보 리스크 대응을 지원 및 협조한다.

제30조 네트워크 정보 부처와 유관 부처는 사이버 안보 보호 직무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사이버 안보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절 핵심 정보 인프라의 운영 안전

제31조 국가는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에너지·교통·수리·금융·공공서비스·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과 영역, 그리고 기타의 일단 파괴·기능 상실·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하여, 사이버 안보 등급 보호 제도에 기초하여, 중점 보호를 실행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안전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국가는 핵심 정보 인프라 설비 이외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핵심 정보 인프라 설비 보호 체계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2조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안보호 업무 부문은 본 업계와 본 영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안 규칙을 각각 제정 및 조직·실행하고,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 보안 보호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제33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구축은 그의 지원 업무 안정, 지속 운영 성능 보유를 확보하고 보안 기술 조치의 동시 계획, 동시 구축, 동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34조 본법 제21조의 규정 외에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전문 안전관리기관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설치하고 동 책임자와 핵심 업무 담당자에 대해 안전배경 심사를 진행한다.
2. 종사자에 대한 사이버 안보 교육, 기술교육과 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3. 주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재난대비 백업을 진행한다.
4. 사이버 안보 사건의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고 정기 훈련을 진행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35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의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구성된 국가 보안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제36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의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구매는 공급자와 보안 비밀유지 협의를 체결하고 보안과 비밀유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7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경내에 저장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의해 반드시 해외에서 저장 또는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이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의 사이버 안보성과 존재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매년 최소한 한 차례의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검사평가 상황과 개선조치에 대해 사이버 안보 보고를 제출하고 관련 핵심 정보 인프라 안전보호업무 책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관련 부처와 총괄적으로 협력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리스크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개선조치를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검사테스트 기관에 의뢰하여 사이버 상에 존재하는 보안 리스크에 대한 테스트 평가를 진행한다.
2.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의 사이버 안보 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사이버 안보 사태 대응 수준과 협업 및 협력 능력을 향상시킨다.
3. 관련 기관,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사이버 안보 서비스 기관 등 간의 사이버 안보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4. 사이버 안보 사태의 비상처리와 회복 등에 대해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제4장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40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이용자 정보 보호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제41조 네트워크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은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 수집과 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공지하고 수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정을 어기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이용자와의 약정을 준수하면서 그가 저장 및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42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 된다. 수집 동의를 받지 않으면,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확실히 보장하고 그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훼손, 분실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개인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쌍방의 약정을 어기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수집 및 사용한 개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조치를 취해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제44조 그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기타 불법방식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제45조 법에 의해 사이버 안보감독관리 직무 책임이 있는 부처와 직원은 반드시 직무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상업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유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어떤 개인과 조직도 네트워크 사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사기, 범죄방법 전수, 금지물품·통제물품 제작 또는 판매 등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는 사이트·통신그룹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 금지물품·통제물품 제작 또는 판매 그리고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그의 이용자가 발표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법률, 행정

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일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여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발송하는 전자정보·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악성 프로세스를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법률, 행정법규에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가 있어도 아니 된다.

전자정보 발송 서비스 공급자와 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공급자는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용자의 상기 조항 규정 행위가 있음을 인지했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 후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의 불만신고, 고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고, 고발 상식 등 정보를 공지하여 적시에 관련 네트워크 정보 보안의 신고와 고발을 수리 및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정보 부처와 유관 부처가 법에 의하여 감독 검사를 할 때,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과 관련 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사이버 안보 감독관리 직무를 이행하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상기 정보의 진원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일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보 유포를 차단시켜야 한다.

제5장 모니터링 정보와 비상 대응

제51조 국가는 사이버 안보 모니터링 정보와 정보통보 제도를 구축한다.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은 통합 기획 및 조율을 통해 관련 기관이 사이버 안보 정보 수집, 분석과 통보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사이버 안보의 모니터링 정보 정보를 일괄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52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보호업무 담당 기관은 본 업계, 본 분야의 사이버 안보 모니터링 정보와 정보통보 제도를 정착시키고 규정에 따라 사이버 안보 모니터링 정보 정보를 발송 및 보고한다.

제53조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은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사이버 안보 비상업무 매커니즘을 정착시키고 사이버 안보 사태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여 정기 연습을 수행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보호업무 담당기관은 본 업계, 본 분야의 사이버 안보 사건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사태 비상 매뉴얼은 사건 발생 후의 파손 정도, 영향 범위 등 요소에 따라 사이버 안보 사건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고 상응하는 비상 대응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제54조 사이버 안보 사건 발생의 위험이 증대할 때, 성급 이상의 인민 정부 유관 부처는 규정의 권한과 순서에 따라, 사이버 안보 위험의 특징 및 가능한 피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관련 부처, 기관과 인원이 관련 정보는 적시에 수집 및 보고하고 사이버 안보 사건의 발생, 발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다.
2. 관련 부처, 기관과 전문 담당자를 구성하여 사이버 안보 사건 정보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의 가능성, 영향범위와 피해 정도를 예측한다.
3. 사회에 사이버 안보 위험 경고를 발표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줄이는 조치를 발표한다.

제55조 사이버 안보 사건이 발생하면 사이버 안보 사건 비상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여 사이버 안보 사건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네트워크 사업자가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막으며 적시에 사회에 대중과 관련된 경보정보를 발표한다.

제56조 성급 이상의 인민 정부 유관 부처는 사이버 안보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중, 네트워크에 비교적 큰 안전 위험 혹은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규정의 권한과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의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에게 약속 면담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개정하며,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이버 안보 사건으로 인해 돌발 사태 또는 안전생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태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중대하고 돌발적인 사회 안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때, 국무원의 결정 혹은 승인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네트워크 통신에 대하여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9조 네트워크 사업자가 본 법 제21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이버 안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사이버 안보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는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가 본 법 제33조, 34조, 제36조,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이버 안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사이버 안보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000위안 이상 1,0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0조 본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하나에 한 해당되더라도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시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사이버 안보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게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악성 프로세스를 설치할 경우.
2. 제품, 서비스에 존재하는 보안 결함, 취약성 등 리스크에 대해 적시에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시에 고지하지 않거나 유관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제품,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일방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제61조 네트워크 사업자가 본 법 제2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진실된 신원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주무부처에서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營業執照) 말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2조 본 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이버 안보 인증, 검사, 위험평가 등 활동을 전개하거나 사회에 시스템 취약점,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침입 등 사이버 안보 정보를 사회에 공개할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관 주관 부문이 관련 영업 일시정지, 영업정지 및 정리,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 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게 대해서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 본 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이버 안보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거나 사이버 안보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사이버 안보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는데 기술지원, 홍보보급, 자금결재 등 도움을 제공한 경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동시에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동시에 100,000위안 이상 1,00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관이 상기 규정 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 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00위안 이상 1,000,000위안 벌금을 부과하며, 그 직접 책임지는 주관 인원과 기타 책임 인원에게 대해서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처벌 인원은 5년 내에 사이버 안보 관리와 네트워크 사업 관련 직위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사이버 안보 관리와 네트워크 사업 관련 직위의 업무에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64조 네트워크 사업자가 본 법의 제22조 제3항, 제41조에서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위에 따라 경고, 불법 소득 말소,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부과 등

단일 처벌 또는 동시 처벌을 내리고,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1,0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은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및 정돈,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 법의 제44조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법 취득,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1,0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가 본 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주무부처에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고 구매 금액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6조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가 본 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해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및 정돈,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본 법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범죄활동 실시에 사용하는 사이트·통신그룹을 개설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불법 범죄활동 실시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시,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5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불법 범죄활동 실시에 이용된 사이트·통신그룹은 폐쇄한다.

기관이 위 조항 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규정에 근거해 처벌한다.

제68조 네트워크 사업자가 본 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 행정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에 대해 전송 중단, 제거 등 조치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말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자정보 발송 서비스 공급자, 앱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공급자가 본 법 제48조 제2항 규정의 보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9조 네트워크 사업자가 본 법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관 부분의 요구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가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에 대해서 전송 중지, 제거 등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 관련 기관이 법에 의해 시행하는 감독검사를 거부, 방해했을 경우.
3. 공안기관, 국가 안전기관에게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제70조 본 법 제20조 제2항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를 공개 또는 전송한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1조 본 법이 규정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공시한다.

제72조 국가기관 정부 사이트 운영자가 본 법에서 규정한 사이버 안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상급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처분을 내린다.

제73조 네트워크 부문과 유관 부문이 본 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이버 안보 직무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네트워크 부문과 유관 부문의 업무 인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사리사욕이 있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74조 본 법 규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진다.

본 법 규정을 어기고,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75조 경외의 기구,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심정보인프라를 공격, 침입, 방해, 파괴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활동에 종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국무원 공안부문과 유관 부문은 해당 기구, 조직, 개인에 대해서 재산 동결 또는 기타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76조 본 법의 하기 전문용어의 함의:

1. 네트워크: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단말기 및 관련 장비로 구성된 일정한 규칙과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를 진행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2. 사이버 안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침입, 방해, 파괴와 불법 사용

및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고 네트워크가 안정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결성, 비밀 유지성, 유용성 능력 보장을 지칭한다.

3. 네트워크 사업자: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4. 네트워크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저장, 전송, 처리와 생성되는 각종 전자 데이터를 지칭한다.
5. 개인의 개인정보: 전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는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의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지칭하는데, 이름, 출생일, 신분증번호, 개인의 생물학적 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고 한다.

제77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운영 안보는 본 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비밀유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8조 군사 네트워크와 정보 보안 보호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79조 본 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규정

제목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发布微博、微信等网络社交平台传播视听节目的管理规定
제재일	2016-12-16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의 전파 질서를 규범화하고 웨이보(微博, Microblog), 위챗(WeChat, 微信) 등 SNS(웨이보 계정, 위챗 공공계정 포함)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근 <웨이보, 위챗 등 SNS 플랫폼에서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웨이보, 위챗 등 각종 SNS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AVSP) 등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이 기재한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정보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소지한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웨이보 계정, 위챗 공공계정 등 각종 SNS 앱을 사용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려면 허가증의 각종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정보네트워크의 시청각 프로그램 전파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기관과 개인이 웨이보 계정, 위챗 공공계정 등 각종 소셜 앱을 사용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서비스의 개설 주체가 되어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의 각종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내용 통제 등 각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범위는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허가증에 기재한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웨이보 계정, 위챗 공공계정 등에 대해 그에게 서비스 접속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웨이보, 위챗 등 각종 SNS를 이용하여 전파한 영화, 드라마는 <영화상영허가증> 혹은 <드라마 배급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3. 웨이보, 위챗 등 각종 SNS를 이용하여 전파한 웹드라마, 웹 영화, 뉴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특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등 시청각 프로그램은 내용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웨이보, 위챗 등 SNS는 네티즌이 올린 자체 제작한 시사 정치 분야의 시청 뉴스 프로그램을 재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통지>는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처가 법에 의해 관할 구역 내의 웨이보, 위챗 등 각종 소셜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 인터넷정보 콘텐츠 관리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제목	互联网信息服务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게재일	2017-5-2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령 제2호

〈인터넷정보내용관리 행정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쉬린(徐麟)

2017년 5월 2일

인터넷정보내용관리 행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의 법에 근거한 임무 수행을 규범화하고 보장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국무원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 업무 권한위임에 관한 통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법에 의해 행정 집행을 실시하고 관련된 인터넷정보내용관리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시행하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다.

제3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의 행정 집행 실시는 공개, 공평, 공정 원칙을 준수하며 사실을 밝히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법률법규 및 규정 적용이 정확하고 적당하며, 집행 문서 사용이 규범화되어야 한다.

제4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행정 집행 감독검사제도를 구축한다.

상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하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실시하는 행정 집행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제5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집행 업무팀 건설을 강화하고 집행 인력의 교육, 시험 평가, 자격관리와 자격증 소지 직무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집행 요원은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식과 업무지식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행정 집행 자격 시험 혹은 평가에서 통과되어 집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집행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집행 자격증은 국가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제정, 발급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 위임하여 발급한다.

제2장 관할

제6조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 발생지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서 관할한다.

위법행위 발생지에는 위법행위 시행 사이트 등록지, 공상 등록지(공상등록지와 주요 영업 업무지역이 불일치할 경우 주요 영업업무지역을 기준), 사이트 개설자, 관리자, 사용자 소재지, 인터넷 접속지, 컴퓨터 등 단말기 설비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제7조 시(지, 주[地`州]) 급 이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직권에 의해 본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정보내용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직권에 의해 해당 행정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인터넷정보내용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국가인터넷정보내용관리기관은 직권에 의해 동 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행정처벌 사건 및 전국 범위 내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인터넷정보내용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 등급이 관할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당사자의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2개 이상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모두 관할권이 있을 경우 선행 입안(立案)한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관할한다. 필요 시 주요 위법행위 발생지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로 인계하여 관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동의 상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 보고하여 관할 지정을 받는다.

제9조 상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동 부처가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하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그가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상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 보고하여 관할하거나 혹은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건이 동 부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권이 있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로 이송해야 한다.

인계 받은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건 수사 결과를 즉시 서신으로 사건을 인계한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로 알려야 한다. 이송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의 상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도록 해야 하고 다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상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관할 분쟁 혹은 지정 관할 보고를 받은 후 근무일 10일 내에 관할 지정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하급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사건이 기타 행정기관 관할에 속함을 발견했을 경우 법에 의해 유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위법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법기관이 입안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법기관의 입안 통지서를 받은 당일부터 3일 내에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사법기관으로 인계하고 인계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법에 의해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 취소,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증 말소에 대해 처리 의견을 내놓아야 하고 취득한 증거 및 관련 서류를 기존의 자격증 발급기관인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로 보내어 동 관리부처가 법에 의해 허가 취소 여부, 허가증 말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3장 입안(立案)

제14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처리하고 <사건 출처 등록표>(양식은 별첨 1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 (1) 감독검사 중 사건 단서를 발견한 경우
- (2)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신고, 제소, 제보한 경우
- (3)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맡겼거나 혹은 하급기관이 수사 요청을 한 경우
- (4) 유관 기관이 이송 혹은 기타 방식, 루트로 발견한 경우

제15조 행정처벌 입안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위법 혐의가 있는 사실
- (2)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 (3) 인터넷정보내용 감독관리 행정처벌 범위에 속하는 경우
- (4) 본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입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입안 심사승인서>(양식은 별첨 2 참조)를 작성하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근무일 7일 내에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안을 승인하도록 하고 2명 이상의 법 집행요원을 사건 담당자로 확정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근무일 15일로 연장하여 입안할 수 있다.

제16조 입안을 하지 않는 신고, 제소, 제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결과를 서명 신고자·제소자·제보자에게 통보하고 입안을 하지 않는 관련 상황을 서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입안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입안을 철회할 경우 담당자는 <입안 거부 심사승인서>(양식은 별첨 3 참조) 혹은 <입안철회 심사승인서>(양식은 별첨4)를 작성하여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 사건처리 담당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당사자도 사건처리 담당자가 기피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다.

-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 (2)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해당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사건처리 담당자의 기피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가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신청을 1회 할 수 있다.

기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기피 신청 상대방은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중단하지 않는다.

제4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제18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건 조사 및 증거수집 시 집행 요원이 최소한 2명 또는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집행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시 전문 인력을 초청하여 협조할 수 있다.

최초로 사건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 조사할 경우 그에게 사건처리 담당자를 기피하겠다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유관 기관,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 조사할 경우 그에게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 대상자 혹은 관계자는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면서 조사에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법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인터넷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발표한 정보, 사용자가 발표한 정보, 일지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하고 사건 조사를 방해 및 교란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 요원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얻은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건처리과정에서 기타 지역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의 조사 및 증거 수집 협조가 필요할 경우 위탁 조사 신청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 받은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위탁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부터 근무일 15일 내에 관련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지연되어서 완성하거나 혹은 협조를 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위탁한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에 서신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 사건처리 담당자는 법에 근거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전자데이터, 시청 자료, 서류 증거, 물증, 증인 증언, 당사자의 진술, 감정 의견, 검사보고서, 현장 검증 기록, 현장 기록, 질문 기록 등이 포함된다.

전자데이터는 사건 발생과정에서 형성된 디지털화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하면서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칭한다. 전자데이터에는 사이트,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 토론방, 티에바(贴吧, 인터넷 카페), 클라우드, 전자메일, 네트워크 백스테이지 등 방식으로 전송하는 전자정보 혹은 서류를 지칭한다. 전자데이터는 주로 컴퓨터 장비, 이동통신장비, 인터넷 서버, 이동저장장비, 클라우드 저장시스템 등 전자장비 혹은 저장 매개체에 저장한다.

시청 자료는 오디오자료와 영상자료를 포함한다.

전자 매개체에 저장하는 오디오자료와 영상자료는 전자데이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제21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입안 전 조사 혹은 검사과정에서 법에 근거해 취득한 증거를 사실 인정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순시 등 기술수단을 통해 취득한 신뢰 가능한 전자데이터는 사실 인정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데이터의 수집, 인출은 법률법규 규정, 국가표준, 업계표준과 기술규범에 맞고 수집, 인출한 전자데이터의 완전성, 합법성, 진실성, 연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 인정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입안 전, 질문, 현장 검증, 검사, 감정, 증거자료 수집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초기 수사 대상의 신원, 재산 권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입안 후, 물품, 시설, 장소에 대해 선행 등록 보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즉시 증인에게 질문해야 한다.
집행 요원이 질문할 경우 <질문 기록>(양식은 별첨 5 참조)을 작성하여 시간, 장소, 관련 사실, 경과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질문 기록은 질문 대상 혹은 관계자가 사실 대조 및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인터넷정보내용 위법에 관련된 장소, 물품, 네트워크에 대해 현장 검증, 검사를 진행하고 즉시 서류 증거, 물증, 시청 자료와 전자데이터를 수집 및 고정해야 한다.

제25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사법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사건 중의 전문성에 대한 감정 의견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법감정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실력이 있거나 혹은 여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보고서 혹은 검증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26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유관 기관, 개인을 상대로 사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요에 따라 촬영, 녹화, 복사와 복제를 할 수 있다.
수집한 서류 증거, 물증은 원본, 원물(原物)이어야 한다. 원본, 원물 수집이 어려울 경우 증거를 제출하는 유관 기관, 개인이 복제품에 사인 혹은 날인하여 ‘동 서류와 물품은 xxx가 제공하며 대조 확인 결과 원본, 원물과 동일함’ 이라는 문구 혹은 문자 설명을 표기하는 동시에 증거물 제출 일자, 증거 출처를 표기하고 서명 혹은 날인한다.
수집한 시청 자료, 전자데이터는 마스터 매개체 혹은 백업 매개체이어야 한다. 마스터 매개체 혹은 백업 매개체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복제본 수집도 가능하며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자 등 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음성자료를 수집할 경우 동 음성 내용의 문자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27조 증거 멸실 가능 혹은 증거를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집행 요원이 법에 근거해 사건에 연루된 컴퓨터, 서버, 하드, 이동 저장장비, 메모리카드 등 위법행위 실행 혐의가 있는 물품을 선행 등록 보존하고 <등록 보존 물품 리스트>(양식은 별첨 6 참조)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등록 보존 물품 통지서>(양식은 별첨 7 참조)를 발급한다. 선행 등록 보존기간에 당사자 혹은 관계자는 증거를 파손, 폐기하거나 혹은 불법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선행 등록 보존 시행 시 당사자 혹은 소지자에게 현장에 나오도록 통지하고 현장 기록지에 시행한 관련 조치 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28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선행 등록 보존한 증거에 대해 7일 내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 (1)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기록, 복제, 촬영, 녹화 등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반납한다.
- (2) 검사, 테스트, 감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제출하여 검사, 테스트, 감정을 받는다.
- (3) 위법 사실이 성립되어 법에 근거해 몰수해야 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위법 물품을 몰수한다.
- (4)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위법사실이 성립되지만 법에 근거해 몰수하지 않을 경우 선행 등록 보존을 해제한다.
기간 경과 후 처리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선행 등록 보존을 해제해야 한다.

제29조 전자데이터를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현장 증거 수집, 원격 증거 수집, 유관 기관, 개인에게 고정 및 제출 등을 명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증거 수집, 원격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전자 증거 수집 업무기록>(양식을 별첨 8 참조)을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집행 요원은 증거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필기 기록 혹은 기타 자료에 사인, 지장, 날인 혹은 기타 방식으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현장 출석을 거부하고 사인, 지장, 날인 혹은 기타 방식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2명의 집행 요원이 필기 기록 혹은 기타 서류에 원인을 밝히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사인 혹은 날인하도록 하며 녹음, 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제31조 사건조사 종료 후 사건 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 의견 보고서>(양식은 별첨 9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위법사실이 성립되어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처리 의견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벌 제안서 초고를 작성해야 한다.

아래 상황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사건처리 의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 이유를 설명하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각자 처리한다.

- (1)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 철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위법행위 경위가 약하여 손해를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 (3) 사건이 해당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아 기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관할하는 경우
- (4) 범죄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

제32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사건 조사할 때 위법사실 성립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시정 명령 통지서를 발급하여 당사자에게 시정하거나 혹은 기한 내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5장 증언 청취, 상담

제33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 말소, 큰 액수의 벌칙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증언 청취 진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언 청취를 요구할 경우 고지를 받은 3일 후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증언 청취를 구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고도 증언 청취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제34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증언 청취 7일 전, <증언 청취 진행 통지서>(양식은 별첨 9 참조)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증언 청취 진행 시간, 장소를 고지해야 한다.

증언 청취는 <증언 청취 기록>(양식은 별첨 11 참조)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넘겨 확인 결과 오류가 없으면 사인 혹은 날인한다.

제35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인터넷정보 서비스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유관 규정에 따라 그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상담 종료 후 <법 집행 상담 기록>(양식은 별첨 12 참조)을 작성한다.

제6장 처벌 결정, 송달

제36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행정처벌 의견 고지서>(양식은 별첨 13 참조)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릴 예정인 위법 사실, 처벌 이유와 근거, 그리고 당사자의 법에 근거한 진술권, 변호권을 고지해야 한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를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혹은 증거는 재확인 결과 성립될 경우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고지서 접수 당일부턴 근무일 3일 내에 진술, 변호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당사자의 진술, 변호로 인해 가중 처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행정처벌 결정은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확실히 있을 경우 경위의 경중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 (3)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 (4)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38조 경위가 복잡하거나 혹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행정처벌을 내릴 경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는 단체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단체 토론 결정 과정은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경위가 복잡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표준은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39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면 통일된 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양식은 별첨 14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당사자의 성명 혹은 명칭, 주소 등 기본 정보
 - (2) 법률, 법규 혹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 (3) 행정처벌의 종류의 근거
 - (4) 행정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 (5)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의 명칭과 결정을 내린 일자
- 행정처벌 결정 중 유관 물품 몰수와 관련될 경우 몰수 물품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0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선고 후 현장에서 바로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7일 내에 민사소송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7장 집행과 사건 종료

제41조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 후 당사자는 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 혹은 벌칙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서면 자료를 제출한다. 사건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연장 혹은 벌칙금 분할 납부 기한과 금액을 확정하고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한다.

제42조 인터넷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 주무부처에서 사이트 폐쇄, 인터넷정보 서비스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말소 혹은 등록기록을 취소해야 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로 전달하여 처리한다.

제43조 당사자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내린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권, 변호권을 향유하며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근거해 행정 재심의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 재심의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처벌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

제44조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내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 <행정처벌 결정 이행 독촉장>(양식은 별첨 15 참조)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재촉하고

의무 이행 기한과 방식, 법에 의해 향유하는 진술권과 변호권을 고지해야 하고 벌칙금 처벌이 추가되었을 경우 명확한 금액과 지급방식이 있어야 한다.

벌칙금 처벌이 추가된 총 액수는 원래 벌칙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가 진술, 변호할 경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에 대해 기록, 재확인을 하고 진술 변호 기록, 진술 변호 재확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혹은 증거가 성립될 경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채택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 이행 독촉장〉 송달 근무일 10일 후, 당사자가 여전히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처벌 강제 집행 신청서〉(양식은 별첨 16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제45조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 혹은 집행 후, 사건처리 담당자는 〈행정처벌 사건 종료 보고서〉(양식은 별첨 17 참조)를 작성하고 관련 사건 자료를 정리하여 장정한 후 문서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46조 본 규정 중의 기한은 시간, 날짜로 계산하며 시작하는 시간과 날짜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한이 만료되는 최종 일자가 휴일일 경우 휴일 후의 첫 날을 기한 만료 일자로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

제47조 본 규정 중의 ‘이상’, ‘이하’, ‘이내’는 해당 숫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48조 국가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가 행정 집행에 적용하는 문서 양식 표본을 책임지고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내용관리부처는 문서양식 표본을 참조하여 본 행정 구역 행정처벌에 적용되는 문서 양식을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인쇄 제작할 수 있다.

제49조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제목	关于进一步引导和规范境外投资方向的指导意见
제재일	2017-8-4
출처	국무원 판공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의 해외투자 방향을 한층 더 유도 및 규범화하는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7〕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위원회, 각 직속기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의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각 기관으로 전달하오니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17년 8월 4일

해외 투자방향 유도 및 규범화 관련 지도의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최근 수년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고 규모와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 기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견인, 국내 경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 관련 국가와의 상호 이익 협력 심화, 그리고 ‘일대일로’ 추진과 국제 생산력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현재 국내외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많은 리스크와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투자 방향을 한층 더 유도 및 규범화하며, 해외투자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질서 있는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지도사상

당의 18대와 18기 3중, 4중, 5중, 6중 전회의 정신을 고양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문 정신과 치국이정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 깊이 관철 집행하며 중앙정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착실하게 배치하여 ‘5위1체’ 총체적 분포를 총괄 추진하고 ‘4개 전면’의 전략적 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국민중심의 발전 사상을 고수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체적 기조를 확고히 하는 한편, 혁신, 조율, 그린,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굳건히 확립하고 집행한다. 호혜호리, 상생의 개방전략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보다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다원화된 대외 개방구도를 끊임없이 창조하며 공급측 구조 개혁을 주요맥락, ‘일대일로’ 구축의 유도 아

래 해외투자 체제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시킨다. 기업의 해외 투자방향을 한층 더 유도 및 규범화 하고 기업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해외투자 활동을 진행하도록 촉진하며 해외투자 리스크를 방지 및 대응하고 해외투자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투자목적 국가와의 호혜호리 및 상생, 공동발전을 실현한다.

2. 기본원칙

- (1) 기업 주체를 고수한다. 해외투자분야에서 시장의 자원배치 중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가이드로 하면서 비즈니스 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라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기업은 정부의 유도 하에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손익과 리스크를 자체 부담한다.
- (2) 심층 개혁을 고수한다.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해외투자 원활화 수준을 높이고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리 하부이양, 완화와 관리 간 결합,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등록제중심의 해외투자 관리방식을 고수한다. 자본항목별로 경영하는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발전 권장+네거티브리스트’ 모델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 방향을 유도 및 규범화한다.
- (3) 호혜호리 및 상생을 고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국가의 국가 상황과 실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호혜호리 협력을 중요시하며 양호한 경제 및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여 호혜호리, 협력 상생을 촉진한다.
- (4) 리스크 방지를 고수한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꾀하는 사업의 총체적 기조를 고수하고 국가경제 외교의 전체적 전략을 총괄하고 법 의거 준수를 고수하며 해외투자의 주안점과 리듬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며, 해외투자의 사전,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각종 리스크를 확실하게 방지한다.

3. 해외투자 장려

중국 내 능력이 있고 조건이 되는 기업이 해외투자 활동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 생산력 협력을 심화시켜 중국 내 우위 생산력, 우수 품질의 장비, 응용 기술 수출을 견인하며, 중국의 기술 개발과 생산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에너지자원 부족을 보완하고 중국의 관련 산업의 퀄리티 향상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 (1) ‘일대일로’ 건설과 주변 인프라 상호 연결에 유익한 인프라 해외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2) 우위 생산력, 우수한 품질의 장비와 기술표준 수출을 견인하는 해외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한다.
- (3) 해외 첨단기술과 첨단제조업 기업과의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 (4) 경제적 수익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토대로 해외 오일, 가스, 광물 등 에너지 자원 탐사와 개발에 안전하게 참여한다.

(5) 농업의 대외 협력 확대에 주력하고 농업, 임업, 목축업, 부업, 어업 등 분야의 호혜호리 및 상생의 투자협력을 진행한다.

(6) 비즈니스와 무역, 문화, 물류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투자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지사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4. 규제하는 해외투자

국내 기업이 국가의 평화발전 외교방침, 호혜호리 및 상생의 개방전략 및 거시적 조정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규제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1) 중국과 수교하지 않았고, 전란이 발생했거나 중국이 체결한 양자/다자간 조약 혹은 협의 규정에서 규제하는 민감한 국가에 가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 (2) 부동산, 호텔, 영화관, 오락산업, 스포츠클럽 등 해외 투자
 - (3) 해외에 구체적인 실업사업이 없는 지분 투자펀드 혹은 투자 플랫폼을 설립하는 경우
 - (4) 투자 목적국가의 기술표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된 생산설비로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 (5) 투자 목적국가의 환경보호, 에너지소비, 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투자
- 그 중 (1)-(3)은 반드시 해외투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금지하는 해외투자

중국 내 기업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등의 해외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군수공업 핵심기술과 제품수출 관련 해외투자
- (2) 중국의 수출금지 기술, 공법, 제품을 활용하는 해외투자
- (3) 도박업, 윤락업 등의 해외투자
- (4) 중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국제조약 규정에서 금지하는 해외투자
- (5) 기타 국가이익 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해외투자

6. 보장조치

(1) 분류 지도를 실시한다. 장려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외화, 보험, 세관, 정보 등 분야에서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기업을 위해 더 좋은 원활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중한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필요한 지도와 안내를 해야 한다. 금지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엄격히 관리 통제해야 한다.

(2)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해외투자의 진실성, 합법성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 투자행위를 방지한다. 해외투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규정을 위반한 투자행위에 공동 처벌을 실시한다. 부처 간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국 내 기업이 지배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해외투자 의사결정, 재무관리와 규정위반 책임 추궁제도를 정착

시킨다. 국유기업 해외투자 자본금제도를 구축한다. 국유기업 해외투자 감사제도를 완비시켜 해외 국유자산의 안전을 유지한다.

(3)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해외투자 경영행위 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이 해외 합법 경영 리스크 심사, 관리통제와 의사결정 체계를 완비시키도록 유도하며, 해외투자 협력정책 법규와 국제관례를 깊게 이해하고, 현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경영한다. 관련 국가와의 투자 보호, 금융, 인적 왕래 등 분야에서의 메커니즘화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진행을 위해 양호한 외부 환경을 마련한다. 중국 내 자산평가,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세무 서비스, 투자 컨설팅, 설계 컨설팅, 리스크 평가, 인증, 중재 등 관련 중개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해 시장화, 사회화, 국제화의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투자 경영 리스크를 낮춘다.

(4)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국가별 투자경영 원활화 상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기업의 고위험 국가 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와 사회의 중대한 리스크를 즉시 경고하고 통보하며 대응 매뉴얼과 예방조치를 제시하여 중국 기업의 해외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한다.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안전리스크 평가를 진행하도록 독촉하고, 프로젝트 안전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하며 안보제도를 구축 및 완비시키는 한편, 안보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안전 리스크 방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각 지역, 각 부처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해외투자의 방향과 포인트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직 지도와 총괄 조율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업무 책임을 시행하고 관련 지원정책 조치의 제정과 출범을 서두르고,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확실히 거두도록 한다.

21.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17-9-7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제1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국무원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위임하는데 관한 통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를 제공 및 사용할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그룹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인터넷 앱(app) 등을 통해 구축한 그룹 온라인 정보교류에 사용되는 인터넷 공간이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사용자에는 그룹 설립자, 관리자와 회원이 포함된다.

제3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의 관리감독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무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의 관리감독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정확한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육성하여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5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내용 보안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서비스 규모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술 능력을 갖추어 사용자 등록, 정보 심사, 비상 처리, 안전 보호 등 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관리 규칙과 플랫폼 협약을 제정 및 공개하고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6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백그라운드 실명, 포그라운드 자발(后台实名 `前台自愿)’ 원칙에 따라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한 진실한 신원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하고 사용자가 진실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 게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을 보호하고 누설, 왜곡, 훼손을 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 판매 혹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서도 아니 된다.

제7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그룹의 특성유형, 회원규모, 활약 빈도 등에 따라 등급·유형별 관리를 실행하면서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국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등록 신고하고 법에 의해 그룹의 정보 전파 질서를 규범화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사용자의 신용등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 규모와 관리 능력에 따라 그룹 회원 인원수와 개인의 그룹 설립 수, 참여 그룹 수의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유일의 그룹 식별코드를 설정 및 나타내야 하고, 회원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정보 페이지를 설정하고 그룹명, 인원수, 유형 등 기본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룹 규모유형에 따라 등급별로 그룹 설립자의 진실한 신원, 신용등급 등 그룹 설립 자격을 심사하여 그룹 설립, 그룹 가입 등 심사 검증 기능을 완비시키고, 그룹 설립자, 관리자 및 회원의 그룹 내 신원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그룹 설립자, 관리자는 그룹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법률 법규, 사용자 계약과 플랫폼 협약에 따라 그룹의 인터넷 행위와 정보 게시를 규범화하여 문명하고 질서 있는 인터넷 그룹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회원이 그룹 정보 교류에 참여할 경우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하게 상호 교류하고 이성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룹 설립자, 관리자의 그룹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능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인터넷 그룹을 이용하여 법률 법규와 국가 유관 규정이 금지한 정보 내용을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법규와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그룹에 대해 법과 협의에 따라 시정 경고, 게시 일시 중단, 그룹 폐쇄 등 처리 조치를 취하고 유관 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법규와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한 그룹 설립자, 관리자 등 사용자에게 대해 법과 협의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관리 권한 일시 중단, 그룹 설립자격 취소 등 관리조치를 취하고 유관 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블랙리스트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법과 협의를 위반하고 경위가 심각한 그룹 및 설립자, 관리자와 회원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룹의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고 유관 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사회 대중과 업계 기관의 감독을 받고 신고 고발 루트를 정착시켜 편리한 고발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와 고발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직무에 따라 고발 수리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업계 조직이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업계 협약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여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3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유관 주무부처가 법에 의해 진행하는 감독 검사를 협조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인터넷 일지를 최소한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그룹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관 부처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22.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17-9-7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인터넷정보 콘텐츠생태 관리규정> 등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가인터넷정보 부처가 전국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의 관리감독 관련 법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인터넷정보 부처는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의 감독관리 집행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플랫폼과 공중계정 제작운영업체는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서양속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올바른 여론 유도, 가치 지향을 견지하여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알려야 한다. 보다 나은 품질의 정보콘텐츠를 제작 발표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청정한 사이버 공간을 수호한다.

각급 당정기관, 기업체, 대중 단체가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을 등록 사용하여 수준높은 정부 정보 혹은 공공 서비스 정보를 제작·게시하여대중의 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당정기관, 기업체, 대중 단체에 적극 협조하여 정부 정보 게시와 공공 서비스, 사회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정보 보안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공중계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시 반드시 국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관련 자질을 취득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공중계정 제작운영자가 사회 대중에게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시 반드시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2장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플랫폼

제6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정보 콘텐츠와 공중계정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업무 규모에 맞는 관리인력과 기술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콘텐츠 안전 책임자 직책을 두어 계정 등록, 정보 콘텐츠 안전, 생태 관리, 긴급 처리,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전,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신용평가 등 건전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콘텐츠 제작, 공중계정 운영 등 관리 규칙, 플랫폼 공약을 제정·공개해야 하며, 공중계정 제작운영자와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콘텐츠 발표 권한, 계정관리 책임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에 따라 공중계정 분류 등록과 분류 제작제도를 마련하고 분류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공중계정의 정보 콘텐츠의 제작 품질, 정보 전송능력, 계정 주체의 신용평가 등 지표에 근거하여 등급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등급 관리를 시행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공중계정과 콘텐츠 제작 및 계정 운영관리 규칙, 플랫폼 공약, 서비스협약 등을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 관련부처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여론 속성이나 사회 동원력을 가진 신기술·신용용·신기능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8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복합 인증 등 조치를 취하여 공중계정 로그인 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대해 휴대폰 번호, 신분증 번호 혹은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등을 바탕으로 신분 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인증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사용자가 진실된 신분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기기관, 타인의 신분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등록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인터넷 사용자 등록한 공중계정 명칭, 프로필 사진과 소개 등에 대해 합법적인 대조 확인을 거쳐 계정 명칭, 프로필 사진, 소개가 등록된 실제 신분정보와 불일치할 시, 특히 독단적으로 당·정부기관, 기업체 등 조직기구나 사회 유명인사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기한 내 시정을 통보한다.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등록 정보에 위법적 내용, 불량 정보가 발견될 시에는 법에 따라 즉시 처벌한다.

제9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경제, 교육, 의료위생, 사법 등 분야의 정보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기 위해 가입 신청한 공중계정에 대해 사용자 가입 시 그 전공 배경과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해 획득한 직업 자격 혹은 서비스 자질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이를 검증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검증 통과 후 공중계정에 전문지식 마크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주체 성격에 따라 콘텐츠 제작 유형, 운영주체 명칭, 등록운영주소,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연락처 등 등록 정보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조사를 받도록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동태적 검증조회제도를 구축하여 적시에 제작

운영자의 등록 정보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검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동일한 주체가 해당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는 공중계정 수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러 개의 공중계정을 신청 등록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그 주체의 성격, 서비스 자질, 업무 범위, 신용평가 등 필요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사용자 가입 후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중계정에 대해 서비스협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잠정 중단 혹은 종결할 수 있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기술 수단을 완비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한도 이상 가입, 악의적 가입, 허위 가입 등 규정 위반 가입 행위를 방지 및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법과 약정에 의거하여 공중계정 제작운영자의 위법적 공중계정 양도를 금지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공중계정 사용권을 양도할 때, 반드시 플랫폼에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은 이전 규정조항에 의거해 양도 받은 사용자에게 대해 인증과 검사를 진행하고, 주체 변경 정보를 공시한다. 플랫폼은 제작운영자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공중계정을 양도한 경우, 즉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 또는 중지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계정의 운영을 중단할 때, 플랫폼에 일시 중단 또는 사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은 서비스협정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결한다.

제12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공중계정 모니터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정 구독량, 사용자 관심도, 콘텐츠 클릭수, 리포스팅 및 댓글수 등 데이터의 조작 행위를 방지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공중계정 추천 구독 관심 시스템을 규범화하고 기술 수단을 완비하여 공중계정 구독 관심 수량 변동에 이상 사항이 발생한 것을 즉시 발견, 처리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성을 부여해 다른 사용자의 공중계정에 대한 구독과 관심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13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제작운영자 신용등급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등 허위 정보에 대한 경보, 발견, 추적, 선별, 반박, 제거 등 조치체계를 마련하고, 허위정보를 제작 게시하는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블랙리스트에 포함한다.

제14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제작운영자가 콘텐츠 공급과 계정 홍보 협력을 추진할 때, 전자상거래 판매, 광고 게시, 유료 지식, 사용자 상금 등 운영 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허위 광고, 과대광고를 게시하거나 상업사기, 비방 등 행위를 금하여 위법 운영을 예방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원작 정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불법 복

제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작운영자의 합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3장 공중계정 제작운영자

제15조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플랫폼의 유형별 관리규정에 따라 공중계정 가입 시 사용자 주체의 성격, 등록주소, 운영주소, 콘텐츠 제작 유형,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조직기관 사용자는 주요 경영 혹은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플랫폼 콘텐츠 제작과 계정의 운영 관리규정, 플랫폼 공약과 서비스협정을 준수해야 하고, 공중계정 등록 콘텐츠 제작 유형에 따라 관련 업계 분야의 정보 콘텐츠를 제작 게시해야 한다.

제16조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정보 콘텐츠 제작과 공중계정 운영관리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정보 콘텐츠 제작과 공중계정 운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주제 선별계획, 편집 제작, 게시 홍보, 상호 평가토론 등 전 과정의 정보 콘텐츠에 대한 안전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콘텐츠의 지향성, 진실성, 합법성 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전파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공중계정 가입 사용, 운영 홍보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법적, 문명적, 규범적으로 공중계정을 운영해야 한다. 우수한 정보 콘텐츠로 대중의 관심과 구독을 유도하고 상호 공유하며 공중계정의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보호해야 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가 제3자 기관과 공중계정의 운영, 콘텐츠 공급 등에 관해 협력을 진행할 경우, 제3자 기관과 서면 협의서를 체결하여 제3자 기관의 정보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7조 공중계정 제작운영자가 리포스트한 정보 콘텐츠는 반드시 저작권 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법에 의거해 저작권자와 추적 가능한 정보 출처를 명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공중계정의 메모, 댓글, 평론 등 상호작용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플랫폼은 공중계정의 주체 성격, 신용등급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설정하고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는 아래와 같은 위법, 규정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허위 신분 정보로 가입하거나 실제 신분 정보와 불일치하는 공중계정 명칭, 프로필 사진, 소개 등으로 가입하는 행위
- (2) 악의적 사칭, 가칭 혹은 조직기관이나 타인의 공중계정에서 제작 게시한 콘텐츠 내용을 도용하는 행위
- (3) 허가없이 혹은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인터넷 뉴스 정보를 취재 편집 게시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4) 여러 플랫폼 계정을 조작 이용하여 분별력 없이 저질의 정보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

시하여 허위 데이터를 생성하고 거짓 여론을 화젯거리로 만드는 행위

(5) 돌발적 사건을 이용하여 극단적 정서를 선동하거나 인터넷 폭력으로 타인과 조직기관의 명예에 해를 입혀 조직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

(6) 거짓 정보 날조, 원작 속성 위조, 거짓 정보출처 명시, 사실·진실 왜곡, 사회대중을 오도하는 행위

(7)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게시, 삭제하는 수단으로 불법 사이버 감독관리, 마케팅 사기, 재물 갈취 등 불법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공중계정의 위법적 대량 가입, 매점 혹은 불법 거래를 통해 공중계정을 매입하는 행위

(9) 위법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하는 행위 또는 불량정보의 제작, 복사, 게시를 저지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10)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반드시 해당 플랫폼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 또는 규정에 어긋나는 정보 혹은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본 규정과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공중계정에 대해 법과 약정에 의거하여 경고알림, 계정 기능 제한, 정보 업데이트 일시중단, 광고 게재 정지, 계정 탈퇴 폐쇄, 블랙리스트 적용, 신규 계정 등록 금지 등 처벌 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정보 등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20조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제작운영자는 마땅히 자발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편리한 고발신고 링크와 제소 채널을 설치하여 신고 고발과 제소 방식을 공고하고, 접수, 선별, 처리, 피드백 등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처리 절차와 피드백 기한을 명시하여 대중의 고발 신고와 제작운영자의 제소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업계에 대한 대중의 평가 논의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제작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다자가 참여하는 권위있는 중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계내 분쟁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적법하게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제21조 각급 인터넷정보 부처는 유관 주무부처와 함께 건전한 감독관리 협업체체를 구축하고, 감독관리를 통해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제작운영자가 합법적으로 관련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도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제작운영자는 유관 주무부처가 법에 의해 진행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과 제작운영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 부처와

유관 주무부처가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본 규정 중 인터넷 사용자 공중계정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 운영하며 사회 대중에게 문자, 그림, 음악/영상 등 정보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는 온라인 계정을 말한다.

본 규정 중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란,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공중계정 등록 운영, 정보 콘텐츠 게시 및 기술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본 규정 중 공중계정 제작운영자란, 등록운영하는 공중계정에서 콘텐츠의 제작 게시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을 말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표된 관련 규정과 본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3.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제목	新闻出版广播影视“十三五”发展规划
게재일	2017-09-20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인쇄·배포 관련 신문출판광전총국 통지(신광발[2017]150호)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신문출판광전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²⁹⁾ 신문출판광전국, 총국 기관 각 사(司)/국(局), 직속 각 기관:

현재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공개버전)을 인쇄 배포하니 실제와 결부하여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7년 9월 20일

신문출판방송영상 13차 5개년 발전계획

13차 5개년 기간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결승단계이자, 중국이 신문출판방송영상 대국에서 신문출판방송영상 강국으로 매진하는 핵심단계이기도 하다. 신문출판방송영상의 변영 발전을 신속히 촉진하기 위해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 제정 관련 건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 요강〉과 〈국가 ‘13.5’ 시기 문화발전 개혁계획 요강〉에 따라 동 계획을 제정한다.

가. 발전기반

(가) 주요 성과

12차 5개년 기간에 신문출판방송영상은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전반 업무를 둘러싸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각 정책결정 배치를 심층 이행하여 개혁 심화, 혁신 발전, 구조조정 및 고도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 뉴스 홍보 심층 혁신, 여론 유도능력 꾸준히 강화

각급 당의 기관지와 당의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 출판기관은 정확한 여론 유도 방향을 파악하고, 뉴스 홍보콘텐츠 형식, 방식과 방법, 수단 운영상태, 체제와 메커니즘 등

129) 병단(兵團):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의 개혁 혁신을 본격 추진하였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시리즈 발언 정신을 심층 학습 및 홍보하고, 당중앙의 국정 운영 신규 이념·사상·전략을 심층 홍보 및 설명하였다. 중요한 회의, 중대한 활동과 중요한 시점을 둘러싸고, 중국몽(中國夢:중국꿈), ‘5위일체’¹³⁰⁾의 총체적인 배치, ‘4개 전면’¹³¹⁾의 전략적 배치, 신규 발전이념, 공급측 구조적 개혁,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등 주제 주요맥락에 초점을 두어 전방위·다차원·멀티미디어 홍보 보도를 전개했으며, 주요 관점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동력을 전파하여 여론의 유도능력과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켰으며, 신문출판방송영상 미디어의 전파력·유도력·영향력·공신력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신문출판방송영상 전통 미디어와 신형 미디어가 심층 융합발전 단계로 매진하고, 전체 미디어·다중 플랫폼·다중 단말기 취재/편집/방송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뉴스 홍보팀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2. 콘텐츠 제작의 지속적인 번영 추세, 끊임없이 명작 배출

2015년에 중국 전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시간은 772만 시간으로, 2010년보다 13.27% 증가하였고, TV프로그램 시간은 353만 시간으로, 2010년보다 28.75% 증가하였다. 드라마 제작량은 394편, 1만 6,540회로 2010년보다 12.8% 증가했다. 극영화 제작량은 686편으로, 2010년보다 30.4% 증가했고, 출간도서 총 인쇄 수는 86억 6,000만권(장)으로, 2010년보다 21.3% 증가했다. 저작권 등록량은 164만건으로, 2010년보다 105만건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177.97%이다. 간행물 구조가 더욱 최적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제품이 풍부해졌으며, 다중경로 입체 전파체계가 구축 중이다. 간행물 정보전파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으며, 인터넷 문학이 번영 발전했다. 수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명품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라디오·TV 프로그램 코너, 영화 드라마,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도서 간행물 콘텐츠 품질이 꾸준히 향상됐다. 우수한 작품과 창작 작품이 대폭 증가하고, 공익성 프로그램 방영 비중이 높아지고, 중국몽 주제 창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 및 사회적 수익이 높고 호평과 흥행을 겸비한 명작을 배출했다.

3. 혜민(惠民) 공정(工程,Project) 추진, 신문출판방송영상 공공서비스체계 신속히 업그레이드

라디오·TV 촌촌통공정¹³²⁾ 12차 5개년 계획 임무가 순조롭게 수행되어 82만개에 20가구 이하의 전력개통 자연촌 ‘난청 지역’이 라디오·TV가 개통되었으며, 생방송 위성 공공서비스가 신속히 추진되어 중국 전역 사용자 수가 6,500만 가구를 넘었다. 중앙 라디오·TV 프로그램의 무선 디지털화 서비스가 가동되었고, 1,000여개 시/현은 현지 프로그램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망을 구축했다. 일부 지역은 응급조치 방송 확정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대농(對農) 서비스가 풍부해졌다. 2015년에 중국 내 라디오TV의 종합인구 커버률이 98.17%와 98.77%로, 2010년보다 1.39%p와 1.15%p 향상했다. 시신공정¹³³⁾은 티베트족(衛藏), 안뒤(安多), 캉바(康巴)), 위구르족, 카자흐족, 몽골족, 조선족 등 주요 소수민족 언어 방송영상 프로그램 위성방송 전송을 실현하였으며, 또한 소수민족 대중을 위해 ‘알아듣고’, ‘알아보는’ 본 민족 언어프로그램을 대량 제공하였다. 농촌 영화방영공정이 신속히 업그레이드

130) 5위1체(五位一体):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131) 4개 전면(四个全面): 전면적 샤오강사회,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법치국가, 전면적 정부관리

132) 촌촌통공정(村村通工程): 농업 정보화 건설공정

133) 시신공정(西新工程): 민심을 얻고 안정시키는 국민에게 이로운 공정

드되어 2015년 말에 중국 내 현(縣)급 도시는 디지털방영장소 전체 커버를 실현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목표를 정한 기일 내에 달성했다. 중국 내 2,116개 현급 도시는 디지털 영화관 3,241개, 스크린 1만 2,777개를 확보했다. 농가 서재 구축에서 질적 수준과 효과가 향상했고, 농민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도서 비중이 증가했으며, 구축된 농가 서재는 60만 449개로, 중국 내 여건이 되는 행정촌에 구축되었고, 디지털 농가 서재는 3만 5,000개이며, 그 중 위성 디지털 농가 서재가 2만 2,000개이다. 출판물 점포가 22만개로, 2010년보다 40.9% 증가했으며, 그 중 농촌 출판물 발행망이 4만 7,400개로, 2010년보다 82.31% 증가했다. 전 국민 열독공정이 심층 추진되고, 중국 전역에 10만개 이상의 도시와 농촌 신문열람란(스크린)이 구축되었다. 매년 중국 내 도시와 농촌의 8억 명의 인력이 다양한 국민 열독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국민 종합 열독률은 2010년의 77.1%에서 2015년의 79.6%로 향상했다. 소수민족 신문출판 동풍(東風)공정은 중국 내 5개 소수민족자치구, 4개 성과 티베트자치구 및 신장생산건설병단이 포함되며, 12차 5개년 기간에 중앙재정을 통해 이전 지원한 소수민족 문화와 이중언어 출판물은 6,000종 이상이고, 소수민족 언어문자 도서와 간행물 출간 및 발행 능력이 뚜렷이 제고되었다.

4.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 내부 활력과 운영효율 대폭 향상

행정관리 체제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총국 기관통합, 업무융합, 기능전환이 가속화되었고, 행정 심사사무 28개를 취소 및 하부로 이양했으며, 성급 신문출판, 방송영상 행정부처는 기관과 기능 통합을 기본적으로 수행했다. 국유문화기업 개혁은 심층 추진되고, 국유 영화드라마제작기관, 영화배급상영기관, 인쇄복제업체, 발행업체, 영업성 도서음향전자출판사, 비시정류 간행물출판기관은 기업으로의 체제전환을 전반적으로 수행했다. 시장체계가 꾸준히 완비되고, 제품거래, 콘텐츠 소비, 영화와 TV 방영 등 시장이 더욱 개선되었다. 12차 5개년 기간의 심층 개혁을 통해 신문출판방송영상은 정부기능, 체제/메커니즘, 발전방식 등에서 중요한 전환을 실현하였고, 명품 제작을 지도하는 유도메커니즘, 개혁발전을 지원하는 정책메커니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추진메커니즘,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 중요한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5. 산업의 신속한 발전, 전반 실력 향상

12차 5개년 기간에 신문출판방송영상산업은 고도 성장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2015년에 중국 내 출판, 인쇄와 발행 서비스의 매출액은 2조 1,655억 9,000만 위안을 달성하여 2010년보다 70.5% 증가했고, 이윤총액은 1,662억 1,000만 위안으로 54.5% 증가했다. 중국 전역 방송산업의 수입총액은 4,635억 위안으로, 2010년보다 101.35% 증가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도서, 정기간행물 등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번영 발전했으며, 중국 내 <방송TV 프로그램 제작 경영허가증> 소지 기관은 1만 232개로, 2010년보다 2배 증가했고, 영화 박스오피스는 10년 연속 3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뉴미디어산업은 두각을 나타내고 신속히 발전했다. 디지털출판의 매출액은 4,400억 위안으로, 2010년보다 318.7% 증가했으며, 신문출판 매출액 중 비중은 2010년의 8.5%에서 2015년의 20.5%로 증가했다. 시청 뉴미디어는 인터넷 트래픽 기여도가 최대인 응용분야이며, 산업규모는 378억 4,000만 위안으로, 강한 발전활력을 구현했다. 그린인쇄(친환경인쇄) 추진성도가 뚜렷하며, 매년 12억 권의 초중학교 교과서는 그린인쇄를 실현했고, 약 200만 명의 인쇄 종사자의 업무환경이 개선되었다. 산업 자원통합과 구조 고도화 역량이 더욱 확대되었고, 중국 방송텔레비전네트워크

크유한회사가 설립되어 130여개 출판미디어그룹의 설립을 추진했다. 중국출판그룹, 중국교육출판미디어그룹, 평항(鳳凰)출판미디어그룹, 중난(中南)출판미디어그룹 등 4개 출판그룹이 세계 50대 출판기업에 진입했고, 중국 전역 23개의 영상업체와 33개의 출판미디어기업이 중국 내 메인보드와 창업판(차스닥)에 상장했다. 국가 차이나필름(中影)디지털제작기지, 저장형텐(浙江橫店) 영상산업실험구, 우시(無錫) 국가디지털영화산업원, 장장(張江) 국가디지털출판산업기지 등 국가급 산업단지 및 기지의 인큐베이팅 효과와 집결효과가 더욱 향상되어 신문출판방송영상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었다. 현재 중국 내 신문 발행량, 도서 출판량, 방송TV 전송규모,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제작량은 세계 1위이며, 영화산업, 디지털출판, 인쇄업의 전반 규모는 모두 세계 2위를 차지하여 중국은 명실상부한 신문출판방송영상 대국이 되었다.

6.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디지털화 수준 대폭 향상

방송TV 디지털화공정, 영화 첨단기술 응용공정, 국가 디지털복합출판 시스템공정, 디지털판권 보호기술 연구 개발 공정, 중국 폰트 공정 등 중요한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전체 산업의 디지털화 발전이 크게 빨라졌다. 디지털출판 발전을 촉진하는 일부 핵심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었고, 170개의 출판기관이 디지털출판 전환시험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전통 인쇄와 인터넷이 신속히 융합되었으며, 인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300개이고, 디지털인쇄 기업은 3,000개이다. 각급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은 디지털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했으며, 성급 이상의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은 네트워크화 제작 방영을 실현했다. 중국 내 2억 3,900만 명의 유선TV 사용자 가운데 디지털TV 사용자가 1억 9,600만 명이고, HDTV 사용자는 6,000만 명 이상이며, 차세대 방송TV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3망융합(三網融合)¹³⁴⁾업무 수용능력이 뚜렷이 제고되었고, 영화 디지털화 상영이 전반적으로 보급되었다. 신문출판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 가공, 통합, 전파 플랫폼이 신속히 구축되었으며, 디지털방영, 디지털출판, 디지털인쇄, 디지털발행, 디지털전송 등 산업종이 신속히 발전하여 ‘한 콘텐츠에 다양한 창의, 다중개발’ 모델이 수립 중이다. 신문출판방송영상 중점분야의 자주혁신이 신단계로 매진했다. 위성TV 및 무선 양방향 서비스 기술 테스트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상파 디지털 오디오 방송(CDR) 기술표준체계가 구축되었다. 선진 비디오/오디오 코딩 기술표준(AVS+) 그리고 스마트TV 운행시스템(TVOS)이 점진적으로 보급되었고, 중국 주도로 제작된 <국제표준 링크 식별자(ISLJ)> 국제표준이 발표되었으며, ISLJ표준 국제등록센터가 중국에 정착했다. 응급조치 방송 핵심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유선, 무선, 위성 융합망 시범이 정식 가동되었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국 아이맥스’와 레이저 상영기술이 발 빠르게 발전했다.

7. 국제 전파능력 육성 심층추진, ‘해외진출’ 성과 구현

‘경전중국’ 국제출판공정, 중국도서 대외보급계획, 중국 출판물 국제마케팅 확대공정, 중점신문출판기업 해외 발전 지원계획 등 신문출판의 ‘해외진출’ 중점공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고, 190여개 국가(지역)의 출판물시장을 개척했으며, 판권 수출과 도입 품종 비중은 2010년의 1:2.9에서 2015년의 1:1.6으로 향상했다. 실크로드 영상 브리지(影視橋)공정은 방송TV분야 전체 산업사슬을 견인하여 ‘일대일로’ 전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실크로드 국제영화제, 중국 영화·드라마의 현지화 더빙 및 보급공정 등은 브랜드 효과를

134) 3망융합(三網融合): 통신망, 방송TV망, 컴퓨터망의 융합을 말함.

조성했다. 실크로드 독서품(书香)공정은 많은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중국-아프리카 영화·드라마 협력공정은 아프리카 주류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일류 언론 육성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CCTV3채널과 중국텔레비전창청(长城)플랫폼은 해외 정착과 서비스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국제전과 발전구도가 개선되었고 전파능력이 꾸준히 강화되었다. 국경지역 성/자치구의 방송TV 프로그램, 도서와 신문은 주변 국가와 지역의 보급범위가 확대되었다. 민영기업은 문화의 ‘해외진출’에 적극 참여해 신문출판방송영상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신문출판기업이 해외에 투자했거나 또는 설립한 지사는 400개 이상이며, 다국적 인수합병은 중국 출판업 국제화 발전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신문출판방송영상 제품과 서비스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디지털출판제품 수출은 50억 달러 이상이다. 중요한 국제도서전시회와 국제영화제 전시회의 중국 주빈국 행사, 상하이 국제영화제, 베이징 국제도서박람회, 중국 국제 방송TV 정보망 전시회 등은 국제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의 주류 중요플랫폼이 되었다. 이밖에 해협양안 4개 지역의 협력교류가 활약했다.

8. 업종관리와 법치건설 강화, 당풍 청렴제창 및 인재양성 추진

업종 관리와 제어가 꾸준히 개선 및 혁신되었다. 뉴스사기와 가짜뉴스 타격 전문프로젝트 행동을 심층 전개했으며, 중앙 신문기관의 지방주재 기관을 정리 정돈하여 1,181개를 철수 또는 인수합병을 했으며, 철수 인수합병 비중은 37%이다. 간행물, 언론사 출장소, 기자증 정리와 퇴출 역량을 확대하여 운영중지 및 취소한 간행물은 144종이고, 취소한 신문 기자증은 3만 4,419개이며, 신문 취재/편집/출판/발행 질서를 규범화했다. 위조 불법 광고, TV홈쇼핑용 짧은 영상 광고에 대한 전문 관리를 심층 추진하고, 방송TV 주파수 불법 점용, 생방송위성 수신 설비 불법 생산, 지상파 수신시설 불법 설치 등의 행위를 단호히 조사했으며, 방송TV 제작 및 전송 질서를 규범화했다. <영화산업 촉진법>,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등 입법에서 획기적인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신문출판방송영상(판권) 법률체계가 개선되었고, 법 의거 행정, 법제 홍보, 법집행 감독규제 사업을 심층 추진했다. 당풍 청렴제창을 심층 추진하고, 당 관리 정상화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정비했다. 신문출판방송영상그룹 구축을 강화하여 2015년에 중국 내 신문출판방송영상산업 종사자가 579만 명을 달성했고, 인재구조가 최적화되었으며, 인재 사업메커니즘이 개선되고, 인재 교육훈련과 관리서비스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9. 안전보장능력 전면 제고, 모니터링 감독규제 체계 개선

방송영상 안전방영 관리제도 체계를 꾸준히 정비하고, 방송센터, 텔레비전센터, 위성, 무선, 유선, 극초단파, 시청 뉴미디어 등 10개의 전문 안전방영 실시세칙을 제정 및 발표했으며, 정보보안 등급보호 관련 표준문헌을 출범하여 기술시스템의 신뢰성과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켰다. 안전방영 기반시설과 기술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안전방영 응급조치 대비책을 개선했으며, 지휘조정 메커니즘을 정비시켜 방송TV 안전방영 보장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시리즈 행사 등 주요행사, 주요 시간대, 중요한 프로그램의 안전방영사업을 훌륭히 수행했다. 중요한 가짜 신문 간행물의 주요 책임자 문책제도, 간행물 불법 처리 사회통보제도, 중대 불법문제 조사 감독관리 메커니즘, ‘이중 이송’ 사업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했다. ‘구벤(固边)’, ‘징왕(净网)’, ‘츄펑(秋风)’, ‘후야오(护苗)’ 특별행동을 심층 전개하고, ‘해자공정’, ‘난링(南岭)공

정’, ‘텐산(天山)공정’, ‘주펑(珠峰)공정’과 ‘백두산공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2015년에 중국 전역에서 몰수한 불법 출판물은 1억 1,000만 건이고, 조사 처분한 사건은 5만 9,000건이다. 시청 뉴미디어와 웹퍼블리싱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전역 간행물 디지털 모니터링 교열플랫폼과 국가관권 감독규제플랫폼을 구축 및 정비시켰으며, 불법 인터넷TV 수신설비 전문 정돈행동과 네트워크 침해 불법복제 타격 ‘젠왕(剑网)’ 행동을 심층 전개했다. 또한 권력침해 웹사이트와 유해 웹사이트 일부를 조사 처분하고, 네트워크 전파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했으며, 방송TV, 열독매개체와 사이버공간을 정화하고, 이데올로기와 문화안전을 수호했으며, 국민의 문화권익을 보장했다.

(나) 직면한 새로운 정세와 현재의 문제점

오늘날 경제 글로벌화와 첨단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이 뉴노멀 시기에 진입하면서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발전이 새로운 절호의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 1)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치국이정(治国理政)¹³⁵⁾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신경지를 개척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 꿈의 실현, ‘5위1체’의 총체적 분포의 통합 추진과 ‘4개 전면’ 전략 분포의 조율 추진, 경제 발전의 뉴노멀 전인 등은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을 위해 막강한 동력과 드넓은 무대를 제공했다.
- 2) 시진핑 총서기는 당과 국가 전체 사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사상 문화 홍보업무에 대해 신사상, 신관점, 신논리, 신기준을 제시했고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개혁 발전을 위해 방향을 명확히 지적했으며 중요한 원칙을 제공했고 더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3) 중앙정부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업무의 총체적 기조를 고수하고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하는 정책적 틀을 구축하며 ‘혁신, 조율, 그린, 개방, 공유’라는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지도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주요맥락으로 하는 정책체계를 형성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을 위해 중대한 정책적 호재를 불러왔다.
- 4) 다년간의 건설 발전을 거쳐 신문출판 방송영상 상품의 생산량, 커버규모는 끊임없이 커지고 다수의 지표는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더 크고 강하게 만들자는 물질적 기술 여건이 더욱 단단해지고 전환 및 업그레이드, 도약 발전의 기반이 더욱 완비해졌다.
- 5) 각종 업무의 전면적인 심화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 및 발전시킬 경우, 사업 번영, 산업 발전과 전체 산업의 전파력, 경쟁력,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다.
- 6) 경제사회의 전면적 발전과 물질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가 급성장했으며 이는 문화 소비 촉진,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발전 추진을 위해 아주 큰 가능성을 제공했다.
- 7) 인터넷을 대표로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정보기술이 융합 발전하여 미디어 구도 재구성, 문화산업 혁신을 위해 전대미문의 기회를 가져왔다.

135) 치국이정(治国理政):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함

아울러 중국의 신문출판 방송영상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1) **전통 미디어와 신홍 미디어의 융합 발전 분야에서** 비록 전통 미디어의 신홍 미디어 업무 발전 추이가 급진적이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전통 미디어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임무가 막중하고 아직까지는 ‘플러스’에서 ‘융합’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여론 유도능력과 실제 효과도 향상시켜야 한다.
- 2) **콘텐츠 상품 품질 분야에서**는 수량은 많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작품은 많지만 감화력이 있고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작품이 부족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중의 나날이 성장하는 정신문화 수요와도 격차가 있으므로 명품 작품을 내놓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
- 3) **공공문화서비스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도농 지역의 발전 불균형, 표준화 및 균등화 수준 미달, 낮은 디지털화 커버리지 수준, 장기 효율적 메커니즘 부재 등 문제점이 있으며 전면적 사오강사회 건설 요구와 맞지 않는다.
- 4)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체계적인 장애가 아직 깨끗이 제거되지 않았고 성숙된 시장주체, 개선된 현대기업제도, 완비된 현대시장체계가 아직 구축 중에 있으며 산업 경쟁력이 강하지 않고 규모화, 집약화 수준이 높지 않으며 문화정보 소비와 국민경제에 대한 전인차 역할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 5)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온라인화, 융합화, 스마트화 수준이 높지 않고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술과 차세대 정보기술의 융합 발전 추진, 전 업무, 전 과정, 전 네트워크의 디지털화에서 스마트화로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전환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
- 6) **글로벌 전파능력 구축 분야에서**는 중국 미디어 기관의 전체 실력과 경쟁력이 세계 유명 미디어 기업과 아직도 격차가 있고 세계적인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콘텐츠 상품 생산 능력도 아직 부족하며 해외 전파력과 영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전파 효과도 높여야 하며, 이는 중국 문화자원 대국 이미지와 나날이 높아지는 국제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 7) **문화 및 정보보안 보장 분야에서**는 돌발사태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더 완비시키며 감독관리 기술 수준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 8) **행정관리와 법치(法治) 건설 분야에서**는 법에 의거한 행정 의식과 능력을 한층 더 높여야 하고 법률, 경제, 행정, 과학기술 등을 종합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식과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일부 법률법규는 아직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개혁과 발전 수요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가) 지도사상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당의 18대와 18기 3중, 4중, 5중, 6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집행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저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

표'의 중요한 사상, 과학적 발전관으로 지도하면서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문 정신과 치국이정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관철 집행하며 정치적 의식, 대세 의식, 핵심 의식, 정렬 의식을 굳건히 수립한다. 또한 '5위1체' 총체적 구도의 총괄 추진과 '4개 전면' 전략적 구도의 조율 추진을 중심으로 혁신, 조율, 그린,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심층 집행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선도하는 것을 고수하며 국민중심의 발전 사상과 업무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적 수익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의 상호 일치를 고수하며 총괄 조율, 자원 통합, 업무 취합, 미디어 융합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개혁 혁신, 번영 발전을 심층 추진하여 전환과 업그레이드, 품질과 효율 향상 추진에 주력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여론의 유도 능력과 사업 및 산업 발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려 문화 샤오강 중의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각종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면서 신문출판 방송영상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며 '2개 100년'의 분투 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 보장, 정신적 역량, 도덕적 자양분과 문화조건을 제공한다.

(나) 기본원칙

- 1. 정확한 정치 방향을 고수한다.** 정확한 정치방향은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영혼이자 통솔자이다. 반드시 정치방향을 1순위에 놓는 것을 고수하고 시진핑 핵심의 당 중앙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합해야 하고 정치 의식, 대세 의식, 핵심 의식, 정렬 의식을 굳건히 확립하여 당성 원칙, 마르크스 레닌주의 언론관, 정확한 여론 방향, 긍정적인 홍보 중심을 확실하게 고수하며 '기치를 높이 받들어 방향을 선도하고, 중심 위주로 대세를 위해 서비스하고, 국민과 단결하여 사기를 고무시키고, 사회 기풍을 만들어 사람들을 감동시켜 마음을 결속시키며, 오류를 해명하고 시비를 가리며, 국내외를 연결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직무 사명을 착실하게 실천한다.
- 2. 당의 지도를 고수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미디어는 당과 정부의 홍보의 장이다. 반드시 당의 미디어가 되어야 하고 당이 미디어와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것을 고수하며 정치가의 신문, 간행물 창간, 방송국 설립,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모든 업무는 당성 원칙에 입각해 당의 의지를 구현하고 당의 주장을 반영하며 당 중앙의 권위와 당의 단결을 유지하고 사상, 정치, 행동에서 당 중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당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당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는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 보장이다.
- 3. 국민의 주체 위치를 고수한다.** 국민은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 역량이다. 신문출판 방송영상은 반드시 국민 중심의 업무 방향을 고수하고 국민의 주체 역할을 발휘하여 국민의 근본적 이익을 실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기본 문화 권익을 보장하며 국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발전을 해야 한다.
- 4. 과학적 발전을 고수한다.** 발전은 당연한 것이다. 반드시 스스로 '혁신, 조율, 그린,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실제 상황에 착안해 언론 홍보와 사업, 산업 발전의 새로운 특징을 파악하며, 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더 좋은 품질, 더 큰 효율,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5. **심층 개혁을 고수한다.** 개혁은 강한 성장동력이다.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업무 이념, 내용, 장르, 형식, 방법, 방식, 업종, 체제, 메커니즘 등 전방위적인 개혁 혁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유발하고, 활력소를 강화하며, 잠재력을 방출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창조력, 생산력을 해방 및 육성하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6. **법 의거 행정을 고수한다.** 법치는 개혁 발전의 최강 보루이다. 반드시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을 강화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법치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법률·법규 체계를 한층 더 완비시키며, 법 의거 행정, 법 의거 관리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관리체제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다. 발전 목표와 주요 임무

(가) 발전 목표

5년의 노력을 거쳐 2020년에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이루도록 한다.

1. **여론의 전파력, 유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대폭 제고.** 중국 꿈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더욱 대중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수한 신문출판 방송영상 작품의 창작을 번영 발전시킨다. 신문출판 및 방송 미디어의 주류 여론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고, 전통 미디어와 신형 미디어 간 심층 융합이 큰 진전을 보이면서 새로운 유형의 주류 미디어가 형성되고 전파력, 공신력, 영향력이 있는 신형 미디어그룹을 구축하는 한편, 선진 기술, 다양한 형태, 빠른 전송, 광범위한 커버 범위의 현대적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2. **공공문화 서비스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국가의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 지도 표준(2015-2020년)에서 제시한 서비스 항목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현대적인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기본적인 서비스의 균등화, 표준화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 13차 5개년 기간 말쯤 국민의 종합 열독률은 81.6%를 달성하고, 국민 디지털화 열독률은 70%에 이르며 연간 일인당 도서 열독량은 5.0권, 연간 일인당 전자도서 열독량은 4.0권, 농촌 가구별 서재의 연간 신규 증가 출판물은 60가지 이상, 작품의 자진 등록 수는 278만 건에 이른다. 유선방송 네트워크와 지상파 무선TV는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도시 네트워크는 거의 양방향화를 실현하며 전국적인 유선TV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상호 연결 및 소통이 가능하고 생중계 위성 공공서비스는 유선TV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농촌지역을 커버하며 전국적인 라디오TV 프로그램의 종합 인구 커버율은 평균 99% 이상을 달성한다. 디지털 라디오TV가 모든 가정에 진입가고 응급방송시스템을 구축하며 농촌 영화 상영 서비스, 소수민족 언어 영화 번역 제작 서비스 수준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3. **경제에 대한 전인차 역할 강화.**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체제와 시장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산업의 전체 실력, 종합수익과 시장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여 국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점차 높이며, 문화산업이 국민경제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가시화한다. 13차 5개년 기간 신문출판산업 매출액의 연 평균 증가율은 8%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수익의 연평균 증가율은 7%를 상회한다. 13차 5개년 기간 말쯤 전체 산업의 매출액은 3조

2,000억 위안, 수익은 총 2,300억 위안에 이른다. 디지털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성장이 빨라지면서 13차 5개년 기간 말쯤 디지털 출판 매출액은 9,600억 위안에 이르며, 연평균 증가율은 17%를 상회한다. 신제품 중 전자도서의 수입이 107억 위안, 디지털 신문의 수입이 14억 위안, 디지털 간행물 수입이 37억 위안, 모바일 출판 수입이 2,700억 위안에 이른다. 영화산업은 지속적인 빠른 발전 추이를 유지하고 2020년에 영화 박스오피스가 600억 위안을 돌파하고 중국산 영화 점유율이 55%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도시 영화관 스크린 수는 6만 개, 3D 스크린 수는 5만 개에 이르고 IMAX 영화관이 700개로 늘어났다.

4. ‘스마트 방송’ 전략과 신문출판 디지털화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계획을 전면적으로 추진.

전국 성(省)급 이상의 방송국은 옴니미디어 제작 및 방송 클라우드 플랫폼과 방송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지방시급 이상은 고화질화를 거의 실현하며 현(縣)급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전부 실현하고 고화질 TV와 UHD TV는 한층 더 보급하여 4K UHD TV 시험채널을 방송한다. 유무선, 위성과 인터넷의 옴니미디어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방송 네트워크의 종합 업무 처리능력을 대폭 제고하며, 방송 단말기의 표준화, 스마트화 응용능력을 제고한다. 영화 제작 배급 방영 기술의 신규 공법과 체계를 구축하고 영화의 융합 발전과 산업의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전통 신문출판업이 인원, 이념, 방식, 시장과 서비스 등 더 높은 차원에서 디지털화 전환 및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한다. 그린 인쇄, 디지털인쇄, 수요에 따른 인쇄 발전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인쇄공장 건설을 가속화하며, 배급 유통의 정보화, 스마트화, 표준화, 집약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

5. 국가 문화 안전보장능력 제고.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관리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는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단속’ 업무를 한층 더 추진하고 판권 관리와 업무체제는 한층 더 보완하고 안전방송 관리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기술체제와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방송과 네트워크의 통합 모니터링 감독 관리 구조화 체제와 모니터링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6. 중국의 목소리 전파, 중국 이미지 향상,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효과와 역할 가시화.

당과 국가의 외교 대세를 위해 서비스하는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고 ‘해외진출’의 중점공정과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전파체제와 국제 전파능력 구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다. 세계 일류 수준을 갖춘 2-3개 방송미디어그룹 육성에 주력하고, 뉴스보도의 창작물, 최초 발행물, 사용률, 실행률, 외제 설정 능력과 현지화 전파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며, 중국의 신문출판 방송영상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13차 5개년 기간에 판권 수출의 증가율을 5%로 향상시키고, 13차 5개년 말에 판권 수출 규모는 1만 3,000가지를 돌파한다. 디지털 출판물의 수출 증가율은 17%를 달성하고, 13차 5개년 말에 디지털 출판물의 수출규모는 110억 달러를 달성한다.

(나) 주요 임무

1. 주류 미디어 구축 강화, 여론 유도 능력 제고

당성 원칙을 고수하고 당의 미디어는 당이 장악하는 것을 고수하며 당의 신문, 당의 간행물, 방송 미디어의 지도권과 여론 유도 발언권을 굳건히 파악한다. 또한 기치가 분명하고 진영을 잘 지키며 시종일관 사상, 정치, 행동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당 중앙의 치국이정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의 홍보 해석을 확실하게 수행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 꿈, ‘5위1

체’의 총체적 분포, ‘4개 전면’의 전략적 분포, 신규 발전이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등 주체 홍보와 주제 출판을 착실히 진행하고 당원 간부들이 ‘4개 의식’을 확실하게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간부와 대중들이 중국식 사회주의 길,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정확한 정치방향과 여론방향을 굳건히 파악하고 ‘3개 접근’¹³⁶⁾을 고수하며, ‘주전개(走转改)’¹³⁷⁾를 심화하며 중대한 홍보 보도 일체화 총괄 메커니즘을 완비시키고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상생을 고수한다. 중국 내 홍보와 해외 홍보를 동시에 중요시하고 당 신문, 당 간행물, 방송국 등의 홍보 보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며 주류 미디어의 전파력, 유도력, 영향력, 공신력 향상에 주력한다. 각급 당 신문, 당 간행물, 방송국의 ‘헤드라인’ 구축을 강화하고 당의 주장이 시대의 가장 강한 목소리가 되도록 한다. 뉴스로 방송국을 세우는 것을 고수하고 인터뷰와 편집 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인터뷰 및 편집 절차를 최적화하고 콘텐츠 구축을 강화하며 전문 인터뷰 및 편집 우위와 정보자원 우위를 발휘하고 뉴스보도의 빠른 반응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화, 브랜드화 수준을 높인다. 사고 방향, 운영 메커니즘, 콘텐츠 형식의 혁신 창조를 심층 추진하고 구조 최적화, 품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창작 가치, 독자적 지적재산권과 핵심 경쟁력을 갖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맞춤화, 차별화 전파 추이에 적응하고 신홍 전파 루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웨이보, 위챗, 모바일 APP 등을 종합 활용하며 타깃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론 유도의 새로운 구도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중요한 돌발사태 뉴스보도와 권위 정보 발표를 활성화하고 여론 유도의 시도효(时度效: 시간, 정도, 효과)를 파악한다.

칼럼1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사업	
01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출판 전파 플랫폼공정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및 실천하는 우수한 학술 출판물, 우수한 대중 도서, 우수한 청소년 문학 도서출판을 지원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출판 전파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는 콘텐츠 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다중루트, 멀티미디어 전파를 실현한다.
02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론 연구 및 확립 출판 전파공정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론 연구와 확립 사업의 최신 성과 출판을 지원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론 전파 플랫폼을 구축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론의 출판 전파 루트와 방식을 다양화 및 확대한다.
03 핵심 신문, 간행물의 여론 유도력 구축공정	핵심 신문, 간행물 콘텐츠 구축을 강화하고 신문, 간행물의 주체 홍보에 대해 정책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류 미디어의 중점 칼럼, 프로그램 구축 강화를 지원하며 유명 칼럼, 프로그램과 공식계정을 육성하여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화 전파가 융합된 신형 주류 미디어를 조성한다.
04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도서 음반 및 영상) 판권자원 승계공정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클래식 도서 음반 및 영상의 비공개 버전 판권 자원을 취합하고 우수한 공개 버전 판권 자원을 선별하여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저작권 자원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공익 출판 전파의 판권 자원 무료 사용, 재창작 피드백의 문화 전승 선순환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대중화, 국제화 전파를 추진한다.

2.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양, 콘텐츠 창출과 혁신 능력 향상

136) 3개 접근(三贴近): 실제, 생활, 대중에 접근

137) 주전개(走转改): 기층으로 가고, 기풍을 전환하며, 문풍을 변화함

대중 중심의 창작방향을 고수하고 우수 작품을 창작 및 제작하는 이 중심 분야를 확보하고, 중국 꿈의 주제 홍보, 현대적인 중국의 가치관념 전파, 중화 문화정신 고양 사상성·예술성·감상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우수 작품을 더 많이 출시하도록 노력한다. 정교함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창작 능력 향상에 온 힘을 쏟고 소재, 콘텐츠, 형식, 수법 확장에 노력하며 관념과 방식의 상호 결합, 내용과 형식의 상호 융합, 각종 예술 요소와 기술 요소 간 상호 작용을 추진하여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호소력이 있는 대표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지원 강도를 높이고 우위 역량을 집중시켜 명품 작품을 만들고 문화 승계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며 국가 수준을 구현하는 중요한 명품 공정의 추진 및 실행에 주력한다. 대중의 주제 지위와 현실 생활을 반영하고 대중이 좋아하며 사상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 퀄리티가 양호한 작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고,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을 확대 및 향상시킨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출판기지과 국가학술출판센터를 구축한다. 공익성 프로그램과 공익성 광고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제작 및 방송 비용을 높인다. 방송국, 신문 및 잡지사, 출판사, 네트워크 시청과 네트워크 출판 사이트의 사회적 수익 종합 평가체계와 메커니즘을 완비시키고, 정치 방향, 콘텐츠 품질, 품위와 격조, 사회 영향 등 지표 가중치를 확대하며 시청률, 청취율, 관객 동원율, 클릭률, 순위표, 발행량 등을 단편적으로 강조하는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칼럼2 국가 신문출판 영화 드라마 명품 작품 창작 생산 공정	
01 주제 출판공정	당과 국가의 사업 대세와 긴밀히 결합하여 중요한 주제선택 출판사업을 총괄 진행하며, 당 중앙의 치국이정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중국식 사회주의와 중국 꿈,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가시화하고, 중대한 행사, 회의, 사건, 명절 등 주제를 중심으로 당의 19대, 중국공산당 성립 95주년, 개혁개방 40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 중국인민해방군 성립 90주년 등 국가의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출판공정을 특별 구성하여 실시한다.
02 중화 명품 출판공정	중요한 명품 출판공정: 중국대백과전서(제3판), 중국 역대 회화대계, 사해(제7판) 등 일련의 중요한 출판공정 실시. 중국 문예창작 명품 출판공정: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양, 중화민족의 우수 전통문화 승계, 시대적 문화성과 구현, 국가 문화 이미지를 대표하는 우수한 창작 문예 작품의 출판 전파를 중점적으로 지원. 온라인 문학 명품 출판공정: 우수한 온라인 문학 창작작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제 선택 및 입안, 창작 연구 개발, 출판 전파, 홍보 확대, 판권 개발 등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온라인 문학 명품을 지속적으로 출시. 중화민족 음악 승계 출판공정: 중화민족 전통 음악자원을 발굴 및 정리하여 분류 리스트 작성. 대표적인 음악 우수 작품을 선택하여 출판. 전통 음악의 디지털화 컬렉션 업무를 강화하고 중요한 녹음, 영상 자료의 디지털화 보호를 추진하며, 중화민족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족음악의 혁신적인 출판 전파 방식을 지원. 음성 도서 명품 출판공정: 음성 도서 명품의 창작 생산을 강화하고 높은 예술 수준과 양호한 제작 수준을 갖춘 동시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음성 도서를 출판하며 음성 도서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음성 도서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
03 중화 고서 정리 출판공정	2011-2020년 국가 고서 정리출판 계획을 실시하고 기초 고서, 해외로 소실된 중화 고서, 출토 문헌, 고대 사회 기록문서 정리를 중심으로 중점고서 300가지의 정리 출판을 완성. 근대 이후의 중요한 고서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 출판하며 고서 디지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고서 정리 출판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비하며, 국가 고서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
04 ‘원동력’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출판지원계획 만화 도서, 만화 정기 간행물,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소수민족언어 번역 제작, 소수민족 애니메이션 작품, 온라인 게임 등 우수한 애니메이션 작품 창작을 중점적으로 지원.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출판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동력’ 중국 대학교 애니메이션 출판 인큐베이팅 계획을 실시하며 중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출판, 우수 작품 창작 생산을 촉진하도록 유도하여 우수한 중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의 출판 및 ‘해외 진출’을 추진.
05 국가 학술 출판공정 전문 출판기관에 의뢰하여 국가학술출판센터를 일부 육성하고 국가학술출판기지 3-5개를 구축. 국가 학술출판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학술출판 장려계획을 시행하며 학술출판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학술 출판 품질을 향상.
06 영화 및 드라마 작품 창작·생산 유도 기존의 영화, 드라마,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온라인 창작 시청각 프로그램, 프로그램 혁신, 공익성 광고 등 창작 생산 유도 전문 자금을 토대로 중국 꿈 주제의 선양,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구현, 현시대 중국의 가치관념 승계 및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방송 및 영화 드라마 작품에 대한 창작 생산 지원 수준을 한층 더 향상.
07 소수민족언어 영화 및 드라마 작품 소스 지원 중앙재정에서는 자금을 배정하여 소수민족언어 영화 및 드라마 작품 소스에 대해 지원하며 신장, 티베트를 포함한 소수민족언어 번역 및 제작 자원 부족, 트렌디 부족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여 많은 소수민족 대중들이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드라마를 잘 보고 듣게 하여 방송 및 영화 드라마 발전의 문화성과를 공유.
08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이야기 애니메이션 창작공정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이야기를 근간으로 시리즈 애니메이션 작품을 생산하고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 중국의 우수한 민간 이야기 명품 TV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출판물, 모바일 애니메이션을 출시.
09 중화 문화 TV 전파공정 문화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유도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경험 정리와 홍보 소개를 강화하여 선도 시범으로 열띤 열기 조성.

3. 전체 발전을 심화하여 미디어 융합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도록 추진

심층 융합, 전체 발전을 업계의 생존 발전과 연관되는 전략적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상 인식을 더 심화시키고 자원배치에 더 기울이며 업무 추진에서 더 서두르고 방법 대책에서 더 혁신하여 자아 혁명 정신으로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전통 미디어와 신형 미디어가 콘텐츠, 루트, 플랫폼, 경영, 관리 등 각 분야에서 심층 융합되도록 추진하여 콘텐츠 상품, 기술 응용, 플랫폼 단말기, 인력풀의 공유와 융통을 실현하고 일체화 조직기구, 제작 및 방송 체계와 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프로세스 재건, 플랫폼 재건, 체제 메커니즘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화 전파가 융합된 신형 주류 미디어 조성에 주력하고 막강한 실력과 전파력, 공신력, 영향력을 갖춘 신형 미디어그룹을 구축한다. 제작 생산 과정을 연결하여 제작 프로세스 일체화, 자원 공유 편리화를 추진하고 콘텐츠 상품의 미디어 융합화를 실현한다. 전파 전송 과정을 연결하고 업무 운영, 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 방송 컨트롤 플랫폼을 구축하며, 콘텐츠의 분할화 통합, 포인트화 요구, 최적화 조합을 추진하는 한편, 전파 전송 미디어 융합화를 실현하여 수요 응용의 개성화를 만족시킨다. 내부 관리 과정을 연결하고 운영관리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자원을 일체화 배치한다. 중앙과 성급 미디어

가 앞장서서 먼저 돌파하여 화학반응을 실현하고 융합 일체화의 실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일괄적인 지휘 조율의 미디어 융합센터, 옴니미디어 취재편집 등 ‘중앙 주방’ 구축을 지원하고 뉴스 취재 편집 생산 프로세스를 재편성하며 옴니미디어 상품을 생산하여 콘텐츠 공급, 상품 생산, 정보 전파와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국가 출판 융합발전 투자유도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민간자본이 전통 출판과 신흥出版的의 융합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견인한다. 자본을 연결 고리로 하는 미디어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하여 전통 신문출판 및 방송 미디어 홀딩스 혹은 지분 참여 인터넷 기업과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칼럼3 전통 출판과 신흥 출판 융합 발전 사업	
01 신문출판업 핵심 기술 개발응용공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콘텐츠 구현 방식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딥러닝, 뇌 지능화를 토대로 하는 로봇 글쓰기, 기계번역, 기계지능의 주제 선택 및 기획, 지능형 콘텐츠 전송의 핵심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지식 구성, 지식 관리 및 지식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디지털 인쇄, 수요에 따른 인쇄 장비 제조와 재료 등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상품 공급사슬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디지털 판권 관리와 보호능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인쇄 전자, 나노 인쇄 등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인쇄, 발행 물류, 데이터 가공, 디지털 교육,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를 포함한 ‘로봇+출판’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응용한다. 인터넷 기술 응용을 혁신한다.
02 국가 디지털 출판 혁신 활성화공정	디지털 출판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디지털 출판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가 디지털 복합 출판공정, 디지털 판권보호 기술 연구개발공정, 중화폰트공정 등 신문출판의 중요한 기술사업 성과를 충분히 이용하여 기술 응용을 추진한다. <국제표준 링크 식별자(ISLI)>, 전자도서 표준 등 디지털출판 분야 표준의 응용 확대를 가속화한다.
03 국가 지식자원 데이터베이스공정	국가 지식자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관련 표준, 규범을 연구 제정하여 국가지식서비스플랫폼 및 데이터, 운영, 기술 지원 센터를 구축한다. 신문출판 기업이 전문분야의 지식자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정보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지식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04 국가 출판발행 빅데이터사업	신문출판 행정관리기관 및 신문출판업체의 기초업무 데이터를 취합하여 업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판상품 정보교환 플랫폼과 신문출판 빅데이터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계 기초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실현하고 신문출판업체의 빅데이터 응용을 지원한다.
05 디지털 출판 산업화 응용 서비스 시범공정	교육출판 분야에서는 출판업체의 디지털교육 콘텐츠자원 상품, 커리큘럼체계와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를 위해 서비스하는 전체 솔루션을 출시한다. 전문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업체의 동 종류 자원통합을 지원하고 전문 콘텐츠 지식자원 상품과 수직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대중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업체의 산업화 확장모델 혁신을 지원한다. 전 국민 열독 및 정보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디지털 출판모델의 혁신을 진행한다.
06 출판 융합 발전 시범유도공정	전통 신문출판업체와 뉴미디어 기업, 루트 운영기업, 기술기업의 협력을 지원한다. 출판 융합발전 과제연구 전용 펀드와 출판 융합발전 사업 유도펀드를 설립한다. 2020년에는 출판 융합발전 시범업체 100곳을 장려 및 지원하고 국가급 출판 융합 발전연구 중점실험실을 설립한다.
칼럼4 방송 전통 미디어와 신흥 미디어의 융합발전공정	
01 중국 라디오방송 클라우드플랫폼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을 주체로 라디오 방송업계의 클라우드 취재편집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국 라디오 방송 Radio.cn’ 을 기반으로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라디오특화 뉴스, 오디오와 옴니미디어 클라이언트 제품, 소셜 미디어 매트릭스를 만들어 모바일 인터넷 고객을 대상으로 뉴스 정보, 오디오 미디어와 소셜 등 뉴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02 신형 멀티미디어 융합플랫폼——‘중화 클라우드’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을 주체로 ‘중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기술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화’ 시리즈 브랜드 미디어 상품을 만들고 글로벌 고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능 콘텐츠 취합, 사용자 유도를 실현하여 글로벌 전파와 국가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 분위기를 제공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03 CCTV 뉴미디어공정 CCTV를 주체로 ‘TV+뉴미디어’ 모델을 고수하고 뉴미디어 통합 방송 플랫폼, 네트워크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동영상 전송 플랫폼 등을 비롯한 중국 TV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차세대 소셜 TV 플랫폼을 구축하여 TV프로그램, 생방송 프로그램의 TV 응용을 위해 획일적인 사용자 및 소셜 관리, 시청 관련 서비스와 행위 분석을 제공한다. 생방송 차이나를 구축하여 커버 범위가 넓고, 콘텐츠가 다양하며, 효과가 뚜렷한 뉴미디어 글로벌 전파 플랫폼을 구축한다. 뉴미디어연구원을 설립하여 네트워크 동영상산업의 기술 ‘실리콘밸리’와 뉴미디어 상품 ‘인큐베이터’를 구축한다.
04 방송 미디어 융합전달 네트워크 핵심 기술 연구 및 응용 시범 방송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융합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융합 미디어 발전을 지원하는 차세대 방송의 유선, 무선, 위성 융합망 핵심기술을 연구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성급 이상 규모화 시험망을 구축하여 ‘TV, 광대역, 통신, 사물인터넷’ 등 서비스를 포함한 융합 업무를 제공하고 방송의 유선, 무선, 위성 3가지가 상이한 전송 네트워크의 기술체제, 운영체제, 관리체제에서의 융합과 협업을 촉진한다.
05 라디오TV 방송의 옴니미디어 제작 및 방송과 서비스 클라우드 핵심 기술 연구 및 응용 시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융합의 콘텐츠 제작 및 방송 플랫폼과 통합방송 컨트롤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연구하고, 방송국 네트워크 연동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와 구조를 스마트하게 재구성하며, 스마트TV용 운영체제(TVOS), 다운로드형 수신제한시스템(DCAS),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등 스마트 단말기 핵심 기술을 통합한다.

4. 현대 신문출판 방송영상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공공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효과 증대 촉진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중공중앙관공청, 국무원관공청의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체계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 통지 배부〉(중관발[2015]2호), 〈13차 5개년 기간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대중의 기본 문화수요에 따라 TV 시청, 라디오 청취, 책과 신문 읽기, 영화 보기 등 대중의 기본적인 문화권익을 중심으로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인프라 표준화 구축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리스트 항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공공상품 서비스 공급능력과 관리운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여 대중의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문화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킨다.

1) 공공서비스 효능을 전면적으로 높인다.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중심의 하급기관으로의 이양, 공동 구축 및 공유를 고수하고 발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원 통합을 강화하며 관리체제를 혁신하고 운영 메커니즘을 완비시켜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총괄 추진한다. 정부 주

도와 시장자원의 충분한 이용, 인프라 구축과 운영 유지, 네트워크와 다양한 콘텐츠 개선, 전통방식과 신흥방식을 모두 중요시하는 것을 고수하며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화와 균등화를 추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을 토대로 시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대중의 기본 문화 수요와 다양한 문화 수요를 만족시킨다. 기층 농촌의 신문출판 방송영상 자원 공유, 루트 상호 연결, 총괄 배분을 적극적으로 연구 추진하며 공공 서비스 상품의 공동 제작, ‘패키지’ 전파, 종합 서비스의 유효 방식을 모색한다. 정부 구매, 사업 보조금 지원, 상금으로 보조금 대체, 정기 지원, 대출 이자 할인, 보험료 지원 등 방식을 채택하여 사회단체와 기관이 신문출판 방송영상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정책에 부합하는 신문출판 방송영상 공공서비스 사업이 정부와 민간자본 합작(PPP)모델을 사용하여 사업 구축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며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와 제공 방식의 다원화를 촉진한다. 전 국민 열독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주도, 사회참여의 전 국민 열독, 농촌 영화상영 등 공공 서비스 공익자금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착안하여 농가책방공정 자원의 총괄 관리와 상호 연결을 강화하고, 출판물 보충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완비시킨다. 성, 시, 현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공공 서비스 운영 기관과 인력풀 구축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방송 감독관리 플랫폼과 서비스 영업망을 구축하여 ‘현급 및 이상은 관리 기관이 있고, 도시와 농촌에는 영업망이 지원하며, 농촌에는 전담 책임자가 있는’ 공공 서비스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유지체계를 점차 형성한다.

2) 혜민(惠民: 국민이 혜택받음)공정 추진에 주력한다.

전 국민 열독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독서풍(书香) 중국’ 시리즈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전 국민 열독업무조직 조율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고 <전 국민 열독 촉진조례> 출범에 박차를 가한다. 전 국민 열독이 가정, 지역사회, 학교, 농촌, 기업, 기관에서 펼쳐지도록 추진한다. 디지털 열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열독센터, 디지털 농가책방, 공공 디지털 열독 단말기 등 시설을 통합 구축하고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국가급 전 국민 열독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 국민 열독 온오프라인 협업 추진을 실현한다. 취학전 어린이 기초 열독 촉진사업을 전개하여 어린이 열독용 책과 신문의 발행계획, 시민 열독 발행계획을 실시한다. 복합형 특화 오프라인 서점을 설립하여 서점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대여 열독, 구매, 소장’ 캠페인¹³⁸⁾을 벌이는 것을 지원한다. 중국 전역의 모든 도시와 농촌에 오프라인 서점 영업점, 출판물 판매 및 구매 대행점이 전부 깔리도록 박차를 가한다. 도시와 농촌 신문 게시판(스크린) 공정에 박차를 가한다. 농촌으로 책 보내기를 계속 추진하고 ‘3농(농업, 농촌, 농민)’ 출판물의 출판 발행 업무를 추진하며 당 신문, 당 간행물, ‘3농’ 신문과 간행물을 농촌에 무료 증정하는 것을 장려한다. 오프라인 서점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 조치를 제정 및 시행하고 오프라인 서점이 전 국민 열독 등 공공 문화서비스에서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도시와 농촌 오프라인 서점의 정신 스폿 시범확대사업을 시행한다. 국가 전자출판기지를 조성하여 전자출판 공정을 실시한다. <국무원 판공청의 방송을 모든 마을로의 송출에서 모든 가구로의 송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업무 추진 가속화에 관한 통지>(국판발[2016]20호)를 관철 집행하고 모든 마을로의 송출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 과학적으로 무선, 유선, 위성 3가지 기술방식을 총괄하면서 지역별·가정별로 현지 특징과 사용자 수요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디지털 방송 가입 및 수신을 추진하고 디지털 방송이 모든 가정으로 송출되는 것을 실현한다. 중앙과 지방의 방송 프로그램 무선 디지털화 커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상파 무선 아날로그 TV가 디지털화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138) ‘대여 열독, 구매, 소장’ 캠페인이란 도서관과 서점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독자가 서점에서 책을 선택하면 도서관이 서점에 도서 비용을 지불하고 소장과 대여 열독 수속을 밟아 열독 후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이다.

지상과 무선 디지털 오디오 방송(CDR)의 테스트와 응용 확대를 가속화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 무선 디지털 방송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송 무선 송신소, 방송 모니터링 기지국, 방송 송출기관, 관리감독기관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중국 농촌의 목소리 라디오 프로그램 커버와 중국 교통방송의 발전을 강화한다. 방송의 돌발 공공사태에 대응하는 독특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고 국가와 지방의 비상 방송 구축사업 실행에 박차를 가하며 ‘통일 연동, 안전 신뢰, 신속성 고효율, 평화와 전쟁 시기의 결합’ 원칙에 따라 현존 방송 자원을 총괄 이용하고 각급 비상 방송 제작 송출과 조정 컨트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전송 커버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및 개조하고 비상 방송 단말기를 배치하며 중앙, 성, 시, 현 등 4급 연동, 정보 공유, 등급별 책임, 반응 민첩성, 안전성 및 신뢰성 전국 비상 방송체계를 형성하여 재해 정보 방송과 기층 정무정보 발표, 정책 홍보 설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행기, 열차, 선박, 고속도로 등의 비상 방송 시스템 구축과 커버를 강화한다. 농촌 영화 상영시 농촌당 한 개월에 한 번씩 상영하도록 하고, 민간자본이 농촌의 영화 고정 상영 장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유동 상영이 고정 상영, 야외 상영이 실내 상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아울러 영화 공급을 한층 더 다양화시킨다. 현급 도시 디지털 영화관 조성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조건이 되는 농촌으로 확대한다.

3) 노소변공(老少边穷)¹³⁹⁾ 지역에 대한 지원능력을 제고한다.

당 중앙 국무원의 변방지역 소수민족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안정적·장기적 빈곤 탈출 지원 등 각종 사업 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인프라 구축, 콘텐츠 상품 공급, 특별 정책 지원 등 분야에서 한층 더 지원 강도를 높이고 자아 발전능력을 향상시킨다.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소수민족 언어, 문자 작품의 제작, 번역, 출판과 전파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시키며 콘텐츠 퀄리티 수준을 높여 변방지역과 소수민족지역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킨다. 소수민족 신문출판 동풍(东风) 공정을 계속 실시하고 시행 범위를 확대하며 시행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국가 민족문화출판기지 조성을 추진한다. 열독 확대 자원봉사 서비스를 추진하고 각종 열독 대중단체를 발전시킨다. 어려움이 있는 특수 계층의 기본 문화 권익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빈곤지역의 공공열독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특수 계층의 기본 열독 권익을 보장한다. 티베트, 신장 등 지역이 광범위한 변방 민족지역을 지원하고 지방의 성급과 지방시급 방송국이 개설한 소수민족 언어방송 프로그램 위성 생중계를 통해 전송하면서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커버하도록 한다. 변방 소수민족지역의 방송 무선 송신소 인프라 구축, 비상 방송 구축, 기층 방송 송출기관의 서비스 능력 구축, 방송 및 영화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등 분야에 대해 더 지원한다. 빈곤지역 현급 방송 송출기관의 제작 및 방송 능력 구축을 강화하고 현지 방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완비시키며 기층 방송정보 서비스능력을 제고한다. 광시, 윈난, 지린, 랴오닝 등 변경지역의 방송 커버를 강화한다. ‘빈곤지역 백현만촌(百县万村) 종합 문화 서비스센터 시범 사업’과 ‘빈곤지역 민족자치현, 변경 현, 촌의 종합 문화서비스센터 커버 사업’ 시행에 협조하면서 방송 기자재 세팅 업무를 진행한다.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애국주의 영화 상영을 강화하고 도시 저소득층 주민 및 도시 이주 노동자 등 특수 계층의 영화 관람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

칼럼5 신문출판 방송영상 중대 공공서비스사업

01. 전 국민 열독공정(독서장려공정)

139) 노소변공(老少边穷): 공산당 옛 혁명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 빈곤지역

140) ‘당신이 책을 보고, 내가 계산하다’ 캠페인은 전 국민의 독서 보급을 위해 버스, 지하철, 공원, 영화관 등 각종 공

‘독서풍(书香) 중국’ 시리즈 캠페인을 개최하여 전 국민 열독 캠페인 브랜드를 육성 및 견고히 한다. 청소년 열독체험센터, 지역사회 열독센터, 기관 및 기업의 열독센터, 공공 도서관급처와 농가 디지털책방, 공공디지털 독서 단말기 등 전 국민 독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수한 출판물 추천 및 ‘중국의 좋은 책’ 추천 플랫폼을 조성한다. ‘어린이 신문(간행물) 열독 시즌’ 캠페인을 계속 추진하여 아동 열독 간행물, 시민 독서물 발행 계획을 점차적으로 실행한다. 학년별 독서 체계와 독서 능력 테스트 체계를 구축한다. 전 국민 열독 인터넷 홍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열독을 보급한다. 독서풍(书香) 사회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각 영역에 ‘당신이 책을 보고, 내가 계산하다’¹⁴⁰⁾ 캠페인을 추진한다.

홍색문화(红色文化)¹⁴¹⁾ 전과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홍색문화 우수 출판물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전국 청소년에게 우수한 중국공산당사와 군 역사 등의 홍색문화 출판물을 추천하며 홍색문화 우수 출판물을 학교 수업, 가정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

02. 소수민족 신문출판 동평(东风) 공정

민족문화 출판의 번역과 인쇄·배급 능력을 강화한다. 소수민족 자치구와 자치주의 신문 출판 인프라 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기술 장비 수준을 향상시킨다. 민족 문화의 디지털 출판 촉진공정을 실행하여 민족문화 디지털출판 상품의 공공전과서비스 플랫폼과 소수민족언어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소수민족지역의 기층 대중 출판물 증정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판물 시장의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03. 농가 디지털책방공정

위성, 인터넷, 유선 등의 전파 방식을 적극 이용해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농가 디지털책방을 설립한다. 극빈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은 위성 농가 디지털책방 건설을 추진하고 디지털 시청 위성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여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한다.

04. 점자 출판공정

맹인 독서 보급운동을 실행하여 맹인들에게 책을 들려주는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맹인 독서 출판공정을 추진하며 맹인용 디지털출판업계 표준을 제정하고 맹인용 디지털출판 가공 플랫폼과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05. 공공 전자신문 게시판(스크린) 건설공정

도시 주요거리, 공공장소, 지역사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자신문 게시판(스크린, 가판대) 등 종합 문화서비스 스마트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신문화 상품 서비스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정부의 민생 프로젝트 편입을 추진한다.

06. 오프라인 서점 건설 지원공정

오프라인 서점을 기층 홍보 사상문화 업무 심사평가체계에 편입시켜 오프라인 서점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도시의 오프라인 서점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혁명근거지, 오래되고 낡은 지역, 민속지역, 관광지역에 특화된 서점 구축을 권장한다. 전문대 포함 대학 및 초중학교 범위 내에 교내 서점 설립을 계획한다. 오프라인 서점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가속화하고 오프라인 서점과 영화관의 융합발전을 권장해 독서를 테마로 하는 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제창하며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방식을 혁신하여 우수한 오프라인 서점이 도시의 랜드마크와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07. 중국출판박물관 건설사업

체계적으로 문화자원과 문물을 수집, 소장, 보호, 연구, 전시 출판하고 소장, 전시, 전파, 체험, 학술 연구 등 공공문화 서비스를 일체화한 국가급 박물관을 만들어 국가 출판문화 전략적 리저브 베이스 및 국가출판문화회귀센터를 구축한다.

08. 라디오TV 프로그램 무선 디지털화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표준에 의해 현존 무선 송신소를 충분히 이용하여 디지털 라디오TV 송신기를 늘리고 프로그램 소스, 안테나 피더선 등의 보조 시스템을 갱신 및 개조하며, 대형 출력과 중형 출력 무선 디지털 라디오TV망을 구축한다. 또한 기술수요에 따라 현존하는 향진(鄉鎮)급 송신소에 저출력 디지털 라디오TV 송출시스템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15개의 TV 프로그램과 15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무선 디지털화를 실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무선 라디오TV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09. 라디오TV의 보급화(户户通)

‘선진적인 기술, 안전하고 믿음직한, 경제적인, 장기적 효과 보장’을 원칙으로 보충 커버와 보안 백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 각 가정의 실정에 맞춰 과학적으로 무선, 유선, 위성 3가지 방식을 총괄하여 해당 지역 특징과 사용자 수요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 도시와 가깝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은 유선 광케이블 인터넷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선 TV가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역은 자발적으로 위성 방송, 지상파 디지털 TV 혹은 위성 생방송+지상파 디지털 TV 등의 방식을 선택한다. 디지털 라디오 TV 수신을 추진하여 2020년 말에는 모든 가정이 디지털 라디오TV의 보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10. 라디오TV 무선송신소 인프라 구축 2기 공사

12차 5개년 기간에 이미 실시한 고산송신소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13차 5개년 기간에 2차 공정을 실시하여 여건이 낮은 중앙방송TV프로그램 중계방송의 무선송신소 인프라 건설을 계속 진행하며 기계실, 도로, 담벽, 배전, 배수 등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조하여 방송과 업무 여건을 개선한다.

11. 국가 응급 라디오 건설

국가응급라디오센터 기술 업무용 건물 건설, 국가 응급 라디오 정보 제작 방송 플랫폼 및 국가 응급 라디오 조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중단과 주파수 커버 네트워크, 위성 생방송 커버 네트워크 등 라디오TV 커버 네트워크에 라디오 응급 장비와 기능 등을 증가한다.

12. 지방 응급 라디오 건설

현존하는 라디오TV 인프라와 전송 수단을 이용하여 성, 시, 현의 3급의 응급 라디오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단과 주파수 커버 네트워크, 모바일 멀티미디어 라디오TV 전송 네트워크, 지상파 디지털 TV 커버 네트워크, 유선 디지털 TV 커버 네트워크, 디지털 오디오 방송 커버 네트워크 등 라디오TV 커버 네트워크에 라디오 응급 장비와 기능 등을 증가하여 응급 라디오 확성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라디오 단말기를 설치하며 행정 촌락의 응급 라디오 시스템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응급 라디오를 실현한다.

13. 현금 라디오TV 방송기관 서비스능력 육성

라디오TV 공장 관련 건설 표준에 따라 현금 라디오TV 방송기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취재 편집 장비 사양을 강화하며 중서부지역, 특히 빈곤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라디오TV의 공식성 프로그램 제작 방송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층 대중들에게 현지 라디오TV 공공 정보와 문화 오락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과학기술 혁신 강화, 현대적 전파체계 구축

(1) 라디오 방송TV 스마트화 발전과 신문출판 디지털화 전환 업그레이드

공서비스시설 운영기관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독자가 일정 수의 도서를 읽은 후 일부 공공서비스 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41) 홍색문화(红色文化):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혁명문화

라디오TV 스마트화 발전에 착안하여 성(省)급, 지시(地市)급 라디오TV 방송국 HD 제작 방송 능력 형성을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4K UHD TV 시범채널을 개설하여 고화질과 4K UHD TV 퓨전 방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융합 미디어 제작 방송 클라우드 플랫폼과 융합 미디어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국 유선 TV 상호 연결 플랫폼 구축, 모바일 멀티미디어 대화형 라디오TV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여 유무선 위성 전송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과 스마트 협동을 추진하여 차세대 라디오TV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한다. 광대역, 융합, 안전, 유비쿼터스의 차세대 라디오TV 정보화 인프라 및 현대 전파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에 전국 성급 이상의 라디오TV 방송국은 ‘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기본적으로 완료할 예정이고, 지방시급 이상의 라디오TV는 고화질 방송을 실현할 예정이며, 현급 라디오TV는 디지털화와 인터넷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신문출판 디지털화 전환 업그레이드에 착안하여 출판업체의 디지털화 개조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디지털화 관리, 생산, 전파, 서비스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디지털 인쇄, 스마트 인쇄소 발전을 추진한다.

(2) 영화 과학기술 혁신 추진 심화

첨단기술 영화의 연구개발, 표준 제정과 보급 응용을 강화하여 영화 생산 제작, 편집 저장, 배급 상영과 시장 관리 등 많은 시스템 단계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영화의 전 업무, 전 과정의 총괄적인 정보화 관리를 추진하여 상호 연계성이 있고 관리 통제, 안전성 신뢰성, 자원공유 가능한 현대적 디지털 영화 배급 상영 체계와 산업화 발전의 디지털 영화 정보화 서비스 체계를 형성한다. IMAX영화, 3D영화, 고화질/고프레임 영화, 다이내믹 영화, 아트모스 음향과 신형 레이저 광원 영화 상영을 적극 발전시킨다.

(3) 지적재산권, 기초·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과 애플리케이션 보급 추진

자주적 혁신을 강화하고 대화형의 융합전송 커버 네트워크, 스마트 미디어 게이트웨이, 모바일 멀티미디어 등 핵심 기술과 표준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국가급 출판 융합발전 연구 중점실험실을 건설하여 출판 융합발전 중대프로젝트의 난관을 해결한다. 신문출판 과학기술과 표준의 중점실험실을 지도 및 지원하여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기술의 난제를 해결하며 신기술 응용 연구를 추진하여 기술 인큐베이팅을 촉진한다. 스마트TV 운영 체제(TVOS)의 유선, 무선, 위성 인터넷 등의 라디오TV 단말기에서의 응용을 추진하여 셋톱박스, 일체형, 미디어 게이트웨이와 스마트 단말기 등 라디오TV 단말기의 표준화,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라디오TV와 인터넷을 융합한 ‘라디오TV+’ 생태를 형성하여 라디오TV 스마트단말기를 스마트홈, 스마트커뮤니티와 스마트시티의 중요 기반으로 추진한다. 신문출판과 과학기술 융합 기술 연구개발 및 결과 응용을 가속화하여 신문출판 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판권 보호기술 응용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친환경 인쇄를 촉진하고 친환경 인쇄체계를 보완하여 인쇄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ISLI¹⁴²⁾ 국가표준의 응용보급업무를 실시하여 중국 출판물 온라인 정보교환(CNONIX), 전자 서적 콘텐츠, 지식 서비스, 친환경 인쇄 등 표준의 응용보급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사물인터넷, 무선 주파수 인식기술(RFID)이 출판물 생산, 유통, 판매 등 단계에서의 응용방안을 연구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성도가 출판 영역에서의 응용 방안을 강화한다. 웨이보(微博), 위챗(微信), 클라이언트, 오디오북 등 인터넷 출판의 새로운 형태를 발

142) ISLI: <국가표준링크식별자(International Standard Link Identifier, ISLI)> 국제표준, <중국표준링크식별자(ISLI)> 국가표준

전시케 시범업체, 시범사업, 시범기지(단지)를 수립한다.

칼럼6 방송영상 디지털화 강화공정	
01. 광대역 라디오TV전략	차세대 라디오TV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여 인터넷의 혁신성과와 라디오 영상의 심도 있는 융합을 통해 스마트 융합 단말기와 고화질, 초고화질, 대화형 TV, TV도서관 등의 새로운 경영 방법을 개발한다. ‘TV+음성메시지+인터넷+스마트홈+ 스마트커뮤니티+ 스마트시티’ 등의 다양한 종합업무를 발전시켜 라디오영상 기술, 콘텐츠, 업무, 형태, 기능 등 다방면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02. 위성 생방송 공공서비스 플랫폼 디지털화 지원능력 강화	위성 생방송 타지 통합 방송 플랫폼을 구축한다. 위성 생방송 앞단 통합 방송 플랫폼, 암호 인증 시스템, 사용자 관리 시스템과 위성 생방송 콜센터 등을 확장 개조한다. 업무 자원 공유 시스템, 응급 라디오방송 시스템, 대화형 업무 시스템, 사용자 시청행위 통계분석 시스템, 정보 보안 시스템과 공공서비스 통합 포털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03. 전국 도시 영화관 네트워크화 정보화 체계 구축	총괄 기획, 합리적인 구도, 기업 경영, 자원 공유, 정부 보조, 사업 관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급 영화 배급 상영 정보화 서비스 관리 플랫폼과 전국 도시 영화관을 모두 관리하는 영화관 관리 시스템, 컴퓨터 티켓팅 시스템, 영화 암호 키 분배 관리 시스템, 영화관 디지털 복제 위성 배포 전송 시스템, 영화관 네트워크 운영 관리 센터를 구축한다.
04. 영화의 첨단기술 응용기지 구축	차이나필름그룹의 규모, 브랜드, 기술과 자산의 우위에 따라 차이나필름 디지털기지 1차 공사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영화의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강화하여 영상 세트장 촬영 기능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기지의 기능과 배합시켜 특징적이고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새로운 서비스 이념의 영화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영화의 과학기술화, 현대화 제작 능력과 공업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화 문화 소프트파워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국 제조’ 브랜드를 공고히 한다.

6.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확장 및 강화를 통해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 향상

(1) 산업 발전 주체 적극 양성

등급과 지역 제한을 타파하고 도서, 간행물, 라디오, 영화, TV 자원의 취합, 산업 융합을 가속화한다. 미디어 기업의 지역 초월, 업계 초월 소유제의 합병 구조조정을 권장하고 본업이 뛰어나고 창의적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신행 핵심 미디어회사를 육성한다. 내실화 발전 과정의 ‘전문화, 정교화, 특징화, 창의화’ 현대 미디어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중국 국유 자본금 주입방식을 통해 신문출판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모델을 탐색하여 국가급 핵심 출판 미디어 기업을 육성한다.

중국 중앙선전부, 재정부, 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전국 유선TV 네트워크 통합발전 추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구체화하고 전국 유선TV 네트워크 통합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상호연계 플랫폼 구축과 전국적 업무를 협동 추진하여 ‘13차 5개년 발전계획’ 말에 전국 유선 네트워크 통합을 기본상 완성하고 전국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국 ‘확일적인 네트워크(一张网)’를 실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은 자본시장 상장 용자, 리파이낸스와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금융과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융합 발전

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술·정보·자금 우위를 발휘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에 이색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업계의 콘텐츠분야 핵심적 우위를 발휘하여 도서, 신문, 간행물 산업을 공고히 하고 영화, 드라마,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TV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微电影) 산업을 발전시킨다. 뉴미디어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디지털음악, 디지털교육, 인터넷문학, 애니메이션 게임, 고화질 TV, 모바일 멀티미디어 라디오TV, 모바일 TV, 디지털 라디오, VOD다시보기, TV 영화관, TV 도서관, 광대역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도시 등의 신흥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무를 발전시킨다.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3망융합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 업그레이드, 업무 독창성 및 전략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라디오TV 네트워크를 오디오와 비디오 서비스를 위주로 다양한 정보 서비스와 관리 통제, 안전 신뢰가 가능한 라디오TV의 모든 기능과 업무를 제공하는 종합 정보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네트워크 종합 가치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인쇄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인쇄 산업의 친환경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융합화 발전을 추진하고 친환경 인쇄 품질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기존 인쇄의 디지털 네트워크화 발전을 추진하여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의 융합을 강화한다. 스마트 인쇄소 건설과 나노미터 인쇄 등 각종 신소재와 신기술의 응용 개발을 지원하여 인쇄업의 융합 발전을 권장하고 국가 인쇄 복제 시범 기업을 설립한다.

(2) 산업 구조 최적화, 산업 구조조정

‘일대일로’ 건설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의 공동 건설, 창장(长江) 경제벨트 건설 등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기지(단지)와 이색 마을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의 시범유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CD 복제업 생산능력 구조를 조정하여 대용량 광스토리지 기술 응용연구를 추진하여 산업 자원 통합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발전과 전면적인 구조조정 연동성이 강한 중대한 공정을 실시하여 산업 발전 효과가 뚜렷한 중대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의 빠르고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정책을 출범한다. 이로써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국민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한다.

칼럼7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발전 프로젝트

01.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프로젝트 시범공정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프로젝트 시범 시행 업무를 추진하여 매년 새로운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발전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 시범 사업, 확장 사업의 지원 루트를 확정한다. 재정 특별 자금, 기금 등 각급 각종 자금의 인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수한 프로젝트 실행을 권장 및 지원한다. 프로젝트 혁신 협력을 추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추천 활동을 진행한다.

02. 국가 음악산업 촉진공정

현대 음악산업 체계 구축, 대형 전문 음악 플랫폼 구축, 음악업계 표준화 건설, 음악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 음악산업기지 구축을 강화한다. 음악 산업 인재양성계획을 실행한다. 음악 작품 창작과 출판을 지원한다. 우수한 음악기업 상장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음악 기업을 육성한다. 중국 음악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03. 친환경 인쇄 보급공정

친환경적인 인쇄 소비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인쇄 기업의 친환경 인쇄를 장려하여 친환경 인쇄 산업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친환경 인쇄상품 범위와 친환경 인쇄시장을 확대하여 친환경 인쇄 표준을 보완한다. 친환경 인쇄 품질 감독 검사 능력을 향상하여 친환경 인쇄 품질 검사 실험실 설립을 가속화한다. 친환경 인쇄 생산 능력을 인쇄업 비중에서 상향 시킨다. 주상삼각주(珠三角), 창장 삼각주와 징진지 등의 친환경 인쇄 복제 산업 벨트 건설을 계속 진행하고 동북 인쇄 산업 진흥 계획과 중서부 인쇄 산업 개발 및 급부상 공정을 실행한다.

04. 산업 기지 건설공정

방송영상 산업기지, 출판 창조 기지, 디지털 출판 기지, 인쇄 산업 기지, 음악 산업 기지, 판권 혁신 기지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온전한 콘텐츠의 창조, 가공, 저장, 복제, 전파, 소비, 물류 산업 사슬을 형성하여 업계 자원을 집결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육성하여 규모효과를 형성, 기지(단지) 발전 방식의 변화, 기지(단지) 관리의 규범화를 통해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 및 보완한다. 국가 신문출판 방송영상 미디어 융합 발전 기지를 설립한다. 독서풍(书香) 마을, 영상 마을, 음악 마을, 애니메이션 마을, 게임 마을, IP 마을 등의 신문 출판 영상 특징의 문화 마을 설립을 장려 및 추진한다.

05. 라디오TV 인터넷 자원 통합

중국 라디오TV 인터넷 유한공사를 주체로 전국 유선 TV 인터넷 통합과 스마트화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여 중국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실현하여 상호 연계(互联互通)성이 있고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한 전국적인 디지털화 문화 전파 루트를 구축하여 삼망융합을 추진한다.

06. 영상 강국 건설

영화와 TV 제작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디지털 영화관과 영상 기지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고 드라마,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TV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산업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고 시장 경쟁력과 영향력이 있는 영상 미디어 그룹을 육성한다.

7. 현대 신문출판 방송영상 시장 체계 구축 가속화

다차원적 신문출판 방송영상 상품과 요소 시장을 설립하여 도서 간행물, 디지털 출판, 영화와 드라마 등의 상품 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재산권, 판권, 기술, 인력 등의 요소 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 요소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하여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과 우승열패 형태를 권장한다. 애프터 상품, 파생 상품 시장을 적극 확장시켜 산업 사슬을 연장하고 산업의 순환과 종합적 가치 증가를 촉진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투융자 시장을 혁신하고 금융자본, 민간자본과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자원의 결합을 한층 더 추진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발전의 다양화, 다원화적 투융자 체계를 구축하고 신문 출판(판권) 산업 투자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의 주식투자기금 혹은 회사 설립을 권장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체의 재무회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 설립을 권장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 상장 자원 저장소를 구축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이 전국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시스템과 지역성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지분융자를 진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중형 기업이 단기간 금융채권, 중기채,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 채권금융상품을 통해 금융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높은 성장성을 갖춘 중소형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이 집합채권, 지역 집합채권, 산업 집합채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경로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모펀드, 창업투자펀드 등 다양한 투자기관이 정책 허가 범위 내에서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유통시장을 빠르게 발전시킨다. 대중문화 소비, 정보 소비 확장에 중점을 두고 체인 경영, 상영관 체인 등 현대적 유통 방식을 발전시킨다. 상영관 체인의 특징화된 경영과 차별화된 경쟁을 적극 유도하여 상영관 체인의

규모화, 집약화 발전과 도시 디지털 복합 상영관 건설을 촉진한다. 출판 발행 자원을 집결시킨 인터넷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터넷서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발행 유통의 정보화, 스마트화, 표준화, 집약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구도, 선진적인 기술,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현대 출판 물류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신문출판 방송영상 전시회를 주최하여 새로운 소비 성장 포인트를 육성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이 클라우드 크리에이션(众创), 클라우드 소싱(众包), 클라우드 서포트(众扶), 클라우드 펀딩(众筹) 등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원플랫폼을 이용해 빠르게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각종 출판 산업기지(단지)와 인터넷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권장해 ‘인터넷+’에 기반한 전문적인 공간 클라우드 크리에이션을 추진한다. 개방형 플랫폼이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지식 콘텐츠의 혁신, 업데이트 및 통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중대형 출판기업이 생산 협력, 플랫폼 개방, 자원 공유, 표준화 개설행 등의 방식을 통해 중소형 출판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클라우드 서포트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출판, 인쇄, 발행 등 창조 프로젝트가 법에 의해 실물 클라우드 펀딩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인터넷 문화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순응하여 더 많은 인터넷 체험과 소비에 적합한 신문출판 방송영상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아 수요 업그레이드와 산업 업그레이드 공동 발전구도를 형성한다.

시장 관리와 조정을 강화한다. 영화, 드라마,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TV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방송 시장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영화, 드라마의 뉴미디어 전파를 적극 발전시킨다.

인터넷 전파시장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해외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한다. 출판물 시장과 영화 상영 시장을 규범화하고 시장 관리 특별 행동을 추진하여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판권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콘텐츠 판권 보호, 이용 및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프로그램 판권 보호 개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판권 자원을 활성화하여 핵심 경쟁력을 공고히 한다.

판권자산의 경영 개발을 탐색하고 콘텐츠 판권 거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교환을 촉진하고, 프로그램 가치를 높인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관의 자체 상표 보호와 응용을 강화하고, 자체 상표의 국제 지명도와 영향력을 향상시킨다. 시장의 신용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시장 진입과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관련 서류 등록 접수와 연도 정기검사 제도를 보완하여 올바른 시장 질서를 조성한다. 업계 협회와 중개업체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발휘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계의 신행 싱크탱크 구축을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수준 높은 싱크탱크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치 방향과 재덕을 겸비하고 창의적 정신을 보유한 정책 연구와 정책결정 컨설팅단체를 육성한다.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 정부 조달, 직접 위탁, 과제 합작 등의 방법을 통해 관련 싱크탱크가 신문출판 방송영상 정책 연구, 정책결정 평가, 정책 해독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칼럼8 신문출판 방송영상 시장체계 구축사업

01 현대적 출판물 발행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상호 작용이 가능한 수직적 단계의 현대적 발행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향진(乡镇) 네트워크, 도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여 대형 출판물 물류배송센터 업그레이드

개조를 추진하고 출판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련 서비스 기업의 출판물 경영 서비스 발전을 권장하고 온라인서점의 발전을 추진하며 농촌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출판물 대행 구매 및 판매와 행사 서비스를 장려한다.

02 전국 신문출판 신용조회시스템 구축공정

신문출판업계 내의 신용정보자원을 종합한다. 신문출판 기업의 기본 정보, 표창 이력, 행정 허가, 행정 처벌, 중대한 불법 행위 기록 등의 기본 정보 파일 구축하여 업계 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신문출판 업계의 기초 신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유 신문출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제도를 구축하고 신문출판 기업 신용정보 발표 제도와 신용 관리제도 및 신용 불량 징계 제도를 구축 및 규범화한다.

03 국가 신문출판 싱크탱크(think tank) 구축공정

우수한 자원을 총괄 종합하여 국가가 시급히 필요로 하고 특징이 명확하며 제도가 혁신적이면서 발전을 선도하는 신문출판 전문화 싱크탱크를 구축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신문 출판 과학연구기관이 먼저 고급 싱크탱크를 시범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유기업 및 국유신문출판주식회사가 산학연을 결부시킨 신형 싱크탱크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8.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심화,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일치화한 체제 메커니즘 구축.

행정 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인터넷+정부 서비스’를 추진하며, 정부 기능전환에 주력하여 정부 효율 향상,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이양, 완화와 관리 간 결합, 서비스를 최적화를 꾀한다. 신문출판 주관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당정 부처와 신문출판 기업 간 이탈을 추진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빠르게 추진한다. 공급 품질 향상에 착안해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 구조, 상품 구조, 소비 구조 등을 최적화하여 채널 주파수, 간행물 발전의 동질화, 저효율 등의 문제 해결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공급과 모든 요소의 생산율을 향상시켜 많은 대중들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국유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 개혁을 심화한다. 국유 자본 효율, 국유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 시장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이미 체제를 전환한新华书店(新华书店), 도서 출판사, 전자 음반·영상 출판사(电子音像出版社), 유선 인터넷 기업, 영화 배급 상영 기업, 영상 제작 기업, 비시정(非时政)류 신문 출판사 등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의 회사제, 주식제를 진행하여 건전한 현대 기업 제도와 법인 관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 내부 운영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건전하고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이 확실적인 심사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신문출판 기업의 편집장 직무 관리방법을 보완한다.

국유홀딩스 상장 미디어기업의 스톡옵션 시범을 실시하고, 국유미디어기업의 스톡옵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인터넷 출판,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영역에 특수 주식관리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민영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비공유제 방송영상 기업이 지분확보 방식으로 방송 영상 제작 기관의 제도 개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한다. 비공유제 문화기업의 대외 특허 출판 시행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 출판권 특허 경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판과 제작을 따로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공익성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관의 개혁을 심화한다. 국가 사업기관 분류 개혁과 연결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사업기관의 노동인사, 수입배분, 사회보장, 경비보장 등의 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당의 신문과 간행물에 소속된 시사 정치류가 아닌 간행물과 실력이 우수한 업계의 간행물을 선두로 해당 구역의 업계

간행물 자원을 통합하여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운 신문 출판사에 대해 폐쇄, 중지, 인수합병, 전환을 실행한다.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 간행물 편집부의 개혁을 추진한다. 신문출판 기관의 사업은 기업과 분리하고, 취재 편집과 기획 관리를 분리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공익성 신문출판 기관의 영업성 부분을 회사제, 주식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칼럼9 신문출판 방송영상 체제 개혁	
01 행정 심사제도 개혁 심화	정부기구 간소화 및 권력 하부이양, 완화와 관리간 결합, 서비스 최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전면적으로 정부 공개와 법에 의거한 정책결정을 추진하며 정부 권력 리스트를 추진하고 인터넷 심사 실행을 추진하며 신문 출판 진입 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개혁 정기 검사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발행, 인쇄 등 기업의 진입 여건을 완화한다.
02 국가급 핵심 출판 미디어 기업 육성공정	당의 신문과 간행물에 소속된 시사 정치류가 아닌 간행물과 실력이 우수한 업계의 간행물 출판 기관을 선두로 해당 구역의 업계 간행물 자원을 통합하여 다양하고 선진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형 주요 추세 미디어 그룹을 설립한다. 중국출판그룹, 중국교육출판그룹, 중국과학기술출판미디어그룹 등 중앙출판기업과 실력 있는 지방 출판미디어회사의 상장 추진을 가속화한다. 출판, 발행 그룹이 자본을 연결 고리로 지역, 업계 소유제, 국가를 초월한 합병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상장된 출판 미디어 회사를 선두로 강한 실력을 보유한 중국 내 일류 출판미디어그룹 설립을 가속화하고 세계 유명한 일류의 대형 다국적 출판미디어그룹을 육성한다.
03 민간자본을 유도해 출판영상 경영에 참여	인터넷 출판, 정보 네트워크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반드시 행정허가 업무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기업 및 규정대로 체제를 전환한 국유 미디어 기업에게 특수 주식관리제도를 시행한다. 비공유제 문화기업의 대외 특수 출판시범의 참여를 계속 실시하고 도서 제작과 출판 분리를 규범화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시범업체를 선정하고 시범경험을 정리하며 적시에 시범성과를 보급한다. ‘전문화, 정교화, 특징화, 창의화’를 가진 소규모 영상 출판 서비스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04 ‘사회경제 가치 최고 신문출판기관 장려계획	신문출판기관의 ‘사회경제적 가치’ 건설 평가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도서, 전자 음반·영상, 신문, 간행물 및 인터넷 문학 출판과 신화서점(新华书店) 등 출판물 발행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심사 강화 방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사회경제적 가치’가 모두 뛰어난 신문 출판 기관에게는 표창 장려 진행,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산업 사업의 지원 강도 강화를 통해 신문 출판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시 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일치화’를 실현한다.
05 국가 신문출판 방송영상 선도자공정	신문출판 방송영상 선도자공정과 청년 혁신인재 양성공정을 추진하여, 중대사업 수석전문가 제도를 실행한다. 미디어 융합 천인인재 양성 계획을 실행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고급인력과 전문 인력그룹 및 창의적 인재 선발 표창 평가와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한다. 직업 매니저 제도를 실행하여 수석 아나운서 MC, 수석 기자, 수석 편집자 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9. 국제 전파 능력 구축, 중국의 목소리 전파, 중국 정신 선양, 중국 영향력 강화

(1) 신문출판 방송영상 공공 외교의 새로운 포인트 제조

국가 전략을 위해 당과 국가 지도자의 방문 외교와 홈그라운드 외교를 중심으로 국가 외교를 도와 도서 및 영상 축제 전시회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대외적 교류협력 중점프로젝트와 브랜드화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의 중대 홈그라운드 외교 활동의 홍보를 보도하고 중국과 해외 미디어의 교류의 해, 미디어 회담 등을 실현하고, 베이징 국제 도서박람회, 상하이 국제 TV 페스티벌, 베이징 국제 영화제 등의 중요 페스티벌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인다.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홍보, 미디어 교류와 청년 언론인 업무를 잘 완성하여 대만 출판 교류를 강화한다.

(2) 중점공정·프로젝트 실행, 국제 전파 네트워크 보완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중심으로 실크로드 영상 브리지, 실크로드 독서풍 등의 공정을 실행하여 실크로드 국가와의 신문출판 방송영상 협력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한다. 각 종류의 자원을 총괄하여 우수 출판그룹의 국제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브랜드 상향을 통해 중국 발전 변화 소개, 중국 당대의 중국 정신 반영과 우수한 중국 문화 출판물의 번역 출판물과 국제 홍보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 인터넷 마케팅 루트를 개척한다. 중국이 주변국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국제 도서 전시회 행사를 잘 마무리한다.

(3) ‘해외진출’ 협력 강화

중국과 해외, 정부와 기업을 총괄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시장이 운영하는 ‘해외진출’ 업무체제를 보완한다. 루트를 확장하여 중국 기업과 해외 주요 기업의 협력자원 탐색을 추진하여, 합자, 합작, 주식투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출판사, 서점, 공장 설립, 영화 드라마 공동 제작, 도서 공동 출판 등을 장려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다. 영화 TV 기관의 해외 디지털TV 투자, 건설, 운영 참여를 지원한다. 글로벌 신문출판 상품 공급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판매기관과의 협력을 심화하여 해외 인터넷 마케팅 루트를 적극 개척한다. 대외 론칭 플랫폼 설립을 강화하여 각 기관과 기업의 국제 도서 및 영상 페스티벌 참여를 지원한다.

해외 작가, 한문학자, 번역가, 출판인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중국 계획과 외국 번역가, 작가, 출판인의 발전계획 작성을 실행하여, 중국 도서의 특수 공로상 영향력을 향상시켜 중국을 주제로 한 도서를 출판한다. 우수한 영상작품의 번역과 더빙의 지원을 강화한다. 변방지역 신문출판의 ‘해외진출’ 지원계획을 추진하며, 신문출판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정책을 적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한다.

칼럼10 신문출판 방송영상 국제전파능력 육성프로젝트

01 신문출판 해외 발전 지원공정

외향적인 핵심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다양한 소유제의 출판사가 자본을 연결 고리로 합자, 합작, 주식투자, 주식보유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출판사 설립, 간행물 발행, 공장 개설, 해외 투자 확대, 중점 상품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외 현지화 출판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실력 및 실적을 바탕으로 민영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출판 마케팅 기업을 설립하여 글로벌 경영목표를 달성한다. 금융기관이 신문출판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해외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02 실�크로드 영상브리지공정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콘텐츠 구축, 루트 구축, 브랜드 구축 및 기술 장비 수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크로드 국가와 지역을 상대로 하여 영상 작품 창작과 배급을 추진하며 ‘실�크로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고 인근 국가의 우수 영상의 더빙 및 창작을 추진하며 인근 국가의 지역 인터뷰 및 미디어 이벤트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라디오 영상의 대외 기술협력과 공사도급 등을 추진한다.

03 실�크로드 독서풍(书香)공정

주변 국가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대상으로 번역비 지원, 도서전시회, 국제출판협력, 인재 양성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명품 번역, 교재 홍보, 온라인 게임과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홍보, 중점도서 전시회와 출판 현지화 등 방면에서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구체적인 수익 공동창출 위원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장점을 집중하여 일부 명품 브랜드를 만든다. 매년 여러 언어의 도서 150 가지의 번역비를 지원한다.

10. 문화정보 안전 건설 강화, 신문출판 방송영상 안전보장능력 제고

(1) 건전한 인터넷과 정보 안전보장체계 구축

융합 미디어 인터넷과 업무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상대로 콘텐츠 관리, 일상 운영, 시스템 구축, 업무 관리 등 방면의 신문출판 방송영상 인터넷과 정보 보안 수요를 기반으로 건전한 안전보장 체계 메커니즘 구축하고 신기술 발전에 적응한 입체화 정보 안전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업계 내의 생산업무 관련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뉴미디어 관련 정보시스템 및 각종 인터넷 업무 시스템의 사이버 안보 추세 감지 플랫폼, 기술 표준과 제도 체계를 연구 및 구축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 융합 미디어 정보 안전의 심층 보호와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여 업계 인터넷과 정보 안전보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업계 내의 연구기관이 구축한 사이버 안보기술 플랫폼과 인력팀 및 전문팀을 육성하여 사이버 안보업무를 지원한다.

(2) 라디오TV의 안전방송 보장체계 구축

국가와 업계 정보 보안 요구에 따라 미디어 융합 발전 방향과 정보 기술 발전 추세에 적응하여 융합 미디어의 안전한 방송 기술 체계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융합 미디어 운행 관리 특징의 보호 체계를 보완하며 기술 장비,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화 및 스마트화 건설을 강화하고 제작 방송 전송, 보안 관리, 지휘 통제, 경보 시스템 모니터링, 응급조치 등 분야 기술 보장 시스템을 보완하여 건전한 체계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인력그룹 구축과 경비 보장을 강화하고 통일 연동, 상하 연결, 급별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신기술 조건하의 안전한 방송 관리 체제와 운행 체제를 구축하며 믿을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며 관리가 가능한 라디오TV의 안전한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라디오TV의 안전한 방송을 도와준다.

(3) 이데올로기 및 문화 정보 안전보장능력 육성 강화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단속’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부처의 자원을 통합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영역의 불법 범죄 행위를 대응하는 특별행동을 추진한다.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효율적인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단속’ 업무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관리를 같은 표준으로 관리하고 사이트 주체의 책임과 관리를 결합하여 심사 후 방송하는 제도를 지도 감독한다. 과도한 오락화 및

저속화 문제점 방지와 일상 관리를 철저히 진행한다. 예능 프로그램 관리와 거시적인 조정을 강화한다. 중점간행물의 인터넷상의 저속한 용어 사용 감시,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관리를 강화한다. 신문 사기, 가짜 신문 및 가짜 미디어, 가짜 언론사, 가짜 기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간행물과 라디오TV 허위 불법 광고 단속 강도를 강화한다. 인쇄 복제 발행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자료 출판물, 인터넷서점 등 중점영역의 관리를 강화한다. 라디오TV 유선 인터넷 전용 네트워크의 장점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사용자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한다. 라디오TV 방송국 안전 응급체계 구축, 협동협력공정을 강화하여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단속’이 기층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업무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한다.

(4) 전면적 신문출판 방송영상 관리감독능력 향상

라디오TV 공공 서비스와 융합 미디어 업무 발전을 결합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관리감독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며 관리감독 시스템의 인터넷화, 스마트화, 협동화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성(省)을 중점으로 콘텐츠와 기술,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 중국과 해외를 포함한 기술 모니터링, 시청 뉴미디어 관리감독, 콘텐츠 관리감독, 안전 방송, 정보 보안 5위1체의 전국 라디오TV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관리감독공정을 재건하며, 제도 규범, 체제 운행, 기술 표준, 연구 심사 분석, 응급조치 등 다방면을 포함한 전국 통일 관리감독 구조화 체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업무, 인터넷, 단말기 등 모든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한다. 디지털 영화 기술 서비스 관리 플랫폼 구축을 보완하여 영화시장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영화의 관리감독 현대화 수준을 향상한다. 전국 간행물 정기검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문학작품 디지털 콘텐츠 표시의 시범응용을 추진한다.

칼럼11 신문출판 방송영상 문화정보 안전보장능력 육성 프로젝트	
01 라디오TV 관리감독체계 구축 공정	기존 라디오TV 미디어 관리감독 업무시스템, 관리 신고 시스템을 보완한다. 전국 라디오TV 관리감독 클라우드 플랫폼과 라디오TV 관리감독 표준 체계, 콘텐츠 관리 시스템, 관리감독 종합 근무 시스템, 스마트 진단과 정책결정 시스템, 라디오 응급통제 및 라디오 효과 응급관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02 국가 신문 간행물 디지털관리 시스템	표준화 및 통일화된 전국간행물데이터센터와 전국 간행물 연간검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완전한 간행물 출판 버전과 디지털화 간행물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점간행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하여 간행물 콘텐츠의 다차원적 탐색과 분석을 실현하고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신문 기자증 관리 및 검사 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문 종사자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11. 판권 관리 강화, 판권 산업 발전 강화

(1) 판권 보호체계 구축 강화

인터넷 환경의 판권 관리와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 판권 부여 후 사용, 판권 부여 후 전파

원칙을 고수하여 원작 판권 보호와 유상 사용 제도를 보완하는 국가 판권 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터넷 판권 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신기술을 사용하여 불법 복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다. 소프트웨어 정품화의 장기적 효과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의 발전형 세에 적합한 저작권법 보호제도를 실행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판권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주체의 혁신 창업 동력을 강화한다. 판권 사회 서비스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저작권 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판권 시범도시, 시범기관, 시범단지(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판권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여 판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인다. 판권 무역 유도자금과 판권 산업 발전기금의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판권 무역, 판권 거래 협력연맹을 발족 및 보완하여 온라인 판권 거래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상을 통해 판권 거래모델을 혁신한다. 판권 무역 관련 체제를 보완하여 건전한 판권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판권 평가, 담보, 투자, 융자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2) 디지털 판권 유일 식별자(DCI) 체계 구축 가속화

인터넷 환경의 판권 확립과 부여, 판권 공시, 대행, 분쟁 해결, 수익 배분 등의 새로운 체제를 혁신한다. 온라인 판권 거래, 사용과 보호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사회역량이 판권 중개서비스기관을 설립 및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여 불법 복제 반대와 판권 포호 및 판권 사회 관리와 서비스 분야의 역할을 발휘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판권 대외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관계를 조율하고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여 중국 판권의 우수한 글로벌 이미지를 세운다.

칼럼12 국가 판권 관리감독 및 판권 산업 추진 프로젝트	
01 판권 관리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국가 판권 관리감독 플랫폼을 보완하여 판권 법집행, 저작권 등록과 소프트웨어 정품화 등 판권 업무 정보의 실시간 보고, 통계, 공고, 조회 및 인터넷 침해, 불법 복제 행위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저작권 단체 관리 조직 및 저작권 대외 인증 기구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사이트 구축 및 지방 판권 관리와 법집행 기관의 교류 통신망을 구축한다.
02 디지털 판권 유일 식별자 구축 공정	디지털 판권 유일 식별자(DCI) 체계 업무 플랫폼 구축, 디지털 판권 등록, 판권 거래 결산, 판권 스마트 검색과 검사 등 디지털 판권 유일 식별자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국적인 디지털 판권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03 국가 판권 시범사업 추진 공정	지속적으로 전국 판권 시범 도시, 시범 기관, 시범 기지(단지) 건설 업무를 추진하여 5-10개의 시범 도시, 50-100개의 시범 기관, 10-20개의 시범 기지(단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각 시범 주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04 전국 판권 거래체계 구축 추진 공정	5-10개의 ‘일대일로’ 연선, 국가종합개혁실험구, 자유무역시험구 내 판권거래센터(기지)를 중점 육성하여 전국적인 판권 무역, 판권 거래 협력연맹을 발족 및 보완한다. ‘판권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 판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판권 거래 빅데이터 응용을 실현한다.

라. 보장 조치

(가) 당의 건설 강화, 조직보장 강화

중앙 정부의 중요 부처를 엄격한 표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각급 당 조직의 정치 책임을 강화하며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무의 지도자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관의 당 설립과 사상 정치 업무를 추진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하며 마르크스주의 문예관, 신문관, 출판관을 추진하여 신문출판영상 종사자가 ‘4가지 의식’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중앙위원회 정부와 시진핑 국가 주석,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 중앙위원회 정책결정 부처를 모범으로 삼고 당의 정책 주장의 전파자, 시대의 기록자, 사회 진보의 주도자, 공평과 정의의 수호자가 되도록 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 당 건설의 새로운 루트와 새로운 방법을 적극 탐색하고 업무 체제 메커니즘과 방법을 개선하며 국유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업 내 당 건설의 지도 의견을 제정하고, 당 조직의 회사 법인 관리 구조 내에서의 법정 지위를 명확히 하여 당 조직과 당 업무가 신문출판 방송영상에서의 각 사회조직을 전부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당 조직의 정치적 핵심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 당내 정치 생활 관련 준칙>과 <중국 공산당 당대 감독조례>를 구체화하고 당의 규율과 법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고 민주집중제, 당내 정치 생활, 중대한 문제 지시 보고서 등의 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당내 감독 강화 및 문책 제도 완비, 권력 운행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한다. 정신문명 건설과 기풍 건설을 추진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종사자의 청렴 행위 규정>과 <신문출판 방송영상 종사자 직업의 자율도덕성 공약>을 실행하여 업계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기개를 선양한다. 당 기풍의 깨끗한 정치 건설 주체 책임과 감독 책임을 확보하여 부패 반대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패 반대, 변질 반대와 위험 방지 역량을 늘려 공정하고 청렴한 업계 생태를 설립한다.

(나) 법에 의거한 관리 강화, 법치 보장 강화

관리를 통해 발전 및 안전 보장, 법치를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관리 체계와 관리능력을 현대화한다. 법치 건설 강화, 신문출판 방송영상 중점입법공정 추진 및 법 의거 행정업무체제를 보완한다. <영화산업 촉진법>,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실행을 중점 추진하고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의 입법, 개법, 폐지 업무를 추진하며 국무원 법률 제도 사무실과 협력하여 <전 국민 열독 촉진조례>, <라디오TV 전송 보장법> 입법 진도를 추진하고 <라디오TV법>이 본 업계 내의 기초 조사연구와 논증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문화산업 촉진법>을 추진한다. <당정 주요 책임자 이행 추진 법치 건설 제일 책임자>, <법치 정부 건설 실시 요강(2015-2020)>을 실시하여 서비스형 정부, 법치형 정부, 책임형 정부, 결백형 정부의 건설 중심을 두어 행정 심사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전면적으로 정무 공개와 법 의거 정책결정을 추진한다. 정부 권력 목록을 보급하여 관리 체제를 보완하고 관리 관계를 명확히 하며 관리 기능을 구체화하여 권력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일치화 및 권위가 높은 신문출판 방송영상 법 의거 행정 체제를 보완한다.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 강화를 중심으로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관의 진입 관리와 일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베스트셀러 등 모든 영역의 랭킹을 규범화 및 보완한다. 건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출판 상품 평가 체계와 품질 감독검사 관리체계 및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당이 관리하는 미디어의 원칙을 뉴미디어 영역까지 관철하여 신문 정보

서비스, 미디어 속성과 여론 동원 기능을 갖춘 전파 플랫폼을 관리범위에 포함시킨다.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단속’ 업무를 추진하여 각종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전면적으로 라디오 영상방송 질서를 규범화하고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광고 방송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거시적 통제 개선, 업계 진입 난이도 강화 및 불법 주체 퇴출 체제를 구축한다. 엄격히 법에 의해 불법 기지국, 불법 개설된 주파수 채널, 독자적으로 조정 배치된 주파수 채널, 타 지역과 협력한 주파수 채널, 독자적으로 지상파 디지털 TV라디오 개설 등의 문제를 조사 및 처리한다. 불법 범죄와 스캔들 악행을 저지를 사람들이 라디오 영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탈세, 허위 보고, 영화 흥행 수입 및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을 단속하고 위반 광고, 위반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를 추진한다. 간행물 연간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법을 어기고 정상 출판이 불가능한 간행물은 일절 금지 및 퇴출 조치를 취한다.

(다) 과학기술 혁신 강화, 기술보장 강화

정책 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건전한 과학기술 업무정책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력자원, 과학기술 기초 환경, 첨단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응용영역 구비를 추진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과학기술의 혁신체제를 보완한다. 국가 빅데이터전략 요구를 구체화하고 신문출판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광대역 라디오TV’ 전략과 ‘라디오TV+’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라디오TV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 발전 공정, 방송영상 디지털화 향상 공정, 방송 TV 문화 정보 안전보장능력 육성과 방송 TV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정을 추진한다.

관련 자원을 조합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과학기술기관 설립을 강화한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신문출판 방송영상 발전수요를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 자금 지원을 영입하여 전자정부, 공공 서비스, 업계 서비스, 산업 발전 4개의 영역에서 전략성, 혁신성 및 가이드성이 있는 중점 공정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하여 기술 수준이 높고, 가이드성이 강하며, 서비스성이 좋은 혁신형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한다. 재정 후보조, 간접투입 등 방식을 운용하여 기업의 자주적 혁신을 지원하고, 중대 공통성 기술 및 장비 연구개발 연구에 투입을 하여 공통성 기술과 장비 연구개발 돌파를 실현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발전에 과학기술 버팀목을 제공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여 디지털 출판 식별자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 링크 식별자(ISLI)>, <중국 출판물 온라인 정보 교환(CNONIX)>, <디지털 판권 유일 식별자(DCI)>, 출판물 품질 검사 표준, 전자 도서 콘텐츠, 친환경 인쇄 등 신문출판 분야 관련 표준의 응용을 추진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분야 응용의 연구와 관련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강화하고 중국 IMAX, 스마트 TV 운영체제, 무선 양방향 커버 등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 홍보 응용을 추진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기술표준 체계를 보완하고 국내의 자주적 연구개발 신문출판 방송영상 표준이 국제화가 되도록 추진한다.

(라) 정책 지원 강화, 정책 보장 강화

중앙정부, 국무원의 신문 여론 사업과 사상 홍보 사업, 문화 체제 개혁 심화,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 구축 강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선양, 문예 사업 강화, 미디어 융합 발전 추진, 현

대적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3망융합 추진, 인터넷 강국 건설, 정보 소비 등 일련의 중요 정책적 방안 추진, 정책 혁신과 집행 실행 강도 강화, 정책 지원 권장과 유도역할 발휘,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발전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실질적인 수요 및 발전 수요와 결합하여 발전 개혁, 재정, 금융, 세무, 국유 자산 등 부처의 지원을 적극 쟁취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발전의 안정적인 재정 보장 메커니즘과 투융자 체계를 형성한다. 계획, 국토, 건설, 환경 보호, 시정 등 부처와 적극 조율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프라 여건을 마련한다. 홍보, 문화, 인터넷 보안과 정보화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산업의 협력발전을 확보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계 통계분석, 전반적인 정책 연구와 발전성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발전에서 지속 가능한 톱 레벨 디자인과 시스템 계획을 제공한다.

(마) 인재그룹 육성 강화, 인재 보장 강화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발전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여 정확한 정치 방향, 여론 방향, 뉴스 지향, 업무 방향을 견지하는 요구에 따라 신문출판 방송영상의 각급 간부 인력그룹의 정치적 소양, 이론 수준, 정책 수준, 법치 의식과 업무 능력을 쌓아 확고한 정치신념, 정교한 업무능력, 훌륭한 기풍, 당과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무팀을 육성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중요 인력 양성 공정을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기획하여 리더십, 경영관리인력,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종합적인 인력과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한 인력의 양성에 특별히 힘을 쏟아야 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업계 지도자 인력 공정, 명인 명품 공정과 청년 영재, 혁신인력 양성 공정을 계속 추진하고 대중을 이어주는 미디어 육성계획을 실행하며 ‘영상 창작 백인계획’, ‘우수 청년 감독 작가 지원계획’ 등의 인재 프로젝트를 철저히 진행한다. ‘신문출판 방송영상 전문기술인력 지식갱신공정’을 실행하여 점차적으로 중대 공정 프로젝트 수석 전문가 제도를 실행한다. 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 대규모 교육훈련 추진, 신문출판 방송영상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 교육 제도 보완, 업계부족인력과 전문기술인력의 지속적 교육, 업계 교육훈련 강사진 구비와 훈련 교재 제작, 훈련기지 구축 강화, 훈련방법 개발, 훈련 콘텐츠 풍부화, 맞춤형 및 실용성 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교육지도위원회와 산업지도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대학의 신문출판 방송영상 관련 전공 개선을 지원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융합 발전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한다. 말단 부서 실천 중의 인재 교육 강도를 강화하여 우수한 인력을 말단 부서에 파견하여 직무를 보류한 채 훈련을 받도록 한다. 직업 및 직무 진입에 주안점을 두어 기층과 서부 변경지역 인재그룹 및 전문기술역량 양성을 강화하고, 내륙과 신장(新疆) 간 출판 전문인재 상호파견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신문 취재 편집 종사자 진입 자격 제도를 엄격히 하여 신문출판 방송영상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제도를 보완한다. 신문 취재 및 편집, 디지털 편집 인력의 직업자격제도 및 직업 자격시험 방법을 제정하여 신문 출판 종사자 관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라디오TV 편집자, 기자, 아나운서, MC 직업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시청 미디어 종사자 직업자격 제도 구축을 연구하며 체제 외 인원의 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 직급평정과 전문기술인력 평생교육제도 간 연결을 추진하고 전문기술인재의 지식 갱신을 가속화한다. 업계 발전 수요에 따라 신문출판 방송영상 직급제도 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 직급평정 표준을 수정하여 고위직 등급 설정을 완비한다. 뉴미디어

어 콘텐츠의 생산, 연구 개발, 자본 운영과 경영관리 등의 인재 양성 및 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비공유제 신문출판광전기관의 인력그룹을 업계 인력그룹 구축체계에 편입시킨다. 시장화 인재 초빙방법을 통해 직업 매니저 제도를 탐색 실행하여 수석 아나운서 MC, 수석 기자, 수석 편집 제도를 추진한다. 인재 선발, 인재 심사 표창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고, 우수 인재와 선진 모범케이스 육성, 발견, 홍보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인재 양성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인재가 두각을 나타내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바) 조직지도 강화, 계획의 구체화 강화

전국 신문출판 방송영상 각 부처, 각 기관은 전체적인 국면과 전략적 차원에서 13차 5개년 계획기간 신문출판 방송영상 발전계획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인지하여 조직지도를 착실하게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계획 시행하며 계획의 목표 임무를 본 부처, 본 기관의 중점업무계획에 넣어 실제와 결합하여 목표, 방법, 분담 등을 세부화하고 총괄적 조정,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과제형 디자인, 프로젝트형 관리, 공정형 추진, 장부형 감독검사, 성과형 심사’ 업무방식으로 각 임무를 구체화한다. 한편, 각급 당 위원회 정부의 유력한 지도 아래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신문출판 방송영상 발전계획의 중대 임무가 해당 지역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 궤도에 진입하도록 확보하고, 신문출판 방송영상 개혁 발전성고가 대중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확보한다. 계획 모니터링 평가체제를 보완하여 실행 중간 단계에 실행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목표 임무를 조정하며 계획 실행 마지막 단계에 실행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는 계획 실행 책임부처 및 책임자의 성과평가와 연결한다. 각 지역 신문출판광전 부처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신문출판 방송영상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또한 동 계획과의 연결을 활성화하여 각 임무 조치의 구체화를 확보한다.

24.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제목	文化和旅游部关于实施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管理政策的通知
게재일	2018-6-1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⁴³⁾ 문화체육신문출판광전국, 티베트 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행정(종합)법집행총대¹⁴⁴⁾:

《국무원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 문건 및 국무원 허가를 거친 부처 규정의 임시 조정 관련 결정》(국발 [2017] 57호), 《국무원판공청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허가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7년 버전) 발표 관련 통지》(국반팔 [2017] 51호)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 내 문화시장 관리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해외 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설립 허용

자유무역시험구 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국인독자경영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업체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 현(縣)급 이상의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여건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등록한다.

2. 해외 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공연에이전시 설립 허용

자유무역시험구 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국인독자경영의 공연에이전시가 영업성 공연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시행세칙>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공연에이전시의 관리정책을 참조하여 허가 심사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설립한 중국측 홀딩스 또는 주도권 확보 중외합자·합작 공연에이전시가 지역을 넘는 영업성 공연활동을 전개할 경우, <문화부의 영업성 공연 심사항목 취소와 하부이양 사업 활성화 관련 통지>(문시발 [2013] 2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설립한 외국인독자, 홀딩스 또는 주도권 확보 공연에이전시의 서비스범위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한 성과 자치구이며, 지역을 넘는 영업성 공연활동은 소재지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가 허가 심사한다.

3. 해외 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공연장소 운영기관 설립 허용

143)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44)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상하이시, 광둥성, 텐진시, 푸젠성 자유무역시험구 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국인투자경영 공연장소 운영기관이 공연장소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 <문화부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 관련 통지>(문시발 [2013] 47호), <문화부의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중국(텐진)자유무역시험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내 문화시장 관리정책 조정 실시 관련 통지>(문시합 [2015] 490호)에 따라 집행하고,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등록한다.

기타 자유무역시험구 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국인투자경영 공연장소 운영기관이 공연장소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시행세칙>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공연장소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정책에 따라 허가 심사를 한다.

4. 해외 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오락장소 설립 허용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인투자경영 오락장소가 오락장소 경영활동 영위 신청 시,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오락장소 관리조례>, <오락장소 관리방법>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오락장소에 대한 관리정책을 참조하여 허가 심사를 한다.

성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외자경영 오락장소가 사용하는 게임·오락설비 종류와 콘텐츠에 대한 허가 심사를 책임진다.

5. 기타 적용범위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투자하여 상기 문화 분야 경영활동을 영위하거나 향후 해외 투자자가 기타 신설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투자하여 상기 문화 분야 경영활동을 영위할 경우, 모두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25.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제목	全国文化市场黑名单管理办法
게재일	2018-06-19
출처	문화 관광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¹⁴⁵⁾ 문화체육 신문출판광전국, 티베트 자치구,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문화시장(종합)행정 법집행총대¹⁴⁶⁾:

문화시장 신용관리감독제도를 완비하기 위해 본 부서는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시행)>을 수정했다. 현재 수정 후의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을 인쇄 배포하오니 지방의 실제 정책과 결부하여 관련 업무 세칙 또는 시행방안을 제정하고 본 관할구역 각급 문화행정부처와 문화시장 종합 법집행기관을 조직해 철저히 시행하기를 바란다.

상기와 같이 통지한다.

문화 관광부
2018년 6월 19일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

제1조 문화시장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말하는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라 함은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 심각하게 법을 어기거나 신용을 잃은 문화시장 주체 및 인원을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사회에 발표해 신용제약, 공동 징계 등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통칭한다.

제3조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는 문화시장 주체 블랙리스트와 인원 블랙리스트를 포함한다. 문화시장 주체는 영업성 공연, 엔터테인먼트 장소, 예술품,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인터넷 문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인원은 상술한 시장 주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및 배우, 인터넷 공연자 등 기타 종사자를 포함한다.

제4조 문화 관광부는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업무 지도를 담당하며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에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를 발표한다. 현(縣)급 이상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본 관할구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145) 병단(兵團):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46) 행정(종합)법집행총대: 종합집행본부

제5조 문화시장 주체가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벌을 받거나 허가 없이 문화시장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면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 소속지역 관리 및 ‘누가 책임지면 누가 리스트에 올리고 누가 처벌하면 누가 리스트에 올리는’ 원칙에 따라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 (1) 문화시장 경영활동에 무단 종사해 중대사고 또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경우
 - (2)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의 허가증 말소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 (3) 사기, 고의 은닉, 자료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허가증, 비준문서가 문화행정부처에 의해 취소된 경우, 또는 허가증, 비준문서 위변조 증거가 확실한 경우
 - (4) 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기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하는 정황.
- 배우, 인터넷 공연자 등 기타 종사자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표준, 발표 및 징계 조치는 문화 관광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문화시장 주체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기 전, 담당기관은 당사자에게 명단에 오른 사실, 이유, 근거와 제한 조치를 고지해 당사자의 진술, 해명을 듣고 성급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기관의 재조사 및 문화 관광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명단에 오른 정보는 문화시장 주체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번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성명, 유효한 신분증 번호,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고 신용을 잃은 사실, 명단에 오른 근거, 명단에 오른 날짜 등을 포함한다.

제7조 문화시장 주체가 지역을 넘어 위법 위규 문화시장 경영활동에 종사해 타 지역 문화 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에 의해 본 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문화시장주체 소재지 동급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담당한다.

제8조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만 5년이 지난 후, 본 방법 제5조 제1항 규정 정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올린 기관이 기간 만료 후 30 영업일 이내에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 전, 제외시키는 기관은 성급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에 보고해 재점검하고 문화 관광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를 때의 근거가 된 행정처벌 결정이 취소된 경우,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행정 종합 법 집행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전국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

제10조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를 하달할 때 그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누가 리스트에 올리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외시키는 정보를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시스템에 제때 입력해야 한다.

문화 관광부는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외시키는 관련 정보를 사회에 발표한다.

제12조 문화행정부처,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아래의 징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1) 중점 관리감독 대상으로 해 검사 횟수를 늘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경영행위 위법, 위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2)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간, 유관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그가 엔터테인먼트 장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문예공연단체, 공연에이전시, 공연장소 경영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맡도록 비준해선 안되며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시장 주체의 명칭 변경을 제한한다.
- (3) 그가 신청한 행정 심사비준항목을 엄격히 심사한다.
- (4) 그가 표창 비교평가, 정부조달, 재정자금지원, 정책 시범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 (5)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고 신용을 잃은 그의 정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공동 징계를 한다.

제13조 업계협회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원에게 경고, 통보비평, 공개비판을 하고 우수 평가 자격 취소 등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회조직과 개인이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문화시장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면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 문화시장 주체 및 그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행정부처,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 외에, 지방 문화행정부처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 문화시장 관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설정하고 해당 정황을 올리는 경우 지방이 관련 관리 방법을 제정하며 전국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에 올리지 않고 전국 공동 징계 범위에 넣지 않는다.

제17조 본 방법은 문화 관광부가 해석을 맡는다.

제18조 본 방법은 인쇄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1월 6일 인쇄 발표한 <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시행)>은 동시에 폐지한다.

26.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제목	综合防控儿童青少年近视实施方案
게재일	2018-8-30
출처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체육총국, 재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신문출판서,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인쇄 발표에 관한 교육부 등 8개 부처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장 생산건설병단¹⁴⁷⁾:

시진핑 총서기의 학생 근시 문제 관련 중요지시를 철저히 시행하고 신시대 아동청소년 근시 예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8개 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예방 시행방안〉을 제정하고 국무원 동의를 거쳐 인쇄 발표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기 바란다.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체육총국
재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신문출판서
국가광전총국

2018년 8월 30일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 예방 시행방안

아동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이다. 최근 초중학생 학습 부담 가중, 휴대폰, 컴퓨터 등 휴대용 전자스크린 제품(이하 전자제품이라 함)의 보급, 눈 혹사, 비위생적인 눈 사용, 체육 수업 및 야외 활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중국 아동청소년 근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근시 저령화, 중증화가 나날이 심각해져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관계된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동청소년 근시 예방은 정부, 학교, 의료보건기관, 가정, 학생 등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사회 전체가 행동해서 아이들의 눈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예방을 위해 국무원 동의를 거쳐 아래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¹⁴⁷⁾ 병단(兵團): 신강위그루자치구의 농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파견한 군부대, 현재 7만km²면적, 273만명 인구 에 14개사(師)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는 부성(副省)급임

1. 목표

2023년까지, 전국 아동청소년 전체 근시율을 2018년을 기반으로 매년 0.5%p이상 낮추고 근시율이 높은 성은 매년 1%p이상 낮추도록 노력한다.

2030년까지, 전국 아동청소년의 새로 발생하는 근시율을 뚜렷이 감소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시력 건강 전체 수준을 향상시켜 6세 아동의 근시율을 3% 정도로 통제하며, 초등학생 근시율을 38% 이하로 낮추며 중학생 근시율은 60% 이하, 대학생 근시율은 70% 이하로 낮추고, 국가학생체질건강표준 달성 우수 비율은 25%이상으로 끌어올린다.

2. 각 관련 분야의 행동

(1) 가정

가정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학부모는 과학적인 눈 보호지식을 알아야 하며 솔선수범하여 아이의 양호한 눈 사용 습관 양성을 견인하고 도와 양호한 가정 시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0-6세는 아동시각 발육의 중요한 시기로 학부모는 아이의 조기 시력 보호와 건강을 특히 중요시해 근시의 발생과 발전을 제때에 예방 및 통제해야 한다.

야외활동과 단련을 늘린다. 아이가 야외 태양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 근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한다. 양호한 가정체육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가 야외활동 또는 체육단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집에 있을 때 매일 야외 자연광을 접촉하는 시간을 60분 이상으로 한다. 이미 근시가 있는 아이는 야외활동 시간을 더욱 늘려 근시의 발전을 늦춰야 한다. 아이가 각종 형식의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아이가 방학 기간 체육숙제를 성실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독촉해 1-2개 체육운동 기능을 익히도록 하고 아이가 평생 단련하는 습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자제품 사용을 통제한다. 학부모는 아이와 있을 때 되도록 전자제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아이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전자제품 사용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비(非)학습목적의 전자제품사용은 1회에 1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매일 누적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자제품을 사용해 학습하는 경우 30-40분 사용 후 먼 곳을 응시하며 10분 휴식하고 연령이 적을수록 연속 사용시간은 짧아야 한다.

수업 외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 학교와 협조해 아이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맹목적으로 과외 교습을 하거나 휩쓸려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아이의 취미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학교의 책임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책임을 늘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좋지 않은 눈 사용 습관을 피해야 한다. 아이가 걸을 때, 식사할 때, 침대에 누웠을 때, 흔들리는 차 안에서, 빛이 약한 곳 또는 식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책을 보거나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이의 불량한 독서 자세를 감독 및 수시로 교정하고 ‘일척(一尺), 일권(一拳),

일촌(一寸)’을 유지한다. 즉, 눈과 책 사이의 거리는 한 자 길이를 유지하고, 가슴과 책상 거리는 약 주먹 하나 공간, 연필 쥐는 손과 연필 촉과의 거리는 약 1인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밖에 독서 연속 시간은 4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수면과 영양을 보장한다. 아이 수면 시간을 보장해 초등학생은 매일 10시간, 중학생은 9시간, 고등학생은 8시간을 확보한다. 아이가 생선류, 과일, 녹색채소 등 시력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품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조기 발견하고 조기 관여한다. ‘치료 중요시, 예방 경시’ 관념을 바꿔, 가정 실내조명 상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가 양호한 눈 사용 위생습관을 양성하도록 관심을 갖는다. 아이의 눈 발육과 시력 건강 상황을 파악하고 수시로 아이의 시력 이상 여부를 체크하며 아이가 교실에서 앞자리에 앉아야 칠판을 볼 수 있거나 TV 화면을 가까이서 보거나 두통 또는 눈 피로를 호소하고 자주 눈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안과 의료기관에 즉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야 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과학적인 관여와 근시교정을 하고 되도록 안과 의료기관에서 검안을 해야 하며 부정확한 교정방법으로 근시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2) 학교

학생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 국가 커리큘럼 방안과 커리큘럼 표준에 따라 교육활동을 엄격히 배정하며, ‘왕초보’ 정상교육에 따라 교실 교육효과 향상에 중심을 두고, 임의로 수업을 늘리거나 줄이며, 난이도를 변경하거나 진도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학년팀과 학과팀은 숙제량, 시간과 내용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초등 1, 2 학년은 숙제를 내주지 않고 3~6 학년은 숙제 완성 시간이 60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중학생은 9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도 숙제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기숙형 학교는 학생의 야간 학습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숙제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숙제 설계의 질을 높여 학생이 기초적 숙제를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실천적 숙제는 강화하며 기계적인 중복 훈련을 줄여 학생 숙제가 학부모 숙제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시험관리를 강화한다. 의무교육학교 시험면제, 근거리 학교 입학을 전면 추진한다. 의무교육단계 교내 통합시험 횟수를 통제하고 초등 1, 2, 3 학년은 학기마다 1회 이하로 하며, 기타 학년은 매 학기 2회 이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식이나 방식으로든 학생 시험성과 순위의 발표를 엄격히 금지한다. 각종 경시대회 수상증서, 학과 경시대회 성적 또는 급수시험 증명 등을 학생모집 입학기준으로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각종 명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엄금한다.

시각환경을 개선한다.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해 표준에 부합하는 조절 가능한 책걸상과 자세교정기 구입을 장려하며, 학생에게 눈 사용 위생요구에 부합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일반 초·중학교, 중등직업학교 건설표준에 따라 교실, 기숙사, 도서관(열람실) 등의 채광과 조명기준을 지켜 시력건강에 유리한 조명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정원초과(大班額)’ 현상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학교 교실 조명 위생 표준은 100%를 달성한다. 학생 자리 시각, 교실 채광 조명 상황과 학생 시력 변화상황에 따라 매월 학생 자리를 조정하고 매학기 학생 책걸상 높이를 개인에 맞게 조정해 학생 성장발육 변화에 맞추도록 한다.

눈 건강체조 등 시력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한다. 초중학교는 매일 오전, 오후 각 1회씩 전체 학생의 눈 보건체조를 조직해 눈 보건체조 절차를 성실히 시행하며 눈 보건체조 전에 학생들이 손을 청결하도록 일깨워줘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연필 쥐는 자세를 정확히 하도록 지도하며 학생이 책을 읽을 때 자세를 단정히 하도록 독촉하고 학생의 불량한 독서 자세를 감독하며 수시로 교정해주어 학생이 ‘일척, 일권, 일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각성시킨다. 교사는 학생이 칠판을 잘 보지 못하거나 자주 눈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발견하면 그 시력상황을 알아야 한다.

야외 체육단련을 강화한다. 체육수업과 과외(課外)단련을 강화해 초중학생은 학교에 있을 때 매일 1시간 이상 체육활동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체육과 건강 교과과정 표준을 엄격히 시행해 초·중 1, 2학년은 매주 4교시 이상, 3~6학년과 중학생은 매주 3교시, 고등학생은 매주 2교시를 확보해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매일 30분 다커젠(大课间, 긴 쉬는 시간) 체육활동을 배치한다. 동적·정적인 것을 결부시키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가며 보게 하는 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과 수업 사이에 교실 밖으로 가서 활동하게 하거나 멀리 응시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독촉하며 학생들이 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피곤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방학기간 학생들이 가정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숙제제도를 시행해 학생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독촉 및 검사한다.

학교위생과 건강교육을 강화한다. 건강교육 관련 교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시력보호의 의의와 방법을 가르쳐 자발적으로 시력을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며, 학교 CCTV, 라디오, 광고란, 학부모회, 학부모학교 등의 형식을 적극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학적인 눈 사용, 보호 건강 교육을 하고, 학교와 학생을 통해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파장효과를 일으킨다. 건강교육교사를 교육 및 육성해 건강교육 교과자원을 개발 및 확대한다. 학생의 건강 교육 동아리 설립을 장려하고 시력건강 동반교육을 한다.

전자제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학생이 전자제품을 과학적이며 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정보화 환경에서 양호한 학습과 눈 사용 위생습관을 양성하도록 한다. 학생이 개인 휴대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을 휴대하고 수업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휴대하고 학교에 등교한 경우 통일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필요 원칙에 따라 전자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교육과 숙제를 전자제품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제품 사용은 교육시간 원칙상 총 시간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노트에 하는 숙제를 내준다.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한다. 초등학교는 의료보건기관에서 전송해온 아동 청소년 시력건강전자파일을 받아 1인당 1파일을 확보하고 학적 변화에 따라 실시간 이송한다. 위생건강부처의 지도하에 학생건강검진제도와 학기당 2회 시력검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시력이 이상한 학생은 각성 교육을 하며 개인운동처방과 보건처방을 해 제때에 학부모에게 학생을 데리고 안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도록 고지한다. 학생시력 불량 검출률, 신규 발병률 등의 보고와 통계 분석을 잘 해서 의료보건기관을 협조해 시력을 철저히 검사한다. 학교와 의료위생기관은 적시에 시력모니터링과 검사결과를 아동청소년 시력건강전자파일에 입력한다.

시력건강관리를 강화한다. 학교 지도부, 반주임, 학교의사(보건교사), 학부모대표, 학생시력보호위

원과 자원봉사자 등 학생대표를 통합한 시력건강관리팀을 구축하며 직무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한다. 근시예방지식을 수업, 캠퍼스 문화와 학생 일상행위 규범에 넣는다. 의무실(위생실, 학교병원, 보건실 등) 역량을 강화해 표준에 따라 학교의사와 필요한 약 기계설비 및 관련 모니터링 검사설비를 갖춘다.

과학적인 보육 교육을 창도한다. 3-6세 아동 학습과 발전 지침을 엄격히 시행하고 3-6세 아동 성장에 대한 생활과 게임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 ‘초등학교화(선행교육)’ 교육을 엄격히 금한다. 아동은 매일 2시간 이상 야외활동을 하고 기숙형 유치원은 3시간 이상으로 하며 그 중 체육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지역, 계절, 학령 단계의 특징과 결합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동에게 영양균형, 시력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시력보호를 촉진한다. 유치원 교사가 보육 교육업무를 할 때 TV, 프로젝터 등 설비의 사용시간을 자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3) 의료보건기관

시력파일을 구축한다. 국가 기본공공위생 서비스 중 0-6세 아동의 눈 보건과 시력검사 업무요구를 철저히 시행해 조기 모니터링, 조기 발견, 조기 경고, 조기 개입을 한다. 2019년부터 0-6세 아동의 매년 눈 보건과 시력검사 커버율을 90%이상으로 높인다. 검사 및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시력건강전자파일을 구축 및 적시에 업데이트하며 아동청소년이 입학할 때 이송한다. 학교 도움 하에, 초중등학생 시력 검사를 성실히 하고 눈 건강데이터(디옵터, 안구 안축 길이, 굴절매체 매개변수 등)를 시력 건강전자파일에 제때에 업데이트하며, 시력이상 또는 눈병의심 케이스를 검사해 개성화, 맞춤화 예방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진단치료를 규범화한다. 현금 및 이상의 종합병원은 안과 의료서비스를 전개해 <근시예방 가이드> 등 진료규범을 성실히 시행하고 눈 건강서비스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아동청소년 시각증상에 따라 과학적 시력검사 및 관련검사를 하고 명확히 진단해 진료규범에 따라 교정을 한다. 아동청소년 근시환자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해 적시에 적합한 개입과 치료 조치를 취한다. 아동청소년 고도근시 또는 병리성 근시환자에게는 질병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 예방조치를 취하게 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피하거나 위험을 낮추도록 일깨운다. 추적개입 조치를 제정해 검사 및 교정 상황을 제때에 아동청소년 시력 건강전자파일에 입력하도록 한다. 근시예방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펼쳐 근시 예방 과학연구 성과와 기술의 응용을 강화한다. 중의약의 아동청소년 근시예방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중국, 서양 의학 일체화 통합치료방안을 제정 실시하고, 중의약 특화기술과 방법을 보급 응용한다.

건강교육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근시는 공공보건문제로 건강교육부터 시작해 공공보건 서비스에 입각해 아동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주적인 건강행동을 하도록 한다. 근시예방지식 부족, 근시가 건강에 끼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공공보건, 안과, 검안학, 질병예방, 중의약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역할을 발휘해 학교, 지역사회, 가정에 적극 개입해 아동청소년 근시예방 시력건강 과학보급지식을 홍보 보급한다. 영양건강 홍보교육을 강화해 지역에 따라 영양건강 지도와 서비스를 알맞게 제정한다.

(4) 학생

건강의식을 강화한다. 학생마다 ‘각자가 자기 건강의 책임자’라는 의식을 강화해 과학적인 눈 사용, 눈 보호 등 건강의식을 자발적으로 배우며 학부모에게 알린다. 자신의 시력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시력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느껴지면 즉시 학부모와 교사에게 고지하고 하루 빨리 안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와 치료를 한다.

건강 습관을 양성한다. 근시 예방 각종 기준을 준수하고 눈 건강체조를 성실히 하며 정확한 독서 및 글씨 쓰는 자세를 유지하고, 체육단련과 야외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매주 중간 강도 체육활동에 3회 이상 참가하며 양호한 생활방식을 양성하고 밤을 새지 말고 단 것을 적게 먹고 편식하지 않으며 스스로 전자제품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

(5) 관계부처

교육부: <학교 위생 업무조례>와 <초중등학교 건강교육 지도요강> 등의 수정을 가속화한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건강교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방교육행정부처와 학교를 지도해 아동·청소년 근시예방과 시력건강관리 등 학교위생과 건강교육업무를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아동·청소년 근시 종합예방 테스트베드 업무를 수행하며 시범유도를 강화한다. 학교 체육위생 발전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학교체육장소시설을 끊임없이 완비하며 체육과 건강 교사진 구축을 가속화해 ‘교(敎, 건강지식과 운동기능)’, ‘련(練, 주기적 방과 후 훈련과 통상적 체육숙제)’, ‘새(賽, 반별·학년별·학교별 체육대회 활동의 광범위한 전개)’, ‘양(養, 건강행위와 건강생활 방식 양성)’에 포커스를 맞춰 학교체육, 건강체육 교습 개혁을 심화해 캠퍼스 체육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교육 행정부처가 기존 초중등 보건기구 건설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표준과 요구에 따라 인력과 설비 비축을 강화한다. 대학, 특히 의학대학, 고등사범대학에 검안, 건강관리, 건강교육 관련 전공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근시예방 시력건강관리 전문 인재와 건강교육교사를 육성해 아동·청소년 시력건강관리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학교 학교의(校医) 등 전담 위생기술 인력 배치상황 특별 감독 감사를 실행해 전담 위생기술 인력 수 및 관련 설비 준비 부족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관계부처와 교외(校外) 교육기관 관리, 규범화를 진행해 매년 교외 교육기관 교실 채광조명, 책·걸상 구비, 전자제품 등 목표 도달상황에 특별검사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우수 시력건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여건이 되는 지역사회에 예방기지를 건설한다. 기층 안과의사, 눈 보건 의사, 아동 보건의사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시력검사, 흔한 눈병 진료와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킨다. 검안사 육성을 강화해 각 현(시, 구) 모두 합격한 검안 전문요원이 규범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근시상황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정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전국 아동·청소년 시력건강 및 관련 위험요소 모니터링 네트워크, 데이터수집 및 정보화 구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전국 아동·청소년 근시예방과 시력건강 전문가팀을 동원해 위생건강, 교육, 체육 등 부처와 사회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아동·청소년 근시예방과 시력건강 관리업무를 과학적으로 지도한다. <초중등학생 건강검진 관리방법> 등 문서의 수정을 가속화한다. 2019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관련 강제성 표준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교재, 보조자료, 시험지, 숙제노트, 간행물 및 기타 인쇄물, 출판물 등 글자체, 종이 및 학습용 조명기구 등을 엄격히 규범화해 시력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채광과 조명

관련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학교, 탁아소 및 교외 교육기관 교실(교학장소)에 대해 ‘쌍쑤이지(双随机)’¹⁴⁸⁾ 방식으로 추출검사, 기록 및 발표를 한다.

체육총국: 아동청소년 야외활동과 체육단련에 적합한 장소시설을 늘리고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에게 개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역량을 동원해 각종 아동청소년 체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적극 인도하고 각종 겨울캠프와 여름캠프, 수련장과 체육대회 등을 목적성 있게 전개해 아동청소년이 스포츠에 광범위하게 참가하도록 하며 각급 사회체육지도원을 동원해 아동청소년이 체육단련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재정부: 투자를 합리적으로 안내해 관련 부처의 아동청소년 근시종합예방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의, 보건교사와 건강교육교사 직무평가정책을 개선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검안 및 안경사 업종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검안 관리감독과 계량 관리감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안경사 업종 질서를 정리해 안경과 안경알의 생산, 유통과 판매 등에 대한 법집행 검사를 강화하고 안경알 시장을 규범화해 불합격 안경알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두절한다. 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에 따라 허위 위법 근시예방제품 광고를 검사한다.

국가신문출판서: 온라인게임 규모를 통제해 신규 증가 온라인게임 운영수를 통제하고 국정에 부합하는 적정연령 알림제도를 모색해 미성년자 사용시간 제한 조치를 취한다.

광전총국 등 부처: 라디오 TV, 간행물, 인터넷, 뉴미디어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공익광고 등의 형식으로 다각도로 근시예방지식을 홍보 보급한다.

아동청소년 근시 예방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각 관련부처는 아동청소년 시력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며 참여해 사회 전체가 정부주도, 부처 협조, 전문가 지도, 학교교육, 가정관심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들 모두가 빛나는 눈과 밝은 미래를 갖도록 한다.

3. 심사 강화

각 성(구, 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 근시예방조치 시행을 책임지고 국무원은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각 성급 인민정부와 아동청소년 근시예방 전면강화사업 책임서를 체결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단계별로 책임서를 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아동청소년 근시예방 업무, 전체 근시율과 체질 건강상황을 정부 업적성과에 넣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 시험성적과 학교 진학률로 교육행정부처와 학교를 심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시력건강을 소양교육에 편입시키고, 아동청소년 심신건강, 학업 부담 등을 국가의무교육 품질모니터링 평가시스템에 편입시켜 아동청소년 체질건강 수준이 3년 연속 하락한 지방정부와 학교는 법규에 따라 문책한다.

148) 쌍쑤이지(双随机): 위생감독자 무작위 추출, 학교, 탁아소와 교외 교육기관 무작위 추출

전국 아동청소년 근시예방사업 평가제도를 수립한다. 평가방법은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체육총국이 제정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에서 각지의 2018년 아동청소년 근시율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2019년부터 매년 각 성(구, 시) 인민정부 아동청소년 근시예방사업 평가를 하며 결과는 사회에 발표한다.

27.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목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제재일	2018-8-31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은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지칭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류 상품과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뉴스정보,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 출판 및 문화상품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는 본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산업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 신용 체계를 구축하며, 전자상거래의 혁신적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고품질 발전 촉진, 아름다운 삶에 대한 대중의 욕구 만족, 개방형 경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을 권장한다.

제4조 국가는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 활동을 평등하게 취급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 활동의 융합 발전을 촉진시킨다. 각 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자원(自願), 평등, 공정, 성실 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률과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국무원 유관부서는 직무와 업무분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발전 촉진, 감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현황에 근거하여 해

당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관련 부서의 직무를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부합하는 협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부서, 전자상거래 업체조직, 전자상거래 경영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시장관리체계 형성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 전자상거래 업체조직은 본 조직의 정관에 따라 업체의 자율규제를 전개하고 업체규범을 수립 및 완비하며 업체의 신용을 수립하고 업체 내 경영자가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감독하고 유도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9조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自然人), 법인과 비(非)법인조직을 지칭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와 자체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 함은 전자상거래의 쌍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독립적인 거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알선, 정보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을 지칭한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지칭한다.

제1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개인이 자가생산한 농부산물·가내수공업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본인의 특기를 이용하여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 편의 서비스 및 산발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주체등기가 필요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후 조세징수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신청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병안전·재산안전 요구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종이 영수증 또는 전자 영수증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 증표를 발행하여 한다. 전자 영수증 및 종이 영수증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영업집조 정보, 경영업무에 관한 행정허가 정보, 본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주체등기가 필요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등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지체없이 공시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상거래 사업을 스스로 종료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30일 전부터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전면적이고 진실적이며 정확하고 적시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위거래, 구매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관심사·취미와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아니한 선택사항도 해당 소비자에게 동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발송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 파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끼워 파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묵시적 선택사항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와 약속하였거나 약정한 방식, 기한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 운송 과정의 리스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가 별도의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방식과 반환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신청이 보증금 반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기술적 우위, 관련 업계에 대한 통제력 및 해당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기타 경영자의 거래의존도 등 요인으로 인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

게 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사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사용자 등록 말소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사용자 등록 말소에 대한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정정·삭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사용자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정정·삭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계속하여 보관하기로 쌍방이 약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유관 주관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자상거래 데이터·정보의 제출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출한 데이터·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중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상업비밀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누설·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종사함에 있어 수출입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2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신청한 경영자에게 신분·주소지·연락방식·행정허가 등 진실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확인·등기 절차를 거친 후 등기기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 경영 사용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절(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 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영자에게는 법에 따라 등기 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시장 감독관리부서를 협조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춰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영자를 위하여 등기상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조세징수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납세 관련 정보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주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본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본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이버 보안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사이버 보안 사건 긴급대비책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이버 보안 사건 발생 시 즉시 긴급대비책을 가동하여 해당 구제 조치를 취하고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온전성·비밀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는 거래완성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플랫폼 가입·탈퇴,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자 및 소비자가 편리하고 온전하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을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각 측이 적시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내용은 실시되기 7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개정내용을 수락할 수 없어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탈퇴를 저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정 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따라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거래규칙 및 기술 등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내 거래, 거래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플랫폼 내 경영자로부터 불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에서 자체운영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자체운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개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표시를 뚜렷하게 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자체운영 표시가 된 업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상품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사책임을 진다.

제3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병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 또는 마땅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자격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신용평가 규칙을 공시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위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판매량·신용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노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보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로부터 권리 침해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내용을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통보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가해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으로 사실이 왜곡된 통보를 발송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2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3조 플랫폼 내 경영자는 통보내용을 전달받은 후 권리침해 행위 부재 성명문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성명문에는 권리침해 행위의 부재를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문을 제출받은 후 권리 침해 통보를 발송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해당 성명문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유관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성명문을 전달한 후 15일 내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기(既) 신고·제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이미 취한 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본 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통보, 성명문 및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마땅히 인지했어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또는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46조 본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따라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저장·물류·지급결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호가집중·시장조성자 등 집중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전자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 전자상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은 동 장(章)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자동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전자상거래에서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발표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가 청약의 요건에 부합되고 사용자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문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표준약관 등 방식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이 불성립된다는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약관 등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그 내용은 무효하다.

제5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계약체결 절차, 주의사항,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 사항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전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편리하고 온전하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사용자가 주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계약의 목적이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택배물류의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화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이 서비스 제공인 경우 생성된 전자증빙 또는 실물증빙에 기재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상기 증빙에 시점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재된 시점이 실제 서비스 제공시점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계약 목적물을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인도하는 경우 계약 목적물이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도착하였고 검색·식별이 가능해진 시점을 인도 시점으로 한다.

인도 방식·시점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52조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택배물류 방식으로 상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택배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약속한 서비스 규범과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상품 인도 시 수화인에게 면전에서 택배물을 검사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타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수화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감량화와 재이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대금 대리수령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전자지급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기능, 이용방법, 주의사항, 관련 리스크와 수수료 기준 등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지급결제 명령의 온전성, 일치성, 추적·감사 가능성, 변조 불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장부 검산 서비스와 최근 3년간의 거래기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국가의 결제안전관리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마땅히 배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5조 사용자는 지급결제 명령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급결제 명령에 포함된 금액, 수취인 등 제반 정보에 오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급결제 명령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급결제 오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6조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지급결제 완성 후, 지체없이 약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확한 지급결제 확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자는 거래 비밀번호, 전자서명 데이터 등 보안 수단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보안 수단을 분실하였거나 도용당하였거나 수권 없이 지급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권 없이 이뤄진 지급결제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권 없이 지급결제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수권이 결여된 지급명령을 발견하였거나 사용자로부터 수권이 결여된 지급명령임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실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제58조 국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유리한 상품·서비스 품질 보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권익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 쌍방은 소비자 권익 보증금의 인출액수, 관리, 사용 및 반환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배상금 선지급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배상금 선지급 후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신고·제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신고·제보 방식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제보 사항을 지체없이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전자상거래 분쟁은 협상·화해, 소비자조직·업계협회 또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타 조정조직에 조정 신청, 유관부서에 신고, 중재 신청, 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61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플랫폼 내 경영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가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자상거래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시계약 및 거래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기 자료를 분실, 위조, 변조, 소각, 은닉하였거나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인민법원·중재기구 또는 유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온라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분쟁해결 규칙을 제정 및 공시하여 자발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제5장 전자상거래의 촉진

제64조 국무원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과학적·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65조 국무원과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친환경적 포장·저장·운송 지원·추진 조치를 취하여 전자상거래의 친환경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66조 국가는 전자상거래 기반시설 및 물류망 구축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통계제도를 완비하며 전자상거래 표준체계 수립을 강화한다.

제67조 국가는 국민경제 각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응용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와 각 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한다.

제68조 국가는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 분야에서의 인터넷 기술 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자원이 협력을 강화하여 농촌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며, 정밀화 빈곤구조 사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9조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며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개발·응용을 권장하고 전자상거래 데이터의 적법하고 질서있는 자유 유통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공공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적법한 이용을 촉진한다.

제70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용평가기구가 전자상거래 신용평가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1조 국가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춘 세관, 조세, 출입국 검사·검역, 지급결제 등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며, 다국적 전자상거래 각 단계의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등이 다국적 전자상거래를 위해 저장·물류, 통관, 검사·검역 신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는 소형·초소형 기업이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72조 국가수출입관리부서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세관신고, 세금납부, 검사·검역 등 단계의 종합서비스 및 감독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감독관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정보 공유, 감독관리 상호인정, 법 집행 상호협력을 실현하며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서비스 및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전자서류에 의거하여 국가수출입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73조 국가는 기타 국가·지역과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규칙의 제정에 참여하며 전자서명·전자신분 등의 국제 상호인정을 촉진시킨다.

국가는 기타 국가·지역과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74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7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본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어기고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상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거나 본 법 제25조에 규정된 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법 제46조의 규정을 어기고 집중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6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1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경우 본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영업집조 정보, 행정허가 정보, 시장주체등기가 필요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등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전자상거래 사업 종료에 관한 정보를 초기화면의 뚜렷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사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사용자 등록 말소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사용자 등록 말소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77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본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상품·서비스를 끼워 판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78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본 법 제21조의 규정을 어기고 보증금 반환방식과 반환절차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적인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하거나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79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법률·행정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법 제30조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사이버 보안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휴업정돈 명령을 내리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1) 본 법 제27조에 규정한 확인·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법 제28조의 규정을 어기고 시장감독관리부서, 세무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법 제29조의 규정을 어기고 법 위반에 대한 필요한 처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본 법 제31조에 규정한 상품·서비스 정보, 거래정보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8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아래에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거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을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시간에 맞춰 개정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탈퇴를 저지하는 경우
 - (3) 현저한 방식으로 자체운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개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평가를 무단 삭제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상품·서비스를 노출시킴에 있어 본 법 제40조의 규정을 어기고 ‘광고’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법 제35조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거래, 거래가격 또는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로부터 불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8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법 제38조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자질·자격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휴업정돈을 명하고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8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법 제42조, 제45조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 지적재산권 행정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8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어기고 신병안전·재산안전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거나 허위 상업홍보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실시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행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 소비자 권익 침해 등 행위를 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6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본 법에 규정한 위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공시한다.

제87조 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인력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무 이행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및 상업비밀을 누설·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88조 본 법에 대한 위반이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89조 본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제목	关于加强网络直播答题节目管理的通知（新广电发〔2018〕26号）
게재일	2018-2-14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올해부터 일부 인터넷 플랫폼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퀴즈프로그램에 많은 네티즌들이 앞다투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 전달의 축진이 이루어지는 반면,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부 플랫폼은 법이 정한 시청각 프로그램의 생중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심사시스템 미비로 많은 편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단순히 방문자수와 클릭 수만 추구하고, 저속하고 통속적인 내용으로 눈요기용으로 전락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하게 되었다. 이에 인터넷방송 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업무 분류 목록(시행)의 조정에 관한 통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생중계 서비스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의 관리 강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정확한 방향 유지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은 정확한 정치적 방향과 가치관, 심미관을 갖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사회주의 선진문화 선양 및 건전하고 유익한 지식 전파에 주력한다.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은 국가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내용 즉, 저속하고 통속적이며 방송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내용, 과도하게 오락화하거나 배금주의적이며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퀴즈프로그램 내에서 과도한 마케팅이나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진입관리 시행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모든 플랫폼은 반드시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가 발급하는 <정보 인터넷 방송 시청각 프로그램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항목에 ‘제1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제5항’ 혹은 ‘제2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제7항’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술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은 인터넷 생방송 퀴즈프로그램 개설을 할 수 없다.

3. 엄격한 등록 심사

인터넷 생방송 퀴즈프로그램 개설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관리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5일 전에 생방송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 정보를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생방송 서비스 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통과된 후 온라인 송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생방송 퀴즈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허가증 소지 기관이 ‘제1류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스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 및 선택항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심의 의견과 심의 인원의 정보는 등록 정보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2류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 단계에서 문제와 답 내용 및 선택항목에 대한 신청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방송될 수 없다. 중앙 인터넷 시청매체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심의를 신청하고, 지방 인터넷 시청 매체는 소속지역 성급 신문출판광전 행정부서에 심의를 신청한다.

4. 주체적 책임 정착

여건에 부합하는 인터넷 생방송 퀴즈플랫폼은 건전한 내부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편집장 콘텐츠 관리 책임제를 강화하여 심의인원 및 팀을 배정하고 긴급 상황, 댓글 자막 평론, 회원계정, 신고 접수 등의 관리방법과 세칙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심의에 대한 책임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문제 발생시 바로 송출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생방송한 내용은 녹화본을 60일 동안 보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프로그램 진행자 관리 강화

인터넷 생방송 퀴즈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반드시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자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도덕적 품격과 직업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당이 추구하는 바와 궤를 달리하거나, 품행이 바르지 않거나 사상격조가 낮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추문이 무성한 사람은 퀴즈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 수 없다.

6. 감독관리 강화

신문출판광전 부서와 동급 인터넷안전과 공업정보화 관련부서는 이미 진행된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을 정리 정돈하여 자격 미비 플랫폼에 대해 법령에 의거하여 정지를 명령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한편, 업계의 과도한 열기를 조정하며 일상적인 감독관리와 정기적 심사를 강화하고 네티즌의 신고를 수리하여 위법사항 발견 즉시 대응조치를 취한다. 또한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에 대해 제보제도를 도입하여 네티즌의 참여와 감독을 확대한다.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여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에 대한 네티즌의 이성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인터넷 생중계 퀴즈프로그램 플랫폼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을 위해 지도 감독하며, 실행주체의 부적절한 책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통지한다.

29.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제목	关于印发《新闻出版广播影视企业版权资产管理工作的指引（试行）》的通知
게재일	2018-2-13
출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혁판공실의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광전국 개혁판공실, 각 유관 기관:

당의 19차 대표대회 정신을 관철 집행하기 위해 검토 결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혁판공실은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저작권 자산관리사업 지침서(시행)>(이하 약칭 ‘<지침서>’)를 제정하여 각 수신 기관으로 배부하며, 관련 사항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자산 관리 업무를 극도로 중요시해야 한다.

저작권 자산은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저작권 자산 관리 업무를 잘 하는 것은 국무원의 <‘13.5’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운영 계획>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 ‘13.5’ 발전 계획>을 관철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과학적인 고효율의 저작권 자산 관리 업무 진행은 신문출판방송영상 업계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저작권 자산이 기업의 우수한 자산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고 기업의 혁신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저작권 자산 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국(局) 개혁판공실, 각 유관 기관은 각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지침서>가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에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국 개혁판공실은 매년 연말 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혁판공실로 연간 사업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계획발전사(司)(개혁판공실)로 보고해야 한다.

3. 선진 경험을 정리하여 홍보해야 한다.

각 성(구, 시) 국 개혁판공실, 각 유관 기관은 저작권 자산관리사업의 선진 경험을 정리하고 보급하도록 강화해야 하며, 매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혁판공실로 저작권 자산관리사업의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개혁판공실은 전문가의 심사승인을 거친 우수 기업(기관)에 대해 적당한 형식으로 표창하고 그들의 우수 경험을 홍보 확대한다.

판권자산은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의 핵심자산이다.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판권 자산관리사업을 전개하도록 촉진하고, 기업이 판권 자산관리 운영에서 안정적인 경쟁우위와 수익창출능력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며, 국유 판권 자산권익을 보장 및 향상시키는 한편, 내부 제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권력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본 지침서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지침서에서 지칭하는 판권자산, 즉 저작권자산이란 기업이 확보 또는 통제하는,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고, 기대했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작권의 재산권익과 판권 관련 권리의 자산권익을 말한다.

제2조 본 지침서에서 지칭하는 판권자산관리란 판권자산을 기업의 핵심관리범주에 편입시키고, 기획, 실시, 검사, 개선을 통해 판권자산에 대해 조직, 조율, 구입하여 가치 보존과 증식을 촉진하는 관리과정을 말한다. 판권자산관리가 준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법적 준수: 법률·법규, 행정규정과 관련 관리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 (2) 전체 생명주기 관리: 판권자산의 형성, 사용, 거래, 처분 등 전체 분야를 포함한다.
- (3) 소유권 분명: 판권자산의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과 처분권이 명확하다.
- (4) 시스템 관리: 정책결정, 계획, 조직, 지도, 감독규제, 분석 등이 포함되며, 기업의 판권자산 통합과 개별적인 상황을 실시간 정확하고 완비하게 반영할 수 있다.
- (5) 지속적인 개선: 기획과 기술 지도를 통해 기존 판권자산관리사업의 운영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내부 전략에 적응하는 조정 및 외부 환경의 변화를 꾸준히 개선한다.

제3조 기업 판권자산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 책임을 확정하고, 조직기관을 설립
- (2) 업무운영 프로세스 개선
- (3) 관리제도 수립
- (4) 자산실사와 장부작성
- (5) 업무 집행과 감독
- (6) 실적심사와 지속적인 개선

여건이 허용되는 기업은 정보화 관리도구, 외부 관리평가 등을 운용하여 판권자산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기관 및 인원

제4조 기업은 최고 경영진 가운데 전문인력을 경영자 대표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1) 기업의 실재에 부합하는 판권자산관리 방침과 목표를 제정한다.

- (2) 판권자산관리 활동을 기업의 구체적인 업무에 편입시키는 것을 책임진다.
- (3) 기업 판권자산관리 제도적 문헌의 발표, 수정 또는 폐지를 책임진다.
- (4) 판권자산관리 실적 제정과 개선을 책임진다.
- (5) 판권자산관리사업의 운영과 개선에서 필요로 하는 각 자원 적용을 책임진다.
- (6) 직원의 판권자산관리 원칙, 방침, 목표에 대한 이해 보장을 책임진다.
- (7) 판권자산관리사업의 중요한 사무와 관련한 외부 의사소통을 책임진다.

제5조 기업은 판권자산관리 기관 또는 일자리를 구축하고,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 직원을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1) 판권자산관리 방침, 목표, 제도적 문헌의 집행을 책임진다.
- (2) 역년(CY)에 따라 판권자산관리 사업계획을 제정한다.
- (3) 판권자산관리 실적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4) 기타 부문이 참여하는 판권자산관리사업을 감독 및 평가한다.
- (5) 일상적인 판권자산관리사업을 책임지며, 심사승인 또는 권한부여 심사승인 관련 프로세스 권한, 판권자산관리 장부 갱신 및 관련 관리시스템 정보 등이 포함된다.
- (6) 기타 본 기업의 판권사업이다.

기업은 임직여건을 확정하고, 적당한 조치를 채택해 지식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이직 시에는 이직 지식재산권 협정과 경업제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4장 제도 및 장부

제16조 기업은 해당 산업의 특징에 따라 본 기업에 적합한 판권자산관리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구입, 교환, 증여받음, 사용, 판매, 운영, 재무기록 등에 비추어 제도형식으로 정책결정 권한, 업무프로세스, 운영규범 및 직무를 제정하고, 또한 기업내부 상벌제도를 개선하여 판권자산의 유용, 유실 등에 대해 문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17조 기업은 판권자산관리 장부를 구축하고, 장부표 방식으로 판권자산 상태를 반영하는 각 정보를 기록하며, 장부 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1) 완비성: 판권자산의 기본정보에 대해 상세하고 완비하게 기록한다.
- (2) 정확성: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설명이 분명하고, 식별에 용이해야 한다.
- (3) 관련성: 각 판권자산 정보 및 대응되는 계약서, 소유권 증명문헌, 작품샘플과 기타 내용 저장매체 그리고 판권자산과 관련된 문서자료는 관련성을 지니며, 실시간 일치를 달성하여 검색에 편의를 제공한다.

여건이 되는 기업은 판권자산관리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유지보호 및 적시에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기업의 판권자산관리 장부의 데이터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품정보: 저작권자의 정보, 작품 명칭, 작품 유형, 창작 수행시간, 발표시간 등이 포함된다.
- (2) 권리정보: 구체적인 권리항목, 권리 유효기간, 지역 및 기타 제한조건이 포함된다.
- (3) 회전정보: 기업의 역대 자주적 사용과 판매 계약서 번호, 체결일, 사용과 구체적인

판매방식, 판매지역 기한 등이 포함된다.

(4) 소속권 증명문서 보존정보: 계약서, 작품 판권 등록증서, 권한부여 문서, 인증문서 등이 포함된다.

(5) 관련 내용 저장정보: 판권자산과 관련된 작품샘플 저장매체의 유형, 수량, 번호, 저장지 등이 포함된다.

(6) 관련 작품정보: 작품 작성 등은 관련 작품의 명칭, 유형, 소속관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5장 실적 심사 및 지속적인 개선

제19조 기업은 판권자산관리 실적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되,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판권자산관리 제도와 계획을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직무에 세분화시켜야 한다.

(2) 판권자산 창작 및 이용에 참여하는 부문에 대해 계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실적변화를 추적하고, 계량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3) 직원의 판권자산 형성, 관리와 운영분야에서의 인센티브와 보수를 확정한다.

(4) 직원의 판권자산 손실 책임을 확정한다.

제20조 기업은 정기적으로 판권자산관리의 전반 효과에 대한 내부 심사를 확보해야 하며, 최소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판권자산관리제도의 유효성과 실행가능성

(2) 판권자산관리 실적

(3) 판권자산관리의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

(4) 판권자산관리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5) 판권자산의 리스크 및 기회

여건이 되는 기업은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외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21조 판권자산에 대한 생성과 운용은 판권 행정관리부서에 작품 판권,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며,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확립한다.

제22조 기업이 본 지침서와 결부하여 자체 판권자산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산업표준과 국가표준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3조 본 지침서는 신문출판방송영상 기업 및 기업 관리를 보급하는 사업기관에 적용된다.

제3장 일상관리

제6조 기업의 판권자산은 창작, 구매, 할당, 교환, 임대 또는 증여받는 등의 루트로 이루어지며 주로 내부사용, 매각, 증여, 임대, 청산 등 방식으로 이용된다. 본 지침서에서는 창작, 구매로 이루어진 판권자산의 일상관리 및 판권자산의 자주적인 사용과 판매 시의 일상관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제7조 기업이 창작방식을 통해 판권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일상관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본 기업의 직원 또는 관련 인력을 동원해 단체 창작으로 법인 작품을 형성하는 경우, 창작에 참여하는 인력과 미리 계약 체결 등의 방식을 통해 작품의 판권이 해당 창작을 동원한 기업의 소유임을 명시한다.
- (2) 기업의 직원이 직무 창작으로 직무 작품을 형성하는 경우, 창작에 참여하는 직원과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이 작품의 서명권 이외의 기타 판권 권리와 이익을 보유하거나 직원이 판권의 일부 재산권을 보유한다고 약속한다.
- (3) 협력 창작으로 작품을 형성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기업이 단독 또는 창작에 참여한 각 측과 공동으로 작품의 판권을 보유한다고 명확히 하며 이와 더불어 각 측의 관련 수익의 배분, 판권 사용의 방식, 양도 허가의 권한 등을 명확히 약속한다.
- (4) 위탁 창작하는 작품은 수탁자와 판권의 소유권이 기업에게 있음을 미리 약속하고 계약서에 지급 대가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속한다.
- (5) 기업과 직원은 원칙적으로 입사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업무 성과물의 판권이 기업의 소유임을 명시한다.
- (6) 입안에서 창작 완료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파일을 작성한다.
- (7) 프로젝트별로 예산 통제와 원가 계산을 진행한다.

제8조 기업이 구매방식을 통해 판권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일상관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권리 침해 작품 또는 소유권 분쟁이 있는 작품의 구입을 피하기 위해 구입 전, 관련 판권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 측에 판권 소유권 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 (2) 계약서를 체결하여 판권의 소유권, 양도 또는 사용 허가 범위, 기간 및 재라이선싱, 권리하자담보책임, 위약책임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3) 향후의 사용, 판매 조건 또는 파생된 권리의 판매 조건과 수익 배분 비율 및 수익 배분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 (4) 원칙적으로 판권 권리에 대한 저작권법 등 법률 법규의 세분화 규정을 기준으로 관련 권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절대로 모호하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 (5) 구매가격이 비교적 높은 판권의 경우, 상응하는 의사결정 절차와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개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또는 단일 부서 내부의 의사결정을 피해야 한다.

제9조 기업이 자주적으로 판권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일상관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사용 전에 판권자산의 소유권, 사용방식, 기간, 지역 등 제한조건을 재확인해야 한

다.

- (2) 기업의 자체 업무 행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소속부서와 개인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사용부서, 사용자, 사용일자, 용도 등을 포함한 판권 자산의 사용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4) 전파하는 최종 상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판권은 **(업체명칭)소유임” 등의 유사한 성명서 또는 판권 관리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5) 판권 자산의 가치의 변화를 추적 기록해야 한다.

제10조 기업이 판권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상관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판매 전, 판권 자산의 권리와 이익의 범위 및 소유권, 사용방식, 기간, 지역 등 제한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 (2) 구체적인 매각 유형, 즉 양도 또는 사용 허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3) 서면계약을 체결해 매각하는 구체적인 권리 내역, 기간, 지역과 기타 제한 조건, 라이선싱 또는 파생된 권리의 라이선스 수익배분 비율 및 수익의 배분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 (4) 소속 업계의 특징에 따라 비교적 큰 목적물의 판권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평가와 가격 경쟁 및 가격 협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 (5) 판권자산의 가치의 변화를 추적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은 판권자산 파일 일상관리를 진행하며, 예의주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산의 형성분야에 대해 구축한 파일, 계약서, 판권 등록증명 등 소속권 증명문헌은 고정 장소에서 관리해야 한다.
- (2) 판권자산 장부와 데이터정보 플랫폼 관련 기록은 예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3) 판권자산 관련 작품샘플 저장은 안전등급 보호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4) 행정결정, 사법판결, 경고장 등 판권자산과 관련한 외부 정보자료에 대해 수납하며, 출처 및 취득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 (5) 보류한 부합성 증거로서의 문헌은 보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변경을 방지해야 한다.
- (6) 판권자산 생명주기 만료 전의 조사, 파일보존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판권자산 데이터 정보를 갱신하고, 필요한 당사자와 자산상태를 교류한다.
- (7) 기업의 이익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사건, 예를 들면 판권자산 소속권 문헌 분실 훼손, 장부표 훼손, 작품샘플 또는 저장매체 훼손 분실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12조 기업은 담보, 투자, 판매 등 행위의 발생과 일상관리 시에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 판권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1) 담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 실제상황에 따라 시장가격 또는 담보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그리고 금융 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론의 가치유형을 선정할 수 있다.
- (2) 투자, 판매 등 거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가치 또는 투자가치를 선정한다.

(3)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준칙 관련 요구에 따라 대응되는 가치유형을 선정한다.

제13조 기업은 판권자산 위험제어와 권리수호에 대한 일상관리를 진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1) 일치성·완비성·실효성이 강한 위험제어, 권익보호 전략의 실시를 권장한다.
- (2) 판권자산 리스크 검색, 식별, 경보 및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3) 기획, 홍보, 컨벤션 등 비즈니스행사에서 판권자산 관련 작품 샘플과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위험회피 프로세스를 제정해야 한다.

여건이 되는 기업은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은 판권자산 일상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판권자산관리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관리능력의 지속적인 제고를 확보한다.
- (2) 전체 직원에 대해 업무분야와 부서요구에 따라 주안점이 서로 다른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직원이 판권자산관리의 의미, 이념 및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운영을 숙지하도록 촉진한다.
- (3) 중/고위 경영자를 상대로 판권자산관리 전략과 책략에 대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제15조 기업은 소속업종 현황과 자체 실제와 결부하여 <기업회계준칙> 등에 따라 동 기업의 판권자산 기준 및 계량과 상각방법 등을 확정할 수 있으며, 동 기업의 판권자산을 재무제표에 편입시키고 가치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30.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제목	工信部将制定加快推进虚拟现实产业发展指导意见
제재일	2018-5-21
출처	공업정보화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공업정보화부 가상현실(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전망

최근에 개최된 ‘2018 세계 VR산업 대회 언론 브리핑’에서 공업정보화부 전자정보사(工信部电子信息司)는 <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의 정책적 문건을 구성 및 제정하고, 5개 분야를 통해 VR산업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 중국의 VR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산업 혁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VR산업 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VR산업 시장규모는 이미 160억 위안에 이르렀고, 전년대비 164% 증가했다. 중국은 VR 핵심 기술 제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돌파하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부 기술은 세계에서 선두수준이다.

공업정보화부는 VR산업의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하며 2016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 혁신발전 전문 계획(2016-2018년)>을 공동 제정하여 VR 장비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제품 기능, 성능 및 산업 디자인 수준을 높이며 VR, AR의 핵심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신형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신형 모니터 부품, 동적 환경 모델링 및 센서 등 기술 연구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7년 공업정보화부는 NED, GPU 렌더링(rendering) 등 5대 VR 핵심 기술을 <산업 핵심 범용기술 발전 지침서(2017년)>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공업정보화부는 <VR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정책적 문건을 구성 및 제정하여 5대 분야를 통해 VR산업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1) 전략적 차원에서 VR산업의 발전목표, 발전경로와 중점업무를 계획한다. 2) VR의 핵심기술 및 핵심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용(产学研用)의 협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기초이론, 범용기술과 응용기술의 연구를 추진하고, VR 시스템 장비, 감지 인터랙티브 장비 등 제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3) VR 기술과 기타 업무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VR+’ 전략을 실시하며 실용성이 강하고 시범성이 좋은 VR 기술과 제품의 중점업체, 이색 분야에서의 보급응용을 확대한다. 4) VR산업의 발전 수요에 따라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기술해결, 성과이전, 테스트 확대, 정보 교류, 혁신 인큐베이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5) 표준의 산업에 대한 유도 지원 역할을 발휘하고 표준체계의 톱 레벨 디자인을 강화하며, 기초적·공익성·핵심적 기술과 제품의 국가/산업 표준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제목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제재일	2019-03-15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목록

- 제1장 총 칙
- 제2장 투자촉진
- 제3장 투자보호
- 제4장 투자관리
- 제5장 법률책임
-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외상투자를 촉진하며 외상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외상투자관리를 규범화하며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경내)에서의 외상투자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자)이 중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 (1) 외국 투자자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 (2)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권익(财产份额)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 (3) 외국 투자자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 (5) 본 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투자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등기 등록을 거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외국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수준 높은 투자자유화·편의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 투자자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상 가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 +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전(前)항에서 말하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는 투자진입단계에서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가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분야에서 외상투자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입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외상투자자에 대해 국민대우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표 또는 비준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은 외국투자자 진입 대우에 대해 더욱 우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내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외상투자촉진, 보호와 관리 업무를 한다. 국무원 기타관련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외상투자촉진, 보호와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법규와 본급(本级) 인민정부가确定的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외상투자촉진, 보호와 관리업무를 한다.

제8조 외국투자기업 직원들은 법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여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외상투자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 노조를 위해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장을 제정하려면 알맞은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구해야 한다.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적인 문서, 재판문서 등은 법에 따라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완비된 외상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항목 정보 등 분야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와 기타국가 및 지역, 국제기구 등 다자, 쌍방 투자 촉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투자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치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 시험적 정책 조치를 시행하여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특정 업종·분야·지역에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표준제정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할 것을 보장하고 표준제정 정보 공개와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가 제정한 강제적 표준은 외상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 제16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은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한다.
- 제17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 회사채 등 증권 발행과 기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제18조 현금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외상투자촉진과 편의화 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반드시 편리하고 고효율적이며 투명한 원칙에 따라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효율을 제고하며 정책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상투자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 관련 주관부서는 외상투자 가이드를 편성 공포하여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투자보호

- 제20조 국가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하지 않는다.
-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징수 또는 징용을 할 수 있다. 징수, 징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제 때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제21조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 허가 사용료, 법에 따라 획득한 보상 또는 배상, 정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당발, 타발송금할 수 있다.
- 제22조 국가는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과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책임을 묻는다
- 국가는 외상투자과정에서 자발적 원칙과 상업 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협력을 할 것을 장려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실무자는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을 강제 이전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실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상업기밀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에 부쳐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4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외상투자에 관한 규범적인 문서를 제정하며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근거 없이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감소시키거나 그 의무를 증가시켜선 안 되고 시장진입과 퇴출조건을 설치해서도 안 되며 외상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법에 따른 정책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정책 약속, 계약 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입게 된 손실은 법에 따라 보상한다.
- 제26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 민원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 때 처리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조화롭게 완비한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여길 경우, 외상투자기업 민원 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신청해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여길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민원 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신청해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행정 재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7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회, 협회를 설립하고 자원하여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규장에 따라 관련활동을 하며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해선 안 된다.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투자 제한 분야에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하려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외자(内外资)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29조 외상투자는 투자항목 심사비준, 준비를 해야 하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부서는 내자(内资, 내국인 투자)와 일치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31조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그 활동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동업 기업법>등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상투자기업이 생산 경영활동을 하려면 법률, 행정법규 관련 노동보호, 사회보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 회계, 외환 등 사무를 처리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는다.

제33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 인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 집중(经营者集中, 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에 참여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경영자 집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를 구축한다.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등록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 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히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서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정보는 더 이상 보고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가는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구축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검사를 한다.

법에 따라 내린 안전 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5장 법률책임

- 제36조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를 금지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투자활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주식, 자산 처분 또는 기타 필요조치를 취해 투자 전 상태로 회복시킨다.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적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특별관리조치 요구를 만족시킨다.
-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앞의 두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 제37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 외상투자정보 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10만 위안 이상~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8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시스템에 올린다.
- 제39조 행정기관의 직원이 외상투자촉진, 보호와 관리 업무 중 직권남용, 직무 소홀, 사리사욕에 의한 불법 행위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 제40조 임의의 국가 또는 지역이 투자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 조치를 취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1조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권 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국가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 본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본 법 시행 후 5년간은 기존 기업조직형식 등을 계속해서 존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32.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판)

제목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게재일	2019-6-30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1.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분 권리 및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 투자 진출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음.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분야는 내·외자와 같은 원칙으로 관리를 실시함.
2.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일부 분야의 진출 제한 과도기를 취소하거나 완화하였는데 과도기 만료 후엔 진출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할 예정임.
3. 외국인 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됨.
4. 외국인 투자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으며 「네거티브 리스트」의 금지가 아닌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을 허가받고 진행해야함.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 외국인투자동업(合伙)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5. 외국인 투자 프로그램과 기업 설립 및 변경사항이 관련된 중국내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와 관계있는 중국 내 회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함.
6. 「네거티브 리스트」에 나열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함.
7.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보충협약, 「내륙지역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보충협약, 「해협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후속적 협약, 중국이 관련 국가 와 체결한 자유무역구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조건이 맞는 투자자 에게 더 우대하는 개방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협의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8.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및 관련 부서가 설명을 담당함.

연번	특별관리조치
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옥수수 신품종 선종, 육종 및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비율은 34%보다 높을 것
(2)	중국의 희귀 및 특유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재배업, 목축업, 수산업 우량 유전자 포함)
(3)	농작물, 종축·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 선종·육종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 (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어획에 대한 투자 금지
나. 광업	
(5)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투자 금지
다.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배주 주여야 함.
(7)	방사성 광산 제련, 가공, 핵연료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8)	한약편(片)의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 제제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9)	전용차 신에너지차량 제외, 완성차 제조는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미만일 수 없으며 동일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내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두 개 또는 그 이하로 설립 가능. (2020년 상용차 제조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2022년 승용차 제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 제한과 동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 기업을 두 개 또는 그 이하로 설립 가능한 제한을 철폐)
(10)	위성 TV 방송의 지상 수신 시설 및 중요 부품 생산
라. 전기·난방·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11)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영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12)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배수 공급 시스템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마. 도매 및 소매업	
(13)	연초, 궐련, 이중건조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소매에 대한 투자 금지

연번	특별관리조치
바. 교통운송, 창고와 우편업	
(14)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일 것
(15)	공공항공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하고 1개의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기업의 투자비율은 25%를 넘을 수 없으며 법정대표는 중국 국적자가 담당해야 함. (중국 공공항공 운송기업만 중국내 항공 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고, 중국지정 운송계약업자는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국제 항공서비스를 제공 함)
(16)	일반항공 서비스의 법정대표는 중국 국적자가 담당해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 일반항공회사는 합자로 제한되고,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 주여야 함.
(17)	민간용 공항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18)	공중교통 관제에 대한 투자 금지.
(19)	우정회사, 우편물의 국내 속달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
사.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20)	통신회사 :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업에 국한함. 부가통신 사업의 외자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 중국 내 멀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저장 전송류,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사업은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경영측은 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초통신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일 것)
(21)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 발표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금지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내용 제외).
아. 금융업	
(22)	증권회사의 외국인투자자 비율은 51%를 초과할 수 없고 증권 투자기금관리회사의 외국인투자자 비율은 51%를 초과할 수 없음(2021년 외자비율 제한 철폐)
(23)	선물회사의 외국인투자자 비율은 51%를 초과할 수 없음 (2021년 외자비율 제한 철폐)
(24)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투자자 비율은 51%를 초과할 수 없음 (2021년 외자비율 제한 철폐)
자.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25)	중국법률사무에 대한 투자 금지 (중국 법률 환경과 영향에 대한 정보제공 제외) 중국내 변호사사무소의 합작 파트너일 수 없음.
(26)	시장조사는 합자, 합작에 한하며 라디오방송 청취율, TV방송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연번	특별관리조치
(27)	사회조사에 대한 투자 금지
차.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28)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치료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대한 투자 금지
(29)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 금지
(30)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선 측량, 지형도/세계행정지도/중국행정지도/성급 및 그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전국 교육용 지도/지방 교육용지도/3D 지도와 네비게이션 디지털 지도의 편집 제작, 지역 지질도 작성/광산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수문지질/환경지질/지질재해/원격지 지질 등 조사에 대한 투자 금지
카. 교육	
(31)	유아교육기구,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구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인 중외합작경영으로 제한 (교장 혹은 주요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이고 중국 내 거주 할 것, 이사회, 동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원은 1/2보다 적으면 안 됨).
(32)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금지
타. 위생 및 사회사업	
(33)	의료기관은 합자와 합작에 국한
하. 문화, 체육 및 오락업	
(34)	언론기구 통신사에 대한 투자 금지
(35)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
(36)	각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 기지, 감측소 및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에 대한 투자 금지. 라디오·TV영상·VOD 서비스 및 위성 라디오·TV방송 지면??시설 설치 서비스 종사 금지 (외국 위성채널의 방송은 심사 허가제도 실행)
(37)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수입 포함)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38)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사, 영화 수입 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
(39)	문화재를 경매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상점, 국유박물관에 대한 투자 금지
(40)	문화예술 공연단체는 중국 측이 지배주주여야 함.

33. 과기부 등 6개 부문의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제목	关于促进文化和科技深度融合的指导意见（国科发高〔2019〕280号）
제재일	2019-8-13
출처	과학기술부, 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재정부, 문화와 관광부, 광파전시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의 과학기술청(위원회, 국), 당위선전부, 인터넷정보판공실, 재정청(국), 문화 관광청(국), 광파전시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과학기술국, 당위선전부, 인터넷정보판공실, 재정국, 문화체육신문출판광전국:

문화와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촉진하여 문화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문화의 발전 방식을 전환하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더욱 나은 빠른 발전을 추진하여, 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의 새로운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 대중의 향유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부, 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재정부와 문화와 관광부, 광파전시총국에서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제정한다. 이에 공표하니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과학기술부, 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재정부, 문화와 관광부, 광파전시총국

2019년 8월 13일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사업을 매우 중시하며, 사상문화 선전 전선에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일련의 전략을 수립해왔고, 특히 옴니미디어(omnimedia)¹⁴⁹⁾ 시대의 미디어 융합 발전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현재 국가는 인터넷 강국 건설에 대한 총체적 배치를 하고, 디지털 경제발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며, 인터넷 발전 및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건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문화와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은 여전히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과학기술의 문화건설에 대한 뒷받침 작용 잠재력이 여전히 충분히 계발되지 않아 관련 부처와 지방에서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 촉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 의견을 제시한다.

149)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텔레콤, 위성통신 등 전송 매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각, 청각, 이미지, 촉각 등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을 포함할 뿐 아니라 대중의 서로 다른 수요에 맞춰 가장 적합한 미디어 형태와 통로를 선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퍼뜨리는 것

1. 전체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공산당 제19기 제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켜, 전국 과학기술혁신대회 철저 실시 및 사상업무회의 정신의 전국적인 선전으로 사회주의 선진문화가 발전할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응집력과 지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문화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문화 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더 나은 빠른 발전을 추진하고 정신문화 생활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 대중의 향유감과 행복감을 높인다.

(2) 기본원칙

문화건설의 중대한 수요를 대함에 있어, 문화과학기술 발전추세를 파악하고, 국제 과학기술의 선두를 정확히 겨냥하며, 주요 공략 방향과 돌파구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의 ‘마지막 1 킬로미터’ 까지 공략하여 각 주체의 혁신 활력을 이끌어 내 더 많은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양질의 문화 공급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수요 지향을 견지한다. 아름다운 생활을 지향하는 대중의 정신문화 수요 충족을 방향으로 정하고, 선진 과학기술을 수단을 이용하여 문화영역의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수요 측 서비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한다.

문제 지향을 견지한다. 문화와 과학기술의 두 가지 사유 및 상호 융합이 부족한 약점을 찾아 핵심기술 지원이 부족한 문화발전의 결점을 채워 체계적인 사유로 핵심 기술과 시스템 통합 기술을 공략한다.

총괄적인 융합을 견지한다. 정부와 시장의 작용, 기초연구와 응용기술 연구, 응용 시범과 성과 홍보를 각각 통합하여 문화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이끈다.

(3) 주요 목표

2025년까지 중점 분야와 핵심 부분을 커버하는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혁신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실현한다. 국가 과학기술혁신기지 최적화 통합 전체 배치에 따라, 목표가 분명하고 중점이 뚜렷하며 협동하여 난관을 극복하는 문화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기술혁신기지를 건립한다. 또한 특색이 뚜렷하고 시범성이 강하며 관리가 규범적이고 구성이 완벽한 국가 문화과학기술 융합시범기지 100 곳과 200여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업계의 발전을 이끌며 경쟁력이 강한 문화과학기술융합 선두기업을 건설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이 문화의 질 높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한다.

2. 중점 임무

(1) 문화 공통성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스마트 과학, 체험 과학 등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언어 및 시청각 인지 표현, 크로스 미디어 콘텐츠 식별 및 분석, 감정 분석 등 스마트 기초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고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와 혼합 현실(MR)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문화 영역에서의 인간과 유사한 시각, 청각, 언어, 사유 등 스마트 기술의 혁신적 응용을 추진한다.

문화 창작, 생산, 전송과 소비 등의 부분에서 공통된 핵심 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문화자원의 분류와 식별, 디지털화 수집과 관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지식화 가공처리, VR/AR 가상제작, 데이터 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체 적응 생산, 스마트창작 등 문화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문화 상품 배급,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분할 배급, 다양한 단말기에 의한 구현 등 문화 전송 기술 연구 개발을 전개한다. 문화 상품의 가치평가와 저작권 거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추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평가 측정 등 문화 서비스 기술연구를 개발을 전개한다. 문화 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권리침해에 대한 추적, 여론분석과 콘텐츠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문화 예술품 감정 등 문화 관리 기술 연구 개발을 전개한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기술의 기점으로 삼아 신문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문화 예술, 창조 설계, 문화재 보호 이용, 무형문화유산의 전송과 발전, 문화 관광 등 분야의 체계적인 통합 응용기술을 중점적으로 돌파하여, 콘텐츠 가시화의 구현, 인터랙티브 전송, 몰입식 체험 기술 응용시스템 플랫폼과 제품을 개발하고 문화 데이터의 추출, 저장, 이용 기술을 최적화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계승에 적합한 디지털화 기술과 신소재, 신공예를 발전시킨다.

(2) 문화과학기술 혁신체계의 건설을 개선한다.

기업 주체, 시장 지향, 산학연 결합의 문화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의 문화 과학기술 융합 시범기지를 문화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의 핵심 매체로 삼아, 각 기지의 서비스업 의식 강화와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장려하고, 지역특색과 결부시켜 차별화 발전을 진행하고 선두 중견 기업을 거점으로 하고, 대중소기업의 긴밀한 제휴 발전 모델을 형성하여 모델 혁신과 융합 발전에서 시범기업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문화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이루어낸 시범 구역, 정책 체계와 관리 메커니즘을 선행 시범하는 테스트베드, 문화과학기술 산업의 혁신 발전의 선봉대를 만든다. 각기 다른 구역은 해당 문화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자원 환경 및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에 따라 각자 특색 있는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지역의 혁신적 발전구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고효율 협동 혁신체계를 모색 구축하여 산학연 결합, 상중하 산업단계 간 연결, 대중소기업 간 협동의 혁신구도를 육성한다. 기업, 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의탁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혁신 분야의 국가급 및 성(부)급 과학기술혁신 기지를 건설한다. 문화과학기술의 중대한 과학 연구 임무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초연구부터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통합응용 등 혁신 체인의 일체화 설계까지 연구한다. 기업, 과학연구소, 대학교, 사회조직 등 각종 혁신 주체 기능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고효율의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개방한다.

(3) 문화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보급을 가속화한다.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을 착수 지점으로하여 응용 기초연구와 산업화를 연결하는 가속도로를 준

설하여, 관문을 뚫고, 혁신체인과 산업체인의 정확한 연결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과 상품 제조, 시장 모델, 산업발전의 ‘원스톱’ 전환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의 성과가 샘플에서 제품으로, 다시 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가속화한다.

전국 문화기술 거래 시장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성과 전시교역을 전개하고, 교류 및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 난제를 해결한다. 과학연구소와 대학교의 기술이전 전문기구와 전문화된 기술이전 인재팀을 격려하여 기술이전 통로를 원활하게 한다.

중간 단계 시험기지¹⁵⁰⁾의 건설을 강화하여 기술 시범으로 성과 전환을 이끈다. 사회를 대상으로 문화과학 기술자문, 기술평가, 기술이전, 실용화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과학기술 서비스를 육성, 발전시켜 문화과학기술 혁신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성과의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4) 문화의 빅데이터 시스템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관철하고 전략적 설계를 강화하여 국가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한다. 기존의 사업 토대에 근거하여 전국의 공공문화기구, 고등과학 연구기구와 문화생산기구의 유형별 소장품에 대한 데이터를 부문별로 나누어 중화민족문화의 유전자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성과에 담겨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신을 추출하여 물리적 배포, 논리적 집중, 정부와 기업 간의 연결, 사업과 기업 간의 연결, 데이터 공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의 빅데이터 응용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의 빅데이터 공공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빅데이터를 사회에 개방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여 중화 문화의 요소와 의식을 콘텐츠 창작 생산, 창조 디자인 및 국토 공간계획, 생태 문명건설, 제조강국 건설, 인터넷강국 건설과 디지털 중국 건설에 융합시켜 문화유산을 ‘살아 숨 쉬게’ 한다.

문화데이터 수집, 저장, 정리, 분석 발굴, 가시화, 표준화, 저작권 보호, 안전과 사생활 보호 등 분야의 중요한 기술적 난제를 빠르게 돌파해야 한다. 수집, 저장, 응용, 개방 등 단계에서 문화데이터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데이터의 공개, 공유 등 단계에서 문화데이터의 안전평가와 보호를 강화하여, 중대 돌발 문화사건의 타당한 처리에 대한 데이터지원을 강화한다.

(5) 매체융합의 깊이 있는 발전을 추진한다.

중국공산당 간행물, 통신사, 방송국 등 네트워크화 개조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가속화 하여 ‘콘텐츠+플랫폼+단말기’의 새로운 뉴스 콘텐츠 생산과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혁명의 성과를 활용하여 일체화 발전의 방향을 견지하며 공정 최적화와 플랫폼 재구축을 통해 각종 매체 자원과 생산요소의 효과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뉴스정보, 기술응용, 플랫폼 단말기, 관리수단의 융합과 소통을 촉진하여 매체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한다.

뉴스의 수집, 생산, 배포, 수신, 피드백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을 모색하여, 여론을 이끄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정밀화 생산, 스마트 피드 서비스가 긍정적인 홍보에 이용되도록 한다. 고품질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콘텐츠 공급을 가속화하여 초고화질 콘텐츠

150) 정식 생산 전 시험을 위한 전문 기지(역자주)

츠의 제작, 거래, 저작권 보호를 아우르는 산업체인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크로스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구현을 추진하고 VR/AR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의 정밀화와 몰입화를 실현한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연구하고 분산 클라우드 구조를 개발하여 융합 미디어 센터의 건설을 지지하고 뉴스 홍보의 새로운 서비스를 혁신하여 사회에 서비스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망 업종을 만든다.

(6) 콘텐츠 생산과 전송 수단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공공 문화서비스와 문화산업의 전방위적이고 전체 산업체인에 걸친 개조를 진행하여, 문화디지털화가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성과로 향하도록 추진한다. 공공문화 서비스의 공급 모델을 혁신하여 스마트형 구현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디지털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공공문화 기구의 연구와 전시 및 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문화 서비스업의 스마트화 수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출판발행, 방송영상, 연예오락, 인쇄복사, 광고서비스, 전시서비스 등 전통문화산업에서 스마트 기술과 혁신 서비스의 응용을 지원하여 서비스 모델과 업종의 혁신을 실현한다.

인공지능기술이 문화 영역에서 깊이 있는 응용과 혁신적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여 문화 분야의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문화' 오픈소스 기술개발 커뮤니티를 만들어 쌍방향 교류, 공동개발, 공동체험과 사회적 평가를 장려하여 차세대 인공지능기술의 문화 영역의 효과적 공급을 강화한다.

(7) 문화장비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문화영역의 중요 핵심기술 제품과 장비를 겨냥하여 중요한 병목 현상 기술을 공략하고 문화 영역의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중대 장비의 자주적 연구개발 및 안전통제를 실현하여 문화장비 제조수준을 향상시킨다. 문화 빅데이터 기초시설과 응용설비의 장비 구비를 보완하고 문화장비의 중요 기술, 중요 공법, 응용패턴모델 등 방면의 표준 규범을 제정 및 보급을 가속화한다.

문화유산 보호와 계승, 디지털화 수집, 문화체험, 공공문화 서비스와 레저오락 등의 스마트화 전용장비 연구제작을 강화한다. 레이저 방영, 가상현실, 광학탐지, 영상촬영, 고화질 방송, 영상편집 등 첨단문화 장비의 자주적 개발과 산업화를 강화한다. 무대공연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영화와 드라마 제작 방송 등 고급 소프트웨어 제품과 장비의 자주적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강화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스마트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콘텐츠의 제작, 전송, 사용과 관련된 설비 및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독자적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한다.

친환경 인쇄, 디지털 인쇄, 나노미터 인쇄, POD(Publish On Demand), 스마트 인쇄 등 기술 및 장비,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실시하고 마이크로 전자분야에서의 인쇄기술 응용연구를 확대하여 인쇄업의 협동 혁신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한다. 사물인터넷, 현대물류 등 기술, 제품 및 장비의 신문출판 분야에서의 통합과 응용을 가속화하여 신문출판업의 현대화된 공급체인 체계를 구축한다.

(8) 문화기술의 표준 연구제작과 보급을 강화한다.

표준화 전략을 실시하여 문화기술 표준화 체계를 개선하고 표준 연구제작과 보급을 강화하며 기

술 특허화, 산업 표준화를 추진하여 산업 평가 체계 건설을 개선하고 표준을 기반으로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을 돕는다.

중국의 기업과 사회단체가 국제 표준 연구제작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중국의 우위 기술과 표준이 국제 표준이 되도록 추진한다. ‘일대일로’에서 제시하는 관련 정책을 이용하여 표준을 기초로 한 문화과학기술 혁신 성과의 ‘대외진출’을 추진하여 문화기술 표준의 보급을 가속화한다.

3. 보장조치

(1)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가 차원의 조직 지도 체제를 보완한다. 과학기술부, 중앙선전부를 선두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제정부, 문화관광부, 광전총국 등 부처에서 참여하는 업무 체제를 개선하여 전국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사업을 이끌고 추진한다.

지방 차원의 협동 추진 체제를 구축한다. 조건이 구비된 성(자치구, 직할시), 부성급(副省级) 도시, 성도(省都)와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밀집된 지역의 시, 현(县)은 현지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발전사업 협동추진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문화, 과학기술, 경제 등 부문의 협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소통과 협조로 해당 지역의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업무를 추진한다.

(2) 정책 가이드를 강화한다.

지방 관련 부처는 본 지도 의견에 따라 문화와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은 우선 시행을 권장하며, 문화와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하는 새로운 조치 제정을 모색한다.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기술개발을 국가 중점개발계획으로 삼아,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주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융합한 중대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혁신의 중요한 범용 핵심 기술과 제품의 연구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강도를 높여 목표에 초점을 모으고 중요 사항을 뚜렷히 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배치를 구축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기존의 자금 경로를 통해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과학적으로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계획 및 건설하도록 장려하여, 문화과학기술기업을 위해 생산경영 장소와 교육 훈련, 정보자문, 금융,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과학기술기업, 금융기구와 사회자본의 공동출자를 장려하여, 법규에 근거하여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 산업의 투자형 펀드를 조성하여 레버리지 성과 전환, 중소기업 혁신, 신항 산업의 육성 등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조건이 구비된 문화와 과학기술융합 프로젝트가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전개하도록 장려 지원하고, 문화과학기술 프로젝트가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협동상생을 실현하도록 촉진한다. 금융기구와 관련 중개 서비스 기구가 문화과학기술기업의 투융자상품, 리스크 통제기술, 데이터베이스 등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 문화과학기술 금융수단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3) 개방 협력을 심화한다.

개방 협력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여 국제기술 교류 실시와 기술 협력 모델 모색을 지지하고, 기술, 표준, 제품, 브랜드, 지적재산권, 차별화 서비스 등 장점과 특징으로 국제경쟁에 참여한다. 실력 있는 기업이 프로젝트 제휴, 해외 인수합병, 공동경영, 지사 설립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장려하여 중국을 세계에 알리며 당대 중국을 반영하고 국제시장을 지향하는 우수한 디지털 문화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도록 추진한다.

(4) 싱크 탱크 구축과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에 관한 의사결정 자문 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발전 현황과 추세를 연구하고, 세계문화과학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연구 및 분석하며 정기적으로 국내외 문화과학기술의 새로운 동향을 보고하여 정확하고 앞을 내다보는 시의적절한 정책 건의를 제공한다.

문화와 과학기술 융합의 혁신 선두 인재와 고기능 인재팀 구축을 가속화하여 복합형, 혁신형, 글로벌형 문화과학기술의 여러 분야 인재의 양성을 가속화하고 국가의 문화와 과학기술융합 시범기지 및 기업이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와 함께 인재양성 기지를 건설하도록 장려한다.

34. 문화와 관광 소비의 잠재력 개발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进一步激发文化和旅游消费潜力的意见（国办发〔2019〕41号）
게재일	2019-8-23
출처	국무원 판공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위원회, 각 직속 기구:

<소비 촉진 체제의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소비 잠재력을 한 단계 분발시키기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문화와 관광 소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의 소비 의욕을 높여, 고품질의 문화와 관광 공급으로 대중의 향유감,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현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전체적 목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하에 문화와 관광 소비의 질적 제고 전환과 업그레이드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문화와 관광 분야의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하여, 공급과 수요 양측면으로부터 문화와 소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중국 문화와 관광 관련 소비 시설의 완비, 소비 구조의 합리화, 소비 환경의 최적화하도록 노력하여 문화와 관광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더욱 풍부하게한다. 전국 주민의 문화와 관광 소비 규모가 빠른 성장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여 경제 성장의 견인 작용이 지속해서 강화되도록 한다.

2. 주요 임무

(1) 소비 복지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 소유 관광지의 입장료 가격을 계속 인하한다. 각 지방은 실제 상황에 맞추어 관광지 입장권 감면, 관광지 비수기 무료입장, 공연 입장료 할인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문화와 관광 소비 시즌, 소비의 달 행사를 개최하며, 디지털 문화 관광 소비 체험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문화와 관광 소비 제휴 은행카드를 발급하여 관련 업체 특별 할인, 할부 소비 등 사용자 권익 제공을 장려한다. 문화와 관광 소비의 신용 대출업무를 확대하고, 규범 발전을 전제로 한 소비 대출 저리 담보 모델을 혁신하여, 선지급 비율 차등화, 기한 및 상환 방식이 서로 다른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 (문화와 관광 부서(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 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은행보험감독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와 각급 인민정부가 담당한다. 아래 모든 부분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담당하고, 다시 열거하지 않는다.)

(2) 소비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한다. 모바일 지불 편의성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 소비 장소의 은행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모바일 인터넷 신흥 지불 방식을 보급한다. 문화 소비를 여러 종류의 소비 장소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여, 지역 생활 종합 서비스센터¹⁵¹⁾, 도시 농촌 서민 소비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대중의 근처에 문화 소비 거점을 구축한다. 법규에 따라 전

151) 역주: 한국의 읍,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개념

통 공연 장소와 박물관 시설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장려하여 푸드코트 설치, 관람객 휴식 공간, 문화 창작 작품 전시 판매구역, 서점 등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더욱 최적화된 소비 환경을 만든다. 공연, 문화 오락, 관광지 등 장소에서 인터넷 매표, 바코드 검표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이끈다. 문화와 관광 소비 장소에 광대역 모바일 통신 인터넷의 커버리지 수준을 높여 조건을 구비하고, 사용자 수요가 비교적 높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5세대 모바일 통신(5G) 인터넷을 설치한다. 관광 교통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과학적으로 노선을 기획하고, 역을 배치하고 스마트화 여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전국 문화와 관광 소비 장소에서 현금 지불 외에 은행 카드와 모바일 지불이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 매표와 4G/5G 인터넷 커버리지 비율이 90%를 넘어 문화와 관광 소비의 편의성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문화와 관광부, 공업과 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인민은행, 문화재국에서 담당한다.)

(3) 해외 관광객의 중국 여행 환경을 향상한다. 기존 자원을 통합하여 해외 관광객 대상의 중국 여행 홍보 플랫폼(APP, 미니 APP 등 모바일 수단 포함) 수준을 높인다. 각 지방에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 노선, 목적지, 관광 공연 및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플랫폼에 추천하도록 장려한다. 관광지, 요식·숙박, 쇼핑·오락, 공항 터미널 등 장소의 다양한 언어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 은행업계 금융기구는 법규에 근거하여 문화와 관광소비 집중 구역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해외 관광객의 모바일 지불 솔루션을 완비하여 여행객의 소비 편의성을 제고한다. 베이징 2022년 동계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연구하여 시행한다. 해외 관광객의 중국 여행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중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소비 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도록 한다. (문화와 관광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북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소비 시험 지점 시범을 추진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문화 소비 시험 지점 확대 업무를 인도한 경험 패턴을 취합하여 국가 문화와 관광 소비 시험 지점 도시(이하 시험 지점 도시로 약칭)를 추가로 지정한다. 시험 지점 도시 기반의 우수한 도시를 선발하여 국가 문화와 관광 소비 시험 도시(이하 시험도시로 약칭)로 확정하고 진행 상태를 심사한다. 시험 지점 도시와 시험 도시의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집합 문화 창작 상가, 특화 서점, 소극장, 문화 오락 장소 등 여러 가지 업태의 소비 집약지 건설을 장려한다. 2022년까지 30개 시험 도시와 100개 시험 지점 도시를 건설하여 시험 도시 주민들의 1인당 평균 문화 오락 지출이 소비지출의 6%를 초과하고, 관광 수입 증가율이 두 자리수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험 인도 역할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와 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서 담당한다.)

(5) 상품 공급의 다양화를 위해 힘쓴다. 중소형, 테마형, 특색형의 문화 관광 공연 상품 제작을 장려한다. 공연, 오락, 만화·애니메이션, 창의적인 디자인, 인터넷 문화, 공예 미술 등 업계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문화와 관광 장소에 참여식, 체험식 소비 항목을 추가하도록 인도하고, 자유여행, 레저 휴가에 맞는 임대형 아파트, 렌터카 등의 서비스 발전을 장려한다. 문화 소비의 범위와 깊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중화 문화의 귀중한 자원 발굴에 힘써 대중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소비 상품을 제공한다. 관광 민박 시장을 규범화하고 스타 등급의 관광 민박 브랜드화 발전을 추진한다. 국가급 문화 산업 시범 구역과 국가 문화 산업 시범 기지의 공급 능력을 제고한다. 문화 창작 상품의 개발과 경영을 장려하고 문화 창작 상품의 전시와 판매 경로를 확대한다. 관광 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촌 관광을 대

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관광 농업과 향촌 관광의 프리미엄 공정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관광 향촌을 양성하고 관광 농업 시범 현과 향촌 관광 중점촌을 만들어 낸다. 국가 전역의 여행 시범 구역 건설을 추진한다. 비즈니스 여행, 바다와 섬 여행, 자가용과 캠핑카 여행, 스포츠 여행, 산림 여행, 휴양 여행 등 여러 상품의 개발에 힘쓴다. 홍색 여행(중국공산당의 혁명 역사, 혁명 유적지, 혁명 사상 등을 테마로 한 여행)의 혁신적, 융합적 발전을 지지한다. 문화 특색이 있는 고품격 휴양 거리와 휴양지 상품을 만들어 낸다. 2022년까지 30개 이상 관광 공연 프리미엄 프로젝트를 양성하여 문화와 관광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한다.(문화와 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 광전총국, 임초국에서 담당한다.)

(6) 관광지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확대를 추진한다. 각 지방의 관광지 공공 서비스 시설에 대한 자금 투입을 확대하여 관광지의 관광 안전을 보장하고, 관광지 시설 설비의 세대교체와 상품의 혁신 및 업그레이드, 관리 서비스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지한다. 고품질의 관광지, 핵심 노선과 특색 관광 목적지를 만들어 대중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합리적으로 관광지 배치를 조정하고 관광 노선과 방식을 최적화하며 관광 공간을 확장한다. ‘인터넷+여행’을 추진하고 스마트 관광지 건설을 강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과학적 가이드, 스마트 서비스를 실현한다. 관광지 입장권의 예약제를 보급하고 매일 최대 접수 가능한 관광객 인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한다. 2022년까지 5A급 국가 소유 관광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입장권 예약제를 실시한다. (문화와 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7) 휴일과 야간 경제를 발전시킨다.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고 사업체와 직원이 업무 스케줄과 개인의 수요에 따라 유연한 유급 휴가와 휴가 성수기를 피한 휴가 배정을 장려한다. 법정 휴가일 및 성수기에 여행 소비가 집중되는 패턴과 특징을 파악하여 관광지와 주변 고속도로의 연결을 최적화하고, 각 지방의 법정 휴가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관광지 도로 교통을 관리하고, 대중교통의 운행을 늘리며, 관광지 혼잡도 경고 정보를 즉시 발표하도록 감독한다. 야간 문화 관광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조건이 구비된 관광지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민폐를 조성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야간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야간 문화 공연 시장을 다양화하고 문화와 관광 장소의 야간 식사, 쇼핑, 공연 등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24시 서점 설립을 장려한다. 2022년까지 200개 이상의 국가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집약구역을 건설하고, 야간 문화 관광 소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문화와 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公安부, 교통운수부, 상무부에서 담당한다.)

(8) 산업의 융합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크루즈·요트 투어, 비물질 문화유산 테마 여행 등의 경영 방식 발전을 지지한다. 문화, 관광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촉진한다. 5G, 초고화질,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몰입식 체험형 문화와 관광 소비 콘텐츠를 발전시킨다. 인터넷 음악, 인터넷 만화·애니메이션, 인터넷 공연, 디지털 예술 전시 등 디지털 콘텐츠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가구 등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문화 관광 상품 개발과 서비스 설계의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전시회가 문화와 관광 소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전시회를 통한 문화기업과 관광기업의 상품 전시와 정보 보급을 지지한다. 문화 기업과 관광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방식 혁신을 인도한다. 2022년까지 30개의 국가 문화 산업과 여행 산업의 융합 발전 시범 구역을 건설하여 산업 융합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문화와 관광 소비 경영 형태가 부단히 다양해지도록 한다. (문화와 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 교통

운수부, 상무부, 광전총국에서 담당한다.)

(9) 시장의 관리 감독과 법 집행을 엄격히 한다. 문화와 관광 시장의 감독 통제력을 제고하여 불법 경영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문화 및 관광 시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문화 오락과 관광 시설의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시장 주체와 업계 종사자의 신용기록을 한층 더 완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과 국가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포함시켜, 문화 시장 블랙리스트와 관광 시장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시장 주체와 업계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2022년까지 문화와 관광 시장의 질서가 한층 더 규범화되고 상품과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높아지며 소비자 권익은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문화와 관광부, 응급부, 시장감독총국에서 담당한다.)

3. 보장 조치

(10) 정책적 보장을 강화한다. 각종 자금을 잘 이용하여 각 지방의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시험 지점 도시, 시범 도시를 중점 지원한다. 재정 자금의 인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방의 문화와 관광 소비 시험 지점의 시범 전개를 장려하고, 최적화된 소비의 공급을 늘린다.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지선항공, 통용항공(역주: 민용 항공기가 공공 항공 운수 이외에 참여하는 민간 항공 활동) 서비스의 발전을 지지한다. 각 지방에서 낡은 공장 건물을 이용하여 문화와 관광 소비 장소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며 토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물, 전기, 가스 사용에 대한 우대 정책을 완비한다. 관광지 경영권과 입장료 수입권을 담보로 한 대출 및 관광 기업의 건설용지 사용권과 산림 소유권을 담보로 한 대출 업무의 발전을 모색한다. 교통 이카통(交通一卡通: 교통연합에서 출시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은행카드. 한국의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와 비슷함)의 연동을 촉진한다. 보험 업계 금융 기구에서 문화와 관광 업계의 특징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인도한다. (문화와 관광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주택성향건설부, 교통운수부,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민항국에서 담당한다.)

(11)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소비 촉진 체제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부서 간 합동 회의를 통해 문화와 관광 소비 촉진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과 감독 이행을 강화한다. 문화와 관광부가 본 의견의 이행 상황에 대해 추적 분석 평가를 진행하며, 각 지방에서 문화와 관광 소비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하다. 빅데이터 기술의 응용을 강화하며 공유 데이터 리소스를 통합하고 추세 분석 판단을 강화하여 문화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근거를 제공한다. 각 지방에서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문화와 관광 소비의 촉진을 중요한 임무로 정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문화와 관광 소비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전개해야 하며 문화와 관광 소비 정책을 부단히 완비해야 한다. (문화와 관광부에서 담당한다.)

국무원판공청
2019년 8월 12일

35. 국가광전총국 2019-2028년 입법업무 계획

제목	国家广播电视总局 2019-2028年立法工作规划
게재일	2019-10-29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 19기 2중, 3중 전회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시진핑 총서기의 전면적 의법치국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과 사상 선전 관련 업무의 중요 사상을 관철 이행하며 신시대 방송TV 고퀄리티 혁신적 발전의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요구에 따라 당중앙의 ‘2035년까지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기본 확립, 각 측면 제도 더 완벽,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기본 실현’ 관련 의사결정 배치에 스스로 맞춰 입법 업무를 더 향상된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기 위해 본 계획을 제정한다.

1.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방송TV 고퀄리티 혁신적 발전 입법 항목 배치 추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관련 입법계획에 따라 관련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5-10년 안에 1건의 법규, 12건의 행정법규, 및 24건의 부처 규약의 제정, 개정 업무를 완성할 것을 계획한다.

(1) 전문 법률 출범 노력

《중화인민공화국 방송TV법》의 입법 진행을 추진하여 10년 안에 제정 업무를 완성한다.

(2) 행정법규 제정, 개정 업무 추진

첫째, 5년 안에 《방송TV 관리조례》, 《케이블TV관리 임시시행방법》 등 행정법규의 개정, 및 《정보망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법》, 《국가응급방송조례》, 《방송TV 공공서비스 촉진조례》의 제정 업무를 완성한다.

둘째, 10년 안에 《방송TV시설보호조례》, 《위성 지상 접속 시설의 외국 위성 전송 프로그램 접속 관리방법》, 《위성TV방송 지상 접속 시설 관리규정》 등 행정법규의 개정, 및 《방송TV 프로그램 관리조례》, 《방송TV 안전방송 관리조례》, 《방송TV 국제협력 촉진조례》, 《방송TV 종사자 관리조례》의 제정 업무를 완성한다.

(3) 부처 규약의 제정, 개정 업무 수행

법률, 행정법규의 시행 상황에 따라 방송TV의 실제 발전에 결부하여 관련 부처의 규약을 적시에 제정, 개정하며 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5년 안에 《해외프로그램 수입 전파 관리규정》, 《방송영화TV산업 통계관리방법》, 《〈위성TV방송 지상 접속 시설 관리규정〉시행세칙》, 《위성TV방송 지상 접속 시설 설치 서비스 임시시행방법》,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중외합작 제작 드라마 관리규정》 등 규약의 개정 및 《국가방송TV총국 입법업무규정》, 《국가방송TV총국 행정규범성 문건 관리규정》, 《외국인의 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리규정》의 제정 업무를 완성한다.

둘째, 10년 안에 《방송TV 편집기자, 아나운서 사회자 자격 관리 임시시행규정》, 《해외 위성 TV채널 현지화 관리방법》, 《해외기관의 주중 방송TV 사무기관 설립 관리규정》, 《방송TV스

《테이션 인허가관리 임시시행규정》, 《방송TV프로그램 전송업무 관리방법》, 《방송TV프로그램 제작경영 관리규정》, 《방송TV VOD서비스 관리방법》, 《라디오·TV방송국 인허가 관리방법》, 《방송영화드라마 페스티벌(전시회) 및 프로그램 교류활동 관리규정》, 《방송TV 무선전송망 관리방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사설망 및 지정방향 전파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방송TV 광고방송 관리방법》, 《방송TV 안전방송 관리규정》, 《케이블방송TV 운영서비스관리 임시시행규정》 등 부처 규약의 개정 업무를 완성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 규약을 제정한다.

법률 법규 규약의 제정, 개정, 폐기, 해석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 간정부권(简政放权, 행정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방관결합(放管结合,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 최적화 서비스 개혁 등 관련 입법 업무를 잘 수행한다.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맡긴 기타 입법 항목을 서둘러 처리하고 되도록 빨리 완성한다.

2. 시진핑 총서기의 전면적 의법치국 신의념 신사상 신전략 실시, 입법 업무 추진 가속화

(1) 입법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 견지

당의 지도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며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시진핑 총서기의 전면적 의법치국 신의념 신사상 신전략으로 사상을 무장하고 입법 실천을 지도하고 입법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당의 지도를 입법 업무의 전 과정과 각 측면에 확실히 관철해야 한다. 정치적 속성을 고수하는 것은 입법 업무 제1속성의 포지셔닝이며 ‘4개의 의식(四个意识)’을 강화하고 ‘4개의 자신감(四个自信)’을 굳건히 하며 ‘2개의 유지(两个维护)’를 해냄으로써 정치 입장, 정치 방향, 정치 원칙, 정치 도로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높이를 같이 한다. 입법 업무에서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방향을 강화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잘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입법 업무의 근본적 출발점과 목표지점으로 삼아야 한다. 시진핑 총서기의 사상 선전 관련 업무의 중요 사상을 실행하고 정도와 혁신을 견지하며 깃발을 들고 민심을 집결시키고 신인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고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명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태도가 분명하게 당 관리(党管) 홍보, 당 관리 이데올로기, 당 관리 미디어를 견지하여 당의 주장을 입법의 실제적 조치와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입법에 융합시켜야 한다. 중대 입법 사항의 지시 요청 보고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업무책임제라는 핵심 책임을 확고히 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고궤리티 입법으로 방송TV 고궤리티 혁신적 발전 보장

입법 업무는 반드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살피고 핵심을 파악하며 과학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당중앙, 국무원과 국가방송TV총국의 중대 의사결정 배치를 실행하여 인민대중의 중대 관심에 대응하고 전략적 높이에서 입법 업무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법제통일과 정령의 원활한 소통을 수호해야 한다. 현재 입법 업무에는 여전히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로 방송TV 법적 틀과 체계에 톱 레벨 디자인이 부족하고 법적근거등급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고 제도 건설이 현실적인 관리와 발전 촉진의 수요를 완전하게 적응할 수 없으며 사전(事前)·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 관리를 총괄하는 관련 제도와 혁신이 부족하고 지방의 입법에 취약점이 있어 신시대 방송TV 고궤리티 혁신적 발전 추진에 적합하지 않고 전면적 의법치국 신의념 신사상 신전략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구축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방송TV 법률 법규 체계를 보완하고 규약과 제도를 수립하는 과제가 아주 긴박하고 무겁다. ‘관리할 수 있어야(管得住)’ 하고 ‘잘 관리해야(管得好)’ 하며 반드시 시진핑 총서기의 방송TV 업무 관련 중요 지시 정신과 당 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를 완비된 시스템, 과학적 규범화, 효율적 운영의 법률 법규 제도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 개혁 발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입법 진행과 개혁 과정을 상호 조율하면서 당중앙, 국무원이 중요시하고 인민 대중이 간절히 원하고 사회각계의 큰 관심을 받고 의견이 통일되고 제도가 상대적으로 성숙된 입법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중대 개혁에 법적 근거가 있게 되고 입법이 개혁 발전의 수요에 주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행정규범성 문건의 제정과 감독 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행정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 메커니즘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점 과제를 해결하고 입법의 공백을 끊임없이 메워 방송TV 고궤리티 혁신적 발전을 이루고 날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3) 과학 입법, 민주 입법, 의법 입법 추진, 좋은 법으로 발전 촉진 및 관리 보장

입법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입법 계획을 실행하고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입법 과정에서 깊이 조사 연구하고 이론 연구를 심화하며 문제 방향성을 견지하고 성공의 경험을 총정리하며 좋은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입법 논증, 진술 청취, 평가 및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입법의 적시성, 체계성, 목적성,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개 의견 수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의견 수렴의 루트와 방식을 확장하여 설명과 의견 피드백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며 입법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결집한다. 입법 과정에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깊게 연구하고 논증하며 중대한 모순 쟁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또한 조율 방식을 중요시하여 조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입법 업무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부합되어야 하고 입법법 등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입법 업무의 규범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콘텐츠 전과 방식과 수단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미디어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방송TV 업계에 새로운 사물,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나타난 가운데 입법 업무도 개혁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의 사고방식, 혁신의 방법으로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일부 선례가 없는 입법 항목은 전망과 예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 관련 입법 업무의 진행을 긴밀히 팔로우업하고 특히 방송TV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약의 제정, 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방송TV발전 규칙과 수요를 구현해야 한다.

3. 입법 계획의 실행과 보장 추진

(1) 입법 업무의 지도와 조율 강화

《국가방송TV총국 2019-2028년 입법업무 계획》은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입법 업무의 ‘타임테이블’, ‘지시서’, ‘로드맵’이다. 입법 업무에 관련하여 시간이 촉박하고 책임이 막중하며 관련된 부처가 많고 정책성이 강하며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실행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기관은 총괄 계획, 조직 조율, 엄밀한 심사 등의 업무 직책을 담당하여 업무 대장을 수립하고 적시에 입법 계획 실행 상황을 팔로우업하고 파악하며 소통 연락과 조율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처는 자체 업무 직책과 결부하여 대장에 명시한 업무 과제에 따라 법치기관을 협조하여 각종 입법 업무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각

급 방송TV 행정부처는 광전총국의 본 계획 실행에 적극 협조하여 본 부처의 입법 업무 계획을 제정하고 본 부처의 총체적인 업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광전총국은 문화입법 부처 간 조율회의 등 업무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련 부처와의 소통 조율을 강화하고 중공중앙선전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의 지도와 지원을 적극 쟁취해야 한다.

(2) 지방 입법 업무 강력 지원

각급 방송TV 행정부처는 입법 업무의 선명한 정치적 속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한 위치에 놓고 실행해야 한다. 입법 권한이 있는 지방은 국가 입법 시기가 성숙하지 않으나 실천에서는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방성 방송TV 법규 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정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함으로써 국가 입법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광전총국 법치기관은 지방 입법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지방 입법을 긴밀히 팔로우업하며 지방 입법의 경험을 제때에 파악하고 총정리하며 경험 교류와 업무 토론을 진행하여 지방 입법의 실행, 보완, 탐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 입법 퀄리티의 향상을 추진하며 국가의 법제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3) 입법 업무 팀 건설 중요시

각급 방송TV 행정부처는 법치기관과 입법 업무 팀의 건설을 중요시하고 입법 업무를 위한 인력, 물력, 재력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체력, 안목, 이해력, 필력 강화를 중심으로 입법 실무자 양성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입법 업무 팀에 합류시키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입법 실무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정치적 소양, 업무 능력, 직업윤리, 도덕성이 강한 입법 업무 팀을 만든다.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에 의지해 중국 특색 신형 싱크탱크 구축을 모색하고 부처와 대학교가 함께 ‘방송TV정책법규연구기지’를 만들며 외부 브레인의 힘을 빌려 입법의 퀄리티와 효율을 높이고 방송TV 분야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의 입법 계획이 확정한 입법 업무를 고퀄리티로 완성하기 위한 지적 지원과 인력 보장을 제공한다.

36. 자유무역시범구 ‘증조분리’ 개혁 적용시행 관련 통지

제목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开展“证照分离”改革全覆盖试点的通知
게재일	2019-11-15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위원회, 각 직속 기관:

최근 몇 년간 국무원은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서 ‘증조분리(证照分离,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와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점차 복제 보급하기로 결정하여 기업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였으며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불러일으켰다. ‘진입은 허용하나 경영은 불허(准入不准营)’ 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기업이 더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되도록 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원은 전국의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고 우선적으로 ‘증조분리’ 개혁 적용시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총괄 요구사항

- (1) 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와 19기 2중, 3중, 4중 전회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에 따라 ‘광관부(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유형별로 승인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간단하고 투명한 업계 진입 규칙을 보완하며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고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 관리를 혁신하고 강화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미시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 (2) 시범 범위와 내용. 최근 몇 년간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실시한 ‘증조분리’ 개혁의 경험 총정리를 기초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상하이, 광둥(广东), 텐진(天津), 푸젠(福建), 랴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하이난(海南), 산둥(山东), 장쑤(江苏), 광시(广西), 허베이(河北), 윈난(云南), 헤이룽장(黑龙江) 등의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적용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며 승인의 직접 취소, 승인의 등록 신고 전환, 고지 약속 실행, 승인 서비스 최적화 등 4가지 방식에 따라 유형별 개혁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증조분리’ 개혁 적용을 실현하기 위한 복제 가능 보급 가능한 제도 혁신 성과를 거둔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기타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증조분리’ 개혁 적용시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더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부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 적용

- (1) 리스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증조분리’ 개혁 적용 요구에 따라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을 전부 리스트 관리에 포함시키고 항목별로 사항 명칭, 설정 근거, 승인 등급과 부처, 개혁 방식, 구체적인 개혁 조치,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 관리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리스트는 정기적으로 조정 업데이트되고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의 받아야 한다. 리스트 이외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개인 사업자, 농민 전문 협동조합 포함, 이하 같음)이 관련 업종 또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면 바로 자주적으로 경영을 전개할 수 있다.
- (2) 등급별 리스트 관리를 실시한다.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이 설정(이하 중앙정부 측면의 설정으로 통칭)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 리스트(별첨 1 참고)의 조정은 국무원 행정승인 제도 개혁업무지도팀 판공실(审改办)이 관련 부처와 의논하여 제기하고 절차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다. 지방성 법규, 지방 정부 규약이 설정(이하 지방정부 측면의 설정으로 통칭)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은 관련 성급 인민정부에서 부처와 조정을 지정하여 절차에 따라 제정하도록 하며 2019년 11월 30일 전 성 단위로 집중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3. 유형별 승인제도 개혁 추진

- (1) 승인을 직접 취소한다. 설정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업계조직 또는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업계 자율 관리를 실현할 수 있고 사중·사후 감독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은 승인을 직접 취소한다.

승인을 취소한 후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 바로 경영을 전개할 수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제때에 관련 기업의 설립, 변경 등기 정보를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관련 주무부처에 보내야 하며 관련 주무부처는 제때에 관련 기업을 감독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중간·사후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2) 승인을 등록 신고로 전환한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에서 효과적으로 업계 관리를 실시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시에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승인을 등록 신고로 전환한다. 등록 신고의 명의로 실질적 승인을 대체하는 것을 건결히 방지해야 한다.

승인을 등록 신고로 전환한 사항에 대해 원칙상 ‘다증합일(多证合一, 사업자등록증, 조직코드등록증, 세무등기증, 사회보장보험등기증, 통계등기증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는 것)’의 요구에 따라 기업 등기 등록 절차에서 일괄 처리해야 하며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제때에 등록 신고 정보를 관련 주무부처로 보내야 한다. 확실히 관련 주무부처에 가서 등록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등록 신고 요소를 간소화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등록 신고 후 관련 주무부처는 법에 따라 효과적인 감

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록 신고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업에 대해 감독 관리 규칙을 명확히 하여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고지 약속을 실행한다.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기업이 경영허가 조건에 부합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관련 부처에서 사중·사후 감독 관리를 통해 경영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할 수 있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경우, 고지 약속을 실행한다.

고지 약속을 실행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는 법에 따라 양적화 가능하고 운영 가능하며 기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영허가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열거하며 감독 관리 규칙과 약속 위반의 결과를 명확히 하여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고지하고 고지 약속서 시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 즉석에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이 경영허가 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약속한 경우에 대해 기업은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후 바로 경영을 전개할 수 있다. 기업이 아직 경영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조건을 갖추 수 있다고 약속한 경우에 대해 기업은 경영허가 조건에 도달하고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후에야 경영을 전개할 수 있다. 관련 주무부처는 고지 약속을 통해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기업과 일반 승인 절차를 통해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고 위험 상황에 따라 사중·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약속한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관련 주무부처는 기업이 약속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경영을 전개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 여전히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관련 주무부처에서 부담하고 허위 약속 또는 약속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기업이 부담한다.

- (4) 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국가 안전, 공공 안전, 금융 안전, 생태 안전과 대중 건강 등 중대 공공이익에 관계되고 승인 취소 또는 고지 약속 실행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확실한 조치를 취해 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승인 효율을 높이고 사무 처리 비용을 줄여야 한다.

승인 서비스 최적화의 사항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는 기업의 관심사인 난제와 고객 불만 요소를 겨냥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승인 권한을 하부에 이양한다.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하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승인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거나 자유무역시범구 소재지 관련 주무부처에 위탁함으로써 구역 내 기업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승인 조건과 절차를 줄인다. 경영허가 조건과 승인 자료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상한 증명’을 취소하고 연결 처리, 연합 평가 등 방식으로 사무 처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승인 시한을 줄여야 한다. 셋째,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한다. 허가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으나 경영허가 조건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원칙상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넷째, 총량 통제 조

건과 저장량 상황을 발표한다. 수량 제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총량 통제 조건, 구도 계획, 기업 저장량, 신청 기업 순서 등 상황을 발표하여 기업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편의를 줘야 한다. 또한 각 지역, 각 부처에서 승인 서비스 최적화의 혁신 조치를 적극 모색하도록 독려한다.

4. 개혁 관련 정책 조치 보완

- (1) 기업의 경영범위 등록과 경영허가 신청의 연결을 규범화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관련 주무부처와 의논하여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응되는 경영범위 설명을 명확히 하고 경영범위 규범화 등록을 추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의 대응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기업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시장 감독 관리 부처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한 경영범위에 따라 기업이 신청해야 할 경영허가 사항을 명확히 알려주고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업의 정보를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관련 주무부처로 정확하게 보내야 한다. 관련 주무부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관련 경영허가를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정부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시장 감독 관리 부처로 보내야 한다.
- (2) 기업의 경영 관련 정보 취합 공유를 강화한다. 관련 부처는 기업의 등기 등록, 경영허가, 등록 신고, 법 집행 조사, 행정처벌 등 정보를 제때에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서비스 플랫폼,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으로 취합시켜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에 관련된 정부 정보의 집중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일률적으로 더 이상 기업에 제공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관련된 부처가 수직으로 업무 정보 시스템을 관리할 경우, 관련 부처는 지방의 정보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간편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 취합 공유 실시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 (3) 승인 서비스의 퀄리티와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관련 주무부처는 승인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정확하고 완비되고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무 처리 안내를 제정하고 발표하며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시한을 엄격히 제약하고 숨겨진 문턱을 해소해야 한다. ‘인터넷+정무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해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의 신청, 접수에서 승인, 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 ‘최대 1차 방문(最多跑一次)’을 추진해야 한다. 승인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승인 서비스의 ‘호평·혹평’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기업이 서비스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 (4) 중간·사후 감독 관리를 혁신하고 강화한다.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두 중요시하며 ‘승인한 자가 감독 관리하고 주관자가 감독 관리하는(谁审批、谁监管, 谁主管、谁监管)’ 원칙에 따라 승인과 감독 관리의 연결을 강화하고 감독 관리 규칙과 표준을 완비하여 ‘승인하지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不批不管)’, ‘승인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며(只批不管)’, ‘엄격히 승인하고 관리를 완화하는(严批宽管)’ 등의 문제점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두 개의 랜덤, 하나의 공개(双随机、一公开, 검사대상 랜덤 추출, 법 집행 검사요원 랜덤 파견, 검사 상황의 사회 공개)’ 감독 관리, 부처 간 합동 감독 관리와 ‘인터넷+감독 관리’를 전면 추진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모델에 대해선 포용하고 신중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고위험 업종과 영역에 대해선 중점적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신용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허위 약속, 변칙 경영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신용 기록에 포함시키며 신용 상실 공동 징계를 실행해야 한다. 사회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신고 고발을 제때에 처리하여 사회 역량이 시장질서 관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감독 관리 위험 역량을 강화하여 심각한 불법경영의 기업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증서를 취소하고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법에 따라 개혁을 추진한다. 중대 개혁은 법에 근거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개한다. 국무원은 《국무원에 위임하여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임시 조정 적용하는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년 안에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6개 법률 관련 규정을 임시 조정 적용하고 동시에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허가조례》 등 6개 행정법규와 《확실히 보류해야 하는 행정 승인 항목에 대해 행정 허가를 설정하는 국무원의 결정》(국무원령 제412호 발표, 국무원령 제548호, 제671호 개정) 관련 규정(별첨2)을 임시 조정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의 조정 상황에 따라 본 부처와 본 지역에서 제정한 규약, 규범성 문건에 대한 상응하는 조정을 제때에 진행하고 시행 요구에 적합한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시행 증명으로 효과가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 제때에 관련 법률, 법규, 규약의 제정·개정·폐지·해석(立改废释)을 추진하고 개혁의 성과를 고착화시켜야 한다.

5. 개혁 정책 확실히 실행

- (1) 조직 지도를 강화한다. 국무원은 정부 기능의 전환과 ‘팡관푸’ 개혁조정팀의 전국 ‘중조분리’ 개혁 적용시행 업무 총괄 지도 담당을 추진한다. 국무원 행정승인제도 개혁업무지도팀 판공실(审改办), 시장감독관리총국, 사법부에서 구체적인 조정 추진 개혁을 주도하여 담당하며 조사 연구, 정책 해석, 조율 지도, 법치 보장, 독촉 실행, 평가 총정리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한다. 상무부는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중조분리’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의 연결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직책 분업에 따라 기업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두고 각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개혁 추진 중에 부딪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율하고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각 자유무역시범구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개혁 시행 업무에 대한 총 책임을 지며 주도 부처를 명확히 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책임 분업을 강화하여 착실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2) 실시 방안을 세분화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측면에서 설정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항목별 개혁 조치를 세분화하고 사중·사후 감독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강화하여 감독 관리 책임을 다져야 한다. 관련 성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시행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지방정부 측면에서 설정한 기업의 경영허가 관련 사항의 개혁 방식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개혁 시행 조치를 세분화해야 한다. 관련 지역과 부처의 실시 방안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정부 기능의 전환과 ‘팡관푸’ 개혁 조정팀 판공실 등록 신고를 추진해야 한다.

- (3) 업무를 착실히 수행한다. 관련 지역과 부처는 독려 제약 메커니즘과 잘못 용납 잘못 바로잡기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개혁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의 과제를 실천하며 개혁 정책의 업무 교육과 홍보 해석을 잘 수행하여 정책 인지도를 확대하고 개혁에 유리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개혁 시행의 진행 상황을 긴밀히 추적하여 시행 상황을 총정리 평가하고 제때에 정책 조치를 보완하며 전형적인 경험을 발견하고 보급하여 시행이 예상 성과를 이루도록 보장하고 기업의 획득감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본 통지 시행 과정에서의 중대 문제는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국무원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 별첨: 1. ‘증조분리’ 개혁 적용시행 사항 리스트(중앙정부 측면의 설정, 2019년 버전)
2. 국무원 결정 자유무역시범구 임시시행 조정 적용 관련 행정 법규, 국무원 결정 규정 목록

국무원
2019년 11월 6일

37.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목	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
게재일	2019-11-18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관광부,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제1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 정연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시행 규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회 대중에게 시청각 정보 제작, 배포, 전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 대중에게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3조 각급 인터넷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의 감독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를 지키고 정확한 정치적 방향, 여론의 방향 및 가치 취향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양하고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발전과 선한 것을 지향하는 인터넷 문화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인터넷 업계조직이 업계자율을 강화하고 완비된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업계 표준과 업계 준칙을 수립하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업계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감독을 받도록 독촉하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종사자의 직업소양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정연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 및 지도한다.

제6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7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내용 보안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실행에 옮기

고 서비스 규모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완비된 이용자 회원가입, 정보 게시 심사, 정보 보안 관리, 응급대처, 종사자 교육 훈련, 미성년자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신기술 신응용의 발전에 걸맞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보장과 방지조치를 구비하여 인터넷 보안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하며 온라인 데이터의 완전성, 안전성 및 가용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의 규정에 의거해 이용자에 대해 조직코드, 신분증번호, 휴대폰번호 등 방식 기반의 신원 정보 인증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게 정보 게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및 관련 정보 기술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국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정치 안전과 사회 안정을 해치며 인터넷 루머,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지식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 내용을 제작, 배포,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딥러닝,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 신응용을 기반으로 미디어 속성이나 사회동원 기능의 시청각 정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관련 기능을 조정하여 증설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딥러닝, 가상현실 등에 기반한 신기술 신응용을 이용해 비사실적 시청각 정보를 제작, 배포, 전파할 경우, 뚜렷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딥러닝, 가상현실 등에 기반한 신기술 신응용을 이용해 허위 뉴스 정보를 제작, 배포, 전파해서는 안 된다. 시청각 뉴스 정보를 전제할 경우, 법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업체가 배포한 시청각 뉴스 정보를 전제해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배포한 시청각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오디오·영상 및 비사실적 오디오·영상 감별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 내용을 제작, 배포, 전파한 것이 발견될 경우, 법과 약정에 따라 해당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제거 등 처리 조치를 취해 정보 확산을 막으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인터넷 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본 규정 제11조 제1항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정보 내용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정보 전송을 즉각 중단하고 뚜렷한 방식으로 표시한 후에야 해당 정보를 계속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13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완비된 루머 반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딥러닝, 가상현실 등에 기반한 허위 이미지, 오디오·영상 생성 기술을 이용해 루머를 제작, 배포, 전파한 것이 발견될 경우, 즉각 상응하는 루머 반박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4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서비스협약에서 양측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 규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본 규정, 관련 법률 법규 및 서비스협약을 위반한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법과 약정에 따라 정돈 개선 경고, 기능 제한, 업데이트 임시중단, 계정 폐쇄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인터넷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 간편한 신고 고발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고발 방식 등 정보를 공표하며 대중의 신고 고발을 즉각 수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국가 표준 규범을 지켜야 하며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이버 안보,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각급 인터넷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는 일상적인 감독 검사와 정기 검사가 결합된 감독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법규와 서비스협약에 따라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인터넷 일지를 남기며 인터넷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에 협력하여 감독 관리 법 집행 업무를 전개하고 필요한 기술, 데이터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시청각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 문화관광, 방송TV 등 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문화 관리 임시시행 규정》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치안관리 행위 위반을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9조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8.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관련 의견

제목	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제재일	2019-11-24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1. 총괄 요구사항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와 19기 2중, 3중, 4중전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실천에 옮기고 ‘오위일체(五位一体,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생태문명건설)’ 총체적 분포의 총괄 추진과 ‘4개의 전면(四个全面, 소강사회 전면 건설, 개혁 전면 심화, 전면 의법치국, 당의 전면 관리)’ 전략적 분포의 조율 추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곧 혁신 보호라는 이념을 단단히 수립하고 엄격 보호, 총괄 조율, 중점 돌파, 동등 보호를 고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보완하며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적 관리 수단을 종합 활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역량과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촉진한다. 2022년까지 권리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증거 제시가 어렵고 주기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배상이 적은’ 국면이 두드러지게 개선되도록 목표하고 있다. 2025년에 이르면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이를 계속 유지하며 보호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고 보호체계가 더 보완되며 지식가치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더 최적화되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혁신 독려의 기본 보장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2. 제도적 제약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방향 확립

- (1) 권리 침해 사칭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다. 지식재산권의 기초적 법률을 제정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연구하여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수정 보완에 박차를 가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입법을 보완한다. 특허, 저작권 등 분야의 권리 침해 징계성 배상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권리 침해 법정 배상액 상한선을 대폭 높여 손해 배상 강도를 높인다. 민사사법보호를 강화하여 징계성 배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불법소득 몰수, 권리 침해 가짜 상품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 행정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핵심 분야, 중점 부분, 중점 단체 행정 법 집행 특별 행동을 실시한다. 상표 악의적 등록, 비정상 특허 출원 및 악의적 소송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영업기밀, 비밀 비즈니스 정보 및 그 소스코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형사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형사 법률과 사법 해석의 개정 보완을 추진한다. 형사 단속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표준을 낮추고 양형 처벌 수위를 높이며 죄상 설명을 수정하고 사건 관련 권리 침해 물품 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권리 침해 위조 범죄 단속 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위조 단속 정보 감독 수사 업무 체제를 보완하여 노밀화 특별 단속 행동을 전개하고 엄격한 단속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2) 증거 표준을 엄격히 규범화한다. 지식재산권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 ‘삼합일(三合一)’ 재판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재판 표준을

- 통일한다. 행정 법 집행 과정에서의 상표, 특허 권리 침해 판단 표준을 제정 보완한다. 사법, 행정 법 집행, 중재, 조정 등 다양한 채널의 증거 표준을 규범화한다. 행정 법 집행과 형사 사법 입안 표준의 조화 연결을 추진하고 사건 이송 요구와 증거 표준을 보완하며 증거 가이드를 제정하여 행정 법 집행과 형사 사법을 원활하게 연결한다. 지식재산권의 민사 소송 증거규칙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권리자의 증거제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권리 침해 행위 공증 현상 증거 수집 제도를 수립하여 권리자의 증거 제시 책임 부담을 줄인다.
- (3) 사건 집행 조치를 강화한다. 완비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협의 사법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장 주체 신용 파일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하여 시장 주체에 대한 신용 분류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중복 권리 침해, 고의 권리 침해 기업 목록 사회 공포 제도를 수립하여 신용 상실 합동 징계 시스템을 완비한다. 전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례 지도 메커니즘과 중대 사건 공개 심리 메커니즘을 점차 구축한다. 사건 타지 집행에 대한 독촉 검사를 강화하여 통일되고 공정한 법치 환경의 형성을 촉진한다.
- (4)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분야 보호 제도를 보완한다.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분야의 발전 현황에 대해 연구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 신품종과 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약품 특허 링크 제도, 약품 특허 기간 보상 제도의 수립을 모색한다. 스포츠 중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검토한다. 공증 전자 증거 저장 기술 보급 응용을 강화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수립을 연구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관리 표준을 제정한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를 작성 배포하고 표준계약서, 권리 보호 프로세스 등 운영 가이드를 제정하여 기업의 위험방지 메커니즘 구축 강화를 독려하고 대중 창업, 만중 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의 보호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전통문화, 전통지식 등 분야의 보호방법을 연구 제정하여 중의약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3. 사회적 감독 공동 관리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구도 구축

- (5) 법 집행 감독 역량을 강화한다.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한다. 정치 협상 회의의 민주 감독 역할을 발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조사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완비된 우수 장려 저조 처벌 제도를 수립하여 법 집행 관리감독 효율을 높인다. 감독 문책을 강화하고 행정 법 집행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을 실행에 옮기도록 추진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높은 강도로 법 집행 사건 처리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받는다.
- (6) 완비된 사회적 공동관리 모델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의 중재, 조정, 공증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중재기관, 조정기구와 공증기관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업계협회, 상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자율과 정보 소통 메커니즘 구축을 독려한다. 대행업계의 자율 자치 강화를 이끌어 대행기관의 관리감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의 저당 등록, 행정처벌, 추출검사·검사 결과 등 기업 관련 정보를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일괄 취합하고 법에 따라 공시한다. 완비된 자원봉사자제도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에 사회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7) 전문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여 원천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인식 등의 기술 수단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권리 침해 사칭 단서 지능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 침해 사칭 행위 단속 효율 및 정확도를 높인다. 지식재산권 행정 법 집행 사건 처리와 사법 활동에 기술조사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법 집행 부처,

사법부처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술 사실 인정에 협조한다.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감정 능력 구축 강화를 모색하고 권리 침해 손해 평가제도 수립을 연구하여 사법감정기관의 전문화, 절차 규범화 건설을 강화한다.

4. 협력 연결 메커니즘 최적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신속 보호 핵심 부분 돌파

- (8) 권한 위임, 권리 확인, 권리 보호의 연결 절차를 최적화한다.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 등에 대한 심사 능력을 강화하여 심사 주기를 한층 더 단축한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 심사 퀄리티를 중점적으로 높여 원천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 상표 행정 권리 확인 원격 심리, 타지 심리 제도의 중대 권리 침해 행정 법 집행 사건 처리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한다. 행정 권리 확인, 공증 증거 저장, 중재, 조정, 행정 법 집행, 사법 보호 간의 연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정보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여 각 채널 간 유기적 연결, 장점 상호 보완의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권리 보호 효율을 확실히 높인다.
- (9) 부처 간 지역 간 사건 처리 협력을 강화한다. 부처 간 사건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부처 간 중대 사건 합동 수사 및 이관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행정 법 집행 부처와公安 부처의 범죄 혐의가 있는 지식재산권 사건 수사 업무 연결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사건 다발 지역에서 중재, 조정 우선 추천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한다. 완비된 지식재산권 사건 분류 제도를 수립하여 사건의 복잡·간단 분류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한다. 성급 행정구역 내 지식재산권 사건 지역 간 심리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여 법원 사건 관할 지정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 보호를 효과적으로 타파한다.
- (10) 사건과 분쟁의 간편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 중점 관심 시장 명부를 만들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회, 전문 시장, 수출입 등 핵심 분야와 부분에 대해 행정 법 집행, 중재, 조정 등 신속 처리 채널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 권리 침해 신고의 신속 처리제도 수립을 추진한다. 각 사이트의 규범화 관리를 지도하여 권리 침해 내용을 삭제하고 해적판 사이트 링크를 차단하고 권리 침해 정보 전파를 중단하며 판권 소송을 이용한 투기적 이익 추구 등의 행위를 단속한다.
- (11) 지식재산권 신속 보호기관 건설을 강화한다. 우위산업 집결지역에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세워 사건 신속 수리와 과학 분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신속 심사, 신속 권리 확인, 신속 권리 보호 ‘원스톱’ 분쟁해결방안을 제공한다.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상표, 식물 신품종의 권한 위임, 권리 확인, 권리 보호 심사 절차에 속도를 가한다. 조정방식을 이용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 법 집행, 사법 보호, 중재 등 보호 채널과 부분에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5. 대외 소통 체제 구축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조성

- (12)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투어 강연 행사를 적극 진행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며 관련 국가와 조직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교류를 강화한다. 중요한 국제전시회에 특별 부스를 설치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해외 투어 전시를 진행하는 것을 모색한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 촉진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 건설을 지원하여 특허, 식물 신품종의 심사 결과 공유

를 촉진한다. 각종 양자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교류 협력과 교섭 협상을 강화한다. 각종 국제교류협력 플랫폼을 종합 활용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발전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 (13) 국내외 권리자와의 소통 채널을 완비한다. 주중 대사관 영사관 정보 교류회, 기업간담회 개최 등 방식을 통해 국내외 업계협회, 상회, 사회단체 등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 상황 통보회를 개최하여 언론 매체와 사회 대중에게 중대 사항과 진행 상황을 제때에 통보함으로써 신뢰를 증가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국내외 권리자의 관심에 적극 응답한다.
- (14) 해외 권리보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경보 방비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중대 사건 추적 연구를 강화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법률 수정 변화 동적 추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적시에 위험 조기경보 보고서를 발표한다. 해외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를 실시하고 해외 분쟁 조율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각종 사회단체의 지식재산권 대외 위험 방지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보험기관의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침해 책임보험, 특허실행보험, 특허 권리침해 손해보험 등의 보험 서비스 실시를 독려한다. 해외 권리 보호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국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이 해외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 (15) 조율과 정보 취득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대외 법 집행 협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업무 협조 강도를 높여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관의 지식재산권 대외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관찰 기업과 사회단체를 선별하여 정보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대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통보와 응급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별 보호 상황 평가 메커니즘을 연구 구축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6. 기초조건 구축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유력 지원

- (16) 기초 플랫폼 구축을 강화한다. 완비된 전국 지식재산권 빅 데이터 센터와 보호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등록 등기, 승인 공지, 분쟁 처리, 큰 사건 중요한 사건 등 정보에 대한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建立지식재산권 법 집행 정보 보고 총괄 협조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 통합 강도를 높이고 종합 연구 판단과 거시적 의사결정 수준을 높인다. 권리 보호 지원, 고발 신고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축을 강화하고 풍부한 플랫폼 기능을 구현하여 주민 편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 (17) 전문 인재 팀 구축을 강화한다. 지방, 부처, 교육기관, 업계협회, 학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재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를 인도하고 독려한다. 지식재산권 행정 법 집행과 사법 팀의 인력 배치와 직업화 전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 법 집행과 사법 인력의 적극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팀의 안정되고 질서 있는 교류를 확보한다.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 처리 전문화 건설을 추진하여 수사, 심사 체포, 심사 기소, 재판 업무 효율과 사건 처리 퀄리티를 높인다. 관련 관리 부처와 기업·사업체에서 공직 변호사, 회사 변호사, 고문 변호사 제도를 전면 실행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와 보호 업무의 법치화를 촉진한다.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 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지식재산권의 분쟁 조정, 사건 대행, 법률 보급 홍보 등 업무를 잘 수행한다. 완비된 지식재산권 중재, 조정, 공중, 사회 감독 등 인재의 선별 채용, 관리, 격려 제도를 수립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재

의 직장 교육을 강화하여 각 인재의 권리 보호 실천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 (18) 자원 투자와 지원 강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금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조건이 성숙된 지역이 우선 시범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역을 설립하여 보호 고지를 형성하도록 독려한다. 지식재산권 행정 법 집행과 사법 장비의 현대화, 스마트화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화 방식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 보호 상호 펀드를 조성하여 자기 권리 보호 능력과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7. 조직 실행 강도를 높여 업무 과제 실행 확보

- (19) 조직의 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전면 강화한다. 각 관련 측은 직책 분업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연구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을 공동 추진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업무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여 조율지도와 독촉 검사를 강화하고 각 업무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중대한 문제가 제때에 절차에 따라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되도록 보장한다.
- (20) 관찰하여 실행에 옮겨지도록 힘을 가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를 전면 실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속지 책임을 실행에 옮기며 정기적으로 당위원회 또는 정부 주제별 회의를 소집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연구하고 체제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며 관련 조치를 제정하고 인력 경비를 집행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중요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각 조치의 확실한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 (21) 고과 평가를 강화한다. 완비된 고과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실적을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실적 고과와 비즈니스 환경 평가 체계에 포함시킨다. 연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만족도 조사 제도와 보호 수준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통보 약속 후 상담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업무 강도를 높이도록 독촉한다.
- (22) 장려 격려를 강화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을 한다. 각급 정부가 기존 장려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모범 근로자와 우수한 사회적 참여자에 대한 표창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권리 침해 사칭 제보 장려 제도를 보완하여 제보자에 대한 장려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참여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불러일으킨다.
- (23) 홍보 유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처는 여론 유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전형적 사건을 정기적으로 공개 발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관념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도록 한다. 공익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기관, 지역 사회, 학교, 인터넷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행사를 진행하여 전체 사회, 특히 혁신 창업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신시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의 새로운 국면의 형성을 추진한다.

39.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산업 촉진법(심사원고 초안)

제목	中华人民共和国文化产业促进法(草案送审稿)
제재일	2019-12-13
출처	사법부 정부망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 목적] 문화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며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정 범위] 본 법에서 칭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를 핵심내용으로 진행하는 문화 콘텐츠를 창작, 생산, 전파, 전시하고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성활동, 및 상기 경영성활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문화보조생산과 중개서비스, 문화장비생산과 문화소비 단말생산 등 활동의 집합을 가리킨다.

전항에서 칭하는 경영성활동의 유형에는 콘텐츠 창작 생산, 아이디어 디자인, 정보 서비스, 문화 전파 채널, 문화 투자 운영, 문화 오락 레저 등이 포함된다.

제3조 [발전 방침] 국가는 국민 중심을 고수하고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국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할 것을 견지하며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견지하고 창조성 전환과 혁신발전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양을 견지하고 사회적 효익 우선,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의 통일을 견지하여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제4조 [계획 발전] 국가는 문화산업 발전 촉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특별 계획을 제정하며 문화산업 발전 지도 목록을 발표하여 문화산업의 구조조정과 배치 최적화를 촉진한다.

제5조 [문화 혁신] 국가는 문화산업 내용, 기술, 경영방식 등 측면의 혁신을 독려하고 문화 명품과 인재를 배출하는 데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 [부처 직책] 국무원 문화 관광 주무부처, 방송TV 주무부처, 공업정보화 주무부처와 국가인터넷정보부처, 국가신문출판(판권) 주무부처, 국가영화 주무부처는 본 법 및 관련 법률 법규와 부처 직책에 따라 본 영역의 문화 산업 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문화산업 촉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관광 주무부처, 방송TV 주무부처, 공업정보화 주무부처와 지방인터넷정보부처, 지방신문출판(판권) 주무부처, 지방영화 주무부처는 본 법 및 관련 법률 법규와 부처 직책에 따라 본 영역의 문화산업 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기타 관련 부처는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문화산업 촉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업계조직] 국가는 문화산업 업계조직 건설을 독려하고 지원하며 전국적인 문화산업 업계조직의 설립을 지도한다.

문화산업 업계조직은 법에 따라 업계자율규범을 수립하고 정관에 의거해 업무활동을 전개하며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산하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8조 [융합발전] 국가는 문화산업이 과학기술 및 기타 국민경제 관련 산업과 융합되어 발전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문화산업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독려한다.

제9조 [지역발전] 국가는 문화산업 지역 조화 발전을 촉진하여 각 지역에서 특색을 살려 차별화를 이루도록 독려하고 문화 생태를 보호하며 동부지역이 서부지역과 함께 문화산업 협력과 돕기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문화기업이 서부지역의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0조 [합법경영] 문화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은 법에 따라 경영하고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제11조 [합법적 내용]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 문화 콘텐츠를 창작, 생산, 전파, 전시하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법규, 공공질서를 지키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 통일,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해쳐서는 안 되고 국가 안보, 명예와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해서는 안 되고 국가 민족 종교 정책을 위반하거나 민족 원한을 부추기거나 민족단결을 깨뜨려서는 안 되며 영웅 열사의 사연과 정신을 왜곡, 희화화, 모독, 부정해서는 안 되고 사이비종교, 미신, 음란, 도박, 폭력, 마약 복용과 범죄 교사를 선양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고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지식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창작 생산

제12조 [창작 원칙] 국가는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의 창작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모든 민족의 문화 혁신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창작 생산을 독려하며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우수한 품질, 풍부한 종류, 다양한 경영 방식의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13조 [창작 독려] 국가는 아래와 같은 우수한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 (1) 당과 조국, 국민, 영웅을 노래하는 작품
- (2)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양하는 작품
- (3)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혁명문화를 계승하며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는 작품
- (4)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작품

- (5) 과학 교육 사업의 발전과 과학기술 보급을 추진하는 작품
- (6) 중화 문명과 세계 기타 문명의 교류와 상호 참고를 촉진하는 작품
- (7) 국가 지원정책에 부합되는 기타 작품

제14조 [창작 혁신] 국가는 문화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진행하는 창작을 독려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소재, 장르, 형식, 스타일, 유파의 탐구와 혁신을 지원한다.

제15조 [명품 전략] 국가는 문화 명품 전략을 실시하여 특별 창작 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중대 창작 프로젝트 사업을 구체화하며 문화 명품 공연 방송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깊은 사상, 뛰어난 예술성, 정교한 제작이 서로 어우러진 명품 작품을 창작 생산한다.

국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작품 평가체계, 문화예술 수상 평가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문화 예술 평론을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제16조 [창작 편의] 국가는 창작자가 대중과 현실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끊임없이 경험을 쌓고 예술적 영감을 얻을 것을 제창한다.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창작자가 생활하고 현장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조건과 성과 전시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문화 영역의 인민단체가 단결 인도, 연락 조율, 서비스 관리, 자율 권리 보호 등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독려하고 지원하며 법에 따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17조 [펀드 지원] 국가는 기존의 전문 펀드의 역할을 발휘하여 문화예술, 철학 사회과학 등의 창작 활동을 후원한다.

제18조 [전파 지원]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음반·영상물 제품, 전자 출판물,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개체, 극장, 영화관, 서점 등 장소,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관 등 기관은 우수한 작품을 대대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제19조 [육성 기초] 각급 각 유형의 학교는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 교육을 완비하여 심미교육을 강화하고 문화감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 전승과 혁신 과정에서의 국민 교육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한다.

제20조 [학술체계 구축] 국가는 중화 문화의 역사적 근원, 발전 맥락, 기본 방향을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를 전승하여 중국의 실정과 특색에 알맞은 사상체계, 학술체계와 담화체계를 구축하고 중화 민족의 문화 유전자가 현대 문화에 적응하고 현대 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제21조 [혁신 수단] 국가는 창작 생산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응용, 새로운 경영방식, 새로운 모델과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창작 생산 수단과 표현 방식을 풍부하게 하고 창작 생산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독려한다.

국가는 우수한 인터넷 문화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고 지원하며 우수한 인터넷 문화 창작, 생산, 전파와 평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한다.

제22조 [아이디어 디자인] 국가는 아이디어 디자인 서비스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디어 디자인의 문화적 내포를 풍부하게 하고 아이디어 디자인 제품의 거래와 성과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문화적 함량과 부가가치를 높인다.

제23조 [전통 공예 진흥] 국가는 전통 공예의 전승 보호와 개발 혁신 강화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우수한 전통을 유지하는 기초에서 수공예 기법과 현대 과학 기술, 공예 장비, 아이디어 디자인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통 공예가 현대 생활 속으로 들어가도록 추진할 것을 독려한다.

제24조 [문화 관광 융합 촉진] 국가는 관광 자원에 의존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작 생산하여 관광의 문화적 내포를 향상시키고 문화 산업과 관광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제25조 [해외 홍보] 국가는 해외 전파에 적합한 우수한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의 창작 생산, 번역, 국제 협력 제작을 지원하고 외교, 관광, 상무, 교육 등의 외교 교류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의 해외 홍보,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

제26조 [품질관리] 국가는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의 완비된 품질 표준,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사상을 깨우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인생을 수련하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창작 생산, 제공하도록 인도한다.

제3장 문화기업

제27조 [기업 주체] 국가는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법에 따라 문화기업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각종 문화기업의 시장 주체 지위와 자주적인 경영권을 존중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28조 [행정허가]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문화산업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할 경우, 해당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29조 [사회적 책임] 문화기업은 중화 문화 입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선양하고 실천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국가 문화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몸과 마음의 발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며 사회 공서양속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0조 [국유기업 국유자산] 국유 문화기업은 주업에 입각하여 콘텐츠 생산의 장점과 전파 주요 채널의 장점을 굳건히 하고 발전시켜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주도적 및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인력 관리, 사업 관리, 자산 관리, 방향성 관리가 통일된 완비된 국유 문화자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유 문화기업의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의 종합 고과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고과 결과와 성과급 배분이 연결되는 제도를 수립하여 국유 문화자산의 가동률을 높이고 국유 문화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제31조 [공공서비스 참여] 국가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기업이 공공 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재 보호와 전승 이용 등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인도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민간 기업으로부터 공공 문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목록을 제정한다.

제32조 [기업 집결] 조건이 되는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 문화산업 발전 계획 구도에 의거해 문화산업단지 건설을 규범적으로 이끌고 문화기업의 집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33조 [부지 지원] 현금 이상 인민정부는 문화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문화산업 부지를 토지공간 계획에 포함시켜 문화산업 시설, 사업 용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유휴 시설을 이용하고 건설용지를 활성화시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독려한다.

국무원 자연자원 주무부처는 문화 시설 용지 유형을 보완하고 건설용지의 복합적 사용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34조 [서비스 보장] 조건이 되는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 정책을 출범하여 기업이 문화산업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구축하여 문화기업을 위해 생산 경영 장소와 교육 지도, 정보 자문, 금융, 지식재산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제35조 [브랜드 구축] 국가는 문화기업의 브랜드 육성과 홍보를 독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 등록, 위탁관리,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제4장 문화시장

제36조 [시장 체계] 국가는 통일적으로 개방되고 경쟁하면서 질서 있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관리감독이 유력한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문화자원 배치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제37조 [제품과 요소 시장] 국가는 각종 문화 콘텐츠와 요소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지역 분할과 업계 장벽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전송되고 서로 연결되고 도시와 농촌을 관통하며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문화 전파 체계가 구축되도록 독려하며 문화 콘텐츠와 인재, 재산

권, 기술, 정보 등 문화 생산 요소 간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한다.

제38조 [문화 소비] 국가는 훌륭한 문화 소비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신행 문화 소비 모델을 육성하여 문화 소비를 선도하고 촉진한다.

제39조 [가격 관리]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의 가격은 주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되며 동시에 가격 형성, 운영에서의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한다. 경영자는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며 생산경영 비용과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특별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관리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

제40조 [중개 서비스] 국가는 문화 중개 서비스를 발전시켜 문화 매니지먼트 대행, 평가, 법률 서비스, 감정, 공증, 투자, 보험, 보증, 경매 등의 중개 서비스 기관을 완비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41조 [시장질서] 국가는 문화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고 보호하며 독점 행위와 부정경쟁 행위를 저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시정하여 문화 시장 환경을 정화한다.

제42조 [성실 경영]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은 문화산업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사회 공중도덕, 상업도덕, 성실 신용을 지키고 사회 대중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며 허위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판매수익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숨겨서는 안 되며 시장 평가 정보를 꾸며내서는 안 되고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과장된 홍보를 하여 문화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제43조 [신용 체계] 국가는 문화시장의 신용 체계를 수립하고 신용 장려와 신용상실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가는 신용 조회 기관, 신용 평가 기관 등이 문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 상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독려하고 제3자 신용 평가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44조 [시장 감독관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문화시장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시장의 종합적인 법 집행을 추진하며 문화시장에 대한 기술 감독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문화시장 경영활동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 문화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45조 [지식재산권 보호]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법 집행 담당 부처는 조치를 취해 문화산업 지식재산권 창조, 운영, 보호,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권리침해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제5장 인재 보장

제46조 [인재 계획] 국가는 문화산업 발전 수요가 이끄는 방향으로 콘텐츠 창작 생산의 전문 인재와 투자 운영, 기업 관리, 융합 발전,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분야의 혁신형 기술 인재, 부족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7조 [학교 양성] 국무원 교육 주무부처와 인적자원 사회보장 주무부처는 문화산업 및 관련 학과 전공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조건이 되는 대학교, 중등 직업학교, 기능공 학교에서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전공과 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산업 발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제48조 [사회 양성] 국가는 민간 기업이 문화산업 인재 양성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며 사회화 문화산업 인재 교육 기관, 훈련 기관을 육성한다.

국가는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조직이 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 인재 양성에 참여하고 선생님과 학생의 실천 실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49조 [인재 메커니즘] 국가는 문화산업 인재 특징에 부합되는 발견, 사용, 평가, 유동, 장려 및 비축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계약 체결, 프로젝트 협력, 재식재산권 지분 투자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문화산업 인재의 집결을 독려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우수한 해외 문화 인재의 영입을 독려한다.

제50조 [인재 관리] 국무원 인적자원 사회보장 주무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는 과학적인 문화산업 인재 유형별 평가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인재 혁신 창업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제6장 과학기술 뒷받침

제51조 [문화 과학기술 융합] 국가는 과학기술의 문화산업 영역 혁신 발전에서의 역할 발휘를 독려하고 문화와 과학기술 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과학기술의 뒷받침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무원 과학기술 주무부처는 문화산업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며 문화기업의 첨단기술 응용을 독려한다.

제52조 [기술혁신 체계] 국가는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 심층 융합의 문화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연 전략 연맹과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한다.

제53조 [자원 디지털화] 국가는 문화자원의 디지털화, 문화유산 데이터의 유형별 수집 관리, 중화 민족 문화 유전자의 표시, 문화 빅 데이터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법에 따라 개발 이용하고 중화 문화 요소와 표시를 콘텐츠 창작 생산, 아이디어 디자인 및 도시 농촌 계획 건설, 생태 문명 건설, 제조 강국, 인터넷 강국과 디지털 중국의 건설에 융합시키는 것을 독려한다.

제54조 [새로운 경영방식 육성] 국가는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기반의 신형 문화 경영방식의 육성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디지털 창조, 인터넷 시청각, 디지털 출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친환경 인쇄 등의 신형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신형 산업과의 상호 융합을 추진한다.

제55조 [전통산업 개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출판 발행, 방송 영화 TV, 연예 엔터테인먼트, 인쇄 복제, 광고 서비스, 전시 컨벤션 서비스 등의 전통 문화 산업에서의 응용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전통 문화산업의 콘텐츠 창작, 전파 방식과 표현수단 등에서의 혁신을 추진하고 전통 문화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제56조 [장비제조업] 국가는 문화 장비 제조업의 발전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콘텐츠의 제작, 전송 및 구현의 관련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기술 혁신 능력과 시스템 솔루션 통합 능력을 향상시키며 문화 핵심기술 장비 제조 수준을 높인다.

제57조 [기술표준] 국무원 표준화 주무부처 및 관련 주무부처는 문화산업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여 문화산업 기술 표준을 제정 및 보완하고 기업, 업계조직, 과학기술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이 업계 표준, 국가 표준, 국제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며 문화산업 표준의 실시와 감독을 강화한다.

제58조 [기술평가] 국가는 문화산업 핵심기술 안전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응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비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장 금융 재무 세금 지원

제59조 [금융 서비스 체계] 국가는 다차원, 다각화, 다채널의 완비된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문화자원과 금융자본 간의 효과적인 연결을 추진한다.

제60조 [간접융자] 국가는 금융기관이 문화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을 위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서비스를 전개하며 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통제 가능한 리스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전제로 문화산업의 인프라 건설과 개조에 대한 금융 지원 강도를 높이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융자보증기관이 법에 따라 문화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에 융자보증을 제공하고 은행-보증 협력, 재보증, 보험 등의 방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융자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독려한다.

제61조 [직접융자] 국가는 조건에 부합되는 각종 문화기업이 다차원 자본 시장을 이용해 직접 융자하는 것을 독려한다.

국가는 조건이 되는 지방 인민정부, 문화기업이 문화산업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펀드 투자 모델을 혁신하고 선도적 역할과 지렛대 역할을 발휘할 것을 독려한다.

제62조 [보험 서비스] 국가는 보험기관이 법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 수요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63조 [소비 금융] 국가는 금융기관이 신형 문화 소비 금융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제64조 [외화 사용 보장] 국가는 법에 따라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의 문화 대외무역, 국가 간 용자와 투자 등의 합리적인 외화 사용 수요를 보장한다.

제65조 [재정 지원] 국가는 단계별, 시기별 문화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해 재력상황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결부시켜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자금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적으로 조달하며 재정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실적 관리를 실시하고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한다.

조건이 되는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본급 정부 예산에서 재정자금을 통일적으로 조달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 [문화자본 투자]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국유 문화 자본 투자운영회사를 설립하거나 개편하여 핵심 문화기업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지원하고 소규모 문화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67조 [세수지원] 국가는 세법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세수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제8장 법적책임

제68조 [직무상 과실 책임]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현금 이상 관련 부처는 문화산업 발전을 이끄는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고 콘텐츠 가이드와 경영 방향을 단단히 틀어잡아야 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급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은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담당한 주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69조 [독직 책임]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금 이상 관련 부처에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해당 상급 기관 또는 감찰 기관에서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담당한 주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1)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재정자금, 펀드를 점유, 유용, 차단, 억류한 행위
- (2)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득을 받은 행위

- (3)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심사활동을 진행한 행위
- (4) 문화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한 행위
- (5)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사로운 부정행위

제70조 [시장주체 책임 추궁] 공민, 법인과 비법인조직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관련 주무부처는 각자 직책에 의거해 경고를 주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 동시에 불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동시에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중단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1) 법률, 행정법규에 명시된 금지 내용 또는 공서양속을 심하게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행위
 - (2) 문화 콘텐츠를 불법 전파하고 문화 서비스를 불법 제공하는 행위
 - (3)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문화산업 활동에 종사한 행위
 - (4)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5) 관련 허가증, 승인 또는 증명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불법 대여, 대출, 매매하거나 본 법에서 규정한 허가증, 승인 또는 증명 서류를 기타 방식으로 불법 양도한 행위
 - (6) 국가 문화산업 우대정책 지원을 사취한 행위
 - (7)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 거래에 종사하고 판매수익을 허위 보고하거나 숨기고 시장 평가 정보를 꾸며낸 행위
 - (8)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
 - (9) 기타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행위
- 관련,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71조 [신용상실 징계] 문화기업 및 그 직접 책임자가 행정처벌과 형벌을 받은 경우, 처벌 정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집행 부처가 대외에 공시하고 엄중한 불법 신용상실 주체에 대해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무부처가 연합 징계를 내린다.

제72조 [전파 제한]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의 주요 창작자가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무부처는 조치를 취해 관련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전파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73조 [기타 문책 상황]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해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며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할 경우,公安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장 부칙

제74조 [외자 진입 허가] 해외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문화산업에 투자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75조 [시행일자] 본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

40. 인터넷정보 콘텐츠생태 관리규정

제목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제재일	2019-12-15
출처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제1장 총칙

제1조 좋은 인터넷 생태를 조성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는 정부, 기업, 사회, 네티즌 등 주체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육성과 실천을 근본으로 인터넷 정보 콘텐츠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완비된 인터넷 종합 관리 체계의 수립, 깨끗한 인터넷 공간의 조성, 좋은 인터넷 생태의 구축을 목표로 삼아 전개하는 긍정에너지 선양, 불법 불량 정보 처리 등의 관련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처는 중국 전역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와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며 각 관련 주무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지방 인터넷 정보 부처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와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며 지방 각 관련 주무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2장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

제4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법률 법규를 지키고 공서양속을 따라야 하며 국가이익,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5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하도록 독려한다.

- (1)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이론, 제도, 문화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생동하게 해석하는 내용
- (2) 당의 이론 노선 방침 정책과 중앙의 중대 의사결정 배치를 선전하는 내용
- (3) 경제사회 발전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인민 대중의 위대한 분투와 불같이 뜨거운 생활

을 반영하는 내용

- (4)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선양하고 우수한 도덕문화와 시대정신을 홍보하며 중화민족의 진취적인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
- (5) 사회의 관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혹을 풀고 사건을 분석하고 이치를 따져 대중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6) 중화 문화의 국제 영향력을 높이고 세계에 진실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7) 품위와 격조를 중요시하고 책임을 말하며 진선미를 노래하고 단결과 안정을 촉진하는 등의 기타 내용

제6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며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 (4) 영웅 열사의 사적(事迹)과 정신을 왜곡, 희화, 모독, 부정하고 모욕, 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웅 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
- (5)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테러활동,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하여 실시하는 내용
- (6) 민족 원한,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 (7) 국가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8) 루머를 유포하여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
- (9) 음란, 포르노,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유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10)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11)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7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조치를 취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불량 정보의 제작, 복제, 게시를 방지하고 막아야 한다.

- (1) 과장된 제목을 사용해 내용과 제목이 심각하게 다른 경우
- (2) 스캔들, 추문, 악행 등을 이슈화하는 경우
- (3) 자연재해, 중대사고 등 재난을 부당하게 평론한 경우
- (4) 성적 암시, 성적 도발 등을 포함하여 성적 연상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5) 피비린내, 스릴러, 잔인함 등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 (6) 군중 차별, 지역 차별 등을 선동하는 경우
- (7) 저속, 졸렬, 세속에 영합하는 내용을 선양할 경우
- (8) 미성년자의 모방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행위와 사회 공중도덕을 위반한 행위, 미성년자의 나쁜 취미 등을 유도하는 경우
- (9) 인터넷 생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타 내용

제3장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제8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 콘텐츠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여 본 플랫폼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인터넷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플랫폼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사용자 회원가입, 계정 관리, 정보 게시 심사, 댓글 심사, 페이지 생태 관리, 실시간 순찰, 응급대처 및 인터넷 루머와 블랙산업사슬 정보 처리 등의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책임자를 두고 업무 범위와 서비스 규모에 걸맞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교육 고과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본 규정의 제6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전파해서는 안 되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규정한 정보의 전파를 방지하고 막아야 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본 규정의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한 후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주류 가치의 방향을 견지하고 정보 추천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페이지 생태 관리를 강화하여 아래 중점 부분(서비스 유형, 위치 코너 등 포함)에서 본 규정의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적극 구현하도록 독려한다.

- (1)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첫 페이지 첫 화면, 팝업창과 주요 뉴스 정보 콘텐츠 페이지 등
- (2) 인터넷 사용자 공공 계정 정보 서비스 특선, 인기 검색 등
- (3)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정보 서비스 인기 추천, 랭킹 차트, 팝업창 및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정보 서비스 코너 등
- (4)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인기 검색어, 인기 검색 이미지 및 자동 검색 등
- (5) 인터넷 포럼 커뮤니티 서비스 첫 페이지 첫 화면, 랭킹 차트, 팝업창 등
- (6)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첫 페이지 첫 화면, 발견, 특선, 랭킹 차트, 팝업창 등
- (7) 인터넷 주소 안내 서비스, 브라우저 서비스, 입력기 서비스 첫 페이지 첫 화면, 랭킹 차트, 스킨, 연관 검색어, 팝업창 등
- (8) 디지털리딩, 온라인게임, 웹툰 서비스 첫 페이지 첫 화면, 특선, 랭킹 차트, 팝업창 등
- (9) 생활 서비스, 지식 서비스 플랫폼 첫 페이지 첫 화면, 인기 추천, 팝업창 등
- (10) 전자상거래 플랫폼 첫 페이지 첫 화면, 추천 코너 등
- (11) 모바일 앱 스토어, 모바일 스마트 단말 사전 설치 애플리케이션과 내장 정보 콘텐츠 서비스 첫 화면, 추천 코너 등
- (12) 미성년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터넷 정보 콘텐츠 특별 코너와 제품 등

(13) 제품 또는 서비스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있고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의 주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타 중점 부분.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상기 중점 부분에 본 규정의 제7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제12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맞춤 알고리즘 추천 기술을 적용해 정보를 푸시할 경우, 본 규정의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는 추천 모델을 설정하여 완비된 수동 관여와 사용자 자주 선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사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미성년자의 사용에 적합한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성년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익한 정보의 획득에 편의를 주도록 독려한다.

제14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본 플랫폼이 설치한 광고위치와 본 플랫폼에서 전시되는 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 순찰을 강화해야 하며 불법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규칙과 플랫폼 공약을 제정하고 공개하고 사용자 약관을 보완하여 사용자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과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 신용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사용자 계정의 신용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눈에 띄는 위치에 간편한 신고 고발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고발 방식을 발표하여 대중의 신고 고발을 제때에 접수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 상황,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담당자 직책 이행 상황, 사회 평가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

제18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는 문명하고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법률 법규의 요구와 사용자 약관의 약속에 따라 관련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며 게시물 작성, 답변, 댓글, 동영상 댓글 자막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활동에 참여할 때 문명하게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며 본 규정의 제6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고 본 규정의 제7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방지하고 막아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그룹, 포럼 커뮤니티 코너의 구축자와 관리자는 그룹, 코너의 관리 책임을 이행

하고 법률 법규, 사용자 약관과 플랫폼 공약 등에 따라 그룹, 코너 내 정보 게시 등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에 적극 참여하여 신고, 고발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와 불량 정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좋은 인터넷 생태를 공동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21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과 관련 정보 기술을 이용해 모욕, 비방, 위협, 루머 유포 및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22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 게시, 삭제 및 기타 정보 구현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딥러닝,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 신응용을 이용해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수동 방식 또는 기술 수단을 통해 트래픽 허위 조작, 트래픽 하이재킹 및 허위 계정, 불법 거래 계정, 사용자 계정 조종 등의 행위를 하여 인터넷 생태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당기, 당장(당의 휘장), 국기, 국장(국가의 휘장), 국가(国歌) 등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로고 및 내용을 이용하거나 국가의 중대 행사, 중대 기념일과 국가기관 및 그 실무자의 명의 등을 빌어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온라인 상업 마케팅 행사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인터넷 업계조직

제26조 업계조직이 서비스 지도와 중개 역할을 발휘하여 회원 업체의 사회적 책임감 증가, 주선율 노래, 긍정 에너지 선양, 불법 정보 반대, 불량 정보 방지와 배척을 이끌도록 독려한다.

제27조 업계조직이 완비된 업계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의 업계 규범과 자율 공약을 제정하며 콘텐츠 심사 승인 세칙을 수립하여 회원 업체가 완비된 서비스 규범을 수립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감독을 받도록 지도하는 것을 독려한다.

제28조 업계조직이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교육 훈련과 홍보 가이드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 업체, 종사자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사회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공동 참여 의식을 강화시키도록 독려한다.

제29조 업계조직이 업계 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규약에 따라 업계 평의 등의 평가 상별 제도를 수립하여 회원 업체에 대한 격려와 징계 수위를 높이고 회원 업체의 신용 의식을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제6장 감독 관리

제30조 각급 인터넷 정보 부처는 관련 주무부처와 함께 완비된 정보 공유, 공동 의논 통보, 합동 법 집행, 사건 독촉 처리, 정보 공개 등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업무를 공동 전개한다.

제31조 각급 인터넷 정보 부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정보 콘텐츠 관리의 주체적 책임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존재하는 플랫폼에 대해 특별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 부처와 관련 주무부처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32조 각급 인터넷 정보 부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법률 법규 위반 행위 대장 관리 제도를 세우고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제33조 각급 인터넷 정보 부처는 정부, 기업, 사회, 네티즌 등의 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감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생태 관리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제7장 법적책임

제34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가 본 규정의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과 약속에 따라 경고 정돈 개선, 기능 제한, 업데이트 중단,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 정보 내용을 제때에 해소하고 기록을 보존한 후 관련 주무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본 규정의 제10조,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정보 등 관련 주무부처에서 직책에 의거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본 규정의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区)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터넷 정보 부처에서 직책에 근거해 약속 후 상담을 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정보

업데이트 중단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본 규정의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구(区)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터넷 정보 부처에서 직책에 근거해 약속 후 상담을 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정보 업데이트 중단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본 규정의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정보 등 관련 주무부처는 직책에 근거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인터넷 정보 부처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와 함께 완비된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중대 신용상실 합동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사용자에게 대해 법률 법규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영위 제한, 온라인 행위 제한, 업계 진입 금지 등의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제40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41조 본 규정에서 칭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산자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를 제작, 복제, 발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 콘텐츠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42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4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제목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实施条例
제재일	2019-12-26
출처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제1장 총칙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이하 ‘외상투자법’으로 약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국가는 외국인의 투자를 독려하고 촉진하며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범화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 제3조 외상투자법 제2조 제2하의 제1항, 제3항에서 칭하는 기타 투자자는 중국의 자연인을 포함한다.
- 제4조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는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에서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 등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기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발표하거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 상무부 주무부처에서 발표한다.
- 국가는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와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적시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정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절차 조정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 투자 주무부처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직책 분업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함께 잘 해나간다.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관련 부처의 법률 법규와 직책 분업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 진행을 지원, 독촉하고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에서의 중대한 문제점을 제때에 조율, 해결해야 한다.

제2장 투자 촉진

- 제6조 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정부의 자금 조달, 토지 공급, 세수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청, 인적자원 정책 등의 측면에서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内资企业, 국내 자금을 이용해서 만든 기업)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정부 및 그 관련 부처에서 제정하는 기업 발전 지원 정책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업의 신청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신청 처리의 조건, 절차, 시한 등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행정법규, 규약,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거나 정부 및 그 관련 부처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 지방성 법규의 초안을 작성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서면 의견 수렴, 간담회, 논증회, 공청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과 관련 상회, 협회 등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야 하며 집중 반영되었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한 권리 의무 문제와 관련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선 적당한 방식을 통해 채택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발표되지 않은 경우 행정관리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범성 문건은 실제와 결부시켜 발표에서 시행까지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측이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완비된 외국인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의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제9조 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정부사이트,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법률, 법규, 규약, 규범성 문건, 정책 조치와 투자사업 정보를 집중 열거하고 다양한 루트와 방식을 통해 홍보, 해석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자문,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법 제13조에서 칭하는 특별 경제 구역은 국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더 높은 강도의 대외 개방 정책 조치를 실행하는 특정 구역을 가리킨다.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실행한 외국인투자 시험적 정책조치는 실천을 통해 실행 가능성이 증명된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기타 지역 또는 전국적 범위 내에서 보급된다.

제11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 독려 산업 목록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독려하고 인도하는 특정 업종, 분야, 지역을 열거한다. 외국인투자 독려 산업 목록은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에서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작성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투자 주무부처, 상무 주무부처에서 발표한다.

제12조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 세수, 금융, 용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수익으로 중국 경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혜택을 받는다.

제13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내자기업과 평등하게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과 단체표준의 제정, 수정 작업에 참여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요에 따라 기업표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기타 기업과 공동 제정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표준화 행정주무부처와 관련 행정 주무부처에 표준의 입안 제안을 제기할 수 있고 표준의 입안, 초안 작성, 기술 심사 및 표준 시행 정보의 피드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의견과 제안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표준의 초안 작성, 기술 심사의 관련 작업 및 표준의 외국어 번역 작업을 맡을 수 있다.

표준화 행정주무부처와 관련 행정 주무부처는 완비된 관련 업무 체제를 수립하여 표준의 제정, 수정의 투명도를 높이고 표준의 제정, 수정의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제14조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 겨냥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높은 기술 요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 지역과 본 업종의 정부조달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는 것을 방해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달의 구매자, 구매대행기관은 정부조달 정보 발표, 공급업체 조건 확정과 자격 심사, 입찰 평가 표준 등 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제 형태, 조직 형태, 지분 구조, 투자자 국적,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내자기업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 및 그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활동 사항에 대해 구매자, 구매대행기관에 질문,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구매자, 구매대행기관,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처는 규정된 기간 안에 답변을 하거나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는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등의 법률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단속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 또는 해외에서 공모주, 사채 등의 증권 및 공개 또는 비공개 발행되는 기타 금융상품, 외채 차용 등의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권한 내에서 비용감면, 용지지표보장, 공공서비스 제공 등 면에서의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의화 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의화 정책 조치의 제정은 고품질 발전 추진의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효과, 사회 효과, 생태 효과의 향상에 유리해야 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유리해야 한다.

제20조 관련 주무부처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를 작성하고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가이드는 투자환경 소개, 외국인투자 사무 처리 안내서, 투자사업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3장 투자 보호

제21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를 실행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를 실행할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징수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따라 제때에 보상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징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경내의 출자, 이익,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취득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용료, 법에 따라 획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 소득 등은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 입금, 송금 가능하며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든 통화, 금액 및 입금, 송금의 빈도 등을 불법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 국적의 직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급여소득과 기타 합법적 소득은 법에 따라 자유 송금 가능하다.

제23조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의 법 집행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신속협동보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시스템을 완비시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표준 제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허에 관련될 경우, 특허에 관련된 표준의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행정기관(법률, 법규에서 권한을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 포함, 이하 같음) 및 실무자는 행정허가, 행정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 및 기타 행정 수단을 이용하고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 양도를 강요하거나 변칙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업기밀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직책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 짓고 아는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직책 이행과 무관한 자는 관련 자료,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완비된 내부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효과적인 조치로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업기밀을 보호해야 하며 법에 따라 기타 행정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정보에 포함된 상업기밀에 대해 보안 처리를 하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26조 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은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무원 부처와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처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규범성 문건에 대한 심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외상투자법 제25조에서 칭하는 약속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가 법정 권한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 지역 내 투자에 적용되는 지원 정책,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편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속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책 약속의 내용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법에 따라 한 정책 약속과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 구획 조정, 정부 지도부 교체, 기관 또는 기능 조정 및 관련 책임자의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정책 약속, 계약 약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입게 된 손실을 제때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제29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완비된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한 문제점을 즉각 처리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 부처 간 합동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중앙정부 측면의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하며 지방의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부처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부처 또는 기관은 신고 업무 규칙을 보완하고 신고 방식을 완비하며 신고 처리 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고 업무 규칙, 신고 방식, 신고 처리 시한은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실무자의 행정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를 통해 조정 해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측은 조정 시 대상자인 행정기관 및 그 실무자에게 상황을 알아볼 수 있고 해당 행정기관 및 그 실무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정 결과는 서면 방식으로 신청자에게 제때에 고지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의 조정 해결을 신청할 경우, 이는 그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1조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거나 조정 해결을 신청하는 데 대해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든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업무 시스템을 제외하고도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기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정부 및 그 관련 부처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회,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회, 협회의 참가 또는 퇴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든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상회, 협회는 법률 법규와 규약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제때에 반영하여 회원을 위해 정보 자문, 홍보 교육, 시장 확장, 경제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상회, 협회가 법률 법규와 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4장 투자 관리

제33조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 금지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 제한 분야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때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지분 요구사항, 임원 요구사항 등의 제한적 진입 특별 관리 조치에 부합해야 한다.

제34조 관련 주무부처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 내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나 네거티브 리스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허가, 기업登記 등록 등의 관련 사항을 처리해주지 않으며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승인에 관련될 경우, 관련 승인 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

관련 주무부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실행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활동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제한적 진입 특별 관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발견할 경우, 외상투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5조 외국인 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주무부처는 국내 자본과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허가 조건, 신청 자료, 심사 부분, 심사 시한 등 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성 요구사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담당한 관련 주무부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사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에 부합되는 허가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 약속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외국인투자가 투자사업의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37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기 등록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 또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처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그가 권한을 위임한 시장감독관리부처의 리스트를 발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위안화로 표시할 수 있고 교환가능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등록시스템 및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무 주무부처에 투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 시장감독관리부처는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결과 업무 연결을 잘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정보 제출을 지도해야 한다.

제39조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빈도와 구체적인 절차는 국무원 상무 주무부처에서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확실히 필요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원칙에 따라 확정짓고 발표한다. 상무 주무부처, 기타 관련 부처는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하며 부처의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정보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출할 것을 다시금 요청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 심사를 진행한다.

제5장 법적책임

제41조 정부와 관련 부처 및 그 실무자에게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법률과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 (1)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하지 않을 경우
- (2) 외국인 투자기업이 표준의 제정, 수정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불법 제한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 겨냥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높은 기술 요구를 적용할 경우
- (3)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입금, 송금을 불법 제한하는 경우
- (4)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법에 따라 한 정책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법정 권한을 넘어 정책 약속을 하거나 정책 약속한 내용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42조 정부조달의 구매자, 구매대행기관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대

우를 할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적책임을 물으며 낙찰, 거래성사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고에 대해 기간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접 담당한 주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43조 행정기관 및 그 실무자가 행정 수단을 이용해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 양도를 강요하거나 변칙 강요한 경우, 직접 담당한 주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6장 부칙

제44조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약칭)은 외상투자법이 시행된 후 5년 안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등기 변경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기존 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을 계속 보류할 수도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의 조정과 등기 변경 처리를 하지 않은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처는 해당 기업이 신청한 기타 등기 사항을 처리해주지 않으며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

제45조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의 등기 변경 수속을 밟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에서 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등기 변경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등기 변경 처리를 담당한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기업이 등기 변경 수속을 밟을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등이 법에 따라 조정된 후 기존 공동 경영, 합작의 각 측이 계약에서 약속한 지분 또는 지분 양도 방법, 수익 배분 방법, 잔여 재산 배분 방법 등은 계속하여 약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경내 투자는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가 중국 대륙에 투자할 경우,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실행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이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으로 약칭)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을 적용하며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및 그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실행한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중국 경내에 투자할 경우,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실행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49조 본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

례(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 《중외합자경영기업 공동경영기간 임시시행규정(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期限暂行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은 동시에 폐지된다.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정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이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42. 국가광전총국의 입법 업무 규정

제목	国家广播电视总局立法工作规定
제재일	2020-01-20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제1장 총칙

제1조 국가방송TV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함)의 입법 업무를 규범화하여 입법의 퀄리티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 《규약 제정 절차 조례》, 《법규 규약 등록 조례》 등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광전총국의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입법 업무에 적용된다.

- (1) 중장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업무계획 수립
-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위탁 또는 권한 위임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입법 건의를 제기
- (3)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과 광전총국의 직권 규정에 따라 부처의 규약을 제정, 수정, 해석 및 폐지
- (4) 기타 입법 업무

제3조 입법 업무는 당의 전면적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하여 ‘4개의 의식(四个意识)’을 강화하고 ‘4개의 자신감(四个自信)’을 굳건히 하며 ‘2개의 유지(两个维护)’를 해냄으로써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의사 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당의 선전 사상 방침 정책이 법정 절차를 통해 국가적 의지가 되도록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

입법 업무는 과학적인 입법, 민주적인 입법, 법에 따른 입법을 고수하고 개혁 발전의 요구 사항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질서 있는 입법 참여와 의견 표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사회주의 법제 통일을 수호하며 입법의 퀄리티와 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입법 업무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입법의 전 과정에 융합시켜 도덕관과 법치관을 통일하고 업계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을 현대화해야 한다.

입법 업무는 당 관리(党管) 이데올로기 원칙을 확실하게 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속지 관리, 등급별 책임과 관리자가 책임지는 등의 관리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제4조 중대한 체제와 중대한 정책의 조정에 관련된 입법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광전총국의 당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그중 법률, 행정법규에 관련된 경우, 또는 광전총국의 당조직에서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당중앙에 보고하도록 상급 부처의 당위원회(당조직)에 제청해야 한다.

제5조 정책법규사는 광전총국의 입법 업무를 진행하고 조율한다.

광전총국의 기타 부처는 직책 범위 내에서 정책법규사를 협조하여 관련 입법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2장 입안

제6조 정책법규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입법 업무 배치와 홍보 문화 영역의 입법 계획에 따라 법에 따른 이데올로기 실행을 위한 업무 책임제에 입각하여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방송TV 고품질 혁신적 발전을 이끄는 데 법치 보장을 제공하며 광전총국 당조직의 중대한 의사결정 배치를 중심으로 여러 방면을 통일적으로 살피면서 핵심을 두드러지게 하는 원칙에 따라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광전총국의 당조직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통과한 후 사회에 공포한다.

정책법규사는 중장기 입법계획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연간 입법 계획과 연결시키고 업무 수요를 결부시켜 광전총국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 정책법규사는 내년도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광전총국의 기타 부처로부터 법률, 행정법규와 규약의 입안 제안을 모집해야 한다.

광전총국의 기타 부처는 법정 기능과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 분담에 따라 광전총국 당조직의 연간 핵심 업무를 긴밀히 결부시켜 요구하는 형식과 기한에 따라 입안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입안 제안이 2개 이상의 광전총국 부처의 직책에 관련될 경우, 모든 관련 부처에서 함께 상부에 올려야 한다. 입안 제안이 국무원의 기타 부처의 직책에 관련될 경우, 입안 제안을 제기한 광전총국의 부처는 사전에 국무원의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필요시 정책법규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방송TV 주무부처와 사회로부터 입안 제안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8조 입법 항목이 입법법 제8조, 제65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속할 경우, 법률, 행정법규로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의 기타 부처의 직책에 관련되는 사항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조건이 아직 미숙한 경우,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규약을 공동 제정해야 한다.

광전총국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아래의 사항은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설정하는 경우
- (2)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 (3)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권한 위임과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의거해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
- (4) 기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제9조 입안 제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제정,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명칭, 초안 작성 부처, 프로젝트 담당자
- (2) 입법의 필요성.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 등의 입법 근거 및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긴다.
- (3) 확립하고자 하는 주요 제도, 조치.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의 조치를 설정해야 할 경우, 해당 조치를 설정하는 필요성, 법적근거 및 경제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한다.
- (4) 초안 작성 부처의 완료 시간과 진행 스케줄
- (5) 기타 설명이 필요한 문제

제10조 정책법규사는 입안 제안에 대해 평가 논증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소통하여 입안 동의 또는 입안 부결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정책법규사는 광전총국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 계획 및 그 설명을 광전총국

의 당조직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통과한 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12조 연간 입법계획은 아래의 두 가지 유형의 입법 항목을 포함한다.

- (1) 첫 번째 유형의 입법 항목은 조사 연구 논증이 충분하고 입법 조건이 성숙되고 입법 초안을 이미 정책법규사에 심사하도록 제출하였고 계획 연도 내에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는 항목과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계획 연도 내에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하는 항목을 가리킨다.
- (2) 두 번째 유형의 입법 항목은 아직 진일보 조사 연구 논증이 필요하거나 의견 차이가 큰 항목을 가리킨다.

연간 입법계획은 입법 항목의 초안 작성 담당 부처와 작업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광전총국의 국장이 처리하도록 맡긴 규약은 정책법규사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기타 규약은 직책 분업에 따라 상응하는 초안 작성 부처를 확정하며 초안 작성 부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광전총국의 국장이 지정한다.

제13조 연간 입법계획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초안 작성 부처는 계획에 따라 실행해야 하며 정책법규사는 계획의 실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조직 조율과 독촉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연간 입법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실제 작업 상황에 따라 개별 입법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책법규사에 조정 제안을 제기해야 하며 정책법규사에서 심사한 후 광전총국의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법률, 행정법규의 입안 신청이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될 경우, 광전총국의 국장의 승인을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에 제출한다.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규약을 공동 제정하는 입안 신청이 대중의 권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등의 사항에 관련될 경우, 입안 신청을 제기한 광전총국의 부처 또는 정책법규사에서 광전총국의 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에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받는다.

제3장 초안 작성, 심사

제15조 초안 작성 부처는 연간 입법계획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업 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전담자를 확정하거나 작업팀을 만들어 초안 작성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도팀과 작업팀을 구성해야 한다. 지도팀의 팀장은 광전총국의 국장이 맡는다. 작업팀의 팀장, 부팀장은 정책법규사와 관련 부처의 주요 책임자가 맡으며 구성원은 정책법규사와 관련 부처의 인원들로 공동 구성한다. 인원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문가 자문팀을 꾸려야 한다.

전문성이 강한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을 작성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광전총국의 고문 변호사, 공직 변호사를 업무에 참여시키거나 관련 업체, 전문가 단체에 초안을 작성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깊이 조사 연구해야 하며 업계의 발전, 관리감독, 서비스 등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성숙한 입법 경험을 거울로 삼아 입법 초안의 퀄리티를 보장해야 한다.

규약의 초안 작성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정법규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더 이상 중복하지 않는다.

제17조 입법 초안은 입법 용어, 형식과 기술 규범에 부합되어야 하며 구성과 논리가 치밀하고 조리가 분명하며 조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용어가 정확하고 간결하며 활용성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초안 작성 부처는 서면 의견 수렴, 간담회, 공청회, 현지 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 대표대회 대표, 정협 위원, 방송TV 업계 종사 주체, 업계협회, 상회, 행정 상대방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이 사회 대중의 보편적인 주목을 받는 핫이슈와 어려운 문제점 등의 사항에 관련될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법에 따라 논증 자문을 진행해야 하며 중대한 이익의 조정 또는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등의 사항에 관련될 경우, 법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이 두드러진 갈등의 해결, 중대한 제도의 조정에 관련되거나 중대한 공공이익과 대중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 사회 안정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경우, 또는 국내외에서 큰 여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광전총국의 당조직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법에 따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대응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19조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이 광전총국의 기타 부처의 직책에 관련되거나 국무원의 기타 부처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제20조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이 국무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에 관련될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해결방안을 세워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심의를 제청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초안 작성 부처는 각 측의 의견을 열심히 연구하고 받아들여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에 대해 수정하고 초안 작성 설명을 완성해야 한다.

초안 작성 설명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관리 현황,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 등을 포함한 입법의 필요성
- (2) 입법의 근거
- (3) 초안 작성의 과정
- (4) 확립하고자 하는 주요 제도와 조치
- (5) 의견의 수렴, 조율 상황.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통일할 수 없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취사선택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6) 현행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수정 또는 폐지 필요 여부
- (7) 초안 작성 부처의 1차적인 공정 경쟁 심사 의견
- (8) 설명이 필요한 기타 문제

초안 작성 설명은 의견 취합, 공청회 기록, 조사연구 보고서, 위험평가 보고서, 국내외 관련 입법 자료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 기타 부처에서 규약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경우, 규약의 초안 심사용 원고(이하 ‘규약의 심사용 원고’로 약함) 및 그 설명 등의 자료를 정책법규사에 심사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규약의 심사용 원고 및 그 설명은 초안 작성 부처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하며 여러

개의 초안 작성 부처에서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경우, 관련 부처의 주요 책임자가 공동 서명해야 한다.

제23조 정책법규사는 주로 아래 측면에서 규약의 심사용 원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1) 법정 권한과 절차에 부합되는지
- (2)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되는지
- (3)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 (4) 법률, 행정법규와 기타 상위법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특히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의 조치를 불법 설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지
- (5) 개혁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여 관련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 (6) 공정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상황이 있는지
- (7) 시장이 조절해야 하고 기업과 사회, 공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 (8) 각 측의 의견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 상대방과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는지
- (9) 입법 기술의 요구에 부합되는 지
- (10) 심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24조 규약의 심사용 원고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정책법규사는 늦추어 처리하거나 초안 작성 부처에 반송할 수 있다.

- (1) 입법의 기본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2) 초안 작성 작업 또는 심사용 자료가 본 규정의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25조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규약의 심사용 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법규사는 초안, 심사용 원고 및 그 설명 등의 자료를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기간은 보통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규약의 심사용 원고가 중대한 이익의 조정 또는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사항에 관련될 경우, 정책법규사는 간담회, 전문가 논증회, 공청회, 위탁 연구 등을 조직하여 논증 자문을 진행해야 한다.

규약의 심사용 원고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나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정책법규사는 광전총국의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규약의 심사용 원고에서 관련된 주요 조치, 관리체제, 권한 분업 등의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정책법규사는 이에 대한 조율을 진행해야 한다. 조율을 거쳐 여전히 의견을 통일할 수 없는 경우, 정책법규사는 편향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광전총국의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28조 심사 상황에 따라 정책법규사는 초안 작성 부처와 함께 규약의 심사용 원고를 수정하여 초안 및 그 설명을 완성하며 정책법규사와 초안 작성 부처의 주요 책임자의 서명 후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심의를 제청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정책법규사에서 초안 작성을 담당한 규약의 초안 및 그 설명은 정책법규사의 주요 책임자의 서명 후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심의를 제청한다.

제4장 결정과 공포

제29조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은 광전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서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을 심의할 때 정책법규사의 주요 책임자는 설명을 한다.

제30조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서 법률, 행정법규, 규약의 초안 및 그 설명을 심의 통과한 후 정책법규사는 관련 부처와 함께 심의 의견에 따라 초안 및 그 설명을 수정한 후 광전총국의 국장에게 보고하여 서명 발행하도록 한다. 그중 법률, 행정법규가 심사용 원고 및 그 설명을 완성하면 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규약은 총국령 형식으로 공포한다.

규정의 초안이 대외개방의 방침성, 정책성, 원칙성의 제도 설정 또는 조정에 관련될 경우, 외국인과 외국기업, 조직 및 그들의 활동을 전문 규범화하는 제도 설정 또는 조정에 관련될 경우, 제정 과정에서 관련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경우, 공식 발표 전 국무원에 보고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규약을 공포하는 총국령은 해당 규약의 순번, 명칭, 통과일자, 공포일자, 시행일자 및 광전총국 국장의 서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31조 광전총국과 국무원의 관련 부처가 공동 발표한 규약은 초안이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광전총국의 국장이 서명 발행한 후 공동발표한 부처에 보내 서명 발행해야 한다.

국무원의 기타 부처에서 주관하고 광전총국과 공동 발표한 규약은 정책법규사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심사 후 광전총국의 국장에게 보고하여 서명 발행한다.

공동 발표한 규약은 광전총국의 국장 및 공동 제정 부처의 수장이 공동 서명한 후 발표하며 주관기관의 명령 순번을 사용한다.

제32조 규약은 원칙상 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된다.

제33조 규약의 서명 발표 후 7일 안에 정책법규사는 규약의 공식 텍스트를 광전총국 사이트의 지정 코너에 게재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관보, 중국정부 법제정보망과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정책법규사는 관련 부처와 함께 대변인 등의 방식을 통해 규약의 제정 배경, 초안 작성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해 해석하고 홍보와 구체적인 실행 업무를 잘 수행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주동적으로 사회 여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등록 신고, 해석, 취합 편집, 정리 및 번역

제34조 정책법규사는 규약을 공포한 후 30일 안에 법에 따라 국무원에 등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이 법률, 행정법규의 조문에 대해 해석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거나 광전총국이 더 명확한 의미, 경계 또는 규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정책법규사는 관련 부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광전총국의 지도자의 서명 발행을 거친 후 해당 법률, 행정법규의 제정기관에 보고하여 해석을 하도록 한다.

제36조 행정 업무 중 법률, 행정법규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응용문제는 관련 사(司), 국(局)에서 의견 초안을 내놓고 정책법규사의 심사를 거쳐 광전총국의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후 광전총국의 공문 발송 형식으로 공포하며 필요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부처 또는 국무원의 법제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규약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광전총국에서 해석한다.

- (1) 규약의 규정이 더 명확한 구체적인 의미가 필요한 경우
- (2) 규약을 제정한 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 명확한 적용 근거가 필요한 경우

제38조 규약의 해석은 정책법규사가 초안 작성 부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규약의 해석은 규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39조 정책법규사는 법률, 행정법규와 규약의 취합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40조 정책법규사는 관련 부처와 함께 규약에 대한 입법 후 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 결과를 규약의 해석, 수정, 폐지의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정책법규사는 광전총국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전면적인 심화 개혁,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요구사항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 및 상위법의 제정, 수정, 폐지 상황에 따라 규약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리 상황에 근거해 관련 규약을 제때에 해석, 수정, 폐지해야 한다.

제41조 규약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 (1) 법률, 행정법규 등의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수정이 필요한 경우
- (2) 정책 또는 객관적 실제 필요에 기초해 관련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3) 같은 사항이 두 개 이상의 규약에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
- (4) 기타 수정이 필요한 상황

제42조 규약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폐지해야 한다.

- (1) 관련 법률, 행정법규 등의 상위법에서 폐지하거나 수정하여 입법 근거가 부족한 경우
- (2) 전면적인 심화 개혁,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요구사항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규정된 사항이 이미 실행 완료했거나 실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계속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 (4)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새로운 규정을 내린 경우
- (5) 기타 폐지가 필요한 상황

제43조 규약의 정리 결과는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심의를 제청해야 한다. 정리 후 계속 유효, 폐지 및 실효된 규약 목록은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규약의 정리, 수정, 폐지 절차는 본 규정의 제3장, 제4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 규약 텍스트의 외국어 번역 업무는 정책법규사에서 담당한다.

규약을 공포한 후 30일 안에 초안 작성 부처는 외국어 번역본 심사용 원고를 정책법규사에 보내야 한다. 정책법규사는 전문가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광전총국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규약은 중국어 텍스트를 표준 텍스트로 한다.

제6장 부칙

제4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TV 주무부처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본 부처의 입법 업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6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4년 6월 18일 국가방송영화TV총국에서 발표한 《방송영화TV 입법절차규정》(국가방송영화TV총국 령 제23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43. 국가광전총국 행정 규범성 문건 관리 규정

제목	国家广播电视总局行政规范性文件管理规定
제재일	2020-02-06
출처	국가광전총국
분류	중국 방송관리정책

제1조 국가방송TV총국(이하 ‘광전총국’으로 약칭) 행정 규범성 문건(이하 ‘규범성 문건’으로 약칭) 제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광전총국의 법에 따른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법치 정부 건설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광전총국의 실제 상황을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광전총국 규범성 문건의 초안 작성, 합법성 심사, 단체 심의, 발표, 정리 등의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칭하는 광전총국 규범성 문건은 규약을 제외하고 광전총국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약과 상급 문건을 집행하기 위해 법정 권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며 보편적인 구속력을 구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반복 적용하며 광전총국의 명의로 공개 발표하는 문건을 가리킨다.

광전총국의 각 부처는 본 부처의 명의로 규범성 문건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규범성 문건의 제정 업무는 당의 전면적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하여 ‘4개의 의식(四个意识)’을 강화하고 ‘4개의 자신감(四个自信)’을 굳건히 하며 ‘2개의 유지(两个维护)’를 해냄으로써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의사 결정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당의 선전 사상 방침 정책이 법정 절차를 통해 국가적 의지가 되도록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의 제정 업무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을 따르는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 발전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질서 있는 참여와 의견 표현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사회주의 법제 통일을 수호하며 문건의 퀄리티와 효율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규범성 문건의 제정 업무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 과정에 융합시켜 도덕관과 법치관을 통일하고 업계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을 현대화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의 제정 업무는 당 관리(党管) 이데올로기 원칙을 확실하게 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속지 관리, 등급별 책임과 관리자가 책임지는 등의 관리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제4조 광전총국은 규범성 문건의 제정과 감독 관리 업무를 법치 정부 건설의 감찰 내용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른 행정 고과 내용으로 법치 정부 건설의 심사 평가 지표 체계에 포함시켜 감찰 상황 통보 제도를 수립한다.

제5조 광전총국의 각 부처는 법정 기능과 이데올로기 업무 책임 분담에 따라 해당되는 규범성 문건의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초안 작성 부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광전총

국의 지도자가 지정한다.

정책법규사는 규범성 문건에 대한 합법성 심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판공청은 규범성 문건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 규범성 문건에 대한 통일적인 등록, 통일적인 넘버링, 통일적인 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초안 작성 부처는 제정한 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필요성, 과학성, 실행 가능성, 통제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약과 상급 문건에서 이미 명확한 규정을 내린 경우, 현행 규범성 문건에 이미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 규범성 문건을 중복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규범성 문건의 제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고 맞춤성과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문자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하여 정책 조치의 서술이 엄밀하고 문자가 간결하며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 (1) 법률, 행정법규, 광전총국 규약의 규정 이외의 행정권력 사항을 추가하거나 법정 직책을 줄이는 경우
- (2)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과금 등의 사항을 설정하고, 행정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조건을 추가하며, 순환증명, 중복증명, 의미 없는 증명을 발행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 (3)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줄이거나 해당 의무를 늘려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노동권, 휴식권 등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4)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시장 주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불법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포함하거나 시장 진입과 퇴출의 조건 등을 불법 설정하는 경우
- (5) 시장이 조절해야 하고 기업과 사회, 공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경우

제8조 규범성 문건이 광전총국의 기타 부처의 직책에 관련될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이 국무원의 기타 부처의 직책에 관련되거나 국무원의 기타 부처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중, 사회 대중의 권익에 관련되고 사회적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광전총국 당조직회의의 심의 후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9조 초안 작성 부처는 규범성 문건 중 행정조치에 관한 기대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전문성, 기술성이 높은 내용에 대해선 전문가 논증을 진행해야 하며 초안 작성 설명에 평가 논증 결론을 명시하여 규범성 문건 제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10조 초안 작성 부처는 지방 방송TV 주무부처, 업계조직, 사회단체, 행정 상대방과 사회 대중, 특히 이익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간담회, 공청회를 열거나 현지 방문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규범성 문건이 중대한 공공이익에 관련되거나 대중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기간은 보통 15일 이상으로 한다. 초안 작성 부처는 광전총국의 사이트, 방송TV 미디어와 정부 뉴미디어 등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규범성 문건의 초안과 해당 설명 등의 자료를 공포하고 의견 제시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이 두드러진 갈등의 해결, 중대한 제도의 조정에 관련되거나 중대한 공공이익과 대중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 사회 안정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경우, 또는 국내외에서 큰 여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공개 의견 수렴 전 광전총국의 당조직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법에 따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대응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규범성 문건의 초안 심사용 원고는 초안 작성 부처의 주요 담당자가 서명한 후 정책법규사에 보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의견 수렴, 공동 서명, 심의 참가 등의 방식으로 합법성 심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심사용 자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규범성 문건의 초안 심사용 원고와 그 설명
- (2) 법률, 행정법규, 규약과 상급 문건 등의 제정 근거
- (3) 의견 수렴 및 의견 채택 현황
- (4) 초안 작성 부처의 1차적인 합법성 심사와 공정 경쟁 심사 의견
- (5) 심사 내용별 필요한 기타 자료

제12조 초안 작성 부처가 규범성 문건의 초안 심사용 원고 등의 자료를 판공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판공청은 제출한 자료의 완비성, 규범성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정책법규사에 전달해 심사를 진행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송하거나 근무일 3일 안에 자료를 보충하거나 상황을 설명한 후 정책법규사에 보내 합법성 심사를 진행하도록 초안 작성 부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정책법규사는 주로 아래 측면에서 규범성 문건의 초안 심사용 원고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진행한다.

- (1) 제정 기관의 법정 직권을 초과했는지
- (2)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되는지
- (3)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 (4) 법률, 행정법규, 광전총국의 규약 및 기타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관련 규범성 문건과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는지
- (5)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약과 상급 문건을 집행하고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지
- (6)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과금의 불법설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

으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는지

(7) 법률, 행정법규의 근거가 없이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줄이거나 해당 의무를 늘리는 규정 및 본 부처의 권력을 늘리거나 본 부처의 법정 직책을 줄이는 사항이 있는지

(8) 공정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9) 규범성 문건의 제정 절차에 부합되는지

(10) 심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14조 정책법규사는 완비된 전문가 협조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 과정에서 광전총국의 고문 변호사, 공직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15조 규범성 문건의 영향 범위가 크고 상황이 복잡하며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존재할 경우, 정책법규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초에서 간담회, 논증회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6조 돌발사건의 예방, 대응과 처리, 또는 상급기관의 긴급 명령과 결정의 수행을 위해 규범성 문건을 즉각 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합법성 심사의 기간은 보통 근무일 5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장 근무일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7조 정책법규사는 합법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한 심사 의견을 내야 한다.

초안 작성 부처는 심사 의견에 따라 규범성 문건에 대한 필요한 수정 또는 보충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초안 작성 부처는 심사 의견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경우,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단체 심의를 제청할 때 그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합법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 후 합법적이지 않은 규범성 문건은 단체 심의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규범성 문건은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경우, 초안 작성 부처와 정책법규사의 공동 서명 후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단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통과 후 담당 부국장이 자세히 검토한 후 국장에게 제출하여 서명 발행한다.

규범성 문건은 단체 심의 후 중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합법성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19조 규범성 문건은 광전총국 국장의 서명 발급 후 광전총국의 명의로 대외에 공개 발표한다.

규범성 문건이 대외개방의 방침성, 정책성, 원칙성의 제도 설정 또는 조정에 관련될 경우, 외국인과 외국기업, 조직 및 그들의 활동을 전문 규범화하는 제도 설정 또는 조정에 관련될 경우, 제정 과정에서 관련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비교적 큰 경우, 공식 발표 전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하여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규범성 문건이 중대한 공공이익,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중대한 권익에 관련되고 사회

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정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초안 작성 부처는 발표 시기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 발표 후 근무일 5일 안에 초안 작성 부처는 규범성 문건의 공식 텍스트를 광전총국 사이트의 지정 코너에 게재해야 한다.

공개 발표되지 않은 규범성 문건은 행정 관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20조 규범성 문건 발표 후 근무일 10일 안에 초안 작성 부처는 규범성 문건의 공식 텍스트 5부 및 전자 텍스트를 정책법규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고해야 한다. 광전총국의 각 부처는 매년 1월 전년도에 발표한 규범성 문건 목록을 정책법규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안 작성 부처는 정책법규사와 함께 대변인 등의 방식을 통해 규범성 문건의 제정 배경, 초안 작성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해 해석하고 홍보와 구체적인 실행 업무를 잘 수행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주동적으로 사회 여론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판공청은 규범성 문건의 취합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 초안 작성 부처는 규범성 문건의 실시 현황, 실시 효과, 존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적시에 평가를 내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규범성 문건의 해석, 수정, 폐지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법률 규정으로 격상시켜야 할 경우, 제때에 관련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제22조 정책법규사는 광전총국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전면적인 심화 개혁,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요구사항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 및 상위법의 제정, 수정, 폐지 상황에 따라 규범성 문건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리 상황에 근거해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때에 해석, 수정, 폐지해야 한다.

제23조 규범성 문건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해석해야 한다.

- (1) 규범성 문건의 규정이 더 명확한 구체적인 의미가 필요한 경우
- (2) 규범성 문건을 제정한 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 명확한 적용 근거가 필요한 경우

제24조 규범성 문건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수정해야 한다.

- (1) 법률, 행정법규, 광전총국의 규약 등의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수정이 필요한 경우
- (2) 정책 또는 객관적 실제 필요에 기초해 관련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3) 같은 사항이 두 개 이상의 규범성 문건에서 다르게 규정된 경우
- (4) 기타 수정이 필요한 상황

제25조 규범성 문건에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폐지해야 한다.

- (1) 관련 법률, 행정법규 등의 상위법에서 폐지하거나 수정하여 입법 근거가 부족한 경우
- (2) 전면적인 심화 개혁,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요구사항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규정된 사항이 이미 실행 완료했거나 실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계속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경우

(5) 기타 폐지가 필요한 상황

제26조 규범성 문건의 해석, 수정 또는 폐지는 초안 작성 부처가 정책법규사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규범성 문건의 정기적인 정리 결과는 광전총국의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정리 후 계속 유효, 폐지 및 실효된 규범성 문건 목록은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7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TV 주무부처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본 부처의 규범성 문건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0년 12월 6일 국가방송영화TV총국에서 발표한 《공문을 발송해 법에 따른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한층 더 규범화하는 데 관한 광전총국의 통지》(광국[2010]543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44. ‘검망 2020’ 특별행동

제목	“剑网2020”专项行动
게재일	2020-06-18
출처	국가판권국, 공업과정보화부,公安部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최근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公安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문이 연합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해적판)를 적발하기 위한 ‘검망 2020’ 특별행동에 나섰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이어 전개되고 있는 제16회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퇴출 특별 행동이다.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 등 부문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에 대한 쟁점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 동영상, 음악, 문학, 뉴스 및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공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등 분야의 저작권 정비를 연이어 시행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및 처벌 강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 중대 안전과 긴급 안전을 잇달아 적발하고, 효율적으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방지한다. 인터넷 동영상, 인터넷 음악, 인터넷 문학 등 분야의 무질서한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외 저작권자의 충분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번 특별행동은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되며, 인터넷 저작권 보호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다음 5개의 중점 분야에 중점을 둔다. 첫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특별 관리를 시행, 영화관 상영영화의 인터넷 저작권 특별 보호를 심도있게 전개하고 숏클립 분야에 존재하는 권리침해 불법복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스트리밍 미디어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파권 침해 작품 불법복제 행위를 엄격히 차단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작권 특별 관리를 추진하여,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작권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온라인몰에서 불법복제 도서,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데이터베이스와 해적판 인터넷 링크 및 해적판 작품이 저장된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온라인몰 디자인, 운영에 불법복제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한다. 셋째,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의 저작권 특별 관리를 전개하여 뉴스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진 거래시장의 저작권 보급을 더욱 규범화하고,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쇄한다. 넷째, 온라인 교육 저작권 특별 관리를 전개하여 ‘학습강국(學習強國)’ 학습플랫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현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온라인 강의 불법복제의 회색지대 산업사슬을 단절시킨다. 다섯째, 중요 분야의 저작권 관리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터넷 게임의 프라이빗 서버, 조정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인터넷 음악 판권의 저작권 위임체계를 정비한다. 대형 지식공유플랫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인터넷 문학, 애니메이션, 클라우드, 앱스토어, 인터넷광고연맹 등 분야에서 실현한 업무 성과를 견고하게 다진다.

국가판권국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동은 조사 안전을 이슈화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사건의 처벌 강도를 높여 여론의 관심이 크고 사회적인 위해성이 큰 저작권 침해 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소송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을 바란다. 각

급 저작권 관련 법집행부처는 인터넷 기업이 시장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퇴출을 위한 사회 공동관리 국면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

45.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제목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제재일	2020-06-23
출처	상무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1.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분에 대한 요구, 고위직 임원에 대한 요구 등 외국인 투자진입 방면의 특별관리조치를 통일하였다.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내자와 외자를 동일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한다.
2.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일부 분야에 대해 진입 제한을 취소 또는 완화하는 과도기를 열거했으며, 과도기 만료 이후에는 규정된 시간에 해당 진입 제한을 취소 또는 완화한다.
3. 해외 투자자는 자영업자, 비법인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으로서 투자경영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주관부처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가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나,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상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 되며,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심사비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심사비준 사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분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외상투자 파트너기업을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5.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특정 외상투자는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상의 관련 분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6. 국내회사, 기업 혹은 자연인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또는 지배권을 가진 회사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외상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열거되지 않은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 자질조건, 국가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내륙과 홍콩의 긴밀한 경계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 및 후속 협의, <내륙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계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배치> 및 후속 협의,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후속 협의, 중국과 체결을 맺거나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참가한 해외 투자자의 진입 대우에 우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구역이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에 대해 우대 혜택이 있는 개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9.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해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책임진다.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20년)

번호	특별관리조치
I.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1	밀 신품종 육종 및 종자 생산의 중국측 지분 비율이 34%보다 낮아서는 안됨. 옥수수 신품종 육종 및 종자 생산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2	중국에서 희귀하거나 특유의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축산업, 수산업의 우량유전자 포함)에 대한 투자 금지
3	농작물, 종축, 수산묘종 유전자변형 품종 육종 및 해당 유전자변형 종자(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에 대한 투자 금지
II. 광업	
5	희토, 방사성광물 생산, 텅스텐 개발, 채취 및 선광업에 대한 투자 금지
III.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7	중의약 한약재의 증(蒸), 초(炒), 자(炙), 단(煨) 등 포제기술의 응용 및 한방제제 비밀유지 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8	특수차, 신에너지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의 중국측 지분 비율은 50%보다 낮으면 안됨. 하나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에 2개 이하의 동종 자동차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승용차 제조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내 2개 이하의 동종 자동차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은 2022년에 폐지)
9	위성TV라디오 지면 송수신 설비 및 핵심부품 생산
IV.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수자원 생산과 공급업	
10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V. 도매업, 소매업	
11	담배, 궤련, 잎담배 재건조 및 기타 담배제품의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금지
VI. 교통운송, 창고 및 우정업	
12	국내 수상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13	공공항공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하고, 하나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관계회사의 투자비율은 2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의 공민이어야 함. 일반항공회사의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국적의 공민이어야 하고, 그 중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항공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 외 일반 항공회사는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함.
14	민간공항의 건설,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상대적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외국인투자자는 건설, 공항관제탑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15	우편회사, 우편물을 취급하는 국내 택배업무 투자 금지
VII.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16	통신회사: 중국이 WTO에서 개방 약속한 전신업무에 한하며, 부가통신업무의 외자 지분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자상거래, 국내 다수 통신, 저장전달, 콜센터 제외) 기간통신사업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17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발표정보서비스(상기 서비스 가운데, 중국 WTO 가입시 이미 개방을 약속한 내용은 제외)
VIII.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8	중국법률사무(중국 법률환경 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됨) 투자를 금지하며, 국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9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하며, 그 중 라디오TV 청취 및 시청 조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해야 함.
20	사회여론조사 투자 금지
IX.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21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금지
22	인문사회과학연구기관 투자 금지
23	대지측량, 해양측량제도, 항공촬영 측량제도,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선의 측량제도, 지형도, 세계행정구역 지도, 전국행정구역 지도, 성급 및 이하 행정구 지도, 전국 교육지도, 지역 교육지도, real 3D 지도 및 네비게이션 전자지도 편집 제작, 지역 지질지도, 광산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수문(水文)지질, 환경지질, 지질재해, 원격탐지지질 등 조사 투자 금지 (광업 소유권이 해당 광업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번 특별관리조치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X. 교육	
24	취학전, 일반 고등 및 중고등과 고등교육기관은 중외 학교운영 협력만 허용하며, 중국측이 주도해야 한다.(교장 혹은 주요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인원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25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금지
XI. 위생과 사회업무	
26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XII.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7	언론기관 투자 금지(통신사를 포함하며 그 외 기타 등등)
28	도서, 신문, 잡지,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에 대한 투자 금지
29	각급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라디오TV채널(울), 라디오방송전송망네트워크(전송국, 중계국, 라디오TV위성, 위성지상국, 위성수신전송국, 극초단파국, 마이크로파 지상국, 감측대 및 유선 라디오TV전송망 네트워크 등)에 대한 투자 금지. 라디오TV 영상재생업무 및 위성TV라디오 지상 수신장치 설치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음.
30	라디오TV 프로그램 제작운영(수입 업무 포함)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31	영화제작회사, 배급사, 체인영화관 회사 및 영화수입업무 투자 금지
32	문화유물 경매회사, 문화유물 판매점 및 국유문화박물관에 대한 투자 금지
33	문화예술공연단체에 대한 투자 금지

46. 디지털 문화산업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推动数字文化产业高质量发展的意见
제재일	2020-11-18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문화정책(종합)

디지털 문화산업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문여산업발[2020]7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본부 각 사국(司局), 각 직속 기관, 국가문물국: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 집행하고 문화산업 디지털 전략을 시행하여 디지털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가.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시진핑(习近平)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당의 19대와 19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 정신을 관철 집행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변함없이 관철하고 안정 속에 발전을 꾀하는 업무의 총체적 기초를 고수한다. 질적 발전 추진이 주제, 공급측 구조 개혁이 주요 라인, 개혁 혁신이 근본 동력, 국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나아진 삶에 대한 수요가 근본 목적이 되어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 발전 트렌드에 부응하면서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시행하고 신형 문화기업, 문화업종, 문화소비모델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의 업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시키며 질적 효익과 핵심 경쟁력을 높여 당대 문화산업체계를 정착시킨다. 산업사슬을 중심으로 혁신사슬을 배치하고 혁신사슬을 중심으로 산업사슬을 구성하여 산업사슬과 혁신사슬의 정확한 연결을 촉진하고 문화산업의 ‘상운용수부지(上云用数赋智)’¹⁵²⁾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을 추진하여 우수한 디지털 문화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그리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녹아 들어 국민의 문화 수요 만족과 정신 역량 강화의 상호 통합을 촉진한다.

2) 기본 원칙

방향을 고수하고 함의를 높인다. 정확한 방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정도 지킴과 혁신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견인하도록 고수하고 사회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사회이익과 경제이익을 상호 통합하다. 문화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디지털 문화산업의 질적 함의를 높이고 차이나 스토리를 잘 구성하여 중국 이미지를 선보이고 중국 정신을 선양한다.

혁신으로 선도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 산업 발전 중의 핵심 위상 혁신을 고수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심층 시행하여 독자 혁신 능력을 높이고 콘텐츠, 기술, 패턴, 업종과 상황 혁신을

152) ‘상운(上云)’은 클라우드 지원정책, ‘용수(用数)’는 빅데이터의 융합 사용, ‘부지(赋智)’는 스마트화 개조를 뜻함.

추진한다. 사업 운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여 혁신 잠재력이 충분히 쏟아져 나와 더 많은 새로운 성장점, 성장극을 형성한다.

데이터를 구동하고 기술로 지원한다. 국가 문화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배치를 실행하고 문화산업 데이터 관리 서비스체계를 공동 구축 및 공유하면서 문화 데이터 자원의 융통과 융합을 촉진한다. 과학기술 발전 추이를 파악하여 신기술을 통합 활용하고 더 많은 산업 기술의 혁신 성과를 창조하여 고품질 문화 공급을 위해 강력하게 지원한다.

융합 발전하고 개방하여 공유한다. 디지털 경제구도하의 문화와 관광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로 관광을 만들고 관광으로 문화를 알린다. 문화산업과 디지털 경제,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여 디지털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중국이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강점을 육성한다.

3) 발전 목표

디지털 문화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계속 최적화되고 공급의 질이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소비 잠재력을 유발하는 새로운 엔진이 부상한다. 산업 인프라가 더욱 완비되고 지원 플랫폼이 더욱 성숙되며 혁신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시장 질서가 더욱 유기적이고 거버넌스 역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더 많은 신규 취업 형태와 신규 일자리를 창조하여 신기술, 신업종, 신소비 발전에 적응하고 산업사슬 상하부라인과 타업종과 융합하는 디지털 생산, 유통, 소비 생태계를 형성한다. 문화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융합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발전 수준이 현저히 높아져 새로운 에너지 주도의 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여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이 글로벌 선도 위치에 자리매김한다.

2025년까지 사회이익과 경제이익이 두드러지고 혁신 능력이 강하고 국제 영향력이 있는 선도 기업 20개를 육성한다. 각자 특색이 있고 활력이 강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역 영향력이 있고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 클러스터 5개를 만들고 시범 견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문화산업 프로젝트 200개를 구축한다.

나.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 기반 정비

4) 콘텐츠 창작을 강화한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 속성을 깊이 파악하고 창작 역량 구축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정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많은 디지털 문화 상품을 창조한다. 중국 문화 특색이 선명한 창작 IP를 육성 및 구축하고 IP 개발과 전환을 강화하며 애니메이션 게임, 웹 문학, 웹 음악, 웹 연기, 온라인 동영상, 디지털 예술, 창의적인 디자인 등 산업 형태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며 혁명 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켜 폭 넓은 영향력이 있는 더 많은 디지털 문화 브랜드를 만든다. 문화의 관광에 대한 콘텐츠 지원, 아이디어 업그레이드와 가치 발굴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의 문화적 함의를 향상시킨다. 우수한 품질의 디지털 문화상품으로 젊은층의 문화 소비를 선도하고 젊은 고객의 다양화, 개성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창작하여 젊은이들의 민족 자긍심과 문화 자신감을 강화한다.

5) 신형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업계의 보편적인 수요를 지향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단말기’ 인프라를 보완하여 ‘디지털화 수집-네트워크화 전송-스마트화 컴퓨팅’의 디지털 체인을 연결한다. 디지털

텔 문화기업이 기업급(级)의 디지털 인프라 개방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문화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컴퓨팅 능력과 모델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전통 문화 인프라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APP, 샤오청쉬(小程序, 미니앱) 등 모바일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문화분야 디지털 경제 생산요소를 완비시켜 산업의 상호 연계성을 촉진한다. 신규 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으로 도킹하고 신규 인프라 구축 정책, 플랫폼, 기술을 잘 활용하여 디지털 문화산업의 발전 수준을 높인다.

6) 기술 혁신과 적용을 추진한다. 디지털 문화산업 기술 혁신 수요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의 중점 실험실, 핵심 기업, 대학교, 연구원, R&D센터 등 혁신 기관 자원을 집중시켜 디지털화 전환 공통 기술,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적용에 박차를 가한다. 산학연용(产学研用) 협업 협력의 산업기술혁신연맹을 지원하고 산업간, 부처간, 지역간의 성과 전환을 추진한다.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통합 적용과 혁신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디지털화 응용 환경을 구축한다.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의 기술 요소 유동을 추진하고 라이선스, 양도, 주식 투자 등 방식을 통해 기술 요소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7) 데이터 자원 요소 잠재력을 활성화한다. 문화기업의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데이터 취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과정 데이터 수집을 추진하여 완전히 연결되는 데이터 사슬을 형성한다. 상하부라인 기업의 데이터 오픈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자원의 개방과 유동을 유도 및 규범화하며 전송 사용에서 막힌 부분을 해소하여 데이터 유통 공유의 상용화 수준을 높인다. 문화분야 데이터 개발 이용 여건을 구축하고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유통 환경을 만들어 데이터 요소 시장을 육성한다. 문화 빅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과 서비스 등 중간 과정 상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데이터 구동의 신업종 신모델을 발전시켜 문화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체계를 만든다. 문화 소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강화하고 수급 조율과 정확한 연결을 촉진한다.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문화 데이터 안전책임체계를 구축하며 기업이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데이터의 준법성과 안전성을 끌어올린다.

8) 시장 주체를 육성한다. 강한 핵심 경쟁력을 갖춘 대형 디지털 문화기업을 대거 육성하여 인터넷 및 기타 분야의 필두기업이 디지털 문화산업을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신기술, 신업종, 신모델’의 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형 및 영세 디지털 문화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세분화 분야의 ‘가젤기업’과 ‘히든 챔피언’ 기업을 육성한다. 업계의 인큐베이팅 플랫폼과 필두기업의 모델 혁신과 융합 발전 과정에서의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협업 생산, 플랫폼 오픈, 자원 공유 등 방식을 통해 상하부라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 문화기업의 디지털 기술 응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 및 지원하여 기술센터, 디자인센터 등 기관의 독자 혹은 공동 설립을 지원하고 상품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9) 산업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표준화 전략을 실시하고 디지털 문화 기술의 표준 응용을 강화하여 표준 구축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표준의 산업에 대한 유도 및 지원 역할을 발휘하고 가상 현실, 교감 오락, 스마트 관광 등 분야의 상품, 기술과 서비스 표준 연구 제정을 추진하여 디지털 문화산업표준체계를 형성한다. 중국의 표준 국제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휴대전화(모바일) 애니메이션 국제 표준과 디지털 예술이 국제표준 응용과 확대를 보여주도록 강화한다.

다. 디지털 문화 산업종 육성

10) 우수한 문화자원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문화자원에 대해 디지털화 전환과 개발을 진행하여 우수한 문화자원이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려 ‘살아나도록 하고’ 내포한 가치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의 신형식 신요소를 잘 결합시켜 창조성 전환과 혁신성 발전을 실현한다. 문화공간, 문화장소, 관광 명소, 시가지와 단지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창작, 생산과 전파 등을 클라우드로 확장한다. 문물, 무형문화재를 뉴미디어를 통해 전파 홍보하도록 지원하고 오프라인 문예자원, 문화오락 방식의 디지털화를 장려하면서 표현 형식을 혁신하고 문화 함의를 심화한다. 지방 특색의 문화자원을 토대로 선명한 지역 특성과 민족 특색이 있는 디지털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빈곤 탈출과 개발에 도움주도록 장려한다.

11) 융합 발전을 심화한다. 디지털화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더 넓은 범위,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융합을 실현한다. 디지털 문화기업과 인터넷 여행기업의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문화 아이디어가 관광분야로 확장하도록 촉진한다. 디지털 문화산업과 선진 제조업, 소비재 공업, 스마트 농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 물류, 교육, 스포츠, 전자상거래 등 당대 서비스업과 융합 발전하도록 한다. 브랜드 라이선스를 발전시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 가치를 향상시킨다. 디지털 문화와 소셜 전자상거래, 온라인 생방송,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신경제와의 결합을 촉진시켜 여행 생방송, 여행을 통한 상품 판매 등 온라인 콘텐츠 생산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킨다. 디지털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공공 문화공간에서의 적용을 추진하여 공공 문화공간의 체험형식과 내용을 다양화한다.

12)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킨다. ‘인터넷+’를 심층 추진하여 문화산업의 온라인, 클라우드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의 오프라인 업종 디지털화 개조와 전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문화분야 수직 전자상거래 공급사슬 플랫폼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실물경제를 형성한다.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문화 서비스 기능과 상품 개발, 문화 소비 캠페인 개최를 장려하고 인터넷 기업의 디지털 명품 콘텐츠 창작과 신형 디지털 문화자원 전파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며 여건을 갖춘 문화기업의 플랫폼화 확장을 지원하고 선도 시범 효과가 있는 플랫폼 기업을 대거 육성한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문화문물기관, 관광단지의 협력을 장려하고 트래픽 전환, 유료 체험, 서비스 운영 등 신모델을 모색한다. ‘홈 이코노미’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온라인 생방송, 유성 상품, 지리 정보 등 서비스의 새로운 방식을 독려하며 지식 전파, 경험 공유를 토대로 하는 혁신 플랫폼을 발전시킨다.

13) 클라우드 연예오락 업종을 육성한다. 5G+4K/8K 고화질의 연예오락산업에서의 적용을 추진하고 온라인 극장, 디지털 극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연예오락산업의 발전 변화 방향을 선도한다. ‘인터넷+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엔터테인먼트 기관과 인터넷 플랫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관의 온라인 이벤트 개최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을 촉진하여 무대 예술 방송의 유명 브랜드를 만든다. 문화예술 공연단체, 공연 매니지먼트, 공연장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하고 희곡, 곡예, 국악 등 전통예술의 온라인 발전을 촉진하며 공연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공연을 독려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관객의 온라인 유료 습관을 양성하고 온라인 티켓 판

매, 회원제 등 온라인 소비 방식을 모색한다. 온라인 제작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특성과 규칙에 맞고 온라인 공연 관람, 전파, 소비에 적합한 원생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육성하여 더 많은 관객이 혜택을 누리고 연예오락 산업사슬을 다양화하고 확장시킨다.

14) 클라우드 전시 방식을 다양화한다. 문화문물기관과 미디어 융합 플랫폼, 디지털 문화기업의 협력을 지원하고 5G, VR/AR, 인공지능, 멀티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인터넷+전시’ 신모델을 발전시켜 박물관, 미술관의 디지털화 전시 시범 사업을 구축하여 가상 해설, 예술 보급과 교감 체험 등 디지털화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예술 교육의 보급성, 편리성을 높인다. 전시품의 디지털화 수집, 이미지 구현, 정보 공유, 수요에 따른 전파, 스마트 서비스 등 클라우드 전시 공통성, 핵심 기술 연구와 응용을 지원한다. 문화 전시업계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하고 온라인 문화 전시회 개최를 유도 및 지원하면서 클라우드 전시, 클라우드 매칭, 클라우드 상담, 클라우드 계약을 실현하고 온오프라인 동반 교감, 유기적인 융합의 전시회 개최 NEW모델을 모색한다.

15) 몰입형 업종을 발전시킨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5G+4K/8K 고해상도, 드론 등 기술이 문화분야에서 적용되도록 유도 및 지원하고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빔프로젝트, 드론 공연, 야간 불빛 쇼 등 상품을 발전시켜 기존 문화 콘텐츠가 몰입형 콘텐츠로 이식 및 전환되도록 추진하며 가상체험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문화문물기관, 관광명소, 테마공원, 시가지와 각종 단지 등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전시관, 가상 관광단지 등 서비스를 진행한다. 몰입형 업종과 도시 공공 공간, 특색 타운 등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 몰입형 관광 엔터테인먼트, 몰입형 오락 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엔터테인먼트, 오프라인 오락의 디지털화 수준을 끌어올린다. 디지털 예술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예술의 중점 분야와 환경에서의 적용 혁신을 추진하여 중국의 미학 정신을 더 잘 전승한다.

16) 디지털 문화 장비 실력을 향상시킨다. 디지털 문화분야의 핵심 기술 장비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중대 장비의 독자 연구개발과 안전 통제를 실현하고 디지털 문화 장비의 제조 수준을 향상시킨다. 하이엔드 소프트웨어 상품과 장비의 독자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전송과 사용의 관련 설비,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독자 R&D 및 산업화를 지원한다. 공업인터넷, 사물인터넷, 차량인터넷의 스마트 문화장비 생산 각 과정에서의 응용을 강화하여 몰입형 시설, 무인 지능 관람, 휴대용 장비, 스마트 단말기, 드론 등 스마트 장비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다. 문물과 예술품의 전시, 보호, 보수 설비의 산업화 및 응용 시범을 지원한다.

17) 신형 소비 수요를 만족시킨다. 비즈니스 변화와 소비 업그레이드 트렌드에 부응하면서 온라인 소비, 맞춤형 소비, 체험 소비, 스마트 소비, 인터랙티브 소비 등 신형 소비 발전을 촉진한다. 신기술의 문화 체험에 대한 변화를 중요시하고 문화 소비 환경을 혁신하고 클라우드 관광, 클라우드 오락 등 신형 소비 형태를 육성한다. 문화 소비의 편의 수준을 높이고 전자티켓, 클라우드 대기 등 온라인 소비의 새로운 방식을 확대하여 디지털화 예약 능력을 끌어올린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밤 문화와 관광 상품 만들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문화가 야간 경제에 녹아들도록 추진하여 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야간 경제가 돋보이게 한다.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을 추진하고 온라인의 교류 인터랙티브, 고객 유치, 정확한 마케팅 등 강점을 발휘하여 온라인 고객이 현지 방문 관람, 오프라인 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라. 디지털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18) 산업사슬 혁신과 활용을 추진한다. 디지털 문화산업 사슬 구축에 박차를 하고 ‘사슬의 구축, 강화, 확장, 보완’ 조합을 만들어 산업사슬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문화산업 사슬과 인터넷, 사물인터넷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지원, 네트워크화 공유, 스마트화 협업의 스마트 산업사슬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사슬 금융을 발전시키고 금융기관, 산업사슬 핵심기업, 문화금융서비스센터 등이 산업사슬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하부라인 중소&영세 기업을 위해 고효율의 편리한 저비용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게 디지털 문화산업 사슬의 사슬 책임 업무제도를 장려하고 산업 통합과 협업 수준을 향상시킨다.

19) 혁신 창업 서비스를 보완한다. 혁신에 의한 발전을 강화하고 기업을 주체로 하고 산학연용(产学研用)이 연합한 디지털 문화산업 혁신센터를 만들어 개방 협업의 혁신 모델을 모색한다. 신규 취업 형태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서 클라우드 창업, 클라우드 소싱, 클라우드 지원,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영세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온라인에서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며 웨이(微)혁신, 웨이(微)응용, 웨이(微)상품을 발전시켜 유연한 취업, 시분할 취업을 실현한다. 혁신과 창업, 인큐베이팅과 투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결합된 디지털 문화의 창업 및 혁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기업의 인큐베이터, 클라우드 창업 공간 등 매개체가 디지털 문화의 ‘창업과 혁신’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자본의 문화산업 신기술, 신업종, 신모델에 대한 촉진 역할을 발휘하고 벤처투자와 엔젤투자를 잘 사용하여 창업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한다.

20) 지역 발전 전략에 융합된다. 디지털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디지털 문화산업이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 국가 문화산업 혁신 실험단지, 국가 문화와 기술 융합 시범기지 등 중점 기능 플랫폼으로 집결하도록 독려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협업 발전, 창산자오(长三角,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창장 경제벨트 발전,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湾区•그레이트 베이 에어리어) 발전, 황허(黄河)유역 생태 보호와 질적 발전, 청위(成渝, 청두-충칭)지역 두 도시 경제권 등 지역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산업사슬 완비, 혁신 요소 집결, 부대 기능이 완비한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 집결지역을 육성한다.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을 장성, 대운하, 장정, 황허국가문화공원, 그리고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국가 전역의 관광 시범구역, 국가 문화관광 소비 시범 도시, 국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융합 발전 시범구역,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중지역, 국가 문화와 금융 협력 시범단지, 국가급 관광단지 등과의 발전을 상호 연결하여 시장화 방식으로 산업 집결을 촉진하고 프리미엄 효과를 창출한다.

21)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의 신상품, 신업종, 신모델에 대해 포용과 신중, 장려와 혁신을 고수하고 안전 커트라인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 발전 공간에 머문다. 심각한 신용상실 리스트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신용 모니터링을 토대로 하는 신형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디지털 문화 신상품, 신업종, 신모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평가, 권익 분배와 보호 매커니즘을 보완하여 지적재산권 응용과 가치 실현을 촉진한다. 산업연맹, 업계협회 등 업계 단체의 혁신 발전을 지원한다.

22) 글로벌 협력을 심화한다. 기술, 인재, 자금 등 자원의 상호 작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해외 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대거 육성한다. 디지털 문화 서비스 수출의 신업종 및 신모델을 혁신하고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킨다. 디지털 문화산업의 ‘일대일로’ 글로벌 협력을 심화하고 교류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일대일로’ 국가와 지역에 디지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기업이 전자상거래, 프로젝트 협력, 해외 인수합병, 지사 설립 등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도록 장려한다. 디지털 문화기업이 국내외의 종합 전문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문화상품전시회 등 새로운 방식을 지원한다.

마. 보장조치

23) 리더십을 강화한다.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처는 디지털 문화산업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실제 연구와 결부시켜 현지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이 지방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중점 특별 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경제, 기술, 금융 등 부처와의 협업과 정책 연결을 강화하고 관련 임무 조치를 일괄 배치하여 이행한다. 디지털화 사고를 활용하여 정부와 기업의 다자 참여, 고효율 연동, 정보 공유의 관리체계 형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적시에 경험과 방법의 효과를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홍보하며 ‘온오프라인’ 산업 투자유치, 우수 프로젝트 선별, 정부-금융-기업 연결 등 형식으로 산업 사슬의 상하부라인과 소비자의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적극성과 창조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혁신, 창업, 창조에 유익한 양호한 발전 환경을 만든다.

24) 정책환경을 보완한다. ‘팡관푸(放管服)’¹⁵³⁾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진입조건 완화, 승인절차 간소화, 사업환경 최적화가 더 좋아지도록 하여 효과적인 시장과 능력 있는 정부의 더 좋은 결합을 추진한다. 테스트베드 시범, 중대 공정 등을 통해 빠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며 신업종, 신모델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한다. 산업 발전을 밀접히 추적하고 모니터링과 전향적 연구를 진행한다. 중앙재정 예산 내의 투자, 국가 특별 건설 기금 등 투자정책을 잘 활용하여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과 프로젝트 구축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디지털 문화기업의 고신기술 기업 인정 신청을 지원한다. 디지털 경제, 전략적 신흥산업 등 국가의 관련 산업정책을 이행하고 디지털 문화산업을 각 지역 관련 정책 이행 체계에 포함시킨다. 민생, 공익, 공공문화와 관광 서비스 사업에서 디지털 문화상품과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선택 사용한다.

25) 요소 지원을 강화한다. 법에 의한 준법, 리스크 통제, 비즈니스 지속가능 전제하에 금융기관이 디지털 문화산업 특징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 및 혁신하도록 장려한다. 디지털 문화기업의 채권융자 진행을 지원하고 디지털 문화산업투자기금 설립을 추진하여 조건이 맞는 디지털 문화기업이 다양한 루트의 자본시장 용자를 이용하는 융자 루트를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각종 사회자본이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PPP) 모델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면서 디지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의 혁신과 고기술 인력 풀을 구축하고 문화 함양, 기술 수준과 혁신 능력을 모두 갖춘 디지털 문화산업 복합형 인재를 대거 육성한다. 디지털 문화산업 인재 육성, 평가 장려, 유동 배치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방향 관리, 사고 혁신과 실무 양성을 부각시킨다. 국가의 문화인력육성기지와 관련 대학교의 디지털 문화산업 인력 양성 강화

153) ‘팡관푸(放管服)’ : 팡(放) -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管) - 규제와 관리 결합, ‘푸(服)’ - 서비스 최적화.

를 토대로 대학교와 기업이 협력모델을 혁신하고 실습교육 기지를 공동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관광부
2020년 11월 18일

47.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견수렴안)¹⁵⁴⁾

제목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제재일	2021-01-08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문화정책(종합)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개정 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조직과 개인이 국내외 온라인 자원을 이용하여 국내 사용자에게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본 방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가는 대책을 세워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국가 온라인 공간 안전과 질서를 해치고 중국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모니터링, 방지, 처벌한다.

제4조 국가는 신의 성실, 건강하고 문명한 온라인 행위를 권장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사회주의 선진 문화,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전파를 추진하면서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선을 지향하는 온라인 문화 형성을 촉진하고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만든다.

제5조 국가망신(网信: 인터넷 정보)기관은 전국 온라인 안전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의 통합 조율을 담당하고 전국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해 감독관리 및 법 집행을 실시한다.

국무원 통신 주무부처는 직책에 의거하여 전국 인터넷 업계 관리를 담당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시장 진입, 시장질서, 네트워크 자원, 네트워크 정보 안전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안기관은 직책에 의거하여 전국 인터넷 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인터넷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네트워크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처벌한다. 국가 안전기관은 직책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안보를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단속하는 것을 책임진다.

국무원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감독관리 직책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6조 국가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응용 보급을 촉진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업계 자율을 전개하고 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154) ‘[게임] 1.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의 개정초안

제공하고 사이버 안보 의식을 높이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대중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장려한다.

제2장 설립

제7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이 통신사업 경영에 속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의 통신사업 경영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통신사업 경영에 속하지 않을 경우 통신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통신사업 경영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통신 주무부처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주관자의 진실한 신원 증명과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2) 전개 예정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 유형, 명칭, 사용 예정인 도메인, IP 주소, 서버 등 인터넷 네트워크 자원,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 등 유관 현황
- (3) 제공 예정인 서비스 항목, 관련 주무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할 경우 해당 허가 문서를 제공해야 함
- (4) 공안기관이 발급한 안전 검사 의견
- (5) 제공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9조 통신 주무부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서류에 대해 확인한 후 등록을 허용하고 번호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은 통신 주무부처 기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사이버 안보와 정보안전 관리제도와 기술 보장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이 통신사업 경영에 속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 주무부처는 통신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혹은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 능동적으로 관련 허가과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업은 인터넷정보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정보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허가법>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 혹은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 출판, 시청각 프로그램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은 유관 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교육, 의료 보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유관 결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유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유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관 부처는 허가 결과를 국가 인터넷정보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3장 운행

제13장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해 접속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당 허가 증명서 혹은 등록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확인을 해야 하고 적법한 허가증 혹은 등록 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할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응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의 증명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미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통신 주무부처에서 관련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도메인 등록 관리기관, 도메인 등록 서비스기관은 도메인 소유자의 이미 등록한 도메인에 대한 양도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제공 시 허가증 번호 혹은 등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의 허가 혹은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원(原) 허가 혹은 등록 기관에서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위법 범죄에 사용하는 사이트, 통신 그룹, 네트워크 계정,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APP을 설립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 범죄에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해서도 아니 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타인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분명 알면서 그를 위해 기술 지원, 광고 홍보, 결제와 결산, 네트워크 서비스 대행 등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모바일 전화 카드, 인터넷 충전 카드, 사물 인터넷 카드를 암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진실 신분 정보를 등록한 모바일 전화 카드, 인터넷 충전 카드, 사물인터넷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명예 이전 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보 발포 심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이버 안보와 정보 안전 관리제도, 사용자 정보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안전 방지 조치를 취해 공공정보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 신규 업무 안전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그가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진행하는 경영 허가를 취득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무에 대해 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유관 평가 결과를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와의 협의 체결 혹은 공급 서비스를 확인할 때 서비스 대상과 신원 증명 정보 혹은 조직기구코드번호 증서 정보 등 필수 진실 신원 정보와 일치함을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한 진실 신원 정보는 서비스 제공 기간에 함께 보관하고 서비스 중단 후 최소한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모든 조직과 개인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 및 사용하려면 진실된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본 방법이 규정한 진실된 신분 검사 기준을 위반하면서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허위 신원 정보, 타인으로 사칭한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하는 행위
- (2) 진실된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타인이 등록한 인터넷 계정, 자원을 취득 및 사용하는 행위
- (3) 타인의 진실된 신분 확인을 회피하려는 요구를 위해 기술 지원 혹은 도움을 주는 행위

제20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그가 발포한 정보와 사용자가 발포한 정보를 기록하고 최소한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네트워크 일지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하고 최소한 6개월 보관해야 한다. 네트워크 일지 정보의 세부 기준은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네트워크 대행, 네트워크 주소 전환 등 방식을 통해 타인과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자원을 공유할 경우 주소 전환 기록 등 사용자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 일지 정보도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제공한 서비스가 위법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 발견, 제지해야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네트워크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유관 기록을 보관하고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 등 유관 주무부처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진실 신분 확인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혹은 기타 네트워크 위법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고 발견했을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 삭제, 제지 등 처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관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아울러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에 보고한다.

제22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公安기관, 국가안보기관의 법에 의거한 국가안보 유지와 범죄 활동 수사를 위해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지원과 협조의 구체적 기준은公安기관, 국가안보기관이 통신 주무부처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의 법에 의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감독관리 직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지원과 관련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 및 그의 스템은 수집 및 사용하는 신원 정보, 일지 정보에 대해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집 및 사용하는 신원정보, 일지정보의 유출, 훼손,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정보 유출, 훼손, 분실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즉시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아울러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온라인 정보 안

전 신고, 고발 제도를 구축하여 신고, 고발 방식 등 정보를 공포하고 온라인 정보 안전에 관한 신고와 고발을 즉시 수리 및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유관 부처는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수집 및 기록한 신원 정보, 일지 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식으로 취득, 판매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방지, 제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유관 부처 및 그의 스텝은 인터넷 정보 감독관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감독관리와 법 집행 업무에 관해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출, 왜곡, 불법 훼손은 아니 되고 판매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기타 불법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 행위를 하고 온라인 질서를 교란해서는 아니 된다.

- (1) 허위 정보인지 분명 알면서도 발포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정보 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2) 타인에게 유상으로 정보 삭제, 차단, 교체, sink down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3)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계정을 대량으로 암거래, 등록 및 제공하여 위법 범죄에 사용되는 행위
- (4) 허위 클릭, 투표, 평가, 거래 등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신용체계를 파괴하는 행위

제26조 모든 조직과 개인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헌법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지키고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고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 복제, 발포, 전파하거나 혹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 복제, 발포 전파하는데 고의적으로 기술, 장비 지원 혹은 기타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1)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을 반대하고 국가안보, 명예와 이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뒤엎고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 (2)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양하고 민족 원한, 민족 차별을 선양하고 민족 통합을 파괴하고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 (3)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정보 및 기타 시장질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는 내용
- (4) 위험한 상황, 전염병 상황, 경찰 상황, 자연재해, 생산안전, 식품 의약품 등 제품 안전 및 기타 분야의 시화질서를 교란하는 가짜 정보를 조작, 전파하는 내용
- (5)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그의 스텝 혹은 기타 법인 명의를 사칭 및 차용하여 유포한 정보, 혹은 위법 범죄를 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유포한 정보가 있는 내용
- (6) 불법 집회, 결사(结社), 행진, 시위 혹은 기타 사회관리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정보를 유포 및 선동하는 내용
- (7) 음란, 폭력, 도박, 살인, 공포 정보 및 범죄 교사를 전파하고 범죄 수단, 방법을 전수하고 금지 물품, 규제 물품을 제조 혹은 거래하면서 사기 및 기타 위법 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내용
- (8)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하고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혹은 기타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정보를 포함한 내용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정보

제27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발포, 전송하는 정보가 본 방법 제26조에 열거한 내용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삭제 등 처리 조치를 취해 정보 확산을 막고 유관 기록을 보관하고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 등 유관 부처는 발포, 전송한 정보가 본 방법 제26조에 열거한 내용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직책 기준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에 전송을 중단하고 삭제 조치, 제지 등 처리 조치를 취하여 위법 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출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인 상기 정보에 대해 국가 인터넷정보부처와 유관 부처는 관계 기관에게 통지하여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파를 막아야 한다.

국가 유관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유입된 법률, 행정법규에서 발포 혹은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차단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타인이 상기 법에 의해 차단한 정보를 취득, 전파하도록 기술지원 혹은 기타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은 국가 표준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29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비상대응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필요할 때 즉시 배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장 감독검사

제30조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와 기타 유관 부처는 사회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록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31조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즉시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등 법 집행 직책을 이행하고 2명 이상 법 집행인원이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인원은 법 집행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법 집행 시 주동적으로 법 집행 증명서를 보여주고 감독검사 등 법 집행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32조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가 법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등 법 집행 직책 이행 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협조를 해야 하고 거부,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는 정보 공유와 정보 통보 제도를 구축하여 감독관리하고 소통과 협업,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公安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안전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와 기타 유관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원(原)허가 혹은 등록 기관에 관련 허가 혹은 등록을 취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34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의 본 방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유관 부처에 고발, 고소해야 한다.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가 고발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를 해야 하고 해당 부처 직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유관 부처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유관 부처는 고발자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고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35조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는 행정 위법 사건을 수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강제법>의 규정과 절차 기준에 따라 위법 혐의 행위와 관련된 전자설비, 저장 매개체, 물품, 시설, 장소에 대해 차압, 압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법 혐의 행위와 관련된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 및 그의 관계자가 본 방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정보 내용 감독관리 이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인터넷정보 부처, 정보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 관계자가 직무태만, 직권 남용,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혹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 수수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7조, 제10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가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에 해당 접속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방법 제13조 제1항, 제3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가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해당 통신사업 경영허가증 말소 또는 등록 번호 취소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방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혹은 기타 유관 부처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이거나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통신 주무부처가 그의 통신사업 경영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혹은 등록 번호를 취소한다.

제38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방법 제2장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 혹은 뇌물 공여 등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증 또는 등록 번호를 취득할 경우 원(許可) 허가, 등록 기관이 그의 해당 허가를 철회하거나 혹은 등록 번호를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방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 혹은 기타 유관 부처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한

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며, 사이트를 폐쇄하고, 원(原)허가기관이 관련 업무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 방법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을 명령하고 원 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 업무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본 방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公安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일 이하 구속 처벌을 내리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속 처벌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가 본 방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公安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2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방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이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을 명령하고 원 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 업무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公安기관, 국가안보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인터넷 정보 서비스, 도메인 등록과 해석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방법 제2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4조 본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 公安기관이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하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고 원 허가증 발급기관

이 관련 업무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는 본 방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이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사이트 폐쇄, 원 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 업무 허가증을 말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외의 기타 업체 혹은 개인이 본 방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이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개인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 방법 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면서 법률, 법규에서 발포 혹은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에 대해 전송 중단, 취소 등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간 기록을 보관할 경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은 각자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업무 중단 및 정돈, 사이트 폐쇄, 원 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하라고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통신 주무부처에 의해 통신사업 경영 허가증 말소, 통신사업 경영 허가 철회 혹은 등록번호가 취소될 경우 통신 주무부처는 관련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와 도메인 해석 서비스 제공업체에 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통지하고 관련 부처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련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한다.

제48조 인터넷정보부처, 통신 주무부처,公安기관과 기타 유관 부처는 본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내린 행정처벌을 신용 기록서에 기입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블랙리스트제도를 구축하고 주무부처에 의해 허가가 말소되거나 혹은 등록이 취소된 조직과 개인은 3년 내에 관련 허가 혹은 등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주무부처로부터 계좌 말소,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은 조직과 개인,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3년 내에 그를 위해 동종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없다.

제50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진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치안관리 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공급업체, 사용자 및 기타 업체와 개인이 유관 부처가 본 방법에 의거하여 내린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52조 본 방법의 아래 용어 함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사용자를 위해 인터넷 정보 발포와 응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검색 엔진, 실시간 통신, 인터랙티브 정보 서비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온라인 결제, 광고 홍보, 온라인 저장, 온라인 쇼핑, 온라인 예약,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해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무, 내용 발송 네트워크 업무, 인터넷 접속 업무 등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업무 형태는 네트워크 대행, 본체 위탁 관리, 공간 임대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53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TV 단말기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유관 방송 관리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54조 본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48. 정부업무보고 중 문화 관련 중점 업무

제목	关于文化工作，政府工作报告这样说
게재일	2021-03-06
출처	국무원, 문화관광부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2021년 정부업무보고 중 문화관광업무 관련 내용

2021년 3월 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어 시진핑 등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정부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13차 5개년 계획의 발전 성과:

교육, 위생, 문화 등 분야에서 교육 평등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의료위생사업 발전을 가속화하였으며 문화산업이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다.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와 과제:

선진적 사회주의 문화 발전, 사회 문명의식 제고,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개선, 현대적 문화산업체계 건설

2021년도 문화·관광 주요 업무

1) 문화, 여행, 체육 등 서비스 소비의 건강한 발전

정부는 업무보고의 “내수확대라는 전략적 기조 유지 및 내수시장 잠재력 발굴” 단락에서 소비 안정과 확대, 국민 소득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또 도농간 유통체계 활성화,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농촌으로 확대하여 농촌소비 증대에 힘쓴다. 자동차와 가전 등 주요 소비를 안정화시켜 중고차시장의 불합리한 병폐를 없애고 주차장,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등의 시설을 늘리며, 배터리 회수 및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문화, 여행, 체육 등의 서비스 소비의 발전을 도모한다. 기업제품과 서비스에 혁신을 하도록 독려하고 신상품의 시장진입에 편의를 제공한다. 내수와 국제무역 상품이 동일한 공급선, 동일한 표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규모 점포 등 민간 생활서비스업의 질서있는 운영을 보장하고 “인터넷+”를 통한 온·오프라인간 융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형태의 업종을 발전시켜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다. 플랫폼 기업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비용을 받도록 유도하여 소비능력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등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소비가 가능하도록 민생과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2) 인터넷 콘텐츠건설과 관리 강화, 문물 보호 및 이용, 비물질 문화유산 계승 강화 등 문화 헤민공정을 실시하고 외국과 인문학적 교류를 심층적으로 추진

정부업무보고의 “민생복지 증대와 사회건설 수준 제고” 항목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인민대중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양성하고 실천을 촉구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위대한 방역 정신을 홍보하여 국민의 도덕성 함양을 제고한다. 신문출판, 방송, 영화, 문학, 예술, 철학 사회과학과 당안 등의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인터넷콘텐츠 건설과 관리 그리고 인터넷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강화한다. 문물보호 이용과 비물질문화유산의 계승을 강화한다. 일치된 도농간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건설하고 문화 해민공정 실시를 통해 전국민의 독서 열기를 이끌어내며, 외국과의 인문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전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문화관광부 신문센터

2021년 3월 6일

49. 문화·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발성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进一步加大开发性金融支持文化产业和旅游产业高质量发展的意见
제재일	2021-04-15
출처	문화관광부, 국가개발은행
분류	중국 문화정책(종합)

문화·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발성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의견

각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문화, 관광 및 금융협력의 심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여 합작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투자 및 융자 체계를 정비하여 개발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가. 총체적 요구

시진핑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당의 19대 및 19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 중앙, 국무원의 상시적 산업통제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의사결정을 심도있게 수행하며, 6개안을 성실히 수행하고 질적인 발전요구와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목표에 다가서며 문화, 관광부문의 정책 조율을 잘 이끌어야 한다.

나. 주요 임무

1) 중점중대사업건설 지원

문화관광부, 국가개발은행은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함께 문화산업, 관광산업 분야의 중점중대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 전과정의 서비스 관리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한다. 징진지(베이징, 천진, 하북성)의 공동발전, 장강경제벨트, 위에강아오다완구(홍콩, 마카오, 광둥)의 건설과 장삼각지역의 일체화된 발전과 황하유역 생태계의 보호와 발전 등 주요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14.5 계획”의 각 실행부서들의 계획 시행으로 관련 문화와 관광 프로그램의 투자, 융자 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만리장성, 대운하, 장정, 황하 등 국가문화공원의 문화산업과 여행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서비스,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상시적으로 브랜드화하여 정확한 투자, 융자촉진 활동을 통해 사회자본과 금융자본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한다.

2) 시범사업추진 지원

국가문화와 관광소비 시범도시, 시범도시문화와 관광소비 장소 및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국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융합발전 시범지구, 국가급 야간문화, 관광소비 클러스터를 건설을 진원한다. 전국의 여행시범기지, 전지역 관광시범구역, 국가A급 관광단지, 국가급 관광리조트, 국가급 관광레저도시와 거리, 혁명성지관광, 역사문화마을, 전국 시골테마펜션촌의 융자지원을 연구개발한다.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 국가문화산업단지 투자펀드를 설립해 융자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산업의 혁신적발전을 지원

산업디지털화, 디지털 산업화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산업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개발적 금융을 적극활용해 디지털 문화산업발전을 지원하며,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적용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 관광과 과학기술 융합발전 시범종목과 새로운 문화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작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품질과 핵심경쟁력을 높인다. 금융기관이 디지털 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융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각종 시장주체의 발전을 지원

중소규모의 문화와 관광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문화 및 금융협력 시범지구를 토대로 협력모델과 메커니즘 혁신을 추진한다. 국가개발은행 지점과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금융서비스센터, 상업적 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문화와 관광기업의 투자유자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빈곤퇴치 사업을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각급 빈곤퇴치 지원 문화, 관광기업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종 금융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개발은행 및 지점의 개발적 금융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리고 각종 시장주체에 대한 대응과 어려움 해소에 대한 지원도 하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부활을 촉진한다.

5) 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일대일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국제협력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국과 외국의 문화,관광기업이 공동으로 상품,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우수 문화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역외투자 및 인수합병과 공동경영, 지사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국가대외문화 무역기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관광기업의 국제업무 확장을 위한 투자유자 지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정책의 시행

1) 융자계획 수립

정부부처의 조직적 강점과 개발적 금융의 융자서비스의 강점을 살려 기획의 총괄적 계획과 선도역할을 부각시켜 '14.5개년 계획'을 전개, 산업발전과 프로젝트 개발 건설 필요에 따라 문화 및 관광 중점지역, 분야와 고객을 선택하여 융자계획을 편성하고 은행과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투자유자 주체건설과 프로젝트 기회, 투자유자 모델연구, 투자유자 설계 등 리스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2) 자금지원

각급 문화와 관광 행정 부처는 관련 요구에 부합한다는 전제아래 각종 재정자금과 정부투자기구를 총괄하고 대출할인, 융자보증, 리스크보상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산업 투자유자 환경을 최적화한다. 국가개발 은행은 국가정책 법규, 여신정책에 부합하고 시장화에 따라 운영된다는 전제아래 '원금보장 소이자' 원칙에 따라 문화와 관광 항목에 대해 긴주기, 낮은 원가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쌍방이 인정하는 중대항목은 차별화된 여신조건으로 진행하여 도시와 노후단지의 리모델링이나 농촌진흥 등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통합적 방법을 모색하고 문화산업과 관광

산업을 지원한다.

3) 종합적 금융 서비스제공

개발적 금융 중장기 융자 강점과 투자, 대출, 채권, 임대, 증권에 협동으로 지원하여 문화, 관광 사업의 직접투자, 증권발행 및 인수, 융자임대 등 다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젝트 통합, 상환원 통합, 신용구조 통합 등 시장혁신과 정부와 사회의 자본협력 모델을 채택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루트를 넓혀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및 관광 관련 정부융자 플랫폼의 시장화를 지원하여 위험통제가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지속가능 하다는 전제아래 문화및 관광 프로그램관련 특허경영권, 요금권 및 미수금 담보 등의 담보대출 업무를 전개한다. 문화 및 관광관련 지방정부의 전문 채권금융서비스 업무도 처리하도록 한다.

라. 조직

1) 부서간 협력강화

문화, 관광부와 국가개발은행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팀워크 제도를 구축하여 각자의 장점을 살려 프로젝트화, 리스트화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 공중조직을 통해 공조조사, 업무훈련, 프로젝트 공동추진, 경험공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인재교류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한다.

2) 협조 매커니즘

각급 문화와 관광행정 부처, 국가개발은행의 각급 기구는 업무조정 매커니즘을 세워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책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융자 건설 중 존재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각 성급 문화와 관광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 단지, 프로젝트 리스트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국가개발은행 각 지점에 소개하며, 국가개발은행의 금융서비스 상품과 중대 프로젝트에 편리와 지원을 제공한다.

3) 실행 평가

문화관광부는 정책 조율, 공공서비스, 거시적 지도 등에 입각해 국가개발은행과 실행 실태와 성과 등을 평가한다. 국가개발은행은 개발적 금융기관의 우위에 입각하여 문화관광부의 건의에 따라 시장화 원칙에 따라 관련 중대프로젝트의 융자와 금융서비스 상품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4) 정보 전달

각급 문화와 관광행정부처, 국가개발은행의 각급 기구는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관련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전면적이고 정확하다는 원칙을 준수하여 정보와 중점항목의 배치를 관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매 분기 첫달 15일 전에 각 성급 문화와 관광 행정 부처와 국가개발은행 현지 지점은 지난 분기의 관련업무 상황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정보를 취합한 후 각각 문화와 관광부문 생산에 대해 문화관광부 산업발전사, 국가개발은행 3 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문화관광부
2021년 4월 15일

50. 14차 5개년 문화산업 발전 계획

제목	十四五文化产业发展规划
제재일	2021-05-06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문화정책

14차 5개년 문화산업 발전 계획

목차

서론

제1장 총체적 요구

- 제1절 지도사상
- 제2절 기본원칙
- 제3절 발전목표

제2장 문화산업 혁신 발전 추진

- 제1절 신형 문화적 형태 발전에 가속화
- 제2절 전통 문화적 형태 개조 및 업그레이드
- 제3절 문화 기술 혁신과 응용 강화
- 제4절 생태계 구축 및 혁신 발전

제3장 수요·공급 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 촉진

- 제1절 양질의 문화상품 공급 확대
- 제2절 원활한 문화상품 전파 및 유통
- 제3절 문화 소비 잠재력 방출
- 제4절 문화 소비 환경 개선

제4장 문화산업 공간적 배치 최적화

- 제1절 지역 문화산업의 조율 발전 추진
- 제2절 문화산업과 신형 도시화 건설의 융합을 촉진
- 제3절 농촌 특색 문화산업 발전

제5장 문화산업 융합 발전 추진

- 제1절 문화와 관광의 융합 중점 형태 발전
- 제2절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 매개체 구축
- 제3절 문화산업과 기타 관련 분야의 융합을 추진

제6장 문화시장 주체 발전 활력 유도

- 제1절 각종 문화시장 주체의 발전
- 제2절 문화기업 서비스체계 구축 및 완비
- 제3절 문화산업단지 기지의 규범화 발전

제7장 문화산업 국제 협력 경쟁의 신강점 육성

- 제1절 문화산업 국제 협력 신구도 구축
- 제2절 대외 문화 무역 종합 경쟁력 강화

제3절 문화산업 국제 협력 지원체계 혁신

제8장 문화와 금융 융합 심화

제1절 지원정책체계 보완

제2절 서비스 매커니즘 혁신 추진

제3절 유효 투자 확대 유도

제9장 보장 대책

제1절 경제정책 이행

제2절 법치 보장 강화

제3절 인력 양성 강화

제4절 시장질서 규범화

제5장 구성 및 실시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개 5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 국가 ‘14.5’ 문화개혁 발전 계획 및 <‘14.5’ 문화와 관광 발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현대 문화 산업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작성한다.

서론

시진핑 총서기는 ‘14.5’ 시기 발전을 도모하려면 문화산업 발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산업 발전은 대중의 다양화, 고품격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기반이자 문화 창조 활력을 유발하고 문화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13.5’ 기간 시진핑 핵심의 당중앙의 강경한 지도와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의 대대적인 추진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 노력 하에 중국의 문화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2.7조 위안에서 4.4조 위안을 돌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연 평균 증가세는 13%에 근접했으며 동기대비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5%에서 4.5%로 상승했다. 문화산업은 국민경제 전환 업그레이드와 질적 향상과 효과 증가를 촉진하고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의 새로운 기대감을 만족시키고 중화 문화의 영향력과 국가 문화 소프트파워를 드높이는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4.5’ 시기는 중국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입하는 첫 번째 5년이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황이고 시장 공간이 넓고 공급측 구조 개혁이 끊임없이 심화하면서 현대 산업체계 발전이 빠르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더블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농촌 진흥,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신형 도시화가 심층 추진되면서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체계에 깊이 융합되고 국가 중대 전략을 위한 서비스, 새로운 경제 성장점 육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능력 부여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가 심층 발전하면서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이 깊이 있게 시행되고 있고 신제품, 신업종과 신모델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이는 문화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광범위해지고 정신 문화 상품의 공급에 대해 더 높은 요구가 있으며 문화산업은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루트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세계는 100년에 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환경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코로나 19 영향이 만연되면서 중국의 발전이 불균형,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이로 인해 문화산업 발전도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산업 자체 발전의 질적 효익이 아직 부족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도농 지역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융합이 아직 부족하고 문화기업의 전체 실력이 아직 약하고 혁신 창의 능력과 국제 경쟁력이 아직 강하지 않고 문화 경제 정책을 개선 및 이행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14.5’ 시기 중국의 문화산업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 시기에 놓여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의 전체적인 국면과 세계적인 100년에 없는 대변화에 입각하여 중국의 사회 주요 갈등이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기준을 심도 있게 인지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갈등과 도전을 깊이 인식하고 기회 의식과 리스크 의식을 강화하고 발전 법칙을 인지 및 파악하고 위기 속에서 선점의 기회를 만들고 변화속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개혁과 혁신, 분발을 통해 성과를 이루면서 문화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도록 추진한다.

제1장 총체적 요구

제1절 지도사상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의 ‘19대와 19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 정신을 심층 관철 집행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¹⁵⁵⁾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도하는 것을 고수하고 ‘5위1체’¹⁵⁶⁾ 총체적 배치의 통합 추진과 ‘4개 전면’¹⁵⁷⁾ 전략적 배치의 조율 추진을 중심으로 안정 속 발전이라는 업무의 총체적 기조를 고수한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문화 자신감을 굳히고 정도를 지키는 혁신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선도하는 것을 고수한다. 사회주의 정신 선양, 민심 단합, 신인 육성, 문화 부흥, 이미지 전시의 사명 임무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 추진을 주제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주요 방향으로, 문화 창의, 기술 혁신, 산업 융합을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에너지로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과 혁신사슬 효능을 향상시키고 현대 문화산업체제와 시장체제를 끊임없이 구축하고 대중 문화 수요 만족과 대중의 정신 역량 상호 통일 강화를 촉진하면서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위해 탄실한 기반을 구축한다.

제2절 기본 원칙

- 1) 정확한 발전 방향을 고수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 분야에서의 지도적 위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 효익을 최우선시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상호 통일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 발전 법칙을 준수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요구를 구현하여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보장한다.

155) ‘3개 대표(三个代表)’: 중국 공산당은 시종일관 중국의 선진 생산력의 발전 수준을 대표, 시종일관 중국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 시종일관 중국의 가장 많은 대중의 근본 이익을 대표

156) ‘5위1체(五位一体)’: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생태문명건설

157) ‘4개 전면(四个全面)’: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법에 의한 국가 관리), 전면적인 중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 2) 대중 중심을 고수한다.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근본 목적을 고수하고 대중 중심의 창작 생산 방향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우수한 문화상품 공급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의 새로운 기대를 더 잘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전면적인 발전,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더 잘 추진한다.
- 3) 혁신 구동을 고수한다. 혁신 핵심의 구동력을 고수하고 문화 혁신 창조 활동을 분발하고 문화 산업 콘텐츠 형식, 매개체 루트, 사업 모델 등 혁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고신기술 발전 추이에 적응하면서 문화와 과학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혁신에 의한 원동력 유발, 활력 강화, 잠재력 방출로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사슬 최적화, 가치 확장을 추진하고 질적 효익과 핵심 경쟁력을 높인다.
- 4) 융합 발전을 고수한다. 문화를 이용한 관광 만들기, 관광을 통한 문화 알리기를 고수하고 문화 산업과 관광산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 전략을 추진한다. 그리고 문화 능력 부여 발전을 고수하고 문화의 기풍 선도, 대중 교육, 사회를 위한 서비스, 발전 추진 역할을 발휘하고 문화산업과 실물경제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면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문화 활력을 불어넣는다.
- 5) 시스템 관념을 고수한다.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이행을 중심으로 전국이 하나라는 것을 고수하고 문화산업 발전 특징 법칙과 자원 요소 조건을 파악하고 지역 도농 문화산업 발전을 통합 계획하고 발전과 안전, 정부와 시장, 사업과 산업, 공급과 수요, 국내와 국제 등 중요한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전략적 도모, 전체적 추진을 강화하고 문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 형성을 촉진한다.

제3절 발전 목표

2025년에는 문화산업체계와 시장체계가 더욱 정착되고 문화산업 구조 배치가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문화 공급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문화 소비가 더욱 활발하며 문화산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문화 및 관련 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더 높아지고 문화산업 발전의 종합 효익도 눈에 띄게 올라가고 국민 경제 성장에 대한 지지와 견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된다.

- 산업구조를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하고 신형 문화업종이 더욱 다양해지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특징이 더욱 선명하며 산업사슬과 혁신발전 생태계가 더운 완비해지고 문화산업과 관련 분야의 융합이 더욱 깊어지고 문화산업의 전체 실력과 경쟁력이 현저히 높아지고 강화된다.
- 공급체계의 질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대중의 문화 소비 요구에 적응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대거 등장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내적 품질, 창의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더 많은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문화상품과 서비스 브랜드가 선보이며 도농 주민의 문화 소비가 더욱 활발해진다.
- 산업구도가 더욱 합리적인 추이를 보이고 지역 분업 협업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조율 발전 매커니즘이 점차 정착되고 현저한 시범 효과와 견인 역할이 있는 문화산업 기능구역, 문화산업 중심 도시, 지역 문화산업벨트가 많이 조성되고 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진다.
- 발전 환경이 더욱 최적화되고 문화시장 주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구조가 더욱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현저히 높아지며 문화시장 환경이 더욱 건강하고 질서를 갖추고 문화경제 정책

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문화산업의 투융자체계가 더욱 건전해지고 문화산업 인재가 대량 쏟아져 나오고 문화 혁신 창조 활동이 한층 더 분발하고 활발해진다.

2035년을 내다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문화강국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문화 소프트파워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문화산업의 전체 실력과 경쟁력이 대폭 상승하고 문화산업 발전의 질적 효익, 도농 주민의 문화 소비 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문화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지지와 견인 역할이 새로운 경지에 이를 것이다.

제2장 문화산업 혁신 발전 추진

혁신에 의한 문화산업 발전을 고수하고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이행하고 문화산업의 ‘상운용수부지(上云用数赋智)’¹⁵⁸⁾를 촉진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을 추진하고 문화산업의 전면적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질적 효익과 핵심 경쟁력을 높인다.

제1절 신형 문화적 형태 발전에 가속화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 발전 추이에 발맞추어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고화질, 사물인터넷,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등 기술을 심층 활용하여 디지털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온라인 방송, 디지털 구상, 디지털 예술, 디지털 오락, 몰입형 체험 등 신형 문화적 형태를 육성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의 형태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화권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혁명 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춘 디지털 문화 브랜드를 만든다. 디지털 문화와 소셜 전자상거래, 온라인 라이브 방송,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신경제 결합을 촉진하고 지식 전파, 경제 공유를 토대로 하는 혁신 플랫폼 발전을 지원한다. 디지털 문화산업이 실물 경제에 에너지를 부여하도록 촉진한다.

제2절 전통 문화적 형태 개조 및 업그레이드

공연과 연기, 오락, 공예 미술, 문화 전시회 등 전통문화산업에서의 기술 응용을 강화하고 전통 문화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문화 자원 디지털화 전환과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신형식, 신요소와의 결합을 추진하고 우수한 문화 자원이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려 ‘살아나게 한다’. 중국 전통 공예 진흥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전통 공예에 대한 전승 보호와 개발 혁신을 강화하고 전통 공예 제품의 전체적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희곡, 곡예, 국악 등 전통 예술의 온라인 발전을 촉진하고 문예단체, 문예 종사자, 무형문화 기능 보유자의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방송 진행을 장려한다. 전통문화산업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협작을 장려하고 데이터 전환, 체험 유료, 서비스 운영 등 모델을 규범화하여 확대한다.

제3절 문화 기술 혁신과 응용 강화

문화산업 발전 수요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재료과학, 생명과학 등 전향적 분야를 밀접히 주목하고 자주 혁신을 강화하고 장점 자원을 통합하고 문화산업의 공통성,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158) ‘상운용수부지(上云用数赋智)’: 상운(上云)은 클라우드 사용, 용수(用数)는 디지털 사용, 부지(赋智)는 스마트화 부여를 말한다.

응용을 강화하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힘이 되는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 주체, 시장 주도의 산학연용(产学研用)이 심층 융합된 문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산업 분야의 문화와 관광부의 중점 LAB과 기술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문화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오락 등 분야의 상품, 기술과 서비스 표준의 연구 제정을 추진하여 문화산업의 표준체계를 형성한다. 휴대전화(모바일 단말기) 애니메이션 국제 표준과 디지털 예술 표현 국제 표준의 응용과 확대를 강화한다.

제4절 생태계 구축 및 혁신 발전

산업사슬 중심의 혁신사슬 배치, 혁신사슬 중심의 산업사슬 배치로 문화산업 요소의 합리적인 집중을 추진하고 혁신사슬이 효율적으로 산업사슬을 위해 서비스하도록 촉진하고 혁신 성과의 빠른 전환과 응용을 실현하여 산업 기반 첨단화, 산업사슬 현대화를 추진한다. 신형 인프라 건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화 장비 수준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플랫폼 등 ‘클라우드, 온라인, 단말기’ 통용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문화기업의 인큐베이터, 메이커 스페이스,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창업과 거래 플랫폼 등 혁신창업 매개체 구축을 지원하고 혁신과 창업, 인큐베이팅과 투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문화 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장려한다.

칼럼 1 문화산업의 혁신 발전
온라인 방송: 온오프라인 융합, 공연과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혁신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문예단체, 공연 장소의 온라인, 클라우드 접속을 추진하고 극장의 디지털화 향상을 장려하고 문예단체와 인터넷 플랫폼의 협력을 촉진하고 100개 이상의 온라인 방송 프로젝트를 육성하여 온라인 방송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고 무대 예술의 온라인 방송 유명 브랜드를 만들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전과 변화 방향을 이끈다. 몰입형 체험: 문화문화기관, 관광지 명소, 테마 공원, 단지과 길거리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100개 이상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 내용을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수준을 높이고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몰입형 전시, 몰입형 오락 체험 등 업종을 발전시켜 몰입형 체험과 도시 종합체, 공공 공간, 관광지 등의 상호 결합을 장려한다. 디지털 예술 보여주기: 디지털 기술과 예술 창작, 전파, 전시의 결합을 추진하고 100개 이상 디지털 예술 체험 장면을 육성하여 중점 분야와 장면에서 디지털 예술 보여주기 상품의 응용을 확대하고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투영, 드론 공연, 야간 불빛 쇼 등 상품을 개발하여 중화 문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제3장 수요 · 공급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 촉진

대중의 나날이 증가,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개성화 되어가는 문화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내수 확대 전략 실시를 공급측 구조 개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수요측 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선도 및 창조하며 수요 변화로 공급체계와 구조 업그레이드를 변화시켜 수요로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으로 수요를 창조하는 더 높은 차원의 동태적 균형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절 양질의 문화상품 공급 확대

대중 중심의 창작 생산 방향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선도하고 사상 내용을 돋보이게 하며 장인 정신을 발휘하여 사상이 깊고, 예술 조예가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은 양질의 문화 상품을 끊임없이 내놓는다. 문화 기업/사업기관, 개인의 콘텐츠 창작 강화와 상품의 연구개발을 장려 및 지원하고 희극, 음악, 무용, 미술, 애니메이션, 아이디어 설계, 공예 미술 등 문화 상품의 창작 생산을 추진하고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등을 매개체로 하는 디지털 문화상품을 더 많이 선보인다. 창조적 전환, 혁신적 발전을 고수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현대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는 더 많은 문화 아이디어 상품의 창작과 생산을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트렌드 요소, 중국 특색과 세계 트렌드를 결부시켜 청년들의 문화 소비 수요에 맞고, 진취적이고 선한 것을 따르는 가치관념을 전달하고, 중화 문화 정신을 구현하는 더 많은 문화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다양한 연령대 어린이의 심신 성장에 적합한 문화상품의 창작과 생산을 지원한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버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년층의 문화 수요에 맞는 문화상품과 소비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한다. 문화 브랜드 전략을 이행하고 대표성, 영향력, 경쟁력이 있는 문화상품 브랜드를 대거 육성한다.

제2절 원활한 문화상품 전파 및 유통

문화상품 전파와 유통 체계를 완비하고 문화상품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유통을 촉진한다. 문화 전파 루트 구축을 장려 및 지원하고 각종 문화 전파 루트의 역할을 발휘하여 문화상품의 전파를 추진한다. 문화 전자상거래 및 E-티케팅, 공연 극장 등 현대 유통조직과 유통형식의 발전을 장려한다. 각종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의 문화 전파 역할을 발휘하여 문화상품 전파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수준을 높인다. 각종 문화산업의 전시회 거래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통합 개방된 지역 문화상품 전시&거래 플랫폼 구축을 장려한다.

제3절 문화 소비 잠재력 방출

국가 문화관광 소비 대표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가 문화관광 소비 테스트베드 도시 건설이 대표 도시, 지역 문화관광 소비 중심 도시로 부상하도록 추진한다. 대표 도시, 테스트베드 도시의 선도 견인 역할을 발휘하여 각 지역의 체제 매커니즘 혁신, 정책조치 개선을 유도 및 추진하여 소비 잠재력의 지속적인 방출을 촉진한다.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는 문화소비축제, 소비의 달, 소비 주간 등 다양한 형식의 소비 촉진 활동 진행을 장려하고 노멀화 소비 촉진 매커니즘을 완비한다.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중구역 건설을 추진하여 야간 문화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고 야간 외식, 쇼핑, 공연, 오락 등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다양한 야간 소비 장면을 구축한다. 신형 문화 소비 모델을 발전시키고 문화 소비 장면을 혁신하고 온라인 소비, 맞춤형 소비, 체험형 소비, 스마트형 소비, 인터랙티브형 소비 등 신형 소비를 육성한다. 온라인 교류와 인터랙티브, 브랜드 구축, 정확한 마케팅 등 강점을 살려서 온오프라인 소비의 융합과 상호 촉진을 추진한다.

제4절 문화 소비 환경 개선

기존의 문화 소비 장소 시설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하고 문화 소비가 각종 소비 장소에 침투되도록 장려하여 문화 소비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창작 스토어, 특색 서점, 극장, 문화오락장소,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광 소비 집중구역 조성을 장려하고 전통 상업 종합체가 문화, 스포츠, 상

업, 관광 종합체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문화 내용이 풍부한 고품격 보행거리 건설을 지원한다. 문화 소비 장소, 장면의 결제 편의도를 높이고 문화 소비 신용대출 상품과 서비스 발전을 규범화한다. E-티켓, 클라우드 정렬 등 온라인 소비의 새로운 방식을 보급하고 디지털화 예약 능력을 높이고 문화 소비의 편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각 지역의 문화 소비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칼럼 2 중점 문화업계 공급 최적화

연예업 : 명작 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창작 생산의 품질을 부각시키고 창작 기획을 강화하고 많은 명작을 만든다. 몰입형, 인터랙티브형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공연 극장, 연예업연맹의 발전을 지원한다. 연예 기술의 연구개발, 혁신과 장비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공연 티켓 감독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오락업 : 오락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혁신 발전을 추진하고 밝고 긍정적인 오락 행동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기술이 선진적인 신형 오락방식을 개발하고 오락 형태와 상품을 혁신한다. 오락장소 표준화 건설과 체인화, 브랜드화 발전을 추진한다. 온라인 K-POP, 코인 노래방, 음악 파티 등 신형 가무(歌舞)오락 형태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지원한다. E-스포츠와 게임, 오락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몰입형 오락체험 상품 개발을 장려한다.

애니메이션업 : 애니메이션산업의 질적 효익을 높이고 애니메이션으로 차이나 스토리를 풀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감 있게 전파하고 대중 특히 청소년의 정신적 역량을 강화한다. 중국 애니메이션 브랜드를 대거 만들고 애니메이션의 ‘전(全)산업사슬’과 ‘전(全)연령대’ 발전을 촉진한다. 애니메이션 브랜드 권한 위임과 캐릭터 마케팅을 발전시키고 애니메이션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확장한다. 중국 문화예술 정부상(獎)의 애니메이션상 평가 선정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설계업 : 아이디어 설계와 현대 생산 라이프와 소비 수요와의 도킹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관련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설계의 실력 부여 역할을 발휘한다. 중화 문화의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 미학(美学) 정신이 아이디어 설계에 녹아 들게 한다. 전문화, 특색화, 브랜드화의 아이디어 설계 기업을 대거 육성한다. 청년 디자이너 육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문화업 : 신기술 신업종 신소비 발전에 적응하고 산업사슬의 상하부라인과 다른 산업과 융합된 디지털화 생산, 유통, 소비 생태계 형성을 추진하고 양질의 디지털 문화상품 공급을 끊임없이 확대한다. 온라인 문화 명작 지원 계획을 실시하여 온라인 뮤직, 온라인 애니메이션, 온라인 공연, 온라인 시청 등의 창작 능력과 문화 품격을 높인다. 우수한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 전환과 개발을 장려한다. 지식 유료, 소셜 E-비즈니스, 공유 경제 등 신업종, 신모델의 발전을 장려한다.

예술품업 : 예술 창작과 예술품 시장이 상호 촉진하는 예술품업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예술 조예가 깊고, 신의성실하게 경영하고, 경쟁력이 강한 갤러리를 대거 육성한다. 다양한 예술 형식, 스타일, 파벌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청년 예술가의 잠재력을 발굴한다. 예술 파생품, 예술품 라이선스, 예술품 전자상거래 발전을 장려한다. 규범화된 예술품 거래, 투자, 감정, 평가 등 시장 운영 플랫폼과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품 시장의 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예술품 경매시장을 규범화한다.

공예미술업 : 보호 전승과 혁신 발전의 상호 결합을 고수하고 전통 공예 미술 기예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고 공예 미술품의 특색화, 개성화, 브랜드화 발전을 추진한다. 기술, 공법 재료와 상품 종류 등 혁신 능력을 강화한다. 디지털화를 토대로 하는 개성화 맞춤 제작, 정확한 마케팅의 신형 생산경영 방식을 모색한다. 공예 미술과 아이디어 설계, 관광업, 농촌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문화 전시업 : 시장화, 전문화, 브랜드화 방향을 고수하고 시범과 견인 역할을 하는 중점 산업 전시회를 만들어 산업 특색이 선명하고 지역 특징이 두드러지는 문화산업 전시회 발전을 장려하고 문화 전시회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전시 등 신업종의 발전을 장려한다. 중국(선전) 국제 문화산업박람회, 중국서부문화산업박람회, 중국국제온라인문화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국관광산업 박람회, 중국(우한)문화관광박람회를 토대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장비 제조업 : 몰입형 체험, 스마트 인터랙티브 등 추이에 적응하고 문화 장비 기술의 연구개발과 업그레이드 개조를 촉진하고 표준, 콘텐츠와 기술 장비의 협업 혁신을 강화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입체적 이미지, 고화질, 휴대용 장비, 스마트 하드웨어, 몰입형 체험 플랫폼 등 핵심 기술 장비의 혁신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문물과 예술품의 전시와 진열, 보호, 복구의 설비 산업화를 지원한다. 스마트화 무대 공연 장비와 첨단 음성 비디오 상품의 연구개발을 장려한다.

칼럼 3 문화 소비 확대 및 유도
문화관광 소비 중심 도시 건설: 국가 문화관광 소비 시범 도시는 30개 정도에 이르고 60개 정도의 지역 문화관광 소비 중심 도시를 건설하여 지원과 동태적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중구역 조성: 200개 이상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중구역을 만들어 집중 협업과 견인 효과를 발휘하고 야간 문화관광 소비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제4장 문화산업 공간적 배치 최적화

국가 지역 중대 전략, 지역 조율 발전 전략, 신형 도시화 전략과 농촌 진흥전략을 관철 집행하고 문화산업 발전 법칙의 특징과 자원 요소 조건을 파악하여 지역, 도농 통합 계획 조율과 협업 연동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자원 부존과 기능 위치를 유도하고 비교 우위를 발휘하여 지지대가 다양하고, 각자의 특색이 있고, 강점을 상호 보완하고, 조율 발전하는 문화산업 공간적 배치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제1절 지역 문화산업의 조율 발전 추진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업 발전, 장강(长江)경제벨트 발전, 웨강아오(粤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항만구 건설, 창산자오(长三角: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 황허(黄河)유역 생태보호와 질적 발전, 청위(成渝: 청두와 충칭)지역 더블 시티 경제권 건설 등 중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산업벨트와 산업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한다. 장성(长城), 대운하(大运河), 창정(长征), 황허(黄河) 등 국가문화공원 건설 과정에서의 문화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개발지역과 저개발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통합 기획하고 동부지역이 중서부지역, 동북지역과 산업 협력과 지원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역 문화산업의 우위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한다. 동부지역의 혁신 선도를 부각시키고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장려한다. 중부지역 이 산업 구조 최적화, 소비시장 육성, 문화산업 굴기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한다. 서부지역이 자원 우위를 발휘하여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고 문화산업 발전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도록 지원한다. 문화산업의 동북 진흥 과정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빙설(冰雪) 등 특색 문화 발굴과 이용을 강화하고 동북지역의 경제 성장점을 육성한다.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각인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민족지역, 변경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혁명노구(革命老区)¹⁵⁹⁾의 특색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홍색문화(红色文化)¹⁶⁰⁾ 전승과 선양을 지원한다. 여건이 되는 지역의 해양 특색 문화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해양 경제 발전과 해양 문화 건설을 지원한다.

제2절 문화산업과 신형 도시화 건설의 융합을 촉진

도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도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 역사 문화 명맥을 보호 및 이어가면서 역사적 소양이 풍부하고, 시대적 특징이 선명하고, 문화 분위기가 농후한 인문 도시를 만든다. 도시 역사 건축물, 공업 유산, 낡은 공장 건물, 구시가지, 낡은 창고 등 현존 공간을 이용하

159) 혁명노구(革命老区): 토지혁명 전쟁시기와 항일 전쟁시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로 창건한 혁명기지

160) 홍색문화(红色文化): 중국공산당이 혁명, 건설, 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특별한 문화

한 문화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도시 갱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옛 공업도시와 자원형 도시의 전환을 지원한다. 도시그룹, 도시권, 중심 도시가 자원 요소 우위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 고지와 협업 혁신 중심을 형성한다. 중소 도시, 소도시가 특색 자원과 산업 인프라에 입각하여 현지 상황에 맞는 특색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도시 주민, 농업 이전 인구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도록 장려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는 지역의 통합을 강화하고 대중소 도시와 소도시 문화산업의 연동 발전을 촉진한다.

제3절 농촌 특색 문화산업 발전

현(縣)지역과 농촌 특색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도농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요소가 더 많이 농촌으로 이동하도록 촉진하고 문화산업 특색 농촌, 문화산업 특색 마을을 대거 건설하여 농촌 특색 문화 자원, 전통 공예 기술 및 예술과 아이디어 설계, 현대 과학기술, 시대적 요소의 상호 결합을 촉진한다. 빈곤지역 특색 문화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빈곤 탈출 공략 성과와 농촌 진흥의 효과적인 연결이 확고하게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 전통 명절 문화, 민간 예술, 민속 공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농후한 지방 특색이 있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육성한다. 각 지역이 ‘1지1품(一地一品)’¹⁶¹⁾을 만들도록 지원하여 큰 영향력과 시장 경쟁력이 있는 문화산업 브랜드를 형성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민간 예술인, 민간단체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촌 특색 문화기업을 육성하고 실력이 있는 기업이 농촌 특색 문화산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치하고 농촌 특색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많이 육성한다. 농촌 문화 인재, 문화 메이커와 문화기업 경영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인터넷, 숏폼 영상 등 현대 전파 루트를 통해 농촌 특색 문화상품과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칼럼 4 문화산업의 공간적 배치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문화산업클러스터: 징진지 3개 지역 혁신 문화산업 협업 발전 매커니즘을 추진하고 기능 포지션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자원산업 연결, 플랫폼 프로젝트 공동 구축, 요소 시장 일체화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산업의 분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숭안신구(雄安新区)의 문화산업 혁신 실험을 지원하고 각종 신행 문화적 형태를 육성한다. 베이징 2022년 동계 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징장(京張: 베이징-장자커우)고속철도 연선 문화산업과 스포츠, 관광 등 분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징장 스포츠 문화 관광벨트 구축을 지원한다.

웨이강아오(粵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항만구 문화산업클러스터: 웨이강아오항만구의 문화 아이디어, 기술 혁신, 대외 교류 등 우위를 발휘하여 디지털 문화, 아이디어 설계, 선진 문화 제조 등 산업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산업 개방 발전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현대 문화산업 도시그룹을 만든다. 대륙과 홍콩-마카오의 문화산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선전(深圳) 문화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형 시범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창산자오(长三角: 창장삼각주)문화산업클러스터: 창산자오 경제발전 우위를 이용하고 일체화 발전 추이에 부응하면서 현대 문화산업체계와 문화시장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출발점이 더 높은 개혁 혁신을 촉진하고 더 나은 질적 산업사슬 통합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문화 기술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하고 문화 소비제도 정책을 혁신하여 창산자오 문화산업 일체화, 질적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산업의 푸둥(浦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선도지역 조성, 저장(浙江)공동 부유 시범지역 구축 및 질적 발전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청위(成渝: 청두-충칭)지역 더블 시티 문화산업클러스터: 청두와 충칭이 파촉(巴蜀, 쓰촨을 달리 이르는 말)문화를 연결고리로, 쓰촨과 충칭을 연결하는 육로, 수로, 도시 등을 토대로, 문화관광 융합을

161) ‘1지1품(一地一品)’: 1지역 1브랜드, 즉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브랜드 하나를 만든다는 뜻.

주요 방향으로 파촉 특색이 있는 문화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파촉문화 관광 회랑을 구축하며 쓰촨 지방의 전통극, 쓰촨 요리, 쓰촨 실크, 쓰촨 자수, 석각(石刻) 등 두 지역의 근원이 같은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활용을 추진하여 특색이 있는 우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창장(长江)문화산업벨트: 창장 연선의 창장(羌藏: 강족과 장족), 파촉, 텐첸(滇黔: 윈난성과 구이저우성), 징추(荆楚: 후베이성), 후샹(湖湘: 후난성), 간완(赣皖: 장시성과 안후이성), 우웨이(吴越: 장수성과 저장성 일대) 등 다양한 문화 특색과 자원을 발굴하고 전통, 현대 문화의 유기적 융합을 강화하여 각자 특색이 있는 창장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창장의 교통, 경제, 문화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상하이, 난징, 우한, 창사, 충칭, 청두 등 노드 도시의 문화 혁신 중심 역할을 발휘하여 문화 혁신 요소의 합리적인 이동과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고 상중하부라인의 협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강 연안 문화산업의 단계별 배치체계를 구축한다.

황허(黄河)문화산업벨트: 황허유역의 자연지리구도 및 지역문화에 의거하여 상하류 상호 작용, 원류와 지류의 협업, 전면적인 지지를 촉진하고 황허 연선의 허황(河滄: 황허와 황수이), 허타오(河套: 오르도스), 관중(关中: 산시(陝西)성 웨이허(渭河) 유역 일대), 산진(三晋: 산시성(山西省)), 허뤄(河洛: 뤼양 중심의 황허와 뤼허가 만나는 곳), 치루(齐鲁: 산둥성의 다른 이름) 등 문화산업 구역 건설을 추진하여 전(全)유역 커버, ‘뿌리와 혼’을 구현하는 황허문화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역사 문화 뿌리 찾기, 혁명 정신 전승, 치수(治水)문화 체험, 고도(古都) 신도시 레저 휴가, 생태문화 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 형태의 집중 발전을 모색한다. 문화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산둥(山东) 신구 동력 전환 종합 시험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대운하(大运河)문화산업벨트: 지역 문화 특징을 발굴하고 징진(京: 베이징과 톈진), 옌자오(燕赵: 허베이성의 다른 이름), 치루(산둥성), 중원(中原: 황허 중하류지역), 화이양(淮扬: 화이허와 양쯔강 하류 지역), 우웨이(吴越: 장수성과 저장성 일대) 등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각자 특색이 있는 문화산업 기능 단지를 육성한다. 대운하 문화산업 발전과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업 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 창산자오 일체화 발전, 숭안신구 건설, 중부 굴기 등 중대 전략과의 상호 결합을 추진하고 지역 간 연결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서북(西北)실크로드 문화산업벨트: 산시(陝西), 간수(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新疆), 네이멍구(內蒙古) 등 서북 실크로드 연선 성을 토대로 문화산업 집중 분포와 지역 협업을 촉진하고 특색 선명, 장점 상호 보완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역사 소양, 시대적 특색이 있는 문화상품 체계를 만들며 문화산업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실크로드 문화산업 핵심구역을 형성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다.

서남(西南)민족 특색 문화산업벨트: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云南), 시장(西藏), 충칭(重庆) 등 성과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남 소수민족 문화의 생활 문화, 다양화 특징을 부각시키고 역사 문화, 민족 문화, 민속 풍토 등 특색 문화 자원의 생활 문화 전시, 이용과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각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 주요 방향인 민족 특색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차마고도 문화유산 발굴, 보호와 전승을 강화하고 각자 특색이 있는 문화산업 상품과 브랜드를 육성하여 문화산업과 문화 전승 보호, 생태,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동북(东北)빙설 특색 문화산업벨트: 동북지역의 빙설 문화를 토대로 빙설 관광상품의 지역 문화 함의를 다양화하고 빙설 스포츠, 민속 공연, 빙설 게스트하우스 등 빙설 관광과의 상호 융합을 추진하고 빙설 예술 창작, 전시, 공연을 촉진하고 빙설 문화 콘텐츠, 빙설 풍광, 빙설 조각, 빙설 민속 등 체험 활동을 진행하여 빙설 문화자원에 대한 유기적 통합을 실현하고 빙설 문화 산업사슬을 완성한다.

해협서안(海峡西岸: 타이완해협 서쪽 해안) 특색 문화산업벨트: 민난(闽南: 푸젠성 남쪽)문화, 커자(客家)문화, 혁명 문화, 마조(媽祖)문화, 해운 문화, 주자(朱子)문화 등 특색 문화를 중점 보호 및 이용하면서 지역 특색이 선명하고, 해협 서안 모습을 보여주고,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는 문화 브랜드를 만든다. 아이디어 설계, 공예 미술, 공연 오락 등 중점 업종을 중심으로 양안(타이완과 대륙)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한다.

문화산업의 농촌진흥계획 지원: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문화산업기관과 종사자가 농촌으로 이동하여 연결 지원과 투자 창업을 유도하고 중점 산업 프로젝트를 매개체로 농촌 진흥 문화 소양을 높이고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촉진한다.

제5장 문화산업 융합 발전 추진

문화를 통한 관광 만들기, 관광을 통한 문화 알리기를 고수하고 산업사슬 각 부분의 연결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문화로 관광의 내용과 질을 높이고 관광으로 문화 전파와 소비를 촉진하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양방향 융합, 상호 촉진을 실현한다. 문화산업과 국민경제 관련 분야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 공간을 한층 더 확대하고 문화로 경제사회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한다.

제1절 문화와 관광의 융합 중점 형태 발전

관광 공연, 문화유산 관광, 수학 여행, 테마공원, 테마 호텔, 특색 민박 등 업종의 품질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융합 신업종을 끊임없이 육성한다. 관광 공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질적 향상과 이익 증대를 추진하고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는 중소형, 테마형, 특색형, 맞춤형 관광 공연 상품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관광 공연 집합단지를 합리적으로 기획 조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문화유산 자원 가치에 대한 발굴을 강화하고 문물, 무형문화재 자원을 토대로 문화 유산 관광, 수학 여행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단체문화체험, 과학기술 혁신, 지식 보급, 오락 레저, 자녀 동반 참여를 아우르는 신형 수학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 중국 문화 특색이 짙고, 중국 문화 요소를 구현하고, 기술 함량이 높은 테마공원을 규범화하여 발전시킨다. 디지털 경제 구도 하의 문화와 관광 융합을 추진하고 디지털 문화기업과 인터넷 관광업체의 연결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관광분야로의 확장을 촉진하고 관광에 대한 문화의 콘텐츠 지원과 아이디어 업그레이드 역할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시,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디지털화, 몰입형, 인터랙티브형 등 문화와 관광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을 확대한다.

제2절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 매개체 구축

문화와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 우위가 선명하고, 산업사슬이 심층 융합되어 상호 촉진하는 국가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융합발전 시범단지를 많이 조성하여 상하부라인 산업사슬을 연결하고 공급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 문화와 관광 자원의 발굴 이용을 통합 기획하고 더 많은 문화 자원 요소가 관광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며 문화 소양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단지와 휴양지를 건설하고 문화 특색이 선명한 국가급 관광 휴양 도시와 시가지를 만들고 홍색관광과 농촌 관광을 발전시켜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문화의 아름다움, 마음이 힐링되는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다원화된 문화 요소와 특색 문화 체험이 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오락 등 과정에 융합되도록 추진하여 관광을 위해 더 우수하고 더 매력이 넘치는 문화 콘텐츠를 주입한다. 각 지역이 현지 사정에 맞는 지방 특색이 선명하고, 문화 깊이가 두드러지고, 관광객 참여도가 높은 문화 축제 행사를 육성하도록 장려한다.

제3절 문화산업과 기타 관련 분야의 융합을 추진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의 융합을 상호 촉진하는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대중의 문화 권익 보장과 다양한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한다. 문화산업 발전

이 생태문명 건설 전체적인 국면에 스며들도록 추진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의 형성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 가꾸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문화 동력을 제공한다. 문화와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농산품 아이디어 설계 수준을 높이고 농경 문화, 농업 문화 유산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문화 콘텐츠 함량이 높은 농사 체험, 전원(田园) 관광, 베란다 영농 등 특색 농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생필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전자제품, 의상과 장신구, 스포츠 용품 등 소비재의 문화 함의와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공급을 추가하고 소비 업그레이드를 유도한다. 브랜드 라이선스 발전을 장려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 가치를 높인다. 문화와 상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예술 공연, 열람 공유, 관람 체험 등 소비형태의 문화 상업 종합체를 만들도록 장려한다. 도농 규칙과 건축물 디자인의 문화 함량을 높이고 더 많은 미술 요소, 예술 요소를 도농 규칙 건설에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심미 운치, 문화 품격을 높이고 고퀄리티 생활 수요를 서비스한다. 각 지역이 자연 인문 자원을 토대로 특색이 있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 등 업종의 발전을 지원한다. 문화산업과 건강 양노 산업의 결합을 추진하고 중의약 문화 계보를 잇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칼럼 5 문화산업의 융합 발전
관광 공연 질적 향상 및 업그레이드 계획: 관광 공연 프로그램과 브랜드 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관광 공연 명품 목록과 브랜드 순위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30개 정도의 명품 관광 공연 프로그램을 육성 및 확대하고 관광 공연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관광 공연의 질적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 시범단지 건설: 30개 정도의 국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발전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산업 발전 정책환경을 보완하고 산업자원 요소 배치를 최적화하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 관광산업과 관련된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세계적 관광단지와 휴양지 건설: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5A 관광단지와 세계 유산 관광지, 국가급 관광휴양지를 토대로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들고 세계 수준의 관광 휴양지 건설 비축 명단을 만들어 여건이 되는 지역의 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국가급 관광 휴양 도시와 시가지 건설: 도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도시 문화 특색을 부각시키고 국가급 관광 휴양 도시와 시가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행자와 현지 주민의 수요를 모두 고려한 국가급 관광 휴양 도시와 시가지를 선보인다.

제6장 문화시장 주체 발전 활력 유도

기업의 문화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주체적 위상을 부각시키고 분류 지도를 강화하고 협업 혁신을 촉진하고 문화기업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여 시장 주체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전체 실력 한층 더 강화, 질적 발전의 끊임없는 향상을 추진한다.

제1절 각종 문화시장 주체의 발전

주력 문화기업을 육성하고 대형 문화기업이 자원 통합,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방식을 통해 최적화 발전을 하도록 장려하여 핵심 경쟁력과 국제 영향력을 갖춘 문화산업그룹을 많이 형성한다. 중소 및 영세 문화기업이 ‘전문화, 특색화, 혁신형’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개성화, 다양성, 고퀄리티 문화상품과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형성한다. 문화분야의 창업과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각종 시장주체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적극성을 유발한다. 국유 문화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 문화기업이 현대 기업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추진하고 법인 관리구조

를 보완하고 국유 문화자원의 투입 사용 효율을 한층 더 높인다. 민영 문화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법에 의거하여 민영 문화기업 및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신형 문화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전통문화 형태의 기업이 디지털화 발전 능력을 향상하도록 추진한다. 문화기업의 브랜드 의식 강화, 브랜드 구축 강화를 유도하고 대표성, 영향력, 호감도가 있는 문화기업 브랜드를 많이 만든다. 대형 문화기업이 자원 공유, 협업 생산, 플랫폼 개방 등 방식을 통해 혁신 사슬, 산업사슬 상하부라인의 중소 및 영세 문화기업의 협업 발전을 견인하도록 장려한다.

제2절 문화기업 서비스체계 구축 및 완비

각급 정부부처 문화기업 공공서비스 정보자원의 협업 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정교화, 전문화, 편리화 수준을 높인다. 문화분야의 인큐베이터, 가속기, 창업 공간, 공유 공간 등 각종 서비스 플랫폼과 매개체 최적화 및 혁신 서비스 방식을 장려하고 기업의 서비스 효과를 높인다. 프로젝트 기획, 경영 컨설팅, 마케팅 기획, 매니지먼트 대행, 법률 서비스 등 각종 시장화 문화기업 서비스 기관의 규범화와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일련의 절차가 규범화되고, 서비스 퀄리티가 좋고, 기업 만족도가 높은 사회 서비스기관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문화산업업계협회, 상회 등 사회조직의 업계 자율, 교류와 협업, 권익 보호 등 서비스 역할을 발휘하고 문화기업, 자원 요소, 루트 플랫폼, 전문가 싱크탱크 등을 집중시킨 협업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의 자원 통합을 지원하고 문화기업의 전체 생명주기 서비스 수요를 커버하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3절 문화산업단지 기지의 규범화 발전

건설 발전과 규범화 관리를 모두 고수하고 전국에서 일련의 특색이 선명하고, 주요 사업이 두드러지고, 집중도가 높고, 견인성이 강한 문화산업단지와 기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일련의 브랜드 문화산업단지와 브랜드 운영기관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과 업계를 지향하는 협업 혁신 플랫폼, 문화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를 형성한다. 정부가 기획 인도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고수하고 시장의 매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문화산업단지의 기업을 위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문화산업단지의 요소 집중 공간에서 혁신 발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설립 발전과 동적 관리 매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여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기지)를 정책 집적, 기업 집합, 산업 집중, 발전 선도의 문화산업 선행단지로 건설하도록 추진한다. 각급 문화산업 시범단지(기지)가 정확한 방향 고수,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시범선도와 커버 견인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한다. 국가 문화산업 혁신 실험단지, 국가 애니메이션산업 종합 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협업 발전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 동북지역의 문화산업단지 공동 구축 결연, 연동 발전을 장려 및 유도하고 단기간의 기업, 프로젝트, 인재, 루트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칼럼6 문화시장 주체 발전
신형 문화기업 육성 계획: 신형 문화기업 육성베이스를 만들고 단계별 육성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정책 지원, 자원 요소 연결과 공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일련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생산 유통 기업, 디지털 문화 지원 기술 연구개발 기업, 디지털 문화 장비 제조 기업, 디지털 문화 플랫폼 기업을 발전시킨다.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기지) 향상 계획: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기지) 관리 방법을 개정하여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기지)의 공급 능력 향상, 서비스 체계 정착,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선도 시범과 커버 건인 역할을 발휘한다. 국가급 문화산업 시범단지 50개 정도, 국가 문화산업 시범기지 500개 정도를 만든다.

베이징 차오양(朝阳) 국가 문화산업 혁신 실험단지 건설: 단지 내에서 문화산업 정책 이행 혁신과 정책 집적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선행 선테스트를 장려하고 지역 문화산업 혁신 발전 수준과 커버 건인 역량을 높이고 베이징 전국 문화중심 건설을 추진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문화산업의 협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한다.

제7장 문화산업 국제 협력 경쟁의 신강점 육성

국내 대순환에 입각하여 비교 우위를 발휘하고 국내 문화산업 발전과 국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내 대순환으로 글로벌 문화 자원 요소를 유입하고 국내 국제 두 시장과 두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차이나 스토리를 작용점으로 경제무역 거래와 인문 교류 협업 추진, 고수준 해외 진출과 고품질 수입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의 문화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세 하에서 문화산업이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강점을 육성한다.

제1절 문화산업 국제 협력 신구도 구축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국제 협력 3년 계획을 실시하고 실용적인 고효율의 다차원 정부 간 산업정책 조율 대화 매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전략, 계획, 매커니즘 연결을 추진한다. 문화기업의 전통 수출시장 강화, 신흥시장 확장을 유도하고 자유무역 파트너,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중국의 대외 문화 무역과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이고 주변 국가와의 문화산업 협력 규모를 확대한다. 공동 협의, 공동 구축, 공유 원칙을 고수하고 ‘일대일로’를 공동 건설하는 국가와의 정책, 자원, 플랫폼과 표준 연결을 강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시장을 확장한다. 다자간 경제관리 매커니즘을 토대로 더 많은 지역간, 국가간, 분야를 초월한 문화산업 협력 다각적 매커니즘 형성을 추진한다. 중일한 문화산업 포럼, 중국-중·동부 유럽 국가 문화 콘텐츠산업 포럼 등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매커니즘의 고효율 운영을 유지한다. 글로벌 문화분야 전담 국제기구와의 연락과 연결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리 참여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자원 조율 능력과 무역규칙 균형 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2절 대외 문화 무역 종합 경쟁력 강화

기업을 주체로, 시장을 주도 방향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문화기업을 대거 육성하고 기업이 중국 특색, 중국 스타일, 중국 기개를 보유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국제 영향력이 있는 중국 문화 브랜드를 대거 육성한다. 디지털 문화산업 국제 경쟁력 장점을 육성하고 우수한 디지털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 장비 생산기업의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각국과 일련의 문화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및 실행하고 기업인 간의 교류와 연결을 장려하고 협력과 윈윈을 촉진한다. 해외 우수한 문화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 구조와 구도를 최적화한다. 문화기업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융합되는 것을 지원하고 다국적 경영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장점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과 확대를 강화한다.

제3절 문화산업 국제 협력 지원체계 혁신

국가 대외 문화 무역 기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업의 해외 문화 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문화 무역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 전시구역’ 계획을 실행하고 문화기업의 국내외 주요 국제 문화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문화 무역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필두 기업과 각국 협력 파트너의 문화산업단지, 인큐베이터와 창업혁신센터 등의 공동 건설을 지원한다. 각국과 전문 경영인, 콘텐츠 기획 인재와 경영관리 인력 등의 교류와 상호 방문을 협력하고 다양한 루트로 해외 우수 콘텐츠 인재를 영입하여 중국에서 혁신창업을 하도록 한다. 문화산업 국제협력연맹 설립을 추진한다. 각국의 중점 산업분야 루트, 플랫폼과 동적 정보를 취합 및 발표하고 국제 문화 시장 세분화 산업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화산업 발전의 글로벌 컨설팅 매커니즘을 형성한다. 문화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를 지원한다.

칼럼7 문화산업 국제 협력
산업의 국제 협력 중점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일대일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국제 협력 중점 프로젝트 150개 이상을 선택하고 선발된 프로젝트에 대해 투융자, 홍보 설명, 인재 육성 등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대외 문화 무역 기지 조성: 국가 대외 문화 무역 기지(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하이난(海南)과 기타 조건이 되는 지역의 국가 대외 문화 무역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지지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선도한다. 국가 대외 문화 무역 기지는 10개 정도에 달한다. ‘중국 전시구역’ 계획: 문화기업이 ‘중국 전시구역’ 이미지로 국제 중점 산업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제시장 협력 루트를 확대하고 중국 문화 브랜드의 국제 인지도를 높인다. 기업이 온라인 전람회, 전시회와 교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개최한다. 산업 국제협력연맹: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국제협력연맹 설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유명 문화와 관광 기업을 연락하여 연도 총회, 포럼 등 활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국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문화관광 국제 시장 정보 서비스 매커니즘: 국제 문화관광 시장 보고, 중국 대외 문화 무역 연도 보고를 발표하고 해외 시장 동적 정보를 취합 및 편집하여 문화관광 기업이 즉시 표적 시장 현황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준다. 디지털 문화산업 표준 국제화: 산학연 연동 작용을 발휘하고 디지털 문화산업 표준그룹 구축을 심층 추진하면서 중국의 문화 표준 국제화 진전에 박차를 가한다.

제8장 문화와 금융 협력 심화

문화와 금융 협력의 끊임없는 심화를 추진하고 금융 자본, 사회 자본과 문화 자원의 상호 결합을 장려 및 유도하고 다차원, 다루트, 다원화의 문화산업 투융자체계를 정착시켜 문화기업의 금융 서비스 커버리지 범위, 가용성과 편리성을 확실히 높인다.

제1절 지원정책체계 보완

문화와 금융 협력을 심화하는 정책 조치를 제정 및 보완한다. 금융기관이 문화산업 발전 수요에 부응하는 개성화, 차별화,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전제 하에 금융리스 대출, 미수금 융자, 산업사슬 융자, 주식담보 대출 등 혁신적인 대출 상품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문화기업 신용평가체계, 융자 리스크 보상 매커니즘과 융자 담보체계 정착을 추진한다. 문화기업의 무형자산 평가, 권리 확립, 등기, 위탁 관리, 유통 등 서비

스체계 보완을 추진하고 무형자산 평가, 유통과 담보 용자를 장려하고 문화기업의 신용 대출 담보물 범위와 리스크 감소 루트를 확장한다. 문화기업의 직접 용자를 지원 및 유도하고 주식 용자와 채권 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조건이 부합하는 문화기업의 증시 상장 용자, 재용자와 인수합병 구조조정을 장려한다. 보험기관이 문화업계와 기업 특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타깃성이 강하고, 혁신성이 강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제2절 서비스 매커니즘 혁신 추진

정부-은행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한층 더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협력 매커니즘을 정착하고 협력 방식을 혁신하여 정부-기업-은행의 소통 연결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한다. 조건이 되는 은행업 금융기관이 문화 금융 전담 서비스팀, 전문 경영기관과 특색 지점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국가 문화와 금융 협력 시범단지의 질적 향상과 내용 확대를 추진하고 금융정책의 문화 분야에서의 이행 루트를 모색하고 문화금융제도와 도구 혁신을 진행한다. 문화금융 중개기관의 규범화 발전을 유도 및 장려하고 문화 금융 중개 서비스체계의 구축과 보완을 추진한다. 문화와 관광 금융서비스센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원 연결 통합 효율을 높이고 전문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멀화, 브랜드화의 투융자 매칭 교류 활동을 장려하고 다루트,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의 문화산업 투융자 안내 및 홍보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전국적인 문화와 관광 투융자 프로젝트 베이스의 구축을 추진하고 문화산업 프로젝트 공모와 비촉 발포 매커니즘을 보완한다.

제3절 유효 투자 확대 유도

투자의 공급 구조 최적화에 대한 핵심 역할을 발휘하고 문화 콘텐츠 생산, 디지털 문화산업, 문화와 관광 융합, 문화산업단지 기지, 문화 소비 장소 시설, 문화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 중점 분야와 핵심 과정을 중심으로 투자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투자 효율을 높이고 투자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한다. 정부의 투자 유도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자본 투자의 분야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 주도의 투자 내생 성장 매커니즘을 형성한다. 중앙 및 지방 각급 예산 내의 투자, 특별 건설기금, 지방 정부 전용 채권, 정부 유도 펀드 등 투자 도구를 잘 활용하고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PPP)모델을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홍보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 펀드 구성을 추진한다. 정책성, 개발성 금융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문화산업 인프라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 시행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칼럼 8 문화와 금융의 협력

문화와 관광 투융자 프로젝트베이스 구축: 프로젝트 계획과 비촉을 잘 하고 프로젝트 공모, 선발, 발포 매커니즘을 정착하고 프로젝트 품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실시, 비촉, 계획’이라는 계단식 구도를 형성하고 중점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1000개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리스크 보상 매커니즘과 융자담보체계 구축: ‘정부 유도, 시장 운영, 리스크 분담’ 원칙에 따라 융자 리스크 보상 캐시 풀링 구축을 추진한다. 문화기업 융자담보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성 융자담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업성 금융기관의 지원 강도 확대를 가동한다.

국가 문화와 금융 협력 시범단지 건설: 국가 문화와 금융 협력 시범단지의 질적 향상과 내용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선행 선테스트를 장려하고 경험과 성과를 홍보하고 시범 효과를 발휘한다. 국가 문화와 금융 협력 시범단지는 10개 정도 된다.

문화와 관광 금융 서비스센터 건설: 조건이 되는 지역이 골간 문화와 관광 기업, 금융기관을 토대로 문화와 관광 금융서비스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자금 지원, 신용 강화, 정보 서비스, 업무 교육 등 방식을 통해 중소 및 영세 문화와 관광 기업을 위해 투융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와 관광 금융서비스센터는 20개 정도 된다.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PPP):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PPP) 모델 사용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프로젝트 전체 생명주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 구축을 추진한다. 문화와 관광 PPP 투자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제9장 보장 대책

문화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거시적 유도와 서비스 강화를 도구로, 질적 발전을 주도 방향으로 경제정책, 법치 보장, 인력 양성, 시장질서 등 분야부터 시작하여 문화산업 발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1절 경제정책 이행

문화산업의 질적 발전 수요와 결부시켜 문화경제정책체계의 이행과 보완을 추진하고 재정, 세금, 금융, 투자, 토지 등 분야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유도 격려와 책임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한다. 각종 재정 자금, 펀드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투입방식을 최적화하고 자금 사용 효익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국가의 문화산업 발전 지원 관련 세금 감면 정책,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기업의 경영 부담을 확실히 줄인다. 금융이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개선하여 추진한다. 각종 문화산업 투자펀드 발전을 지원하고 각종 산업의 투자펀드, 창업투자 유도 펀드를 문화산업에 투입하도록 장려한다. 문화산업 용지를 국토 공간 계획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국가 토지정책 허용 범위 내에서 문화산업 용지 공급과 이용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인 문화산업 용지 보장제도를 세워 문화산업 시설, 사업 용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낡은 공장 건물, 낡은 창고 등 유희시설과 재고 건설 용지를 이용한 문화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5년 내에 원래 용도와 토지 권리 유형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유예기 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2절 법치 보장 강화

입법 선행을 고수하고 문화산업촉진법 입법 업무 진전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문화산업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등의 확립, 개정, 폐지 업무를 추진하고 법에 의한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효익과 경제 효익의 유기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 규정을 구축한다. 중대 의사결정의 합법성 심사, 공평 경쟁 심사, 리스크 평가 등 업무제도를 정착한다. 인터넷 문화관리 및 문화 산업종 법규제도 설립을 모색하도록 강화한다.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관리조례>, <문화시장 종합 행정 법 집행 사항 지도 목록> 출범을 추진하고 종합 법 집행 제도 매커니즘을 정착한다. 문화산업 발전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 문화산업 안전 감독관리 매커니즘을 정착하고 이데올로기, 문화안전과 사회안전 커트라인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를 보완 및 이행한다.

제3절 인력 양성 강화

문화산업 질적 발전을 방향으로, 그리고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기획, 아이디어 설계, 경영 관리, 투자 운영, 문화 금융, 국제 협력 등을 중점 분야로 인력 양성 업무를 진행한다. 고퀄리티 산업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심층 실시하고 문화산업단지(기지)와 업계 내 선도 기업을 중점 대상으로 양성체계, 강사진 역량체계, 협업 매커니즘과 자원 플랫폼 구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각 분야의 사회 역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동원한다. 문화산업 관련 학과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실천형, 응용형, 복합형 기술기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대학교, 문화기업, 단지와 기지, 메이커 스페이스, 인큐베이터 등 역할을 발휘하여 산학연용(产学研用)이 합작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전문 경영인 양성을 강화한다. 문화산업 분야의 싱크탱크 구축을 강화하고 큰 영향력이 있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문화산업 연구기관을 대거 육성하고 이론 혁신, 지력 지원과 산업 실천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제4절 시장질서 규범화

신용 기반의 문화시장 신형 감독관리 매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 상실 징계를 진행하고 ‘인터넷+감독관리’를 추진한다. 평안 문화시장 건설을 진행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 내용 심사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온오프라인 콘텐츠 심사 및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개혁 임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감독이 유효하고, 보장이 되는 종합 법 집행 체제를 보완하고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팀 건설을 추진하고 두드러진 문제점을 즉시 수사하여 해결하고 문화시장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한다. 전국 문화시장 기술 감독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고 법 집행 정보화 수준을 높인다.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운영 매커니즘을 한층 더 보완하는데 관한 통지>를 실시하고 공동 사건 처리와 법 집행 협업 매커니즘을 보완 정착하고 지역의 법 집행 협업을 강화한다. 정부 직능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간정부권(简政放权)¹⁶²⁾, 방관결합(放管结合)¹⁶³⁾,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심사 승인 방식을 한층 더 보완하고 사중(事中) 사후(事后)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업종, 신상품, 신모델에 적합한 감독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문화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확대한다. 문화산업 분야의 독점 행위, 부당한 경쟁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제지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제5절 구성 및 실시 강화

각급 문화 관광 행정부처는 ‘14.5’ 시기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문화산업 발전을 중요한 위치에 놓은 것을 적극 추진하고 당위원회와 정부의 리더 하에 지역의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발전 법칙을 파악하고 지방 특색을 부각시키고 <‘14.5’ 문화산업 발전 계획>의 구성 실시를 강화하고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임무 조치가 실제 상황에 맞게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홍보, 발전 개혁, 재정, 기술, 자연자원, 금융, 세무 등 부처와의 소통을 능동적으로 강화하고 각 분야와 통합 계획, 조율하는 문화산업 발전 업무 매커니즘과 구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통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문화산업 데이터 공유 매커니즘 구축을 추진하여 문화산업 발전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통계 데이터의 업무 의사결정, 정책 제정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162) 간정부권(简政放权):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을 하급기관으로 이양

163) 방관결합(放管结合): 권리 이양과 감독관리 상호 결합

51. 오락시설 및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허가 관련 조정 통지

제목	关于调整娱乐场所和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审批有关事项的通知
게재일	2021-05-27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종합

오락시설 및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허가 관련 사항 조정 통지

문여시장發[2021] 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허가증 분리’ 개혁 요구에 따라 오락시설 및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허가에 관한 사항을 이하같이 통지한다.

1) 외국인 투자자가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오락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무원의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2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오락시설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락시설 영업을 신청할때에는 성급 문화와 관광행정 부서에 신청서류와 설립조건과 절차가 내자기업과 동일하도록 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자는 중국대만의 투자자가 대륙에 오락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참조하였다.

2) 유치원 주변에는 오락시설, 인터넷서비스 업소(pc방)를 설립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58조 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주변에는 유흥업소,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설치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업무위원회의 미성년자보호법 58조 유치원 주변에는 오락장소 설치불가의 이해와 적용 문제에 관한 답변 의견>에 따르면 유치원과 오락장소, 인터넷 서비스사업장(pc방)의 거리 및 측정방법은 성급문화와 관광행정부서가 공동으로 실제적인 규정을 만든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시행 전에 이미 어린이집 주변의 유흥업소,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설립된 경우는 허가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연장 또는 변경할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며, 유치원 주변에 오락시설,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는 법적요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관련부서의 행정심사비준 개혁과 협조를 잘 이행하도록 한다. 성급문화와 관광행정부서는 응급관리, 생태환경, 공안 등 부서와 협의하고, 행정심사비준사항, 취소, 조정의 업무를 잘 처리하며, 신청인 보증제 등 방식을 모색, 비준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4) 국무원의 ‘허가증 분리’ 개혁을 실현하여 각 지역은 국무원 허가증 분리 개혁 정신에 근거하여 전국의 문화시장 기술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오락시설, 인터넷서비스 영업장 설립 심사사항을 처리하고 심사기한을 단축하며 심사비준의 효율을 높여 심사서비스를 최적화하도록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관광부
2021년 5월 27일

52.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제목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제재일	2021-06-10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분류	종합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2021년 6월 10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 제1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하고 그의 안전을 감독 관리하는데 본 법을 적용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보, 공공 이익 혹은 공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 제3조 본 법에서 지칭하는 데이터란 모든 전자 혹은 기타 방식의 정보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을 포함한다.
- 데이터 안전이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데이터가 효과적인 보호와 합법적 이용 상태에 처하는 것을 보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 상태 보장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데이터 안전을 유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고수하고 데이터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안전 보장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제5조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가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의 결정과 의사 조율을 책임지고 국가 데이터 안전 전략과 유관 중대 방침 정책을 연구 제정 및 지도 실시하고 국가 데이터 안전의 중대 사항과 주요 업무를 통합 조율하고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 제6조 각 지역, 각 부처는 해당 지역, 해당 부처 업무 중 수집하고 발생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안전에 대해 책임진다.
- 공업, 전자통신, 교통, 금융, 자연자원, 위생건강, 교육, 과학기술 등 주무부처는 해당 업계, 해당 분야 데이터 안전의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한다.
-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은 본 법과 유관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관리의 직책을 맡는다.
- 국가망신(网信: 네트워크 정보)부처는 본 법과 유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과 관련 감독관리 업무의 통합 조율을 책임진다.
- 제7조 국가는 개인, 조직과 데이터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의거한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유효한 이용을 장려하고 법에 의거한 데이터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유동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 제8조 데이터 처리 활동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公德과 윤리를 존중하고 상업 도덕과 직

업 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안보,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되고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서도 아니 된다.

제9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지식 홍보 및 보급을 지원하고 전사회적 데이터 안전 보호 의식과 수준을 높이고 유관 부처, 업계 조직, 과학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데이터 안전 보호 업무에 공동 참여하도록 추진하여 전사회적 데이터 안전 공동 수호와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을 형성한다.

제10조 관련 업계 조직은 정관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데이터 안전 행위 규정과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의 데이터 안전 보호 강화를 지도하고 데이터 안전 보호 수준을 높이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11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관리, 데이터 개발 이용 등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데이터 안전 관련 국제 규칙과 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데이터의 국가간 안전, 자유 유동을 촉진한다.

제12조 모든 개인, 조직은 모두 본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유관 부처에 신고, 고발할 권한이 있다. 신고, 고발을 접수한 부처는 즉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유관 주무부처는 신고, 고발자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 고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장 데이터 안전과 발전

제13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통합 계획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과 산업 발전으로 데이터 안전 추진을 고수하고 데이터 안전으로 데이터 개발 이용과 산업 발전을 보장한다.

제14조 국가는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각 업계, 각 분야가 데이터를 혁신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수요에 따라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제15조 국가는 데이터를 개발 이용한 공공 서비스의 지능화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지능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노년층,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노년층, 장애인의 일상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이용과 데이터 안전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과 데이터 안전 등 분야의 기술 보급과 비즈니스 혁신을 장려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과 데이터 안전 제품, 산업체계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제17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과 데이터 안전 표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무부처와 국무원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관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 제품과 데이터 안전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개정한다.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와 교육, 연구기관 등의 표준 제정 참여를 지원한다.

제18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검사 평가, 인증 등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데이터 안전 검사 평가, 인증 등 전문기관의 법에 의거한 서비스 활동 진행을 지원한다.

국가는 유관 부처, 업계조직, 기업, 교육과 연구기관, 유관 전문 기관 등 빅데이터 안전 리스크 평가, 대응, 처리 등 분야의 협업을 지원한다.

제19조 국가는 데이터 거래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 데이터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거래

시장을 육성한다.

제20조 국가는 교육, 연기기관과 기업 등의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과 데이터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과 데이터 안전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인재 교류를 촉진한다.

제3장 데이터 안전제도

제21조 국가는 데이터의 종류별, 등급별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데이터의 경제사회 발전 중에서의 중요도, 그리고 데이터가 일단 왜곡, 파괴, 유출되거나 혹은 불법 취득, 불법 이용되어 국가안보, 공공이익 또는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대해 초래한 위해 정도에 따라 데이터를 종류별, 등급별로 보호한다.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조율 매커니즘은 유관 부처의 중요한 데이터 목록 제정을 통합 계획하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안보, 국민 경제 명맥, 중요한 민생, 중대한 공공이익 등 관련 데이터는 국가의 핵심 데이터에 속하고 더욱 엄격한 관리제도를 실행한다.

각 지역, 각 부처는 데이터의 종류별, 등급별 보호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해당 부처 및 관련 업계, 분야의 중요한 데이터의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국가는 집중 통일, 고효율, 권위 있는 데이터 안전 리스크 평가, 보고, 정보 공유, 모니터링 조기 경보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국가 데이터 안전 업무 조율 매커니즘은 유관 부처의 데이터 안전 리스크 정보의 취득, 분석, 연구 판단, 조기 경보 업무를 통합 조율한다.

제23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비상 대응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데이터 안전 사건이 발생하면 유관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비상 대책을 가동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위험 확대를 방지하고 안전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하고 즉시 사회에 대중과 관련된 경고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데이터 안전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해 국가 안전 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안전 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25조 국가는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국제 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제 물품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제26조 그 어떤 국가 혹은 지역이 데이터와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 등과 관련된 투자, 무역 등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성 금지, 규제 혹은 기타 유사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

제27조 데이터 처리 활동은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전과정 데이터 안전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데이터 안전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해당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데이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하고 사이버 안보 등급 보호 제도를 토대로 상기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요한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안전 책임자와 관리기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안전 보

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28조 데이터 처리 활동 진행 및 데이터 신기술 연구 개발은 경제사회 발전 촉진에 유리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공덕과 윤리에 부합해야 한다.

제29조 데이터 처리 활동 진행은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데이터 안전 결함, 취약점 등 리스크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데이터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즉시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중요한 데이터 처리자는 규정에 따라 해당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유관 주무부처에 리스크 평가 보고를 발송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 보고는 처리한 중요한 데이터의 종류, 수량, 그리고 데이터 처리 활동 진행 상황, 직면한 데이터 안전 리스크 및 그의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31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발생한 중요한 데이터의 반출 안전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발생한 중요한 데이터의 반출 안전 관리 방법은 국가망신(网信: 네트워크 정보)부처가 국무원 유관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32조 모든 조직, 개인의 데이터 수집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을 취해야 하고 도용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목적, 범위에 대한 유관 규정이 있을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 사용해야 한다.

제33조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데이터 제공업체에게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거래 쌍방의 신분을 심사 확인하고 해당 심사 확인,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34조 법률, 행정 법규에 데이터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公安기관, 국가 안전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 수호 혹은 범죄 수사 수요로 인해 데이터를 추출해야 할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승인 수속을 거쳐야 하고 법에 따라 진행하고 유관 조직, 개인은 협조를 해야 한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기관은 유관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약정에 따라 혹은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외국의 사법 혹은 법 집행 기관의 데이터 제공 관련 요청을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중국 경내의 조직, 개인은 외국 사법 혹은 법 집행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저장한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부 데이터 안전과 개방

제37조 국가는 전자정부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데이터의 과학성, 정확성, 시효성을 높이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제 사회 발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제38조 국가 기관은 법정 직책 이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사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법정 직책 이행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직책 이행 중 확보한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상업 비밀, 비밀 유지가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 등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타인에게 유출 혹은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국가 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데이터 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 및 정착시키고 데이터 안전 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40조 국가 기관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고 정부 데이터를 저장 및 가공하며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탁자의 해당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수탁자는 법률, 법규 규정과 계약 약정에 따라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자체 보관, 사용, 유출 혹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국가 기관은 공정, 공평, 대중을 위한 편의 원칙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즉시, 정확하게 정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법에 의거한 공개 불가는 제외한다.

제42조 국가는 정부 데이터 오픈 목록을 제정하고 통합 및 규범화, 상호 연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정부 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데이터의 오픈 이용을 추진한다.

제43조 법률, 법규가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갖춘 조직의 법정 직책 이행을 위한 데이터 처리 활동은 본 법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4조 유관 주무부처는 데이터 안전 감독관리 직책 이행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에 큰 안전 리스크가 있다고 발견했을 경우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유관 조직, 개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유관 조직, 개인에게 대책을 세워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제45조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하는 조직, 개인이 본 법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규정한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관 주무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명령을 거부하고 시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량의 데이터 유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혹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말소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핵심 데이터 관리제도를 위반하여 국가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에 해를 끼쳤을 경우 유관 주무부처가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혹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말소라는 명령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본 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유관 주무부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혹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말소라는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이 본 법 제33조의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관 주무부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거나 혹은 불법 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일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혹은 영업집조 말소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8조 본 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하고 데이터 추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유관 주무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제36조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외국 사법 혹은 법 집행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유관 주무부처에서 경고를 주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 중단 및 정돈,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혹은 영업집조 말소라는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 기관이 본 법 규정의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징계를 내린다.

제50조 데이터 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이 직무태만, 직권 남용,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징계를 내린다.

제51조 도용 혹은 기타 불법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면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거나 혹은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 유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53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비밀 유지 국가 비밀법>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통계, 기록원 업무 중 진행되는 데이터 처리 활동, 개인 정보 관련 데이터 처리 활동은 유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54조 군사 데이터 안전 보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55조 본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3. 팬덤 무질서 현상 정비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목	“清朗·‘饭圈’乱象整治”专项行动
게재일	2021-06-15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종합정책

팬덤 무질서 현상 정비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한동안 ‘팬덤’ 팬들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 헐뜯고 욕하거나 연예인 순위차트를 위해 투표를 조공, 조작, 공격하는 행위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온라인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심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대중들의 반감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발표일로부터 전국적으로 2개월 간의 ‘깨끗한 팬덤을 위한 무질서 현상 정비 개선’ 특별행동을 전개했다.

이번 특별행동은 온라인의 ‘팬덤’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연예인 순위차트, 이슈성 화제, 팬클럽, 상호 비판 등 주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팬덤’에서 나타나는 상호 폄훼, 싸움 유도,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고 대립하는 행위, 모욕과 비방, 조작 공격, 악의적 마케팅 등 각종 유해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없애고자 한다. 이하 5가지 ‘팬덤’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첫째, 미성년자로부터 돈을 모으고 조공하는 행위, 고액의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 투표를 유도해 순위 상승을 꾀하는 행위

둘째, ‘팬덤’ 팬들 간에 서로 헐뜯고 욕하는 행위, 서로 깎아내리며 싸움을 유도하는 행위, 고의로 조작하여 공격하는 행위, 개인신상털기, 개인정보 침해 등 행위

셋째, ‘팬덤’ 팬들이 서로 부를 뽑내며 비교하는 행위, 사치 향락 행위 등

넷째, 팬들에게 호소하거나 댓글 알바 고용, 자의적으로 팔로워를 늘려 뷰어수를 높이거나 댓글을 통제하는 행위

다섯째, 이슈를 고의적으로 이용하고 화제를 만드는 등 여론을 형성해 방송 전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단속 기간 동안 자금 모집 유도, 유언비어 공격, 개인정보 침해 등 악의적 의도가 있는 계정, 단체채팅방을 폐쇄 및 해산하고, 팬덤의 직업적 악플러, 악의적 마케팅, 인터넷 댓글알바 등 위법·규정 위반 계정을 처리하며, 무질서 행위를 중용하거나 여러 차례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인터넷 플랫폼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중앙인터넷정보 판공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 조치는 문제에 집중하여 종합 시책과 분류별 관리를 강화하고 사이트 플랫폼의 주체 책임 이행을 독촉할 것이며, 소셜 규칙과 사용자와의 약정을 개선하고 팬덤 각 참여주체의 온라인 상의 행위 규범에 힘을 쏟을 것이다. ‘팬덤’ 팬의 활성화 상품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 팬클럽의 규범적 관리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이성적인 연예인 우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힘을 더하며, 규범화된 팬덤 관리의 장기적 효율적 업무 체제를 모색하여 마련함으로써 ‘팬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문명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정신 문화를 함께 조성해 나갈 것이다.

54.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

제목	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修订征求意见稿）
제재일	2021-07-12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종합정책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의견수렴서)

제1조 [입법 목적] 법에 의거하여 가격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정상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약칭 ‘가격법’) 유관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법 집행 주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감독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가격행위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하고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결정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정부 직능 대행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의 행정 사업 비용 수취 행위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관할] 가격 위법행위의 행정 처벌은 가격 위법행위 발생지 현급 인민정부 가격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한다. 국가 가격감독관리기관은 그의 상급 가격감독관리기관에서 결정할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저가 덤핑]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 상대를 배척하거나 혹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면서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여 국가이익 혹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 중단 및 정돈을 명령하거나 혹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를 말소한다.

법에 의거하여 신선 상품, 계절성 상품, 재고 상품 등 상품을 저가로 처리할 경우 가격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원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덤핑하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5조 [가격차별]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등 거래 조건을 갖춘 기타 경영자에 대해 가격차별을 실행할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도록 명령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6조 [가격 담합]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호 담합하면서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상기 규정 상황 외에 경영자가 상호 담합하고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기타 경영자 혹은 소

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 본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7조 [가격 올리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공급 부족, 가격 이상 변동 발생 기간에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시장 가격질서를 교란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 혹은 사재기한 상품 가치의 1% 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 (1)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 유포하여 시장 가격질서를 교란한 경우
- (2) 생산하여 자체 사용하는 것 외에 정상적인 재고 수량 혹은 재고 주기를 벗어나 상품을 대량으로 매점하여 판매를 하지 않거나 소량 판매하여 가격감독관리기관에서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상품을 계속 사서 쟁여 놓을 경우
- (3) 강제적 끼워 팔기, 고액 수취 혹은 기타 비용 대폭 상향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지나치게 빨리 높게 올려 놓은 경우
- (4) 기타 수단으로 가격 올리기를 하여 상품 가격을 지나치게 빨리 높게 올려 놓은 경우
상기 규정 이외의 기타 기관이 허위 가격 인상 정보를 유포하고 시장 가격질서를 교란하여 법에 의거하여 기타 주관 기관이 조사해야 할 경우 가격감독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한 처벌 건의를 제시할 수 있고 유관 주관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제8조 [가격 사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혹은 사람들이 오해할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를 속이고 그와 거래를 할 경우 가격 사기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 발생기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9조 [등급과 가격 올리기, 등급과 가격 내리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하고 등급 올리기 혹은 등급 내리기 등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 구입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주고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또는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10조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 불집행] 경영자가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를 집행하지 않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한다.

- (1) 정부 지도가격 변동 폭을 벗어나 가격을 제정하는 행위
- (2) 정부 정가보다 높거나 낮게 가격을 제정하는 행위
- (3)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 범위 내에 속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행위
- (4)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에 속하는 가격 계산 규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행위
- (5)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를 실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 조정 가격을 실행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

- (6)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 집행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행위
- (7) 비용 수취 항목을 스스로 만들거나 혹은 표준 비용 수취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행위
- (8) 비용 수취 항목 분리, 비용 수취 중복, 비용 수취 항목 확대 등 방식으로 비용 수취 표준을 변칙적으로 높이는 행위
- (9) 정부가 명확하게 명령한 비용 수취 취소 혹은 금지 항목에 대해 계속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 (10)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 담보금 등 형식으로 비용을 변칙 수취하는 행위
- (11) 강제 혹은 변칙 강제로 서비스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 (12)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 행위
- (13)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를 집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11조 [가격 간섭 조치, 긴급 조치 불집행] 경영자가 법정 가격 간섭 조치, 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않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비교적 심각할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 (1) 가격 올리기 신고 혹은 가격 조정 등록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
- (2) 규정한 가격 차이율, 수익률 폭을 벗어난 행위
- (3) 규정한 가격 제한, 최저 보호 가격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
- (4) 가격 집중 결정 권한 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
- (5) 가격 동결 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
- (6) 법정 가격 간섭 조치, 긴급 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12조 [폭리 도모] 경영자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도모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시장에 공급 부족, 가격 이상 변동 혹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가격감독관리기관은 폭리 도모 인정 표준과 실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신업종의 가격 위반행위] 가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를 주고 1년 매출액의 1%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등 기술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의 성향, 거래 습관 등 특징에 따라 원가 혹은 정당한 마케팅 전략 외의 요소를 토대로 동일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거래조건에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 (2) 경쟁 상대 혹은 시장 독점을 배척하기 위하여 아직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지원금 등 형식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면서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이익 혹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 (3) 행정 법규, 부처 규정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쟁자의 기타 부당한 가격 행위

제14조 [정찰가격] 경영자가 가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의 알권리에 실제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즉시 시정했을 경우 경고를 주거나 혹은 징계를 내리고 처벌은 하지 않는다.

- (1)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2) 규정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 (3) 표시한 가격 외에 가격을 더 붙여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표기하지 않은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 (4) 정찰가격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5조 [업계협회의 상회, 중개기관의 가격 위법행위] 업계 조직, 중개기관이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가격감독관리기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불법소득을 환불하라고 명령하고 환불 불가능한 부분은 몰수하며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를 주고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위가 비교적 심각할 경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정돈하라고 명령하거나 또는 영업집조를 말소하거나 등록관리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한다.

- (1) 경영자가 조직적으로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가격을 조종하는 경우
- (2)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 유포하고 가격을 부풀려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게 하는 경우
- (3) 행정 권력, 행정 영향력과 업계 특수 위상을 이용하여 서비스 비용 수취를 강행하거나 혹은 시장 주체를 압박하여 불합리한 서비스 조건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우
- (4) 법률,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시장주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장주체에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 (5) 법률,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강제 또는 변칙적인 강제로 시장주체가 기준 도달, 표창, 교육, 평가, 시험 및 유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고 시장주체에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 (6) 정부가 금지 혹은 취소, 징수 중단, 감면한다고 명확하게 명령한 비용 수취 항목을 수취하는 경우
- (7)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서비스 조건, 절차, 시험, 비용 수취 표준을 공포하지 않는 경우
- (8) 변칙적으로 비용 수취 표준을 높이고 비용만 수취하고 서비스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적게 제공하는 경우
- (9) 기타 가격 위법 행위

금융기관, 부두 관련 경영자, 물/전기/가스/열 공급 등 공공 기업/사업기관 등 조직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국가 행정기관 비용 수취] 국가 행정기관이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정 및 기한 내 불법소득 반환 명령을 내리고 반환 불가 부분은 국고에 상납하고 가격감독관리부처는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자주 검사하지만 누차 범하고, 시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상황일 경우 문제의 단서를

감찰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해당 소재 기관 혹은 상급 행정 주무부처가 관계자를 처벌하도록 건의한다.

- (1) 행정 사업 비용 수취 목록 리스트 외에 행정 사업 비용 수취 항목을 무단 설치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 (2) 행정 사업 비용 수취 표준을 무단 제정 혹은 높이거나 또는 비용 수취 빈도 횟수 증가, 비용 수취 항목 분리, 비용 수취 중복, 비용 수취 기한 연장 등 방식으로 비용 수취 표준을 변칙적으로 높이는 경우
- (3) 행정 사업 비용 수취 대상, 과정을 무단 변경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 (4) 이미 명확하게 명령한 취소 혹은 면제한다는 수취 비용 항목에 대해 계속 비용을 수취하거나 또는 명칭 변경 등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 (5)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한 시간, 대상, 절차와 범위 등에 따라 비용 수취 우대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6) 법률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보증금, 담보금, 체납금, 예금, 자금 모집, 후원 등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 (7) 행정 사업 비용 수취를 경영 서비스 비용 수취로 전환하고 행정 사업 비용 수취와 경영 서비스 비용 수취를 묶어서 수취하거나 혹은 직권을 이용하여 경영 서비스 비용 수취를 대체하는 경우
- (8) 직권을 이용하여 비용 수취를 강행하거나 또는 유상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 (9) 행정 사업 비용 수취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국가 행정기관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기업, 개인 혹은 기타 조직이 부담하도록 전가할 경우 국가 행정기관에 시정 및 기한 내 불법소득 반환 명령을 내린다.

기타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행정 사업 비용 수취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서 비용 수취를 진행할 경우 본 조항 상위 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처벌 상한선] 가격감독관리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경영자를 처벌하고 위법행위 발생 기간 매출액 혹은 사재기 상품 가치로 계산하여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은 경영자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 [가격 감독조사] 가격감독관리기관이 가격 감독조사를 진행할 때 법 집행인원은 2명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자 혹은 관계자에게 신분 증명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영자가 가격 위법 흔적이 있다고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가격감독관리기관은 감독검사 상황에 따라 경고, 면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검사 협조 의무] 경영자, 금융기관과 기타 유관 주체는 가격 감독검사와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고 가격 감독검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증거, 문건 및 기타 자료, 재화를 제공하고 거부, 방해, 지연해서는 아니 되고 거짓 진술을 해서도 아니 된다.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 영업 일시 중단] 가격감독관리기관은 가격 감독검사를 진행할 때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동시에 아래 3가지 상황이 있을 경우 가격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그에게 관련 영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 (1) 위법행위가 경위가 복잡하거나 혹은 경위가 심각하여 조사 확인 후 중벌을 내리는 경우

- (2) 관련 영업을 일시 중단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 진행할 경우
- (3) 관련 영업을 일시 중단하지 않아 위법 사실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타 조치를 취해도 조사 규명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 [더 많이 수취한 금액의 처리] 본 규정 제4조~제16조 규정 중의 불법소득이 가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가 더 많이 지급한 금액에 속할 경우 경영자에게 기한 내 반환하라고 명령한다. 반환한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의 액수는 불법소득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영자가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가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기한 만기 때도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가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격감독관리기관이 몰수한다.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가 반환 요구를 할 경우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제22조 [불법소득 계산] 본 규정 중 불법소득으로 벌금 액수를 계산하는데 불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불법소득이 없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혹은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경영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다.

- (1)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 (2) 경영자가 주관적 잘못이 없다고 증명할 증거가 있고 가격감독관리기관이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경우
- (3)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4)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이 변별 불가능 혹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자가 처음으로 위법행위를 했고 위해 결과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할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경우] 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32조에 열거한 상황이 있거나 혹은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한 경영자가 변별 혹은 자신의 행위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일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혹은 경감할 수 있다.

제25조 [가중 처벌] 경영자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

- (1) 가격 위법행위가 심각하거나 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 (2) 누차 조사하지만 누차 범하는 경우
- (3) 증거를 위조, 수정 혹은 이전, 폐기하는 경우
- (4) 가격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금 혹은 상품을 이전하는 경우
- (5) 경영자가 거부하면서 본 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가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6)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기타 가격 위법행위

제26조 [돌발 사태 발생 후 가중 처벌]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사태 발생 후 경영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재기, 가격 올리기 등 가격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혹은 돌발사태 비상 대응책을 위반했을 경우 가격감독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빠르게 가중 처벌한다.

제27조 [위법행위 공고] 그 어떤 업체와 개인이 본 규정에 열거한 가격 위반행위가 있고 경위가

심각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가격감독관리기관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격 위법행위를 그가 시정할 때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28조 [구제 경로] 경영자가 가격감독관리기관이 내린 처벌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재심 신청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벌금 추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벌금 액수의 3%로 벌금을 추가하고 추가한 벌금의 액수가 벌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형사책임] 본 규정에 열거한 가격 위법행위가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별도 규정] 유관 법률에 가격법 제14조에 열거한 행위의 처벌 및 처벌 기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 [가격 법 집행 인원의 법률 책임] 가격 법 집행 인원이 국가 비밀, 경영자의 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혹은 직권 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제33조 [효력 발생일] 본 규정은 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55. 사이버안보 심사방법 (개정초안 의견수렴)

제목	网络安全审查办法
제재일	2021-07-10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문화정책(종합)

사이버 안보 심사방법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보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방송국, 국가기밀보호국, 국가암호관리국이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심사방법’을 제정, 공포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왕룡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허리평

공업정보화부 부장 마오위

공안부 부장 자오키즈

국가안전부 부장 천원칭

재정부 부장 리우쿤

중국인민은행 행장 이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샤오야칭

국가광파광전총국 국장 서천시

국가기밀국 국장 티엔징

국가암호관리국 국장 리야오중

제1조 정보인프라 확보를 위한 공급사슬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에 의거 동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핵심 정보인프라 사업자(이하 사업자)는 인터넷제품과 서비스를 구매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에 따라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이버 안보심사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선진기술 기술응용의 결합,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지식재산권의 결합,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감독, 기업과 사회적 감독이 결합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으로 인한 국가안보 리스크 등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제4조 중앙 사이버 안보 정보화위원회의 지도아래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기밀국, 국가암호관리국은 공동으로 국가의 사이버 안보 심사 업무체제를 구축한다.

제5조 사업자가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는 그 상품과 서비스로 인한 국가안보 리스크를 예측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이

버 안보 심사를 사이버 안보 심의 판공실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핵심 정보 인프라 보호 업무부서는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예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이버 안보 심사의 구매활동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는 구매서류, 계약서 등을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의 편의조건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용자 데이터 취득, 이용자 설비의 불법적 통제 및 조작, 정당한 이유없이 제품 공급중단이나 필요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는 사이버 안보 심사 신고시 다음관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고서
- (2)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
- (3) 구매서류, 계약서 등
- (4) 보안심상 업무에 필요한 기타자료

제8조 사이버 안보 심사 판공실은 심사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10일 내에 심사 수리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사이버 안보 심사는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따른 국가안보 위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 (1) 제품 및 서비스 사용 후 주요정보 인프라가 불법적으로 통제되고, 방해받거나 파괴, 중요 데이터가 탈취, 유출, 훼손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 (2) 제품 및 서비스 공급중단은 핵심 정보 인프라 업무 연속성에 위해를 가하는지 여부
- (3)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개방성, 투명성, 출처의 다양성, 공급채널의 신뢰성 및 정치, 외교와 무역등의 요인으로 공급이 중단 위험에 대한 여부
- (4)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칙의 상황의 준수
- (5) 기타 중요 정보인프라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위해 여부

제10조 사이버 안보 심사판공실은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사이버 안보 심사작업의 구성원 기관, 관련 중요정보 인프라 보호사업 부서의 의견수렴을 발송하고, 상황이 복잡할 경우에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사이버 안보심사 구성원기관과 핵심정보 인프라 보호사업부는 심사결론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영어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회신해야한다. 사이버 안보심사 매커니즘의 구성원, 관련 중요인프라 보호사업부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사이버 안보심사 판공실은 서면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특별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사업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제12조 특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이버 안보심사 판공실은 관계부처와 기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분석평가를 진행하여 심사결론을 재작성하여 사이버 안보심사 구성원 기관과 관련된 중요 정보인프라 보호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중앙 사이버 안보 정보화 위원회의 승인보고 후 심사결과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심사 절차는 통상 45일내로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사이버 안보심사 판공실이 요구하는 보완자료는 사업자,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협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 기재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이버 안보 심사 업무의 매커니즘 구성원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사이버 안보심사 판공실에서 절차에 따라 중앙 사이버 안보과 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한다. 승인 후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

행하도록 한다.

제16조 사이버 안보심사에 연관된 관계기관과 인원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해야하며, 사업자,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한 미공개 자료 및 심사업무에 알게 된 기타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사업자 또는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심사자가 객관적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업무에서 알게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지 않은 때에는 사이버 안보 심사 사무실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자는 반드시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 안보심사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심사 판공실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사전 사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19조 사업자의 본 법 규정 위반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의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본 방법에서 중요 정보인프라사업자는 중요정보인프라 보호사업부서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를 뜻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는 주로 핵심 네트워크 장비, 고성능 컴퓨터와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형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이버 안보장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타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제21조 국가 기밀정보에 관한 제21조는 국가의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2조 본 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안전심사방법(시행)> 동시에 폐지된다.

56. 사이버 안보산업 고품질 발전 3년 행동계획(2021-2023년) 의견수렴안

제목	网络安全产业高质量发展三年行动计划(2021-2023年) (征求意见稿)
제재일	2021-07-12
출처	공업정보화부
분류	문화정책(종합)

사이버 안보산업 고품질 발전 3년 행동 계획 (2021-2023년) (의견수렴안)

신흥 디지털 산업인 사이버 안보 산업은 국가의 사이버 공간 보안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사이버 안보 기술, 제품 생산과 서비스 활동으로 제조강국과 인터넷 강국을 건설하는 기초적인 보장이다. 최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산업은 적극적으로 발전했는데 특히,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커넥티드 카, 산업인터넷,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 신업무 모델이 빠르게 발전했으며 사이버 안보, 데이터 보안 등 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왕성하게 발전했다. 인터넷 강국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요강>을 실행하며 강한 혁신능력, 최적화된 산업구조, 질 높은 공급, 풍부한 수요, 심도 있는 산업·금융 협력, 전문적인 인재팀의 건강하고 체계적인 산업발전 생태계 구축 가속화, 사이버 안보산업의 기술 선진 실현, 산업 발달의 고품질 발전목표 추진, 국가 사이버 안보 보장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해 본 행동 계획을 제정한다.

가.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여 당의 19대 19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여 발전과 보안을 통합하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 발전 기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가속화한다. 사이버 안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유효한 수요가 고품질 공급을 견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혁신활력을 충분히 북돋고, 각종 자본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다층적인 인재 지원 보장을 강화한다. 혁신사슬,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시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하고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육성하여 제조강국과 인터넷 강국 건설의 견고한 기초를 다진다.

2) 기본 원칙

혁신적으로 구동,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 기초성, 통용성, 전망성 보안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가속화하여 기업의 혁신적 동력을 불러 일으키고 기술성과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기반능력을 강화해 산업사슬 수준을 높인다.

—— 수요 견인, 공급 전환. 중점 업종을 추진하여 사이버 안보 투입을 확대하고 효율적 수요로 공급을 견인한다. 사이버 안보 제품이 서비스화, 고급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고품질 공급으로

고차원적 수요를 창출한다.

— 심층 융합, 시너지 추진. 사이버 안보교육, 기술, 산업융합 발전을 견지하고 산학연용자(생산, 학습, 과학연구, 실천운동, 자본) 심층 협력을 강화해 혁신적 연합체 건설을 지원하며 자본의 조력 역할을 강화하여 시너지 추진의 실제효과를 두드러지게 한다.

— 시장 주도, 정부 견인. 각종 시장 주체 역할을 발휘하여 차별화된 발전과 경쟁을 장려한다. 정부가 계획, 견인, 정책 지원, 표준 제정, 시장관리감독 등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기업의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보안 주체책임 시행을 독촉하고 양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3) 발전 목표

2023년까지 사이버 안보 기술혁신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며 경제사회 사이버 안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산업·금융 협력이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사이버 안보 인재들이 나날이 늘다. 산업기초능력과 종합실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산업구조 배치가 더욱 최적화되어 산업발전생태계가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된다.

— 산업규모. 사이버 안보 산업규모 2500억 위안, 연복합 성장률 15% 이상 달성한다.

— 기술혁신. 선진 수준의 사이버 안보 핵심기술을 육성하고, 신형기술과 사이버 안보 융합 혁신 가속화 및 사이버 안보제품, 서비스 혁신능력을 강화한다.

— 기업발전. 품질브랜드, 경영 효익의 우위가 뚜렷한 사이버 안보 생태계 견인 능력을 갖춘 선도 기업들이 초보적으로 형성되고 커넥티드 카, 산업 인터넷, 사물인터넷,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서킷을 겨냥한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세분화·특색화·혁신화)’ 중소기업 그룹이 빠르게 성장하며 사이버 안보제품, 서비스, 솔루션 부문별 1등 기업 수를 점차 늘린다.

— 수요방출. 전신 등 중점 업종 사이버 안보 투입이 정보화 투입비율의 10%에 이른다. 중점 업종 분야 보안 응용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사이버 안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핵심업종 인프라 사이버 안보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 인재양성. 사이버 안보 인재 실습훈련기지,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실습훈련 레인지를 건설해 혁신형, 기능형, 실전형 인재 양성 강도를 높이고, 다층적인 사이버 안보 인재양성시스템을 더욱 완비하며, 사이버 안보 인재 규모와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 생태계 육성. 산업과 금융 연결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되며 자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사이버 안보 산업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되고 산업 집중 효과가 현저히 증대된다. 제품 서비스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 질서가 끊임없이 완비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산업구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나. 중점임무

1) 산업 공급 강화행동

(1) 기존 보안 제품 업그레이드 가속화.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침입탐지시스템), ATD(Advanced Threat Detection), Network Audit, 호스트 및 단말 보안, 콘텐츠 보안 등 기존 검사제품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규칙 추상화 알고리즘(rule abstracting algorithm)을 최적화하며 보안검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방화벽,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보안 게이트웨이 등 기존 보호류 제품 보안능력의 집약화 발전을 추진한다. 보안운영플랫폼, 인터넷 트래픽 분석 시스템, 위협정보 분석 및 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 등 기존 분석류 제품

의 지능화 발전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암호기술이 보안분야에서의 응용수준을 높인다.

- (2) 중점영역의 사이버 안보공급을 강화. 5G, 클라우드 컴퓨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분야를 겨냥해 네이티브 시큐리티(Native security), 스마트 프로그래밍, 내생(Endogenous) 보안, 다이내믹 액세스 제어(Dynamic Access Control), TC(Trusted Computing) 등 기술제품 연구개발과 보급 정착을 가속화한다. 산업인터넷을 겨냥해 대유량 보안분석 강화, 취약점 발굴 및 관리, 데이터 융합(data fusion) 분석, 프로토콜 식별 확인(Protocol identification resolution)등 능력을 강화한다. 커넥티드 카와 사물 인터넷을 겨냥해 내생 결합된 경량급 단말 보안제품 또는 미들웨어 및 통신보안, 신분인증, 플랫폼 보안 등 보호 방식(Protection scheme) 응용을 추진한다. 연합 학습, 다자간 보안기술, 프라이버시 컴퓨팅(Privacy compute), 암호화(Encrypted) 컴퓨팅, 세이프서치(Safe search), 멀티 도메인 코디네이션(multi domain coordination) 추적 등 데이터보안 기술 연구 응용을 추진한다.
- (3) 데이터보안기술연구와 응용 강화. 데이터 유출 방지, 변조 방지, 절취 방지 등 기존 데이터 보안 보장 니즈를 겨냥해 데이터 보안 관리, 분류 등급 보안 보호 등 제품기능과 성능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데이터 보안 지능 보호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데이터 보안 관리감독 수요를 겨냥해 모니터링 경보와 응급처치 기술 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 리스크 분석, 위협 조기 경고(Threat precaution) 와 자동화 사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데이터 보안 공유 수요를 겨냥해 다자간 보안 컴퓨팅(Secure Multi-Party Computation),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신뢰 컴퓨팅(Trusted Computing) 등 기술의 연구 난관 돌파 및 배치 응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요소 보안의 체계적인 유동을 촉진한다.
- (4) 보안 모델 서비스 혁신. 보안기업 기술제품의 클라우드화 능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화 보안제품 응용을 추진하며 종합 실력이 강한 보안 기업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클라우드 모델 사이버 안보 서비스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집약화된 보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기업이 방화벽, 사용자 신분 인증, 데이터 보안, 응용 보안 등을 통합한 포괄적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위협관리, Sense response 등 보안위탁관리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급, 도시급, 업종급 보안운영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클라우드 운영 자동화, 프로세스화, 도구화 수준을 높인다. 기초 전신기업,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장려하여 인터넷과 기초 자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 보안서비스 능력을 수출하는 동시에 인프라 업그레이드 개조를 해 보안기업에 보안서비스 능력이 내재되도록 지원한다.
- (5) 5. 혁신보안기술을 발전시킨다. 사이버 안보 구조가 내생적, 자가 적응(Self-adaption)발전하도록 추진하고 개발보안운영, 능동 면역,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등에 기반한 프레임의 사이버 안보시스템 연구개발을 가속화한다. 동적 경계 보호(dynamic boundary protection)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microisolation 심화, SDP(software defined perimeter,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 프레임 등 기술제품 응용을 장려한다. SRT(Smart Response Technology)를 적극 발전시켜 사용자 오프라인 행동 분석, 보안 프로그래밍과 Automation Response 업그레이드 및 검사와 응답 등 기술응용수준을 확장한다. 능동 보안 방어기술 발전 추진, 스푸핑 방지(spoofing prevention), 위협사냥(Threat Hunting), 시뮬레이션 방어 등 기술제품의 자리를 잡도록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보호기술 응용 가속화, 다자간 인증, Trusted Data 공유 등 기술제품 발전 추진한다. 위성 인터넷, 양자통신 등 분야의 보안 기술 난관 돌파를 강화한다.
- (6) 공통성 기초 지원 강화. 고품질 위협정보, 취약점, 악성코드, 악성주소, 공격행위 특징 등 사이

버 안보 기초 지식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지식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악성코드 검사, 고급 위협 모니터링 분석, 정보처리, 역방향 분석, 취약점 분석, 암호 보안성 분석 등 저층 엔진과 툴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안보지식 사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소스코드 분석, 구성 성분 분석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툴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안보제품 보안개발 수준을 향상시킨다. 사이버 레인지(cyber range) 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가상환경과 실제 설비를 결합한 보안 트윈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기술제품 테스트 검증능력을 향상시킨다.

칼럼1 새로운 시설 새로운 요소를 위한 보안기술과 제품 업그레이드 공정
5G보안. 5G핵심망, 엣지 컴퓨팅 플랫폼 등 5G인터넷 인프라를 겨냥해 보안 편성 및 자동화 응답, 딥 트래픽 분석, 위협사냥, 신호보안(Signal security) 등 제품 응용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엣지 시너지 보안 능력 구축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인터넷 기능 가상화 등 기술 특징을 겨냥해, 컨테이너 세이프티(Container Safety), microisolation 등 가상화 보안 보호제품 및 5G 에어 인터페이스(air interface)와 신호 보호 검사(Signaling protect detection) 등 보안제품 배치 응용을 추진하고 5G내생 보안능력과 5G인터넷 위협의 감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5G VPN, 5G 공동구축 등 인터넷구축 모델을 겨냥해 보안소스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 자산 식별(Asset Identification) 등 보안 솔루션 응용을 적극 추진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보안 능력을 구축한다. 클라우드 보안.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클라우드 엣지, 분포식 클라우드 등 신형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위해 멀티 클라우드 신분관리, 클라우드 보안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보안 배치관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클라우드 재해 복구 시스템 등 기술제품을 발전시켜 클라우드 아키텍처 보안 발전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버, 가상 호스트, 인터넷 등 기초자원을 겨냥해 기초정보 수집 수준을 강화하고 듀얼 스택(IPv4, IPv6)을 위한 트래픽 가시화, microisolation,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클라우드 작업 부하 보호 등 보안제품 능력을 향상시키며 클라우드 상 자원 보안 신뢰성을 보장한다. 클라우드 업무, 응용 등 서비스를 겨냥해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SASE) 모델, 클라우드 Web 응용 방화벽,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등 보안제품 효능을 향상시켜 클라우드 업무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한다. 인공지능보안. 인공지능 보안 위협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겨냥해 인공지능 위협 모델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보안성 검사 및 평가 표준 시스템을 제정한다. 인공지능 시스템 해석가능성, 프라이버시 등 보안 요소를 연구하고 인공지능 모델 공격 및 방어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인공지능 시스템 자동 공격 방어 플랫폼을 설계하고 인공지능 보안 레인지를 구축한다.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 관리기술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식별, 분류 등급, 품질 규제, 혈연 분석 등 기초적 기술 제품 정확성과 지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자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데이터 어웨어(data-aware), 관리,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응용 보안 보호 기술을 완비하여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데이터 유출 방지(prevent data leakage),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백업 복구, FGAC(Fine Grained Access Control) 등 기술 제품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데이터 응용 보안이 제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데이터보안 모니터링 경보 및 응급처리 기술을 강화하고 단말, 인터넷, 클라우드 및 크로스보더 등 장면에서 데이터 유동과 이상 행위 모니터링 폭, 깊이와 정확성을 높이며 사건 처리 지능화 및 자동화 수준을 높인다. 데이터 공유 보안 보장기술을 발전시켜 보안 다자간 컴퓨팅, 연합학습, 신뢰 컴퓨팅, 동적 암호화, 차등 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블록체인, 데이터 워터마크 등 프라이버시 보호 및 플로우 디렉션 트레이서빌리티(Flow direction Traceability)기술 실용화 배치와 보급 응용을 추진하고 국산 상업 암호화(commercial cryptography) 응용을 추진해 데이터 요소 보안의 체계적인 흐름을 촉진한다.

2) 보안 수요에 따른 행동 촉진

(7) 전신과 인터넷 업종 사이버 안보 능력 업그레이드 추진. 전신, 인터넷 등 중점 업종 기업이

사이버 안보 투입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 동시 계획, 동시 구축 및 동시 사용을 추진하고 사이버 안보 관리와 기술보장체계를 완비한다. 사이버 안보 자산 측량, 모니터링 조기경보, 검사 평가, 정보 공유를 심도 있게 전개하며 망 부분(network side)을 기반으로 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및 고급 위협 행위 등 이상행위 보안 모니터링과 처치 수단을 완비한다. 전신, 인터넷 업종 사이버 안보 리스크 평가와 응급 훈련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 예방, 잠재적 위협 처리와 응급처치 능력을 증강하고 보안체계의 성숙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데이터 전 생애주기 보안 보호를 강화하고 분류 등급 관리를 하며 데이터 보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개인 데이터, 중요 데이터 보안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개인 사생활 안전을 보장한다.

- (8) 신흥 융합 분야 보안 응용 가속화. 산업인터넷기업 사이버 안보 분류 등급 정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원자재, 장비제조, 소비재, 전자정보 등 업종을 겨냥해 인터넷 산업기업, 플랫폼기업, 표시해석기업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등급 보호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커넥티드 카 보안을 위해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인터넷 핵심설비 및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보호 및 검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Roadside Networking 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커넥티드 카 시범구역, 선도구역과 테스트장 보안 솔루션의 시험 검증 및 시범응용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보안 ‘100개기업 1000개 제품’ 육성 행동을 실시하며 사물인터넷 단말, 게이트웨이, 플랫폼 등 사물인터넷 핵심 부분을 위해 사물사이버 안보검사, 예외처리(Exception handing), 공공서비스를 전개하며 ‘사물사이버 안보 제품’을 만든다.
- (9) 핵심 업종 인프라를 추진해 사이버 안보 구축을 강화. 에너지, 금융, 교통, 수리, 위생의료, 교육 등 업종 분야에서 자산 식별, 설비 보호, boundary protection, 신분인증, 데이터 보안, 응용 보안 등 기술 수단 구축을 추진하고 중요시스템, 핵심 부분 및 데이터의 보안 보호능력을 향상시킨다. 태세감지, 통보 조기경보, 응급응답(Emergency response), 보안운영 등 보안 메커니즘 및 중심층 방어체계(defense-in-depth aichitecture) 구축을 지원하고 리스크 방비와 응급처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제로 트러스트, 인공지능 등 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방어시스템 효능을 향상시킨다.
- (10) 중소기업의 사이버 안보 능력 구축 강화를 추진. 중소기업 ‘보안 클라우드(Security Cloud)’ 특별행동을 실시하고 사이버 안보 운영 서비스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 저비용, 집약화된 사이버 안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사이버 안보 제품 서비스 원스톱 구매, 리스, 구독, 위탁관리, 클라우드 단말 교부 등 방식을 통해 사이버 안보 제품과 솔루션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다원화 사이버 안보의식을 홍보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며 기능훈련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사이버 안보 보호 의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칼럼2 디지털화된 새로운 장면 새로운 업무를 위한 보안능력 구축 공정
커넥티드 카 보안. 커넥티드 카 보안 능력 구축을 강화, 커넥티드 카 및 그 인터넷 핵심 설비를 겨냥해 경량화 신분인증, 차량탐제 보안 게이트웨이, 차량탐제 방화벽, 침입 검사 등 핵심기술 및 제품응용을 추진하고 중심방어(defense in depth)기술능력 구축을 강화한다. V2X통신을 겨냥해 PKI기반의 보안인증과 감사기술을 추진하고 커넥티드 카 신분인증과 보안 신뢰 관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커넥티드 카 플랫폼 및 응용을 겨냥해 보안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일체형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준법 보호 및 보안검사,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 등 기술제품이 정착하도록 추진한다. OTA업그레이드, 원격 모니터링, 자율주행, 차선시너지 등 중점 장면에 사이버 안보기술의 응용배치를 추진한다. 산업인터넷과 IPC(工控)보안. 산업인터넷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겨냥해, 설비, 제어, 인터넷, 표시,

플랫폼, 데이터보안보호 수요에 대해 산업 호스트 스냅샷 롤링, 제어시스템 취약점 발굴, 제어시스템 내생보안 등 IPC(工控) 보안기술 난관 돌파에 박차를 가하고 프로토콜 버퍼, 경량급 암호화 인증, 대용량 보안분석, 산업사이버 안보 위협정보 공유분석 등 산업 사이버 안보기술의 난관을 돌파한다. 산업급 방호설비, 대량 인터넷 설비 트러스티드 액세스(trusted access), 플랫폼보안, 식별자 확인(Identifier Resolution)보안관리, 산업데이터 전체 생명주기보호 등 보안제품 보급 응용을 강화하고 산업인터넷 장면화 보안 방호 능력을 제고한다.

사물사이버 안보.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팜, 스마트 홈,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사물인터넷 장면 사이버 안보응용을 적극 추진해 기업이 이성질 사물인터넷 장면에 적응하는 단말-단말 보안방어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겨냥해 보안전송(Secure Transmission), 이상행동분석, 트러스티드 아이덴티티(Trusted Identity), 위협분석, 데이터 유출 방지 등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보안제품을 발전시킨다. 사물인터넷 설비 트러스티드 액세스 게이트웨이(Trusted Access Gateway)를 겨냥해 신분인식, 프로토콜 디섹터(protocol dissector) 및 보안검사 분석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업이 더욱 많은 보안능력을 게이트웨이로 집적하도록 장려한다. 사물인터넷 단말을 겨냥해 사물인터넷 설비 및 펌웨어(firmware)의 취약점 발굴(Vulnerability Mining)을 강화하며 인터페이스 보호, 보안인증, 응용보안, 중요 데이터 보호 등을 집약한 임베디드식 집약화 보안제품을 연구 제작해 보안 사물인터넷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보안. 스마트시티 정부, 교통, 에너지, 제조, 교육, 의료 등 업무장면에 맞게 ‘1컴퓨터, 3클라우드(一脑, 三云)’의 사이버 안보방어능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성질 보안능력 연동수준을 강화하는 등 동적 보안방어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보안 대뇌 구축, 사이버 안보 ‘스마트 클라우드’ 구축, 파노라마 보안 지식 베이스 구축, 사이버 안보 모니터링분석 엔진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장려하고 전반적인 시각으로 사이버 안보감지, 분석, 응답, 의사결정 등 능력을 제고시킨다. 사이버 안보 ‘레인지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레인지를 구축해 도시 보안능력검증을 뒷받침해준다. 사이버 안보 ‘서비스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보안계획, 건설, 운영 등 서비스 자원을 결집하여 도시보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산업·금융 협력 심화 행동

- (11) 산업기금 투입 강도를 강화. 국가제조업 전환업그레이드 기금 등 정부 건인가금이 사이버 안보 신기술 신모델 및 융합혁신분야로의 쏠림을 유도하고 국가급 사이버 안보산업 선도기금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해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숙하게 자리잡도록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이버 안보산업을 정부선도기금의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 사이버 안보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 (12) 자본이 정확하게 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유도. 각종 자본이 과학혁신기금을 조성하도록 장려해 산업 과학기술혁신과 핵심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고 ‘과학기술 기부’와 지식재산권, 옵션 파이낸싱(option financing) 모델을 탐색해 자본시장의 조기.소액투자를 유도해 성장형 기업이 기술 우위를 강화하도록 돕고 세분화 시장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정확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기초가 비교적 강한 사이버 안보기업의 상장을 장려해 선도기업이 전략적 투자 방식을 통해 자원을 통합하여 더욱 크고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사이버 안보 생태 선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3) 산업·금융 협력메커니즘 구축 강화. 산업금융 협력 시범도시의 투입 확대를 장려해 사이버 안보 산업·금융 협력을 심화시킨다. 산업금융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리스크투자, 지분투자, 기업인수합병, 상장회사 운영 등 동적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산업·금융의 정확한 도킹을 촉진한다. 사이버 안보기업의 특징에 부합하고 기업의 다른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고성장기업, 고가치 프로젝트 평가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정보공유 및 신용평가 성과 전환을 잘 해낸다.

칼럼3 사이버 안보산업의 자본 능력발휘 공정
공업신식화부 국가 산업금융협력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조세금융정책, 융자수요, 금융제품 서비스 등 정보교류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산업·금융의 정확한 도킹을 촉진한다. 보안산업금융서비스 적극적으로 전개. ‘사이버 안보산업자본혁신포럼’을 설립하고 상장 지도, 기업 로드쇼, 프로젝트 소개, 융자 교육 등 다층적 산업금융 도킹행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전개하고 금융자본을 충분히 응용해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사이버 안보보험을 탐색하여 전개. 전신과 인터넷, 산업인터넷, 커넥티드 카 등 분야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보험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사이버 안보보험정책 유도 및 표준제정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안보보험서비스 모니터링 리스크 익스포저를 통해 기업이 자체 사이버 안보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도록 장려해 사이버 안보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사이버 안보기업가치 평가 탐색 전개. 기업의 단계별 및 사이버 안보 세분화 트랙을 겨냥해, 산업계와 자본계가 가치평가모델 및 세분화 지표를 연합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고성장성 기업 리스트, 고가치 프로젝트 목록 발표 업무를 전개한다.

4) 인재풀 구축 행동

- (14) 리더형 인재의 견인 역할을 발휘. 이론 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응용실천 등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리더형 인재를 육성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은 작업실 설립, 과학연구경비 제공, 지분 인센티브, 인재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리더형 인재 장려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국제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인재 및 혁신 팀을 유치하도록 장려한다.
- (15) 산업·교육 융합 시너지 인재 양성 심화. 대학에서 사이버 안보학과 전공 개설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사이버 안보 학교·기업 협력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 간 사이버 안보 실습교육 기지, 연합 실험실 등 공동 건설을 장려 및 지원하며 ‘교사, 기자 자격을 겸비한’ 교사 집단을 구축하여 사이버 안보 인재 실천능력을 강화한다. 업종별 특성화 대학, 직업학교 역할을 발휘하여 더욱 많은 사이버 안보 기능형, 서비스형 인재를 발전시킨다. 사이버 안보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다층적이고 다원화된 사이버 안보능력 경진대회 개최, 높은 소양을 갖춘 사이버 안보인재 육성을 장려한다.
- (16) 사이버 안보인재 능력 평가 추진. 산업통신업 직업기능 향상 행동을 실시하여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격(수준)시험, 전국 산업사이버 안보 기술 기능 대회 등 방식을 통해 사이버 안보 전문인재를 선발 육성한다. 장비제조, 원자재, 소비재, 전자정보 등 중점 업종에 대한 ‘X-보안’ 인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완비된 사이버 안보인재 선발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5) 산업생태계 최적화 행동

- (17) 사이버 안보산업 집중 유도. ‘다각화 추구, 전국 영향권, 우위 상호보완, 협동발전’의 사이버 안보산업단지 배치를 구축하고 베이징, 후난 창사 국가 사이버 안보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청위(成渝), 창싼자오(长三角), 주싼자오(珠三角) 등 산업기반 우위를 발휘해 국가사이버 안보산업단지 배치를 가속화한다. 견인적이고 선도적인 사이버 안보혁신응용 선진 시범지구를 적극 건설한다.
- (18) 혁신적인 연합체 건설을 추진. 기초전신운영업체, 업계 사용자, 과학연구기관, 대학, 보안기업 등이 사이버 안보 연합혁신센터, 연합실험실 등을 건립하도록 장려해 기초 사이버 안보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성과 응용 전환을 촉진하며, 사이버 안보분야 핵심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이버 안보 관련 업계 기업 연맹, 협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술 난관 돌파, 프로젝트 협력, 인재 양성, 단지 건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혁신적 요소들의 유동을 촉진하고 기술 우위와 자원 우위를 통합하여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 (19)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 조성. 사이버 안보제품 서비스 능력 평가, 사이버 안보공정 건설과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품질 평가와 신기술 신업무를 겨냥한 보안평가를 지원한다. 기업 제품서비스 품질, 취약점 기여, 위협정보공유 상황, 악의적 경쟁 등 요소를 종합하여 기업 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기업의 ‘홍흑방(红黑榜, 아너(honour)리스트, 블랙리스트)’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시장 투명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제품 서비스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선의의 시장 경쟁환경 형성을 유도한다.

칼럼4 사이버 안보산업 생태계 육성 공정
사이버 안보제품과 서비스능력 평가제도 구축. 사이버 안보산업사슬 상하위 스트림 핵심 부분 기술 제품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안보산업사슬 지도를 제작하여 인터넷산업 중대 리스크에 대한 연구 판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이버 안보제품 핵심기능성능, 능력 성숙도, 응용효과 및 사이버 안보 서비스수준 등 요소를 종합해 사이버 안보제품과 서비스 능력 평가규범을 각각 제정해 평가 결과를 공개 발표한다. 사이버 안보 위협 정보 공유 서비스 체계와 메커니즘 완비. 취약점, 악성 프로그램, 악성 주소, 공격행위 등 위협정보 발굴, 공개, 전파와 이용의 규칙 메커니즘을 구축해 사이버 안보기업, 업계 사용자, 과학연구기관, 대학이 정보공유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위협정보요소 집합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5G, 커넥티드 카,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중점 방향을 향해 우수안전제품 및 솔루션을 엄선해 교류포럼, 대회개최, 수요공급 도킹 등 방식을 통해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이 각 중점 업종 분야에서 응용 보급되도록 촉진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활력을 복돋아 성과 전환을 촉진한다. 사이버 안보 우수기업 모델 육성.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혁신을 강화한다. 종합실력이 강한, 국내외 기술, 표준, 시장 등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춘 기업이 산업사슬, 공급사슬과 혁신사슬을 더욱 통합해 산업사슬의 선도기업이 된다. 사이버 안보제품 세분화 시장 우수 기업을 겨냥해 정책 지도, 프로젝트 편향, 인재 육성 등 방식으로 기술연구개발, 제품보급, 공급수요 도킹 등의 지원을 강화하며 사이버 안보 종목별 1등 기업과 전정특신(전문화.세분화.특색화.혁신화) ‘작은 거인’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다. 보장조치

1) 조직 지도 강화. 각지 공업신식화 주관부서, 통신관리국은 조직 지도를 강화하여 부서 협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산업을 지방 ‘14.5’ 전체 계획 및 관련 특별 계획 중요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업종별, 분야별, 주체별 사이버 안보건설에 대한 분류 지도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산업 발전 차별화 배치를 추진하며 완비된 사이버 안보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안보 산업발전에 유리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정책 유도 강화. 사이버 안보기술응용 테스트베드 시범, 첫 번째(首台, 세트(套)), 전용 프로젝트 등 기존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지방의 현지실정과 결합하며 서로 다른 발전단계의 사이버 안보기업을 겨냥해 재정금융, 인재 육성, 산업 클러스터 등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정부.기업 협동과 부서.성 연동을 강화하여 업무 합력을 형성해 사이버 안보기업과 지방 디지털 경제발전의 긴밀한 융합을 추진한다. 지방 재정투자의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사이버 안보기

술조치의 동기식 부대 건설을 장려해 프로젝트 검수 단계에서 사이버 안보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업종 기업의 사이버 안보투입 확대를 장려하고 사이버 안보 예산을 단독 편성하며 사이버 안보기술, 제품과 서비스 배치 응용을 추진한다.

3) 산업시너지 강화. 공업신식화부 사이버 안보산업 고품질 발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중대한 문제점과 정책 실시 상황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한다. 산학연용자(产学研用资, 생산, 학습, 과학연구, 실천운동, 자본)각 측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급수요 도킹 강화, 표준제정, 인재양성 및 성과전환을 협동 추진하며 업계 자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체계적이며 양성발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4) 국제협력 추진. 양자/다자간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하고 사이버 안보국제규칙과 중점분야 보안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해 사이버 안보정책, 법규, 산업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기업의 해외연구개발센터, 연합 실험실 설립을 지원하고 각종 사이버 안보회의포럼, 전시전람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며 다층적이고 상시화된 산업 협력 교류 메커니즘 구축에 힘쓴다.

57. 감염병 방역작업 강화 관련 긴급 통지

제목	关于全面加强当前疫情防控工作的紧急通知
게재일	2021-08-03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문화/종합정책

문화관광부의 감염병 방역작업 강화 관련 긴급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부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최근 국내 여러 곳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전 업계는 관련 부서가 발표한 역학통제 지침에 비추어 엄격한 조치와 단호한 행동으로 역학통제 업무를 엄중히 처리하여 문화·관광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1) A급 관광지의 방역통제 강화

A급 관광지에는 인원통제, 예약제, 절정기 회피 등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현지 당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관광객 상한선을 엄격히 제한한다. 티켓예약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여행자 정보소회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람들이 몰리는 명소 앞에는 건강코드 스캔이나 체온측정 등의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1미터 간격유지와 마스크착용 등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한다.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는 위생관리와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인파의 밀집과 분산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여 인파가 한순간에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여행사의 관리 감독 강화

여행사와 온라인 여행업체들을 지도하여 리스크 평가와 연구를 강화하고, 여행지와 현지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단체로 중·고위험지역으로 여행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또한 중·고위험지역은 여행객의 유입을 막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사람들도 외부로 여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단체여행시 목적지의 역학 통제 등급정보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다. 여행지 당국이 여행경보를 발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중·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할 경우 미출발 관광단은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현지에 있는 관광단은 여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건강관리, 건강상태, 행적을 파악하고 근무전 건강코드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며, 건강과 작업 규범화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발열, 기침 등 관련 증상 발견 즉시 인근 거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 유무를 철저히 파악, 차단하도록 한다.

3) 문화 및 관광업계의 실내장소 방역 강화

특급호텔, 극장 등 공연장, 박물관, 공공도서관, 문화간, 미술관, A급 관광지의 실내장소 및 유흥업소, PC방 등 상대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대한 방역과 위생관리, 소독과 통풍을 강화한다. 진입장소 인원수에 대한 건강코드, 체온측정 등의 통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종업원들의 건강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행사는 최소화 하도록 한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문화관광 행사는 현지 방역조치에 따라 제한, 중단, 폐쇄하여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도

록 한다.

4) 선전 및 홍보 강화

각 지역의 문화와 관광관련 행정부서는 인터넷, TV, 라디오, 옥외광고, 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수단을 통해 역학 통제 지식 홍보를 전개하고 과학적 방역 방침을 보급하여 관광객들에게 마스크착용, 손 씻기, 체온측정, 소독, 집합 자제, 자가 방역을 잘 하고 스스로 역학통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각급 문화·관광 행정부서는 역학관리 업무가 문화와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하며, 인민 우선, 생명지상의 이념을 견지하도록 한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사항을 항상 염두하여 역학통제를 굳건히 하여 엄격해지고, 긴박해지는 방역상황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고 세밀하며 신속하게 각종 방역 방제를 강화하도록 할 뿐 아니라 확산 통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제적인 효과로 초심의 사명을 다하여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적 영도를 수호한다.

문화관광부 판공청

2021년 8월 3일

58. 인터넷 부정당 경쟁행위 금지 규정(초안)

제목	禁止网络不正当竞争行为规定
제재일	2021-08-17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종합/전자상거래

인터넷 부정당 경쟁행위 금지 규정(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 제1조 인터넷의 부정경쟁 행위를 제지·예방하고, 혁신을 장려 지지하며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디지털 경제규범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이하 부정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 등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이하 인터넷)를 통해 생산경영을 하면서 자발적 평등, 공평, 성실성의 원칙에 따라 법과 본규정을 준수하고 상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의 부정경쟁행위를 행하거나 방조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장의 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직간접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네트워크 부정경쟁 방지업무를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심각한 인터넷 부정경쟁 사건을 단속한다.
- 현급이상의 인민정부가 시장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장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인터넷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조사, 처리한다.
- 제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부정경쟁 업무 조정 메커니즘의 각 구성단위에 대해 반드시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본 지역 내의 인터넷 경쟁 중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 제5조 모든 조직과 개인의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장려, 지지 및 보호한다. 인터넷 부정경쟁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시장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 당국은 신고를 받으면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 업계 협회 등의 사회조직에 네트워크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분석 연구를 장려하고 회원 단위의 합법적 경쟁을 유도, 규범화 한다.
- 제6조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의 경쟁행위에 대해 지도, 규범을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해당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처벌 정보를 3년 이상 보존하고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받아야 한다.
-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플랫폼 내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계속하여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위법 행위를 관할권이 있는 시장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장 인터넷 경쟁행위의 일반 규범

제7조 사업자는 생산·판매 활동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음의 혼동 행위를 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타인과 특정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 (1) 타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도메인 주체의 일부, 사이트명, 웹페이지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2)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앱, 쇼핑몰, 자체 미디어, 게임 인터페이스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페이지 디자인, 이름 아이콘,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표지
- (3)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기업명(약칭, 자호 등 포함), 사회조직명(약칭 포함), 성명(약칭 포함) 필명, 예명, 역명 표시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것
- (4) 기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특정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전항 규정의 혼동행위를 하도록 방조해서는 안된다.

제8조 사업자는 다음의 수단으로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영예, 자격자질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선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해서는 안된다.

- (1) 웹사이트, 개인형 미디어 등 인터넷 수단을 통해 전시, 시연, 설명, 해명, 소개 또는 메세징하는 행위
- (2) 생방송 마케팅, 화제 마케팅, 플랫폼 추천, 웹문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행위
- (3) 기타 온라인 홍보방식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전항의 허위 또는 오해를 살 만한 상업적 선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된다.

제9조 사업자는 다음의 수단으로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상품의 판매상황, 거래정보, 경영데이터, 이용자 평가 등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업적 선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해서는 안된다.

- (1) 허위거래 또는 조직적 허위 거래
- (2) 허위로 순위를 매기거나 조직적으로 허위 순위를 매기는 행위
- (3) 거래액, 거래수, 예약자 수 등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허위로 작성
- (4) 사용자 평가, 스크랩 수, 좋아요 클릭, 투표량, 관심량, 구독량, 리트윗량 등 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5) 오해유발성 방식으로 차등평가 은폐, 호평과 악평의 임의적 조정, 상품과 서비스 평가의 모호한 구분
- (6) 조회수, 관심도, 구독량, 청취량, 시청량, 재생량 등의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
- (7) 현물사칭, 거짓주문, 사제기 등의 허위 마케팅
- (8) 현금반환, 홍바오,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가 지정평가, 좋아요, 리트윗, 투표 등의 행위로 유도하는 것
- (9) 기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선전행위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항들의 허위 또는 오해를 살만한 상업적 선전행위를 하도록 방조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사업자는 재화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인

터넷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거래 기회난 경쟁우위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업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조작, 유포하거나 오도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뢰, 상품의 평판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된다.

전항의 ‘허위정보’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실제와 다른 정보를 말한다.

전항의 ‘오도적 정보’는 진실하지만 일부 사실만 진술해 잘못 연상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전항에서 ‘경쟁상대의 상업적 신뢰와 상품 평판에 손해를 끼친다’는 내용은 기타 사업자의 인터넷 트래픽, 상업광고 수익, 용자능력의 감소, 거래 기회, 예상가능한 상업적 수익, 가격협상 능력, 브랜드 가치 등 잠재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뜻한다.

제12조 사업자는 경쟁사의 신용, 상품평판도를 손상시킬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 (1)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명의로 악의적인 평가를 하도록 조직, 지시하는 것
- (2)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유포하도록 하거나 조직, 사주하는 것
- (3)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도적인 위험 안내를 하고 고객에게 알람, 경조장, 내용증명, 또는 투서하는 행위
- (4) 기타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를 조작,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뢰, 상품성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개인형 미디어, 댓글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 인터넷 댓글알바 등 조직이나 개인은 기타 사업자가 상기 항목의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어서는 안된다.

제3장 기술적 수단으로 방해 등 부당한 경쟁행위금지

제13조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이나 기타방식에 영향을 미쳐 트래픽 방해, 악의적 소문유포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다른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다음의 링크삽입 또는 목표물 이동 등의 트래픽납치를 강제할 수 없다.

- (1)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건너뛰기를 삽입하고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 링크를 삽입하는 행위
- (2) 키워드연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링크를 설정하여 사용자를 속여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
- (3) 기타 기술적 수단을 통한 데이터 탈취 행위

제15조 사업자는 기술적 수단으로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한다.

- (1)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오도, 사기, 가용, 수정, 폐쇄, 마운트 해제하는 행위
- (2)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앱을 다운로드, 설치, 실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거나 기타 사업자의 합법적인 설비, 기능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기본 기능이 아닌 앱에 마운트해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앱 마운트 해제 장애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행위, 기타 사업자가 합법적

- 제공하는 설비, 기능 또는 기타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4)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차단, 수정, 폐쇄, 다운로드 방해, 설치, 실행, 업그레이드, 전달, 유포 등을 방해하는 행위
 - (5) 타 사업자의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 원 순위정력을 임의로 조정하고 악의적인 잠금을 시행하는 행위
 - (6)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사업자는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한 악의적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호환 불가 행위의 주관적 의도
- (2) 호환 불가 행위의 대상, 범위
- (3) 호환 불가 행위가 시장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
- (4) 호환 불가 행위가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 정상 작동에 미치는 영향
- (5) 호환 불가 행위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및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6) 호환 불가 행위가 성실원칙, 상도덕, 특정업종 관행, 종업규범, 자율협약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7) 호환 불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제4장 기술적 수단으로 기타 네트워크의 부정경쟁행위 차단

제17조 사업자는 직간접적으로나 혹은 제3자를 통해 단기간에 경쟁사와 고주파 거래를 하거나 호핑하는 등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제18조 사업자는 특정 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내용과 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방해를 주는 정보의 잦은 유출 및 클로징을 제공하지 않는 플로팅, 윈도우 등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19조 사업자는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용자의 선택, 유통제한, 차단, 상품하자 등에 영향을 미쳐 기타 사업자 간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키고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행위로 기타 경영을 방해하고 파괴해서는 안된다.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다.

사업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거래대상제한, 판매지역이나 시간제한, 판촉 참여제한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의 경영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택일 요구로 의뢰 관계의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과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

제20조 사업자는 기술적수단으로 기타 사업자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해 실질적 대체나 타 사업자의 운영원가를 부당하게 증가시켜 타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타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

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기술적 수단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정보, 열람내용 및 횟수, 거래용 단말기의 브랜드 및 가치 등을 수집, 분석하여 거래해서는 안된다. 동일한 거래 상대방이 서로 다른 거래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해 상대방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을 침해하고 시장공정 거래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된다. 거래정보는 거래의 역사, 지급의사, 소비습관, 개인선호, 지급능력, 의존도, 신용상태 등을 포함한다.

제22조 사업자는 기술적수단으로 기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

- (1) 기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작동을 방해, 파괴하는 것에대한 판단은 다음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2)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되는지 여부
- (3)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설치 또는 해제할 수없게 되는지 여부
- (4)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에 불합리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 (5)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또는 접근량 불합리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
- (6) 소비자의 체험이 불합리하게 떨어지거나 기타 이익에 불합리한 손실을 입게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여부
- (7) 행위의 횟수, 지속시간
- (8)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범위, 시간범위 등
- (9) 기타 요인

제5장 감독검사

제23조 인터넷 부정경쟁에 대한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분 절차 규정’에 따라 관할한다.

사이트 설립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지, 사업자의 실제 영업지, 위반결과 발생지의 시장감독부서는 먼저 위법행위의 혐의나 관련 제보를 받은 곳을 관할로 한다.

제24조 시장감독 부서는 인터넷 부정경쟁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받은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관련자료 또는 상황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관련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위조, 폐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장감독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25조 사업자는 이 규정을 어기고 부정경쟁행위의 죄질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시장감독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시정 공약을 하고 과실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시장감독 부서는 사건 처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제3자 전문기관에 사건 관련 전자 증거의 채증, 고정, 재무 데이터의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신형, 혐의사건에 대해 시장감독 당국이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에 참여할수 있다.

전문가 읍저버는 자신의 전문지식, 업무능력, 실전 경험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경쟁행

위가 혁신 촉진이나 효율성 제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정당한 사유인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 전문가 읍저버는 이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도덕성, 공정성, 성실, 신뢰
- (2) 법학, 경제학, 금융학 또는 컴퓨터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보유자
- (3) 인터넷이나 부정경쟁 규제 분야 경력 5년 이상

제29조 전문가 관찰관은 다음의 상황에 회피하도록 한다.

- (1) 피조사 사업체에 근무 경력자
- (2) 피조사 업체의 동종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겸직하고 있는 자
- (3) 전문가 읍저버로 수사에 참여해 조사 대상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누설한 경력이 있는 자
- (4) 기타 이해관계로 조사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제30조 시장감시기관과 그 실무자, 제3자 전문기관, 전문가 읍저버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1조 사업자가 본 규정 제7조를 위반시 시장감독부서가 부정경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사업자는 본 규정 제8조, 제9조를 위반시 시장감독부서가 부정경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사업자가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면 시장감독부서가 부정경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사업자는 본 규정 제11조, 제12조를 위반시 시장감독 부서가 부정경쟁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사업자는 본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면 시장감독부서는 부정경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사업자가 본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면 시장감독부서는 부정경쟁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사업자가 본 규정 제6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법규에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만일 법률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시장감독부서는 그 경중을 따져 경고하거나 불법소득에 처해 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액은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는 1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8조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터넷 경쟁행위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 처벌한다.

제39조 사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소득을 취한 자는 행정처벌 제28조의 규정과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몰수한다.

제7장 부칙

제40조 본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59. 팬덤 문화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饭圈”乱象治理的通知
게재일	2021-08-25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문화정책(종합)

팬덤 문화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인터넷정보 판공실, 신강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인터넷정보판공실:

‘과도한 팬덤 무질서 현상관리’ 특별행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각지에서 관련 업무에 적절히 적용하고 연예인 차트, 핫이슈, 팬덤 커뮤니티, 댓글 교류 등의 중요 부분을 포함해 ‘팬덤’ 무질서 현상의 문제점을 관리하여 그 효과를 거두었다. 한단계 더 높은 관리강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다하고, 중점적이면서도 곤란한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견고하고 확대된 성과를 위해 ‘팬덤’ 무질서 현상을 해결하여 관련 조치를 이하와 같이 통지한다.

- 1) 연예인 차트 취소: 연예인 개인 및 그룹과 관련된 모든 순위차트를 취소하고, 급상승 개인차트 및 관련 상품과 기능을 금한다. 음악과 영상작품 등과 같은 차트만 남기고, 연예인의 이름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 2) 차트규정을 조정 및 개선: 음악과 영상작품 등의 차트 중 서명(웨이보 기능 중 하나로 해시태그를 팔로우하고 매일 출석체크를 해 포인트를 쌓고 이 포인트로 순위 점수를 높일 수 있음), 좋아요, 댓글 등 수치지표의 가중치를 낮추고, 작품 소개 및 전문성 댓글 중 지표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 팬의 투표(혹은 스트리밍) 같은 기능으로 유도해서는 안 되며, 유료 서명기능 및 유료회원 등의 방식을 통해 서명 횟수를 늘려서도 안 된다. 팬이 작품의 품질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과열된 연예인 우상화를 자제하도록 한다.
- 3) 연예기획사 엄격히 단속: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은 연예기획사(공작실)의 온라인 행위에 대해 더 막중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관련 온라인 운영규범을 제정하여 계정 설명인증, 콘텐츠 발표, 상업광고, 위기관리, 팬 관리 등 온라인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세우도록 한다. 연예기획사는 팬덤을 이끌 책임이 있으며, 팬들간 다툼, 비방을 야기하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팬덤과 그 계정에 팔로워 등 횡수 제한조치, 금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전 플랫폼은 관련 연예인의 각종 소식 안내를 축소 혹은 취소한다.
- 4) 팬덤 계정을 규범화: 연예인 팬덤, 서포터즈 등 같은 계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팬덤, 서포터즈 계정은 반드시 연예 기획사로부터 권한 위임이나 인증을 받아 평소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 5) 상호비방 금지: 관리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팬들 간 상호 욕설, 비방, 폄훼, 날조 공격 등의 유해 내용을 즉시 발견하여 처리한다. 규정위반 계정을 엄격히 처리하여 대중들의 반응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
- 6) 규정위반 단체 정리: 투표, 서포트, 모금, 댓글 통제, 루머, 폭로 등을 주제로 한 팬커뮤니티 그

롭은 해산시킨다. 팬모임, 투표 경험 공유, 연예인 스캔들, 미션데이터 수행 등을 유도하는 단체, 채널 등을 폐쇄하여 팬덤 내에서 저속함과 분란을 일으키는 채널을 단속한다.

- 7) 팬에 소비유도 강매 금지: 세분화된 규칙을 제정하여 연예인 앨범 혹은 기타 작품, 상품 등과 관련해 유통과정에서 팬 개인의 구매량, 공헌도 등의 수치 데이터를 명시하지 않는다. 팬 개인이 구매한 상품수량 혹은 금액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 미션완성, 이벤트 계획, 한정대결 등 팬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이벤트를 금지한다.
- 8) 채널 설정 관리 강화: 온라인 예능 프로그램의 인터넷 행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설정에 ‘결제 후 투표’ 기능이 있어서는 안되고, 유도, 온라인 유저의 물품 구매 유도, 유료회원 등 출연진 투표를 위한 물질적 수단을 엄금한다.
- 9) 미성년자 참여 규제: 한 단계 위 조치로서 미성년자의 후원(도네이션, 슈퍼챗 등) 서포트 소비를 엄격히 금한다. 미성년자가 관련 그룹의 장 혹은 관리자를 맡아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차트 투표를 제한하여 연예인 팬덤, 서포터즈 등 온라인 활동이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학습과 휴식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미성년자는 각종 온라인 모임을 조직할 수 없다.
- 10) 서포트 모금행위를 규범화: 규정을 위반하는 각종 서포트 모금 정보를 제때 발견하여 폐쇄한다. 이슈 집중, 무책임한 행동, 미성년자 참여와 서포트 모금을 유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리한다. 투표차트와 서포트 모금을 진행하는 외국사이트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접속을 금한다.

각 지역은 정치적 입장을 더욱 발전시킨다. 책임과, 사명감, 긴장감을 점차 강화하여 온라인 정치 안전과 의식안전, 클린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과도한 ‘팬덤’ 무질서 현상의 정리업무를 추진한다.

중앙 인터넷정보판공실 비서국
2021년 8월 25일

60. 연예인 교육 관리 및 도덕성 강화 관련 통지

제목	关于进一步加强文艺工作者教育管理和道德建设的通知
게재일	2021-08-30
출처	문화관광부
분류	종합

연예인 교육 관리 및 도덕성 강화 관련 통지

각 성, 자지구, 직할시 문화관광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체육방송관광국, 부직속기구:

현재 문화, 연예분야에 만연한 위법, 부도덕적인 현상에 대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 관리와 도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문예풍조를 수립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 고양하기 위해 이하같이 통지한다.

가. 학습교육 강화

1) 시진핑 총서기가 문화예술에 관해 언급한 중요사항과 정신 학습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4개의식’을 강화하며 ‘4개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두가지 사항을 수호하도록 한다. 문화예술 사업은 당과 인민의 중요한 사업으로 문예전선은 당과 인민의 주요 전선임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문예 관련 종사자들은 전문이론학습, 집중적인 토론, 체험담 공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문예사업에 대한 입장과 그 정신을 체득하여 사상과 행동이 통일되도록 한다. 또한 시진핑시대의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주지도사상으로 하여 민심을 모으고 신세대를 교육하며 문화를 부흥시킨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품위, 격조, 책임을 강조하여 사상적 덕목과 직업도덕적 소양, 인문예술적 함양을 높여 덕목과 예술을 겸비한 문예인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법률법규 학습을 통한 법의식 제고

특히 헌법과 민법, 저작권법, 세법 등 중점법률과 법규학습을 선전하도록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들이 법률의식을 강화하여 사리판단 능력을 높여 문예 종사자로서 기본법 지식을 확보할수 있도록 준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신용체계와 관련된 법률, 법규를 학습하여 종사자들의 신용의식을 키우도록 한다.

3) 규장제도 학습을 통한 사상적 방어선 구축

높은 출연료, 이중계약, 탈세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부서별로 조직하고 <공연업계 종사자 관리법> 등 업계 규범을 학습하여 선을 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갖도록 유도한다.

나. 시범적 선도 강화

4) 사회적 효율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율을 통일시킨 우수한 문예작품을 보급한다. 많은 문예종사자들이 창작이 중요한 임무임을 명심하도록 교육하고, 작품활동이 입신의 근

본으로 더욱 많은 사상에 정통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작품에 시대정신을 투영하여 특히,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민들의 건전한 정신을 고양하여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한다.

- 5) 도덕과 예술을 겸비한 우수한 문예 종사자를 선정한다. 우수한 문예 종사자를 선발, 소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중대한 행사에 참가하도록 하거나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등 문예종사자들의 순수한 예술적 이상을 고수하도록 유도하여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도덕적으로 품위를 유지하여 책임감 있게 사회정서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 규범 관리강화

- 6) 연예 종사자들의 상업해위를 규범화한다. 실규제의 수립과 맞물려 종사자들의 상업활동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특히 공직을 맡고 있는 연예인들이 소속부서 밖에서 개인적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한다.
- 7) 리스크 예방의식을 높인다. 창작의 소재관리를 강화하여 방향설정을 바르게 하도록 한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중요 행사참가자 심의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나 부도덕한 행위자에게 출연의 기회를 제한하도록 한다.
- 8)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로 단속매커니즘을 키워, 위법, 범칙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여 조기에 발견 보고하여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단호히 차단한다.

라. 도덕성 강화

- 9) 인격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다한다. 문예 종사자는 사회 도덕을 선양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가정의 미덕을 계승하고, 개인의 인품을 닦아 정의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선도한다. 더불어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여 개인의 행동과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사회감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정신, 봉사정신을 강화하도록 한다.
- 10) 도덕적 평가 매커니즘을 완비한다. 도덕평가를 심사체계에 추가하여 평가결과를 업무평가, 직능평가, 승진 등과 연계하여 문예종사자에게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도덕적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여 도덕과 예술감각을 겸비한 예술인이 되도록 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관광부
2021년 8월 30일

61.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 의견

제목	关于加强网络文明建设的意见
제재일	2021-09-14
출처	중공중앙 판공청
분류	종합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 의견〉 배포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사이버문명 건설 강화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역의 각 부서가 연합해 실제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4일 보도 했다.

〈의견〉에서 사이버문명건설 강화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문명을 제고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회의 주요 갈등 변화에 부응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터넷 강국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 했다. 의견은 전체적으로 사이버공간내의 사상선도, 사이버공간의 문화육성, 사이버 공간의 도덕성, 사이버공간의 행위규범, 사이버 공간의 생태계, 사이버 공간의 문명창출을 강화하고 8개부분을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은 사이버문명 건설강화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지도아래 시진핑 총서기의 인터넷 강국 중요사상과 정신문명 건설에 관한 주요 목표를 관철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고양하여 문명적인 인터넷업무, 문명적인 인터넷이용, 문명적인 인터넷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차세대 사이버문명 건설 요구에 부응하는 사상관념과 문화시조, 도덕성 추구, 행위규범, 법치환경, 문명의 창을 융합하여 온라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인터넷 문명건설의 강화사업 목표로 이론무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인터넷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하며, 당과 전국민이 단결하여 분투하는 공동사상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육성효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자리잡아 인민대중의 온라인 정신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도덕적 토대위에 네티즌의 사상적 자질을 향상시켜 서로신뢰하고 돕는 인터넷 풍조를 만들도록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터넷 문명 소양을 높이는 동시 인터넷 플랫폼들의 책임과 업계내 자율성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효율을 높인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화를 실현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대중의 새로운 정신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캠페인을 인터넷에서 확대하여 사이버 문명브랜드 활동이 공고화되고 사이버공간이 더욱 맑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사이버공간의 사상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주도하여 당의 혁신적 이론을 심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중점 이론사이트, 공공계정, 클라이언트 건설을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의 위대한 실천, 특히 당의 신세대와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성취

를 결합하여 온라인에서 이론선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인터넷 선전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전파수단으로 활용하여 파급력있는 전파상품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미디어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모바일을 우선으로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의 주요 뉴스스테이션과 중점 뉴스사이트 등 주류 미디어모바일 기기를 구축하여 전파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사이버공간에서 문화육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인터넷 문화건설을 선도하고, 뉴스사이트, 비즈니스플랫폼 등이 힘을모아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네티즌들과 사회각계에 전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당의 역사를 학습,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혁명, 건설, 개혁 등 역사의 부분에서 이룩한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업적을 전파하며, 당과 인민의 노력으로 이룩된 위대한 정신을 드높이고 역사 허무주의에 반대하는 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또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활력을 복돋우고, 많은 네티즌들이 좋아할만한 특색있는 브랜드나 이벤트를 구상하여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와 혁신을 촉진하도록 한다. 더불어 양질의 인터넷 문화 콘텐츠를 다량으로 공급하여, 웹사이트, 공공계정, 클라이언트 등의 플랫폼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터넷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한다. 인터넷 공공문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중대문화시설과 국유문화자원의 디지털화를 이루어 인터넷 공공문화 서비스의 공급에 보편성과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견>은 인터넷 공간에서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 도덕성을 강화하여 노동의 모범, 시대의 모범, 모범적 인물, 우수시민, 우수자원봉사자 등 선행모범사례를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선행과 덕행을 홍양하는 인터넷 문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히 신용을 지키는 가치이념을 제창하는 등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의 내부 신뢰규범 및 시스템보안을 지킬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에의해 인터넷망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공익사업을 펼쳐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문명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넷 공익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동규범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부합하는 인터넷 윤리와 행동 규칙을 정하고, 각 지역의 행정부서들에 문명창조 작업을 독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터넷 문명 준칙을 제정하고, 인터넷 용어를 규범화하며, 인터넷 문명 건설 요구를 업계의 관리규범과 통합시킬 것을 권장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소양과 정부, 학교, 가정, 사회가 결합된 인터넷 소양 교육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안전대비 의식능력을 향상시켜, 청소년들이 원하는 우수한 인터넷 문화 콘텐츠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법에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따돌림을 단호히 단속하고 제지하며,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더불어 인터넷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의 규칙, 이용자 협의 구축을 강화하며, 네트워크 플랫폼의 국가 안보의식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인터넷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제성과 사회적 효율을 모두 중시하는 가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업계조직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각 인터넷 사회조직의 인터넷 문명건설의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인터넷 공간 생태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문명 계도를 진행하고, 문명의식을 대폭 강화하며, 중요한 전통명절과 기념일을 인터넷에서 조직하여 이벤트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그릇된 풍조를 배격하고 문명의 기풍을 고취시키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터넷상의 콘텐츠 생산, 정보 발표 및 전파 프로세스를 더욱 규범화하고, 공공계정의 단계별 분류관리를 추진하는 등 중국 인터넷 연합의 유언비어 척결 플랫폼을 토대로 전국 인터넷 유언비어 척결 연동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클린’, ‘깨끗한 인터넷’ 등의 시리즈 캠페인을 통해 네트워크의 위법,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공공계정, 제품판매를 위한 라이브방송, 지식퀴즈 등 영역의 문명에 반하는 문제들을 처리하여 인터넷에서의 유언비어나 허위정보 유포를 단속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신고나 제보 매커니즘을 완비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사이버 공간내에서 공유를 촉진하도록 한다. 인터넷 공간을 법에따라 관리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인터넷관련 입법 및 사법처리에 일관되게 함으로써 인터넷 질서를 지키고 문명인터넷 기풍을 확립하는데 법률이 일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촉진법, 방송법, 사이버범죄방지법, 미성년자 사이버보호조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등의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인터넷관련법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법률의식과 법치 소양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인터넷공간의 문명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중적 정신문명 창설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신세대 문명실천센터와 현금 미디어 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네티즌의 인터넷 문명소양실천 교육기지를 건설하고, 저변에서 인터넷 문명건설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군과 민이 공동으로 사이버 문명건설 활동을 전개하여 군정, 군민 단결을 촉진하도록 한다. 중국의 인터넷 문명이념을 홍보하는 플랫폼과 교류플랫폼, 성과전시 플랫폼과 국제 인터넷 문명의 상호감시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중국 네티즌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실시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법을 준수하고 문명적으로 서로 이성적으로 소통할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인터넷문명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환경을 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견>은 각 지역의 부처들은 인터넷 문명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위원회 통합지도, 당정 통합, 관계부처의 책임, 모든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지도체제와 업무 매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각급 인터넷 통신과 문명관련 사무소를 총괄 관리하고, 인터넷 문명건설에 대한 조직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네티즌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플랫폼을 폭넓게 구축하며, 특색있는 활동을 펼쳐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문명건설의 대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터넷 문명건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정려해야 한다. 또한 업무 규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내용형식과 수단방법, 채널 등의 혁신을 계속 추진하며 인터넷 문명건설에 특화된 유효한 흡인력과 전파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제목	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
게재일	2021-09-23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분류	종합

중공중앙, 국무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 발표

최근 중공중앙,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을 배부하고 각 지역, 각 부처가 실제 상황에 맞추어 관철 집행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종합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리고 지식재산권제도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본 요강을 제정한다.

가. 전략 배경

당의 18대 회의 이후 시진핑 핵심의 당중앙 지도하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식재산권 법규제도 체계가 점차 완비되면서 핵심 특허, 유명 브랜드, 명품 저작권, 우량 식물 신품종, 양질의 지리 마크, 고수준 집적회로배치 설계 등 높은 가치의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대폭 증가했다. 상업 비밀 보호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간 문예의 이용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 활용 효익과 국제 영향력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리고 전사회적인 지식재산권 의식이 대폭 향상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이 강한 시장주체가 대거 등장하면서 중국 특색이 있는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개척했고 혁신형 국가 건설과 사회 전면 건설 목표 실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하여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는 필연적 조건이고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이며 지식재산권은 국가발전의 전략적 자원과 국제 경쟁력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을 실행하고 신기술, 신경제, 신트렌드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가 제시한 도전에 반응하면서 지식재산권 개혁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와 시장, 국내와 국제,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양과 질, 수요와 공급의 연동 관계를 잘 조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의 종합 실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의 혁신 활력을 대대적으로 자극하여 중국 특색의,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한다. 이는 국가 핵심 경쟁력 향상, 고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그리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질적, 효율적, 공평, 지속가능, 안전한 발전 실현, 국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도하는 것을 고수하고 당의 19대와 19기 2중, 3중, 4중, 5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집행하고 ‘5위1체(五位一体)’ 총체적 배치¹⁶⁴⁾의 통합 추진과 ‘4개 전면(四个全面)’¹⁶⁵⁾ 전략적 배치의 조율 추진을 중심으로 안정 속에 발전을 꾀하는 사업의 총체적 기조를 고수한다. 그리고 질적 발전 추진을 주제로,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주요 방향으로, 개혁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국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근본 목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국가 경제 경쟁력을 드높이는 가장 큰 자극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 관리와 서비스의 전체 사슬을 연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협력을 강도 높게 강화하고 제도가 완비되고, 보호가 엄격하고, 운영이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편리하고, 문화가 자발적이고, 개방 성과를 윈윈하는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고 혁신형 국가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한다.

2) 업무 원칙

- 법치 보장, 엄격한 보호. 전면적인 의법치국 기본 방책을 이행하고 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와 권리인의 합법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 개혁에 의한 질적 선도.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을 심화하고 더 완비된 요소 시장화 배치체제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제도의 격려와 혁신의 기본 보장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질적 발전을 위해 끊이지 않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 중점 취합, 통합 조율. 전략적 선도, 통합 계획을 고수하고 중점 분야와 중대한 수요를 부각시키며 지식재산권과 경제, 기술,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 과학적 관리, 협력 윈윈.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고수하고 글로벌 시야로 지식재산권 개혁 발전을 계획 및 추진하며 개방과 포용, 균형과 보편적 혜택의 지식재산권 국제 규칙 구축을 추진하여 혁신 창조가 각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한다.

3) 발전 목표

2025년이 되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엄격하고 사회 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동시에 유지되며 지식재산권 시장가치는 한층 더 두드러진다. 브랜드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어 특허 집약형 산업의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도달하고 저작권 산업 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은 3500억 위안이고 인구 만명당 높은 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12건(상기 지표는 모두 예상 지표)에 이른다.

2035년이 되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 경쟁력은 세계 선두 대열에 합류하고 지식재산권제도 시스템이 완비되며 지식재산권이 혁신과 창업의 눈부신 발전을 촉진하고 전사회의 지식재산권 문화 자각이 형성된다. 전방위적, 다차원으로 지식재산권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는 국제 협력 구도가 형성되고 중국 특색,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모습을 드러낸다.

164) ‘5위1체(五位一体)’총체적 배치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과 생태문명건설 5위1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이다

165) ‘4개 전면(四个全面)’이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뜻한다

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지식재산권제도 건설

- 4) 종류가 완비하고, 구조가 엄밀하고, 내외적으로 조율되는 법적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기초 법률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 법률법규 간의 연결을 잘하여 법률법규의 적용성과 통일성을 강화한다. 실제 상황을 토대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과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를 즉시 개정하고 지리적 표시, 외관디자인 등 전문 법률법규 제정을 모색하고 전문 보호와 상표 보호를 상호 조율하는 통합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정착시키고 집적회로배치 설계 법규를 보완한다. 상업비밀 보호 강화 분야의 법률법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제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반독점, 반부당경쟁 등 분야의 입법을 보완한다. 과학기술 진보법을 개정한다. 유관 소송법의 개정 및 관철 집행과 결부시켜 지식재산권 심판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 절차 법률제도 정착을 검토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신분야 산업종의 지식재산권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 정세 수요에 맞추어 법에 의해 적시에 지식재산권 법률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 해석을 추진하고 적절한 시기에 객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기준을 높이고 권리 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설립 및 실행하면서 손해 배상 강도를 높인다.
- 5) 직책 통합, 과학적 규범, 서비스가 우수한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관리체제 매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중앙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의 거시적 관리, 지역 조율과 해외 관련 사무 통합 계획 등 분야에서의 직권을 강화하고 기관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관리 효능을 높인다. 국가의 지역 조율 발전전략 중심으로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 및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강시(强市) 건설을 심화하여 지역 지식재산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최고의 특허 상표 심사기관 건설 사업을 실시하고 특허 상표 검열관제도를 세우고 특허 상표 심사 협업 매커니즘을 최적화하여 심사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정부 규제, 사회 감독, 업계 자율, 기관 자치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규제체계를 구축한다.
- 6)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을 평가하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엄격히 보호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지식재산권 권익 분배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식 가치 증가를 방향으로 하는 분배제도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가치 실현을 촉진한다. 보호 강화를 주도하는 특허 상표 심사 정책을 보완한다. 저작권 등록제도, 온라인 보호와 거래 규칙을 만든다. 지식재산권 심사 등록등기 정책 조정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심사 동태 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합법성과 공평한 경쟁의 심사제도를 정착시킨다. 지식재산권 공공정책 평가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 7) 즉시 호응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신흥분야와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 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정착시킨다. 인터넷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완비를 모색한다.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규칙 구축을 검토한다. 지식재산권 소스 오픈과 법률체계를 보완한다. 알고리즘, 비즈니스 방법, 인공지능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의 보완을 검토한다. 유전자원, 전통 지식, 민간 문예 등의 취득 및 이익 공유제도 설립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재의 수집 정리와 전환 이용을 강화한다.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와 현대 지식재산권제도의 효과적인 연결을 추진하고 중의약 지식재산권 종합 보호체계를 한층 더 보충하고 중의약 특허 특별 심사와 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의약의 전승 및 혁신 발전을 촉진한다.

라. 세계 최고 사업 환경을 지탱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 8) 공정하고 효율적, 관할이 과학적, 권리 분계선 명확, 시스템이 완비된 사법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고차원 지식재산권 심판기관 건설 공정을 실시하여 심판 기반, 체제 매커니즘과 스마트 법원 건설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심판 조직을 구축하고 심판기관 배치를 최적화하며 상소 심리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 ‘3합1(三合一)’ 심판 매커니즘 개혁을 심층 진행하고 사건 심리 전문화, 관할 집중화와 절차 집약화의 심판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판사의 전문 육성과 직업화 선발을 강화하고 기술 조사관 팀 구축을 강화하여 사건 심판의 질과 효율을 보장한다. 지역간 지식재산권 원격 소송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사법 재판 표준과 법률 적용을 통합하고 재판 규칙을 보완한다. 형사 단속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업무제도를 보완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 해석을 수정 및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입안 추소 표준을 함께 제정한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검찰 감독 매커니즘 구축을 강화하고 양형 건의 지도와 항소 지도를 강화한다.
- 9) 편리&고효율, 엄격&공정, 공개&투명한 행정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유관 행정기관의 조사권, 처벌권과 강제권을 법에 의해 과학적으로 배치 및 행사한다. 일괄 조율의 법 집행 표준, 증거 규칙과 사례 지도제도를 구축한다. 행정 법 집행 인력의 전문화, 직업화 수준을 대대적으로 향상시키고 행정 보호기술 조사관제도 설립을 모색한다. 지식재산권 행정 법 집행 감독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법 집행 감독관리의 현대화, 지능화 수준을 끌어올린다.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의 검토 감정 업무체계를 구축 및 완비한다. 특히 침해 분쟁 행정 재결제도 역할을 발휘하여 행정 재결 집행 강도를 확대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정 조율 협의 사법 확인제도를 모색한다. 지역간, 부처 간의 법 집행 보호 협업 매커니즘을 보완한다. 대외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조사 매커니즘과 자유무역 시험구역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의 세관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법 집행 협력을 추진한다.
- 10) 통합 지도, 연결 원활, 신속 효율의 협력 보호 구도를 구축한다. 당 중앙의 집중 통합 지도를 고수하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직책 이행, 법 집행 부처의 엄격한 규제, 사법기관의 공정한 사법, 시장주체 규범화 관리, 업계단체의 자율자치, 사회대중의 성실한 법 준수, 이러한 지식재산권 협업 보호를 실현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 사업을 실행한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직책 권한과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 연결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보호에 힘을 합친다. 지식재산권 중재, 합의, 공증, 감정과 권리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 및 보완하고 관련 제도 설립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신용 규제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신용 규제 매커니즘과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에 대해 징계를 실시한다. 저작권 단체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저작권 단체관리기관에 대한 지원과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네트워크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조기 경보와 권익보호 지원 정보 플랫폼을 정착시킨다.

마. 혁신 발전을 격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운영 매커니즘 구축

- 11) 기업 주체, 시장 주도의 질적 창조 매커니즘을 완비한다. 질과 가치 표준의 지식재산권 심사 평가 매커니즘을 개혁 및 완비한다. 시장주체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조합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이 강한 세계 일류 기업을 대거 육성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적 추진 사업 시행을 심화한다. 국가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최적화한다. 생물 육종 선도 기술과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이 있는 우량 식물 신품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라이선스 품종의 질을 높인다.
- 12)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하며 가치가 충분히 구현되는 운영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특허 집약형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특허 집약형산업 조사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특허 네비게이션의 지역 발전, 정부 투자의 중대한 경제과학 사업에서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특허 네비게이션을 전통 우위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미래 산업 발전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유 지식재산권 귀속과 권익 분배 매커니즘을 개혁하고 연구기관과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처분 자주권을 확대한다. 재정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형성 성명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지식재산권 거래가격 통계 발표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상표 브랜드 구축을 추진하고 유명 상표 보호를 강화하며 좋은 전통 브랜드와 토종 브랜드를 전승하여 발전시키고 국제 영향력이 있는 유명 상표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단체 상표, 증명 상표 제도의 역할을 발휘하고 특색이 선명하고, 경쟁력이 강하고, 시장 신용이 좋은 산업 클러스터 브랜드와 지역 브랜드를 만든다. 지리적 표시와 특색산업 발전, 생태문명 건설, 역사문화 전승 및 농촌 진흥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지리적 표시 브랜드의 영향력과 상품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지리적 표시 농산품 보호 사업을 실행한다. 지식재산권 테스트 베드 시범 업무를 심층 진행하고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대학교, 연구기관이 전문화된 지식재산권 이전 전환 기관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 13) 규범과 질서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화 운영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의 대행, 법률, 정보, 컨설팅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자산 평가, 거래, 전환, 위탁 관리, 투융자 등 부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운영체계 구축 업무를 실행하고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허브 플랫폼을 만들고 일부 산업을 집결시키고 지역을 견인하는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제화, 시장화, 전문화의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을 육성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등급 분류 평가를 실시한다. 무형자산 평가제도를 보완하고 격려와 감독관리가 상호 조율되는 관리 매커니즘을 형성한다. 지식재산권 금융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 담보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각종 지식재산권 하이브리드 담보와 보험 진행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융자방식의 혁신을 모색한다. 저작권 거래와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작품의 자산 평가, 등록 인증, 담보 융자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가 저작권 혁신 발전 건설의 시범 업무를 진행한다. 전국 저작권전시회 라이선스거래체계를 만든다.

바. 국민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체계 구축

- 14) 전면적인 커버, 규범화된 서비스, 고효율의 스마트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지능화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고 각종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개방의 질과 양을 확대하고 경제, 과학기술,

금융, 법률 등 정보와의 공유 융합을 실현한다. ‘인터넷+’ 정부(政务) 서비스를 심층 추진하고 신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지능화 특허 상표의 심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절차를 최적화하며 지식재산권 정부 서비스의 ‘1망통관(一网通办)’¹⁶⁶⁾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한다. 기간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기술과 혁신 지원센터 등 서비스 장소를 확대하고 정부 유도, 다양한 참여, 상호 소통 및 공유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공공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국제 전시회 지식재산권 서비스 매커니즘을 완비시킨다.

- 15)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온라인화 구축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사항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 사항 리스트와 서비스 표준을 제정한다. 등급별, 종류별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관 건설을 통합 추진하고 고차원의 전문화 서비스 기관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정보기술, 종합 운영 온오프라인 방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인다. 소통 루트를 원활하게 하여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사회 만족도를 높인다.
- 16) 데이터 표준, 자원 통합, 이용 고효율의 정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데이터 표준 제정과 데이터 자원 공급을 강화하고 시장화, 사회화의 정보 가공과 서비스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데이터 거래시장을 규범화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고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전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데이터 자원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실현한다.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와 시장화 서비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데이터 교환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능력과 수준을 끌어올린다.

사. 지식재산권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인문사회환경 조성

- 17) 지식 존중, 혁신 지향, 신의성실 및 법 준수, 공평 경쟁의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을 만든다. 교육 유도, 실천 양성과 제도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 습관을 키우고 스스로 권리침해 및 위조 행위를 보이콧한다. 혁신 문화를 권장하고 신의성실 이념과 계약 정신을 선양하고 단호한 혁신과 성실한 경영을 하는 대표 기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존중 및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공평 경쟁의 문화 분위기를 강화하고 신시대 지식재산권의 문화 자각과 문화 자신감을 육성하고 지식재산권 문화와 법치 문화, 혁신문화와 국민 도덕 함양의 융합 공생, 상호 촉진을 추진한다.
- 18) 내용이 참신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융합 발전하는 지식재산권 문화 전파 매트릭스를 구축한다. 전통 미디어와 신형 미디어 융합 발전의 지식재산권 문화 전파 플랫폼을 만들고 소셜 미디어, 숏폼 영상, 앱 등 뉴미디어 루트를 확대한다. 콘텐츠, 형식과 수단을 혁신하고 대외적인 지식재산권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아우르는 옴니미디어 전파 구도를 형성하고 지식재산권 홍보 브랜드를 구축한다. 국가 지식재산권 하이엔드 싱크탱크와 특색이 있는 싱크탱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론과 정책 연구를 심화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강화한다.

166) 1망통관(一网通办): 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민원 업무를 해결한다는 뜻.

- 19) 더 개방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활력이 있는 지식재산권 인재 발전 환경을 만든다.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평가 장려, 유동 배치 매커니즘을 완비시킨다. 학위 수권(授權) 자주(自主) 심사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1급 학과 독자 설립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전공 학위 설치에 대한 논증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육성 계획을 실시한다. 관련 대학교를 토대로 국가 지식재산권 인재양성기지를 배치하고 관련 대학교의 2급 지식재산권 대학 건설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관리기관의 공직 변호사팀 구축을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변호사 육성과 교육 업무를 잘 진행하고 지식재산권 국제화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명품 수업을 개발한다. 간부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한다.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을 한층 더 추진하여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8.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에 심층 참여

- 20) 지식재산권 글로벌 관리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 대화 교류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및 관련 글로벌 무역, 글로벌 투자 등 국제 규칙과 표준을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경제무역과 관련된 다자간 지식재산권 대외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해외 리스크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각국 지식재산권 심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사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 최적지를 만든다. 지식재산권 중재의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린다. 고차원 외국 기관이 중국에 진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 21)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조율 연동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다자간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고 유엔, WTO 등 국제 시스템과 다자간 매커니즘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일대일로’ 공동 구축 국가 및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고차원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정보, 데이터 자원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를 공동 구축하는 국가와 지역에 특허 검색, 심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외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비정부기관의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협력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해외 특허 배치 루트를 확장한다. 특허와 국제 표준 제정의 효과적인 결합을 추진한다. 중국 상표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리적 표시의 상호 인증, 상호 보호를 추진하며 중국 상표 브랜드와 지리적 표시 상품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한다.

9. 구성과 보장

- 22) 리더십을 강화한다. 당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사업에 대한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의 부처간 연석 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괄 지도, 부처간 협업, 상하 연동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본 요강을 이행하는 연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각 지역과 각 부처는 매우 중요시해야 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임무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본 요강 실행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중점 항목 계획 및 관련 정책과 상호 조율하는 업무 매커니즘을 정착시키고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관련 임무 조치를 통합 배치하고 하나씩 잘 이행한다.

- 23) 조건 보장을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 투입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본 요강 실행 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과 세금, 투융자 등 관련 정책을 종합 이용하고 다원화, 다루트의 자금 투입체계를 형성하며 중점을 부각시키고 구조를 최적화하여 임무 이행을 보장한다.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표창한다.
- 24) 심사 평가를 강화한다.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유관 부처와 함께 본 요강 실행 동향 조정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연간 모니터링과 정기 평가 총결산을 진행하고 업무 임무 이행 상황에 대해 독촉과 검사를 진행하여 관련 업무 평가에 포함시키고 중요한 상황은 즉시 절차에 따라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한다. 당정(党政)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층에 대해 평가할 때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실적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심사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를 감독 검사 평가 범위에 포함시킨다.

63. 국가 문화 수출 기지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조치 관련 통지

제목	关于支持国家文化出口基地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
제재일	2021-10-12
출처	상무부 등 17 개 부처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국가 문화 수출 기지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조치 관련 통지

국가 문화 수출 기지(이하 기지로 약칭) 건설은 문화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대 문화 산업의 체계를 정비하며 대외 문화 무역의 질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자,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2018년 상무부, 중앙선전부, 문화관광부, 광전총국이 1 차 기지를 지정한 이래, 각 기지는 관련 부서의 뒷받침 하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혁신하며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 동력이 끊임없이 더해지고 집적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결집시켜야 하는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시진핑 총서기의 국제 전파력 강화에 관한 주요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기지가 대외 문화 무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선도하고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의 방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업무 조치를 발표한다.

1. 공동 건설 체제 완비

- (1) 기지 건설에 관한 정기적인 협의 체제를 수립하고 기지의 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며, 자본과 기술 및 인재 등이 기지로 모이도록 유도한다. 대외 문화 무역 업무 연결 체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며, 기지가 제도적 메커니즘, 플랫폼 제반 환경, 공공 서비스, 무역 방식 및 규제 조치에 대한 혁신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시장 주체 육성에 속도를 내고, 활성화 시스템을 보완하며 통계 제도를 완비하여 대외 문화 무역 발전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 (2) 자유무역시험구(自由贸易试验区)와 중첩되어 선정된 기지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지를 지도하고, 문화 분야의 개혁과 혁신에 힘을 기울여 개혁·개방의 시험대이자 선두 주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한다.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킨 기지의 경우,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방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 한편, 관련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중간·사후 규제 조치를 혁신한다. 또한 성(省)급 관리 권한의 일부를 조건에 부합하는 기지에 이양하도록 지원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등 개혁 시범안을 실시한다.
- (3)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 계승·발전 프로젝트 및 문화·예술 작품 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화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시행하는 데에 기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지원한다. 또한, 기지가 무형 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과 전파에 힘쓰고 중국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변혁과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 기업과 문화 업종, 새로운 문화 소비 모델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인터넷 동영상, 디지털 출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방송 및 기타 산업을 확장하고 우수한 전통문화 상품과 문화 창작물 및 드라마, 게임 등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장려한다.
- (4) 기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문화 수출 기지의 공동 메커니즘 구축

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 수출 기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지 건설로 얻은 혁신적인 성과와 표본이 되는 경험을 공유하고,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 사안은 제때 전국으로 보급한다.

- (5) 기지를 지원해 문화 수출 중점 기업(文化出口重点企业) 명단 및 중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점 기업과의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지가 위치한 성(또는 구, 시)의 관련 부서와 기업 간의 연락 채널을 활성화하여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적시에 협조해 해결하도록 한다. 기지 내 기업이 국가 문화 수출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에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한다.

2. 재정 지원 정책 개선

- (6) 관련 재정 자금 정책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기지가 공공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7) 기지가 기존의 정부 투자 기금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시장화 방식¹⁶⁷⁾을 이용해 조건에 맞는 문화 무역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 (8) 기지 내 기업이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技术先进型服务企业) 인증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 소득세¹⁶⁸⁾율을 15%로 감면해 준다.

3. 금융 서비스 최적화

- (9) 기지와 기지가 위치한 성(또는 구, 시)의 은행 등 금융 기관 간의 연락 시스템을 구축해, 기지 내 문화 수출 중점 기업 명단 및 중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사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문화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10) 금융 기관이 문화 무역 기업의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나 주문서 대출¹⁶⁹⁾ 등 산업 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나 상표, 판권을 포함한 무형자산 담보대출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금융 기관이 해외 구매상 신용 대출 등의 방식을 활용해 조건에 부합하는 문화 수출 중점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 (11) 수출신용보험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해 협력 모델을 혁신하고 보증 효율을 높이며, 보험 청구 품질을 개선하고, 문화 수출 중점 기업과 중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절한 조건을 갖춘 기지의 경우 ‘신용 보험 + 신용 담보’의 대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 강화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 규모의 문화 무역 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 (12) 기업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환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환 수입 지출 절차를 점진적으로 간소화하여 자금 결제 효율을 높인다.

4. 서비스 수준 향상

167) 시장화 방식(市场化方式): 시장의 공급과 수요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행위를 지도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나 지표로 삼는 방식

168) 기업 소득세(企业所得税): 한국의 법인세에 해당함

169) 주문서 대출(订单贷款): 핵심 기술이나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인정을 받은 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금 지불이 확실한 주문서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상품. 한국의 네트워크론과 유사함

- (13) 디지털화로 기지의 혁신과 발전을 끌어낸다. 5G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및 원격 도메인 협력 등 디지털화된 수단에 기반해, 조건이 부합하는 기지에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과정 전반과 모든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클라우드 생산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지의 문화 산업과 무역을 업그레이드한다.
- (14) 기지에 음성 및 영상 콘텐츠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나 수출 중심 판권 거래 센터 등의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가별 정책이나 시장 정보, 법률 서비스와 기술 지원, 인재 모집 및 거래 중개 등의 공공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 (15) 조건이 맞는 경우 기지 내에 세관 특수 관리 구역을 두어 문화재나 문화 예술품의 보세 창고 보관 및 전시, 매매, 문화재 감정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출입국 등록 심사 및 보세 화물 관리, 창고 물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통관 편의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거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 (16) 조건을 갖춘 기지 내 세관 특수 관리 구역은 ‘원자재 공급과 제품 판매 시장을 국외에 두는’ 디지털 콘텐츠 가공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관리 감독 모델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현상 및 프린트와 번역, 더빙, 편집, 후반 작업 등의 서비스를 하도록 장려한다.
- (17) 기지의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강화한다. 문화 명가 및 ‘4개 일비’ 인재¹⁷⁰⁾ 등의 핵심 프로젝트를 활용해 기지에서 일할 문화 무역 영역의 리더와 전문가를 양성한다. 기지와 고등 교육 기관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외 문화 무역 인재의 양성 및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기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화 크리에이티브, 국제 마케팅 등 분야의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지에서 일하는 해외 인재 및 가족에게는 비자 발급이나 체류 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 (18) 기지에서 다양한 언어 서비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외 문화 무역 업무를 위한 고품질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 문화 할인¹⁷¹⁾ 폭을 낮추고 문화 전파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19) 지식 재산권 서비스를 최적화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의 창출과 운용 및 관리, 보호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지 내의 문화 기업이 지식 재산권 증권화¹⁷²⁾ 시범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문화 영역 지식 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진행 및 연구하고, 기업의 해외 지식 재산권 권리 수호 업무를 지원한다.

5. 국제 협력 강화

- (20) 기지 건설을 문화 영역의 다자간 교류 협력 메커니즘 및 서비스 무역 국제 협력 메커니즘에 포함하고, 자유 무역 협정이나 정부 간에 체결한 협력 각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대외 문화 무역 발전 공간을 확장하며, 기업 간의 실무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170) 문화 명가 및 ‘4개 일비’ 인재(文化名家暨“四个一批”人才): 중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급 인재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로, 리더급의 인물 및 다양한 인재를 이룬, 뉴스, 출판, 문화 예술 등 4개 방면에 걸쳐 발굴함

171) 문화 할인(cultural discount):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등의 차이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172) 지식 재산권 증권화(知识产权证券化): 기업에서 소유한 지식 재산권 및 파생 권리를 매개체가 되는 기구를 통해 가치 평가를 하여 유통할 수 있는 증권으로 발행하고, 주식처럼 활용하는 것

- (21) 기지에 해외 문화 무역 추진 플랫폼 구축을 장려한다. 기업이 해외에 문화 투자 협력을 진행하고,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사 건설을 진행해 해외에 양질의 문화 자산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 (22) 기지가 중국의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나 중국 선전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 중국 국제 저작권 박람회 등의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다양한 문화 무역 마케팅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한다. 기업을 조직해 중요한 국제 문화 축제에 참가하거나, 전시회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전시 수준을 높이고, ‘중국 공동 부스’ 나 ‘중국 섹션’ 등을 기획해 활동 무대를 넓혀 문화 무역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23) 기지가 해외의 뉴 미디어 플랫폼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새로운 채널을 확장하도록 지원한다. 독점 채널이나 독점 코너를 개설하고, 방송 횟수에 따른 수익 분배나 기본금 분배 등의 방식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조건에 맞는 기업은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뉴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해 고품질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상무부, 중앙선전부는 문화여유부, 광전총국과 함께 기지 배치 계획이나 인증 관리 및 정책 협조 등을 총괄 기획하며, 정기적으로 기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지에 가변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각 관련 부서는 맡은 직무에 따라 기지 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지가 위치한 각급의 정부는 자주성과 적극성을 더욱 발휘해 재정이나 금융, 인재 등의 방면에서 정책의 혁신과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 각 기지는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시범 진행하여 시범 시행의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내도록 한다. 기지가 발전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나 상황은 적시에 상무부와 중앙선전부, 문화여유부 및 광전총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상무부 중앙선전부 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문화여유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광전총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이민국 문화재국 외환관리국 지식재산권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021년 10월 12일

64.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의견 수렴안)

제목	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
제재일	2021-11-14
출처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과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등 법률의 데이터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실행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보안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우리 부처에서는 국무원의 2021년 입법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의견 수렴안)>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회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 일반인은 다음의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1. 이메일로 의견을 발송한다. 주소: shujuju@cac.gov.cn
2. 우편으로 의견을 발송한다.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처궁창거리 11호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네트워크데이터관리국. 우편번호: 100044
봉투 겉면에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의견 수렴’ 이라고 명기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까지이다.

첨부 파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의견 수렴안)>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2021년 11월 14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

(의견 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域內)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거나, 네트워크 데이터의 보안을 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외(域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의 개인 또는 단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 조례를 적용한다.

- (1)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국 역내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 (2) 중국 역내의 개인이나 단체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 (3) 중국 역내의 중요 데이터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 (4) 법률·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일반인이 개인이나 가정일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데이터의 개발·활용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 보장을 두루 중시하여, 데이터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의 합법적이며 질서 있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데이터를 법에 따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한다.

제4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활용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 상품, 서비스 혁신과 인재 배양을 지원한다.

국가는 국가 기관, 행정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 기관, 관련 전문 기관과 데이터 개발·활용 및 데이터 보안 협력을 수행하고 데이터 보안 홍보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제5조 국가는 데이터 등급 분류 보호 제도를 수립한다.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 혹은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 중요 데이터, 핵심 데이터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다른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국가는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핵심 데이터는 철저히 보호한다.

각 지역과 부서는 국가의 데이터 등급 분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해당 부서 및 관련 산업, 영역의 데이터에 등급 분류 관리를 진행한다.

제6조 데이터 처리자는 처리하는 데이터의 보안을 책임지고 데이터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수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와 기술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고 데이터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촉진하며, 법에 따라 공공 데이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국가는 데이터 거래 관리 제도를 구축·보완하고, 데이터 거래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표준을 명확히 세워 데이터 유통 거래 행위를 표준화해, 데이터가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유통되도록 보장한다.

제2장 일반 규정

제8조 모든 개인과 단체는 데이터 처리를 진행할 때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

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국가의 안보와 명예, 이익에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 기밀 및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2) 타인의 명예권과 사생활권, 저작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
- (3) 절취(竊取)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 (4) 불법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5) 불법 정보를 제작하거나 배포, 복제, 유포하는 행위
- (6) 법률이나 행정 법규로 금지된 기타 행위

타인이 위 항에 제시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툴, 프로그램, 광고·홍보,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데이터 처리자는 백업, 암호화, 액세스 제어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데이터의 유출이나 절취, 변조, 훼손, 유실, 불법 사용 등을 막아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불법 범죄 활동이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예방해, 데이터의 완전성과 기밀성, 가용성을 지켜야 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요구에 따라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환경 등의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3급 이상의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와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¹⁷³⁾의 보안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핵심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유관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비밀번호를 사용해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제10조 데이터 처리자는 사용 중이거나 제공 중인 네트워크 상품과 서비스에서 보안상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등의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비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 대응 시스템을 발동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 사고가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준 경우, 데이터 처리 관리자는 3영업일 이내에 보안 사고와 위험 상황, 피해 결과, 실시한 시정 조치 등을 전화나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방식의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공고를 올려 통지하되,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사안은 그 규정을 따른다. 보안 사고가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규정에 따라公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 또는 1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노출,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데이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보안 사고 발생 8시간 이내에 직할구가 설치된 시¹⁷⁴⁾급(級) 인터넷정보부처와 관련

173)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 당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뉴스 사이트 등의 웹사이트나 통신, 결제, 구매, 검색,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또는 공업 제어 시스템, 대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등 통신, 정보, 에너지, 교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중요 산업의 운영을 돕는 기반 시스템을 가리킴

주무 부처에 사고 데이터 수량과 유형,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조치 등을 포함한 보안 사고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2) 사고 처리 완료 후 5영업일 내에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 인터넷정보부처와 관련 주무 부처에 사건의 원인, 피해 결과, 책임 처리, 개선 조치 등이 담긴 조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데이터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공유, 거래, 위탁 처리할 경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유형, 방식, 범위, 보유 기간, 보유 위치를 각 개인에게 알리고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서 개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거나, 익명화 처리를 거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데이터 수령 측과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범위, 처리 방식, 데이터 보호 조치 등을 약정하고, 계약 등의 형식으로 양측의 데이터 보안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데이터 수령 측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 (3) 개인 동의 기록 및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로그 기록을 남겨 두고, 중요 데이터의 공유·거래·위탁 처리 승인 기록 및 로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데이터 수령 측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 정보와 주요 데이터를 약정한 목적이나 범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데이터 처리자는 다음의 활동을 진행할 때,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안전 심사를 해야 한다.

- (1)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 공공 이익 등과 관련한 데이터 자원을 대량 수집·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합병·재편·분할을 하여,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2)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가 국외에서 상장한 경우
 - (3) 데이터 처리자가 홍콩에서 상장하였으며,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4) 기타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
- 대형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국외에 본사 또는 운영 센터,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할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와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데이터 처리자가 합병·재편·분할 등을 한 경우, 데이터 수령 측은 데이터 보안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중요 데이터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관련된 경우에는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의 주무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데이터 처리자가 해산, 파산 등을 한 경우,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의 주무 부처에 보고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 인터넷정보 부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처리자는 다른 경로로 취득한 데이터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보안 의무

174) 직할구가 설치된 시(设区的市): 직할시 이외의 시는 ‘직할구(区)가 설치된 시’와 ‘직할구(区)가 설치되지 않은 시’로 나뉜다. 직할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는 4곳뿐으로, 시 대부분은 직할구가 설치되어 있음

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국가 기관은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보완해, 데이터 보안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데이터 처리자는 자동화 툴을 사용해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능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동화 툴을 이용한 데이터 액세스나 데이터 수집이 법률·행정 법규 및 업계의 자율 협약을 위반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지식 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액세스 및 수집 행위를 중지하고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데이터 처리자는 간편한 데이터 보안 불만 접수 및 신고 루트를 만들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는 즉시 접수해 처리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불만 접수 및 신고용 연락처와 담당자 정보를 공개하고 매년 수리한 개인 정보 보안 불만 건수와 처리 상황, 평균 처리 시간 등을 공표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한다.

제3장 개인 정보 보호

제19조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1) 처리한 개인 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거나, 법률 또는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2) 처리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 주기와 빈도로 제한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3) 개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개인 정보 이외의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개인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은 공개적이며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모아 두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대중들이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여, 개인에게 개인 정보 처리 상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개인 정보를 명확히 밝혀, 기능별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용도, 방식, 종류, 빈도 또는 시기, 보유 위치를 목록화해 제시한 것, 개인 정보의 처리를 거절할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2) 개인 정보 보유 기간 또는 개인 정보 보유 기간 확정 방법, 만료 후 처리 방법
- (3) 개인의 개인 정보 열람·복제·수정·삭제·처리 제한·이관 및 계정 해지나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철회 루트와 방법
- (4) 상품 서비스 내에 삽입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제3자 코드, 플러그인의 명칭 및 제3자 코드, 플러그인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방식·종류·빈도 또는 시기와 그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이용자의 접근이 쉽도록 모아서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명한 것
- (5)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과 제공 목적, 방식, 종류, 데이터 수령 측의 관련 정보 등
- (6) 개인 정보 보안 위험 및 보호 조치
- (7) 개인 정보 보안 문제의 불만 접수 및 신고 루트와 해결 방법, 개인 정보 보호 담당자 연락처

제21조 개인 정보 처리 시에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데이터 처리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각 개인에게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띤 약관을 사용해 동의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 (2) 개인의 생체 인식 정보, 종교와 신앙, 특정 신분, 의료·건강, 금융 계좌, 이동 경로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처리는 개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처리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이용자 체험 업그레이드, 신상품 연구 개발 등을 이유로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5) 오도나 사기, 강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의 동의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 (6)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한데 묶거나 전체 동의 신청 등의 방식으로 개인이 개인 정보에 일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 (7) 개인의 권한 동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8) 개인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동의를 빈번히 구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처리 목적이나 처리 방식,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 동의를 새로 얻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

개인의 동의 행위의 유효성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 데이터 처리자는 입증 책임이 있다.

제22조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 (1) 개인 정보 처리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개인 정보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이용 약관 또는 개인 정보 처리 규칙에 명시한 보유 기간에 도달한 경우
- (3)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개인이 계정을 해지한 경우
- (4) 자동화 수집 기술 사용 등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나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개인 정보 삭제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업무가 복잡해서 등의 이유로 15영업일 이내에 개인 정보를 삭제하기가 명백히 곤란한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저장과 필수 보안 조치 외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개인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3조 개인이 개인 정보의 열람·복제·수정·보충·처리 제한·삭제를 합리적으로 요구할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개인이 본인의 수집된 개인 정보 유형이나 수량 등을 구조화하여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과 경로를 지원해야 하며, 시간이나 위치 등의 요소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요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2) 개인이 개인 정보를 복제·수정·보충·처리 제한·삭제하거나 승인 동의 철회 및 계정 해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간편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 (3) 개인의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복제·수정·보충·처리 제한·삭제 요청 또는 승인 동의 철회 또는 계정 해지를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처리 및 피드백을 해야 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정보 이관 요청에 대해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이 지정한 다른 데이터 처리자가 해당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여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1) 이관을 요청하는 개인 정보가 동의 또는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해 수집한 개인 정보임
- (2) 이관을 요청하는 개인 정보가 이관 요청자 본인의 정보거나 이관 요청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위배되지 않는 타인의 정보임
- (3) 요청자의 합법적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데이터 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이관받은 다른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처리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개인 정보 이전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위험 안내를 해야 한다.

이관을 요청하는 개인 정보 횟수가 합리적인 범위를 확연히 벗어난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데이터 처리자가 생체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신분 인증을 진행할 경우,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얼굴이나 걸음걸이, 지문, 홍채, 성문 등 생체 정보를 유일한 개인 신분 인증 수단으로 삼는 방식으로 개인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6조 데이터 처리자가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경우, 본 조례 제4장의 중요 데이터 처리자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중요 데이터의 보안

제27조 각 지역과 각 부서는 국가의 관련 요구 사항과 표준에 따라 해당 지역, 해당 부서 및 관련 업계와 분야의 데이터 처리자로 단체를 구성해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를 구분하고, 해당 지역과 해당 부서 및 관련 업계와 분야의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해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에 보고한다.

제28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 관리 조직은 데이터 보안 책임자의 지도하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제언한다.
- (2) 데이터 보안 계획과 데이터 보안 사고 시의 비상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3) 데이터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 요소나 사고를 적시에 처리한다.
- (4) 데이터 보안에 관한 홍보와 교육, 위협 평가, 비상 대처 훈련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시행한다.
- (5)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불만 접수와 신고를 처리한다.
- (6) 필요에 따라 인터넷정보 부처와 주무 부처, 감독 관리 부처에 데이터 보안 상태를 적시에 보고한다.

데이터 보안 책임자는 데이터 보안 전문 지식 및 관련 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데이터 처리자의 의사 결정 총 구성원이 담당해야 하며, 인터넷정보 부처와 주무 부처 및 감독 관리 부처에 데이터 보안 상태를 보고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중요 데이터를 식별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 인터넷정보 부처에 문건을 갖춰 보고해야 한다. 문건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데이터 처리자의 기본 정보와 데이터 보안 관리 기관 정보, 데이터 보안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 (2)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규모·방식·범위·유형·보유 기간·보유 위치 등 데이터 내용 자체는 제외
- (3)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와 주무 부처, 관리·감독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문건 내용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범위·유형 및 데이터 보안 조치 등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다시 문건을 갖춰 보고한다.

부처별로 맡은 책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인터넷정보 부처는 관련 부처와 문건의 정보를 공유한다.

제30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안 교육을 진행한다.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자 및 관리자는 매년 20시간 이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중요 데이터 처리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한다.

제32조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중국 역외에서 상장한 데이터 처리자는 스스로 혹은 데이터 보안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1회 데이터 보안 평가를 진행하고,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전년도 데이터 보안 평가 보고서를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 인터넷정보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연도별 데이터 보안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요 데이터의 처리 상황
 - (2) 발견된 데이터 보안 위협 요소 및 처리 조치
 - (3)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 데이터 백업·암호화·액세스 제한 등 보안 조치 및 관리 제도 시행 현황과 보안 조치의 실효성
 - (4) 국가의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 국가 표준의 이행 현황
 - (5) 발생한 데이터 보안 사고 및 처리 상황
 - (6) 중요 데이터의 공유·거래·위탁 처리·국외 제공 시의 보안 평가 현황
 - (7)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불만 신고 처리 상황
 - (8)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와 주무 부처, 관리 감독 부처가 명시한 기타 데이터 보안 상황
- 데이터 처리자는 보안 평가 보고서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처별로 맡은 책임에 따라 업무를 나누고, 인터넷정보 부처는 유관 부처와 보고서의 정보를 공유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중요 데이터의 공유·거래·위탁 관리 및 국외 제공에 관한 보안 평가를 진행할 때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1) 데이터의 공유·거래·위탁 관리·국외 제공 및 데이터 수령 측의 데이터 처리 목적·방식·범위 등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지
- (2) 데이터의 공유·거래·위탁 관리·국외 제공 시 유출·훼손·변조·남용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지
- (3) 데이터 수령 측의 신뢰도·준법성·외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중국 정부의 제재 여부 등 배경 상황과 약속에 따른 책임·책임 이행 능력 등 데이터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 (4) 데이터 수령 측과 체결한 관련 계약 중 데이터 보안에 관한 요구 사항이 데이터 수령 측의 데이터 보안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제어할 수 있는지
- (5) 데이터 처리 과정 중 관리와 기술 조치 등이 데이터의 유출·훼손 등의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평가 결과 국가의 안보나 경제 발전 및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를 공유·거래·위탁 처리하거나 국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데이터 처리자는 중요 데이터를 공유·거래·위탁 처리할 때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 주무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인터넷정보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국가 기관이나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가 구매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와 국무원의 유관 부서가 함께 주관하는 보안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데이터 해외 이전 보안 관리

제35조 데이터 처리자가 업무 등에 필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 (1)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만든 데이터 해외 이전 보안 평가를 통과한 경우
 - (2) 데이터 처리자와 데이터 수령 측 모두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의 인증을 받은 전문 기관이 진행하는 개인 정보 보호 인증을 통과한 경우
 - (3)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 규정에 따라 국외의 데이터 수령 측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 경우
 - (4)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에 제공해야 할 경우, 또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개인에게 국외에 있는 데이터 수령 측의 명칭·연락처·처리 목적·처리 방식·개인 정보의 종류 및 개인이 국외의 데이터 수령 측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 시에 이미 개인 정보 해외 이전에 관해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사항대로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제37조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수집·생산된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할 때 다음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조직한 데이터 해외 이전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1) 해외에 이전하는 데이터에 중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 (2)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자가 국외에 개인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 (3)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가 규정한 기타의 경우
-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에서 보안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이나 협정에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 데이터 처리자는 국외에 데이터를 제공할 때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인터넷정보 부처에 제출한 개인 정보 보호 영향 평가 보고서에 명시한 목적·범위·방식·데이터 유형·규모 등을 벗어난 개인 정보를 국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인터넷정보 부처의 보안 평가 시 명시한 반출 목적·범위·방식·데이터 유형·규모 등을 벗어난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 (3) 계약서 등 유효한 조치를 통해 데이터 수령 측이 쌍방이 약정한 목적·범위·방식대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해 데이터 안전을 보장한다.

다.

- (4) 데이터 해외 이전과 관련된 사용자 불만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 (5) 데이터 해외 이전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데이터 처리자는 법에 의거해 책임을 져야 한다.
 - (6) 관련 로그 기록과 데이터 해외 이전 승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7)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국무원의 유관 부서와 함께 국외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유형과 범위를 검사할 때, 데이터 처리자는 문서화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 (8)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해외 이전 불가를 결정한 경우,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중지해야 하며 유효한 대책을 세워 이미 반출된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9) 개인 정보 해외 이전 후 재이전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개인과 재이전 조건을 약정하고 데이터 수령 측이 이행해야 할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국경 내의 개인이나 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권 기관의 허가 없이 외국의 사법 기관이나 집행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국외에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자는 매년 1월 31일 전 데이터 해외 이전 보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할구가 설치된 시급의 인터넷정보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전년도 데이터 해외 이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1) 모든 데이터 수령 측의 명칭, 연락처
- (2) 해외 이전 데이터의 유형, 수량 및 목적
- (3) 데이터 해외 이전 시의 데이터 보유 위치, 보유 기간, 사용 범위와 방식
- (4) 데이터 해외 이전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 및 처리 상황
- (5) 발생한 데이터 보안 사고 및 그 처리 상황
- (6) 데이터 해외 이전 후 재 이전 현황
- (7)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명시한 데이터 해외 이전 시 보고해야 할 기타 사항

제41조 국가는 데이터 국경 이동 보안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출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이거나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의 유포를 차단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데이터 국경 이동 보안 게이트웨이를 뚫거나 우회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툴·회선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국경 이동 보안 게이트웨이를 뚫거나 우회하기 위한 인터넷 액세스·서버 호스팅·기술 지원·보급·지급 결제·앱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국내 이용자가 국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경우, 그 트래픽을 해외로 라우팅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데이터 처리자가 국제적인 데이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의 데이터 해외 이전 보안 관리 감독 요구에 따라 관련 기술 및 관리 조치를 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6장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제43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 규정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알고리즘 전략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수립 절차와 결정 절차를 적시에 공개하여, 플랫폼 규정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규정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제정하거나 이용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개정을 할 경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공식 홈페이지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산업 협회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30영업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자가 의견을 쉽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플랫폼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정·보완해야 하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로 의견 반영 상황을 공개하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사회적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

일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초과하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규정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제정하거나 이용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개정을 할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가 인정한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거치고, 성급 이상의 인터넷정보 부처와 통신 주관 부처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에 올라온 제삼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보안 관리 책임을 지고,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제삼자의 데이터 보안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며, 제삼자가 데이터 보안 관리를 강화하도록 감독하고 필요한 데이터 보안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제삼자의 제품과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용자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 우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동 통신 단말기에 사전 설치된 제삼자의 제품은 본 조의 위 2개 항을 적용한다.

제45조 국가는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기능 설계를 통해 개인 통신과 비(非) 개인 통신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개인 통신의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비 개인 통신의 정보는 공공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6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데이터나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해 다음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 (1) 플랫폼을 통해 수집·보유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래 조건이 동일한 이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정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
- (2) 플랫폼을 통해 수집·보유한 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홍보 시 최저가 판매를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3) 데이터를 이용해 이용자를 오도·기만·협박해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 (4) 플랫폼 규정·알고리즘·기술·트래픽 분배 등에 불합리한 제한이나 방해 요소를 두어, 플랫폼 내 중소기업이 플랫폼에서 생산된 업종 및 시장 데이터 등을 공정하게 획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시장의 혁신을 막는 행위

제47조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와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의 규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심사 규칙을 수립·공개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보안 심사를 시행한다.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업로드 거부, 수정 요구, 업로드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대중에게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의 메신저 서비스에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메신저 서비스 사이에 이용자 데이터 교환을 지원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가 다른 인터넷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다른 인터넷 플랫폼에 파일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9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개인 정보와 맞춤형 푸시 알림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 및 출처의 합법성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다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개인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추천에 이용하려면 개인에게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이해가 쉽고 접근과 조작이 편리하며 한 번의 클릭으로 닫을 수 있는 맞춤형 추천 옵션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정보 푸시 알림 받기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이용자 특징에 맞춤화된 푸시 매개 변수를 재설정, 수정,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3) 개인이 정보 푸시 알림 서비스로 수집·생산된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이용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국가는 인터넷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반 시설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도와 인터넷 이용자의 자발성 원칙에 기초한 개인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국가 인터넷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의 기반 시설이 제공하는 개인 신원 인증 서비스를 지지하고 우선 사용해야 한다.

제51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국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수립·운영·유지·관리에 참여하되, 공공 자원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제52조 국무원의 관련 부서가 법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나 공공 정보를 이관받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관 및 확인할 데이터와 정보의 범위·유형·용도·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법으로 정한 직무 수행의 범위 내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이관받거나 확인한 공공 데이터나 공공 정보를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유관 부서가 공공 데이터나 공공 정보를 이관받거나 확인할 때 협조해야 한다.

제53조 대형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매년 플랫폼 데이터의 보안 상황과 플랫폼 규정 및 자체 규약의 이행 상황, 개인 정보 보호 현황, 데이터 개발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54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인공지능, 가상현실, 심층 합성¹⁷⁵⁾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7장 감독 관리

제55조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는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관리·감독 업무의 총괄적인 조정을 책임진다.

공안 기관과 국가 보안 기관 등은 각자 주어진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보안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공업·통신·교통·금융·자연자원·위생 건강·교육·과학 기술 등의 주관 부처는 해당 업계와 영역의 데이터 보안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

주무 부처는 해당 업계와 분야의 데이터 보안 업무 기관 및 인력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계와 영역의 디지털 보안 계획과 디지털 보안 사고 응급 대책을 수립하고 조직한다.

주무 부처는 정기적으로 해당 업계와 영역의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를 시행하고, 데이터 처리자의 데이터 보안 의무 이행 현황을 감독 및 점검하고, 데이터 처리자가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적시에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제56조 국가는 데이터 보안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고 응급 대책과 네트워크 보안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정비한다. 또한, 데이터 보안 사고를 국가 네트워크 보안 사고 비상 대응 시스템에 포함해 데이터 보안 정보 공유와 데이터 보안 위험과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사고 응급 대응을 강화한다.

제57조 관련 주무 부처와 관리 감독 부처는 데이터 보안을 감독하고 검사할 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데이터 처리자에 소속된 담당 인력에 감독하고 검사할 항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
- (2) 데이터 보안에 관한 문건이나 기록을 열람·수집한다.
- (3)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 툴을 이용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데이터 보안 조치 운용 상황에 관한 기술 검사를 한다.
- (4) 데이터의 해외 이전 유형과 범위 등을 확인한다.
- (5) 법률과 행정 법규, 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필요한 방식을 사용한다.

관련 주무 부처와 관리 감독 부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데이터 보안을 감독·검사해야 하며, 검사 대상에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감독·검사하며 얻은 정보는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처리자는 관련 주무 부처와 관리 감독 부처의 데이터 보안 감독·검사에 협조해 조직 운영·기술 시스템·알고리즘 원리·데이터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하며 보안 관련 데이터의 액세스를 허용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175) 심층 합성(深度合成): 딥 러닝과 가상 현실 등의 기술을 이용한 고도의 합성 기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기술과 유사한 말임

제58조 국가는 데이터 보안 감사 제도를 수립한다.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감사 전문 기관에 위탁해 개인 정보 처리 시의 법률 및 행정 법규 준수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주무 부처와 관리 감독 부처는 중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되, 데이터 처리자가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제59조 국가는 관련 업계가 규정에 따라 데이터 보안 행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회원 업체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데이터 보안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개인 정보 보호 산업 단체가 설립되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1) 개인 정보 보호 불만 접수 및 신고를 받아 조사와 중재를 진행한다.
- (2) 개인에게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이 법에 따라 개인 정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개인 정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밝혀내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 (4) 개인 정보 보호 현황을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자문 및 건의를 한다.
- (5)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하거나 여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60조 데이터 처리자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는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데이터 보안을 위해를 가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업무 중지, 영업 정지, 관련 영업 허가증 취소나 사업자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1조 데이터 처리자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규정된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처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해당 주무 부처에 통보해 관련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

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관련 기업의 이사나 감사, 임원 및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를 맡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62조 데이터 처리자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규정된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부서는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중요 데이터를 위법하게 처리한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되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해당 주무 부처에 통보해 관련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 부서에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4조 데이터 처리자가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잠시 중지하는 한편,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5조 본 조례의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무 기관의 승인 없이 외국의 사법 기구 혹은 법 집행 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경고를 내리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6조 개인이나 단체가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해당 주무 부처에서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

령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 부서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린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홈페이지 폐쇄, 관련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제68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제46조, 제48조,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린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해당 주무 부처는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관련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9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제49조,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 및 경고를 내린다. 시정을 거부하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해당 주무 부처에서는 관련 업무 중지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홈페이지 폐쇄, 관련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제70조 데이터 처리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관련 처벌을 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71조 국가 기관이 본 조례에 규정된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급 기관 혹은 데이터 보안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72조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진행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 또는 공민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칙

제73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네트워크 데이터(데이터로 약칭)란 모든 종류의 전자 방식으로 된 정보의 기록을 가리킨다.

- (2) 데이터 처리 활동이란 데이터를 수집·저장·사용·가공·전송·제공·공개·삭제하는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 (3) 중요 데이터란 변조·파괴·유출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이용할 경우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중요 데이터는 다음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1. 미공개 정부 데이터, 업무 기밀, 정보 데이터와 법 집행 및 사법 관련 데이터
 2. 해외 반출 통제 데이터, 해외 반출 통제 품목과 관련된 핵심 기술, 설계안, 제조 공정 등의 데이터, 비밀번호·바이오·전자 정보·인공 지능 등의 분야에서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 성과 데이터
 3. 국가의 법률, 행정 법규, 부문별 규칙에서 보호가 필요하거나 유포를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 경제 운용 데이터나 중요 산업 업무 데이터, 통계 데이터 등
 4. 공업·통신·에너지·교통·수자원·금융·국방 과학 기술 산업·세관·세무 등 중요 산업 및 분야의 안전 생산과 운영에 관한 데이터,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나 설비 공급 체인에 관한 데이터
 5. 국가 유관 부처에서 규정한 규모나 정밀도를 갖춘 유전자·지리·광산·기상 등 인구와 건강, 자연 자원과 환경에 관련된 국가 기초 데이터
 6. 국가 기반 시설,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운영 및 보안에 관한 데이터, 국방 시설, 군사 관리 구역, 국방 과학 생산 단위 등 중요하고 민감한 구역의 지리적 위치와 보안 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
 7. 국가의 정치·국토·군사·경제·문화·사회·과학 기술·생태·자원·핵 시설·해외 이익·생물·우주·극지방·심해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 (4) 핵심 데이터란 국가의 보안이나 국민 경제의 핵심 사안, 중요한 민생이나 중대한 공공 이익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리킨다.
- (5) 데이터 처리자란 데이터 처리 활동상에서 처리 목적과 처리 방식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개인 및 단체를 가리킨다.
- (6) 공공 데이터란 국가 기관과 법률, 행정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단체가 공공 관리 직책을 이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가리킨다.
- (7) 위탁 처리란 데이터 처리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해 약정한 목적과 방식에 따라 수행된 데이터 처리 활동을 가리킨다.
- (8) 별도 동의란 데이터 처리자가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할 때, 개인 정보별로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가리키며, 여러 항목의 개인 정보나 여러 가지 처리 활동에 한 번에 동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9)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란 이용자를 위해 정보 게시·교류·거래·결제·시청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자를 가리킨다.
- (10) 대형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란 이용자 수가 5천만 명 이상이고 다량의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며, 막강한 사회동원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를 가리킨다.
- (11) 데이터 국경 이동 보안 게이트웨이란 해외 반동 웹사이트 및 유해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의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하며,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을 통제해 국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중요한 보안 기초 설비를 가리

킨다.

- (12) 공공 정보란 데이터 처리자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공공 전파성을 띤 정보를 가리킨다.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보, 공유 가능한 정보, 명확한 수신 대상이 없는 정보 등도 여기 포함한다.

제74조 국가 기밀 정보나 핵심 데이터, 암호 사용 관련 데이터의 처리 활동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75조 본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65. 온라인 문화 시장 미성년자 보호 강화 관련 의견

제목	文化和旅游部办公厅关于加强网络文化市场未成年人保护工作的意见
제재일	2021-11-29
출처	문화체육부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온라인 문화 시장 미성년자 보호 강화> 관련 의견

반시장발[2021]22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여유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문화체육광전여유국:

온라인 공연 행위¹⁷⁶⁾와 온라인 음악, 온라인 애니메이션, 온라인 무대 공연¹⁷⁷⁾, 온라인 아트 등 온라인 문화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면서 탁월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대중의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만들며 디지털 경제 발전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발전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 문화 플랫폼은 ‘어린이 킬트’ 콘텐츠나 ‘어린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영리 추구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과 문제를 드러내며 미성년자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종합적인 관리를 심도 있게 추진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특별히 제정한다.

1. 사상적, 정치적 선도를 강화

- (1) 사상 및 정치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 종사자의 교육 및 양성 시스템을 완비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자원을 총괄한다. 또한,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교육 내용을 최적화하며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종사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 온라인 문화 상품의 사회적 효익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한편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 (2) 법치 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률 상식의 보급을 책임진다’라는 법률 보급 책임제의 요구 사항을 실행에 옮겨, 온라인 문화 시장의 관리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법치 의식을 홍보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을 알리고 홍보하면서, 실제 관리 시 및 법 집행 시의 사례를 활용해 교육 및 경고 효과를 높이고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의 준법·합법 경영 의식을 실질적으로 제고한다.
- (3) 인터넷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의 주체가 미성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소양 홍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과학적이고 문화적이며 안전

176) 온라인 공연 행위(网络表演): 주로 온라인 방송이나 숏폼 동영상 등을 가리킴

177) 온라인 무대 공연(网络演出剧目): 음악회, 연극, 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하거나 녹화된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를 말함

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온라인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예방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관련 기업과 산업 단체가 서로 협력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지도한다.

2. 시장 주체의 책임 공고화

- (4) 이용자 식별을 현실적으로 강화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의 주체가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미성년 이용자 계정을 식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용자의 시청 콘텐츠 분석이나 행동 특성 연구 및 판단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성년 이용자를 식별하고 지도·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온라인 문화 서비스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게시자 계정 등록을 불허하고,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게시자 계정을 등록할 경우,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를 인증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 (5)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가 미성년자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정보 보호의 제도화 및 표준화, 법치화 수준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개인 정보 처리는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및 신뢰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 정보 처리, 정정 및 삭제에 관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이 요구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미성년자와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이버 괴롭힘 행위를 저지하고, 정보의 확산을 방지한다.
- (6) 유해한 콘텐츠를 엄격히 차단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가 온라인 콘텐츠 구성을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접근하기에 부적절한 콘텐츠의 심의 판단 기준 마련을 모색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가 불법 콘텐츠 식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공 지능 심의 시스템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여 컬트, 포르노, 불법 선교, 위험 행위 및 불량한 가치관 등이 담긴 유해 콘텐츠를 빠르고 강력하게 차단, 삭제하도록 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속한 이미지나 ‘보너스’, ‘자료’ 등 암시적인 정보, 전화번호, 위챗 아이디, QR코드 등 사적인 연락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를 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 (7) ‘어린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영리 추구를 엄금한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공연 행위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출연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미성년자와 동반해 출연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해 인기를 얻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심의를 통해 확인된 라이브 방송 채널이나 숏폼 동영상 계정, 또는 어린이 모델에게 음란한 포즈나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동작 등을 취하게 해 인기를 얻거나 상품을 판매해 영리를 취한 계정의 경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 (8) ‘현금 후원¹⁷⁸⁾’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는 수익 순위를 매기거나 허위 선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공연 행위자의 수입을 부풀려 홍보해서는 안 되며, 허위 후원이나 후원 리드 행위¹⁷⁹⁾ 등의 방식으로 미성년 이용자의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문화 시장의 주체가 법에 의거해 미성년자의 현금 충전 및 후원 권한을 규범화하고, 미성년자가 성인 계정을 빌려 충전이나 후원하는 것을 식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178) 후원(打赏): 온라인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게시자에게 보상으로 선물이나 현금을 주는 것을 지칭함. 우리나라에서는 별풍선을 쏜다거나 콘텐츠를 구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됨

179) 후원 리드 행위(带头打赏): 다른 이용자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거액의 후원을 하는 행위

축하고 최적화하는 한편, 전자 증거의 종합적인 분석 및 수집 능력을 강화해 신속한 처리와 배상을 실현한다.

- (9) 기능 설정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가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 모드’를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활용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잠금, 시간제한, 소비 제한, 사용 내용 추적 및 재설치 시 기존 정보 유지(우회 사용 방지) 등의 보호 시스템을 설정하고 도난이나 도용, 계정 대여 등의 허점을 제때 차단하도록 지도한다. ‘보호자 단독 권한 위임’ 등의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해, 보호자와 플랫폼의 공동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한다.

3. 업계 관리·감독 강화

- (10) 행정 심사 표준화에 주력한다. ‘방관복¹⁸⁰⁾’ 개혁의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새로 개정된 <영업성 인터넷 문화 사업자 심사 업무 매뉴얼(经营性互联网文化单位审批业务手册)>을 적용하여 인터넷 문화 사업자의 경영 허가 심사를 한층 더 표준화하고, 수입 인터넷 문화 상품 콘텐츠의 심사를 강화한다.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와 <온라인 공연 매니지먼트사 관리 방법(络表演经纪机构管理办法)>을 이행하여 공연 매니지먼트사의 행정 허가 심사를 표준화하고, 매니지먼트 행위 및 공연 내용 기획, 팬 안내 등의 방면에 있어 공연 매니지먼트사의 업무적 책임을 더 명확히 하여 매니저의 업무 능력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11) 규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전문가와 학자 등 ‘외부 인재’를 활용하며, 시장과 기술 발전 변화를 세심히 관찰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콘텐츠를 즉시 확인해 연구하고, 업계의 동향과 발전 추세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 문화 시장의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진행한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요소 및 표준과 척도를 제정하며, 유해 콘텐츠 식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된 규제 요건을 개선한다.
- (12) 신고 채널을 활성화한다. 중국 문화 시장 신고 플랫폼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온라인 문화 시장의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문화 시장의 주체가 실명 인증을 엄격히 시행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에 사용하는 빠른 신고 버튼을 추가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한층 명확히 하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문화 기업은 기업 외부에 신고 및 포상 시스템을 수립하고,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한 전담 신고 루트를 개설하도록 독려한다.
- (13) 순회 점검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의 사전 관리 감독과 중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문화 기업의 콘텐츠 심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며 온라인 순회 점검 및 무작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온라인 문화 시장의 법 집행을 강화해, <문화 시장의 법 집행 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의 철저한 시행 강화에 관한 통지>를 이행하고 적시에 사건을 조사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적으로 홍보해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인다. 온라인 문화 시장에서 미성년자 관련 불량 정보를 정리하고 바로잡는 특별 단속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 건수가 많은 온라인 문화 경영 업체의 경우,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 대상에 넣어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한다.

180) 방관복(放管服): 2015년 처음 제시된 행정개혁 지침으로,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관리 감독의 개혁 및 경쟁 촉진, 서비스 효율 상승 등을 골자로 함

- (14) 신용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문화 관광 시장 신용 관리 규정>의 내용 해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철저히 시행한다. 법률과 법규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온라인 문화 시장 주체 및 업계 종사자를 문화 시장의 신용 불량 주체로 정하고 신용 관리를 시행한다. 신용 불량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 관리나 공공 서비스 등의 참고 자료로 삼는다.

4. 온라인 콘텐츠 구성 최적화

- (15) 긍정적 가치 유도를 강화한다. 롤 모델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본보기로서 홍보를 강화해, 부를 자랑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행위, 사치와 향락, 추한 모습으로 동정심 유발하기 등의 불량 콘텐츠를 단호히 처벌하며, 긍정적인 에너지 전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공로를 세운 인물을 홍보하고 모범적인 영웅을 숭상하는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제작 및 보급한다. 플랫폼 기업이 긍정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업계 종사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미성년자가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유도한다.
- (16)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를 공급한다. ‘미성년자 모드’에서 콘텐츠 풀을 넓힐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연령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콘텐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등 교육 기관이나 과학 연구 기관, 문화 기관 및 박물관, 예술 기관 등과 협력해 미성년자의 연령 단계에 적합하고 미성년자의 성장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해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한다. 미성년 이용자가 지식적 가치와 탐구 가치가 있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장려한다.

5.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도록 지도

- (17) 도덕적인 평가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업계 내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온라인 문화 시장 종사자의 자율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직업윤리 위원회를 설립한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도덕적인 평가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불법,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계 종사자와 불법, 부정행위를 방임한 업계 내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서 업계가 연대해 보이콧한다.
- (18) 인터넷 방송인 관리를 표준화한다. 업계 내 관련 협회가 <인터넷 방송인 경고 및 복귀 관리 규범>에 따라 여러 플랫폼끼리 연동되는 처벌 체계를 구축해, 법률이나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담긴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를 발표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문제 인터넷 방송인’이 유해 정보를 전파하는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문화여유부 관공청
2021년 11월 29일

66. <오락 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목	文化和旅游部关于修改《娱乐场所管理办法》的决定
게재일	2022-05-13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오락 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여유부령 제10호

<‘오락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문화여유부의 결정>이 2022년 4월 27일 문화여유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후허핑(胡和平)

2022년 5월 13일

문화여유부, ‘오락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문화여유부는 ‘오락장소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1항 제(4)호를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에 규정된 학교, 유치원 주변’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오락장소와 학교, 유치원, 병원, 기관 사이의 거리 및 측정 방법은 성(省)급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규정한다.’로 수정한다.
- 제7조 제(2)호의 ‘환경 소음’을 ‘소음 공해 예방 및 퇴치’로 수정한다.
- 제9조의 ‘중외 합자 경영 또는 합작 경영’을 ‘외상(外商) 투자’로 수정한다.
-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신분 증명’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소방, 위생, 환경 보호 등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한다.
- 제15조를 ‘오락장소가 사업장을 재건, 확장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 인원 및 오락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 원 기관에 오락 영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9조를 ‘오락장소의 법정 대표자¹⁸¹⁾ 또는 주요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 질서를 유지·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안전 경영의 최고 책임자이다.’로 수정한다.
- 제24조를 ‘오락장소는 오락 영업 허가증과 미성년자 출입 금지 또는 미성년자 출입 제한 표지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표지판에는 신고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 제26조를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오락장소 신용관리 파일을 만들어 문화여유 주무부처와公安기관, 시장 감독 관리 부처, 소방 구조 기관, 소음 공해 예방 및 퇴치 감독 관리 책임 부처에서 내린 처벌 내용 및 오락장소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투자자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181) 법정 대표자(法定代表人): 법률 규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회사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통 이사장이나 사장 등이 법정 대표자를 맡는 경우가 많음

다.’로 수정한다.

9. 제28조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오락장소 영업 활동을 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조례’ 제41조에 따라 폐쇄 명령 등의 방식으로 단속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제28조에 따라 몰수한다. 심각한 신용 상실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확정하고 상응하는 신용관리 조치를 실시한다.’로 수정한다.
10.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등에 나온 ‘문화주무부처’를 ‘문화여유 주무부처’로 수정한다.
11. 제17조의 ‘공·상업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제18조의 ‘공상 행정 관리 부처’를 ‘시장 감독 관리 부처’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락장소 관리 방법’을 본 결정에 따라 개정 및 재공포한다.

오락장소 관리 방법

2013년 2월 4일 문화부령 제55호 공포.

2017년 12월 15일 ‘문화부의 일부 부처 규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文化部关于废止和修改部分部门规章的决定)’에 따라 1차 개정.

2022년 5월 13일 ‘문화여유부의 ‘오락장소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文化和旅游部关于修改〈娱乐场所管理办法〉的决定)’에 따라 2차 개정.

제1조 오락장소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락장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대중의 문화 오락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락장소 관리조례’ (이하 ‘조례’)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말하는 오락장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소비자가 스스로 가무(歌舞)나 오락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가무 오락장소는 반주, 주문형 노래 서비스 또는 댄스곡·댄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며, 놀이형 오락장소란 게임이나 놀이용 시설을 통해 게임,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를 말한다. 기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를 겸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오락장소가 민족의 우수한 문화 예술을 전파하고, 대중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오락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며 오락장소의 체인화 및 브랜드화할 것을 장려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관할 지역 내 오락장소의 영업 활동 및 오락장소가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를 관리·감독하며, 관할 지역 내 오락장소 산업 협회의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5조 오락장소 산업 협회는 관련 국가 법률 및 협회 규정에 따라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산업자율을 강화하며,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6조 오락장소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 (1) 건축물 용도 중 주택을 포함하는 건축물 내
- (2) 박물관, 도서관 및 문물 보호 단위¹⁸²⁾로 지정된 건축물 내
- (3) 주거 구역 내
- (4)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에 규정된 학교 및 유치원 주변
- (5) ‘의료 기관 관리 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 및 시행 세칙에 따라 ‘의료 기관 개업 허가증(医疗机构执业许可证)’을 취득한 병원 주변
- (6) 각급 중국 공산당 위원회와 산하 각 업무 부처, 각급 인민대표대회 기관, 각급 인민정부와 산하 각 업무 부처, 각급 정치협상회의 기관, 각급 인민법원, 검찰 기관, 각급 민주당파¹⁸³⁾ 기관 주변
- (7) 역, 공항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
- (8) 건축물 지하 1층 이하(지하 1층 제외)
- (9) 유해화학물질 창고와 인접한 지역, 유해화학물질 창고와의 거리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오락장소와 학교, 유치원, 병원, 기관과의 거리 및 측정 방법은 성(省)급 인민정부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규정한다.

제7조 법에 따라 등록된 오락장소가 영업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해당 영업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공되는 문화 상품 콘텐츠는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수입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2) 국가 치안 관리, 소방 안전, 소음 공해 예방 및 퇴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3) 법률, 법규, 규정 등에서 정한 기타 조건을 갖춘다.

제8조 성급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관할 행정 구역 내 오락장소의 이용 면적과 소비자 1인당 점유 이용 면적의 최소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법에 따라 등록된 오락장소가 영업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 신청해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외상(外商) 투자 오락장소가 영업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소재지 현급 문화여유 주무부처에 현장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법에 따라 등록된 오락장소는 영업 활동 신청 전, 심사 승인을 담당하는 문화여유 주무부처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는 행정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법에 따라 등록된 오락장소가 영업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서
- (2) 사업자 등록증
- (3) 투자자,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및 ‘조례’ 제4조, 제5조, 제53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음을 밝히는 서면 성명서
- (4) 부동산 등기 권리증, 장소를 임대해 운영하는 경우, 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 의향서도 제출
- (5)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도 및 내부 구조 평면도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소방, 위생, 환경 보호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신청을 수리한 후, 해당 오락장소의 설립 위치, 주변 환경, 면적 등

182) 문물 보호 단위(文物保护单位): 중국에서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 건축물, 사적 등의 통칭

183) 민주당파(民主党派): 중국의 공산당을 제외한 8개의 야당으로 중국민주역맹, 중국민주건국회 등이 있음

- 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설립 장소와 문화여유 주무부처 사무실의 눈에 띄는 위치에 10일간 공시하고, 법에 따라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한다.
- 제13조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가무 오락장소에서 사용하는 주문형 노래 서비스 시스템과 놀이형 오락장소에서 사용하는 게임 및 놀이 설비의 콘텐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제14조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의견 청취 결과와 문화 상품 콘텐츠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오락 영업 허가증을 발행하고, 허가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제15조 오락장소가 사업장을 재건, 확장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투자 인원과 오락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 원 기관에 오락 영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16조 가무 오락장소의 주문형 노래 시스템 신설 또는 변경, 놀이형 오락장소의 게임 및 놀이 설비 신설 또는 변경은 본 방법의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 오락 영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오락 영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오락장소 경영자는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영업 상황 보고서를 지참해 허가증을 발급한 원 기관에 방문해 허가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8조 오락 영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도록 갱신하지 않은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 원 기관은 오락 영업 허가증의 취소를 공고하고,公安 기관 및 시장 관리 감독 부서에 통지한다.
- 제19조 오락장소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 질서를 유지·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안전 경영의 최고 책임자이다.
- 제20조 가무 오락장소의 운영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방송 및 공연 프로그램은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금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2) 오락장소에서 사용하는 주문형 노래 시스템은 해외의 음악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 놀이형 오락장소의 운영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문화여유 주관부처의 콘텐츠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게임 및 놀이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2) 경품이 있는 영업 활동을 진행할 경우, 경품 목록을 소재지의 현급 문화여유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 (3) 설치한 게임기는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22조 오락장소는 문화여유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업적인 공연 활동에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오락장소가 외국인을 공연 활동에 고용하는 경우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 및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시행 세칙(营业性演出管理条例实施细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3조 오락장소는 문화 상품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사 및 순찰 제도를 확립하고, 영업장 내에서 제공하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관리할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순찰 상황은 영업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소비자가 오락장소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을 하는 경우 오락장소는 이를 제지하고, 제지가 안 될 경우 즉시 문화여유 주무부처 또는公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오락장소는 오락 영업 허가증과 미성년자 출입 금지 또는 제한 표지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표지판에는 신고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25조 오락장소는 문화여유 주무부처의 통상적인 점검 및 기술 관리 감독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제26조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오락장소 신용 관리 파일을 만들어 문화여유 주무부처와公安 기관, 시장 감독 관리 부처, 소방 구조 기관, 소음 공해 예방 및 퇴치 감독 관리 책임 부처에서 내린 처벌 내용과 오락장소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투자자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제27조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해당 부처의 직원과 오락장소의 최고 책임자 및 콘텐츠 관리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정책 법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28조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오락장소의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조례’ 제41조에 따라 폐쇄 명령 등의 방식으로 단속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제28조에 따라 몰수한다. 심각한 신용 상실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확정하고 상응하는 신용 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제29조 본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가무 오락장소는 ‘조례’ 제48조에 따라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처벌한다.
- 제30조 놀이형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1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조례’ 제48조에 따라 처벌한다.
- 제31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32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어긋난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제지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에서 ‘조례’ 제50조에 따라 처벌한다.
- 제33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 조치한다.
- 제34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여유 주무부처는 경고 조치를 하고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35조 이 방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7.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추진에 관한 의견

제목	关于推进实施国家文化数字化战略的意见
게재일	2022-05-22
출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국무원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추진에 관한 의견

공공 문화의 디지털화 추진, 문화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실시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문화 건설이 맞닥뜨린 기회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날로 커지는 인민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추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당의 19차 전국 대표 대회와 19기 전회¹⁸⁴⁾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이데올로기 영역의 지도적인 위치에 두고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한다. 또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을 바탕으로 국가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핵심 임무로 삼아, 중화 민족의 가장 기반이 되는 문화 유전자를 현재 문화와 융합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혼을 모으고 뿌리를 공고히 하여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정신적 고향을 건설한다. 국가 문화의 영향력을 신장시키고 국가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안보를 지켜 사회주의 문화 강국 건설을 추진한다.

(2) 업무 원칙

-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전 인민과 함께 나눈다. 인민을 중심으로 삼고 사회적인 효과와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 문화 디지털화는 인민을 위한 것이므로, 문화 디지털화의 성과는 인민과 공유한다.
- 공급에 힘쓰고 자원을 활성화한다. 공급 방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축적된 문화 자원을 생산 요소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 기업 및 업종, 문화 소비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속도를 낸다.
- 과학 기술이 뒷받침하고 혁신이 주도한다. 문화와 과학 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선진 기술을 집약적으로 운용하여 문화의 전파력과 흡인력, 호소력을 키운다.
-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체적인 국면에 대한 계획과 총괄적인 지도에 더욱 힘쓰고, 시행안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중점 과제를 나누고 핵심 프로젝트를 견인차로 삼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 중앙에서 주도하고 지방에서 책임진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립해, 중앙 차원에

184) 19기 전회(十九届全会): 19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가리키는 말로, 1기는 5년을 주기로 하며 일반적으로 5년 동안 7회가 개최됨

서 통일된 계획과 지도를 하고, 지방은 행정 단위별로 이를 실시한다. 현장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성을 결집한다.

(3) 주요 목표

‘14차 5개년 계획¹⁸⁵⁾’ 기간 말까지 문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시설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문화 기관의 디지털 센터를 연결하고 문화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배치를 기본적으로 완성해 공공 문화 디지털 구축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융합해 다방면으로 망라하는 문화 서비스 공급 시스템을 형성한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시스템에 속하고, 연결이 빠르며 검색 효율이 높고 서로 공유되는 통합 국가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을 2035년까지 구축하여, 문화 디지털화 생산력을 빠르게 높이고 중화 문화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며, 중화 문화 디지털화의 성과를 전 국민과 나누고, 뛰어난 혁신 성과로 국내외에 위상을 드높인다.

2. 주요 임무

(1) 중화 문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

문화 분야에서 이미 완성되었거나 구축 중인 디지털화 프로젝트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은 성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중화 문화 자원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문화 자원의 과학적인 분류 및 식별 표기의 표준화를 추진해 흩어져 있는 문화 자원 데이터를 통일된 표준 아래 연계시킨다. 사상이론, 문화 관광, 문화재, 신문·출판, 영화, 방송, 인터넷 문화, 인터넷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문화 자원 데이터를 연결하고 문자와 오디오, 동영상 등 여러 형식의 문화 자원 데이터도 연결하며, 문화 데이터 소스와 문화재 실제 원형도 연결해 중화 문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정보 및 문헌 관련 국제 표준에 의거해 문화 기관의 데이터 센터에 기저 시스템을 연결하는 서비스 엔진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배치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시스템에 속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재, 고서, 미술, 지방 연극, 민족의 민간 문예, 농경 문명 유적지 등 데이터 자원을 취합한다. 홍색 유전자¹⁸⁶⁾ 데이터베이스를 건설한다.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인 문화 주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사회주의 선진 문화와 혁명 문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전승 가치가 있는 중화 문화 요소 및 부호와 표기를 추출하고, 중화 민족 문화 유전자를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여, 위대한 중국 및 중화 민족, 중화 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동조 의식을 강화한다.

(2) 문화 디지털화의 인프라를 공고히 한다.

기존의 케이블 TV 네트워크 시설과 중국광전(中国广电)의 5G 통신망 및 상호 연동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식별 코드 등록 및 확인 서비스용 기술 시스템을 배치하고 결제 기능을 개선하며, 국가 문화 전용 네트워크 및 국가 문화 빅 데이터 시스템의 성(省) 센터 및 권역 센터를 구축해 문화 자원 데이터의 보존, 전송, 거래 및 문화 데이터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문화

185)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 중국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중 14차에 해당하는 5개년 계획을 이르는 말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함

186) 홍색 유전자(红色基因): 공산당·공산주의 역사를 교육하여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전승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유전자를 심는 것

빅 데이터 시스템 전국 센터를 계획·건설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슈퍼 컴퓨팅 능력을 갖춘 문화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패턴 식별, 기계 학습, 감성 컴퓨팅¹⁸⁷⁾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형 클러스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를 배치하는 한편, 통합 연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문화 디지털화 구축 시 적은 비용으로 넓은 범위에 활용할 수 있는 믿을만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문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사업 주체를 독려해 국가 문화 전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도록 하고, 문화 데이터 정보를 축적하는 동시에 문화 생산에 적합한 각종 응용 툴 및 소프트웨어를 집약시켜, 문화 자원 데이터와 문화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 코드 확인 및 검색 조회, 거래 매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과 지역, 시스템 및 업종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과 협력 관리를 실현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소비 플랫폼과 연계해 다양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문화 디지털 콘텐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정확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데이터 스토어’를 개설하고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거래하도록 지원한다.

문화 재산권 거래 기관은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식별 코드 확인과 블록체인, 빅 데이터 등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촉진하고, 문화 자원 데이터와 문화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 확립과 평가, 매칭, 거래, 배포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문화 자원 데이터는 법에 의거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공 문화 자원 데이터를 개발한 후 거래 시에는 사회적 공익을 최우선 순위로 뒤야 한다.

(4) 문화 기관의 디지털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문화와 관광, 문화재, 신문·출판, 영화, 방송, 인터넷 문화, 인터넷 문학과 예술 등의 영역에 속하는 각 문화 기관이 국가 문화 전용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문화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고 기존의 역량을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문화 기관에서 문화 자원 데이터를 수집, 가공, 발굴 및 서비스하는 것을 상시 업무에 포함하도록 해, 문화 산업 종사자의 지혜와 지식이 응집된 관련 데이터를 출처 추적과 정량화 및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문화 소재를 공유하고 문화 데이터의 공급 체인을 확장하여 다양한 계층과 플랫폼, 여러 주체가 문화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 평가 및 거래의 전문화, 투명화, 시장화와 문화 데이터의 해체와 재구축 및 전시에 있어 사회화, 전문화, 산업화를 촉진한다.

문화 기관이 문화 디지털 콘텐츠의 배포 채널을 확장하고, 수요와 공급의 분배 및 정확한 매칭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이용자층을 육성하고 업무 규모를 키우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문화 디지털 콘텐츠 수요에 대한 실시간 감지, 분석 및 예측을 강화하고 플랫폼화, 집적화, 맞춤형된 부가 가치 서비스 발전안을 모색한다.

(5) 디지털화한 문화 소비의 새로운 장을 연다.

전면 홀로그래피, 디지털 트윈¹⁸⁸⁾, 다국어 상호 작용, 높은 리얼리티, 시공간 초월 등 새로운 형식

187) 감성 컴퓨팅(情感计算): 컴퓨터가 인간과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성을 인식, 해석, 처리하는 기술 전반을 가리킴

의 체험 과학 기술을 집대성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합하고 온라인과 현장을 서로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문화 체험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

디지털 TV, 디지털 프로젝션 등과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의 활용 방식을 혁신하고 최첨단 문화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의 공급 능력을 높여 이용자의 시청각 체험을 강화하고 ‘거실에서의 소비’, ‘가족 소비’ 등 새로운 문화 소비 형태가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모바일 단말기 등 ‘소형 디스플레이’에 딱 맞춘 개성 있고 다양한 문화 디지털 콘텐츠로 인터넷 소비, 맞춤형 소비 등 새로운 문화 소비 형태가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소형 디스플레이’의 자유로운 상호 작용 및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기존의 공공 문화 시설을 이용한 디지털 문화 체험을 추진하고, 중화 문화 디지털화의 혁신적인 성과를 전시할 공간을 탄탄히 마련하고 확대한다. 신시대 문명 실천 센터¹⁸⁹⁾와 학교, 공공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신화 서점, 농가 서옥¹⁹⁰⁾ 등 문화 교육 시설과 관광 서비스 시설, 지역 사회, 쇼핑센터, 도시 광장, 상가, 공항이나 역 등의 공공장소를 충분히 활용해 디지털화된 문화 체험의 오프라인 체험장을 설치한다.

(6) 공공 문화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인다.

공공 도서관을 비롯해 문화관,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유산관 등이 공공 디지털 문화 자원 구축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고, 국가 문화 빅데이터 시스템과 전국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공공 문화 클라우드 구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공공 문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 기반의 공공 디지털 문화 서비스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가 두루 활용되도록 만들고, 공공 문화 서비스의 수혜자 및 적시성을 향상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인다.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공공 문화 서비스 통합 발전을 촉진한다. 공공을 위한 독서 공간 및 예술 공간을 혁신하고 스마트 방송 지방 강화 프로젝트¹⁹¹⁾를 실시하며, 위성 방송 생중계 공공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또한 영화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을 개선해 공익적인 영화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모색하고, 농가 서옥 스마트화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 디지털 문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7) 문화 산업 디지털화 구도 확립을 가속화한다.

문화 표현 방식을 혁신하여 도서, 신문, 영화, 방송, 연예 등 전통적인 비즈니스 형태의 업그레이드와 문화 비즈니스 형태 및 상품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한다. 각종 예술 양식이 디지털을 활용해 표현 형태를 혁신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풍부히 만들도록 장려한다. 문화 체험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표현 방식을 혁신해 중화 문화의 보물을 되살린다.

문화 데이터의 수집, 가공, 거래, 배포, 전시 등의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문화 기업을 육성하고 문화 산업 디지털화의 방향을 인도한다.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길잡이로 삼아 문화 산

188) 디지털 트윈(数字孪生): 물리적인 사물이나 공간, 프로세스 등을 디지털 데이터로 똑같이 복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등을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음

189) 신시대 문명 실천 센터(新时代文明实践中心):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농촌이나 지방에 설치한 센터

190) 농가 서옥(农家书屋): 지방 정부에서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농촌에 건립한 도서관

191) 스마트 방송 지방 강화 프로젝트(智慧广电固边工程): 14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스마트 방송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 지방이나 외진 곳까지 보급하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

업과 새로운 농업,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및 전략적 신흥 사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 산업을 배양해 문화 산업계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한다. 농촌의 새로운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촌 문화의 명맥을 이으며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돕는다.

(8) 문화 디지털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 디지털화 건설에 발맞춰 시장 진입, 시장 질서, 기술 혁신, 지식 재산권,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정책과 법규 체계를 세운다. 정부의 문화 디지털화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운영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표준 양식의 디지털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문화 디지털화 관리를 실현한다.

문화 시장의 전반적인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문화 데이터 요소의 시장 거래를 더 철저하게 감독 관리한다. 문화 산업 협회나 상인 연합회 및 중개 기관의 개혁을 강화해 산업 협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 조직이 산업의 조정과 업계 자율에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문화 디지털화 신용 평가를 제대로 하고 시장 발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 디지털화의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한다.

3. 보호 조치

(1) 문화 데이터의 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데이터 안전에 관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데이터 수집과 가공, 거래, 배포, 전송, 저장 및 데이터 관리 등의 부분에 문화 디지털 안전 표준을 제정한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문화 디지털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중요 문화 데이터 목록을 확정하고 중요 문화 데이터의 수출 안전 관리 조치를 명확히 해, 문화 데이터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2) 문화 디지털화 체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화 문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보존 표준을 강화하고, 완벽한 문화 데이터 안전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 문화 전용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물리적인 격리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해 데이터 공유, 연결, 리팩토링 등의 주체를 대상으로 액세스 관리를 시행한다. 문화 자원 데이터 및 문화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권 보호 조치를 개선한다.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포 또는 소비용 채널에 진입한 콘텐츠에 대해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화 디지털화 표준 체계를 수립한다.

식별 코드 확인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정보 및 문헌 관련 국제 표준을 널리 보급한다. 문화 디지털화 구축 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하는 속도를 높이고, 관련 기관과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 디지털화 국제 표준 연구 및 제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4) 자발적으로 문화 자원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문화 자원 데이터의 권한 부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나 국민 개인에게 유료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문화 자원 데이터 공유를 국유 문화 기업 및 기관의 성과 평가 범위에 포함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기관은 문화 자원 데이터를 공유한 후 이로 얻은 수입을 사업 발전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책정하도록 장려한다.

(5) 정부 투자를 최적화한다.

문화 디지털화 건설을 지원할 산업 정책을 연구·수립하고, 재정 지원 정책을 구체화 및 보완하며, 기존 자금 조달 루트를 통제하고 투자 구조를 최적화해 본 의견에서 명시한 임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장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중국 문화 산업 투자 기금이 역할을 하게 해 사회 자본이 문화 디지털화 건설에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6) 과학 기술 지원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

문화 디지털화를 위한 공통 핵심 기술을 국가 주요 연구 개발 계획 및 지방 과학 기술 계획의 중점 지원 대상에 넣는다. 국가 기술 혁신 센터와 전국 주요 실험실 등 국가 과학 기술 혁신 기지를 문화 디지털화 건설 분야에 배치하고, 관련 부서나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문화 디지털화 과학 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국가 문화·과학 기술 융합 시범 기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 디지털화 장비의 대규모 생산 및 활용을 추진한다.

(7)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기관이 문화 디지털화 건설 사업의 특성과 수요에 알맞은 신용 대출 상품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문화 기업이 각종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금융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유도한다. 과학 기술 혁신 속성에 부합하는 디지털화 문화 기업이 커창반¹⁹²⁾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 문화 자원 데이터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 자금의 수요와 기한에 따른 적절한 자금 조달 루트를 완비하도록 한다.

(8) 지적 싱크탱크 자원을 활성화한다.

문화 명가 및 ‘4개 일비’ 인재¹⁹³⁾ 육성 선발에서 문화 디지털화 인재의 비중을 높이고, 선도 역할을 할 인재 그룹의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 디지털화 관련 학과와 전공 개설을 추진하고, 고급 싱크 탱크를 만들어 문화 디지털화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산학(産學) 융합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

4. 조직 시행

(1) 조직의 지도를 강화한다.

중앙선전부를 필두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문화여유부, 중국인민은행, 광전총국, 국가문물국 등의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사업 특별 전담 조직(推进实施国家文化数字化战略工作领导小组)을 꾸려 중앙 문화 체제 개혁 및 발전 사업 특별 전담 조직(中央文化体制改革和发展工作领导小组)의 지도하에 사업을 진행한다.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사업 특별 전담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는 중앙선전부에서 책임진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여유부, 광전총국, 국가문물국 등의 부처와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및 각 문화 기관은 상응하는 지도 체제와 업무 시스템을 구축, 정비한다.

192) 커창반(科创板): 중국의 IT 관련 주 전용 주식 시장으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림

193) 문화 명가 및 ‘4개 일비’ 인재(文化名家暨“四个一批”人才): 중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급 인재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로, 리더급의 인물 및 다양한 인재를 이론, 뉴스, 출판, 문화 예술 등 4개 방면에 걸쳐 발굴함

(2) 정책 시행을 촉진한다.

각 지역은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의 추진 및 실시를 주요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본 의견을 기반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정책과 조치를 구체화하여 각 과제가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실시 방안과 주요 조치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각 지역의 관련 부서는 본 의견의 실시 상황에 대한 추적 분석 및 조정 지도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사업 특별 전담 조직은 적절한 시기에 업무 진행 및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업무 기강을 엄격히 세우고 중대한 사안은 즉시 보고하여 문화 디지털화 건설을 위한 각 업무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추진한다.

68. 모바일 앱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제목	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22-06-14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모바일 앱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이하 앱) 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민과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및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등의 법률과 행정 법규,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앱 스토어 등 앱 배포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앱 정보 서비스란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문자,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배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스턴트 메시지, 뉴스, 질문과 답변, 커뮤니티, 온라인 라이브 방송, 전자 상거래, 온라인 음성 및 영상 콘텐츠, 생활 서비스 등의 유형을 포함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앱 배포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앱의 배포, 다운로드, 동적 적재¹⁹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앱 스토어, 퀵 앱 센터¹⁹⁵⁾, 인터넷 미니 앱 플랫폼, 브라우저 플러그인 프로그램 플랫폼 등의 유형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는 전국의 앱 정보 콘텐츠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인터넷정보 부처는 직무상의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앱 정보 콘텐츠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은 헌법과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하며, 바른 정치 성향과 여론 의식 및 가치 성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질서와 바른 풍속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지켜야 한다.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은 앱을 이용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 질서를

194) 동적 적재(动态加载): dynamic loading.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행 시 전체가 아닌 필요한 루틴과 데이터만 메모리에 그때그때 로딩하는 방식을 가리킴

195) 퀵 앱 센터(快应用中心): 화웨이,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의 9대 스마트폰 공급 업체에서 공동으로 출시한 앱 관리 플랫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은 정보 콘텐츠 관리의 주요 책임을 수행하고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 신뢰성 및 신원 전략을 구현하고 정보 콘텐츠 보안 관리,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2장 앱 제공자

제6조 앱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정보 공개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는 휴대 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등에 기초한 실제 실명 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실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직 또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앱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활동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허가를 취득하지 않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앱 제공자가 그 외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거나 관련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앱 제공자는 정보 콘텐츠로 발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적인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며, 불량한 정보는 자발적으로 경계하고 거부해야 한다.

앱 제공자는 정보 내용 검토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정비하고, 이용자 등록, 계정 관리, 정보 심사, 통상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등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앱 제공자는 허위 홍보나 강제 묶음 다운로드,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한 순위 조작, 불법으로 클릭 수 올리기, 댓글 통제 등의 방식이나 위법하고 불량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다운로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앱은 관련한 국가 표준의 필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앱 제공자는 앱에 보안 결함이나 버그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바로 보완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앱 제공자는 앱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할 때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하고,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 및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 안전 보장을 위한 기술 조치 및 기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앱 제공자는 개인 정보를 다룰 때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 규칙을 공개해야 한다. 필수 개인 정보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이용자가 개인 정보 처리 행위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필수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기본 기능 서비스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앱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미성년자의 사이버 보호에 관한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 이용자 계정의 실명 정보 가입 및 로그인 요구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미성년 이용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중독을 유도하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이나 복제,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앱 제공자는 여론의 속성을 띠고 있거나 사회적 동원력을 가진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앱,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제15조 앱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IPv6)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제16조 앱 제공자는 법률·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공개해야 하며, 가입한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쌍방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가입한 이용자가 본 규정 및 관련 법률·법규, 서비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앱 제공자는 법이나 약관에 의거해 경고나 기능 제한,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기록을 보존해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앱 배포 플랫폼

제17조 앱 배포 플랫폼은 운영을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성(省)이나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터넷정보 부처에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플랫폼 운영 주체의 기본 정보
 - (2) 플랫폼 이름, 도메인 이름, 접속 서비스, 서비스 자격, 업로드한 앱 유형 등의 정보
 - (3) 플랫폼이 취득한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 자격이나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4) 본 규정 제5조에서 요구하는 관련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5) 플랫폼 관리 규칙, 서비스 계약 등
-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터넷정보 부처는 제출 자료를 접수한 후 자료가 완전할 경우에만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국가 인터넷정보 부처는 등록 수속을 마친 앱 배포 플랫폼의 명단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제18조 앱 배포 플랫폼은 분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업로드하는 앱을 대상으로 분류 관리를 시행하고,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터넷정보 부처에 앱을 등록해야 한다.

제19조 앱 배포 플랫폼은 복합 인증 등의 방법을 활용해 업로드를 신청한 앱 제공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등 여러 인증 수단을 결합한 실명 정보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앱 제공 주체의 특성에 따라 제공자의 명칭,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 사회적 감독과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제20조 앱 배포 플랫폼은 관리 시스템과 기술 수단을 확립 및 정비하고, 업로드 심사, 통상 점검, 비상 상황 대응 등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앱 배포 플랫폼은 업로드나 업데이트를 신청한 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앱의 명칭, 아이콘, 내용 소개에 불량·불법 정보가 있거나, 등록 주체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 유형에 위법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의 상황을 발견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앱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가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앱 배포 플랫폼은 이와 관련한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본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범위에 속하는 경우, 앱 배포 플랫폼은 안전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앱 배포 플랫폼은 업로드해 놓은 앱의 통상적인 점검을 강화해 위법한 정보나 불량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다운로드 수와 평가 지수 등의 데이터를 조작했을 경우, 데이터 보안 위험이 잠재된 경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앱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앱 배포 플랫폼은 법률·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에 의거해 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앱 제공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앱 배포 플랫폼은 본 규정 및 관련 법률·법규, 서비스 계약에 위배되는 앱에 대해 법이나 약관에 따라 경고, 서비스 중지, 배포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기록을 보존해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22조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고, 눈에 잘 띄면서도 간편한 불만 접수 및 신고 루트를 개설하고 불만 접수 및 신고 방법을 공포하는 한편, 접수 처리 및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 대중의 불만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인터넷 산업 조직이 업계의 자체 규제 시스템을 구축·정비하고 업계 규범 및 자율 협약을 제정 및 개선하며, 회원 업체가 서비스 규범을 수립 및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에 따

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며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돕도록 장려한다.

제24조 인터넷정보 부처는 관련 주무부처와 함께 업무 체계를 수립 및 정비하고,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이 법에 따라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은 인터넷정보 부처와 관련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앱 제공자와 앱 배포 플랫폼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정보 부처와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직무상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26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이란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에서 구동하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제공자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배포 플랫폼이란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 다운로드, 동적 적재 등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 동시에 2016년 6월 28일 공포한 <모바일 앱 정보 서비스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69.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관리 강화 관련 통지

제목	关于加强剧本娱乐经营场所管理的通知
게재일	2022-06-25
출처	문화여유부,公安局, 주택도농건설부, 응급관리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관리 강화 관련 통지

문여시장발[2022]7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여유청(국),公安局(국), 주택도농건설청(위원회, 국), 응급관리청(국), 시장감독관리국(청, 위원회), 소방구원총대, 신장생산건설병단의 문화체육광전여유국,公安局, 주택도농건설국, 응급관리국, 시장감독관리국, 베이징시규획자연자원위원회

최근 몇 년간 ‘스크립트 킬’ 과 ‘방 탈출’ 을 필두로 소비자가 즉석에서 팀이 되어 배역을 맡아 임무를 완성하는 형태의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이 빠르게 발전해, 문화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대중들의 문화 오락에 대한 소비 수요를 만족시켰지만, 한편으로는 불량 콘텐츠 문제 및 안전 방면의 잠재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고,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1) 경영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법에 따라 영업장이 속한 지역의 현(县)급 이상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등록하고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되, 경영 범위를 ‘극본 오락 활동’ 으로 등록해야 한다.

(2) 통보성 등록을 실행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일 포함 30일 이내에 영업장의 주소와 사용하는 극본의 제목, 작가, 간략한 소개, 적합한 연령 범위 등의 정보를 전국 문화 시장 기술 관리 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영업장이 속한 지역의 현급 문화여유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극본이 새로 추가되거나, 극본의 이야기 배경이나 스토리 등 주요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사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휴일 포함 30일 이내에 극본의 상술한 정보를 처음 등록했던 부서에 다시 등록한다. 문화여유부는 극본 오락 활동에 관한 서류 제출 가이드 제정을 책임진다.

2. 최저선을 지키고 경영을 규범화한다.

(3) 내용을 엄격히 관리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올바른 발전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건전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내용을 담은 극본을 사용하고, 사회주의 사상과 정신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

하는 극본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사 제도를 수립해 극본 및 연기, 세트, 도구, 의상 등에 대해 자체 심사를 시행해 콘텐츠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내의 극본 오락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오락 장소 관리 조례(娱乐场所管理条例)>, <영업성 공연 관리 조례(营业性演出管理条例)> 및 기타 법률·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이 사용하는 극본에는 적합 연령 안내를 넣어 적합한 연령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된 세트가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잘 보이는 위치에 이를 안내하고 미성년자의 입장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미성년자의 중독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국가의 법정 공휴일과 휴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 외에는 미성년자에게 극본 오락 활동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안전 경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안전 경영의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및 기타 법률·법규와 소방 안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실천해야 한다. 화재 위험의 자각 및 자체 점검, 자체 개선을 상시화하고, 긴급 상황 시의 조직적인 대피 능력과 화재 초기 진압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또한 안전 안내 및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가 안전 의식과 방법 의식을 높이도록 유도해 안전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주거용 건물, 건물의 지하 1층 이하(지하 1층은 제외) 등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6) 신용 경영, 준법 경영을 강화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가격을 명시하고 정직하게 경영해야 하며, 허위 선전이나 가격 속이기, 불공정한 표준 약관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7) 업계의 자기 규제를 강화한다.

산업 협회는 업계의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 업체가 콘텐츠 자체 심사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업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3.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감독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

(8) 책임의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문화여유 행정 부서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 내 극본 오락 활동의 콘텐츠 관리 및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며,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이 안전 경영의 책임 및 소방 안전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한다.公安 기관은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련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한다. 주택도농 건설 부서는 법에 따라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의 소방 설계 심사와 준공 검수, 서류 등록 업무를 책임진다. 소방 기관과 관련 부서는 법규에 따라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의 소방 관리 감독 및 점검 업무를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장 주체의

등록 업무를 책임진다.

(9) 공동 감독을 강화한다.

각 지역 문화여유 행정 부서는公安 기관, 주택도농건설 부서, 시장감독관리 부서, 소방 기관 등과 협력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전달, 단서 이송, 합동 법 집행 등의 업무 체계를 수립해 공동 관리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4. 정책 계도 기간을 마련해 영업장의 준법 경영을 유도한다.

(10) 자체 검사 및 자체 시정을 진행한다.

본 통지 발행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를 정책 계도 기간으로 정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은 계도 기간 동안 본 통지의 관련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자체 검사 및 시정을 진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경영 범위를 변경하고 경영 자격을 완비해야 한다. 문화여유 행정 부서에 서류 제출 수속을 이행하고 콘텐츠 자체 심사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소방 등의 잠재적인 안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거한다. 각 부서는 정책 계도 기간을 이용해 정책 홍보에 힘써, 각 포털 사이트와 정부 정보 플랫폼을 잘 이용하고 뉴스 미디어 및 산업 단체 등이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해, 정책 홍보의 범위를 넓히고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11)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다.

문화여유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실태 조사 과정에서 법률·법규로 금지된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적합 연령 안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보호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할 경우 사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극본의 사용을 중지한다. 각 성급 문화여유 행정 부서는 2022년 8월 31일 전에 실태 조사 현황을 문화여유부에 보고해야 한다.

(12)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후 각 지역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통상 점검을 강화하되 점검 중 문제를 발견하면 관련 법률·법규, 표준 규범 및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해야 한다.

각 지역 문화여유 행정 부서와公安 기관, 주택도농건설 부서, 시장감독관리 부서, 소방구조 기관은 본 통지의 정신에 따라 부서별로 직무상의 책임에 따라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장의 감독과 지도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업무 시 중요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상급 기관에 보고를 올려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통지한다.

문화여유부 公安부 주택도농건설부
응급관리부 시장감독관리총국

2022년 6월 25일

70.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

제목	互联网用户账号信息管理规定
제재일	2022-06-27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0호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이 2022년 6월 9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2022년 11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포하며,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장룽원(庄荣文)

2022년 6월 27일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 개인과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등의 법률과 행정 법규를 바탕으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 이용자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가입·사용 및 관리 업무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국가인터넷정보 부처는 전국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의 관리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의 인터넷정보 부처는 직무상의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의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

제4조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 가입·사용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에 있어,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따르며 신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5조 관련 산업 단체가 업계의 자기 규제를 강화하고 업계 표준과 준칙 및 자율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규범을 제정·보완하고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도록 관련 산업 단체가 관리 및 지도할 것을 장려한다.

제2장 계정 정보의 등록과 사용

제6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과 행정 법규, 관련된 국가 규정에 의거해 인터넷 이용자 계정 관리 규칙과 플랫폼 약관을 제정 및 공개하고,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계정 가입·사용 및 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개인 이용자가 가입·사용하는 계정 정보에 직업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실제 직업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기관 이용자가 가입·사용하는 계정 정보의 경우, 기관명과 로고 등이 일치해야 하며, 기관의 성격과 경영 범위 및 소속된 업종 유형 등이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 이용자가 가입·사용하는 계정 정보에는 다음의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 (1)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의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2) 정당, 당의 정부 기관 및 국방 기관, 기업체, 시민 단체, 사회 조직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도용, 모방 또는 날조한 경우
- (3) 국가(지역), 국제 조직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도용, 모방 또는 날조한 경우
- (4) 뉴스 사이트, 신문사, 라디오·텔레비전 기구, 통신사 등 뉴스 매체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도용, 모방 또는 날조하거나, ‘뉴스’, ‘보도’ 등 뉴스의 속성을 가진 명칭과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5) 국가 행정 구역이나 기관 소재지, 상징적인 건축물 등 중요한 공간의 지리 명칭과 상징 등을 도용, 모방하거나 악의적으로 연결한 경우
- (6)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등의 목적을 갖고 고의로 QR코드, 인터넷 주소, 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삽입하거나 음이 같은 말, 음이 비슷한 말, 비슷한 문자나 숫자, 부호, 알파벳 등을 사용하는 경우
- (7) 실제와 맞지 않는 명칭이나 과장된 단어 등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8) 기타 법률이나 행정 법규, 관련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9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 정보 배포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계정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 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통해 실명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정확한 신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직이나 기관 혹은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해 거짓으로 가입했다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0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가 가입 시 제출한 계정 정보와 사용 중 변경을 신청한 계정 정보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본 규정 제7조와 제8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가입이나 계정 정보 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계정 정보에 ‘중국’, ‘중화’, ‘중앙’, ‘전국’, ‘국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의 깃발이나 당 휘장, 국기, 국가, 국가 휘장 등 당과 국가의 상징이나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률과 행정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법이나 계약에 따라 폐쇄된 계정이 재가입을 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폐쇄된 계정과 관련도가 높은 계정 정보로 가입을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나 인터넷 출판 서비스 등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계정 가입을 신청하거나 경제, 교육, 의료와 위생, 사법 등 영역의 정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계정으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자격이나 직업 자격, 전문 업무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심사 후 계정 정보에 특별 표시를 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페이지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터넷 이용자 계정의 IP 위치 정보를 표시해 대중이 공공 이익 수호를 위한 감독을 쉽게 하도록 한다.

제13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공식 계정의 정보 화면에 공식 계정의 운영 주체와 등록 주소, 생산하는 콘텐츠 유형, 사업자 등록 번호, 유효한 연락 방식, 인터넷 IP 위치 정보 등의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3장 계정 정보 관리

제14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실명 인증, 계정 정보 검증, 정보 콘텐츠 보안, 산업 생태계 관리, 비상 상황 대응,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 및 보완하고,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정보의 동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보유한 계정 정보를 적시에 검증하고,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 이용자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수정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수정을 거부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종료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중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처리해야 하며, 무단 액세스나 개인 정보 유출, 변조 및 유실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

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가입 및 계정 정보 사용 시 법률과 행정 법규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면 법과 약관에 따라 경고, 지정한 기일 내 수정, 계정 기능 제한, 사용 중지, 계정 폐쇄, 재가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 인터넷정보 부처 및 기타 유관 주무부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 신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보완하고, 계정 정보에 대한 신용 평가를 계정 신용 관리의 주요 참고 지표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사용이 간편한 불만 접수 및 신고 루트를 개설하고 불만 접수 및 신고 방법을 공포해야 한다. 또한 접수, 선별, 처리, 피드백 등의 시스템을 완비하고 처리 절차 및 피드백 기한을 명확히 해 이용자와 대중의 불만 및 신고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검사와 법적 책임

제20조 인터넷정보 부처는 관련 주무부처와 함께 정보 공유, 실무 협의 및 처리 상황 통보, 공동 법 집행, 안전 감독·처리 등에 관한 업무 시스템을 수립하고 보완하며,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 관리·감독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제21조 인터넷정보 부처는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가입·사용하는 계정 정보의 관리 현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협조하고 필요한 기술이나 데이터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교적 큰 인터넷 정보 보안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성(省)급 이상의 인터넷정보 부처는 해당 업체에 정보 갱신 중지 및 이용자 계정 가입 중지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시정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는 성급 이상의 인터넷정보 부처에서 직무상 책임에 의거해 경고나 주의 통보를 내리고, 지정한 기일 내 시정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안 기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법 기관으로 이관해 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 본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 이용자 계정 정보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등록 및 사용한 명칭, 프로필, 표지, 소개, 사진, 인증 정보 등 이용자 계정을 식별하는 데 쓰는 정보를 가리킨다.
- (2)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검색 엔진, 인스턴트 메시지, 쌍방향 정보 서비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앱 다운로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인터넷 정보 게시 및 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제24조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실시 전 공포된 관련 규정에서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본 규정을 따른다.

71.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 규정

제목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22-09-09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 규정

제1조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를 규범화해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고 개인과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등의 법률과 법규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란 운영 체제나 응용 프로그램, 웹사이트 등을 통해 팝업창을 띄우는 형태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푸시 서비스이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또는 개인이다.

제3조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헌법과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하고 바른 정치 성향과 여론 의식, 가치관을 견지해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지켜나가야 한다.

제4조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콘텐츠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이행하고 정보 콘텐츠 심사와 생태 관리,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5조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에서 규정한 위법 정보나 불량 정보, 특히 악의적으로 부풀린 연예계 가십이나 스캔들과 사생활, 사치, 돈 자랑, 추태를 보이는 행동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악의적인 이슈화를 목적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한 옛 뉴스를 집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
- (2)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뉴스 정보를 팝업창으로 띄워서는 안 된다. 팝업창에 띄우는 소식이 다른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거나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할 부분은 해당 주무부처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거나 관련 허가를 취득하도록 한다.

- (3) 팝업으로 전달하는 뉴스 정보는 철저히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이 공포한 <인터넷 뉴스 정보 공급 업체 명단(互联网新闻信息稿源单位名单)>에 의거해야 하며, 범위를 벗어나 옮겨 싣거나 제목의 원래 의미나 뉴스 정보 내용을 왜곡, 조작해서는 안 되며, 뉴스 정보 출처 추적이 반드시 가능해야 한다.
- (4) 팝업 푸시 서비스를 다양화시키고, 뉴스 정보와 카테고리 영역에 포함된 콘텐츠 비중을 과학적으로 설정한다.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발전적인 주류 가치관을 구현하고, 사회적이슈나 민감한 사건, 악질 범죄, 재난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과장하여 다루어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 (5) 팝업 정보로 노출하는 콘텐츠의 관리 규범을 보완하고 정보의 선별과 편집, 푸시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심사 역량을 갖추어 팝업 정보 콘텐츠의 심사를 강화한다.
- (6)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서비스 계약 등을 통해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식과 빈도, 취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다. 사용자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 푸시 서비스의 횟수를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일반 이용자와 회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푸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팝업창을 닫는 데에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팝업 정보에는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7) 이용자의 중독이나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등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알고리즘이나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는 알고리즘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악의적인 정보 차단이나 과도한 추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을 통해 미성년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미지화¹⁹⁶⁾를 하거나, 심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 (8) 팝업창이 광고 정보를 띄울 경우에는 식별이 잘돼야 하며, ‘광고’ 표시 및 단기를 잘 보이게 명기해 클릭 한 번으로 팝업 광고를 닫을 수 있어야 한다.
- (9) 팝업 정보 푸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페이지 이동을 유도하는 외부 링크, QR코드 등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되며,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거나 트래픽 조작, 트래픽 훔치기¹⁹⁷⁾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감시를 수용하고, 사용이 간편한 불만 접수 및 신고 루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나 신고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산업 단체가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침을 수립 및 보완하고,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

196) 이미지화(画像):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비 패턴이나 생활 습관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구체화하는 것

197) 트래픽 훔치기(流量劫持): 각종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강제로 특정 페이지를 방문하도록 만드는 행위.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트래픽을 낭비하게 됨

제8조 인터넷정보 부처는 통신 주무부처, 시장관리감독 부처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 관리 감독 등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9조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터넷정보 부처, 통신 주무부처, 시장관리감독 부처 등 관련 부처는 직무상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2.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 규범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제목	关于切实加强网络暴力治理的通知
게재일	2022-10-31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외 6개 부처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배포한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 규범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의 문화·오락 분야 관리 관련 업무 배치에 따라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관공실(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국가전영국(国家电影局) 등 7개 부처와 연합해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 규범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进一步规范明星广告代言活动的指导意见)〉(이하 〈지도 의견〉으로 약칭)을 배포하였다. 〈지도 의견〉은 배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최근 몇 년간,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중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연예인 광고모델들이 ‘이미지를 망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면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사회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어,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도 의견〉은 문화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법률·법규 및 정책 문건을 충분히 검토해 통합한 후, 시장 경쟁과 업계 관리, 감독·관리와 법적인 제재, 업계의 자율, 사회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연예인의 광고모델 활동을 규범화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예인 광고모델 분야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다.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의 규범화는 감독·관리 및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운영의 규범화와 업계 관리강화, 각 시장 주체의 책임 촉구, 질서 있는 시장 경쟁, 업계 자체의 강도 높은 정비 등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연예인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연예인은 시장의 외면을 받는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한다. 연예인 광고모델 활동의 각 주체가 〈지도 의견〉을 성실히 학습하고 법률·법규 및 〈지도 의견〉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하면서, 법률과 법규를 지켜 광고모델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수한 광고 작품을 더욱 많이 창작하길 바란다.

73. 사이버폭력 관리의 실질적 강화에 관한 통지

제목	关于切实加强网络暴力治理的通知
제재일	2022-11-04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사이버폭력 관리의 실질적 강화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인터넷정보판공실,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인터넷정보판공실:

사이버폭력은 개인을 대상으로 모욕과 욕설, 유언비어와 비방, 사생활 침해 및 기타 불법적인 정보 및 비우호적인 정보를 집중적으로 게시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네트워크 질서를 교란한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웹사이트 플랫폼의 주요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장기적인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 및 완성함은 물론 대다수 네티즌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문명화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사이버폭력에 대한 건전한 조기 경보 및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1. 콘텐츠 식별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온라인 폭력정보에 대한 분류 기준과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론 감시와 선의의 비판을 구별하여 사이버폭력 관련 콘텐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식별 및 조기 경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웹사이트 플랫폼의 비즈니스 특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계하여 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 사이버폭력 기술적 식별 모델을 구축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이벤트 유형, 대상, 참여자 수, 정보 내용, 게시 빈도, 링크 시나리오, 불만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사이버폭력 행위 식별 모델을 수립하고 사이버폭력 경향 및 징후를 적시에 감지하고 경고한다.

3. 사이버폭력 관련 여론에 대한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특별 작업 인력을 조직하여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핫 이슈와 여론 단서를 적시에 수집하고, 사이버폭력 여론에 대한 사전 경고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낯선 사람이 보내는 개인 메시지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주제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검색 횟수 및 신고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기반으로 인터넷 폭력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행동을 즉시 감지한다.

둘째, 사이버폭력 관련 당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1. 원클릭 보호 기능을 설정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자체 특성에 따라 긴급 보호 기능을 구축 및 개선하여, 낯선 사람이 보낸 개인 메시지, 댓글, 리트윗, @메시지를 원클릭으로 닫을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사이버폭력의 위험에 직면하면 웹사이트 플랫폼은 적시에 시스템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가 원클릭 보호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 메시지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비공개 메시지 규칙을 최적화한다.

비공개 메시지 규칙을 더욱 개선하여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비공개 메시지 수신 횟수, 시간 및 범위에 제한을 두고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친구로부터 비공개 메시지만 수신하거나 모든 비공개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도록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정보의 분류 기준에 따라 사이버폭력 콘텐츠가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3. 신속한 신고 채널을 구축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의 댓글, 비공개 메시지 및 기타 위치에 사이버 폭력정보에 대한 신속한 민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이버 폭력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온라인 폭력정보에 대한 원클릭 포렌식 기능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성년자와 관련된 온라인 폭력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셋째. 사이버 폭력정보의 확산을 엄격히 방지한다.

1. 댓글 관리를 강화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은 사이버폭력 위험과 관련된 뉴스, 게시물, 주제 및 기타 정보에 대한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위반 댓글을 적시에 청소 및 필터링하며,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비우호적 댓글의 광범위한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웹사이트 플랫폼은 사용자가 공공장소에 게시한 댓글을 자신의 계정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수집 및 전시하고 공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주요 주제 그룹 및 섹션 관리를 강화한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주제의 섹션을 적시에 해체하고 관련 주제 섹션의 신규 개설을 중단한다. 관련 사건, 당사자 및 관련 인원의 이름을 딴 단어, 화제, 그룹 및 게시판을 면밀히 검사하고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콘텐츠를 적시에 정리한다. 익명의 제출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를 게시하는 주제 섹션과 그룹 계정을 조사하고 폐쇄한다.

3. 생방송 및 쇼트 클립 관리를 강화한다.

생방송 및 숏폼 콘텐츠 심사를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콘텐츠가 집중된 라이브 방송실을 적시에 폐쇄하고, 불법 앵커를 금지하고, 사이버폭력 위험이 있는 쇼트 클립의 경우 배포 전 검토하고, 사이버 폭력정보가 담긴 쇼트 클립을 정리하고, 부정적인 탄막을 차단하고 필터링한다. 또한, 사

이러한 사이버폭력 관련 당사자가 개설한 라이브 방송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해 및 자살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어한다.

4. 권위 있는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지역 인터넷 정보 부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여론 및 정보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부서 및 지역을 감독 및 조율하여 권위 있는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위험이 있는 핫스팟에 대해 웹사이트 플랫폼은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네티즌이 합리적으로 발언하도록 안내하며 사이버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넷째,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1.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계정을 분류하여 처리한다.

첫째, 계정 게시 전 경고 및 알람을 강화하고, 비우호적인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사이버폭력에 연루된 계정에 대해서는 경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금언, 개인 메시지 기능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셋째, 온라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최초 공개, 다중 공개, 선동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체 웹상에서 신규 계정 등록을 금지한다. 넷째, 불법 및 범죄와 관련된 경우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고 웹사이트 플랫폼은 핫한 사이버폭력 사건의 처리를 적시에 발표한다.

2. 사이버폭력에 편승한 악의적인 마케팅 및 과대광고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사이버폭력에 편승하여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트래픽 유입을 촉진하고, 의도적으로 플랫폼 간의 허위정보를 결합하는 등의 악의적인 마케팅 및 과대광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배후에 있는 MCN 기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경고, 상업적 이익 중단, 서비스 제공 제한, 철수 및 기타 담보 처분 조치를 취한다. 계정명을 이벤트 관련 기관 및 인력으로 임시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플랫폼은 사용자의 실명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3. 직무를 유기한 웹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문책과 처벌

사이버 폭력정보가 많고 예방 메커니즘이 불완전하며, 신고를 적시에 접수 및 처리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웹사이트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통지 및 비판, 기한 내 시정, 벌금, 정보 업데이트 중단, 웹사이트 폐쇄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섯째, 업무 요구사항

1. 사상 인식을 제고한다.

각 지방 인터넷 정보 부서는 정치적 입장을 더욱 개선하고 사이버폭력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업무 요구사항과 업무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관리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업무 책임을 통합한다.

웹사이트 플랫폼을 지도 감독하여 주요 책임을 통합하고 업무 요구사항에 따른 다양한 기능 설정을 최적화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문제 발견 및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작업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이 폭력 문제에 대한 처리 능력과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

3. 장기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각 지방 인터넷 정보 부서는 업무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웹사이트 플랫폼의 조치 이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조직하며 시정 및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웹사이트 플랫폼은 효과적인 경험과 관행을 적시에 요약하고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 인터넷 정보판공실 비서국

2022년 11월 2일

74.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

제목	互联网跟帖评论服务管理规定
제재일	2022-11-16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인터넷 댓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및 콘텐츠생태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 ‘인터넷 사용자 계정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법률, 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댓글 및 댓글 서비스를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댓글 서비스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웹사이트 플랫폼이 댓글, 탄막, 좋아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텍스트, 기호, 표정,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국가 댓글 및 댓글 서비스의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하며 지역 인터넷 정보 부서는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댓글 및 댓글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한다.

제4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서비스 관리의 주요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인터넷 실명 정보 관리를 위한 실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촉진한다는 국가 인터넷 판공실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이용자는 휴대폰 번호, 신분증 번호 또는 통합 사회 신용 코드 등을 기반으로 실명정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명정보를 인증하지 않거나 조작 및 다른 사람의 신원 정보를 도용한 사용자에게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방법,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종류, 보유 기간 등을 고지한 후 법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뉴스 정보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검토 및 사후 게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4) 탄막 방식의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플랫폼과 페이지에 해당 정보 콘텐츠의 정적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 (5) 댓글 검토 및 관리, 실시간 점검, 긴급 처리, 신고 접수 등 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불법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발견 및 처리하며 인터넷 정보 부서에 신고한다.
- (6) 댓글 관리방법을 혁신하고 댓글 정보보안 관리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며, 불법 유해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댓글 서비스의 보안상 결함, 허점 및 기타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정보 부서에 신고한다.
- (7)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감사 및 편집팀을 갖추고 댓글 감사 교육을 강화하며 감사 및 편집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 (8) 인터넷 정보 부처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5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댓글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댓글과 관련된 신제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된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댓글 서비스와 관리내용 및 댓글 게시에 대한 양측의 권한, 관리책임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문명화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의 경우 댓글 관리 권한과 해당 책임을 서비스 계약에 명시하고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7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댓글 서비스 이용자와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표준화해야 한다. 불법 및 불량정보 콘텐츠를 게시하는 댓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법에 따라 경고 및 알림, 게시 거부, 정보 삭제, 계정 기능 제한, 계정 업데이트 일시 중지, 계정 폐쇄,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댓글 링크에 불법 및 불량 정보 콘텐츠가 있는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경고 및 알림, 정보 삭제, 댓글 영역 기능 일시 중지 혹은 영구 폐쇄, 계정 기능 제한, 계정 업데이트 중단, 계정 폐쇄,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적시에 인터넷 정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8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등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댓글 행위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 등급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기능을 결정한다.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이용자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이용자가 계정을 재등록하여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 댓글 서비스 이용자는 법률과 법규, 공공질서와 도덕을 준수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홍보해야 하며, 법률, 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에서 금지하는 정보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는 계정 내 댓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댓글

링크에 포함된 불법 및 불량 정보 내용을 적시에 발견하고 신고,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는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불법·유해 댓글 정보 신고, 은닉, 삭제, 계정 댓글 영역의 자율적 폐쇄 등의 관리 권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의 댓글 관리 상태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행한 후, 공식 계정의 주요 성격,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관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 댓글 서비스 이용자, 공식 계정 생성 및 운영자는 댓글 정보의 게시, 삭제, 추천, 소프트웨어 사용, 정보 확산을 위한 상업기관 및 인력 고용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의 정당한 권익 또는 공익을 침해하거나 불법 이익을 추구하며 악의적으로 댓글 질서를 방해하고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위반 및 불건전 정보에 대한 공익 신고 및 댓글 서비스 이용자 불만 신고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편리한 불만 신고 및 이의 제기 창구를 구축하며 댓글과 관련한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및 처리해야 한다.

댓글 서비스 이용자는 처리된 댓글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댓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확인 및 처리해야 한다.

본 규정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인터넷 정보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인터넷 정보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터넷 정보 부서는 일상점검과 정기 점검을 결합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댓글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 인터넷 정보 부서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8월 25일에 발표된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75.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규정

제목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제재일	2022-12-11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령 제12호

2022년 11월 3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제21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및 채택된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규정>을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는 바이며,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장룽원

공업정보화부 부장 진창룽

공안부 부장 왕샤오흥

2022년 11월 25일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정보서비스의 딥페이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수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조치’ 등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응용해 인터넷정보서비스(이하 “딥페이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는 국가 딥페이크서비스의 경영 및 감독 관리를 총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국무원 산하 통신 주관부서와 공안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딥페이크서비스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지방 인터넷 정보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딥페이크서비스의 경영 및 감독·관리 업

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지방 통신 주관부서와公安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딥페이크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딥페이크서비스의 제공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방향, 가치관을 견지하고 딥페이크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 산업 조직이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표준 및 업계 지침, 자율 관리 시스템을 수립 및 개선하도록 독려하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가 비즈니스 사양을 수립 및 개선하고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감독을 수용하도록 감독 및 지도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6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딥페이크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생산, 복제, 배포, 전파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의 공공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제 및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딥페이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 뉴스 정보를 생산, 복제, 배포, 전파해서는 안 되며, 딥페이크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작·배포된 뉴스 정보를 옮겨 싣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인터넷 뉴스 정보 출처 단위에서 배포한 뉴스 정보를 옮겨 실어야 한다.

제7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보안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이용자 등록, 알고리즘 메커니즘 검토, 과학 기술 윤리 심사, 정보 공개 검토,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통신네트워크 사기 방지, 비상 대응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 보장 대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8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관리 규칙 및 플랫폼 규정을 제정 및 공개하고 서비스 계약을 개선하며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관리 책임을 이행함은 물론 딥페이크서비스 기술 지원자와 이용자가 정보 보안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9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휴대폰 번호, 신분증 번호, 통합 사회 신용 코드 또는 국가 인터넷 신원 인증 공공서비스 등의 방식을 기반으로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의 실명 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내용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적 또는 수동적 방법을 채택하여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 및 합성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표준, 규칙 및 절차를 개선하며, 관련 네트

워크 로그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인터넷정보부서 및 관련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련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중단,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루머방지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딥페이크서비스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생산, 복제, 배포, 전파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루머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인터넷정보부서와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불만 및 대중의 불만 신고를 위한 편리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처리 절차 및 피드백 기한을 게시하며, 적시 접수 및 처리 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앱스토어와 같은 앱 배포 플랫폼은 업로드 심사, 일상 관리, 비상 대응 등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앱의 보안성 평가, 등록 등 상황을 확인하여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업로드 취소, 경고, 서비스 중단 또는 제거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데이터 및 기술 관리 규범

제14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는 훈련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훈련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훈련 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가 얼굴, 음성 등 생체 인식 정보의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에게 법에 따라 편집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제15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와 기술 지원자는 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합성 알고리즘 생성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 및 검증해야 한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가 다음 기능을 가진 모델, 템플릿 등의 툴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자체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1) 얼굴, 목소리 등 생체 인식 정보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 (2) 국가 안보, 국가 이미지, 국가 이익 및 사회 공익과 관련될 수 있는 특수한 사물이나 장면과 같은 비생체 인식 정보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제16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 또는 편집된 정보 내용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로고를 추가하고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당 로그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가 대중이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딥페이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성 또는 편집된 정보 콘텐츠의 합리적인 위치와 영역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대중에게 딥페이크 상황임을 알려야 한다.

- (1) AI 대화 로봇, 스마트 라이팅 등 사람을 모방한 텍스트 생성 또는 편집서비스
- (2) 음성 합성, 음성 모방 등 개인의 신상 특징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편집서비스
- (3) 안면 생성, 안면 교체, 안면 조작, 자세 조작 등 인물의 이미지, 영상을 생성하거나 개인의 신상 특징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편집서비스
- (4) 몰입형 VR 등의 생성 또는 편집 서비스
- (5) 그 밖의 정보 내용을 생성하거나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서비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딥페이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눈에 띄는 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에게 눈에 띄는 식별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18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본 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정한 디딥페이크 표시를 삭제, 변조 또는 은닉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

제19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 등록 수속 변경 및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딥페이크서비스 기술 지원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등록 수속 변경 및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는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앱 등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정보 공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서 여론 속성 또는 사회 동원 능력을 갖춘 신제품, 새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기능을 개발·출시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정보 부서와 통신 주관 부서,公安 부서는 책임에 따라 딥페이크서비스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와 기술 지원자는 법에 따라 협력하고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지원·협조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는 딥페이크서비스에 심각한 정보 보안 위험이 있음

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책과 법률에 따라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에게 정보 업데이트, 사용자 계정 등록 또는 그 밖의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와 기술 지원자는 요구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시정·제거해야 한다.

제22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공안 기관은 치안 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23조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딥페이크 기술은 딥 러닝, 가상현실과 같은 합성 유형 알고리즘 생성을 이용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VR 등 인터넷 정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1) 문장 생성, 텍스트 스타일 변환, 질의응답 등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술
- (2)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 음성 변환, 음성 속성 편집 등 음성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술
- (3) 음악 생성, 장면 사운드 편집 등 비음성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술
- (4) 안면 생성, 안면 교체, 인물 속성 편집, 안면 조작, 자세 조작 등 이미지·영상 콘텐츠의 생체 특징을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술
- (5) 이미지 생성, 이미지 강화, 이미지 복원 등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의 비생체적 특징을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술
- (6) 3D 재구성,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인물 또는 VR을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기술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딥페이크서비스 기술 지원자는 딥페이크서비스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딥페이크서비스 이용자는 딥페이크서비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생산, 복제, 배포, 전파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훈련 데이터는 머신러닝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라벨링 또는 기준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

몰입형 VR은 딥페이크 기술을 응용해 생성 또는 편집된, 참여자가 체험하거나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현실감이 뛰어난 VR을 말한다.

제24조 딥페이크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지원자가 온라인 출판 서비스, 온라인 문화 활동 및 온라인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뉴스 출판, 문화, 관광, 라디오 텔레비전 주관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6.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제목	互联网广告管理办法
게재일	2023-03-20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법령 제72호는 2023년 2월 25일 공포되며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조 인터넷 광고 활동을 표준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웹사이트, 웹페이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텍스트, 사진, 오디오, 동영상 또는 기타 형태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는 상업 광고 활동에 대해 광고법 및 본 방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법규, 부서 규칙, 국가 의무 표준 및 기타 관련 국가 규정에서 표시, 고지를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인터넷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건전한 표현 형식으로 광고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우수한 중국의 전통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 활동에 참여하려면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인터넷 공익광고 홍보 활동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4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주의 위탁을 받은 광고 운영자를 위해 광고를 배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광고법 및 본 방법의 광고 배포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광고법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 규정을 적용하며, 인터넷 광고의 디자인, 제작, 대리, 배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광고법 및 본 방법의 광고 운영자와 광고 배포자 및 기타 주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광고산업 조직은 법률 및 법규, 부서 규칙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업계 규범과 자율 규약 및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광고 활동을 수행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생산 또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광고 게재가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디자인, 제작, 대리, 게재할 수 없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담배(전자담배 포함)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한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처방약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광고 등 법률, 행정법규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광고의 경우, 게재 전 반드시 광고 심의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를 받지 않으면 게재할 수 없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광고는 심사를 통과한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게재되어야 하며 편집, 결합,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승인된 광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시 광고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8조 건강 및 건강 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형태로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및 특수 의료 목적으로 조제된 식품에 대한 위장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강 및 건강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경우, 관련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및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의 상품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쇼핑 링크 등의 내용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하거나 동시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인터넷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경쟁 및 순위를 매기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광고 게시자는 ‘광고’임을 분명히 표시하여 이를 자연 검색결과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광고 게재 또는 위장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 소개, 체험 공유,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고 쇼핑 링크 및 기타 구매 방법을 첨부하는 경우 광고 게시자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팝업 등의 형태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는 종료 표시를 명확히 표시하여 원클릭으로 광고가 종료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광고의 종료 표시가 없거나 타이머가 만료되어야 광고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
- (2) 종료 표시가 허위이거나,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거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등 광고를 종료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3) 광고를 종료하려면 2회 이상의 클릭이 필요한 경우
- (4) 동일한 페이지 또는 문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광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팝업되어 사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 원터치 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전항의 규정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표시 및 게재되는 앱 오픈링 광고에 적용된다.

제11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여 광고를 클릭하거나 열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1) 허위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 보고, 청소, 알림 등
- (2) 허위 재생, 시작, 일시 정지, 정지, 복귀 등의 표시
- (3) 허위 보상 약속
- (4) 기타 사용자를 속이고 오도하여 광고를 클릭하거나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제12조 의료, 의약품,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 광고 및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온라인게임 광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공식계정 등의 인터넷 매체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광고주는 인터넷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가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주체의 자격 및 행정 허가, 인증 내용이 법률 및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해야 한다.

광고주는 자체 구축한 웹사이트는 물론 자체 클라이언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공식계정, 온라인 스토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직접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에게 광고 게재를 위탁할 수 있다.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광고 게시 행위는 법률 및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파일을 설정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관련 광고 파일은 광고 게시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광고주가 인터넷 광고의 게재를 위탁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광고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인터넷 광고업의 등록 및 심사, 파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 (1) 광고주의 실제 신원, 주소, 유효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 및 등록하고, 광고 파일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업데이트하며, 광고 활동과 관련된 전자 데이터를 기록 및 보관하고, 관련 파일은 광고 게시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 관련 증빙 서류와 해당 광고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불완전한 광고의 경우, 광고 운영자는 광고 디자인 및 제작, 대행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광고 게시자 또한 이를 게시할 수 없다.
- (3) 광고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숙지한 광고 심사자를 배치하거나 광고 심의 기관을 설립한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신원정보에는 이름(성명), 통합사회신용코드(신분증 번호) 등이 포함된다.

광고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광고 산업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알고리즘 추천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관련 규칙 및 광고 게재 기록 등을 광고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광고를 예방 및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한 이용자의 실제 신원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해당 정보 기록은 정보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재된 광고의 내용을 모니터링 및 조사하고, 불법 광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삭제, 차단, 게시링크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3) 민원 및 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간편 민원 신고 창구를 마련하거나 민원 및 신고 방법을 공지하고, 적시에 민원 및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다.
- (4) 기술적 수단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5) 불법 인터넷 광고 조사 시 시장감독 관리부서와 협력하고,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요구에 따라 불법 광고로 의심되는 증거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즉시 채택하고 관련 광고 게시자의 신원 정보, 광고 수정 기록 및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정보 등을 진실되게 제공해야 한다.
- (6) 정보서비스를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게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약관 및 플

랫폼 규정에 따라 경고, 서비스 중단,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인터넷을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입찰 순위 광고는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와 웹페이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공식계정 등의 검색 결과에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또는 이용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비게이션, 스마트 가전제품 등에 인터넷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상에 광고 또는 광고 링크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링크가 포함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주와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는 링크의 내용이 전면 광고와 관련된 광고 내용인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제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이는 상업 광고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광고주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위탁을 받아 광고디자인 및 제작, 대리,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방송실 운영자는 법에 따라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광고디자인, 제작, 대행, 게시 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은 생방송 마케팅 담당자는 법에 따라 광고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생방송 마케팅 담당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인증하는 것은 광고 보증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광고 모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0조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광고 게시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한다. 광고 게시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다른 지역의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모델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상황을 해당 위치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광고모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광고 모델에게 중개업무를 제공한 기관의 소재지, 광고모델의 호적지 또는 거주지를 그 소재지로 한다.

또한, 광고주와 광고 운영자가 소재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법적인 단서를 최초로 발견하거나 불만 사항이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스스로 불법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광고주가 소재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21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법 인터넷 광고를 조사하고 처벌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불법 광고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2)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련자를 심문하고 관련 부서 또는 개인을 조사하는 행위
- (3)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4) 스크린샷, 화면 녹화, 웹 페이지 보존, 사진 촬영,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저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 광고 의심과 관련된 계약서, 청구서, 회계장부, 광고 저작물 및 인터넷 광고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고 복사하는 행위
- (5) 불법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물, 사업 도구, 장비 및 기타 불법 광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을 압수하고 구금하는 행위
- (6)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광고에 대해 게시 중지를 명령하는 행위
-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인터넷 광고 기술 모니터링 기록은 불법 광고에 대한 행정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23조 본 방법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본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광고심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경우 광고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본 방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광고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광고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광고를 팝업 등의 형태로 게재하고 원클릭 종료를 보장하기 위한 팝업 종료 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광고 게시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본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열람하도록 속이거나 오도하는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고,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 명령을 하고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에게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본 방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가 규정에 따라 광고 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광고주가 본 방법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광고 파일을 구축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 명령을 하고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가 관련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고 링크된 광고 내용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불법 광고 활동 대상자의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을 경감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 방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고 광고 운영자 또는 광고 게시자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인터넷 광고 산업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현금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 명령을 하고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본 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만약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 명령을 하고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본 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광고 활동이 불법임을 알거나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는 경우 광고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본 방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금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 명령을 하고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에게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또는 이용자의 명백한 거절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교통수단, 네비게이션 장치, 스마트 가전 제품 등에 인터넷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이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에 광고 또는 광고 링크를 첨부하는 경우 현금 이상의 시장감독관리 부서가 시정 명령을 하고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광고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며, 사건의 성격이 불량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사회적 위험이 큰 경우, 해당 사건은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중대한 위법·신용 위반 명단 관리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법·신용 위반 명단에 포함된다.

제32조 본 방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6년 7월 4일 구 국가공상국 법령 제87호로 공포된 '인터넷 광고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

77.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의견 수렴안)

제목	剧本娱乐管理暂行规定(征求意见稿)
제재일	2023-04-13
출처	문화여유부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문화여유부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 임시규정(의견수렴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중은 다음의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이메일(yuwangchu@mct.gov.cn)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메일 제목은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 임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이라고 명시한다.
2.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주소: 문화여유부 시장관리사, No. 10 Chaoyangmen North Street, Dongcheng District, Beijing (우편 번호: 100020), 봉투 겉면에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 임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을 기재하여 발송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3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

첨부 파일: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의견 수렴안)>

극본 엔터테인먼트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의견 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극본 엔터테인먼트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정의 및 분류 관리]

본 규정에서 말하는 극본 엔터테인먼트는 사업단위가 영리 목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를 조직하여 각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 장면을 수수께끼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말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에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장과 관광 명소, 호텔과 같이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비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장이 포함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극본 창작 및 제작의 주체에는 극본을 창작 및 제작하여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에 제공하는 단위 또는 개인과 극본을 배포할 권한이 있는 단위가 포함된다.

제3조 [기본원칙]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홍보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창조적 변혁과 혁신적 발전을 견지함은 물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대중의 사상과 도덕 건설을 촉진하고 과학예술지식의 대중화를 도모하며 대중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제4조 [책임 분담]

문화여유부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전국 극본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감독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의 문화여유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극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감독을 책임진다.

제2장 콘텐츠 관리 및 미성년자 보호

제5조 [10대 금지 콘텐츠]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1)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저항을 선동하거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
- (2) 국가 단결,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성, 명예 및 이익을 훼손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행위
- (3)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폄하하고 민족적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며 민족 정서를 해치고 민족단결을 훼손하는 행위
- (4) 국가의 종교 정책을 훼손하고 사이비 종교 및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
- (5) 공중도덕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6) 음란, 도박, 약물 남용, 폭력, 공포를 조장하거나, 범죄를 방조하거나 범죄 수법을 가르치는 행위
- (7)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8)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 비방, 모독하거나 부정하는 행위
- (9)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10)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6조 [장려 내용]

다음 각 호의 극본 엔터테인먼트의 창작과 제작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1) 중국 공산당과 조국, 인민, 영웅을 찬양하는 내용
- (2)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홍보하는 내용

- (3)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혁명문화를 계승하며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내용
- (4)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내용
- (5)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
- (6) 과학교육사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내용
- (7) 중국 문명과 세계 다른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내용
- (8) 기타 국가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제7조 [적정 연령 안내]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있어 연령 안내문을 설정하고, 사용된 극본에는 적합한 연령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제8조 [미성년자의 입장 제한 시간]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미성년자 활동 제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미성년자 출입제한 표시]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소 제한]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지하 1층 이하(지하 1층 제외)에서 극본 엔터테인먼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 [콘텐츠 자체심사 및 전문가 검토 시스템]

극본 창작 및 제작의 주체와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콘텐츠 자체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극본 창작 및 제작의 주체는 해당 사업에 적합한 콘텐츠 자체 검토 인력을 갖추고 전문가를 고용하여 극본의 적합한 연령대와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서 진행자의 언행, 연기, 인터랙티브 게임, 장면, 소품, 의상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고 적절한 연령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국가 안보, 외교, 민족, 종교, 군사 및 기타 주요 주제를 포함하는 경우 전문가를 고용하여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는 언론, 출판 및 기타 관련 전공 분야에서 중급 이상의 직위를 보유하거나 심사 요구사항에 적합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3조 [실무자 관리 시스템]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진행자, 배우 및 기타 직원에 대한 직업윤리교육과 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규제 장치를 확립하여 정확한 지침과 예술적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극본 및 장소 등록

제14조 [극본 등록]

극본 창작 및 제작 주체는 국가문화시장 기술 감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현지 현금 문화여유 행정 부서에 극본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극본 제목, 작가, 스토리 개요 및 저작권 성명;
- (2) 적합한 연령대;
- (3) 전문가가 서명한 극본 검토 의견 또는 출판물 번호

최초 등록 시에는 극본 창작 및 제작 주체와 검토 전문가의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등록번호 발급]

극본 등록자료가 완전하고 정해진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에서 처리하고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극본 창작 및 제작 주체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에게 극본을 제공하기 전에 극본의 눈에 띄는 위치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극본의 스토리 배경, 줄거리 등 주요 내용에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극본에 금지 내용 등 기타 위반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16조 [장소 등록]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가 문화시장 기술 감독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현지 현금 문화여유 행정부서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사업 범위에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포함된 영업허가증
- (2) 주소,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 등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
- (3)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에 등록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등록증 발급]

사업장 등록자료가 완전하고 정해진 양식에 부합할 경우 현장에서 등록증을 처리 및 발급한다.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장은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등록 증명서를 걸어야 한다.

제18조 [복합 영업장소 보고]

비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종사한 날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

에 국가 문화 시장 기술 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음 정보를 소재지 현급 문화여유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1) 주소지,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 등 기본 정보
- (2)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

제19조 [플랫폼 관리]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접속하는 창작 및 제작 주체와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장에 적합한 연령대와 등록번호 또는 등록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플랫폼 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며, 위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조 [등록 요건]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극본 창작 및 제작 주체가 등록한 극본을 사용해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21조 [목록]

문화여유부는 국가 중점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 목록과 국가 극본 엔터테인먼트 금지 세부목록을 구축하고 서비스 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2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여유부는 전국 극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심사하고 추천하기 위한 전문가 명단을 구축한다. 극본 창작 및 제작 주체는 극본 등록 시 초빙한 전문가의 기본 정보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현급 이상의 문화여유행정부서는 제출된 전문가 목록을 기반으로 극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된 극본에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기관은 심사 전문가 및 극본 창작 및 제작 주체에게 경고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 2회 발생 시, 해당 심사 전문가를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전문가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 전문가는 극본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삭제한 기관은 삭제된 전문가 정보를 단계별로 문화여유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신용 감독]

현급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 및 직원의 신용 기록을 수립하고 청렴을 기리며 부정직을 처벌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주체를 식별하고 상응하는 신용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24조 [감독 및 검사]

현급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는 이에 협조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사회적 감독]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입장시키거나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극본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단체 또는 개인은 이를 권고, 제지 또는 문화여유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업계 자율]

극본 엔터테인먼트 산업 조직은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협회 정관에 따라 극본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며 업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7조 [내용 위반에 대한 처벌]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5조를 위반하고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제공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 [적령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7조를 위반하고 적령 제시를 설정하지 않거나 적령 범위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미성년자 불법 입장에 대한 처벌]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불법 수용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경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출입제한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10조를 위반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활동 장소 위반에 대한 처벌]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11조를 위반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지하 1층 이하(지하 1층 제외) 등에서 극본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한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업단위가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신용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제32조 [등록 및 보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1) 극본 창작 및 생산 주체가 본 규정 제14조를 위반하고 시나리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2)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16조를 위반하고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3) 비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18조를 위반하고 기한 내에 장소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4)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20조를 위반하고 미등록 시나리오를 사용한 경우

제33조 [플랫폼 처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본 규정 제19조에 따른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문화여유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검사 보장]

극본 엔터테인먼트 사업단위가 본 규정 제24조를 위반하고 현금 이상의 문화여유행정부서의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여유행정부서는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의 행위가 치안 위반이자 범죄 행위인 경우 법에 따라公安 기관에 이송하여 조사하고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3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XX, XX일부터 시행한다.

78.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작업 내실화 관련 통지

제목	关于扎实做好广告监管领域行风突出问题排查治理工作的通知
게재일	2023-06-19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작업 내실화 관련 통지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공청은 <광고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해결작업 내실화 관련 통지(关于扎实做好广告监管领域行风突出问题排查治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광고 관리 감독 분야의 업무 관행 구축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했다.

해당 통지는 10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1. ‘삼품일계(三品一械)¹⁹⁸⁾’ 광고 심사서비스의 규범화를 추진한다. “가장 엄격한 4대” 요구 사항을 전면 시행하고 광고 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며 행정 허가 시행 중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여 광고 심사의 품질을 보장한다.

2. ‘삼품일계(三品一械)’ 광고 심사 서비스의 편의를 추진한다.

광고 심사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 간 통합 서비스’ 작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광고 심사 데이터 수집을 가속화하여 총국과 지방정부 간의 데이터 공유 및 리플로우(Reflo w)¹⁹⁹⁾를 촉진한다.

3. ‘삼품일계(三品一械)’ 광고 심사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행정 허가 사항 목록 관리를 전면 시행하고 ‘3품 1계’ 광고 심사 및 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주체와 대중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4.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규범화한다.

현지 모니터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광고 모니터링 데이터의 안전 관리 및 위험 예방 및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청렴 위험 및 직무 수행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5. 전통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전통 미디어 단위의 광고 준수 운영 및 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등 기타 전통 미디어 단위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 미디어 광고 활동 주체가 법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한다.

198) 삼품일계(三品一械)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및 의료기계에 해당하며, 이들 제품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품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 승인이 필요함

199) 데이터 리플로우(数据回流) : 한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다시 흘리는 과정을 말함. 기업 관리 및 정보화 구축에서 데이터 리플로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 공유와 협업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6.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온라인 광고 분야의 거버넌스 작업을 수행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광고, 팝업 광고 및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뉴스 기사인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광고)’ 광고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온라인 광고의 혼란을 정리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한다.

7. 부문 간 관리·감독 협력을 강화한다.

허위 및 불법 광고를 시정하기 위한 합동 회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서 간 포괄적인 감독을 강화하며 ‘벌금을 부과한 일회성 처벌’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반복 처벌’과 같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8. 광고산업단지의 관리를 표준화한다.

광고산업단지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증 및 평가, 성과심사평가와 같은 위탁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산업단지 업무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9.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을 촉진한다.

행정 처분의 재량권 행사를 표준화하고 법 집행 팀의 역량을 강화하며 광고법 집행 수준을 높인다.

10. 광고 관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적의 의사’, ‘기적의 약’ 광고에 대한 철권 운동(执法行动, 민생 분야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기 위한 법 집행 조치)을 조직 및 전개하고 지역 간 수평적 공조를 적극 전개하며 불법 광고주, 광고 운영자, 광고 게시자 및 광고 모델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한다.

<통지>는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국가 시장 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년 특별 행동계획(全国市场监管系统行风建设三年攻坚专项行动方案)> 및 <국가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년 특별 행동계획 2023년 작업 요점(全国市场监管系统行风建设三年攻坚专项行动2023年工作要点)>의 요구사항에 따라, 광고 관리 감독 영역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착실히 조사하고 처리하며, 업계의 풍조 조성 과 광고 감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업계 풍조 조성을 통해 광고 감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광고 감독의 성과를 통해 업계 풍조 조성의 성과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79.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

제목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제재일	2023-07-13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 방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 중화인민공화국산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 국가광전총국 령 제15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은 2023년 5월 23일 국가인터넷정보국 2023년 제12차 사무국 회의에서 심의 및 채택되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아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왕룽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자제
교육부 부장 화이진평
과학기술부 부장 왕즈강
공업정보화부 부장 진광룽
공안부 부장 왕샤오희
국가광전총국 국장 차오수민

2023년 7월 10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임시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수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등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사진, 음성, 비디오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이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라 함)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대중

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가에서 뉴스 및 출판,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문학 및 예술 창작 등과 같은 활동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산업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 기관, 공공 문화 기관, 관련 전문 기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국내 대중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혁신 촉진과 법적 거버넌스를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중한 분류별·등급별 감독을 실시한다.

제4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사회주의의 핵심가치를 견지하고, 국가 정권의 전복, 사회주의제도의 전복, 국가 안전과 이익의 훼손, 국가 이미지 훼손,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및 사회안정 훼손, 테러리즘, 극단주의 선양 및 민족혐오 선양 및 민족차별 선양, 폭력·음란 및 허위·유해정보 등 법률·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생성해서는 안 된다.
- (2) 알고리즘 설계, 훈련 데이터 선택, 모델 생성형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민족, 신앙, 국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건강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3) 지적 재산권 및 기업 윤리를 존중하고 영업 비밀을 유지하며, 독점 및 부정 경쟁을 구현하기 위해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 (4)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으며,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 및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2장 기술발전과 거버넌스

제5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적용을 장려하고 긍정적이고 건전한 상향식 고품질 콘텐츠를 생성하며 응용 시나리오의 최적화를 모색하고 응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산업 단체, 기업,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 공공 문화 기관, 관련 전문 기관 등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혁신, 데이터 자원 구축, 변환 및 적용, 위험 예방 등의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프레임워크, 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같은 기본 기술의 독자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국제 규칙의 제정에 참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인프라와 공공 교육 데이터 자원 플랫폼 구축을 촉진한다. 연산 자원의 공동 공유를 촉진하고 연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공공 데이터의 분류별·등급별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고품질 공공 학습 데이터 자원을 확대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칩, 소프트웨어, 도구, 연산 및 데이터 자원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7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함)는 법에 따라 사전 학습, 최적화 학습 등 학습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합법적인 출처가 있는 데이터와 기본 모델을 사용한다.
- (2) 지적 재산권이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타인이 누리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3)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 (4)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학습 데이터의 진정성, 정확성, 객관성 및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의 기타 관련 규정 및 관련 관할 당국의 기타 관련 감독 요구사항

제8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 제공자는 본 규정의 요구 사항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수립하고 데이터 라벨링의 품질 평가 및 라벨링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샘플 검증을 수행하며, 라벨링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라벨링 담당자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안내해야 한다.

제3장 서비스 규범

제9조 제공자는 법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을 지고 네트워크 정보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지고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공자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10조 제공자는 서비스의 적용대상, 적용 상황 및 용도를 명확히 공개하고,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미성년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제공자는 법에 따라 이용자의 입력정보 및 이용기록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정보 및 이용기록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공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복제, 정정, 보완 및 삭제를 요구할 경우 법에 따라 이를 즉시 수락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디페이크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진, 동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특정 표시를 해야 한다.

제13조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생성 중지, 전송 중지, 제거 등의 처리 조치를 취한 후 모델 최적화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 등의 처분 조치를 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제공자는 민원 및 신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간편 불만 및 신고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처리 절차 및 피드백 기한을 게시하고 대중의 불만 및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며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감독검사 및 법적 책임

제16조 인터넷 정보, 개발 및 개혁, 교육, 과학 기술, 산업 및 정보화, 공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언론 및 출판 등 부서는 각자의 책임과 법률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국가 주관부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과 관련 산업 및 분야에서의 서비스 적용과 관련하여 혁신과 발전에 적합한 과학적 감독 방법을 개선하고 해당 분류 및 등급 감독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등록, 변경 및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이용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법률, 행정 규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관련 주관부서는 맡은 바 책임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제공자는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훈련 데이터의 출처, 규모, 유형, 표시 규칙, 알고리즘 메커니즘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 등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여하는 관련 기관 및 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국가 기밀, 상업 기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

며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제공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법률, 행정 규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부서는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제공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는 경고, 주의 통보를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공안 관리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공안 관리 처벌을 받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22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 등의 방식을 통해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포함).
-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 조직 및 개인을 말한다.

제23조 법률 및 행정규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제공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80.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제목	关于进一步加强网络侵权信息举报工作的指导意见
게재일	2023-09-15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분류	국가 문화 정책(종합)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각급 위원회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사이버 권리 침해 정보 신고업무는 인터넷정보 부서가 인터넷상에서 대중 노선²⁰⁰⁾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자 네티즌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적극적이고 건전하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 형성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를 강화해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많은 네티즌의 합법적인 사이버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1. 총체적인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²⁰¹⁾ 사상을 길잡이로 삼아, 당의 제20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20기 중앙위원회 1, 2차 전체 회의에서 발기된 정신을 철저히 실행하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의식을 견지하고, 당의 핵심 가치관을 중심으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수많은 네티즌이 사이버 공간에서 더 큰 성취감과 행복, 안전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네티즌의 합법적인 사이버 권익을 지키는 것을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는다. 웹사이트 플랫폼의 주체적인 책임을 공고히 하는 것을 역점으로 하여, 업무 기반을 탄탄히 닦고 대응 조치를 혁신·개선하며, 규정을 완비하고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개개인과 기업 법인의 사이버 권리 침해 신고 관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경제 사회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돕는다.

(2) 주요 원칙

체계성을 견지한다. 종합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통합 조정에 중점을 두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접수·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주체로서의 책임과 관리·감독 책임을 동시에 이행하며, 수평적인 협력과 수직적인 연동을 하나의 체계로 구축하고,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전방위로 업무를 추진한다.

200) 대중 노선(群众路线): 중국 공산당이 견지하는 기본적인 자세이자 사상 인식 기반으로 대중을 믿고 의지하며 대중에 봉사하고 대중 속에서 사상을 실천한다는 원칙

201) 중국 특색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이념으로, 국가 관리하에서 자본주의 제도가 시행되는 경제 체제라는 특색을 갖는 중국식 사회주의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네티즌의 사이버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난점이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직무에 따른 역할에 입각해 목표로 삼을 시책을 분명히 정해 정확한 곳에 힘을 쏟고, 업무 아이디어를 혁신하고 업무 방법을 개선해 네티즌의 신고·민원의 유효성과 처리율을 향상한다.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접수·처리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접수·처리 프로세스를 엄격히 하며,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대비에 중점을 둔다. 신고 접수·처리 시에는 정확한 법률 적용과 절차상의 완전성, 규정 준수를 담보해야 하며, 업무를 보다 체계화, 규범화한다.

실효성을 중시한다. 목표 지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단계는 밀착 관리한다.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현상과 본질을 함께 관리하며, 각종 업무를 깊이 있고 세밀하게 수행해 내어, 여러 중요한 과제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업무 기반 다지기

(3) 신고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다양한 신고 플랫폼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 침해 신고에 대한 수많은 네티즌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신고 플랫폼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신고·민원’, ‘신고 가이드’, ‘대표적인 사례’, ‘관련 법률·법규’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모은 신고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 신고 채널을 확충함은 물론, 법률·법규에 의거한 신고 지침을 제정하고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 권리 보호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네티즌을 위한 법률 자문, 사법 구제, 공익 소송, 인터넷 분쟁 조정 등의 채널을 도입해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 네티즌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신고 처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모든 단계가 원활히 연결되는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담당 부서는 책임 범위에 속하는 신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 및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공동 의논 및 연구·판단을 진행하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신고는 이관한다. 또한 추적 감독을 강화해 ‘모든 신고 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피드백이 진행되도록’ 한다. 신고·처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등급에 따라 분류해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처벌을 강화해 악의적인 권리 침해나 반복되는 권리 침해, 집단 권리 침해를 엄격히 처벌한다. 공포에 의한 억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의 공분을 사거나 여론이 주목하는 주요 사건들은 엄격히 처벌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공표한다.

(5) 제도 규범을 보완한다.

신고 접수·처리 규범을 정비하고, 접수 대상, 접수 범위, 접수 방법, 처리 조치를 명확히 하며, 집단 연구·토론이나 등급별 검사, 심사와 처벌의 분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세분화한다. 신고자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자의 개인 정보나 신고 자료를 유출, 변조, 훼손,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정보 등록과 업무 대장 작성, 문건 관리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6) 연구·판단 기준을 통일한다.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업무상에서 표준화 작업이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법에 근거해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접수 심사·연구·판단 및 처리의 과학적인 기준을 연구·제정한다. 업계 내 단체들과 웹사이트 플랫폼이 기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표준화의 실시 및 적용을 유도하고 웹사이트 플랫폼이 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위치임을 강조해, ‘좋은 기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좋은 기준을 잘 활용하는 상태’로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동일한 신고 항목과 동일한 접수 조건, 동일한 침해 증빙, 동일한 처리 결과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7)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처리를 보다 간편화, 지능화한다. 동적 모니터링, 통계 분석, 추세 연구·판단, 효과 평가 등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기초 데이터 자원이 자기 역할을 십분 발휘하게 해 예측과 예방, 예보 능력을 높인다. 인터넷정보 부서 사이버 신고 기술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와 상호 연동을 빠르게 추진하고, 기술 융합, 데이터 융합, 업무 융합을 종합적으로 계획·추진한다. 지역 간에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공조 처리 능력을 높여 ‘통합 접수·통합 처리’로 전국을 ‘하나의 판으로 통합’하는 업무 틀을 짜도록 지원한다.

3. 국민 개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

(8) 개인 신고 처리 시 유의할 부분을 명확히 한다.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의 집 주소나 신분증, 연락처, 의료·건강 기록, 이동 경로, 금융 계좌 등 개인 정보 유출한 신고 건을 중점적으로 접수·처리한다.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나 계정은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또한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직업 등 식별성이 높은 정보를 이용해 해당 인물을 사칭하고 정보를 게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다른 인터넷 활동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계정 역시 집중 처벌한다. 타인의 사진을 회화화 또는 훼손하거나, 타인의 초상을 엉뚱한 일에 관련짓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모욕·욕설·비방·유언비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범하는 내용이 실린 불량·불법 게시물 및 관련 계정을 집중 처벌한다.

(9) 사이버폭력 게시물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온라인 사이버폭력 게시물 신고 전용 코너를 구축해서 네티즌에게 간편한 신고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악의적이고 야만적인 발언이 담긴 게시물이나 ‘신상털기’, 인신공격, 유언비어, 비방 등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신속히 접수·처벌하도록 한다.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처음 게시하거나 처음 전달한 계정, 여러 번 게시한 계정, 유포를 선동하는 계정은 엄정하게 처벌한다. 온라인 처리와 오프라인 조사·처벌을 병행하고 집행 및 사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폭력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는 능력을 길러 사이버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때 치러야 할 대가를 키워 사이버폭력의 난맥상을 원천적으로 억제한다.

(10) 특수한 집단의 사이버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미성년자의 사이버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문자나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형태로 미성년자를 모욕, 비방, 위협하거나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불량·불법 게시물은 즉시 조치한다. 미성년자의 이름이나 주소, 사진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실제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각종 불량·불법 게시물은 즉시 조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불량행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한다. 법에 따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기타 특수한 집단의 사이버 권익을 보호하고, 성별 비하, 연령 비하, 지역 비하 등 사회 갈등과 집단 간 대립을 부추기는 불량·불법 게시물은 단호히 처벌한다.

(11) 신고 접수·처리 시 유의할 분야를 파악한다.

‘1인 미디어’가 제작·복제·게시하는 허위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처벌하고, 인터넷 계정(계정주체)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해 신고가 집중된 위법 계정 및 그 주체를 엄격히 처벌한다. 인터넷 게시물 검색 서비스 제공자가 링크나 요약, 캡처, 관련어, 연관 검색어 등의 방식으로 추천하는 권리 침해 게시물을 집중 처벌한다. 또한 인터넷 이슈, 리뷰, 라이브 방송, 숏폼 동영상, 그룹방 등에 보이는 상호 비난이나 비하, 싸움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권리 침해 게시물도 집중 처벌한다.

4. 기업의 합법적인 사이버 권익을 확실히 보호

(12) 기업과 관련한 신고·처리 시 유의할 부분을 파악한다.

눈길 끌기, 팬 늘리기, 악성 경쟁, 부당 이익 취득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조작이나 억측, 왜곡된 해석, 악의적인 연관 짓기, 의도적인 구설수 만들기, 이전 사건 이슈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기업 및 기업가의 명예를 침해하고 기업의 상품이나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떨어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장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처벌한다. 기업의 부정적인 이슈만 수집해 공갈·협박을 하거나, 기업명이나 식별성이 높은 정보를 악용하여 기업을 사칭해 인터넷 활동을 펼치는 사이트나 계정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여론을 조작하거나 악의적인 유언비어, 비방 등을 퍼뜨려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부대를 엄격히 단속한다.

(13) 기업 유형에 따라 보호해야 할 포인트를 명확히 한다.

법에 따라 기업 및 기업가의 사이버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업²⁰²⁾이 혁신과 성장, 발전을 하도록 지원한다. ‘잠정 상장 기업²⁰³⁾’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버 권익을 보호하고 순조롭게 상장 투자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춰 보호한다. 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시장 가치가 안정되고 투자자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어 보호한다. 첨단 기술 기업이나 ‘전정특신 기업²⁰⁴⁾’의 사이버 권익은 기업의 혁신과 발전, 성장과 역량 축적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 원문은 각종 소유제 기업(各类所有制企业)으로, 국영 기업, 민간 기업, 국외 자본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아우르는 말임

203) 잠정 상장 기업(拟上市企业):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상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고, 관련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만 잠정 상장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04) 전정특신 기업(专精特新企业): 전정특신은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의 줄임말로, 혁신적인 우량 중소기업들을 뜻함

(14) 온라인에 기업 신고 전용 코너를 개설한다.

웨이보(微博)와 위챗, PC와 모바일에 기업 신고 전용 코너를 개설해 접수 범위와 신고 요건, 침해 증빙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할 지역 기업의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관할 지역의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은 ‘전담 책임 인력 비치, 우선 처리, 전 과정 추적, 일정 기간 내 해결’이라는 업무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법에 근거해 빠르게 처리한다. 관할 지역과 관련 없는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의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즉시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에 보고한다.

(15) 신고 및 검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업무 관련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입증 방법을 혁신하며 입증 형식을 다양화해, 기업이 권리 침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신고 가능성을 높인다. 모욕과 욕설로 온라인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행위, 자기 본위 해석으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았거나 위조된 불법 웹사이트 등 명백한 인터넷 권리 침해 유형을 총정리해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 기관의 입증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히 한다. 제삼의 전문 기관, 업계 기준, 법률 의견서, 감사 보고서, 공공 서비스 플랫폼 조회 결과, 최초 게시 매체 정보 등이 사이버 권리 침해 입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업 직능 관리 부서와 연동되는 공조 기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문제나 단서의 경우 분석과 연구·판단, 총괄 조정을 진행하고 업무 공조를 진행해 빠른 증거 채집과 즉각적인 처리에 유리한 여건을 만든다.

(16) 신고 정책 지도를 강화한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조사와 연구에 힘을 쏟아 관할 지역 기업의 사이버 권리 침해 현황을 조사하되, 상황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한다. 신고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정책을 기업에 전달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 관할 지역 기업과 소통 및 피드백이 가능한 창구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기업의 권리 보호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그중 합리적인 권리 보호 요구를 하는 기업에는 ‘일대일’ 맞춤형 코치 역할을 해 신고 방법을 알려 주거나 신고 채널을 연결해 주고, 서비스를 보장한다. 불합리한 권리 보호 요구를 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시킨다.

(17) 기업의 신고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실질적인 심의, 연구 및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론 모니터링의 의미와 사이버 권리 침해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이 기업의 관리 능력을 상승시키고 생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법률 준수, 효과적인 지도, 채널 표준화’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 계약, 지분, 재산권, 부채, 소비 등 권익 분쟁 신고를 법에 의거해 적절히 처리한다. 신고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업의 신고 행위를 규범화하는 한편, 신고 권리를 남용하거나 신고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방지한다.

5. 온라인 플랫폼의 주체적인 책임을 공고히 한다.

(18) 감독과 점검을 엄격히 한다.

전체 점검과 중점 점검을 꾸준히 병행하되, 관할 지역 내 웹사이트 플랫폼의 인터넷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 현황을 전체 점검하고, 웹사이트 플랫폼 측이 명확한 인터넷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건에 대해 관련 법률·법규에 따른 피드백을 즉시 하지 않은 경우에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 대장을 만들어 시정 및 실천에 전력을 기울인다. 주체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이버 권리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징계와 처벌을 강화한다.

(19)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온라인 네티즌 민원 접수창구 개설을 모색하고, 관할 지역 내 웹사이트 플랫폼에서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처리가 즉시 처리되지 않거나 네티즌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았다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즉시 처리한다. 민원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민원 처리 조치를 개선하며, 민원 처리 방법을 공개한다. 민원 처리 현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처리의 결과 효율을 높인다. 웹사이트의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 평가 시스템을 완비하고, 대중들의 평가 파라미터 지표를 도입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한다.

(20)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관할 지역의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접수·처리 현황 통보 시스템을 상시화하도록 지도한다. 옴니미디어²⁰⁵⁾ 방식을 이용해 이를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하고, 접수 절차나 판단 기준, 처리 시한 등 커뮤니티 규칙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달아 네티즌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처리 횟수와 처리 결과, 대표 사례를 공개해 대중의 감시를 받도록 한다. 화제성 높은 권리 침해 사건의 경우, 네티즌의 관심에 호응해 신고 처리 현황을 공개한다.

(21) 처리 효과를 높인다.

웹사이트 플랫폼이 등급별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관련 조치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신속 처리 채널을 만들어 바로 접수하고 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빙이 충분히 된 건은 빠르게 처리한다. ‘한시적으로 사적인 내용 포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효성이 강하고 입증에 걸리는 시간이 길며 신고자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침해 게시물은 우선 ‘사적인 내용 포함됨’ 조치를 해 관련 게시물이 공유 및 전파되는 걸 즉시 저지하고 신고자에게 증빙할 시간을 제공한다. ‘논란 있음 태그’ 시스템을 구축해, 사실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권리 침해 게시물에 ‘내용에 의혹이 있음 태그 달기’ 혹은 ‘당사자 반응 성명 링크’ 등의 조치를 해 네티즌의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권리 침해 게시물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을 방지한다.

6. 조직의 실행

(22)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인터넷 환경 관리의 주요 과제로 삼아 항상 긴밀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꼼꼼하게 업무를 배치하고 추진안을 수립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세밀히 시행한다. 신중하게 인력을 조직해 시행하되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실 있고 질서 정연하게 업무를 추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205) 옴니미디어(omnimedia):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문자, 소리, 영상, 애니메이션, 웹 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미디어를 가리킴

(23) 시범 선도에 중점을 둔다.

전면적인 배치와 시범 선도를 병행해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시책들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아이디어 혁신, 시책 혁신, 시스템 혁신을 장려하되, 우수한 방법과 경험 사례를 적시에 정리해 보급하고, 시대의 특징에 부합하고 대중의 요구에 근접한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24) 인재 구성을 강화한다. 업무 역량을 완비·확충하고, 사상 단련을 강화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서비스 정신을 함양한다. 실무를 통한 단련과 업무 역량 훈련을 강화해 법률적인 소양 및 미디어 소양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 전문성 높고 능력도 강하며 규율을 중시하고 마지노선이 뚜렷한 고품질 전문화된 업무팀을 만든다.

(25)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주제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홍보, 실례를 활용한 홍보를 계속 펼치고, 소리나 동영상, 그림, 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국민과 커뮤니티, 학교,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를 홍보하는 등 사이버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업무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와 사회 참여도를 지속해서 높인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2023년 8월 31일

81.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

제목	关于依法惩治网络暴力违法犯罪的指导意见
게재일	2023-09-25
출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部
분류	중국 문화 정책(종합)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의견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국), 해방군군사법원, 군사검찰원,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고급인민법원생산건설병단분원, 신장생산건설병단인민검찰원, 신장생산건설병단공안국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배포하니 성실한 태도로 철저히 시행하되, 시행 중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部에 각각 보고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部
2023년 9월 20일

사이버폭력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한 지도 의견

사이버폭력이라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사이버 질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치안관리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등 형사 사건 처리에서 법률 적용 시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利用信息网络实施诽谤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등의 법률과 사법 해석 규정을 근거로 법 집행 및 사법 실행과 결합해 본 의견을 제정하였다.

1. 사이버폭력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과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보호한다.

- (1)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욕설·모욕·유언비어·비방·사생활 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퍼트리는 사이버폭력 행위는 타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사망’을 초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신 이상이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고 네트워크 생태계를 파괴하며 사이버 공간에 폭력적인 분위기를 퍼트려 대중의 불안감을 조장한다. 기존의 범죄와 다르게 사이버폭력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권리 보호를 위한 코스트가 매우 높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이버폭력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엄

격히 처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효용성 있는 법적 구제책을 제공해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고 인터넷 질서를 지켜야 한다.

2. 법률을 정확히 적용해 사이버폭력 범죄를 엄벌한다.

- (2)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네트워크상에서 유언비어를 작성 또는 유포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되 사안이 엄중하여 형법 제24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 (3) 사이버 모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네트워크상에서 무분별하게 욕설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되 사안이 엄중하여 형법 제24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한다.
- (4) 국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소위 ‘신상털기’를 계획해 국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하되 사안이 엄중하여 형법 253조 1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 정보 침해죄로 처벌한다.
- (5) 사이버폭력 사건을 이용해 악의적인 마케팅이나 이슈 만들기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화제성 높이거나 트래픽 유입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계정이나 공공 계정 등을 이용해 사이버폭력 사건과 관련된 게시물을 발송·배포해 형법 제287조 1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불법 이용죄로 처벌한다. 형법과 사법 해석에 따라 다른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죄목을 적용해 처벌한다.
- (6) 정보통신망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된 사이버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감독 부서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 정보가 대량 유포되거나 다른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여 형법 제286조 1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안전 관리 의무 불이행죄로 처벌한다. 형법과 사법 해석에 따라 다른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죄목을 적용해 처벌한다.
- (7) 사이버폭력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인터넷상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치안 관리 처벌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 (8) 사이버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벌한다. 사이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원칙을 구현해 대중이 공정과 정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엄격한 법 집행을 견지하고 사이버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파헤쳐 ‘다수가 저지르는 일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실히 교정한다. 악의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조직한 사람, 악의적으로 선동한 사람 및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처벌한다. 사이버폭력 범죄 사건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 1)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2) ‘댓글 부대’ 나 ‘도우미’ 혹은 기타의 사람을 모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
 - 3) ‘성적인 내용과 연관된’ 이야기를 날조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 4)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을 올린 경우
 - 5)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사건을 일으키거나 조직한 경우
- (9) 법에 따라 민사상의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타인을 향한 사이 폭력 범죄나 타인의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한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한다.
- (10) 불법 범죄 행위의 인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범죄 행위나 법률 위반행위, 규율 위반행위를 고발하거나 폭로하는 경우, 일부러 사실을 날조하거나 날조된 사실임을 알면서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언행에 대해 평가나 비평을 할 때 관점이 상당히 편파적이고 표현이 다소 과격해도 욕설이나 악의적인 비방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3. 소송 절차를 원활히 하고, 효과적인 법률 구제책을 즉시 제공한다.

- (11) 공안기관의 증거 수집 협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이행한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심사를 통해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요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행위 주체를 즉시 밝혀내고 모욕 및 명예훼손 내용을 배포한 정황 및 그로 인해 초래된 영향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의 증거 수집 시 법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증거 수집 협조를 통해 고소 사건 접수 요건을 갖춘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입안을 결정해야 한다.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 (1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소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다.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러 사회 질서와 국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는 피해 대상과 동기, 목적, 가해 방식, 정보 유포 범위, 가해 결과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46조 제2항에 의거해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 2) 임의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지속하고

- 악의적인 평론을 대량으로 유발하고 사이버 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 3) 여러 사람을 모욕·명예훼손 했거나 모욕·명예훼손 게시물을 여러 차례 배포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 4) 사람들을 모으거나 지시해 온라인 플랫폼 여러 곳에 모욕·명예훼손 게시물을 대량 유포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 5) 기타 사회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가한 경우

13. 법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형사 사건의 공소 절차를 적용한다. 사회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가한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즉시 기소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제기인에게 소송 철회를 요청하거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수리한 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이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인은 피해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안하기 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해당 행위가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관한다.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범죄는 성립되나 공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라고 고지할 수 있다.

(14) 입건 감독 업무를 강화한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법률과 사법 해석 규정에 따라 사이버폭력 범죄 안전에 대해 입건을 감독하는 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에 사이버폭력 사안의 입건 업무에 대한 업무 지도와 내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5) 법에 따라 인격권 침해 금지 명령 제도를 적용한다. 권리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이며, 즉시 저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민법 제997조에 의거해 인민법원에 행위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안전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법에 따라 인격권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6) 법에 따라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 사이버폭력 행위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된 사이버폭력 범죄 관련 정보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결과 위법 정보가 대량 유포되거나 다른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여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사이버폭력 관리 분야의 공익 소송 안전을 처리할 경우, 법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4. 업무 요구를 이행하고 종합적인 관리강화를 촉진한다.

- (17) 피해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한다. 사이버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해자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이버폭력 게시물이 널리 유포가 되어 있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사건으로 인한 영향을 지우기 힘든 상황이므로, 법에 따라 즉시 사건 진행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실의 진상을 밝혀 부정적인 영향을 실효성 있게 없애 주어야 한다. 죄를 인정할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적용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유도해 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해 특정 직업 종사 금지를 선고하거나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 (18)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인민법원, 인민감찰원,公安기관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된 법 집행 및 사법 이념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때의 절차 및 공소 절차를 질서 있게 연결해 안전의 수사와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한다. 중요하고 민감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公安기관은 인민감찰원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인민감찰원은 즉시 의견을 제시하여 사건의 법에 따른 적절한 처리를 보장한다. 행정 집행과 형사 사법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조 협력을 강화해 각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맞게 상시적이며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업무 구조를 만들어, 사이버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 (19) 법치주의를 홍보한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률 지식을 보급한다’는 법률 지식 보급 책임제를 성실히 이행해, 법의 집행과 사건 처리 관련 법규가 가치관을 유도하는 길잡이이자 행동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한다. 사이버폭력의 보편적인 사례를 발표해 ‘사이버 공간은 무법지대가 아님’을 확실히 전달하고, 수많은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지도해 사회의 문명화를 이끈다.
- (20) 사이버폭력의 종합적인 관리를 촉진한다. 법 집행과 사법 기능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소원처리²⁰⁶⁾를 실천하고, 사이버폭력을 발생시키고 키우는 근원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법 권고²⁰⁷⁾, 검찰 권고²⁰⁸⁾, 公安 제안함²⁰⁹⁾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폭력을 다양한 주체가 함께 대응하게 하고, 네트워크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주체적인 책임을 탄탄히 하며, 장기적 효과가 있는 처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사이버폭력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고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한다.

206) 소원처리(訴源治理):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씨앗부터 없애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법 정책

207) 사법권고(司法建议): 인민법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

208) 검찰권고(检察建议): 인민감찰원에서 본원에서 취급하는 사건의 관련 기관 등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

209) 公安 제안함(公安提示函): 公安기관이 제안 서신의 방식으로 보내는 공문이나 통지를 가리킴

2023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책임 | 윤호진(북경비즈니스센터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 한중콘텐츠연구소

연구용역 책임자 | 김원동 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

연구원 | 나진희 한중콘텐츠연구소 실장

연구보조 | 정유진 한중콘텐츠연구소 연구원

발행인 |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 1566-1114

홈페이지 | www.kocca.kr

기관번호_KOCCA23-20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B552644-000320-10

ISBN_979-11-6677-190-3(95600) (비매품)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2023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 ○ 쪽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융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

